교 육 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18. 12.

교육부

차 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00] 학교교육 내실화 ····· 3

[1031] 초중등교육 역량강화 ····· 4

[302]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재량, 계속) ····· 4

[30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재량, 계속) ····· 18

[305] 영재교육 지원 사업(재량, 계속) ····· 47

[314]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재량, 계속) ····· 64

[315]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재량, 신규) ····· 77

[316]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재량, 신규, R&D) 82

[1038]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 ····· 87

[500]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운영(재량, 계속) ····· 87

[650]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재량, 계속) ····· 104

[1049]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 117

[300]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재량, 계속) ····· 117

[502]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재량, 계속, 정보화) ····· 160

[105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 168

[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재량, 계속, 정보화) ····· 168

[1200] 교육복지 증진 ····· 204

[1231] 장애인교육지원 ····· 205

[300] 장애학생교육지원(재량, 계속) ····· 205

[30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재량, 신규) ····· 232

[1234]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 253

[300]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재량, 계속) ····· 253

[500]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279

[650]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재량, 계속) ····· 295

[1400] 학교교육 활성화 ····· 303

[1403]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 304

[300]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재량, 계속) ····· 304

[1404] 창의적 인재육성 ····· 317

[305]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 317

[401]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재량, 계속) ····· 331

[403]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재량, 계속) ····· 356

[405]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R&D) ····· 398

[1405]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414

[300]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재량, 계속) ····· 414

[1409]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 429

[40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재량, 계속) ····· 429

[1412] 인성교육진흥사업 ····· 443

[300] 인성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 443

[304]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재량, 신규) ····· 455

[1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63

[1501] 보통교부금 ····· 464

[300] 보통교부금(의무, 계속) ····· 464

[1502] 특별교부금 ····· 470

[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470

[30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476

[30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482

[1600] 지방교육정책 지원 ····· 488
[160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489
[30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무, 계속) ····· 489
[8000] 회계간 거래 ····· 500
[8001] 회계간 거래 ····· 501
[801]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계속) ····· 501
[803]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계속) ····· 507

고 등 교 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 515
[2232] 대학자율 역량강화 ····· 516
[300]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 516
[303]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재량, 계속) ····· 525
[30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재량, 계속) ····· 558
[306]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재량, 계속) ····· 572
[308] 고등교육의국제화 지원(재량, 계속) ····· 587
[315]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재량, 신규) 606
[2233] BK21 플러스사업 ····· 619
[300] BK21 플러스 사업(재량, 계속, R&D) ····· 619
[2238] 대학교육 역량강화 ····· 636
[305]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636
[309]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신규) ····· 646
[310] 대학창업 활성화(재량, 계속) ····· 654
[312] 대학혁신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679
[318]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재량, 신규) ····· 694

[2258] 국립대학 혁신지원 ····· 698
[300] 대학구조개혁 지원(재량, 계속) ····· 698
[301] 국립대학 육성사업(재량, 계속) ····· 715
[2259]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정성 제고사업 ····· 728
[304] 의과학자 육성 지원(재량, 계속, R&D) ····· 728
[30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재량, 계속) ····· 741
[2260] 대학평가지원 ····· 755
[301] 대학평가 및 운영(재량, 계속) ····· 755
[2268]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782
[300]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 782
[2256]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 798
[300]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재량, 계속, R&D) ····· 798
[2400] 학술연구 역량강화 ····· 820
[2432]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 ····· 821
[301] 인문사회기초연구(재량, 계속, R&D) ····· 821
[302] 인문학진흥(재량, 계속, R&D) ····· 839
[303] 한국학진흥사업(재량, 계속, R&D) ····· 857
[306] 사회과학연구지원(재량, 계속, R&D) ····· 880
[2433] 인문사회직할출연기관지원 ····· 895
[301]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재량, 계속, R&D) ····· 895
[303]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재량, 계속, R&D) ····· 951
[2434] 고전문헌 국역지원 ····· 986
[300] 고전문헌국역지원(재량, 계속, R&D) ····· 986
[2437]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 ····· 1003
[301]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재량, 계속, R&D) ····· 1003
[302]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1020
[2438] 학술단체지원 ····· 1035
[300] 학술단체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1035

[2439]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 1055
[300]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재량, 계속, R&D) ····· 1055
[2440] 학술연구 국제교류 강화 ····· 1073
[301]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1073
[2446] 이공학학술연구조성 ····· 1088
[3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재량, 계속, R&D) ····· 1088
[301] 개인기초연구(재량, 계속, R&D) ····· 1109
[2447] 한국바로알리기 ····· 1121
[30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재량, 계속) ····· 1121
[302] 한국바로알리기(재량, 계속) ····· 1140
[2448]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 1163
[301]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재량, 계속) ····· 1163
[6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재량, 계속) ····· 1195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1210

[2638] 한국장학재단 출연 ····· 1211
[300] 한국장학재단 출연(재량, 계속) ····· 1211
[264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1235
[3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재량, 계속) ····· 1235

[2700] 국립대학 운영지원 ····· 1253

[270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 1254
[300]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계속) ····· 1254
[30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재량, 계속) ····· 1264
[304]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재량, 계속) ····· 1274
[30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재량, 계속) ····· 1280
[306]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재량, 계속) ····· 1290

[2740] 국립대학 시설확충 ····· 1305
[300] 국립대학 시설확충(재량, 계속) ····· 1305
[301]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재량, 계속) ····· 1320
[305]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재량, 신규) ····· 1345
[2742]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 1351
[30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재량, 계속) ····· 1351
[300]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재량, 계속) ····· 1377
[2743]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 1386
[301] 국립대병원 지원(재량, 계속) ····· 1386

[8400] 회계 기금간 거래(전출금) ····· 1413

[8411] 사립대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 1414
[882]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계속) ····· 1414

[8600] 회계 기금간 거래(예수원금상환) ····· 1422

[86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 1422
[883]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원금상환(교육부, 차관계정)(계속) ····· 1422

[8700] 회계 기금간 거래(예수이자상환) ····· 1428

[87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 1428
[884]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차관이자상환(교육부, 차관계정)(계속) ····· 1428

평 생 직 업 교 육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 1437

[4031]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 1438
[300]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재량, 계속) ····· 1438
[30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재량, 계속) ····· 1457

[4033] 정책연구개발사업 ····· 1472
[300] 정책연구개발사업(재량, 계속, R&D) ····· 1472

[4100]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 1483

[4131] 평생학습 기반구축 ····· 1484
[300] 평생학습 진흥지원(재량, 계속) ····· 1484
[301]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사업(재량, 계속) ····· 1505
[30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재량, 계속) ····· 1521
[30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재량, 계속) ····· 1530
[306]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재량, 계속) ····· 1542
[4134]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1553
[3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 1553
[30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량, 계속) ····· 1566
[30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재량, 계속) ··· 1585
[413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1601
[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재량, 계속) ····· 1601
[414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1620
[30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재량, 계속) ····· 1620
[415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1633
[30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재량, 계속) ····· 1633

[4300] 국제교육 협력 증진 ····· 1651

[433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1652
[30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재량, 계속) ····· 1652
[4333]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 ····· 1684
[302]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재량, 계속) ····· 1684
[30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재량, 계속, ODA) ····· 1753

[4500]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 1831

[4531]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 1832
[300]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재량, 계속, ODA) ····· 1832
[301] 학생교육교류지원(재량, 계속) ····· 1862
[302]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 1884
[303] 한국어능력시험개선(재량, 신규) ····· 1897
[304] 재외동포 초청교육(재량, 계속) ····· 1908
[453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 1927
[300]영어교육센터지원(재량, 계속) ····· 1927
[650]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재량, 계속) ····· 1944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 1966

[4601] 산학협력 기반조성 ····· 1967
[300]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재량, 계속) ····· 1967
[303]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재량, 계속) ····· 1976
[460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1993
[300]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재량, 계속) ····· 1993
[4601] 학교기업 지원사업 ····· 2026
[300] 학교기업 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2026
[4602]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40
[300] 전문대학 혁신 지원(재량, 계속, R&D) ····· 2040
[4603]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 2048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재량, 계속) ····· 2048

[4700]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 2058

[4701] 이러닝 세계화 ····· 2059
[300] 이러닝세계화(재량, 계속, ODA) ····· 2059
[301]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재량, 계속) ··· 2107

[4705] 교육통계조사관리 ····· 2119
[300] 통계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사업(재량, 계속) ····· 2119
[301]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재량, 계속) ····· 2137

교 육 일 반

[7000] 교육행정지원 ····· 2163
[7031] 교육행정운영 ····· 2164
[300] 교육정책이해도제고(재량, 계속) ····· 2164
[301] 교육행정감사지원(재량, 계속) ····· 2178
[306]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운영사업(재량, 계속) ····· 2190
[307]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재량, 계속) ····· 2205
[310]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재량, 계속) ····· 2218
[312]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재량, 계속) ····· 2235
[7034] 행정업무정보화 지원 ····· 2249
[305] 교육정보보호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2249
[500]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재량, 계속, 정보화) ····· 2274
[50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 2289

기 초 생 활 보 장

[1100] 기초생활보장 ····· 2305
[1131] 교육급여 ····· 2306
[300] 교육급여(의무, 계속) ····· 2306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00] 학교교육 내실화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000] 학교교육 내실화	3	**219,427**	**234,228**	**14,801**
[1003] 국립부설학교 운영지원(일반회계)	-	115,434	117,613	2,179
[110] 국립부설학교 인건비	-	99,884	101,513	1,629
[250]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	-	15,550	16,100	550
[1031] 초중등교육 역량강화(일반회계)	4	28,720	28,506	△214
[302]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4	1,282	1,120	△162
[30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18	5,151	4,043	△1,108
[305] 영재교육 지원사업	47	1,287	1,537	250
[314]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64	21,000	21,000	-
[315]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77	-	170	170
[316]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R&D)	82	-	636	636
[1038]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일반회계)	87	2,505	2,417	△88
[500]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87	384	345	△39
[650]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	104	2,121	2,072	△49
[1049]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일반회계)	117	35,889	48,375	12,486
[300]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117	34,055	46,451	12,396
[502]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160	1,834	1,924	90
[105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일반회계)	168	36,879	37,317	438
[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정보화)	168	36,879	37,317	438

[302]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393	1,282	1,120	**△162**	**△12.6**

* 사업코드 : 11 - 13 - 0 - 050 - 051 - 1000 - 1031 - 302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교육과정정책과장(권영민), 사무관(윤정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정과제* 이행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 국정과제 50-1-2(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50-2-2(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 50-4-3(자유학기제 확대) ○ 국가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기반 조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착근을 위한 후속지원
사업기간	'9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학교별·교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

※ 산출내역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위원수당 : **78백만원** = 15만원×520명(575명×출석률 90%)
- 회의운영비(대관료, 간식비 등) : **18.2백만원** = 65만원×28개 분과
- 회의자료집 인쇄비 : **13.8백만원** = 2.4만원×575부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 **920백만원**

- 미래형 교육과정 주요 사항 개발 연구 등 교과별 개정 기초 연구
- 국가·사회적으로 부각되는 통일대비 교육 관련 연구
- 중앙 정부-시도교육청 간 교육과정 권한 배분 방안 연구
- 학점제 적용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 교과목별 성취기준 개발 방향 연구

※ 산출내역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23개 과제) : **920백만원**
- 연구비 : **920백만원** = 40백만원×23개 과제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66백만원**

- 과목 선택권 확대,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 평가 등 학생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상시소통 체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산출내역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66백만원**
- 연수비 : **66백만원** = 4개 권역 × 16.5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홈페이지 운영 : **24백만원**

- 국가교육과정 정책 안내 및 국내·외 연구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http://ncic.go.kr) 운영

※ 산출내역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비 : **24백만원**
- 운영비 : **24백만원** = 2백만원×12월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282	1,120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110백만원) 위원수당, 회의운영비 등	(110백만원) 위원수당, 회의운영비 등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정책연구비(26개 과제)	(920백만원) 정책연구비(23개 과제)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108백만원) 교과별 핵심교원 연수비	(66백만원) 컨설팅 지원단 연수비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24백만원) 홈페이지 운영비	(24백만원) 홈페이지 운영비

□ 지원 필요성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와 타당성 확보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지원 및 중장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연수 필요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대국민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과정 정책의 성공적 현장 착근 유도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www.ncic.re.kr)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393**	**1,282**	**1,120**	**△162**	**△12.6**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78	110 (520명x0.15백만원, 28분과x0.65백만원, 575부x0.024백만원)	110 (520명x0.15백만원, 28분과x0.65백만원, 575부x0.024백만원)	-	-
■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연구	1,016	1,040 (26개과제x40백만)	920 (23개과제x40백만)	△120	△11.5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243	108 (10만원×1회 ×10개교과×108명)	66 (4개권역×16.5백만)	△42	△38.8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운영	24	24 (12월×2백만)	24 (12월×2백만)	-	-
□ **비목**(합계)	**1,393**	**1,282**	**1,120**	**△162**	**△12.6**
○ 일반수용비(210-01)	258	218	176	△42	△19.2
○ 관리용역비(210-15)	95	-	-	-	-
○ 정책연구비(260-02)	1,016	1,040	920	△120	△11.5
○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의 상설 운영 및 2015 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393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08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8	1,282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08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282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08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
'19	1,282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08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120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66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62
'20	2,308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134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181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0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47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127
'21	2,308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134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158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0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36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1,150
'22			1,146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0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2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3.5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A)	'19예산(B)	증감(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282	1,120	△162
	총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5.17	13.24	△1.9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83	11.82	△0.0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 내 '<2>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2>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 및 <표4>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a+b+c=13.24명** ○ 정책연구비 9.2억원은 '연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표2> a. 9.2억원 ÷ 0.89억원 = 10.33명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비 0.24억원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5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표4> b. 0.24억원 ÷ 0.51억원 = 0.47명 ○ 기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등 내역 사업은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표4> c. 1.76억원 ÷ 0.72억원 = 2.44명 □ **2018년 고용효과 : 15.17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제1조 내지 제2조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1조(설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

제2조(심의회의 조직)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09.12.23.)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11.8.9.)
- 2013 교육과정 일부수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3-7호, '13.12.18.)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9.23.)

○ 추진경위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09.12.23.)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 교과 교육과정' 보고('10.6.)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고시('11.8.9.)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성취수준 개발('12.1.~8.)
-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공동 운영('13)
-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교육부 제2013-7호, '13.12.18.)
- 교육부,「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추진 계획」수립('14.2.)
- 교육부·미래부 등「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14.7.23.)
-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발표('14.9.)
-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추진('14.12.~'15.5.)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추진('15.3.~12.)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개발 연구('15.5.~11.)
-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5.7.21.)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9.23.)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개발 연구('16.4.~'17.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1.97	11.97	29.54	18	18	12.82	12.82	12.82	12.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54 ( )	4.52 ( )	( )	34.06 ( )	31.78 ( )	2.28 ( )	( )
'16년	18 ( )	2.28 ( )	( )	20.28 ( )	18.75 ( )	1.47 ( )	0.06 ( )
'17년	12.82 ( )	1.47 ( )	( )	14.29 ( )	13.93 ( )	0.36 ( )	( )

○ 이 월

-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 보급 대상 학교(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가 '16.3월에 확정 예정임에 따라 인쇄.보급 시기 조정(150백만원, '15년)
- 소프트웨어 교원 원격 연수 콘텐츠 개발비 잔액(45백만원, '15년)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NCIC) 유지.보수 용역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인한 잔금 미지급(7백만원, '15년)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15.9.23.) 이후 후속지원 사업 전개로 인한 연구과제.연구자 선정(2개월) 및 연구기간(3~4개월) 소요(26백만원, '15년)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영문판 개발 연구(8백만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연수체계 구축 방안 연구(12백만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장애학생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안 연구(6백만원)

- '통합과학 및 통합사회 전국 핵심교원 연수('17.1월)' 시설 이용비(40백만원, '16년)
- '소프트웨어 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및 자료 개발('16.10.~'17.3.)' 용역비 잔금(95백만원, '16년)
- '진로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16.12.~'17.5.)' 정책연구비 잔금(12백만원, '16년)
-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연구*' 관련 정책연구비 잔금(25.5백만원, '17년)

*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7.5백만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7.5백만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 개발 연구(10.5백만원)

- '교사별 과정중심평가 활성화를 위한 학생 평가 모형 개발 연구' 정책연구비 잔금(10.5백만원, '17년)

○ 불 용

- '소프트웨어 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사업'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5,240천원, '16년) 및 교원 연수비 집행 잔액(378천원, '16년)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282	1,282	1,282	-	1,282	1,282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 11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 1,040백만원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108백만원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 24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과정 개정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의 부적절성('14결산, 교문위)
- 국립학교 학력증진사업 등 타 사업에서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배 가능성 존재

○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과제 공모·선정한 절차상 문제('14결산, 예결위)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계약 입찰 공고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교육부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용역 절차 등과 관련된 별도의 세부규정 마련 필요

○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15결산, 예결위)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계약관리에 유의할 필요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부적절한 예산 전용) '16년도 예산 편성 시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에 필요한 기초연구비를 미리 산정하여 과부족이 없도록 적정하게 편성하고, '15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 (계약체결 절차 부적정)「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하여('15.7월, 기획담당관), 동 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자 공모·선정

○ (수의계약 범위 확대) '16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한 계약 수행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각국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쳐 교육과정 정책 수립을 추진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교육연구소의 교육과정연구센터의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교육과정 개정 추진
- (프랑스) 국립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를 기초로 교육과정 개정 추진

※ (영국) 교육개혁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도입('88년)하여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할 교과목의 종류, 교육내용, 일정 학령에서 교과별로 성취해야 할 성취수준과 평가방식 등을 밝히고 있음

※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라 개발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동 기준에는 일반적 방침 및 각 교과 등에 대한 목표, 내용, 지도계획 등을 다루고 있음

(6) 사업추진절차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관련 기본연구 ⇨ 전문가 협의회 ⇨ 계획안 작성 ⇨ 교육부내 정책토론 ⇨ 교육과정 개정 기본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정 추진 절차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 ⇨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 ⇨ 총론 개정시안 현장검토 공청회 ⇨ 교과별 각론 개정시안 연구개발 ⇨ 교육과정 각론 현장검토 공청회 ⇨ 교육과정 개정시안 작성 ⇨ 교육과정 심의회 심의 ⇨ **교육과정 총론.각론 확정고시**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 교과서 개발
- 해설서 개발
- 교원양성 연수
- 교육과정 홍보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정 교육과정 후속지원에 대한 현장교원 만족도(점)	목표	70	85	90	90	93	최근 3년간 만족도('15년 83점, '16년 88점, '17년 98점) 평균값(90점)에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한 3점 가점하여 93점으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매우불만 0점, 불만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	설문조사
	실적	83.4	88	98					
	달성도	119.1	103.5	108.9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2019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계획(안)

참고 1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2017 찾아가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5회, 경기, 광주, 충북, 대전, 경북)'에 참여한 전체 학부모 대상(2,096명) 설문조사 실시

○ 교육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으로 선택

* (주요내용)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및 단계적 확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

○ 시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중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해관계자)** 2017년 교육과정 총론 핵심교원 연수('17. 5월~7월)에 참여한 현장교원 대상(365명) 설문조사 실시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단위학교 편성·운영 방향에 대한 만족도는 90%

○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연수 방식 및 교육과정 컨설팅 요원 양성 필요성 등 후속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96%

< 예산(안) 반영사항 >

☐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110백만원**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한 학교별·교과별 전문가 협의회 운영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92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후속연구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를 연계한 수업모델 개발 연구 등 추진

※ 미래 사회 대비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분석 연구, 2015 개정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 연구(초, 중, 고), 교과목별 성취기준 개발 방향 연구 등

☐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66백만원**

○ 학생 중심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상시 소통 체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24백만원**

○ 국가교육과정 정책 안내 및 국내·외 연구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완성해 나가는 교육과정 구현**

○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한 **주요 쟁점 발굴** 및 **핵심 쟁점의 선제적 대응**

* ('17년) 교과위원회, 학교급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총 29회 개최

○ 교육과정 및 후속지원 자료·정보 등을 **NCIC*를 통해 제공**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

* NCIC(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go.kr) :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운영)

☐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기반 마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핵심교원* 대상 실습.체험 중심의 능동적 연수 실시**

* 핵심교원(시·도교육청 추천)을 양성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단 등으로 운영

○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와 연계하여 과정 중심 평가 체제로의 안정적 개선을 위한 **현장 교원이 참여*한 교과별 평가 기준** 개발**

* ('17)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보통 및 전문 교과(총 17개 과제)

< 현장의 변화 >

참고 3 2019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운영 계획(안)

*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 추진배경

○ 교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 동향, 2015 개정 교육과정 후속 지원 자료 등 **NCIC 정보의 현행화 필요**

○ NCIC 고도화 사업 완료('15.1.) 이후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NCIC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대국민 교육과정 정보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교**육과정 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 유도**

❑ 추진경과

○ **(교육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 운영('08.~'13.2.)

○ **(교육부·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로 일원화하여 공동 운영('13.2.~)

○ NCIC 시스템 고도화 사업('14.4.~'15.1.)

❑ 운영주체 및 역할

○ **(교육부)** DB자료 제공 및 웹 사이트 유지·보수 등 NCIC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평가원)** NCIC 운영에 필요한 웹서버 및 보안장비 관리, NCIC 지속적 업데이트 및 개선 방안 연구·운영

○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자료 및 교육과정 관련 우수사례 발굴·제공, NCIC 홍보 및 활성화 협조

❑ 소요예산 : 24백만원 (2백만원×12개월)

○ 교육과정 정보의 현행화(신규 자료 및 후속지원 자료 업데이트)

○ 2015 개정 교육과정 게시판 운영(현장의견 수렴 및 자료 공유)

○ 국가교육과정 정책 안내

[30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7,710	5,151	4,043	**△1,108**	**△22**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1 - 303

* 담당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교과서정책과장(조훈희), 행정사무관(허명옥), 동북아교육대책팀장(김영재), 교육연구관(김율리)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이러닝과장(김석), 행정사무관(이세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① **교과용도서 개발·지원을 통해** 교육 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 ②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완성도** 및 **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 제고** ③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미래형 교수학습 실현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④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국정과제 76-1-3) ⑤ 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국정과제 54-1-1)
사업기간	'98 ~ 계속
사업규모	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133책) 개발 및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1442책) 질 관리 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의 질관리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48종) 추가 개발** 및 **기 개발 디지털교과서(16책) 수정·보완**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18) 305백만원 (5.92%) → ('19) 312백만원 (6.9%)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과용도서 개발 : 44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23.)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전자저작물CD) 개발비
- 산출내역 : 440백만원 (112,406천원×133책*×2.9%**)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정도서 133책(교과서 83책, 지도서 50책)

** 연차별 개발 계획에 따른 요율 : ('15) 11.4%, ('16) 32.3%, ('17) 37.0%, ('18) 16.4%, **('19) 2.9%**

○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 96백만원**

- 교과용도서 심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교과용도서 개발 완성도 제고
- 산출내역 : 96백만원
  - · 심의회 운영비 : 160천원×17명×4개교과×8회=87백만원
  - · 회의실 임차료 등 : 400천원×16회=6백만원
  - · 심의회 운영 여비 : 15천원×17명×4개교과×1회=1백만원
  - · 심의회 업무추진비 : 25천원×17명×4개교과×1회=2백만원

○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 66백만원**

- 학교 현장의 분석 자료·검토 의견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정도서 정본 편찬에 반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점 :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산출내역 : 66백만원 (2,000원×250쪽×22책×6명)

○ **교과용도서 감수 : 96백만원**

- 교과용도서 감수본에 대한 어문 규범, 표현·표기 및 내용 감수를 통해 오류 없고 질 높은 초등 국정도서 개발
- 산출내역 : 96백만원 (2,000원×250쪽×32책×6명)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 사례 발굴 : 10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지원
- 산출내역 : 100백만원
  - ·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 50백만원×1주제=50백만원
  - · 우수 연구사례 발굴 : 50백만원×1주제=50백만원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 945백만원**

-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 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간본 상시 수정·보완 체제 운영 강화 추진**
- 산출내역 : 945백만원
  - · 수정·보완시스템 운영: 100백만원×245책*×2.5%=613백만원

* 국·검정도서(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고교 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

※ 대상 책수 증가 : ('18) 200책 → ('19) 245책

  - · 국정도서 수정·보완 집필비: 100백만원×133책×2.5%=332백만원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 190백만원**

- 국·검정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 : 96백만원
  - · 국정(2회), 검정(1회) 도서 가격 결정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기관 용역 : 30백만원×3회=90백만원
  - · 심의회 개최 : 200천원×10명×2회=4백만원
  - · 가격결정 관계자 협의 등 업무추진비 : 20천원×10명×10회=2백만원
- 2020~2022학년도 국정 교과용도서 발행사 선정 : 94백만원
  - · 국정도서 발행사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출 용역 : 40백만원(20백만원×2개 업체)

※ '20학년도 이후 교과용도서 가격사정, 국정도서 발행권 선정,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 등에 적용할 재료비, 인쇄제조비 등의 예정가격 조사 필요

  - ·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수당 : 450천원*×15명×4일×2회=54백만원

* 사업예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수당 450,000원 책정(「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 890백만원**

-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검정심사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교과용도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검정수탁기관이 검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접 비용 지원을 위하여 **'18년 대비 168% 증액**
- 산출 내역 : 890백만원
  - · 2019년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20백만원*×126책**×6%***=150백만원

* '18년 기준 권당 수수료 / ** '19년도 심사 예상 도서 수 / *** 간접 비용 비율

※ 연도별 검정심사 책 수 : ('17) 59책 505도서, ('18 예정) 39책 319도서, ('19 예상) 14책 126도서

※ 지원조건 변경 : ('18) 전체 운영비 중 인쇄비(2%) → ('19) 전체 운영비 중 간접 운영비(6%)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20백만원*×37책**= 740백만원

* 역사과 교과용도서 1권당 평균 검정 심사 수수료 지원액 / ** '19년도 검정 심사 예정 도서 수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 100백만원**

- 현 교과용도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장·단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및 공급 방식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산출내역 : 100백만원 (25백만원×4주제)

○ **교과용도서 자율화·다양화 정책 추진 : 50백만원**

- 공청회·토론회 개최 및 연수 등을 통한 교과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한 단계적·점진적 도입 방안 도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산출내역 : 50백만원

・4개 전문적 공동체* 운영비 : 4개×10명×150천원×4회=24백만원

* 국정, 검정, 인정, 품질관리

・회의실 임차료 등 : 500천원×4개×3회=6백만원

・전문적 공동체 업무추진비 : 4개×10명×25천원×4회=4백만원

・관계자 대상 정책연수 및 공청회 운영 : 4회*×4만원×100명=16백만원

* 자유발행제 등 교과용도서 자율화·다양화에 따른 공청회 개최 2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교과서 담당자 대상 1회×4권역
출판사 대상 연수 1회 / 교과서 관련 유관기관 연수 1회(※ 검인정협회, 연구재단, KORRA 등)

○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추가 개발 : 96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초 3~6학년 사회·과학 16책) **실감형 콘텐츠(AR·VR) 추가 개발**
- 산출내역 : 960백만원 (20백만원×16책×3종)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 60백만원**

- 기 개발 디지털교과서(초 3~6학년 사회·과학 16책) **내용 및 콘텐츠 구동 오류 등 수정·보완**
- 산출내역 : 60백만원 (123백만원×8책×4%)+(133백만원×4책×4%)

○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 50백만원**

- **추가 개발 실감형 콘텐츠** 및 기 개발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에 대한 **심의회 운영**

- 산출내역 : 50백만원 (25만원*×17명**×2개교과×6회***)

* 서면심의수당 10만원 + 출석심의수당 15만원
** 대상 위원수 : 총 위원 수 19명 중 90% 반영
*** 심사 횟수 : 교과별 6회 심사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5,151**	**4,043**
■ 교과용도서 개발	(2,450백만원) 연차별 개발 예산액에 따른 요율 16.4%	(440백만원) 연차별 개발 예산액에 따른 요율 2.94%
■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239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96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168백만원) 51책 검토	(66백만원) 22책 검토
■ 교과용도서 감수	(228백만원) 69책 감수	(96백만원) 32책 감수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100백만원)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보급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100백만원)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보급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500백만원) 시스템 운영 지원	(945백만원) 시스템 운영 지원 및 국정도서 수정집필 경비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9백만원) 위원 수당 등	(190백만원) 국정도서 발행사 선정 경비 및 원가 계산 용역 등
■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0백만원) 검정도서 375책에 대한 운영비 일부(2%) 지원	(890백만원) 일반도서 126책에 대한 운영비 일부(6%) 지원 및 중등 역사과 운영비 지원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백만원) 4주제 연구	(100백만원) 4주제 연구
■ 교과용도서 자율화·다양화 정책 추진 위원회 운영	(50백만원) 위원회 수당 등	(50백만원) 위원회 수당 등
■ 디지털교과서 개발	(1,06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960백만원) 디지털교과서에 추가되는 실감형 콘텐츠(AR, VR 등) 개발
■ 디지털교과서 편찬 심의회 운영	(34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50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 디지털교과서 감수	(19백만원) 8책 감수	-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20백만원) 4책 수정·보완경비	(60백만원) 12책 수정·보완경비

□ **지원 필요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추진

- 새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과서 개발
- 실생활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 교과서 내용에 대한 외부기관의 다양한 **수정 요구** 및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창의 인재의 육성을 도모**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적기 반영

○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검정 수수료 안정화, 심사시간 적정화 및 심의위원 수 확보 등 **검정 심사 강화**로 **오류 없고 질 높은 검정도서 개발**

○ **원가계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가격 사정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 아울러 인쇄기술 발전 상황에 적합한 **가격 사정 기준 개선**에 기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으로 개선

-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역량 증진 및 교과서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체제 구축
- 다양한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활용으로 가상 실험·실습·체험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이해도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7,710	5,151	4,043	△1,108	△21.5
· 교과용도서 개발	5,532	2,450 (133책×112백만원×16.388%)	440 (133책×112백만원×2.94%)	△2,010	△82.0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313	239 (17명×0.18백만원×10개교과×8회)	96 (17명×0.177백만원×4개교과×8회)	△143	△59.8
·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144	168 (6명×0.55백만원×51책)	66 (6명×0.5백만원×22책)	△102	△60.7
· 교과용도서 감수	192	228 (6명×0.55백만원×69책)	96 (6명×0.5백만원×32책)	△132	△57.9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및 우수사례 보급	100	100 (2주제×50백만원)	100 (2주제×50백만원)	-	-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380	500 (200책×100백만원×2.5%)	945 (245책×100백만원×25% 시스템운영) (133책×100백만원×25% 국정 집필)	445	89.0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8	29 (8명×0.06백만원×60일)	190 (20백만원×2개업체, 국정가격산출용역) (15명×0.6백만원×4일×2회, 국정발행사 선정) (10명×0.3백만원×2회, 심의위원) (30백만원×3회, 원가계산 용역)	161	555.2
·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0 (375책×20백만원×2%)	890 (126책×20백만원×6%, 검정심사) (37책×20백만원, 역사과)	740	493.3
·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 (4주제×25백만원)	100 (4주제×25백만원)	-	-
· 교과용도서 자율화·다양화 정책추진위원회 운영		50 (10회×5백만원)	50 (4회×8.5백만원 전문적 공동체) (4회×4백만원 관계자 연수 운영비)	-	-
· 디지털교과서 개발	984	1,064 (8책×133백만원)	960 (16책×20백만원×3종)	△104	△9.8
· 디지털교과서 편찬 심의회 운영	18	34 (17명×0.25백만원×2개교과×4회)	50 (17명×0.25백만원×2개교과×6회)	16	47.1
· 디지털교과서 감수	10	19 (6명×0.406백만원×8책)	-	△19	순감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20 (4책×123백만원×4%)	60 (8책×129백만원×4% + 4책×133백만원×4%)	40	200.0
· 디지털교과서 종단연구	19			-	
□ **비목**(합계)	7,710	5,151	4,043	△1,108	△21.5
· 일반수용비(210-01)	686	743	437	△306	△41.2
· 임차료(210-07)		16	12	△4	△25.0
· 일반용역비(210-14)			90	90	순증
· 국내여비(220-01)	3	3	1	△2	△66.7
· 사업추진비(240-01)	6	5	8	3	60.0
· 정책연구비(260-02)	19	100	150	50	50.0
· 민간경상보조(320-01)	6,996	4,284		△4,284	순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345	3,345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과용도서 개발·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

○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완성도** 및 **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 제고**

○ **디지털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미래형 교수학습 실현** 및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국정과제 76-1-3)

○ 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국정과제 54-1-1)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감 (B-A)
	당초		변경		
	금액 (A)	산출근거	금액(B)	산출근거	
'17	7,691	■교과용도서 개발 5,532백만원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313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192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144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8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38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98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 심의회 운영 18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감수 10백만원			
'18	5,151	■교과용도서 개발 2,450백만원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239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230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228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9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500백만원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0백만원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 정책연구 100백만원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5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1,06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34백만원	5,151	■교과용도서 개발 2,450백만원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239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230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228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9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500백만원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0백만원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 정책연구 100백만원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5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1,06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34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감수 19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2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감수 19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20백만원	
'19	5,151	■교과용도서 개발 2,450백만원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239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230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228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9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500백만원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150백만원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 정책연구 100백만원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5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1,06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34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감수 19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20백만원	4,043	■교과용도서 개발 440백만원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96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66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96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190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45백만원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890백만원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개발 정책연구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자율화·다양화 정책 추진위원회 5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96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5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60백만원	△1,108
'20	9,272	■교과용도서 개발 5,372백만원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320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200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150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3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30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1,200백만원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10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100백만원	1,827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3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7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1,20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300백만원	△7,445
'21	9,272	■교과용도서 개발 5,372백만원 ■교과용도서 심의회 운영 320백만원 ■교과용도서 감수 200백만원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150백만원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3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30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1,200백만원 ■검정심사 운영비 지원 ■디지털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편찬심의회 운영 100백만원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100백만원	806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7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679백만원	△8,466
'22			1,050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 연구사례 발굴 100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27백만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923백만원	1,050
연평균 증가율 (%)	4.8		△3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151	4,043	△1,108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9.25	39.26	△9.99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18	11.16	△0.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정책연구비 1.5억원은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5억원 ÷ 0.89억원 = 1.68명 - 민간위탁사업비 33.45억원은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b. 33.45억원 ÷ 0.89억원 = 37.58명 □ 2018년 고용효과 : 49.25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제13조(검정수수료), 제18조(교과용도서 심의회의 설치), 제19조(심의회의 구성), 제26조(수정),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 **(국정과제)** 76-1-3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54-1-1 지식정보지능사회에 맞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 추진경위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제2011-29호, '11.8.16)
-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장관 결재, '11.10.12)
-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제2012-17호, '12.8.29)
-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수립 및 발표('15.7.30)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2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초등 '15.10.21, 중등 '15.11.3)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안) 및 국·검정구분(안)('16.6.9)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기재부 주관 부처공동발표, '16.7.5)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고시('16.8.29)
-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기관 선정(1~2학년군 '15.10.23, 3~4학년군 '15.12.8, 5~6학년군 '16.7.18.)
- '내수 활성화 방안'(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17.2.23. 발표)
  ·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비(교과서 비용 포함) 부담 경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26.93	26.75	26.75	58.31	58.31	76.91	76.91	51.51	51.5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일반수용비) 전용 58백만원,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등 집행잔액 28백만원

○ 2016년 : 디지털교과서 수정·보완 심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5백만원(사업 목적 달성에 따른 경비절감), 디지털교과서 종단연구 이월 19백만원(디지털교과서 종단연구의 당초 계약기간*에 따른 충분한 검수기간 확보와 연구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사고이월 및 전액집행함)

* 계약기간 : '16. 5. 1. ~ '16. 12. 31.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75** **(23.56)**	0.18 (8.11)	0.58 (0)	27.51 (31.67)	**27.23** **(19.14)**	0 (12.31)	0.28 (0.22)
'16년	**58.31** **(53.68)**	0 (12.31)	0 (0)	58.31 (65.99)	**58.07** **(58.12)**	0.19 (7.72)	0.05 (0.15)
'17년	**76.91** **(69.96)**	0.19 (7.72)	0 (0)	77.10 (77.68)	**77.10** **(70.15)**	0 (7.42)	0 (0.11)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7,691	7,691	5,071	80	5,151	5,151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18)

▪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증액 : 80백만원(책당 개발비 123백만원×8책→133백만원×8책)

○ 집행현황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5,151백만원('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보완지도자료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필요)

·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교과목 내용 및 교육과정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교문위, ' 15결산 검토보고서)

·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등의 행사 경비는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교문위, ' 17년 예산 부대의견, ' 16.11월)

· 교과용도서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사업과 우수 연구사례 발굴 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공모를 진행할 필요(교문위, ' 18예산 검토보고서)

- (교과용도서 질 제고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정책연구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정책연구 주제도 당초 계획과는 다른 내용으로 실시된 바, 보조금 신청 계획서를 면밀히 확인하고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교문위, ' 15 결산 검토보고서)

- (우수 연구사례 발굴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교과서의 날 기념행사는 민간 학술모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므로,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행사 예산 중 교과서의 날 기념행사 지원되는 부분은 즉시 패지할 필요 (교문위, ' 18예산 검토보고서)

- (검정 심사 운영비 지원 증액 필요) 2018년 예산안에 검정 심사 운영비가 일부 포함(검정 수수료의 2%)되어 있으나, 적정 심사기간이나 심사위원 수 확보, 검정 수수료 안정화 등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므로 증액이 요구됨(교문위, ' 18예산 검토보고서)

- (디지털교과서 인프라 구축 관련)

· '17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무선망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되, 사도교육청에 과중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의(교문위·예결위, '17년 예산 부대의견, ' 16.11월)

· '18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재고하고, 단순히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학생들 간 상호작용 등이 가능한 질 좋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보급" (교문위·예결위, ' 18년 예산 부대의견, ' 17.11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한국과 일본의 검정수수료 비교(쪽당 단가)

- (한국) 59,508원 ~ 74,740원(' 17년 검정 기준)
  ※ 신청도서의 쪽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함
- (일본) 초 270엔(2,723원), 중 440엔(4,437원), 고 540엔(5,445원)
  ※ 「교과용도서검정규칙」 제13조(검정심사료)에 쪽당 심사료 명시 / 환율기준일 : '17.3.24

○ 교과서 자유발행제 유형 비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인정도서 (대한민국)
교과서 저작 근거	• 국가 교육과정 • 인정 심사 기준	• 국가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지침	• 집필자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	• 국가 교육과정 •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교과서 저작 · 발행	• 민간출판사	• 민간출판사	• 민간출판사 • 교사	• 민간출판사 • 시 · 도교육청
교과서 발행 절차	저작→발행→인정	저작→발행→사용	저작→발행→사용 일반 도서 사용 가능	저작→인정심사→발행
교과서 채택 · 사용	인정도서 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를 **학교 자체 평가**를 통해 선택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사용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

(6) 사업추진절차

○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교육부	'15. 10.	국정, 검정, 인정도서 구분
초등 국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교육부	'15. 11.	교과용도서 목표 및 개발 방향 제시
편찬기관 선정	교육부	'15. 11.	교과서 개발 역량을 갖춘 기관 선정 및 편찬 위탁
초등 국정도서 편찬	편찬기관	'15. 11.~'19. 8.	교육과정 및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라 연구·집필
초등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운영	교육부	'15. 11.~'19. 8.	교과용도서 편찬 단계별 내용 심의 및 자문
현장적합성 검토	교육부	적용 전 1년간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전문가 검토 병행 실시
교과용도서 주문	학교		1학기 적용 전년 10월, 2학기 4월
공급	발행사		1학기 2월 중, 2학기 8월 중 공급 완료
적용	학교		('17) 초 1~2학년군 / ('18) 초 3~4학년군 / ('19) 초 5~6학년군

○ **(교과용도서심의회 운영, 교과용도서 현장적합성 검토 및 감수)**

집필세목 심의 ⇨ 원고본 심의 ⇨ 개고본 심의
⇨ 현장검토본 심의 ⇨ 수정본 1차 심의 ⇨ 수정본 2차 심의
⇨ 감수 ⇨ 최종본 ⇨ 현장·보급

※ 교과별 상황에 따라 심의회 운영 추가

○ **(교과용도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보급)** 교과용도서 보완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전담 기관 공모 및 선정 → 1차 국고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중간 점검 → 2차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완료 보고

○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가격결정 자료 및 원가조사 결과 검토 → 적용단위 가격표 작성 → 가격 결정안 작성 및 감수 → 심의회 심의 및 가격결정 → 정가 고시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기본 계획 수립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차 국고보조금 교부 → 세부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중간 점검 → 2차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완료 보고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디지털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 개발 등)**

(교육부) 기본 계획 수립 ▶ (편찬기관) 디지털교과서 개발자 선정 ▶ (개발자, 민간) 디지털교과서 개발 ▶ (편찬심의회) 디지털교과서 심의 ▶ (KERIS)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전송 ▶ (학교) 디지털교과서 주문 및 활용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정도서 현장검토본 적절성 (단위:점)	목표	신규	60	70	75	-		5점 척도로 조사 후 매우부적절 0, 부적절 25, 보통 50, 적절 75, 매우 적절 100점으로 환산	설문조사(현장적합성 검토 연구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현장 검토에 참여한 교사연구회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검토본의 적절성 조사 실시)
	실적	신규	68.5	82.8	-	-			
	달성도	-	114.2	118.3	-	-			
초등 국정도서 적절성 조사 (단위:점)	목표				신규	80	기존 현장검토본 적절성 조사 결과('16년 초등 1~2학년군 실적 68.5점, '17년 초등 3~4학년군 실적 82.8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	5점 척도로 조사 후 매우부적절 0, 부적절 25, 보통 50, 적절 75, 매우 적절 100점으로 환산	설문조사(시도 교육청 표집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초등 국정도서의 적절성 조사 실시)
	실적				신규	-			
	달성도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교과용도서 개발]

☐ **(학부모)** 현행 교과서의 경우 학습 내용과 분량이 많고 어려워, 학습내용을 줄이고 사교육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 요청

☐ **(학생)**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

☐ **(이해관계자) (교사)** 새 교과서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지원 필요

[디지털교과서]

☐ **(학생)** 수업이 재미있고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옴, 다양한 자료가 있어서 책보다 이해가 더 쉽게 됨, 교과서보다 더 알려주는 것이 많고 활동이 많음, 단원이 끝나고 평가를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음, 다양한 정보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공유할 수 있음

☐ **(교사)** 무선망 확충 및 스마트패드 보급 필요, 개발 과목의 확대 필요 및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수록, 스마트폰 뷰어의 개발, 학습관리 및 분석 기능 제공 등

☐ **(학부모)** 사회·과학·영어 등 일부 과목 외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위한 개발비 확대

< 예산(안) 반영사항 >

[교과용도서 개발]

☐ 새 교과서 관련 활용도 제고 연수 예산 수립 및 지원

[디지털교과서]

☐ 실재감 높은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수록을 위한 디지털교과서 개발비 및 편찬심의회 운영비 확대 요구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교과용도서 개발]

☐ 초등학교 3~4학년군 교과용도서 개발 및 적기 현장 보급

· 추진 경과: 편찬기관 선정('15.11.) → 현장적합성 검토('17.3~12.) → 인쇄·공급('18.1~2.) → 현장 적용('18.3.)

[디지털교과서]

☐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증가 등 교수·학습활동의 변화, 학생·교사의 만족도 증가

※ ('14년) 77.46점 → ('15년) 79.85점→ ('16년) 80.37점 → ('17) 81.06점

☐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 검증

· (사전·사후검사) '17년 디지털교과서 사용자(학생 및 교사)의 활용 사전과 사후를 비교한 결과, 학생 및 교사의 역량향상 및 인식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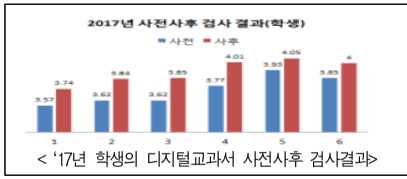

< '17년 학생의 디지털교과서 사전사후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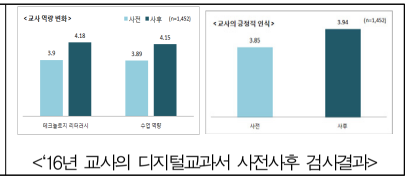

<'16년 교사의 디지털교과서 사전사후 검사결과>

· (역기능 관련) 연구학교 학생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중독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연구학교 학생) 잠재적 위험군 11.4%, 고위험군 1.6%

(일반청소년) 잠재적위험군 24.6%, 고위험군 4%('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 (종단연구) 3년간('14~'16)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의 학습역량 및 정보소양 등은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역기능 관련지수는 하락하는 등 전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종단적 디지털교과서 효과 종합점수 : ('14) 75.6점→ ('15) 75.8점 → ('16) 76.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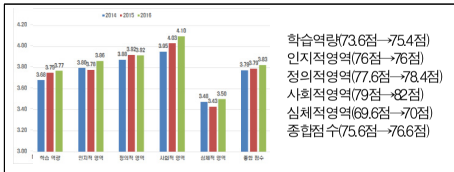

< '14~'16년 연도별 학생의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역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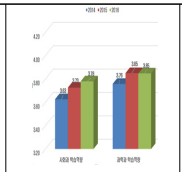
< 연도별 학습역량 변화>

< 연도별 중독검사 변화>

※ 디지털교과서를 3년간('14-'16) 지속적으로 사용한 5학년과 디지털교과서를 2년간('14-'15) 사용하다가 없었던('16) 6학년을 비교한 결과, 6학년 학생의 경우 모든 평가영역에서 5학년 학생 보다 결과가 낮게 나타났음. 이는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의 역량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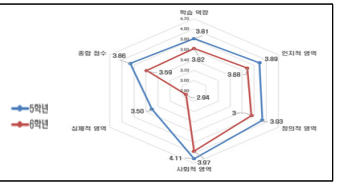

< 현장의 변화 >

[교과용도서 개발]

□ **'연필 잡는 법부터' 확 바뀐 초등 수업**

- 기존에는 한글을 미리 공부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이 컸었던 반면에, 새로 바뀐 교과서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음(박○○ ○○초 교사)
- (수학 교과서 관련) 기초 개념 분량을 늘리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삭제. 이 같은 변화가 유아기로까지 확대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동아일보 '17.1.31.)

[디지털교과서]

□ **자기주도적 학습** :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평가문항 등을 통해 자가진단**하는 등 학력신장 촉진

- **(부산 학장초)** 가정에서 디지털교과서로 자기주도적 학습하며 학습문제와 관련된 탐구과제를 수행하는 가정 연계학습 운영
- **(인천 교동초)** 방과후 디지털교과서와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과제 및 예습을 실시하는 '스마트 돌봄교실' 운영
- **(강원 김화중)**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디지털교과서를 재구조화한 학습활동 결과를 친구들에게 발표·공유하는 스스로 학습 운영

□ **교실수업 개선** : **디지털교과서의 풍부한 자료**와 **학습커뮤니티 위두랑을 활용**하여 수업방법 개선

- **(전남 아산초)** 방과후학교 또는 가정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사전학습하고, 수업시간에 실험, 토의·토론 등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거꾸로학습(Flipped Learning) 실시
- **(경북 구정초)** 디지털교과서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모둠별 실험 관찰과정을 위두랑 모둠 공간에 기록, 관찰보고서 생성 및 결과 공유, 과정 중심으로 평가
- **(충북 앙성중)** '카르스트 지형' 학습을 위해 사회, 과학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활동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실시

- **(전북 전주우전중)** 수업 중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 등 활동결과를 위두랑 탑재하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보고 소감과 의견 등을 댓글달기. 위두랑 활동 결과는 수행평가에 반영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학습커뮤니티(위두랑), 스마트기기, 앱을 활용한 자율활동, 예술/체육·동아리·진로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충남 연산초)**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의견 등을 디지털교과서 노트 기능을 활용하여 글, 그림, 사진 등으로 작성하고, 위두랑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
- **(울산 월계초)** 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SMART DAY 운영
- **(광주 광덕중)** 자유학기제 활동에 위두랑, 포트폴리오 기능 활용
- **(대구 지산중)** 자유학기제 활동 결과 관리 및 과정 중심의 평가 활용
- **(경남 신월중)**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교과서 수업 지원을 위한 동아리 활동

참고 3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3.1.]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 - 203 - 6449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교육부(학교정책과) 044 - 203 - 6449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22.] [대통령령 제27864호, 2017.2.22., 일부개정]

교육부(교과서기획과) 044 - 203 - 647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설되는 학교에서 최초로 사용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한다.
1.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는 없는 경우: 국정도서를 선정
2. 국정도서가 없고 검정도서는 있는 경우: 검정도서 중 선정
3.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있는 경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 선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2.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기 곤란하여 인정도서로 대체 사용하려는 경우
3.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도서를 추가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대신 다른 교과용도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2.22.]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참고 4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주제별 교과서 8책 【8책】	학기별 지도서 4책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국어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국어활동(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활동(3~4학년군) 3-1, 3-2, 4-1, 4-2 【20책】	국어(1~2학년군) 1-1, 1-2, 2-1, 2-2 국어(3~4학년군) 3-1, 3-2, 4-1, 4-2 국어(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사회/도덕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사회과 부도 5~6 【9책】	사회(3~4학년군) 3-1, 3-2, 4-1, 4-2 사회(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4책】	도덕(3~4학년군) 3, 4 도덕(5~6학년군) 5, 6 (전자저작물 CD 포함) 【4책】
수학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수학익힘(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익힘(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익힘(5~6학년군) 5-1, 5-2, 6-1, 6-2 【24책】	수학(1~2학년군) 1-1, 1-2, 2-1, 2-2 수학(3~4학년군) 3-1, 3-2, 4-1, 4-2 수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12책】
과학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실험관찰(3~4학년군) 3-1, 3-2, 4-1, 4-2 실험관찰(5~6학년군) 5-1, 5-2, 6-1, 6-2 【16책】	과학(3~4학년군) 3-1, 3-2, 4-1, 4-2 과학(5~6학년군) 5-1, 5-2, 6-1, 6-2 (전자저작물 CD 포함) 【8책】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2책】	안전한 생활(1~2학년군) 1, 2 (전자저작물 CD 포함) 【2책】
총계	83책	50책

참고 5 국정도서 편찬 개발비 산출내역(안)

1책당 1억원 (단위 : 천원)

세목	세세목	계상 기준	산 출 내 역 (안)
인건비	연구보조원인건비	개발비의 2.4%이하	1,200,000원×2 인 = 2,400
연구비	연구비	개발비의 8%이하	100,000,000원× 0.08 = 8,000
연구 활동비	집필·원고료	쪽당(원고지 4매) 30	30,000원×250 쪽 = 7,500
	집필·개고료	원고료 산출액×0.40	12,000원×250 쪽 = 3,000
	검토비	1인 1회 200 이하	10인×4회×200,000 원 = 8,000
	감수비	1인 1회 500 이하	10인×1회×500,000 원 = 5,000
	윤문비	1인 1회 300 이하	4인×4회×300,000 원 = 4,800
	편집비	1인 300 이하	10인×300,000 원 = 3,000
	디자인비	1인 300 이하	10인×300,000 원 = 3,000
	표지도안비	1인 1,000 이하	3인×1,000,000 원 = 3,000
	레이아웃구성비	1인 1,000 이하	3인×1,000,000 원 = 3,000
	일반삽화료	원색 1/4 50 이하	40매×50,000 원 = 2,000
		원색 1/2 70 이하	20매×70,000 원 = 1,400
		원색 4·6배판 85 이하	10매×85,000 원 = 850
		원색 양면(펼침) 150 이하	2매×150,000 원 = 300
	일반삽화개화료	일반삽화료산출액×0.40	1,820
	특수삽화료 (세밀화)	원색 1/4 100 이하	1매×100,000 원 = 100
		원색 1/2 150 이하	1매×150,000 원 = 150
		원색 4·6배판 250 이하	1매×250,000 원 = 250
		원색 양면(펼침) 300 이하	1매×300,000 원 = 300
	특수삽화개화료	특수삽화료산출액×0.40	320
	만화료	원색 1/4 35 이하	2매×35,000 원 = 700
		원색 1/2 50 이하	2매×50,000 원 = 1,000
		원색 4·6배판 70 이하	2매×70,000 원 = 1,400
		원색 양면(펼침) 100 이하	1매×100,000 원 = 100
	만화개화료	만화료산출액×0.40	1,280
	사진료	직접 촬영 120 이하	5매×120,000 원 = 600
		원색 원판 90 이하	5매×90,000 원 = 450
		원색 복사판 50 이하	5매×50,000 원 = 250

1책당 1억원 (단위 : 천원)

세목	세세목	계상 기준	산 출 내 역 (안)
	사진개사료	사진개사료산출액×0.40	520
	설계제도료	1/4 35 이하	10매×35,000 원 = 350
		1/2 40 이하	10매×40,000 원 = 400
		4·6배판 50 이하	10매×50,000 원 = 500
	경필료	원색 4·6배판 20 이하	20매×20,000 원 = 400
	악보정사료	1편 30 이하	10편×30,000 원 = 300
	편곡료	1편 70 이하	10편×70,000 원 = 700
	작곡료	1편 70 이하	10편×70,000 원 = 700
	작사료	1편 70 이하	10편×70,000 원 = 700
	수용비 및 수수료	교과용도서 개발과 직접 관련된 것만 허용	10회×100,000 원 = 1,000
	인쇄·복사비		10회×100,000 원 = 1,000
	문헌구입비		10회×100,000 원 = 1,000
	회의수당	1일당 4시간 이내 70 1일당 4시간 초과 100	5회×20인×100,000 원 = 10,000
	세미나개최비, 회의장사용료		1회×4,000,000 원 = 4,000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연구보조원: 여비정액표 (제4호 등급 기준)	5회×10인×100,000 원 = 5,000
	시내교통비		
	시외교통비		
	사무용품비	교과용도서 개발과 직접 관련된 것만 허용	5회×292,000 원 = 1,460
	회의비	1인당 25 이하	10회×20인×25,000 원 = 5,000
간접비	일반관리 및 경상운영비	개발비의 3%이하	100,000,000원× 0.03 = 3,000
합계	※ 세부 집행은 계상기준 내에서 조정 가능 - 삽화료, 만화료, 삽화료, 사진료 단색: 원색의 70% 지급		100,000

※ 편찬보조금 산출내역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참고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6 국정도서 전자저작물(CD) 편찬개발비(안)

1장당 2천만원 (단위 : 천원)

세목	세세목	계상 기준	산 출 내 역(안)
연구비	연구비	개발비의 8%이하	20,000,000원× 0.08 = 1,600
연구 활동비	집필·원고료	쪽당(원고지4매) 30,000원	30,000원×200 쪽 = 6,000
	집필·개고료	원고료 산출액×0.40	12,000원×200 쪽 = 2,400
	검토비	1인 1회 200,000원 이하	4인×2회×200,000 원 = 3,200
	감수비	1인 1회 300,000원 이하	8인×1회×300,000 원 = 2,400
	편집비	1인 300,000원 이하	2인×300,000 원 = 600
	디자인비	1인 300,000원 이하	2인×300,000 원 = 600
	스토리보드작성비	1인 200,000원 이하	4인×200,000 원 = 800
	레이아웃구성비	1인 200,000원 이하	2인×200,000 원 = 400
	자료수집비	1인 200,000원 이하	4인×200,000 원 = 800
	자료제작비	1건 60,000원 이하	20건×60,000 원 = 1,200
합계	※ 세부 집행은 계상기준 내에서 조정 가능		20,000

※ 편찬보조금 산출내역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참고용으로, 변동될 수 있음

참고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적용계획(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계획(안)]
('16.8.29, 교육부 고시 2016-98호)]

❖ (개발교과)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학·영어

❖ (개발방향) 최신기술(AR(증강현실), 조작형 상호작용 모듈) 접목하여 개발 예정

❖ (적용계획) ('18) 초 3~4/중 1, ('19) 초 5~6/중 2, ('20) 중 3학년 순으로 연차 적용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안)]

학교급	교과(군)	디지털교과서	책수	국/검정
초등학교	사회	사회3-1, 3-2, 4-1, 4-2, 5-1, 5-2, 6-1, 6-2	8	국정
	과학	과학3-1, 3-2, 4-1, 4-2, 5-1, 5-2, 6-1, 6-2	8	
	영어	영어3, 4, 5, 6	4	검정
중학교	사회	사회①, ②	2	검정
	과학	과학1, 2, 3	3	
	영어	영어1, 2,3	3	
고등학교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II	5	검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일정(안)]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과/학교급	학년도 / 학년(군)	'17	'18	'19	'20	'21
초등학교 (국정: 사회, 과학) (검정: 영어)	3~4	개발	적용	→	→	→
	5~6	-	개발	적용	→	→
중학교 (검정: 사회, 과학, 영어)	1	개발	적용	→	→	→
	2	-	개발	적용	→	→
	3	-	-	개발	적용	→
고등학교 (검정: 영어)	영어, 영어회화, 영어I, 영어독해와작문	개발	적용	→	→	→
	영어II	-	개발	적용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발방향]

○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첨단 멀티미디어 제작 및 활용 기법을 접목한 교과서

- 개별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제공
- 첨단 멀티미디어(VR, AR 등) 서비스 제공

참고 8 디지털교과서 현재('13~)와 미래('17~) 비교

구분	(AS-IS) 현재의 디지털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14.~'17.)	(TO-BE) 클라우드 기반 미래형 디지털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18.~)
콘텐츠	○ 서책교과서 내용 + 멀티미디어 자료(사진,그림,동영상,음성 등) + 용어사전, 평가문항, 심화·보충 학습자료	○ (기존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 **첨단 멀티미디어(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 **AI 기술을 적용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 및 학습 경로 제공** ○ **민간의 양질의 콘텐츠 및 교육용 앱/도구(오픈마켓) 연계를 통한 풍부한 학습환경 제공**
서버/플랫폼	○ 윈도우, iOS, 안드로드 계열 모든 디바이스 구동 ○ 전체 사용자 활용 대비 자체 서버 구성 및 서비스 체제 마련으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대용량 다운로드 서비스 ○ 인증, 학습커뮤니티, 뷰어 기능 등 제한적인 플랫폼 제공	○ **클라우드 활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요구/수준/사용량에 맞게 서비스** 자원을 유연하게 재배치 가능 ○ 동영상, 첨단 멀티미디어 등 **대용량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의 저장공간에 관리**함으로써 기본 디지털 교과서 용량을 줄이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고도화시킴 ○ 플랫폼 확대 : (기존 디지털교과서 뷰어) + **지능형 학습분석 + 교육용 콘텐츠 유통**(공공 및 민간 콘텐츠 활용)
서비스	○ 학습자의 학습활동(노트, 하이라이트, 북마크, 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 저장 및 **분석이 부족하여 학습자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흡** ○ 디지털교과서 콘텐츠의 공동저작 및 공동 활용, 협업 학습에 제약	○ **(학습분석서비스)** 학습활동 데이터 저장 및 관리를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콘텐츠 및 학습경로 제공**함으로써 완전 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교과서 저작도구 구축을 통해 콘텐츠의 공동편집 및 출판
생태계	○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제한적	○ **디지털교과서와 민간의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앱 및 문항 서비스 등)를 상호 교류** ○ 일반 학교의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서비스 확대
사례		

참고 9 보도자료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교육개혁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 9.(월) 조간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실
배포일시	2017. 1. 6.(금)	담당과장	박준성 (044-203-6636)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신민규 사무관 (044-203-6058) 김아람 사무관 (044-203-6042)

행복교육 안착과 창의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준비 박차

-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

△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을 위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400교)
△ 2015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마련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 및 사회맞춤형학과 지원 사업 신설(978억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16. 60교 → '17. 200교)
△ K-MOOC 강좌 대폭 확대('16. 140개 → '17. 300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1.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혁신

△ 교과중점학교 확대(231→300개교) 및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 도입
△ 실감형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
△ 인문학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장기 기초연구 지원 비중 확대 (10%→20%)
△ 산업선도형 대학 집중 육성(70교) 및 대학창업펀드 조성('17. 160억원)
△ 대학, 전문대학 학사제도 자율화·유연화(다학기제, 융합전공제)
△ 대학자율공모, 예산총액배분 등 자율성을 높이는 재정지원사업 개편

2. (양극화 해소)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 '기초학력 진단-보정' 지원 대상 대폭 확대(초3~중3 → 초1~고1)
△ 학교 밖 청소년에 의무교육 단계 학력 취득 지원 실시
△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학생 모국어 멘토링 지원 실시
△ 고교입시 사회통합전형 적용대상 확대(비평준화 일반고, 자공고)

참고 10 「서비스경제 발전전략('16.5 발표)」,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 **(클라우드 기반 학습)** 민관협력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제공

○ **(전략수립)**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 수립('17.上)
-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중고교 무선망 확충**
  * '15년 초중고교 무선망 구축률은 11%에 불과
- 1:1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교수·학습분석 시스템'** 구축
-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의 **유·무료콘텐츠**를 교육기관·일반인 누구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발 추진
  * (현행) 에듀넷·사이버학습 등 개별시스템(정부, 시·도교육청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에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참여 제한

□ **(디지털교과서 개발·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교육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 **(개발자격)** 서책형교과서 출판사에 더해 **일반 이러닝 업체** 등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허용('16.下)

○ **(개발과목)** 학교내 **수준별 학습구현**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과목**(수학·사회·과학 등) **개발**

○ **(교과서 활용)** 연구·시범학교 중심의 **제한적 보급**에서 '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 **(미래학교 구축)**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17.上)

○ 교육과정 설계, 교육콘텐츠·기자재 제공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간 협업체계**(민관합동 TF) 구축
  * 교육과정 설계(학교·연구원), 교육콘텐츠·기자재(기업) 등 기관별 역할분담

○ 이러닝코리아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미래학교 기술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우수 ICT기술 발굴, 컨설팅, 정보제공 등)

[305] 영재교육 지원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영재교육지원 사업	276	1,287	1,537	**250**	**19.4**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1 - 305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융합교육팀장(안웅환), 사무관(김서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영재교육 정책 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 •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 수행
사업기간	'03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KEDI 영재교육연구원,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230백만원

▪ 영재교육 종단연구(3차년도, 연속과제) : 100백만원

▪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창의사고·수학, 연속과제) : 100백만원

※ ('18년)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19년 요구)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 추진

▪ 영재성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30백만원

◆ 영재교육 종단연구
- 영재학교(8개교) 학생 820명 정도, 2017~2041년도, 총 25년간 추적 연구
- 영재성 발현 패턴 및 변인, 진학 및 취학 등 사회적 성취를 추적 분석

◆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창의사고·수학)
- '18년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근거하여 문항 분석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샘플 문항을 바탕으로 창의사고 및 수학 영재성 진단도구 개발

◆ 영재성 진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수준의 영재성 진단도구가 영역별로 연차적으로 개발될 계획인 바, 진단도구 문항의 DB화 및 진단결과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 : 100백만원

▪ 국가 영재교육 통계산출 및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이력과 진학·진로 (영재교육이력 및 논문, 진학, 진로 정보 등) 추적·관리

▪ 산출내역 : 100백만원(시스템 운영 1식×100백만원)

◦ 영재교육관계자 간 교류협력 체제 지원 : 12백만원

▪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영재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영재교육관계자*간 정책협의회 개최

* 관계부처, 영재교육연구원, 시도교육청 등

▪ 산출내역 : 12백만원(협의회 운영 등 6회×2백만원)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 1,145백만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 등*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458명)를 선발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수행

  * 교육급여 수급권자,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산출내역 : 1,145백만원(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458명×2.5백만원)

  * 영재키움 프로젝트 주요 사업 내용 : 1:1 교사 멘토링, 방학중 집중 캠프,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업홍보 및 성과공유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시스템 구축 : 50백만원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변화도, 교육이력, 멘토링 일지 등을 관리·기록
- 산출내역 : 50백만원(1식×50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영재교육 지원 사업	1,287	1,537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287 (180백만원) 영재교육 관련 연구 2종 (100백만원)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 운영 (7백만원) 영재교육관계자 간 교류협력 체제 지원	342 (230백만원) 영재교육 관련 연구 3종 (100백만원)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 운영 (12백만원) 영재교육관계자 간 교류협력 체제 지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1,000 (1,000백만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400명 이내)	1,195 (1,145백만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458명 이내) (50백만원)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시스템 구축

□ 지원 필요성

◦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교육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국가발전의 주요 핵심전략으로 다양한 영재교육 정책 지원

< 해외 영재교육 주요 동향>

- **(미국) 소외계층 영재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5개년 지원계획 발표(2015)
- **(이스라엘) 고도영재 멘토링 지원**, 정규교육과정에서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원 자격증제**(영재반은 자격증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교원만 교육가능)
- **(싱가포르)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교육과정의 **영재교육 실시**

◦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지원)** 영재교육연구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지정된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필요

< 영재교육진흥법 >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잠재력과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세부 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영재교육 지원사업**	276	1,287	1,537	250	19.4
①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276	287	342	55	19.2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135 (1식x135백만)	180 (1식x135백만)	230 (1식x230백만)	50	27.8
▪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 운영	100 (1식x100백만)	100 (1식x100백만)	100 (1식x100백만)	-	-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20 (1식x20백만)	7 (1식x7백만)	12 (1식x12백만)	5	71.4
▪ 영재교육 국가정책 및 현안 지원	21 (1식x21백만원)	-	-	-	-
②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업	-	1,000	1,195	195	19.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	1,000 (400명x2.5백만원)	1,145 (458명x2.5백만원)	145	14.5
▪ 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시스템 구축			50 (1식x50백만원)	50	순증
□ **비목(합계)**	276	1,287	1,537	250	19.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0	1,195	195	19.5
◦ 기관운영출연금(350-01)	276	287	342	55	19.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영재교육 정책 발전 방향 제시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영재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 협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76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76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35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20백만원 - 영재교육 국가 협력 및 현안지원 20백만원			
'18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
'19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1,53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342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 23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12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195백만원	250
'20	2,31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700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 5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20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617백만원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1,030
'21	2,31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700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 5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20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617백만원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1,030
'22			1,287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 287백만원 - 영재교육 관련 연구 수행 : 180백만원 - 국가창의인재 관리 시스템 : 100백만원 - 영재교육 교류 협력 체제 지원 :7백만원 ▪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1,00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70.2%		46.9%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287</td><td>1,537</td><td>250</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9.8</td><td>21.3</td><td>1.5</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5.3</td><td>13.8</td><td>-1.5</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21.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국가영재교육 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비 3.42억원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3.42억원 ÷ 0.72억원 = 4.75명
-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 사업비 11.95억원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1.95억원 ÷ 0.72억원 = 16.59명
- 사업추진비(240-01)는 분석 제외
□ 2018년 고용효과 : 19.8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설립·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6.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드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 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① 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
2. 영재교육 정책연구
3. 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개발
4. 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개발
5. 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개발
6. 교원 연수자료의 연구·개발 및 연수 실시
7.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
9. 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
10. 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운영,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1.7.21.]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 추진경위

- 재능이 뛰어난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잠재력 계발을 위해 근거 법령인「영재교육 진흥법」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2.3)

※ 영재학교 지정·설립(고등학교급) 및 영재학급 설치 근거 마련

-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2. 11)을 수립을 시작으로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2차 영재교육 종합계획('08~'12), 제3차 종합계획 수립·추진('13~'17)
- 재능계발 영재교육 기획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추진('18.3~)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영재교육 지원	2	2	2	2.9		2.76		12.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사항 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 (2)	( )	( )	2 (2)	2 (2)	( )	( )
'16년	2.9 (2.9)	( )	( )	2.9 (2.9)	2.9 (2.9)	( )	( )
'17년	2.76 (2.76)	( )	( )	2.76 (2.76)	2.76 (2.76)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76		1,287		1,287	1,28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287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 예산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출연금 편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

⇒ '17년부터 동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영재교육진흥법 개정하여 출연의 근거 마련(17.12)

영재교육 진흥법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12.19.>.

□ '18 예산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 참여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

⇒ 참여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추진('18.3)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분	영재, 영재교육 개념	교육기관	선발
미국	◦ 영재 : 지적, 창의적, 예술적, 리더십, 특정 학문 분야 등에 능력이 있는 자, 일반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교육 서비스 및 교육활동이 필요	◦ 영재학교 : 주별로 다양한 영역의 기숙학교 등으로 운영 ◦ 풀아웃 :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정규시간 중 영재학급 운영	◦ 주, 시마다 다른 선발 체계 ◦ 지능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성적, 추천,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등도 활용
중국	◦ 영재 : 비범성(超常, supernormalness)을 가진 인재 ◦ 영재교육 : 선천적 재능에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능력 계발	◦ 상설 영재학급으로서 실험반, 소아반, 예비반, 대학 소년반 등을 운영	◦ 아동, 부모, 추천인이 성장배경 등 제시 → 지적 능력 평가 → 인지 능력 검사 → 성격, 신체검사, 체력검사 → 수업을 통한 관찰(6개월)
러시아	◦ 영재 : 뛰어난 성취를 나타내거나 선천적인 잠재적 성향을 가진 아동 ◦ 영재교육 : 영재들이 창의적, 지적,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지능발달센터, 기숙형 특별학교, 영재학교 등을 운영하며, 일반학교에서도 능력별 학급 구성 등으로 교육 제공	◦ 교육기관별로 다양하게 실시, 부모 면담, 지필 시험, 창의성 테스트, 수업ㆍ생활평가, 면접 등을 활용
영국	◦ 영재 : 집단 내에서 매우 앞선 수준까지 계발된 능력을 보유한 자 ◦ 영재교육 : 영재학생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잠재성을 실현시키는 교육	◦ 일반 학교 내에서 청소년영재 교육프로그램 형태로 제공 ◦ 지역별로 국립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다차원적인 평가와 미래 잠재 가능성을 강조 ◦ 교사의 지명, 체크리스트, 시험 성적, 학생의 과업평가, 동료지명,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
이스라엘	◦ 영재 : 일반 지능이 뛰어난 학생 및 특수한 학문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	◦ 방과후 심화학습 영재교육센터 ◦ 주중 1일 영재교육센터 ◦ 일반 학교 내의 영재학급 ◦ 영재학교(IASA 등)	◦ 집단 지능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발 (지필시험, 심리검사 등)
싱가포르	◦ 영재 :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	◦ 초등 9개, 중등 7개 영재학교 ◦ 일반학교 내 상설 영재학급 ◦ 국가에서 예술영재 대상으로 융합예술교육 실시	◦ 초등 3학년 말에 전 학생 대상 선발 시험 (영어ㆍ수학 선별검사 → 영어, 수학, 일반 능력 학력 검사로 상위 6% 선발 → 종합하여 상위 1%선발) ◦ 학습태도, 졸업시험, 수행정도에 따라 진급 결정
호주	◦ 영재 : 지적, 창의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등 광범위한 영역의 잠재력 ◦ 영재교육 : 잠재능력 신장을 위해 수준에 맞는 적절한 특별 교육 제공	◦ 학교 내의 영재학급 ◦ 지역 사회(초등)와 교육청(중등) 차원의 특별 영재교육 제공 ◦ 영재학교 등	◦ 관찰, 학교기록, 부모로 부터의 정보, 동료보고, 자기보고, 표준화 검사 등 다양한 기법 활용(포괄적, 융통선, 지속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실행)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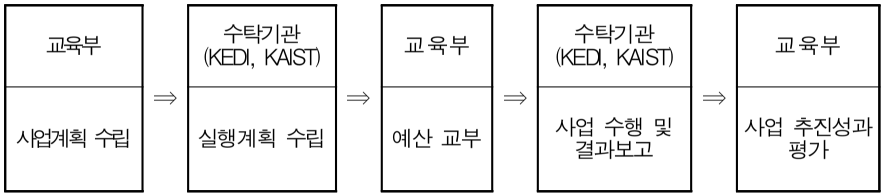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창의인재관리시스템 자료 활용도(건) (단위: %)	목표	-	신규	34,000	37,400		'17년도 실적치보다 5.5% 향상	시스템 이용자의 자료 다운로드 건수	시스템 추출
	실적	-	-	35,420		-			
	달성도	-	-	104.2		-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여학생의 만족도	목표				신규	72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의 만족도 = (5점 척도 해당점수 × 응답자 수의 합 / 전체 응답자 수) / 5×100	영재키움 프로젝트 참가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적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요약)

◦ <참고4> 영재교육 관련 통계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소외계층 영재교육 강화)**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발굴과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 ①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11402, '17.12.26, ②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11852, '18.2.8)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외 15인)>

현행	발의안 (조훈현)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선정할 때---------- ----------사회·경제·지리적---------- ---선정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외 9인)>

현행	발의안 (박경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영재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재담당 교사) **소외영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교사관찰 추천제 내실화 필요)** 교사관찰추천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사의 관찰평가 결과와 함께 이를 보완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검사 도구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소외계층 영재교육 강화)**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진입 인원 58명 증 반영

□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 교사관찰추천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재성 진단 도구 개발 추진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영재교육 기초 및 정책연구)**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경로 분석 기초연구('16)를 통한 25년간의 영재교육 종단연구('17~'41) 모형설계 및 과제 도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13~'17) 평가 및 중장기 전망 연구('16)를 토대로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방향 수립

- (2014)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과학
  인문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체계 개발
- (2015)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수학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시범적용: 초·중학교 과학
- (2016)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개발: 초·중학교 인문사회
  영재교육 대상자의 교육경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안) 시범적용 : 초·중학교 수학
- (2017)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I)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 **(국가 창의인재관리시스템 구축)** 국가 영재교육 운영 정보의 종합적 수집을 통한 중장기 영재교육 성과 분석과 정책수립의 기반 데이터 구축, 영재교육 정보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국가 영재교육통계 산출 : 통계청 작성승인 국가영재교육 통계로서 매년 통계연보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KOSIS) 탑재, 대국민 제공
- 영재교육 기관알리미 제공 : 전국 2,410개('17기준) 초·중등 영재교육기관별 온라인 정보제공
-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 구축 :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 성과, 진학 정보 DB 구축을 통한 영재교육의 연계성 및 효과성 측정의 기반 마련

□ **(영재교육관계자 정책협의회 개최 및 홍보자료 발간)** 영재교육 관계자 간 정책 협력 강화 및 영재교육 정책 홍보 및 공감대 마련과 홍보를 위한 자료 발간

※ 교육부,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와의 정책협의회('18년 1월 기준 총 66회 실시)
※ 영재교육 홍보자료 발간(뉴스레터 발간 40회, 홍보 브로슈어 12종

< 현장의 변화 >

□ **(영재교육 수혜율 증대 및 영재교육 분야 다양화)** 영재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확대로 영재교육 수혜자 증대

연 도	2015	2016	2017
영재교육대상자수	110,053	108,253	109,266
전국 초중등학생수	6,088,827	5,882,790	5,725,260
비 율	1.81%	1.84%	1.91%

- 수·과학 분야 이외 영재교육 확대 추진을 통한 다양한 재능 계발 기회 제공

【'17년 영재교육 대상자수 분야별 현황】

구분	수·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예술·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학생수(명)	84,468	4,563	5,193	2,232	4,192	4,096	4,522	109,266
비율(%)	77.30%	22.70%						100%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규 교육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창의·탐구 학습 경험을 통해 재능 발굴 및 창의력 신장 기회 부여

※ 70개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학생만족도 5점 리커트 조사결과(평균) : 수업내용 (4.3점), 수업방법(4.4점), 학습평가 및 피드백(4.3점), 교사 만족도(4.0점)

-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를 위한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 개발

※ 수학('14), 과학('15), 인문사회('16) 기준 개발 및 시범적용 실시(KEDI)

□ **(교사관찰 추천제 도입 및 확산)** 교사관찰추천 도구 개발 및 온라인 GED 교사추천선발시스템 보급을 통한 '교사관찰·추천제' 확산

【영재교육대상자 비율 및 교사관찰추천제 실시기관 비율】

구분	2015	2016	2017
교사관찰추천제 실시기관 비율	84.7%	85.5%	87.4%

참고 3 **제4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18~2022)**

비 전 재능 계발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창의융합 인재 육성

목 표

- '선발'에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다양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선발로 적합한 영재교육 제공
- 영재교육 연계성 확보로 교육의 연속성·효과성 제고
-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
-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5대 분야	11개 추진과제
1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1-1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1-2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 1-3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
2 영재 선발의 다양성 제고	2-1 다양한 선발 체계 정립 2-2 영재교육 진입의 유연성 확보
3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3-1 영재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 3-2 영재교육 성과 관리 연계체계 구축
4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4-1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확보 방안 모색 4-2 영재교육 담당교원 지원 환경 개선
5 영재교육 지원체계 구축	5-1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및 역할 분담 5-2 영재교육 지원 체제 강화

참고 4 영재교육 관련 통계

□ 영재교육 대상자 연도별 현황[1]

(단위 : 명,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영재교육대상자수	118,377	121,421	117,949	110,053	108,253	109,266
전국 초중등학생수[2]	6,721,176	6,481,492	6,285,792	6,088,827	5,882,790	5,725,260
비 율	1.76%	1.87%	1.88%	1.81%	1.84%	1.91%

□ 영재교육 기관별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영재학교·과학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계
	영재학교	과학고	교육청	대 학	초	중	고	
기 관 수 (비율)	8 (0.3)	20 (0.8)	252 (10.2)	85 (3.4)	1,290 (52.0)	487 (19.6)	337 (13.6)	2,479 (100)
학 급 수 (비율)	166 (2.6)	245 (3.8)	1,857 (28.9)	843 (13.1)	2,027 (31.5)	705 (11.0)	583 (9.1)	6,426 (100)
학 생 수 (비율)	2,424 (2.2)	4,456 (4.1)	33,640 (30.8)	10,274 (9.4)	35,033 (32.1)	12,870 (11.8)	10,569 (9.7)	109,266 (100)

□ 영재교육 대상자 수 학교급별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영재교육대상자수	56,277	34,685	18,304	109,266
전 체 학 생 수	2,674,227	1,381,334	1,669,699	5,725,260
비 율	2.10%	2.51%	1.10%	1.91%

□ 영재교육 대상자 수 분야별 현황[3]

('17년 4.1현재 기준, 단위 : 개, 명, %)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미술	음악	체육	인문사회	기타	계
학생수	13,172	16,900	54,396	4,563	5,193	2,232	1,679	1,934	579	4,096	4,522	109,266
비율	12.05%	15.47%	49.78%	4.18%	4.75%	2.04%	1.54%	1.77%	0.53%	3.75%	4.14%	100%
			77.3%								22.7%	

1) '12년부터 과학고 포함
2) 2017년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3)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기타(융합), 그 외 영재학교·과학고는 수·과학 영역으로 집계

[314]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A) (2018추경)	2019예산 (B)	증 감 (B-A)	%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 (21,000)	21,000	**21,000**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1 - 314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방과후돌봄정책과장(박지영), 사무관(박은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 공간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비 지원** ※바닥 난방·싱크대 및 각종 기자재 설치, 가구류 구비 등
사업기간	'18년 ~ '22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초등돌봄교실 3,500실 확충 (연간 700실)
지원조건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시·도교육청 (학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을 위한 **시설비 21,000백만원**

- 전용교실 시설 확충, 일반교실·특별실 겸용 사용을 위한 리모델링 등
  ▪ 산출내역 : 30백만원(1실당) × 700실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21,000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21,000백만원) 초등돌봄교실 700실

□ 지원 필요성

○ 핵가족화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

- 특히,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방학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3% vs 초등학생 12.5%

-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됨

※ '17년 신학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성 15,841명이 퇴사(국민건강관리공단 자료)

❖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18. 4. 4. 대통령, 서울 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 방문)

○ 학교 내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

- **돌봄교실 확충**은 안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

❖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17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 감 (B-A)	%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	21,000	21,000	21,000	-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	21,000 (700실x30백만원)	21,000 (700실x30백만원)	21,000	-
□ **비목**(합계)	-	-	21,000	21,000	21,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21,000	21,000	21,000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급목표) '18년~'22년** 5년간 초등돌봄교실 **총 3,500실 확충**

○ **(추진방향)** 가정에서와 같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교실 환경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	-		
'18	-	-	-		
'19	-	-	21,000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0백만원 (700*30백만원)	21,000
'20	-	-	21,000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0백만원 (700*30백만원)	21,000
'21	-	-	21,000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0백만원 (700*30백만원)	21,000
'22	-	-	21,000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0백만원 (700*30백만원)	21,000
연평균 증가율 (%)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	21,000	21,0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291.67	291.67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13.89	13.89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291.67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210.0억원은 <표3>의 '교육비 및 인력양성(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210.0억원 ÷ 0.72억원 = 291.67명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291.67 ÷ 21 = 13.89 **□ 2018년 고용효과: -**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 2018년 사전협의 및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작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추진경위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중앙-지방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확정('17.8~9)

※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심의('17.8.25, '17.9.22)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회의 개최 ※ (1차) '17.10.18., (2차) '17.12.13., (3차) '18.4.19.

- 대통령 임석 하에,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및 간담회 개최('18.4.4)

* <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주요 내용** >

‣ 현재 33만명 → **('22년) 53만명 (20만명↑)**

- **학교돌봄**(돌봄교실, 7만명) : '18년부터 매년 700실씩 **5년간 총 3,500실 확대**
- 교실이용(3만명) : 교실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운영 주체 및 모델 등은 선도사업('18~'20)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20.상)
- 마을돌봄(다함께돌봄 등, 10만명) : '18년 국고(9억원) 기 확보, '19년부터 본격 확대 추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수립('18.4.2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1,008	-	-	-	-	-	-	-	2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추경)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	-	21,000	21,000	21,0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 21,000백만원(추경 +21,000백만원)

○ 집행현황

■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예산 시·도교육청 교부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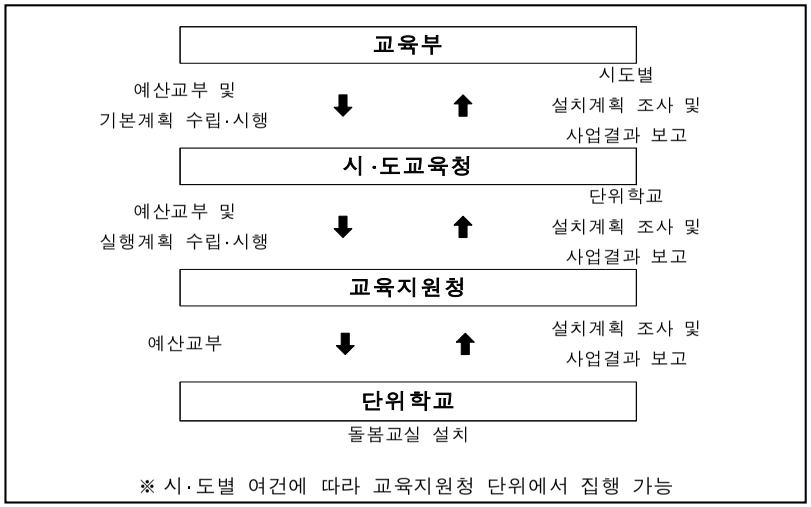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 수 (단위: 천명)	목표	-	-	-	25.4	26.8	초등돌봄교실 확충 목표(700실)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18년 목표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수(25.4만명)+시설 확충에 따른 추가 학생수(1.4만명=700실*20명)	매년 시도교육청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적	-	-	-	26.1	-			
	달성도	-	-	-	102.8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성과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반영사항

○ (참고2)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참고자료

참고1 사업성과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반영사항

□ 사업 성과

○ 지난 10년간('07~'17)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에 따라 **참여 교실 수 및 이용 학생 수는 약 5배 증가**

- '17년 기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중**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추이('07년~'17년) >

구분	참여 학교(교)	돌봄교실(실)	참여 학생수(명)	전담사(명)
2007년	2,508	2,718	50,247	7,824*
2017년	6,054	11,980	245,303	10,237

* 전담사 7,824명은 '12년 현황 자료임

○ **대한민국 정책 평가** 결과, **'초등돌봄교실'이 3년 연속 최상위**로 선정

※ 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 주관, ('15) 1위 → ('16) 2위 → ('17) 2위 선정

□ 현장 의견(요청사항)

○ **학부모 의견**

-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 돌봄교실의 대상 학년 단계적 확대 시행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 해소 및 사교육 부담 경감 기대**

○ **이해관계자 의견**

- 리모델링 등을 통한 돌봄교실 확충·개선은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학부모 만족도 증진을 위해 필수적**

※ 바닥 난방 설치를 통한 바닥놀이 진행 원활화, 교재·교구 수납공간 확보 등 수요자 중심 돌봄 프로그램 구축

□ 예산(안) 반영사항

○ **'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실 확대**

- 중점 지원 대상 확대(1~2학년 → 1~3학년)
- 고학년(4~6학년)은 현재 공급의 2배 이상으로 확대

참고2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참고자료

□ 추진 배경

○ **(돌봄수요 증가)**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한 반면, 공급은 부족**

- 무상보육 실시중인 만 0-5세와 달리 초등학생(7-12세) 방과후 돌봄 공백은 심각

  * 초등학교 관련 민원 1,467건 중 초등돌봄 민원 862건(58.8%, 국민의소리 '17.11~12월)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68.3%(215만/315만명) vs 초등학생 12.5%(33만/267만명)

<0~12세 공적돌봄체계>

연령 / 시간	영유아(315만명) 0	1	2	3	4	5	6	초등학생(267만명) 7	8	9	10	11	12
-13시	국가책임보육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동수당, 양육수당							초등책임돌봄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13시-19시								▸초등돌봄교실(24만명)					
								사 각 지 대					
19시 이후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지역아동센터 등(9만명)					

○ **(여성경력단절의 주원인)** 초등돌봄공백은 학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짐

  * '17년 신학기에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5,841명 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7년 12월)

○ **(돌봄사업 연계부족)** 중앙부처 차원에서 **부처 간 연계없이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 **지역 내 빈틈없는 전달체계 미비 → 통합적 지원에 한계**

<초등돌봄 부처별 추진현황>

구 분		초등돌봄 이용 아동 : 약 33만명		
학교돌봄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맞벌이,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1~2학년 21만명, 3~6학년 3만명)		약 24만명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취약계층 대상	8.2만명	약 9만명
	방과후 어린이집(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중심	0.6만명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가부)	취약계층 대상 (4~6학년)	0.6만명	

* 이 외 아이돌봄서비스(연인원 1.6만명), 공동육아나눔터(210개소)도 초등돌봄 일부 제공

□ 정책 방향

○ **(추진방향)**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국고 지원 확대**
학교-지자체 협력 ☞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현**

○ **(공급목표)** 현재 **33만명** → ('22년) **53만명**

  * 맞벌이 돌봄수요 : 46~64만명

○ **(대상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이용 보장
초등 1~2학년 위주 → 초등 全 학년으로 확대

  * 다만,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 저학년 : 맞벌이가정 돌봄 서비스 집중 확대(20% → 25% 이상), 고학년 : 학생 수요에 맞게 탄력적 확대(4.5% → 10%)

○ **(운영시간)** 맞벌이 등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연장

  * 현재 초등학교에서 1,280개 저녁돌봄교실 운영 중(10,238명)

□ 돌봄 공급 계획

<온종일돌봄 공급계획(총괄)>

	현 재		확 대		합 계
학교돌봄	24만	+	7만 (초등돌봄교실) 3만 (교실활용)	⇨	34만
마을돌봄	9만	+	10만	⇨	19만
	33만		20만		53만명

① **(학교돌봄 확대)** (현재) 24만명 → **34만명(+10만명)**

【 현 재 】	【 향 후 】
▸ **24만명** 대상 돌봄 ▸ 1~2학년 중심, 17시까지 운영 * 일부 학교는 22시까지 운영	▸ **34만명** 대상 돌봄 * 초등돌봄교실 확대 : 3,500실, **7만명 추가** * 교실활용 (+지자체) : 1,500실, **3만명 추가** ▸ 대상 및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확대) 초등 저학년에 집중**, 돌봄공간 증축, 겸용교실 리모델링 및 **신설 학교의 돌봄교실 설치 의무화** 등 추진(7만명)

○ **(교실활용)**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 제공(약 1,500교실, 3만명)

- '18년부터 추진 예정인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 **운영주체 및 모델 확정('20.上)**

○ **(운영방안)** 학기 초 상담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프로파일링(Profiling) 실시, 돌봄수요 파악 및 필요시 마을돌봄과 연계 → 빈틈없는 돌봄제공

○ **(제도개선)** 초등돌봄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설치·운영 근거 마련

② **(마을돌봄 확대)** (현재) 9만명 → **19만명(+10만명)**

【 현 재 】	【 향 후 】
▸ **9만명** 취약계층 중심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 **19만명** 대상 돌봄 * 다함께돌봄사업 확대 : 1,817개소, **9만명 추가** * 지역아동센터 등 : **1만명 추가** ▸ 보편적 돌봄지원체계 구축

○ **(다함께 돌봄)**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통해 지역돌봄 수요 대응(9만명)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종전 10%→ '18년 20%), 사회통합적(social mix) 돌봄 제공(1만명)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계획>

(단위 : 만명)

구 분		현재	확대계획						총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계	
학교돌봄	돌봄교실	24	1.4	1.4	1.4	1.4	1.4	7	31
	교실활용(지자체)	-	선 도 사 업*			1.5	1.5	3	3
마을돌봄		9	0.2	1.2	2.2	2.2	4.2	10	19
총계		**33**	**1.6**	**2.6**	**3.6**	**5.1**	**7.1**	**20**	**53**

* 지자체-교육청-학교 협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모델 마련(10개 시군구), 예산 旣 확보(교육부 30억+행안부 15억)

□ **소요재정** : 1조 1,053억원(~'22년) * 연평균 2,200억원

○ (학교돌봄, 3,500개실) : **5,985억원**

- (시설비) 1,050억원 : **전액 국고지원**

- (운영·인건비) 4,93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실활용, 1,500개실) : 1,508억원(확충모델에 따라 분담주체 결정)

○ (마을돌봄, 1,817개소) : **3,560억원**

- (시설비) 949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운영·인건비) 2,611억원 : 국고보조(서울 30%, 지방 50%)

□ **향후 일정**

○ **범부처공동추진단* 중심**으로 추진상황 등 점검('18.4월~)

* 교육부·복지부 차관 공동 단장으로 관계 부처 실(국)장으로 구성

○ 온종일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추진('18.4월~)

※ ('18년) 10개 시군구 공모·선정(5월)

[315]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170	**17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1 - 315
* 담 당 자 : 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교육협력과장(최성유), 사무관(홍수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교원노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지원 등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노조사무실 및 집기류 지원
사업기간	'19년~
총사업비	170백만원
사업규모	건물(서울, 임대면적 315㎡, 약95평), 사무집기 및 시설공사비
지원조건	직접수행, 보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및 집기 제공 : 170백만원**

▪ 노조사무실 임차료 : 120백만원

▪ 노조사무실 사무집기 : 50백만원

< 사례(인사혁신처 지원기준) >

❖ **(사무실 사용인원 기준)** 노조 규모 및 전임자 수에 따라 결정

- 조합원 1만명까지 최소 운영인원 5명 인정하는 인사혁신처 기준 준용, 다만 8개 단위노조의 위원장을 최소 운영인원으로 산정하여 적용함

※ 산출내역 : 연맹 위원장·사무총장·사무직원 3명 / 개별 단위노조 위원장 8명, 총 11명 인정

❖ **(적용면적 기준)**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을 적용하되 직급별 차등 적용, 단체의 기관운영상 회의실 정도는 최소 필요시설로 보고 포함하여 산출

직급	면적	적용대상	비고
연합노조 위원장	33㎡	■ 2·3급 국장급	예) 공노총위원장
단위노조·산하노조 위원장	17㎡	■ 3급 과장급	예) 행공노, 기초연맹 등
사무총장, 직원	7㎡	■ 6급 이하 일반직원	

❖ **전국단위노조 사무실 지원현황 비교**

구 분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노총	국공노
조합원	2,364명	98,172명	25,200명
성 격	8개 단위노조로 구성('17.12.20 설립.) · 서울교사노조(389명), 경기교사노조(345명), 광주교사노조(105명), 전남교사노조(215명), 경남교사노조(51명), 중등교사노조(195명), 사서교사노조(309명), 상담교사노조(755명)	5개 산하노조*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노조('12.7.17.설립)	26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행정부 노조('06.9.6.설립)
사무실면적	315㎡ (서울 용산구 소재)	우리빌딩 514㎡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시아빌딩 87㎡ (서울 중구 소재)
지원시기		'17.1월부터 유상임차	'07.6월부터 유상임차
임차료	**72백만원** (月600만원)	**1억 11백만원** (月924만원)	**51백만원** (月422만원)
임차보증금	48백만원	89백만원	36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	170
■ 노조사무실 지원	-	(120백만원) 임차료 (50백만원) 사무실집기

□ **지원 필요성**

○ 교원노조가 설립('17.12. 교사노동조합연맹)됨에 따라 **협력적 노사관계 모색 및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

< (사례)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

❖ **(전교조)** 노조사무실 임차료(6억) 교부(2001.4.11)
- 노조전임자 50명 내외 / 사용면적 : 405.37평(1,340㎡)

❖ **(한교조)** 노조사무실 임차료(4억) 교부(2001.4.11.)
- 노조전임자 30명 내외 / 사용면적 : 189평(625㎡)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	-	**170**	**170**	**순증**
■ 노조사무실 지원	-	-	170	170	**순증**
- 임차료	--	-	120	120	**순증**
- 사무실 집기		-	50	50	**순증**
□ 비목(합계)	-	-	**170**	**170**	**순증**
○임차료(350-02)	-	-	120	120	**순증**
○민간경상보조(320-02)	-	-	50	5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0		0		-
'18	0		0		-
'19	0		170	■ 노조사무실 임차료120백만원 ■ 노조사무실 사무집기 50백만원	170
'20	0		126	■ 노조사무실 임차료126백만원	126
'21	0		132	■ 노조사무실 임차료132백만원	132
'22	0		138	■ 노조사무실 임차료138백만원	138
연평균 증가율 (%)			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기준) :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 :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추진경위

- '17.12.20. 교사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설립 신고

- '18.1.23. 교사노동조합연맹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요청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전국공무원의 경우 노조 사무실을 사용자가 지원하고 있음

구 분	공노총	국공노
사무실면적	우리빌딩 514㎡ (서울 용산구 소재)	오피시아빌딩 87㎡ (서울 중구 소재)
지원시기	'17.1월부터 유상임차	'07.6월부터 유상임차
임차료	**1억 11백만원** (月924만원)	**51백만원** (月422만원)
임차보증금	89백만원	36백만원
지원사유	• 최대 합법 공무원노조이고, 정부교섭대표 노조로 인사처가 **사실상 사용자 지위**	• 인사처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직접 사용자 지위**

(6)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16]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재량, 신규,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	-	636	**636**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1 - 316

* 담 당 자 : 학생지원국장(정인순), 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사무관(김태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WHO 권고기준 수준의 상시 미세먼지(PM2.5) 관리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사업기간	'19 ~ '23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해당 없음
사업시행주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학교 미세먼지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 : 636백만원**

▪ 산출내역 : 636백만원(1개 × 848백만원× 9/12개월)

* 학교 미세먼지 법·제도 및 에너지·환경 재정지원 현황분석
* 학교 미세먼지 설문조사(인식조사) 및 이해당사자 정보소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맞춤형 빅데이터 설계·활용방안 마련

□ **지원 필요성**

○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설비 설치와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교육부+과기부 공동 추진)

- 초기비용 투자와 유지관리비용 지원이 미흡한 **현실을 감안한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 하는 맞춤형 통합시스템 개발이 절실**

-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발생·유입**과 **건강영향**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지속적 유지관리방법을 감안한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등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문제 해결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636**	**636**	**순증**
▪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636	636	**순증**
□ **비목**(합계)			**636**	**636**	**순증**
○연구개발활동비(360-05)			636	636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교 미세먼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및 컨설팅 등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과기부)

○ 에너지·환경 통합 지원체계 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마련(교육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금액(A)	'17~'21 중기계획 당초 산출근거	'18~'22 중기계획 변경 금액(B)	'18~'22 중기계획 변경 산출근거	증 감 (B-A)
17			-		
'18					
'19			636	636백만원 (1개 × 848백만원 × 9/12개월)	
'20			-		
'21			-		
'22			-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추진경위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환경부) 사전협의 '학교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내용 논의'** ('18.3.21., 3.28., 4.2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부처별 연구목표 및 2019년 추진 세부사업안

○ 부처별 연구목표

구 분		연구목표
과기부	학교 미세먼지 기초원천 연구('19~'23년)	○ 비산먼지 발생특성 및 실내공간 특성 - 학생 활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 - 학교 실내외 공간 오염특성 - 학교 건물(교실, 체육관) 환기특성 ○ 인체건강영향평가 및 중재효과분석 - 학생 인체건강영향평가 - 저감수단의 중재효과분석
	신축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19~'23년)	○ 실내외 열·공기환경 정보 연동 청정공조환기시스템 개발 ○ 신재생 에너지 연계 열·공기환경 정보 연동 중앙공조시스템 및 복합기능 개별분산 유닛 개발·실증 ○ 빅데이터 활용 통합관리 시스템 최적 제어기법 개발·제안·적용
	기존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개선 및 통합관리 컨설팅 연구 ('19~'23년)	○ 초등학교 유형별 진단툴 개발 및 관리/컨설팅 ○ 학교 유형별 맞춤형 공기환경 개선 방안 실증
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19~'23년)	○ 학교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도구(Tool kit) 개발/확산 - 학교 미세먼지 관련 정책 활용 및 법·제도 개선 ○ 학교 에너지·환경 통합 빅데이터 기반 구축 -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기법과 에너지·환경 연계 관리 기술 및 통합 지원체계 개발

○ 2019년 추진예정 세부사업(안)

전략과제	2019년 추진 세부사업(안)
○ 학교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 학교 미세먼지 법·제도 에너지·환경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방향설정
	▪ 학교 미세먼지 설문조사(인식조사) 및 이해당사자 정보소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공기정화장치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에너지·환경 통합 빅데이터 기반 구축	▪ 학교 맞춤형 빅데이터 설계·활용방안 마련

[500]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 (정보화)	307	384	345	△39	△10.2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8 - 500
* 담 당 자 : 원격연수지원센터장(김연석), 행정사무관(남형구), 주무관(허재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교육정책, 교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운영 - 원격연수 운영지원
사업기간	'0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70차시(210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12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지원(15백만원) - 사업수혜자 : 교원, 공무원, 일반국민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중앙교육연수원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원격연수 운영지원 : 15백만원**

▪ 원격연수 평가협의회, 신규개발 콘텐츠 기술평가, 과정운영 강사회의, 원격연수 콘텐츠 점검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5백만원

산출기준		금액(백만원)
원격연수 평가 협의회 운영	400,000원×7회=	2.8백만원
신규개발 콘텐츠 기술 평가 회의 운영	400,000원×7회=	2.8백만원
과정 운영 담당 강사 회의 경비	400,000원×6회=	2.4백만원
원격연수콘텐츠 점검비	20,000원×5명×70차시=	7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120백만원**

▪ 원격연수 과정 설계 및 운영, 연수생 학습 질의응답, 연수콘텐츠관리(코스웨어, 문제은행) 등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20백만원(원격연수 상근 튜터 4명×2.5백만원×12월)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10백만원**

▪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개인역량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 높은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210백만원(70차시×3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384	345
■ 원격연수 운영지원	(16백만원) 각종 협의회 운영 (48백만원)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15백만원) 각종 협의회 운영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120백만원)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통합교육연수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개발 인력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200백만원) 80차시 개발	(210백만원) 70차시 개발

□ 지원 필요성

○ 고품질의 직무 및 공동역량기반의 원격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교육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

-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수강신청관리, 학습관리, 이수관리, 평가관리, 학습독려, 질의응답 관리 등 원활한 원격연수 운영과 효과적인 학습 지원을 위해 상근 튜터 인력 필요

- 교원능력개발 맞춤형 연수와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확대 및 사이버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307**	**384**	**345**	**△39**	**△10.2**
■ 원격연수 운영지원	64	64 (2명×2백만×12개월) (일반수용비 16)	15 (일반수용비 15)	△49	△76.6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	120 (2명×5백만×12개월)		△120	△100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120 (4명×2.5백만×12개월)	120	100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123	200 (80차시×2.5백만)	210 (70차시×3백만)	10	5.0
□ 비목(합계)	**307**	**384**	**345**	**△39**	**△10.2**
○ 일반수용비(210-01)	16	16	15	△1	△6.3
○ 관리용역비(210-15)	168	168	120	△48	△28.6
○ 일반연구비(260-01)	123	200	210	10	5.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품질의 직무 및 공동역량기반의 원격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교육 공무원의 역량 지원

○ 집합·혼합·원격연수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교육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연수 운영 지원 기반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18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
'19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345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1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15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120백만원	△39
'20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1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14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160백만원	-
'21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0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64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120백만원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1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14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160백만원	-
'22			384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210백만원 ■ 원격연수 운영 지원 : 14백만원 ■ 원격연수 상근 튜터 운영 : 160백만원	384
연평균 증가율 (%)	0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 추진경위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 '06년 ~ '14년까지 51종 원격연수콘텐츠 개발
- '08.10월 ~ 12월「에듀업 활용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수행
- '09. 2월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15년 5종(81차시), '16년 5종(90차시), '17년 7종(72차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구축·운영>

- '06. 7월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 '07. 2월 에듀업 구축・운영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단계적 구축('10.3 ~ '13.12)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17.12 ~ '18.3)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33개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교육연수 플랫폼

**모바일 앱 기능 개선, 상시과정 도입, 휴대폰 실명인증 등 연수생 편의성개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3.8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사고이월) 2017년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사업(77,120천원) 사고이월

- 당초 '17.3.31.자로 조달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1회 유찰이 되어 계약이 지연되었고,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하여 '18.2.15(75일)로 계약기간을 연장
- 검토 과정에서 내용 중복, 다양한 현장 사례 포함 등의 문제로 교육과정 구성을 전면 수정, 개발 방식 변화(플래쉬형→동영상형)로 인하여 콘텐츠 개발 일정이 지연 되었고 특히 '2015 교육과정의 이해' 과정은 차시 조정(24차시→23차시), 과정 설계 방향의 변화 (요약식 내용 전달→사례중심 내용 전달)등 고려하여 사고이월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4** ( )	( )	( )	( )	**3.78** ( )	( )	0.06 ( )
'16년	**3.84** ( )	( )	( )	( )	**3.75** ( )	( )	0.09 ( )
'17년	**3.84** ( )	( )	( )	( )	**3.07** ( )	0.77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84	384	384	-	384	370	96.3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신규 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검수 사례비 및 각종 협의회비 8백만원 집행
- 원격연수원영/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비 168백만원 집행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비 194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17년 예산 국회 교문위 부대의견) 원격연수과정 수강신청기간을 이원화 하여 교과목이수가 필요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일반인에게는 수강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사업명칭을 '원격연수지원사업'으로 변경한다.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7년 예산 국회 교문위 부대의견)
○ 연수자가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과정을 도입하여 수강기간, 수강인원 무제한으로 운영('18. 5. 적용)
○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자기계발 과정을 확대하여 일반국민의 학습요구 충족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 ('17) 16개 과정 → ('18) 27개 과정 과정
○ '18년도부터는 동 사업 명칭인 「교육행정전산화」사업에서「원격연수지원 시스템운영」사업으로 명칭 변경 완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사업 집행절차

예산요구	⇨	예산편성	⇨	예산확정	⇨	예산배정	⇨	예산재배정	⇨	사업집행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수립	⇨	조달의뢰	⇨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	콘텐츠 개발 및 검수	⇨	사업완료	⇨	시범운영

○ 원격연수 운영지원 및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계획수립	⇨	조달의뢰	⇨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	⇨	유지보수 실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관리 대상사업 제외 기준에 따라 18년 단위사업 기준 예산이 10억 미만(정보화 사업은 5억 미만) 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격연수 교육내용 만족도(점)	목표		86	90.5					
	실적		90.4	90.7					
	달성도		105.1	100.2					
원격연수 튜터활동 만족도(점)	목표		87	90.2					
	실적		90.1	90.74					
	달성도		103.6	100.6					
전년도 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이용인원(명)	목표	30,000	32,500	33,000					
	실적	28,681	19,788	27,076					
	달성도	95.6	60.9	82.0					
전년도 개발 원격연수 콘텐츠 학습내용 이해도	목표					80	신규적용지표로, 현재 원격연수 이수기준인 81점(5점 척도의 4단계 수준)을 감안, 내용이해(학습목표 도달) 요망 수준을 80점으로 설정	신규개발 콘텐츠를 대상으로 원격연수 콘텐츠 학습내용 이해도로 평가 - 평점부여방식 : 리커트 5점척도 - 대상: 신규콘텐츠 수강생 전체	통합교육연수 시스템의 이해도 평가 통계자료
	실적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연도별 개발 콘텐츠 목록
○ (참고4) 2017년 원격교육과정 운영실적
○ (참고5) 2018년 원격교육과정 운영계획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 >

□ 각급학교 교(직)원, 공무원 등의 공직가치 체고 및 역량 개발을 위한 폭 넓은 연수기회 제공

○ 교수학습, 생활교육, 진로·상담, 교직실무, 자기계발, 정책이해 등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추진 지원 및 교육 전문성 신장 분야 124개 과정 개설

※ ('16) 66개 과정 → ('17) 76개 과정 → ('18) 124개 과정

※ '18년 59개 과정 신규 개설

※ 신규개설 과정

- **(교수학습)** '(초등)창의 융합형 인재, 2015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다' 등 18개 과정
- **(생활교육)**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등 17개 과정
- **(교직실무)** '학교 회계에 날개를 달다' 등 2개 과정
- **(자기계발)** '문학, 역사, 철학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 여행' 등 14개 과정
- **(정책이해)** '(청렴)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등 8개 과정

< 예산(안) 반영사항 >

□ 신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발비 예산안에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총괄) 원격연수 **이수인원**은 전년 대비 **2% 증가**(2,916명)한 **136,426명**이며, **이수율**(승인인원 대비 이수인원)은 전년대비 **1%P 증가**하여 **88.66%**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또한 전체적으로 0.3%p 상승하여 **90.73%**로 나타남

구분	과정수	운영횟수(일수)	기수	승인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만족도
2017	93과정	11회(220일)	701기	153,867명	136,426명	88.66%	90.73%
2016	66과정	10회(200일)	576기	152,292명	133,510명	87.67%	90.41%

□ (이수자 분포) 전체 이수자 중 **교원(56.53%)과 일반직 공무원(20.32%)이 대부분**이나, 전년 대비 **교원의 비중은 감소**하고(60.03%→56.53%), **일반직 공무원(18.96%→20.32%)과 기타 학습자 비중(21%→23.2%)은 증가함**

□ (월별 이수현황) 월별로는 **4~5월 교육과정 참여율(107%)과 이수율(90%)이 높으나,** 교원의 **방학기간중 이수율이 다소 저조**함(84%)

- 관련 기관/부서에서 각 **정책 등에 대한 안내 및 연수 독려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많은 시기**에 연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청렴(6과정, 20,709명)과 안전(3과정, 15,408명) 관련 연수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고취 등 **교육공무원 의무연수 이수기회 확대**

※ 청렴 : ('15) 3개 과정 13,211명 → ('16) 6개 과정 16,456명 → ('17) 6개 과정 20,709명

※ 안전 : ('15) 2개 과정 7,467명 → ('16) 2개 과정 7,911명 → ('17) 3개 과정 15,408명

□ 모바일 러닝 과정 비중 확대*(56%→60%) 및 **교양과정(16개)에 대한 일반국민 개방**에 따라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

* ('15) 30개 과정 17,888명 → ('16) 37개 과정 19,461명 → ('17) 46개 과정 22,792명

□ 월 수강 신청 가능 과정수 확대(1과정→2과정), 이수 평가 기회 추가 제공(**2회→3회)으로 학습 참여율을 제고하고 수료평가 미달자 감소하게 함.**

※ 수료평가 미달자(평가 60점 미만) : ('16) 2,454명, 13.0% → ('17) 2,047명 11.7%

< 현장의 변화 >

□ 수강→승인→학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을 **수강과 동시에 자동 승인, 학습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운영자 업무 간소화 및 학습자 편의성 제고**

□ (만족도 향상)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상승(90.4→90.7%) 하였으며, 특히 '과정 유지발전' 부문이 1.3% 높아져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향상

참고 3 연도별 개발 콘텐츠 목록

○ 2015년도 개발 콘텐츠 리스트

연번	구분	연수과정명	교육대상	개발 차시
1	정책이해	미래를 가꾸는 체험 활동 운영 노하우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2	직무역량	선생님의 자존감 UP, 소통의 날개를 달자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20
3	개인역량	행복한 삶과 미래 설계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4	직무역량	사례로 배우는 학교문화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0
5	집합과정 원격지원 연수	연수과정 기획의 실제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6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4
		교육 예산의 이해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3
		교육 법령의 이해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4
		기획 보고서 작성 이해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3
6	직무역량	공직자의 의전과 매너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5
	계	5종		81

○ 2016년도 개발 콘텐츠 리스트

연번	구분	연수과정명	교육대상	개발 차시
1	직무역량	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2	정책이해	미취학(입학), 무단결석 학생 예방 및 지도방법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3	직무역량	대학행정(법령, 기획, 예산)의 이해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4	직무역량	융합교육과 미래교육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5	직무역량	Talk! Talk! 일상에서 즐기는 토의·토론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6	직무역량	NEW! 사례로 배우는 교육행정 기획력 향상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계	6종		90

○ 2017년도 개발 콘텐츠 리스트

연번	구분	연수과정명	교육대상	개발 차시
1	공직가치	교육가족을 위한 청탁금지법 이해하기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6
2	공직가치	올바른 성문화 만들기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5
3	직무역량	(초등)창의 융합형 인재, 2015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다	초등교원, 교육전문직	10
4	직무역량	(중등)창의 융합형 인재, 2015 교육과정으로 디자인하다	중등교원, 교육전문직	16
5	직무역량	융합교육의 실제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5
6	직무역량	학교회계에 날개를 달다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0
7	직무역량	학교 성교육 지도의 실제	교원, 교육전문직, 행정직	10
	계	7종		72

참고 4 2017년 원격교육과정 운영실적

연번	과정명	교육 횟수	차시	계획인원	승인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	계획대비 달성율 (%)
1	(중등)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5	15	500	815	725	88.96	145
2	(초등)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5	15	500	803	686	85.43	137.2
3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의 이해	3	15	600	589	537	91.17	89.5
4	융합교육과 미래교육	11	15	4200	2571	2191	85.22	52.17
5	(사회복지)다문화교육 길라잡이	10	15	1000	2501	2260	90.36	226
6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8	30	1400	3161	2815	89.05	201.07
7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교육정책의 이해	3	15	300	226	188	83.19	62.67
8	미래를 가꾸는 체험활동 운영 노하우	11	15	2100	784	673	85.84	32.05
9	미취학·미입학 학생 예방 및 지도 방법	11	15	4200	1331	1164	87.45	27.71
10	자녀와 함께 배우는 미래의 삶과 진로	11	21	2100	1860	1612	86.67	76.76
11	학교폭력없는 배움터 만들기	10	16	1400	1952	1789	91.65	127.79
12	(청렴교육)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11	8	2200	2934	2669	90.97	121.32
13	성희롱 예방	11	5	3700	3766	3520	93.47	95.14
14	(유치원)선생님의 자존감 UP, 소통에 날개를 달자	11	20	1100	575	491	85.39	44.64
15	공직자의 의전과 매너	11	5	2100	1805	1609	89.14	76.62
16	뇌를 100% 활용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11	15	2500	2170	1804	83.13	72.16
17	대학행정(법령, 기획, 예산)의 이해	11	15	1900	1694	1206	71.19	63.47
18	사례로 배우는 학교문화	10	10	1900	914	809	88.51	42.58
19	어울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감정조절, 자기존중감)	10	16	1000	1988	1713	86.17	171.3
20	전문가가 알려주는 학생자살예방	10	15	1000	2288	2054	89.77	205.4
21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	11	15	2100	1589	1373	86.41	65.38
22	명화를 통해 보는 '미술의 세계'	11	16	3100	2603	2233	85.79	72.03
23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11	15	3100	2375	2174	91.54	70.13
24	우리 역사 속에 담겨있는 삶과 문화	11	15	2100	1538	1405	91.35	66.9
25	한국사 속 삶의 풍경	11	15	2600	2828	2573	90.98	98.96
26	행복한 삶과 미래 설계	11	15	2600	2028	1830	90.24	70.38
27	(사회복지)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이해	5	15	1000	929	776	83.53	77.6
28	(사회복지)탈북학생 교육의 실제	9	15	1000	1202	1079	89.77	107.9
29	자유학기 동아리 활동 지도의 실제	10	15	1000	388	356	91.75	35.6

연번	과정명	교육 횟수	차시	계획인원	승인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	계획대비 달성율 (%)
30	자유학기 주제선택 활동 지도의 실제	3	15	900	109	100	91.74	11.11
31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지도의 실제	10	15	1000	433	399	92.15	39.9
32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제	10	15	1000	520	465	89.42	46.5
33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10	15	3300	8099	7331	90.52	222.15
34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학교안전교육의 이해	10	16	3200	4479	3966	88.55	123.94
35	(청렴교육) 독립 운동가를 통해 본 나라사랑과 국가관	8	15	2400	2986	2774	92.9	115.58
36	(청렴교육)신목민심서	11	7	3000	3792	3547	93.54	118.23
37	(청렴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	9	5	4400	4952	4627	93.44	105.16
38	찾아가는 사이버 독도 교실	9	15	900	495	454	91.72	50.44
39	(초등)선생님의 자존감 UP, 소통에 날개를 달자	11	15	1800	1107	947	85.55	52.61
40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5	30	500	418	357	85.41	71.4
41	Talk! Talk! 일상에서 즐기는 토의·토론	11	15	4200	3537	3001	84.85	71.45
42	꿈을 키워가는 창의인성 중심 수업방법의 실제	11	15	2100	1685	1428	84.75	68
43	사례를 통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0	15	1300	1444	1301	90.1	100.08
44	자기주도 학습전형 진학지도의 이해	5	15	1000	179	164	91.62	16.4
45	재난관리 일반	11	15	2100	2279	1899	83.33	90.43
46	명곡을 통해 보는 '음악의 세계'	11	16	3100	2761	2430	88.01	78.39
47	자유학기 예술·체육 활동 지도의 실제	10	15	1000	535	468	87.48	46.80
48	자유학기제 수업 및 활동의 실제	10	15	1000	672	583	86.76	58.30
49	(사회복지)다문화학생 교육의 실제	9	30	900	2027	1640	80.91	182.22
50	(청렴교육)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6	15	1500	2150	2019	93.9	134.60
51	(청렴교육)이순신장군의 청렴리더십	11	8	2200	3898	3687	94.59	167.59
52	동북아 역사와 독도 바로알기	11	15	2100	1441	1243	86.26	59.19
53	정부 3.0 바로알기	2	6	200	184	152	82.61	76.00
54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 윤리	5	15	700	416	378	90.87	54.00
55	청소년 사이버 인성 교육	5	15	500	352	320	90.91	64.00
56	NEW! 사례로 배우는 교육행정 기획력 향상	11	15	4200	2867	2208	77.01	52.57
57	건강한 소통의 지도, 소셜미디어 수업 길라잡이	5	15	500	437	389	89.02	77.80
58	교육상황별 맞춤형 대화법	11	16	1100	1066	907	85.08	82.45
59	방송통신고등학교 인성·진로지도의 실제 및 적용	3	30	500	440	376	85.45	75.20
60	안전 UP! 행복 UP!	11	15	1700	4508	4111	91.19	241.82

연번	과정명	교육 횟수	차시	계획인원	승인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	계획대비 달성율 (%)
61	어울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공감, 의사소통)	10	16	1000	1593	1393	87.45	139.30
62	어울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인식 및 대처, 갈등해결)	10	16	1000	1478	1284	86.87	128.40
63	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	11	15	5000	6034	5566	92.24	111.32
64	행복을 가꾸는 건강증진학교	6	15	900	465	423	90.97	47.00
65	미술관 옆 문학여행으로의 초대	11	15	2600	2189	1943	88.76	74.73
66	손에 잡히는 경제	11	15	2100	1932	1637	84.73	77.95
67	스토리텔링으로 예술을 만나다	11	15	3100	1287	1062	82.52	34.26
68	약물 오남용 바로알고 예방하기	6	15	1200	983	885	90.03	73.75
69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11	15	2600	1923	1673	87	64.35
70	인문학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	11	15	2900	2025	1692	83.56	58.34
71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능력 키우기	11	30	3100	3700	3263	88.19	105.26
72	학생 감염병의 이해(학교관리자)	9	15	1000	1692	1586	93.74	158.60
73	미술관에 간 화학자	10	30	4500	3675	3201	87.1	71.13
74	나의 문화예술답사기 - 역사·미술·건축·사진	10	30	4500	4968	4302	86.59	95.6
75	귀에 쏙, 눈에 콕 들어오는 보이스&이미지 트레이닝	10	30	4500	4828	4057	84.03	90.16
76	(소방공무원)교수설계 및 강의능력 향상과정	2	10	83	83	83	100	100
77	(사회복지)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6	9	600	1214	1100	90.61	183.33
78	우리 역사 속에 담겨있는 삶과 문화(태국 한글학교)	1	15	53	53	43	81.13	81.13
79	2015 개정 교육과정 신설과목(통합사회) 연수	3	9	2190	2093	2092	47.6	95.53
80	(재외 한국학교)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1	15	1000	236	216	91.53	21.6
81	(경북 소방공무원)교수설계 및 강의능력 향상과정	1	10	50	40	40	100	80
합 계(81개과정)		**701**	**1,266**	**152,576**	**152,966**	**135,526**	**88.6**	**88.83**

※원내 혼합연수 12과정 900명 제외

참고 5 2018년 원격교육과정 운영계획

1 운영개요

○ **과정 수 및 인원** : 124개 과정 138,010명

구분	과정 영역별						콘텐츠 소유 주체별			
	교수 학습	생활 지도	진로 · 상담	교직 실무	자기 계발	정책 이해	자체 개발	외부 구입	위탁 과정	타기관 공동 활용
과정수	32	34	7	5	30	16	29	5	40	50

○ **운영기간**

구분	정기
운영기간	· '18. 3. 8. 10:00 ~ 12. 4. 21:00까지 - 10기(회) 운영(매월, 회당 학습기간 20일)

상시
· '18. 5. 1. 10:00 ~ 12. 4. 21:00까지 - 상시 운영

○ **수강료** : 전 과정 무료

○ **수강원칙** : 정기(원격), 상시(원격), 집합과정 등 우리 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산하여 **1인 2개 과정까지 동시 수강 가능**

- 동시에 3개 과정 이상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며, 이미 2개 과정 수강 중에 추가 수강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수강 중인 과정 중 1개의 과정을 이수완료 또는 수강취소한 후 신청할 수 있음

2 주요 과정 편성 내용

○ **(교육정책 반영)**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관련 과정 확대 편성

※ ('16) 16과정 145기 → ('17) 23과정 196기 → ('18) 31과정 264기

○ **(위탁과정 운영)** 교육부(직속, 유관기관) 개설 요청과정 적극 반영

※ ('16) 18과정 156기 27,400명 → ('17) 28과정 209기 26,200명 → ('18) 40과정 324기 34,810명

※ '18년 신규 위탁과정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내용심사 완료 후 개설됨(내용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미개설 될 수 있음)

○ **(블랜디드 과정 지원)**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 사후 교육 지원

※ 2017년 15개 과정 3,115명 이수

○ **(신규과정 운영)** 자체 '17년 신규개발 콘텐츠 포함, 59개 과정 신설

※ 2018년도 신규과정 개설 현황 : <붙임2> 참조

3 운영 일정

- **(정기과정)**

기	과정수	계획인원	수강 신청(취소)	교육 기간	평가 기간	교육일수
1기	106	13,650	03.08(목)~03.14(수)	03.08(목)~03.27(화)	03.16(금)~03.27(화)	20일
2기	99	12,950	04.05(목)~04.11(수)	04.05(목)~04.24(화)	04.13(금)~04.24(화)	20일
3기	103	13,350	04.26(목)~05.02(수)	04.26(목)~05.15(화)	05.04(금)~05.15(화)	20일
4기	102	13,220	05.17(목)~05.23(수)	05.17(목)~06.05(화)	05.25(금)~06.05(화)	20일
5기	104	13,450	06.14(목)~06.20(수)	06.14(목)~07.03(화)	06.22(금)~07.03(화)	20일
6기	113	14,170	07.12(목)~07.18(수)	07.12(목)~07.31(화)	07.20(금)~07.31(화)	20일
7기	113	14,200	08.16(목)~08.22(수)	08.16(목)~09.04(화)	08.24(금)~09.04(화)	20일
8기	**113**	14,320	09.13(목)~09.19(수)	09.13(목)~10.09(화)	09.21(금)~10.09(화)	27일
9기	**114**	14,450	10.18(목)~10.24(수)	10.18(목)~11.06(화)	10.26(금)~11.06(화)	20일
10기	**112**	14,250	11.15(목)~11.21(수)	11.15(목)~12.04(화)	11.15(금)~12.04(화)	20일
계	1,079	138,010				

※ 정기과정의 수강신청 및 연수기간은 매월 시작일 10:00부터 종료일 21:00까지임

※ 수강신청 및 연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정수 및 계획인원에는 상시과정 포함

- **(상시과정)** 상시운영('18. 5. 1. 10:00 ~ 12. 4. 21:00)

4 교육 수료 및 평가 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교육 운영규정 제12조~제14조

○ **수료 기준** : 조건 1, 2, 3 모두 충족 시 수료

● 평가 총점(100점) = 학습진도율 평가(70점) + 수료 평가(30점)

조건 1 :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조건 2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조건 3 : 수료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 **평가 방법** : 객관식 문제은행을 통한 **온라인 수료평가** 실시

<수료평가 문항 수 기준>

과정 차시	출제문항 수	비고
5~9차시	10~20문항	문항 난이도는 상20%, 중50%, 하3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콘텐츠 분량 및 학습난이도를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음
10~14차시	20문항	
15차시 이상	25~30문항	**※ 평가는 3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 평가 점수 중 최고 높은 점수 인정**

※ 시범과정은 별도 계획 수립하여 과제평가로 할 수 있음

[650]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2,749	2,121	2,072	△49	△2.3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36 - 650
* 담 당 자 : 정책연수과장(김영권), 행정사무관(이홍근)
교원능력개발과장(어성훈), 교육연구관(박덕호)
원격연수지원센터장(김연석), 행정사무관(남형구), 주무관(허재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연수 등을 통해 국가교육정책의 현장안착 지원과 성과창출에 기여 ◦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른 체계적 기본·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한 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 직무역량 제고 지원 ◦ 현장과 소통·공감하는 체험·토의 중심의 자기주도 연수 추진 ◦ 창의·인성·감성·공감 연수문화 창출 및 확산과 창의·상상력을 함양하는 에코힐링 연수 운영 ◦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역량 강화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집합교육 90과정(229기), 원격교육 140과정(1,200기),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지원조건	직접수행(수입대체경비)
사업시행주체	중앙교육연수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과정 운영(집합교육) : 1,342백만원**

▪ 52만 교원·공무원 핵심역량 및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342백만원(90개 과정x14.91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 730백만원**

▪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33개 기관이 공동활용하는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730백만원(1식×73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2,121백만원	2,072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 (집합교육)	84개 과정(173기) 1,391백만원	(1,342백만원) 90개 과정(229기)
■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운영	시.도교육청 등 분담금 730백만원	(730백만원) 통합교육 연수시스템운영비

□ 지원 필요성

○ 52만 교원·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핵심역량 개발, 국가교육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연수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수입대체 경비 확보 필요**

○ 창의·인성·감성·공감 함양과 새로운 연수 소요(유치원, 국·사립대, 퇴직예정자) 연수 과정 확대,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개방, 지역사회·글로벌 연수 강화 등으로 **연수 인원의 단계적 증가 예상**

※ 연수 계획인원 : 10,544명('16)→10,938명('17)→13,366명('18)→14,000명('19)

※ 집합교육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명)

구분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과정 수	기수	교육인원	과정 수	기수	교육인원
집합교육	**창의교육**	**16**	**25**	**947**	**17**	**25**	**991**
	- 일반직 공무원	13	21	842	14	22	891
	- 교육공무원	3	4	105	3	3	100
	전문교육	**54**	**124**	**9,912**	**62**	**137**	**11,875**
	- 소통연수	13	44	4,843	12	40	5,145
	- 감동연수	41	80	5,069	49	96	6,730
	·역량강화과정	34	64	4,563	43	84	6,250
	·정보화과정	7	16	506	7	13	480
	글로벌교육	-	-	-	**4**	**5**	**260**
	기타교육	**1**	**2**	**79**	**1**	**6**	**240**
계		**71**	**151**	**10,938**	**84**	**173**	**13,366**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	**2,749**	**2,121**	**2,072**	**△49**	**△2.3**
■ 교육과정 운영(집합교육)	1,884	1,391 (69과정×20.16)	1,342 (90과정x14.91백만)	**△49**	**△3.5**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865	730 (1식×730만)	730 (1식×730만)	-	-
□ **비목**(합계)	**2,749**	**2,121**	**2,072**	**△49**	**△2.3**
○ 상용임금(110-03)	52	80	109	29	36.2
○ 일반수용비(210-01)	1,474	984	908	**△76**	**△7.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9	23	23	-	-
○ 임차료(210-07)	36	29	29	-	-
○ 복리후생비(210-12)	1	1	2	1	100
○ 일반용역비(210-14)	25	35	25	**△10**	**△28.6**
○ 관리용역비(210-15)	865	730	730	-	-
○ 기타운영비(210-16)	6	5	4	**△1**	**△20**
○ 국내여비(220-01)	75	75	75	-	-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	-
○ 사업추진비(240-01)	35	28	28	-	-
○ 정책연구비(260-02)	70	70	70	-	-
○ 고용부담금(320-09)	10	10	18	8	80
○ 자산취득비(430-01)	48	48	48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강화

○ 교육분야 공무원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핵심역량 강화

○ 현장 적합성이 높은 고품질 연수의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2.30	■ 교육과정운영 1,500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18	21.21	■ 교육과정운영 1,391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21.21	■ 교육과정운영 1,391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
'19	21.21	■ 교육과정운영 1,391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20.72	■ 교육과정운영 1,342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0.49
'20	38.18	■ 교육과정운영 2,748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1,070백만원	19.55	■ 교육과정운영 1,225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18.63
'21	38.18	■ 교육과정운영 2,748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1,070백만원	19.15	■ 교육과정운영 1,185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19.03
'22			18.96	■ 교육과정운영 1,166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운영 730백만원	18.96
연평균 증가율 (%)	14.4		△2.7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추진경위

- 연수생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운영
  - ▪ 1996. 7. 5. 「교육행정연수원」으로 개편
  - ▪ 1999. 1. 1.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통합
  - ▪ 2005. 1. 1.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각 부처의 자율적 전문교육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으로 분리 독립
  - ▪ 2008. 2. 29. 「교육과학기술연수원」으로 개편
  - ▪ 2013. 3. 23.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 2015. 10. 19. 대구 혁신도시 신청사 이전 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22.09	22.09	22.10	24.65	24.65	22.30	22.30	21.21	21.2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사유

- ■ 교육과정 추가개설에 따라 초과수입 발생 및 이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액 발생

[('14) 218백만원 → ('15) 382백만원 → ('16) 172백만원 → ('17) 673백만원]

○ 이월사유

■ '14년 10백만원 사고이월 발생

· 정책연구에 필요한 교원능력평가 결과 등의 피드백 통보 시기('14.12.) 및 '15년도 과정 시행('15.3.) 일정에 따른 모형 개발에 필요한 절대 연구 일수 확보에 따라 사고 이월 발생

■ '17년 59백만원 사고이월 발생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의 최종 계약이 12.21. 체결되어 동 사업 완수에 필요한 절대 소요일수(60일) 부족

· 초과지출(10.16.) 승인, 사업계획 수립(10.31.) 후 조달계약 의뢰(11.1.), 조달계약 추진(50일 이상 소요)

○ 불용실적

■ ('14) 98백만원 → ('15) 134백만원 → ('16) 74백만원 → ('17) 95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10** ( )	0.1 ( )	3.82 ( )	26.02 ( )	**24.68** ( )	( )	1.34 ( )
'16년	**24.65** ( )	( )	1.72 ( )	26.37 ( )	**25.63** ( )	( )	0.74 ( )
'17년	**22.30** ( )	( )	6.73 ( )	29.03 ( )	**27.49** ( )	0.59 ( )	0.95 ( )

*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 포함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230	2,230	2,121	-	2,121	3,133	147.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59백만원

■ 강사료·원고료 지급, 교재인쇄, 연수과정 물품 구입 등 : 2,016백만원

■ 연수정보 안내 및 SMS 이용 공공요금 : 5백만원

■ 현장학습차량 및 원외학습 강의실 임차료 : 108백만원

■ 방송통신 및 운영요원 맞춤형 복지비 : 0.5백만원

■ 체육취미 활동 등 민간위탁 교육비 : 16백만원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 용역비 : 722백만원

■ 평가과정 출제·채점수당 : 2백만원

■ 국내여비(현장 학습 등) : 54백만원

■ 국외여비 : 3백만원

■ 교육운영을 위한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 : 31백만원

■ 과정개발 등 정책연구비 : 70백만원

■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금 : 5.5백만원

■ 교육운영 장비 및 비품 구입비 : 41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14년 예산안 국회 교문위) 외부강의 사업방식 개선 검토

○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인지 검토

- 민간위탁업체와의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절약 및 사업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차량 및 시설임차료가 편성예산보다 과다 집행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차량 및 시설 임차료 모두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임차에서 그 현상이 심하게 보임

(2014년 결산)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 : 수입대체경비의 현실화 필요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액은 4억 1,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2건의 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금액이 8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배를 넘는 금액임.

-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례적 운영을 통하여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수입대체경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014년 국회 교문위 예산안)

○ 교육과정의 민간위탁 시 예산절약 및 사업 집행에 있어 효율성도 같이 검토

-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 다양하게 운영되는 체험활동의 경우 '15년 대구 신청사 이전 서울 임대 청사 시절 관련 교육시설이나 전문강사 및 운영요원이 없어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15.10월 대구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육 운영 상 불가피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차량 및 시설임차료 집행 최소화 노력

- 차량 및 시설 임차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고, '15년부터 임차료 예산을 감액하였음

(2014년 결산)

○ '16년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03,600천원 증액하여 현실화 조치 : '15년 예산 426,400천원 → '16년 예산 730,000천원

5) '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 :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사업집행절차 : 예산요구(연수원) → 예산편성(교육부, 기재부) → 예산확정(국회) → 예산배정(기재부) → 예산재배정(교육부) → 사업 집행(연수원)

○ 초과승인 : 초과수입 추계 검토 및 지출승인 신청(연수원) → 초과수입 지출심의 및 승인(교육부, 기재부) → 사업집행(연수원)

○ 교육훈련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과정별 기본설계 → 강사섭외 등 교육과정 운영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집합·혼합 교육만족도 (단위: 점)	목표	92	92.3	94.7	94.7	95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현업적용 및 성과향상 기대도'를 지표로 설정하고 최근 3년간('15~'17) 교육만족도 평균값(94.7점)과 '17년 현업적용 및 성과향상 기대도(95.0점)의 평균값인 94.9점을 기준으로 하여 '19년 목표치는 95점으로 설정	교육만족도 = (교육과정 만족도평균+강사만족도 평균+현업적용 및 성과향상 기대도평균)/3	통합교육 연수시스템의 연수생 설문조사 통계 자료 (자체평가 보고서)
	실적	93.6	94.6	94.7					
	달성도	101.7	102.5	100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이용 실적 (단위: 명)	목표	1,100,000	1,200,000	1,314,000	1,315,000	1,500,000	'17년도 목표치 1,314천명이 총 이용 가능 대상자 59만 명의 2배수 이상으로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18년도 목표치를 감안하여 '19년도 목표인원을 150만명으로 설정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이용 연인원 산출	통합교육 연수수시템 수강인원 통계자료
	실적	1,116,952	1,313,687	1,424,513					
	달성도	101.5	109.5	108.4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중앙교육연수원 2017년 연수 성과

참고 **중앙교육연수원 2017년 연수 성과**

1 연수 실적

○ 총 **164개 과정**, 873기를 운영하여 **147,364명 이수**

구분	집합교육				원격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소계	
과정(기수)	16과정(25기)	54과정(124기)	1과정(2기)	71과정(151기)	93과정(722기)
교육인원	947명	9,912명	79명	**10,938명**	**136,426명**

2 주요 성과

□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안착 지원**

○ 학교 안전, 청렴 및 공직가치, 다문화 교육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교육정책**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정책연수 운영**

※ ('16) 12과정 23기 1,805명 → ('17) 13과정 44기 4,843명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탈북학생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운영

○ '교장자격연수자 국가교육정책 이해과정' 운영하여 학교 관리자의 국가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 ('16) 20기 3,370명 → ('17) 16기 2,592명

□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 **학교 관리자의 진로교육 마인드 제고** 및 **직업교육 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과정 운영

※ ('16) 1과정 6기 897명 → ('17) 2과정 8기 1,590명

○ **학교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 배양**을 위해 **학교관리자 감성 리더십 과정** 운영

※ ('16) 2기 83명 → ('17) 2기 91명

□ **직급별 핵심 역량 교육 강화**

○ **지방사무관 승진자 교육기간을 확대**하고, **'교육부 중견사무관 핵심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여 **사무관 핵심역량 교육 강화**

※ ('16) 3과정 3기 388명 → ('17) 3과정 3기 405명

※ 교육기간 : ('16) 4주(18일) → ('17) 4주(20일), 사무관 5대 핵심역량 교육 확대

○ **국립대학 사무국장, 과장급, 팀장급** 및 **대학 회계직원** 대상 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하여 **대학 행정의 경쟁력 강화** 지원

※ ('16) 4과정 7기 257명 → ('17) 5과정 16기 270명

□ **대학 교육연수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 **국립대 교육연수 역량 강화**를 위해 규모별 **5개 대학**(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안동대, 한밭대, 서울교대)을 선정하여 **교육연수 컨설팅 실시**

※ ('16) 5개 대학 → ('17) 5개 대학

○ 국립대학 교육연수 담당자 대상으로 **실무중심 전문 연수**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수 기획·운영역량 강화** 지원

※ ('16) 1기 65명 → ('17) 1기 50명

○ 국립대학 대상 **맞춤형 현지방문연수**를 실시하여 대학수요를 반영한 연수 실시 및 연수기획·운영 노하우 공유

※ ('16) 7개 대학 315명 → ('17) 7개 대학 285명

○ 국·사립대 산학협력단 및 국제교류 업무담당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연수** 추진(3과정 3기 132명)

□ **안전 관련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한 **안전 의식 함양**

○ 국민안전처와 협업(수도권 119특수구조대 시설 활용)하여 **실습 중심의 안전 전문교육과정** 운영

※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일반직 대상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과정' : ('16) 4기 153명 → ('17) 5기 195명

○ **현장연수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국내·외 현장연수 진행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대응 체계 수립 지원

□ **다양한 연수 기법과 연수생 참여 강화로 연수 품질 제고**

○ **팀별(분임) 학습, 문제해결식 학습, 토의, 발표, 현장체험** 등 다양한 연수 기법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현업 적용도 제고**

※ 토의·대화식 수업비율 50% 이상 과정 : 대안학교 관리자과정, 다문화교육 관리자과정 등 7과정 8기 364명

※ 사례중심 수업비율 30% 이상 과정 : 탈북학생 교육지원과정, 국사립대 국제교류 직무역량강화과정 등 8과정 24기 2,248명

※ 연수과정 설계시 현장연수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집합교육 일부 과목을 원격 콘텐츠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적용

※ ('16) 4과정 8기 324명 → ('17) 8과정 13기 624명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혼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학습 방법(예: 집합교육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

□ **시.도 교육연수원 지원 및 정보공유 강화**

○ 시·도 교육연수원과의 **우수 교육과정, 강사풀 등을 공유하여** 연수 수준 향상에 기여

※ 우수 사례 공유 : 45건

※ 우수강사 공유 : '16년 209명, '17년 132명

○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 개최('17.3월, 11월) 및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후속 컨설팅*** 추진

* 시 지역 3곳(대전, 울산, 부산)

○ 원격연수 컨텐츠 중복개발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4개 원격연수과정 공동개발 및 활용

○ 시·도 교육연수원 **교수요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수요원 역량 강화 지원

※ 시·도 교육연수원 기획역량 강화과정(1기 257명), 연수담당자 역량강화과정(1기 40명), 시·도 교육연수원 일반직 역량강화과정(1기 26명) 등

□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공무원 교육연수기관간 협업 강화**

○ 자기주도·비공식 학습의 강조, 모바일 학습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 연구 추진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연구개발과제 : 창의적 융합인재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업적용도 및 성과 향상도 측정 연수운영 매뉴얼 개발, 4차 산업혁명시대 중앙교육연수원 역할 및 기능 개편방안 등

○ 중앙부처 연수원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강화하여 연수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 간 교육과정·시설·강사 공동 활용** 확대 (인사혁신처, 대구직할시, 한국고전번역원 등)

□ **대구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적 기여 확대**

○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및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년 5회 공개강좌* 개설**

* 제1회('17.7.27.) / 제2회('17.9.13.) / 제3회('17.11.16.) / 제4회('17.11.22.) / 제5회('17.12.7)

○ 대구지역 국·사립대학, 연수원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 **저명인사 등 명사 초빙 시 교육과정 공동 운영, 출강 정보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직할시, 군위군, 성주군, 대구수목원, 영남선비문화수련원 등)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로체험활동**(2회 310명) 기회 제공

[300]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6,334	34,055	46,451	**12,396**	**36.4**

* 사업코드 : 110 - 00 - 050 - 051 - 1000 - 1049 - 300
* 담 당 자 : 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학교혁신정책과장(이상수), 사무관(김병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11년도까지 개별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립학교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도모 ※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20개 내역사업
사업기간	'12～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국립부설 유·초·중등학교(36개교) 및 특수학교(5개교) (총41개교)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부설(특수)학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비 : 1,796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 제공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880백만원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오후돌봄교실) 21실 × 41.43백만원 = 870백만원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2실 × 5백만원 = 10백만원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소인수 강좌에 대한 강사료 보전,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과후학교 사업 및 수익자 부담 완화를 위한 수용비 등 소요예산 지원비 166만원
  · (초등학교) 16교 × 23실 × 0.35백만원 = 128백만원
  · (중 학 교) 7교 × 18실 × 0.3백만원 = 38백만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등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 지원비 750백만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2,011명 × 0.6백만원 × 0.62(적용률) = 7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1,037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지역 2등급 기준) 1년 보수 및 퇴직금 전액, 주거비 일부
  · 33명 × 31.4백만원 = 1,037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 574백만원

- 유아학비(만3세～만5세) : 288명* × 12월 × 0.06백만원 ≒ 208백만원
  * '18학년도 원아모집 인원 + 한국교원대 유치원 신축 이전 및 증설에 따른 증원 반영(39명)
- 방과후 과정비(만3세～만5세) : 215명*×12월 × 0.05백만원 ≒ 147백만원
  * '17학년도 국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평균 참여율(84%)(e-유치원시스템 추출 자료)
- 방과후과정 인력 지원비 : 3개원 × 23백만원 = 69백만원
- 통학버스 임차료 : 3개원 × 50백만원 = 150백만원

○ **깨끗한 학교 만들기 : 456백만원**

- 어린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장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 24교(유 3원, 초등 16교, 특수5교) × 19백만원 = 456백만원

  ※ 청소원 직고용으로 1인당 인건비 및 수당 : ('18년) 13백만원 → ('19년) 19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 800백만원**

- 창의적 교과교실 환경을 활용한 학생중심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 (선진형) (2교 × 50백만원) + (5교 × 80백만원) + (3교 × 100백만원) = 800백만원

  ※ 산출조건 변경 : ('17년) 선진형 1교당 80백만원 → ('18년) 학급수에 따른 차등 지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712백만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저소득층 학생분) 학교운영지원비

  · (부설중) 7교 × 평균 63.8백만원 = 447백만원

  · (부설고) 10교 × 평균 26.5백만원 = 265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 31,040백만원**

- **시설확충** : 부족시설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비 **16,867백만원**

  ※ ('18년) 11,914백만원 → ('19년) 16,867백만원(+4,953, 41.6%)

  · **(신규사업)** (신축) 급식소(대구교대 대구부설초), 시청각실(제주대부설중) 2건, (증축) 연결통로(전주교대 군산부설초), 화장실(부산대 부설고) 2건, (리모델링) 노후 교사동 등 리모델링 4건

    ※ 신축 2건(3,114백만원), 증축 2건(1,259백만원), 리모델링 4건(3,583백만원)

    ※ 신규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내인 소규모 사업으로, 당초에는 설계비만 반영하였으나, 장기간 공사로 인한 공사장 주변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학습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사업비 전액 반영

    ※ ('18년) 502백만원 → ('19년) 7,956백만원(+7,454, 1,484.9%)

  · **(계속사업)**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8건, 잔사업비 121억원)을 적정 공기 내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8,741백만원(8건) 반영

    ※ 서울교대부설초 개축 4억, 광주교대목포부설초 교사동 개축 24.6억, 진주교대부설초 다목적강당 증축 4.6억, 전남대부설고 실습실 증축 5.6억, 강원대부설고 실험실습관 신축 7억, 제주대부설고 교과교실 및 시청각실 신축 21.5억, 한국교원대부설고 급식소 증축 12.6억, 한국경진학교 기숙사 환경개선 9.7억

    ※ ('18년) 10,692백만원 → ('19년) 8,741백만원(△1,951, △18.2%)

  · **(비품비)** '19년에 준공예정인 5건의 신·증축 사업에 필요한

집기 등 비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170백만원(5건) 반영

  ※ 광주교대목포부설초(56백만원), 진주교대부설초(22백만원), 전남대부설고(12백만원), 제주대부설고(43백만원), 한국교원대부설고(37백만원)

  ※ ('18년) 720백만원 → ('19년) 170백만원(△550, △76.4%)

- **보수사업** : 기존 건축물의 보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 **8,474백만원**

  ※ ('18년) 7,261백만원 → ('19년) 8,474백만원(+1,213, 16.7%)

- **정책사업** : 석면, 지진으로부터 학생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사업비 **5,699백만원**

  · **(석면제거)** 학생 건강 안전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7년까지 석면제거를 완료 할 예정으로, '19년 소요사업비 지원

    ※ (투자계획) 총 소요 56억 / '18년부터 매년 5.6억 수준 투자 = 10년내 완료('27년)

    ※ ('18년) 540백만원 → ('19년) 900백만원(+360, 66.7%)

  · **(내진보강)** 지진으로부터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 할 예정으로, '19년 소요사업비 지원

    ※ (투자계획) 총 소요 213억 / '19년부터 매년 48억 수준 투자 = 5년내 완료('22년)

    ※ ('18년) 1,830백만원 → ('19년) 4,799백만원(+2,969, 162.2%)

○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 202백만원**

- 내구연한(8년)을 초과하여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 등의 교체비 및 수업용 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노후 책걸상 및 수업용 기자재)** 36교 × 5.6백만원 = 202백만원

○ **Wee클래스 상담지원 : 1,138백만원**

- 학교부적응·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유를 위한 Wee클래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인건비 1,072백만원

  · (기본급) 30명 × 1,890천원 × 12월 = 680백만원

    ※ ('18년) 1,850천원 → ('19년) 1,890천원('18년 대비 2% 인상)

  · (수당) 30명 × 633천원 × 12월 = 228백만원

  ·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부담금) 30명 × 454천원 × 12월 = 164백만원

- 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66백만원

  · (운영비) 33교 × 2백만원 = 66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 703백만원**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7교 × 6종목 × 30천원 × 4시간 × 32주 = 161백만원
-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이용료 : 7교 × 2클럽 × 200천원 × 32주 = 90백만원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 28교* × 30천원 × 4시간 × 32주 = 108백만원

※ 초등학교(16교), 중학교(7교), 특수학교(5교)

- 초등 2~6학년 수영교육 실습 : 6,884명 × 50천원 = 344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 : ('18년) 초등 3~6학년→ ('19년) 초등 2~6학년(2학년 신규 추가)

○ **진로교육 활성화 : 736백만원**

- 학생 진로체험 지원 373백만원
  - (중학교) 4,420명 × 23천원 = 102백만원
  - (고등학교) 8,467명 × 32천원 = 271백만원
-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63백만원
  - 33교 × 11백만원 = 363백만원

※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위해 초등학교 진로교육 과정 운영 확대(「제2차 진로교육 5개년('16~'20) 기본계획('16.4.5))

○ **학교안전강화 : 100백만원**

- 노후화된 CCTV의 유지·보수, 사각지대(사건·사고 발생지역)에 CCTV 설치 및 상대적으로 CCTV 설치 현황이 열악한 학교에 추가 확충 필요
  - 25교 × 2백만원(100만 화소 이상 CCTV 단가) × 2대 = 100백만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 200백만원**

-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프로그램,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법정차상위계층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가 40명이상인 중학교 선정·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중학교) 5교* × 40백만원 = 200백만원

* 경북대부설중, 전남대부설중, 제주대부설중, 경상대부설중, 교원대부설중

○ **중학교 자유학기제 : 258백만원**

-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및 '18년부터 자유학년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립부설중학교 자유학기 확대 시행을 위한 운영비
  - (자유학기) 7교 × 23백만원 = 161백만원
  - (자유학년) 5교 × 15백만원 = 75백만원
  - (연계학기) 2교 × 11백만원 = 22백만원

※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형태(자유학기/자유학년/연계학기)과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하며, 평균 지원액은 같은 조건의 공·사립 학교 자유학기 운영비 수준으로 책정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2,802백만원**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근속수당 누적 인상분 및 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및 기관부담금 등 반영
  - 41교 × 68.3백만원 = 2,802백만원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104백만원**

-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실험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 (초등학교) 16교 × 6.5백만원 =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778백만원**

- 국립 유·초·중·특수학교 교원('18.3.1.기준)에 대하여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유 치 원) 60천원 × 20명 × 12월 = 14백만원
  - (초등학교) 60천원 × 447명 × 12월 = 322백만원
  - (중 학 교) 60천원 × 281명 × 12월 = 202백만원
  - (특수학교) 60천원 × 332명 × 12월 = 24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 1,773백만원**

-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내구연한 초과 기구 교체
  - (급식시설 개보수) 4교 × 200백만원 = 800백만원
  - (급식기구 개선) 26교 × 37.4백만원 = 973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 912백만원**

- 의무교육 대상인 국립 초·중학교에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 국립 특수학교(5교)는 별도 사업에서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3교 × 39.7백만원 =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330백만원**

- 현장연구·실습기관 및 상설연구학교로서의 국립부설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 강화 및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설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필요
  · (초·중·고) 33교 × 10백만원 = 33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지원	**34,055**	**46,451**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	**1,796**
- 초등돌봄교실 지원	797 (오후18실×40백만원) (저녁2실×30백만원) (방과후학교연계2실×8.4백만원)	880 (오후21실×41.4백만원) - (방과후학교연계2실×5백만원)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66 (초등 16교×23실×350천원) (중등 7교×18실×300천원)	166 (초등 16교×23실×350천원) (중등 7교×18실×300천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90 (2,196명×600천원×0.6)	750 (2,011명×600천원×0.62)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973** (31명×31.4백만원)	**1,037** (33명×31.4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464**	**574**
- 유아학비(만3세~만5세)	185 (256명×12월×6만원)	208 (288명×12월×6만원)
- 방과후과정비(만3세~만5세)	129 (215명×12월×5만원)	147 (245명×12월×5만원)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150 (3개원×50백만원)	150 (3개원×50백만원)
- 방과후 과정 인력 지원	-	69 (3개원×23백만원)
■ 깨끗한학교만들기	**312** (24교×13백만원)	**456** (24교×19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1,040** 선진형 (2교×50백만+4교×80백만 +3교× 100백만) 과목중점형 (8교×40백만)	**800** 선진형 (2교×50백만+5교×80백만 +3교× 100백만) -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 부설중(7교×63.8백만원) 부설고(10교×26.5백만원)	**712** 부설중(7교×63.8백만원) 부설고(10교×26.5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1,545** (41교×525.5백만원)	**31,040** (41교×757백만원)
- 시설확충	11,914 (41교×290.6백만원)	16,867 (41교×411백만원)
▸ 신규	502 (7건×71.7백만원)	7,956 (8건×994.5백만원)
▸ 계속	10,692 (3건×3,564백만원)	8,741 (8건×1,093백만원)
▸ 비품	720 (5교×144백만원)	170 (5교×34백만원)
- 보수비	7,261 (41교×177.1백만원)	8,474 (41교×207백만원)
- 정책사업	2,370 (41교×57.8백만원)	5,699 (41교×139백만원)
▸ 내진보강	1,830 (41교×4.5백만원)	4,799 (41교×117.0백만원)
▸ 석면제거	540 (41교×13.2백만원)	900 (41교×22.0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202** (36교×5.6백만원)	**202** (36교×5.6백만원)
■ Wee 클래스 상담지원	**789**	**1,138**
- 학교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	723 (30교×24.1백만원)	1,072 (30교×35.7백만원)
- Wee 클래스 운영비	66 (33교×2백만원)	66 (33교×2백만원)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637**	**703**
-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	161 (7교×6종목×4시간×3만원×32주)	161 (7교×6종목×4시간×3만원×32주)
- 중학교스포츠클럽시설이용료	90 (7교×2종목×20만원×32주)	90 (7교×2종목×20만원×32주)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특수)	108 (28교×4시간×3만원×32주)	108 (28교×4시간×3만원×32주)
-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278 (5,566명×50천원)	344 (6,884명×50천원)
■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736**	**736**
- 진로체험	373 (31천원×12천명)	373 (31천원×12천명)
- 진로교육프로그램	363 (33교×11백만원)	363 (33교×11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14** (25교×2백만×2대) (1교×2백만×7대)	**100** (25교×2백만×2대)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0** (4교×50백만원)	**200** (5교×4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80** (7교×40백만원)	**258** (7교×36.8백만원)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2,227** (41교×54.3백만원)	**2,802** (41교×68.3백만원)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104** (고 10교×10.4백만원)	**104** (초 16교×6.5백만원)
■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778** (유 22명×12월×6만원) (초 472명×12월×6만원) (중 286명×12월×6만원) (특 300명×12월×6만원)	**778** (유 22명×12월×6만원) (초 472명×12월×6만원) (중 286명×12월×6만원) (특 300명×12월×6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200** (2교×57백만원)+(10교×8.6백만원)	**1,773** (4교×200백만원)+(26교×37.4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초, 중)	**989** (초·중 23교×43백만원)	**912** (초·중 23교×39.6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330** (초·중·고 33교×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방과후학교 운영비)** 초등돌봄교실, 자유수강권,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 초등돌봄교실을 기존 1~2학년 중심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국정과제 49-2)하고 초등돌봄전담사의 최저임금 인상 및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지원 필요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소인수 강좌에 대한 강사료 보전, 토요방과후학교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사업 및 수익자 부담 완화를 위한 수용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
- **자유수강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수강료)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 **(원어민영어보조교사배치)** 국립 초·중·고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노출기회 확대 및 의사소통중심 영어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지원)** 국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5세 유아 대상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지원(운영 인력 포함) 및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통학차량비 지원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제27조(방과후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기대

○ **(교과교실제 운영)**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실수업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만족도 제고

※ 보통교부금 지원을 받는 일반학교(선진형 768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필요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중학교 및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위험시설 보수,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보 및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 및 교육기자재 교체 사업비를 지원

○ **(Wee 클래스상담 지원)** 학생공감형 상담 시설 구축 및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해 학교부적응·위기학생들이 상담을 통한 문제요인 해소 유도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 내·외의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체·덕·지를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 체육활동은 **튼튼한 체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 나눔과 배려 등 **인성 함양, 두뇌 발달에도 기여**
- **중학교 재학 중** 학생 개인별로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상 **운동을 습득, 심신이 건강한 시민 육성**을 위해 정규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고시**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스포츠강사 및 인근 시설 이용 지원 필요**
- 학생들의 **토요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중학교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 필요**
- 학생들의 생명보호 및 안전능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수영 실기교육 필요

※ 국정과제 54-4-4 지역적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진로체험 제공 및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국정과제 50-4-4 체계적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 **(학교안전 강화 사업)** 10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보급으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 향상 및 실시간 관제, 외부인 출입 통제력 향상 추진

- 학교 현장에서 노후화된 CCTV의 유지·보수, 사각지대(사건·사고 발생지역)에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예산 지속 지원을 요청

※ 국립부설학교 행정실장 대상 의견수렴('18.1.26.)

○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국립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토론·실습 등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지속적 운영 및 연계·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타 학기·학년으로 연계하여 공교육 전반에 확산할 필요

※ 국정과제 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공립학교 수준 처우개선 추진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과학교육의 중요성 부각 및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활동중심 수업 강화로 과학실 사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안전설비 확충 필요

※ 특히, 초·중학교의 2018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과학실험실 사용횟수 증가 예상

○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국립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급근거 마련에 따라 '15부터 국립학교 교원연구활동비 지원

※ 중학교 헌법재판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 후 교원연구비 지급이 중단('13.3.~)되었으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지급근거 신설('14.4.29.)

※ 유·초등교원에 대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지급근거가 신설('14.4.29.)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4.7.16.)」에서 보전수당이 폐지('14.7.16.)됨에 따라, 내역사업 지원 추진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 필요

- 노후급식시설 개선 : 학교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립부설학교 노후 급식환경 개선(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 확보

※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 **(교과서 지도서 구입비 지원)** 의무교육 대상인 국립 초·중학교에 대하여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국립부설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 필요성 및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교육격차 해소

- 국립부설학교가 공교육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범·실습학교 및 상설연구학교 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필요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7조 :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상설연구학교 또는 연구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6,334	34,055	46,451	12,396	36.4
◦ 방과후학교 운영비	1,812	1,753	1,796	43	2.45
▪ 초등돌봄교실 지원		797 (오후18실×40백만원) (저녁2실×30백만원) (방과후학교연계 2실×8.4백만원)	880 (오후21실×41.4백만원) - (방과후학교연계 2실×5백만원)	83	10.41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66 초등 16교×23실×350천원) 중등 (7교×18실×300천원)	166 초등 16교×23실×350천원) 중등 (7교×18실×300천원)	-	-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90 (2,196명×600천원×0.6)	750 (2,011명×600천원×0.62)	△40	△5.06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036	973 (31명×31.4백만원)	1,037 (33명×31.4백만원)	64	6.58
◦ 유아교육 지원	465	464	574	110	23.71
▪ 유아학비(만3세~만5세)		185 (256명×12월×6만원)	208 (288명×12월×6만원)	23	12.43
▪ 방과후과정비(만3세~만5세)		129 (215명×12월×5만원)	147 (245명×12월×5만원)	18	13.95
▪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150 (3개원×50백만원)	150 (3개원×50백만원)	-	-
▪ 방과후 과정 인력 지원		-	69 (3개원×23백만원)	69	100
◦ 깨끗한 학교 만들기	273	312 (24교×13백만원)	456 (24교×19백만원)	144	46.15
◦ 교과교실제 운영	1,040	1,040 선진형 (2교×50백만원 +4교×80백만원 +3교×100백만원) 과목중점형 (8교×40백만원)	800 선진형 (2교×50백만원 +5교×80백만원 +3교×100백만원) -	△240	△23.08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81	712 부설중 (7교×63.8백만원) 부설고 (10교×26.5백만원)	712 부설중 (7교×63.8백만원) 부설고 (10교×26.5백만원)	-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2,699	21,545 (41교×525.5백만원)	31,040 (41교×757백만원)	9,495	44.07
▪ 시설확충비	11,849	11,914 (41교×290.6백만원)	16,867 (41교×411백만원)	4,953	41.57
▸ 신규	2,892	502 (7건×71.7백만원)	7,956 (8건×994.5백만원)	7,454	1484.86
▸ 계속	8,891	10,692 (3건×3,564백만원)	8,741 (8건×1,093백만원)	△1,951	△18.25
▸ 비품	66	720 (5교×144백만원)	170 (5교×34백만원)	△550	△76.39
▪ 보수비	9,622	7,261 (41교×177.1백만원)	8,474 (41교×207백만원)	1,213	16.7
▪ 정책사업비	1,228	2,370 (41교×57.8백만원)	5,699 (41교×139백만원)	3,329	140.5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내진보강	249	1,830 (41교×4.5백만원)	4,799 (41교×117.0백만원)	2,969	162.24
▸ 석면제거	394	540 (41교×13.2백만원)	900 (41교×22.0백만원)	360	66.7
▸ 신재생	78	-	-	-	-
▸ 장애인	267	-	-	-	-
▸ LED	240	-	-	-	-
◦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201	202 (36교×5.6백만원)	202 (36교×5.6백만원)	-	-
◦ Wee클래스 상담지원	792	789	1,138	349	44.23
▪ 학교 Wee클래스 전문 상담사 배치		723 (30교×24.1백만원)	1,072 (30교×35.7백만원)	349	48.27
▪ Wee클래스 운영비		66 (33교×2백만원)	66 (33교×2백만원)	-	-
◦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570	637	703	66	10.36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161 (7교×6종목×4시간 ×3만원×32주)	161 (7교×6종목×4시간 ×3만원×32주)	-	-
▪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설 이용료		90 (7교×2종목×20만원 ×32주)	90 (7교×2종목×20만원 ×32주)	-	-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특수)		108 (28교×4시간×3만원 ×32주)	108 (28교×4시간×3만원 ×32주)	-	-
▪ 초등 수영교육 강화		278 (5,566명×50천원)	344 (6,884명×50천원)	66	23.74
◦ 진로교육 활성화	572	736	736	-	-
▪ 진로체험		373 (31천원×12천명)	373 (31천원×12천명)	-	-
▪ 진로교육프로그램		363 (33교×11백만원)	363 (33교×11백만원)	-	-
◦ 학교안전강화	100	114 (25교×2백만원×2대) (1교×2백만원×7대)	100 (25교×2백만원×2대) -	△14	△12.28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200	200 (4교×50백만원)	200 (5교×40백만원)	-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175	280 (7교×40백만원)	258 (7교×36.8백만원)	△22	△7.86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949	2,227 (41교×54.3백만원)	2,802 (41교×68.3백만원)	575	25.82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500	104 (고 10교×10.4백만원)	104 (초 16교×6.5백만원)	-	-
◦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유·초·중·특수)	768	778 (1,080명×12월×6만원)	778 (1,080명×12월×6만원)	-	-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302	200 (2교×57백만원) (10교×8.6백만원)	1,773 (4교×200백만원) (26교×37.4백만원)	1,573	786.5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초·중)	857	989 (23교×43백만원)	912 (23교×39.6백만원)	△77	△7.79
◦ 취약계층 학생 지원	2,242	-	-	-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초·중·고)	-	-	330 (33교×10백만원)	330	100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비목**(합계)	**36,334**	**34,055**	**46,451**	**12,396**	**36.4**
◦ 학교운영비(210-14)	13,434	12,308	15,209	2,901	23.57
◦ 기본조사설계비(420-01)	332	896	735	△161	△18.0
◦ 실시설계비(420-02)	114	409	358	△51	△12.3
◦ 시설비(420-03)	22,062	19,342	29,447	10,105	52.2
◦ 감리비(420-04)	75	120	219	100	82.9
◦ 시설부대비(420-05)	55	58	111	53	90.5
◦ 자산취득비(430-01)	262	922	372	△550	△59.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공립학교와의 상대적 차별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국립학교가 초·중등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7,922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46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312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1,04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3,170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789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637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14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80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227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89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 2,242백만원			
'18	34,055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34,055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유아교육 지원 46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312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1,04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1,545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789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637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14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80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227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89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46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312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1,04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1,545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789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637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14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80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227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89백만원	
'19	33,038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46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312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0,768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789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637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14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80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227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89백만원	46,451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96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1,037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31,040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1,773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30백만원	13,413
'20	59,468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96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1,037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44,027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34,622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0,861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24,846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1,773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60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60백만원	
'21	59,468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96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1,037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44,027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1,773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60백만원	34,622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0,861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60백만원	△24,846
'22			34,622	▪ 방과후학교 운영비 1,753백만원 ▪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973백만원 ▪ 유아교육 지원 574백만원 ▪ 깨끗한 학교만들기 456백만원 ▪ 교과교실제 운영 800백만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12백만원 ▪ 부설학교 시설확충 20,861백만원 ▪ 부설학교 교육기자재 202백만원 ▪ Wee클래스상담 1,138백만원 ▪ 학교체육 활성화 703백만원 ▪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736백만원 ▪ 학교안전강화 100백만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200백만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258백만원 ▪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 2,802백만원 ▪ 과학실안전설비확충 104백만원 ▪ 교원연구활동비 778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급식지원 200백만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비 지원 912백만원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지원 360백만원	△34,622
연평균 증가율 (%)	△11.9		0.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1,707	31,242	9,53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223	321	9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0.3	10.3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321명**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기본조사설계비(420-01) 7.4억원을 <표2>의 '기본조사설계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7.4억원 ÷ 0.85억원 = 8.6명 - 실시설계비(420-02) 3.6억원을 <표2>의 '실시설계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3.6억원 ÷ 0.85억원 = 4.2명 - 공사비(420-03) 294.5억원을 <표2>의 '공사비' 1인 고용창출 산출을 위해 <표4>의 18번 '건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294.5억원 ÷ 0.98억원 = 300.5명 - 감리비(420-04) 2.2억원을 <표2>의 '감리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d. 2.2억원 ÷ 0.85억원 = 2.6명 - 시설부대비(420-05) 1.1억원을 <표2>의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e. 1.1억원 ÷ 1.15억원 = 1명 - 자산취득비(430-01) 3.72억원을 <표2>의 '공사비' 1인 고용창출 산출을 위해 <표4>의 18번 '건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f. 3.72억원 ÷ 0.98억원 = 3.8명 □ **2017년 고용효과** - 32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비)** 초·중등교육법 제60조 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 2(교육비지원대상 및 기준 등), 국정과제(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08년 국정과제 핵심 2-1-2(영어공교육 완성)
- **(유아교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교과교실제 운영)**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교육기자재 지원)** 교육기본법 제16조, 유아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 **(Wee클래스 상담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구성)

  ※ 국정과제 54-2-3(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13.1.27), 국정과제(50-1-3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54-4-4 초등 생존 수영교육 확대)
- **(진로교육 활성화)** 국정과제(50-4-4 체계적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 **(학교안전강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및 제48조의 2(자유학기 수업운영 방법 등), 국정과제(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국정과제(54-2-3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및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9조(재정지원 등)
-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지급근거 신설('14.4.29.) 이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법령 명칭 변경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헌법 제31조제3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 학교급식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시설·설비비는 설립·경영자 부담 원칙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7조

○ 추진경위

- **(방과후학교운영비)**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방과후 교실' 시범 도입('04년, 16개교) → 종일돌봄교실 시범운영('09년, 300개교) → '초등돌봄교실'로 명칭변경 및 확대 운영('10년)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11~'13년) →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14년, 국정과제 66-5) → 방과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15년, 국정과제 63-4)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17년, 국정과제 49-2)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13년) → 국립부설학교 토요프로그램 예산 지원('13.3.~)
  -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07년) → 국립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08년~)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교육부 국제화교육추진 종합계획 중점과제 선정('94.7.) → 교육개혁과제(「외국어교육 강화」,「세계화교육 강화」) 추진('95.5.)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시작('95.7.) → 시·도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실시('02~) → 국립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 지원('12~)

- **(유아교육 지원)**

  ▪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 차등교육비 지원('04.3.) → 저소득층 두자녀 이상 동시 취원시 둘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05.3.) → 유아학비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확대('07.03.) →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09.7.) → 만 3·4세아에게 유아학비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 및 맞벌이가구 지원 확대('10.9.) → 만3~5세아에게 소득하위 70%이하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11.3.) →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5세 취원자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3,4세 전년도와 동일) →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만 3~5세 취원자 전체 정부지원('13.3.) → 국립유치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12.~)

- **(깨끗한 학교만들기)**

  ▪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사업으로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확정('06.9.)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신규 추진('07.3.) → 국립학교(초·특수학교) 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12.~)

- **(교과교실제)**

  ▪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09.5.) →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계획' 수립('11.2.) → 국립학교 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원('12.~) → '12~'13 교과교실제 추진계획 수립 → '교과교실제 향후 추진방향' 설정('13.7.) → 국립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선진형 9교, 과목중점형 8교, '14.~) → 국립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선진형 9교, '19.~, 과목중점형 미지원)

- **(Wee클래스 상담지원)**

  ▪ 국립부설학교 Wee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채용・운영

  * Wee클래스 설치 현황 : ('13년) 22개소 → ('15년) 31개소 → ('16년~) 33개소

  ** 전문상담사 : ('13년) 20명 → ('15년) 29명 → ('16년~) 30명, 전문상담교사 : ('14년~) 2명

- **(학교체육활성화)**

  ▪ 학교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11.4.) → '11년 토요스포츠강사 시범 사업 추진('11.9.~12.) → '12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중학교 스포츠강사 4,427명, 토요스포츠강사 4,789명) 안내('12.2.) → 교육과정 개정 고시(교과부 고시 제20.12-14호, 2012.7.9.)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13.6.24.)·확정('13.11.1.)

- **(학교안전강화)**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13.7.) → 국립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고화소 CCTV 설치 지원('14.1. CCTV 164백만원 지원) → 2015년 국립학교 학교안전 강화 사업 지원 계획('15.2. CCTV 138백만원 지원) → 2016년 국립학교 학교안전 강화 사업 지원 계획('16.2. CCTV 164백만원 지원) → 2017년 국립학교 학교안전 강화 사업 지원 계획('17.1. CCTV 100백만원 지원) → 2018년 국립학교 학교안전 강화 사업 지원 계획('18.2. CCTV 114백만원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작('03, 45개 초·중) → 시·도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양,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11년 1,356개 공·사립 초·중·고 지원) → 지속적 사업학교 확대('12년 1,801교, '13년 1,833교, '14년 1,836교/공·사립 초·중·고) → 국립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시작('14년 3교) → ('16년) 국립학교 1교 추가, 총 4교 지원 → ('17년) 총 4교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13.5.3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9.)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발표('15.11.25.)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3.~)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발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17.11.) → 희망학교 자유학년제 운영('18.3.~)

  * 중학교의 장이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제44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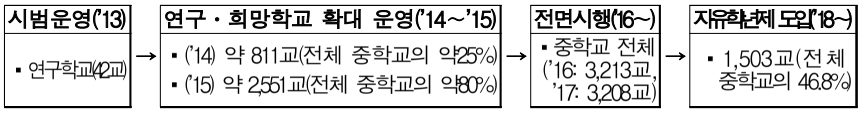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14.3월) 및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시행('14~'18년)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국립부설학교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사업 시작('15년~)

  ※ ('15년) 국립 부설초 16교 지원 → ('16년) 국립 부설중 7교, 국립 부설특수학교 5교 지원 → ('17~'18년) 국립 부설고 10교 지원

- **(교원연구활동비 지급)**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유·초·중 교원 대상 지급근거 신설('14.4.29.) → 교원연구활동비 지급('16년~)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 국립부설학교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시설 개선 예산의 안정적 지원 시작('17년)

  ※ ('17년 이전) 사업 필요시 국고에서 편성하여 지원('07~'09년, '13년 지원)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내역 사업으로 교과용도서 구입'을 신설하여 지원('17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363	363	480	482	482	379	379	341	3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80 ( )	86 ( )	△1 ( )	566 ( )	481 ( )	38 ( )	47 ( )
'16년	**482** ( )	38 ( )	- ( )	520 ( )	**490** ( )	22 ( )	8 ( )
'17년	**379** ( )	22 ( )	- ( )	401 ( )	**363** ( )	30 ( )	8 ( )

○ '15~'17년 이·전용 실적

- ('15년)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위해 58백만원 전용

- ('16년) 이·전용은 해당사항 없음
- ('17년) 이·전용은 해당사항 없음

○ '15~'17년 이월 실적

- ('15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3,796백만원(5교*) 이월

  * **(서울교대부설초)** 2,671백만원, **(광주교대광주부설초)** 14백만원, **(전북대부설고)** 455백만원, **(경상대부설고)** 285백만원, **(공주대부설고)** 372백만원

- ('16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검토 기간 소요 및 착공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193백만원(2교*) 이월

  * (**서울교대부설초**) 481백만원, (**경북대부설중**) 1,711백만원

- ('17년)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 지연 및 착공 지연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2,996백만원(2교*) 이월

  * (**서울교대부설초**) 2,398백만원,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 598백만원

○ '15~'17년 불용 실적

- ('15년) 부설학교 시설확충 등 38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총 4,743백만원 불용

  * (준공금 정산)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2.93%), 연금보험(2.49%), 건강보험(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 등을 의무적으로 계상 → 공사 후 계약자가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청에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산 → 불용액 발생

- ('16년) 부설학교 시설확충 등 5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총 853백만원 불용
- ('17년) 부설학교 시설확충 등 56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총 785백만원 불용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7,922	37,922	33,038	1,017	34,055	33,155	97.4

○ 국회반영 증감 내역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강당 신축에 따른 비품비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1,017백만원(2교*) 증액 반영

* **제주대부설초** : 300백만원(강당 비품, 방수), **서울맹학교** : 717백만원(노후시설개선)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15년 교문위)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유치원도 학교운영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것
- (2016년 교문위) 국립부설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내역에 맞추어 사업비를 교부하고, 각 학교가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2016년 교문위) 지원대상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맞춤지원비 비율을 조정하고 편성지침을 정비하는 등 사업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
- (2016년 예결위) 제주도 국립학교 급식보조원에 대하여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영양사면허가산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유은혜 위원)
- (2016년 교문위・예결위) 부설학교 시설확충사업의 경우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히하여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2017년 교문위・예결위) 국립부설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처우를 국립학교 타 회계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건의 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 필요(교문위-유은혜, 조승래 의원, 예결위-박광온, 박재호 의원)
- (2018년 교육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 추계 개선,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등 실집행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지적: 해당없음

3) 통합재정사업평가 : '18년 평가결과 보통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15년 교문위)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학교운영비(210-14)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토록 개정 완료*

* 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중 국립부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경비(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 (2016년 교문위)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은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사업과 실습용 교구 구입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교육기자재 확충이라는 틀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에 따라 '17년부터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사업과 실습용 교구 구입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편성

* 교문위 검토보고서('15년도 결산) : 탄력적 집행이 바람직하다면 예산안 산출 근거와 사용 목적을 수정하여 예산 편성할 것

- (2016년 교문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편성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지원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국립학교회계 예산 집행지침 정비 추진
- (2016년 예결위) 제주도 국립학교 급식보조원에 대하여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체계를 개선완료, '17년 국립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949백만원* 편성

* 기본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액(318백만원), 제부담(84백만원), 급식비(392백만원), 명절상여금 및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인상분(155백만원)

- (2016년 교문위・예결위) '17년도 예산 편성 시 학교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 등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집행가능금액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고 신규사업 최초 년도는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 방지
- (2017년 교문위・예결위) 전문상담사 기본급을 유사 직종인 영양사・사서에 준하여 '19년 기본급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의 추가 예산 지원을 위하여 '19년 수당 신설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1) Wee 클래스 상담지원

- **(미국)** 학생 457명당 학교상담사1명(2009년 기준)을 배치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이상 이수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학업·진로·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음
- **(일본)** 3학급이상 모든 공립 중학교에 상담사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재)일본상담심리사 자격인정협회가 인정하는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아동・학생 임상심리에 대해 고도의 지식을 가진 대학의 학장, 부학장,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등이 학교상담을 담당하고 있음

2)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 **(일본)** 1955년 시마루 여객선 사고로 인해 수영 교육이 강조 됨. 대부분의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으며, 수영 수업은 6월 중순부터 7월까지 이루어 짐. 또한 7-8월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수영 활동이 있음.

  문무과학성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학생체육행정조직으로 중학교 체육연맹과 고등학교체육연맹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교육적으로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체육수업에 수영 포함(초 2,3학년부터 시작하는 수영수업은 8,9학년까지 계속됨),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초등학교 36시간 수영 강습을 받아야하며, 대부분 3학년 때 강습을 받음, 중등교육 1단계에서는 대부분 한 학년 과정에서 시행되며 최소 15시간을 권장함

3) 학교안전강화사업

- **(미국)** '60년대 후반부터 '08년까지 총 35번에 걸친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 특히 '99년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13명 사망)으로 정부 차원의 대안 모색하여 학교 안전센터에서 시설(CCTV)이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리·점검 실시

  *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 **(일본)** 외부인 무단출입자에 의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01.6월, 사망 8명)을 계기로「학생 안심 프로젝트(문부과학성)*」수립·추진('12~)

  * 방범 카메라 모니터 관리 시스템 구축, 침입감시 센서 및 모니터 설치 등

4) 교육복지우선지원

- **(영국)** 지역 교육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교육문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 지역의 기업들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교육우선지역(EAZ*:Education Action Zone)을 운영하고, 각 EAZ는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 현재 25개 운영되고, 기업체로부터 약 500만 파운드 정도 기금 모집

5) 중학교 자유학기제

-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통해 중등교육과정(Second Level, 5~6년) 중 주니어 과정(중학교, 3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년)에 들어가기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과정 운영

  ※ ('10년 현재) 75% 이상의 학교가 전환학년제 제공, 약 53%의 학생 참여

- **(덴마크)**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애프터스쿨 운영, 공립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 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학교

  ※ 전체학생의 약 30% 정도가 자율적으로 희망·참석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국립부설학교	⇒	국립부설학교	⇒	국립부설학교 교육부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배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		사업수행 성과 분석 및 결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활동 지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75	82	90.3	90.5	'18년 목표치 보다 상향하여 90.5점으로 조정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한 5점 척도 설문조사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82.5	90.3		-			
	달성도	-	110	110		-			
국립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실제지원 학생(비율)(단위: %)	목표	신규	신규	90.5	90.5	-	'18년 통합재정평가 의견에 따라 '19년부터 성과지표 삭제	실제지원 학생수 /(교육비지원대상 학생수(①)-① 중 무료강좌 수강 학생수)	국립부설학교 집행 실적(공문)
	실적	신규	신규	87.1	81.4	-			
	달성도	-	-	96.2	89.9	-			
석면 제거율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6.3	'16년말 기준 남아있는 석면(15.2%)을 10년 내 ('27년까지) 제거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매년 1.5%씩 상향 조정	석면 제거 누적금액/ 석면 제거 총액	석면제거 완료 실적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내진보강 완료율 (단위 :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9.6	'18년부터 매년 40억원 정도 투자하여 '22년까지 완료 목표로 전년 대비 8.9%씩 상향 조정	내진보강 완료 누적금액/ 내진보강 총 소요액	내진보강 완료 실적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의견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국립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및 처우개선 필요성

○ (참고4) 2018년 국립학교 Wee클래스 전문인력 현황

○ (참고5) 국립부설학교 CCTV 설치 현황

○ (참고6)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내용 및 성과

○ (참고7) 2018년 국립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 (참고8)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 (참고9)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참고10) 2018학년도 국립학교별 교과용 도서 지원 현황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 현장 의견 >

▸ **방과후학교 운영비**

□ (학생, 학부모) 학생·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제공

※ 서울교대부설초 학부모 초등돌봄교실 운영 요청('18년 현재, 학교 전체 공사 중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지속적인 처우개선 요구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이해관계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및 교수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등

▸ **Wee 클래스 상담지원**

□ (이해관계자) 전문상담사는 유사 직종인 영양사·사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전문상담사의 급여가 영양사·사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

□ (학교)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학교체육 활성화**

□ (학생, 학부모) 2017년 초등수영 실기교육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76.9%의 학생들이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72.6%가 자녀들이 수영실기 교육을 만족한다고 인식하는 등 초등수영교육의 필요성과 대상 학년 확대 요구

※ 학생 6,157명, 학부모 4,401명 조사('18.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교안전강화**

□ (학교관계자) 노후화된 CCTV의 유지·보수, 사각지대(사건·사고 발생지역)에 CCTV 설치 등을 위하여 예산 지속 지원 필요

※ 국립부설학교 행정실장 대상 의견수렴(2018.1.26.)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학교관계자 등)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타 학기·학년으로의 연계·확산 필요에 대한 학교 현장 요구, 국정과제 선정(50-4-3,

자유학기제 확대) 등에 따른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추진

< 자유학기제 확대 관련 현장의 주요 의견 >

- **(적용 학년)** 초등→중학교로의 적응, 전·출입, 고입전형 등 고려 시 **중 1학년**이 적절
- **(자유학기 활동 최소 운영시수)** '학기당 170시간 이상'이라는 기존의 요건이 자유학년제 확대 시에는 교과 시수 감축 등에서 현장에 부담이 있어 **요건 완화 필요**
- **(운영지원)** 교육과정·편성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 및 시도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고 자유학년제 운영 및 연계학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 확보 필요**
  - **(기타) 교사 업무부담 완화, 연수 및 홍보 강화, 사교육성행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현장포럼)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이해관계자) 근무 기간이 증가할수록 **공무원과 보수 격차가 점증***되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호봉제' 도입 요구**

* '17년 기준 9급 공무원 대비 1년차 92% 수준 → 10년차 68% 수준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교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의 하나인 활동 중심의 수업 강화로 과학실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 (학부모, 이해관계자) 동일 지역 내 공립학교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노후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원 필요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방과후학교 운영비**

□ 대한민국 정책 평가* 결과 '초등돌봄교실'이 '15~'17년 3년 연속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

* 동아일보-고려대-한국리서치 주관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매우만족' 및 '만족' 긍정적 응답률 : ('14년) 92.5% → ('18년) 95.9%

□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주말 문화 정착과 학생 적성과 소질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만족도를 보임

※ 방과후학교 만족도('18년) : (학생) 82.9점 (학부모) 81.5점

□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기회 확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국립 초·중·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31명 배치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유도('17년 사업만족도 : 84.46%)

□ 지원·관리 현황 파악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연수, 만족도 제고 방안 협의 및 우수사례 전파

※ 현황조사(23개교, 설문조사)

▸ **Wee 클래스 상담지원**

□ 국립부설학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및 Wee클래스 운영 지원을 통해 국립부설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상담 제공

※ 국립부설학교(33교) 내부상담 전문가 상담 실적 : ('14년) 7,650건 → ('15년) 8,404건 → ('16년) 10,452건 → ('17년) 12,925건

※ Wee클래스 상담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Wee클래스 이용 학생 대상) : (초) 4.70점, (중)4.53점, (고)4.85점

▸ **학교체육 활성화**

□ 초등 수영교육 확대 ('17년) 177개청, 81만명 → ('18년) 177개청, 104만명

※ 생존수영 선도교원 연수 실시 750명 ('18.4~9월)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생존 수영교육의 효과 및 필요성 언급

반복되는 물놀이사고..한강에서 생존수영 배워요 (MBC '18.6.29.)

생존수영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까지 지켜요(조선에듀 '18.10.22.)

▸ **학교안전강화**

□ 학교 CCTV 설치 확대 및 고화소 비중 증대

※ CCTV 설치 대수/ 고화소 비율 : ('16년) 1,163대/ 83.8% → ('17년) 1,255대/ 94.3%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17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교실수업이 개선되고 학생 역량이 강화되는 등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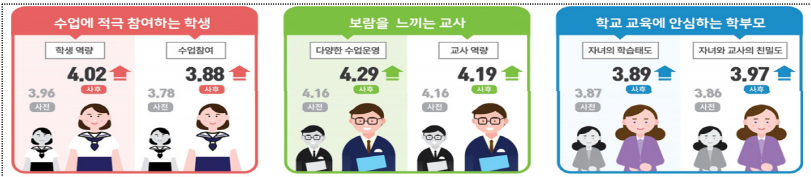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KEDI. 2017)

※ 응답자 수 : 총 126,023명 (학생 66,832명, 교사 27,460명, 학부모 31,731명)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 사용자연합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17년 임금교섭 타결('17.10.31.)로 노조의 파업 철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 가능

* 노조, 임금교섭 결렬 시 '17.10.25.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안전한 실험실) 실험복, 보안경, 보호 장갑, 마스크, 소화기 등 확충 및 비상샤워기, 눈세척기 등 설치

완전장비(구)	확충물량	비고
실험복	483 벌	
보안경	537 개	
보호 장갑	1,213 켤레	내산, 내열, 일반장갑
마스크	644 개	일반, 방진, 방독
소화기	157 개	방염포 245개
비상샤워기	24 식	
눈세척기	30 식	

□ (쾌적한 실험실) 밀폐시약장(19식), 흄후드(16식) 설치로 화학약품 격리 보관·관리 및 유해가스 실험실 유입 방지

□ (효율적인 실험실) 노후된 실험대 교체 및 준비장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실험활동 효율성 제고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 국립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원으로 노후된 급식기구 등 교체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환경 조성

< 현장의 변화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자유학기의 핵심인 '교실수업 개선'에 변화

· 교사로서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장면을 이끌어내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업의 주체인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실현함으로써 행복한 교육문화를 조성해낼 수 있어 좋았다.(경상대부설중 국어교사 김○○)

· 배움 중심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눈으로 수업을 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 생각하다보니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게 되어 수업에 자신감도 생기고, 수업도 즐거워진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및 발표 등을 통해 숨겨졌던 아이들의 성격이나 생각들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공주대부설중 교사 ○○○)

□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찾는 계기 마련

·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더 많은 경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가면서 소통이라는 소중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 자유학기 수업은

나의 끼와 꿈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해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이기도 하다.(센뿔여중 학생 박○○)

· 자유학기 동안 아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에 억매이지 않았다. 자유로운 수업 방식은 물론 3D 프린터, 승마, 스피닝, 동영상 제작, 오페라 관람 등 시골 마을에서는 꿈꾸지 못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것도 아이들이 즐기면서 탐구하고 토론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황둔중 학부모 김○○)

▸ **국립부설학교 급식 지원**

□ 안전한 급식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수요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과학실에 안전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험실의 노후화 정도 해소 및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 제공

중등과학실(서울농학교)

비상샤워기(한국경진학교)

폐수보관장(충북대부중)

안전보관함(경북대부중)

보관장과 흄후드(경상대부중)

약품실 별도 마련(공주대부중)

참고 3 국립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및 처우개선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해 **단위학교 차원의 1차적 학교 폭력·자살 예방 및 상담기능 강화** 필요

□ 전문상담사 업무 및 처우

○ **(업무)** 전문상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에 준하는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울 학생 상담 및 치료전략**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 학생의 정보수집, 평가지(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 및 평가를 한 후, 사례에 따라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문 등 다양한 지원**
· **학교폭력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피·가해학생들의 학교 적응 지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 **등의 적극적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 개인 및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을 통해 학업복귀 권장, 학업중단 이후 상황 및 정보 제공

○ **(처우) 국립 전문상담사의 경우** 상담 자격증 소지, 상담 관련 대학(원) 졸업, 상담 경험 등 **높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 국립부설학교 전문상담사(30명) 중 전문상담교사 1·2급(13%), 청소년상담사 2급(13%), 청소년상담사 3급(33%), 전문상담사2급(20%) 소지하는 등 상담 관련 분야 경력·자격증 보유

- **국립학교의 타 회계직종, 공립의 전문상담사에 비해 수당이 적은 편으로** 국립 전문상담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국회 교문위 및 예결위소위에서 국립학교 전문상담사의 처우를 국립학교 타 회계직종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지적받음('18년)

※ 전문상담사·타 직종 간 수당 지급 여부 비교표('18년 기준)

직종		급식비	교통 보조비	근속 수당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가족 수당	자녀 학비 수당	직종 수당	연차 수당	고용 부담금
전문 상담사	국립	○		○	○		○			○		
	공립	○	○	○	○	○	○	○	○		△*	○
학교회계직원(국립)		○	○	○	○	○	○	○	○	○	○	○

* Wee클래스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수당 지급(△)

참고 4 2018년 국립학교 Wee클래스 전문인력 현황

연번	소재지	학교급	학교명	Wee클래스 운영	전문상담인력	계약 유형
1	부산	고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	대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교사	교원
3	광주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4	강원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5	충북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6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7	충남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8	전북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9	경남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0	제주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전문상담교사	교원
11	대구	중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2	광주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3	충북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4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5	충남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공주대사범대부설고와 통합 운영	
16	경남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7	제주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8	서울	초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19	부산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기간제(6개월)
20	대구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1	대구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2	대구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3	인천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4	광주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5	광주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6	강원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7	충북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8	충북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29	충남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30	전북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31	전북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32	경남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33	제주		제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합 계				32명 상담교사 : 2명 상 담 사 : 30명(무기계약 29, 기간제 1명)		

참고 5 국립부설학교 CCTV 설치 현황

('17년 말 기준, 단위 : 대)

급	학교명	~50만 (A)	50만~100만 (B)	100만~ (C)	합계 (D=A+B+C)	고화소 비율 (E=C/D)
유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19	19	100.0%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18	18	100.0%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15	15	100.0%
초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5		16	21	76.2%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1	31	100.0%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9	19	100.0%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21	21	100.0%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20	20	100.0%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24	24	100.0%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23	23	100.0%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31	31	100.0%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9	19	100.0%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18	18	100.0%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31	31	100.0%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14	14	100.0%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6	16	100.0%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17	17	100.0%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0	20	100.0%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24	24	100.0%
중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6		29	45	64.4%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48	48	100.0%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8	18	100.0%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15	15	100.0%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7		34	41	82.9%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64	64	100.0%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37	37	100.0%
고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		37	40	92.5%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1	31	100.0%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8	38	100.0%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7	67	100.0%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8		32	40	80.0%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5	1	48	64	75.0%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3	23	100.0%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6	16	100.0%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60	60	100.0%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8	38	100.0%
특	서울농학교			24	24	100.0%
	서울맹학교			43	43	100.0%
	한국경진학교		10	43	53	81.1%
	한국선진학교			12	12	100.0%
	한국우진학교	7		30	37	81.1%
합 계		61	11	1,183	1,255	94.3%

참고 6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내용 및 성과

□ 개 요

○ **(추진 목적)**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 **(추진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부 훈령

○ **(사업 대상)** 초·중·고교 학생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차상위 계층, 탈북 및 다문화, 특수교육대상 등

○ **(추진 경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시작('03~)
- 지방사업으로 이양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11~)
- 국립 중학교 3개교 지원 시작('14~)
- '03년 79교(169억원)에서 **'18년 1,956교(1,427억원)로 사업 확대**

* 공·사립학교 1,835교(교당 평균 48백만원), 국립학교 4교(교당 약 50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및 성과

○ **(내용)** 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 프로그램,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주요 사업 내용]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성과)** 교육복지 증대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 제고

- 학생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교육과정과의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자존감 및 교사 효능감 증대

참고 7 2018년 국립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대상: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유·초·중등)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적용제외
- 학부모회직(구,육성회직) 중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 교원대체 직종(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원어민보조교사, 기타 강사 등)
- 청소, 당직 등 파견·용역에서 직고용 전환된 근로자
- 별도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의하여 보수를 적용받는 근로자

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식 (방중비근무)
기본급	기본급		월	1,834,140원	영양사·사서	주40시간 1개월 만근
				1,642,710원	그 외 직종	
수당	공통	교통보조비	월	6만원	학교회계직원	일할비례
		근속수당	월	3~60만원	학교회계직원	일할무관
	직종별	면허가산수당	월	83,500원	영양사면허 소지 영양사 1인	일할무관
		특수업무수당	월	2만원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	일할무관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조리사, 조리원	일할비례
		자격가산금	월	기본급의 5%	조리사 자격증 소지 조리사 1인	일할비례
					전산(워드프로세스 관련 자격증 제외) 자격증 소지 전산 1인	
	대상별	가족수당	월	공무원 준용	학교회계직원	일할무관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	공무원 준용	학교회계직원	일할무관
기타	복리비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각1회×50만원)	명절 현재 재직자	일할무관
		급식비	월	13만원	학교회계직원	일할비례
		맞춤형 복지비	연	40만원	학교회계직원	일할비례
	보전금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금	월	[7,530원×243시간] - [최저임금 산정 대상 급여 월 해당액]	2017.12.31. 이전 입사자 (보전기간: '18.1.1.~12.31.)	일할비례
	상여금	정기상여금	연	60만원	학교회계직원	협의예정

1) 상기 보수표를 적용받는 학교회계직원은 '18.3.1.부터 상기 보수표 이외에 학교 자체 지침 등에 따른 수당 신설(인상 포함)은 불허함

2)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40시간 미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 단, **급식비는 전액지급**(주5일 근무가 아닐 경우 일할비례)

참고 8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단위: 원)

근속년수	2014	2015	2016	2017. 1월～9월	2017. 10월～
2년차					30,000
3년차					60,000
4년차	50,000	50,000	50,000	50,000	90,000
5년차	70,000	70,000	70,000	70,000	120,000
6년차	90,000	90,000	90,000	90,000	150,000
7년차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80,000
8년차	130,000	130,000	130,000	130,000	210,000
9년차	150,000	150,000	150,000	150,000	240,000
10년차	170,000	170,000	170,000	170,000	270,000
11년차	**190,000**	190,000	190,000	190,000	300,000
12년차	190,000	210,000	210,000	210,000	330,000
13년차	190,000	230,000	230,000	230,000	360,000
14년차	190,000	**250,000**	250,000	250,000	390,000
15년차	190,000	250,000	270,000	270,000	420,000
16년차	190,000	250,000	290,000	290,000	450,000
17년차	190,000	250,000	**310,000**	310,000	480,000
18년차	190,000	250,000	310,000	330,000	510,000
19년차	190,000	250,000	310,000	**350,000**	540,000
20년차	190,000	250,000	310,000	350,000	570,000
21년차 이상	190,000	250,000	310,000	350,000	**600,000**

※ '교육부·교육청과 노조 간 2017년 임금협약'('17.10.31.)에 따라, '17.10월부터 근속수당 인상(안) 적용

참고 9 과학실 안전설비 확충

□ 사업 개요

○ (목적) 과학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실 환경 구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9조, 과학교육 종합계획('16-'20)

○ (내용) 쾌적한 실험실, 역동적인 실험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실험실

△ **쾌적한 실험실**
1)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실험실 : 냉·난방 시설
2) 밝은 실험실 : 조명시설, 실험가구와 구조(천장, 바닥, 벽 포함)를 밝은 색으로 배색
3) 냄새나지 않는 실험실 : 환기시설(환풍기), 흄후드(실험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 밀폐시약장(약품 가스 누출 방지)

△ **역동적인 실험실**
1) 실험수업과 강의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실험실
2)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실험실
3) 실험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험실타 ICT 기자재 등 확충

△ **효율적이고 안전한 실험실**
1) 정리정돈이 쉬운 실험실 : 수납공간의 극대화, 기구장 및 시약장의 구조 개선
2) 전기(수도, 가스) 배선(관)을 감춘 실험실 : 천장(전기배선), 벽면(수도·가스 배관) 활용
3) 안전한 실험실 : 화재 진압(소화기, 천장 스프링클러), 신체 보호(보안경, 마스크, 비상 샤워, 눈 세척 장치 등 비상사태시 응급처리 장치), 독극물 관리(밀폐시약장), 기타(간이 폐수 정화 장치, 초음파 세척 장치 등)

□ 사업 성과

○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구축) 국립부설초·중·고·특수학교 38교의 안전 장구 확충

※ 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 마스크, 소화기 및 방염포, 비상샤워기, 눈세척기 등

○ (쾌적한 실험실 조성) 밀폐시약장, 흄후드를 설치하여 화학약품을 격리 보관·관리하고, 유해가스 실험실 유입 방지

○ (효율적인 실험실 학습 환경 조성) 실험대 교체 및 실험결과를 공유·토론할 수 있는 기자재 설치로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

참고10 2018학년도 국립학교별 교과용도서 지원 인원

(단위 : 명)

구분	학교명	지원 인원	
		학생	교사
초등학교 (16개교)	경북대사대부설초	585	28
	경인교대부설초*	-	-
	공주교대부설초	560	30
	광주교대광주부설초	581	28
	광주교대목포부설초	446	26
	대구교대대구부설초	437	36
	대구교대안동부설초	429	24
	부산교대부설초	672	33
	서울교대부설초	600	34
	전주교대군산부설초	445	42
	전주교대전주부설초	460	25
	제주대부설초	432	22
	진주교대부설초	574	24
	청주교대부설초	431	25
	춘천교대부설초	435	26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	549	35
중학교 (7개교)	경북대사대부설중	574	42
	경상대사대부설중	545	37
	공주대사대부설중	201	19
	전남대사대부설중	314	45
	제주대사대부설중	688	48
	충북대사대부설중	546	39
	한국교원대부설미호중	400	50
합계(23개교)		**10,904**	**718**

* 인천시교육청 지원

[502]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1,834	1,834	1,924	90	4.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50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정보화과장(이소영), 사무관(강병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육 정보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교수학습의 질 향상과 교육력 제고 ○ 첨단 ICT기술을 교실로 도입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사업기간	'97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국립학교 41개교(교육부 소속)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학교의 정보인프라 고도화, 컴퓨터실 PC교체, 첨단 ICT기반 구축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를 내용연수에 맞게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교육환경 개선 : 1,043백만원 지원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38개교 x 26.65백만원 1,013백만원
  · 유치원 : 3개원 x 10백만원 = 30백만원
- 첨단 ICT 기술을 교실로 도입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 791백만원
  ·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10개교 x 79.1백만원
- Wifi 지원 : 90백만원
  · 초·중등학교 50교실 x 1.8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1,834	1,924
▪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 국립초·중등학교 38개교 x 23.2백만원 881백만원 . 유치원 3원 x 5백만원 = 15백만원	. 국립초·중등학교 38개교 x 27.1백만원 1,030백만원 . 유치원 3원 x 10백만원 = 30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	10개교 x 93.8백만원 = 938백만원	10개교 x 77.4백만원 = 774백만원
▪ Wifi 지원		50교실 x 1.8백만원 = 9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립학교의 정보인프라를 **내용연수에 맞게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교육환경 개선 필요**

○ **첨단 ICT 기술을 교실로 도입**하여 선진화된 **교수학습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기반 구축** 추진

- 국립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우수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고, **공·사립학교로도 우수사례 전파** 및 **벤치마킹 지원** 등 **스마트 교육을 선도하는 거점학교역할 부여**

- 국립 초·중등학교에 첨단 교실 환경을 마련하여 **예비교원이 실습**을 통해 **사전에 경험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개발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1,834**	**1,834**	**1,924**	**90**	**4.9**
▪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1,060	896 (38개교x23.2백만원 +3원x5백만원)	1,060 (38개교x27.1백만원 +3원x10백만원)	164	18.3
▪ 정보인프라 고도화	774	938 (10개교 x 93.8백만원)	774 (10개교 x 77.4백만원)	△164	17.5
▪ Wifi 지원	-	-	90 (50교실x1.8백만원)	90	-
□ **비목**(합계)	**1,834**	**1,834**	**1,924**	**90**	**4.9**
○자산취득비(430-01)	1,834	1,834	1,924	90	**4.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 및 수업환경이 열악한 국립학교에 정보화기기 신규도입과 내용 연수 경과에 맞게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국립학교에 첨단교실을 구축하여 창의인재 양성 교육(스마트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 지원

- '16년부터 국립학교에 연 8~10개교 스마트 인프라 구축(단계적 추진)

※ 전체 38개 국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16년 10개교, '17년 8개교, '18년 8개교 지원 중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1,834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3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18	1,834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3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1,834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3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19	1,834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3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1,924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92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7.1백만원×38교+10백만원×3개원=1,060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77.4백만원=774백만원) - Wifi 지원(50교실x1.8백만원=90백만원)	90
'20	1,889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89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7.1백만원×38교+10백만원×3개원=1,060백만원) - 스마트 인프라 구축(10교×82.9백만원=829백만원)	1,953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953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 Wifi 지원(66교실x1.8백만원=119백만원)	64
'21	1,945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945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7.1백만원×38교+10백만원×3개원=1,060백만원 - 스마트 인프라 구축 10교×88.5백만원=885백만원	1,951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951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 Wifi 지원(65개교x1.8백만원=117백만원)	6
'22			1,834	▪ 정보인프라 노후장비교체 및 고도화 : 1,834백만원 - 노후장비 교체 (23.18백만원×38교+5백만원×3개원=896백만원) - 정보인프라 고도화(10교×93.8백만원=938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5		0.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

> **제20조(경비부담 등)** ① 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추진경위

- 제1단계 및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추진('97~'05년)
  · 저성능 노후 PC 및 교단선진화용기기 교체
- 제3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추진('06~'11년)
  ·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노후 교육정보화 기기 교체 및 신규 보급
  · 노후 교단선진화 기기 교체(TV, 빔프로젝터 ➠ LCD프로젝터)
  · 모든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1실 설치(36학급 이상은 2실 설치) 등
- 제4단계 교과교실제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교육 구축 추진('12~'13년)
  ·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정보화기기 신규 도입
- 제5차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유·초·중등교육 추진('15~)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미래학교 환경 조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18.2	18.2	16.38	20.38	20.38	18.34	18.34	18.34	18.3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38 ( )	( )	( )	16.38 ( )	16.37 ( )	( )	0.01 ( )
'16년	20.38 ( )	( )	( )	20.38 ( )	20.38 ( )	( )	( )
'17년	18.34 ( )	( )	( )	18.34 ( )	18.34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834	1,834	1,834	-	1,834	1,834	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교문위 결산 지적사항) 자발적으로 운영비를 투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게 동일하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 '16년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예산 배정 시 기본사업비 80%는 균등 배정하고, 20%는 국립학교의 자구 노력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

○ ('16년 예산소위 지적사항) 정보인프라 고도화와 스마트인프라 사업은 사업목적이 동일함에도 항목을 분리 편성한 것은 부적절

☞ '17년 예산 요청시 '정보인프라 고도화' 항목으로 통합 편성

○ (최근평가결과 시기, 등급 등) '16년도 재정자율평가 결과 :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은 2009년 총무성이 발표한 하라구치 비전의 교육부문에 퓨처스쿨에 의한 협동형 교육개혁시책 포함,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초·중학교 전학생에게 배포하고 2020년까지 「퓨처스쿨*」 추진

* 모든 학생과 학급담임에게 태블릿 PC 배포, 교실 전체에 인터액티브 화이트보드 배치, 교내외 통신할 수 있는 무선 LAN 환경 구축 등

○ 싱가포르는 2006년 미래학교 프로젝트인 '퓨처스쿨@싱가포르 iN2015' 프로젝트 발표, 기존의 부분적이고 비통합적인 ICT활용을 지양하고, 학교 전체를 ICT라는 매체로 개혁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 인재 양성 추진

(6) 사업추진절차

- 절차도

교육부	교육부	국립학교	국립학교	교육부
기본계획수립 (국립학교의견 수렴반영) →	국립학교로 예산배정 →	교내 기종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필요기기 결정 등 사업집행 →	사업결과보고 등 →	사업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학교 첨단교실 수(개)	목표	신규	22	30	377	377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현황	당해 연도 예산 투입으로 ICT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구축 교실 수	결산보고자료 (매년 12월)
	실적	신규	28.1	30					
	달성도	-	127.7	100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지원 만족도(점)	목표	신규	75	78	90	70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결과의합 /만족도 참여자 수({∑(5점척도-1)X25점}/전체 응답자수)	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11월)
	실적	신규	77	88					
	달성도	-	102.7	112.7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참고)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최첨단 수업 참관실 구축하여 실시간 수업 공개 가능
·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

< 현장의 변화 >

□ 수업하는 곳과 참관하는 곳을 분리한 수업참관실 구축으로 공개 수업 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보호할 수 있고, 참관인들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편리하게 수업을 참관할 수 있음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등

[5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4,704	36,879	37,317	438	1.2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000 - 1051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정보화과장(이소영), 사무관(강병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한석수), 경영전략본부장(박근수), 기획조정실장(장시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교육·학술연구 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성과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에듀넷 이용 교사 12만명, 학생 43만명 - RISS 가입자 수 416만명, 연간 방문자 수 약 1,000만명 - 나이스 이용자 교직원 등 65만명, 학생·학부모 700만명 - 주요 국제기구, 해외 유관기관 및 34개국과 협력사업 추진 - 연수 참가자 교사, 사서 등 약 43만명
지원조건	출연(정액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18) 36,879백만원 → ('19) 37,317백만원

- **인건비 : 출연사업 수행을 위한 정규직원 인건비 14,970백만원**
  ('18) 14,970백만원 → ('19) 14,970백만원

- **경상비 : 출연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 1,996백만원**
  ('18) 1,996백만원 → ('19) 1,996백만원

- **자체수입 : ('18) △1,496백만원 → ('19) △1,496백만원**

- **사업비 : 기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21,847백만원**
  ('18) 21,409백만원 → ('19) 21,847백만원

【1. 에듀넷 서비스 운영(초중등교육영역)】

교육정보 공유유통체제 강화 및 교원과 학생의 미디어 기반 지식 활용 확산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체제 조성 : 2,725백만원

1-1. 에듀넷(교육정보 공유·유통체제) 운영 : 1,772백만원

□ 에듀넷 서비스 운영 : 1,667백만원

○ 콘텐츠 품질관리 : 204백만원

※ 콘텐츠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17년말 보유 콘텐츠 2,414,335건의 0.036%인 860건으로 전년 배정 예산과 동일하게 동결

※ 콘텐츠 품질관리는 기 보유 및 외부 확보 콘텐츠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수정보완 작업 등

※ 단가(건당 비용) : 238,464원 (초급기능사 2일, 1건 변환 기준)

※ 2017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콘텐츠 메타데이터 보정 : 180백만원

※ 1,800원(단가) * 100,000건 = 180백만원

※ 교사역량 강화 연구·연수자료, 교육정책지원 자료 콘텐츠 대상 메타데이터 보정(10만건)

※ 단가 :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기준」적용

○ 콘텐츠 저작권 관리 : 13백만원

※ 13,000천원(단가) * 1년 = 13백만원

※ 단가 : 음원 및 문헌자료 저작권료(1년 사용료) 연 평균 집행 금액

○ 장애인 재택 모니터요원 운영 : 261백만원

※ 872천원(단가)*25명*12개월 = 261백만원

※ 단가 : 초급기능사 월 평균 임금(2,493,372원) 기준의 35% 수준으로 반영

○ 에듀넷 시스템 유지관리 : 960백만원

- 기 구축 에듀넷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960,000천원*1식=960백만원

<table>
<tr><td>S/W 개발비 재산정</td><td colspan="4">9,788,765,804원</td></tr>
<tr><td rowspan="8">난이도 산정</td><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td><td>판단기준</td><td>복잡도</td><td>점수</td></tr>
<tr><td>유지보수 횟수</td><td>840</td><td>복잡</td><td>35</td></tr>
<tr><td>자료처리 건수</td><td>40만</td><td>복잡</td><td>10</td></tr>
<tr><td>타시스템 연계</td><td>3개 이상</td><td>복잡</td><td>10</td></tr>
<tr><td>실무지식 필요</td><td>기초지식</td><td>보통</td><td>5</td></tr>
<tr><td>분산처리 여부</td><td>통합분산처리</td><td>보통</td><td>10</td></tr>
<tr><td colspan="3">총 유지관리 점수(TMP)</td><td>70</td></tr>
<tr><td>유지관리 요율</td><td colspan="4">9% (공공부문 S/W 유지관리 평균 요율)</td></tr>
<tr><td>응용S/W 유지관리비(A)</td><td colspan="4">880백만원 (880,988,922원)</td></tr>
<tr><td rowspan="2">직접경비</td><td>상용SW 유지관리 및
유료서비스 이용료</td><td colspan="3">80,000천원(5식) * 1년</td></tr>
<tr><td>소계(B)</td><td colspan="3">80백만원</td></tr>
<tr><td>계(A+B)</td><td colspan="4">960백만원</td></tr>
</table>

※ 에듀넷 S/W 개발비 : 현재까지 유지관리 중인 서비스 개발비(누적)

※ 상용SW 유지관리 및 유료서비스 이용료 목록(5식) : 대량메일발송, 동영상, 문서 뷰어, DB암호화, 사용자관점 모니터링

※ 2017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요율제 유지관리비'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에듀넷 응용SW의 요율제 유지관리비 방식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은 13.5%이나, 공공부문 SW 유지보수 평균 요율(보수적)인 9%로 조정하여 산출함

☞ 유지관리 요율 산정근거 = 10 + 5 x TMP(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 100
= 10 + 5 x 70 (에듀넷 응용SW 유지관리 난이도 점수) / 100 = 13.5%

○ 교원의 소통·참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 49백만원

- 서비스 운영 : 4,083천원 * 12개월 = 49백만원

구분		단가	인원(명)	기간(개월)	금액
인건비	중급기술자	4,981,725원	1	1.2	5,978,070 원
	초급기술자	3,979,456원	1	3	11,938,368 원
	소계				17,916,438 원
제경비	인건비*110%				19,708,082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7,524,904 원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4,514,942 원
계					49,664,366 원

※ 2017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교육정보 통합관리체제 운영 : 105백만원

○ 교육정보 원문 통합관리 및 공유시스템 운영 : 105백만원

- 8,757천원 * 12개월 = 105백만원

구분		단가	인원(명)	기간(개월)	금액	
인건비	중급기술자	4,981,725원	1	2.5	12,454,312.5	원
	초급기술자	3,979,456원	1	6.5	25,866,464	원
	소계				38,320,776.5	원
제경비	인건비*110%				42,152,854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16,094,726	원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9,656,836	원
계					106,225,193	원

※ 2017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2. 교원과 학생의 창의적 교수학습 역량 강화 : 463백만원

□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운영 : 148백만원

○ 전국 본선대회 운영 : 66백만원

- 본선 대회 운영 : 19,330천원 * 3개 분과 = 58백만원
- 연구대회 표절 검증 체계 마련 및 적용 : 8,000천원 * 1식 = 8백만원

○ 우수입상자 포상 및 성과공유 : 72백만원

- 우수입상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2,134천원 * 30명 = 64백만원
- 입상자 시상 및 포상 : 8,000천원 * 1회 = 8백만원

※ 상금, 상장제작, 시상식 운영 등

○ 우수입상작 콘텐츠 가공 및 배포 : 100천원 * 100종 = 10백만원

사업 주요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전국대회 본선심사 운영** : 출품작 표절 검증, 본선 심사, 입상자 시상 및 포상
- **연구대회 개선 및 활성화** : 연구대회 우수사례, 우수학교 분석 및 공유, 19개 전국규모 연구대회 연계 및 입상작 산출물 목록집 제작,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작 배포, 입상작 산출물 가공 및 온라인 배포(에듀넷 서비스 활용), SNS를 통한 홍보
- **우수입상 사례의 국제교류 활성화** : 연구대회 우수사례의 협력국 공유를 통한 국제 교류 촉진

❍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모델 사업으로 **교사 및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 및 확산 활성화 필요**

□ 학생 창의적 미디어 활용 교육 확대 : 315백만원

○ 창의적 미디어 활용 교육 서비스 운영 : 163,000천원*1식=163백만원

구분	SW기술자 일평균임금	투입공수(MM)	한달일수	금액(원)
중급기술자(1명)	239,506원	3.5	20.8일	17,436,037
초급기술자(1명)	191,320원	8		31,835,648
자료입력원(1명)	113,959원	4		9,481,389
직접인건비합계				58,753,07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64,628,381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4,676,291
부가세(10%)				14,805,775
합계				162,863,52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자료 참조

○ 창의적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129백만원

- 자유학기제 지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 3,500천원*34회=119백만원

※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이론 교육 및 실습형 프로그램 등 본원 특성에 맞는 주제 및 전문가를 선정하여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총 34회) : 17개 시도교육청별 2개교 지원 기준

※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비(3,500천원/회) : 전문가 강사료, 운영비(노트북 등 장비 대여료, 장소 대관료, 참여학생 식대, 진행 스텝 인건비) 등

- 진로탐색 지원 동영상 콘텐츠 제작 : 2,000천원(단가)*5편=10백만원

※ 단가 : 편당 제작비 2백만원

○ 청소년 미디어 공모전 개최 : 23,000천원*1회=23백만원

※ 심사비 및 시상금 : 10,000천원 * 1회 = 10백만원

※ 행사비(대관료 및 장비임차료 등) : 8,000천원 * 1회 = 8백만원

※ 공모전 및 공개행사 홍보 : 1,000천원 * 5회 = 5백만원

1-3.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제도 운영 : 135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기술 심의 관리 체제 운영 : 50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심의 운영 및 발행사 대상 기술 지원 : 50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과목 : 120여 책('18년 대비 50여 책 증가)

※ 수시개정(심사본 이력관리 등) 체제 운영 및 발행사 수정·보완에 대한 기술 지원

구분	소프트웨어노임단가	투입공수(MM)	금액(원)
초급기술자(1명)	3,979,456원	5	19,897,280
직접인건비 합계			19,897,280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21,887,008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8,356,858
부가세(10%)			5,014,115
합계			55,155,261

※ 2017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디지털교과서 기술동향 분석 및 반영 : 85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뷰어 수정·보완 : 16,000천원 * 5종 = 80백만원

※ 5종 : Windows 10, 7 기종, 안드로이드 패드, 폰, iOS 패드

구분	소프트웨어노임단가	투입공수(MM)	금액(원)
중급기술자(1명)	4,981,725원	0.6	2,989,035
초급기술자(1명)	3,979,456원	0.7	2,785,619
직접인건비 합계			5,774,65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6,352,119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425,355
부가세(10%)			1,455,213
합계			16,007,341

※ 1종 기준, 2017년 SW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 적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디지털교과서 기술 표준 현행화 : 5백만원

※ 디지털교과서 제작가이드라인의 기술 표준화 반영 (EPUB3) 및 보완 포함

※ 단가 : 보고서 약 125쪽 분량(참조: KERIS 원고료(35,000원/A4 1매) 및 검토료(5,000원/A4 1매) 기준)

사업 주요 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디지털교과서 기술심의 관리 체제 운영** : 심의·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이력 관리,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기술 지원
-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술동향 분석 및 반영** : 디지털교과서 뷰어 수정.보완, 디지털교과서 기술표준 현행화

❍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검정 디지털교과서 신규 개발 및 수시 개정을 위한 관리체제로 **양질의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관리 필요**

❍ 디지털교과서 제작 관련 기술 표준(제작가이드라인), 단말기(운영체제) 등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됨

❍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일선학교 수업에 실제 활용 중이며, 공교육 활동의 기본 교재인 **교과서의 신뢰성과 안정적 활용이 보장되어야 함**

1-4. 소프트웨어 교육 통합 정보 서비스 운영 : 355백만원

□ 소프트웨어(SW) 교육 서비스 개선 및 운영 : 270백만원

○ SW교육 통합 정보 서비스 운영 : 100백만원

- SW 교육 현장컨설팅·상담 서비스 운영 : 40,000원*125건*12월=60백만원

※ '19년 SW교육 학교 현장 본격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축 및 운영, SW교육 교육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상담 제공

- 학교 수업지원 SW교육 통합 서비스 운영 : 40,000천원*1식=40백만원

※ 교수학습 방법, 수업 자료, 연수자료, 산출물, 국내외 동향 등의 통합 서비스 제공 및 통합서비스 기능 개선

※ 산출내역 (2017년 소프트웨어노임단가 적용)

구분	소프트웨어노임단가	투입공수(MM)	금액(원)
중급기술자(1명)	4,981,725원	2.9	14,447,003
직접인건비 합계			14,447,00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5,891,70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6,067,741
부가세(10%)			3,640,645
합계			40,047,092

○ 초·중등 SW교육 지원콘텐츠 개발 : 130백만원

- 피지컬 컴퓨팅 학습용 콘텐츠 개발 : 6,500천원 * 20편 = 130백만원

※ H/W(아두이노 등), 교육용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과 연계한 SW교육 추진

※ 다양한 피지컬 도구, 교구 구입비용 제한 등의 학교 현장 문제 해결

○ 초·중등 SW교육 역량 진단 서비스 운영 : 40백만원

- SW교육 역량 진단 실시 : 4천원 * 10,000명 = 40백만원

※ SW교육을 실시하는 초, 중등 학생 대상(1%표집) 역량 진단 실시

사업 주요 내용

❍ 초·중등 SW교육 정보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SW교육 운영에 따른 교사의 상담 지원 및 자료 제공
- SW교육 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

❍ 초·중등 SW교육 역량 진단 서비스 체제 구축
- 역량진단도구 개발 결과를 반영한 온라인 진단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진단 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요구 분석

□ 체험중심의 미래교육체험관 운영 : 85백만원

○ 미래교육 체험활동 강화 : 85백만원

- 학생, 교원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0천원*250회=25백만원

※ 소외계층, 학부모, 외국 방문자 및 자유학기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초청 설명회 등

- 안내자료 개발 및 홍보 활동 : 10,000천원*2종=20백만원

※ 미래교육체험관 온라인 방문 신청 시스템 운영, 안내 리플렛 제작 등

- 미래교육체험관 특화 신기술 개발 : 10,000천원*2종=20백만원

※ 체험관 내 신기술.신기기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도 제고

- 미래교육체험관 노후화 시설보완 : 2,000천원*10회=20백만원

※ 미래교육체험관의 시스템,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 및 노후화 기기 교체 등

사업 주요 내용

❍ 첨단 교수학습 기기, 콘텐츠 수업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 체험활동 제공

❍ 미래교육체험관은 국내외 정부 부처, 교육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교육 관계자가 방문하여 한국의 **미래 교육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환경(HW 및 SW 등)의 개선 필요**

【2. 학술정보 서비스 운영(고등교육영역)】

전국 대학 소장 학술정보 및 해외학술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국내 학술연구자 연구지원 강화 : 4,114백만원

2-1. 국가 학술정보 공유체제 운영 : 2,467백만원

□ 전국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망 구축 : 1,521백만원

○ 국내 대학 소장 학술정보 구축 및 운영 : 329백만원

- 27,417천원 * 12개월 = 329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1	12	59,780,700	원
	초급	3,979,456	1.49	12	71,152,673	원
	소계				130,933,373	원
제경비	인건비*110%				144,026,711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54,992,017	원
계					329,952,101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학술정보서비스(RISS) 시스템 운영 : 485백만원

- 40,417천원 * 12개월 = 485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2	12	119,561,400	원
	초급	3,979,456	1.53	12	73,062,812	원
	소계				192,624,212	원
제경비	인건비*110%				211,886,633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80,902,169	원
계					485,413,015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장애인의 학술연구 편의 향상을 위한 협력 지원체계 운영 : 127백만원

-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계서비스 구축 : 9,625천원*8개월=77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0.45	7	15,692,434	원
	초급	3,979,456	0.54	7	15,042,344	원
	소계				30,734,777	원
제경비	인건비*110%				33,808,255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12,908,607	원
계					77,451,639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장애인 상호대차 서비스 지원 : 3천원*16,667건=50백만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서비스(연간 1만7천 건) 중 1건 당 이용 금액의 일부 지원(신청/반납 시 소요되는 5천원 중 3천원만 지원)

○ 차세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00백만원

구분		단가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고급	6,351,342	1	1	6,351,342	원
	중급	4,981,725	2	2.4	23,912,280	원
	초급	3,979,456	1	2.4	9,550,694	원
	소계				39,814,316	원
제경비	인건비*110%				43,795,748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16,722,013	원
계					100,332,077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학술정보 공유체제 사업 부문별 위원회 운영 : 40백만원

- 학술정보 선진 사례 조사 : 2,000천원*10회 = 20백만원
- 학술전문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 2,000천원*10회=20백만원

○ 의학분야 전문학술지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간 전자배송 시스템 운영 : 20,000천원 * 12개월 = 240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1	12	59,780,700	원
	초급	3,979,456	0.75	12	35,815,104	원
	소계				95,595,804	원
제경비	인건비*110%				105,155,384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40,150,238	원
계					240,901,426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빅데이터 기반 학술분석서비스 운영 : 16.7천원*12개월=200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0.75	12	44,835,525	원
	초급	3,979,456	0.73	12	34,860,035	원
	소계				79,695,560	원
제경비	인건비*110%				87,665,116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33,472,135	원
계					200,832,810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 946백만원

○ 대학 학위논문 제출시스템 운영 : 35,833천원*12개월=430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2	12	119,561,400	원
	초급	3,979,456	1.07	12	51,096,215	원
	소계				170,657,615	원
제경비	인건비*110%				187,723,377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71,676,198	원
계					430,057,190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학술논문 원문서비스 연계 및 운영 : 19,166천원*12개월=230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0.85	12	50,813,595 원
	초급	3,979,456	0.85	12	40,590,451 원
	소계				91,404,046 원
제경비	인건비*110%				100,544,451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38,389,699 원
계					230,338,196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dCollection 통합운영센터 운영 : 23,833천원*12개월=286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1.1	12	65,758,770 원
	초급	3,979,456	1	12	47,753,472 원
	소계				113,512,242 원
제경비	인건비*110%				124,863,466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47,675,142 원
계					286,050,850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2-2. 학술정보 유통 해외 네트워크 운영 : 927백만원

□ 해외 학술정보 공동활용 활성화 : 372백만원

○ 해외전자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운영 : 132백만원

- 11,000천원*12개월 = 132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0.72	12	43,042,104 원
	초급	3,979,456	0.2	12	9,550,694 원
	소계				52,592,798 원
제경비	인건비*110%				57,852,078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22,088,975 원
계					132,533,852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해외 학술논문 통합 메타데이터 도입 및 서비스 : 240백만원

- 80,000천원*3종 = 240백만원

□ 해외 정보 유통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구축 : 222백만원

○ 국내 미보유 해외학술정보 구매 지원 : 70백만원

- 5,834천원*12개월 = 70백만원

※ 해외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2차 제공처(타 제공처나 출판사 구매를 통해 제공)를 통한 고가의 학술 자원에 대한 연구자 부담 경감

○ 해외 학술정보서비스기관 발굴 및 연계서비스 운영 : 24백만원

- 2,000천원*12개월 = 24백만원

※ '18년 일본학위논문 확보를 위해 일본국회도서관(NDL), 러시아 언어권 자료 확보를 위한 러시아국립도서관(RST) DDS 서비스 연계 가능여부 타진

○ 해외논문구매대행서비스 데이터 개방을 위한 연계 API 보급 : 128백만원

- 10,667천원*12개월 = 128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0.85	12	50,813,595 원
	소계				50,813,595 원
제경비	인건비*110%				55,894,955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21,341,710 원
계					128,050,259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해외 원문 확충 및 연계 활용체제 구축 : 333백만원

○ 해외 학위논문 및 전자책 원문 도입 : 333백만원

- 82.5천원*4,037편 = 333백만원

2-3. 대학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 운영 : 410백만원

※ '대학공개강의 공동활용서비스 운영'은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사업에서 이관('19~)

□ KOCW 서비스 시스템 운영 : 215백만원

○ KOCW 서비스 시스템 운영 : 17,917천원*12개월 = 215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1	12	59,780,700 원
	초급	3,979,456	0.54	12	25,786,875 원
	소계				85,567,575 원
제경비	인건비*110%				94,124,332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35,938,381 원
계					215,630,289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 KOCW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 195백만원

○ KOCW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 21,667천원*9개월=195백만원

구분		단가(원)	인원	기간	금액
인건비	중급	4,981,725	1	9	44,835,525 원
	초급	3,979,456	0.91	9	32,591,745 원
	소계				77,427,270 원
제경비	인건비*110%				85,169,997 원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32,519,453 원
계					195,116,719 원

※ 2017년 SW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백만원 미만 절사

2-4. 글로벌 교육혁신 및 개발협력 선도 : 310백만원

□ KERIS-국제기구/해외유관기관 공동 협력 : 70백만원

○ 유네스코 협력 사업 추진 : 40,000천원 * 1회 = 40백만원

○ 해외 유관기관, 권역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사업 추진 : 30백만원

□ 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 분석 : 40백만원

○ 교육정보화 글로벌 동향 이슈 리포트 발간 : 2,800천원*1종=28백만원

○ 해외 내원인사 프로그램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1,000천원*12개월 =12백만원

□ 주요 협력국 교육정보화(ICT4ED) 현황 진단·분석 : 150백만원

○ 주요 협력국 워킹그룹 운영 : 120백만원

- 해외 전문가 초청비 : 3,000천원 * 10명 = 60백만원
- 국제회의 운영비 : 20,000천원 * 3일 = 60백만원

○ 주요 협력국 분석 보고서 산출 : 30백만원

- 30백만원 * 1식 = 30백만원

□ KERIS 중장기 글로벌 협력 사업 개발 : 50백만원

○ 글로벌 교류협력 사업 추진 : 30백만원 * 1식 = 30백만원

○ 국제개발협력 정부 정책 지원 : 20백만원 * 1식 = 20백만원

【3. 교육행정 서비스 운영(교육행정영역)】

나이스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 등 대국민서비스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화를 지원 : 6,998백만원

3-1. 고품질 교육행정 업무지원체계 안정화 : 2,513백만원

□ 나이스 응용 S/W 운영 및 유지보수 : 2,513백만원

○ ('11～'13) 응용 S/W 유지보수 : 18,924백만원×9.63%=1,822백만원

○ ('14) 응용 S/W 유지보수 : 3,406백만원×9.63%=328백만원

○ ('15) 응용 S/W 유지보수 : 2,278백만원×9.63%=219백만원

○ ('16) 응용 S/W 유지보수 : 1,493백만원×9.63%=144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계약금액	비 고
차세대 나이스 업무 프로그램 개발	12,040백만원	- 개발기간 : '10. 4. ~ '11. 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159백만원**
훈령205호 개정에 따른 나이스 개선	255백만원	- 개발기간 : '11. 7. ~ '11. 1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25백만원**
2011년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추가 개발	1,680백만원	- 개발기간 : '12. 2. ~ '12. 7.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62백만원**
학원법령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168백만원	- 개발기간 : '12. 2. ~ '12. 7.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6백만원**
2012년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추가 개발	3,060백만원	- 개발기간 : '12. 3. ~ '13. 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295백만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반영	137백만원	- 개발기간 : '12. 9. ~ '13. 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3백만원**
2013년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추가 개발	969백만원	- 개발기간 : '13. 3. ~ '13. 1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93백만원**
향상도 기초데이터 자동집계 시스템 개발	46백만원	- 개발기간 : '13. 4. ~ '13. 6.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4백만원**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개편 및 모바일서비스 시범구축	143백만원	- 개발기간 : '13. 9. ~ '14. 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4백만원**
수석교사 관련 나이스 시스템 기능개선	93백만원	- 개발기간 : '13. 10. ~ '13. 1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9백만원**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287백만원	- 개발기간 : '13. 11. ~ '14. 6.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28백만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나이스 인사관리시스템 기능개선	46백만원	- 개발기간 : '13. 12. ~ '14. 1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4백만원**
2011 ~ 2013년 소계	**18,924백만원**	**- 유지보수 금액 : 1,822백만원**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및 나이스-행복e음 연계 기능개선	410백만원	- 개발기간 : '14. 1. ~ '14. 6.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39백만원**
학생부 훈령 개정 및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 개발	931백만원	- 개발기간 : '14. 3. ~ '14. 10.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90백만원**
대국민서비스 회원관리 체제 개선	30백만원	- 개발기간 : '14. 6. ~ '14. 1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3백만원**
2014년도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추가 개발	2,035백만원	- 개발기간 : '14. 6. ~ '14. 1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96백만원**
2014 소계	**3,406백만원**	**- 유지보수 금액 : 328백만원**
특수교육 통계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특수교육 기능개선	682백만원	- 개발기간 : '15. 5. ~ '15. 1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66백만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 구축	248백만원	- 개발기간 : '15. 2. ~ '15. 8.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24백만원**
나이스 학원 교습소 정보 관리	94백만원	- 개발기간 : '15. 1. ~ '15. 4.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9백만원**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142백만원	- 개발기간 : '15. 1. ~ '15. 5.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3백만원**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510백만원	- 개발기간 : '14. 12. ~ '15. 4.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49백만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른 나이스 개선	415백만원	- 개발기간 : '15. 6. ~ '15. 10.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40백만원**
2015년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및 나이스-행복e음 연계 기능개선	187백만원	- 개발기간 : '15. 5. ~ '15. 6.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8백만원**
2015년 소계	**2,278백만원**	**- 유지보수 금액 : 219백만원**
나이스와 하나넷 연계 시스템 개발	128백만원	- 개발기간 : '15. 12. ~ '16. 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2백만원**
2015년 나이스 급식시스템 식재료표준체계 적용	142백만원	- 개발기간 : '16. 3. ~ '16. 8.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14백만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운용	612백만원	- 개발기간 : '16. 9. ~ '16. 12.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59백만원**
대국민서비스 서비스별 고도화	611백만원	- 개발기간 : '16. 8. ~ '17. 1. - 유상유지보수 기간 : '19. 1. ~ '19. 12. - **유지보수 금액 : 59백만원**
2016년 소계	**1,493백만원**	**- 유지보수 금액 : 144백만원**
총계	**26,101백만원**	**- 유지보수 금액 : 2,513백만원**

3-2. 행재정 인프라 표준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 : 2,840백만원

□ 나이스 총괄센터 유지관리 및 보안 서비스 운영 : 1,076백만원

○ 나이스 인프라(H/W, S/W) 유지보수: 1,056백만원

- 나이스 인프라 유지보수 88백만원*12월 = 1,056백만원

산출 내역

- H/W(163식) : 4,236백만원(도입비) x 8%(유지보수요율) = 339백만원
- 상용S/W(1,821식) : 5,966백만원(도입비) x 12%(유지보수요율) = 717백만원

○ 온라인 PC 보안 서비스 운영: 20백만원

- 온라인 PC 보안 서비스: 937명(사용자수) * 1,478원(라이센스 임대) = 1,400천원
- 보안API설치수량 * 350,000원 + 사용자 수 * 375원 = 19,601천원

산출 내역

구분	사용자수	보안API (수량)	온라인PC보안 소요예산	보안API 소요예산	합계
총괄센터	937	51	1,384,886	19,601,375	20,986,261

□ 나이스 총괄센터 시스템 운영: 1,764백만원

○ 시스템 위탁운영비: 8명 * 11,316천원 * 12개월 = 1,086백만원

산출 내역

구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투입공수 (MM)	한달 일수	금액(원)
고급기술자(2명)	305,353	15	20.8	95,270,136
중급기술자(2명)	239,506	22		109,597,946
초급기술자(4명)	191,320	47		187,034,432
직접인건비 합계				391,902,51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431,092,76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64,599,056
부가세(10%)				98,759,434
합계				1,086,353,769

※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노임단가 적용

○ 나이스 총괄센터 회선료: 199백만원

- 4회선 * 4,146천원 * 12개월 = 199백만원

○ 나이스 총괄센터 기반시설(항온항습기, UPS 등) 운영·관리: 479백만원

산출 내역

-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 **37백만원**
- 기반시설(항온항습기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보수 : **115백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산정 근거>
- 항온항습기 및 UPS 등 21종 : 3,131백만원(도입금액) × 6%(유지보수요율) × 50%(분담) = 94,000천원
  ※ 항온항습기 및 UPS 등 21종(188백만원)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운영부와 50%씩 분담
- 지능형 통합배선외 4종 : 145백만원(도입금액) × 10%(유지보수요율) × 50%(분담) = 7,250천원
  ※ 지능형 통합배선외 4종(87백만원)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스템운영부와 50%씩 분담
- DID, 통합콘트롤 등 관제 부대장비 유지보수 비용 = 13,258천원

- 전산기기 및 소방방재 보험료 : 667천원*12개월=**8백만원**
- 조달수수료 및 운영자 교육비 : **69백만원**
- 전기료 : 208,340천원*12개월=**250백만원**
  ※ 년간 사용량 1,521,473KW : 약 245,745,809원

3-3. 나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반 고도화 : 1,645백만원

□ 나이스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반 고도화 : 1,645백만원

○ 나이스 총괄센터 노후 보안 장비 교체 : 1,245백만원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27식 * 46,111천원 = 1,245백만원

산출 내역

구분	종류	금액(단가)	도입년도	수량(식)	금액(백만)	교체사유
네트워크	라우터	150	2008	2	300	노후화 EOS EOL
	백본	80	2010	2	160	
			2011	2	160	
	L4	40	2009	6	240	
	L2	5	2010	3	15	
			2011	4	20	
소계				19	**895**	
보안	방화벽	45	2011	2	90	노후화 EOS EOL CC인증 만료
	웹방화벽(가시성)	45	2011	2	90	
	IPS	45	2008	2	90	
	VPN	40	2010	2	80	
소계				8	**350**	
합계				27	**1,245**	

※ EOS(End of Services) :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 EOL(End of Lifecycle) : 제조사 생산 종료, CC인증 : 보안장비의 적합성 평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시스템 보안수준 진단: 300백만원

- 나이스 시스템 보안수준 진단 및 개선 대책 마련

산출 내역

구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투입공수(MM)	한달 일수	금액(원)
고급기술자(2명)	305,353	5	20.8	31,756,712
중급기술자(2명)	239,506	5		24,908,624
초급기술자(2명)	191,320	13		51,732,928
직접인건비 합계				108,398,26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119,238,090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5,527,271
부가세(10%)				27,316,363
합계				300,479,988

※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노임단가 적용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 및 유지: 100백만원

- 정보보호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 감사 컨설팅: 93백만원

산출 내역

구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투입공수(MM)	한달 일수	금액(원)
고급기술자(1명)	305,353	2	20.8	12,702,685
중급기술자(1명)	239,506	1		4,981,725
초급기술자(2명)	191,320	4		15,917,824
직접인건비 합계				33,602,234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36,962,45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14,112,938
부가세(10%)				8,467,763
합계				93,145,392

※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노임단가 적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수수료: 7백만원

산출 내역

- '19년 : 연장 심사 수수료 6,720천원
  ※ 20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심사 수수료 적용

【4.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운영(교육학술인프라영역)】

교육·학술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 4,747백만원

4-1. KERI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 10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운영 : 29백만원

○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인프라 유지보수 : 29백만원

- 직원 PC 개인정보 관리 S/W라이선스 :12백만원

※ 30천원(S/W라이센스)*400대 PC = 12백만원

- 개인정보 웹필터 H/W 및 S/W 유지보수 : 17백만원

※ 산출근거 : 161백만원('13년, 도입비)x10.5%(통합 유지보수요율)=17,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운영 : 4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협의회 운영·관리 : 6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협의회 : 600천원*10회=6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1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전체 임직원 교육 : 2,000천원*1회=2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1,000천원*8회=8백만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 32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일제 정비 및 내부 감사 : 2,000천원*8식=16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10,000천원*1회=10백만원

※ 기관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대상(교육부 개인정보 수탁 대상 제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훈련 : 6,000천원*1회=6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 28백만원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 : 28,000천원*1종=28백만원

구 분	평균임금(일단위)	투입공수(M/M)	한달일수	금액(원)
고급기술자	276,160원	1	21	5,973,240
초급기술자	190,787원	1		4,006,590
직접인건비 합계				9,979,83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0,977,81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4,191,529
합 계 (부가세 포함)				27,664,089

4-2.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직원업무시스템 운영 : 4,642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 : 4,029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및 상황실 운영 : 2,339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91,750천원 * 12월 = 2,301백만원

구 분	평균임금(일단위)	투입공수(M/M)	한달일수	금액(원)
고급기술자	284,400원	1	21	72,686,880
중급기술자	226,537원	4		228,349,296
초급기술자	190,790원	11		528,869,880
직접인건비 합계				829,906,056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912,896,661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348,560,544
합 계 (부가세 포함)				2,300,499,587

※ 2017년도 SW기술자 노임단가(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반영

- 전산장비 보험 및 도메인 유지비 등 37,990천원*1식 = 38백만원

※ 전산장비 보험료, 도메인 등록 연장, 통신망 유지 수수료, 전산소모품 등

구 분	내 역	금액(천원)
장비 보험료	·전산장비 도입액 x 보험 요율	8,000
도메인 유지비	·30천원 x 60개	1,800
통신망 관리비	·관리 분담금: 3,270천원, IP주소 수수료: 300천원 ·망식별번호(AS) 수수료 : 330천원 x 2개 = 660천원	4,230
ISO 20000 인증유지	·인증심사비 : 7,260천원, 인증유지비 : 1,100천원 ※ ISO 20000 : 국제 표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제	8,360
전산소모품비	·백업미디어, 통신 케이블 등 : 1,200천원 x 12개월	14,400
통신설비 관리비	·전산센터 통신설비 관리 : 100천원 x 12개월	1,200
계		37,990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H/W 유지관리 : 1식 x 9,531백만원 x 5.99% = 571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 5,215,060천원*10%=521백만원

※ DBMS, 웹서버S/W, 보안SW 등 총 281식 (대상 전년대비 1% 증가)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통신회선료 : 12,224천원*12개월=147백만원

※ 서비스 통신 주회선(한국교육전산망 1Gbps기준) 5,550천원 * 2회선 * 12개월 = 133백만원

※ 모니터링 회선(한국교육전산망 10Mbps기준) 141천원 * 8회선 * 12개월 = 14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전기료 30,000천원 * 12개월 = 360백만원

- 정보시스템, 항온항습, 상황실 전기료 30,000천원*12개월=360백만원

※ 기반설비 전기절감 노력으로 전년대비 평균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8% 감소분을 반영

○ 노후 시스템 교체 및 인프라 안정화 : 76백만원

- 노후 시스템 교체 : 38,000천원 * 1식 * 2종 = 76백만원

○ KERIS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 15백만원

- EAMS 유지보수 152,460천원 * 10% = 15백만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요율제 유지보수 기준 적용

□ KERIS 직원업무시스템 운영 : 613백만원

○ 원내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 68백만원

- 원내 업무시스템 유지관리료 : 68,096천원 * 1년 = 68백만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요율제 유지보수 기준 적용

구 분	SW개발비(천원)	유지관리 난이도	유지관리 요율	유지관리료
전자결재시스템	200,435	85	14.25%	31,412
경영정보시스템	100,000	85	14.25%	14,250
품질경영정보시스템	69,190	65	13.25%	9,168
인사평가시스템	75,000	45	12.25%	9,188
감사시스템	20,460	75	13.75%	2,813
채용관리시스템	11,000	30	11.50%	1,265
계				68,096

○ 원내 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 20백만원

- 인사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 20,029천원 * 1종 = 20백만원

단계	총기능 점수	단 가	보정 계수				금액(원)
			언어	형태	규모	품질	
분석	40.0	98,648	1.1	1.00	0.65	1.075	2,757,200
설계		124,609					3,482,814
구현		166,145					5,015,252
시험		129,801					3,918,165
개발원가 합계							15,173,431
이윤(20%)							3,034,686
부가가치세(10%)							1,820,812
총 개발비							20,028,928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기능점수 방식 기준 적용

○ 직원업무 PC 망분리 체체 고도화 : 1식 x 525백만원 = 525백만원

- 망간자료 전송 및 처리시스템 : H/W 2식, S/W 1식 = 114백만원

항목	내역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조달물품번호
망연계 솔루션	망연계 H/W	휴네시온 I-oneNet 3.0 망연계	2	99,000	22984133
	파일전송 라이선스	휴네시온 I-oneNet 3.0 파일전송 라이선스(300user)	1	15,000	23182987
계			3	114,000	

-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 H/W 5종 16식, S/W 9종 26식 = 411백만원

항목	내역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조달물품번호	비고
네트워크	스위치	Cisco 3850 24T-S	8	41,840	22512632	H/W
보안장비	방화벽	Secui MF2 1510	2	60,600	23082634	H/W
	IPS	Ahnlab IPX 4000A	2	77,462	23055854	H/W
	웹방화벽	모니터랩 WIWAF-200	2	50,400	23260375	H/W
	유해사이트 차단솔루션	eWalker Security V7	2	31,680	22827660	S/W
보안솔루션	개인정보 보호	PCFILTER 2.0 Agent(300user)	1	12,000	22486468	S/W
		PCFILTER 2.0 매니저	1	9,500	22486469	S/W
		IBM x3650 M5(매니저 서버)	1	9,600	23098032	H/W
	자료저장 방지	DaLoc v2.0(300user)	1	16,500	23124322	S/W
	자료유출 방지솔루션 (DLP)	소만사 Privacy-i V5.0 for DLP+ HyBoost Agent(300user)	1	17,820	23050351	S/W
		소만사, Privacy-i V5.0 for DLP+ HyBoost, Server	1	12,870	23050349	S/W
		IBM x3650 M5(매니저 서버)	1	9,600	23098032	H/W
	OTP 솔루션	라온시큐어, TouchEn mOTP - PC, IOS, Android	3	47,520	23326782, 23326783, 23326784	S/W
기타	복합기	Canon C1325	16	44,000	22994128	H/W
계			42	411,392		

【5. 실증기반 정책·저작권·표준화 연구를 통한 미래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보화 영역 실증자료 기반의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 및 저작권, 교육·학술정보 표준화 : 1,186백만원

5-1. 실증자료 기반 정책지원 연구 강화 : 550백만원

□ 정책현안 연구 및 지원 : 310백만원

○ 교육정보화 정책지원 현안 및 기초 연구 : 40,000천원*3종=120백만원

○ 교육정보화 정책 현안 분석 이슈리포트 : 10,000천원*5종=50백만원

○ 교육정보화 심포지움 개최 : 65,000천원 * 1회 = 65백만원

○ 미래교육 포럼 운영 : 1,000천원 * 10회 = 10백만원

○ 2019 교육정보화 백서 발간 : 65,000천원 * 1종 = 65백만원

□ 교육정보화 현황 수준 측정 : 120백만원

○ 학생 ICT 리터러시 수준 진단 조사 : 60,000천원*1종=60백만원

○ 학교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 : 30백만원

○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점검 및 시행계획 분석 : 30,000천원 * 1종 = 30백만원

□ IT융합 신기술 기반 미래교육 연구 : 120백만원

○ 미래교육 대비 IT융합 신기술 연구 : 60,000천원*1종=60백만원

○ 미래 학습 모델 및 산학연 상생 방안 연구 : 60,000천원*1종=60백만원

5-2. 교육·학술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 : 636백만원

□ 교육학술정보 표준화 R&D : 143백만원

○ 에듀테크 R&D 표준 연계 : 50백만원

- 교육과정-학습분석 연계 생태계 기반 구축 : 50,000천원*1종=50백만원

○ 교육 및 학술 분야 표준개발위원회 운영 : 5백만원

- 표준개발위원회 운영 : 1,000천원 * 5회 = 5백만원

※ 교육 및 학술 분야 표준화 수요조사 및 국가표준(KS)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2008.10

○ 국제 민간 표준화기구 협력 및 대응 : 67백만원

- IMS Global 연회비($55,000) : 62,000천원 * 1회 = 62백만원
- 표준 부합화 : 5,000천원 * 1 종 = 5백만원

※ 연회비에는 국제 표준의 활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지적재산권 공유가 포함됨

○ 학습 분석 기술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개최 : 21백만원

- 컨퍼런스 : 15,000천원 * 1회 = 15백만원
- 워크숍 : 6,000천원 * 1회 = 6백만원

※ 행사기간 : 2일(1일차: Learning Analytics Summer Institute(LASI)-Korea, 2일차: 기술 이전 워크숍)

□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운영 : 193백만원

○ 교육기관 저작권 현안 지원 : 60백만원

- 저작권 법률 자문 지원 : 3,000천원 * 10월 = 30백만원
-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 : 30,000천원 * 1종 = 30백만원

○ 교육기관 대상 저작권 교육 강화 : 133백만원

- 저작권 집합 연수 : 665천원 * 50명 * 4회 = 133백만원

□ 교육 분야 新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 : 300백만원

○ 지능형 교수·학습 분석 기술 개발 및 적용 : 100백만원

- 기계학습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적용 : 50,000천원*1종=50백만원

※ 기존의 분석모델(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학습 규칙 및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 연구

- 개별화된 학습 경로 추론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적용 : 50,000천원*1종=50백만원

※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수준을 측정하여 개별화된 학습 경로 및 자원을 추천하는 규칙

○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기술 평가 및 활용가능성 진단 : 60백만원

- 국내외 교육분야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사례조사 및 대상 교과·주제 선정 : 20,000천원 * 1종 = 20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샘플 콘텐츠 개발 : 20,000천원*2종(모바일)=40백만원

※ 국내 및 해외의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활용 및 확산 가능성을 진단하고 샘플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작 방향을 제시

○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파일 변환체계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발 : 72백만원

- 산학연 전문가 R&D 협의체 운영 : 2,000천원 * 6회 = 12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파일 포맷 조사 및 변환 프로토타입 연구(1종) : 60,000천원 * 1종 = 60백만원

※ 현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되는 IoT 기반 콘텐츠가 각기 다른 형식의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작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제작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타입 개발 및 검증

○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휴먼 팩터 조사: 68백만원

- 사물인터넷(IoT) 콘텐츠 휴먼 팩터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35,000천원 * 1종 = 35백만원
- 샘플 콘텐츠 개발 및 적용 : 11,000천원 * 3종 = 33백만원

【6. 고객지향적 경영선진화 실현】

경영관리 기법 체계화, 대내외 기관 평가 및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통합콜센터 운영,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 1,141백만원

6-1. 소통과 협력의 경영체제 확립 : 270백만원

□ 소통과 협력의 경영체제 확립 : 270백만원

○ 기관 경영전략 수립 및 사업기획 : 25,000천원*1회=25백만원

○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및 예산심사분석 : 30,000천원*2회=60백만원

○ 제도 개선 및 경영프로세스 체계 개발·운영 : 35,000천원*2회=70백만원

○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내부 성과관리체제 운영 : 40,000천원*1회=40백만원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 40,000천원*1회=40백만원

○ 반부패·청렴체제 운영 강화 : 35,000천원*1회=35백만원

6-2. 통합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기관 홍보체제 강화 : 574백만원

□ 기관 통합고객만족센터 운영 : 475백만원

○ KERIS 통합 고객만족센터 운영 : 3,119천원*12.05MM*12월=451백만원

[산출근거]
- KERIS 통합고객만족센터 운영 **: 88백만원**
  · (요구) : 3,119천원*14.4MM*12월=539백만원(전년동수준)
  · (한도내반영) : 3,119천원*12.05MM*12월=451백만원

○ 통합 고객만족센터 상담서비스 교육 : 2,000천원*12월=24백만원

□ 기관 홍보체제 강화 : 99백만원

○ 기관 홍보물 기획 발간 : 10,000천원*4종=40백만원

※ 연차보고서, 브로셔, 팜플렛, 단막 영상자료 등 주요 홍보물 제작

○ 자료실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 유지보수 : 10,000천원*1종=10백만원

※ 자료실 통합관리 프로그램, 키오스크, E/V 영상 패널 등

○ 기관 언론홍보 기사 검색 및 기사집 발간 : 15,000천원*1종=15백만원

○ 기관 홈페이지 위탁운영 : 1식*34,000천원=34백만원

6-3. KERIS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 297백만원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 **122백만원**

○ 종합교육연수원 웹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고도화 : 122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및 품질관리** : **175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 35,000천원*1회=35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지원 : 80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원 담당자 역량강화 : 20,000천원*2회=40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원 신규인가 심의 : 10,000천원*1회=10백만원
- 원격교육연수원 발전 포럼 운영 : 10,000천원*3회=30백만원

○ 원격교육연수 이수자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60백만원

【7.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 구축(2차년도)】

공공기관 선진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ERP) 구축 : 300백만원

□ **통합경영정보 시스템(ERP) 개발(기능점수 방식)** : 300,000천원*1식 =300백만원

사업 주요 내용

❍ 현재, 2017년 KERIS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차년도)* 출연금 확보를 통해 사업이 추진중이며, 기관 경영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예산·재무·자산관리 영역에 대한 2차 사업** 추진이 조속히 필요함

* 1차년도 사업영역 : 인사관리, 복무관리, 채용관리, 급여관리, 연말정산관리, 코드관리 등

** 2차년도 사업영역 : 예·결산관리, 회계관리, 계약·구매관리, 자산관리, 외부기관 연계 등

❍ 공공기관 선진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필요성 증대 및 국회 등 외부 요구 자료에 대한 경영정보데이터 산출시 데이터 정확성 확보 필요

【8.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 인센티브 예비비 : 636백만원

□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B등급 기준)** : 636,000천원*1회=636백만원

※ 기존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를 2019년부터 사업비에 편성(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6,879백만원	37,317백만원
▪ **인건비**	14,970백만원	14,970백만원
▪ **경상비**	1,996백만원	1,996백만원
▪ **사업비**	21,409백만원	21,847백만원
- 에듀넷 서비스 운영(초중등교육영역)	2,724백만원	2,725백만원
- 학술정보 서비스 운영(고등교육영역)	3,754백만원	4,114백만원 ※ 대학공개강의 공동활용 서비스(KOCW) 운영 : 410백만원
- 교육행정 서비스 운영(교육행정영역)	6,998백만원	6,998백만원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운영(교육학술인프라 영역)	4,817백만원	4,747백만원
- 실증기반 정책, 저작권, 표준화 연구를 통한 미래교육지원 강화	1,244백만원	1,186백만원
- 고객지향적 경영선진화 실현	1,172백만원	1,141백만원
- 통합경영정보시스템 (ERP) 구축	700백만원	300백만원
-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	636백만원
▪ **자체수입**	△1,496백만원	△1,49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교육·학술연구 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 연구 및 성과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

- ´18년 SW교육 전면시행 등 교육정책의 효과적·지속적 수행 지원
- 학술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외부 콘텐츠 보유기관·생산기관과의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학술정보 접근성 확대 및 연구 인프라 제고

※ 학술정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SAM) :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아이어워드 특별대상 수상('17), 장애인 학술정보 접근성 강화 : 제10회 대한민국소셜미디어 준정부기관부문 대상 수상('17)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정부시책을 반영한 사업수행으로 성과 극대화

※ 에듀넷 서비스 장애인 재택 모니터요원 처우개선으로 기재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Contest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 우수사례 선정('17)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및 타 기관 연계 등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교육행정 업무 효율화 및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 국민이 직접 뽑은 '전자정부를 빛낸 우수서비스 10선'에 '나이스' 선정('17)

※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 '나이스' 선정('18)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4,704**	**36,879**	**37,317**	**438**	**1.2**
■ 인건비	14,273	**14,970** (207명×72.3백만)	**14,970** (207명×72.3백만)	-	-
■ 경상비	1,994	**1,996** (207명×9.6백만)	**1,996** (207명×9.6백만)	-	-
■ 자체수입	△1,496	△**1,496**	△**1,496**	-	-
■ 사업비	19,933	**21,409** (17개×1,259.4백만)	**21,847** (18개×1,217.7백만)	**438**	**2.0**
□ **출연금**(350)	**34,704**	**36,879**	**37,317**	**438**	**1.2**
○ 기관운영출연금(350-01)	16,267	16,966	16,966	-	-
○ 사업출연금(350-02)	18,437	19,913	20,351	438	2.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식기반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반 강화 및 스마트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정보 유통체제 조성

○ 참여형 지식정보 디지털유통체계 확대 및 국내·외 학술연구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

○ 교육행정정보화 체계 안정운영기반 마련 및 지방교육재정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고도 활용체계 조성

○ 국제기준의 표준화된 교육학술 정보자원 관리체제 정착 추진과 교육학술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및 고도화

○ 교육정보산업 컨설팅 지원 및 교육서비스 해외 수출 기반 마련과 실증자료 기반의 교육학술분야 정책연구 및 지원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4,704	■ 인건비 : 14,273백만원(70.7백만원*202명) ■ 경상비 : 1,994백만원(9.9백만원*202명) ■ 사업비 : 19,933백만원(1,172.5백만원*17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
'18	36,879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409백만원(1,259.44백만원*17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36,879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409백만원(1,189.4백만원*18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35,726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0,256백만원(1,191.5백만원*17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37,317	■ 인건비 : 14,970백만원(77.4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9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847백만원(1,213.7백만원*18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1,591
'20	36,083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0,613백만원(1,212.5백만원*17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36,879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409백만원(1,189.4백만원*18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796
'21	36,443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0,973백만원(1,233.7백만원*17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36,879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409백만원(1,189.4백만원*18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436
'22	-		36,879	■ 인건비 : 14,970백만원(72.3백만원*207명) ■ 경상비 : 1,996백만원(9.6백만원*207명) ■ 사업비 : 21,409백만원(1,189.4백만원*18개과제) ■ 자체수입(△) : △1,496백만원	36,879
연평균 증가율 (%)	1.2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6,879	37,317	438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합계 : 111**	**합계 : 146**	**35**
			① 53	① 73	20
			② 24	② 32	8
			③ 34	③ 41	7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33.2명	25.6명	△7.6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① 사업 예산 총액 ÷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51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사업관련전문서비스) ② 사업비 중 경직성 경비(유지보수 및 위탁운영비, 정보화전략계획, 정보화 사업 등)를 지출한 고용효과 산출 ③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위탁 사업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 -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운영 인력 고용 창출 - 노후화 장비 교체에 따른 도입 장비별 구축 인력 고용 창출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73명 ② 학술정보서비스(24명), 학술정보서비스 ISP 수립(5명), KOCW 운영(3명) ③ 노후화 장비 교체 및 구축에 따른 민간 고용 7명(추가) + 34명(기존) **□ 2018년 고용효과** ① 53명 ② 학술정보서비스 : 24명 ③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연 34명 상주 고용(간접)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연도별 고용효과 산출 실적 지속 관리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활성화 유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사업 분야	근거법령 및 규정
총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99. 1, 법률 제5686호) ■ 지식정보자원관리법('00. 1, 법률 제6232호)
초중등 교육정보화 활성화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4('08. 6, 법률 제8917호) ■ 학교도서관진흥법('07. 12, 법률 제8677호)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08. 7, 대통령령 제20942호)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 5, 지식경제부)
고등교육 및 학술정보화 활성화	■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09-2013('08. 8,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정보화활성화 종합방안('02. 1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술정보화의 세계화	■ 교육정보화 3단계 발전방안('06. 8, 교육인적자원부) ■ e-러닝 국제협력단 설치.운영 방안('05. 11,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학술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선진화	■ 전자정부법('16. 2, 법률 제13459호)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13. 5, 대통령훈령 제310호) ■ 교육(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07. 10, 교육인적자원부) ■ 개인정보보호법률('16. 9, 법률 제14107호)
교육행정서비스 혁신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30조의 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0조의 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08. 3, 교육과학기술부령) ■ 나이스 총괄센터운영 위탁협약 체결 및 업무인수인계 ('04. 7, 교육인적자원부)

○ 추진경위

■ '96. 9 : 국내 최초 인터넷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에듀넷 개통
※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96. 6. 21 설립
※ 한국교육방송원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 '97. 3. 21 설립
■ '98. 5 :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RISS) 개통
※ 한국학술진흥재단 부설 첨단학술정보센터(KRIC), '96. 12. 26 설립
■ '99. 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KMEC과 KRIC을 통합)
■ '01. 3 :「교육학술분야 종합정보센터」지정(정보통신부)

■ '02. 4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앙총괄센터」지정
■ '04. 12 :「초중등교육정보 메타데이터」국가표준규격(KS X 7001)획득
■ '05. 12 : 홈에듀(온라인 교육행정민원서비스) 개통
■ '06. 3 :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통
■ '07. 1 : 제1회 UNESCO-바레인 국왕 교육정보화상 수상
■ '08. 2 :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 개통
■ '08. 10 : 국제 표준의 날 '국무총리 상' 수상(이러닝 표준 개발)
■ '08. 11 :「국가 표준개발 협력 기관」지정(지식경제부)
■ '08. 12 :「Clean & Green Education」운동 선포
■ '09. 6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지정(교육과학기술부)
■ '09. 12 : KERIS 주도 교육정보표준, 국제표준으로 최초 제정
■ '10. 3 :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전국서비스 개통
■ '10. 4 : 전자출판물 표준화 포럼 사무국 지정
■ '10. 8 : 교육학술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통(사이버가정학습, KOCW 등)
■ '10. 9 : 2010 이러닝 Week(국제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 '10. 11 : 교육정보 콘텐츠 공동이용 그랜드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정
■ '11. 3 :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 '11. 6 :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수립
■ '11. 1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7대 원장 김철균 취임
■ '12. 6 :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12. 8 : e-교과서 인터넷 보급
■ '12. 9 : 유치원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유치원알리미」개시
■ '12. 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8대 원장 임승빈 취임
■ '12. 12 : 전자책(EPUB) 및 관련표준(HTML5, CSS) 국가표준(KS) 제정
■ '12. 12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13. 5 :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3 대상(Platinum) 수상
■ '13. 6 : 공공기관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13. 1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 신청사 개청식
■ '14. 1 : 2013 반부패 경쟁력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국민권익위원회)
■ '14. 6 : 공공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 '16. 12 : 에듀넷 '정부3.0서비스 알리미' 최우수상 수상(행정자치부)
■ '17. 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교육연수원 인가(교육부)
■ '17. 9 : 교육 저작권 지원센터 지정(교육부)

[참고]
■ '96. 9 : 국내 최초 인터넷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에듀넷 개통
■ '98. 5 :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RISS) 개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10	311	-	323	-	347	-	3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11** **(311)**	- ( )	- ( )	311 (311)	**311** **(311)**	- ( )	- ( )
'16년	**323** **(323)**	- ( )	- ( )	323 (323)	**323** **(323)**	- ( )	- ( )
'17년	**347** **(347)**	- ( )	- ( )	347 (347)	**347** **(346)**	- ( )	- (1)

※ '17년도 실집행액 89백만원(낙찰차액 및 기관운영비 절감에 따른 잔액) 불용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4,704	-	36,879	-	36,879	36,879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집행액(교부액) : 총 36,879백만원(인건비 및 경상비 : 16,966백만원, 사업비 : 19,913백만원

▪ 실집행액('18.12.12.기준) : 총 31,860백만원(인건비 및 경상비 14,942만원, 사업비 16,918백만원)

※ 대부분이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월 단위로 지급, 발주 사업의 경우 선급금과 잔금의 비율이 보통 3:7로 사업 검수가 끝나는 연말에 예산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15회계연도) : 우수 / 80점

▪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2016회계연도) : 보통 / 85점

▪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2017회계연도) : 보통 / 87점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구 분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비 고
2010년	A	52.230/55	우수기관
2011년	A	56.133/60	우수기관
2012년	A	56.584/60	우수기관
2013년	A	52.907/55	우수기관
2014년	B	48.331/60	-
2015년	B	50.889/60	-
2016년	C	47.414/58.5	-
2017년	B	83.5/105	-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유형내(강소형기관) 1위 달성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문부과학성 : 학생용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

▪ 일본 과학기술전송기구(독립행정법인) : 디지털교재연구

▪ 미국 연방정부, e-러닝을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로 천명

▪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캐나다 Athabasca University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통해 약 20개의 대학원 과정과 약 60개의 학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

▪ 미국 MIT는 2001년 6월부터 공개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0여개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 미국 OCLC는 84개국 50,000개 이상의 도서관에 정보 네트워크를 설치 서비스

▪ 호주 The Connected Classrooms Program(NSW주) : 주교육청 주도로 온라인 학습 커리큘럼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6)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교부 신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출연금 교부(교육부) ⇒ 사업집행(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업집행 결과보고(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교육정보 서비스 활용성과 (만건)	목표	'15년 신규지표	2,778	4,621	6,748	8,873	2015년 실적치 대비 21.2% 향상된 4,621만 건을 2016년 목표로 설정	에듀넷 및 교육정보 공유체제를 통해 유통되는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의 이용 수로 산정	교육정보공유 체제 통계 (에듀넷 활용 현황 통계) 시스템
	실적	2,751	3,813	5,430	8,066	-			
	달성도	-	137.3	117.5	119.5	-			
② 학술정보 서비스 활용성과 (만건)	목표	'15년 신규지표	3,583	4,558	6,047	6,917	2015년 실적치 대비 15.9% 향상된 4,558만 건을 2016년 목표로 설정	민간 포털 등 외부 기관이 RISS의 개방된 콘텐츠 활용 실적, 학술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문콘텐츠를 활용한 수의 합으로 산정	RISS 이용통계 시스템
	실적	3,186	3,934	5,117	6,288	-			
	달성도	-	109.8	112.3	104.0	-			
③교육행재정 서비스 활용성과 (만건)	목표	'15년 신규지표	1,583	3,048	5,290	4,374	2015년 실적치 대비 33.2% 향상된 3,048만 건을 2016년 목표로 설정	교육행재정정보 (타기관 제공 정보 등 제공 및 학생서비스, 교육민원 발급 제공 수의 합으로 산정	나이스 운영시스템 대외연계현황 통계자료
	실적	1,195	2,289	3,972	3,976	-			
	달성도	-	144.6	130.3	75.2	-			
④교육학술 행재정정보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8.0	79.3	최근 3개년 만족도 조사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교육정보서비스, 학술정보서비스, 교육행재정정보 서비스 만족도의 합으로 산정 (항목별 가중치부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81.3	-			
	달성도	-	-	-	104.2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1200] 교육복지 증진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200] 교육복지 증진	204	**53,698**	**58,748**	**5,050**
[1205] 특수학교 운영지원(일반회계)	-	37,356	38,253	897
[110] 특수학교 인건비	-	32,308	32,723	415
[250] 특수학교 기본경비	-	5,048	5,530	482
[1231] 장애인교육지원(일반회계)	205	8,600	10,416	1,816
[300] 장애학생교육지원	205	8,600	10,416	1,816
[30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232	-	2,702	2,702
[1234]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일반회계)	253	7,742	7,199	△543
[300]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253	6,642	5,974	△668
[500]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정보화)	279	524	742	218
[650]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수입대체경비)	295	576	661	85

[300] 장애학생 교육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장애학생 교육지원	6,988	8,600	10,416	1,816	21.1

* 사업코드 : 12 - 11 - 0 - 50 - 051 - 1200 - 1231 - 300
* 담 당 자 : 학생지원국장(정인순), 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교육연구사(안상권),
(장애대학생도우미 사업 :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장(이홍열), 사무관 (신혜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교육연구사(홍숙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립특수학교(급) 보조원 운영 및 종일반,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 ○ 국립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전공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학생 치료교육지원비 지원 ○ 장애학생 학습보조 등을 위한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신규)
사업기간	'04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 1,100명 및 장애대학생 9,103명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부설학교 36교, 대학(전문대학 포함) * 국립특수학교(5교) :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장애아 교육지원 : 5,323백만원**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무기계약직) **인건비 3,355백만원**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하기 위해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산출내역 : **('18) 2,535백만원**(110명×23,000천원)
→ **('19) 3,355백만원** (110명 × 30,500천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과후학교* 운영)** 국립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교육비 **1,076백만원**

* 장애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학력증진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단, 특수학교 종일반 이용 희망 학생은 방과후교육에서 제외)

▪ 수요조사를 통한 국립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산출내역 : **('18) 1,076백만원**(1,100명×978천원) → **('19) 1,076백만원**(1,100명×978천원)

▪ **(종일반* 운영)** 국립 특수학교 종일반(18학급) 운영 인력 임금 및 운영비 **434백만원**

* 기초생활수급 가정, 차상위계층, 편부모,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정규 수업시간 이후 1일 4시간까지 학교에서 보살피는 일종의 돌봄학급(국립특수학교 5교에 총 18학급 설치)(단,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이용 희망 학생은 종일반에서 제외)

▪ 수요조사를 통한 국립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비 지원
· 산출내역 : **('18)327백만원**(18.2백만원×18학급) → **('19)434백만원**(24.1백만원×18학급)

▪ **(통학비* 지원)**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 통학비 **458백만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 교육감은 …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함

▪ 수요조사를 통한 국립 특수학교(급) 통학비 지원(학생 왕복 1회 및 학부모 왕복 2회)
· 산출내역 : **('18) 458백만원**(1,100명×416천원) → **('19) 458백만원**(1,100명×416천원)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사업 : 491백만원**

▪ **(국립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2/3년차)** 국립특수학교(한국경진학교) 학교기업 자립화 운영 지원 **50백만원**

▪ 국립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 국립특수학교 학교기업(한국경진학교)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3년간 5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 **('18) 50백만원**(1교×50백만원) → **('19) 50백만원**(1교×50백만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한국선진학교	50백만원	운영지원 종료			
서울맹학교	50백만원	운영지원 종료			
한국경진학교			50백만원(완료)	50백만원	50백만원(예정)

▪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청각장애 특수학교(서울농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확충 **50백만원**

▪ 국립특수학교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 산출내역 : **('18) 50백만원**(1교×50백만원) → **('19) 50백만원**(1교×50백만원)
※ 서울맹학교('15) → 한국우진학교('16) → 한국선진학교('17) → 한국경진학교('18) → **서울농학교('19) 순으로 연차적 지원 추진**

▪ **(국립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및 장애유형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국립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운영 **150백만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및 '18년부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 자유학기제 운영

· 산출내역 : **('18) 150백만원**(자유학기제 운영 5교×11백만원,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5교×19백만원)
→ **('19) 150백만원**(자유학기제 운영 5교×15백만원,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5교×15백만원)

▪ **(교과용도서 지원)**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 반영한 교과서(점자, 확대 교과서 등) 지원 **191백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의무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지원
· 산출내역 : **('18) 168백만원**(1,100명×152천원) → **('19) 191백만원**(1,100명×174천원)

▪ **(국립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국립특수학교 장애학생 생존수영, 통합스포츠, 문화예술 활동 1인1기(技) 및 동아리 운영 예산 **50백만원**

▪ 장애학생 생존수영 및 재능발견, 다양한 진로탐색을 노크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필요
· 산출내역 : **('19) 50백만원**(5교×10백만원)

○ **취약계층 학생지원 : 1,426백만원**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1,426백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 : **('18) 980백만원**(1,100명×74천원×12개월) → **('19) 1,426백만원**(1,100명×108천원×12개월)

○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 : 399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지원)** 국립특수학교 장애학생 교수·학습활동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99백만원**

· 산출내역 : **('18) 330백만원**(65명×5,077천원) → **('19) 399백만원**(65명×6,138천원)
· **산출 근거(1인당)**

- 상용임금(110-03) : **280백만원**(병무청 군인 평균 단가 월 359천원)
- 급량비(210-04) : **84백만원**, (평균근무일 22일, 1식 단가 6,000원 기준)
- 국내여비(220-01) : **35백만원**, (평균근무일 220일, 왕복 교통비 평균 2,400원 기준)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 2,477백만원**

▪ **(일반도우미 지원)** 대학 내에서 이동생활 지원 및 강의.보고서.시험 등 대필 지원 일반(일반인)도우미 사업비 **298백만원**

▪ 산출내역 : **('18)186백만원**(지원인원110명×330천원×6.4개월×국고지원80%)
→ **('19)298백만원**(지원인원116명×501천원×6.4개월×국고지원80%)

※ 다수도우미 지원방식에서 1인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장애대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우미 급여 현실화

▪ **(전문도우미 지원)**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한 교수.학습 지원 1,478**백만원**

▪ 산출내역 : **('18) 1,398백만원**(지원인원140명×1,560천원×8개월×국고지원80%)
→ **('19) 1,478백만원**(지원인원148명×1,560천원×8개월×국고지원80%)

▪ **(원격도우미 지원)** 인터넷 원격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강의 내용을 수어 통역 및 속기지원 540**백만원**

▪ 산출내역 : **('18) 540백만원**(지원인원25명×10개월×월2,160천원)
→ **('19) 540백만원**(지원인원25명×10개월×월2,160천원)

▪ **(사업 관리.운영)**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전담기관 운영 소요경비 161백만원

▪ 산출내역 : **161백만원**(인건비, 운영비 포함)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300백만원(신규)**

▪ **(거점대학 지원)** 거점대학 중심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교육을 위한 6개 권역 대학 지원 300백만원

▪ 산출내역 : **('19) 3,000백만원**(6개교×5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장애학생교육지원	**8,600**	**10,416**
▪ **장애아 교육지원**	**4,108**	**5,323**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110명, 단가 23백만원	110명, 단가 30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1,100명, 단가 978천원	1,100명, 단가 978천원
-종일반 운영 지원	18학급, 단가 18.2백만원	18학급, 단가 24.1백만원
-통학비 지원	1,100명, 단가 418천원	1,100명, 단가 418천원
▪ **학력증진사업**	**618**	**491**
- 국립특수학교 전공과 및 학교기업 운영	전공과 200백만원, 학교기업 50백만원	학교기업 50백만원
-중증장애학생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50백만원(1교×50백만원)	50백만원(1교×50백만원)
-국립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제(11백만원), 교수·학습프로그램(19백만원) x 5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5백만원), 맞춤형교수·학습프로그램(15백만원) x 5교
-교과용 도서 지원	1,100명, 단가 153천원	1,100명, 단가 174천원(교과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재능 및 진로탐색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반영(5교x10백만원)
▪ **취약계층학생지원**	**980**	**1,426**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980백만원(1,100명x74천원)	1,430백만원(1,100명x108천원) 치료비 시도평균 기준 지급을 위한 증액
▪ **사회복무요원 지원**	**330**	**399**
-사회복무요원지원	인원 65명, 단가 507천원	인원 65명, 단가 613천원 (일병월급 기준으로 인상 반영)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2,276**	**2,477**
-일반학습도우미	지원인원 110명, 186백만원	지원인원 116명, 298백만원
-전문학습도우미	지원인원 140명, 1,398백만원	지원인원 148명, 1,478백만원
-원격학습도우미	지원인원 25명, 540백만원	지원인원 25명, 540백만원
-사업관리 운영	152백만원	161백만원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300**
-거점대학 지원		6개교×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장애아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의무.무상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종일반 및 방과후교육비, 통학비 등) 필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기준 반영,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서 기준 준수(교육부장관 서명, '17.12.9.) 위한 인건비 증액(23백만원/1인 → 30백만원/1인)
-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 운영) 국립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및 종일반 운영비 지원시 최저임금 인상율 및 학교회계직원 보수표 기준 적용 필요
- (통학비 지원) 수요조사를 통한 국립 특수학교(급) 통학비 지원(학생 왕복 1회 및 학부모 왕복 2회)시 대중교통비 인상율 및 희망 수요 반영 필요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 (학교기업 운영 지원 2/3년차) 국립특수학교 학교기업(한국경진학교)의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3년간 50백만원 지원
- 서울농학교(청각장애학교) 교수.학습 기자재 지원* 및 국립특수학교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예산 필요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학교별 중점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 : 서울맹학교('15) → 한국우진학교('16) → 한국선진학교('17) → 한국경진학교('18) 순으로 학교별 연차적 지원 추진

- (자유학기제 및 교수학습 프로그램) 국립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수학습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선도적 운영을 위한 지원비 필요
- (교과용 도서)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 반영한 교과서(점자, 확대 교과서 등) 보급 비용 지원 필요
  - 의무교육 및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 지원 필요
    ※ 공·사립학교의 경우 '교과서 지원' 사업으로 편성

○ **(취약계층 학생지원)** 특수교육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의무교육*, 장애영아 및 전공과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지원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학생의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부족한 특수교육보조원의 대체지원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운영 필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인 특별전형 시행 후('95~)늘어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 도우미 지원필요

※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 : ('15) 8,598명 → ('16) 8,747명 → ('17) 9,103명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대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지원 부족으로 취업률은 점점 저조해지고 있으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재학으로 개별 학교 차원의 지원이 곤란하여 거점대학 운영 필요

※ 장애대학생 취업률 : 42.37%('15) → 45.33%('16) → 35.33%('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17, 교육부)

※ 10명 미만의 학교 209개교, 50명 이상이 있는 학교는 19개교에 불과 ('17, 대학정보공시)

< 세부 내역 >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장애학생 교육지원**	**6,988**	**8,600**	**10,416**	1,816	21.1
① **장애아교육지원**	**4,108**	**4,396**	**5,323**	927	21.1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2,306 (110명x20.96백만원)	2,535 (110명x23.048백만원)	3,355 (110명x30.5백만원)	820	32.4
▪ 방과후학교 운영	1,076 (1,100명x0.98백만원)	1,076 (1,100명x0.98백만원)	1,076 (1,100명x0.98백만원)	-	-
▪ 종일반 운영 지원	304 (18학급x16.9백만원)	327 (18학급x18.15백만원)	434 (18학급x24.1백만원)	107	32.7
▪ 통학비 지원	422 (1,100명x0.38백만원)	458 (1,100명x0.42백만원)	458 (1,100명x0.42백만원)	-	-
②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	**368**	**618**	**491**	△127	△20.6
▪ 국립특수학교 전공과, 학교기업 운영	-	250 (1교x250백만원)	50 (1교x50백만원)	△200	△80.0
▪ 중증장애학생 교수학습 기자재 구입	50 (1교x50백만원)	50 (1교x50백만원)	50 (1교x50백만원)	-	-
▪ 자유학기제,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	150 (5교x30백만원)	150 (5교x30백만원)	150 (5교x30백만원)	-	-
▪ 교과용도서 지원	168 (1,100명x0.15백만원)	168 (1,100명x0.15백만원)	191 (1,100명x0.17백만원)	23	13.7
▪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	-	50 (5교x10백만원)	50	순증
③ **취약계층 학생 지원**	**-**	**980**	**1,426**	446	45.5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	980 (1,100명x0.89백만원)	1,426 (1,100명x1.3백만원)	446	45.5
④ **사회복무요원 운영**	**236**	**330**	**399**	69	20.9
▪ 사회복무요원 운영	236	330	399	69	20.9
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2,276**	**2,276**	**2,477**	201	8.8
▪ 일반 학습도우미 지원	186 (110명x2.11백만원x0.8국고지원)	186 (110명x2.11백만원x0.8 국고지원)	298 (116명x3.21백만원x0.8 국고지원)	112	60.2
▪ 전문 학습도우미 지원	1,398 (140명x12.48백만원x0.8 국고지원)	1,398 (140명x12.48백만원x0.8 국고지원)	1,478 (148명x12.48백만원x0.8 국고지원)	80	5.7
▪ 원격 학습도우미 지원	540 (25명x21.6백만원)	540 (25명x21.6백만원)	540 (25명x21.6백만원)	-	-
▪ 사업관리운영	152	152	161	9	5.9
⑥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	**300**		순증
▪ 거점대학지원	-	-	300 (6개교×50백만원)		
□ **비목(합계)**	**6,988**	**8,600**	**10,416**	1,816	21.1
○ 상용임금(110-03)	148	262	345	83	31.7
○ 일반수용비(210-01)	-	35	33	△2	△5.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0	50	50	-	-
○ 급식비(210-04)	94	84	84	-	-
○ 학교운영비(210-10)	4,426	5,744	7,190	1,446	25.2
○ 일반용역비(210-14)	2,159	2,124	540	△1,584	△74.6
○ 국내여비(220-01)	37	35	35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2,076	2,076	순증
○ 고용부담금(320-09)	7	9	11	2	22.2
○ 자산취득비(430-01)	67	257	52	△205	△79.8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립 특수학교(급) 보조원 운영 및 종일반,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

○ 국립특수학교 장애유형별 교수·학습프로그램 운영, 교과용도서 등 지원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및 특수교육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대학·사회)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988	▪ 장애아교육지원 4,108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368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236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276			
'18	8,600	▪ 장애아교육지원 4,396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618 ▪ 취약계층 학생지원 980* *내역사업이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 장애학생 교육지원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30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276	8,600	▪ 장애아교육지원 4,396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618 ▪ 취약계층 학생지원 980* *내역사업이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 장애학생 교육지원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30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276	
'19	8,600	▪ 장애아교육지원 4,396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618 ▪ 취약계층 학생지원 980* *내역사업이관: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사업 → 장애학생 교육지원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30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276	10,416	▪ 장애아교육지원 5,323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491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4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477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300	1,816
'20	15,480	▪ 장애아교육지원 7,323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991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4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5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841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2,300	7,925	▪ 장애아교육지원 4,022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400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0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1,778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300	△7,555
'21	15,480	▪ 장애아교육지원 7,323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991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4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5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2,841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2,300	7,766	▪ 장애아교육지원 4,022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400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0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1,778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141	△7,714
'22			7,689	▪ 장애아교육지원 3,945 ▪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지원 400 ▪ 장애학생 치료지원비 1,026 ▪ 특수교육 사회복무요원지원 399 ▪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1,778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141	
연평균 증가율 (%)	22.0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920	4,431	1,51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1	169	5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38	38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44.3[1] ÷ 0.2628억원[2] = 168.6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320-09)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사업지원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2628억원 적용 □ **2018년 고용효과 : 111.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중증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을 전일제로 지원하는 업무 강도와 중요도, 이직율(평균근속 2.8년) 등을 고려하여 국립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를 공·사립 특수교육보조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필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관련 법령 및 국정과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3조(의무교육 등) : 특수교육대상자는 **만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 등을 확충·정비**하여야 함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함
·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제31조(편의제공 등) :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진로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특수교육교육과정 총론 제6장(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1.기본 사항)**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대학생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제공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17.5.29.]

- **국정과제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을 위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추진경위**

<장애아 교육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2008. 5)으로 유~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만 3세 미만 및 전공과 학생은 무상교육) 제도 시행
- 장애학생·학부모 및 특수교육 관련단체의 중점 지원 요구사항임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장애인교육권연대(전교조 등 14개 단체)

<장애대학생 지원>

-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95년) 이후 장애대학생의 증가에 따라 국가차원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 필요성 및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숭실대 재학생 박지주(지체장애 1급, 사회복지학과 4년)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02)

-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안) 마련('04.8)
- '05년부터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 편의 및 교수.학습 보조를 위해 학습도우미 지원
- (내역사업 분리) '15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중 대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 장학금으로 사업 이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년)」 세부과제 3-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사업>

- '13년부터 국립특수학교 배치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교수·학습 기자재 확충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

<사회복무요원 지원>

- 기획재정부의 '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병무청의「사회서비스분야 인력 경비」사업 일부 이관('09.8)
- 특수교육분야 배치 공익근무요원 지원('10.1)
- 특수교육분야 공익근무요원 사업(1231-301)이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1231-300)으로 이관('12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16.12)
- '18년 신규 사업설계 및 국정과제*로 추진 ('18 예산 미반영)

***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2-2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 (6개권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장애학생 교육지원	145	-	62	65		70		8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사유

-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기간 변경('17.3.1.~'18.2.28. → '17.3.1.~'17.12.31.)에 따른 집행 잔액
- 국립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제대 및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급식비, 국내여비) 집행 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2 (15)**	10.7 ( )	( )	73 (15)	**72 (14)**	( )	0.5 (0.7)
'16년	**65 (16)**	( )	( )	65 (16)	**65 (15)**	( )	0.2 (0.7)
'17년	**70 ( )**	( )	( )	**70** ( )	**68 ( )**	( )	**1.9**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988		8,486	114	8,600	8,6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증액 : 처우개선비 **114백만원*** 증액

* 미지급 수당(교통비 등),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 반영

○ 집행현황

■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예산에 포함하여 학교 교부 완료(집행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16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시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세부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을 변경.고시할 것

⇒ (후속조치) '18년 기본계획에 학습도우미 1인당 국고지원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음.

○ ('16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일반.전문학습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대응투자 의무비율 미준수 대학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 정산 시 국고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것('16년도 2개 대학 소액 대응 투자 미달 발생)

⇒ (후속조치) 2016년 대응투자 미달 2개 대학 환수조치 완료 (강원대 117,000원, 경민대 23,000원)

○ ('16년 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전문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지원인원과 급여가 적정수준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

⇒ (후속조치) 중증장애대학생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도우미 인원확대 및 급여 인상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요청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장애아 교육지원)**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무상)교육 실시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 우리나라의 경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등), 장애학생 통학비, 방과후학교 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전액 지원

○ **(장애대학생 지원 해외 사례)**

- **(미국)**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의거 장애 대학생이 재학중인 대학별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 보조기기, 편의시설 그리고 학업수행 시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조지원 서비스 제공
- **(영국)** 고등교육법(199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옥스퍼드대학은 장애학생들에게 입학, 상담, 직업보조 등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
- **(일본)** 일본 츠쿠바기술대학, 일본히로시마교육대학 등에 장애대학생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각종 학습 보조기기 등 지원

(6) 사업추진절차

○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 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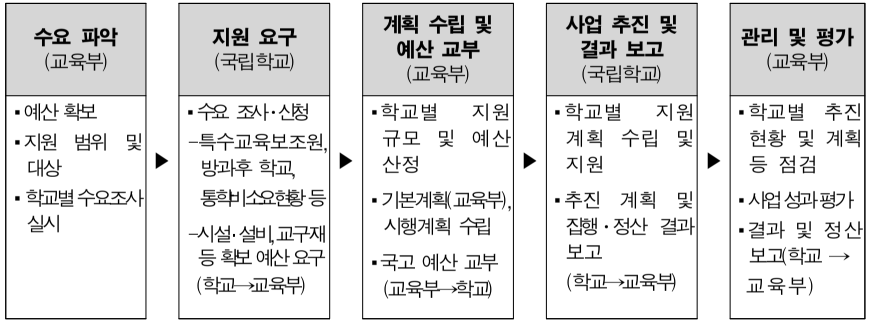

○ **장애대학생 지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특수학교(급) 보조인력 1인당 지원학생수(하향지표)(명)	목표	6.7	6.5	6.1	6.0	5.9	보조인력의 점진적 확충으로 보조인력 1인당 지원 학생수 연차적 감축	국립특수학교(급) 장애학생수 / 특수교육보조인력수	특수교육 통계
	실적	6.6	6.3	6.1	-	-			
	달성도	101.5	103.1	100.0	-	-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만족도(점)	목표	신규	85.0	90.5	91.0	91.2	2017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90.8점)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5점척도해당점수 × 응답자 수의 합 / 전체응답자수) / 5 × 100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90.3	90.8	-	-			
	달성도	-	106.2	100.3	-	-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 만족도(점)	목표	82.0	82.3	82.6	86.8	87.0	’15년~’18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 만족도 지속적인 목표치 상향 설정	(5점척도해당점수 × 응답자 수의 합 / 전체응답자수) / 5 × 100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82.2	83.2	86.3	-	-			
	달성도	100.2	101.1	104.5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 (참고3) 학교급별 장애학생 현황
○ (참고4) 장애대학생 도우미 운영 보도자료
○ (참고5)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설명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특수교육보조인력, 방과후교육, 종일반, 통학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성과 제고를 통한 학부모 만족도 지속적 향상**

※ 학부모 만족도 (’14년) 79.1점 → (’15년) 81.1점 → (’16년) 82.4점 → (’17년) 83.4점

○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성과 제고

-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 경향을 반영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확대

※ 특수교육보조인력 1인당 지원 학생 수 (’14년) 6.7명 → (’15년) 6.6명 → (’16년) 6.3명 → (’17년) 6.1명

○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

○ 종일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통학비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편의 도모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편의제공을 통해 고등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이 대학 진학 후 필요로 하는 학습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당사자 만족도의 지속적 향상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만족도(%) : (’15년) 82.2점 → (’16년) 83.2점 → (’17년) 86.3점

참고 2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현황

학교명		특수 학급수(A)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배치인원(B)	배치율(%) (B/A)	비고
서울맹학교		39	202	7	17	국립특수학교 평균 배치율 30%로 보조원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서울농학교		33	101	7	21	
한국선진학교		30	178	20	67	
한국경진학교		33	169	22	67	
한국우진학교		39	170	21	53	
강릉원주대학교	부설유치원	1	3	1	100	특수교육보조원 미배치된 특수학급(8학급)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시급함
강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1	12	1	100	
경북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6	-	0	
	부설중학교	1	10	1	100	
	부설고등학교	1	20	1	100	
경상대학교	부설중학교	1	4	1	100	
	부설고등학교	1	14	2	200	
경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6	1	100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6	1	100	
공주대학교	부설유치원	1	4	1	100	
	부설중학교	1	6	1	100	
	부설고등학교	1	2	-	0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광주)	1	8	1	100	
	부설초등학교(목포)	1	3	1	100	
대구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대구)	1	6	1	100	
	부설초등학교(안동)	1	2	-	0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5	1	100	
부산대학교	부설고등학교	1	6	1	100	
서울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8	1	100	
전남대학교	부설중학교	1	9	1	100	
	부설고등학교	2	19	2	100	
전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1	10	1	100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군산)	1	3	-	0	
	부설초등학교(전주)	1	4	1	100	
제주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6	1	100	
	부설중학교	1	17	1	100	
	부설고등학교	3	26	3	100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3	-	0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5	-	0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1	4	1	100	
충북대학교	부설중학교	1	4	1	100	
	부설고등학교	2	20	2	100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1	2	-	0	
	부설초등학교	1	8	1	100	
	부설중학교	1	6	-	0	
	부설고등학교	1	3	1	100	
합 계		214	1,100	110	51.4	

참고 3 학교급별 장애학생 현황(2018.3.1. 기준)

○ 국립특수학교 현황

장애 영역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전공 과	계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전공 과	계
시각장애	1	2	5	7	6	9	11	40	3	15	20	28	43	111	220
청각장애	1	3	2	6	7	9	2	29	3	2	11	17	45	14	92
지적장애	1	-	1	12	6	6	6	31	-	1	72	37	36	37	183
정서장애	1	-	3	12	6	6	6	33	-	9	58	36	32	34	169
지체장애	1	-	3	14	8	10	4	39	-	10	60	32	45	23	170
전체	**5**	**5**	**14**	**51**	**33**	**40**	**29**	**172**	**6**	**37**	**221**	**150**	**201**	**219**	**834**

○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 특수학급 현황

구분	학교 수					학급 및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특수학급	3	16	7	10	36	3	10	16	65	7	30	14	92	40	197
일반학급	-	5	6	7	18	-	-	18	18	14	14	37	37	69	69

○ 장애대학생 재학 현황

구 분	학교수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		
		남	여	계
대학	311	4,592	2,842	7,434
대학원대학	8	13	2	15
전문대학	147	1,022	632	1,654
계	466	5,627	3,476	9,103

※ 출처: 대학 정보공시('17. 6. 1.기준)

참고 4 **장애대학생 도우미 운영 보도자료**

The University 每日新聞

뉴스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주말을함께 | 독자제보·게시판 | 포토갤러리 | 영상 | 지금이순간

스포츠 | 삼성라이온즈 | 연예 | 스타뉴스

교육

청각장애-도우미 학생 함께 특수교사 임용 합격했네

2017-09-06 04:55:02

대구대 단짝, 이태영·김미진 씨 동아리 활동 등 4년간 '동고동락'

"4년간 CC(캠퍼스 커플)처럼 붙어다녔는데, 합격까지 함께 하니 기쁨이 두 배네요".

대구대 청각장애(2급) 학생인 이태영(22'여) 씨와 도우미 학생인 김미진(22'여) 씨가 최근 발표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나란히 합격해 화제다.

이들은 특수교육과 동기이자 동갑내기로 4년 전 학과 엠티(MT) 때 처음 만난 이후 장애 학생과 그의 공부를 돕는 도우미 학생으로 매칭되면서 학과에서 소문난 '단짝'으로 지내왔다.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나란히 합격한 대구대 특수교육과 이태영 씨(왼쪽)과 김미진 씨.

이 씨와 김 씨는 1학년 때 대학 내 청각장애인 동아리인 '손누리' 활동을 하며 급속히 친해졌고 2학년 때부터는 기숙사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도 비슷해 공부할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과 선배 한 명을 더해 세 명이서 '인강(인터넷 강의) 스터디'를 했는데 미진이가 강의를 듣고 나면 저에게 책을 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씨 또한 "1학년 때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 전날 서울에 있는 태영이의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특훈'까지 해줄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들은 2013년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대회에서 함께 스태프로 활동했는가 하면 '장목들(장애학생 목소리가 들려)'이란 대구대 장애학생 창업동아리 멤버로 함께 활동하며 2014년 대경창업경진대회에서 금상(2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씨는 2014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500m 육상에서 동메달을 땄고, 같은 해 지방장애인기능경기 '전자출판'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공부 외에도 운동과 기초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 씨는 최근 열린 졸업식 때 총장 공로상을 받았다.

앞으로 이 씨는 경기도에서, 한 학기 먼저 졸업한 김 씨는 경남에서 특수교사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된다. 김 씨는 "우리는 장애 학생과 도우미 학생 관계라기보다 그냥 말 그대로 '소울 메이트'(Soul Mate)이다"며 "태영이가 당당하고 멋진 특수교사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The University 每日新聞

뉴스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주말을함께 | 독자제보·게시판 | 포토갤러리 | 영상 | 지금이순간

전체기사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제 | 교육 | 사람들 | 제테크 | 부동산 | 건강 | 라이프 | 책 | 경북

사람들

"대학생 도우미가 없었다면 '꿈을 향한 삶'은 불가능했죠"

2018-01-19 20:54:43

지체 1급 장애인 김순란 씨, 대학생 체험수기 최우수상

만학도 장애인 김순란(왼쪽 두번째) 씨가 '2017년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 참가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경일(왼쪽 오른쪽) 삼고대학교 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칠순의 나이에도 만학의 길

"도우미 지원 확대에 최선"

한국복지대학교(총장 이상진)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주관한 '2017년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지원사업 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김순란(70·가톨릭상지대학교 2년) 씨가 최우수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김 씨는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어릴 시절 집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칠순의 나이에 만학도의 길을 걷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걱정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지난 2016년 입학에 있는 가톨릭상지대학교(총장 경일)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김 씨는 "입학 후 2년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며 도우미 학생과 함께한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도우미 학생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꿈을 향한 나의 삶'이란 체험 수기로 공모에 참가해 15일 최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맛봤다.

황사홍 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 지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졸업을 앞둔 만학도 김순란 씨는 모든 장애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장애 대학생을 위한 도우미 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성 이교태 기자 hdlee@msnet.co.kr

KBS NEWS

뉴스 | TV엔 없다 | 프로그램

장애대학생 도우미 제도 강화…급여 상한액 33만→128만원

입력 2018.02.12 (15:53) | 수정 2018.02.12 (19:01)

정부가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급여 한도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해 사업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주선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등 학습지원은 일반도우미, 수화통역이나 속기는 전문도우미, 실시간 강의 속기 등은 원격교육도우미가 맡는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높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급여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17년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대학생을 도왔다.

교육부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설명회를 연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진 기자
jin@kb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東亞日報

2013년 02월 07일 목요일 A27면 투데이

학부수석 시각장애인 뒤엔 도우미학생이…

숙명여대 김보연씨
4.5만점에 4.49점

"선진국에서는 장애가 있어도 공부만큼은 불편 없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도 아무런 편견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어요."

3급 시각장애를 지닌 숙명여대 교육학부 2학년인 김보연 씨(21)가 지난달 말 호주 시드니를 다녀온 소감이다. 장애학생 10명과 도우미 학생 등 모두 26명으로 짜인 숙명여대 장애학생 글로벌탐방단의 첫 프로그램 활동이었다.

이들은 시드니대와 뉴사우스웨일스대(UNSW)를 찾아 해외의 장애학생서비스센터와 장애학생 보조기구 실을 둘러봤다. 특히 UNSW에서는 현지 장애학생들이 받는 수업과 동일한 방식의 특강을 들었다.

강의실에는 칠판 외에 2개의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한쪽에는 수업 자료 화면을 띄우고 다른 한쪽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자막을 입힌 자료를 띄웠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 속기사는 강사의 모든 말을 자막으로 풀어 청각장애학생도 문제없이 수업을 듣도록 도왔다. 그 덕분에 청각장애가 있는 환경디자인학과 2학년 김수진 씨(21)는 수강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앞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스마트패드를 지급해 자막을 확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칠판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김 씨도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 김 씨는 계단과 경사진 길을 조심하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겪지 않지만 돋보기나 확대 독서기를 활용해야 책을 볼 수 있다.

특강을 들으며 김 씨는 자연스럽게 지난 학기를 떠올렸다. 강의내용을 따로 녹음하고 도우미 학생이 대신 필기한 내용을 컴퓨터로 옮긴 뒤 글자를 키워 공부했다. 지난 학기에는 6명의 도우미 덕택에 만점(4.5점)에 가까운 4.49점의 평점을 받아 학부 수석을 차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들이 수월하게 공부하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맞춤형 도우미' 2500명을 3월부터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에 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실제 강의 내용을 웹카메라와 무선마이크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화와 자막으로 바꿔 전달하는 원격교육 지원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7600여 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다니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지난달 29일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 특강에서 김보연 씨(왼쪽)가 장애학생용 스마트패드로 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숙명여대 제공

참고 5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설명

Ⅰ. 추진 필요성

❑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에도 취업으로 연계 미흡

ㅇ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의무 설치 법제화 등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정책*** 등으로 **장애 대학생 급증****

*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 ('06) 73개교, 419명 → ('16) 124개교, 816명

** 고졸 장애학생(7,734명)의 15.3%(1,191명)가 대학에 진학, 8,653명이 재학 중('16년 기준)

ㅇ 반면, **장애대학생 취업률**은 일반 대학졸업생 취업률(67.7%,'16)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상황**

※ 장애대학생 취업률 : 42.37%('15) → 45.33%('16) → 35.33%('1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17, 교육부)

❑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

ㅇ 장애학생 대상 교육 정책은 **초중등 단계**에 중점을 두며, **장애대학생**의 필요(needs)에 맞는 **진로·취업 지원 정책**은 **부재**

※ 학습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이 유일한 실정 ('18, 22.76억원)

ㅇ 10인 이상 재학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인적·물적 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 지원 어려움**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대학 197개교 중 전담인력이 있는 대학은 77개교에 불과함('17. 대학정보공시)

❑ 소규모 분포로 인해 개별 학교 차원의 지원 곤란

ㅇㅇ 대학별 장애대학생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재학**으로 개별 대학

ㅇ 차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 10명 미만 학교 209개교, 50명 이상 학교 19개교에 불과 ('17, 대학정보공시)

➡ 거점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교육을 함으로써 양질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장애대학생의 **자아실현** 도모

2. 거점대학의 주요 역할(안)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 개인별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권역별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및 **장애유형·정도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 **권역별 취업캠프**, 채용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및 실습 지원**

❑ **취업 관련 정보 확보 및 취업처 발굴·연계**

- ○ 각 학교의 졸업생 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양질의 취업처 발굴**하고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연계 및 지원**
- ○ 장애대학생 취업률 등 각종 **진로·취업 관련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각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수모델 확산**

- ○ 권역별 대학 대상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컨설팅** 실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부), 한국장애인개발원(복지부) 등 연계 지원

3. 소요 예산(안) (3,000백만원 = 6교×50백만원)

구 분	세부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인건비	직접 인건비	1명×2,300천원×12개월	27,600
	4대 보험	2,300천원×12개월×9.36%	2,600
	소 계		30,200
프로그램 운영비	고용정보 인쇄물 발간	500천원×2회	1,000
	지역 기업체 견학	500천원×4회	2,000
	장애인 창업교육	500천원×4회	2,000
	진로취업캠프	5,000천원×1회	5,000
	취업박람회	10,000천원×1회	10,000
	소 계		20,000
합 계			50,200

4. 향후 기대효과

-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거점대학에서 개발된 **우수모델을 타학교로 확산**

[301]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부설 특수학교 설립	-	-	2,702	**2,702**	**순증**

* 사업코드 : 11-050-051-1200-1231-301

* 담 당 자 : 학생지원국장(정인순), 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사무관(최미섭), 교육연구사(안상권)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2교)
사업기간	'1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2교 설립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국립부산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내용)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 2,702백만원

-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계) 특수학교 설계비 **1,361백만원**

· 산출내역 : **('19) 1,361백만원** (기본설계비 680.5백만원 + 실시설계비 680.5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경비			합계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소계	
부산대	1,361	30,654	320	71	391	32,406

※ 설립개요(안)

유형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학급수	학생수	개교년도	비고
특수학교 (예술 중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금정동))	16,130㎡ (12,377㎡)	21학급	138명	2021.9. (예정)	장애영역 (발달장애)

-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계) 설계비 **1,341백만원**

· 산출내역 : **('19) 1,341백만원** (기본설계비 640.5백만원 + 실시설계비 640.5백만원+도시관리계획용역 60백만원)

<총사업비 기준 : 세부 산출내역은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경비			합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소계	
공주대	1,341	28,858	302	66	368	30,567

※ 설립개요(안)

유형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학급수	학생수	개교년도	비고
특수학교 (직업특성화 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13,280㎡ (11,789㎡)	18학급	126명	2021.9. (예정)	장애영역 (경도발달장애)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702백만원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기초 설계비 2,702백만원 (국정과제(51-2)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특수학교(급) 확대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지원 필요성

○ 시·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 주민반대, 사유지 매입 등 부지확보 어려움 발생

○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학 내** 유휴부지,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부설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조승래 의원('17.9.18.),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9.21.)

○ 현재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중 4개 사립대학에서 8개 부설 특수학교 운영** 중이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는 전혀 없는 실정

*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현황 : **국립대학 6개교, 사립대학 33개교**

** **사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운영 현황** : **연세대**(연세재활학교), **대구대**(광명, 보건, 영화, 덕희, 보명학교), **강남대**(용인강남학교), **나사렛대**(나사렛새꿈학교)

○ 이에, 국립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국가적 책무성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2,702**	**2,702**	**순증**
①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	**-**	**2,702**	**2,702**	**순증**
■ 일반용역비	-	-	60	60	**순증**
■ 기본조사설계비	-	-	1,321	1,321	**순증**
■ 실시설계비	-	-	1,321	1,321	**순증**
□ **비목(합계)**	**-**	**-**	**2,702**	**2,702**	**순증**
○ 일반용역비(210-14)	-	-	60	60	**순증**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1,321	1,321	**순증**
○ 실시설계비(420-02)	-	-	1,321	1,321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 ○ 거점 국립대학교로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준용한 시설 구축 및 설비 구비
-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교내이동편의, 보편적 설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환경 구축
- ○ 국립대학 재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 시설(복합문화공간) 마련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연차적 확대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2,702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1교 × 1,361백만원 = 1,361백만원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 1교 × 1,341백만원 = 1,341백만원			0
'20	60,912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 1교 × 30,654백만원 = 30,654백만원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 1교 × 28,858백만원 = 28,858백만원 ▪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1교 추가 신설 설계비) 1교 × 1,400백만원=1,400백만원			0
'21	31,000	▪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1교 추가 설립 사업비) 1교 × 31,000백만원=31,000백만원			0
'22	-				0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td><td>28</td><td>28</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td><td>28.5</td><td>28.5</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td><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td><td>10.2</td><td>10.2</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3></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26[1] ÷ 0.91억원[2] = 28.5명
1) 설계비 총액(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2) 예산비목별 평균지출액 <표2>의 "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인당 0.91억원 적용"
□ 2018년 고용효과 : 해당없음</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사범대학의 부설학교 설치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제45조(부설학교)
· 「국립학교 설치령」제8조(부설학교)

- 「국정과제(51-2)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특수학교(급) 확대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18~'22) 계획」
· '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교 이상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 추진
· 대학 부속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추진

- 조승래 의원('17.9.18.),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9.21.)
· '접근성이 좋은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부설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위

- 국립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과 협의회 4회 개최('17.10.16.~'17.10.26)
· 협의회 결과 특수교육과 설치 대학 중 **국립대학 4개교(공주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교통대)**에서 특수학교 **설립 참여 의사 표명**
· **국립대학 2개교(한국체대, 창원대)**는 부지확보, 학생수요 등의 어려움으로 **설립 의사없음 의견 제시**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①-1(특수교육기관 확충)의 세부 과제에 포함 추진(부총리 발표 '17.12.4.)
· 대학 부설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시.도교육청 및 대학과 협의하여 특수교사 양성 국립대학교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 특수교사 양성대학(국립 6, 사립 33) 부설 특수학교 8교(국립 없음)

- 국립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교육부내 TF팀 구성.운영**('18.1.17.~)
- **대학 부설 특수학교**(공주대, 부산대) 설립 추진 협의회 대학별 각 2회 개최 및 현장방문('18.1.18.~3.6.)
- 국립대학 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교육부, 기재부, 부산대, 공주대, 부산교육청, 충남교육청) 협의회**('18.10.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6)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7. 참고자료

1. 국립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사업비 내역(교육시설과 협조)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개요
3.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 및 과밀학급 현황

참고 1 국립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사업비 내역 (교육부 교육시설과)

□ 대학별 특수학교 설립 개요

대학명	설립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유형	학급수	학생수	개교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합계	
부산대	특수학교 (예술중고)	21학급	138명	'21.9.	16,130㎡ (12,377㎡)	1,361	30,654	391	**32,406**	
공주대	특수학교 (직업특성화)	18학급	126명	'21.9.	13,280㎡ (11,789㎡)	1,341	28,858	368	**30,567**	
계						2,702	59,512	759	**62,973**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신설 총사업비 : 62,973백만원

◦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총사업비) 32,406백만원

구 분		검토		
		산출식		금액(백만원)
설계비	기본설계비	30,654백만원×4.44%×50%		680.5
	실시설계비	30,654백만원×4.44%×50%		680.5
		소 계		**1,361**
시설비		교사동	9,000㎡ × 2,177천원	19,593
		수영장	1,177㎡ × 2,931천원	3,450
		기숙사	2,200㎡ × 2,262천원	4,976
		토목공사	1식*	2,635
		소 계		**30,654**
부대경비	감리비	30,654백만원 × 1.045%(상주감리비 적용)		320
	부대비	30,654백만원 × 0.231%		71
총사업비				**32,406**

* 토목공사 내역 : 652(흙깎기)+765(옹벽)+238(우수관)+610(오폐수)+370(도로)

◦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총사업비) 30,567백만원

구 분		검토		
		산출식		금액(백만원)
설계비	기본설계비	28,858백만원×4.44%×50%		640.5
	실시설계비	28,858백만원×4.44%×50%		640.5
	도시관리계획용역	1식		60
		소 계		**1,341**
시설비		교사동	6,285㎡ × 2,177천원	13,682
		실습동	1,200㎡ × 2,262천원	2,714
		스포렉스	2,304㎡ × 2,931천원	6,753
		기숙사	2,000㎡ × 2,262천원	4,524
		토목공사	1식(옹벽 230m, 부지정지)	1,185
		소 계		28,858
부대경비	감리비	28,858백만원 × 1.046%(상주감리비 적용)		302
	부대비	28,858백만원 × 0.23%		66
	비품비			-
총사업비				**30,567**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 사업비 확정 내용

□ 대학별 특수학교 설립 개요

대학명	설립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유형	학급수	학생수	개교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합계	
부산대	특수학교 (예술중고)	21학급	138명	'21.9.	16,130㎡ (12,377㎡)	1,361	30,654	391	**32,406**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신설 총사업비

◦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총사업비) 32,406백만원**

구 분		검토		
		산출식		금액(백만원)
설계비	기본설계비	30,654백만원×4.44%×50%		680.5
	실시설계비	30,654백만원×4.44%×50%		680.5
		소 계		**1,361**
시설비		교사동	9,000㎡ × 2,177천원	19,593
		수영장	1,177㎡ × 2,931천원	3,450
		기숙사	2,200㎡ × 2,262천원	4,976
		토목공사	1식*	2,635
		소 계		**30,654**
부대경비	감리비	30,654백만원 × 1.045%(상주감리비 적용)		320
	부대비	30,654백만원 × 0.231%		71
총사업비				**32,406**

* 토목공사 내역 : 652(흙깎기)+765(옹벽)+238(우수관)+610(오폐수)+370(도로)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 사업비 확정 내용

□ 대학별 특수학교 설립 개요

대학명	설립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유형	학급수	학생수	개교연도	부지면적 연면적	설계용역비	공사비	기타	합계	
공주대	특수학교 (직업특성화)	18학급	126명	'21.9.	13,280㎡ (11,789㎡)	1,341	28,858	368	**30,567**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신설 총사업비

◦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총사업비) 30,567백만원**

구 분		검토		
		산출식		금액(백만원)
설계비	기본설계비	28,858백만원×4.44%×50%		640.5
	실시설계비	28,858백만원×4.44%×50%		640.5
	도시관리계획용역	1식		60
		소 계		**1,341**
시설비		교사동	6,285㎡ × 2,177천원	13,682
		실습동	1,200㎡ × 2,262천원	2,714
		스포렉스	2,304㎡ × 2,931천원	6,753
		기숙사	2,000㎡ × 2,262천원	4,524
		토목공사	1식*(옹벽 230m, 부지정지)	1,185
		소 계		28,858
부대경비	감리비	28,858백만원 × 1.046%(상주감리비 적용)		302
	부대비	28,858백만원 × 0.23%		66
	비품비			-
총사업비				**30,567**

* 토목공사 내역 : 옹벽) 864백만원(H=5m, L=230m) + (부지정지) 321백만원

참고 2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개요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부산지역 특수학교 분포 및 신설 효과)

○ 설립 개요

유형	위치	학급수	학생수	개교년도
특수학교 (예술중·고등학교)	부산대학교	21학급	138명	2021.9.

부산광역시 특수학교 분포도(15교-공립8, 사립7)

○ 학교명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부산금빛학교)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 설립규모 : 21학급(중 9, 고 12)

○ 세부현황

(단위 : 학급, 명)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년	1	2	3	소계	1	2	3	소계	
학급 수	3	3	3	9	4	4	4	12	21
학생 수	18	18	18	54	28	28	28	84	138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예술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요 분석**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개교 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의 입학 예정 대상 학생**은 **'18년 현재 초등 3학년과 6학년**의 장애학생*으로, 현재 6,333명(초3년)과 6,105명(초6년)의 장애학생이 있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등 3학년(명)	896	434	333	402	193	202	203	40	1,468	180	239	339	238	266	350	427	123	6,333
초등 6학년(명)	837	391	288	418	173	205	205	34	1,393	166	236	329	227	274	352	472	105	6,105

- **(입학 수요 추정) 전국 특수학교(급) 4,442교 중 12교*에 재학 중인 초3, 초6학년 장애학생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초3학년 14명(26.9%)**, 초6학년 16명(28%)***의 입학 수요가 있어 중학교 과정(18명 모집)과 고등학교 과정(28명 모집) 선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455교 중 3교), 대구(197교 중 3교), 인천(233교 중 1교), 경기(1027교 중 4교), 강원(214교 중 1교)

** 초3학년 총 52명중 14명(26.9%), *** 초6학년 총57명중 16명(28%)

시도	서울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계
	당중초	영등포초	육영학교	성동초	관문초	광명학교	혜광학교	경진학교	선진학교	아름학교	상대원초	명진학교	
초3(명)	1	2	3	1			2	3			1	1	14
초6(명)			4		1	3	2	2	1	2		1	16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신설 효과**

- 장애학생을 위한 **예술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를 통해 **예술인재 조기 발굴 및 전문 예술인 양성**

⇒ 전국 예술중·고등학교 중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가 없는 실정으로,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재능을 보유한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술 중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

※ **예술중 3교, 예술고 29교 모두 비장애학생 대상**이며, 특수학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대학 내 예술 관련 단과대학*과 연계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로 장애학생 진로 영역 확대 및 관련 분야 취업률 향상**

* **예술대학**(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미술학과, 조형학과, 디자인학과, 무용학과, 예술문화영상학과) **연계 체험중심 통합형 문화예술 교육** 가능

⇒ **'18. 2월에 졸업한 학생의 취업률은 31.0%**이며, 그 중 **문화예술 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16명(0.8%)에 불과**하여 **관련 분야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영역 확장 기대**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충남지역 특수학교 분포 및 신설 효과)

○ **설립 개요**

유형	위치	학급수	학생수	개교년도
특수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18학급	126명	2021.9.

충남교육청 특수학교 분포도(7교-공립5, 사립2)

○ 학교명 :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성화고등학교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 **세부현황**

(단위 : 학급, 명)

구분 \ 과정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6	6	6	18
학생수	42	42	42	126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수요 분석**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개교 시, **입학 예정 대상 학생은 '18년 현재 초등 6학년**의 장애학생*으로, 현재 6,105명이 있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명)	837	391	288	418	173	205	205	34	1,393	166	236	329	227	274	352	472	105	6,105

- '18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의 취업률은 8.6%에 불과하나, **전공과로 진학하여 취업한 학생은 42.3%**임

- 최근 3년간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 중 전공과 진학률*은 약 50%로, **장애학생은 졸업 후 전공과 진학을 더 선호**하고 있으나,

연도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수(A)	진학자 수			취업자 수		비진학, 미취업자 수(명)
		전공과 진학자 수(B)	전공과 진학률* (B/A)	대학교 진학자 수(명)	취업자 수(명)	취업률	
2016	2,460	1,258	51.1	96	155	14.0	951
2017	2,546	1,269	49.8	84	145	12.2	1,048
2018	2,454	1,209	49.3	112	97	8.6	1,036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시스템이 마련된 **특성화고등학교가 신설될 경우,**

- 전공과 진학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 **선발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신설 효과**

- **대학 내 관련 학과*와 연계**하여 제한된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화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예술대학, 간호대학의 농생명분야 및 예술·서비스 분야 전공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설

- 학생의 **요구 및 능력에 적합한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으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에 기여

  ⇒ 그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률**이 낮고(**최근 3년간 평균 24.5%**), 단순노무직인 제품제조 분야 취업이 많았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기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취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	식품가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16	7,443	3,444	28	341	18	9	83	46	22	63	96	5	82	35	147	975		24.4
'17	7,734	3,582	38	296	12	7	60	66	43	75	161	7	85	21	156	1,027		24.7
'18	7,811	3,668	25	300	3	9	78	16	28	127	169	9	89	23	130	1,006		24.3
계	22,988	10,694	66	637	30	16	143	112	65	138	257	12	167	56	303	2,002		24.5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 출처: 2016~2018 특수교육통계(교육부)

붙임 1 전국 특수학교 현황 (2018. 4. 1. 특수교육통계 기준)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비고
서울	3	8	19	30	
부산	-	8	7	15	
대구	-	3	6	9	
인천	-	5	4	9	
광주	-	3	2	5	
대전	-	3	2	5	
울산	-	2	2	4	
세종	-	1	-	1	
경기	2	11	22	35	
강원	-	5	2	7	
충북	-	3	7	10	
충남	-	5	2	7	
전북	-	6	4	10	
전남	-	3	5	8	
경북	-	3	5	8	
경남	-	7	2	9	
제주	-	2	1	3	
전체	**5**	**78**	**92**	**175**	

붙임 2 전국 특성화중학교(예술분야 8교) 현황 (18.3.1.기준)

연번	특성화 분야	*학교 종류	시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 구분	지정 연도	비고
1	예술 (8)	중학교 (사립3)	부산	**부산예술중학교**	금정구	**사립**	1998	특수학급 없음
2			부산	**브니엘예술중학교**	금정구	**사립**	1998	〃
3			전북	**전주예술중학교**	완주군	**사립**	2000	〃
4		각종학교 (국립2, 사립3)	서울	**예원학교**	중구	**사립**	1969	〃
5			서울	**선화예술학교(중.고)**	광진구	**사립**	1973	〃
6			서울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금천구	**국립**	1960	〃
7			서울	**국립국악중학교**	강남구	**국립**	2002	〃
8			경기	**계원예술학교**	성남시	**사립**	2010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5. 각종학교

붙임 3 전국 예술고등학교(29교) 현황 (국공립 12교, 사립 17교, 18.3.1.기준)

연번	시도	학교명	비고		비고
			지역	설립구분	
1	서울(6)	국립국악고등학교	강남구	국립	특수학급 없음
2		덕원예술고등학교	강서구	사립	〃
3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구로구	사립	〃
4		서울예술고등학교	종로구	사립	〃
5		선화예술고등학교	광진구	사립	〃
6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금천구	국립	〃
7	부산(3)	부산예술고등학교	금정구	사립	〃
8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금정구	사립	〃
9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남구	공립	〃
10	대구(1)	경북예술고등학교	남구	사립	〃
11	인천(1)	인천예술고등학교	남동구	공립	〃
12	광주(1)	광주예술고등학교	북구	공립	〃
13	대전(1)	대전예술고등학교	유성구	사립	〃
14	울산(1)	울산예술고등학교	울주군	사립	〃
15	경기(4)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천시	공립	〃
16		계원예술고등학교	성남시	사립	〃
17		고양예술고등학교	고양시	사립	〃
18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시	사립	〃
19	강원(1)	강원예술고등학교	강릉시	공립	〃
20	충북(1)	충북예술고등학교	청주시	공립	〃
21	충남(2)	충남예술고등학교	천안시	공립	〃
22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서천군	공립	〃
23	전북(1)	전주예술고등학교	완주군	사립	〃
24	전남(2)	진도국악고등학교	진도군	공립	〃
25		전남예술고등학교	무안군	사립	〃
26	경북(2)	김천예술고등학교	김천시	사립	〃
27		포항예술고등학교	포항시	사립	〃
28	경남(1)	경남예술고등학교	진주시	사립	〃
29	세종(1)	세종예술고등학교	연기면	공립	〃

붙임 4 전국 일반고 특수학급 수 현황 (2017년 교육통계 기준)

(단위: 교, 학급, %)

시·도	학교 수				학급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전체학급 수(A)	특수학급 수(B)	특수학급 비율(B/A)
서울	1	75	112	188	6,204	193	3.1
부산	1	35	45	81	2,205	51	2.3
대구	1	17	33	51	1,723	33	1.9
인천	0	60	20	80	2,260	78	3.5
광주	1	12	35	48	1,400	33	2.4
대전	0	19	19	38	1,152	29	2.5
울산	0	30	8	38	994	34	3.4
세종	0	11	1	12	266	7	2.6
경기	0	273	91	364	11,720	512	4.4
강원	1	68	17	86	1,395	44	3.2
충북	2	31	14	47	1,050	36	3.4
충남	1	45	27	73	1,683	74	4.4
전북	1	40	53	94	1,730	24	1.4
전남	0	47	31	78	1,384	35	2.5
경북	0	50	67	117	2,149	65	3.0
경남	1	78	60	139	2,936	74	2.5
제주	1	12	9	22	551	12	2.2
전체	**11**	**903**	**642**	**1,556**	**40,802**	**1,334**	**3.3**

붙임 5 전국 특성화고 특수학급 수 현황 (2017년 교육통계 기준)

(단위: 교, 학급, %)

시·도	학교 수				학급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전체학급 수(A)	특수학급 수(B)	특수학급 비율(B/A)
서울	0	17	53	70	1,900	17	0.9
부산	0	9	26	35	875	23	2.6
대구	0	5	11	16	551	9	1.6
인천	0	17	10	27	737	24	3.3
광주	0	4	6	10	292	11	3.8
대전	0	5	5	10	321	9	2.8
울산	0	7	1	8	243	9	3.7
세종	0	1	0	1	19	1	5.3
경기	0	41	34	75	2,072	73	3.5
강원	0	22	2	24	397	18	4.5
충북	0	17	7	24	520	29	5.6
충남	0	19	7	26	474	29	6.1
전북	0	17	11	28	494	27	5.5
전남	0	36	11	47	758	49	6.5
경북	0	30	19	49	659	24	3.6
경남	0	19	16	35	633	17	2.7
제주	0	6	0	6	146	9	6.2
전체	**0**	**272**	**219**	**491**	**11,091**	**378**	**3.4**

※ 장애학생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실습실의 설비나 기자재 등의 활용 시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에서 별도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붙임 6 고교 졸업 장애학생 취업 분야별 현황 ('16~'18)

【최근 3년간 고교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 분야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	식품가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16	7,443	3,444	28	341	18	9	83	46	22	63	96	5	82	35	147	975	24.4
'17	7,734	3,582	38	296	12	7	60	66	43	75	161	7	85	21	156	1,027	24.7
'18	7,811	3,668	25	300	3	9	78	16	28	127	169	9	89	23	130	1,006	24.3
계	22,988	10,694	66	637	30	16	143	112	65	138	257	12	167	56	303	2,002	24.5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100

※ 출처: 2016~2018 특수교육통계(교육부)

참고 3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 및 과밀학급 현황

□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

(기준일: '17. 11.)

시도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편도)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이상	합계	비율	소계
전체	12,757	9,753	2,357	5	2,362	9.5%	24,872
서울	2,528	1,542	212	2	214	5%	4,284
부산	871	816	68	-	68	3.9%	1,755
대구	781	663	98	-	98	6.4%	1,542
인천	622	616	50	1	51	4%	1,289
광주	471	417	22	-	22	2.4%	910
대전	639	375	46	-	46	4.3%	1,060
울산	308	331	82	-	82	11.4%	721
세종	53	45	8	-	8	7.5%	106
경기	2,262	1,730	667	-	667	14.3%	4,659
강원	402	282	206	2	208	23.3%	892
충북	649	285	230	-	230	19.8%	1,164
충남	404	376	172	-	172	18.1%	952
전북	567	505	111	-	111	9.4%	1,183
전남	500	405	105	-	105	10.4%	1,010
경북	763	554	152	-	152	10.3%	1,469
경남	739	664	56	-	56	3.8%	1,459
제주	198	147	72	-	72	17.3%	417

□ 과밀학급 현황

(기준일: '17. 11.,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16	특수학교	30.1	12.6	14.7	22.6	16.5	45.5	17.2	11.8	7.2	15.7	10.3	15.9	22.0	27.5	19.0	7.7	7.8	17.6
	특수학급	18.6	23.1	10.9	26.9	14.8	23.0	16.8	1.3	11.6	16.7	15.9	19.4	12.2	8.0	9.9	12.6	17.6	15.2
	평균	24.4	17.9	12.8	24.8	15.7	34.3	17.0	6.6	9.4	16.2	13.1	17.7	17.1	17.8	14.5	10.2	12.7	16.4
'17	특수학교	30.6	14.3	14.4	24.2	8.8	41.7	15.4	0	7.3	15.1	12.4	20.2	33.1	26.1	19.6	10.5	7.7	17.7
	특수학급	23.5	13.7	10.2	27.1	8.2	24.1	12.2	1.2	9.8	16.9	17.6	18.7	15.6	7.2	4.2	11.8	16.8	14.0
	평균	27.1	14.0	12.3	25.7	8.5	32.9	13.8	0.6	8.6	16.0	15.0	19.5	24.4	16.7	11.9	11.2	12.3	15.8
증감	특수학교	0.5	1.7	-0.3	1.6	-7.7	-3.8	-1.8	-11.8	0.1	-0.6	2.1	4.3	11.1	-1.4	0.6	2.8	-0.1	0.1
	특수학급	4.9	-9.4	-0.7	0.2	-6.6	1.1	-4.6	-0.1	-1.8	0.2	1.7	-0.7	3.4	-0.8	-5.7	-0.8	-0.8	-1.2
	평균	2.7	-3.9	-0.5	0.9	-7.2	-1.4	-3.2	-6.0	-0.8	-0.2	1.9	1.8	7.3	-1.1	-2.6	1.0	-0.4	-0.6

[300]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1,078	6,642	5,974	**△668**	**△10.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200 - 1234 - 300
* 담 당 자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장(김태준), 교육연구관(이정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장애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 추진 -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 실태조사(준비 → 본 조사 → 후속조치) 사업 운영 - 특수교육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한 특수교육 연구 운영 - 장애학생 생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고등교육, 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가족지원 사업 운영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및 교육과정 후속 지원 사업 추진 - 「2015 초·중등 교육과정」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 참여식 연수 및 보행훈련 등 장애유형별 활동 중심 연수 운영을 위한 다목적관 조성
사업기간	'01~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특수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 465백만원**

- 2020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 조사에 대비한 예비조사 실시로 향후 본 조사의 안정적인 추진 준비

※ 특수교육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의거, 3년 주기로 실시

※ 본조사('17년) → 후속조치('18년) → **예비조사('19년)** → 본조사('20년) → 후속조치('21년)

<산출내용>
- **2017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465백만원**
  -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문항 안정화 : 184백만원(1건×184백만원)
  - 특수교육 실태조사(성과관리부문) 표본관리: 70백만원(780명×3회×30,000원)
  - 특수교육 실태조사 도구(행동발달평가 척도) 개발(1/2): 211백만원(1건×211백만원)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2,938백만원(5개영역, 15건)**

- 일반학생보다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 장애학생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고등교육, 인권보호, 가족지원, 진로·직업교육 등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

<산출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 : 973백만원**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 481백만원(8책×60백만원)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 342백만원(320책×1.1백만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150백만원(4건×37백만원)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 612백만원**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 50백만원(1건×50백만원)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팅 운영 : 50백만원(5개권역×10백만원)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문자해득교육) : 112백만원(1건×112백만원)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2/3년차) : 400백만원(1건×400백만원)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 : 248백만원**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248백만원(1건×248백만원)
- **장애학생 가족지원 : 520백만원**
  -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 : 200백만원(45명×4.44백만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3/3년차) : 200백만원(1식×200백만원)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120백만원(1식×120백만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 지원 : 585백만원**
  -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3/3년차) : 315백만원(1종×315백만원)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연구 : 50백만원(1건×50백만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매장정리) 개발 :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현장지원 사업(공모전·워크숍·연수) : 120백만원(1건×120백만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개발: 2,393백만원**

- 201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고시(2015.12.1.)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후속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보조교과서 개발

<산출내용>

- 교과용도서·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763백만원

▪ 교육과정 개발 및 후속 지원 : 363백만원(6건×60.5백만원)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400백만원(1건×400백만원)

- 보조교과서 개발 : 1,600백만원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Ⅱ수준 개발) : 800백만원(1건×800백만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진로활동 영역) : 400백만원(4종×100백만원)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 : 400백만원(1건×400백만원)

-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 30백만원

▪ 교육과정 기초 연구 : 30백만원(1건×30백만원)

○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 178백만원**

- 특수교사(20,039명) 및 평생교육사(87,055명) 등 연수대상 확대 및 참여식 연수 수요 확대에 따라 종합 활동실 등 참여식 다목적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 178백만원**

* 참여식 연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종합 활동실, 다용도 실기·실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

** 총사업비 4,421백만원 : (19년) 설계비 178백만원→(20년) 공사비 4,243백만원

<산출근거>

- 다목적관 조성(설계비) : 178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89백만원(89백만원의 100%)

▪ 실시설계비(420-02) : 89백만원(89백만원의 100%)

※ 다목적관 조성 총사업비 : 4,421백만원

- 시설비(420-03) : 4,142백만원 (연면적 1,693㎡ × 기준단가 2,447천원)
- 설계비(420-01, 02) : 178백만원 (4,142,000천원 × 2.16% × 2)
- 감리비(420-04) 45백만원 (4,142,000천원 × 1.08%)
- 시설부대비(420-05) 13백만원 (4,142,000천원 × 0.31%)
- 자산취득비(430-01) 43백만원 (연면적 1,693㎡ × 교육부 기준단가 25천원)

※ 산출 요율은 기재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작성 세부지침」(p258~266)에 따른 순공사비 대비 각각의 요율 적용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6,642	5,974
■ 특수교육 실태조사	◦ '특수교육 실태조사(후속조치) 3건 추진 : 480 - 후속조치 관련 조사문항 조정(1건, 199) - 실태조사 패널관리(1건, 70) - 특수교육 실태조사 도구(적응행동) 개발(1건, 211)	◦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3건 : 465 - 예비조사(8개부문, 13종)(1건, 184) - 실태조사 표본관리(1건, 70) - 특수교육 실태조사 도구(행동발달) 개발(1건, 211)
■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을 위해 5개 영역 15건 추진 : 2,527 -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2건): 718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1건, 376)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1건, 342)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4건) : 268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 개정(1건 50)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팅 운영: 50(5개권역×10)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1건, 112)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1/3년차)(1건 56)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 : 248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1건 248) - 장애학생 가족지원(4건) : 710 ·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1건, 200)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활용지도서 개발(2/3년차)(1건, 200) · 생애기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개발(3/3년차)(1건 190)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시스템 운영(1건 120) - 장애학생 진로·직업 지원(4건) : 583 ·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2/3년차)(1건 348)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 지표 개정 연구(1건 35)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5종, 85) · 현장지원 사업(공모전·워크숍·연수)(10건, 115)	◦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을 위해 5개 영역 15건 : 2,938 -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개발(3건): 973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1건, 481)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1건, 342)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1/4년차)(4건, 150)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4건) : 612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1건, 50)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컨설팅 운영(5개권역, 50)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5/6년차)(1건, 112)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2/3년차)(1건, 400)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1건) : 248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1건, 248) - 장애학생 가족지원(3건) : 520 ·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1건, 200) ·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3/3년차)(1건, 200) · 생애기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1식 120) -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4건) : 585 ·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3/3년차)(1건 315)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연구(1건 50)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1식, 100) · 현장지원 사업(공모전·워크숍·연수)(1건, 120)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3개 영역 3,635 - 교과용도서 개발 : 2,433 · '17~'18 개발 기본 및 공통 교육과정 교과용도서(2/2년)(도서 31책, 전자저작물 8종, 2,264) · 심의·윤문·현장검토비(도서 31책, 114) · 운영비(워크숍, 연구보조원 2명 등, 55) - 보조교과서 개발 : 1,172 · 청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1건, 782) ·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1건, 390)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관련 기초 연구 : 30 · 교육과정 기초 연구(1건, 30)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3개 영역 7건 : 2,398 - 교과용도서·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2건) : 763 · 교육과정 개발 및 후속 지원(6건, 363)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1/4년)(1건, 400) - 보조교과서 개발(3건) : 1,600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1건, 800) ·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1건, 400)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1건, 400) -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1건) : 30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2/2년) (1건 30)
■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	◦ 건설비 2건 : 178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89(4,142*2.16%의 100%) - 실시설계비(420-02) : 89(4,142*2.16%의 100%)

□ 지원 필요성

○ **특수교육 실태조사 예비조사 필요성**

-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특수교육 유일의 국가 승인 통계**
- 2020년 본조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부문별 수정,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예비조사 실시 필요하며,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조사를 위한 조사도구 수정·보완 및 연구 참여자의 패널 관리 필요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특수교육 교원 수급 계획 등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3조(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 **동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등 조사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부추진과제 1**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보장(1-2. 특수교육 교원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교원의 연차적 증원**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필요성**

- 장애학생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비장애학생과 일반학급 내 함께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 개발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사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참고서 점역 또는 확대자료 제작 필요**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
- **제21조(통합교육)**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제13조(차별금지)**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 금지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 **동법 시행령 제 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부추진과제 2**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2-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2020년 본조사를 대비하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조사 실시 필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실시 연도(3년 주기) : ('17년)본조사→ ('18년)컨설팅, 지표개정→ ('19년)컨설팅, 예비조사→ ('20년)본조사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컨설팅 운영)** 2017년 장애대학생 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개선요망' 대학 및 '평가불참' 대학에 대한 **컨설팅 필요**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5/6])**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달장애성인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 연차적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발달장애인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

※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연도별 개발 현황 : ('16)인문교양교육 영역 → ('17)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 → ('18)문화예술교육 영역 → **('19)문자해득교육 영역** → ('20)학력보완교육 영역 → ('21) 시민참여교육 영역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2/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개발 필요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 개발 연도별 현황 : ('18)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 기초 연구(1/3) → **('19)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2/3)** → ('20)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개발·보급 확대(3/3)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보조기기는 발달장애인법 제10조2항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개발하여함**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2항**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부추진과제 3**
-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3-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5.20., 시행 2015.11.21.) 제10조 2항**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 **교육 실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⑥-3.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⑥-7. **특수교육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인권 보호 지원 필요성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의 감정과 요구를 느끼고 공감하는 문화조성 필요에 따라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
- 제21조(통합교육)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부추진과제 4**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4-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조성) :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장애학생 가족지원

·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 체험 연수) 국외여행 기회가 제한된 장애학생 및 가족 대상 선진국 모범사례 체험, 학교-가족 간 파트너십 개발, 가족역량 강화** 등의 기회제공

· (중도·중복 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 [3/3]) 부모 및 교사를 위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몸짓상징 개발 3년차 사업으로 상황별·시간별·장소별 등 몸짓상징 사용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 (17)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개발 기초 연구(1/3) → (18)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표현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2/3) → **(19) 중도·중복장애학생 의사소통 몸짓상징 프로그램 개발(3/3)**

·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장애학생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를 위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종합 지원 시스템 운영 필요성과 양육 및 건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요구

※ 연차별 사업 내용 : (16) 장애영유아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개발(1/4) → (17) 초·중등학령기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및 양육지원 시스템 개발(2/4) → (18) 성인기 부모 양육 지원 가이드북 및 지원 종합시스템 운영(3/4) → **(19)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시스템운영 및 콘텐츠 개발(4/4)**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
-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제공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세부추진과제 2**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2-3.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 내실화) : **중도·중복 장애 학생 지원 확대**

-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 [3/3]) 3년간('17~'19) 추진되는 연속사업으로, 발달장애학생 개개인의 흥미를 고려한 진로탐색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직종 제시와 맞춤형 직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 ('17)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예비 문항 개발(1/3) → ('18)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타당화 및 임상규준 개발(2/3) → ('19) 장애학생 직업흥미 검사도구 개발 완료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3/3)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전국 특수학교(급) 전공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선발 및 배치, 장애영역별 교육과정 편제, 내용 체계 확립 등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필요

※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 개발) 현장실습 체험이 어려운 중증장애학생의 직무경험 확대와 직업적응력 강화를 위해 장애특성과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직종 중심으로 진로·직업 교육용 콘텐츠를 연차적 개발하여 장애학생 취업률 향상 제고

※ 연차별 사업 내용 : ('17) 조립·포장·운반 콘텐츠 → ('18) 주방보조 콘텐츠 → ('19) 매장정리 콘텐츠

· (현장지원(공모전·워크숍·연수 등) 사업) 학교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교사·학부모·관리자 대상 맞춤형 세미나, 연수, 우수교수-학습자료 공모전, 유관기관 공동 워크숍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②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특성, 교육적 요구 고려한 교육과정 조정
  -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 제공위해 전공과 설치·운영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세부추진과제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확대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
  - 학교에서 사회로 성공적 전환 성과 도모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16~'20) 추진과제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필요성**

- 교과용도서·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교육과정 개발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과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수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연구 필요

· (현장안착 후속지원)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의 현장 활용 세미나, 시각 대체교과서 발행·공급,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지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 후속지원 필요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운영 지원 [1/4])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여 추후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고, 학령기가 되었을 때 통합교육환경으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19) 만5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20) 장애영아를 위한 감각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21) 만3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22) 만4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 보조교과서 개발

· (시각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2/3]) 시각장애학생의 공평한 교육환경 제공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교과서 개발이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 (18) Ⅰ수준(초등)→**(19) Ⅱ 수준(중학)** →(20) Ⅲ 수준(고등)

·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개발 [2/5]) 중도·중복장애학생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보조교과서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 (18) 여가활동 →**(19) 진로활동(자기탐색, 대인관계, 진로탐색, 직업탐색)** →(20) 시각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21) 청각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22) 지체중복장애학생 보조교과서

·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 [1/4]) 특수학교(급) 교실수업의 다각적인 변화에 실질적인 현장지원과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연계 보완자료 개발 필요

※ 연차별 사업 내용 : **(19)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 →(20)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초등학교) →(21)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중학교) →(22)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고등학교)

- 교육과정 관련 기초연구

·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 2015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방안 연구 필요

※ 201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15.12.1. 교육부), '15~'18년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총 203책)

※ 교육과정 관련 기초 연구 연차별 사업 내용 : (18)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1/2년) →(19) 개별화교육계획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2/2년)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
  -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 내용 대신 생활기능 영역을 편성·운영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세부추진과제 2**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2-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필요성**

- 특수교육 수요자인 장애학생* 및 교사** 수가 매년 증가하여 수요자 대상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시설 확충 필요
-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참여식 연수 및 장애유형별 활동 연수 운영을 위한 다목적관 조성 필요

* 학생 증가 추이 : 87,278명('14) → 88,067명('15) → 87,950명('16) → 89,353명('17) → 90,780명('18)

** 교원 증가 추이 : 17,922명('14) → 18,339명('15) → 18,772명('16) → 19,327명('17) → 20,039명('18)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제공을 위해 5. 특수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수행
-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정기적 실시 ② 일반학교 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정기적 실시

○ 평생교육법

-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② 각 호의 업무 수행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2018 특수교육 운영계획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을 위한 연수 추진 및 장애인의 정보제공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11,078**	**6,642**	**5,974**	**△668**	**△10.1**
■ 특수교육 실태조사	983	480 (3건x160백만)	465 (3건x155백만)	△15	△3.1
■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1,861	2,527 (15건x168.5백만)	2,938 (15건x195.9백만)	411	16.3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8,234	3,635 (4건x908.8백만)	2,393 (7건×341.9백만)	△1,242	△34.2
■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	-	178 (2건×89백만)	178	순증
□ 비목(합계)	**11,078**	**6,642**	**5,974**	**△668**	**△10.1**
○상용임금(110-03)	23	74	128	54	73
○일용임금(110-04)	72	21	-	△21	순감
○일반수용비(210-01)	453	465	550	85	18.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	5	3	△2	△40
○특근매식비(210-05)	6	6	9	3	50
○임차료(210-07)	4	5	6	1	20
○복리후생비(210-12)	2	2	2	0	0
○일반용역비(210-14)	184	190	190	0	0
○국내여비(220-01)	32	39	40	1	2.6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10	0	0
○사업추진비(240-01)	10	9	15	6	66.7
○일반연구비(260-01)	2,532	3,527	4,800	1,273	36.1
○정책연구비(260-02)	35	-	-	-	-
○포상금(310-03)	-	4	5	1	25.0
○민간경상보조(320-01)	7,694	2,264	-	△2,264	순감
○고용부담금(320-09)	12	14	20	6	42.9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89	89	순증
○실시설계비(420-02)	-	-	89	89	순증
○자산취득비(430-01)	7	7	18	11	157.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장애학생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보조교과서 등 개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100	■ 특수교육 실태조사(본조사) : 495백만×2건=990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171백만×11건=1,876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2,745백만×3건=8,234백만			
'18	6,642	■ 특수교육 실태조사(후속조치) : 160백만원×3건=480백만원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168.5백만원×15건=2,527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4건×908.8백만원=3,635백만	6,642	■ 특수교육 실태조사(후속조치) : 160백만원×3건=480백만원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168.5백만원×15건=2,527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4건×908.8백만원=3,635백만원	
'19	6,596	■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 200백만×3건=600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266.3백만×15건=3,996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4건×500백만=2,000백만	5,974	■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 155백만×3건=465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195.9백만×15건=2,938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7건×341.9백만=2393백만 ■ 다목적관 조성: 2건×89백만=178백만	△644
'20	11,873	■ 특수교육 실태조사(본조사) : 600백만×2건=1,200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253백만×17건=4,306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564백만×6건=3,385백만 ■ 다목적관 조성 : 2,982백만	6,121	■ 특수교육 실태조사(본조사) : 650백만×2건=1,300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123백만×15건=1,839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426백만×7건=2,982백만	△5,752
'21	11,873	■ 특수교육 실태조사(본조사) : 250백만×2건=500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438백만×17건=7,438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656백만×6건=3,935백만	5,998	■ 특수교육 실태조사(후속조치) : 235백만원×2건=469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206백만원×17건=3,494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6건×339백만원=2,035백만	△5,875
'22			5,938	■ 특수교육 실태조사(예비조사) : 135백만원×2건=269백만 ■ 장애인 생애 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 206백만원×17건=3,494백만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6건×363백만원=2,175백만	
연평균 증가율(%)	2.9		△2.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평생교육법」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3조(차별금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동법 시행령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 권한 위임 및 구분고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10호, '08.12.31.),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87호(2016.1.12.))

-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 1-2 특수교육교원 증원 및 전문성 제고, 2-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2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3-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 2.** 진로교육 대상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1.),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 교육부 고시 제 2017-112호(2017.2.10.)

○ 추진경위

- 2001년 :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업 및 국회의 쟁점사업('98년도 정기회)으로 제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 및 특수교육 실태를 조사.보고하기로 답변한 후 2001년부터 사업 운영
- 2005년 :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종합대책('04, 교육인적자원부)에 근거하여 '05년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
- 2006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 사업 실시
- 2007년 :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교육과학기술부)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학생 가족참여 국외체험 연수 운영
- 2008년 :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위임(대통령령 제21211호, '08.12.31.)
- 2011년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09, 교육과학기술부)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 실시, 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10, 교육과학기술부)에 근거하여 장애성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 본 조사 실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 ('11.11.16) 고시
- 2012년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11, 교육과학기술부)에 근거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사업 운영,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반 구축' 사업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을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통합

- 2013년 :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용도서 편찬 사업이 교육부에서 국립특수교육원 업무 이관(교육부령 제1호, '13.3.23.)
- 2014년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사업'을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15년부터 통합 및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계획('14.2.26) 발표
- 2015년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81호)' ('15.12.01) 고시
- 2016년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87호)' ('16.01.12) 고시
- 2017년 : '점자법' 시행(2017. 5. 30.),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 2017. 3. 28.)'고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30.69	-	57.23	90.58	-	111	-	66.4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7.2** **(21.4)**	- ( )	- ( )	**57.2** (21.4)	**57.2** **( )**	- (21.4*)	- ( )
'16년	**90.6** **(57.3)**	- (21.4)	- ( )	**90.6** (78.7)	**90.6** **(78.6)**	- ( )	**0** (0.1)
'17년	**111** **(76.9)**	- ( )	- ( )	**111** (76.9)	**110.8** **(76.9)**	- ( )	**0.2** (0)

※ 17년 : (불용) 260-01(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등 22백만원

* 이월 사유 : 12월에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예산이 12월에 편성되어 차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100	-	6,642	-	6,642	6,642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특수교육 실태조사 : 480백만원
- 장애인 생애단계별 지원 : 2,527백만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3,635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2017년 통합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80점
- 2018년 통합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90점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중도.중복장애학생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몸짓 언어 연구 및 활용 지도서 개발 및 장애자녀 부모 양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17년 예산안 교문위: 조승래, 유은혜, 나경원, 안민석 / '17년 예산안 예결위: 박홍근, 성일종, 전재수, 진선미)

  · **(조치사항)** 몸짓언어 개발을 3년차('17~'19)에 걸쳐 진행하되 기초 연구를 우선 수행하며, 장애학생 부모 양육 지원 종합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2/3년차) 사업비 일부 증액 반영

- 전국 특수교육 교원(19,327명)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 시 참여·활동식 수업 필요 공간 부족으로 **국립특수교육원 내 종합 활동실, 실기·실습장 등의 구축에 필요한 다목적관 조성 예산 신규 편성 필요**('18년 국정감사 교문위 : 조승래 / 예산안 교문위: 손혜원, 조승래, 나경원, 송기석)

  · **(조치사항)** '19년 예산에 반영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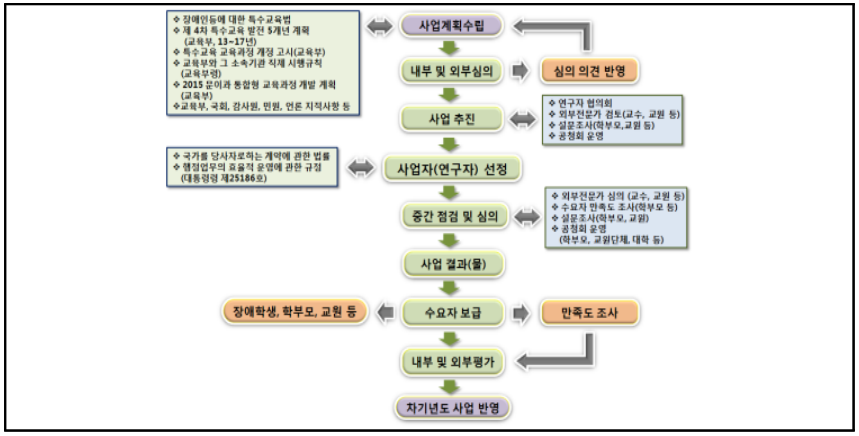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 자료의 유용성(점)	목표	86	86.1	86.2	86.4	86.6	최근 5년 간('14년 실적~'18년 목표) 목표치 향상도(연평균 0.09%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86.6점으로 목표치 설정	- (10점척도 해당점수×응답자 수의 합/전체응답자 수)/10×100	수요자 설문조사자료
	실적	86.0	84.2	86.3	-	-			
	달성도	100.0	97.8	100.1	-	-			
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86	86.1	86.2	86.4	최근 3년 간('16년 실적~'18년 목표) 목표치 향상도(연평균 1.2% 증가)를 반영하여 86.4점으로 목표치 설정	- (10점척도 해당점수×응답자 수의 합/전체응답자 수)/10×100	수요자 설문조사자료
	실적	-	84.2	86.1	-	-			
	달성도	-	97.9	100.0	-	-			
개발자료의 종수(종)	목표	16	18	16	18	-	개발자료 종수는 성과지표로 부적합하다는 평가위원의 견해에 따라 19년부터 지표 삭제	- 특수교육 지원 자료 개발 종수	'18년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6	18	16	-	-			
	달성도	100.0	100.0	100.0	-	-			

※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위원 의견(2017.3.30.) : 성과지표 중 '개발 종수'는 적절한 평가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이를 반영하여 19년부터 "개발 자료의 종수" 성과지표 삭제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 (참고2)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및 지원
○ (참고3) 장애 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참고4)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
○ (참고5)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참고 1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 필요성

○ 집합연수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통합교육,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필요

□ 현황 및 개선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35개 연수과정 중 15개*(42.9%) 과정이 노후화(5년 이상) 되어 신규 개발 시급

* 2018년 운영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시기

개발시기	~2010	2011~2012	2013~2014	2015~2016	2017
과정수	5	10	6	7	7

○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의 장애이해 및 관련 업무의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필요

※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원격교육 콘텐츠가 없음

□ 연차별 계획

연도	과제명	예산 (백만원)
'19년	장애학생 교수 · 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방법 과정,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도방법 과정,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과정,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Ⅰ)	150
'20년	장애학생 교수 · 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사회과, 과학과 교수·학습 지도방법 과정, 장애학생 성교육 지도방법 과정 -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Ⅱ)	300
'21년	장애학생 교수 · 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국어과, 수학과 교수·학습 지도방법 과정, 장애학생 예술교과(음악, 미술) 지도방법 과정	300
'22년	장애학생 교수 · 학습용 원격 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체육과 교수·학습 지도방법 과정 - 특수교육 검사도구의 활용 과정, 특수교육 법규 및 정책의 이해 과정	300

참고 2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및 지원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과 개별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및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 제 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②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Ⅴ. 주요 추진과제2-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필요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특수교육 현장 요구·실태 및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변화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성 강화 방안 연구 요구 반영

□ 추진방향 및 내용

○ 특수교육 교육과정·교과용도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지원

○ 2015 교육과정 적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연구 및 미래사회 대비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기초 마련

□ 연차별 개발 계획

연도	개발내용	예산(백만원)
'19년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현장 안착 후속지원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연구(5건) - 교육과정 적용실태, 교육과정 국제비교, 2015교육과정 평가방안, 교과용도서 체제 개선, 중도·중복 교수·학습자료 활용실태	267
'20년	•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 총론, 기본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개발 등	300
'21년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기초 연구 - 초·중·고 과정별, 교과군별	300
'22년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안착화 방안 - 초·중·고 과정별, 교과군별	300

참고 3 장애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장애영·유아 교육은 영·유아들의 발달을 촉진하여 추후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학령기가 되었을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사회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 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 제 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②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 Ⅴ. 주요 추진과제2-2.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필요성)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수는 '14년 4,899명에서 '17년 5,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 '14년: 장애영아학습 운영 가이드북 및 DVD 개발, 만 3~4세 장애유아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 보급

- '15년: 생활주제별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방향 및 내용

○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가정과의 연계를 고려한 자료 개발

○ 연령별 누리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동참여 증진, 상호작용 증진, 발달 및 학습 증진을 위한 자료 개발

□ 연차별 개발계획

연도	개발내용	예산(백만원)
'19년	· 장애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운영 지원(1/4년차) - 만5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
'20년	· 장애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운영 지원(2/4년차) - 0세~2세 장애영아를 위한 감각통합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
'21년	· 장애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운영 지원(3/4년차) - 만 3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
'22년	· 장애영유아 발달단계별 교육과정운영 지원(4/4년차) - 만 4세 장애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개발	400

참고 4 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

□ 추진배경

○ (필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필수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자료 개발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5~6학년)는 '19년부터 17시간, 중학교는 '18년부터 단계적으로 34시간 이상 SW교육 필수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특수학교(중·고등학교) 선택교과(정보통신활용)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문제해결 능력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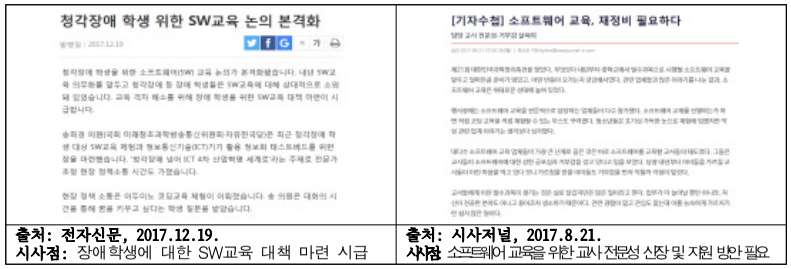
청각장애 학생 위한 SW교육 논의 본격화

출처: 전자신문, 2017.12.19.
시사점: 장애학생에 대한 SW교육 대책 마련 시급

[기자수첩] 소프트웨어 교육, 재정비 필요하다

출처: 시사저널, 2017.8.21.
시사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신장 및 지원 방안 필요

○ 장애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적 경험과 사고의 폭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분석 및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보완자료 개발, 보급 필요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교육부)'**, 1-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보조공학기기 활용**,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SW 교육 및 융합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개발방향

○ 장애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연계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용 보완자료 개발·보급

○ 학교 과정별 교육내용과 장애수준을 고려한 교과융합형 보완자료 개발·보급

□ 연차별 개발 계획

연도	개발내용	예산(백만원)
'19년	· 장애학생 교과연계 교수·학습 보완자료 6종 개발 - 초등 실과, 중등 정보 관련 교과연계 소프트웨어교육 보완자료	400
'20년	·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초등학교) -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 교과융합형 보완자료	400
'21년	·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중학교) - 중학교 기본교육과정 교과융합형 보완자료	400
'22년	· 장애학생 교과융합형 교수·학습 보완자료 개발(고등학교) -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 교과융합형 보완자료	400

참고 5 국립특수교육원 다목적관 조성

□ 현황

○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로 인해 시·도 평생교육 담당·운영 인력 연수 추진

※ 19년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6과정/31백만원/ 270명

○ 중앙정부의 정책·운영 및 전국 단위 핵심 교원*연수 등 시도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특수교육 관련 연수 운영

* 특수교사의 교과(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포함) 수업역량 강화 과정, 장애대학생지원센터 담당자 과정, 교원 및 관련인 장애체험교육 등

※ 18년 연수 : 자격(초등) 1과정, 직무 31과정, 기타 5과정/448백만원/ 1,960명

□ 문제점

○ (평생교육 연수) 참여·활동 연수 공간 부족으로 평생교육 6대 영역 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체험 위주 연수 과목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

※ 보행지도, 휠체어 보조, 장애인 응급대처, 보치아·휠체어 댄스·넷볼·골볼 등 장애인 체육활동, 합창·합주·국악실습 등 음악 및 미술 활동

○ (특수교사 등 연수) 실기·체험 연수 공간 부족으로 연수 시 실습·실습 교과목*을 **이론 수업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 및 체험 과목**은 **인근 타 기관 협조 받아 체육관 등에서 실시**

* 장애유아 신체활동, 과학과 실험·실습, 교수·학습자료제작, 음악·미술, 장애학생 안전체험교육 등

** 구기운동 등 특수체육·통합체육, 보행훈련, 휠체어 사용 등

□ 예산 : 4,421백만원

○ (19년) 설계비 178백만원 → (20년) 공사비 4,243백만원

※ 설계비 : 기본설계비 89백만원, 실시설계비 89백만원

※ 순 공사비 : 건축비 2,344백만원, 토목·조경 247백만원, 기계설비 937백만원, 전기통신 614백만원, 자산취득비 43백만원, 감리비 45백만원, 시설부대비 13백만원

□ 다목적관 조성계획안

○ 조성 위치 : 국립특수교육원 아산청사 2~4층 일원(빨강색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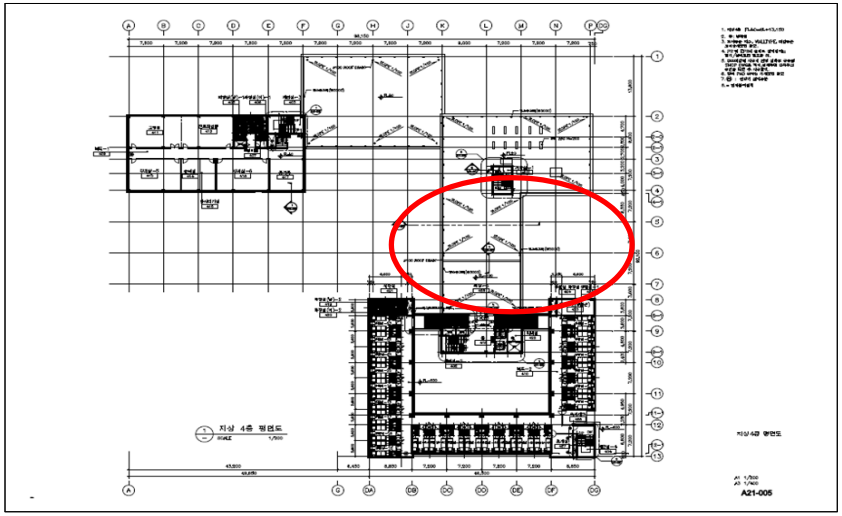

○ 사업규모 및 공간 계획

- 건축면적 : 1,071㎡ (28.8m×5.9m + 30.6m×25.2m +16.2m×3.6m + 9.9m×7.2m)
- 건축연면적 : 1,693㎡ (2층 181㎡ + 3층 533㎡ + 4층 979㎡)
- 공간계획 : 종합 활동실, 실기·실습장, 체육시설 등

층 별	실 명	면 적	비 고
1층	- VOID	-	
2층	- VOID - 분임토의실 및 휴게공간 확장 - 강의준비실 및 보관장소 - 공용면적(복도)	181.44㎡ (54.88평)	
3층	- 연수공간(종합 활동실 등) - 분임토의실 2개실 - 요가, 스포츠댄스 등 실습실 - 공용면적(복도)	532.80㎡ (161.17평)	
4층	- 체육시설(기자재실, 탈의실, 샤워장) - 미술, 과학 등 체험실 - 조정실(분전반 및 체육설비) - 공용면적(복도, 로비 등)	978.48㎡ (295.99평)	체육시설은 사진전 등 전시공간 겸용
합계		1,692.72㎡ (512.05평)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16	특수학교	30.1	12.6	14.7	22.6	16.5	45.5	17.2	11.8	7.2	15.7	10.3	15.9	22.0	27.5	19.0	7.7	7.8	17.6
	특수학급	18.6	23.1	10.9	26.9	14.8	23.0	16.8	1.3	11.6	16.7	15.9	19.4	12.2	8.0	9.9	12.6	17.6	15.2
	평균	24.4	17.9	12.8	24.8	15.7	34.3	17.0	6.6	9.4	16.2	13.1	17.7	17.1	17.8	14.5	10.2	12.7	16.4
'17	특수학교	30.6	14.3	14.4	24.2	8.8	41.7	15.4	0	7.3	15.1	12.4	20.2	33.1	26.1	19.6	10.5	7.7	17.7
	특수학급	23.5	13.7	10.2	27.1	8.2	24.1	12.2	1.2	9.8	16.9	17.6	18.7	15.6	7.2	4.2	11.8	16.8	14.0
	평균	27.1	14.0	12.3	25.7	8.5	32.9	13.8	0.6	8.6	16.0	15.0	19.5	24.4	16.7	11.9	11.2	12.3	15.8
증감	특수학교	0.5	1.7	-0.3	1.6	-7.7	-3.8	-1.8	-11.8	0.1	-0.6	2.1	4.3	11.1	-1.4	0.6	2.8	-0.1	0.1
	특수학급	4.9	-9.4	-0.7	0.2	-6.6	1.1	-4.6	-0.1	-1.8	0.2	1.7	-0.7	3.4	-0.8	-5.7	-0.8	-0.8	-1.2
	평균	2.7	-3.9	-0.5	0.9	-7.2	-1.4	-3.2	-6.0	-0.8	-0.2	1.9	1.8	7.3	-1.1	-2.6	1.0	-0.4	-0.6

[500]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정보화지원	765	524	742	**218**	**41.6**

* 사업코드 : 12 - 11 - 050 - 051 - 1200 - 1234 - 500
* 담 당 자 :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장(안수경), 교육연구사(조연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사이트 운영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 등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사업기간	'9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배치 장애학생 89,353명 ○ 특수교육 교원 19,327명, 일반학교 학생·교원 및 학부모 등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특수교육원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 : 169백만원**

▪ 장애유형별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자료 등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기능개선,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비

- 산출내역 : 149백만원(사이트운영 1건x149백만원)

▪ '17년 정보자원 통합사업의 시행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관된 원격교육연수 시스템 유상 유지 관리 사업비

- 산출내역 : 19백만원(시스템 유상 유지관리비 1건x19백만원)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외부자문 심의 사업비

- 산출내역 : 1백만원(사업 심의비 1건x1백만원)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 206백만원**

▪ 장애학생 보조공학 지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부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권리보호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사업비

- 산출내역 : 206백만원(기기개발 1건x186백만원, 연구1건x20백만원)

○ **장애학생 정보화역량 강화 : 367백만원**

▪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차별·제한 없이 모든 장애학생에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비

- 산출내역 : 210백만원(140천원x1,500명)

▪ 일반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실시에 따른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직업 선택의 자유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 산출내역 : 157백만원(교육 프로그램 3종x52.3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특수교육정보화지원	524	742백만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사이트 운영	(58백만원) 사이트 운영 1건, 사업 심의 1건 운영	(169백만원) 사이트 서비스 기능개선 1건x149백만원, 원격연수유지관리 1건x19백만원, 사업 심의 1건x1백만원 운영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206백만원) 보조공학 기기 1종 개발, 연구 1건	(206백만원) 보조공학 기기 1종 x186백만원 개발, 연구 1건x20 백만원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260백만원)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1건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1종 개발	(367백만원)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1건x210백만원 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3종x52.3백만원 개발

□ **지원 필요성**

○ 장애로 인해 학업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장애학생 교수·학습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보급 및 일반학생, 학부모 등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지원을 위해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특수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현장 지원 확대 필요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시스템 유지 관리)**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아키텍트팀-73(2018.04.10.)에 의거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장애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지원 필요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중중 중도 장애학생의 비경쟁 종목 참여에 대한 국가책무성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정보화지원	**765**	**524**	**742**	**218**	**41.6**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54	58 (사이트 운영 1건x58백만)	169 (사이트 서비스 기능 개선 1건x150백만, 원격연수유지관리 1건x19백만원)	**111**	**191**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195	206 (개발1건x174백만, 연구1건x32백만)	206 (개발1건x186백만, 연구1건x20백만)	**-**	**-**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강화	203	260 (대회1건×210백만, 개발1종×50백만)	367 (대회1건×210백만, 개발3종×52.3백만)	**107**	**41.2**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313	-	-	**-**	
□ 비목(합계)	**765**	**524**	**742**	**218**	**41.6**
○ 상용임금(110-03)	27	31	32	1	3.2
○ 일반수용비(210-01)	39.7	30	23	△7	△23.3
○ 특근매식비(210-05)	0.8	2	2	-	-
○ 복리후생비(210-12)	0.5	1	1	-	-
○ 일반용역비(210-14)	193	200	219	19	9.5
○ 국내여비(220-01)	10	10	10	-	-
○ 국외업무여비(220-02)	-	10	10	-	-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 일반연구비(260-01)	480	229	430	201	87.8
○ 고용부담금(320-09)	2	2	6	4	200.0
○ 자산취득비(430-01)	9	6	6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등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한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장애학생의 정보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 초		'18~'22 중기계획 변 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787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 콘텐츠 개발 1종 312백만원			
'18	524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524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
'19	787	■ 사이트 운영: 169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33백만원, 개발 173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412백만원(개발:202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742	■ 사이트 운영: 169백만원(사이트 개선:150백만원, 원격연수유지관리 19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0백만원, 개발 186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367백만원(개발:157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45
'20	870	■ 사이트 운영: 200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24백만원(연구:50백만원, 개발 17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436백만원(개발:176백만원, 대회 260백만원)	524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346
'21	900	■ 사이트 운영: 200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24백만원(연구:33백만원, 개발 173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476백만원(개발:176백만원, 대회 300백만원)	524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376
'22	900	■ 사이트 운영: 200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24백만원(연구:33백만원, 개발 173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476백만원(개발:176백만원, 대회 300백만원)	524	■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정보격차 해소:206백만원(연구:22백만원, 개발 184백만원) ■ 정보화역량강화:260백만원(개발:50백만원, 대회 210백만원)	△376
연평균 증가율 (%)	3.4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①**교육부장관은** ...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 **보조공학기기 등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시행, '15.11.21)**
- **장애인복지법**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15.12.1.)」**
  - **Ⅳ.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수·학습** : 학교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 **보조공학 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추진경위

- 1998년 :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운영
- 2005년 :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조성'으로 사업명 변경
- 2010년 : 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정식 직제 신설
- 2014년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으로 사업명 개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특수교육정보화지원	5.8	-	5.8	7.8	-	7.9		5.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발생) 조달 낙찰 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정보화예산 이.전용 및 낙찰차액 사용' 항목 지침에 따라 낙찰차액('15년 40백만원, '16년 30백만원, '17년 20백만원) 불용 처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8 ( )	( )	( )	5.8 ( )	5.4 ( )	( )	0.4 ( )
'16년	7.8 ( )	( )	( )	7.8 ( )	7.5 ( )	( )	0.3 ( )
'17년	7.9 ( )	( )	( )	7.9 ( )	7.7 ( )	( )	0.2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787		524		524	514	97.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장애학생 교수·학습 사이트 운영: 58백만원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98백만원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258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통합 재정사업평가('17) : 89점(우수)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국·내외 사례**

  · **(국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개별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 '사이버학습'을 **'e학습터***'로 **통합 개편 하여 추진**

  * 초3~중3 학생 대상 콘텐츠, 교수·학습 자료, 영상자료, 평가 문항 등을 제공

→ 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의 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필요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국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고, **연구·선도학교를 1,600*여 곳**으로 **확대**

  * 초등학교 940교, 중학교 456교, 고등학교 245교

→ 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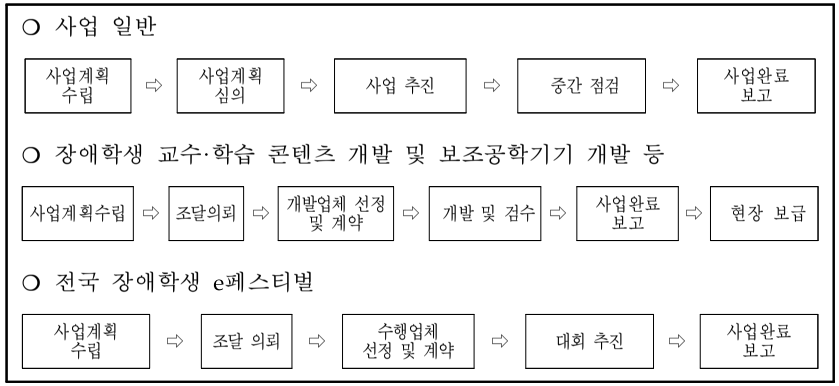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이용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5	77	18년 대비 2.7% 증가한 77점으로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백분율 환산	사용자 대상 전자설문시스템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이용자 접속 횟수 (단위: 회)	목표	950,000	960,000	490,000	760,000	900,000	18년 대비 18.4% 증가한 900,000회로 설정	교수·학습 사이트 접속 횟수 합계	사이트 접속통계시스템 접속 횟수 집계
	실적	951,837	981,034	742,694					
	달성도	100.2	102.2	151.4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사항 1부

○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1부

○ (참고 3)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1부

○ (참고 4)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1부.

○ (참고 5)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시스템 유지 관리 1부.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 **(전국 특수학교 학부모 연대)**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및 사회통합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사이트의 개선이 매우 필요함**

□ **현장 교원**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교사)** 대회의 성격이 경쟁이지만 장애가 심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종목을 개설하여 중증 장애학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종권 교감)**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중도·중복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경쟁보다는 정보문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람.

□ **시각장애학생**

○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자료 필요**함

□ **학계**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보급 확대 필요**

- (박중휘 교수)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동일하게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가 개발·보급되어야 하기에 연도별 개발 종수 확대 필요
- (최상배 교수)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를 에듀넷과 같은 형태로 확대 운영 필요

○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 필요**

- (손병창 교수) 장애학생 학습 및 교육 활동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과 **정보 지원 필요**
- (우정한 교수)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을 위해 더 많은 보조공학 관련 콘텐츠 개발**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사이트 운영 : 111백만원 증액 요구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 125백만원 증액 요구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 성과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체계 구축·운영 및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디지털북 등 4종 개발·보급 등으로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제공,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이트 운영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일반학교 학생 및 교사 등 1,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87.2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의 성과 획득

- 조사대상 : 대회 참가자(장애학생, 일반학생, 교사 및 학부모 등)
- 문항구성 : 전체 대회 운영 만족도, 개별 대회 운영 및 종목 만족도, 문화행사 만족도, 대회 시설 만족도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교육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1종 및 관련 연구 1개 개발

○ **성과지표 및 외부 심의 결과**

- 2017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 89점(우수)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만족도 :목표(80점), 실적(80.84)

· 사이트 이용자 접속횟수(수) : 목표(490,000회), 실적(742,694회)

□ 현장의 변화

○ **(언론, 매일경제 2017.9.5.)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여 열기 후끈...'내년에도 참가 할께요**

'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여 열기 '후끈'..."내년에도 참가할게요

엄영택 기자 입력 : 2017.09.05 20:54:30

"기회가 되면 또 참가할거에요."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게임 실력을 겨룬다.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막한 '2017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현장은 뜨거웠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의 공동 주최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136개팀, 847명의 학생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현장은 특수학교 분야 4종, 특수학급 분야 4종, 시범종목 1종 등 총 9개 종목에 참가한 학생들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참가 열기로 달아올랐다.

장애학생들은 승부에 집중하며 승리에 환호하고 패배에 아쉬워했다. 지도교사들은 경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제 실력을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부산 동아고등학교 참가 학생 이태경(고2)군과 이태군(고2)군은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타크래프트(특수학급 발달장애 비장애학생 동반 종목)' 경기 4강에 올랐으나 아쉽게 패해 결승 문턱에서 발을 돌렸다.

이태경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로부터 '스타크래프트'를 배웠고 이번에 대회에도 나오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태군 학생은 "결승에 꼭 나가고 싶었다"며 "초등학교 시절 스스로 배워 그동안 친구들과 플했는데 태경이형과 함께하는게 더 플거웠다"고 멋쑬이기도 했다.

참고 3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등

□ 목적 및 필요성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제공·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권 보장 확대, 장애이해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추진 경과 및 내용

○ 구축.운영 : 2004년 ~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개요

사이트명	교육자료 및 정보	서비스 대상('17)
에듀에이블 (eduable.net)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지원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사진 및 이미지, 시·도교육청 우수 수업자료 - 디지털북 및 수업 자료 제공 - 디지털북 저작도구 및 수업 콘텐츠 탑재	장애학생: 89,353명 특수교원: 19,327명 일반교원: 50,162명 보 호 자: 77,136명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일반학교 학생, 학부모 등 범국민 대상
	(이얍) - 교과서, 참고서 점역 및 디지털 파일 탑재 - EBS 수능 교재 점역 파일 및 동영상 강의	시각장애학생: 2,026명 시각장애교사: 520명

□ 예산 요구 배경

○ **일반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e학습터)**이 **통합 확대**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온라인 제공**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확대 필요**

*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기능 개선, 현장지원단 확대 운영

□ 예산 소요

○ **사이트 운영(143백만원)** : 무기계약직 인건비 31백만원, 원가계산, 운영위원회 협의 등 6백만원, 서비스개선 및 현장지원단 운영 100백만원, 사업추진, 고용부담금, 여비 등 6백만원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운영(7백만원)** : 심의위원회 심사 및 운영 2백만원, 사업심의 보고서 발간 5백만원

참고 4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목적 및 필요성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16.12.2)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 등 개발

- 장애학생에게 특화된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 관련법규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항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기본계획('16.12.2)

□ 개발내용

- **(내용)**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장애학생에게 특화된 정보화 교육 지원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개발내용)** 언플로그드, 코딩봇활용 등 미래 환경에 적응을 위한 정보화관련 다양한 교육 내용 연차적 개발·보급
- **(보급)**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듀에이블) 탑재.보급

□ 예산 요구 배경

○ **교육부는 '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고, **연구·선도 학교**를 **1,600여 곳**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 연차별 개발계획 및 소요예산

연도	프로그램명	장애영역	종	소요예산
'19년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청각, 지체, 지적장애	3종	157백만원
'20년	교과통합형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전영역(특수학급용)	3종	157백만원
'21년	교과통합형 소프트웨어 교육용 프로그램	전영역(특수학교용)	3종	157백만원

참고 5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연수원 시스템 유지 관리

□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아키텍트팀-73(2018.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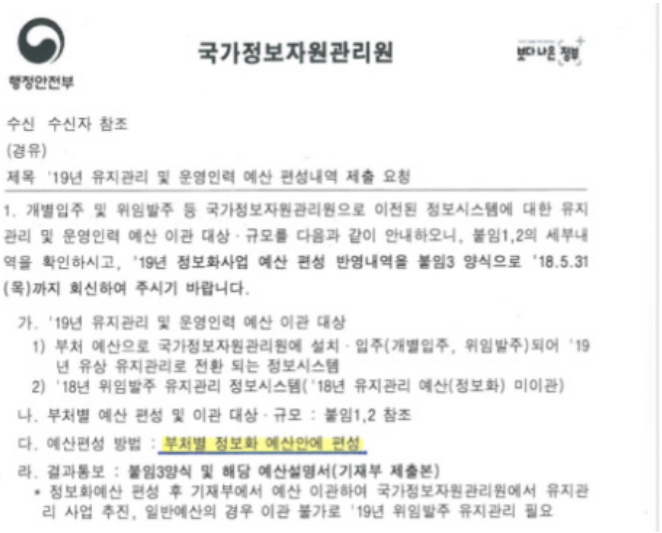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내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9년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 예산 편성내역 제출 요청

1. 개별입주 및 위임발주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 예산 이관 대상·규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1,2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고, '19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반영내역을 붙임3 양식으로 '18.5.3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9년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 예산 이관 대상
1) 부처 예산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입주(개별입주, 위임발주)되어 '19년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 되는 정보시스템
2) '18년 위임발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18년 유지관리 예산(정보화) 미이관)

나. 부처별 예산 편성 및 이관 대상·규모 : 붙임1,2 참조

다. 예산편성 방법 : 부처별 정보화 예산안에 편성

라. 결과통보 : 붙임3양식 및 해당 예산설명서(기재부 제출본)
* 정보화예산 편성 후 기재부에서 예산 이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일반예산의 경우 이관 불가로 '19년 위임발주 유지관리 필요

□ 유지 관리 금액 내역

(단위 : 원)

구성자원	유지 관리 금액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EB1_JBossEWS3.0.3	60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EB1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EB2_JBossEWS3.0.3	60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EB2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AS1_JBossEAP	60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AS1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AS2_JBossEAP	60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WAS2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DB1_Cubrid	4,95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DB1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DB2_Cubrid	4,95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DB2_OS	930,000
국립특수교육원원격연수_MAIL1_OS	930,000
총계	**18,810,000**

[650]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574	576	661	**85**	**14.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200 - 1234 - 650
* 담 당 자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장(노선옥), 주무관(이서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특수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특수학교 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 EBS 방송교재 점역 및 보급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특수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 426백만원**
- 통합학급 담당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연수 운영 사업비
- 산출내역 : 426백만원(2건x213백만원)

○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 114백만원**
- 특수학교(유·초등) 교사 1급 정교사 과정 운영 사업비
- 산출내역 : 114백만원(3개 과정×38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사업 : 121백만원**
-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EBS 방송교재 점역 사업비
- 산출내역 : 121백만원(100책×1.21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576	661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및 콘텐츠 개발	(426백만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	(114백만원) 3개 과정 운영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100책 점역 보급	(121백만원) 100책 점역 보급

□ **지원 필요성**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특수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 교원, 학부모,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을 대상으로 원격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필요

○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질적 개선 및 시도교육청 자체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교사 자격연수 운영 필요

○ **(EBS 방송교재 점역)** 시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EBS 방송교재의 점역 보급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574**	**576**	**661**	**85**	**14.8**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0	455 (2건x228백만)	426 (2건x213백만)	△29	△6.4
■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	-	114 (3과정x38백만)	114	순증
■ EBS 방송교재 점역 사업	124	121 (100책×1.21백만)	121 (100책×1.21백만)	-	-
□ **비목**(합계)	**574**	**576**	**661**	85	14.8
○ 상용임금(110-03)	108	119	125	6	0.5
○ 일용임금(110-04)	-	-	4	4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28	33	124	91	27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1	1	순증
○ 임차료(210-07)	-	-	3	3	순증
○ 재료비(210-11)	-	-	4	4	순증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 일반용역비(210-14)	347	212	195	△17	△8
○ 기타운영비(210-16)	-	-	3	3	순증
○ 국내여비(220-01)	15	8	7	△1	△12.5
○ 사업추진비(240-01)	1	1	2	1	100
○ 일반연구비(260-01)	57	180	164	△16	△8.9
○ 고용부담금(320-09)	12	21	23	2	9.5
○ 자산취득비(430-01)	4	-	4	4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보급

○ 시도 자체 운영 기반 조성 및 연수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자격연수의 위탁 운영

○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EBS 방송교재 점역 보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 초		'18~'22 중기계획 변 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73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2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18	576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576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
'19	528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07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661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26백만원 ■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114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133
'20	950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829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576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374
'21	950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829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576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374
'22			576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 455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121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6.4%		3.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⑤ 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대한 사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추진경위

<원격교육 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로 인가
- 2005년 「장애인교육복지기반조성」 사업으로 원격연수운영 및 연수콘텐츠 개발
- 2010년 「장애인교육복지기반조성」 사업에서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사업으로 분리되어 수입대체경비로 운영
- 2017년 수입대체경비의 수입원을 수익자 부담에서 시도분담금으로 변경

<특수학교 교사 자격연수 운영>

- 1994~2018년까지 국립특수교육원 기본경비로 특수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 2019년 시도 위탁경비(수입대체경비)로 운영(유·초등 250명)

<EBS 방송교재 점역사업>

- 2004년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차별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방송교재 점역 사업 추진
- 2010년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에 편입하여 수입대체경비로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특수교육 연수 및 운영	688	-	657	603	-	573	-	576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57 (657)	- (-)	14 (14)	672 (672)	672 (672)	- (-)	- (-)
'16년	603 (603)	- (-)	15 (15)	603 (603)	603 (603)	- (-)	- (-)
'17년	573 (573)	- (-)	105 (105)	678 (678)	574 (574)	99 (99)	5 (5)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73	573	576	-	576	700	137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원격교육연수 운영 및 연수 콘텐츠 개발비 447백만원
- EBS 방송교재 점역 사업비 323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원격교육연수 및 자격연수 운영

수요 조사 ⇒ 연수 운영 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연수계획 통보 ⇒ 연수 운영 ⇒ 연수 평가

○ EBS 방송교재 점역

수요 조사 ⇒ 점역 사업 계획 수립 ⇒ 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 점역 추진 ⇒ 수요자 점역 교재 보급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수학습지도능력 (단위:점)	목표	82.3	84	84.5	-	-	소액 사업으로 2018년부터 평가 제외	-	-
	실적	85.1	84	88	-	-			
	달성도	103.4	100.0	104.1	-	-			
연수미이수율 (단위:%)	목표	신규	신규	17.5	-	-	-	-	-
	실적	신규	신규	16.9	-	-			
	달성도	-	-	103.5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해당 없음

[1400] 학교교육 활성화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400] 학교교육 활성화	303	**23,491**	**26,028**	**2,537**
[1403]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일반회계)	304	230	217	△13
[300]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304	230	217	△13
[1404] 창의적 인재육성(일반회계)	317	17,164	17,647	483
[305]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317	2,640	2,430	△210
[401]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331	2,497	2,630	133
[403] 과학기술인재육성 사업	356	9,410	9,970	560
[405]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기반구축(R&D)	398	2,617	2,617	-
[1405] 학생정신 건강센터 지원(일반회계)	414	938	936	△2
[300] 학생정신 건강센터 지원	414	938	936	△2
[1409] 교육기부 활성화(일반회계)	429	4,603	4,603	-
[40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29	4,603	4,603	-
[1412] 인성교육 진흥(일반회계)	443	556	485	△71
[300] 인성교육 진흥사업	443	556	485	△71
[304]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455	-	2,140	2,140

[300]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230	230	217	**△13**	**△5.7**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400 - 1403 - 300
* 담 당 자 : 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교육협력과장(최성유), 연구관(고현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국가차원의 올바른 학부모교육 정보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부모 교육정책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참여 지원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100%
사업시행주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 120백만원**

- **(내용)** 학부모지원정책 추진의 중추기관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Parents Education)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제경비 지원
- **(산출내역)** 인건비 118.8백만원(3.3백만원×3명×12월), 공공요금 등 제경비 1.2백만원(0.1백만원×12월)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 : 97백만원**

- 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50백만원), ②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34백만원), ③학부모정책 지원기반 조성(13백만원)을 위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NCPE) 사업추진비

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 5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학부모 역할 정립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필요
※ 부모-자녀 활동,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의 마음자세는 자녀의 성공 및 심리적 안정과 밀접[OECD PISA 2015 Results on Students Well-being]
○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및 질 제고 요구 확대
※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학부모 교육 모델 등을 개발·보급하고, 혁신적인 교육참여 사례를 발굴·확산

가. 학부모지원시스템 운영 및 학부모정보 제공 : 40백만원

- **(내용)**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및 온라인교육센터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각종 교육자료 및 정보 제공
- **(산출내역)** 40백만원(40백만원×1식)

나. '함께하는 교육, 학부모On누리' 웹진 제작 : 10백만원

- **(내용)** 학부모에게 유용한 자녀교육 정보 및 다양한 학부모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분기별 웹진 제작
- **(산출내역)** 10백만원(2.5백만원×4회)

②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 34백만원

○ **전국학부모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Parents Education)**는 시·도 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 정보 교류, 직무교육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HUB역할** 수행, 시·도 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교육에 활용하도록 **교재 개발·보급**, **시·공간적인 이유**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하여 **온라인 학부모교육자료 개발 및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정보제공** 등 **학부모지원정책의 중추역할**을 수행
○ **학부모지원정책 추진체제**
- **(중앙 기구)** 교육부 지정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지역단위 실행기구)**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93개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지역단위 학부모교육 운영,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설치·운영

가.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운영 및 요람 발간 : 24백만원

- **(내용)** 시.도교육청 및 93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센터 간 상호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을 위한 직무연수 및 협의회 개최, 학부모지원정책 이슈사항 공유 및 협력
- **(산출내역)** 직무연수-워크숍(93개 150명 대상) : 19백만원×1식=19백만원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업무 요람 발간 : 5백만원×1식=5백만원

나. 학부모교육 모델 개발·보급 : 10백만원

- **(내용)**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 대상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관한 학부모교육 모델 개발 및 보급*

* '14년:독서인성교육 매뉴얼, '15년:놀이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16년:학부모 학교이용안내 매뉴얼 및 청탁금지법 리플릿, '17년: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모교육 모델 매뉴얼 개발

- **(산출내역)** 10백만원×1식=10백만원

③ 학부모정책 지원 기반조성 : 13백만원

▪ **(내용)**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부모의 전문성을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학부모교육의 목적, 학부모교육의 필요성,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등 체계적인 학부모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정 방안 연구

▪ **(산출내역)** 13백만원×1식=13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230	217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 11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 97

□ 지원 필요성

○ 전국단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설계,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네트워크 및 Hub 역할 등 학부모지원 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전국학부모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Parents Education)"는 **국가차원**에서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자녀교육 관련 정보제공,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효율적인 학부모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지방비 운영, '15년 전국 93개 운영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학부모지원센터와 구분·운영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230**	**230**	**217**	**△13**	**△5.7**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120**	**120**	-	-
① 인건비	117.6	118.8 (3.3×3명×12월)	118.8 (3.3×3명×12월)	-	-
② 공공요금 등 제경비	2.4	1.2 (0.1×12월)	1.2 (0.1×12월)	-	-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사업비	**110**	**110**	**97**	**△13**	**△11.8**
①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55**	**60**	**50**	**△10**	**△16.7**
- 학부모지원시스템 운영 및 학부모정보 제공	55	60 시스템 기능개선·유지보수 (40×1식) 정보(웹진 등) (20×1식)	50 시스템 기능개선·유지보수 (40×1식) 정보(웹진 등) (10×1식)	△10	△16.7
② 시도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42**	**35**	**34**	**△1**	**△2.9**
-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운영	22	20 (20×1식)	19 (19×1식)	△1	△5.0
-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 요람 발간	4	5 (5×1식)	5 (5×1식)	-	-
- 학부모교육 모델 개발 보급	16	10 (10×1식)	10 (10×1식)	-	-
③ 학부모정책 지원기반조성	**13**	**15**	**13**	**△2**	**△13.3**
- 학부모정책 지원 연구	13	15 (15×1식)	13 (13×1식)	△2	△13.3
□ 비목(합계)	**230**	**230**	**217**	**△13**	**△5.7**
○ 출연금(350-01)	**230**	**230**	**217**	**△13**	**△5.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상담과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학부모회 지원·컨설팅 및 다양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학부모 지원 업무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30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사업비 110			
'18	230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사업비 110	230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사업비 110	
'19	230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사업비 97	217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0 사업비 97	△13
'20	306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66 사업비 140	266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26 사업비 140	△40
'21	345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75 사업비 170	308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68 사업비 140	△37
'22			338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168 사업비 170	
연평균 증가율 (%)	11.4		10.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30	217	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4	4	0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3.86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1.188억원[1] ÷ 0.4812억원[2] = 2.5명 1) 인건비 총액: 급여+교통보조비+정책급식비+시간외수당+법정부담금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812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기관운영출연금(350-01) 1.112억원을 <표4>의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0.982억원 ÷ 0.72억원 = 1.36명 **□ 2018년 고용효과: 4명** ① 직접고용효과 : 1.188억원 ÷ 0.4812억원 = 2.5명 ② 간접고용효과 : 1.112억원 ÷ 0.72억원 = 1.5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법적 근거 마련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 제13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제19조제1항 및 4항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추진경위

- 교과부 內 정부 최초의 학부모지원 조직인 '학부모정책팀' 신설('09. 5월)
-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확정·발표('09.11.9)
- 자녀교육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10. 10월~) 및 홈페이지 개통('11.3월)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학부모교육시스템 운영('13. 3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내 실천과제 "5. 단위 학교 자치 강화(학부모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우수 사례 선정·보급)"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2.7	-	2.7	2.7	-	2.3	-	2.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 (2.7)	( )	( )	2.7 (2.7)	2.7 (2.7)	( )	( )
'16년	2.7 (2.7)	( )	( )	2.7 (2.7)	2.7 (2.7)	( )	( )
'17년	2.3 (2.3)	( )	( )	2.3 (2.3)	2.3 (2.3)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30	-	230	-	230	23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8. 12월까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운영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0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지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법률에 명확한 출연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지원 방식 변경 검토('16년 국회 교문위 예산안 및 결산 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평생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추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교육 지원 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유은혜의원 대표발의, '17.8)

○ (평가결과)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18.4월,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국 학부모정보자원센터>

○ 지원주체 : 연방정부

○ 지원대상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지역교육청 간의 컨소시움(주관기관은 비영리단체)

○ 지원유형 : 경쟁공모

○ 예산 : 매년 약 450억원 내외
※ '06년 $39,600,000, '07년 $39,600,000, '08년 $38,908,188

○ 지원센터 수 : '08년 62개

○ 센터당 지원규모 : 약 5~10억원($406,294~$843,386)
- 평균지원액 : 약 7.3억원 ($607,742)

○ 법적근거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itle V, Part D, Subpart 16

○ 사업개요
-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과 창출과 학부모, 교사, 교장, 행정직원 등 학교인사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 초중등교육법은 지원센터가 도시와 농촌을 함께 지원하도록 요구
- 지원액의 50% 이상은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하며, 30%이상은 유년층 자녀의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함

○ 사업내용
- 유년층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지원
- 자녀의 학업성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
※ 학부모지원사업이 주정부와 지역학군의 책무임을 이해하는 교육 포함
- 학부모가 교사, 교장, 학생생활지도사, 행정직원 등 학교 인사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가 학교개선 계획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참여를 위한 자료개발, 정보제공, 컨퍼런스 또는 워크샵 개최
- 저소득층, 소외계층, 비영어권 학부모를 주로 지원

○ 참고사이트 : http://www.ed.gov/programs/pirc/index.html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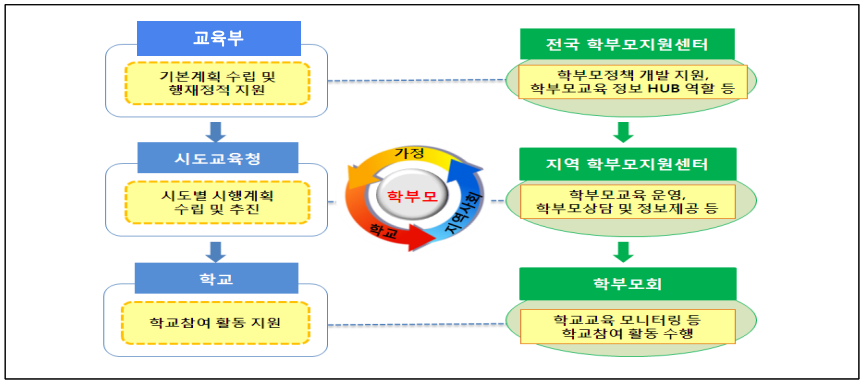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및 연수 참자가 수 (단위: 명)	목표	12,000	15,000	20,000	21,000	22,000	전년도 성과목표 대비 5% 상향조정	당해연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및 연수과정 총 참자가 수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 수강 학습자 수 추출 및 오프라인 교육 참자가 수 산정
	실적	14,815	19,143	21,561	-	-			
	달성도	123%	128%	107.8%	-	-			
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85	85	92	92.9	93	전년도 성과목표 대비 1% 상향조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100점 만점 기준) 산출	온라인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89	91.8	92.8	-	-			
	달성도	105%	108%	100.8%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현장 의견>

□ (학부모) 학부모 교육자료 개발 주제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7. 1.~ `17. 12.

○ 조사대상 : 학부모On누리 학부모 온라인교육센터 수강생

○ 조사방법 : 학부모On누리 학부모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팝업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학부모교육 수요조사

□ 교육정책	□ 학부모정책	□ 진로·진학	□ 건강과 안전
□ 창의·인성	□ 학교(성)폭력 예방	□ 학습지도안내	□ 기타(_)

○ 수요조사 결과

(단위 : 명, %)

학부모 교육정책	진로 진학	창의 인성	학습 지도	학교(성) 폭력예방	건강 안전	기타	총계
706 (36.2%)	370 (18.9%)	361 (18.4%)	194 (9.9%)	175 (8.9%)	126 (6.4%)	26 (1.3%)	1,958 (100%)

<예산 반영사항>

□ 학부모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맞춤형 교육 기회 강화

○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교육 모델 개발 보급(20백만원), 학부모 온라인교육센터 운영 등(80백만원) 예산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사업성과>

□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제고

○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운영('17)

▪ 초등 150교(서울 60, 인천 25, 경기 37, 부산 18, 광주 10) 4,211명 참여

○ 학부모 온라인교육과정 확대 운영

▪ 교육과정 현황 : ('16) 17개 과정 → ('17) 28개 과정

▪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연수 참가자 수 : ('16) 19,143명 → ('17) 21,561명

○ 학부모교육 강사 DB 구축 및 공유

▪ 강사DB 현황 : ('16) 1,199명 → ('17) 1,619명

○ 학부모 온라인 교육자료 및 정보제공 강화

▪ 학부모 교육자료 및 정보제공 실적 : ('16) 1,310건 → ('17) 1,441건

<현장의 변화>

□ 다양한 온라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자기주도학습 코칭 매뉴얼' 등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온라인 학부모과정(28개 과정) 확대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 학부모 온라인 교육 수강 만족도 : ('16) 91.8점 → ('17) 92.8점

□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학부모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러닝 학습환경 구축 및 제공

○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이용 증가

▪ 학부모On누리 회원수(누적) : ('16) 75,438명 → ('17) 78,261명

▪ 학부모On누리 방문자 수(누적) : ('16) 944,317명 → ('17) 1,328,314명

▪ 스마트폰 어플 다운로드 수(누적) : ('16) 10,677명 → ('17) 14,327건

[305]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	2,640	2,430	△210	△8.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51 - 1400 - 1404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융합교육팀장(안웅환), 사무관(김서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전체 초등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모든 초등 예비교사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사로 양성
사업기간	'18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원양성대학 SW교육 지원 : 2,43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에 따라 **'19년부터 초등학교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 **전체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내 SW교육 강화를 통해** 초등예비교원의 **SW교육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산출내역 : 2,430백만원**(국립초등교원양성기관 12개교*×202.5백만원**)

* 교육대학교 10개교(경인·공주·광주·대구·부산·서울·전주·진주·청주·춘천), 한국교원대학교·제주대학교

** 교당 202.5백만원 = 100백만원(SW교육과정·융합교육과정 운영) + 50백만원(SW교육 인프라 개선) + 22.5백만원(재학생 대상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 30백만원(예비교원 SW교육 실습지원)

예산 세부 산출 내역

◈ **SW교육과정·융합교육과정 운영**(교당 100백만원)
-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이 SW교육 지도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SW과목, SW관련 융합과목 등 개발·운영

◈ **SW교육 인프라 개선**(교당 50백만원)
- 교원양성대학 재학생이 컴퓨터 언어·SW교구활용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대학 내 실습 관련 인프라 개선

◈ **재학생 대상 SW교육 프로그램 운영**(교당 22.5백만원)
- 재학생이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합한 SW교육방식을 고민하고 개발하도록 SW실기발표회, 해커톤 대회 등 학내 프로그램 운영

◈ **예비교원 SW교육실습 지원**(교당 30백만원)
- 예비교원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SW수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속·협력학교에서의 교육실습 중 SW수업실습 환경·프로그램 내실화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2,640	2,430
■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2,640백만원)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12개교x220백만원	(2,430백만원)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12개교x202.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월)로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SW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공교육) 중심의 SW교육 강화

* 초등학교 17시간 이상('19년~), 중학교 34시간 이상('18년~) 교육 필수화

○ 초·중학교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초등 현직교사 SW연수**를 대규모로 실시하여 왔으며('15~18년 4년간 현직교원 6만 명 연수),

- 장기적으로는 **초등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예비교원의 SW교육 지도역량을 기르는 것**이 효과적(매년 3,800명 연수효과*)

* 초등교원양성기관 '18년 입학정원 : 3,847명

< 수학·과학·정보교육진흥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 **초등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 개선 및 창의적 융합 교육 활동을 위한 환경 구축**을 통해 예비교원의 SW교육 지도역량 강화

- 교원양성대학의 컴퓨터 교육과정을 기존의 ICT 활용 중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SW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20년까지 기존 교원의 연수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원양성대학의 예비교원 SW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교원의 SW교육 전문성 확보 추진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 증진에 따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미래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이 중시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격상 교육의 역할이 핵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소프트웨어인재양성 기반구축**	**-**	**2,640**	**2,430**	△210	△8.0
■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2,640 (12개교x220백만)	2,430 (12개교x202.5백만)	△210	△8.0
- SW교육과정·융합교육과정 운영	-	1,380 (12개교x115백만)	1,200 (12개교x100백만)	△180	△13.0
- SW교육 인프라 개선	-	600 (12개교x50백만)	600 (12개교x50백만)	-	-
- 재학생 대상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	320 (12개교x26.7백만)	270 (12개교x22.5백만)	△50	△15.6
- 예비교원 SW교육 현장 실습 지원	-	340 (12개교x28.3백만)	360 (12개교x30백만)	20	5.9
□ **비목**(합계)	**-**	**2,640**	**2,430**	△210	△8.0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640	-	△2,640	순감
○사업출연금(350-02)	-	-	2,430	2,43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이 SW교육과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SW교육과정 개편과 SW실습 인프라, 프로그램, 교육실습 등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SW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12개 참여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체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상향 평준화 도모

*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공동개발('18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0		0		
'18	2,64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2.2억원	2,64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 2.2억원	
'19	2,64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2.2억원	2,43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 2.2억원	
'20	4,752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2.2억원 중등8개교×2.64억	2,43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 2.2억원	
'21	4,752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2.2억원 중등8개교×2.64억	2,43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 2.2억원	
'22	-	-	2,430	교원양성대학 SW교육지원 : 초등12개교× 2.2억원	
연평균 증가율 (%)	순증		△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640	2,430	△21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36	33	△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6	13.8	△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별 평균지출액 중 '교육서비스' 기준(0.72억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3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 2018년 고용효과: 36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교육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정과제)** 54-1.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교육부), 33-7. SW·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융합교육 확대(과기부)

○ 추진경위

- '15.7월, 관계부처 합동「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발표
- '15.9월 교육부 고시「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를 통해 중학교는 '18년부터, **초등학교는 '19년부터 SW교육 필수화**
- '16.12월 관계부처 합동「SW교육 활성화 기본계획」발표
- '15~18년, **현직 교원의 SW교육 역량 준비**를 위해 중등 정보·컴퓨터 자격 소지교사 전체(약 8천명)와 초등 교사 6만 명(초등 전체교사의 약 30%) 대상 SW교육 직무 연수 실시
- **예비초등교원의 SW교육 역량 준비**를 위해, 초등교원양성대학 기본이수 과정 내 SW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및 **실제 교원양성대학 내 SW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동 사업 추진**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16.12월)

자격종별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 고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초등교육과 (전공)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초등안전교육	**※ <신설> 초등실과 과목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컴퓨터 과목은 SW기초소양,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구축	-	-	-	-	-	-	-	26.4	26.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640	0	2,640	2,640	100%

○ 집행현황

■ 2,430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미국·핀란드) SW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등 관련 교육과정에서 SW교육을 가르치거나 SW관련 독립교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등학교 SW교육 강화

○ (미국) 백악관 2016년 연두교서에서 Computer Science for Al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4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시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운영 상 SW교육 필수 이수 학점 (단위: 학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5	4.45	'18년도 달성실적에서 약 5% 상향	사업 대상인 초등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상 필수 SW교육 학점의 평균	각 교원양성대학 조사 결과 취합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5	-			
	달성도	-	-	-	21.4%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 개요
○ (참고3) 2018년 사업 과제(공통참여과제+대학별과제)
○ (참고4) 초등교원양성대학 학생 현황 및 부속학교 수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각 대학의 개선목표*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받았으며,

* 해당 개선목표에 따른 **교과목 적용은 3~4년간 연차적 추진 예정**

○ ① SW교육 학점 확대 편성(8개교), ② 기존 컴퓨터, ICT활용 과목을 SW관련으로 교육내용 변경(12개교 전체) ③ SW지도 역량 향상을 위해 SW과목을 교양→교육과목으로 변경 추진

학교명	컴퓨터 관련 필수과목 현황('18.2월)	개선 목표(교육내용 개선 포함)
경인교대 (5→6학점)	(교양)정보과학기술(2) (교과)소프트웨어교육(3)	(교양)컴퓨팅사고(2) (교실)SW교과융합실기(1) (교과)CT기반SW교육(3)
공주교대 (5→6학점)	(교양)컴퓨터개론실습Ⅰ(2) (교양)컴퓨터개론실습Ⅱ(1) (교과)초등컴퓨터교육론(2)	(교양)컴퓨팅실습(3) (교양)교육용프로그래밍언어실습(1) (교과)초등정보과교육론(2)
광주교대 (4학점)	(교양)지식정보사회와 컴퓨터(2) (교과)컴퓨터과교육(2)	(교양)컴퓨팅 사고와 SW교육(2) (교과)컴퓨터과교육(2)
대구교대 (6학점)	(교양)정보사회와 컴퓨터Ⅰ(2) (교양)정보사회와컴퓨터Ⅱ(2) (교과)초등컴퓨터교육론(2)	(교양)SW기초(2) (교과)초등컴퓨터교육론(2) (교과)컴퓨터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2)
부산교대 (5→6학점)	(교양)멀티미디어 활용 교육(2) (교과)컴퓨터교수법교재연구(2) (교과)교육용프로그래밍언어실습(1)	(교양)SW활용 교육(2) (교과)컴퓨터SW교수법및교재연구(2) (교과)교육용프로그래밍언어실습(2)
서울교대 (4(+2)학점)	(교양)정보과학의 이해와 응용/ 소프트웨어와 사회(2) 중 택1 (교과)SW와 사회(2) (교과)초등 ICT교재교육 연구(2)	(교양)정보과학의 이해와 응용/ 소프트웨어와 사회(2) 중 택1 (교과)초등컴퓨팅교재연구(2) (교과)초등컴퓨팅교육방법론(2)
전주교대 (3→4학점)	(교양)정보사회와컴퓨터Ⅰ(1) (교양)정보사회와컴퓨터Ⅱ(2)	(교양)정보사회와소프트웨어Ⅰ(2) (교양)정보사회와소프트웨어Ⅱ(2)
제주대 (3→7학점)	(교과)초등컴퓨터교육Ⅰ(2) (교과)소프트웨어교육(1)	(교양)융합소프트웨어발명교육(2) (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 소프트웨어(2) (교과)초등소프트웨어교육론(3)
진주교대 (2→6학점)	(교양)정보과학활용/디지털 정보응용(2) 중 택1 (교양)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언어/ 교육용프로그래밍 언어(2) 중 택1 (교과) 초등컴퓨터교육론(2)	(교양)초등컴퓨팅Ⅰ(2) (교과)초등컴퓨팅Ⅱ(2) (교양)초등컴퓨팅Ⅲ(2) *기존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청주교대 (4학점)	(교과)코스웨어 프로그래밍(2) (교과)컴퓨터교육론(2)	(교과)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2) (교과)컴퓨터교육론(2)
춘천교대 (5→6학점)	(교양)미래사회와 컴퓨터(2) (교과)초등컴퓨터교육(2) (교과)ICT를활용한문제해결(1)	(교양)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교육(2) (교과)초등컴퓨터교육(2) (교과)초등프로그래밍교육실제(2)
한국교원대 (1→7학점)	(교과) 초등 컴퓨터 활용의 실제(1)	(교양)초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컴퓨팅 사고(3) (교양)소프트웨어와초등교육(3) (교과)초등소프트웨어교육론(1)

참고 2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초·중학교 단계에서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초등예비교원의 SW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

- 대부분 초등교원양성기관 내 컴퓨터 관련 필수이수학점이 부족(3학점 내외)하고, 과목 내용도 SW이해보다는 컴퓨터 활용에 초점

□ 사업 내용

○ **(사업명)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SWEET*)

* SWEET : SoftWare Education for all Elementary Teachers

○ **(사업기간) '18년~**

○ **(지원대상) 초등교원양성기관 12개교**

- 국립교대(10개교) : 경인·공주·광주·대구·부산·서울·전주·진주·청주·춘천
- 국립종합교원양성대학(1개교) : 한국교원대 / 국립대학(1개교) : 제주대

○ **(총사업비) 26.4억**

- 대학별 최종지원금은 **해당 대학의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배분**

○ **(시행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내용)** 교원양성기관 내 **SW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 인프라(창의컴퓨팅실) 구축**, 전체 대학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융합교육 기반 조성, 초등·부속학교 현장의** SW**교육 정착 지원** 등

○ **(사업일정) 사업 공고('18.2.9.)** → 사업계획서 접수('18.2.9.~'18.3.22.) → 사업 계획서 평가 및 대학 지원금 결정(18.4월 말) → **대학별 과제 착수** 및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대학 **공동참여 과제** 실시(18.5월~)

참고 3 2018년 사업 과제(공동참여과제+대학별과제)

[공동 참여 과제]

□ **초등교원양성기관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안) 개발**

○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역량 함양을 위하여 **전체 학생** 및 **컴퓨터교육 심화전공자** 대상 교육과정 **가이드라인(필수과목, 필요학점, 교수요목 등) 마련**

- 국내 교원양성기관, 일반 대학(SW중심대학 등), 해외 대학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제안

○ 가이드라인은 모든 참여대학의 핵심 교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각 대학이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내 규정 및 계획에 반영**

[대학별 과제]

대학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래의 과제를 고려하여 세부이행계획 마련 및 사업 추진 ※ 단, 교육과정 개선은 중점을 두어 반드시 추진

1 **교원양성기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선**

○ **(전체 재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실시) 교양과목·교과교육 편성·운영** 및 재학 중 **교육실습체계** 개선

○ **(컴퓨터교육 심화전공 내실화) 심화전공(트랙)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조하여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

○ **(교육 인프라 구축)** 개선한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모듬형 공간과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갖춘 교육 공간(창의컴퓨팅실)** 구성

《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선 예시 》

- 전체 재학생 대상 소프트웨어교육 **필수 편성·운영 (예 : 3학점 → 6학점)**
- ICT 위주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전환
- 교육 내용을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 '정보문화소양' 지도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변경
-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수업이 가능한 창의컴퓨팅실 구축**

2 융합교육, 참여중심교육 기반 마련

○ **(융합교육 기반 마련)** 초등교원양성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SW관련 융합교육 기반 마련**

○ **(학생 프로그램 강화)** 재학생이 SW 활용 융합 교육, 참여 중심 수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SW활용 융합교육 기반 마련, 학생 프로그램 강화 예시 》

- 대학 내 **SW활용 융합교육 관련 논의의 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
- 전공 간 융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
- 전체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재학생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 자료 공모전, 수업 실기 발표회, 교구 개발 해커톤, 프로그래밍 경진 대회** 등 프로그램 진행

3 소프트웨어 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 지원

○ **(부속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부속학교의 **교육지원 방안**과 이를 통한 예비교원의 다양한 **교육실습 제공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지원)** 초등교원양성기관이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직교사·학생 캠프 등의 운영 방안 마련**

《 부속학교 및 지역사회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예시 》

- 부속학교(협력학교 포함 가능)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교구, 교재, 교사연수, 놀이 중심·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교과/방과후 교실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선생님(=예비 교원)"**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특강 및 워크숍 운영
- 지자체/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현직교사 연수, 초중등학생 행사 등)** 협업
- 지역 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참고 4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 학생 현황 및 부속학교 수

설립	구분	대학명	연도별 초등교육과 정원					지역	부속학교
			18년도	17년도	16년도	15년도	소계		
국립	교원대	한국교원대	111	111	111	111	444	충북	1
	교육대학	경인교대	598	598	598	598	2,392	인천	1
		공주교대	354	354	354	354	1,416	충남	1
		광주교대	326	326	326	326	1,304	광주	2
		대구교대	383	383	383	383	1,532	대구	2
		부산교대	356	356	356	356	1,424	부산	1
		서울교대	355	355	355	355	1,420	서울	1
		전주교대	285	285	285	285	1,140	전북	2
		진주교대	319	319	319	319	1,276	경남	1
		청주교대	286	286	286	286	1,144	충북	1
		춘천교대	321	321	321	321	1,284	강원	1
	일반대학	제주대	114	114	114	115	458	제주	1
	일반대학 계		39	39	39	39	156		
총 계			3,847	3,847	3,847	3,848	15,390		15

[401]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1,897	2,497	2,630	**133**	**5.3**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1 - 1400 - 1404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교수학습평가과장(신미경), 민주시민교육과장(신두철), 사무관(서우성), 사무관(박채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교원역량 강화 연수 ▪ 초·중등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적용 및 실천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기간	'09～계속 (지속가능발전교육, '10～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정액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창의교육 강화>

○ **창의교육 확산 :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사연수, 창의적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사업비 **1,950백만원**

▪ **미래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창의교육 연구개발 및 운영·컨설팅·확산을 위한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 **1,350백만원**

※ 산출내역 : 6개센터×225백만원

【 창의교육 거점센터 사업내용 】

▪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무연수** 등을 통한 권역별 **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

▪ 창의교육 확산을 위한 **현장포럼** 등 **교사 네트워크 지원** 및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이 가능하도록 **학교현장 컨설팅** 지원

▪ **예비교원 대상** 창의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 : **600백만원**

※ 산출내역 : 4개교×150백만원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사업내용 】

▪ 대학별 교직,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대상 **교육과정 연구 및 수업개선**

▪ 교수법 포럼, 현직교사 멘토링 등을 통해 **교원양성기관과 현장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모델 발굴 및 실천**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활성화 : 크레존 운영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콘텐츠 개발·보급·확산 등을 위한 사업비 443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운영** 및 학교 밖 **창의체험자원 발굴·탑재** : **343백만원**

※ 산출내역 : 10개월×34.3백만원

▪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창의교육 수업모델(콘텐츠) 개발 ·적용 및 확산**을 통해 학교 현장의 창의적체험활동 내실화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20개×5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사업내용 】

▪ 교원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학교현장 밀착형 기획 콘텐츠 제작·발굴, 학부모용 창의체험 정보 제공 등 **교사·학부모 맞춤형 플랫폼 운영 체제 강화**

▪ 주요 선진국의 창의교육 정보 및 국내 우수사례 등 **창의교육 선도사례 발굴·확산** 강화,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한 **수업모델 개발·학교현장 적용·확산**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수업모델(콘텐츠) 개발 및 적용 : 교과연계형, 범교과형 ESD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확산 등을 위한 사업비 237백만원**

▪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영역별 프로그램 개발 : 237백만원**

※ 산출내역 : 39개×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창의교육역량강화지원	**2,497**	**2,630**
<창의교육 강화>	**2,132**	**2,393**
■ 창의교육확산	1,500 · (900백만원)창의교육거점센터 운영 · (600백만원)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대학	1,950 · (1,350백만원)창의교육거점센터 운영 · (600백만원)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대학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632 · (432백만원)창의·인성교육넷 운영 · (200백만원)교사연구회 운영	443 · (343백만원)창의·인성교육넷 운영 · (100백만원)교사연구회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	**365**	**237**
■ 수업모델(콘텐츠) 개발 및 적용	· (365백만원)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개발·확산	· (237백만원)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개발·확산

□ **지원 필요성**

<창의교육 확산 및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 **(창의교육 거점센터)** '지능정보사회'로 일컬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의 문제 해결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여 **新학교교육환경 개혁 필요**

관련 동향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 ('16.1, 다보스포럼)

◈ 창의융합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해 한국형 메이커 교육모델 도입,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방안 모색, 교사 연수,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제안('18.1,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 **질문·토론식 수업, 창의력 제고**를 위한 **교수법 개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을 위한 **거점센터 필요성 증대**

* **창의교육 거점센터**('18년, 4개)를 통해 **교원 역량 강화 집중 지원**

- **'18년도부터 중장기적인 사업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수준의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 **다년도(최대 3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 증액 지원 필수

※ ('09~'17) 단년도 사업 → ('18) 장기적 성과 확산을 위해 다년도(최대 3년) 사업으로 전환

- 또한 **미래기술**(AI, AR&VR, IoT 등)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연구***를 위한 **거점센터 확대 필요**('18년 4개 → '19년 6개)

* **(예시)** 미래기술 활용 교육콘텐츠

구분	적용 기술	(예시) 교육 프로그램
1	AI(인공지능)	학생지도·피드백 등 교사보조 지능형 튜터
2	AR·VR(증강현실·가상현실)	시·공간을 초월한 교실 내 가상환경 구현
3	IoT(사물인터넷)	교사의 단말기·학생의 모바일·교실의 교구를 연결, 빠른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한 교수학습환경 프로그램 개발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원양성 단계의 교육혁신 시급

- 이를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견인**하고 **이후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을 유인**하여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자 하며,

* 수업/생활지도 역량 제고, 미래사회 대응력 강화, 교육청-대학 협의체, 융합 수업·교육실습 확대 등

-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교원양성기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지원 확대** 및 추후 현직교사 재교육 등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지원 필수****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공모 신청기관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17년 6개 → '18년 16개)

** ('09~'17) 단년도 사업 → ('18) 장기적 성과 확산을 위해 다년도(최대 3년) 사업으로 전환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창의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창의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비교과 포함)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필요

- 교내 교육활동 뿐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육 기회**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요구 증가**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적용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 증가

※ 전국 창의교육실태조사 결과 창의교육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 교과연계 창의체험프로그램 개발·적용'(34.8%),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19.7%), 영역별 학생진로체험 선택 프로그램(16.2%) 등 (한국과학창의재단, 2016)

- 이에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사·학부모 맞춤형 창의체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쉽고 빠른 창의교육 플랫폼 구축** 시급

* 빅데이터,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한 교사·학부모용 창의체험·창의교육 콘텐츠

<지속가능발전교육>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확산 시급**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전 세계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가치, 삶의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 교육임**

○ **유엔**은 '2014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UNDESD)'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을 논의**('14.11.)하고, **'2015 WEF 세계 교육 포럼'(인천)에서 미래교육 의제로 채택**('15.5.)

*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15.9.)

[S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영역]
①빈곤종식, ②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③건강 및 웰빙, ④양질의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혁신과 인프라,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한 소비·생산,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 생태계, ⑮육상 생태계, ⑯평화와 정의·제도 ⑰파트너십

- 세계 주요국으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UNDESD/2005-2014)' 선포** 등 국제사회 요구에 동참하고, 나아가서 선도 노력 필요

* 2014년 UNESCO 중점추진 과제 : 학습과 교육환경의 변화, ESD 교육역량강화, 지역사회 ESD 가속화, 선진화된 ESD 정책, 청소년의 ESD 참여와 확산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1,897**	**2,497**	**2,630**	**133**	**5.3**
<창의교육 강화>	**1,532**	**2,132**	**2,393**	**261**	**12.2**
■ 창의교육 확산	900	1,500 창의교육거점센터 (47H×225백만)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47H×150백만)	1,950 창의교육거점센터 (67H×225백만)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47H×150백만)	450	30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632	632 창의인성교육넷운영 (10개월×43.2백만) 교사연구회운영 (40개×5백만)	443 창의인성교육넷운영 (10개월×34.3백만) 교사연구회운영 (20개×5백만)	△189	△30
<지속가능발전교육>	**365**	**365**	**237**	**△128**	**△35.1**
■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365	365 프로그램개발·확산 (60종×6.1백만)	237 프로그램개발·확산 (39종×6.1백만)	△128	△35.1
□ **비목**(합계)	**1,897**	**2,497**	**2,630**	**133**	**5.3**
○사업출연금(350-02)	1,897	2,497	2,630	133	5.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교육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

-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활용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을 발굴·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사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창의교육 역량을 함양한 예비교원 양성

-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및 비교과 영역의 교육격차 해소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장 적용·실천 강화

- 체험중심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콘텐츠) 개발·보급 등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897	<창의교육 강화> 1,532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90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632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365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365백만원			
'18	2,497	<창의교육 강화> 2,132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50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632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365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365백만원	2,497	<창의교육 강화> 2,132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50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632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365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365백만원	-
'19	1,748	<창의교육 강화> 1,453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94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545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263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263백만원	2,630	<창의교육 강화> 2,393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95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443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237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237백만원	882
'20	3,146	<창의교육 강화> 2,781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854백만원,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927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365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365백만원	2,301	<창의교육 강화> 2,064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621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443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237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237백만원	△845
'21	3,146	<창의교육 강화> 2,781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854백만원,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927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365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365백만원	2,255	<창의교육 강화> 2,018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575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443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237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237백만원	△891
'22			2,232	<창의교육 강화> 1,995백만원 ■ 창의교육 확산 1,552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443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 237백만원 ■ 수업모델 개발.적용 237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3.5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A)	'19예산(B)	증감(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497	2,630	133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34.6	36.5	1.9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8	13.8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 <2>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2〉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36.5명** ○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표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350 출연금에 해당하며, - 출연금은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28-076 교육서비스 평균지출액(0.72)으로 나누어 산출 26.30억원 ÷ 0.72억원 = 36.5명 □ **2018년 고용효과: 3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간접고용효과 대상 사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9.12.) 2009개정 교육과정 발표
- ('09.12.)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수립
- ('10.05.)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 혁신방안
- ('11.08.)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11~'30)
- ('11.02.) 크레존(창의·인성교육넷, crezone.net) 개설
- ('14.02.) '14년 업무보고 :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 ('15.01.) '15년 업무보고 :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15.09.) 2015개정 교육과정 발표
- ('16.01.)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16~'35)
- ('16.01.) '16년 업무보고 :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 ('17.01.) '17년 업무보고 : 모두가 성장하는 행복 교육,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
- ('17.07.) "국정과제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창의교육역량강화 지원	23		26.65	26.65		18.97		24.97	

* 사업명 변경 : ('09년~'18년) 창의적 인재육성 → ('19년~)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6.65 (26.65)	( )	( )	26.65 (26.65)	26.65 (26.65)	( )	( )
'16년	26.65 (26.65)	( )	( )	26.65 (26.65)	26.65 (26.65)	( )	( )
'17년	18.97 (18.97)	( )	( )	18.97 (18.97)	18.97 (18.97)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897	-	2,497	-	2,497	2,49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창의교육 확산 : 1,500백만원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 : 632백만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 365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가.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등급

나.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창의·인성교육넷 콘텐츠 활용도(건)의 성과지표는 창의·인성교육넷에 접속한 수를 교육콘텐츠 수로 나눈 것으로 창의·인성교육넷 자체의 이용건수로 변경 필요('15년 결산검토, 교문위)

다.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라.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창의인성교육넷 성과지표 개선

- 창의·인성교육넷 등록 컨텐츠 월 평균 다운로드 수*로 성과 지표 개선('16년 성과계획서)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등록 콘텐츠 연간 다운로드 수 / 1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창의교육 확산>

국가	주요 교육정책
핀란드	○ **종합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창의적이면서도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음** - 활동적 주체로서의 학생 - 과목별 교육이 아닌 주제별 교육 실시(현상기반 교육; co-teaching, 협력적 접근) - 학교는 개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개별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학습설계를 해 줌.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와 학생들을 접해봄으로써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동시에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OECD	○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 평가도구 개발** -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컨소시엄으로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 평가도구를 개발
유럽	○ **2009년을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포** - 유치원, 초등·중등과정의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창의성 촉진 - 적극적·혁신적 사고방식을 증진시키는 수학, 과학, 기술 연구의 확보 -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및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 등
영국	○ **2000년부터 창의성을 국가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로 강조** - 활용 가능한 실용적 자료 개발로 창의성 제고 방안 제시(QCA)
미국	○ **정부차원의 경쟁력 강화정책 시행** - 미 경쟁력위원회의 창의적이고 첨단적 재능의 활용 극대화 강조 - 창의성을 교육 목표로 초등학교부터 수준별 수업 진행 - 21세기 스킬(www.p21.org)*에 대해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같은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차세대 평가도구 개발 *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 P21은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전통적인 three R(reading, writing, arithmetic)과 four C(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and Creativity and Innovation)의 융합을 통한 미국 교육 시스템의 우위 유지를 돕는 다양한 도구와 자원들을 제공
일본	○ 유토리 교육 폐지 후 "살아가기 위한 힘" 육성 ○ '확실한 학력', '풍부한 정서', '건강한 신체' 조화 강조 ○ 기초학력 근저로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능력 배양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	주요 교육정책
UN	○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표를 통해 2030년까지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도록 추진 ○ 세계시민교육('14년~'17년) 및 국제실천프로그램('15년~'17년) 의제 제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년~2014년)이후 전 지구적 도전과제의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추진

호주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재정립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제시(교육과정에 지속 가능성의 개념 포함)
독일	○「지속 가능한 개발·자연과 발전을 위한 교육」(독일 어젠다 2010) 추진 - 에너지, 산림보존, 재활용 등에 대한 주제로 자연교육센터(4,620여개) 운영을 통한 토론식 교육
일본	○ 환경성과 문부과학성 협력으로 환경을 위한 전 지구관측시스템(GEOSS) 모델학교 지정, 환경교육 추진 모델지역 지정, 환경학습 페어 개최
미국	○ 학교환경교육은 사회환경 교육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연계 방안 구현에 중점
영국	○ 실천 행동 능력 함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중심 -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학교와 학생이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 시행
캐나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강령 21 프로그램(Action 21 Programme) 위주로 환경 시민 육성 중심 교육
중국	○ 국가수준의 환경교육 교재, 환경교육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급 ○ 최근 주입식 위주의 환경교육에서 실습 위주의 환경교육으로 전환, 전국적으로 '녹색학교'를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당해년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부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확정	○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협약 및 사업비 집행	○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한국과학창의재단
협약체결 및 사업집행	○ 한국과학창의재단 ○ 과제 책임자
사업 진도관리 및 중간·결과평가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	○ 교육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콘텐츠 활용도 (단위: 건)	목표	신규	28,288	31,500	38,600	40,500	전년 실적 대비 5% 상향하여 목표 설정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등록 콘텐츠 월평균 다운로드 수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등록 콘텐츠 연간 다운로드 수/12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 데이터 통계 프로그램 수치에 의거 측정
	실적	14,144	30,814	36,762	-	-			
	달성도	신규	108.9	116.7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글로벌 정책 비교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창의교육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결과** 창의교육을 구현할 **다양한 수업자**료(22.8%), **교사의 긍정성과 자발성**(18.2%), **창의교육 교원 연수**(13.3%) 순으로 나타남('16년 전국 창의교육 실태조사)

□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에 참여했던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 등 **이해관계자 대상 개선 방향** 설문조사 결과, **현장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4.55점), **세부 사업 간 연계성 강화**(4.42점), **교과 연계 외에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 연계**(4.42점), **사업단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4.4.1점),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4.29) 등의 순으로 개선 방향 의견 제시('17년 창의적인재육성사업 발전방향연구)

□ **창의·인성교육넷**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만족도 조사**로 적극적 의견수렴 및 개선·반영

의견수렴방법	문제점 및 개선의견	반영사항
'16 고객만족도 조사 ('16.10.24~11.18.)	교사 연수 및 세미나와 연계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	17년도 사업계획에 관련 내용 반영 (창의교육 관련 원격연수 개발 시 크레존 내 콘텐츠 활용 방법 포함)
학부모 자문회의 ('17.5.12)	사이트 정체성 강화 필요, 콘텐츠 질 제고 필요, 인지도 향상 및 홍보 강화 필요 등	교사 및 학부모 맞춤형 콘텐츠(학부모 창의체험 플러스) 기획 및 제작 시 반영, 영상 및 시각화 자료 제작 등
교원, 교수, 창의교육 연구진 자문회의 ('17.6.1, '17.7.19, '17.9.21 등 상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패키지화 된 자료 필요, 맞춤형 콘텐츠 필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작 등	교사 연구회 소통 공간 개설 및 수정·보완, UI 및 문서뷰어 도입으로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 운영 등
창의·인성교육넷 교원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 ('17.10~18.2)	창의체험자원·프로그램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창의교육 자료의 학교 현장 활용 강화를 위한 질 관리 필요, 지속적 콘텐츠 추천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	결함 및 개선사항 상시 수정, 교사 맞춤형 콘텐츠 제작(창의통신문), 매뉴 및 UI 개선 반영, 이벤트 등 아이디어 반영하여 홍보 및 기획 진행
'17 고객만족도 조사 ('17.11.9~11.22.)	실제 반응(댓글, 좋아요 등) 공유 등 양방향성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SNS 로그인/댓글 서비스 적용을 통한 소통 및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창의교육 선도교원 양성대학 운영**을 통해 비로소 전공이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융합형 교과 신설 및 팀티칭 도입**(강원대)

○ 국가수준의 교사양성 정책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교육 선도교원양성대학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확대할 필요**('17.10월 KEDI 교육정책 포럼)

※ '18년 사업공고(교·사대 한정) 시 16개 교원양성기관 응모

< 예산 반영사항 >

□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추진

□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굴을 위해 창의교육 거점센터 기능 확대

□ 창의교육의 현장 확산 강화를 위하여 예비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의 지원 확대

□ 창의인성교육넷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콘텐츠 개발·보급·확산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창의교육확산 사업성과 >

□ 창의교육 정책 효과성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업흥미도 향상**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 학업흥미도 향상(3.84),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사고력 향상(3.82), 학력증진의 긍정적 영향(3.66)

□ **창의교육 선도 프로그램 시범 적용 효과성 분석 결과, 핵심역량** 함양과 **수업 몰입**에 긍정적 효과

<'17년 창의교육 선도 프로그램 시범 적용 효과성 분석 결과-수도·중부권 C고등학교>

- **핵심역량 사전-사후** : 비판적 사고(3.6→4.0), 문제해결력(3.3→3.8), 의사소통(4.0→4.3), 협력(3.7→4.1), 유연성(3.7→4.0), 적응력(3.7→4.0), 진취성과 용기(3.1→36), 자기주도성(3.6→4.0), 리더십(3.8→4.0), 시민성과 문화의식(4.2→4.4)
- **수업몰입 사전-사후** : 행동몰입(4.0→4.1), 인지몰입(3.6→3.9), 감정몰입(3.4→3.7)

□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예비 교원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 향상**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행 태도 향상**

[교육과정 개선 효과성 분석 결과('17년)]

- 창의교육 인식(3.97→4.40), 창의교육 효능감(3.72→4.06), 창의역량인식(3.81→4.10)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중앙대학교, 2017)
-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인식(3.26→4.05),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2.95→3.84), 창의성 교육에 효과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이해(3.03→3.90), 창의교육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학습과제 제시(2.88→3.81) 등 모든 항목에서 향상(강원대학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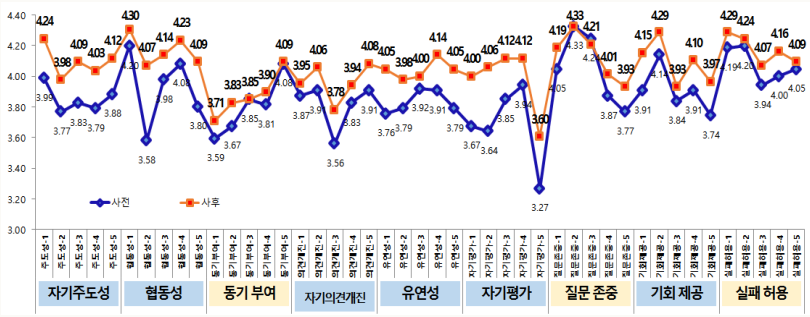

< 창의인성교육넷 사업성과 >

○ 창의인성교육넷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으로 만족도 및 사업성과 제고

- 학부모, 교원,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수시 자문 등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학부모 만족도 전년대비 7.6점 상승**('16년 74.0점→'17년 81.6점)
- **교사 만족도 전년대비 1.1점 상승**('16년 82.5점→'17년 83.6점)

○ **사용자 편이**를 위한 UI/UX 개선 및 SNS를 통한 효과적 정보제공

- 맞춤형 퀵 메뉴, 소감 태그 개발 및 OPEN API 등 개선
- SNS, 카드뉴스, 동영상 등 **쉽고 편리한 UI(User Interface)**를 통한 창의교육에 대한 지식 제공 및 확산
- 모바일 및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웹 뷰어 도입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메뉴 구성** 및 **모바일 환경 최적화**

○ **창의인성교육넷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학교 수업에 필요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창의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

-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에게 **흥미로운 체험 자원·프로그램·콘텐츠 등 활용 정보 제공**(자원 62,420건, 프로그램 18,089건)
-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정비·현행화**(78,340건) 및 **현장 수요가 많은 신규 콘텐츠 발굴**(3,873건)
-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확산에 대한 현장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확산하는 bottom-up 형태의 콘텐츠 확충을 통해 **현장 활용도 제고**

※ 핵심 콘텐츠 다운로드 수 전년 대비 1.24배 증가 : ('16년) 369,767건→**('17년) 441,146건**

- 현장 교원으로 구성된 **창의체험활동 실천 교사연구회**(초 22, 중 7, 고 10개)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활용도 및 참여율 제고**

※ 현장 맞춤형 창의체험자원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확산

- 창의인성교육넷 내 연구회 공개 자료방을 활용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수업연구회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 및 **콘텐츠 확산**

- 국내외 창의교육 동향, 교수학습법, 행복학교 사례 등 **최신 트렌드 확충**(148건)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교사 연수, 수학여행 모델 개발 연구회, 창의체험 및 ESD 교사연구회 등에서 크레존 홍보 및 활성화 안내

<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성과 >

○ ESD **실천 지원연구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12종) 및 **사업성과 분석**

-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4개 영역에서 총 12종선도 프로그램 개발(총 12종(4영역×3학교급), 24차시)

- 기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등과 연계한 콘텐츠 맵 개발**

- ESD 사업성과 분석 및 연구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ESD 교사 연구회 활동 품질관리 및 실천 롤 모델(Roll Model) 제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선도 모델 제시를 위한 ESD 실천 매뉴얼 제작('17.12)

○ 학교에서 적용 중인 우수 ESD교육 콘텐츠 발굴·개선하고 학교현장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교사연구회」 운영**(40개)

○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학교현장 확산을 주도할 **현장 전문가 양성**

- **지속가능발전교육 입문과정 원격연수** 운영(초·중등 각 2기, 672명 이수) 및 신규 개발된 원격연수 **'사례로 들여다보는 ESD 실천이야기'** 운영(초·중등 각 3기, 704명 이수)

-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 교사연구회 워크숍(2회), 성과발표회(1회)** 등 선도교원 양성 및 학교현장 적용 확산

< 창의교육확산을 통한 현장의 변화 >

○ 창의교육 선도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

<창의교육 선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17년)>

[학생]

- 디딤영상을 통해 비열 및 열팽창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듣고 활동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서 모둠원끼리 모르는 것을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열에 의한 현상이라는 단원을 앱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으로 만들어 체험하다보니 수업에 흥미가 생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

[교사]

-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고, 즐겁게 시계를 만들고, 수학의 개념을 확인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한 것 같아서 뿌듯했음
-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닌, 다양한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었음

○ 창의교육 직무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

[창의교육 직무연수 참여 교원의 목소리-만족도 조사 결과('17년)]

- 직접적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고, 교과지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었음
- 현장적용 가능한 강의, 미래 대비한 교육적 마인드 조성에 도움이 됨
- 시대의 흐름에 교육자가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었음
- 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활용하기 편리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안정적 맞춤형 연수이며, 미래학습 사회를 선도를 위해 창의 수업에 대한 개념 형성에 큰 도움이 됨
- 콘텐츠 내용이 아주 참신하고 강의내용에 교사의 교육 활동 경험, 인터뷰 사례 발표 내용 등이 담겨있어 실제 수업 적용에 유익

< 교사연구회를 통한 현장의 변화 >

○ **교사연구회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교수법 향상,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 증진 등 **교사 전문성 향상**

-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접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며, 2015개정교육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이OO, 응봉초등학교 교사)

- 지역사회를 활용한 자료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교사 스스로 자발적 참여와 연구수행 능력이 향상됨(차OO, 부여초등학교 교사)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 및 학생 스스로 장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자기주도적 진로체험 실현**

- 장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능동적인 직업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 전반에 걸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됨(곽OO, 백령초등학교 교사)
-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과학적 사고력, 의사소통력 뿐만 아니라 동료에 대한 배려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함(이OO, 물금고등학교 교사)

○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증가**

- 학교의 적극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함(주OO, 부천송일초 교사)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진로활동을 적용하여 활기차고 재미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함(고OO, 동계중학교 교사)
- 마을 주민,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냄(김OO, 밀성초등학교 교사)

참고 3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관련 글로벌 정책 비교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개요**

-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UNESCO, 2004)
  * 인권 존중, 미래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 **영역**

- **사회·문화적 영역** : 인권/평화/안보, 양성평등/문화적 다양성(상호간 이해), 건강/에이즈, 거버넌스
  · 변화와 발전에서 사회적 제도의 이해와 그들의 역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민주주의와 참여시스템, 정부의 선택, 합의의 구축 차이의 해결
- **환경적 영역** : 자연자원, 기후변화/농촌개혁, 지속가능한 도시화, 재해 예방 및 완화
  · 사회적, 경제적 정책 발전에서 환경적 관심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자원에 대한 인식, 물리적 환경의 취약함과 인간의 활동과 결정으로 인한 영향 이해
- **경제적 영역** : 빈곤퇴치, 기업의 책임/책무, 시장 경제
  · 환경과 사회 정의를 고려한, 소비의 사회적 수준과 개인을 평가하는 의미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기술, 경제 성장의 가능성과 사회적 환경적 영향 이해

○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주제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 및 협력을 통한 의사결정 역량 함양

□ Post-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개요**

- 2030년까지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기술(세부목표)을 습득('15년~'30년)

○ **세부 목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 획득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인권·성평등·평화 증진과 비폭력·세계시민성·문화적 다양성 존중·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

- 기초교육(초·중등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생이 삶에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이끌어 내는 양질의 평등한 무상초등 및 중등교육을 보장

- 영유아 보육·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생이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취학전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보장

- 직능교육·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고등교육 포함)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직업기술교육, 대학을 포함한 제3차 교육(중등교육 이후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 것을 보장

- 직업을 위한 기술(Skills)

2030년까지 직업기술능력을 포함,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정신을 위한 관련 기술을 획득한 청년과 성인의 수를 확대

- 성차별 제거 및 취약계층 보호

2030년까지 교육 내 성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토착민·취약한 상황의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보장

- 문해 및 기초 수리력 보장

2030년까지 모든 청년들과 일정 수준의 성인들이 문해와 기초수리력을 달성할 것을 보장

○ **영역**

- 총 17개 영역

① 빈곤퇴치
②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 보건증진
④ 교육보장과 평생교육 향상
⑤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 에너지 보급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도시 구축
⑫ 지속가능 소비생산 증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개요

-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전지구적 도전과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14년~'17년)

  * 예시) 빈곤, 분쟁,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인구, 불평등 등

∘ 영역

- 평화(peace), 정의(justi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영역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연계 추세

∘ 기대효과

-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가치관, 태도, 기술을 습득

※ 세계시민의 정의
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로 인식
②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
③ 세계화 시대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④ 빈곤, 불평등, 분쟁, 환경오염 등 지구이슈에 대한 이해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
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참여적, 능동적 태도
⑥ 개인의 참여 뿐 아니라 상호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 실천
⑦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기여

□ 국제실천프로그램(GAP, Global Action Program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개요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는 국제실천프로그램('15년-'19년)

  2005-2014년에 실시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종료 후 UN 총회 의제로 다루어지고 (2014.10.) 유네스코에서 공포(2014.11.)

∘ 영역

- 정책(Policy), 전기관적 접근과 교육환경(Whole Institutional Approach and Learning Environment), 교육자(Educators and Trainers), 청년(Youth), 지역(Local)

[403]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260	9,410	9,970	**560**	**6.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400 - 1404 - 403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최은옥), 융합교육팀장(안웅환), 교육연구사(김명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미래 융·복합 사회와 지능정보 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과학·수학교육, 융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생·교사활동 확대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접비	('18) 447백만원 (4.75%) → ('19) 474백만원 (4.75%)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과학·수학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6,230백만원

1-1.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 : 3,270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연구 : 11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과학·수학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검증 등 교육과정 운영 후속 지원
- 산출근거 : 2종(과학·수학) × 55백만원 = 110백만원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초1,2	교과서 개발	적용			
초3,4/중1/고1	교과서 개발		적용		
초5,6/중2/고2		교과서 개발		**적용**	
중3/고3			교과서 개발		적용

○ **교육과정 중장기 연구 : 9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지향적 과학교육 내용, 역량, 교육환경 등을 담은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 연구 추진
- 산출근거 : 1종(과학) × 90백만원 = 90백만원

○ **선도모델 연구 및 구축·운영 : 3,020백만원**

- 국가 차원에서 첨단과학실험 및 융·복합적 탐구활동이 가능한 학생 참여 중심의 미래형 과학학습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및 평가 모델 개발·적용
- 산출근거
  -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운영 : 신규 30교×50백만원 + 계속 90교×10백만원 = 2,400백만원
  -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모델 개발·적용 : 25교 × 20백만원 = 500백만원
  - 평가모델 개발·적용 : 2종(수학 수업분석모델 및 평가지원도구) × 60백만원 = 120백만원

○ **종합계획 수립 : 50백만원**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15-'19) 종료에 따른 지속적·체계적인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추진
- 산출근거 : 1식(수학) × 50백만원 = 50백만원

1-2. 교수·학습 자료 개발 : 510백만원

○ **교수·학습 보조자료 개발 : 350백만원**

-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 특성에 맞는 학교급별 수업자료 개발·보급으로 과학·수학 수업의 질 제고
- 산출근거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환기 학습결손 보완교재 개발·보급
    : 2종(과학·수학) × 2개 학교급(중,고) × 50백만원 = 200백만원
  - 과학 학생과제연구 운영 및 연구윤리 가이드 개발·보급
    : 1종(과학) × 3개(중,고 교사용 운영가이드 2개, 학생용 연구윤리 가이드 1개) × 50백만원 = 150백만원

○ **고교 교육과정 연계 교과서 수업모형 개발 : 50백만원**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 확보 및 안정적 고교 체제 개편 도모
- 산출근거 : 1종(수학) × 50백만원 = 50백만원

○ **사회문제해결형 교육콘텐츠 개발 : 11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과학적·수학적 소양 함양**을 위하여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형 수업 콘텐츠** 개발
- 산출근거 : 2종(과학·수학) × 55백만원 = 110백만원

1-3. 과학교육 활동 지원 : 955백만원

○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지원 : 325백만원**

-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소외계층 학생의 과학 진로교육 활동 지원 및 이공계 진출 기회 제공
- 산출근거 : 100팀 × 3.25백만원 = 325백만원

○ **과학 창의활동 지원 : 630백만원**

- 메이커교육 연계 전국단위 학교급별 과학창의대회 추진 및 과학교사 연구 활동, 학술대회 등 지원
- 산출근거 : 13회 × 48.5백만원 = 630백만원

1-4. 수학교육 활동 지원 : 936백만원

○ 교사의 수학교육 역량강화, 학생의 체험·탐구 활동, 국민의 수학 인식 개선 활동 등 수학문화 조성 지원

○ 산출근거

- 교사 수학활동 지원 : 1,250명 × 0.35백만원 = 436백만원
- 학생 수학성공경험 발굴 : 750명 × 0.2백만원 = 150백만원
- 국민 수학인식 개선 : 50회 × 7백만원 = 350백만원

1-5.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559백만원

○ 일반고 과학·수학 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 과학인재 양성 및 이공계 진학 촉진

○ 산출근거

- 자료 개발·보급 : 120교 × 4개 주제 × 0.54백만원 = 259백만원
- 컨설팅, 교원연수, 워크숍 운영 : 7회 × 30백만원 = 210백만원
- 학생 연구동아리 발표회 지원 : 40교 × 1백만원 = 40백만원
- 홍보 및 우수사례 확산 : 4회 × 12.5백만원 = 50백만원

【2. 대학단계 프로그램】 고교-대학연계 영재교육의 전주기적 연속성 확보 및 창의적 연구활동 촉진 지원 : 1,220백만원

2-1.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운영 지원 : 870백만원

○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단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지원

※ 연구참여 후 이공계열 대학원 진학 26.4%, 연구원 진출 57.5%로 과학기술계 진로 결정에 긍정적 영향

○ 산출근거 : 84개 과제 × 10.3백만원 = 870백만원

2-2. 대학연계 심화 프로그램(AP) 운영 지원 : 350백만원

○ 과학기술특성화대학(5교*)과 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28교) 간 대학과정 선이수제(AP, 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학과정 선이수제(AP, Advanced Placement) : 과학고·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협력하여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심화과목을 선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 산출근거

- 교과개설 및 평가승인 : 4개 교과목 × 15백만원 = 60백만원
- 교사연수 및 워크숍 개최 : 4개 교과 × 2회 × 15백만원 = 120만원
- AP 지원센터(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지원 : 1식 × 170백만원 = 170백만원

【3. 융합형 인재역량 강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 및 학교 현장 혁신을 위하여 STEAM 운영 활성화 : 1,800백만원

3-1. 융합형 과학기술교사연수센터 운영 : 690백만원

○ STEAM 기초·심화과정 교원연수, 관리자 연수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현장 체험 중심의 수준별·맞춤형 STEAM 교육의 현장 확산 지원

○ 산출근거 : 1,022명 × 0.675백만원 = 690백만원

3-2.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 660백만원

○ 창의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 및 자율적 탐구 분위기 확산

○ 산출근거 : 130개 과제 × 5.1백만원 = 660백만원

3-2. 학생 체험·탐구 활동 지원 : 450백만원

○ 대학, 출연연, 기업을 활용해 기관·지역 특성에 맞는 STEAM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산출근거 : 10개 과제 × 4.5백만원 = 450백만원

【4.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72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산출근거 : 7교 × 103백만원 = 7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	**9,410**	**9,970**
■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6,390**	**6,230**
	※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 교육과정 중장기연구,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3,330백만원**	※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 교육과정 중장기연구,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3,270백만원** ▪ 교육과정 중장기 연구 감액(△10), 선도모델 연구 및 구축·운영 감액(△100), 수학 종합계획 수립 순증(50)
	※ (교수·학습자료 개발)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수학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자료 등의 개발·보급 **710백만원**	※ (교수·학습자료 개발)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수학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자료 등의 개발·보급 **510백만원** ▪ 학습결손 보완교재 개발·보급 감액(△200)
	※ (과학교육활동 지원) 학생 과학 탐구역량 강화 및 교사의 과학 수업역량 제고·연구활동 활성화 **855백만원**	※ (과학교육활동 지원) 학생 과학 탐구역량 강화 및 교사의 과학 수업역량 제고·연구활동 활성화 **955백만원** ▪ 사다리프로젝트 지원팀 확대에 따른 증액(100)
	※ (수학교육활동 지원) 수학 공교육 기반 조성 지속 추진 **936백만원**	※ 전년 동일
	※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전국 과학중점학교의 원활한 운영 지원 **559백만원**	※ 전년 동일
■ 대학단계 프로그램	**1,220**	**1,220**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 이공계 우수 학부생들의 도전적·실험적 연구 지원 **870백만원**	※ 전년 동일
	※ (대학 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 AP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과학고 AP 지원 **350백만원**	※ 전년 동일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1,800**	**1,800**
	※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 연수센터 운영)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운영 **690백만원**	※ 전년 동일
	※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 및 자율적 탐구 분위기 확산 **660백만원**	※ 전년 동일
	※ (학생체험 체험·탐구활동 지원) 학교 밖 기관 특성에 맞는 STEAM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50백만원**	※ 전년 동일
■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720**
	-	※ 7개 국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720백만원(순증)**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개정('17.10.24.)에 따라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내역사업의 세부 사업 구분을 법조항에 따라 일부 재편하였음

□ 지원 필요성

○ 최근 전면 개정('17.10.24)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으로 과학·수학·STEAM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기능)** 및 **책무성 증대**

-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책 마련*·시행 의무화**

* 과학교육 종합계획('16-'20), 수학교육 종합계획('15-'19),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과학·수학·STEAM 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및 **실질적인 수업 변화** 유도 필요

* 학생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 활성화 등으로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 과학교육 종합계획('16-'20), 수학교육 종합계획('15-'19),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18-'22)

○ **초·중등 단계에서 대학 단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 지원** 필요

- 이공계열 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 기회** 부여 및 **창의·융합적 연구역량 촉진**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

< 과학교육 종합계획('16.2.26.) >

◈ **추진배경**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제5조)**에 따라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2008)에 이어 **과학교육의 기본 틀**을 제시할 시책 마련

◈ **주요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 및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15대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 발표**

- (**과학교육의 범위**) 첨단과학, 공학, 메이커 등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 (**대상자 확대**) 초·중등학생→유치원부터 대학생(P-16)까지 연계, 성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교육환경 강조
- (**미래형 교육환경 도입**) 가상 체험 실험, IoT 플랫폼이 접목된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등 첨단과학기술을 학교 안으로 도입
- (**학습 패러다임 변화 유도**) '거꾸로 교실'등 학생참여수업 강화, 다양한 '과학동아리' 확대 등을 통해 교사 주도에서 벗어나 학생 능동적 참여 기회 확대
- (**연계강화**) 학생 탐구·체험 경험 확대 위한 학교내 및 학교-사회연계 프로그램 강화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15.3.16.) >

◈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 수학의 **학습량과 난이도 적정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 강화
- 통계교육 내용을 생활 속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활동 중심으로 개편**
- 수학독서, 수학독후감 쓰기 등 **정의적 영역 강화**

◈ **수학학습에서 '성공 경험' 기회 제공**

-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 활동 중심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결과 보다 **과정 중심 평가** 강화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실현
- 수학 우수학생을 위한 **수학 심화 프로그램 제공**
- 학습 부진 학생을 **수학멘토링 및 수학학습나눔교실**(수학클리닉) 확대

◈ **범국민 수학교육·학습 지원체제 다양화**

- '**수학교육상**' 수여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 'Ask Math' **학부모 수학교실** 운영 등 수학교육 대중화
- 지역별 수학문화관 건립, **수학축제** 등 범국민적 수학교육 문화 확대

<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17.12.27.) >

◈ **초·중·고 STEAM 교육과정 확대**

- 창의융합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교과서에 STEAM 반영 확대, 과정 중심의 평가 강화 등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 **진로 연계 STEAM 활성화**

- STEAM R&E, STEAM 아웃리치 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교사의 STEAM 설계·실행역량 제고**

- 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 교사연구회 지원 등으로 교원의 STEAM 연구 역량 강화

◈ **STEAM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예비교원 STEAM 교육 강화, 지원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안팎의 STEAM 교수 인력 확보

◈ **함께하는 STEAM 문화 확산**

- 생활 속 STEAM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STEAM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9,260	9,410	9,970	560	6.0
○ 과학·수학 교육 내실화	6,390	6,390	6,230	△160	△2.5
-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	3,330	3,330	3,270	△60	△1.8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연구)	110	110 (수1+과1)×55	110 (수1+과1)×55	-	-
(교육과정 중장기 연구)	100	100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과1×100	90 미래세대 과학교육 표준 과1×90	△10	△10.0
(선도모델 연구 및 구축·운영)	2,500	2,500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운영 40개교(신규)×50 50개교(계속)×10	2,400 창의융합형 과학실 선도모델 구축·운영 30개교(신규)×50 90개교(계속)×10	△100	△4.0
	500	500 학생참여형 수업모델 연구 25개교×20	500 학생참여형 수업모델 연구 25개교×20		
	120	120 학업성취 최소 기준 점검 문항 개발 연구 (수1)×2개×60	120 수업분석 및 평가지원 도구 모델 연구 (수1)×2개×60		
(종합계획 수립)	-	-	50 수학 현황조사·분석 1회×10, 자문회의 10회×2, 공청회 2회×10	50	순증
- 교수학습자료 개발	710	710	510	△200	△28.2
(교수학습 보조 자료 개발)	400	400 2종(과학,수학)×4개학년(초5,6,중2,고2)×50	200 2종(과학,수학)×2개학년×50	△200	△36.4
	150	150 고교 통합과학자료 개발 3영역×1개×50	150 학생 과학탐구 과제가이드 개발 3영역×1개×50		
(교과서 모형 개발)	50	50 1종×50	50 수학 1종×50	-	-
(교육콘텐츠 개발)	110	110 자유학기제 대비 직업탐구체험 콘텐츠 (수1+과1)×55	110 사회문제해결형 콘텐츠 (수1+과1)×55	-	-
- 과학교육활동지원	855	855	955	100	11.7
(사다리프로젝트)	225	225 사다리프로젝트 80팀×3.2	325 사다리프로젝트 100팀×3.2	100	44.4
(과학창의대회 지원)	630	630 13건×48.5	630 13건×48.5	-	-
- 수학교육활동지원	936	936	936	-	-
(교사 수학활동 지원)	436	436 1,250명×0.35	436 1,250명×0.35	-	-
(학생 수학 성공 경험 발굴)	150	150 750명×0.2	150 750명×0.22	-	-
(국민 수학 인식 개선)	350	350	350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50회×7	50회×7		
-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559	559	559	-	-
(교수법, 자료개발)	259	259 120교×4개 주제×0.54	259 120교×4개 주제×0.5	-	-
(워크숍, 연수, 컨설팅)	210	210 워크숍 3회×30, 유공교원 연수 40명×3	210 워크숍 3회×30, 유공교원 연수 40명×3	-	-
(특화프로그램)	40	40 부스 40교×1회×1	40 부스 40교×1회×1	-	-
(평가 및 성과 보급·확산)	50	50 우수사례집 배포 120교×0.4	50 우수사례집 배포 120교×0.4	-	-
○ 대학단계 프로그램	1,220	1,220	1,220	-	-
- 학부생연구프로그램	870	870 84개×10.3	870 84개×10.3	-	-
- 대학연계 심화프로그램 운영지원	350	350 교과개설 및 평가승인 4개 교과×15, 교사연수/워크숍 4개교과×2회×15, AP 지원센터 1식×170	350 교과개설 및 평가승인 4개 교과×15, 교사연수/워크숍 4개교과×2회×15, AP 지원센터 1식×170	-	-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1,650	1,800	1,800	-	-
-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운영	540	690 1,022명×약0.7	690 1,022명×약0.7	-	-
- 융합형 연구과제 지원	660	660 130개×약5.1	660 130개×약5.1	-	-
- 학생체험 탐구활동 지원	450	450 10개×45	450 10개×45	-	-
○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	720	720	순증
-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	7교×10.3	720	순증
□ 비목(합계)	9,260	9,410	9,970	560	6.0
○출연금(350-02)	9,260	9,410	9,970	560	6.0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개정('17.10.24)에 따라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내역사업의 세부 사업 구분을 법조항에 따라 일부 재편하였음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사회**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수학교육** 및 **STEAM교육 지속 지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 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원 지원 등 초·중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수요가 높은 사업 발굴·시행

○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비**하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260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6,39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22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50백만원			
'18	9,410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6,39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22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800백만원	9,410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6,39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22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800백만원	-
'19	8,533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5,889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124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520백만원	9,970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6,23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22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800백만원 ○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 720백만원	1,437
'20	15,359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12,029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665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65백만원	8,671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5,90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101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70백만원	△6,688
'21	15,359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12,029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665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65백만원	8,498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5,800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058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40백만원	△6,861
'22			8,413	○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 5,715백만원 ○ 대학단계 프로그램 : 1,058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1,64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3.5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410	9,970	56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0	138.5	8.5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8	13.8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 <2>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2>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표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350-02목 ⇒ 출연금(사업출연금) 평균지출액 : 0.72 ※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교육서비스) : 0.72 (99.70억원÷0.72억원=138.5) □ **2018년 고용효과 : 130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같은 법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 (**국정과제**) 54-1.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 추진경위

▪ '08.9. :「과학기술기본법」제30조 개정을 통한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립
※ 수학·과학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개발 및 검정, 창의적 인재육성 등의 기능 확대
▪ '10.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 수학·과학 분야 교과서 검정 업무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
▪ '11.5.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발표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추진계획」발표
▪ '11.8.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수학과 교육과정 고시
▪ '12.1. :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발표
▪ '12.4. :「융합인재교육(STEAM) 추진방안」발표
▪ '13.6. : 경제 실현계획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정부합동)
▪ '15.3.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15-'19)」발표
▪ '15.9.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수학과 교육과정 고시
▪ '16.2. :「과학교육 종합계획('16-'20)」발표
▪ '17.7. :「국정과제 54. 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 '17.12.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발표
▪ '18.1. : 2018년 기재부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성과 제고 및 지출 효율화 추진
※ "핵심사업 집중관리를 통해 재정혁신 뒷받침, 80대 핵심사업 평가 실시"(기재부, '18.1.1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87.63	87.63	87.63	94.25	94.25	92.6	92.6	94.1	94.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7.63 (87.63)	( )	( )	87.63 (87.63)	87.63 (87.63)	( )	( )
'16년	94.25 (94.25)	( )	( )	94.25 (94.25)	94.25 (94.25)	( )	( )
'17년	92.6 (92.6)	( )	( )	92.6 (92.6)	92.6 (92.6)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9,260	9,260	9,410	-	9,410	9,41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과학·수학 공교육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 : 6,390백만원
  - ▪ 과학·수학 교과서 개선 모형 연구 : 50백만원
  - ▪ 창의적 과학·수학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수업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보급 : 4,215백만원
  - ▪ 과학·수학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체험·탐구활동 제공과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및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 : 1,098백만원
  - ▪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 559백만원
  - ▪ 수학교육 발전기반 조성 : 468백만원
- 대학단계 과기인재 육성 프로그램 : 1,220백만원
  -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지원 : 870백만원
  - ▪ 대학단계 심화프로그램 지원 : 350백만원
-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 1,800백만원
  - ▪ 융합형 과학기술교사 연수센터 : 690백만원
  - ▪ 융합형 연구과제(R&E) 지원 : 660백만원
  - ▪ 학생 체험·탐구 활동 지원 : 45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o 국회 교문위 2014년도 결산보고서 평가

- 개발한 과학실험 안전매뉴얼의 교사중심 다운로드 방식을 개선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과학실험 안전매뉴얼 다운로드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15. 9.)

o 국회 교문위 2015년도 결산보고서 평가

- 과학중점학교 해외탐방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과학중점학교 교사와 학생들 위주로 하고, 교수나 장학사들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것

⇒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학교 교사와 최우수학교 소속 시도 담당 장학사에게 유공교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15년) 전체 100교 중 우수학교 20교(최우수학교 3교 포함)

⇒ 교사들에게 기회가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장학사*와 지원연구단*의 수를 최소화함('15년 8명 → '16년 4명으로 축소)

*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우수학교 관할교육청 장학사만 참석하였으며, 지원단 교수는 일정한 기준(컨설팅 횟수, 자료 제작 등)에 따라 참여시킴

o 국회 교문위 2016년도 결산보고서 평가

- 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의 간접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2017년부터 원격연수 운영 관련 비용은 별도의 간접비로 편성·집행하도록 조치 완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해당 사업에 대한 각종사업 평가결과

(1)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2017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93.0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교육 정책**

○ **미국 : 정부차원의 경쟁력강화정책 시행**

-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10.9)를 통해 성공적인 STEM 교육을 위한 국가적 목표와 전략 제시
- 미경쟁력위원회의 창의적이고 첨단적 재능의 활용 극대화 강조
- 미국의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12년도 예산 : 1억2,000만 달러
- 미국경쟁력강화법 2007(America COMPETES Act 2007), ('08~'10)
  · STEM 교육 분야 신규 교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
  · 현직 교사의 STEM 교육 전문성 강화
  · 초·중등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마그넷 스쿨 : 공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등장
- STEM 분야의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28년에 걸친 장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교육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인 차세대과학 표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개발
- '15년 'STEM 교육 법안(STEM Education Act of 2015)'을 통해 STEM 교육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원 강화

○ **일본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Innovation 2025' 과학기술혁신 전략 수립**

- 초·중·고 전반에 걸쳐 수학·과학 필수 수업시간과 학습내용 확대
-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는 고등학교를 'SSH 학교(Super-Science High School)*'로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학생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 학생에게 관찰·실험 등을 통한 체험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학습 제공, '14년 2,790백만 엔의 예산 책정

○ **유럽 : 2009년을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로 선포**

- 유치, 초등·중등 과정의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창의성 촉진
- 적극적·혁신적 사고방식을 증진시키는 수학, 과학, 기술 연구의 확보
-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및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 등

○ **영국**

- 2000년부터 창의성을 국가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로 강조
- 활용가능한 실용적 자료 개발로 창의성 제고 방안 제시(QCA)

○ **핀란드**

- **'2020년 과학교육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핀란드'를 차세대 정책목표로 설정**
  · 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촉진하고, 과학교육의 결과로 과학 및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정
  ·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육성 위해 교육과정 개편 준비작업 착수('14.6.9)
- '16년 핀란드 국가핵심교육과정은 학습의 기쁨과 협력적 분위기, 학교생활과 학습에서 학생의 자율성 증진 강조
- 개편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매년 모든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다학문, 광범위한 학제 간의 주제에 중점을 둔 현상기반학습(Phenomenon Based Study)*을 제공

* 현상기반학습은 교과의 경계를 넘어 실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협업하며 현상 탐구

□ **교원 역량 강화**

○ **영국의 국가 과학학습 센터**

- 목적 : 양질의 교사를 STEM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사 전문성 함양
- 1개 국가 과학학습센터와 9개 지역 과학학습센터 지정 운영
- 런던의 경우 교육연구소가 사이언스 뮤지엄과 버벡 대학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센터 운영
- 교사들에게 최신 과학이론과 과학교육방법론 연수 진행 및 온라인 강좌 개설 제공

○ **이스라엘 수월성 센터**

- 이스라엘 과학기술 아카데미(IASA) 등을 지원
- E2K(Mitchell Excellence 2000)를 통해 교사 연수 실시

○ **Excellence 2000+(E2K+ 3~8학년용)**

- 과학에 재능있고 흥미를 가진 학생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참여 교사의 전문적 발전에도 기여함

< 해외 교사연수센터 운영 사례 >

- **(미국)** PLTW(Project lead the way)사에서 STEM 교육 교재를 개발, 전국 40개 이상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연 1만5천명 교사 연수 실시
- **(핀란드)** 과학·수학교육 지원·향상을 목표로 하는 LUMA 센터에서 다양한 주제로, 학기 중 약 100개의 교사대상 워크숍과 Summer course 프로그램 운영
- **(영국)** York 대학 내에 설립된 국립과학학습센터(NSLC)에서 전국 10개 과학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연간 3만 여명 교사 연수 실시

□ **파트너십**

○ **영국 London Engineering Project**(LEP)

- 목적 : 이공계 전문인력 부족 극복
- 내용 : 대학과 산업체 연계를 통한 대학생들의 공학부문 역량 강화 및 우수 중고등학교 대상 집중 교육을 통한 진학 추진
- 중고등학교내의 집단별 개인별 STEM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대학내의 STEM 활동 운영
- 학교내 젊은 공학자 클럽 운영 지원 등

○ **일본 사이언스 파트너십 프로젝트**(SPP)

- 과학기술진흥기구를 중심으로 학생의 과학기술 및 이과, 수학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학교 및 교육위원회 등 관리기관, 대학, 과학관 등이 연계하여 체험활동 및 문제해결학습 중심 교육 활동 지원

○ **일본 <과학·수학이 좋아요! 시범지역 사업>**

-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를 중심으로 시행한 역점 사업
- 과학교육에 적극적인 지방공공단체의 제안에 따라 추진

○ **중국 국가과학실험 학급**(NSFC) **운영**

- 총 4개의 국가과학실험 학급 운영
- 학교 입학 3년차에는 북경대학이나 칭타오 대학에서 학점 이수 권장

□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 콘텐츠**

○ **미국 Science Education for Public Understanding Program**(SEPUP)

- 과학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모듈 중심의 탐구 중심 교수학습 자료
- 과학 개념의 이해와 적용, 증거의 활용, 학생의 흥미 촉진, 토론과 논쟁 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중학교 : 지구과학 쟁점(Issues & Earth Science), 생명과학 쟁점(Issues & Life Science), 물상과학 쟁점(Issues & Physical Science), 증거활용 쟁점(Issues, Evidence & You), 과학과 삶의 쟁점(Science & Life Issues)

※ 고등학교 : 전지구적 쟁점(Science & Global Issues), 과학과 지속가능성(Science & Sustainability)

○ **미국 Insight**

- 미국의 국가과학교육기준(NSES)에 따라 개발된 탐구중심 프로그램으로 6개 주제(시스템, 변화, 구조와 기능, 다양성, 원인과 결과, 에너지) 중심으로 구성

○ **싱가폴 Practical Workbook**

- 싱가폴은 대학 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실험·실습을 따로 평가할 정도로 실험탐구 강조
- Practical Workbook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책으로 '예상한 것 검증하기', '연구문제 착안하기', '변인설정', '변인통제' 등의 활동 다수 포함

○ **영국 Nuffield Foundation 프로그램**

- 물리, 화학, 생물, STEM 분야에 걸친 방대하고 다양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

○ **유럽 S-TEAM 프로그램**

- 탐구 기반 과학교육(Inquiry-based science teaching) 활성화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노르웨이 등 15개 유럽 국가의 25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100명 이상의 과학교육자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학생들의 탐구와 문제기반 학습 참여, 정보 탐색을 포함한 실험 활동 참여, 자유로운 논변과 의사소통 참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6)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추진	→	사업결과 및 집행결과보고 사업평가
교육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학·수학 교수·학습자료 개발 건수 (단위:종)	목표	13	15	17	18	19	초·중등 과학 수학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건수*로 설정 *'18년대비 5% 증가	자료개발 건수	운영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15	15	17	18	-			
	달성도	115.4	100	100	100	-			
연구과제(R&E) 참여학생의 만족도(점)	목표	신규	75	79	83	87	참여학생 만족도 매년 5%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5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평가점수* *100점 기준 환산	참여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적	신규	83.56	85.6	86	-			
	달성도	신규	111.4	108	101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사항
○ 참고 2 : 사업의 성과 및 현장 변화
○ 참고 3 : 2018년도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성과
○ 참고 4 : 제3차 수학교육 종합교육 수립 계획(안)
○ 참고 5 : 국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국가차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환경 구축]

□ **(교사)**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첨단과학실험과 융·복합 탐구활동이 가능한 미래형 과학실 환경 개선 필요에 **교사 79% 찬성***

* 과학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15.10, 초중고 교사 133명)

※ 과학실 IT기기 보유 현황(고등학교 과학실 실태조사, '16. 5.)

구분	학교수	학교당 과학실험실 IT 기기 수					
		전자교탁	노트북	태블릿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무선 인터넷(%)
전체	2,330	2,049	3,213	2,102	463	40	38
학교당	1	0.88	1.38	0.90	0.20	0.02	-

[수학클리닉 역량 강화 교원연수]

□ **(학생)** 수학학습을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초등 6.46%, 중학 8.8%, 고등 16.24%('18. 4.)

○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도 수학학습 클리닉 운영 확대 요구

□ **(교사)** 연수 구성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

○ 본 과정의 유지·발전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4.58로 향후에도 연수 개설 필요

○ 중·고등학교 각 학교급 특성에 맞는 연수 과정 개설이 필요하며, 방학 중 또는 주말 개설 요구

○ 진단검사지 투입과 해석, 학생들과 즐겁게 관계 맺는 접근법, 수학 학습 코칭 실습, 실제 상담사례 공유 시간 요구

< 예산(안) 반영사항 >

[국가차원의 창의융합형 과학실 환경 구축]

□ '16년 모델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17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공간혁신) 구축·운영 예산 수립 및 지원

[수학클리닉 역량 강화 교원연수]

□ 수학클리닉 역량 강화 교원연수 예산 수립 및 지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과학교육 선도사업의 효과성]

□ 과학교육 선도사업* 수혜학생 대상 **'학생의 과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향상**(적용 전: 73.1% → 적용 후: 76.2%)

*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과학중점학교, 사다리 프로젝트

** 과학학습정서, 과학관련 자아개념, 과학학습동기, 진로포부, 과학관련 태도

[수학클리닉 역량 강화 교원연수]

□ **수학 심리 상담** 및 **수학 학습 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강좌 운영으로 **해마다 높은 만족도 유지**

연도	이수인원	강의 만족도	연수 도움 여부	유지·발전 필요성
2016	160	4.46	4.50	4.80
2017	275	4.37	4.42	4.59
2018	308	4.48	4.40	4.58

□ **수학나눔학교**(전국 595개교)에서 **교내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 교원의 STEAM 교육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심화 연수 운영 만족도 증가** 및 **관리자 참여 확대**

○ 기초·심화 과정

- 연수 일정 : (기초) '18.8.17.~19. / (심화) '18.7.31.~8.3.
- 연수 인원 : (기초) 261명 / (심화) 169명

○ 관리자 연수

- 운영 일정 : (서울 외 8개 지역) '18.6.~9.
- 연수 인원 : ('16) 243명 → ('17) 740명 → ('18) 1,046명

○ 연수 만족도

구분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관리자 연수
만족도	2017	4.21	4.31	4.15
	2018	4.51	4.36	4.23

[융합형 연구과제(R&E) 지원]

□ **입문과정 참여 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 : (사전) 3.97/5 → **(사후) 4.01/5**

○ 학생들의 탐구력과 협업 능력, 실생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실생활 문제 중심의 연구과제 지원** 및 **입문과정 신설**

< 2018년 STEAM R&E 현황 >

구 분	중점학교	일반고	과학고/영재고	기 타	합계
참여 학교 수(교)	55	41	29	5	130

< 2018년 STEAM 성과발표회('18.11.21.) >

[학생 체험·탐구 활동 지원]

□ 대학·출연연·기업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연계하는 학교밖 STEAM 운영 지원 확대

○ **학교밖 STEAM 운영 활성화**

- 학교밖 STEAM 운영 기간 참여 증가 : '17년 6곳 → '18년 8곳
- 자유학기제 시행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과 탐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초·중등학교 및 일반인 대상 참여 증가**

구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반인	총계
참여 현황	2017	1,181명	1,891명	357명	3,429명
	2018	1,547명	1,234명	1,289명	4,070명

- 초·중등학교 및 일반인 대상 참여 증가 : '17년 3,429명 → '18년 4,070명

○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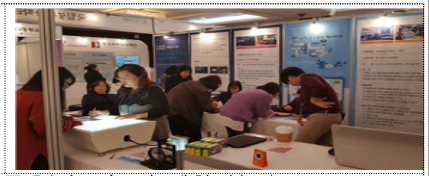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공유(워크숍 및 체험 부스)>

< 현장의 변화 >

[과학교육 선도사업의 효과성]

□ **과학중점학교 지원**을 통한 **이공계 진로 지원 확대** 및 **일반고 역량 강화**

- 일반고 경쟁력 키우는 과학중점학교 - 양지고등학교(2017.11.15., 내일신문)
  -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다양한 탐구활동을 보장하는 과학중점학교인 양지고는 과학교양 과목을 통해 학생의 과학적 재능을 살리고 학생 과제연구를 활성화하여 꿈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음
- '지방 일반고 롤모델' 영주 대영고.. 불리한 여건 딛고 명문고 '우뚝'(2017.10.25., 베리타스 알파)
  - 소도시 위치 여건 및 학령인구 감소의 불리한 여건에서도 과학중점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반고의 교육력 강화로 대학 입시 명문고로 부상 및 주위학교의 롤모델로 성장

[수학클리닉 역량 강화 교원연수]

□ 학교 단위 수학 학습 **상담 프로그램(수학클리닉) 운영 활성화**

※ 초등학교 14.68%, 중학교 17.04%, 고등학교 16.05% 학교에서 운영
(초등학교 2,963개교, 중학교 1,690개교, 고등학교 1,128개교 대상 2018년 9월 현재)

□ 수학클리닉으로 **학생들의 수학 학습 흥미, 수학 가치 인식 향상**

※ 수학 흥미도 향상 : ('15년) 51.6% → ('16년) 58.5% → ('17년)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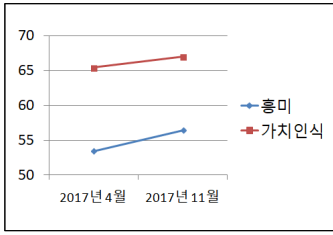

(학생 수기) 나는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이 없었다. 수학 트튼캠프(수학클리닉)을 하면서 수학은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가 생기고 수학에 대해 호기심이 계속 생겼다. 이제는 나에게 가아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 트튼캠프를 하면서 성적도 올랐다. 노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것이다. 수학이 너무 좋다! (경북 00초 학생)

참고 3 2018년도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성과 (요약)

1 탐구 · 참여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 **미래세대를 위한 과학교육표준* 개발 및 현장적용 실행방안 도출**

*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과학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 개발을 '15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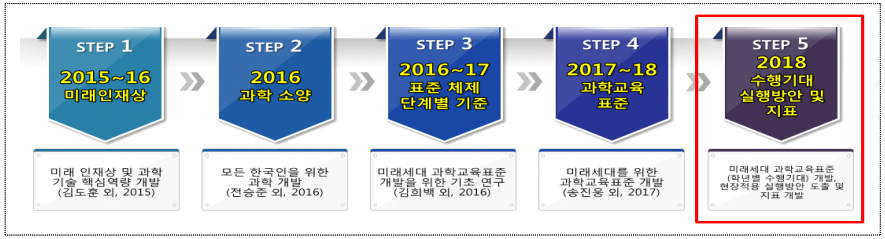

○ **(단계별 수행기대 개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소양**을 **'지식', '역량', '참여와 실천'**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 및 각 차원별**6단계*** **수행기대 개발**

* 1단계(초1~2), 2단계(초3~4), 3단계(초5~6), 4단계(중1~2), 5단계(중3~고1), 6단계(고2~3)

○ **(실행방안 도출)**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에 대한 현장적용 실행방안 도출 및 과학교육표준에 도달여부, 교육환경 등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

□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초·중·고 과학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현장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반영**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진, 현장 교사 대상 심층 면담, 초등학교 3-4학년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담당 교사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분석

○ **(과학과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초·중등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와 함께 사회·과학적 이슈 중심 SSI** **프로그램, 통합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프로그램** 등 개발·적용

* Interest(흥미·관심), Development(개발·혁신), Engagement(참여·실천), Association(창의·융합)

** SSI(Socio-scientific Issue) 교육 : **과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관점 등의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인성적 태도 함양에 기여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 킥오프 워크숍 | IDEA형 과학교사연구회 중간워크숍 | 교사연구회 활동 모음

○ (**과정중심 평가 모델 개발**) 지식·암기 중심 평가보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과정중심 평가모델** 개발

□ **과학중점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 강화** 및 **상호 지속발전 가능 체계 구축**

* 과학중점학교 운영 목적 :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수학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 과학인재 양성체계 마련** 및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 (**운영 내실화 강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개별 학교 맞춤형 컨설팅** 및 **시도 권역별 컨설팅** 추진으로 **지역협의체 강화** 유도,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정기 워크숍** 개최

※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자생력 과학중점학교 맞춤형 현장 컨설팅(연중) 및 시도 권역별 컨설팅(5월~9월),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과학중점학교 학교장 및 담당교사 워크숍(4월, 12월), 운영가이드북 및 우수사례집 제작·보급(5월)

과학중점학교 상반기 워크숍 | 시도교육청 장학사 협의회

○ (**상호 지속발전 가능 체계 구축**) 학교 평가로 인한 과열경쟁 완화를 위해 **과정중심 역량 평가를 추진하여 상호발전 도모** 및 **과학중점학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기존 결과중심 등급별 평가(1-3등급)에서 과정중심 학교역량 평가(최우수, 우수, 컨설팅대상학교)로 전환하여 평가 진행(11.27.)

□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구축 및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 (**창의융합형 과학실 등 구축·운영**) '16년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17년부터 **창의융합형 과학실(공간혁신) 구축·운영** 및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수업혁신)** 적용

※ '18년 지정·운영 :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90교),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95교)

※ 공개수업 확대, 운영가이드북 및 교수·학습자료 제공, 교원연수 실시, 학교별 컨설팅 실시, 효과성 분석을 통한 점검·환류 등 실천역량 강화

창의융합형 과학실 세미나 |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 공개수업 |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학교 컨설팅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상반기 워크숍('18.5.2.) |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중간 워크숍('18.9.5.) |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우수사례 공개수업('18.5.~'18.6.)

○ (**소외 계층 지원 강화**) **가정환경, 경제·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된 소외계층 대상 **과학 진로 기회 제공** 및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지원**

※ 사다리프로젝트 운영 현황 : ('16) 30팀 → ('17) 70팀 → **('18) 80팀**

* 지역 내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계된 팀별 1:1 과학멘토(Sci-Mentor) 매칭으로 실질적 진로코칭, 과학캠프 등 운영 및 대학·연구소의 오픈랩(Open Lab) 등 연계

*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사다리프로젝트 목표달성 의지 고취

사다리프로젝트 출범식 | 사다리프로젝트 과학진로캠프 | 사다리프로젝트 개별 멘토링 활동

□ **과학 긍정경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긍정적 과학 효능감*** **향상**

* **학생의 정의적 능력평가**(흥미도, 자신감, 학습태도 등)**, 자아효능감, 심리적 안정감** 등 긍정적 감정 측정 및 분석('18년 결과 분석 중, ~12.31)

○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선도학교 운영) 전국 초·중등 모델학교**(95개교) **대상** 학교급, 활용유형별에 따라 학생 **탐구·참여 중심 수업방법** 적용 및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제공

○ **(다양한 학생과학활동 지원) 학생 주도**의 **과학적 탐구 활동 활성화,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학교급별 탐구대회 지원

※ 자연관찰탐구대회, 과학탐구실험대회, 고등학교과학탐구대회, 과학동아리 활동발표대회, 한국과학창의력대회, 과학싹큰잔치 등 지원

자연관찰탐구 대회	과학 동아리활동발표 대회	과학 싹 큰 잔치

2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 구현

□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문제 풀이 중심에서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깨우치는 **탐구 중심 수학교육** 구현

○ 수학 학습자료 및 교구 활용*으로 칠판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과 탐구가 중심** 수업 활성화

* 시도별 수학교구 구비 지원, 탐구형 수학 도형 학습용 SW '알지오매스' 개발·보급('11월 정식오픈)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에 흥미와 역량이 있는 학생의 진로선택과 동기 유발 기회 제공

※ 좋은 수학과제 발굴, 수학 용어 말하기 한마당 등 수학탐구대회(전국, 시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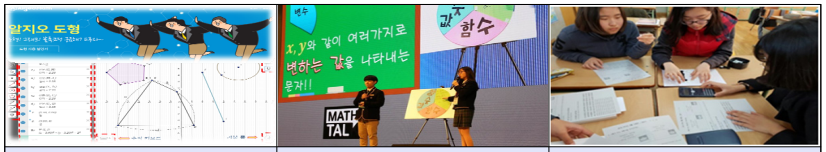

도형 학습용 SW	수학 용어 말하기 한마당	탐구 중심 수업

□ **(재미있는 수학)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모든 학생이 수학에 흥미, 자신감,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 확대

○ **수학클리닉 운영 및 또래멘토링 활성화**로 **수학 불안감 치유·자신감 회복 및 수학 학습 흥미** 향상

※ 눈높이 학습을 지원하는 수학나눔학교 운영 : ('16) 220교 → ('17) 553교 → ('18) 595교

※ 수학 흥미도 향상 : ('15년) 53.7% → ('16년) 57.6% → ('17년) 62.8% → ('18년) 조사중

○ 학생 **수학동아리** 활동을 공유하는 **수학나눔축제** 등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

※ 1교 1개 이상 수학동아리 운영, 시도 및 전국 단위 수학동아리 나눔축제 개최

※ 3월 14일(주간)에 학교별 'π데이 (수학과 친해지는 날)' 특색 프로그램 운영

수학과 친해지는 날	수학나눔축제	체험 수학 동아리

□ **(수학 교원 역량 강화)** 좋은 수학 과제로 배움이 있는 수업을 하는 우수한 수학교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 전국 단위 연수* 및 시도별 주제 중심 연수**로 수학교육 정책 실행 및 홍보

* 수학교사한마당(8월, 3박4일, 772명), 핵심교원 특별연수(6개월 연수과견, 20명)

** 실용통계, 수학클리닉, 체험수학,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등

○ 수학교과연구회 지원으로 연구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자료 개발

※ 활동중심수학교육연구회 25팀, 좋은수학과제개발연구회 18팀, 통계연구회 20팀

○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 교원 표창(수학교육상 10명, 유공표창 90명)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

2018 수학교사한마당	수학클리닉 연수	좋은수학과제개발 연구회 워크숍

□ **(현장 중심 수학교육 지원)** 교사와 학생이 필요한 **수학교육 자료 제공** 및 체계적 **현장 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공유

○ **EBSMath*** 사이트 운영으로 수학 흥미 및 동기유발 자료 제공 및 **ASKMath**** 사이트 운영으로 수학 연구자료 및 정보 공유

* EBSmath 사이트를 통한 중학교 전단원, 초등학교 3~6학년 차시별 흥미 및 동기유발 자료 제공

** 수학클리닉표준화검사, 수학나눔학교 우수사례,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회 산출물 등 공유

교실 속 EBSMath | ASKMath 사이트 | 수학클리닉표준화검사

○ **수학교육 중앙지원단** 및 시도교육청별 **수학교육지원단** 조직·운영으로 현장 교육 활동의 체계적 지원

※ 수학교육지원단 워크숍, 전국 수학교육 담당 전문직 워크숍, 시·도교육청 정책협의회(4회)

- 수학의 중요성,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 수학문화관(경남, 노원) 및 지역별 수학체험센터(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구축

* 직업 연계 수학 방송 프로그램, 체험형 가족수학 프로그램 등

직업 속 수학(YTN Science '수다학') | 경남수학문화관 | 가족공감 수학체험 프로그램

3 대학 단계 프로그램

□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운영 성과**

○ **이공계 학부생**에게 창의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유일한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초·중등 교육과의 연속성 확보**

- 49개 대학 **100개 과제 지원** 및 **학부생 412명** 참여

※ 과학기술* 89개 과제, 융합과학** 22개 과제

* (과학기술) 기초과학 및 공학 11개 분야, ** (융합과학)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융합 주제

※ 참여학생수 : ('17) 341명→ ('18) 412명

- 연구수행노트 작성 의무화를 통한 **연구 자기주도성 확립**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중간발표회

○ **학술대회 발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등의 연구 성과로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 발굴·육성**에 기여

연도	전문학술지 (SCI급)	전문학술지 (비SCI급)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수상
2017	3	9	66	9	24	14
2016	6	19	149	출원: 23/등록: 3	39	30
2015	10	8	166	출원: 22/등록: 2	22	27
2014	8	18	125	출원: 17	21	28
2013	12	12	88	출원: 17	33	12
2012	3	23	75	출원: 7	-	-
2011	-	11	13	출원: 2	-	-
2010	-	5	15	출원: 2	-	-
2009	2	1	16	출원: 1	-	-

※『연구성과 보고 의무화』에 따라 '19.5.31.까지 성과 결과보고 접수·마감(예정)

□ 대학과목 선이수제(AP) 운영 성과

○ 과학고 학생들에게 심화 교육 제공으로 **고교 교육 내실화 도모**

- 과학고·과학영재학교-과학기술특성화대학 간 **공동AP운영**

< 2018학년도 AP 개설과목 및 참여 현황 >

구분		영재학교	과학고	합계
1학기	참여학교 수(교)	8	17	25
	개설과목 수(개)	60	47	107
	인증과목 수(개)	59	47	106
	수강인원 수(명)	2,932	2,231	5,163
2학기	참여학교 수(교)	8	9	17
	개설과목 수(개)	69	25	94
	인증과목 수(개)	69	25	94
	수강인원 수(명)	조사중		

※ 수강인원 수는 평가인증 후 확인 가능('19.1월)

○ **AP담당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 과기특성화 대학 연계 **교과별 교원 연수**로 과학고·영재학교 교원 전문성 신장

< 2018학년도 AP 담당교원 연수 현황 >

연수구분	교과영역	과목	신청자(명)	이수자(명)	비고
하계 (1차:'18.7.17-20) (2차:'18.8.7-10) 직무연수, 과목별 30시간 (2학점)	수학	미적분학 I	13	12	
		미적분학 II	15	13	
	물리	일반물리 I/II	8	7	
	화학	일반화학 I	14	13	
		일반화학 II	10	8	
	생물	일반생물학	13	13	
계			73	66	

○ 영재학교 및 과학고 학생 중 **과기특성화대학 진학 학생의 학점 인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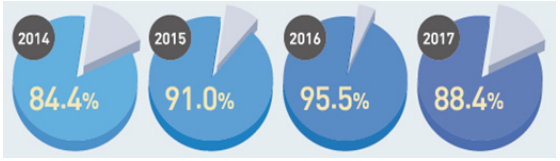

<영재학교, '14~'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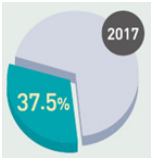

<과학고등학교, '17년>

4 융합형 인재 역량 강화

□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 교원의 STEAM 교육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기초·심화 연수 운영 만족도 증가 및 관리자 참여 확대

- 기초·심화 과정
  - 운영 일정(집합연수): (기초) '18.8.17.~19. / (심화) '18.7.31.~8.3.
  - 연수 인원: (기초) 261명 / (심화) 169명
- 관리자 연수
  - 운영 일정(집합연수) : (서울 외 8개 지역) '18.6.~9.
  - 연수 인원: ('16년) 243명 → ('17년) 740명 → ('18년) 1,046명
- 연수 만족도

구분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관리자 연수
전반적 만족도	2017	4.21	4.31	4.15
	2018	4.51	4.36	4.23

2018 융합형 과학기술 교사연수센터 운영

□ 융합형 연구과제(R&E) 지원

○ 학생들의 탐구력과 협업 능력, 실생활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실생활 문제 중심의 연구과제(R&E, Research & Education) 지원

- 기존 과학고·영재고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고 학생의 진입장벽 완화와 연구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입문과정 신설(130개 과제 중 30개)

○ 2018년 STEAM R&E 현황

- 참여 학교 분포

구 분	2018년				
	중점학교	일반고	과학고/영재고	기타	합계
참여 학교 분포	55	41	29	5	130

- 입문과정 참여 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 (사전) 3.97/5 → (사후) 4.01/5

STEAM R&E 성과발표회(11.3)

□ 학생 체험·탐구 활동 지원

○ 대학·출연연·기업 등 학교 밖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 활동을 연계하는 학교밖 STEAM 운영 지원 확대

○ 2018년 학교밖 STEAM 운영 기관

- 학교밖 STEAM 운영 기간 참여 증가 : '17년 6곳 → '18년 8곳
- 자유학기제 시행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과 탐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진로연계 STEAM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초·중등학교 및 일반인 대상 참여 증가

구분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반인	총계
참여 현황	2017	1,181명	1,891명	357명	3,429명
	2018	1,547명	1,234명	1,289명	4,070명

- 초·중등학교 및 일반인 대상 참여 증가 : '17년 3,429명 → '18년 4,0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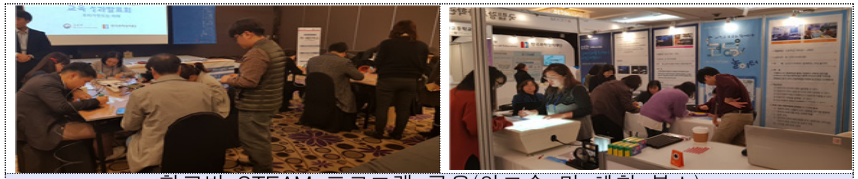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공유(워크숍 및 체험 부스)>

참고 4 제3차 수학교육종합계획 수립 계획(안)

□ 추진 배경

○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한 **미래인재 육성**

○ **세계 수학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흐름에 적합한 **수학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지원 기반 마련 구축**

□ 추진 근거

○ 수학교육 종합계획 수립(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지원 필요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12~'14)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15~'19)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추진 주요 성과('15~'17)

□ 추진 방향 및 방법

○ **(추진 방향)**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역량을 키우는 수학교육 추진 방안 수립**

※ 수학교육 종합계획 관련 인식조사 결과('16 전국 중·고 수학교원 대상)
- '배움을 즐기는 활동과 탐구 중심 수학교육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92.3%)
- '수학교육 정책에 따라 현장의 수학교육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3.9%)

○ **(추진 방법)**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관련기관 및 자문위원회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 추진체계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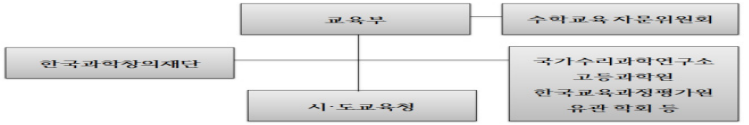

※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비 전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교육
목 표	1 수학 기반의 핵심역량 함양 2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 인식 확산 3 선진 수학교육 기반 조성

추진 전략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Ⅰ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추진	1	수학기반 융합교육 실시	□ 수학기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학의 유용성 학습내용 강화
		2	체험·탐구중심 수학프로그램 보급	□ 진로 연계 수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유학기제 수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학적 도구 활용 지원
		3	과정중심 수업 및 평가 정착	□ 과정중심 수업 및 평가 지원 □ 교사의 평가 자율성과 책임감 강화
Ⅱ	수요자 참여 중심 수학교육 지원	4	학생의 수학학습 성공경험 지원	□ 성공경험 프로젝트 실시 □ 학생 맞춤형 수학프로그램 운영 □ 자기주도 수학학습 지원사이트 운영
		5	교사의 수학교육 전문성 지원	□ 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우수 수학교사 인센티브 제공 □ 교사의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 확대
		6	국민과 함께하는 수학 대중화 지원	□ 학부모 및 성인 대상 수학교실 확대 □ 수학문화관 건립
Ⅲ	범국가적 수학교육 지원 체제 구축	7	수학교육 활성화 거점 마련	□ 수학거점학교 지정 운영 □ 학교·지역·국가 수학축제 확산
		8	수학교육 발전의 법적 토대 조성	□ 수학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 수학의 날 지정 추진
		9	수학교육 협력체제 구축	□ 수학교육 자문위원회 상설 운영 □ 수학교육 전문연구기관 설치 운영 □ 시·도교육청 수학교육 지원체제 강화

참고 5 국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의 혁신 필요**

- 학생들의 상상력·창의력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 내 공간 구축이 절실하나 **국립학교의 경우 무한상상실**의 **설치**가 **전무**함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17.10.24. 전면 개정)

* 국정과제 54-1. 지식 정보·융합교육 강화 -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2018년 경제정책방향」**('17.12.27.)

※ 적성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기초·고등교육 개선

□ 추진 개요

○ **(기간)** '19. 3. ~ '20. 2.

○ **(예산) 720**백만원(7교×103백만원)

○ **(규모) 국립 중학교*** 7교

* 전국 국립 초·중·고 33교 중 중학교 7교(자유학년제 등 무한상상실 활용도가 높은 중학교부터 우선 구축 예정)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 현황>

구분	공·사립*				국립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전체 학교 수	6,023	3,204	2,341	11,568	16	7	10	33
기구축 학교 수	18	19	42	79	-	-	-	-
비율(%)	0.3	0.59	1.79	0.68	-	-	-	-

* 일반고 내 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포함, 특수학교 제외(작성 기준: 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추진 계획(안)

1 운영 방향

○ 국가 발전을 견인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국립 초·중·고등학교 중심 미래형 교육 모델 구축**

○ **STEAM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수학·과학 등 학교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창작의 경험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설계 촉진**

2 주요 추진 과제

○ **(공간 구축) 무한상상실 공간 구축 및 활용**

-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토론, 실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융합교육 환경 조성**

※ 3D프린터, 레이저 커터기, 기타 목공 장비(스카치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노작(勞作)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학생 역량 강화)** 학생 수준,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해 무한상상실과 STEAM을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

※ 교과 수업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를 학교내 무한상상실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내 무한상상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초청 강연, 기기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 자체 연수, 협의회 등

○ **(성과공유 및 확산)** 지역거점학교로써 **지역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관내 타 학교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체험 및 홍보 행사, 지역 거점 무한상상실 연계 프로그램, 관내 발명·영재교육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붙임 1 국립학교 무한상상실 구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총계	2019	2020	2021	2022
	4,518	720	1,788	1,490	520
1차년도 (중학교 7교)	1,000	**720** (7교×103백만원)	**140** (7교×20백만원)	**140** (7교×20백만원)	
2차년도 (초등학교 16교)	2,288		**1,648** (16교×103백만원)	**320** (16교×20백만원)	**320** (16교×20백만원)
3차년도 (고등학교 10교)	1,230			**1,030** (10교×103백만원)	**200** (10교×20백만원)

※ 단가 산정 기준

: 1차년도 시설 구축 및 기자재 구입 중심 운영비 교당 103백만원 → 2~3차년도 프로그램 중심 운영비 교당 20백만원

붙임 2 학교내 무한상상실 설명자료

<학교내 무한상상실의 개념>

▪ 학교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 **활동 내용**

▪ **(공간 구축)**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내 무한상상실 공간 조성

※ **3D프린터, 기타 목공 장비(스카치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노작(勞作)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

▪ **(학생 역량 강화)** 교과 수업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아이디어 실현보고서**로 작성,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둠별 활동을 통한 협력과 소통 능력 제고

▪ **(교원 역량 강화)** 학교내 무한상상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기기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 연수**

▪ **(성과 공유·확산)** 지역 거점 학교로써 관내 타 학교 학생,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체험 및 홍보 행사 운영 등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활동

▸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 및 활동 사진**

<구축 사진> <활동 사진>

▸ **추진 성과**(2016년 경기과학고 자체 조사, 전교생 379명 중 232명 응답)

▪ 3D프린터, 아두이노, 공작기기에 대한 입학 전→후 흥미도

: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수강생 3.39/5점 → 4.15/5점**, 비수강생 : 2.94/5점→2.57/5점

▪ 이공계열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정도 :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수강생 80%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붙임 3 STEAM 설명자료

<융합인재교육(STEAM) 개념>

▪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융합적인 교육 방식을 의미

▸ **학습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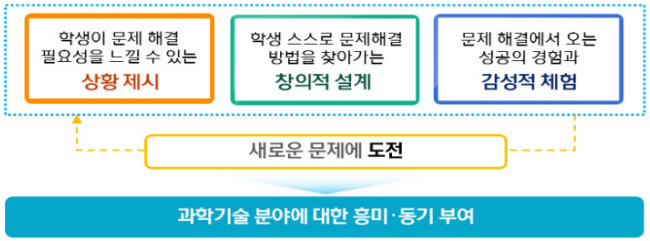

▸ **STEAM 수업의 특징**

▸ **추진 성과(STEAM 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1] : 초(78%), 중(75%), 고(73%)

▪ 학습에 도움을 주는 내용 : **수학·과학흥미도,[1] 문제해결력[2], 자기주도학습능력[2]** 등 향상

[1] 2016년 STEAM 사업 효과분석 연구, 강남화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2] STEAM 기대성과 평가 도구 개발 연구, 임성민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붙임 4 학교내 무한상상실 구축 사진

<공간 구축 사진>

<구축 예상도>

<상상놀이터>

<상상배움터>

<상상나눔터>

<목공실>

<작품 전시 공간>

[405]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R&D)	2,001	2,617	2,617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400 - 1404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융합교육팀장(안웅환), 사무관(조수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의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교원의 STEAM교육 역량 제고 및 학교 현장 확산 기반 마련
사업기간	'12~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접비	('18) 124백만원 (4.7%) → ('19) 124백만원 (4.7%)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1,377백만원**

-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STEAM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STEAM 활동 평가 모델** 및 **과학기술-인문예술 분야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 등 STEAM 내실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1,377백만원**

▪ 산출내역 : 62.6백만원×22개

▪ 연구 분야

① 프로그램 개발

-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 주요 이슈와 관련된 **주제 중심 프로그램**
  예) 빅데이터, 인공지능(딥러닝), 사물인터넷, 기후변화 등
- 첨단제품 활용형 : **실생활에 활용되는 첨단제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원리를 흥미롭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
  예)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드론,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기 등
- 과학·예술 융합형 :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의 상호 과정을 탐색**하면서 과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예) 음악과 수학, 영화와 과학기술, 문화재와 과학 등
- 미래직업 연계형 : **미래 전망에 따른 STEAM 관련 분야의 직업·진로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관련 분야 진출에 대한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인공지능로봇 윤리학자, 범죄예방환경설계 전문가 등

② STEAM 활동 평가 모델 연구·개발, 초·중·고 STEAM 운영 방안(가이드) 연구·개발, 과학기술과 인문예술 융합교육 방안 연구, STEAM 교육 통계 등 정보 공유 시스템 연구·개발 등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 1,240백만원**

- **교원의 STEAM 교육 역량 제고** 및 현장 적합성이 높은 STEAM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과 **교원과 STEAM 분야 전문가의 협력연구 지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 1,240백만원**

▪ 산출내역 : 5.39백만원×230개

< 국정과제 54-1.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

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및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등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STEAM 연구·선도학교 : ('17) 57교→('18) 100교→('19) 300교→('20) 500교

** STEAM 교사연구회 : ('17) 170팀→('18) 230팀→('19) 400팀→('20) 500팀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기반구축	2,617	2,617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62.6백만원×22개=1,377백만원	62.6백만원×22개=1,377백만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5.39백만원×230개=1,240백만원	5.39백만원×230개=1,2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 필요**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활성화 방안」('11.5.),「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계획」('17.12.), 국정과제(54-1.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추진 중

- **초·중등 단계부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제고**를 위해 실생활과 연계된 과학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원의 STEAM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교원과 STEAM 분야 전문가의 협력연구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기반구축	**2,001**	**2,617**	**2,617**	-	-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001	1,377 (22개x62.6백만)	1,377 (22개x62.6백만)	-	-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000	1,240 (230개x5.39백만)	1,240 (230개x5.39백만)	-	-
□ **비목**(합계)	**2,001**	**2,617**	**2,617**	-	-
○ 연구개발출연금(360-05)	2,001	2,617	2,617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교원의 STEAM 교육 역량 제고** 및 현장 확산을 주도하는 **선도그룹 육성을 위해** 현장 교원과 STEAM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연구 지원 확대

○ STEAM 수업과 평가 연계 모델 연구 및 과학기술과 인문예술의 융합 교육을 위한 연구 등 **학교 현장의 STEAM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001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0.01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0.00억원			
'18	2,617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3.77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2.40억원	2,617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3.77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2.40억원	-
'19	2,800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4.52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3.48억원	2,617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3.77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2.40억원	△183
'20	2,996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4.87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5.09억원	2,725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2.16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5.09억원	△271
'21	3,206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6.97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5.09억원	2,725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2.16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5.09억원	△481
'22			2,725	■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12.16억원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15.09억원	
연평균 증가율 (%)	12.5		1.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617	2,617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29.4	29.4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 <2>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2>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표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360-05목 연구개발출연금(연구개발활동비) 평균지출액 0.89 (26.17억원÷0.89억원=29.4) □ **2018년 고용효과 :** 29.4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간접고용효과 대상 사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 국정과제 54-1.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 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국정과제 54-1.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STEAM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모델 발굴 및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등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STEAM 연구·선도학교 : ('17) 57교→('18) 100교→('19) 300교→('20) 500교

** STEAM 교사연구회 : ('17) 170팀→('18) 230팀→('19) 400팀→('20) 500팀

○ 추진경위

-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11.5.)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흥미·잠재력 계발을 통한 초·중등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제시
-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11.5.)
  * 수학·과학 교육에 기술·공학과 예술을 접목하여 현대 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모두 갖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제시
- 2016년도 교육부 연두업무보고('16.1.)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실천 계획 중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내실화 추진
- 2017년도 교육부 연두업무보고('17.1.)
  * 과학기술·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STEAM 프로그램 개발·확산 및 교원 역량 강화 제시
-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계획('18~'22)」수립('17.12.)
  *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STEAM 확산 방안 제시
- 2018년도 교육부 연두업무보고('18.1.)
  *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STEAM교육 지원 확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31.5	-	31.5	28.1	-	20.1	-	26.17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1.5 (31.5)	- ( )	- ( )	- ( )	31.5 (31.5)	- ( )	- ( )
'16년	28.1 (28.1)	- ( )	- ( )	- ( )	28.1 (28.1)	- ( )	- ( )
'17년	20.01 (20.01)	- ( )	- ( )	- ( )	20.01 (20.01)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001	-	2,617	-	2,617	2,61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출연금 100% 집행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 '15년도 결산(교문위):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대주제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이 2~3개 정도인데, 이에 대한 평가가 대주제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STEAM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개별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조치사항) STEAM 프로그램 연구자가 주제별로 동일하여 프로그램의 질(質)이나 구성방식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 그간 대주제별로 평가하였으나, '16년부터 개별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였음

○ '16년도 결산(교문위): 교육부는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여러 사업에서 사업대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사항) 당초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공통으로 지출하고 있었던 '모바일 융합형 원격교육연수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와 같은 경비는 직접비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함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주요 내용
미국	■「STEM 교육 법안 (STEM Education Act of 2015)」('15)을 통해 STEM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 STEM 교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학습동기·학업성취도 향상 및 역량 있는 교사 양성을 통한 STEM 분야의 인력 육성
호주	■「STEM 학교 교육 전략 (National STEM school education strategy 2016-2026)」('15) 발표 ※ 교사의 STEM 교수 역량 강화, 학교 교육 내에서 STEM 교육 기회 지원, 지역교육청·기업과 산업체와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
독일	■ 2011년부터 연방정부를 주축으로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 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MINT*교육을 적극 추진 * MINT는 수학(M), 정보통신(I), 자연과학(N), 기술(T)의 약칭이며 개별과목을 통합하여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한국의 STEAM교육과 상응 ※ 독일의 경우 초·중·고 학교는 물론 직업학교, 대학교, 유치원까지 MINT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불림

(6)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수립	• 교육부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세부 계획 수립 및 보완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공고 관련 총괄	• 교육부
⬇	
사업 시행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중간 점검 및 환류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결과 보고 및 환류	•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미래핵심기술 분야'연계 수업모델 개발 개수(개)	목표	53	53	지표 삭제	-	-	미래핵심분야별, 첨단기술 제품별, 과학예술 융합형 등 융합형 과학기술 관련 분야 수업프로그램 개발 개수의 합	프로그램 개발 수의 합	사업단별 운영결과보고서
	실적	55	55	-	-	-			
	달성도	103.7	103.7	-	-	-			
협력연구팀 개발 융합형 과학기술 수업모델 개수(개)	목표	180	180	지표 삭제	-	-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팀에서 개발한 수업모델 개수의 합	프로그램 개발 수의 합	연구팀별 운영결과보고서
	실적	180	190	-	-	-			
	달성도	180	105	-	-	-			
융합형 과기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 수혜학생의 과학흥미도(점)	목표			3.7 (신규)	지표 삭제	-	TIMSS(2011)의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도 점수 대비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융합형 과기인재 양성 기반구축 사업 수혜학생 대상 과학 흥미도 조사 ※ 4점 척도로 하여 5점 만점 환산	수혜학생 대상 흥미도(설문) 조사
	실적			3.9	-	-			
	달성도			105.4	-	-			
융합형 과기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 수혜학생 수(명)	목표				40,000 (신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STEAM 수업을 경험하는 학생 수 산출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범적용 학생 수,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과제 적용 학생 수의 합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별 최종보고서의 결과 취합
	실적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융합인재교육(STEAM) 설명자료

○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 계획('18~'22) 개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새로운 교육을 받아 아이가 즐거워했어요. 더 많은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 STEAM 선도학교 대전 ○○초 학생 학부모

□ (학생) "STEAM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응용하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다른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게 끝이었구요. 그 지식을 직접 응용해 보는 것은 제가 겪었던 교과과정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STEAM을 통해서 좀 분출했던 것 같아요."

- STEAM 교육 참여학생

□ (교사) "한번에 급변하기 보다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꾸준한 정보공유를 통해 '창의융합'의 영역이 넓어져야 해요"

- STEAM 교사연구회 참여 ○○여자고등학교 교사

□ (관련 전문가) "STEAM 프로그램 분석 결과, STEAM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을 높여 자유학기제나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로 활용하려면 평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 STEAM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수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트 구축 및 홍보 필요"

- STEAM 프로그램의 분석 및 콘텐츠 맵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 예산(안) 반영사항 >

□ STEAM 교육의 현장 확산을 위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과학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속 지원('18년 22개→'19년 22개)

□ 교원의 STEAM 수업 설계 역량 제고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융합형 과학기술 협력연구 지원 예산 지속 지원 ('18년 230개→'19년 230개)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주요 실적 >

○ **(프로그램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학생 참여 중심의 교과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 연구·개발**

- 최신 과학기술분야, 인문·예술 분야 등을 융합하여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

※ 드론, 뇌과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O4O, IoT, 지식재산, 로봇, Make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 첨단제품 활용형 | 과학·예술 융합형 | 미래직업 연계형

-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STEAM 콘텐츠 맵*과 콘텐츠 활용 가이드북 개발·보급

* 개발 콘텐츠를 연구분야별, 교과목 및 학년, 내용요소별로 따라 분류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

STEAM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북 | STEAM 컨텐츠 맵

○ **(교원 역량 강화)** 다양한 교과의 현장 교사들이 협력하여 STEAM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

※ 2017 STEAM 교사연구회: 170팀(초 78개, 중 34개, 고 58개)

< 사업성과 >

□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동반 상승**

○ **(인지적 영역)** STEAM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문제 인식, 문제해결력) 향상

○ **(정의적 영역)** STEAM 수업 후 자기주도학습능력, 과학선호도, 수학·과학 흥미도, 자기효능감, 배려 능력 등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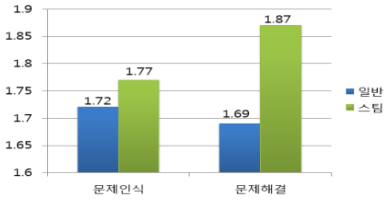

<창의융합적 사고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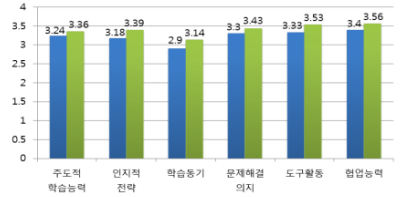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능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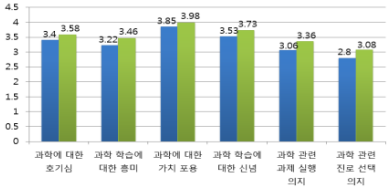

<과학선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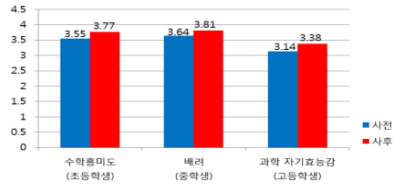

<배려, 수학흥미도, 과학자기효능감[2]>

[1] 초등학생 502명, 중학생 410명, 고등학생 461명 조사, STEAM 기대성과 평가 도구 개발 연구, 임성민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2] 초등학생 3,383명, 중학생 1,201명, 고등학생 1,652명 조사, 2016년 STEAM 사업 효과 분석 연구, 강남화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 **학생과 교사가 모두 즐거운 수업으로 변화**

○ STEAM 수업이 학생들의 설계, 토론, 발표 등의 학생 중심 수업으로 진행되어,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1] 제고

* STEAM 수업 동영상 분석 결과, **교사의 설명시간 비율이 8%~48%로 감소** (일반수업은 교사 설명시간 비율이 9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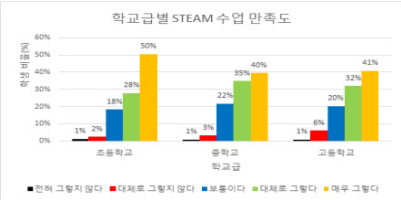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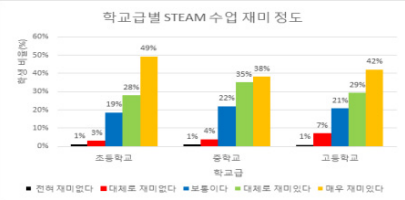

<학교급별 STEAM 수업 만족도> <학교급별 STEAM수업 재미 정도>

[1] 초등학생 10,287명, 중학생 4,558명, 고등학생 4,302명 조사, 2016년 STEAM 사업 효과분석 연구, 강남화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 현장의 변화 >

□ **(학생)** STEAM 수업을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STEAM이 확실히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긴 했는데 STEAM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중학교 때 대학에서 경험할 만한 것을 미리 아주 간단하게 체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만지는구나! 이런 연구를 하는 구나!' 활동을 하다보니까 집중도 잘되고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고민 없이 이과를 갔고 공대, 전자공학과 진학할 수 있었어요.(교사연구회 수업 참여 학생, 전자공학과 한OO)

□ **(교사)** STEAM 수업 후 변화된 학생들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동료 교사와 협력을 통해 성장

- 아이들이 STEAM 수업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르침의 기쁨과 STEAM 교육의 선도교사가 된 느낌을 맛보았습니다.
- 동학년과의 협력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차시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동학년 선생님들의 의견을 통해 수업이 더 풍요로워 짐을 느꼈습니다. 협의를 통해 자신이 해보지 않은 수업에 대한 도전의식도 생기고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STEAM 선도학교 교사, 인천하늘초등학교 OOO)

□ **(학교)** STEAM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며 의사소통 능력 함양

- 선조들의 화재 대피 방법과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찾아내는 STEAM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STEAM 수업에서 모둠별 토의를 통해 화재 분석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이 유익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의 참신한 생각들도 접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이루지 못할 결과물을 친구들끼리 협동하고 단합하면서 이루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STEAM 선도학교 학생, 상문고 OOO)

참고 3 융합인재교육(STEAM) 설명자료

<융합인재교육(STEAM) 개념>

- 융합인재교육(STEAM)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의 약칭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교과 간의 융합적인 교육 방식을 의미

▸ **학습모델**

▸ **STEAM 수업의 특징**

▸ **추진 성과(STEAM 프로그램 효과성 조사)**

- STEAM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1] : 초(78%), 중(75%), 고(73%)
- 학습에 도움을 주는 내용 : **수학·과학흥미도,[1] 문제해결력[2], 자기주도학습능력[2]** 등 향상

[1] 2016년 STEAM 사업 효과분석 연구, 강남화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2] STEAM 기대성과 평가 도구 개발 연구, 임성민 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참고 4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계획('18~'22) 개요

비 전 융합인재교육(STEAM) 내실화를 통한 창의융합인재양성

목 표
1. "학생과 교사"의 융합 역량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
2. 생동감 넘치는 교실을 위한 "수업혁신"
3.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나는 STEAM 실현

4대 추진전략	8대 중점과제		세부내용
1 학생을 키우는 STEAM	1	초·중·고 STEAM 교육과정 확대	• 창의융합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확대 • 교과서에 STEAM 반영 확대 • STEAM 운영 가이드 개발·보급 • 미래 세대에 적합한 STEAM 콘텐츠 개발
	2	진로 연계 STEAM 활성화	• STEAM R&E 지원 확대 • 직업 세계와 연계된 체험·탐구 활동 강화 • 자유학기제 연계 STEAM 체험 교육 확대
2 교사가 즐거운 STEAM	1	교사의 STEAM 설계·실행역량 제고	• 현직 교원 및 관리자 대상 맞춤형 연수 확대 • 교사연구회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현장 확산 • 우수 STEAM 학교·교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2	STEAM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STEAM 역량 함양 • 학교 안팎의 STEAM 교수 인력 역량 강화 지원
3 모두가 누리는 STEAM	1	함께하는 STEAM 문화 확산	• 생활 속 STEAM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STEAM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2	고등·평생교육 대상 STEAM활성화	• 대학 단계 STEAM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STEAM 프로젝트 추진
4 서로 공유하는 STEAM 플랫폼	1	연구 기반 STEAM 지원 체제 구축	• STEAM 교육 기초 통계 등 정보 공유 시스템 체계화 • STEAM 교육 연구 활성화
	2	국내외 STEAM 파트너십 강화	• STEAM 활성화를 위한 협조 체제 강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STEAM 나눔 프로그램 추진 • STEAM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류 확대 • 교원 간 교류 협력 강화

[300]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1,079	938	936	△2	0.2

* 사업코드 : 12 - 11 - 050 - 051 - 1400 - 1405 - 300
* 담 당 자 : 학생지원국장(정인순), 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연구관(이대우), 주무관(이준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학생정신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신건강 담당자 대상 교육·연수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 학교의 심리적 위기상황 발생 시 학교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학교 위기개입 지원 등 학교역량 강화
사업기간	'14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1개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경북대학교병원)
간접비	('19) 381백만원 (40.7%)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 936백만원(936백만원×1개소)

- **(인건비)** 센터 직원 인건비 : 330백만원
  - ▪ 산출내역 : 11명×30백만원=330백만원
- **(교육연수)**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 온라인 및 집합연수 운영 : 202백만원
  - ▪ 산출내역 : (온라인 연수, 3개과정×3.6백만원=10.8백만원) + (집합연수, 4개과정×47.8백만원=191.2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자료, 교원 연수자료 개발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279백만원
  - ▪ 산출내역 : 6개 프로그램×46.5백만원=279백만원
- **(학교위기개입 지원)** 대형 재난 및 학생 자살 등 학교 위기상황에 대한 학교 정상화 지원 : 74백만원
  - ▪ 산출내역 : 17개시도×4.35백만원=74백만원
- **(운영비)** 센터 운영비 : 51백만원(1개소)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938	936
▪ 인건비	센터 상근인력 인건비	센터 상근인력 인건비
▪ 교육연수	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	교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대상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
▪ 프로그램 개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등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등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교위기개입 지원	자살 발생학교 등 학교 위기개입 지원 실시	자살 발생학교 등 학교 위기개입 지원 실시
▪ 운영비	센터 1개소 운영비	센터 1개소 운영비

□ 지원 필요성

○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국민 자살률 50% 감축** 의지 표명('18. 1.)

○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제4회 국무회의 보고 및 발표**('18. 1.)

○ 그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학생자살자 수* 증가** 및 학생 **자살관련 정신건강지표** 악화**

* 학생(10만 명당) 자살자(명) : ('09) 202(2.7)→ ('12) 139(2.1)→ **('15) 93(1.5)→ ('17) 114(1.9)**

** 자살생각률(%) : ('12) 18.3 →**('15) 11.7 →('17) 12.1,** 자살시도율(%) : ('12) 4.1 →**('15) 2.4 →('17) 2.6**

○ 학생정신건강 관련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역량강화 지원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초·중등 학생 대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은 **본 사업이 유일**하며, 특히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주요 책무**로서 국고 지원을 통해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교육연수)**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 나타나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 담당자 및 교원 대상 학생정신건강 전문성 제고 필요
  - ▪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자료, 교원 연수자료, 학부모 대상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학생 정신건강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학교 위기개입 지원)**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및 학생자살 증가에 따른 학교 위기 발생 시 학교 구성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후 개입 지원 필요

□ 보조사업 점검결과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 사업의 목적(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단위학교의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규모 축소가 필요하므로 향후 3년간 20% 예산 감축 판정함

※ ('15년) 1,546백만원 → ('16년) 1,469백만원 → ('17년) 1,079백만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1,079**	**938**	**936**	**△2**	**0.21**
▪ 인건비	362	**330** (11명×30백만)	**330** (11명×30백만)	-	-
▪ 교육연수	74	**204** 온라인 연수 (3개×3.6백만) 집합 연수 (4개×48.3백만)	**202** 온라인 연수 (3개×3.6백만) 집합 연수 (4개×47.8백만)	**△2**	**0.21**
▪ 프로그램 개발	186	**279** (6개×46.5백만)	**279** (6개×46.5백만)	-	-
▪ 학교 위기개입 지원	228	**74** (17개 시도×4.35백만)	**74** (17개 시도×4.35백만)	-	-
▪ 운영비	71	**51** (1개소×51백만)	**51** (1개소×51백만)	-	-
□ 비목(합계)	**1,079**	**938**	**936**	**△2**	**0.21**
○ 민간경상보조(320-01)	1,079	938	936	△2	0.2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ㅇ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생정신건강 업무 담당자 및 관련 환경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생정신건강 관리 역량 강화
- ㅇ 자살, 학교폭력 등 학교 위기상황 발생 시 교내 학생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후 개입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079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1,079백만원(1,079백만원×1개소)			
'18	938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8백만원(938백만원×1개소)	938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8백만원(938백만원×1개소)	-
'19	994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94백 만 원 (994백만원×1개소)	936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6백만원(936백만원×1개소)	△58
'20	1,789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1,789백만원(1,789백만원×1개소)	938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8백만원(938백만원×1개소)	△851
'21	1,789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1,789백만원(1,789백만원×1개소)	938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8백만원(938백만원×1개소)	△851
'22			938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 938백만원(938백만원×1개소)	
연평균 증가율 (%)	13.5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938</td><td>936</td><td>△2</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5</td><td>15</td><td>-</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td><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6</td><td>16</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직접고용효과 8명 및 간접고용효과 40.3명을 합산
- 직접고용효과(8명)=353,000,000원/43,810,000원*
* 보건업 연평균임금
- 간접고용효과(40.3명)=3,350,000,000원/83,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의료 및 보건산업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7.5명)=353,000,000원/43,810,000원*
* 보건업 연평균임금
- 간접고용효과(7.3명)=3,350,000,000원/83,000,000원*
*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의료 및 보건산업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2018년 고용효과 : 15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예산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따라 고용효과 또한 같은 수준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효과 개선에 노력</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및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2항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1. 12. 14.) 한국뇌연구원 설립(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 ('12. 9. 24.) 한국뇌연구원 개원식 및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 개소
- ('13. 9.) 미래부 소관 한국뇌연구원 산하 학생정신보건연구센터사업 교육부로 이관
- ('14. 1.)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1단계('14~16년) 공모 지정(경북대병원)
- ('16. 11.)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단계('17~19년) 공모 지정(경북대병원)
- ('18. 1.) 대통령 기자회견 신년사에서 국민 자살사망 50% 감축 의지 표명
- ('18. 1.)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15	-	15.46	14.69	-	10.79	-	938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46** ( )	- ( )	- ( )	15.46 ( )	**15.46** **(14.72)**	- ( )	- ( )
'16년	**14.69** ( )	- ( )	- ( )	14.69 ( )	**14.69** **(13.23)**	- ( )	- ( )
'17년	**10.79** ( )	- ( )	- ( )	10.79 ( )	**10.79** **(10.76)**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079	1,079	938	-	938	938	100%

○ 집행현황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1차 보조금 교부('18. 2.)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차 보조금 교부('18. 7.)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 83점, 보통

<2017 예산안 교문위 예산심의 부대의견>

○ (부대의견) 학술교류 사업은 폐지하고 학생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자를 위한 세미나 또는 연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것

○ (조치사항) '17년 학술교류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의 학생정신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연수 사업으로 전환·추진

<2015회계 감사원 재무감사>

○ (지적사항)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한다는 성과관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

○ (조치사항) 전년도 실적(84.3%)을 고려하여 '16년 목표치 상향 설정

<2015 예산안 교문위 예산심의 부대의견>

○ (부대의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상근직원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을 적절히 조정할 것

○ (조치 사항)

- 센터 직원은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자를 상근직원으로 운영하고, 센터 자체 내규에 따라 직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결산 국회>

○ (지적사항) 메르스 사태 관련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감소 노력 필요

○ (조치사항)

- 메르스 관련 심리적 위기관리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상담자료('15.6.24) 및 교육용 동영상 보급('15.7.6)

○ (지적사항) 교육, 의료, 심리적인 부문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지원범위 확대 필요

○ (조치사항)

- 학교의 위기상황(자살사건 등) 발생시 초기에 개입하여 구성원의 심리 치료 등을 통해 학교 정상화 추진

  ※ 학교 위기개입 지원 17건,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26명

- 감염병 확산시 센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치료 및 위기개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수립('16.2)하여 부처 및 시·도교육청에 제공

* 5개 전략 20개 세부과제(사전예방, 발생초기대응,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일상복귀, 제도개선 및 인프라)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기관명	전략목표
NICHD (미국국립아동건강인간발달 연구소)	1.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 2. 모든 여성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어떤 해악으로도 고통받지 않는 것 3. 모든 아동이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4. 최적의 재활을 통해 모든 인간의 건강과 생산성, 독립성, 그리고 복지를 보장하는 것
NIMH(미국국립보건원)	1. 정신질환의 원인연구의 기초로써 뇌행동과학적 발견을 촉진 2.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궤도를 추적 3.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 4. NIMH가 지원하는 연구의 공중보건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
Anna Freud Center	1. 정신건강 및 회복력에 대한 이해 향상, 치료 및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2.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도구 및 서비스 개발 3. 임상의와 연구원 교육 및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과 도구 교육 4. 세계 각국에서 정책 및 실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5. 아동정신건강 및 복지의 단계적 변화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창의적 협력
CSMH (학교정신건강센터)	1. 학교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다학제 간 통합 프로그램 및 연례 컨퍼런스 개최 2. 메릴랜드 주 교육부(MSDE)와 학교정신건강 계획을 협약 - 정신보건 서비스의 통합 모델을 제공, 지속적인 사례 관리, 교육 및 훈련 실시, 학생들의 행동개선 및 학업향상 지원 시스템을 개발, 직원 역량 강화 등 3. 정신건강 프로그램(홍보, 문제 예방, 개입)의 3단계에 걸친 개발 스펙트럼(유치원에서 고등교육까지)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유능한 학교정신건강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향상 4. 학교정신건강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달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이며 창의적인 의사소통체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정신건강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화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사업공모 및 위탁기관 선정	◦교육부
↓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교육부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완	◦교육부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사업집행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연차평가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매년 실적 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 검토
↓	
사업결과 보고 및 환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만족도(%)	목표	78	85	86	86.5		'17년도 실적치를 참조하여 목표치 설정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대상 년1회 전수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100점 환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84.3	85.5	86	-				
	달성도	108.1	100.6	100	-				
센터 수요자의 학생정신건강 관련 지식 및 태도 수준 향상률(%)	목표	신규	신규	5	6		'17년 실적치 고려 설정	교육·연수, 학교응급심리지원 등 센터 사업에 참여한 교육청 또는 학교 담당자 의 학생정신건강 관련 사전지식 및 태도 대비 사후지식 및 태도 향상률 (사후지식 및 태도 점수-사전지식 및 태도 점수)/사전지식 및 태도 점수 × 100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6.4					
	달성도	-	-	128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청소년 자살관련 통계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학생정신건강 관련 교원·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별, 직능별, 수준별 연수과정 운영**

○ 온라인 연수 4개년 운영을 통해 총 418기수 운영, 교원 61,399명 이수

○ 학교관리자의 자살예방 인식 강화를 위해 전수(11,110명) 대상 연수 실시

○ 효과가 검증된 국외 프로그램(SSET: Support for Students Exposed to Trauma)을 한국형으로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는 학생들 대상 외상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워크숍 지속적 운영

정신건강 영역의 직무연수

학교관리자 연수

외상회복지원 프로그램 워크숍

- 학생 정신건강 관련 지식 및 태도수준과, 외상적 경험에 대한 이해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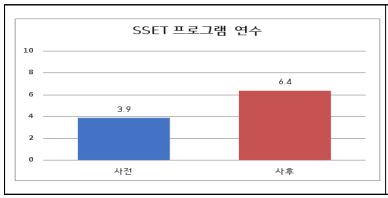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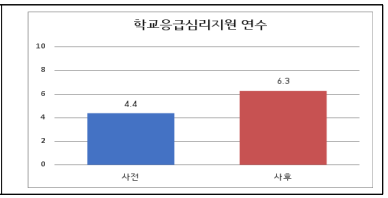

<세부 준거 기준 본 사업 수요자의 반응>

준거	교사 반응
연수 내용 만족	• 사례 중심으로 상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용 • 전문의 강사로 일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효과적 • 구조화된 구성으로 외상경험 학생들에 유용하게 적용
연수 운영 만족	• 교재 만족, 식사 및 간식 만족, 조별 발표도 유익 • 전문의 강사와 연수 참여자 간 상호적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연수 진행되어 상당히 유익 •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나 장소가 멀어 불편

□ 영역별, 대상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 학교현장의 수요 맞춘 영역별,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

- 온라인 직무연수과정 개발을 통해 연수과정 개설 및 시도교육청 연수원 보급

※ 영역별 프로그램: 정신건강 43건, 자살예방 4건, 아동학대예방 2건

□ 전국단위 학교위기개입 지원('14~'17년)을 통해 중앙 거점의 지원 시스템 구축

○ 학생 사망, 자살, 재난 등 학교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학교 위기개입 지원

○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아 본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 교육청 자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역량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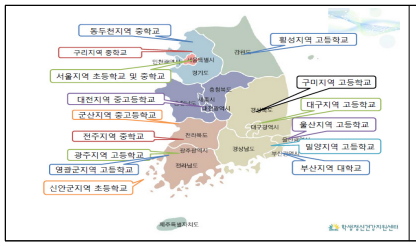

- '14년 학생자살사안 현장지원 3건
- '15년 학생자살사안 현장지원 17건
- '16년 학생자살사안 현장지원 13건
- '17건 학생자살사안 현장지원 11건

<세부 준거 기준 본 사업 수요자의 반응>

준거	교사 반응
학교 위기상황으로 인한 교사 스트레스	• 갑작스런 일에 충격적이고 불안 • 당황하고 걱정스러움 • 처음 겪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
학교 위기개입 지원의 유익성	• 즉각적인 지원에 따른 신속한 회복 가능 • 위기상황에 적절한 전문적 지원 덕분에 무난히 대처 가능 • 적극적 지원 및 조언과 위로에 대한 감사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성과지표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5년	'16년	'17년
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만족도(%)	교사연수 참여한 교사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이에 대한 평균값을 100분위로 환산	목표	78	85	86
		실적	84.3	85.5	86
		달성률(%)	108.1	100.6	100

참고 2 학생자살관련 정신건강 통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최근 5년간 자살 시도율

(단위: %)

구 분	'13 분석대상자수	'13 분율(표준오차)	'14 분석대상자수	'14 분율(표준오차)	'15 분석대상자수	'15 분율(표준오차)	'16 분석대상자수	'16 분율(표준오차)	'17 분석대상자수	'17 분율(표준오차)
전 체	**72,435**	**4.1(0.1)**	**72,060**	**2.9(0.1)**	**68,043**	**2.4(0.1)**	**65,528**	**2.4(0.1)**	**62,276**	**2.6(0.1)**
중학교	36,530	**5.2**(0.1)	36,156	**3.4**(0.1)	34,299	**2.8**(0.1)	32,219	2.6(0.1)	30,885	**3.0**(0.1)
고등학교	35,905	**3.1**(0.1)	35,904	**2.4**(0.1)	33,744	**2.1**(0.1)	33,309	2.2(0.1)	31,391	**2.2**(0.1)

□ 최근 5년간 자살 생각률

(단위: %)

구 분	'13 분석대상자수	'13 분율(표준오차)	'14 분석대상자수	'14 분율(표준오차)	'15 분석대상자수	'15 분율(표준오차)	'16 분석대상자수	'16 분율(표준오차)	'17 분석대상자수	'17 분율(표준오차)
전 체	**72,435**	**16.6(0.2)**	**72,060**	**13.1(0.2)**	**68,043**	**11.7(0.1)**	**65,528**	**12.1(0.2)**	**62,276**	**12.1(0.2)**
중학교	36,530	**17.6**(0.3)	36,156	**13.3**(0.2)	34,299	**11.7**(0.2)	32,219	12.0(0.2)	30,885	**12.7**(0.2)
고등학교	35,905	**15.6**(0.2)	35,904	**12.8**(0.2)	33,744	**11.6**(0.2)	33,309	12.2(0.2)	31,391	**11.6**(0.2)

※스트레스인지율(%): ('13) 41.4 → ('15) 35.4→('16) 37.4→('17) 37.2 (중: 34.1/ 고: 39.8)
우울감경험률(%): ('13) 30.9 → ('15) 23.6→('16) 25.5→('17) 25.1 (중: 23.5/ 고: 26.4)

< 중·고등학생 정신건강 지표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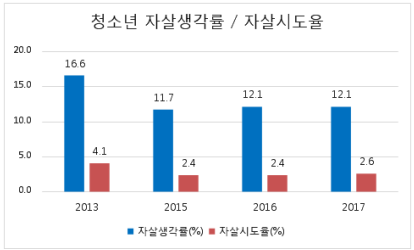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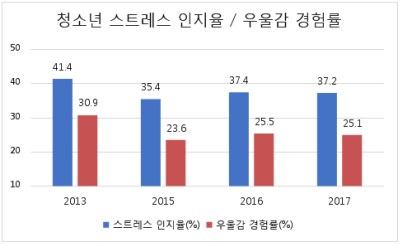

* 통계청,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2017년 조사개요>

o 기 간 : 2017년 6월
o 모집단 :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o 표 본 : 전국 중·고등학교 각 799개교, 약 62천명 학생
o 표본추출방식 : 층화집락추출법
o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404]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4,603	4,603	4,603	-	-

* 사업코드 : 12 - 11 - 00 - 050 - 051 - 1400 ~ 1409 - 404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방과후돌봄정책과장(박지영), 주무관(박형명), 주무관(김현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서은경), 교육기부자유학기지원실장(이정규), 연구원(제혜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수준 높고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초.중등 교육활동에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자원 발굴, 학교와의 매칭, 범사회적 관심 제고 등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
사업규모	없음
지원조건	출연 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기부 참여 기관 및 우수 프로그램 등 자원 발굴 : 395백만원**

▪ 교육기부 참여(예정) 기관의 교육현장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 : 300백만원

* 3개 컨설팅탄 운영 및 관리 × 100백만원

▪ 교육기부 **컨설팅단 운영·관리** : 25백만원

▪ **우수 교육기부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인증제** 심사·운영 : 70백만원

○ **교육기부의 체계적 지원 강화 : 898백만원**

▪ 참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 448백만원

* 5개 분과(기업, 공공기관, 단체·협회, 대학, 개인) × 89.6백만원

▪ 교육기부 수요-공급 **매칭·관리 시스템**(teach-for-korea) **유지 보수 및 운영** : 60백만원

* 지역·교육기부 기관별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등

▪ 교육기부 지역센터 운영 지원 : 360백만원

* 교육기부센터 3개 지역(강원권·충청권, 경상권, 호남권·제주권) × 120백만원

▪ 교육기부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 30백만원 (1개 과제)

○ **교육기부 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저변확대 : 1,016백만원**

▪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 800백만원

* 임대료, 부대행사 개최, 부스 설치 등

▪ 교육기부 우수 기관 등을 시상하는 **교육기부대상 운영** : 66백만원

* 공모, 심사 및 시상식 개최, 사례집 제작을 통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 제고

▪ 교육기부 신규 참여기관 모집과 범사회적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사·학생 대상 운영 프로그램 안내 등 **교육기부 캠페인** : 150백만원

○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 1,752백만원**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활동을 위한 지원비 : 1,502백만원

* 교재·교구 제작비, 교통비, 보험료 등 실비 지원 : 600.8개 × 평균 2.5백만원 = 1,502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자 **사전교육** : 250백만원

* 온라인 연수, 집합연수, 콘텐츠·매뉴얼 개발 등 : 5,000명 × 5만원 = 250백만원

○ **재능기부를 통한 예술·스포츠 동아리 활성화 : 442백만원**

▪ 예술·체육 거점 대학 운영 : 147.3백만원 × 3개소

○ **은퇴인력(교원, 공무원, 과학자) 등을 활용한 개인교육기부 활성화 : 100백만원**

▪ 개인교육기부 활동 지원 : 80백만원

* 교통비, 보험료 등 지원 : 200명 × 0.2백만원 × 2회 = 80백만원

▪ 동아리 등 개인교육기부자 사전교육 : 20백만원

* 개인교육기부자 교육 : 1회 × 20백만원 = 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4,603	4,603
■ 교육기부 기관 발굴	395	395
■ 체계적 지원 강화	898	898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확대	1,016	1,016
■ 대학생청소년 교육기부 활성화	1,752	1,752
■ 예술 스포츠 재능기부	442	442
■ 은퇴인력 등 활용 개인교육기부	100	100

□ **지원 필요성**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개인 등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여 **공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기부**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

○ 소외지역학생 학습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교육과정 연계한 공교육 역량 강화 위한 **교육기부 자원 활용 필요**

-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우선학교, 도서지역 및 지방소재 학교 등 **교육 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필요**

* 교육 소외지역 수혜학교 수 : ('16년) 71개교 → ('17년) 223개교

- 자유학기의 내실있는 운영과 '18년 자유학년(전체 중학교의 약46%인 약1,500개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진로탐색, 창의체험 등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 활동 지원 필요**

○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도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기부 기관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필요**

- 지역에 산재한 특색있는 교육기부 자원 발굴 등 **지역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강화 필요**

※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보고 추진 세부과제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성화' 포함 ('17.3.8)

○ **교육기부자와 수혜자 간 효율적 매칭을 위해**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학교 현장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공 필요**

※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임
교육기부 제공기관에 교육기부포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기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교육기부 매칭사이트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교육기부포털사이트 리뉴얼(고도화 포함)을 위해 추가 예산 필요

○ **범사회적 체육·예술교육 분야 교육기부 활성화**를 통해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지원 필요

-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과 연계한 확대 필요성 제기**

- 예술.체육 분야 전문적 인적 자원 최대 활용하여 **예술.스포츠 활동 경험 기회 확대, 전 생애 예술.체육 활동**으로 **일상화, 지속화하는 토대 마련**

* 2015. 대통령 업무보고('15.1.22,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4,603**	**4,603**	**4,603**	**-**	**-**
■ 교육기부 기관 발굴	395	395	395	-	-
-컨설팅단 지원 (사업출연금)	300 (3개단x100백만원)	300 (3개단x100백만원)	300 (3개단x100백만원)	-	-
-컨설팅단 운영 관리 (사업출연금)	25 (1식x24.617백만원)	25 (1식x25백만원)	25 (1식x25백만원)	-	-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사업출연금)	70 (1식x70.382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	-
■ 체계적 지원 강화	898	898	898	-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사업출연금)	438 (1식x438.334백만원)	448 (5개x89.6백만원)	448 (5개x89.6백만원)	-	-
-매칭 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출연금)	64 (1식x63.983백만원)	60 (1식x60백만원)	60 (1식x60백만원)	-	-
-교육기부 지역센터 지원 (사업출연금)	364 (3센터x121.302백만원)	360 (3센터x120백만원)	360 (3센터x120백만원)	-	-
-교육기부 성과 평가 (사업출연금)	32 (1식x31.774백만원)	30 (1식x30백만원)	30 (1식x30백만원)	-	-
■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확대	1,065	1,016	1,016	-	-
-교육기부 박람회 (사업출연금)	801 (1식x801.42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	-
-교육기부 대상 및 포럼 (사업출연금)	66 (1식x66.483백만원)	66 (1식x66백만원)	66 (1식x66백만원)	-	-
-교육기부 캠페인 (사업출연금)	198 (1식x198.095백만원)	150 (1식x150백만원)	150 (1식x150백만원)	-	-
■ 대학생청소년 교육기부 활성화	1,752	1,752	1,752	-	-
-대학생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출연금)	1,501 (1식x1,500.845백만원)	1,502 (600.8개x2.5백만원)	1,502 (600.8개x2.5백만원)	-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사업출연금)	251 (1식x250.594백만원)	250 (5,000명x0.05백만원)	250 (5,000명x0.05백만원)	-	-
■ 예술 스포츠 재능기부	493	442	442	-	-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사업출연금)	493 (1식x492.56백만원)	442 (3개소x147.3백만원)	442 (3개소x147.3백만원)	-	-
■ 은퇴인력 등 활용 개인교육기부	-	100	100	-	-
-교육기부 활동 지원 (사업출연금)	-	80 (200명x0.4백만원)	80 (200명x0.4백만원)	-	-
-사전교육 (사업출연금)	-	20 (1식x20백만원)	20 (1식x20백만원)	-	-
□ **비목**(합계)	**4,603**	**4,603**	**4,603**	**-**	**-**
○사업출연금(350-02)	4,603	4,603	4,603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기부 참여기관 발굴, 교육기부의 체계적 지원, 교육기부 우수 사례 확산, 대학생 교육기부 운영 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603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95 ■ 지역센터 등 지원 : 8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0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75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18	4,603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95 ■ 지역센터 등 지원 : 8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0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75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4,603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95 ■ 지역센터 등 지원 : 8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0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75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
'19	4,403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45 ■ 지역센터 등 지원 : 84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96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70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4,603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95 ■ 지역센터 등 지원 : 8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0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75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200
'20	7,925	■ 교육기부기관 발굴 : 1,195 ■ 지역센터 등 지원 : 1,5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8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2,274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7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300	4,242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45 ■ 지역센터 등 지원 : 84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935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60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1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3,683
'21	7,925	■ 교육기부기관 발굴 : 1,195 ■ 지역센터 등 지원 : 1,59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1,816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2,274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74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300	4,157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20 ■ 지역센터 등 지원 : 84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905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57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1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100	△3,768
'22			4,115	■ 교육기부기관 발굴 : 320 ■ 지역센터 등 지원 : 848 ■ 교육기부 저변확대 : 905 ■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 : 1,572 ■ 예술체육동아리 지원 : 412 ■ 은퇴인력 개인교육기부 지원 : 58	4,115
연평균 증가율 (%)	0.9%		△2.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603	4,603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66	67	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4.3	14.5	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일반 재정지출 사업** -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산출) 적용 - 인건비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적용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 4.10억원 ÷ 0.4812억원 = 8.5명 - (간접고용-예산비목별) 41.93억원 ÷ 0.72억원 = 58명 ※ 46.03억원 : 2019년 예산요구액 ☐ **2018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 3.95억원 ÷ 0.4812억원 = 8.2명 - (간접고용-예산비목별) 42.08억원 ÷ 0.72억원 = 58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제3항(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혁신방안」 수립('10.5, VIP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을 통해 **교육기부의 개념 제시**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의 개념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 교육기부 참여 기관들과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MOU 체결을 통해 교육기부 참여기반 조성**('10.3월~'11.2월) **및 자원 지속 확보**('10~)

※ 출연연협의회, 대한상의, 전문대협의회 등 106개 기관 ('18.12월 기준)

- **교육기부 우수기관*인증제** 마련('10.10월) 및 운영규정 고시('11.3월)

* 기업 84개, 공공기관 116개, 대학 84개, 대학생동아리 162개, 협·단체 91개 **총 537개**(누적, '18.12월)

-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11.6월~)

※ 대학정보공시에 '사회봉사역량' 부문 추가, 교육기부 10대 사업 추진 등

- **지역 단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11.6월~)

※ 선도교육청 지정·운영('11.10~'12.3), 주요 권역별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12.6~13..1) 등

※ 교육기부 지역센터 3개소[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선정·운영('14.7~)

-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 체계 구축 및 실천 방안」** 수립('12.4)

※ 교육기부 참여주체간 성과공유, 정보교환, 교육기부자 연결등 협력·조정을 담당하는 교육기부 추진 협의체 구축, 교육기부 온라인 매칭 시스템 개통('12.6)

-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12~, 7회) 및 **교육기부 대상** 시상('11~, 7회)

※ 제7회 박람회('18.11월) 기업, 공공기관 등 총 146개 기관 참여(13.6만여명 관람)

※ 제7회 대상 시상('18.11월) 기관 28개, 개인 11개, 수기 3개 총 42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기부활성화사업	44	-	41	56	-	46	-	46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1 (41)	( )	( )	41 (41)	41 (41)	( )	( )
'16년	56 (56)	( )	( )	56 (56)	56 (56)	( )	( )
'17년	46 (46)	( )	( )	46 (46)	46 (46)	0 (0.5)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603	0	4,603	0	4,603	4,603	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17년 평가도 '우수(2위)')

※ 우리 부 평가대상 53개 사업 중 9개 사업만 '우수'에 해당 됨

○ **(지적사항)** 교육기부 제고기관에 교육기부포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기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할 것 <2016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개선방안)**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적극 홍보 및 소개, 프로그램 등록 방법 안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부포털 디자인 리뉴얼 작업 완료 ('18.2월), 향후 시스템 고도화 작업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 필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사례**

‣ **일본문부과학성 '커리어 스타트 위크'**

- 5일 이상 1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참여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소양교육을 받고, 관련된 특정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함
- 정부 부처(문부과학성, 후생성,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학교, 노동국, 경영자 협회 등과 연계 협력한 지원시스템 구축

‣ **아일랜드 직업체험 TY프로그램(전환 학년제)**

-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에 대한 압박감 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직업세계를 준비하며, 교육의 필요성,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 3T(Thinking, Teamwork, Technoligy)의 함양 강조
- 아일랜드 교육과학부에서 운영하며, 학교 내 TY팀이 구성되어 코디네이터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 **미국의 Change The Equation**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Educate to Innovate」를 지원하기 위해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비영리기관 설립
- Great Teaching(모든 학교급의 STEM 교육 개선, 유능한 STEM 교사 집단 확보), Inspired Learners(학생의 흥미와 관심 제고 및 STEM 분야 진로교육 확대), Committed Nation(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헌신) 목표

<미국의 Educate to Innovate 캠페인>

- 기업, 대학, 재단, NGO, 과학자, 공학자, 교사 단체의 협력을 통해 젊은 세대의 STEM 분야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캠페인

<미국의 MIcrosoft 유스스파크(Youthspark)>

-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스스파크(Youthspark)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겪는 교육 기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글로벌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교육). 전 세계 186개의 비영리 기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30개 이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민간사례 ('17년 교육기부대상 우수사례)**

<국민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한국중부발전>

- 발전소 소재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주니어 공학 교실 운영'을 통한 교육기부 시행

ex) 전기이론 및 발전원리의 이해, 태양광 선풍기/자동차 및 손정등 만들기 실습

<교육사회적기업 포인트(주)>

-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1:1로 직접체험 할 수 있게 제공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아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움

ex) 스마트앱 기반으로한 코딩수업, 자신만의 자동차 디자인, 창의융합캠프등

<DU 지식나눔 프로그램 (대구대학교) >

- 대학생들의 전공연계 봉사활동 단체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멘토링, 재활훈련, 예체능 체험등을 지원

ex) 교육지식나눔(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디자인 지식나눔(벽화그리기, 공예디자인 교육등), 독거노인·장애인 물리·심리·미술치료 등

<음악으로 나누는 사랑의 교육기부(개인, 서울대 재학생)>

-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꿈을 이루어 음악으로 교육기부 실천, 격주 토요음악교실 봉사활동 통해 다문화·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레슨 및 멘토링 활동, 나눔·선행 행사 대표 연수 등 활발히 활동

(6) 사업추진절차

※ 교육기부 체계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수(건)	목표	2,200	2,700	3,660	4,860	5,500	교육기부프로그램 운영 수의 실적 증가분('14~'17년) 평균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18년에 기업, 대학 등에서 운영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 합산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실적 조사(교육기부센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실적	2,649	3,182	4,191	취합중	-			
	달성도	120	117	115	-	-			
박람회 만족도 조사(점)	목표	신규	86.0	87.7	90.0	90.5	'18년 도 목표치 대비 목표치 상향 설정(0.5%)	현장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교육기부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차원에서 교육기부 '18년 교육기부 박람회 만족도 조사	박람회 방문객(학생 및 학부모) 현장 만족도 조사 실시 ※ '17년 성과지표 기재부 수정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 등 개선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신규	86.9	89.2	취합중	-			
	달성도	-	101	102	-	-			
교육기부 인증기관 수(건)	목표	330	-	-	-	-	-	-	-
	실적	382	-	-	-	-			
	달성도	116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 (요청사항) >

□ **(교육기부 참여기관)** 교육기부 참여 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참여기관 역량 강화 기회 제공 통한 질 관리 필요

□ **(학교현장)**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물적, 인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지역 소재 학교 대상 체험형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

□ **(개인교육기부자)** 자유학년제, 돌봄교실 등 확대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등에 대한 교육 현장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적 은퇴 인력 활용 필요성 증대

< 예산 반영 사항 >

□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기부 지원 체계 구축**

○ 신규 기관의 교육기부 참여 유도 및 기존 참여기관 네트워크 강화 위한 상·하반기 교육기부 참여기관 합동워크숍 개최

○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기회 제공 위한 우수 교육기부 기관 현장연수 개최

□ **교육기부 모델학교 운영**

○ 3개 권역 교육기부 지역센터 활용하여 교육소외지역 학교 대상 교육기부 모델학교 운영

□ **은퇴인력 등을 활용한 개인교육기부 문화 확산**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고경력 은퇴 과학자, 교육자, 직능인 등을 활용하여 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기부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기부자 전문성 함양 위한 개인교육기부자 워크숍 개최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주요 성과 】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초중등교육에 활용**토록 인프라 확충, 교육기부 문화 확산

【 교육기부 주요 성과 】

◈ 교육기부 수혜 학생 수 : ('11년) 20천여명 → **('18년 상반기) 4,425천여명**
◈ 교육부-기업-창의재단 간 MOU 건수(누적) : ('11년) 26건 → **('18년) 106건**
◈ 교육기부 인증마크 부여 기관(누적) : ('11년) 62개 → **('18년) 537개**
◈ 대학생교육기부단 참여 동아리 수 : ('12년) 377팀 → **('18년) 582팀**
◈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 : ('12년) 1,085종 → **('18년 상반기) 3,053종**

□ **(대학생 교육기부 참가자 인터뷰)** "나에게 알락달락이란 '새로운 경험'이다. 서툴지만 교육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1학기 함성소리 참가 동아리 「뻔뻔한안전」)

□ **(교육기부 박람회 현장 언론보도)** 140여 가지의 다양한 교육을 체험해보는 시간! 누군가는 배움을 나누고, 누군가는 꿈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다는데요, "(대학생교육기부단)제가 아는 지식을 나눔으로써 교육기부를 한다는 게 보람차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박람회 방문 학생)체험할 것도 많고 저희한테 교육기부를 해주셔서 많은걸 얻어가는 것 같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재능을 일깨워준 의미 있는 시간 2018 교육기부 박람회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YTN사이언스 황금나침반, '18.12.01)

[300] 인성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인성교육진흥사업	318	556	485	△71	△12.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400 ~ 1412 - 300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민주시민교육과장(신두철), 서기관(정원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인성교육진흥법」 제정('15.1.)에 따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16.1.) 등을 근거로 인성교육 체제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의무사업 추진
사업기간	'1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 280백만원**

▪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현장 적합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출내역 : 280백만원(개발 및 보급, 5영역x56백만원)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 70백만원**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확산

▪ 산출내역 : 70백만원(인증 공모·심사·선정·보급 등 운영, 1식×70백만원)

○ **인성교육 성과평과 및 정책연구 : 5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 추진 성과평가를 토대로 인성교육 종합계획 및 시도 교육청 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인성교육 진흥 추진

▪ 산출내역 : 50백만원(성과평가 등 1과제×5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 5백만원**

▪ 인성교육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인성교육진흥 위원회 운영

▪ 산출내역 : 5백만원(회의수당 등 2회×2.5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 80백만원**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현직 교사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 산출내역 : 80백만원(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및 컨설팅 지원 1식×8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인성교육진흥사업	556	485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300백만원) 5영역 개발·보급	(280백만원) 5영역 개발·보급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70백만원) 인증사업 소요경비	(70백만원) 인증사업 소요경비
■인성교육 성과평과 및 정책연구	(100백만원)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각 1과제	(50백만원) 성과평가 등 1과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5백만원) 위원회 심의수당 등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정·운영	(80백만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필요성

○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15.1.)에 따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발표**('16.1.) 등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기능 증대

- 동법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생 발달단계 및 학교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인성교육진흥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인증 보급**하여 풍부한 인성교육 자원 제공을 통한 **학교 현장의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필요

< 인성교육진흥법 >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실적 평가** 등의 체계적 추진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초기 연구기반 조성** 필요

< 인성교육진흥법 >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성교육에 관한 각종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필요

< 인성교육진흥법 >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하여 **현직 교사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 관련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필요**

< 인성교육진흥법 >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인성교육진흥사업**	**356**	**556**	**485**	△71	△12.8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80	300 (5영역x60백만)	280 (5영역x56백만)	△20	△6.7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70	70 (1식x70백만)	70 (1식x70백만)	-	-
■ 인성교육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100	100 (2과제×50백만)	50 (1과제×50백만)	△50	△50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	6 (2회×3백만)	5 (2회×2.5백만)	△1	△16.7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	80 (2기관×40백만)	80 (1식×80백만)	-	-
□ **비목**(합계)	**356**	**556**	**485**	△71	△12.8
○민간위탁사업비(320-02)	350	550	480	△70	△12.7
○일반수용비(210-01)	5	5	4	△1	△20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급별 지도자료 개발·보급 등 **풍부한 인성교육 자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 지원**

○ 교사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범국민적 인성교육 강화 추진** 및 인성교육 질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인성교육 정책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25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18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
'19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485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5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5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5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71
'20	1,001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615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280백만원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445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001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615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280백만원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445
'22			556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인증 370백만원 ▪ 인성교육 정책연구 100백만원 ▪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6백만원 ▪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 8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4.9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556</td><td>485</td><td>△71</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6.3</td><td>5.5</td><td>△0.8</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td><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1.3</td><td>11.3</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5.5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수용비(210-01) 0.05억원을 ‘일반수용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0.05억원 ÷ 0.94억원 = 0.1명
- 민간위탁사업비(320-02) 5.5억원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연구개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4.8억원 ÷ 0.89억원 = 5.4명
- 사업추진비(240-01)는 분석 제외

□ 2018년 고용효과: 6.3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제16조(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평가),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 추진경위

- **2012. 6. 12.,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범국민 인성교육 실천 추진 계획 의결**(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0명, 민간위원 9명

-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12.12~)
- **학교.가정·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제정('15.1)

※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부여,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거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시행

※ 5대 영역 : ①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②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③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지원 ④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⑤ 대(對)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인성교육진흥사업	-	-	-	5	5	3.56	3.56	5.56	5.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년 불용 사유: 조달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5 (5)	( )	( )	5 (5)	5 (5)	( )	( )
'17년	3.56 ( )	( )	( )	3.56 ( )	3.18 ( )	( )	0.38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56	356	356	200	556	460	82.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가개발 교사연수 비용 +200백만원

○ 집행현황

▪ 인성교육진흥 위탁사업비 454백만원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비 6백만원 집행('18.12월말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인성교육운동, 덕목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치 추구와 인성에 대한 정의적 접근을 통해 협동학습과 프로젝트 학습 등 협동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교육방식의 강화를 통해 구현

※ 1994년 '미국 학교의 개선을 위한 법(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s in Character Education Program)'을 승인, 그 후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제정

※ 대표적으로 Character.org(인성교육협회)를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우수학교 선정·운영

○ (핀란드) 핀란드는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려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협동을 교육적 가치로 삼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음

※ 초·중등학교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제시된 능력요인 중 인성 교육에 해당하는 요인으로는 대인관계, 자기관리, 시민의식, 심미적 감수성, 다문화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학교에서는 공동체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교육은 가정의 몫이라고 여김

○ (영국) 학습자의 학습적 능력과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다양한 학습방식을 학교교육현장에 도입하여 활용

※ 학교교육에서는 일방적인 수업 방식보다는 다양한 과정의 학습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감. 이러한 학습결과는 학생들의 자기개발, 교육개발, 취업으로까지 연결

○ (일본) 유토리 교육 실패 후, '2008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따라 상황 판단력, 문제해결력의 함양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힘'을 교육하기 위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 재량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폭력문제 등 인성교육을 총합적 학습시간을 통해 교육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시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수(누적) (단위: 편)	목표		70	71	-	-	단위사업 기준 10억원 미만 소액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전년도까지 프로그램 인증 편수 + 당해연도 프로그램 인증 편수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66	68	-	-			
	달성도		94	96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요약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교에서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 및 '학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인성교육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범국민적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

※ '17년 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

-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 : [인성교육] (초·중) 1순위(51.2%, 42.1%), (고) 2순위(24.4%)
-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 [인성교육] (초·중) 1순위(39.3%, 28.2%), (고) 2순위(13.6%)

< 예산(안) 반영사항 >

□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수요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현장 적합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280백만원)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공모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확산(70백만원)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수립.실행을 위한 인성교육 관련 성과평가.정책연구 및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55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현직 교원 중심의 인성교육 연수 실시(80백만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인증*을 통해 학생참여 및 활동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

* 인성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http://insung.kedi.re.kr)

○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17) :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기웃기웃 지구촌 마주보기" ⇒ '18.11.1.기준 조회수(1,950회/'18.2.19.탑재)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17) : 효성유치원 "도시락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까치서당" ⇒ '18.11.1.기준 조회수(각 698, 1,835회/'17.11.8.탑재)

참고 3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요약

비전 :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표
- ◈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실현**

추진과제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 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생태계 조성
-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 학교 인성교육 지원체계 활성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활용
- 인성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 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테마별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 지원
- 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
- 교사 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 조성

가정 · 학교 ·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 지원 강화
- 범부처 인성교육 지원 · 협력 강화

대(對)국민적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

변화방향

현재	변화방향
▪ 인성교육의 체계성 부족	▪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인성교육 구현
▪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	▪ 체험 · 실천 중심의 교육
▪ 가정·사회의 지원 미흡	▪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

[304]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	2,140	2,14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400 - 1412 - 304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민주시민교육과장(신두철), 사무관(박채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행을 위해 학교 시민교육 체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국정과제 50-1-4 :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 발단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및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사업기간	'19~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위탁,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원양성대학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예비교원의 학교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우수 교육과정 확산**

▪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위한 대학 지원금 및 사업 운영, 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관리비 등

▪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1식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2.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140백만원

○ **(사업내용)** 학생,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를 위해 자문위원회 및 정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공청회·컨퍼런스 등 개최

▪ (자문위원회 및 정책 협의회) 20회 × 2백만원 = 40백만원

▪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 3회 × 33.3백만원 = 1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2,140백만원
■ 교원양성대학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	**2,000백만원** (1식×2,000백만원)
■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140백만원** 자문위원회 및 정책 협의회(1식×40백만원)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1식×1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급격한 사회변화와 계층·세대·성별 간 갈등이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특히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 미투(#Metoo)운동의 확산 등 최근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변화로 평화·통일역량,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등 시민적 역량이 미래인재의 핵심역량으로 부각

<VIP 공약> 학교,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적 민주시민교육 확대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50-1-4)'
'학부모·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76-5-2)'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교원 역량 강화 없이는 학교 시민교육의 성공이 어려움

-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전반을 학교 시민교육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우수 교육과정 확산하는 사업은 학교 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필수적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 기본원칙, 내용요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필요

-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컨퍼런스 등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교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	**2,140**	**2,140**	**순증**
■ 교원양성대학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	-	2,000 (1식x2,000백만)	2,000	**순증**
■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	140 (1식x140백만)	140	**순증**
□ **비목**(합계)	**-**	-	**2,140**	**2,140**	**순증**
○일반수용비(210-01)	-	-	34	34	**순증**
○사업추진비(240-01)	-	-	6	6	**순증**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100	100	**순증**
○사업출연금(350-02)	-	-	2,000	2,00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교 시민교육 지원 기반 마련**

- 예비교원의 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교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	-			-
'18	-	-	-	-	-
'19	-	-	2,140	▪(교원양성대학 지원) 1식 ×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정책 네트워크 운영) 1식 × 140백만원	2,140
'20	-	-	3,100	▪(교원양성대학 지원) 1식 ×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정책 네트워크 운영) 1식 × 100백만원	3,100
'21	-	-	4,100	▪(교원양성대학 지원) 1식 × 4,000백만원 = 4,000백만원 ▪(정책 네트워크 운영) 1식 × 100백만원	4,100
'22			4,100	▪(교원양성대학 지원) 1식 × 4,000백만원 = 4,000백만원 ▪(정책 네트워크 운영) 1식 × 100백만원	4,100
연평균 증가율 (%)			17.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	2,140	2,14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29.56	29.56
	예산 10억원 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13	13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수용비(210-01) 0.18억원을 '일반수용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0.34억원 ÷ 0.94억원 = 0.4명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억원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억원 ÷ 0.72억원 = 1.38명 - 사업출연비(350-02) 20억원을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20억원 ÷ 0.72억원 = 27.78명 사업추진비(240-01)는 분석 제외 **□ 2018년 고용효과 : 해당없음**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향후 효과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 모색 예정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50-1-4)

○ 추진경위

- 20대 대선 공약으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초·중등 민주시민교육 확대' 선정
- 국정과제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50-1-4) 선정
- 교육부 직제 개정('18. 1.)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	-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초·중·고 학교에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반권위주의·비판교육 등 시민교육으로서 정치교육 실시

○ (프랑스) 인권의 중요성 대두,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시민교육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하여 시민교육 과목을 초·중·고 필수과목으로 채택

○ (영국) '97년 총선 시 사상 최저의 선거율과 청소년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 결속·통합을 위해 시민교육 도입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시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강의, 과목 등) 수(단위: 개)	목표	-	-	-	신규	1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10개 개발을 목표치로 설정	개발된 교육과정(강의, 과목) 수	교육과정 운영 관련 공식 문건 확인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1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3	**49,540,693**	**55,248,823**	**5,708,130**
[1501] 보통교부금(일반회계)	464	47,695,613	53,682,280	5,986,667
[300] 보통교부금	464	47,695,613	53,682,280	5,986,667
[1502] 특별교부금(일반회계)	470	1,845,080	1,566,543	△270,668
[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70	553,524	469,963	△83,561
[30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476	184,508	156,654	△27,854
[30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482	1,107,048	939,926	△167,122

[300] 보통교부금(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보통교부금	43,014,480	47,695,613	53,682,280	5,986,667	12.6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500 - 150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방교육재정과장(천범산), 서기관(구본억)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건축)	해당없음
(장비)	해당없음
(연구비 등)	해당없음
사업규모	내국세 20.46%의 97%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지원조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시행주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보통교부금 : 53,682,280백만원

- 내국세분(50,651,595백만원) = (255,220,620백만원×20.46%)×97%
- 교육세분(3,030,685백만원,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보통교부금	47,695,613	53,682,280
▪ 내국세분 교부금	44,281,928 (227,562,940×20.27%×96%)	50,651,595 (255,220,620×20.46%×97%)
▪ 교육세분 교부금 (특별회계전출분 제외)	3,413,685 [5,247,800(교육세전액) - 1,834,115(교육세분 특별회계 전출분)]	3,030,685 [4,864,800(교육세전액) - 1,834,115(교육세분 특별회계 전출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 지원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시·도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적으로 배분

○ 세입증대 및 채무 상환 노력 수요 등 자체 노력수요 항목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보통교부금	**43,014,480**	**47,695,613**	**53,682,280**	**5,986,667**	**12.6**
▪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의 20.27%×97%)	40,896,379 (내국세×20.27%×96%)	**44,281,928** (내국세×20.27%×96%)	**50,651,595** (내국세×20.46%×97%)	**6,369,667**	**14.4**
▪ 교육세분 교부금 (교육세 일부)	2,118,101 (교육세 일부)	**3,413,685** (교육세 일부)	**3,030,685** (교육세 일부)	**△383,000**	**△11.2**
□ 비목(합계)	**43,014,480**	**47,695,613**	**53,682,280**	**5,986,667**	**12.6**
○ 자치단체이전(330-02)	43,014,480	47,695,613	53,682,280	**5,986,667**	**12.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1,299,191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18	47,695,613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47,695,613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19	51,564,994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53,682,280	▪ 내국세 20.46의 97%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2,117,286
'20	56,041,399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전액	58,433,077	▪ 내국세 20.46의 97% + 교육세 전액	2,391,678
'21	58,595,489	▪ 내국세 20.27의 96% + 교육세 전액	60,874,266	▪ 내국세 20.46의 97% + 교육세 전액	2,278,777
'22			63,606,273	▪ 내국세 20.46의 97% + 교육세 전액	
연평균 증가율 (%)	9.1		7.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추진경위

- '05년~'07년 : 내국세 19.4%×96% + 교육세 전액
- '08년~'09년 : 내국세 20.0%×96% + 교육세 전액
- '10년~'16년 : 내국세 20.27%×96% + 교육세 전액
- '17년 : 내국세 20.27%×96%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18년 : 내국세 20.27%×97%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19년~현재 : 내국세 20.46%×97% +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보통교부금	394,117	380,185		397,841	416,399	412,992	430,145	476,95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결손 등으로 '14년 사고이월액 7,500억원 발생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0,185 ( )	7,500 ( )	- ( )	387,685 ( )	387,685 ( )	( )	( )
'16년	416,399 ( )	- ( )	- ( )	416,399 ( )	416,399 ( )	( )	( )
'17년	430,145 ( )	- ( )	- ( )	430,145 ( )	430,145 ( )	( )	( )

※ '16, '17년의 당초예산은 추경금액을 합한 최종예산임('15년은 추경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 예산		'18 예산			집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1,299,191	43,014,480	47,712,122	△16,509	47,695,613	48,156,883	100.9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165억원 감소

○ 집행현황

▪ '18.12월말 기준, 보통교부금 집행액은 48,156,883백만원으로 '18년 예산액(47,695,613백만원) 전액 집행완료(예산액 대비 100.97%)

※ '18년 예산현액(48,156,883백만원)은 본예산 47,695,613백만원과 특별교부금 전용액 461,270백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18년 예산현액(48,156,883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100%임.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 '16년 교육환경개선비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미 반영,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부('16년 결산)

⇒ '16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재원 부족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8.1)으로 보통교부금 내국세분 비율이 상향 조정(96→97%)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

※ 교부금 교부 시 연차별 이자 및 원금을 100%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추가재원 발생 시 시·도교육청 협의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 추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작성 →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전년도 10월) →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당해 연도 2월) → 확정 교부 국회 보고(당해 연도 3월)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1음

6. 참고자료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백만원)

구 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액 (A=a+b)	교부금 총액 (A+B)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B)	계(a+B)			
'18년 예산(A)	44,281,928	1,845,080	46,127,008	3,413,685	**47,695,613**	**49,540,693**
'19년 예산(B)	50,651,595	1,566,543	52,218,138	3,030,685	**53,682,280**	**55,248,823**
증감(B-A)	**6,369,667**	**△278,537**	**6,091,130**	**△383,000**	**5,986,667**	**5,708,130**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60%) 9,399억원, 지역현안(30%) 4,699억원, 재해대책(10%) 1,56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30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11,205	553,524	469,963	△83,561	△15.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500 - 150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방교육재정과장(천범산), 사무관(이창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건축)	해당없음
(장비)	해당없음
(연구비 등)	해당없음
사업규모	내국세 20.46%의 3%의 30%
지원조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시행주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469,963백만원

▪ 특별교부금(1,566,543백만원*)의 30% = 469,963백만원

* 내국세(255,220,620백만원×20.46%)×3%

구 분	'18예산	'19예산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53,524	469,963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53,524 (227,562,940백만원×20.27% ×4%×30%)	469,963 (255,220,620백만원×20.46% ×3%×3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 지원 필요성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균형있는 교육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11,205**	**553,524**	**469,963**	**△83,561**	**△15.1**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11,205	553,524 (내국세×20.27%×4%×30%)	469,963 (내국세×20.46%×3%×30%)	△83,561	△15.1
□ 비목(합계)	**511,205**	**553,524**	**469,963**	**△83,561**	**△15.1**
○ 자치단체이전(330-02)	511,205	553,524	469,963	△83,561	△15.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1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89,763	내국세 20.27%×4%×30%			-
'18	553,524	내국세 20.27%×4%×30%	553,524	내국세 20.27%×4%×30%	-
'19	600,529	내국세 20.27%×4%×30%	469,963	내국세 20.46%×3%×30%	△128,205
'20	637,685	내국세 20.27%×4%×30%	493,452	내국세 20.46%×3%×30%	△144,233
'21	665,585	내국세 20.27%×4%×30%	514,070	내국세 20.46%×3%×30%	△151,515
'22			537,144	내국세 20.46%×3%×30%	-
연평균 증가율 (%)	8.0		0.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추진경위

- '05년 ~ '07년 : 내국세 19.4%×4%×30%
- '08년 ~ '09년 : 내국세 20.0%×4%×30%
- '10년 ~ '17년 : 내국세 20.27%×4%×30%
- '18년 : 내국세 20.27%×3%×30%
- '19년 ~ 현재 : 내국세 20.46%×3%×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369	4,161	-	4,333	4,565	4,898	5,112	5,5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89,763	511,205	553,730	△206	553,524	415,143	75.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206백만원 감소

○ 집행현황

▪ '18.12월 기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집행액은 '18년 예산액 5,535억원 대비 4,151억원 집행(75.0%)

* 본예산 553,524백만원에서 보통교부금 전용액 138,381백만원을 감한 '18년 예산현액 415,143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10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 특별교부금 하반기 집행 및 이월발생 시정 필요('15년 결산)
  ☞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추진*
  * '1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조기 확정('16.1.7.), '17년 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17.3.31.), '18년 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18.2.28.)
  ☞ 특별교부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액 최소화 노력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대상 사업과 보통교부금의 학교시설비가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것('15년 결산)
  ☞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자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16년부터 지역교육현안 신청 시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으로서 실수요가 반영되어 교부된 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지역교육현안사업 수요발생시
- 시·도교육청 신청 ⇒ 교육부 검토 ⇒ 부총리결재 및 교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백만원)

구 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액 (A=a+b)	교부금 총액 (A+B)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B)	계(a+B)			
'18년 예산(A)	44,281,928	1,845,080	46,127,008	3,413,685	**47,695,613**	**49,540,693**
'19년 예산(B)	50,651,595	1,566,543	52,218,138	3,030,685	**53,682,280**	**55,248,823**
증감(B-A)	**6,369,667**	**△278,537**	**6,091,130**	**△383,000**	**5,986,667**	**5,708,130**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60%) 9,399억원, 지역현안(30%) 4,699억원, 재해대책(10%) 1,56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301]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70,402	184,508	156,654	△27,854	△15.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500 - 150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방교육재정과장(천범산), 사무관(이창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건축)	해당없음
(장비)	해당없음
(연구비 등)	해당없음
사업규모	내국세 20.46%의 3%의 10%
지원조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시행주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156,654백만원

▪ 특별교부금(1,566,543백만원*)의 10% = 156,654백만원

* 내국세(255,220,620백만원×20.46%)×3%

구 분	'18예산	'19예산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84,508	156,654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84,508 (227,562,940백만원×20.27% ×4%×10%)	156,654 (255,220,620백만원×20.46% ×3%×1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 지원 필요성

○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균형있는 교육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70,402**	**184,508**	**156,654**	**△27,854**	**△15.1**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70,402	184,508 (내국세×20.27%×4%×10%)	156,654 (내국세×20.46%×3%×10%)	△27,854	△15.1
□ 비목(합계)	**170,402**	**184,508**	**156,654**	**△27,854**	**△15.1**
○ 자치단체이전(330-02)	170,402	184,508	156,654	△27,854	△15.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보통교부금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적기 대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1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63,254	내국세 20.27%×4%×10%			-
'18	184,508	내국세 20.27%×4%×10%	184,508	내국세 20.27%×4%×10%	-
'19	200,176	내국세 20.27%×4%×10%	156,654	내국세 20.46%×3%×10%	△42,735
'20	212,562	내국세 20.27%×4%×10%	164,484	내국세 20.46%×3%×10%	△48,078
'21	221,862	내국세 20.27%×4%×10%	171,357	내국세 20.46%×3%×10%	△50,505
'22			179,048	내국세 20.46%×3%×10%	-
연평균 증가율 (%)	8.0		0.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추진경위

- '05년 ~ '07년 : 내국세 19.4%×4%×30%
- '08년 ~ '09년 : 내국세 20.0%×4%×30%
- '10년 ~ '17년 : 내국세 20.27%×4%×30%
- '18년 : 내국세 20.27%×3%×30%
- '19년 ~ 현재 : 내국세 20.46%×3%×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456	1,387	-	1,444	1,522	1,633	1,704	1,8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63,254	170,402	184,577	△69	184,508	138,381	75.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69백만원 감소

○ 집행현황

▪ '18.12월 기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액은 '18년 예산액 1,845억원 대비 1,384억원 집행(75.0%)

* '18년 예산현액(138,381백만원)은 본예산 184,508백만원에서 보통교부금 전용액 46,127백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18년 예산현액(138,381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10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집행용도를 재해복구 외에 사전 재해예방 용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14년 결산, '15년 결산)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완료('18.1.1.시행)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 시·도교육청 신청 ⇒ 교육부 검토 ⇒ 부총리결재 및 교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백만원)

구 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액 (A=a+b)	교부금 총액 (A+B)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B)	계(a+B)			
'18년 예산(A)	44,281,928	1,845,080	46,127,008	3,413,685	**47,695,613**	**49,540,693**
'19년 예산(B)	50,651,595	1,566,543	52,218,138	3,030,685	**53,682,280**	**55,248,823**
증감(B-A)	**6,369,667**	**△278,537**	**6,091,130**	**△383,000**	**5,986,667**	**5,708,130**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60%) 9,399억원, 지역현안(30%) 4,699억원, 재해대책(10%) 1,56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30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22,410	1,107,048	939,926	△167,122	△15.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1500 - 150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방교육재정과장(천범산), 사무관(이창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가 교육행정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건축)	해당없음
(장비)	해당없음
(연구비 등)	해당없음
사업규모	내국세 20.46%의 3%의 60%
지원조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시행주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939,926백만원

▪ 특별교부금(1,566,543백만원*)의 60% = 939,926백만원

* 내국세(255,220,620백만원×20.46%)×3%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107,048	939,926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107,048 (227,562,940백만원×20.27% ×4%×60%)	939,926 (255,220,620백만원×20.46% ×3%×6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 지원 필요성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균형있는 교육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22,410**	**1,107,048**	**939,926**	**△167,122**	**△15.1**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22,410 (내국세×20.27%×4%×60%)	1,107,048 (내국세×20.27%×4%×60%)	939,926 (내국세×20.46%×3%×60%)	△167,122	△15.1
□ 비목(합계)	**1,022,410**	**1,107,048**	**939,926**	**△167,122**	**△15.1**
○ 자치단체이전(330-02)	1,022,410	1,107,048	939,926	△167,122	△15.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기 대응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1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79,528	내국세 20.27%×4%×60%			-
'18	1,107,048	내국세 20.27%×4%×60%	1,107,048	내국세 20.27%×4%×60%	-
'19	1,201,059	내국세 20.27%×4%×60%	939,926	내국세 20.27%×3%×60%	△256,412
'20	1,275,370	내국세 20.27%×4%×60%	986,903	내국세 20.27%×3%×60%	△288,467
'21	1,331,170	내국세 20.27%×4%×60%	1,028,139	내국세 20.27%×3%×60%	△303,031
'22			1,074,288	내국세 20.27%×3%×60%	-
연평균 증가율 (%)	8.0		0.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 1.「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추진경위

- '05년 ~ '07년 : 내국세 19.4%×4%×30%
- '08년 ~ '09년 : 내국세 20.0%×4%×30%
- '10년 ~ '17년 : 내국세 20.27%×4%×30%
- '18년 : 내국세 20.27%×3%×30%
- '19년 ~ 현재 : 내국세 20.46%×3%×3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8,738	8,322	-	8,666	9,130	9,795	10,224	11,0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979,528	1,022,410	1,107,461	△413	1,107,048	830,286	75.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조정으로 정부안 대비 413백만원 감소

○ 집행현황

▪ '18.10월 기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집행액은 '18년 예산액 11,070억원 대비 8,303억원 집행(75.0%)

* '18년 예산현액(830,286백만원)은 본예산 1,107,048백만원에서 보통교부금 전용액 276,762백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18년 예산현액(830,286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10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 특별교부금 하반기 집행 및 이월발생 시정 필요('15년 결산)
  -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조기 추진 완료*

* '1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조기 확정('15.12.24.), '18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금액 조기 통보('17.9.25.)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수시배정에 따른 배정금액이 월별 교부통지액에 맞는 규모로 조기 교부 필요('15년 결산)
  -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7년 수시배정 사업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제외('16.12.)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교부시 시·도교육청의 자금배정 사정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통지액에 맞게 적기 송금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중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홍보·행사 및 위탁 집행) 편성 지양 및 교부시기 준수 필요('17년 결산)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 사업부서(과/팀) 신청 ⇒ 시책사업심의회 심의 ⇒ 부총리결재 및 교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현황

(백만원)

구 분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액 (A=a+b)	교부금 총액 (A+B)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B)	계(a+B)			
'18년 예산(A)	44,281,928	1,845,080	46,127,008	3,413,685	**47,695,613**	**49,540,693**
'19년 예산(B)	50,651,595	1,566,543	52,218,138	3,030,685	**53,682,280**	**55,248,823**
증감(B-A)	**6,369,667**	**△278,537**	**6,091,130**	**△383,000**	**5,986,667**	**5,708,130**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60%) 9,399억원, 지역현안(30%) 4,699억원, 재해대책(10%) 1,567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1.시행)으로 내국세분 교부비율 변경(20.27→20.46%)

[1600] 지방교육정책 지원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600] 지방교육정책 지원	488	**3,892,717**	**3,815,338**	**△77,379**
[1601]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특별회계)	489	3,892,717	3,815,338	△77,379
[30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489	3,892,717	3,815,338	△77,379

[300]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의무, 계속)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40,881	3,892,717	3,815,338	△77,379	△2.0

* 사업코드 : 11 - 0 - 050 - 051 - 1600 - 1601 - 300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유아교육정책과장(권지영), 사무관(안성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생애 출발선 평등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기간	'17～'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16.12.2.)에 따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영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1,227,017명* * '19년도 취원대상 인원('18년 만 2～4세) × '19년도 예상 취원율
지원조건	자치단체교부금
사업시행주체	시·도교육청(유치원) 및 지자체(어린이집)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유치원 :**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1,762,814백만원**

* **누리과정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서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을 목적으로 함

** **방과후과정 :** 누리과정(일 4～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누리과정 포함 일 7～8시간)

- 산출내역

▪ 유아학비 : 공립 166,584명* × 60천원 × 12개월 = 119,940,480천원
사립 491,116명* × 220천원 × 12개월 = 1,296,546,240원
* '19년도 취원대상 인원('18.3월말 인구통계 상 만 2～4세) × '19년도 예상 취원율(공립 12.7%, 사립 37.6%) 반영

▪ 방과후과정비 : 공립 131,803명* × 50천원 × 12개월 = 79,081,800천원
사립 318,150명* × 70천원 × 12개월 = 267,246,000천원
* '17년 e-유치원시스템 상 방과후과정 평균 참여율 반영(공립 79.2%, 사립 69.7%)

○ **어린이집**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1,981,223백만원**,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 **등 71,301백만원**

- 산출내역

▪ 보육료 : 569,317명* × 290천원** × 12개월 = 1,981,223,160천원
* '19년도 취원대상 인원('18.3월말 인구통계 상 만 2～4세) × '19년도 예상 취원율(어린이집 43.4%) 반영
** 어린이집은 종일반 운영(일 12시간 운영)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아당 지원단가 29만원(유아학비 22만원 + 방과후과정비 7만원)에 준하여 보육료 지원

▪ 교사 처우개선 등 : 처우개선 44,013명(교사수) ×30천원 × 12개월 = 15,844,680천원
운영비 569,317명×8,120원 × 12개월=55,456,320천원

○ **지원단가**('19년 지원단가 고시('18.12.) 기준)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항목	금액 (만원)	항목	금액 (만원)	항목	금액 (만원)
유아학비	6	유아학비	22	보육료	29
방과후과정비	5	방과후과정비	7		

※「유아교육법」제24조제3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단가 고시(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13년 이후 단가 동결)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92,717	3,815,338
■ 유치원	1,834,115 (유아학비 공립 171,717명×72만원, 사립 511,751명×264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 135,982명×60만원, 사립 330,794명×84만원)	1,762,814 (유아학비 공립 166,584명×72만원, 사립 491,116명×264만원, 방과후과정비 공립 131,803명×60만원, 사립 318,150명×84만원)
■ 어린이집	2,058,602 (보육료 591,552명×348만원)	1,981,223 (보육료 569,317명×348만원)
■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 등	신규	71,301 (누리과정 교사수 44,013명×36만원, 운영비 569,317명×97,410원)

□ **지원 필요성**

○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가계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940,881**	**3,892,717**	**3,815,338**	**△77,379**	**△2.0**
■ 유치원	1,853,345 (공립유치원 160,624명×60천원×12, 사립유치원 520,920명×220천원×12월, 사립유치원 133,813명×50천원×12월, 사립유치원 335,929명×70천원×12월)	1,834,115 (공립유치원 171,717명×60천원×12, 공립유치원 135,982명×50천원×12, 사립유치원 511,751명×220천원×12월, 사립유치원 330,794명×70천원×12월)	1,762,814 (공립유치원 166,584명×60천원×12월, 공립유치원 131,803명×50천원×12월, 사립유치원 491,116명×220천원×12월, 사립유치원 318,150명×70천원×12월)	△71,301	△3.8
■ 어린이집	2,087,536 (어린이집 599,867명×290천원×12월)	2,058,602 (어린이집 591,552명×290천원×12월)	1,981,223 (어린이집 569,317명×290천원×12월)	△77,379	△3.7
■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 등	-	-	71,301 (누리과정 교사수 44,013명×36만원, 운영비 569,317명×97,410원)	71,301	순증
□ 비목(합계)	**3,940,881**	**3,892,717**	**3,815,338**	**△77,379**	**△2.0**
○자치단체교부금(330-02)	3,940,881	3,892,717	3,815,338	△77,379	△2.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에 대한 **국고일반회계 전입비율을 100%**('17년 41.2%)로 **확대**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 가능한 누리과정 지원체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940,881	■ 유아교육비 보육료 3,940,881 백만원	-	-	-
'18	3,892,717	■ 유아교육비 보육료 3,892,717 백만원	3,892,717	■ 유아교육비 보육료 3,892,717 백만원	-
'19	3,705,090	■ 유아교육비 보육료 3,705,090 백만원	3,744,037	■ 유아교육비 보육료 3,815,338 백만원	-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	△2.99		△3.8%		

※ '17～'19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20～'21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 **(국정과제)** 49-1-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추진경위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11.5., 총리실·교과부·복지부) : '12년 3월 도입
- 만 3~4세 누리과정 대상 확대 발표('12.1.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 '13년 3월 확대
-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 '16년 12월

* 교육세 일부와 국고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17~'19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	-	-	-	39,409	-	38,92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940,881	-	3,892,717	-	3,892,717	3,892,71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국회 여·야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12.2.) 중 >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 집행현황

■ '18.1~10월 분 유아교육비 보육료 3,892,717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포함) 지적

- **(누리과정 단가 인상 계획 수립)** 당초 약속한 누리과정(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당 지원단가) 30만원 인상을 위해 향후 단계적인 인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교문위, '17년 예산 부대의견)
- **('19년 이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 '18년 초과 불가)**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예결위, '18년 예산 부대의견)
- **(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감안한 누리과정 재정 지원체계 합리적 대안 마련)**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의 효력 연장을 포함한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 (예결위, '18년 예산 검토보고서)
- **(표준유아교육비와 연계된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산정 필요)** **누리과정 지원 단가와 정부 지원 규모 및 학부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과 표준유아교육비 각 항목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예정처, '18년 예산 분석보고서)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 국가들의 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행정체제 >

구 분	체제	국가명	담당 부처	담당 연령(세)
일원화 체제	통합체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핀란드	교육부	0~6
이원화 체제	연령별 분리체제	대만, 독일, 싱가포르, 이태리, 프랑스, 홍콩	교육부	3(2)세~5(6)세
			복지부	2(3)세
	병행 중복 체제	일본, 한국	교육부	3~5
		미국(주에 따라 차이)	복지부	0~4

(6) 사업추진절차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사업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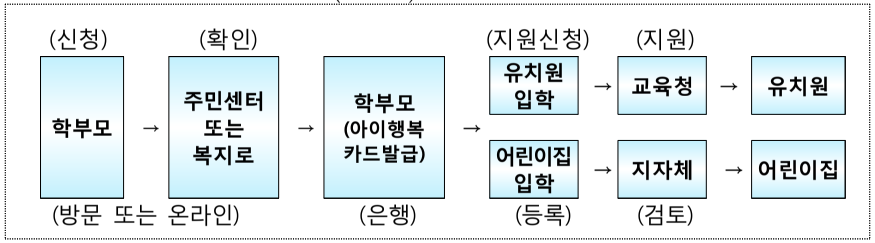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단위: %)	목표	-	-	신규	92.16	92.23	'17년도 목표 대비 0.07%p 상승한 92.23%로 목표치 설정	취원율 = (취원아수/취원 대상 인원)*100	주민등록 인구통계, 교육통계, 보육통계
	실적	-	-	-	93.1	-			
	달성도	-	-	-	101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경과

참고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경과**

<5세 누리과정 도입>

□ **국무총리,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발표**('11.5.2, 총리실, 교과부, 복지부)

< 주 요 내 용 >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만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교육과정)**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도입
- **(지원단가)** 월 17.7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 '11년(17.7만원)→'12년(20만원)→'13년(22만원)→'14년(24만원)→'15년(27만원)→'16년(30만원)
- **(재원부담) 만 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법령개정)** 유아교육법시행령·영유아보육법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 **(시행시기)** '12년 3월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 전면 시행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11.6.29. 입법예고, '11.9.30. 공포, '12.3.1. 시행)

○ 주요내용 : 무상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복지부 소관**, '11.6.29. 입법예고, '11.9.30. 공포, '12.3.1. 시행)

○ 주요내용 : **5세 전 계층 지원** 및 **비용은 교부금에서 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11.8.25. 입법예고, '11.9.30. 공포, '12.1.1. 시행)

○ 주요내용 : 교부금 산정기준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포함**

<3~4세 누리과정 확대>

□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3~4세 누리과정 도입' 발표**('12.1.18)

< 주 요 내 용 >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3~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교육과정)** 만 3~4세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 도입
- **(지원단가)** 만 3~4세 모두 '13년부터 만 5세와 동일하게 지원
  ※ '12(만3세 19.7만원, 만4세 17.7만원)→'13(22만원)→'14(24만원)→'15(27만원)→'16(30만원)
- **(재원부담) '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되, **'13년 만 3~4세, '14년 만 3세 기존 보육료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 계속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연간 3.5조원 이상 증가 추계** 반영
- **(법령개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
- **(관리체계)** 현행 관리체제 유지 :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 **(시행시기)** '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 적용

□ **유아교육법**('12.3.21. 공포·'13.3.1. 시행)**·시행령 개정**('12.4.18. 입법예고·'12.8.31. 공포·'13.3.1.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13.1.23. 공포·'13.3.1. 시행)**·시행령 개정**('13.2.1. 입법예고· '13.2.28. 공포·'13.3.1. 시행)

○ 주요내용 : 무상교육 범위 확대(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 3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 무상교육 범위 확대(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 3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12.7.19. 입법예고, '12.10.15. 공포, '13.1.1. 시행)

○ 주요내용 : **교부금** 산정기준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유아로 확대**

[8000] 회계간 거래

(050)교육 - (051)유아 및 초·중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업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8000] 회계간 거래	500	**3,892,717**	**3,815,338**	**△77,379**
[8001] 회계간 거래	501	3,892,717	3,815,338	△77,379
[8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501	2,058,602	1,981,223	△77,379
[80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507	1,834,115	1,834,115	-

[801]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3,940,881	2,058,602	1,981,223	△77,379	△3.7

* 사업코드 : 11 - 0 - 050 - 051 - 8000 - 8001 - 80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유아교육정책과장(권지영), 사무관(안성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세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18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내 교육세 지원금과 국고 지원금 분리
사업기간	'17~'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16.12.2.)에 따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영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국고 지원금 1,981,223백만원
지원조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회계 간 내부거래)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1,981,223백만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에 따라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어린이집 분(보육료) 국고 반영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2,058,602	1,981,223
■ 교육세 지원분	별도 사업으로 분리	별도 사업으로 분리
■ 국고 지원분	(2,058,602) 어린이집 예산 100%	(1,981,223) 어린이집 예산 100%

□ 지원 필요성

○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3년 한시('17~'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세 및 교육세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단일사업에 예산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3,940,881**	**2,058,602**	**1,981,223**	**△77,379**	**△3.7**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3,940,881 ('17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058,602 ('18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어린이집 분)	1,981,223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어린이집 분)	△77,379	△3.7
□ **비목**(합계)	**3,940,881**	**2,058,602**	**1,981,223**	**△77,379**	**△3.7**
○특별회계전출금(610-02)	3,940,881	2,058,602	1,981,223	△77,379	△3.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60,000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어린이집)	-	-	-
'18	2,058,602	■ '18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국고 지원분)로 전출	2,058,602	■ '18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국고 지원분)로 전출	-
'19	1,958,436	■ '19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국고 지원분)로 전출	1,981,223	■ '19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국고 지원분)로 전출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 추진경위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 : '16.12.22.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설치·운영 : '17.1.1. ~ '19.12.3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내용 :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	-	-	-	39,409	-	20,586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940,881	-	2,058,602	-	2,058,602	2,058,602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국회 여·야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12.2.) 중 >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 집행현황

■ '18.1~8월 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2,058,602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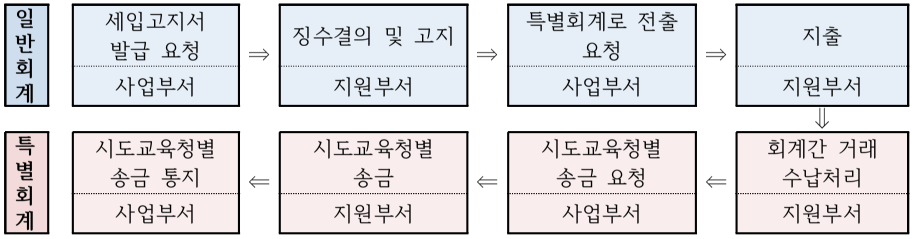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 경과

참고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경과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발의**('16.8.26, 한선교의원 대표 발의)

○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은 **용도를 지정하여 안정적 지원**

※ 오영훈 의원('16.10.5.), 윤소하 의원('16.10.24.), 유성엽 의원('16.11.9.) 등 특별회계 관련 법안 추가 발의

□ '17년 **정부예산안**(한선교의원 案 발의한 특별회계 반영) **국회 제출**('16.9.2.)

○ 현행 보통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별도 세입 재원으로 분리,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

□ 국회의장,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16.11.29.)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유아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지정

□ 여·야 3당 정책위의장, **3년 한시 특별회계법 설치 합의**('16.12.1.)

○ 여·야 합의로 특별회계법 중 **유성엽 의원안 수정 의결**('16.12.2.)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12.2.) 중]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 **'17년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및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통과」** ('16.12.2)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제명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내용 :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
▸세출 : 3조 9,409억원 (누리과정 단일사업, 예비비 370억 포함)
▸세입 : 교육세 + 국고('17년, 8,600억원)

[803]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	-	1,834,115	1,834,115	-	-

* 사업코드 : 11 - 0 - 050 - 051 - 8000 - 8001 - 803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유아교육정책과장(권지영), 사무관(안성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세 중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18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내 교육세 지원금과 국고 지원금 분리
사업기간	'17~'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16.12.2.)에 따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운영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교육세 지원금 1,834,115백만원
지원조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회계 간 내부거래)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1,834,115백만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에 따라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유치원 분(유아교육비) 교육세 반영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1,834,115	1,834,115
■ 교육세 지원분	(1,834,115) 유치원 예산 100%	(1,834,115) 유치원 예산 96%, 어린이집 4%

□ 지원 필요성

○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3년 한시('17~'19)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세 및 교육세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단일사업에 예산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	**1,834,115**	**1,834,115**	-	-
■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교육세 지원분)	-	1,834,115 ('18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유치원 분)	1,834,115 ('19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	-
□ 비목(합계)	**-**	**1,834,115**	**1,834,115**	-	-
○특별회계전출금(610-02)		1,834,115	1,834,115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안정적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유아교육비 지원**('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 국고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080,881	-	-	-	-
'18	1,834,115	■ '18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육세 지원분)로 전출	1,834,115	■ '18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육세 지원분)로 전출	-
'19	1,746,654	■ '19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육세 지원분)로 전출	1,834,115	■ '19년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육세 지원분)로 전출	-
'20					
'21					
'22					
연평균 증가율 (%)	-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 추진경위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제정 : '16.12.22.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설치·운영 : '17.1.1. ~ '19.12.3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내용 :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지원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 설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 (교육세 지원분)	-	-	-	-	-	-	-	18,341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	1,834,115	-	1,834,115	1,834,115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국회 여·야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

<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12.2.) 중 >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 집행현황

■ '18.1~8월 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출금 1,834,115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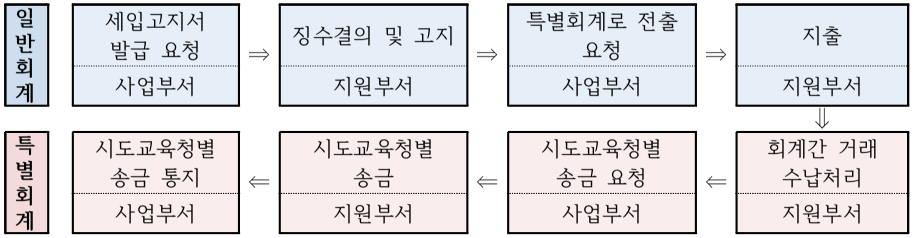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고 등 교 육]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050)교육 - (052)고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2200] 대학교육 역량강화	515	**1,162,048**	**1,440,529**	**278,481**
[2232] 대학자율 역량강화(일반회계)	516	71,616	73,658	2,042
[300]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516	580	522	△58
[303]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525	1,910	2,065	155
[30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558	55,940	55,940	-
[306]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572	12,251	13,896	1,645
[308]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	587	935	935	-
[315]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606	-	300	300
[2233] BK21 플러스 사업(일반회계)	619	297,707	296,732	△975
[300] BK21 플러스 사업(R&D)	619	297,707	296,732	△975
[2238] 대학교육 역량강화(일반회계)	636	461,935	603,642	141,707
[305] 교육대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636	1,440	1,440	-
[309]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646	-	15,233	15,233
[310] 대학 창업 활성화	654	15,820	17,214	1,394
[312] 대학혁신지원(R&D)	679	444,675	568,755	124,080
[318]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694	-	1,000	1,000
[2258] 대학구조개혁 지원(일반회계)	698	88,977	162,549	73,572
[300] 대학구조개혁 지원	698	8,977	12,149	3,172
[301] 국립대학 육성사업	715	80,000	150,400	70,400
[259] 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일반회계)	728	5,380	4,948	△432
[304] 의과학자 육성 지원(R&D)	728	480	293	△187
[30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741	4,900	4,655	△245
[2260] 대학평가지원(일반회계)	755	2,285	2,249	△36
[301] 대학평가 및 운영	755	2,285	2,249	△36
[2268]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일반회계)	782	4,980	4,236	△744
[300]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82	4,980	4,236	△744
[2256] 대학교육 역량강화(균특회계)	798	229,168	292,515	63,347
[300]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R&D)	798	229,168	292,515	63,347

[300]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644	580	522	△58	△10.0

* 사업코드 : 86 - 110 - 00 - 050 - 052 - 2200 - 223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입정책과장(송근현), 사무관(한성태), 주무관(이학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목적)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입전형정보 사전 공표** 유도 ▪ (내용) △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조정 협의 지원** △대학별 입시계획의 기준인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지원 △**대입전형 통계 관리** 및 학생·학부모 정보제공 지원 등 **【대입전형 기본사항】** ▪ 주체/시기: 대교협, 2년6개월 전 ※ '22학년도 기본사항('19.8.) ▪ 내용: △전형체계(수·정시, 학생부·논술·실기·수능) 간소화 △입시공정성 준수 △전형 설계(자격기준, 전형방법, 운영기준 등) △전형일정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 ▪ 주체/시기: 각 대학, 1년10개월 전 ※ '21학년도 시행계획('19.4.) ▪ 내용: △시기별·모집단위별(수·정시/학생부·논술·수능별, 학과별) 모집인원 △전형요소(학생부·논술·실기·수능)별 반영비율·반영방법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보조(감축)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참여기관) 4년제 대학 등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22백만원

■ (지원내용) 대입전형 기본사항(~8월)을 수립·운영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4월), 대학별 모집요강(5월, 10월) 등 대입전형 정보 제공(연간)

- 대입전형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대입 공정성 점검·강화(연간)

【 2019년 사업 추진도 】

주체	1월	2월	3월말		4월말		5월초	6월	7월	8월	9월초	10월	11월	12월
대학	2019 정시전형		2019 전형 결과 보고	2021 시행 계획 제출	2021 시행 계획 공표		2020 수시 요강 발표		2020 재외국민 전형		2020 정시 요강 발표			
											2020 수시전형(면접·논술·적성·실기 등)			
대교협	2019 정시전형 운영지원		2019 전형 정리	2021 계획심의		대입지원 위반심의		2019 전형 공시	자료집 배포 *2021시행 *2020재외	2022 기본사항 발표	자료집 배포 *2021기본		2020 수시전형 운영지원	
	기본사항 T/F 운영										2022기본사항 등 대입현장설명			
	대입전형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연간) *대학총장·교육감·고교교장·학부모·변호사 등/입학처장·교육국장·고교교사·학부모 등 ※ 대입 기본사항 준수 여부,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 점검, 대학구조개혁·정원조정 등 시행계획(모집요강) 변경/승인 등													

■ (산출내역) 522백만원×1년

※ ('18) 전형운영비216, 인건비·여비 364 → ('19) 전형운영비162, 인건비·여비360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580백만원×1식	522백만원×1식 (인쇄비 등 절감하여 사업비 10% 감축)

□ 지원 필요성

○ 학교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국정과제 50-6)'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 대학의 **자율적인 입학전형 운영**을 **지원**

○ 동 사업의 **축소·폐지** 시 **대학별 대입전형 운영**에 **혼란 발생** 및 **현재 대입전형 질서 유지**가 **곤란**하고, 학생·학부모·고교에 **정확한 대입전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 우려

< 참고 : 대입전형기본사항 발표 등 >

구분	대 입 정 책 (정 부)	대입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발표 내용 및 시기	'대입전형 단순화' 등 정부 정책 발표 (8월, 3년6개월 전)	공통 전형원칙, 일정, 요소, 방법 등 (8월, 2년6개월 전)	선발인원·전형요소별 반영방법, 전형별 자격기준 등 (4월, 1년10개월 전)	대학별 시행계획 내용의 구체화 및 입학전형 행정사항 (4월, 10개월 전)

○ 이러한 대입전형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대교협이 주도적으로 수험생·학부모·고교 등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 대입전형 정보를 얻기 위한 **사교육 대입컨설팅** 등 수험생, 학부모의 **사적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고,

- 특히 수험생은 대입전형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대입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입시**에 **실패**할 수 있으며,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외계층·소외지역 등에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안내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

⇒ 대학의 **대입전형 자율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입전형자율화 지원**	**644**	**580**	**522**	△58	△10.0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644	580 (580백만원×1식)	522 (522백만원×1식)	△58	△10.0
□ **비목**(합계)	**644**	580	**522**	△58	△10.0
○민간경상보조(320-01)	644	580	522	△58	△10.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적)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입전형정보 사전 공표** 유도

○ (내용) △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조정 협의 지원** △대학별 입시계획의 기준인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 지원 △**대입전형통계 관리** 및 학생·학부모 정보제공 지원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44	▪ 대입전형 운영 지원: 644백만×1식			
'18	580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80백만×1식	580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19백만×1식	0
'19	593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93백만×1식	522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22백만×1식	△71
'20	1,067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67백만×1식 ▪ 대입상담, 컨설팅 지원: 500백만×1식	534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34백만×1식	△533
'21	1,067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67백만×1식 ▪ 대입상담, 컨설팅 지원: 500백만×1식	524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24백만×1식	△543
'22			519	▪ 대입전형 운영 지원: 519백만×1식	519
연평균 증가율 (%)	13.5%		△2.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A)	'19예산(B)	증감(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80 (인건비364)	522 (인건비359)	△58 (인건비△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5.1명	5.0명	△0.1명
	예산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4.0명	13.9명	△0.1명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의 실제 일건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고용효과 산식을 적용 ※ 간접고용효과 없음 = 인건비 총액 ÷ 민간경상보조 교육서비스업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0.72억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3.59억원 ÷ 0.72억원 = 5.0명 □ **2018년 고용효과** - 3.64억원 ÷ 0.72억원 = 5.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사업 구조, 직·간접 고용 증대 등을 고려한 개편안 마련 검토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제9조 및 제17조

○ 추진경위

- '08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주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
- 매년 8월,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공표(2년 6개월 전)

※ 2019.8월, 202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

- 매년 4월,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1년 10개월 전)

※ 2019.4월,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입전형 자율화 지원	9	-	7.7	7.32	-	6.44	-	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44		580		580	58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2차에 거쳐 교부 완료('18.1, 18.7)하였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집행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향후 3년간 매년 10% 감축

○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대학자율역량 강화) : 우수(86점)

○ 2018년 상임위(교문위) 예산 부대의견: 사업 개선방안 마련 요구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사업 기본계획 수립(교육부·대교협) → 국고보조금 교부(교육부) → 사업수행(대교협) → 사업결과 보고(대교협)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입전형 수시 모집요강 기한 내 발표율(단위 %)	목표	신규	88	95	97		'17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수시모집요강 기한 내 발표 대학 수/전체 대학 수)×100	대학별 홈페이지 게시 여부확인
	실적	85	92.6	95	-	-			
	달성도	-	105%	100%		-			
대입정보 기한 내 제공율(%)	목표	-	-	-	-	93	전년 실적(91%),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 상향한 93%로 설정 ※ '17) 수시95%, 정시87.2% '16) 수시92.6%, 정시82.7%	수·정시 모집요강 기한내 발표율 평균값 *((수시 기한내 발표 대학 수 / 전체 대학 수) +(정시 기한내 발표 대학 수 / 전체 대학 수)) / 2 * 100	대학별 홈페이지 게시 여부확인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학부모, 학생 등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관련 근거 법령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학생) △대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복잡하게 느껴지는 대입전형에 대한 가이드(표준화, 자료집) 필요

□ (대학관계자) 대입전형 개선방안 연구 및 사례집 등 공유

< 예산(안) 반영사항 >

□ **2020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준수 등 대학 컨설팅 및 수험생 대상 대입상담, 컨설팅 운영'** 등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19년 예산까지는 '16.보조사업 연장평가에 의한 3년간 10% 감축, '20년부터 사업내용 개선 검토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및 현장의 변화 >

□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을 표준화**(권장)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

※ OO인재전형 → 학생부종합(OO인재전형),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공정성 제고, **대입 기록물 보존기간** 안내 등을 **개선**하여 **2020학년도 대입 기본사항 공표**('17.8.), **2019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사전 예고**('17.4.)

□ **자료집***, **대입정보포털**(어디가)**을 통해 **대입전형 정보 적시 안내**

* 수시/정시 입학정보를 전국 고교, 교육청, 유관기관 등 3,500부(2회) 배포

** 지원자의 희망학과, 희망전형, '17년 합격선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대입 **공정성 유지**를 위한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심의** 및 **조치**

참고 3 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9조 및 17조)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7조(업무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03]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2,139	1,910	2,065	**155**	**8.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2 - 303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사립대학정책과장(임용빈), 사무관(최근승)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전문대학법인과장(안수미), 서기관(최민호)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김현정)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무관(정재선)
평생미래교육국(최은옥), 이러닝과장(김석), 사무관(황현정)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사무관(김효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대학 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를 집계·분석·공시하여** 고등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재정투자 효율성 극대화 - **(사학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사학기관 및 산학협력단 예·결산·기본재산 등 재정정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사학기관 재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대학 기숙사 정보공시)** 대학기숙사 정보공시를 통한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숙사비 인하 유도** - **(사학기관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학법인 비리임원에 대한 DB구축**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사업기간	'07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사업 : 695백만원**

- **(대학 재정정보 분석)** 학교법인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및 교육시설,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등 재정정보의 집계·분석·공시**
  * 총 10종의 집계·분석자료 발간 및 대학알리미, 대학재정알리미,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S) 등을 통해 대국민 공시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 정부 및 지자체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정보의 집계·분석·공시**
  * 총 2종의 집계·분석자료 발간 및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대국민 공시
- **(학교법인 기본재산 사후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실행에 대한 **관할청 허가조건 이행여부의 검토·관리**
-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부담분 승인을 위한 학교법인 재정여건 검토·관리 추진**
-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대학 재정정보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입력 및 통합공시시스템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 (입력)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및 하이에듀포트 (통합공시) 대학재정알리미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인건비	**- 대학 재정정보 분석 (104)** · 행정직 4급 2명×52백 **- 고등교육 재정분석 (82)** · 행정직 5급 2명×41백 **- 기본재산 사후관리 (41)** · 행정직 5급 1명×41백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검토 (101)** · CPA 4급 1명×60백 · 행정직 5급 1명×41백 **※ 한국사학진흥재단 보수규정 기준(법정부담금 포함)**	328
사업관리비	**- 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12)** · 4회×3백 **- 분석보고서 발간 (52.8)** · 보고서 12종×4.4백 **- 재정정보 전자파일(PDF변환) (20)** · 재정정보 3종×6.7백	216.8

구분	세부내역	금액
	- 콜센터 및 단기일용직 (90) · 검증인력 파견직 4명×22.5백 **- 기타운영비 (17)** · 자문위원회, 사무비품, 외부감사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의무** **- 출장여비 (25)** · 월10회×회당 21만원* **※ '공무원 보수규정·업무지침' 준용**	
시스템 유지·보수	**- 기술인력 인건비 (119)** · 중급 2명×12개월×12.5백 (제경비 110%, 기술료 20%적용) **- 장비 유지·보수 (31)** · HW 5식, SW 11식	150
합 계		695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 969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등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재무 컨설팅 추진 ('18) 40교 추진
- **(외부회계감사 감리사업)**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결과에 대한 감리 추진 및 시정 결과 검토 ('18) 25교 추진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인건비	**-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 CPA 4급 4명×64백 ※ 한국사학진흥재단 보수규정 기준(법정부담금 포함)	256
사업 관리비	**- 용역비 (664)** · (실태점검) 40개교×4백 · (회계감리) 30개교×16.8백 **- 일반수용비 (49)** · 감리위원회 운영, 특례규칙 해설서 발간 등 ※「공무원 보수규정·업무지침」준용	713
합 계		969

○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 130백만원**

- **국정과제 52-6 '고등교육의 질제고(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등 재정현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인건비	**-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 CPA 4급 1명×60백 ※ 한국사학진흥재단 보수규정 기준(법정부담금 포함)	60
사업 관리비	**- 용역비 (60)** · (실태점검) 15개교×4백 **- 일반수용비 (10)** · 감리위원회 운영, 사무비품, 출장여비 등 ※「공무원 보수규정·업무지침」준용	70
합 계		130

○ **대학 기숙사 정보 공시 및 시스템 운영 : 80백만원**

- 국·공·사립대학 전체 기숙사의 예·결산 등 운영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 형태 집계·분석·공시**
- 정보공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숙사 운영결과 사후관리**
- 기숙사 운영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계시스템 운영**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사업 관리비	**- 업무담당자 설명회 (3)** · 1회×3백 **- 예·결산서 전자파일 변환 (3)** **- 기타운영비 (5)** · 자문위원회 운영, 외부감사비용, 사무용품 등 **- 단기일용직 (15)** · 1명×6개월×2.5백 **- 출장여비 (4)** · 2인×10회×21백 ※「공무원 보수규정·업무지침」준용	30
실태 조사	**- 기숙사 실태조사** · 10개교×1.5백 ※ 기숙사비 산정근거, 기숙사비 납부방식 등 점검	15
시스템 유지·보수	**- 기술인력 인건비** · 중급 : 1명x2.5개월x5백 (제경비 110%,기술료 20%,부가세 10% 적용)	35
합 계		80

○ **사학기관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191백만원**

- **(사학법인 비리임원 관리) 사학법인 비리임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교육부·교육청 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비리임원 취임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

* 교육부 및 시·도별 교육청 법인 임원승인 담당자가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임원취임승인 업무처리 시 결격 여부 실시간 조회

**** (대상임원)** 대학 및 중등이하 법인 총 1,163개 학교법인(최소 임원수 10,467여명)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시스템 개발비	- 기술인력 인건비 · 중급 : 1명x2.5개월x5백 (제경비 110%,기술료 20%,부가세 10% 적용)	191
합 계		191

【 '18년 예산내역 대비 변경된 '19년 예산 내용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사업	1,910	2,065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5백만원) - 재정지원 사업정보 12종 - 대학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정보 5종	(695백만원) - 재정지원 사업정보 12종 - 대학재정정보 및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정보 5종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855백만원) - 예·결산 실태점검 : 40교 - 회계감리 : 25개교	(969백만원) - 예·결산 실태점검 : 40교 - 회계감리 : 30개교
■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100백만원) - 산단 실태점검 : 10교	(130백만원) - 산단 실태점검 : 15교
■ 대학 기숙사 정보 공시	(260백만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리비	(80백만원) - 시스템유지보수 및 관리비 - 실태조사 : 10교
■ 사학기관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	(191백만원) - 시스템 개발 1건

□ 지원 필요성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

① 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 **(개요)** 학교법인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예·결산 및 교육시설,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재정정보를 접수·집계·분석하고, 대국민 공시**를 통해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 대학재정정보 집계 및 공시 현황 >

구분	대학		산학협력단		수익용 기본재산	교육시설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대상	사립대학		국·공·사립대학		사립대학	국·공·사립대학
	348개교		350개 산단		299개 법인	498개 캠퍼스
접수	2.23	5.31	2.23	5.31	6.30	4.30
집계·검증	3월~5월	6월~7월	3월~5월	6월~7월	7월~9월	5월~9월
공시	6월	8월	6월	8월	10월	10월

*** '18년 세부사업실행계획 기준**

■ **(지원 필요성)** 대학재정정보 분석 및 대국민 공시사업은 고등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의 기초 자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대학 재정분석)** 사립대학 재정분야의 **통계연보 및 예·결산 및 교육시설 등 재정정보에 대한 분석보고서 총 12종 발간**

< 대학 재정정보 분석보고서 현황 >

구분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분석보고서	재정 및 기본재산 통계자료
분석 보고서			

- **(대국민 공개)** 대학 재정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시서비스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대학관계자, 학생·학부모, 연구자 등의 정보수요 충족 및 대학 재정건전성 제고** 도모

< 재정정보 대국민 공개서비스 현황 >

구분	대학알리미 (대교협)	대학재정알리미 (KASFO)	교육정보통계서비스 (KERIS)	교육통계 (KEDI)
공개 시스템				
주요공개 대상	고등교육기관 예·결산, 연구·산학협력, 교육여건	고등교육기관 예·결산,교육시설, 수익용기본재산,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정보 등	대학정보공시, 고등교육통계, 취업통계, 대학수학능력시험자료 등	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평생교육통계 등

< 대학정보공시 연계 항목 >

분야	공시항목	분야	공시항목
예산	8-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결산	8-바-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8-자-2.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8-자-3.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8-자-1.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		8-자-4.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
시설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8-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14-라. 교사(校舍) 시설 확보 현황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계산서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8-마-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기본재산	14-바-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현황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계산서

< 사립대학 재정·회계지표 세부내역 >

분야	세부지표명	산출식	평가방법
교육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총교육비/재학생수	상대평가
	교육비 환원율	총교육비/등록금수입	상대평가
	장학금 지급률	교외·교내장학금/등록금수입	상대평가
재무안정성	이월금 비율	미사용차기이월자금/자금지출총액	상대평가
	등록금 의존율	등록금수입/자금수입총액	상대평가
	부채비율	총부채-(예수금+선수금+기타유동부채)/기본금	상대평가
법인책무성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전입금/운영수입	상대평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보유액/기준액	절대평가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액/기준액	절대평가

- **(대학정책 기초자료)** 정부 및 국회, 유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등의 기초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한 대학별 현황 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함

*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정량지표로 활용되는 필수 통계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통한 자료의 적시 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3년간 대학재정자료 제공 현황 >

연도	교육부	국회	유관기관	기타 단체	합계
2015년	210	347	63	36	**656**
2016년	167	414	57	48	**686**
2017년	159	429	42	98	**728**

< 교육부 주요 정책 지원 현황 >

구분		수행 정책	소관부서
1	예산결산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산출 및 공시	사립대학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 이러닝과
2		학교법인 기채 승인 허가	
3		적립금 규정 준수 여부 검토	
4		이월금 처리원칙	
5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6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교비부담액 보전	
7		사립대학 신규 설립 및 위치변경 인가	
8		사립대학 국외시설 취득 및 국외분교 설립인가	
9		**대학기본역량진단 D·E등급 컨설팅 수행**	사학혁신지원과
10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사학감사담당관
11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선정평가	대학재정장학과
12	기본재산	**학부중심선도대학육성사업**	대입정책과
13		**대학기본역량진단**	고등교육정책과
14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등 허가	사립대학정책과
15		**대학 편입학 여석 산정**	대입정책과
16		**대학 학생정원 조정**	대입정책과
17		국립대학 예산 편성	교육시설과
18		**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및 정원 관리**	대학학사제도과
19	재정통계	고등교육통계 조사/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교육통계과

< 외부기관 주요 정책 지원 현황 >

기관명	수행 정책	요청자료	시기
한국연구재단	선도대학사업 평가지표	▪ 사립대학 교비회계	'17.1
한국은행	경제정책 수립	▪ 사립대학 법인·교비회계	'17.1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	▪ 교사확보율·교육비 환원율	'17.5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현황조사	▪ 사립대학별 등록금 수입	'17.7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대학 교육시설 현황	'17.8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 사립대학 결산서	'17.9
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평가인증	▪ 4년제 대학별 재정자료	'17.11

②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 및 공시

■ **(개요)** 중앙정부·지자체의 **고등교육분야 재정지원 현황을 부처별·사업별 집계·분석 및 대국민 공개**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재정지원의 투자 효율화 도모

< 조사대상 및 사업 수>

구분	중앙정부 (부/처/청)	지방정부 (광역/기초/교육청)	합계
대상	17부 5처 16청 (38개)	전국 17광역 75시 82군 69구 (243개)	281개
사업(수)	549개	1,462개	2,011개

* 대상은 '18년 세부사업실행계획, 사업수는 '17년 분석보고서 기준임.(간접지원사업 제외)

■ **(지원 필요성) 법령상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에 활용**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고등교육법」**제7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등교육 지원계획의 국회 보고의무(매년)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정부 및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추이 및 성과분석 등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및 투자 효율화 도모**
- **(대국민 공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시서비스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관부처 및 기관, 연구자 등의 정보수요 충족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및 공시현황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보고서	대학재정알리미	OECD 교육통계

③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허가 사후관리

■ **(개요)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실행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검토·관리하여 학교법인의 책무성 강화 유도**

< 최근 3년간 학교법인 기본재산 사후관리 현황 >

구분	허가(신고)		검토대상(건)
	기본재산	기채	
2017년	216	48	264
2016년	237	53	290
2015년	254	62	316

■ **(지원 필요성) 국회 및 감사원 등 외부의 지속적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감사원 지적)**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등은 관할청 허가 사항으로(사립학교법 제28조), 허가조건 준수여부 점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필요성 지적***

  * '11년 감사원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조사

- **(사후관리 강화 요구)** 실시간 기본재산 처분 이력관리 및 미준수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본재산의 과도한 손실로 인한 교육여건의 질 저하를 사전방지 요구***

  * '15년 국회 결산심의(안민석 의원) '기본재산 처분 허가사항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19년 예산증액의 필요성) 재산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까지 확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법령개정으로 대상 확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 기존 4년제 대학법인에서 사이버대학과 전문대학 법인까지 확대**되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진인력 필요

*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8항7호 신설

** (기존) 190개 대학법인 → (개선) 102개 전문법인 및 7개 원격대 법인 포함, 총 299개 법인

< 최근 3년간 학교법인 기본재산 사후관리 현황 >

구분	허가(신고)		검토대상(건)
	기본재산	기채	
2018년 예상 (대상 증가시)*	356	79	435
2017년	216	48	264
2016년	237	53	290

- **(사이버대학 관리강화)** '17년 중 사이버대학의 기본재산 관리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사이버대학 재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업무 추진인력 필요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17.9)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기준 개정 등"

**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17.11) "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등"

- **(업무범위 확대)** '17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시 지적사항*과 관련, 기본재산 허가 및 사후관리 대상 항목으로 임대보증금 사용현황이 추가되어 업무량 증가

*** 감사원 '교육부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17.3)**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법인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검토대상)** (기존) 학교법인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 결과

→ (추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 여부 및 사용 현황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 현황 >

구분	임대보증금			
	건수	예금	예금미확보	합계
2017년	1,728건	1조 7,565억원	9,458억원	2조 7,023억원
2016년	1,528건	1조 2,436억원	9,459억원	2조 1,895억원

- **(기본재산 관리의 중요성)** '18년 사립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및 향후 사학기관 구조개혁 확대*가 예상되고, 교육부 감사 시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사학기관 기본재산의 검증강화' 등 기본재산 관리의 확대 필요성 증가

*** (사학기관 폐교대학)** '16년 0교 → '17년 3교

**** (사학감사 및 현장점검 지적건수)** 최근 3년간 총 852건 지적

<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 및 실태점검 시 지적건수>

구분	(교육부) 사학감사	(사학진흥재단) 실태점검	대학정보공시		합 계
			공시점검 지적사항	공시 이후 수정건수	
2015	14	157	17	107	295
2016	31	139	46	56	272
2017	2	173	44	66	285
계	47	469	107	229	852

④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및 사후 이행관리

■ **(개요)**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검토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교회계 로의 부당한 전가 방지

< '15~'17년 학교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신청 현황 >

(단위 : 법인수)

구 분	'15년	'16년	'17년
대 학	91	92	91
전 문	85	87	86
원 격	6	6	6
합 계	182	185	183

■ **(지원 필요성) 법정 승인제도 수행을 위한 법인 재정여건 검토 추진 및 법인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한 계속 사업 추진 필요

- **(법정 승인제도)** 학교부담에 대한 법정 승인제도* 운영으로, **법인 부담여력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검토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미이행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인의 책무성 제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69조의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40%)'

- **(등록금 인상 방지)** 법인 재정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법인부담액 산출·승인으로 **학교법인 부담의무의 학교회계 전가에 따른 부당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

< '17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액 신청 및 승인 현황 >

(단위: 개교, 백만원)

구 분	기준액 (A)	신청액 (B)	검토결과 (C)	검토 (전/후) 법인부담률 비교		
				검토 전 (B/A*100)	검토 후 (C/A*100)	법인부담 증가율
법인부담액	257,130	57,865	60,013	22.5%	23.3%	0.8%p ↑
교비부담액*	-	199,265	197,117	77.5%	76.7%	Δ0.8%p ↓

* 학교법인 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에서 부담 필요

- **(국회 등 외부의견) 국회 교문위* 및 예정처** 등에서 법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의 이행점검 요구

  * **교문위 '16년 예산안 심의 부대의견**

  "승인 이후에도 개선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

  ** **예정처 '17년 예산안 분석보고서('16.9)**

  "법인의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승인 이후 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의 이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환류 역시 강화할 필요"

⑤ 고등교육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 **(개요)** 고등교육기관의 항목별 재정 현황 및 전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고등교육 재정정보 통합 허브'를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운영**

- **(입력·DB관리 시스템)** 법령상 제출 의무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자료 제출 편의 및 축적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 연간 400여개 대학 담당자 및 300개 정부 부처별 사업담당자가 시스템을 접속·활용

- **(대국민 공시 서비스)** 학생, 학부모, 연구자, 대학관계자 등 국민의 고등교육 재정정보 접근성 및 분석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

< 통합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 >

< 고등교육 재정정보 시스템 현황 >

입력 및 조회 시스템		통합 공시 시스템 (대학재정알리미)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하이에듀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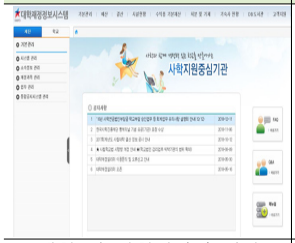		
- 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 - 대학 및 산학협력단 결산 - 대학 시설 및 기숙사 현황 - 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관리	-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정보 - 대학별 재정지원 수혜현황 -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정보	- 대학 재정정보 공시 - 고등교육 재정정보 공시 - 고등교육 통계 공시 등
- 2007년 구축 - 2013년 BPR/ISP 추진 - 2016년 시스템 고도화	- 2011년 시스템 구축	- 2017년 시스템 구축

○ 사학기관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개요)** 사학기관 결산 감사증명서 및 감사절차에 대한 검증을 통해 **외부회계감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책무성 강화 및 사학기관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유도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리 사업 수행 실적 >

구분	'14	'15	'16	'17	'18	누적
학교수	10	15	15	20	25	85

■ **(지원 필요성) 외부 감사인의 책무성 강화와 사학기관의 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외부감사인 책무성 강화)** 기준 위반 시 금융위원회 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감사제한 등) 등 **후속조치 실시로 외부감사인의 신중하고 내실 있는 감사업무 수행을 유도**

  * **감사원 및 김상희 의원 "회계감리 필요성 지적"(2013 국정감사)**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리 실시는 반드시 필요함"

- **(사학기관의 재정신뢰도 향상)**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공정성.책무성 확보 및 부실 감사의 개연성 차단 추진**

< 사립대학 외부감사인 중 빅펌(big firm) 비율 감소 추세 >

·(현황) 외부감사인 중 빅펌(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
('13년 7.8%→'16년 4.0%)
일반적으로 감사품질은 소형<중형<대형 회계법인 순서로 높은 감사품질은 나타남

<연도별 외부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 수감 현황>

구 분	'13	'14	'15	'16
로컬(소형, 중형)	259	271	291	291
빅펌	**22(7.8%)**	**19(6.6.%)**	**15(4.9%)**	**12(4.0%)**
합계	281	290	306	303

·(시사점) 사립대학 외부감사에 대한 품질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한 관리 필요

■ **('19년 예산증액의 필요성)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강화 필요**

- **(감리 대상교 확대)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감리 대상법인을 지속 확대**하여 점검주기 단축**을 통한 사학기관 재정신뢰도 제고

* **국정과제 76-2 '교육 민주주의 회복(사학비리근절)'**

** **대상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 대학법인(대학 192, 전문 101, 원격 7)에 대한 감리주기를 현행 '15년에서 '21년 까지 6년으로 단축

('17) 20교 → ('18) 25교 → ('19) 30교 → ('20) 40교 → ('21) 50교 → ('22) 60교

②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

■ **(개요)** 예·결산 및 기본재산 보고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을 통해 **사립대학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 예·결산 실태점검 사업 수행 실적 >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누적
학교수	20	28	30	30	60	30	45	45	50	40	378

■ **(지원 필요성)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재정정보의 신뢰도 제고)** 사학기관 예·결산 및 기본재산 관련 재정분석자료는 주요 고등교육통계에 포함되어 대국민 공시가 되고 있으며, 교육부 평가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자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전적 지도 및 점검 수행이 필요**

-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사립대학 회계처리 및 재산 관리 점검 항목(체크리스트)을 체계화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 제시 등을 통해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 **(재정 컨설팅)** 자가점검 실시 및 부적정 사항 현장교육을 통한 부적정·오류 사례 예방, 재정.회계 주요 지표 분석을 통한 중.장기 운영 방안 제안

- **(제도 개선사항 도출)** 주요 쟁점별 담당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수요*를 도출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개정('16.12),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변경('17.1) 등**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 **(개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문제점의 **개선계획을 도출하고 사후조치를 수행하여 산학협력단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수행 실적 >

구분	'17	'18	누적
산학협력단수	10	10	20

■ **(지원 필요성) 매년 확대되는 산학협력단 규모에 맞춰 보조금 적정 관리 및 재정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보조금 부정적 관리사례)**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따른 산학협력단 예산 규모 확대* 및 업무 영역 다양화로 회계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 보조금의 부정적 관리 사례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구**

* **('14) 8조 9,268억 → ('15) 9조 6,379억 → ('16) 9조 6,209억**

- **(대외지적)** 매년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회* 등 외부에서 산학협력단 실태점검 강화 요구**

  *** 교문위 '16년 예산검토 보고 (강은희·설훈·서용교 의원)**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실태점검을 통해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 **(재정정보의 신뢰도 제고)** 산학협력단 예·결산 및 분석자료는 교육부 **주요 평가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재정자료 신뢰도 확보 및 품질제고를 위해 사전적 실태점검 수행 필요**

< 교육부 평가 지표(산단 재정정보 활용) >

구분	평가(성과)지표	구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	정량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단 운영수익률(간접비 수익)	정량

○ **대학 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 **(개요) 대학 기숙사 현황 및 기숙사 운영결과에 대한 집계·분석 및 대국민 공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 기숙사 현황 및 운영결과 집계·공시 현황 >

구 분	세부 내용	공 시
기숙사 운영결과	국·공·사립대학(전문) 기숙사의 예·결산 내역 조사 및 집계·분석·공시 *** 대상확대 : ('14) 민자기숙사 → ('19) 직영기숙사**	매년 10월
기숙사비 현황 및 납부제도	기숙사의 기숙사비 및 납부형태(분할/카드) 집계·분석·공시	매년 10월
기숙사 수용현황	기숙사 동별 수용현황	매년 10월

< 기숙사 정보 공시 시스템 구성 >

기능명		비고
대학재정 정보시스템 (학교)	기본정보	사용자 및 소속 정보 등
	기숙사 수용현황	추가 집계 항목 개발
	국공립대 기숙사 운영결과(민자, 직영)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사립대 기숙사 운영결과(민자, 직영)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기숙사비 납부제도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지역별 입학생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고객지원	공지사항 및 Q&A 등
대학재정 정보시스템 (재단)	기본정보	사용자 · 코드 · 계정 관리 등
	기숙사 수용현황	추가 집계 항목 개발
	국공립대 기숙사 운영결과(민자, 직영)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사립대 기숙사 운영결과(민자, 직영)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기숙사비 납부제도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지역별 입학생	자료 입력 및 조회 등
	고객지원	공지사항 및 Q&A 등

■ **(지원 필요성) 국정과제와 연계한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와 기숙사 운영결과 공개 등에 대한 대외 요구 등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국정과제 이행) 국정과제**(49-5.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이행의 일환**으로 기숙사 확충과 더불어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숙사 운영 효율화 및 기숙사비 절감을 유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대외 요구 증가) 기숙사 운영비 내역 및 기숙사비 산정근거의 정보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공·사립 전체 기숙사의 예·결산 집계 및 분석이 필요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16.7.20)**

  "학생 기숙사비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의 사용내역 및 기숙사비 산정근거에 대해 공시 필요"

- **(기숙사비 납부형태 공시)** 대학 기숙사비의 납부형태 전수조사 및 공시를 통해 **국민 알권리 확대 및 기숙사비 납부형태 다양화 유도 필요**

  *** "기숙사비 분할납부 안돼" 대학의 갑질, 매일경제('16.8.18)**

  "기숙사비를 일시에 현금납부를 하여야 함에 따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사학기관 주요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개요)** 사학법인 비리임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교육부·교육청 간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비리임원 취임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

* 교육부 및 시·도별 교육청 법인 임원승인 담당자가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임원취임승인 업무처리 시 결격 여부 실시간 조회

** **(대상임원)** 총 1,163개 학교법인(최소 임원수 10,467여명) 중 5년 간 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 취소) **대상자 338명('17. 2. 기준, 사분위 통계)이며, 추후 배제 징계(파면, 해임) 대상자도 시스템에 포함이 필요한 바, 시스템 상의 데이터는 지속 증가**

■ **(사학비리 근절) 국정과제 76-2 '교육 민주주의 회복(사학비리 근절)'**와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 간 사학법인 비리 임원 취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봉쇄

* **(비리임원 법인 간 갈아타기 사례)**

"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C 씨는 '16. 1.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17. 2. ◇◇대학원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교육부는 반려 처리 "

< 사학기관 주요정보 DB시스템 절차도 >

기본정보	→	임원 행정처분	→	정보 입력	→	DB정보 조회
▪ **사학기관 기본정보 관리** - 법인명 - 소속학교 및 교명 - 위치정보 - 임원정보 - 기타정보 등		▪ 기관별 행정처분 -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 파면, 해임 등		▪ 행정처분 정보 현행화(DB입력)		▪ 임원 결격사유 여부 통합조회 ※ 대상자가 각서로 제출한 내용 사실 여부 조회
교육부/위탁기관		**교육부/교육청**		**관할청/위탁기관**		**관할청**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2,139**	**1,910**	**2,065**	**155**	**8.1**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0	695 인건비 329 (7명×47백만원) 사업관리 216 유지보수 150	695 인건비 328 (7명×47백만원) 사업관리 216.8 유지보수 150	-	-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 감리	835	855 인건비 240 (4명×60백만원) 용역비 580 일반수용비35	969 인건비 256 (4명×64백만원) 용역비 664 일반수용비 49	114	11.8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100	100 인건비 60 (1명×60백만원) 용역비 30 일반수용비 10	130 인건비 60 (1명×60백만원) 용역비 60 일반수용비 10	30	23.1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	260 사업관리 30 시스템구축 230	80 사업관리 30 실태조사 15 유지보수 35	△180	△225.0
■ 사학기관주요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	191 시스템 개발	191	순증
■ 시스템 이전 및 통합시스템 구축	414	-	-	-	-
■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100	-	-	-	-
□ **비목**(합계)	**2,139**	**1,910**	**2,065**	**155**	**8.1**
○ 민간보조(320-01)	2,139	1,910	2,065	155	8.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등교육기관 재정실태 점검 확대 및 신뢰도 높은 분석통계 제공으로 대학 개혁의 추진기반 마련 및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현장점검 등 통합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여 사업 투명성 및 정부 투자 효율을 극대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139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0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835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100백만원 ■ 통합시스템 구축 414백만원 ■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구 100백만원			-
'18	1,910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5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65교) 855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10교) 10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260백만원	1,910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5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65교) 855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10교) 10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260백만원	-
'19	1,971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772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70교) 945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10교) 11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144백만원	2,065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95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70교) 969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15교) 13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80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91백만원	94
'20	3,548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003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1,230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20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80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80백만원 ■ 사이버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70백만원 ■ 고등교육 재정운영 연구 지원 200백만원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85백만원 *BPR/ISP 용역비	1,703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50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959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85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5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백만원	△1,845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3,548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003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1,230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200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80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80백만원 ■ 사이버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170백만원 ■ 고등교육 재정운영 연구 지원 200백만원 ■ 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385백만원 *시스템 구축 개발비	1,703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50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959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85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5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백만원	△1,845
'22			1,703	■ 고등교육·대학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650백만원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959백만원 ■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 85백만원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5백만원 ■ 사학기관주요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18.1		△2.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910</td><td>2,065</td><td>155</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31.3</td><td>36.2</td><td>4.9</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36.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행정) : 2.68억원/0.4812억원 = 6명
* <표1>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0.4812억원)
-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전문) : 0.60억원/0.6423억원 = 0.9명
* <표1> '전문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0.6423억원)
-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 3.16억원/0.6423억원 = 5.0명
* <표1> '전문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0.6423억원)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320-01) 내 일반용역비 지출내역별 산출
a.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 3.76억원/0.86억원 = 4.4명
* <표4> S/W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22-062) 평균지출액(0.86억원)
b. 보고서 인쇄 : 2.16억원/0.72억원 = 3.0명
* <표4> 출판서비스(22-063) 평균지출액(0.72억원)
c. 콜센터 및 단기일용직 운영 : 1.05억원/0.39억원 = 2.7명
* <표4> 사업지원서비스업(26-074) 평균지출액(0.39억원)
d. 예·결산 실태점검 및 감리 : 6.64억원/0.51억원 = 13.0명
* <표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업(25-072) 평균지출액(0.51억원)
e.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 0.6억원/0.51억원 = 1.2명
* <표4>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업(25-072) 평균지출액(0.51억원)
□ 2018년 고용효과 : 31.3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5조제8항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 접수
2.「대학설립·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6.「고등교육법」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
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학교의 장을 경유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
②교육부장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제2항

②「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5조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7조(교육재정)
③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2항,4항,5항

제2조(학교설립 등)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제70조

제48조(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3호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14-마. 기숙사 수용현황 중 기숙사 운영 결과

- 『국정과제 49-5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5.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국정과제 52-6 산학협력 활성화』

국정과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6.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국정과제 76-2 교육민주주의 회복』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2.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 추진경위

- 대학재정정보

해당일시	사업내용
'07년	사립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재정정보 집계분석 시스템 개발 착수
'08년	고등교육재정시스템 운영 개시
'10년	사립대학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지원사업 개시
'11년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교육부장관 승인 검토 업무 위탁
'12년	국외교사 취득 관련 기준 안내
'13년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기채허가 사후관리 업무 위탁
'13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사립대학재정통계) 작성 승인
'14년	고등교육재정시스템 및 기본재산관리시스템 통합 개편 착수
'14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산출 및 최조 공개(대학알리미)
'14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16년	산학협력단 예·결산 집계·분석 업무 위탁근거 마련(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및 제36조 개정)
'16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3차년도('14~'16) 개편 완료
'17년	대학재정회계센터 출범
'18년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18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해당연도	사업내용
'11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구)교과부 지원사업 대상 시범조사 실시('10년 결산 기준)
'12년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조사대상 확대('11년 결산 기준)
	조사대상 확대에 따른 시스템 개선(시스템DB 확장 및 장비 도입)
'13년	서비스 다양화 및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통계 서비스 개선
'14년	'11~13년 수집정보를 활용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변화추이 분석
'15년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 수립 지원(정책연구 및 분석 강화)
'16년	수집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성과정보 분석·활용 확대
'17년	교육부 소관 재정지원사업 개편(4개 분야)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18. 3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 예·결산 등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해당일시	사업내용
'09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개시
'13년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신설 감리 추진근거 마련
'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10개교 시범 실시
'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고시(교육부고시 제2014-55호)
'15년	사학기관 감사업무 처리 유의사항 안내
'16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 개정(실태점검 추진근거 마련)
'17년	산학협력단회계 실태점검 10개교 시범 실시

-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운영

해당연도	사업내용
'14년	대학 정보공시 확대를 단계적으로 도입(자료 집계 및 공시연계 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2013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46교)
'15년	2014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50교)
'16년	2015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54교)
'17년	2016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59교)
	2016회계연도 국·공립대학 직영기숙사 운영결과 시범 공시(46교)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정보 공시(334교)
'18년	2016회계연도 국·공·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69교)
	2016회계연도 국·공립대학 직영기숙사 운영결과 정보 공시(48교)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정보 공시(334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15.55	-	16.95	16.95	-	21.39	-	19.1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95** **(16.95)**	16.95 (16.95)	- (-)	16.95 (16.95)	**16.95** **(16.95)**	- (-)	- (-)
'16년	**16.95** **(16.95)**	16.95 (16.95)	- (-)	16.95 (16.95)	**16.95** **(16.95)**	- (-)	- (-)
'17년	**21.39** **(21.39)**	- (-)	- (-)	21.39 (21.39)	**21.39** **(21.39)**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139	-	1,910	-	1,910	1,346	70.5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사립대학(학교법인) 기본재산 및 회계 관리 설명회 개최 등 1,346백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17년 시행) 결과 : "우수"(86점)**

○ **'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 '16년 대비 '17년 예산 10% 감축

※ 대학재정정보시스템 개편 완료(~'16)로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할 필요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정상추진"

※ 국고지원이 타당하며,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대학재정정보 파악이 반드시 필요

○ **국회 지적사항**

■ **'16년 국회 교문위 예산 검토보고서** : 산학협력단 규모 증가에 따라 체계적 실태점검을 통한 산단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노력 필요

☞ '17년 예산 확보('17년 1억원) 및 10개 산학협력단 대상 실태점검 시범 실시

■ **'14년 교육부 국정감사(정진후 의원)** : 외부회계감사 감리사업 도입 취지를 생각할 때, '14년 감리 대상 10개교는 적은 수치로 향후 대상교 확대 필요

☞ 지속적인 예산 증액 노력('15년 +1.4억원 및 '17년 +1억원)으로 대상교 확대

※ ('14) 10개교 → ('15~'16) 15개교 → ('17) 20개교 → ('18) 25개교

■ **'15년 교육부 국정감사**(윤재옥 의원) 및 **'16년 교문위 업무보고**(김석기 의원)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독립된 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

☞ 효과적인 감리 사업 추진기반 마련 및 감리 업무를 독립된 공적기관에서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완료('17.11.28. 공포)

개 정 전	현 행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1.28.] **[시행일 : 2018.5.29.] 제31조의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

중점 사항	주요 내용
사립학교 교육진흥 지원	사립학교 교육 충실성 향상, 경영 안정 및 교직원 복리 후생 도모를 위한 보조금 교부 및 자금 융자 등 사립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 수행
공제사업	사립학교교직원공제법(법률 제245호)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

○ 영리기업 회계감리 제도

■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금융감독원 수행

■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미대상 : 한국공인회계사회 수행

중점 사항	주요 내용
감리 수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근거,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과 기업에 대한 감리 수행
사후 조치	감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결과보고 후 감사인 및 회사에 대한 조치 실시

(6) 사업추진절차

대학 및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집계·분석·공시

① 기본계획 수립(~2월)

② 재정지원정보 집계준비(~5월)

③ 재정정보 및 부처별 접수·검증·입력(~9월)

④ 대학알리미 공시(6월, 8월, 10월) 대국민서비스 연계(10월)

⑤ 분석보고서,통계연보,사업결과보고서 발간(~12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

① 기본계획 수립(~2월)

② 승인신청 접수 및 법인 재정여건 검토(~12월)

③ 학교법인별 승인액 통보(~1월)

④ 법인 추가부담여력 검토(~8월)

⑤ 승인위반 검토 및 사후관리(9월~)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① 기본계획 수립(~2월)

② 실태점검/회계감리 수행 회계법인 선정(~5월)

③ 실태점검/감리 수행(~8월, ~11월)

④ 결과보고 및 조치(~12월)

⑤ 사례집 발간(~12월)

대학기숙사 정보 집계·분석·공시

① 기본계획 수립(~2월)

② 기숙사정보 집계준비(~5월)

③ 기숙사정보 접수·검증(~9월)

④ 대학알리미 공시(10월)

⑤ 기숙사 운영 결과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분석보고(~12월)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평가 결과(등급)	목표	-	-	-	신규	우수	-	사립대학재정통계(국가승인통계) 자체진단 및 노력도 평가 합산 점수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 *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 ※자체통계품질 진단결과 평가제 (통계청 시행)	통계청 홈페이지
	실적	-	-	-	-	-			
	달성도	-	-	-	-	-			
고등교육 재정정보 통합서비스 이용건수 (단위:천건)	목표	-	-	신규	199	삭제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대학재정정보 기한 내 제공율 (단위:%)	목표	-	신규	100	100	삭제	-	-	-
	실적	-	-	100	-	-			
	달성도	-	-	100	-	-			
재정정보시스템 신뢰지수 (단위:%)	목표	99.9	99.9	삭제	-	-	-	-	-
	실적	99.9	99.9	-	-	-			
	달성도	100	100.0	-	-	-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지표개수 (단위:개)	목표	37	40	삭제	-	-	-	-	-
	실적	37	-	-	-	-			
	달성도	100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공시 이후 재정건전성 개선

○ '14년 최초 산출·공개 이후 8개 항목(총 9개) 지표 값 개선 효과

구분	교육투자				재무안정성		법인책무성	
	1인당 교육비 (백만원)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 비율	법인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2014	13.0	168.9%	21.0%	4.8%	57.0%	3.4%	4.5%	47.8%
2017	14.4	189.1%	22.1%	3.7%	54.4%	3.3%	4.8%	62.7%
비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개선

○ 적립대비 적립금 사용률

(단위 : %)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적립대비 적립금 사용률	93.2%	87.8%	99.2%	108.3%	107.3%

□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 시행 후 법인의 재정기여도 향상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입액 증가

(단위 :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입액	1,732	1,874	1,918	2,076	2,230

□ 학교법인 책무성 개선 및 수익재산 확충

○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단위 :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8%	47.8%	58.5%	60.6%	62.7%

□ 대학시설 확충에 따른 학생 교육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단위 :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교지 확보율	208.3%	205.6%	214.6%	220.7%	218.2%
▪ 교사 확보율	127.9%	130.7%	137.4%	141.4%	144.9%
▪ 학생기숙사 수용률	18.1%	18.3%	19.4%	20.3%	21.2%

□ 통계품질 고도화를 통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3년연속 '우수(최우수)' 등급획득

○ 총 107.6점 획득 (전체 평균 85.6점, 동종 통계 평균 82.6점)

(단위 :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기관 평균	재단 평균	전체 기관 평균	재단 평균	전체 기관 평균	재단 평균
▪ 사립대학 재정통계	83.0	96.8	85.6	103.9	85.6	10.76

※ 재단은 '13년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으로 지정된 후 '15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짐

[304]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54,379	55,940	55,940	-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2 - 2200 - 2232 - 304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입정책과장(송근현), 사무관(이정규), 주무관(이정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목적) ①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②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며, ③사회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고, ④대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개선 유도 및 역량 강화 지원** ▪ (내용)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 공정성 제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내실화, 논술 및 특기자전형 축소·폐지 유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확대, 고교-대학 연계활동 등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 - **입학사정관 인건비, 고른기회전형(농어촌·기초생활보장·장애인 등) 신입생 교육활동 지원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대입정보 고교 안내비용** 등으로 사용가능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14～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4년제 대학, 65개교 내외
지원조건	민간보조(국고보조금의 10% 이상 대학 대응투자 의무, 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참여기관) 4년제 대학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지원 **사업비 55,293백만원**

△사교육 부담이 큰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축소·폐지 유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대입 전형 단순화**,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예 : ABC인재전형 → 학생부교과전형(ABC인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완화 유도△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통한 **대학입시 전형 개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확대** 및 학교 적응 지원, △입학사정관 등 **학생선발 담당자 회피·제척**,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노력** 등을 **평가**하여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 **대입전형**(학종 등)에 대한 **이해 및 정보부족**으로 사교육, 컨설팅 등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직접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 연계활동, 모의전형 운영, 정보 소외지역 방문 상담** 등 **대입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도 제고, 평가결과 분석, 전형기획 및 설계 등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 및 신분 안정화, 사업기간(2년) 등**을 감안하여 **지원 단가**를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유지** (936백만원)

▪ (산출내역) 65개교 내외 × 평균 936백만원 × 10/11 = 55,293백만원

○ **사업관리 운영비 647백만원**

-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평가 수행, 사업 관리·운영, 개선 컨설팅 및 현장점검 등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 (산출내역) 사업비(55,293백만원) × 1.17% = 64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55,940	55,940
■ 선정대학 지원	55,293백만원 (65개교 내외 × 936백만×10/11)	55,293백만원 (65개교 내외 × 936백만×10/11)
■ 사업관리운영비	647백만원 (사업비×1.17%)	647백만원 (사업비×1.17%)

□ 지원 필요성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 **대입전형 간소화, 기회균형선발 확대, 대입 공정성 제고, 고교-대학 연계활동**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 필요

- 특히,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18.8.)에 따른 대입전형 개선 연구, 공정성·전문성 제고 노력 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국고 지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

○ **대학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50-6)

-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입시·학사 비리 관련 처벌 강화, 2021 수능개편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등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51-1),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51-4)

○ **대학입시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임
('17.12.28. 국가교육회의 위촉식)

○ 또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그동안('14~'17)** 학생부위주전형 도입 및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 규모 감소,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사업 시행 이후 대입전형 변화 추세]

대입전형 개선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논술전형 규모 감소	17,417명	15,349명	14,861명	13,120명
특기자전형 규모 감소	8,341명	7,569명	7,253명	6,353명
기회균형선발전형 모집 증가	30,394명	40,327명	38,994명	40,306명

[사업 탈락 이후 대입전형을 대폭 개선한 사례]

○ **성균관대** : '18학년도 논술전형 대폭 축소 (36.3% → 27.0%)

- 논술 규모가 큰 대입전형(2015학년도 입시 전체의 36.3%, 1,311명)을 가진 성균관대는 '15년 탈락 이후 '16년 사업에서는 논술을 대폭 축소하여 재진입

[사업에 낮은 평가순위를 받은 이후 대입전형을 대폭 개선한 사례]

○ **고려대** : 논술전형 폐지(1,110명→0명), 특기자전형 대폭 축소(615명→460명, △25.3%)

- 2015년도 사업에서 낮은 평가순위를 받은 이후('15년 6.5억원), 전폭적인 대입전형 개선을 거쳐 2016년도 사업에서 높은 평가순위('16년 16.6억원)

☞ **'15~'19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이라는 그간의 **사업성과를 유지**하면서, **대입 공정성 제고 및 정보제공 강화, 대입제도 개편** 등 **'21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을 개선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원이 축소될 경우**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대입전형을 개선해야 할 실질적 유인이 사라져서,** 사교육 유발요인과 **대입전형료 수입이 높은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등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됨**

[사업 미신청·탈락 대학 중 정부 대입정책과 역행하는 사례]

○ **이화여대** : 사업 중단 이후 **'19학년도 논술고사 모집인원 확대**(545→670명)

○ **성신여대** : '19학년도 **논술고사 재신설**(311명)

○ **한양대**(ERICA) : '18학년도 **논술고사 모집인원 대폭 확대**(465명→500명)

* '16년에 사업에 미신청하면서 '18학년도 논술 모집인원 확대

○ **한성대, 평택대** : '18학년도 **적성고사 재신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지원**	**54,379**	**55,940**	**55,940**	**-**	**-**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53,741	55,293 (65개교 내외 × 936백만×10/11)	55,293 (65개교 내외 × 936백만×10/11)	-	-
■ 사업관리운영비	638	647 (사업비×1.17%)	647 (사업비×1.17%)	-	-
□ **비목**(합계)	**54,379**	**55,940**	**55,940**	**-**	**-**
○ 민간경상보조(320-01)	54,379	55,940	55,940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이 학생·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4,379	■(사업비) 60개교 내외 × 986백만 × 90.9%=53,741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638백만원			
'18	55,940	■(사업비) 65개교 내외 × 교당 936백만× 보조90.9%=55,293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647백만원	55,940	■(사업비) 65개교 내외 × 교당 936백만× 보조90.9%=55,293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647백만원	-
'19	54,379	■(사업비) 60개교 내외 × 986백만 × 90.9%=53,741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638백만원	55,940	■(사업비) 65개교 내외 × 교당 936백만× 보조90.9%=55,293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647백만원	1,561
'20	107,982	■(사업비) 70개교 내외 × 교당 1,224 × 보조 90.9% = 77,820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910백만원	54,379	■(사업비) 60개교 내외 × 986백만 × 90.9%=53,741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638백만원	△53,603
'21	107,982	■(사업비) 70개교 내외 × 교당 1,224 × 보조 90.9% = 77,820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 910백만원	54,379	■(사업비) 60개교 내외 × 986백만 × 90.9%=53,741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638백만원	△53,603
'22			54,379	■(사업비) 60개교 내외 × 986백만 × 90.9%=53,741백만원 ■(사업관리비) (사업비 × 1.17%) =638백만원	54,379
연평균 증가율 (%)	18.7		△0.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5,940	55,940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777	777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89	13.8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4>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320-01) 55,940백만원을 <표2→표4>의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교육서비스' 부분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 559.4억원 ÷ 0.72 = 776.9명 **□ 2018년 고용효과** - 559.4억원 ÷ 0.72 = 776.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사업비 중 일부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으로, ○ 사업비 증액 시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국고지원금의 10%이상을 대응투자하게 함으로써 입학사정관 고용안정에 기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정과제, 고등교육법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대입전형 개선 관련 국정과제 >

50-6.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① 사교육 유발 대입전형 단계적 폐지 및 대입전형 단순화
② 대입정보 안내 강화 및 전형절차 간소화
③ 대입공정성 제고
④ 중장기 대입제도 추진
⑤ 대입정책 사전 발표 법제화

51-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지원 강화
①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확대
③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학계열 입학기회 확대

51-4.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①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5. 대학의 평가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추진경위

- '07년 참여정부 말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 지원('07~'13)

※ (입학사정관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창의성·사고력 등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학생이 고교 밖에서 수상한 실적까지 포함)

- '14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여 대학의 대입전형을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유도('14~)

※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창의성·사고력 등 잠재력을 학생부, 면접, 자기소개서 등을 활용하여 종합 정성평가(외부수상실적 제외)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610	-	510	459	-	544		5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및 이월액, 불용액은 없으며, 실집행 불용액은 부정·비리대학 제제로 인한 지원금 삭감액, 대학 지원금 집행 잔액 등임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10 (510)**	( )	( )	510 (510)	**510 (508)**	( )	0 (2)
'16년	**459 (459)**	( )	( )	459 (459)	**459 (453)**	( )	0 (1)
'17년	**544 (544)**	( )	( )	544 (544)	**544 (531)**	( )	0 (13)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4,379		58,940	△3,000	55,940	55,94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사업 지원대학 중 선행학습금지법 위반대학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총30억원 감액

※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시 제제 강화 반영 완료('18.2)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회 위반 시 **감점**, 2년 연속 위반 시 **가중감점 및 사업비 삭감**, 3년 연속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 집행현황

▪ 2018년 사업비 55,940백만원 중 55,940백만원(100%)을 사업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교부('18.7)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2017년 우수(86점), 2018년 보통(88점)

2) 2016년 국고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 정상추진(지속지원)

3) 국회 및 감사원

< '16회계연도 교문위 결산 >

○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을 정비·강화하여 다른 입학전형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사업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시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것

➡ 2018년 기본계획 수립시 평가지표로 반영('18.2)

< '17년 국정감사 >

○ 연세대 등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불합리한 예산지원(노웅래의원)

➡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시 제제 강화 반영('18.2)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회 위반 시 감점, 2년 연속 위반 시 가중감점 및 사업비 삭감, 3년 연속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 예정처 '1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

○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 재선정 대학에게 평가결과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19년 중간평가 및 재선정 평가 시 탈락 후 재진입한 대학에 대한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예정('19.2.)

< 감사원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17.3.6) >

○ 전형관련 평가항목 비중을 다른 평가항목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교육 유발도가 높은 전형을 축소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 필요

➡ 사업계획 수립 시 대학별고사, 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도가 높은 전형을 축소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마련('17.2)

* 대학별고사/특기자 전형의 합리적 운영 : ('16) 각각 -6~0점 → ('17) 각각 -10~0점, -12~+2점

○ 전년도 실적평가 결과가 지원대학 선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총점100점, 가감점 ±2점),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 미진 대학에 대해 지원중단 등 구체적 제제기준 마련 필요

➡ 2017년 사업계획에 2016년 사업운영 결과 등을 평가하여 하위 10여개교 지원중단 계획 반영('17.2), 이를 근거로 중간평가를 통해 9개교 지원 중단('17.5)

➡ 또한, '18년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평가 배점 강화(가감점 ±2점('17) → ±5점('18)) 및 중간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지원 차년도 사업 배제 반영('18.2)

< 감사원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17.11.6) >

○ 중간평가 탈락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 될 경우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19년 중간평가 및 재선정 평가 시 탈락 후 재진입한 대학에 대한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예정('19.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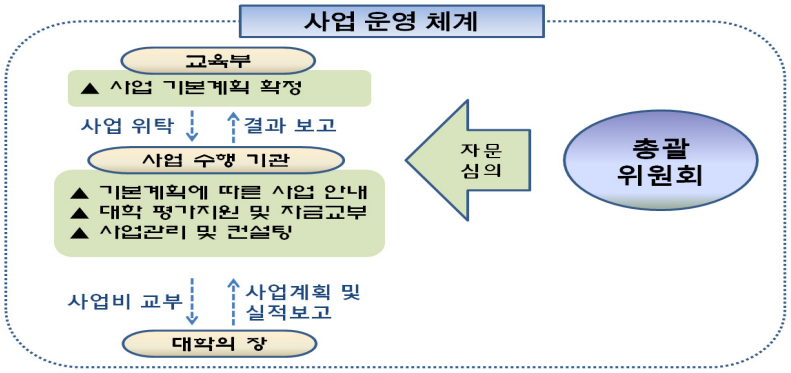

-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교협에 업무위탁
- 대교협은 별도의 사업담당팀을 구성하여 세부사업운영계획 수립, 사업공고, 선정평가, 지원대학 컨설팅 및 연차평가,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실시
- 사업 참여 대학은 총장이 사업수행의 최종책임자가 되며, 입학관련 전담부서의 장을 사업수행 책임자로 하여 사업 추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원내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 학생 수 (명)	목표	12,500	-	-	-	-	전년 실적 (11,500명)을 고려하여 8.7% 상향 설정	16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상 정원내 고른기회 입학 전형 선발 학생수	'16학년도 대교협 전형시행계획 발표자료
	실적	15,814	-	-	-	-			
	달성도	127	-	-	-	-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비율 (%)	목표	-	62	-	-	-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설정	(학생부위주전형 모집인원)/(전체 모집인원)×100	'18~'1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실적	-	63.9	-	-	-			
	달성도	-	103.1	-	-	-			
학생부 위주전형 정보제공 학교 비율(%)	목표	-	-	80	-	-	사업 선정 교를 기준으로 80%를 목표로 설정	(학생부위주전형 정보제공 학교수/(전체 선정학교 수)*100 ※ 단순 대입설명회가 아닌 학생부위주 전형 안내자료 발간, 모의평가 운영 여부 등을 확인	'17년 사업실적 보고
	실적	-	-	91.9	-	-			
	달성도	-	-	114	-	-			
기회균형 선발(고른기회) 전형 모집비율(%)	목표	-	-	-	12	13	최근3년간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설정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전체 모집인원)×100	'19, '20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자료
	실적	-	11.0	11.4	12.4	-			
	달성도	-	-	-	103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1) 2018년 사업 선정평가 지표

2) 2015~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현황

참고 1 2018년 사업 선정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20)	■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전형방법 수 축소 노력 등(7) ■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3) ■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10) - 전형정보 충분성, 이해 용이성 등 - 대입정보포털(ADIGA) 정보공개, 기출문제 공개 등 대학 독자적 노력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12) -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 - 유사도 검증 규정·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 -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 -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등 ■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4) ■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2)	
3.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20/ -25~0)	■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17)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다수-다단계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고교 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노력(3)	
	■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5~0) -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등 * 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위반비율 등에 따라 감점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제재	
4. 고른기회전형 운영 (15)	■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공정성(5)	
5. 대입전형 운영 여건(15)	유형 I	■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 및 계획(6) ■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현황 및 계획, 인건비 대학부담액 확대 계획(6) ■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현황 및 계획(3)
	유형 II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운영 노력(10) ■ 대입전형 운영 전산화(5)
6. 사업 및 예산계획(10)	■ 고교-대학 연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5) ■ 예산계획의 적절성(5)	
총계	100점 (-25 ~ 0)	
가·감점	2017년 실적평가('17년 지원대학 62교 대상)	-5~+5
	2016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부정·비리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참고 2 2015~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원대학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2015		2016		2017		2018		비고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1	가톨릭대	7.2	가톨릭대	11.6	가톨릭대	9	가톨릭대	9.9	
2	강남대	6.8	건국대	5.4	강릉원주대	4.1	강남대	7.6	
3	강원대	7.1	경기대	4.7	건국대	9.4	강릉원주대	2.4	유형II
4	건국대	17.0	경북대	9.4	경기대	8.7	강원대	6.1	
5	경기대	13.0	경상대	6.9	경북대	6.8	건국대	12.3	
6	경북대	11.5	경인교대	2.5	경상대	7.2	건[illegible]글	3.0	유형II
7	경상대	8.0	경희대	19.1	경인교대	3.2	경기대	10.2	
8	경인교대	3.5	계명대	5.5	경희대	19.3	경북대	10.9	
9	경희대	15.0	고려대	16.6	계명대	10	경상대	10.6	
10	계명대	6.8	공주대	12.3	고려대	22.7	경인교대	2.7	
11	고려대	6.5	광운대	4.9	공주대	9.1	경희대	16.6	
12	공주대	6.0	광주교대	2.0	광운대	4.6	계명대	9.9	
13	광운대	6.7	국민대	7.4	광주교대	3.3	고려대	15.6	
14	광주교대	2.0	군산대	2.2	국민대	12.4	공주대	13.1	
15	국민대	19.0	금오공대	2.3	군산대	3.6	광운대	6.9	
16	단국대	13.0	단국대	13.4	금오공대	3.8	광주교대	4.0	
17	대구교대	2.5	대구대	2.6	단국대	12.1	국민대	10.9	
18	대진대	4.3	대진대	4.6	대구교대	2	군산대	2.7	유형II
19	동국대	9.9	동국대	9.9	대구대	8.6	금오공대	4.4	
20	동아대	11.2	동아대	13.9	대진대	5.2	단국대	8.7	
21	동의대	8.9	동의대	7.8	동국대	11.4	대구대	9.9	
22	명지대	6.5	명지대	15.5	동아대	12.7	대구한의대	3.6	유형II
23	목포대	3.3	부경대	5.7	동의대	10.8	대진대	6.9	
24	부경대	5.7	부산가톨릭대	7.6	명지대	13.5	동국대	8.6	
25	부산가톨릭	4.4	부산교대	3.4	부경대	9	동아대	11.7	
26	부산교대	4.5	부산대	4.3	부산가톨릭대	6.8	동의대	9.9	
27	부산대	4.2	상명대	5.0	부산교대	4	명지대	12.3	
28	서울과기대	8.1	서강대	7.2	상명대	7.9	부경대	8.4	
29	서울교대	2.5	서울대	20.0	서강대	4.5	부산가톨릭대	9.8	
30	서울대	25.0	서울시립대	5.0	서울대	20.7	부산교대	3.9	
31	서울시립대	7.8	서울여대	9.0	서울시립대	5.4	부산대	4.7	
32	서울여대	11.5	선문대	5.0	서울여대	12.6	서강대	8.7	
33	선문대	6.9	성균관대	4.7	선문대	7	서울과기대	6.2	
34	성신여대	9.1	성신여대	8.4	성균관대	7.9	서울대	20.7	
35	세종대	4.9	세종대	4.1	세종대	5.4	서울시립대	6.3	

연번	2015		2016		2017		2018		비고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대학명	지원액	
36	숙명여대	9.0	숙명여대	8.8	숙명여대	10.2	서울여대	10.1	
37	순천향대	9.6	순천향대	6.5	순천향대	12.2	선문대	8.9	
38	숭실대	8.6	숭실대	8.6	숭실대	9.2	성균관대	9.5	
39	아주대	5.5	아주대	6.9	아주대	12.4	세종대	5.0	
40	안동대	4.4	안동대	3.3	안동대	2.7	숙명여대	8.0	
41	연세대	6.5	연세대	3.1	연세대	8.8	순천대	4.3	
42	원광대	5.2	영남대	3.8	우석대	3.2	순천향대	10.2	
43	이화여대	6.5	원광대	3.4	원광대	7.1	숭실대	10.6	
44	인천대	5.3	이화여대	7.1	인천대	4.8	아주대	10.9	
45	인하대	8.5	인하대	7.4	인하대	11.5	안동대	4.3	
46	전남대	6.5	전남대	4.7	전남대	10	안양대	5.1	
47	전북대	6.5	전북대	6.7	전북대	8.7	우석대	2.1	유형Ⅱ
48	전주대	6.8	전주대	6.8	전주대	8	원광대	7.1	
49	조선대	9.3	조선대	7.2	조선대	8.7	인천대	7.9	
50	중앙대	9.5	중앙대	4.1	중앙대	9.6	인하대	12.3	
51	춘천교대	2.0	진주교대	2.0	진주교대	1.8	전남대	11.9	
52	충남대	5.5	충남대	3.2	청주교대	2.7	전북대	8.1	
53	충북대	5.9	충북대	8.3	충남대	9.2	전주대	12.1	
54	포항공대	8.8	포항공대	9.1	충북대	6.3	조선대	10.0	
55	한국교원대	2.5	한국교원대	2.2	포항공대	7.1	중앙대	10.5	
56	한국교통대	5.6	한국교통대	5.6	한국교원대	2.6	진주교대	2.6	
57	한국외대	12.5	한국외대	8.4	한국교통대	5.7	청주교대	2.8	유형Ⅱ
58	한동대	8.3	한동대	8.4	한국외대	10.9	충남대	8.0	
59	한림대	5.8	한림대	5.8	한남대	6.4	충북대	9.2	
60	한양대	13.0	한양대	7.6	한동대	8	한경대	3.5	
61					한림대	5.7	한국교원대	3.0	
62					한양대	9.5	한국교통대	5.8	
63							한국외대	6.7	
64							한남대	8.1	
65							한동대	7.8	
66							한림대	9.0	
67							한밭대	6.4	
68							한양대	10.9	

[306]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9,582	12,251	13,896	**1,645**	**13.4**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2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국장(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강소희, 홍기욱)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4~6개월), 한·미 대학생 연수(WEST, 6~18개월), 파란사다리(1개월)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4개 내역 사업 2,000명 지원
지원조건	직접 수행 및 민간보조(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정부 지원금 대비 대학 50%, 전문대학 30%, 파란사다리 사업은 30% 이상 매칭)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18년 기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전문대학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13,896백만원**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621백만원**

- 전략 진출 국가 확대,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외국어·전공실무능력**을 **배양**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비**(전년 동)
- 산출내역 : 621백만원(참가자지원 5.7백만 × 100명 + 운영비 51백만)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3,256백만원**

- 전문대학생에게 **해외진출** 유망국가 및 분야 **선도모델 구축**으로 **해외진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전년 동)
- 산출내역 : 3,256백만원(참가자지원 7.7백만 × 400명 + 운영비 176백만)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 5,199백만원**

- 대학생에게 최장 18개월 기간의 **미국 어학연수, 인턴**이 결합된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전년 대비 75백만원 증)**
- 산출내역 : 5,199백만원(참가자지원 15백만 ×300명 + 운영비* 699백만)

※ ('18) 5,124백만원(운영비 624백만원) → ('19) 5,199백만원(운영비 699백만원)

* 미국 현지 관리 인력 1명 추가, 국내 계약직 임금 인상 등으로 75백만원 증액

○ **파란사다리 : 4,820백만원**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진로개발**을 위하여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진로·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희망 사다리 실현을 위한 사업비**(전년 대비 1,570백만원 증)**
- 산출내역 : 4,820백만원(참가자지원 3.5백만 × 1,200명 + 운영비 620백만)

※ ('18) 3,250백만원, 선발 800명 → ('19) 4,820백만원, 선발 1,200명

※ 권역별 주관대학('18년 10개 → '19년 15개 내외)을 통해 4주간 해외 연수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2,251백만원	13,896백만원
■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지원인원 100명 관리운영비 51백만원	지원인원 100명 관리운영비 5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인원 400명 관리운영비 176백만원	지원인원 400명 관리운영비 176백만원
■ WEST	지원인원 300명 관리운영비 624백만원	지원인원 300명 관리운영비 699백만원 ※ 운영비 75백만원 증
■ 파란사다리	지원인원 800명 관리운영비 450백만원	지원인원 1,200명 관리운영비 620백만원 ※ 사업비 1,400백만원 증(인원 400명 증), 운영비 170백만원 증(주관대학 5교 증)

□ **지원 필요성**

○ **(지원 필요성)** 대학생들에게 **체계적·단계별 해외 직무 경험 제공**과 **해외 취·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연계 지원**하여 장기적인 **해외 진출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및 **글로벌 직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
- 재학 단계에서 **전공과 연계**하여 산업 **현장 직무 경험**을 **'사전교육-국외 현장학습-사후관리'** 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 취업 등 청년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양성**에 기여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글로벌 경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직업탐색 기회** 등 **제공**을 통해 **교육 기회 균등 실현**

※ 취업취약계층 참여율('17) : 직접일자리사업 관련 정부합동지침 상 참여목표, 10% → 동 사업 취약계층 참여율 실적 34.1%

※ **해외 인턴과정 이수자의 현지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인턴 수료자 88.9% vs. 일반졸업자 51.7%(2015년 한국외대 건강보험 DB자료)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생의 체계적 진로 설계 및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의 **성과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대학 및 파견 학생 수 확보** 필요

※ 중동, 중남미와 같이 국가발전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의 파견을 통해 특수 외국어 전공 학생들의 현지 경험 및 전공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나, 예산 감액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로의 파견에 어려움 있음
: ('09) 40대학 300명 31개국 → ('13) 23대학 143명 12개국 → ('17) 17대학 106명 15개국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학생**의 **높은 취약계층 비율**과 **해외진출 관심** 및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필요**

■ 해외 취업 **유망 국가 및 전공 분야별** 글로벌 현장학습 **선도 모델 구축**을 통하여 **장기적·체계적**인 진로 설계 및 **해외진출 인력양성 추진**

※ 전문대 해외취업(졸업자/해외취업자 수) : ('15) 176,974명/ 381명(0.22%) → ('16) 178,026명/ 946명(0.53%) → ('17) 176,664명/ **1,038명(0.59%)**

※ '전문대학이 청년 해외취업을 이끈다' 해외 취업 대박을 터트린 전문대학: **전문대학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적 지원이 절실**('18.2.28, 매일경제)

■ 전문대학과 재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을 키우는 최선의 사업으로 **지원 인원 확대, 실질적 해외 취업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해외 교육기관 확대 경비** 등 적극적인 정부 예산 지원 필요

○ **(WEST)** 최장 18개월 동안 **글로벌 직무 역량 제고** 및 **선진 문화 체험**을 통한 **국내·외 진출** 등 **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WEST **사업 확대 지속 필요**

※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 한·미 상호 교육 교류 지속 필요

※ WEST 참가 경쟁률 ('15) 3.27:1 → ('16) 4.48:1 → ('17) 4.40:1

■ **미국 내 참가자 관리**(프로그램 단계별 면담, 선·후배 멘토링, 기수별 교류 활성화 등) 및 **현지동향 파악**을 위한 **현지 관리 보강 필요**

※ 참가자 상담 등 관리, 현지 교류 활성화 등 현지 참가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지 전담인력(1명) 추가 배치 필요 :** 프로그램 관리 지원부분에서 **현지 지원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16.12. WEST 정책연구 중 WEST 참가자 포커스 그룹 면접 결과)

○ **(파란사다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진로개발을 위한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연수 및 진로·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

■ 저소득층 등 환경적 어려움에도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대학**에서의 **진로 체험 활동, 문화 교류** 등을 지원

※ 전원 취약계층 대상 특화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가능

■ 권역별 주관대학을 통해 해외연수를 위한 사전 **어학** 및 **외국 문화 이해 교육**과 **사후 멘토링** 등의 사전·사후 활동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구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9,582**	**12,251**	**13,896**	**1,645**	**13.4**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625	**621** (5.7백만X100명 +운영비 51백만)	**621** (5.7백만X100명 +운영비 51백만)	**-**	**-**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620	**3,256** (7.7백만X400명 +운영비176백만)	**3,256** (7.7백만X400명 +운영비176백만)	**-**	**-**
■ WEST	5,337	**5,124** (15백만X300명 +운영비624백만)	**5,199** (15백만X300명 +운영비699백만))	**75**	**1.5**
■ 파란사다리	-	**3,250** (3.5백만X800명 +운영비450백만)	**4,820** (3.5백만X1,200명 +운영비620백만)	**1,570**	**48.3**
□ **비목**(합계)	**9,582**	**12,251**	**13,896**	**1,645**	**13.4**
○상용임금(110-03)	254	266	319	53	19.9
○일반수용비(210-01)	77	99	96	△3	△3.0
○공공요금(210-02)	1	-	3	3	순증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임차료(210-07)	8	5	5	-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일반용역비(210-14)	109	90	90	-	-
○국내여비(220-01)	11	11	11	-	-
○국외업무여비(220-02)	23	26	26	-	-
○사업추진비(240-01)	16	15	15	-	-
○정책연구비(260-02)	49	13	-	△13	순감
○민간경상보조(320-01)	8,920	11,627	13,197	1,570	-
○고용부담금(320-09)	44	27	45	18	13.5
○해외경상이전(340-01)	66	68	85	17	66.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 해외 현장실습으로 취업 전 단계의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원의 안정성 담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475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1명+운영비 46백=625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51백= 2,480백만원 ■ WEST 15백×310명+695백=5,370백만원			
'18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 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
'19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13,896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99백= 5,199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1,200명+운영비620백=4,820백만원	1,645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22,052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00명, 1,280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800명, 6,700백만원 ■ WEST 400명, 7,100백만원 ■ 파란사다리 1,400명 6,972백만원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 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9,801
'21	22,052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00명, 1,280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800명, 6,700백만원 ■ WEST 400명, 7,100백만원 ■ 파란사다리 1,400명 6,972백만원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 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9,801
'22			12,251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5.7백×100명+운영비 51백=621백만원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7.7백×400명+운영비176백= 3,256백만원 ■ WEST 15백×300명+624백= 5,124백만원 ■ 파란사다리 3.5백×800명+운영비450백=3,250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31.1		0.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6">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2,251</td><td>13,896</td><td>1,645</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235</td><td>238</td><td>3</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235</td><td>238</td><td>3</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19.2</td><td>17.1</td><td>△2.1</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9.2</td><td>17.1</td><td>△2.1</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직접일자리 사업 고용효과 산출방식 적용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2>
2)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표3></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6.79억원 ÷ 0.2628억원 = 25.8명
② 212.5명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1) 인건비 총액 : 상용임금(110 - 03), 복리후생비(210 - 12), 고용부담금(320 - 09), 해외경상이전(340 - 01), 민간경상보조(320 - 01) 일부(사업관리운영비)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 ' 사업지원서비스업 ' 1인당 연평균임금 총액 0.2628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2018년 고용효과
① 5.91억원 ÷ 0.2628억원 = 22.5명
② 212.5명
※ 직접일자리사업(2018년 기준)은 4개 내역사업 중, 3개사업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WEST</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 비목</td><td>'18년</td><td>'19년</td></tr>
<tr><td>○일반수용비(210-01)</td><td>0.985억원÷0.94억원=1.0명</td><td>0.96억원÷0.94억원=1.0명</td></tr>
<tr><td>○특근매식비(210-05)</td><td>0.01억원÷0.76억원=0.01명</td><td>0.01억원÷0.76억원=0.01명</td></tr>
<tr><td>○임차료(210-07)</td><td>0.05억원÷1.11억원=0.1명</td><td>0.05억원÷1.11억원=0.1명</td></tr>
<tr><td>○일반용역비(210-14)</td><td>0.90억원÷0.39억원=2.3명</td><td>0.90억원÷0.39억원=2.3명</td></tr>
<tr><td>○국내여비(220-01)</td><td>0.11억원÷0.88억원=0.1명</td><td>0.11억원÷0.88억원=0.1명</td></tr>
<tr><td>○일반연구비(260-01)</td><td>0.13억원÷0.89억원=0.1명</td><td>0.00억원÷0.89억원=0명</td></tr>
<tr><td>○민간경상보조(320-01)</td><td>81.5억원÷0.39억원=208.9명</td><td>81.5억원÷0.39억원=208.9명</td></tr>
<tr><td>계</td><td>212.5명</td><td>212.5명</td></tr>
</table>
</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 (사후 관리) 유관 사업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성과 관리
- 사후 관리 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발하여 성과 확산, 본 사업의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의 K-MOVE 등의 해외 취업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
○ (성과 관리) 2018년부터 예산 성과지표로 '참여자 만족도'를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제고
※ 졸업 후 실제 취업연계율은 참여자 개별 조사에 대한 한계가 있음
※ 취업 취약계층 우대 선발 유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지속
○ (대학 역량 강화)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컨설팅</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 (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7.12 : 대통령 공약 제시(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 ’08. 4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약식 및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종합계획 발표
- ’08. 8 : WEST 프로그램 시행 합의(한·미 정상회담)
- ’09.10 : 글로벌리더해외인턴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글로벌 청년리더 정부지원협의회)
- ’10. 7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보고(국무회의)
  ➡ 정부해외인턴사업 예산(6개 부처 10개 사업, 215억원)을 교과부 주관으로 통합·운영(’ 10.12)
- ’11.10 : 한·미 정상회담에서(’11.10.11~10.16) WEST 프로그램 확대 합의
- ’12. 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09~’13)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총리실)
- ’12.12 : 대통령 공약 제시(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13. 5 : 한·미 정상회담(’13.5.7~5.11)에서 WEST 프로그램 연장 합의
- ’13.12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K-Move 사업 포함 대통령 보고
- ’14. 1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예산 및 사업 분리
  - 취업연계형 인턴사업을 고용부로 이관
- ’14. 3 : 한·독 정상회담 직업교육훈련 교류협력 합의, 공동의향서(DOI) 체결
- ’14. 8 : 독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신규 추진
  - 함부르크 고등직업교육프로그램 간호분야 시범 운영
- ’14. 9 : 교육부-함부르크 주정부 직업훈련 협력 장려에 관한 공동의향서(DOI) 체결
- ’15. 7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열린 선발’ 시범 추진
  -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학점, 어학성적에 없이 선발
- ’15.10 : 해외인턴포털을 월드잡플러스(해외통합정보망, 고용부)에 통합
- ’15.12 :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발표(대외경제장관회의)
  ➡ K-Move 사업 간 연계 강화 추진(해외진출 유망분야 참여 지원 및 취약 계층 참여 확대)
- ’16. 2 : 대학 졸업생(졸업예정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WEST 플러스’ 신규 추진
- ’16.12 : 2017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포함
- ’17.12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포함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19.74	101.01	101.01	83.17	83.17	84.75	96.15	122.5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연도별 이월·불용 사유

- (2015년) WEST 정책연구 계약기간 연장으로 20백만원 이월 및 WEST 운영비 직접 집행 잔액 29백만원
- (2016년) WEST 기간제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및 사업 운영비 직접 집행 잔액 34백만원
- (2017년) WEST 기간제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및 사업 운영비 직접 집행 잔액 33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1.01 (93.97)**	( )	( )	101.01 (93.97)	**100.52 (93.28)**	0.2 ( )	0.3 (0.7)
’16년	**83.17 (76.05)**	0.2 ( )	( )	83.37 (76.05)	**83.03 (75.73)**	( )	0.3 (0.3)
’17년	**96.15 (89.2)**	( )	( )	96.15 (89.2)	**95.82 (86.7)**	(1.6)	0.33 (0.9)

※ ‘17년 실집행액은 ’18.11월말 기준(WEST 사업은 18개월 파견 과정이 포함되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집행이며 정상집행중)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예정)	집행률
8,475	9,615	12,251	-	12,251	12,194	99.5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6.2억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2.6억원, WEST 50.7억원, 파란사다리 32.5억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 : 우수

○ ‘15년 재정사업자율 평가 : 보통

○ ‘15년 교문위 결산

▪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대상자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설정 및 성과지표 및 목표치 개선 (‘17년 개선완료)

○ ‘16년 교문위 결산
▪ WEST 플러스 사업의 필요성 점검 및 개선 검토
⇒ 졸업생 대상 WEST 플러스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별도 추진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 재학생 대상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 (‘18년 중 성과분석)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중점 사항	주요내용
일본	▪ 어학능력 및 異문화 이해 ▪ 국제비즈니스	▪ 해외체재형 어학연수 및 타 문화 이해를 위한 연수(비즈니스 문화차이,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 국제 비즈니스 실무연수 - 영문계약서, 영문 재무제표 읽는 법 등
현대중공업 (아산나눔재단)	▪ 19세 이상 국내 남·녀 청년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및 청년 도전정신 고취 ▪ ’12년부터 매년 1,000명씩 해외인턴파견 지원 ▪ 해외 현장 및 법인에서 업무수행 활동
아주대학교 (After you)	▪ 취약계층 대학생 언어·문화해외연수	▪ ‘15년부터 본교 및 경기도소재 취약계층 대학생 대상 언어·문화집중교육(미국, 중국)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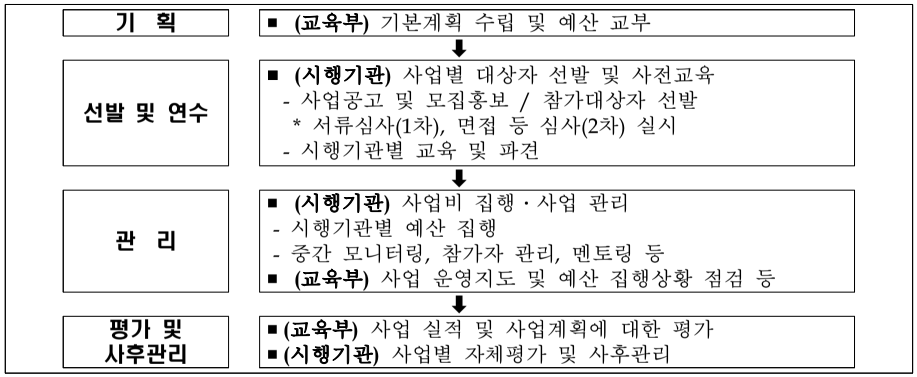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단위: %)	목표	30	37	43.4			전년 대비 실적치 상승률 및 예산을 고려 ‘17년 목표치 설정	(취업취약계층 참여자수/전체파견자수)×100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43.4	46.01	34.1	-	-			
	달성도	144.7	124.4	78.6	-	-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단위: %)	목표	-	-	(신규)	71.4	72.4	신규지표임을 감안하고 ‘17년 보조사업 성과목표치(70점) 대비 2% 상향 설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17년 실적) ’17년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검증 기준 변경*으로 인한 참여율 하락(*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의 검증에 의해서만 취약계층 학생 선정)

※ (대상사업)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WEST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설명자료
○ (참고2)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통계

참고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요

□ 개 요

○ **(목적)** 자기 개발·진로 탐색에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양성

○ **(대상)** 대학생 및 전문대학생(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발 우대**)

○ **(과정)** 사전연수 → **해외연수(어학, 인턴십, 진로탐색 등)** → 사후관리

□ 사업별 주요 내용(2018년 기준)

○ **(글로벌 현장학습)** 국내 사전연수(40~50시간) 후, 대학 또는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해외 기관에서의 전공 연계 현장 학습**(4~6개월) 후 **학점 부여**

※ (대학 대응 투자) 대학 50% 이상, 전문대학 30% 이상

○ **(한·미 대학생 연수; WEST)** 한·미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대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에게 미국 어학연수(2~4개월), 인턴십(3~12개월), 여행(1개월) 지원

* **한-미 정상회담 시, WEST 시행 합의**('08.8.6.), '13년 연장 체결

※ (재학생·졸업생 대상) 장기(18월), 중기(12월), 단기(6월)/ (졸업생 대상) 플러스(12월)

○ **(파란사다리)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4주 간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개발 및 글로벌 역량** 향상 지원(2018 신규 추진)

※ 주관대학에서 30% 대응 투자를 통해 본교생 및 타교생(10%이상) 선발

※ **(권역별 주관대학)** [수도권] 건국, 삼육, 아주, 한경/ {충청·강원} 강원, 충남/ [대구·경북] 대구가톨릭, 대구/ [호남]전북 / [부산·경남] 동의대

[2018년 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시작연도	예산 (백만원)	인원 (명)	파견기간	참여대상	국고지원금액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장학재단	'09	621	100	4~6개월	대학 재학생 (4학기 이상 수료자)	290~540만원 (저소득층추가지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05	3,256	400	4~6개월	전문대 재학생 (2학기 이상 수료자)	450~800만원 (저소득층추가지원)
WEST	국립국제교육원	'09	5,124	325	6/12/18개월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402~2,426만원 (소득분위별차등)
파란사다리	한국장학재단	'18	3,250	800	4주	대학·전문대 재학생 (취약계층)	350만원

참고2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통계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파견인원('05~'18)

사업명	추진실적(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WEST	340	377	375	373	401	394	322	318	325	321	3,566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00	329	373	233	143	183	147	130	106	111	2,055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912	653	589	612	558	549	536	267	458	409	5,54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28	20	19	19	20	-	-	-	106
파란사다리	-	-	-	-	-	-	-	-	-	819	819
합계	1,552	1,359	1,365	1,238	1,121	1,145	1,025	715	889	1,680	12,089

* '18년 하반기 WEST 선발인원 126명의 경우, 파견시기(12월)까지 변동 가능

□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연평균	13.3	36.2	37.6	39.2	43.7	46.0	34.1	67.4	30.7
WEST	23.2	39.7	50.4	59.4	67.1	71.7	64.6	49	41.7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5	32.6	30.5	20.9	25.2	15.4	10.4	20	12.7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13.4	34.8	30.1	30.2	34.3	30.3	17.9	32.5	20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7.1	55.0	40.0	57.9	55	-	-	-	40.2
파란사다리	-	-	-	-	-	-	-	100	100

* '18년 하반기 WEST 선발 비율의 경우, 파견시기(12월)까지 변동 가능

※ 10%('11) → 30%('12)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목표율 10%이나 '12년 예산 심의 시, 국회 상임위 부대조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30% 선발 추진

⇒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검증 방법 변경(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으로 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참여율 하락(각 사업별 일자리사업 목표율 10%는 달성)

[308] 고등교육의국제화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9,702	935	935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2 - 308
* 담 당 자 : 국제협력관(공석), 교육국제화담당관(강정자), 사무관(유지선, 이현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국내 교원양성기관이 다문화·국제화 교육역량을 갖춘 예비교사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세계적 수준의 외국학교의 국내 분교 질적 수준을 관리(운영점검, 컨설팅 등)하고 분교설립을 심사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사업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대학,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교육과정 확대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비 755백만원**

- **사업 후반기(총 12년 중 7년차)에 진입**하여 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완성을 위해 교·사대 내 글로벌·다문화 교원양성 **교육과정 확대** 및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성과공유·확산**(4개 거점대학 수업경연대회 → 전국대학 참여대회로 확대 및 교육과정 공유 등)
- **산출내역** : 755백만원
  - 글로벌교원양성 거점대학(GTU : Global Teacher University) 지원 사업비 : 720백만원(4교×180백만원)
  - 관리비 : 35백만원(1식×3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비 180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른 설립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 기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질 관리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 국내 진출·안착 지원
- **산출내역** : 180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및 제도개선 비용 : 100백만원(위원회 개최비용, 심사관련 자문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비용 등)
  - 질 관리 비용 : 80백만원(정보시스템 운영, 외국교육기관 현장실사 및 컨설팅 등)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935	935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755 (180백만원*4개대학)+운영비(35백만원)	755 (180백만원*4개대학)+운영비(3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관리	180 (설립심사비(100) + 질관리(80))	180 (설립심사비(100) + 질관리(80))

□ 지원 필요성

①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국내 학교현장의 급격한 다문화·국제화*에 따라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다문화·국제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사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할 필요

* 국내 초·중등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 : ('09) 0.35% → ('11) 0.55% → ('15) 1.4% → ('18) 2.2%

○ 교·사대 학생들에게 **국내·외의 다문화·국제화 교육 현장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체험·실습할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로서 **역량 신장**

※ 교육봉사, 교육실습, 학생과의 1:1 멘토링, 관련주제에 대한 수업·발표대회 등

○ **다문화 사회를 책임질 교원 양성**을 위해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의 학교·교원양성기관과의 다양한 교육협력프로그램 추진

○ 선진국의 경우 자국 내 글로벌 교육역량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학생의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우수한 교원 선발 및 양성의 결과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교원양성분야 협력 희망

☞ 사례) (미국) 양국 교육장관회의시 의제화, (영국) 교육장관간 MOU체결 희망 등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관리

○ **국제화 진행에 따른 국내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필요에 따라 각 지자체(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설립심사 신청의 증가**가 **예상**, **설립심사비용**의 **확보**가 절실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충을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 중으로 외국교육기관 신청이 더욱 증가할 전망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확보되었으나, 대내외적 경제 상황 및 제도적 여건 등으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어려움 존재하고 **질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관련 **제도개선 및 운영현황**을 **조사**, **컨설팅** 등으로 연계하고 **정보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질 관리 비용**이 **필요**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고등교육의국제화 지원	9,702	935	935	-	-
① 교원 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755	755	755	-	-
▪ 교원 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755	755	755	-	-
- 사업비(사업출연금)	720	720 (4교x180백만원)	720 (4교x180백만원)	-	-
- 운영비(사업출연금)	35	35 (1식x35백만원)	35 (1식x35백만원)	-	-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관리	180	180	180	-	-
- 설립심사비(사업출연금)	100	100 (1식x100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	-
- 질관리(사업출연금)	80	80 (1식x80백만원)	80 (1식x80백만원)	-	-
③ 해외 한국 유학 홍보	449	-	-	-	-
- 일반수용비	240	-	-	-	-
- 공공요금	40	-	-	-	-
- 임차료	34	-	-	-	-
- 일반용역비	81	-	-	-	-
- 국외업무여비	41	-	-	-	-
- 사업추진비	13	-	-	-	-
④ 한국유학시스템운영	218	-	-	-	-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218	-	-	-	-
⑤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8,100	-	-	-	-
-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8,100	-	-	-	-
□ 비목(합계)	9,702	935	935	-	-
○일반수용비(210-01)	240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0	-	-	-	-
○임차료(210-07)	34	-	-	-	-
○일반용역비(210-14)	299	-	-	-	-
○국외업무여비(220-02)	41	-	-	-	-
○사업추진비(240-01)	13	-	-	-	-
○민간자본보조(320-07)	8,100	-	-	-	-
○사업출연금(350-02)	935	935	935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①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교원양성기관(교·사대)의 국제이해·다문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원의 글로벌교육 역량강화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 동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대생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매년 1~2개 이상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교육국제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정주여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715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 해외 한국 유학홍보 : 449백만원 ▪ 한국유학시스템운영 : 230백만원 ▪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 8,100백만원			
'18	935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935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
'19	907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27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935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28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1,633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1,000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633백만원**	862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682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771
'21	1,633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1,000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633백만원**	844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664**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789
'22			836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656**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180백만원**	836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35	935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0	41	2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일반 재정지출 사업 : 가이드라인 가-<2> 산출방식 적용** ① 인건비 외 각 사업비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1) 1) 사업비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2) 교육서비스업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935백만원(출연금) ÷ 72백만원 = 13명 **□ 2018년 고용효과** - 935백만원(출연금) ÷ 72백만원 = 13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①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고등교육법」 제43조(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동법 시행령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①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설치 수요조사 시행('11.5.25~6.9)
-「글로벌 교원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11.7.22)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정 및 지원계획 사전공지('11.7.25) 및 사업 설명회 개최('11.10.10)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2012년도 추진계획('12.4.10)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선정계획 공고('12.4.20)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선정(경인교대, '12.7.3)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2013년도 추진계획('13.4.5)
- 2013년「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선정(경북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13.7.4)
- 2014년 IGT(I am a Global Teacher) 대회 실시('14. 11)
- 2014년 단계별 중간평가(1개교) 및 연차평가(3개교) 실시('15. 2)
- 2015년 IGT(I am a Global Teacher) 대회 개최('15. 11)
- 2015년 단계별 중간평가(3개교) 및 연차평가(1개교) 실시('16. 2)
- 2016년 IGT(I am a Global Teacher) 대회 개최('16. 11)
- 2016년 단계별 중간평가(1개교) 및 연차평가(3개교) 실시('17. 2)
- 2017년 IGT(I am a Global Teacher) 대회 개최('17. 11)
- 2017년 단계별 중간평가(3개교) 및 연차평가(1개교) 실시('18. 2)
- 2018년 IGT(I am a Global Teacher) 전국대회 개최('18. 11)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02.1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05.11)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및 대구국제학교 설립변경 승인('14.2)
- 유타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승인('14.2)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14.4)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 개편('14.5월~)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4.9)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14.12.19.)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15.8)
-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5.12)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16.10~11)
-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설립변경승인('16.12)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패션기술대학) 설립승인('17.3) 및 개교('17.9)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설립변경 승인('17.4)
- 학생·교원, 교육활동 등 외국교육기관 정보 안내 실시('17.4월, 9월)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17.11)
-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설립변경 승인('18.4월)
- 학생·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에 관한 외국교육기관(8교) 정보 안내 실시('18.4월)
- 외국교육기관 운영현황 점검(5교)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18.1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38.27	37.6	-	70.6	-	97.15	-	9.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만원)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9,715	-	935	-	935	935	100%

○ 집행현황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755백만원

▪ 외국교육기관의 제도개선 및 질관리 : 18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 사업의 확산성과 제고 필요('17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성과지표 개선 등 사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포함한 다각적 개선(오영훈 위원, '17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평가결과와 그 취지에 따라 대학별 지원액을 배정할 필요('14년 결산 교문위 검토보고서)
- 자부담 미 이행분 환수규정 마련 필요('12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성과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으며('16.9-'17.1),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17년 사업추진계획 수립('17.3월)
- 평가 취지에 입각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대학별 지원금액 배정하도록 사업추진계획 수립('15.4. 기반영)
- 선정대학 사업계획서 서면컨설팅('13.7.10)·사업책임자 및 행정직원 면담 컨설팅('13.7.15)을 통해 예산집행지침 교육 수행·보조사업자의 책무성 확보 추진
- '12년 선정대학(경인교대) 2차년도 사업협약서 및 '13년 선정대학 사업협약서에 자부담 미 이행분 환수규정 마련함('13.7)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사업협약서

제5조(사업비 정산 및 집행실적 보고) ⑥(을)은 대응자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환수, 차년도 국고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일본 : 일본 문부과학성은 글로벌 인재육성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의 글로벌 교육력 향상' 등에 50억엔, '일본인 젊은 영어교원 미국 파견 사업'에 244백만엔 등 지원

· 프랑스 : 교사교육대학원(IUFM)을 중추기관으로 교원양성 선발 및 임용에 필요한 제도·정책 추진 : 외국과의 인턴십이나 현장실습과 같은 훈련과정 강화

· 미국 : 미국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언어·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시건주립대 사범대학은 글로벌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The Global Educators Cohort Program(GECP)'등 운영

· 호주 : 미국 조지아대, 영국 미들섹슨대, 중국 상해사범대, 상해사회과학원 등과 교류를 맺고 학생 프로그램인 현장연구 프로젝트(Action Research Project) 추진·운영

②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관리

· 일본 : 유치에만 치중, 안정적 운영가능성 심사 및 유치 후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외국학교 대부분이 철수*

* 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일본內 미국대학 분교 캠퍼스는 '90년에 36개교에 이르렀으나, '95년 전후 대부분 폐쇄

· 싱가폴, 두바이, 카타르 등 : 국가 주도로 전략적 기획, 투자*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을 유치를 통한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EDB) 주도 하에 학교부지 무상 제공,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교육부(MOE)는 EDB가 유치한 대학들에 대한 최종 설립허가를 담당함, 10개 외국대학 캠퍼스와 45개 공동학위과정을 운영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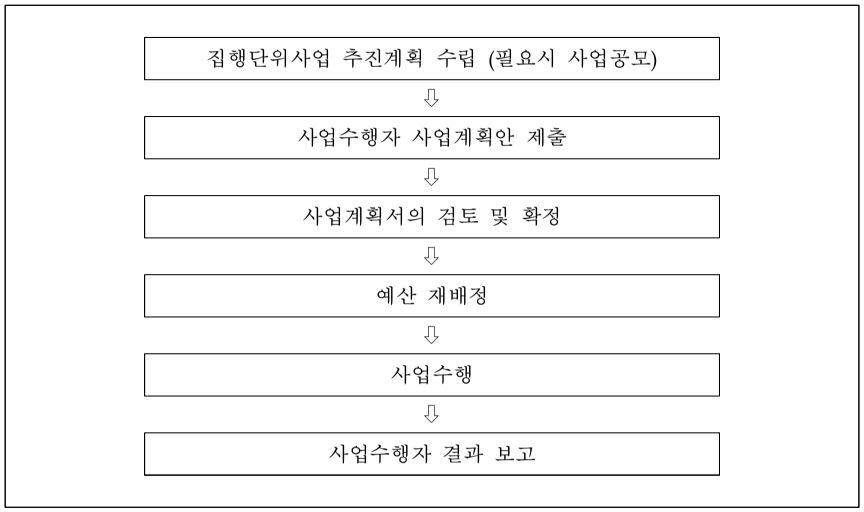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건립 공정률 (단위:%)	목표	신규	신규	75.0	(종료)	(종료)	사업종료	공정률 = (누적투자액/총사업비) *100	계약서 및 기성서류 확인서
	실적	-	-	83.6	-	-			
	달성도	-	-	111.5	-	-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도* (%p)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8	신규사업 (사업참가자들의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 향상 정도)	리커드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사업 참가 전/후 점수차 측정 (5점척도점수값-1)×25	설문평가 분석 (사전/사후 평균 비교)
	실적	-	-	-	-	-			
	달성도	-	-	-	-	-			

* '17년-'18년 기관별 공통성과지표로 개발, '19 사업 성과지표 반영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현장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교원양성 글로벌화 지원사업 현황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현황 및 절차
○ 외국교육기관 유치 MOU 현황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이해관계자 등 의견) 학교현장의 다문화·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사업 공동프로젝트 발표대회 등을 기존 거점대학에서 전국 대학으로의 확대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다문화·글로벌화 교육과정 및 현장의 성과확산을 위해 공동프로젝트를 참여대학 대상에서 전국대학 대상으로 확대 실시('18.11)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이해관계자 등 의견)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여건** 등으로 **운영 상 어려움 존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예산(안) 반영사항 >

□ 장기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정책연구 추진

* 산학협력활동 근거 정비,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확대 검토,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사항 정책연구 추진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이해관계자 등 의견)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당초 계획한 국고를 지원할 것(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 김승남외 11명의 국회의원)

< 예산(안) 반영사항 >

□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인프라 및 고등교육 분야 예산 지속적으로 요청

※ '14년 10억원(정책연구 용도 한정) 이후, '15년 이후 예산 미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 지원]

□ GTU 거점대학별 2018년 추진 성과

학교	주요 성과
공통	**- 교·사범대학생 글로벌 모의수업시연(IGT) 및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 대회 개최** ■ 글로벌모의수업시연 대회('18.11.22) : 9개 대학 12개팀 본선진출 ■ 다문화 교육프로젝트 발표 대회('18.11.23) : 8개 대학 10개 팀 본선진출
경북 대학교	**1. 별빛·꿈빛 어울림캠프 개최** ■ 시기 : '18.9.28~9.30 ■ 참여 : 멘토(대학생):49명, 멘티(초등생) ; 42명 ■ 주요내용 - 경북대 및 주변대학(대구대, 대구교대, 영남대, 경남대, 안동대, 부산대,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 -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과학영재교육 기회 제공 및 예비교사의 다문화 수용성 글로벌 교육역량 제고 **2. 베트남어 강좌 개설** ■ 시기 : '18.1월~ ■ 참여 : 22명 과정 수료 ■ 주요내용 - 베트남어 입문 및 초급과정 방학 특강 개설 및 다문화 토크콘서트(베트남 편)과 연계 **<어울림 캠프>**
경인교육 대학교	**1. 학기/방학중 다문화교육 봉사** ■ 시기 : (학기) '18.3.16~7.20 / (방학) '18.8.6~17 ■ 참여 : (학기) 교원대학생 19명 / (방학) 교원대학생 16명 ■ 주요내용 : 다문화학생 대상 컴퓨터 활용 정보교육, 한국어 및 교과 교육 멘토링 실시 등 **2. 해외 교육연수 및 실습** ■ 시기 : '18.7.22~8.12 ■ 참여 : 교원대학생 23명 ■ 대상기관 :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 주요내용 - 교육 특강 및 워크숍, 현지 초등학교 수업 참관 및 실습 캠프 보조교사 참여

	3.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실시 ■ 일시 : '18.7.9~17 ■ 참여 : 경인교육대학교 소속 대학생 29명 ■ 주요내용 - 세계시민교육 현직교사와 수업연구 개발, 관내 7개교 초등학생 대상 주제별 세계시민교육 실시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제주 대학교	**1. 하계방학 해외 교육봉사 실시** ■ 시기 : (1차) '18.7.14~28 / (2차) '18.8.12~25 ■ 참여 : (1차) 12명 (2차) 7명 ■ 대상기관 : 필리핀 바기오 지역 학교 외 ■ 주요내용 - 보조교사 활동 및 수업 참여를 통한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 - STEM 수업설계 및 수업 진행 **2.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연수** ■ 시기 : (1차) '18.7.22~8.11 / (2차) '18.6.28~7.11 ■ 참여 : (1차) 4명 (2차) 9명 ■ 대상기관 : (1차) 인디애나주립대 / (2차) 독일 뤼빙겐대학 등 ■ 주요내용 :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진행·참관 등 해외 글로벌 다문화 교육 참여로 인한 역량 증진 **<해외 교육봉사>**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연수>**
한국교원	**1. 다문화 현장실습 및 멘토링 활동 실시**

대학교	■ 시기 : '18.7.31~8.3 ■ 참여 : 교원대학생 21명 ■ 대상기관 : 음성 대소초 ■ 주요내용 - 다문화예비학교에서의 현장 교육활동 수행을 통한 다문화 교수능력 배양 **2. 중도·동반입국자녀교육 및 멘토링 활동 실시** ■ 시기 : ' 18년 1학기 및 하계방학 ■ 참여 : 교원대학생 26명 ■ 대상기관 : 청주 새날학교 ■ 주요내용 - 중도·동반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수업 지원 등 조기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봉사 활동 지원 **<다문화 현장실습 및 멘토링 활동>** **<중도·동반입국자교육 및 멘토링 활동>**

[외국교육기관 제도개선 및 질 관리 사업]

□ 우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변경 심사

○ 외국교육기관 8개 운영 중

- (초·중등) 대구국제학교(미국, '10.8.개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미국, '10.9.개교)
- (고등) FAU-부산(독일, '11.3.개교), 한국뉴욕주립대 SBU(미국, '12.3.개교), 한국조지메이슨대(미국, '14.3.개교), 겐트대(벨기에, '14.9.개교), 유타대(미국, '14.9.개교), 한국뉴욕주립대 FIT(미국, '17.9.개교)

○ 외국교육기관 신규설립 심사 승인

- 미국 FIT(패션기술대학) 한국캠퍼스 신규 설립 심사 및 승인('16.5~'17.3)

※ 패션디자인학과, 패션경영학과 등 2개 학과 140명 정원

※ 총 8회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종합심사 포함)

○ 기존 외국교육기관 신설학과 개설 심사 및 변경 승인

-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신설학과 심사 및 변경 승인('16.12)

※ 현행학과 정원 축소(350명) 신설학과(영화영상학 등 4개학과) 신설 및 증원(500명)

※ 총 5회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종합심사 포함)

-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신설학과 심사 및 변경 승인('17.4)

※ '17.9월 개교 목표로 분쟁분석 및 해결학, 시스템공학과 신설 및 증원(300명)

※ 총 7회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종합심사 포함)

-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설립변경 승인('18.4)

□ 외국교육기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안정화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제도 주요사항 안내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제도 추진방향, 개선사항, 심사일정 등 안내

※ 학과추가신설 심사 간소화 세부방안 마련('14.8)

○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신청 매뉴얼 개정

- 법령 개정 및 심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 매뉴얼 현행화

○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영문 해설서 제작

- 한국어 및 국내법 해설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 수혜자의 편익 증진 도모

□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 매년 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현장 점검 및 운영컨설팅 실시

○ 학생·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에 관한 외국교육기관(8교) 정보 안내 실시(4월, 9월)

※ 외국교육기관 종합안내홈페이지(www.isi.go.kr)를 통해 공시

참고 3 교원양성기관 글로벌화지원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목적)** 국내 **교육현장**의 **글로벌화·다문화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한 **교·사대 글로벌화 지원**

○ **(내용) 교·사대 글로벌·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국내·외** 국제학교·대학·교육청 간 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 '19년도 추진 내용

○ **(사업비/기간)** 755백만원(일반회계) / '19.3월~'20.2월

○ **(지원대학)** 경인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경북대

<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 지원 경과(2012~2018) >

연도	거점대학				예산(백만원)
2012	경인교대				200
2013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850
2014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759
2015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755
2016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755
2017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755
2018	경인교대	경북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755

○ **(지원내용)** 지원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다문화·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거점대학과 국내·외 국제학교·대학·교육청 간 네트워크 구축, 활용**을 통해 교·사대생의 **다양한 교육경험** 지원
- 다양한 국적 배경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세미나, 포럼,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 등 교육활동 운영**

□ 추진 일정(안)

추진계획 수립(19.3월)	⇒	대학별 사업 추진	⇒	공동 프로그램(11월)
18년 사업평가, 19년 지원액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격월 단위 사업단장 협의회 실시		글로벌모의수업시연대회 및 다문화연구발표회

참고 4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 현황 및 절차

❑ 외국교육기관 운영 현황

○ 초·중등 2개교 및 대학 6개교, 총 8개교 운영

구 분	학 교 명		소 재 지		개교시기
			본교	외국교육기관	
초·중등 (2교)	대구국제학교		미국	대구	'10.8 개교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미국	인천 송도	'10.9 개교
고등 (6교)	FAU-부산캠퍼스		독일	부산	'11.3 개교
	한국뉴욕주립대	SBU	미국	인천 송도	'12.3. 개교
		FIT	미국	인천 송도	'17.9. 개교
	한국조지메이슨대		미국	인천 송도	'14.3. 개교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벨기에	인천 송도	'14.9. 개교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미국	인천 송도	'14.9. 개교

❑ 설립절차 개요

(지자체·산업부) 외국학교 유치 ⇒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신청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사위원회* 심의**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위원장:산업부 장관 ⇒ (교육부장관) 설립 승인

외국학교법인의 설립승인 신청(외국대학 분교 설립계획서 제출) → 분교 설립계획의 적정성 및 설립기준 충족 여부 심사 → 분교현지실사 → 해외본교 현지실사 → 종합심사 및 의결

*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설치근거 :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함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참고 5 외국교육기관 유치 MOU 현황('18.4월 기준)

○ 산업부

경제청	학교명	현 황
인천	모스크바국립(볼쇼이) 발레아카데미	▪ MOU 체결('13.4월) / 발레대학(원)
	휴스턴대	▪ MOU 체결('13.5월) / 호텔경영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 MOU 체결('13.10월) / 음악대학(원)
대구 경북	조지타운대학	▪ MOU체결('15.7월) / 통합의료대학원
부산 진해	랭케스터대	▪ MOU체결('17.3월) / 회계금융, 경영(MBA) / 산업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확정('18.3월)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학교명	MOU 체결 시기	내용	현 황
호주 울릉공대	'12.5	차세대 융합기술대학원 및 국제 R&D센터 설립·지원	한밭대와 연계하여 공동캠퍼스 입주 방안 협의 중
독일 마틴루터대			
일본 큐슈공대			
일본 교토공대			
아일랜드 코크대	'15.10, '16.3	약학, 의학바이오 교육 및 헬스케어 분야 기술적용 지원을 위한 협력	고려대 약대와 연계하여 공동학위 개설 및 협업방안 협의 중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16.7 ('17.12 MOA)	아시아 캠퍼스 설립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신청 참여 등	'18년 설립준비비 예산(6억원) 확보, 진출학과 협의 중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	'16.9	아시아 캠퍼스 설립 및 산학융합지구 참여 등	국내대학(경찰대, 관동대 의대 등)과 공동학위 개설 추진 중
체코 브루노예술대	'16.9	아시아 캠퍼스 설립	영어·체코어 어학교육 사업, 예술대학 운영을 위해 공동캠퍼스 입주 검토 중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	'17.2 ('17.12 MOA)	아시아 캠퍼스 설립	'18년 설립준비비 예산(6억원) 지급, 피아노과, 성악과, 음악교육과 학부/대학원 과정 설립신청준비중

[315]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	300	**30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2 - 315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장(김지연), 사무관(고정표), 주무관(이경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전담기구 실태조사, 예방교육·연수자료 개발·보급, 담당자 교육, 사안처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사업기간	'1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중앙센터 1개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민간 전문기관(공모 선정)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30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40백만원
  - · 실태조사 용역비 40백만원 × 1회 = 40백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40백만원
  - · 연수자료·예방교육자료 10백만원 × 2종 × 1회 = 20백만원
  - ·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비 20백만원 × 1회 = 2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00백만원
  - · 담당자 교육 300천원 × 50명 × 4회 = 60백만원
  - · 워크숍 개최 100천원 × 100명 × 2회 = 20백만원
  - · 세미나 개최 100천원 × 100명 × 2회 = 2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50백만원
  - · 컨설팅 및 법률자문료 250천원 × 40회 = 10백만원
  - ·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40백만원 × 1회 = 40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5백만원
  - · 4,583천원 × 1명 × 12월 = 55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15백만원
  - · 컴퓨터, 프린터, 책상, 캐비닛 등 물품 구매 6백만원 × 1식 = 6백만원
  - · 활동경비(여비, 인쇄비, 회의비 등) 750천원 × 12월 = 9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30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40백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4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0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50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5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등 국가차원의 제도보완이 시급

○ 대학 현장의 예산·인력·전문성 부족으로 예방교육 및 피해자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사안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전문역량 개발·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300	**300**	**순증**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	-	300	**300**	**순증**
□ **비목**(합계)			300	**300**	**순증**
○민간경상보조(320-01)	-	-	300	30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ㅇ 대학 전담기구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확산, 대학 맞춤형 사례 중심 연수자료 개발·보급
- ㅇ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지원
- ㅇ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0		-
'18	-		0		-
'19	-		300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40백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4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0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50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5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15백만원	300
'20	-		500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50백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7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5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85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2명), 인건비 110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35백만원	500
'21	-		700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50백	700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7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5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85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2명), 인건비 110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35백만원 ▪ 시범운영대학(2개) 예산 지원 200백만원	
'22	-		1,000	▪ 대학 전담기구 실태조사 50백만원 ▪ 연수자료·예방교육, 사건처리 매뉴얼 등 개발·보급 70백만원 ▪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연수 등 역량강화 150백만원 ▪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우수사례 확산 85백만원 ▪ 중앙센터 전담인력(2명), 인건비 110백만원 ▪ 중앙센터 운영비 35백만원 ▪ 시범운영대학(5개) 예산 지원 500백만원	1,000
연평균 증가율 (%)			49.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	300	3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1명	1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	1명	1명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2명	2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	2명	2명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대학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관리 등에 필요한 채용 예상 인력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명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전담인력 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보조(위탁)사무 수행 인력으로 일자리사업 및 고용효과 평가 대상 아님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동법 제5조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국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 및 이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학교의 장은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교육, 고충처리 공식창구 설치, 고충담당자 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우리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젠더폭력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지시('18.2.2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교육분야 포함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보고('18.3.8.)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부총리) 구성·운영, 교육분야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전체 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 추진, 비위가 심각한 경우 특별조사 실시, 예방교육 내실화 등

- **(사회관계장관회의)** 범부처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발표('18.3.23.)
  *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편,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등

- **(국무회의)** 범부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18.7.3.)
  * 대학 내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사건 대응·예방교육 기능 활성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전담(중앙)센터 운영	-	-	-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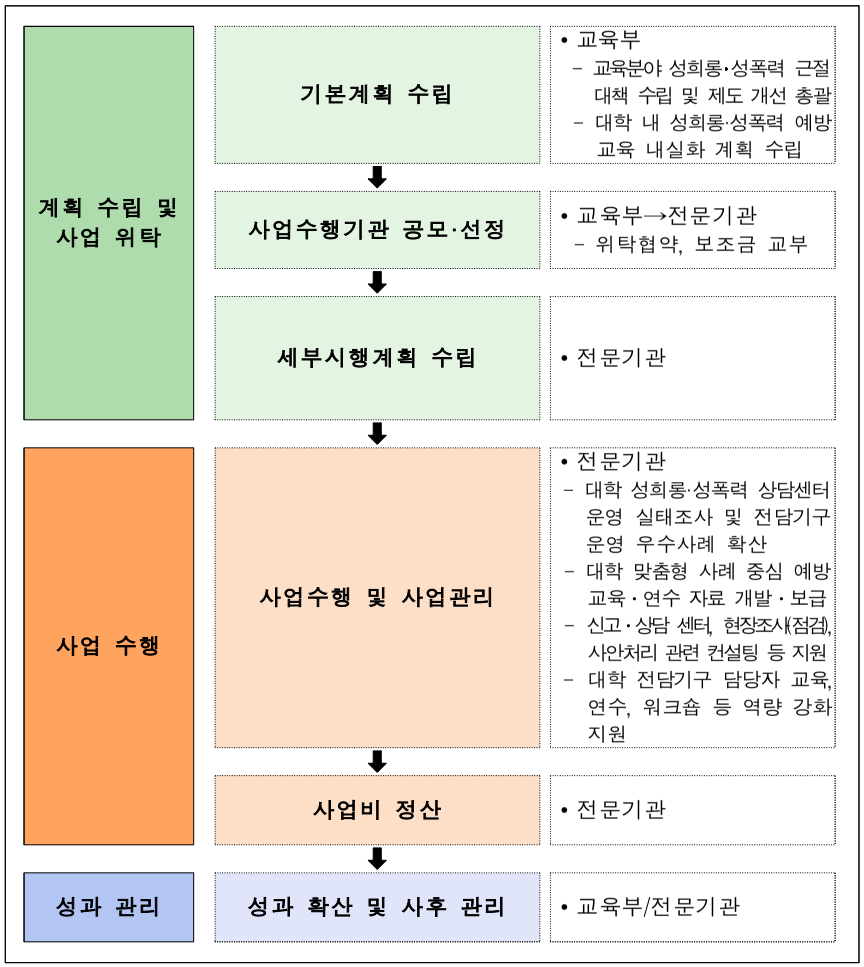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대학 담당자 교육 만족도 (단위: %)	목표	-	-	-	신규	60	'19년 신규 지표로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대학 전담기구 담당자 교육 참석 대상 만족도 조사	교육 참석자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

참 고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목 적) 대학 내 성폭력 신고·상담 전담기구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기간/대상)** '18.5.31.(목)~7.2.(월)(온라인조사) / 312교(일반대 171/전문대 130/기타 11)

○ **(조사항목)** 전담기구 조직·인력·예산 현황, 사건처리 실태, 담당자 처우겸직 여부·경력·교육수준·고용형태, 학교별 예방교육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등

□ 실태조사 주요 결과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현황

○ **(상담 건수) 학교당 평균 13.04건**(2017년 기준)

2017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건수 (단위: 건)

구분		사례수	이메일 등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개별 면접상담		집단 면접상담		기타		총계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312)	1,259	4.04	915	2.93	1,651	5.29	68	0.22	177	0.57	4,070	13.04
대학 유형	일반대학	(171)	1,256	7.35	908	5.31	1,204	7.04	35	0.20	173	1.01	3,576	20.91
	전문대학	(130)	1	0.01	3	0.02	38	0.29	5	0.04	4	0.03	51	0.39
	기타*	(11)	2	0.18	4	0.36	409	37.18	28	2.55	0	0.00	443	40.27
설립 유형	국·공립	(49)	327	6.67	564	11.51	882	18.00	51	1.04	14	0.29	1,838	37.51
	사립	(263)	932	3.54	351	1.33	769	2.92	17	0.06	163	0.62	2,232	8.49

*기타: 대학원 대학, 원격 대학 등(이하 동일)

○ **(조사 건수) 총 1050건**(2015년 167건, 2016년 289건, 2017년 356건, 2018년(~5월) 238건)으로 **증가 추세**('15~'18.5월)

- **행위 유형별**로는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64.1%), 강제추행(29.8%), 강간·준강간·유사강간**(미수포함)**(6.1%)** 순으로 나타남

2015년 이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조사사건 수 (단위: 건)

조사된 사건 수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간		총계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2015년	105	0.34	53	0.17	9	0.03	167	0.54
2016년	177	0.57	89	0.29	23	0.07	289	0.93
2017년	230	0.74	107	0.34	19	0.06	356	1.14
2018년 1~5월	161	0.52	64	0.21	13	0.04	238	0.76

- **가해자-피해자 관계유형별**로는 **학생-학생 237건(66.6%), 교수**(강사 포함)**-학생 67건(18.9%)**, 직원-학생 총 15건(4.2%) 등으로 나타남

2017년 성희롱·성폭력 및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별 조사 건수(단위: 건)

조사 사건 수	언어적·시각적·신체적 성희롱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간		전체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학생-학생	142	1.18	82	0.68	13	0.11	237	1.98
학생-교수(강사)	43	0.36	22	0.18	2	0.02	67	0.56
학생-직원	13	0.11	2	0.02	0	0.00	15	0.13
학생-외부인	4	0.03	3	0.03	2	0.02	9	0.08
교수-교수	6	0.05	1	0.01	0	0.00	7	0.06
직원-직원	7	0.06	3	0.03	0	0.00	10	0.08
직원-교수	1	0.01	1	0.01	0	0.00	2	0.02
기타	8	0.07	1	0.01	0	0.00	9	0.08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관련 현황

[① 전담기구 인력 관련 현황]

○ **(전담인력 수) 학교당 평균 0.9명**

○ **(전문성)** 전담인력의 해당 업무 **재직기간**은 **평균 3.68년**이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37.8%**임

- 전담인력은 학생상담, 학생복지 등 **타 업무 겸임**이 일반적**(93.9%)**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평균
전체		0.90
대학 유형	일반대학	0.93
	전문대학	0.85
	기타	0.95
설립 유형	국·공립	0.88
	사립	0.90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해당 업무 근무기간(단위: %)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6.3	21.8	28.2	23.7
대학 유형	일반대학	28.1	20.5	25.7	25.7
	전문대학	24.6	23.1	30.8	21.5
	기타	18.2	27.3	36.4	18.2
설립 유형	국·공립	16.3	26.5	26.5	30.6
	사립	28.1	20.9	28.5	22.4

○ **(연봉 및 고용형태)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47.8%**,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이 21.2%이며,

- **기간제 계약직**(41.0%), **무기계약직**(18.3%) **등 임시적 고용관계**가 많음(**정규직 38.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자의 연봉 및 고용형태 (단위: %)

구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전체		9.0	47.8	21.2	10.9	11.2	38.8	61.2
대학 유형	일반대학	8.2	49.7	21.6	10.5	9.9	33.9	66.1
	전문대학	10.0	44.6	22.3	11.5	11.5	46.2	53.8
	기타	9.1	54.5	0.0	9.1	27.3	27.3	72.7
설립 유형	국·공립	6.1	40.8	16.3	18.4	18.4	40.8	59.2
	사립	9.5	49.0	22.1	9.5	9.9	38.4	61.6

[② 전담기구 예산·조직 등 현황]

○ **(예 산)** 2018년도 기준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관련 예산**은 **'500만 원 이하'**가 **58.7%**,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9.9%**이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대학**은 **5.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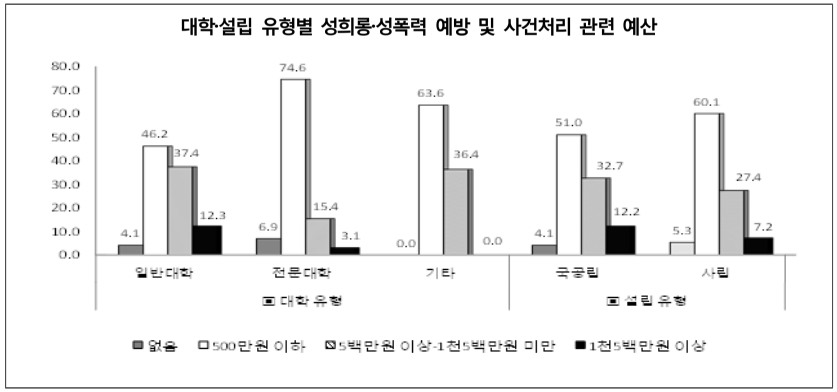

○ **(조 직)** 총장 직속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11.1%**이며,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지원 기구(52.3%) 및 대학행정본부 부설(18.6%) 또는 인력개발 부속기구(14.7%)로 운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담당기구 상위조직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6	100.0
학생지원	학생처, 학생상담센터, 학생지원처, 학생복지처, 학생(지도)상담센터, 교무학생처, 학생(지원)과, 대학생활문화원,	160	52.3
대학행정	기획평가처, 교학처, 학생입학처, 교학지원처, 사무처, 총무과, 산학협력처, 학사운영처,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입시교학처, 입학홍보실	57	18.6
독립적 기능	총장 직속기구, 부총장 부속기관, 독립기구, 부속기구	34	11.1
인권보호	인권센터	3	1.0
인력개발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단, 진로심리상담지원혁신센터, 학생취업지원처, 산학협력처인재개발팀, 프론티어 인재개발원, 취업진로처, 미래혁신단	45	14.7
기타	교목처, 상담센터, 보건센터, 보건진료원	7	2.3

3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 및 현황

○ **(대학내 인식) 총장·대학당국의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75.6%**로 나타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과 관련된 인식 (단위: %)

구분		총장·대학당국은 예방과 근절 활동에 적극적	예방교육을 받는 것에 교수들의 태도는 긍정적	예방교육을 받는 것에 직원들의 태도는 긍정적	예방교육을 받는 것에 학생들의 태도는 긍정적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총장 대학당국의 태도가 적극적
전체		75.6	56.4	69.2	59.6	63.8
대학 유형	일반대학	70.8	42.7	62.0	50.9	59.6
	전문대학	83.1	74.6	77.7	69.2	69.2
	기타	63.6	54.5	81.8	81.8	63.6

○ **(현장에서의 어려움) 구성원의 무관심·참여 부족**(42.3%), **교육인력·예산 부족**(21.1%), 교육 콘텐츠 부족(16.0%) 순으로 응답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교육 참여율	강제성 없음, 의무화 제도 필요	90	42.3
	무관심함, 참여율 부족		
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	전담인력, 강사 필요	45	21.1
	인력 및 예산 부족		
교육 일정 확보 어려움	집합교육 일정 확보	35	16.4
교육 콘텐츠 부족	다양한 교육 콘텐츠 부족	34	16.0
	매년 비슷한 교육의 반복		
교육시간 조정	시간이 너무 길	6	2.8
기타	기타	3	1.4

○ **(효과성 제고 방안)** 소규모·토론 중심 교육 등 **교육방식의 개선**(51.6%), **사례중심·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37.6%)순으로 응답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21	100.0
교육 자료 개발	실제 사례를 다루는 교육 콘텐츠	83	37.6
	매년 신규 자료 업데이트 필요		
	대상에 맞는 콘텐츠, 시청각 자료 개발 필요		
	남성을 가해자로 몰지 않는 교육 콘텐츠		
교육 자료 제공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24	10.9
	여성가족부에서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여 배포		
	국가에서 만든 사이버 교육으로 일원화		
교육방식 개선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교육	114	51.6
	소규모 예방 교육		
	토론할 수 있는 교육 방식		
	필수 과목 지정 의무화		
	현실성 있는 교육 방법, 시간 구성		
	연 단위 반복적 예방교육		

[300] BK21 플러스 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BK21 플러스 사업	298,510	297,707	296,732	△975	△0.3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3 - 30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영욱), 사무관(권지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BK21 플러스 사업** -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 - 석·박사급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기반 조성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국내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 몰입도를 제고하여 세계 수준의 우수 국내박사 양성
사업기간	○ BK21 플러스 사업 : '13. 9 ~ '20. 8* *'20년 개편 예정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11년 ~ 계속
총사업비	○ BK21 플러스 사업 : 약2조원(추정) ('17년까지 기투자액: 9,571억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해당없음
사업규모	○ BK21 플러스 사업 : 대학원 학과 중심 544개 사업단(팀) * 대학원생 약 17,000여명 연구장학금, 국제화 경비 등 지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과정생 800명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 272,417백만원

▪ 기 선정된 사업단(팀) 소속 석.박사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 BK21 플러스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단(팀)을 '20년까지 계속 지원

▪ 산출내역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239,795백만원(470개사업단(팀)×509백만원)
(글로벌인재양성) 16,228백만원(21개사업단×772백만원)
(특화전문인재양성) 13,835백만원(53개사업단×261백만원)
(평가관리비) 2,559백만원(1식×2,559백만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4,315백만원

▪ 국내 우수 박사(석박사통합포함)과정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인문학진흥 5개년 계획('16.12.27) 중 **석·박사과정생 장학금 및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확대**

▪ 산출내역

(글로벌박사) 23,815백만원(794명×30백만원)
(평가관리비) 5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BK21 플러스 사업	297,707	296,732
■ BK21 플러스 사업	(239,795백만원)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16,228백만원) 글로벌인재양성 (13,835백만원) 특화전문인재양성 (2,559백만원) 평가관리비	(239,795백만원)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16,228백만원) 글로벌인재양성 (13,835백만원) 특화전문인재양성 (2,559백만원) 평가관리비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690백만원)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 (24,100백만원)글로벌박사 (500백만원) 평가관리비	(23,815백만원)글로벌박사 (500백만원) 평가관리비

□ 지원 필요성

<BK21 플러스 사업>

○ BK21플러스 사업은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할 **우수 연구 인력**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규모 확대 필요**

  * 연구 활동량과 1인당 GDP 성장률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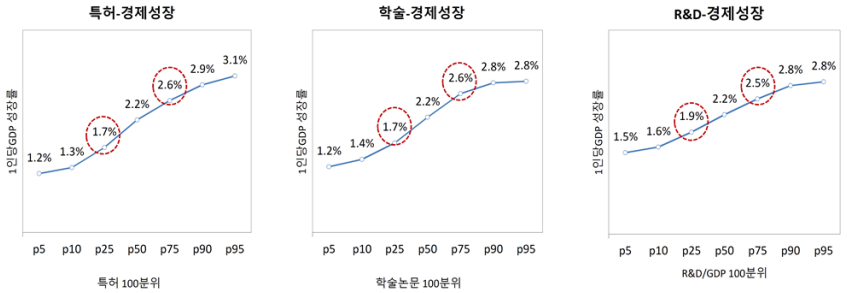

- **전일제 대학원생** 신분 유지가 **사업 참여 요건**이기 때문에 참여 **대학원생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으로,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등록금** 등 **학습보조비**, **기초적인 생활비** 등 지원 필요

< 참고: 해외 사례 >

▸ (해외사례) 미국 GREP(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은 석·박사급 대학원생에게 생활비 및 학비 포함 연간 $41,500 지원

- 학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지속** 시 **우수 학생들의 학문·연구 분야 기피 현상 가속화**에 따른 **혁신성장 가능성 약화** 초래

☞ 대학원생들이 생계를 위한 가외적인 활동 없이 **학업·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 필요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국내 우수 대학원생 지원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 및 계속 지원 과제 수 지속 유지 필요

- 박사과정생의 독립적인 연구비 지원 확대 및 우수 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미래사회(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 매년 일정 수준(200명) 이상의 글로벌 수준의 박사급 창의인재를 지속적으로 선정·양성

○ 독자적인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국내 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 역량 및 대학원 경쟁력 제고 필요

박사 과정생 ⇒ (5년 후) 학문후속세대 (Post-Doc. 등) ⇒ (2년 후) 신진 연구자 ⇒ (10년 후) 중견 연구자 ⇒ (10년 후) 리더 연구자

※ 연구 전주기 단계의 첫 출발점(국내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의 필수 인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BK21 플러스사업**	**298,510**	**297,707**	**296,732**	**△975**	**△0.3**
○ **BK21 플러스사업**	**272,760**	**272,417**	**272,417**	**-**	**-**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연구개발활동비등)	240,138 (471개 사업단(팀) x509.847백만원)	239,795 (470개 사업단(팀) x510.202백만원)	239,795 (470개 사업단(팀) x510.202백만원)	-	-
- 글로벌인재양성형 (연구개발활동비등)	16,228 (21개 사업단x772.762백만원)	16,228 (21개 사업단x772.762 백만원)	16,228 (21개 사업단x772.762 백만원)	-	-
- 특화전문인재양성형 (연구개발활동비등)	13,835 (53개 사업단x261.038 백만원)	13,835 (53개 사업단x261.038 백만원)	13,835 (53개 사업단x261.038 백만원)	-	-
- 평가관리비 (연구개발활동비등)	2,559 (1식x2,559백만원)	2,559 (1식x2,559백만원)	2,559 (1식x2,559백만원)	-	-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25,750**	**25,290**	**24,315**	**△975**	**△3.8**
-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 (연구개발활동비등)	1,104 (24명x46백만원)	690 (15명x46백만원)		△690	△100
- 글로벌박사양성 (연구개발활동비등)	24,146 (804명x30.032백만원)	24,100 (803명x30.012백만원)	23,815 (794명x30백만원)	△285	△1.2
- 평가관리비 (연구개발활동비등)	500 (1식x500백만원)	500 (1식x500백만원)	500 (1식x500백만원)	-	
○ **비목(합계)**	**298,510**	**297,707**	**296,732**	**△975**	**△0.3**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98,510	297,707	296,732	△975	△0.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BK21 플러스 사업>

○ 대학원 학과/사업단(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사업단(팀)의 지속적 발전 유도

- 사업단(팀)의 사업목표 및 운영은 대학과 사업단(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연차컨설팅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개선 유도

○ ('20)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사업 개편

- 대학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지원 확대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우수 박사과정생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학업 및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우수 박사과정생의 국내대학원 진학을 장려하여 국내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대학원 육성

- 우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98,510	▪ BK21 플러스 : 272,760백만원 - (사업비) 496×545개사업단(팀) = 270,201 - (사업관리비) 2,559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750백만원 - (글로벌박사) 30×804명=24,146 - (미래기초) 46×24명=1,104 - (사업관리비) 500			
'18	297,707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5개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297,707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4개 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290백만원 - (글로벌박사) 30×804명=24,100 - (미래기초) 46×15명=690 - (사업관리비) 500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290백만원 - (글로벌박사) 30×803명=24,100 - (미래기초) 46×15명=690 - (사업관리비) 500	
'19	302,172	▪ BK21 플러스 : 276,422백만원 - (사업비) 502백만원×545개사업단(팀) = 273,863백만원 - (평가관리비) 2,559백만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750백만원 - (글로벌박사) 28백만원×900명 =25,2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50백만원	296,732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4개 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4,315백만원 - (글로벌박사) 30×794명=23,815 - (사업관리비) 500	△5,440
'20	305,194	▪ BK21 플러스 : 279,444백만원 - (사업비) 508백만원×545개사업단(팀) = 276,885백만원 - (평가관리비) 2,559백만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750백만원 - (글로벌박사) 28백만원×900명 =25,2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50백만원	296,732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4개 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4,315백만원 - (글로벌박사) 30×794명=23,815 - (사업관리비) 500	△8,462
'21	308,246	▪ BK21 플러스 : 282,496백만원 - (사업비) 513백만원×545개사업단(팀) = 279,937백만원 - (평가관리비) 2,559백만원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5,750백만원 - (글로벌박사) 28백만원×900명 =25,200백만원 - (평가관리비) 550백만원	296,732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4개 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4,315백만원 - (글로벌박사) 30×794명=23,815 - (사업관리비) 500	△11,514
'22			296,732	▪ BK21 플러스 : 272,417백만원 - (사업비) 495×544개 사업단(팀) = 269,858 - (사업관리비) 2,559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24,315백만원 - (글로벌박사) 30×794명=23,815 - (사업관리비) 500	
연평균 증가율 (%)	0.8		△0.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97,707	296,732	△97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3,345	3,333	△1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다. 기타 사업 - <4> R&D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 사항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3,333.7명 → 3,33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b. 2,967억원 ÷ 0.89 = 3334명** - 3,278억원을 <표2>의 '350-05 연구개발활동비등' 0.89로 나누어 산출 □ **2018년 고용효과: 3,345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학술진흥법』 제7조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제11조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 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BK21 플러스 사업>

※ 1단계 BK21사업('99~'05) →2단계 BK21사업('06~'12) →BK21 플러스 사업('13.9월~'20.8월) '20년 사업 개편 예정

-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13.5.16)
- 선정평가 실시('13.7.15~8.1, 8.26~28, 10.9~10.11)
- 선정평가 결과 발표('13.8.16, 9.12, 11.1)
  ※ 74개 대학, 550개 사업단(팀) 선정
- '15년 중간평가 대비 평가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14.4~10)
  ※ 포럼 8회, 전문가간담회 34회, 사업단장 협의회 26회, 공청회 2회 등 총 70회 의견수렴
- "BK21 플러스 평가개선 및 중간평가 추진계획" 확정·공고('14.11)
- BK21 플러스 중간평가 실시('15.9~12월)
- 중간평가 최종결과 확정 및 발표('16.4.12)
- '16년 이후 사업단(팀) 질적 성과관리 방안 마련('17.11) 및 연차 성과 컨설팅 추진('16.11~'17.2)
- '18년 BK21 플러스 사업단(팀) 성과점검 추진계획 확정·공지('18.2)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08.10 대통령 지시사항 및 '08.12 VIP 보고("노벨과학상 수상의 꿈을 향한 기초과학 활성화 방안") 및 '09년 교과부 대통령 업무보고
- 글로벌 박사양성 프로젝트 기획 연구 (KISTEP, '09.11~'10.3)
- 대통령 주재「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10.3.17) 주요과제
  * 대학원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 '11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시범 사업 실시 ('11.1~, 295명)
- '11년~'16년 총 1,658명 선정 ('11년 295명, '12년 205명, '13년 200명, '14년 196명, '15년 279명, '16년 248명, '17년 253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BK21 플러스 사업	2,973	2,982		2,982		2,985		2,97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82 (2,982)**	( )	( )	**2,982 (2,982)**	**2,982 (2,979)**	( )	( )
'16년	**2,982 (2,982)**	( )	( )	**2,982 (2,982)**	**2,982 (2,978)**	( )	( )
'17년	**2,977 (2,977)**	( )	( )	2,977 **(2,977)**	**2,977 (2,977)**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98,510		297,707		297,707	297,70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없음)

○ 집행현황

- BK21 플러스 사업 사업비(269,858백만 원) 및 사업관리비(2,559백만 원) 교부
-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사업비(24,790백만 원) 및 사업관리비(500백만 원) 교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BK21 플러스 사업평가관리비 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 마련 필요 <'14년 결산 교문위>

- '평가관리비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기준(안)' 마련 및「BK21 플러스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훈령」개정 완료('16.4.25)

○ BK21 플러스 사업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 분야간 지원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차기 사업 반영) <'14년 결산 예결위>

-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각 학문분야별 대학원생 수 현황 및 석.박사 신규 수요 전망, 예산 투입 대비 성과(취업률,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원 비율 기준 마련('16.4.29)

○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 등 R&D 예산 편성·배정·집행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6년 예산 교문위>

- BK21 플러스 사업비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비 부정 사용 제재조치 및 사업관리인력 교육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함

○ 글로벌박사양성사업에 선정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소속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의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16년 예산 교문위>

- 장학금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6년 신규선정자부터 개인지원금을 연 2,000만원 및 등록금 실비(연 1,000만원 이내)로 조정

○ 글로벌박사 선정 시 다양한 언어능력을 평가할 필요 <'15년 결산 교문위>

- 2017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시행계획에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면접평가 시 영어 이외 다양한 외국어 평가 가능하도록 변경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 Exzellenz Initiatve(우수 대학 육성 지원 사업)

* 대학원 사업/우수 클러스터 지원사업/미래개념 사업 3개 사업 분야 1단계('06-'11), 2단계('12-'17) 지원

** 88개 사업단에 5년 간 약 3조 7천억 원 지원 (2단계 사업 기준)

ㅇ 미국 NSF : GRFP(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

* 석·박사과정생 수혜자 및 지원금 : ('07년)920명 → ('14년)2,000명

** 지원내용 : 생활비(31,000달러/년), 학비(10,500달러/년), 3년간 지원

※ GROW : GRFP 선정자 중 국제공동연구참여 기회 제공

* 지원내용 : 국제공동연구참여경비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 석·박사과정생 수혜자 : ('15년) 400명 수준

* 주요 대상국 :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한국, 일본 등

ㅇ 일본 : COE (Center of Excellence) program, Global COE, 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WPI) Initiative

*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역량 및 세계수준의 연구자를 모을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지원, 10년간 연간 5억엔-20억엔 지원

ㅇ 중국 : 211 공정, 985공정

* 중국정부가 21세기를 직면하여, 100여개 중점대학과 일부 중점학과를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부터 시행(현재 112개 대학에 지원)

** 985공정은 소수의 가능성 있는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둠

(6) 사업추진절차

< BK21 플러스 사업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류 접수 및 사전검토 → 선정 평가 실시 → 지원 대상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 관리, 성과관리 → 연차점검, 중간평가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종합평가

<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및 연구실적 평가 → 연구과제 선정 → 사업비 교부 → 성과 평가 · 점검 관리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ㅇ 조사기관 및 기간 : KDI, '11. 12 ~ '12. 12

사 업 명	사업계획안	예비타당성조사	B/C	AHP
BK21플러스 사업 (WCU·BK21 후속사업)	41,738억원		0.91	0.666
글로벌 박사양성 사업	2,069억원		0.62(석·박통합) 0.70(박사)	0.629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ㅇ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BK21 플러스 사업 지원대학원생 수(명)	목표	28,000					성과지표 변경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원생 합계(누적인원)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35,144							
	달성도	125.5							
BK21 플러스 사업 지원대학원생 만족도(점)	목표	82					성과지표 변경	BK21 플러스 지원 대학원생에 대한 사업 만족도조사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자료
	실적	91.99							
	달성도	112.1							
지원 대학원생 1인당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건수(건)	목표	3.72					성과지표 변경	지원대상대학원생 1인당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건수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3.74							
	달성도	100.5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대학원생 취업률(%)	목표	-	70.5	73.7	75.3	75.5	'18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0.2%p 상승한 75.5%로 설정	취업자/(졸업자-진학자-군입대자)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	73	75					
	달성도	-	103.5	101.8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취업의 질	목표	-	-	-	3.36	3.4	'18년 목표치 3.36점에서 0.04점 상승한 3.4로 설정	임금 수준, 고용안정성, 전문성, 만족도를 조사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	-	-					
	달성도	-	-	-					
이공계 대학원 전임교수 강의 비율(%)	목표	-	87.3	89	90.5	90.7	'18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0.2%p 상승한 90.7%로 설정	전임교수 강의 시수 / 이공계 대학원 전체 강R의 시수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	88.65	90.4					
	달성도	-	101.5	101.6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지원 대학원생 논문 1편당 mrnIF 값	목표	-	55.78	76.25	76.9	77	'18년 목표치 대비 0.31%p 향상된 77로 목표치 설정	(톰슨로이터JCR 기준) 논문게재 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의 mrnIF의 합/ 총논문수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실적	-	75.875	76.61					
	달성도	-	136	100.5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ㅇ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ㅇ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① BK21 플러스 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의견 수렴**

○ (**연구장학금 지원단가** 관련) 현재 **인건비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인상을 요청드림

- 현행 단가로는 **자립적 생활을 여위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물가를 고려하여 **단가 인상 필요** (**참여대학원생 간담회**, '17.11.28)

○ (**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특성에 부합되도록 참여교수 보다는 **대학원생의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 (**BK21 플러스 사업단장협의회**, '16.6)

○ (**사업 성과관리** 관련) 그간 BK21 플러스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인력의 진로 추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BK21 진로추적 분석 관련 전문가회의**, '16.8)

□ **현장 의견 반영사항**

○ (**성과관리 방식 개선**) '18년 BK21 플러스 사업단(팀) **성과점검 지표 설정 시 현장의견 적극 수렴** ('18.2)

- 참여교수 이외에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도 **'연구(논문) 실적의 질적 우수성' 지표**를 신설하여 학생 연구실적 평가 강화
- 참여교수 실적 지표 비중 축소 및 **학생 실적 지표 비중 확대**
- 사업단(팀)의 인력배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취업률 뿐 아니라 진학률, 취업의 전공/직종일치도, 대표 경력 경로 사례 등도 제출**받아 평가자료로 활용

②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개선

□ **현장 의견(요청사항)**

○ (학생) 수혜자간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및 전문가(자문위원)의 지도나 조언 기회 부족

□ **반영사항**

○ 연구 네트워크 및 멘토링 강화

- 수혜자 간 정보지식 공유 및 학문적 교류 활동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학술대회 확대 개최

○ 전문가 컨설팅 강화

- 전공분야 전문위원 및 수혜자 추천 국내 연구자 연결을 통해 컨설팅 의뢰 및 내실 있는 피드백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의견 입력 등 평가(컨설팅) 내실화 지속 추진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① BK21 플러스 사업

< 사업성과 >

□ **(대학원 연구경쟁력 강화)** 중간평가('15) 결과 재선정된 사업단(팀)에 대해 연구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의 **연구역량**이 **향상**됨

<BK21 플러스 사업단(팀) 참여인력 연구역량 향상>

▪ 참여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 향상)실적 향상

BK21플러스 사업		증감률
선정당시	2016년	
1.35편	1.48편	+10%

▪ 논문의 질(IF) 향상

항목	BK21플러스 사업		증감률
	선정당시	2016년	
대학원생 1인당 논문 IF	1.36	1.8	+32%
교수 1인당 논문 IF	16.5	17.9	+8.1%

□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현장 중심**으로 **대폭 개선**, **국내외 대학원과 다양한 교류·협업 활성화 유도**

① **창원대 나노·바이오 신소재 및 첨단분석기술 연구인력 양성사업팀**
- ▸사업팀 소속 정ㅇㅇ, IUPAC 주관 ICAS 2017'에서 베스트 포스터상 수상
  * 26개 국가 1400여명의 학자 참가, 포스터논문 236편 발표
- ▸세계최초로 전립선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표지할 수 있는 나노입자시스템 개발

② **전남대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
- ▸사업팀 소속 정ㅇㅇ, 제8회 대학원생 논문 현상 공모에서 우수상 수상
- ▸베트남 호찌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 ▸'대만, 대만인, 그리고 대만의 한국어 교육'을 주제로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대만 국립 정치대와의 활발한 학술교류 실시

③ **전남대 그린식품 및 식품소재 인재양성 사업팀**
- ▸사업팀 소속 Dㅇㅇ, 한국차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 ▸'식품공학도를 위한 청년창업 준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학술교류 실시

< 현장의 변화 >

□ **우수한 대학원생**이 국내 연구(R&D)의 성장기반이 될 **국제적 감각**과 **현장지향성**을 갖춘 **신진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제공**

ㅇ 사업 참여인력(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74점** 달성

ㅇ 우수연구인력 표창, 사업단(팀)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모범사례 확산

▸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18.3)_**수상자 대표(포항공과대학교 김OO) 성과 사례**

2016년 12월에 미국 지구물리학회 학술대회를 BK21의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당시 포스터 발표를 통해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해당 논문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략)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파현상이 생태계에 냉해를 입히고 곡물생산량도 줄어든다는 연구를 출간하여 기후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논문을 출간하였으며 외신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② 글로벌 박사 양성 사업

< 사업성과 >

[학술논문 성과]

ㅇ '17년 기준 1인당 평균 1.38건의 학술논문 중 SCI급이 1.14건이고, **SCI 논문 1편당 평균 IF**(Impact Factor) **값이 5.57**로 나타났으며,

- **SCI 논문 1인당 평균 IF값도 6.30**으로 사업투자 효과 발생시기인 **'14년 6.48 이후 '17년까지 6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질적 성과 우수

※ (연도별 1인당 IF값) ('14) 6.48 → ('15) 6.14 → ('16) 7.07 → ('17) 6.30

ㅇ 특히, 해당분야 내 위상을 나타내는 **논문 1편당 평균 mrnIF 값이 76.6으로** 학술적 가치가 질적으로 높은 논문 게재

※ 국가 R&D 타 사업성과와 비교(최근 3년 평균 값 비교)

구 분	국가전체 ('14~16년)	신진연구자 ('14~16년)	중견연구자 ('14~16년)	글로벌박사 (17년)	리더연구자 ('14~16년)
평균 IF*	2.93	3.57	4.04	5.57	6.69
평균 mrnIF**	59.03	64.88	70.03	76.6	81.76

* IF(Impact Factor, 영향력지수) : 학술지별로 게재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
** mrnIF(Modified rnIF,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 : 분야 내 100(최고 순위) ~ 0(최저 순위)

[학술발표 성과]

○ '17년 기준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는 1인당 평균 국내는 1.17건, 국외는 1.29건으로 국외가 높게 나타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 부응

[사회진출 성과 등]

○ 수혜종료자(257명, 전체 종료자의 63.6%)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졸업생의 91.3%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

※ (사회진출 현황) 취업 67.1%, 박사 수 연구원 24.2% 미확정 8.7%

○ '17년 기준 이공계열 연구자 704명 중 198명(28.1%)이 특허를 출원하여 '11년 2.1%보다 13배 이상 증가(2014년 이후 30% 전후 유지)

< 현장의 변화 >

□ 수혜자 설문 조사('16.11.4)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2.7점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유지하고 있음

척도 /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도 (100점 환산)
1. 사업 효과성	3 명 (0.40%)	2 명 (0.27%)	15 명 (2.01%)	194 명 (26.04%)	531 명 (71.28%)	93.50점
2. 사업 성과도	2 명 (0.27%)	2 명 (0.27%)	11 명 (1.48%)	163 명 (21.88%)	567 명 (76.11%)	94.66점
3. 사업 제도의 신뢰성	3 명 (0.40%)	5 명 (0.40%)	51 명 (6.85%)	230 명 (30.87%)	458 명 (61.48%)	90.52점
4. 종합 만족도	4 명 (0.54%)	2 명 (0.27%)	17 명 (2.28%)	216 명 (28.99%)	506 명 (67.92%)	92.70점

□ 사업목적인 학문·연구 몰입과 국내 대학원 경쟁력 강화 기여 (사업 수혜 종료자 설문조사('17.1.31))

○ 사업 수혜를 통해 **응답자 전원(100%)이 연구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과 학업 몰입 향상**에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연구 및 학업 몰입으로 인해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98%)와 국내 연구 환경 개선(91%)**에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305]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2,147	1,440	1,440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8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정보화과장(이소영), 사무관(강병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의 교육대학교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전국 교육대학 학사업무(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입시 등)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학사 서비스 체계 구축 · 정보서비스의 확대 및 업무의 유연성 향상을 위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KORUS) 및 대학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복합 교육을 선도하는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LMS시스템 구축 · 재해 시 자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DR(원격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17 ~ '19
총사업비	56.47억원(국고: 50.27억, 대학분담금: 6.2억) * '18 까지 기투자액 : 35.87억원
사업규모	10개 국립교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 - HW 인프라 구축 및 SW 시스템 개발 용역 포함
지원조건	직접수행(국고 90%, 교육대학 1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10개 국립교육대학)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대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 1,440백만원

- 보안코딩 적용 통합학사정보업무 개발 (3차년도) : 1,440백만원

▪ 학사정보업무 개발(학적, 수업, 정보공시, 통계, 타시스템 연동 등)

- 보안적용 업무개발(PC용) = 1,200백만원
- 보안적용 업무개발(모바일용) = 24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1,440	1,440
▪ 보안코딩 적용 통합학사 정보업무 개발(2차)	1,440 · 보안코딩 적용 · 학사정보시스템 개발(2차)	1,440 · 보안코딩 적용 · 학사정보시스템 개발(3차)

□ 지원 필요성

< 학사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안취약성 심각 >

○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호환이 안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한계로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 '03~'07 국고지원으로 교대 ERP개발 사업 때 구축된 시스템

○ 사용 중인 DBMS 제품의 단종으로 제조사로부터 보안패치 미적용, 2017년 Activ-X 사용중지에 따른 조치 등 주요학사정보 관리에 대한 보안의 취약성 심각함

○ 사용자 보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등 10단계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및 대학시스템 간 연계 필요 >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과 대학의 단위시스템 간 연계성* 부족과 학사 및 행·재정의 자료 이중처리로 업무효율 저하 및 사용자 서비스 미흡

○ 대학 내부시스템 간 연계 또는 호환이 어려우므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대학교 재정 소규모로 자체 구축 곤란으로 인한 통합 구축 필요 >

○ 학생정원 감소, 재정규모·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신규 구축이 어려우며,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용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정보 자원의 통합적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종합대학과의 정보격차 해소

○ 교육대학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처리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 절감

* 대학별 구축: 111억 원, 통합구축: 56.47억원으로 약 54.4억원 절감효과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2,147**	**1,440**	**1,440**	**-**	**-**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1,427	-	-	-	-
▪ 통합학사정보 업무 개발	720	1,440(2차) (PC용*1= 1,200) (모바일용*1=240)	1,440(3차) (PC용*1= 1,200) (모바일용*1=240)	-	-
□ 비목(합계)	**2,147**	**1,440**	**1,440**	**-**	**-**
○ 자산취득비(430-01)	1,427	-	-	-	-
○ 연구개발비(260-01)	720	1,440	1,440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을 대비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과 통합학습관리(LMS)의 표준화 및 고도화

-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및 가상화 기반으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하여 학사업무의 고도화 추진
- 해킹,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탈취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보안 대응 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중심의 대학통합정보서비스 운영 및 관리 체계 마련

- 코러스시스템, 통합학사시스템, 대학정보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147	▪ 전국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 시스템 구축 : 21.47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 시스템 인프라 구축 : 14,27(HW 인프라 구축 (DB/NW/보안 등))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개발(1차): 7.2억원 (보안코딩 적용 학사정보시스템 개발(1차))	-	-	-
'18	1,440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개발(2차): 14.4억원 - PC용*1=1,200 - 모바일용*1=240	1,440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 시스템 개발(2차): 14.4억원 - PC용*1=1,200 - 모바일용*1=240	-
'19	1,440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개발(3차): 14.4억원 - PC용*1=1,200 - 모바일용*1=240	1,440	▪ 보안코딩 적용 통합 학사정보 시스템 개발(3차): 14.4억원 - PC용*1=1,200 - 모바일용*1=240	-
'20		▪ 19년 사업종료		▪ 19년 사업종료	
'21		▪ 19년 사업종료		▪ 19년 사업종료	
'22		-		▪ 19년 사업종료	
연평균 증가율 (%)	△16.5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10.09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관련과제 : 운영체제의 효율화)
- '10.11 . ~'11. 02.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방향 정책연구
- '12.03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개발 구축착수(학사업무 제외)
- '15.03.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15.12 : 교육대학 학사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결정
  ※ 전국교육대학교 정보기관협의회('15.12 서울교대)
- '16.03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BPR/ISP 완료
  ※ 대학자원관리시스템구축 업무재설계(BPR/ISP) 보고서중 교대학사만 취합 재정리
- '16.04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신청(기재부)
  ※ '16. 3월 전주교대 등 교대협의회, 공통기반의 교대통합학사시스템 구축 건의제안
  ※ '16. 6월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광주교대총장 건의사항
- '16.12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구축 사업예산 확정(국회)
- '17.01 :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구축 센터대학 선정(광주교대)
  ※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H/W 인프라구성 및 S/W개발 추진 중심역할 수행
- '17.02 : 교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구축 추진계획 수립 (차관)
- '17.12 : 1차년도 사업완료(통합 인프라구축 및 시스템 1차 개발)
- '18.03 : 2차년도 정보시스템 구축 진행중(12월까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 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대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	-	-	-	21.47	21.47	14.40	14.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21.47 ( )	( )	( )	( )	21.47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147	2,147	1,440	-	1,440	1,44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없음

○ 집행현황 : 2월 선급금(480백만원) 집행, 6월 기성금(320백만원) 집행, 12월말 잔금(640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내 용
구축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	○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전략, 사업추진방향, 시스템 확산방안, 연도별 추진일정 등
통합구축센터 구성 < 국립 교육대학 >	○ 통합추진팀(광주교대 5명) 구성 - 사업총괄 1명(광주교대), 시스템구축 4명(전산팀장외 3명) ○ 통합구축팀(각 교대 팀장급 10명) 구성 - '17.1월~'19.12월까지 (계속)근무인력 (탄력근무인력 형태)
시스템 구축 < 교육부 >	○ '17년 : 인프라 시스템 및 학사시스템 구축 ○ '18년 : 응용S/W 개발(분석 및 설계) 및 인프라 보완 ○ '19년 : 응용S/W 개발(구현 및 시범)
시범운영 및 확산 < 교육부·국립교대>	○ '19년 12월 : 일부 시범운영(2▸4▸4개 대학) ○ '20년 3월 : 시스템 개통(10개 대학)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7 까지	'1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19		'20		'21		'22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 교육대학 통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7~'19)	56.47	56.47	24.47	16	16	16		-		-	-
합 계	56.47	56.47	24.47	16	16	16		-		-	-
○ 국 고	50.27	50.27	21.47	14.4	14.4	14.4		-		-	-
▪ 직접수행	50.27	50.27	21.47	14.4	14.4	14.4		-		-	-
○ 대학부담	6.2	6.2	3	1.6	1.6	1.6		-		-	-

(10) 단위사업의 성과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대통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율(%)	목표	-	-	신규	80	100	연도별 구축률에 따른 예산 집행률	-18년 : 교대통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률 =(HW구축률+SW 구축률)/2 -19년 :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 100	구축비, 개발비, 감리비 등 계획에 따른 집행관련 증빙서류
	실적	-	-	신규	-	-			
	달성도	-	-	신규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7. 참고자료

(참고) 교육대학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 설명자료

참고 **교육대학 통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설명자료**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전국교대 학사업무(학부, 대학원, 부속기관, 입시, 모바일 등)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와 연계하는 **차세대 학사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범위) 응용SW 개발 및 운영 인프라 구축**

- HW 인프라 : 통합운영인프라(서버, 통합DB, 정보보안, 백업체계 등) 구축
- 응용 SW : 학부, 대학원 등 학사업무(모바일 포함)

○ **(사업기간) 3년 (2017년 ~ 2019년)**

- 1차년도 : 2017. 03 ~ 2017. 12 (H/W 인프라구축 및 응용SW 개발1단계)
- 2차년도 : 2018. 01 ~ 2018. 12 (응용SW 개발 2단계)
- 3차년도 : 2019. 01 ~ 2019. 12 (응용SW 개발 3단계)

○ **(소요비용) 56.47억원 (국고 50.27억, 대학분담금 6.2억)**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구축비	응용SW개발	720	1,440	1,440	3,600
	인프라 구축	1,427	-	-	1,427
	소 계	**2,147**	**1,440**	**1,440**	**5,027**
	국고	**2,147**	**1,440**	**1,440**	**5,027**
	대응투자	**300**	**160**	**160**	**620**
운영비	사업 운영비	60	60	60	180
	유지 보수비	-	285	525	810
	기타 운영비	132	264	264	660
	소 계	**192**	**609**	**849**	**1,650**

Ⅱ. 추진경과

○ ‘10. 09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관련과제 : 운영체제의 효율화)

○ ‘11.11~’12.03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대상사업 선정에서 학사업무 제외

○ ‘15.12 : 교육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결정

○ ‘16.01 : 교대 학사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전국교대 정보기관협의회 개최

○ ‘16.05 : 사무국장 협의회 및 총장협의회 안건 논의

○ ‘16.12 : **교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확정**

○ ‘17.08 : 교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중

Ⅲ. 사업내용

○ **H/W 인프라 환경은 1차년도('17년)에 구축**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 지원**

○ 10개 교육대학의 통합학사정보시스템(학부, 대학원, 입시, 부속기관, 모바일)을 업무분석, 시스템 개발, 안정화, 고도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연도별,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공통기반의 시스템 개발 및 각 교육대학의 특성화 개발**을 통한 **차세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단계	공통 부분	특성화 부분	비고
1단계 (2017)	1)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마련 2)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3) 대학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4) 입시시스템 구축 5) 모바일서비스 인프라 구축	1) UI 영역 개발 2)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 3) 학사처리 서비스 툴 개발 4) DB 마이그레이션 5) 조회/통계 등 비정형모듈 개발	2개대학 특성화 (광주교대, 대구교대)
2단계 (2018)	1) 대학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2) 입시시스템 고도화 3)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4) 학부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1) UI 영역 개발 2)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 3) 학사처리 서비스 툴 개발 4) DB 마이그레이션 5) 조회/통계 등 비정형모듈 개발	4개대학 특성화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3단계 (2019)	1) 부속기관 행정시스템 구축 2) 이포트폴리오 구축 3) 이러닝서비스 구축 4) 상담/통계 서비스 구축 5) 허브시스템 고도화 6)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7) 대학원 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1) UI 영역 개발 2)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발 3) 학사처리 서비스 툴 개발 4) DB 마이그레이션 5) 조회/통계 등 비정형모듈 개발	4개대학 특성화 (공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309]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	-	15,233	15,233	순증

* 사업코드 : 11 - 11 - 0 - 050 - 052 - 2200 - 2238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이해숙), 사무관(임종일), 주무관(김재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방학 중 임금 등) 지원
사업기간	‘19~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사립대(일반대, 전문대)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대학(사립대)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 15,233백만원

- 고등교육법 개정('19.8.1 시행)에 따른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방학 중 임금 등) 소요액 편성
- 대학의 특성, 시간강사 채용요인*, 강의료 및 강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 강사의 고용규모 및 총 강좌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대학 등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15,233
		· 방학 중 임금('19.8.1~12.31) 차등 지원

□ 지원 필요성

○ 강사법 유예법률안('16.1.1.) 논의 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통과('15.12.23.) 시 국회 부대의견(발췌)】

3. **정부는 정부예산지원**,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7. 정부는 강사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내 연구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도서관 이용 및 대학 내 주차 등 학내시설 이용에 있어서 강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11.12.30)하였으나 대학 현장의 이견으로 4차례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18.2~9)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19.8.1일 시행 예정
- 이에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으로 소요되는 대학의 방학 중 임금 지원으로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5,233**	**15,233**	**순증**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15,233** '19년 시간강사 처우개선비*1식	**15,233**	**순증**
□ 비목(합계)			**15,233**	**15,233**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15,233	**15,233**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소요액(방학 중 임금 등)을 지원하여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대학의 특성, 시간강사 채용요인, 강의료 및 강사수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일정 비율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 초		'18~'22 중기계획 변 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15,233	15,233 (시간강사 처우개선비:1학기 15,233*1식)	
'20			48,403	48,403 (시간강사 처우개선비:2학기 31,532*1식, 퇴직금 16,871*1식)	
'21			50,097	50,097 (시간강사 처우개선비:2학기 32,636*1식, 퇴직금 17,461*1식)	
'22			51,850	51,850 (시간강사 처우개선비:2학기 33,778*1식, 퇴직금 18,072*1식)	
연평균 증가율 (%)			3.5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5,233	15,233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315	315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0.7	20.7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315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320-01) 152억원을 가이드라인 〈표1〉 의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81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52억원 ÷ 0.4812억원 = 315명 ※ 시간강사는 특성상 **고급 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이며, 시간제 근무로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복무 특성이 달라 실제 창출 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시간강사 **일자리 안정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강의 경험 축적으로 교육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기여 * 시간강사는 90% 이상이 석·박사급인 고급 인력이며, 학문후속세대로서 교육·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산·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일자리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회통합위원회, 대학 시간강사 대책 관련 방안('10.10.25)
  · 당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도 낮고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강의료 인상 추진
- 국회 교문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 유예('16.1.1.→'18.1.1.) 시 부대의견 제시('15.12.31.)

※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대의견' 중 관련 내용

> 정부는 국립대학 강사처우 개선 사업('16년, 약 1,090억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16년, 약 180억원)의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공립대학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 완화 및 대학내 연구공간 제공·학내시설 이용에 차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전문가(국회 추천)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19.8.1)

* 총 18회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18.2월 ~ '18.8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년							
'17년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교육부 예산 교부 → 예산 집행(사업수행) → 사업집행 후 정산 반납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시간강사법 시행유예에 대한 부대의견(붙임1)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구성 및 명단(붙임2)

붙임 1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대의견('15.12.31)

1.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시간강사법")의 시행 유예 이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와 대학·교수·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이하 "대학 강사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사 제도 발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협의체를 통해 시간강사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 법률안을 내년도 8월까지 제출한다.

3. 정부는 정부 예산 지원,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정부는 국립대학 강사처우 개선 사업('16년, 약 1,090억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16년, 약 180억원)의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평균 강의료 인상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 지표에 전임교원 확보율, 시간강사 강의료 수준 등 필요한 정책적 지표를 반영한다.

6.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7. 정부는 강사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 내 연구 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도서관 이용 및 대학 내 주차 등 학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강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붙임 2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명단

□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구 분	구 성		역 할
협의회	강사대표 (4)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강사법 등 법령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논의 및 도출
	대학대표 (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교무처장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문가 (4)	▸ 국회 추천	
⇧	⇧		⇧(지원)
협의회 자문팀	▸ **국회, 강사·대학·교육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 * 이슈페이퍼 형태의 보고서 작성		▸ 협의체 논의 안건 관련 현황 및 대안, 쟁점 분석

□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명단

구분	추천기관(단체)	성명	비고
강사 (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
		이상룡	정책위원장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동애	지도위원
		채효정	강사
대학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정책연구팀장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장우진	아주대 교무처장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강문상	인덕대 교무처장
전문가 (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숙진	전주비전대 교수
		이용우 (위원장)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남기욱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유주희	경복대 교수

[310] 대학창업 활성화(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창업활성화	12,000	15,820	17,214	**77**	**0.4**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8 - 310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강소희), 주무관(서정은)

※ '19년부터 기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세부)**과 **대학원(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세부)**,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내역)** 사업을 대학창업 활성화(세부)로 **통합**

※ **증감(B-A)** : **17,214** ('19예산) **- 17,137** (내역사업의 '18년도 예산 총합) **= 77**

1. 사업개요

※ 참고: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19년도부터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사업명 변경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①(**대학창업펀드 조성**)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동문,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등이 공동으로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할 경우, 매칭 출자 형태로 지원 ②(**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창업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창업에 특화된 대학의 Lab 지원 ③(**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제2의 창업붐(Boom) 조성을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창업교육 콘텐츠·컨설팅 지원, 창업문화행사 등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①(**대학창업펀드 조성**) '17~ ②(**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8~ ③(**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2~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①(**대학창업펀드 조성**) 子펀드 5개 내외 (펀드 당 40억 기준) ②(**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 내외 ③(**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전체대학
지원조건	①(**대학창업펀드 조성**) 출자 (정부 3 : 대학 등 1) ②(**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출연 ③(**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출연
사업시행주체	①(**대학창업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주관기관), 대학, 지자체, 기업 등(참여기관) ②(**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한국연구재단(주관기관), 대학(참여기관) ③(**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한국연구재단(주관기관), 전문기관(공모 통해 선정)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대학창업펀드 조성>

○ 산출내역 : 15,000백만원 × 1개 계정(모태펀드 내 교육계정)

■ (학생창업기업 280개×50백만원 + 교원창업기업 30개×200백만원)×75% = 15,000백만원

■ 지원 창업기업 규모 산출 근거

- '19년 대학창업기업이 3,689개(학생 기업 3,131개, 교원 기업 558개)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학생 기업의 9% 내외, 교원 기업에 5% 내외의 창업기업에 투자

※ 전체 투자금액 중 75% 이상을 대학 창업 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함

< 대학창업기업 예상 현황 >

	실적치		예상치*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 기업	861개	1,191개	1,644개	2,269개	3,131개
교원 기업	137개	195개	277개	393개	558개

* '15년 대비 '16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상치 산출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산출근거 : 5개교 × 198백만원 = 989백만원

○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원 선발부터 졸업 후 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 추진

■ 특성화 된 Lab(바이오, IT, 나노 등)을 선정*하고, Lab 당 매년 20명 내외의 창업 의지를 가진 학생**을 선발 후 기술창업***까지 지원 연계

* 대학원 과정 신규 개설 또는 기존 대학원 과정 변경 가능
** 학생 선발 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선발
*** 창업계획서 및 창업 실행으로 졸업 요건 부여

■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창업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기간마다 단계 평가 실시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산출근거 : 1,225백만원 × 1식

○ 대학창업교육 컨설팅, 교재개발·보급, 전문가 양성 연수, 대학 창업경진대회(창업유망팀 300) 개최 등 창업교육체제구축 지원 계속 추진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창업활성화 사업	15,820백만원	17,214백만원
■ 대학창업펀드 조성	15,000백만원×1식 (310여개 대학창업기업에 투자)	15,000백만원 × 1식 (310여개 대학창업기업에 투자)
■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820백만원×1식 (5개교x164백만원x1식)	989백만원×1식 (5개교x198백만원x1식)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225백만원×1식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8년 예산 : 1,317백만원 (기존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 포함)

□ 지원 필요성

<대학창업펀드 조성>

○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16.4.12., 관계부처 합동)」 및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16.4.27., 관계부처 합동)」 등에서 **'대학창업펀드' 조성 명시**

- 대학 내 창업 붐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창업펀드'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

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16. 4. 12, 관계부처 합동)」
□ 대학(원)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 대학내 **창업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내실화하고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 신설 등 검토

②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16. 4. 27, 관계부처 합동)」
□ 대학창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 내 학생 및 졸업생 중심 창업 및 대학기술 기반 창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Death Valley 단계**에 있는 **대학 내 창업 초기 기업*들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 필요

* 학부생 창업, 대학원(석사, 박사)생 창업 및 3년 이내 졸업생 창업 등

※ 일반기업과 달리, 초기 학생창업기업은 상업화 완성도가 낮아, 창업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용화 연구 및 초기 사업화 자금이 초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필요

- **다양한 정부 정책 펀드***가 있으며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

* 성장사다리펀드(금융위),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신성장동력펀드(산업부), 농림부모태펀드(농림부) 등 → 민간 펀드운용사는 투자위험 최소화 및 수익성 확보를 추구하므로, 안정화된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집중

○ 대학 내 펀드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대학창업펀드에 매칭 출자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확보 지원

-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대학 내 적극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 대학의 창업 초기기업에 **안정적·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 확보** 및 민간 Venture Capitalist 투자 유치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성장 지원**

부처명	출자 목적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등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방송통신사업분야 투자 펀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투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 조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 투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 펀드 조성, 앤젤매칭투자조합 등 엔젤투자 활성화,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특허청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스포츠산업의 투자 펀드

※ 모태펀드 설치 현황

○ **고등교육분야 GDP 1%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학 내 창업 활성화 모델 확립** 가능

○ '대학發 창업 활성화 대책'('17.3.27.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대학 창업기업 지원성과가 대학에 축적되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기업지분 확보 유도 가능

○ '17년 **11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신청**하여 **5개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예상 금액 160억(정부 3:대학 등 1)을 상회**하여 **총 188.5억 원**의 대학창업펀드가 조성됨

○ '18년 **사전 수요조사** 시에도 **22개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대학창업펀드 신청 의사**를 밝혔으며, **사업 설명회** 때 **27개의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참석**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發 창업 활성화 방안'('17.3.27.)을 마련**하고 기존 학부중심 창업교육에서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로 **정책방향 전환**

※ 이공계 대표자 창업기업의 매출액(10.5억원)이 타 계열보다 2~4배 높으며,

박사 대표자 창업기업 매출액(21.9억원)이 학사 대표자 기업보다 2.6배 높음
[창업기업 실태조사 / 중기청]

※ 중국 창업의 산실인 베이징대, 칭화대에서도 학부 창업 비율은 7~8%에 불과하며, 석·박사, 교수 창업 위주로 이루어 짐

○ 그러나 **기존 대학원생은 안정된 진로를 선호**하며, 교수가 지정하는 R&D과제를 주로 수행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

-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원 중심 실전창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필요

- 아울러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내 장비, 기술, 인적자원 등 **창업 인프라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대학 내 산재된 **창업지원조직의 역량 결집 필요**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9.) 수립 이래, 지난 5년간 대학 **창업교육이 급격히 성장**

※ 창업강좌 수강생(만명): ('15)29.5→('16)37.2 / 창업동아리 학생(만명) : ('15)3.88 →('16)4.54

- 특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및 창업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창업열기가 고조·확산**되고 있으며, **학생/교원 창업기업도 확대** 추세

* 산학협력 고도화형(4년제 55교, 전문대 15교), **일반형 20교, 입소형 20교
※ 창업강좌 수 : ('15) 4,262개 → ('16) 10,461개
※ 학생/교원 창업기업 : ('15) 861개 → ('16) 1,191개 / ('15) 137개 → ('16) 195개

○ 대학의 창업교육이 **실전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그 간 대학 창업교육은 양적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어 **학생 창업교육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의창업 등 실전중심의 창업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전국대학 창업강좌 개설현황, 대학정보공시 >

기준년도	이론형 강좌 수	실습형 강좌 수
2015	3,292	1,135
2016	8,175	2,145
2017	9,349	2,479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창업활성화**	**12,000**	**15,820**	**17,214**	**77**	**0.4**
■ 대학창업펀드 조성	12,000	15,000 (15,000x1식)	15,000 (15,000x1식)	-	-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820 (820x1식)	989 (198x5개교)	**169**	**20.6**
■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산학협력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1,550x1식)	(※산학협력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1,317x1식)	1,225 (1,225x1식)	**△92**	
□ **비목**(합계)	**12,000**	**15,820**	**17,214**	**77**	**0.4**
○사업출연금(350-02)	-	(※산학협력고도화 지원 내역사업 1,317x1식)	1,225	**△9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820	989	169	3.6
○일반출자금(460-01)	12,000	15,000	15,000	-	-

※ '19년부터 기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세부)과 대학원(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세부),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내역) 사업을 대학창업 활성화(세부)로 통합
※ **증감(B-A)** : **17,214** ('19예산) **- 17,137** (3개 내역사업의 '18년도 예산액 총합) **= 77**
*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 ('17) 1,550백만원 → **('18) 1,317백만원 → ('19) 1,225백만원**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대학 내 적극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 **'실험실 창업 지원의지'**가 **높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부처 공동**(교육부·과기부)으로 **선정**하여 **지원**

-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지원내용을 특화***하고, 이후 **중기부**의 **기업성장지원사업**(TIPS, 창업도약패키지 등)등 으로 연계

* (교육부) 학사제도 개편, 학생창업수당 지급, (과기부) R&D, (중기부) 시제품제작·공간제공 등

○ 양적으로 크게 확장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창업 유도를 위한 질적 고도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2,000	▪ 대학창업펀드조성: 12,000백만원x1식=12,000백만원			
'18	15,820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820백만원x1식=820백만원	17,137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820백만원x1식=820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317백만원×1식=1,317백만원	-
'19	16,820	▪ 대학창업펀드조성: 14,400백만원x1식=14,4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420백만원x1식=2,420백만원	17,214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989백만원x1식=989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225백만원×1식=1,225백만원	△923
'20	30,276	▪ 대학창업펀드조성: 25,920백만원x1식=25,92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4,356백만원x1식=4,356백만원	17,214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989백만원x1식=989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225백만원×1식=1,225백만원	△14,379
'21	30,276	▪ 대학창업펀드조성: 25,920백만원x1식=25,92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4,356백만원x1식=4,356백만원	17,214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989백만원x1식=989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225백만원×1식=1,225백만원	△14,379
'22			17,214	▪ 대학창업펀드조성: 15,000백만원x1식=15,000백만원 ▪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989백만원x1식=989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225백만원×1식=1,225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23.6		1.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대학창업펀드 조성>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5,000	15,000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342	342	-
		재정지출 고용효과	324	324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2.8	22.8	-
		재정지출 고용효과	21.6	21.6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나-<5>창업지원사업에 해당하며, 아래 ①, ② 방식으로 각각 산출 ①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업무담당 채용인원 + 지원업체수 × 창업률 × 1년 후 생존율 × 창업기업당 평균고용인원 ② (재정지출 고용효과)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유형 산출 ○ 펀드 수 : 5개 - '17년 5개 펀드 선정(예상) 기준으로 '18년 선정 펀드 수를 5개로 가정 ○ 채용인원 : 50명 (1명 × 5개 펀드 × 10년) - '17년 사업계획 상, 대학창업펀드 운용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 하고 펀드 운용기간은 10년으로 설정 - 소요 인건비는 10억으로 가정(0.2억(1년, 1명) × 5개 펀드 × 10년) ○ 지원 기업수 : 280개 ((총 사업비 150억 - 직접 인건비 10억)/0.5억) - 총 사업비 중 직접 인건비를 제외한 140억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업 당 0.5억원 투자 가정 ○ 창업률 : 100% - 대학창업펀드는 기 창업 또는 창업 직전단계에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창업률 100% 적용				

	○ 1년 후 생존율 : 54.9% (20대 대표자기업 1년 후 생존율 49.58%+ 정책금융 지원 기업 생존율 5.32%) - 통계청 2014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보도자료('15.12.23.) 및 KDI FOCUS('16.2.4.) 중 정책금융 지원 기업 생존률 분석 결과(생존률 5.32%p 상승) 적용 ○ 창업기업 당 평균고용인원 : 1.9명 - 2015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16.12.)에 제시된 학생창업 기업 당 평균고용인원 0.8명에, 기업 당 평균 창업자 수 1.1인 반영 ☞ 총 고용효과 342명 = 업무담당 채용인원 50명 + 지원업체수 280개 × 창업률 100% × 1년 후 생존율 54.9% × 창업기업당 평균고용인원 1.9명 ② 유형 산출 ○ 직접고용효과 : 50명 (① 유형의 채용인원 기준 적용) ○ 간접고용효과 : 274명 (140억 ÷ 0.51억) - 총 사업비 중 직접 인건비를 제외한 140억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 가이드라인 <표3> 창업지원비에 해당하므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0.51억 원으로 나누어 간접고용 산출 ☞ 총 고용효과 324명 = 직접고용효과 50명 + 간접고용효과 274명 ☐ **2018년 고용효과** ① 유형 : 342명 ② 유형 : 32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20	989	16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4	13.7	2.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재정지출 고용효과만 계산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9.89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13.7 ☐ **2018년 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8.2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11.4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317	1,225	△92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8.3	17	△1.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재정지출 고용효과만 계산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12.25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17 **□ 2018년 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13.17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18.3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 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 **국정과제 52-6(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원)생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창업펀드 확대, 대학원 연구실(Lab) 중심 창업지원사업 등 추진

○ **추진경위**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13.9.6. 관계부처 합동)
  ※ 학생창업 도전의 적극적 지원 : 학생창업도전자금 확대(LINC 사업, 대학적립금 등)
-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16.4.12. 관계부처 합동)
  ※ '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사업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대학(원)생의 창업활동 지원
- 청년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16.4.27. 관계부처 합동)
  ※ 대학창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發 창업 활성화 방안('17.3.27. 관계부처 합동)
  ※ 대학창업펀드 조성 및 개인투자조합 출자범위 확대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 ('17.1.18, 경제관계장관회의)
  * 상용화 R&D, 기술교육 등 정부예산을 집중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활성화 지원
- 「대학발(發) 창업 활성화 방안」 수립 ('17.3.27,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
  * 대학의 패러다임을 창업 중심으로 전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기획 및 관계부처* 협의** ('17.5.~12.)
  *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3. 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 ('13.9.)
-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실행계획 수립 · 추진 ('14~'17)
- 새정부 국정과제 52-6「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추진
- 관계부처 합동「대학발(發) 창업 활성화 방안」수립 ('17.3.)
-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7.6.~)
-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7' 개최 ('17.10.)
- 대학교원 창업 참여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 ('17.11.)
  *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의 4(계약제 임용 등): 교원 산학연협력 실적을 재임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창업펀드 조성	-	-	-	-	-	120	-	150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	-	-	-	-	-	8.2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5	-	13.5	13.5	-	15.5	-	13.17	-

(2) 최근 3년간 이 · 전용, 이월 · 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5 (13.5)	( )	( )	13.5 (13.5)	13.5 (13.5)	( )	( )
'16년	13.5 (13.5)	( )	( )	13.5 (13.5)	13.5 (13.5)	( )	( )
'17년	135.5 (135.5)	( )	( )	135.5 (135.5)	135.5 (135.5)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3,550	-	17,420	△1,600	15,820	15,820	100

※ 대학창업펀드조성(세부), 실험실(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세부) 사업만 포함.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내역) 사업은 '18년까지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세부)의 내역사업임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2,420백만원→820백만원(△1,600)

○ 집행현황

■ 15,820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년도/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 감사원	○'창업강좌 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하향 설정('15년 결산 재무감사)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으로 창업강좌 수가 예측을 초과하여 급격히 늘어나 성과 측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16년 '창업강좌(교육) 만족도'로 성과지표 새로 설정
2016 교문위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위탁협약 변경 및 재정산 필요	○ 2016년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협약 연장 조치 완료('17.9.27.)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2016 교문위	○사업수행방식 변경 필요	○ 2018년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비 집행 지침 제정 추진후 재정산 추진

년도/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예결위	○ 대학창업펀드 신규출자 확대 점검	○ '17년 신규 사업인 점, 펀드의 장기 운용(총 10년) 및 펀드 결성 소요기간 고려하여 10월 현재 기업투자 실적 도출 곤란
2017 예정처	○ 대학창업펀드 성과지표 '지원기업 평균 생존율' 추가 필요	○ 장기사업(10년) 특성 상, 사업 초기실적(2~3년) 분석 후 타 성과지표 보조 활용 검토 추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대학창업펀드 조성>

국가	추진 사례	주요 내용
영국	정부주도 대학참여 펀드 운용(UCSF :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 정부가 단계별 창업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드(Seed)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 정부가 총 자금의 3/4을 출연, 나머지는 대학이 마련해 운용하고 대학에서 자체적 자금으로 펀드를 계속 유지·운영
미국	시카고 대학의 ARCH Venture	· 대학 내 창업초기 단계 지원을 위해 벤처캐피탈 ARCH Venture를 설립,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대학 기술창업과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 · 대학으로부터 창업시도가 기업설립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성을 가져 대학을 비롯하여 기업, 국가연구기관까지 기술 발전과 상업화를 지원
일본	동경대학의 UTEC	·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운용사(UTEC)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CASTI)의 연계를 통해 동경대의 연구성과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창업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여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붙임3. 해외 기술기반 창업성공 사례

(6) 사업추진절차

<대학창업펀드조성>

< 대학창업펀드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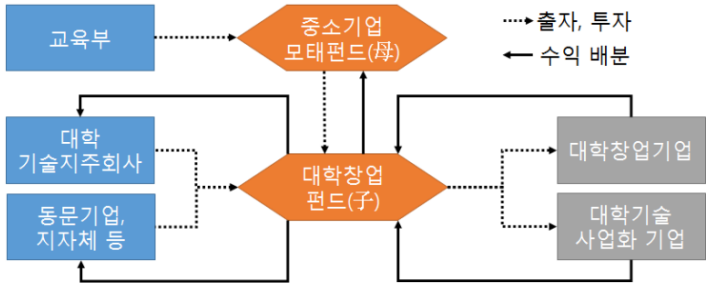

< 투자대상 子펀드 선정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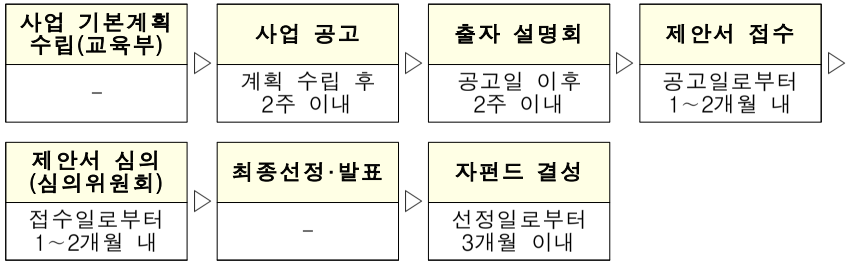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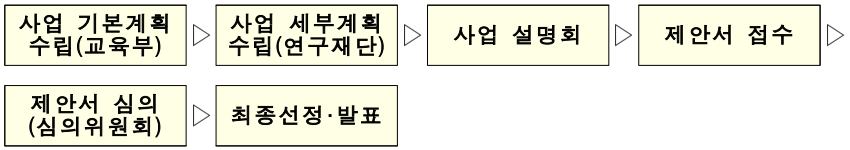

<대학창업교육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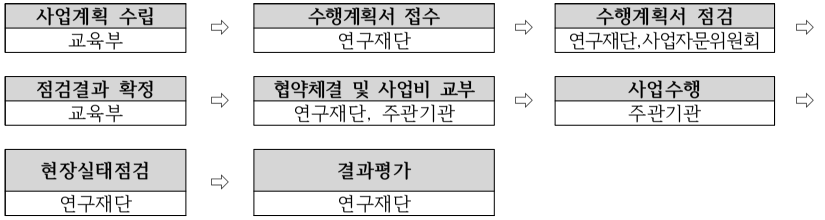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창업강좌수 (개)	목표	528	-	11,000	11,550		전년도 목표치에서 5% 상향조정	교육기관별 창업강좌수 * 자료수집 방법 변경('16)으로 산식변경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교육부)
	실적	774	10,461	11,828	-				
	달성도	146.6	-	100.7	-				
창업강좌(교육) 만족도 (단위)	목표	-	70	72	75		전년도 목표치에서 5% 상향조정	창업강좌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7점 척도 측정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적	-	70	72.1	-				
	달성도	-	100	100.1	-				
창업유망팀 수(개)	목표			300	300	300	창업경진대회 목표 창업팀 수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창업유망팀의 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300	300	-			
	달성도			100	100	-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0		신규지표임을 감안, 과반인 70점을 목표치로 설정	창업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달성도				-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00	100	모태펀드 출자 약정액/사업 예산액	○ 측정방법 모태펀드 매칭조합 선정 결과	선정결과 보고서
	실적	-	-	100	100	-			
	달성도			100	100	-			

※ 창업강좌수, 창업강좌만족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조사 시차 고려하여 '18년도 목표치 기재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 개요

○ 실험실 창업선도대학(구,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개요

○ 해외기술기반 창업 성공사례

○ 대학창업통계

붙임1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 개요**

□ 추진 개요

○ 각 대학(기술지주회사), 동문, 지자체, 민간 등 출자를 통해 **대학 창업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 추진 (정부 예산 150억 원)

-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매칭 출자(정부 3 : 대학 등 1)**하고, **사업운영 관리는 한국벤처투자**㈜(벤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에서 담당

※ 단,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해 펀드 결성액의 20% 이상 업무집행조합원 출자 필요

< 대학창업펀드 운영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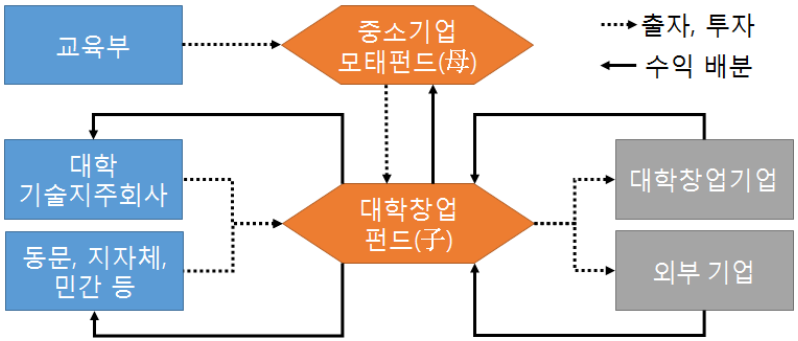

○ **(투자 대상)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그 중 **대학 창업기업에 총 투자액의 75% 이상(학생 창업기업은 50% 이상)을 투자**

유형 구분 (투자 비율)			투자 대상 요건
대학창업기업 (75)	대학구성원 기업	학생 (50)	학생(대학원생, 5년 이내 졸업자 포함), 교직원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며 해당자의 소유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교직원	
	대학기술기반 사업화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외부 기업 (25)			그 외 외부 기업

□ 子펀드 선정 개요

< 투자대상 子펀드 선정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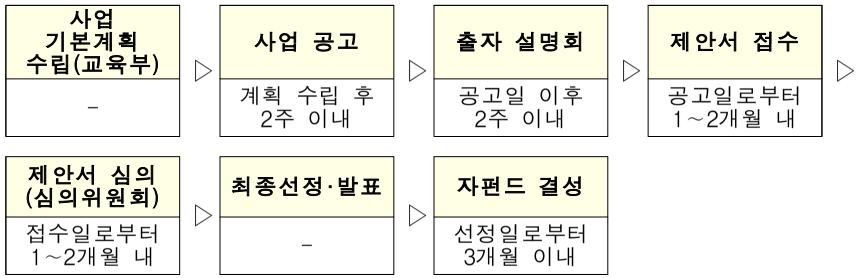

○ **(선정규모 및 방법)** 모태 출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지 않는 기술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운용 중인 기술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유형**으로 구분

- 1유형(100억 원)과 2유형(50억 원)으로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 평가**하며, 배정 예산별로 평가 순위 순으로 선정

< 子(자)펀드 유형 분류 및 선정 규모 >

구분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 단독	대학 연합
결성 주체	- 단독기술지주회사 보유 대학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보유 과학기술원	- 연합 기술지주회사 또는 연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간 공동 운용(Co-GP)
펀드운용 (General Partner)	이하의 기술지주회사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기술지주회사 -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성격을 가지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출자자 (Limited Partner)	동문 등 개인,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제3조	
조합 유형	개인투자조합	
주 투자 대상	대학 내 창업기업	
子펀드 제시규모	펀드 당 10~50억 원 ※ 펀드 최소 결성규모는 10억 원이며, 모태조합에서 동일 子펀드 최대 출자 가능 금액은 37.5억 원으로 함	

- 1차(서류 및 현장실사)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회 심의)로 나누어, 합산점수로 순위 결정

○ **(심사 항목)** 운용사 현황, 펀드 운용능력, 사업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운용 보수 및 인센티브

○ **(운용 보수 및 인센티브)** 일반 벤처기업 투자에 비해 대학 창업기업 대상 투자 위험도가 높으므로 사업 유인 확대 필요

- (GP : 대학기술지주, 전문엔젤) 펀드관리보수 지급 및 높은 투자 성과 달성 시, 성과보수 및 추가인센티브 지원

※ (펀드관리보수) 결성~3년 간 매년 子펀드 결성금액 × 2.5% 지급
4~5년 간 매년 子펀드 결성금액 × 1.25% + 투자잔액 × 1.25% 지급
5년 이후 투자잔액 × 2.5% 지급

※ (성과보수) 펀드 IRR 0% 초과 시, 초과수익의 25% 지급

※ (추가인센티브) 펀드 IRR 5% 초과 시, 모태펀드 수익분의 10% 범위 내 추가 보수 지급

- (LP: 동문, 지자체 등) 모태펀드 지분 콜옵션 부여

※ (모태펀드 콜옵션) 모태펀드의 기업지분을 타 투자자에게 취득 가액 + α (시장 금리 수준)으로 매각

붙임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개요

□ 추진 배경

○ **실험실 창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 이라는 점에서 일반창업에 비하여 **고용창출** 및 **생존률**이 **우수**

○ 우리나라는 그간 **학부 중심 창업 교육**, IT 분야 창업 마인드제고, BM 개발 등 **아이디어 창업 지원**에 **주력**하여 실험실 창업실적 저조

□ 추진 방향

○ 창업선도대학(중기부) 중 '**실험실 창업 지원의지**'가 **높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부처 공동**(교육부·과기부)으로 **선정**하여 **지원**

-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지원내용을 특화***하고, 이후 **중기부**의 **기업성장지원사업**(TIPS, 창업도약패키지 등) 으로 연계

* (교육부) 학사제도 개편, 학생창업수당 지급, (과기부) R&D, (중기부) 시제품제작·공간제공 등

□ 사업 내용(안)

○ **(교육부)**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 **(과기부) 후속R&D 자금**, 유망기술발굴·사업화모델개발·법인 설립준비·펀딩유치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 2018년도 사업 개요

○ **(예산) 2018년 총 24.2억원** (교육부 8.2억, 과기부 16억)

○ **(대상)** 2018년도 중기부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총 43개)

○ **(선정규모) 5개 대학 내외**(평가 결과에 따라 5억원 내외 차등지원)

○ **(지원기간)** '18년~'20년 (3년 = 2+1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결정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지원 '중단' → 자동 '탈락')

○ **(선정방식) 1단계 평가**(기술자체분석보고서)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실험실창업 지원계획)를 실시하여 지원대학 선정

* 1단계 평가에서 5개 이상의 기술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 **(일정)**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3월 중)→대학 선정 평가(4월 초)

붙임3 해외 기술기반 창업 성공 사례

기술 분야	회사(국가) /설립년도	특징	참고
IT 인공지능 모듈 센서 SW VR 빅데이터	DeepMind (영국) /2010	· 인공지능 기술 기반 알파고 개발 · **Google이 6,000억 원에 인수**('14)	
	Airware (미국) /2011	· MIT 졸업 후 보우잉사 근무 후 창업 · 드론의 비행 운영시스템(자동항법) 소프트웨어·모듈 개발 · **구글벤처스, 인텔캐피탈, GE** 등에서 **약 900억 원 투자 유치**	
	Magic Leap (미국) /2010	· **마이애미 대학 생물의학** 졸업생들이 외과용 로봇 팔 지원 플랫폼 기술과 가상현실 이미지 기술을 연결하여 창업 · **구글, 퀄컴, KKR, 알리바바** 등으로부터 자금 유치, **현재 기업가치 약 5.4조 원**	
	Palantir Technologies (미국) /2004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 · CIA, FBI, NSA, 미 군사조직 등에서 해당 솔루션 사용 ·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창업 · **현재 기업가치 약 24조 원**	
	Mobileye (이스라엘) /1999	· 자율주행용 자동차(센서 및 카메라) 핵심기술 보유 · 인공지능 및 컴퓨터비전의 저명한 학자인 **히브리대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 · **Intel이 17조 원에 인수**('17)	
에너지	Bloom Energy (미국) /2001	· 세라믹 멤브레인 연료전지 블룸박스 상용화 · 아리조나대 교수가 NASA와 함께 화성에서의 거주를 위해 필요한 기반기술 연구 중 연료전지 기술 착안하여 창업 · **현재 기업가치 약 3.4조원**	
	Sakti3 (미국) /2007	· 저비용 고성능 본질안전형 고체 배터리 기술 상용화 · **미시건대에서 스핀아웃**(Spin-out)형태로 설립 · **Dyson이 9,000억 원에 인수('15)**	
	Aquion Energy (미국) /2008	· 염수에서 얻은 나트륨 이온 전해질로 배터리 생산 및 초대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개발 및 생산업체 · **카네기멜론대학 교수**가 창업 · **빌게이츠, Shell 등에서 2,000억 원 투자 유치**	
바이오	iLLumina (미국) /1998	· 유전자분석 및 DNA시퀀싱 관련 생명공학기술 회사 · DNA시퀀싱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하여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 구현 · **터프스(Tufts)대학 교수**가 VC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 · **현재 기업가치 약 25조 원**	
	23andMe (미국) /2006	· 개인 유전정보 분석 산업을 선도하는 생명공학 벤처 · $99로 유전정보를 분석, 질병 발병 확률 및 약물에 대한 반응, 유전적 특징 분석 등의 서비스 제공 · **현재 기업가치 약 1.2조 원**	
기계·제조	LuxVue (미국) /2009	· Micro-LED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전사 장치 개발 · **애플이 약 500억 원에 인수('14)**	LuxVue

붙임4 ’17년 대학창업 주요 통계 분석 결과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17년 창업휴학제도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수**가 **전년대비 증가 추세**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시행 대학 >

(단위 : 개, %)

구 분		2016	2017	
			전 체	전년대비 증감율
창업휴학제도		217	232	6.9%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창업실습	85	104	22.3%
	창업현장실습	93	104	10.6%
창업장학금 제도		67	73	8.9%
창업특기생 선발제도		14	8	▵4.3%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85	86	1.1%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소계는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중 하나라도 시행하는 대학

2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현황

○ ’17년 **창업강좌 수**는 **11,828개**로 **전년대비 13.1% 증가**, **창업동아리 수**는 **5,596개**로 **전년대비 2.3% 증가**

<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2016	2017	
			전 체	전년대비 증감율
창업강좌	개설대학 수	313	313	0%
	강좌 수	10,461	11,828	13.1%
	수강인원	385,571	410,033	6.3%
창업동아리	보유대학 수	268	283	5.6%
	동아리 수	5,468	5,596	2.3%
	회원 수	45,387	41,440	▵8.7%

3 학생창업 현황

○ ’17년 신규 **학생창업기업 수**는 1,503개로, **총 매출액**은 **20,17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2%, 40.5% 증가**

< 학생창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명, %)

구 분	2016	2017	
		전 체	전년대비 증감율
창업기업 수	1,191	1,503	26.2%
매출액	14,355.5	20,172	40.5%

※ 매출액 : 2017.1.1.~2017.12.31. 기간에 발생한 매출액

4 교원창업 현황

○ ’17년 신규 **교원창업기업 수**는 **233개**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4,9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8.2% 증가**

< 교원창업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명, %)

구 분	2016	2017	
		전 체	전년대비 증감율
창업기업 수	195	233	19.5%
매출액	2,501.4	4,959	98.2%

5 실험실공장 현황

○ ’17년 **44개 실험실공장 운영** (전년대비 35개 대비 **25.7% 증가**)

※ (대학) 41개, (전문대학) 4개

< 실험실공장 현황 (’16년 기준) >

(단위 : 개, 백만원, 명)

운영대학 수	실험실공장 수	매출액		고용인원	
		2016	2017	2016	2017
44	44	14,870	17,710	91	165

* ’16년 기준으로 최초 조사 실시

[312] 대학혁신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혁신지원	517,094	444,675	568,755	**124,080**	**27.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8 - 31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사무관(김효라), 사무관(최성용)

※ 2017~2018년 예·결산액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폐합된 5개 사업의 합계액임
-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ACE+ 계속지원대학 지원 포함)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자율개선대학, 일부 역량강화대학)의 대학 지원 ※ <국정과제>「52-2-1.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사업기간	'19～'21(3년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자율협약형 120개교, 역량강화형 12개교 내외(ACE+ 계속지원대학 10개교 포함)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대학혁신지원 : 568,755백만원**

▪ 사업목적 :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지원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대학 역할 증대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유도 지원

▪ 사업내용 :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혁신**을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교육) 강화**를 지원하는 **기존 5개 사업**'이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합된 사업임 (※ ACE+ 계속지원대학 지원 포함)

*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 산출내역

※ 국회 부대의견 등에 따라 단가·물량 등은 추후 변동 가능

① **(I 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위하여 **자율개선대학**(64%, 120개교)을 대상으로 **교당 평균 45억원 내외를** 지원
⇒ 120개교×4,515백만 원 = **541,800백만원**

② **(II 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을 조건으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인 약 12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교당 평균 19억원 내외** 지원
⇒ 12개교×1,900백만 원 = **22,800백만원**

③ **(사업관리비) 대학혁신지원사업**(I유형 120개교, II유형 12개교 내외)의 성과관리·집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업관리 비용
⇒ 교당 관리비 132개교×29백만원 + 운영비 327백만원 = **4,155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혁신지원	444,675*	568,755
■ (I유형) 자율협약형 지원	-	(541,800백만원) 자율개선대학 120교
■ (II유형) 역량강화형 지원	-	(22,800백만원) 역량강화대학 약 12교 내외
■ 사업관리비	-	(4,155백만원) 교당 사업관리비 등 사업운영비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폐합된 5개 사업의 '18년도 예산임

□ 지원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학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긴요**

- 국가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2018 IMD 세계경쟁력연감 : 국가경쟁력 22위('11)→27위('18), 대학경쟁력 39위('11)→49위('18)

○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질적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는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혁신지원	**517,094***	**444,675***	**568,755**	**124,080**	**27.9**
■ (I유형) 자율협약형 지원	-	-	541,800 (120개교×4,515백만)	541,800	
■ (II유형) 역량강화형 지원	-	-	22,800 (12개교×1,900백만)	22,800	
■ 사업관리비	-	-	4,155 (1식×4,155백만)	4,155	
□ 비목(합계)	**517,094***	**444,675**	**568,755**	**124,080**	**27.9**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517,094*	444,675	568,755	124,080	**27.9**

* '17~'18년 예·결산액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폐합된 5개 사업의 합계액임
  -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UP(여성공학인재)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은 선정 후 4년 지원 협약 사업으로 기존 ACE+ 사업 선정대학(10개교)에 대한 계속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

※ 국회 부대의견 등에 따라 '19년 단가·물량 등은 추후 변동 가능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기반으로 기본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21년까지 모든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지원** (※ ACE+ 계속지원대학 지원 포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91,298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폐합된 5개 사업	-		
'18	444,675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18.3월)에 따라 통폐합된 5개 사업	-		△444,675
'19	-		568,755	■ 자율협약형 지원: 541,800백만원 ■ 역량강화형 지원: 22,8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4,155백만원	568,755
'20	-		422,441	■ 자율협약형 지원: 402,420백만원 ■ 역량강화형 지원: 16,935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86백만원	422,441
'21	-		422,441	■ 자율협약형 지원: 402,420백만원 ■ 역량강화형 지원: 16,935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86백만원	422,441
'22	-		422,441	■ 자율협약형 지원: 402,420백만원 ■ 역량강화형 지원: 16,935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86백만원	422,441
연평균 증가율 (%)	△24.8		△8.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 원)		444,675	568,755	124,08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4,997	6,391	1,39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총고용(명) : 5,688억 원 ÷ 0.89억 원 = 6,391명** ※ 5,688억 원을 <표2>의 비목'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 원으로 나누어 산출 □ **2018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4,996.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5. 고려사항

○ 지원근거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정과제 52-2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국정과제 52-2-1.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지원('19)

○ 추진경위

-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시안) 발표** 및 부총리 브리핑**('17.11.30.)**
- 국회, BH, 재정당국, 대학(권역별 9회) 등 **협의 및 의견수렴(~'17.12월)**
- **지출구조 추진 혁신 방안 확정**(경제관계장관회의, '18.1.11.)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 확정**('18.3.22.) 및 **설명회**('18.3.2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혁신지원	3,054	3,054	3,061	5,723	5,723	5,171	5,171	4,447	4,4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사유

▪ ('16년) PRIME사업 중복지원(14,598백만원), 상지대 협약해지(1,763백만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재부 협의(16,277백만원)로 인한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061 (3,061)			3,061 (3,061)	3,061 (3,043)	(2)	(16)
'16년	5,723 (5,397)	(2)		5,723 (5,399)	5,397 (5,395)		326 (4)
'17년	5,171 (5,171)			5,171 (5,171)	5,171 (5,166)	(2)	(3)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17,094	517,094	444,675	-	444,675	444,675	100%

○ 집행현황

▪ '18년 예산 444,675백만원 중 444,675백만원 집행(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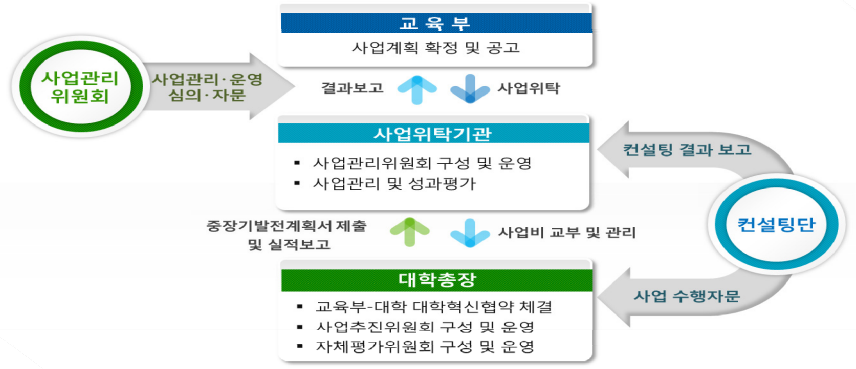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율개선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단위:%)	목표	-	-	-	-	3.5%	최근 3년간('15~'17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연평균 증가율이 3.2%인 점과 대학혁신지원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 '19년 증가율 목표를 3.5%로 설정	[(자율개선대학의 당해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 자율개선대학의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 자율개선대학의 전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 × 100 ※ 학생1인당교육비 = 총교육비/재학생 수 * 학부 및 대학원	대학정보공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안)

○ (참고2)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확보 필요성

○ (참고3) 대학혁신 해외사례

참고 1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안)

□ **(목적)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분야** 등에 따른 **자율적 혁신**을 통해 **기본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으로 **지원**

□ **(주요내용)**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는 **상향식** (Bottom-Up)으로 **전환, 성과협약**을 통해 **성과**와 **책임성 담보**

□ **(지원대상)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자율개선대학,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지원(※ ACE+ 계속지원대학 지원 포함)

《 유형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요 》

유형	대상	지원 규모(안)	지원 조건
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 (전체)	< Ⅰ 유형 : 자율협약형 지원 > ▪ 5,418억 원, 120개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 (일부)	< Ⅱ 유형 : 역량강화형 지원 > ▪ 228억 원, 약 12개교 내외	▪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 대학 특성화 발전계획

※ 국회 부대의견 등에 따라 단가·물량 등은 추후 변동 가능

□ **(사업기간)** 2019~2021년(3년)

□ **(재원배분(안))** '자율협약형' 지원은 원칙적으로 **포뮬러***로 재원을 배분하되, **'대학의 혁신성'** 등을 반영한 **재원배분** 검토

※ 18년 하반기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배분(안) 확정

* 기준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규모지수(재학생수), 교육여건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등을 고려

□ **(성과관리)**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책무성 확보**

* 협약서에 성과지표를 포함한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을 포함

참고 2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확보 필요성

□ **비전 :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 **목표 :** 각 대학의 설립 목적, 비전, 교육여건 등에 따른 **대학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역량 제고**

□ **필요성**

○ **양적 규모 확대 대비, 대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70%, '17년 OECD)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학경쟁력 평가 결과는 하락**하여 **국가경쟁력 순위**에도 **영향**

※ 2018 IMD 세계경쟁력연감 : 국가경쟁력 22위('11)→27위('18), 대학경쟁력 39위('11)→49위('18)

- 2018 세계대학평가 결과, **500위 권 내 진입**한 **우리 대학**은 **10여 개교**에 불과

※ THE(서울대 63위, 성균관대 82위, KAIST 102위), QS(서울대 36위, KAIST 40위, 포항공대 83위)

- 국가의 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OECD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부족**

-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국가 **32개국 중 26위**('18, Education at Glance, OECD)

* **OECD 평균 15,656 / 한국 10,109**(OECD 평균 대비 **64.6%**, $PPP환산액)

※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비교(OECD 평균 vs 한국)
: 초등(8,631 vs 11,047), 중등(10,010 vs 12,202), 고등(15,656 vs 10,109)

- OECD국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미흡**

구분	정부재원*		민간재원*	
	비중	OECD평균 대비 비율	비중	OECD평균 대비 비율
OECD 평균	66%	54.5%	31%	206%
한국	36%		64%	

* (해외재원) OECD 평균 3%, 한국은 해외재원 제외 조사

- 국가 전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으로서 대학 혁신 요구**

- 융복합 기술, 생산성 혁신에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 개편** 및 **유망기술 선점**하기 위한 **대학 혁신 강화 시급**

- 세계 각국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 고등교육**에 **집중 투자**

《 중국 : 쌍일류(双一流) 프로젝트 》

- **(목적)**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대국(大國) → 고등교육 강국(强國)"**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존의 대학재정에 더해 **약 200억 위안(3조 4천억원)**을 투자('17~)
- **(비전) 2020년까지 세계 일류수준, 2030년까지 일류대학·학과 중 선두그룹** 진입
- **(추진방식)**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제출
- **(지원대학) 일류대학 42개교**(북경대, 칭화대 등), **일류학과 95개교**(112개 학과)

○ **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및 공적 재원의 책무성 강화**

- **(사업방식)** 그 간 **다수**의 **특수목적지원사업 편성** 및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방식**으로 **대학**의 **중장기적 특성화** 및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심화**

→ **대학 스스로 혁신 과제**와 **구현 방법**을 **선택**하여 질적 성장의 방향성 제고 필요

- **(성과관리)**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는 **「대학혁신협약」**을 맺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적 재원의 책무성 확보**

※ 연차·종합평가 등을 통해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평가, 지원 중단 및 인센티브 지급 등 환류

참고 3 해외대학 미래교육 혁신 사례

1 대학단위 혁신 사례

□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rizona State University)

○ **(혁신방향)** '02년 취임한 마이클 크로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New American University'***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대학 혁신을 주도

- **'대학디자인팀(University Design Team)**'**을 구성, 혁신적인 기업과 협약을 통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창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등 **대학의 전체적인 구조**를 **재구성**

* 공공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발명을 지향,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주된 책무로 삼는 포용적 혁신 추구

** 총장, 학장, 교수,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비전 설계, 혁신 대학 디자인을 위한 원칙, 목표, 추진전략 설정 등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대학 혁신을 위한 8개 목표 >

① 사회 필요에 부응하는 변화 촉진	② 지식을 활용하여 혁신을 이루는 창업가 정신 강조
③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연구 수행	④ 학문간 지적 융합을 통한 지식 창조
⑤ 개별 학생들의 성공을 위한 헌신	⑥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통한 커뮤니티와 연계
⑦ 글로벌 사회 참여	⑧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산 활용

○ **(성과)** 최근 3년간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혁신대학 1위**를 차지

○ **(주요특징) 대학 구조의 변화** 및 **외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 추진

① 전통적인 전공 및 학과 중심 체계를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추진**

② **'One university in Many Places'** 정책으로 **기능 분화된 5개 캠퍼스***를 운영, 각각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 Tempe(연구), Downtown Phoenix(공공의료 및 정책), Polytechnic(직업교육), West(학제적 연구 및 학위과정, 교양교육), 온라인 캠퍼스

③ **교육과정 혁신**의 핵심은 **'창업'**으로 모든 신입생이 **창업 입문**을 수강

④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학업 지원 :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 eAdvisor*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 적합도를 높여 낮은 졸업률 극복

* 학생들의 출석·학습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개별 학생별 맞춤 정보 제공

⑤ **기업과 산학연계**로 학생 창업 및 직원 재교육을 지원, **타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혁신 사례 공유·확산

* UIA(University Innovation Alliance) : 미국 내 11개 대학으로 구성, 대학 교육 혁신 전략과 방법을 고민하고 성공사례를 공유

2 분야별 혁신 사례

□ 교육과정 및 학습경험 재구조화

○ **융합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 확대**

○ **(포틀랜드 주립대) 주제중심** 교육과정으로 **문제해결능력** 강화

- **주제 중심**의 **학제간 접근법**에 기반하여 구조화한 **일반교육과정**(University Studies) 구성·운영을 통해 **학생 전반**의 **역량 제고**

교육과정	학점(강좌수)	특징
1학년 연구과정	15(4)	▪ 포틀랜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 간 팀 프로젝트
2학년 연구과정	12(3)	▪ 2학년 연구과정에서 선택한 3개 강좌 중 1개 강좌와 관련된 주제 선택, 심도 있는 연구 수행
상위 클러스터 과정	12(3)	▪ 전공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 있는 3개 강좌를 선택하여 작문, 토론, 연구 역량 개발 ▪ 대학원생 멘토링 지원(매주 50분)
최종 과정	6(1)	▪ 전공 선택을 위한 다양한 주제 탐색 ▪ 교수진 팀티칭, 동료 멘토링을 통한 주제 중심 학습

□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 **창의적·혁신적 문제 해결과정**을 강조하는 프로그램,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 방법** 등 적용

○ **(퍼듀대)** 2017 US News & World Report 선정 혁신대학 9위

- 사회적 자원에 따른 **학내 구성원**별 **맞춤형** 혁신·창업 프로그램 운영

대상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학부생	**창업**과 **혁신** 프로그램 **수료**제도 (The Certificate in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	▪ **영감**(Inspiration), **교육**(Education), **적용**(Application) 부문으로 운영 ▪ **이수** 시 부전공에 준하는 **수료증** 발급
대학원생	**기술 구현** 프로그램 (Technology realization Program)	▪ 실험실·연구실 아이디어 기반 **창업** 시 필요한 **기술**과 **원칙*** 강의 * 특허·라이센스 취득, 법인 설립, 회계 등
교수	**의도적 혁신** 프로그램 (The Deliberate Innovation for Faculty)	▪ **연구 및 조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상업화·정교화·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

○ **(포틀랜드 주립대) reTHINK PSU*** 프로그램 운영

* Rethink Potland State University : 대학 구성원들이 제안한 교육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구체화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생활·학업 과정에서 성공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①**학생 목표 달성** 프로젝트, ②**경로안내** 프로젝트, ③**유연한 학위과정** 운영 프로젝트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예시)** Student with Excessive Credits : 초과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패 원인을 찾고 졸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 **(칭화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초산업훈련센터) 국가 공학훈련실험 인증센터**로서,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 역할 수행

- **(iCenter Makerspace) 학생**이 공학, 과학, 예술, 인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Making)**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iCenter Makerspace 세부 교육과정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함양 과정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 과정	**고급제조기술** 및 **생산혁신**을 위한 과정	설계 및 도면	CAD / CAM*
국제적 경쟁력 함양을 위한 **글로벌 여름/겨울** 학교 과정(정기적 운영)				

* Computer-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System : **컴퓨터**를 **응용**하여 **제품**의 **설계**와 **제조**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 칭화대 전자공학과 : 중국 반도체 산업의 첨병 〉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 학과 집중 육성

* **반도체**는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요소**

▪ 2017년 기준 교수 100명, 예산 720억원, 신입생 270명, 박사 졸업생 60명

▪ **산학연 연계**의 일종으로 **기업 공동연구소*** 유치·활성화에 매우 적극적

* 일본 Hitachi, 미국 Cisco, Agilent, Keysight 등과 공동연구소 운영 중이며, 매월 1회씩 각 연구팀과 공동으로 과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 제고

□ 기업 및 지역사회 연계

○ **(퍼듀대) 산학연계** 및 **지역발전 지원** 지속 노력

- **(산학연계) 퍼듀연구단지**(Perdue Research Park)*를 중심으로 13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2013년)

  * 퍼듀연구재단에 의해 인디애나주 내 4개 도시에 설립된 연구 단지

※ **(예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연구단지 연결망 속에서 사업계획 발전, 시장 조사 대행, 인적자원 연계, 금융 및 기술 자문 등 **실질적 전략 조언가**(Hands-on-Strategic Advisor) 역할을 수행

- **(지역발전) 퍼듀 지역발전센터*** 중심으로 공·사조직, 비영리조직, 자선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혁신**의 중심 **원동력**을 개발·확산

  * 지역 협력, 혁신, 번영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기 위해 2005년 설립

목표	세부내용
지역의 시민 리더십 강화	▪ 지역의 사회, 경제, 교육 및 환경 자원에 관한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적 수요와 자산을 확인
지역 전략과 계획 육성	▪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체계 구축
경제발전 및 사업성장 전략의 개발	▪ 지역 내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통합적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노이스턴대)** 2015 US News & World Report 인턴십/Co-op 프로그램* 부문 1위

  * Cooperation Program : 장기간 전공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수행하는 인턴십

- 6개월 이상의 전공 관련 인턴십을 통해 **장기간**의 **직업 경험**을 제공
- 학과별 전공 중심 운영 및 **전문 인력**(Co-op 코디네이터) 배치

< Co-op 프로그램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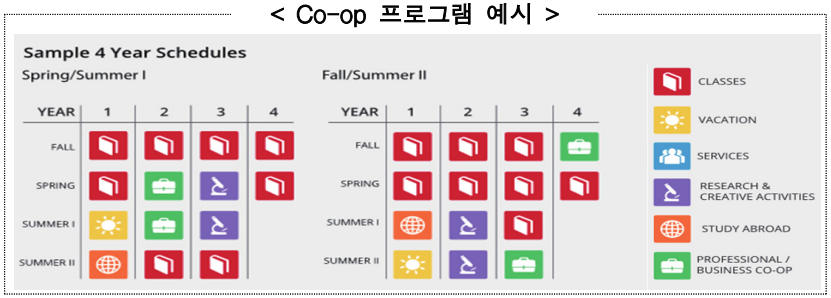

[318]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	1,000	**1,00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38 - 318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사학혁신지원과장(안상훈), 사무관(손민효)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전문대학정책과장(안수미), 사무관(윤지효)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정부가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추진 기반 구축 **[국정과제 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사립대에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국정과제 52-4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 「일정 비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익이사가 참여**하는 **공영형 전문대를 선정**하여 지역 내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육성」
사업기간	'19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직접수행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정부가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사립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거점으로 육성·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추진 기반 구축

-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 실시

○ 2과제(4년제, 전문대) × 500백만원 = 1,0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1,000백만원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1,000백만원** 2과제(4년제, 전문대) × 500백만원 = 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지역 거점**의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 세부과제(52-1)로 추진 중**

< 공영형 사립대학 필요성 >

○ **대학**은 **지역사회**의 산업·경제·고용·문화·복지의 **허브**, 대학-지자체-지역기업이 연계된 **협력클러스터 등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거점** 역할 가능

○ 국립대 없는 지역에도 **국립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거점 사립대학 필요**

○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정과제**(52-4)의 차질 없는 이행 필요

○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육성을 위한 사업 시행 전 정책연구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포함)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	**1,000**	**1,000**	**순증**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	1,000 (2과제x500백만)	1,000	순증
□ 비목(합계)	**-**	**-**	**1,000**	**1,000**	**순증**
○정책연구비(260-02)	-	-	1,000	1,00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해당사항 없음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설정('17.8.)

※ 국정과제 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공영형 사립대)
국정과제 52-4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공영형 전문대)

- 「고등교육법」제7조(교육재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가능

○ 추진경위

- '공영형 사립대(전문대) 단계적 확대'를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설정('17.8.)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19년 신규 사업비 10억 반영('18.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공영형 사립대학 기획연구	-	-	-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00] 대학구조개혁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구조개혁 지원	11,068	8,977	12,149	**3,172**	**35.3**

* 사업코드 : 11 - 110 - 0 - 050 - 052 - 2200 - 2258 - 300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이해숙), 서기관(지혜진)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사무관(조홍선)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사립대학정책과장(임용빈), 사무관(조성구)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사무관(이승영)
* 담 당 자 : 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사무관(최지웅)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전국 모든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환류·컨설팅 등을 통하여 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 (폐쇄(폐지) 대학 후속조치 지원) 폐쇄(폐지) 대학의 학적부 등 관련 서류 이관·관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 운영, 재적생의 특별편입학 지원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통해 폐교에 따른 혼란을 방지 - (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구 분	내 용
	-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간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으로 지역 간 규형 발전 도모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캠퍼스 재구조화 추진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18) 1,342백만원 (15%) → ('19) 1,063백만원 (15%)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비 4,777백만원**

- 산출내역 : 4,777백만원 × 1식
  -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가실시(편제완성 후 2년 도래 대학): 1개교 ×400백만원= **400백만원**
  - ■ 맞춤형 진단 결과분석 및 개선 지원 등: **2,677백만원**

※ 모든 대학 대상 결과분석 및 희망대학 대상 개선 지원

- ■ 성과확산 및 홍보: **400백만원**
- ■ 진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50백만원**
- ■ 진단기구운영(간접비 포함): **950백만원**

ㅇ **교원양성기관 평가 운영비, 1,100백만원**

- (평가대상기관을 분리·평가하고 컨설팅 수행 등 평가 결과에 따라내역 및 산출근거) 전국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19년부터 연차적으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19년 사업비 1,100백만원

※ (4주기) 3년주기 평가 → (5주기) 4년주기 평가

ㅇ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1,213백만원**

- 산출내역 및 근거
  - ▪ 폐쇄(폐지)대학 학적부 DB 및 문서 이관 : 180백만원 × 3개교 = 540백만원
  - ▪ 학적 관련 문서 전자화 :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학사정보관리·증명발급) 유지관리비 : 380백만원
    - · 통합학사정보시스템(통합증명발급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310백만원 × 1식 = 310백만원
    - ·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 70백만원 × 1식 = 70백만원
  - ▪ 학적서류 보관비 : 45백만원×1년 = 45백만원
  - ▪ FAX 및 우편을 통한 제 증명서 발급서비스 도입 : 33백만원×1년
  -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 5백만원 ×1식 = 5백만원
  - ▪ 위탁관리비 : 110백만원

ㅇ 대학 설립(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등) 및 위치변경(일반위치변경, 산업단지캠퍼스위치변경 등)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 29백만원**

-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 운영비 지원(8회×3.63백만원)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수당(45만원) : 참석수당(10만원)+안건검토수당(35만원)

※ 년평균 개최회수(10회) : '16년(10회), '17년(9회), '18년 10월 기준(10회)

ㅇ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 0원(2018년) → 5,030백만원**(2019년)

- 공간 재배치 및 교육환경개선(2,0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2 개교)
- 통합대학 포털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1,0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1식)
- 학사/행정 연계시스템 분석 설계: (30백만원 × 1식)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구조개혁지원	8,977백만원	12,149백만원
■ 대학구조개혁평가 운영비	6,798백만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운영비	4,777백만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사업 추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가실시* * '18년 진단 제외 대학 -맞춤형 진단 결과분석 제공 및 개선 지원 등 -성과확산 및 홍보 -진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진단기구 운영
■ 교원양성기관평가강화사업	1,100백만원 컨설팅 없이 평가만 실시	1,100백만원 -평가위원 연수 강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수행
■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050백만원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1,213백만원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비 추가요구 - 학적서류 보관비 추가 요구 - 학적 관련 문서 전자화 비용 추가 요구 -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및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신규요구 - FAX 및 우편을 통한 제 증명서 발급서비스 도입 비용 신규요구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29백만원 -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설립 심사위 통합운영	29백만원 -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설립심사위 통합운영
■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	5,030백만원 - 공간 재배치 및 교육환경개선 (2,0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2 개교) -통합대학 포털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1,000백만원(1년차 사업비) × 1식) -학사/행정 연계시스템 분석 설계: (30백만원 × 1식)

□ **지원 필요성**

○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진단결과에 따른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및 개선 지원 등 후속조치 실시 필요

○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컨설팅을 통해 양성기관의 교사 교육 책무성 및 자율성 강화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대학 구조개혁 결과 대학이 폐교되더라도 재적생의 학습권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며, 보호수단으로서 인근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지원하고 폐교 학생·교직원의 학적·인사DB의 엄정한 이관·관리가 반드시 필요

- 폐교에 따른 피해는 학생 및 교직원이 받게 되므로 구성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

- 신규 폐교 발생과 무관하게 매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및 기 이관된 종이서류 보관비용 필요

○ 「고등교육법」제4조 및「대학설립·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주요 인가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가 필요

* 대학 설립, 법인 설립, 대학위치변경, 대학 교명변경, 대학 통폐합 지원 등

○ 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간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으로 지역 간 규형 발전 도모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캠퍼스 재구조화 추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구조개혁지원**	**11,068**	**8,977**	**12,149**	**3,172**	**35.3**
■ 대학구조개혁평가 운영비	5,936	6,798 (1식x6,798백만)	4,777 (1식x4,777백만)	△2,021	△29.7
■ 교원양성기관 평가 운영비	1,100	1,100 (1식x1,100백만)	1,100 (1식x1,100백만)	-	-
■ 폐쇄(폐지)대학 후속 조치 지원관리	1,050	1,050 (1식×1,100백만)	1,213 (1식×1,213백만)	163	15.5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32	29 (1식×29백만)	29 (1식×29백만)	-	-
■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	-	5,030 (1식×5,030백만)	5,030	순증
■ 인천대장기차입금이자지원	2,950	-	-	-	-
□ **비목**(합계)	**11,068**	**8,977**	**12,149**	**3,172**	**35.3**
○일반수용비(210-01)	32	29	29	-	-
○일반용역비(210-14)			360	360	순증
○일반연구비(260-01)			1,030	1,030	순증
○민간경상보조(320-01)	8,086	8,948	7,090	△1,858	△20.8
○출연금(350-01)	2,950			-	-
○기본조사설계비(420-01)			500	500	순증
○공사비(420-03)			2,180	2,180	순증
○자산취득비(430-01)			960	96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 구조개혁 평가 사업은 1주기('15~'17)가 종료되고 '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18~'21)으로 개선('17.12.)하여 시행중인 사업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후, 1차년도('19) 사업으로 '18년 진단 제외 대상 중 진단 기간 도래 대학 진단 실시, 맞춤형 진단 결과분석 제공 및 개선지원 등 후속 조치 실시
- 2차년도('20)에는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보완평가 등 추진

○ 교원양성기관 평가 5주기 시작 시점으로 평가도구 개선 적용 및 평가 질 제고 추진

※ 평가 주기 : (기존) 3년 → (변경) 4년

○ 폐쇄(폐지) 대학의 학적부 등 관련서류 관리 및 재적생의 특별편입학 지원 등 원활한 후속조치를 통해 폐교에 따른 혼란을 방지

○ 경상대-경남과학기술대 간 연합대학 구축을 통한 대학 통합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및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캠퍼스 재구조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068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5,936백만원 × 1식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1,100백만원 × 1식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050백만원 × 1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3.6백만원 ×4회 인천대경기치입금이자지원 2,950백만원			
'18	8,977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6,798백만원 × 1식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1,100백만원 × 1식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050백만원 × 1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3.6백만원×4회	8,977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6,798백만원 × 1식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1,100백만원 × 1식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050백만원 × 1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3.6백만원×4회	-
'19	10,515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7,465백만원 × 1식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1,500백만원 × 1식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500백만원 × 1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50백만원	12,149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4,777백만원 × 1식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1,100백만원 × 1식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1,213백만원 × 1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29백만원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5,030백만원	1,634
'20	18,927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7,198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11,729
'21	18,927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7,054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11,873
'22			6,984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 -교원양성기관 평가운영비 -폐쇄(폐지)대학후속조치 지원관리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연평균 증가율 (%)	14%		-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977	12,149	3,172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9명	49명	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5.4명	4.0명	△1.4명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사업수행 인력 34명 - 정량진단 및 분석 - 정성진단 및 환류 - 진단 운영 - 위원 운영 - 대학 기본역량 진단 홍보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성과관리 - 대학 기본역량 진단 DB구축・운영 -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 관계 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 대학평가기구 운영 **□ 교원양성기관평가 운영** - 위촉 연구원 7명 ·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주요 업무를 크게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업무 담당자 채용(사업 예산 관리, DB 구축, 연수 운영, 평가위원 모집 및 구성, 행정업무, 임용률 및 점수 산출, 만족도 조사) - 일용 인력 6명 ·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및 정리(2명) · 연수 지원(4명)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사업수행 인력 2명 · 폐쇄(폐지)대학 학사 관리 및 지원 · 통합학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폐교 재적생 특별편입학 지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2018년 사업수행 인력 규모를 2019년에도 유지할 예정 **□ 2018년 고용효과** ○ 대학 기본역량 진단(2018년 34명) - 40백만원×6명(박사급) · 30백만원×28명(석사급) ○교원양성기관평가 운영 - 2018년 13명 · <위촉 연구원(7명)> 교원양성기관평가 수행을 위한 사업 예산 관리 담당, DB 구축 담당, 연수 운영 담당, 평가위원 모집 및 구성 담당, 행정업무 담당, 임용률 및 점수 산출 담당, 만족도 조사 담당 각 1명씩 채용 · <일용 인력(6명)> 연수 및 기타 평가 운영을 위해 6명 고용				

	○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 2018년 2명 · 47백만원×1명(4급) · 36백만원×1명(5급)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은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1,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근거

> ❖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한국장학재단법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서류관리)「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2조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 (특별편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입학·편입학 등)** ① 대학의 장은 … .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

> ❖ 제45조(교육부 소관)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 증명 발급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고등교육법】**
> ❖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대학설립·운영 규정】**
> ❖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추진경위

- ’96년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 건의
- ‘98.~’14 : 「제1~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실시

※ 평가 주기 : 1주기('98~'02), 2주기('03~'09), 3주기('10~'14년)

- ’98년 ~ ’02년 : 1주기 시범평가 실시 완료
- ’03 ~ ’09 :『제2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 ’04. 3. :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 ‘04. 12. 28 : 경쟁력 강화를 위한「대학구조개혁 방안」확정

※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및 학사구조개편 등 대학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구조개혁 지원

- ’08. 2. :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 ’08. 10.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08. 12.27 : ’09년 대통령 업무보고(대학 구조조정 지속 추진)
- ’09. 2. 4 : 대학구조조정 방안 VIP 보고
- ’09. 2.20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방안 수립(장관결재)
- ’10. ~ ’14. :『제3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 ’11. 9.27 : 한국교통대(충주대+한국철도대) 통·폐합 승인
- ’12. 1.17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12. 2.25 : ’12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2. 8.20 : ’12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2. 8. ~ ’17.12. 폐쇄(폐지)대학 학적부 이관·관리 및 재적생 특별편입학 지원 실시

※ ('12) 건동대, 선교청대 → ('13) 경북외대, 한민학교, 명신대 → ('14) 벽성대, 아시아대, 광주예술대 → ('15) 선교청대(시간제) 추가 이관 → ('17)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 ’13. 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 ’13. 1.18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범
- ’13. 3.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 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 ’13. 3.6 : ’13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3. 3.20 : ’13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3. 5.10 : ’13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
- ’14. 1.28.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발표
- ’14. 2.6 : ’14년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재정지원계획 수립
- ’14. 3.3 : ’14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4. 3.14 : ’14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5. ~ ’17.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 ’15. 2.3. : ’15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5. 2.9 : ’15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기본계획 수립
- ’15. 8.31 :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15. 12.3 : 2016년도 인천대학교 장기차입금 이자 지원비 25.4억원 편성

- ’16. 3.11 : ’16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점검 기본계획 수립
- ’16. 9.5 :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 ’16. 2.25. : ’15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7. 3. 9.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수립
- ’17. 3.24. : ’17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7. 7. 통합학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17. 9.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 ’17. 12.13.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확정
- ’18. 1.18. : ’18년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8. 3. ~ : 신규 이관대학 대상 제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
- ’18. 3.21 : ’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발표
- ’18. 4.24. :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통보)
- ’18. 5.24. : 2018년 역량진단 대상 교원양성기관 지표설명회(교대·교원대 대상)
- ’18. 6.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 안내
- ’18. 8.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18. 9.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안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57.7	-	154.5	118.7	-	110.7		8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54** **(126)**			154 (126)	**152** **(102)**	2 (14)	(10)
’16년	**118** **(118)**	2 (14)		120 (132)	**120** **(106)**	(10)	(16)
’17년	**110** **(110)**	(10)		110 (120)	**110** **(118)**		(2)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068	11,068	8,977	-	8,977	8,97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직접경비 및 민간경상보조 금액 100% 집행(8,977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 '16년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업관리비 경비 배분 변경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을 것

⇒ (조치사항) 한국교육개발원 사업관리비 배분 변경 시 관련 지침 준수하여 추진

-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폐교, 정부재정지원 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16년 결산 부대의견)

⇒ (조치사항)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행, 재정지원 및 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 내에서만 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권) 및 제7조(재정지원가능)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제24조의11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등을 공개함

- 폐교의 경우 별도의 근거(「고등교육법」 제62조제11항에 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함)

○ 2017년 통합 재정사업 최종 평가결과 :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대학 기본역량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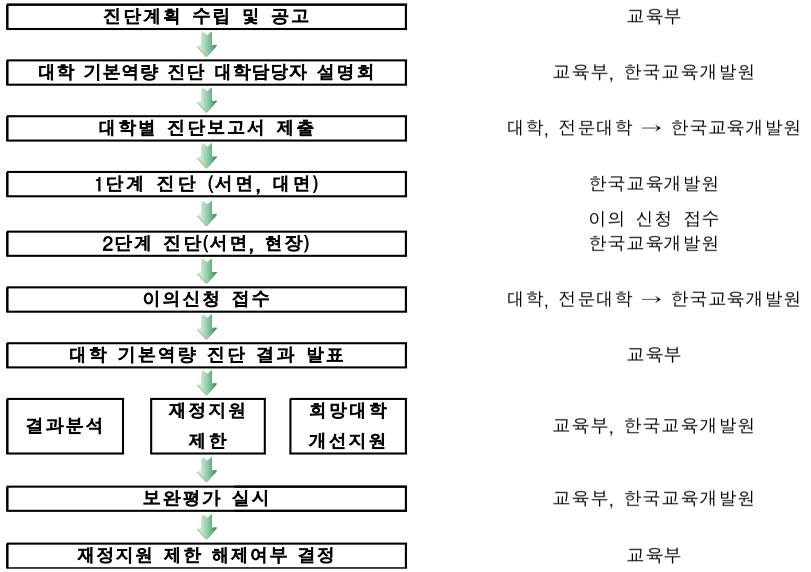

<교원양성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평가 대상대학 설명회→평가 실시(서면·현장방문)→잠정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심의→평가결과 확정·통보

<폐쇄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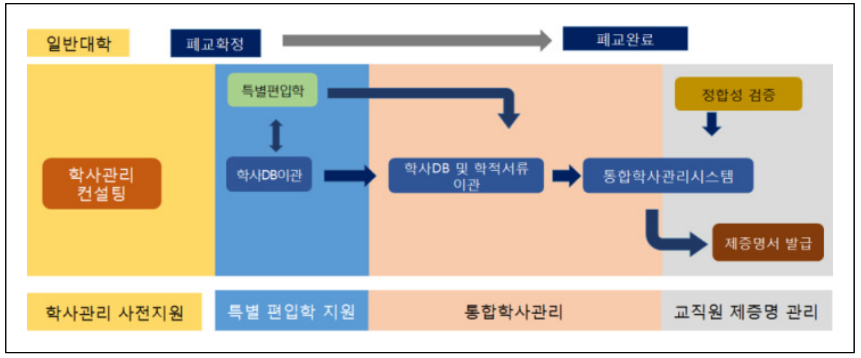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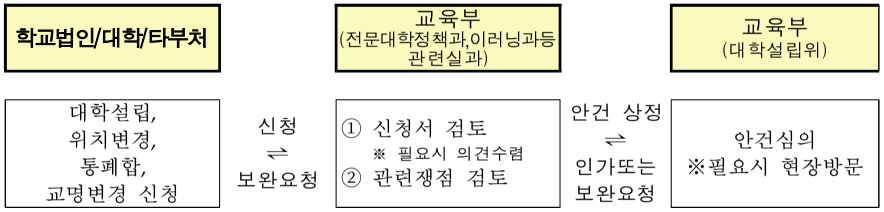

<경상대-경남과기대 간 연합·통합 추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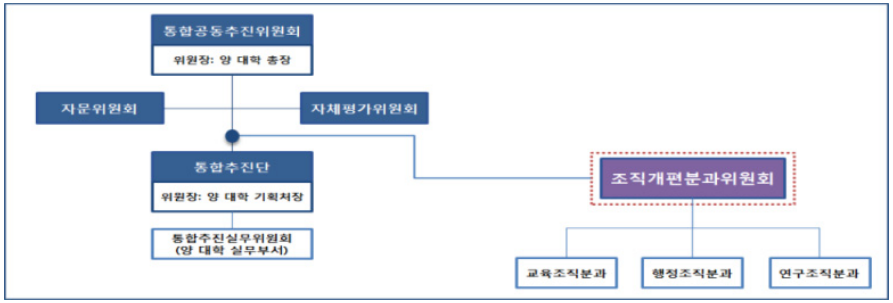

- (통합공동추진위원회) 통합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통합계획안을 마련
- (조직개편분과위원회) 통합대학 조직·운영방안 연구 및 실행계획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추진성과 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자문위원회) 통합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대학 기본역량 진단 만족도(점)	목표	-	-	신규	75	종료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시행하는 해로 투입지표와 산출지표 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평가자에게 '진단'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만족도와 피평가기관에서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정도를 결과지표로 도출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만족도 조사 1) 평가자 만족도조사(지표,절차,방법 의 적절성, 타당성) 2) 피평가기관 만족도조사(평가의 필요성 등) 2개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가중평균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
	실적	-	-	신규	-	종료			
	달성도	-	-	신규	-	종료			
(2)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	목표	-	-	-	신규	3%	'19년 신규지표	(해당연도 국립대학 38교 1인당 교육비 - 전년도 국립대학 38교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년도 국립대학 38교 학생 1인당 교육비 × 100	정보공시 자료 활용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신규	-			
(3)폐쇄(지)대학 후속조치 지원 고객 만족도(점)	목표	81	83.9	85.1	86.8	87.7	- 최근 3개년('15~'17) 평균 만족도 =(83.9+83.9+85.1*)/3=84.3 * '17년 실적 85.1로 가정 - 최근 3개년('15~'17) 평균 만족도 대비 3% 상향 목표 = 86.8 - '17년 실적치(83.9), 최근 3개년 평균 3% 상향(86.8) 중 높은 값 = 86.8	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자, 특별편입학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증명발급 서비스 이용자, 특별편입학 대상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사
	실적	83.9	83.9	85.1					
	달성도	103	100	100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301] 국립대학 육성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육성사업	20,540	80,000	150,400	**70,400**	**88.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58 - 301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서기관(김주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립대학이 **설립목적 및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발전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 - 국립대학을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상생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사업기간	'14~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국립대 육성 1,491억, 사업관리비 13억('19년 기준)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 39교
간접비	('18) 126.65백만원 (0.16%) → ('19) 189백만원 (0.17%)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내용) 모든 국립대학이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국립대학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고유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원

  * 고등교육 기회균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네트워크 구축 등

- 공동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교류, 자원·시설 공유 등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 확산**을 통해 **교육·연구 혁신을 선도**하고 **대학 재정 운영 효율성 증진**

○ **국립대학 육성사업 : 149,100백만원**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9,940백만원 = 89,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988백만원 =59,640백만원

○ **사업 관리비 : 1,300백만원**

▪ 사업 운영 및 국립대학 컨설팅 지원, 연차평가 실시, 정책연구 등

▪ (사업관리비) 1식 ×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육성사업	80,000백만원	150,400백만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79,100백만원** (거점국립대) 9개교 × 5,273백만원 = 47,460백만원 (지역중심국립대 등) 30개교 × 1,054백만원 =31,640백만원	**149,100백만원** (거점국립대) 9개교 × 9,940백만원 = 89,460백만원 (지역중심 국립대 등) 30개교 × 1,988백만원 =59,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900(1식×900백만원)	1,300(1식×1,3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립대학은 **고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 및 국가 혁신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현재 국립대학에 대한 낮은 투자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립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확대** 필요

※ 학생 1인당 교육비('17) : 전체 국립대(37개교) 14,793천원, 거점국립대(9개교) 16,266천원, 서울 소재 사립대(33개교) 17,766천원, 주요사립대(9개교) 21,390천원, 서울대 43,348천원, KAIST 66,685천원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 기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 지원 필요성 증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육성사업**	**20,540**	**80,000**	**150,400**	**70,400**	**88.0**
■ 국립대학 육성사업	20,060	79,100 (39교x2,028백만)	149,100 (39교x3,823백만)	70,000	88.4
■ 사업관리비	480	900 (1식x900백만)	1,300 (1식x1,300백만)	400	44.4
□ **비목**(합계)	**20,540**	**80,000**	**150,400**	**70,400**	**88.0**
○사업출연금(350-02)	20,540	80,000	150,400	70,400	88.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립대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

- **지역발전, 고등교육 기회균등, 기초·보호 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

○ 안정적 예산 지원('18~'22)을 통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사업 운영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1,000	▪ (국립대학 육성사업) 18개교 × 평균 1,140백만원= 20,52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480백만원			
'18	80,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5,273백만원 = 47,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054백만원 =31,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80,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5,273백만원 = 47,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054백만원 = 31,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19	80,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5,273백만원 = 47,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054백만원 =31,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150,4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9,940백만원 = 89,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988백만원 = 59,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1,300백만원	70,400
'20	100,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6,606백만원 = 59,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321백만원 =39,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92,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6,073백만원 = 54,6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214백만원 = 36,4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8,000
'21	100,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6,606백만원 = 59,4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321백만원 =39,6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92,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6,073백만원 = 54,6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214백만원 = 36,4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8,000
'22			104,000	▪ (거점국립대 육성) 9개교 × 6,873백만원 = 61,860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30개교 × 1,374백만원 = 41,240백만원 ▪ (사업관리비) 1식×900백만원	104,000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80,000</td><td>150,400</td><td>70,400</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111</td><td>2,088</td><td>977</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td><td>13</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4p.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참조(사업출연금은 표4. 해당산업 참조)
○ 18p.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참조
- 교육서비스는 1인 고용창출에 0.72억 필요
- 사업비 1,504억을 1인 고용창출 필요액(0.72억)으로 나누어 재정지출 고용효과 2,088명 산출</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국고보조금 150,400백만원 ÷ 72백만원 = 2,088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8p. 참조)

☐ 2018년 고용효과
- 국고보조금 80,000백만원 ÷ 72백만원 = 1,111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8p. 참조)</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향후 효과를 확인하여 제도개선안 모색 예정</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학술진흥법 제5조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추진 등을 포함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확정·발표('12.1월)
- '13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 시행 계획('13.3월)
- '13년 성과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후 재정지원(20개교, 98억원)
- '14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개편(12개교, 98억원)
- '17년 국정과제「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52-1.**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18~)
> - **국공립대 간** 기능별(연구·교육·직업 중심), **중점 분야별 특화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네트워크,**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를 중장기적으로 구축

- '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확대 개편(39개교, 800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립대학 육성사업	100	-	90	85.5	-	210	-	80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0 ( )	( )	( )	90 ( )	90 ( )	( )	( )
'16년	85.5 ( )	( )	( )	85.5 ( )	85.5 ( )	( )	( )
'17년	210 ( )	( )	( )	210 ( )	205.4 ( )	( )	4.6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1,000		100,000	△20,000	80,000	80,0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거점 국립대 육성 : 59,200백만원(9교×6,578백만원) → 47,460백만원(9교×5,273백만원)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 39,600백만원(30교×1,320백만원) → 31,640백만원(30교×1,054백만원)
- 사업관리비 : 1,200백만원 → 900백만원

○ 집행현황

- 80,000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도 결산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적절한 사업수행기간 보장

- **(후속조치)** 2016년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대학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년의 사업기간 보장

○ '17년도 예산안 분석(교문위) :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회계연도('16.8~'17.7)와 대학회계연도* 불일치 조정 필요

* 당해년도 3.1~다음해 2월 말일

- **(후속조치)** '17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회계연도를 준수하여 '18.2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기본계획* 수립

* 「2017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안)」 공고('17.2.16)

○ '16년도 결산(교문위) : 미흡한 출연 근거의 개선 필요

- **(후속조치)**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사업 수행기관을 출연 근거가 명확한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

○ '17년도 결산(예결위) :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집행기준 마련 필요

- **(후속조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국립대학 육성사업('18~)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 지침을 마련함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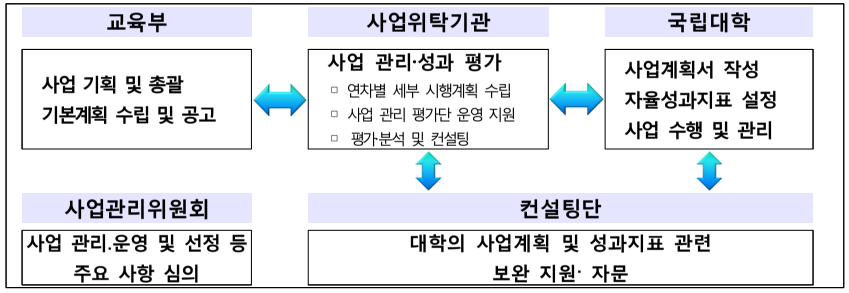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단위: %)	목표	-	-	-	신규	3%	'16년 대비 '17년 국립대학 38교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이 2.6%임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사업 초기임을 고려하여 '19년 3%의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	해당연도 38교 국립대학 1인당 교육비* - 전년도 38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전년도 38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 100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정보공시 자료활용
	실적	-	-	-	신규				
	달성도	-	-	-	신규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주요사례

참고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주요사례**

□ 지역사회에 기여

- **(부산대 부산지역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부산지역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제공
- **(충남대 지역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 충남대학교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건강 관련 지식 전달하고, 지역동반 법률사업을 통해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경북대 지역특화산업 연계 인력 양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PTR(Pin-point Technical Research Professor) 교수제를 운영하여 대학의 우수인력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지도,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결, 학생 현장실습 교육 및 취업지원 역할 수행
- **(군산대 지역문화 전문가 육성 및 지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역의 올바른 역사 및 문화 정보를 전파할 지역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여 시니어 세대의 재취업에 기여하고, 지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 **(한밭대 기업가 정신기반 SSR(School Stratup Relay)** 한밭대학교가 보유한 창업역량을 활용하여 기업가 정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전지역 초·중·고-대학이 연계된 창업동아리를 결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여
- **(한국해양대 해양특성화 기반 지역초중등교육 지원)** 청소년 해양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해양꿈나무 캠프, 해양안전 교육 강화 및 전문 수상구조사 양성 교육 추진 등 지역 초중등 해양교육 지원
- **(한경대 지역사회 행복나눔 사업)** 안성시에 조성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촌(하나원) 주민과 자녀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농천 프로그램, 과학 및 디자인 교실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
- **(목포대 CREAT 산업 활성화 선도)** 전남지역의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 상품 개발 및 창업,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한국방송통신대 지역 평생교육 커뮤니티 센터 구축)** 전국 13개 지역대학, 31개 시·군학습관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이 원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지역 대학을 각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 기관화
- **(춘천교육대 COLLECT 프로그램(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접경지역의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진로탐색, 학습코칭,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소외지역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문제 공유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도모
- **(경인교육대 학습장애 및 정서행동상담/치료센터 운영)** 학습장애 및 정서·행동 상담/치료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난독증, 학습장애, 정서행동에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적 배려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에 기여

□ 고등교육 기회 보장

- **(부산대 발달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비학위과정 운영)** 생애단계별 교육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성인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생활과 통합적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학습자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전북대 베리어 프리 에듀존 구축)** 장애학생 학습공간 구축 및 학생상담 관련 센터 통합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대학생활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하여 장애학생의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전북대 군 단위 소외계층 지역민의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장기간 안정적 운영, 지역거점 대학으로서 다양한 학생공간 확보, 교육 수료자 중심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
- **(부경대 무장애캠퍼스 구축)** 장애대학생의 동등한 학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대학의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여 무장애 캠퍼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중심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 **(안동대 기회균형선발 및 고른기회전형)**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른 기회전형 신설
- **(방송통신대 기초학습역량 강화 콘텐츠 제공 및 미래TV 운영)**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학업지체학습자(성인학습자, 외국인 및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공공채널인 방송대학TV를 통해 일반 성인학습자에게도 원격고등평생교육 기회 제공
- **(안동대 공공성 역량 Force-up)** 취약 계층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환경 제공을 위해 재정지원, 정서지원,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여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 **(한국체육대 학생인권보장 및 심리상담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관련 규정 제정, 인권센터 신설 등을 통한 학생인권향상시스템 구축 및 학생 심리상담지도 강화
- **(군산대 지역인재 선발 및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출신·만학도·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선발을 위한 입학정보 제공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대학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기초·보호 학문 육성

- **(부산대 동아시아지식학 구축 및 학술역량 강화)** 동아시아지식학의 학문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학술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등 기초학문 역량 제고
- **(경북대 기초·보호학문기반 융복합 교육연구 역량 강화 사업)** '명저 읽기와 토론' 등 기초·보호학문 분야 명품강좌 개발 및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여건 향상과 기초·보호 학문 분야 활성화
- **(충남대 기초 학문 후속세대 지원)** 기초학문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CNU 드림 꾸러미 운영 및 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기초 학문 후속세대 지원
- **(충남대 신지식 창출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 기초보호학문 분야 실험실의 노후 장비 교체 및 기자재 확보후 기자재 공동 활용을 통해 학부-대학원생 -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력 향상을 도모
- **(제주대 지속가능한 학문 연구 생태계 조성)** 기초·보호 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원생 논문게재 지원 제도 신설 등
- **(경상대 경남학 정립 및 지역과 함께하는 인문소양 강좌)** 지역학인 경남학을 정립하고, 구축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인문학 강좌 운영 등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 **(강원대 11자형 강원권 기초·보호학문 네트워크)** 영동·영서권 인문학 교육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강원권 11자형 교양교육벨트 구축 및 지역학연구소 및 센터지원을 통한 지역학 기반 기초학문 학술활동 지원
- **(강원대 원천기술 및 인문사회예술 범산학협력 활성화)** 자연과학분야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문화융합형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호학문 역량 강화
- **(경상대 기초·보호 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사업)**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연구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를 발굴하고 R&D 인턴십 지원, 융복합 학술창의력 경연대회 등 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프로그램 운영
- **(부산대 SAM(science-arts-mathmatics)분야 연구 활성화)** SAM 분야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지원 및 전임교원 연구그룹 지원을 통한 SAM분야 연구 활성화

□ 대학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거점국립대 교육과정 공유)** 공통 공동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학점 교류
- **(거점국립대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K-MOOC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사이버 강좌 개발 확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콘텐츠 공개 및 공유
- **(거점국립대 연구장비 공동활용)**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보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장비 공동 활용에 기초한 공동연구 활성화
- **(거점국립대 공동취업지원 체제 구축)** 공동 취·창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창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강좌 등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별 현장실습지원센터의 공동 운영 기반 구축
- **(제주대 학술자원 공유)** 고비용 수반 학술 DB 전자자료(e-journal) 제공 및 공동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대학 자원 개방·공유
- **(경북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대구·경북 지역 대학의 기획처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대학 교무·학생·기획처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발전 및 지역 현안 공동 해결 방안 구축
-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 공동활용을 통한 네트워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콘텐츠 대외개방 확대 및 국·공립대학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한 콘텐츠 공유 네트워크 구축
- **(충북대 대학-지역사회의 상생적 레질리언스 플랫폼 구축)** 대학-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경제공동체·나눔공동체·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각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생적 레질리언스 플랫폼을 구성·운영

  * 주요사업: 대학시설·장비 등 자원 공유, 교육청·지역고교 연계 대상 사업 지원,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컨설팅 실시 등

- **(공주대 충청권 대학간 네트워크)** 충청권 국립대학 간 공동학술 포럼 개최, 지역인재육성 포럼, 도서관 공동이용 확대 등 네트워크 구축
- **(부경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부산 남구 소재 대학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대학간 수해양, 바이오, 의공학 등 지역대학 특성화 분야의 연구교류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
- **(강릉원주대 대학 네트워크)** 도내 국립대학 간, 강릉지역 내 지역사립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서관, 연구기자재 등 시설 공동활용, 학점교류 활성화, 강좌공개 및 강사풀 공유, 지역대학 공동 참여형 취업 프로그램 등 운영

[304] 의과학자 육성 지원(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의과학자 육성 지원	630	480	293	**△187**	**△38.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59 - 304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사무관(문규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수행할 **의과학자** 양성 * 중개연구 : 임상과 기초의학을 연결시켜주는 의과학 연구분야 **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연구인력 (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소지)
사업기간	(당초) '08 ~ 계속 → (변경) '08 ~ '21 (일몰시점)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사업수혜자 153명('08~'18)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참여기관) 대학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대학원생 지원비 : 255백만원**

-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학자 양성과정(MD-PhD 복합학위과정생, 7년 과정) 대학원생 지원

· '16년부터 신규 미선발, '21년('15년 선정자 졸업 시)까지 기 선정자만 지원*

* 지원 예정 인원 : ('19) 15명 ⇢ ('20) 13명 ⇢ ('21) 6명

- 산출 내역 : 15명 × 17백만원* = 255백만원

* 연 평균지원액(등록금) 12백만원 + 1인당 교육연구비 5백만원

※ 등록금 지원액은 학적변동(휴학, 학업미달 등)과 외부 장학금 수혜 등에 따라 유동적

○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5백만원**

- 대학원생 대상 명사초청 의과학 특강, 학생 포스터 발표 및 우수 포스터 시상 등 매년 단기 집중교육 워크숍 실시

○ **심사·평가 운영비 : 3백만원**

- 지원학생의 의과학자 과정 수학, 학업성취도, 사업비 집행 등 현장 점검에 따른 출연기관(한국연구재단) 운영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의과학자육성지원	480	293
■ 대학원생지원	442백만원 (26명 × 17백만원)	255백만원 (15*명 × 17백만원) * 전년대비 11명 지원종료
■ 공동교육과정운영	1회 × 35백만원	1회 × 35백만원
■ 심사·평가운영비	3백만원	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21세기 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개연구*의 활성화**와 이를 수행할 **의과학자** 양성·활용이 **필수**적

* 중개연구 : 임상과 기초의학을 연결시켜주는 의과학 연구분야

** 임상경험과 연구력을 겸비한 연구인력(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소지)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NIH**)은 1964년부터 **임상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인 **MSTP**(Medical Science Training) **시행**

※ 43개 의대 932명을 지원, 1년에 약 170명의 MD-PhD를 배출하고 전체 의대생의 4%를 기초연구자로 양성하며 최근 15년 동안 프로그램 수혜자 중 14명이 노벨상 수상

○ **우수 학생이 의과학 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 의과대학에 우수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나, **의대 졸업 후 연구보다**는 **진료의사를 선택**

※ '17년 기초의과학 연구개발 인력 부족률 39.0%(9,184명), 학위과정별로는 박사급 MD 인력의 부족률(48.1%)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분야 R&D인력수급 현황과 전망」 2007)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의과학자 육성지원	**630**	**480**	**293**	**△187**	**△38.9**
■ 대학원생지원비	592	442	255	**△187**	**△42.3**
- 대학원생지원비	592 (35명x16.914백만원)	442 (26명x17백만원)	255 (15명x17백만원)	**△187**	**△42.3**
■ 공동교육과정운영	35	35	35	-	-
- 공동교육과정운영	35 (1식x35백만원)	35 (1식x35백만원)	35 (1식x35백만원)	-	-
■ 심사평가운영	3	3	3	-	-
- 심사평가운영	3 (1식x3백만원)	3 (1식x3백만원)	3 (1식x3백만원)	-	-
□ 비목(합계)	**630**	**480**	**293**	**△187**	**△39.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630	480	293	**△187**	**△39.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원생 지원 중단 : 신규 미선발** ※ **기 선발자'만 지원**

* 지원 예정 인원 : ('19) 15명 ⇢ ('20) 13명 ⇢ ('21) 6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30				
'18	480	■ 대학원생 지원 442 (26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480	■ 대학원생 지원 442 (26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
'19	293	■ 대학원생 지원 255 (15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293	■ 대학원생 지원 255 (15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
'20	259	■ 대학원생 지원 221 (13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259	■ 대학원생 지원 221 (13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
'21	140	■ 대학원생 지원 102 (6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140	■ 대학원생 지원 102 (6명×17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35 ■ 심사평가운영비 3	-
'22					
연평균 증가율 (%)	△31.3%		△31.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80	293	△187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5.4	3.3	△2.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3.3명** - 의과학자 육성 지원 사업 2.93억원은 <표2>의 '연구개발활동 비목(360-05)'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 **2018년 고용효과 : 5.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사항 없음('21년 일몰 예정 사업)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02.1월, 부총리 결재)
- 의료산업 발전 방안('06.7월)

○ 추진경위
- 의과학분야의 특성상 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료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경험과 높은 연구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08년 최초 사업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의과학자육성지원	9.54	-	8.72	7.58	-	6.3		4.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72** **(8.72)**	( )	( )	8.72 (8.72)	**8.72** **(8.72)**	( )	( )
'16년	**7.58** **(7.58)**	( )	( )	7.58 (7.58)	**7.58** **(5.98)**	( )	(1.6)
'17년	**6.3** **(6.3)**	( )	( )	6.3 (6.3)	**6.3** **(5.2)**	( )	(1.1)

○ 수행기관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학적 변동 등 지원 사유 미발생(군휴학, 성적미달, 졸업 등)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30		480		480	480	100%

○ 집행현황
- 대학원생 지원비 : 26명 × 17백만원 = 442백만원
-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식 × 35백만원 = 35백만원
- 심사·평가 운영비 : 1식 × 3백만원 = 3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 통합재정사업 최종평가 결과 : 보통(74.0)

○ 수혜자 진로 이탈 등 문제 발생시 회수 조건 추가 필요('16.3월, 감사원)
- '16년부터 신규 지원자 미선발, 기존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의과학 분야 미 진출 시 지원금 회수 조건을 지원조건으로 추가 반영

○ **(졸업 후 연구 매진)** 해당 사업 수혜자가 지원 종료 및 **졸업 이후 3년간** * 자신의 **연구실적 및 취업현황 제출**
  * 군입대 및 수련의(인턴·레지던트) 기간 제외
  * 구직활동을 하였으나(자료 증빙), 미취업으로 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기간 제외
- **졸업 후 3년 도과 시점**까지 연구 실적 **미제출 및 기준미달*** 시 **1차 경고, 익년 (졸업 후 4년 도과 시점)**까지 미제출 및 기준미달 시 **'16년 이후 지원금 전액 환수**
  * SCE(E) 1편 이상 또는 KCI등재(후보지 포함) 2편 이상
  ** 지원금 환수 실패 시에 대비하여 대학(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보증을 서고, 미환수 시 대학(또는 산학협력단)이 변상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MSTP*(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 국립보건원의 생명·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1964년~)

○ **MD-PhD 과정*** 학생에게 미국국립보건원이 1964년 제정한 MSTP를 통해 지원하여 의학연구와 교육을 주도할 **미래 의사과학자 배출**
  * 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동시에 취득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을 통해 **43개 의과대학**의 **MD-Ph.D 학생 지원**
- 대학은 MSTP를 통하여 MD-PhD 기간 동안의 **등록금, 생활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
- 지원 현황
  · 지원기관 수 : 43개 대학*(M.D.-Ph.D. 과정 개설 대학 115개교)
    * 하버드, 존스홉킨스, 워싱턴, 콜롬비아, 듀크, 예일 등
  · 지원학생 수 : 932명(연 선발 170명)
    * 등록금 외 생활비, 의료보험료, 실험실습비 등 지원
- 지원 기간 : **총 6년**(MD 4년 + PhD 2년), **그 이상**은 **학교 자체 부담**

○ **전체 의대**생의 **4% 지원, 최근 15년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 **영국 : 의과학자 교육과정** (2005년~)

○ **전문의 양성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영국 의과학자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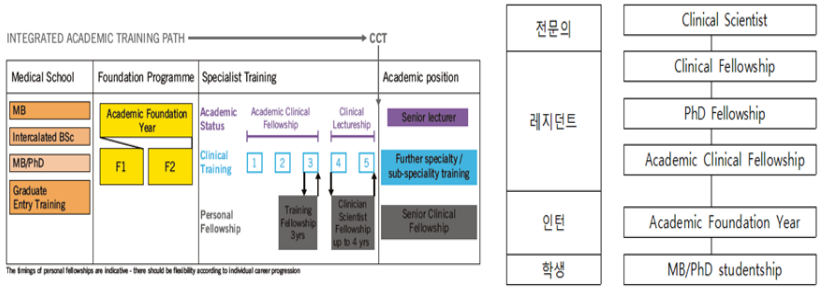

❑ **일본(오사카대학) : 학문간/학제간 융합 프로그램**

(IPBS,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medical Sciences)

○ 의대, 약대, 공대, 자연대 및 제약회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건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

○ **박사학위과정**으로 **1년차**는 **집중적인 기초의학·임상의학**, **2년차**는 **생명과학**, **3~5년차**는 **개별 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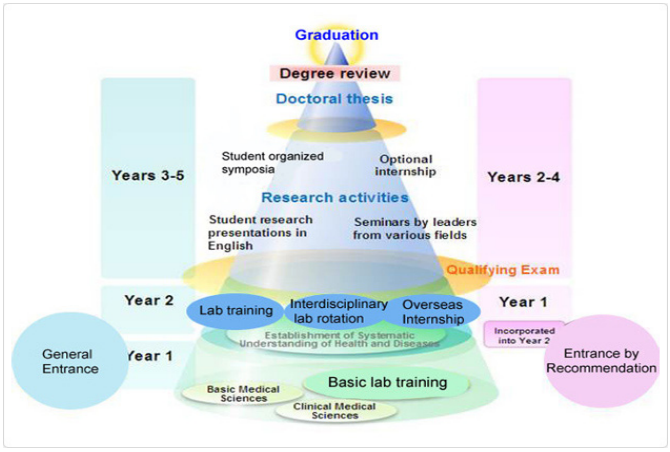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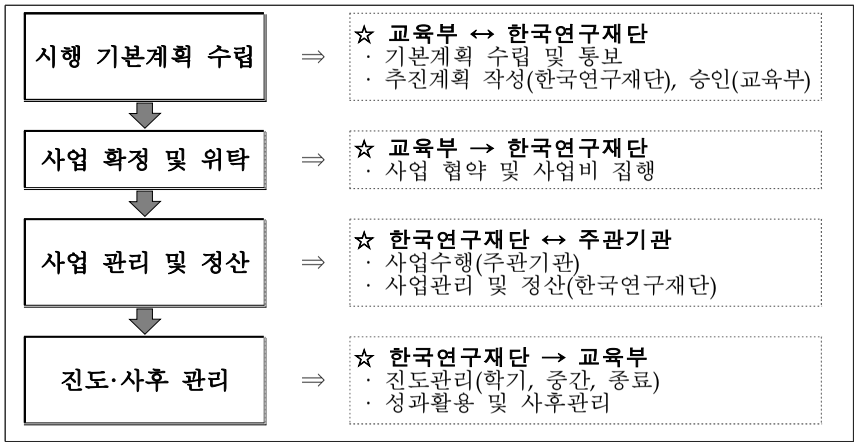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의과학자육성 사업 수혜자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단위 : %)	목표	67	58	60	62	62	3년간('15~'17) 실적 평균(45.4) 대비 약 37% 상향 설정	의과학자 진출자(명)/지원 종료자(명)	현장점검 및 대학 제출 보고서
	실적	42.1	47	47	-	-			
	달성도	62.8%	81%	78.3%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의과학자 과정 학생 지원 현황

○ 2017학년도 주요 성과

○ 2017년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참고 1 의과학자 과정 학생 지원 현황

구분	대학명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	'14년			'15년			'16	'17	'18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계속	신규	계속	계	신규	계속	계	계속	계속	계속
유지대학	강원대(의)	2	-	2	-	2	2	1	2	3	1	3	4	-	3	3	3	-	1	1	-	1	1	1	-	-
	건국대(의)	-	-	-	-		-	1	-	1	3	1	4	2	4	6	6	-	5	5	-	4	4	4	3	2
	동국대(의)	-	-	-	-	-	-	-	-	-	3	-	3	-	3	3	3	-	1	1	-	1	1	1	1	1
	제주대(의)	-	-	-	-	-	-	-	-	-	1	-	1	1	1	2	2	-	2	2	3	2	5	5	5	4
	차의과대(의)	4	-	4	1	4	5	-	5	5	-	5	5	-	5	5	3	-	1	1	1	0	1	1	1	1
	서울대(치)	4	-	4	2	4	6	-	6	6	5	1	6	1	5	6	5	1	3	4	1	4	5	5	4	2
	전남대(치)	4	-	4	1	4	5	1	5	6	2	6	8	2	8	10	7	1	6	7	4	6	10	10	9	7
	부산대(치)	-	-	-	2	-	2	-	2	2	1	2	3	2	3	5	5	1	5	6	1	6	7	5	5	4
	부산대(한)	-	-	-	-	-	-	-	-	-	1	-	1	-	1	1	1	1	1	2	1	2	3	3	3	2
	계(9개)	**14**	**0**	**14**	**6**	**14**	**20**	**3**	**20**	**23**	**17**	**18**	**35**	**8**	**33**	**41**	**35**	**4**	**25**	**29**	**11**	**26**	**37**	**35**	**31**	**23**
복귀대학	가천대(의)	-	-	-	-	-	-	-	-	-	2	-	2	2	2	4	4	-	3	3	-	3	3	3	3	3
	경북대(의)	3	-	3	2	3	5	-	5	5	-	5	5	-	4	4	4	-	1	1	-	0	0	-	-	-
	경희대(의)	4	-	4	4	4	8	-	8	8	-	7	7	-	5	5	4	-	3	3	-	1	1	-	-	-
	고려대(의)	-	-	-	4	-	4	-	2	2	-	1	1	-	1	1	1	-	1	1	-	1	1	-	-	-
	부산대(의)	2	-	2	2	2	4	-	4	4	-	4	4	-	4	4	4	-	3	3	-	1	1	-	-	-
	서울대(의)	4	-	4	10	3	13	-	9	9	-	4	4	-	3	3	3	-	3	3	-	3	3	-	-	-
	아주대(의)	-	-	-	2	-	2	-	2	2	-	-	-	-	-	-	-	-	-	-	-	-	-	-	-	-
	연세대(의)	7	-	7	6	6	12	-	8	8	-	8	8	-	5	5	4	-	3	3	-	3	3	-	-	-
	이화여대(의)	4	-	4	2	4	6	-	4	4	-	4	4	-	4	4	4	-	2	2	-	2	2	-	-	-
	전남대(의)	-	-	-	3	-	3	-	3	3	-	3	3	-	3	3	3	-	3	3	-	3	3	2	1	-
	전북대(의)	5	-	5	5	4	9	-	7	7	-	6	6	-	6	6	6	-	2	2	-	2	2	-	-	-
	충남대(의)	-	-	-	3	-	3	-	2	2	-	-	-	-	-	-	-	-	-	-	-	-	-	-	-	-
	경북대(치)	1	-	1	1	1	2	-	2	2	-	2	2	-	2	2	2	-	1	1	-	1	1	-	-	-
	경희대(치)	2	-	2	-	2	2	-	1	1	-	1	1	-	-	-	-	-	-	-	-	-	-	-	-	-
	연세대(치)	6	-	6	4	5	9	-	6	6	-	5	5	-	4	4	3	-	3	3	-	1	1	-	-	-
	계(15개)	**38**	**0**	**38**	**48**	**34**	**82**	**0**	**63**	**63**	**2**	**50**	**52**	**2**	**43**	**45**	**42**	**4**	**28**	**28**	**0**	**21**	**21**	**5**	**4**	**3**
	합계(24개)	**52**	**-**	**52**	**54**	**48**	**102**	**3**	**83**	**86**	**19**	**68**	**87**	**10**	**76**	**86**	**77**	**4**	**53**	**57**	**11**	**47**	**58**	**40**	**35**	**26**

참고 2 2017학년도 주요 성과

❑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참여 학생의 연구실적

○ SCI 논문 수(성과산출년도 기준)

성과산출년도	지원대상학생수	SCI(편)			비SCI(편)			계
		주저자(제1저자)	공저자	계	주저자(제1저자)	공저자	계	
2008년	52	3	4	7	2	1	3	10
2009년	102	8	16	24	5	2	7	31
2010년	86	13	43	56	8	16	24	80
2011년	87	32	59	91	13	8	21	112
2012년	86	32	40	72	4	9	13	85
2013년	77	34	44	78	4	3	7	85
2014년	54	39	27	66	4	0	4	70
2015년	58	33	24	57	4	1	5	62
2016년	36	11	2	13	0	0	0	13
2017년	29	10	8	18	0	3	3	21
계	667	215	267	482	44	43	87	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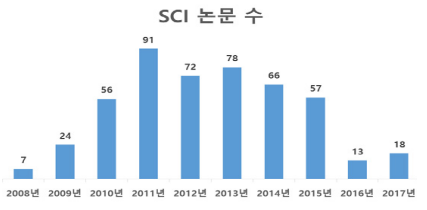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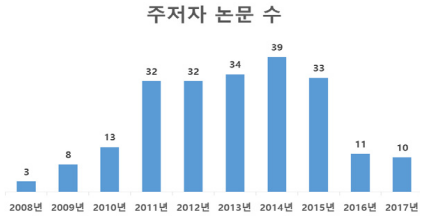

○ 학술대회 발표

구분	국내	국외	계
2008년	7	2	9
2009년	11	12	23
2010년	41	40	81
2011년	34	34	68
2012년	34	27	61
2013년	34	31	65
2014년	33	17	50
2015년	14	12	26
2016년	6	7	13
2017년	15	16	31
계	229	198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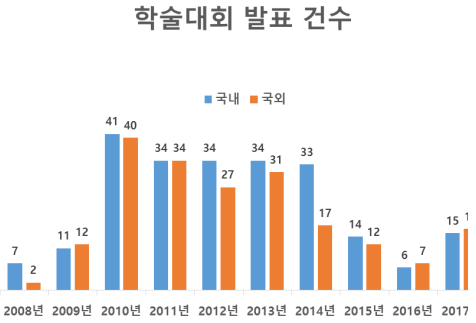

○ 특허

구분	출원	등록	계
2011년	1	-	1
2012년	5	5	10
2013년	4	3	7
2014년	1	2	3
2015년	2	1	3
2016년	-	-	-
2017년	-	-	-
계	13	11	24

❑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참여학생의 연구과제 참여실적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지원대상 학생수	52	102	86	87	86	77	54	58	36	28	666
연구과제 참여건수	20	24	33	51	42	21	30	8	**30	**30	289

** 타사업 참여 3건 포함

참고 3 '17년 의과학자육성지원 사업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응답률 : 100%(35명 중 35명 응답)

* 성별 분포 : 남 57%, 여 43%

** 선정년도별 분포 : 08년 3%, 09년 3%, 11년 26%, 12년 29%, 14년 14%, 15년 26%

❑ 항목별 조사결과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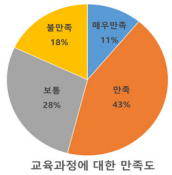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82%가 의과학자육성사업의 교육과정에 만족

☞ '매우만족' 11% '만족' 43% '보통' 28%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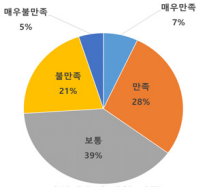

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74%가 지원내용(등록금 및 교육연구지원비)에 만족

☞'매우만족' 7%, '만족' 28%, '보통' 39%

*** 지원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26%**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의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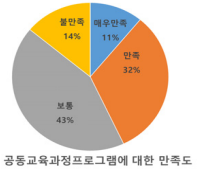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86%가 의과학자육성사업의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에 만족

☞ '매우만족' 11%, '만족' 32%, '보통' 43%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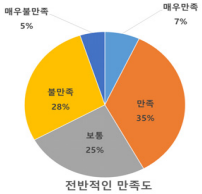

전반적인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67%가 의과학자육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매우만족' 7%, '만족' 35%, '보통' 25%

→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의 **78%가 만족**

[30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4,750	4,900	4,655	△245	△5.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59 - 305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사무관(문규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정과제] 51-1.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 입학 지원 강화** - 51-1-4.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 선발·지원 확대 ○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희망사다리 마련** * 25교(6,000명) : 서울권역 15개교(3,420명), 지방 4대 권역 10개교(2,580명) ○ 대한변협법전원평가위원회의 **평가준비·기준정비 등**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법전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후 질 관리 제고** * (인증평가) 5년 주기 평가('22년), (자체평가) 인증평가 2년전 실시('20년)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법학전문대학원(25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지원
지원조건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4,455백만원**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비**

▪ 산출내역

- **등록금** 지원 : 304**명***×평균 등록금 **14.5백만원**** = **4,405백만원**

* **소득 3구간 이하 학생 1,100명의 약 28%**('18학년도 1학기 법전원 장학금 신청자 기준)

소득분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합계
인원수	112	558	227	203	190	99	177	1,566
누계인원	112	670	897	1,100	1,290	1,389	1,566	

** '18학년도 국·사립 법학전문대학원 연평균 등록금 및 입학금 : 14,519천원
⇒ 연평균 등록금(14,238천원) + [평균 입학금(844천원) / 3(신입생만 지원)]

▪ 한국장학재단(출연기관) **관리비* 지원 : 50백만원**

* 장학금 지급 시 객관적·공정한 지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시스템 개발·관리, 가구원 확인,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등) **소요 관리비**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200백만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동법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법전원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준비, 기준 정비** 등 평가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평가 관련 평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50백만원
- 재평가 준비 및 평가 기준 정비 : 7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비 지원 : 8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4,900백만원**	**4,655백만원**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700백만원** ·**기초~소득2분위**(중위 70%) **국고 지원** (320명*×14.5백만원=4,650백만원) * 기초~소득2분위 이하 학생1,073명, '17.1학기 기준의 **약 30%** ·한국장학재단 관리비 (50백만원)	**4,455백만원** ·**기초~소득3구간**(중위 70%) **국고 지원** (304명*×14.5백만원=4,405백만원) * 기초~소득3구간 이하 학생1,100명, '18.1학기 기준의 **약 28%** ·한국장학재단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재평가 준비, 평가기준 정비 등 (1식×70백만원) ·평가 평정시스템 개발·유지보수 (1식×50백만원) ·평가위원회 운영비 지원 (1식×80백만원)	**200백만원** ·제3주기 평가기준 정비 등 (1식×70백만원) ·평가 평정시스템 개발·유지보수 (1식×50백만원) ·평가위원회 운영비 지원 (1식×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필요**

▪ 취약계층 선발비율* 및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의 법조인 진출기회 확대**

* 취약계층 선발비율 : (기존)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의무화

○ 법전원의 **등록금 동결·인하**와 **장학금 지급률 30% 이상 유지노력**에 **대응**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필요

▪ 국가 지원 확대로 **대학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소득 3구간 이하 및 **소득 4구간 이상 취약계층에게 장학금을 지원** 등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질 관리를 통해 우수 법조인 양성의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법전원 제도의 정착과 발전 도모**

* (인증평가) 5년 주기 평가('17년, '22년), (자체평가) 인증평가 2년 전 실시('15년, '20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4,750**	**4,900**	**4,655**	**△245**	**△5.0**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200	4,700	**4,455**	△245	△5.2
- 취약계층 장학금(사업출연금)	4,150 (272명x15.257백만원)	4,650 (320명x14.53백만원)	4,405 (304명x14.53백만원)	△245	△5.3
- 한국장학재단관리비 (사업출연금)	50 (1식x50백만원)	50 (1식x50백만원)	50 (1식x50백만원)	-	-
■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550	200	200	-	-
- 평가 및 기준정비(민간경상보조)	400 (1식x400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	-
- 평정시스템 개발 유지 보수 (민간경상보조)	70 (1식x70백만원)	50 (1식x50백만원)	50 (1식x50백만원)	-	-
- 평가위원회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80 (1식x80백만원)	80 (1식x80백만원)	80 (1식x80백만원)	-	-
□ **비목**(합계)	**4,750**	**4,900**	**4,655**	△245	△5.0
○민간경상보조(320-01)	550	200	200	-	-
○사업출연금(350-02)	4,200	4,700	4,455	△245	△5.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법학전문대학원 **학비부담 경감**,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및 취약계층 우선 지원으로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 실현**

▪ **기초～소득 3구간** 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소득 4구간 이상 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차등 지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평가 체제 확립 유도** 및 **질적 발전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750				
'18	4,900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700백만원 (320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4,900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700백만원 (320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
'19	4,377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127백만원 (285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4,655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455백만원 (304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278
'20	7,879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7,679백만원 (530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4,515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315백만원 (298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3,364
'21	7,879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8,127백만원 (557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4,425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225백만원 (292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3,454
'22			4,381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181백만원 (289명×14.5백만원, 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00백만원	4,381
연평균 증가율 (%)	15.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900	4,655	△24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1.5	39.4	△2.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8.5	8.5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39.4명**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사업 46.55억원(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44.55억원,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2억원)은 <표4>의 '산업별 평균'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46.55억원 ÷ 1.18억원 =39.4명 **□ 2018년 고용효과 : 41.5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국고 장학금(등록금) 및 교육비(교재비, 생활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법조인으로 취업기회 확대 - 장학금 지원 → 학업 전념 → 변호사 자격취득 → 저소득층의 취업률 향상 효과 - 소득 3구간(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학생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하여 서민법조인 양성 확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원근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7조, 제32조 등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④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정과제) 51-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기회 확대(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장학금 지원 확대**)

○ 추진경위

▪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인가 ('08.09.02.)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및 운영 ('09.03.)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 ('10.07. ~ '11.2.)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확정 ('11.10.), 평가 설명회 ('12.01.)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실시 ('12.09.~) 및 평가 결과 발표 ('13.01.)
▪ 법학전문대학원 인증유예 추가평가 실시 ('13.09.~)
▪ 법학전문대학원 추가 인증평가 결과 발표 ('13.12.)
▪ 법학전문대학원 2주기 평가기준 개정 ('14.11.)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06.)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제도 개선 ('17.08.)
▪ 법학전문대학원 2주기 평가 결과 발표 ('18.02.)
▪ 2018년도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 기본계획 ('18.02.)
▪ 취약계층 선발 확대 및 입시공정성 제고를 위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18.0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역량강화	10.4	-	9.36	53.26	-	47.5		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36** **(9.36)**	( )	( )	9.36 (9.36)	**9.36** **(9.00)**	( )	(0.36)
'16년	**53.26** **(53.26)**	( )	( )	53.26 (52.26)	**52.26** **(45.22)**	( )	1.0 (7.04)
'17년	**47.5** **(47.5)**	( )	( )	47.5 (47.5)	**47.5** **(47.1)**	( )	(0.4)

○ '16회계연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 **취업역량강화** : 서민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인하와 사업비 배정금액을 연계하여,
· 등록금 동결·인하에 참여한 대학에 보다 많은 예산배정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별 등록금 인하 수준 결정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 시기가 지연**됨

※ 하계·동계 방학중 국·내외 인턴십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등록금 동결·인하 지연으로 '16.9월 사업비 교부 등 하계 방학중 인턴십 추진상 어려움에 따른 집행 잔액 642백만원 발생

- **평가위원회 운영지원**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구성 지연('16.8.26. 구성완료)으로 평가지원비 2억원중 1억원 미교부 및 사업비 집행 잔액 6천만원 발생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750		4,900		4,900	4,900	100%

○ 집행현황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4,700백만원(장학금 4,650백만원, 장학재단관리비 50백만원)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20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미흡(78.0)

- 해당 사업을 통한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 개선 효과 및 상위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가 객관적으로 도출되기 어려움

○ '17년도 통합재정사업 최종평가 결과 : 보통(74.0)

○ '17년도 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 82.3점

○ '15년도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평가기구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엔)

지원분야	'04	'05	'06	'07	'08	계
사립대 경상비 보조	25	40	48	48	57	218
학생 장학금 지원	68	105	129	129.4	128.7	560.1
교육프로그램 지원	15	18	16.2	13.1	13.5	75.8
합 계 (한화 : 억원)	**112 (1,472)**	**168 (2,209)**	**199.2 (2,619)**	**197.5 (2,597)**	**207.2 (2,724)**	**883.9 (11,623)**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ka/04012301.htm)

○ **일본 문부과학성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 학위수여기구"에 대해 '10년 **17.5억엔 예산 지원** (한화 : 약 227.5억원)

□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 현황

○ **미국의 로스쿨 리걸클리닉(무료공익법률상담센터) 지원 현황**

- 미국은 연방정부 교육부(1978~97년)가 7,800만 달러, 공익재단 포드재단(1959~78년)이 1,300만 달러 등 리걸클리닉 개설·운영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 ※ 2009년 총 199개 모든 미국 로스쿨이 리걸클리닉 개설·운영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
▪ 사업 총괄 ▪ 기본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결과보고		▪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 법전원 평가 실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초~소득6구간 학생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단위 : %)	목표	-	신규	75	90	92	'17년 신규 지표로 '17년 실적 및 전년 목표 수준으로 설정	기초생활수급자 ~ 6구간 학생의 25교 장학금 수혜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 6구간 학생의 25교 년간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정산보고 및 대학 제출 보고서
	실적	-	신규	89	-	-			
	달성도	-	신규	119%	-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관련 질의·응답 건수(건)	목표	-	신규	14	10	10	'17년 제2주기 평가 실시로 인한 목표치 하향 설정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관련 질의·응답 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신규	80	-	-			
	달성도	-	신규	571%	-	-			
무료법률 상담 (단위 : 건)	목표	96.4	폐지	-	-	-	-	법전원 연간 무료 법률 상담 건수(25교총 상담 건수/25교)	현장점검 및 대학 제출보고서
	실적	96.5	폐지	-	-	-			
	달성도	100%	폐지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 변호사 배출 추이

○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언론보도 자료

참고 1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단위:천원)

학 교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강 원 대	9,478	9,760	10,050	10,050	10,050	10,050	10,050
건 국 대	15,456	15,456	16,970	16,970	15,985	15,000	15,000
경 북 대	10,142	10,142	10,344	10,344	10,344	10,344	10,344
경 희 대	19,396	19,978	19,978	19,978	18,480	16,982	16,982
고 려 대	20,138	20,138	20,742	20,742	20,121	19,500(최고)	19,500(최고)
동 아 대	18,731	18,710	18,710	18,709	17,306	15,902	15,902
부 산 대	9,478(최저)	9,746	9,792	9,908	9,908	9,908	9,908
서 강 대	16,538	17,298	17,956	18,352	17,075	15,598	15,598
서 울 대	13,500	13,466	13,432	13,392	13,346	13,298	13,298
서울시립대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성 균 관 대	20,840(최고)	20,840(최고)	21,464(최고)	21,892(최고)	20,250(최고)	18,608	18,608
아 주 대	19,352	19,952	19,952	19,952	18,455	16,958	16,958
연 세 대	20,476	20,476	20,476	20,476	19,964	19,452	19,452
영 남 대	18,916	18,916	18,916	18,916	17,497	16,078	16,078
원 광 대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이 화 여 대	18,000	18,630	19,188	19,188	17,911,	16,309	16,309
인 하 대	18,702	18,702	18,702	19,150	17,713	16,276	16,276
전 남 대	10,076	10,376	10,376	10,376	10,376	10,376	10,376
전 북 대	10,040	10,312	10,312	10,406	10,406	10,406	10,406
제 주 대	10,000	10,300	10,300	10,546	10,440	10,440	10,440
중 앙 대	17,500	17,500	18,900	19,352	18,056	16,450	16,450
충 남 대	9,648	9,648(최저)	9,648(최저)	9,648(최저)	9,648(최저)	9,648(최저)	9,648(최저)
충 북 대	9,824	9,824	9,824	9,824	9,824	9,824	9,824
한 국 외 대	17,600	17,600	18,110	18,110	16,752	15,394	15,394
한 양 대	19,224	19,224	19,704	20,136	18,776	17,114	17,114
전 체 평 균	**15,164**	**15,321**	**15,595**	**15,698**	**14,988**	**14,238**	**14,238**

참고 2 변호사 배출 추이

(단위:명)

연 도	사법연수원 수료자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전원 졸업생)	합 계	비 고
2006	895	-	895	
2007	975	-	975	
2008	974	-	974	
2009	980	-	980	
2010	978	-	978	
2011	970	-	970	
2012	1,030	**1,451**	2,481	
2013	826	**1,538**	2,364	
2014	786	**1,550**	2,336	
2015	509	**1,565**	2,074	
2016	356	**1,581**	1,937	
2017	234	**1,600**	1,834	
2018	171	**1,599**	1,770	

※ 1) 사법시험 2017년 이후 폐지, 법조인력 선발방식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
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첫 시행

참고 3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 현황

(단위:명)

학 교 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강 원 대	2	2	1	2	3	2	2	2	3	2	21
건 국 대	2	2	2	2	2	1	2	2	2	2	19
경 북 대	7	7	5	9	7	7	7	9	9	8	75
경 희 대	4	4	4	5	4	6	4	4	5	4	44
고 려 대	6	6	7	6	7	6	6	6	6	7	63
동 아 대	4	4	4	5	4	4	4	4	4	4	41
부 산 대	8	8	9	9	9	8	9	9	8	9	86
서 강 대	3	2	3	3	3	3	3	3	3	3	29
서 울 대	10	9	9	9	9	10	9	12	11	11	99
서울시립대	5	5	6	6	5	5	6	6	5	6	55
성 균 관 대	6	6	7	6	6	6	6	7	7	6	63
아 주 대	3	3	3	3	3	3	3	3	3	3	30
연 세 대	6	6	6	6	7	6	6	7	8	6	64
영 남 대	4	4	5	4	5	4	4	4	4	5	43
원 광 대	5	5	4	6	6	5	5	5	5	7	53
이 화 여 대	6	6	6	6	6	6	6	6	7	6	61
인 하 대	3	3	3	3	3	3	3	3	3	3	30
전 남 대	12	6	9	12	10	14	12	14	13	12	114
전 북 대	4	5	6	7	6	6	6	6	6	6	58
제 주 대	4	2	2	3	1	4	8	4	4	3	35
중 앙 대	4	4	4	5	5	5	4	4	5	4	44
충 남 대	5	5	6	5	5	5	6	6	6	6	55
충 북 대	4	4	4	4	4	4	4	4	4	5	41
한 국 외 대	3	3	3	3	3	3	2	4	3	3	30
한 양 대	5	5	6	5	5	6	6	5	5	6	54
합 계	125	116	124	134	128	132	133	139	139	137	1,307

참고 4 언론보도 자료

□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 전액 장학금 받는다 ('18. 2. 27,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8년 02월 27일 화요일 011면 사회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 전액장학금 받는다

〈기초·3구간〉

교육부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월 316만원 이하 소득층 혜택
작년보다 5억 증가한 47억 배정

소득 구간 4~6분위는
등록금의 70~90% 지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 1019명이 올해 전액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로스쿨 국고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억원 늘려 47억원을 로스쿨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모든 로스쿨은 취약계층 대상자 5%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국고로 지원한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급 액수는 많아진다. 기존생활수급자부터 3구간(월 소득 인정액 316만원 이하)까지는 전액장학금 혜택을 주는 데 교육부가 파악한 인원은 1019명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2000명이고 재학생이 60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명 중 1명꼴로 학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재비와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도 지급하도록 로스쿨들에 권장하고 있다.

중·하 소득층에 해당하는 4구간에는 등록금의 90%, 5구간 80%, 6구간 70%를 지급한다. 4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 406만원 이하, 5구간은 451만원 이하, 6구간은 542만원 이하로 구분한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소득에 따른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고 지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각 학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장학금 혜택을 늘려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층 학생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 금수저 스쿨 오명 벗나..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 줘야 ('17. 1. 05,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7년 01월 05일 목요일 011면 사회

'금수저 스쿨' 오명 벗나…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 줘야

〈등록금의 70% 이상〉

교육부, 로스쿨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개선안' 발표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3분위는 90%이상 장학금
6분위 이상은 대학 자율로

흙수저 변호사 흘로 설 수 있는
실무 교육 내실화 작업도 절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기준 (단위: %)

	지원 규모 (등록금 대비)	수혜 대상
1순위	100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 2분위 (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90	소득 3분위
3순위	80	소득 4분위
4순위	70	소득 5분위
5순위	대학자율	

가구당 소득분위 경계값 (단위: 원)

1분위	154만1111
2	318만
3	435만
4	529만
5	619만
6	720만
7	836만
8	1043만
9	1359만
10	1359만(초과)

지난해 2학기 기준 (자료: 교육부)

서민층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로스쿨이 부유층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국민일보 2016년 11월 25일자 1·2면) 교육부와 로스쿨들이 서민층 장학금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장학금 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장벽 하나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 70% 장학금

교육부는 4일 발표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방도 개선안'에서 장학금 수혜 인원을 1~5순위로 구분해 소득별 지원 규모를 못 박았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학생이다.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 1순위는 교재비나 생활비도 학교가 지원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순위는 3분위로 등록금의 90% 이상을 받는다. 3순위(4분위)는 80% 이상, 4순위(5분위)는 70% 이상이다. 나머지 6~10분위는 5순위에 들어가 대학 자율이다.

장학금이 남을 경우 6분위 이상으로 혜택을 넓힐지 1순위에 교재비나 생활비를 지원할지 로스쿨 자율로 결정한다. 장학금이 부족할 경우 2~4순위 장학금 비율을 로스쿨 자율로 조정 가능하다. 예컨대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로 낮출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들과 합의한 내용으로 학비 부담을 낮추라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 이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행하지 않는 로스쿨에는 국고 지원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인 잔에서 흙수저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로스쿨 재학생 6080명 가운데 9분위 이상은 1880명(30.9%)이었다.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소득 공개를 거부한 인원은 1859명(30.6%)이었다. 당국은 소득 공개를 거부한 학생 상당수를 고소득층으로 추정한다. 로스쿨 재학생 소득 분포는 아랫부분(기초생활수급자~2분위 17.3%)은 비교적 두툼하고, 중간은 빈약한 대신 고소득층(61.5% 추정)이 압도적인 '와인 잔' 형태다.

교육부는 소득별 장학금 규모가 명확해지면서 '돈 스쿨' 비판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까지는 서민층에 지원되는 장학금액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싼 학비에 지레 겁먹고 지원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줄어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 깊이 뱀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층이 로스쿨을 꺼리는 이유는 학비 때문만은 아니다. 법조계에선 집안 배경에 따라 변호사 자격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로스쿨 3년간 법학 이론과 실무까지 익히기 쉽지 않다. 집안 배경이 좋다면 법무법인(로펌) 등에서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흙수저 변호사라면 하드웨일만 하다 정소득 변호사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뒤에 좋은 서기가 가능할 정도로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 실무 교육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다음 과제란 지적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 로스쿨 3년마다 입학실태 점검 ('17. 9. 6, 서울신문, MBC)

서울신문
2017년 09월 06일 수요일
010면 사회

로스쿨 3년마다 입학실태 점검

임시비리 의혹으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렀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3년에 한 번꼴로 입학전형 운영 실태 점검을 받는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8~9개 로스쿨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수도권의 인하대·한양대와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영남권 3곳, 충남대·전북대·제주대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 등을 조사한다. 대학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고지했는지, 면접 과정에서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면접에서 물어봤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학생에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 자료 없이 진행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했는지도 따진다. 앞서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 일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를 적은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부터 부모 이름이나 신상 관련 내용의 기재를 금지할 것을 로스쿨에 요구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

박철현 | 기사입력 2017-09-05 12:14 | 최종수정 2017-09-05 12:15

로스쿨 | 입학전형 | 교육부

정부가 불공정 입시 논란이 일었던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정례화합니다.

교육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8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2016, 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를 조사합니다.

또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을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8, 9개 학교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로스쿨 3년마다 입학실태 점검(서울신문, 9.6)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정례화(MBC, 9.5)

[301] 대학평가 및 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평가 및 운영	2,405	2,285	2,249	△36	△1.6

* 사업코드 : 11 - 13 - 0 - 050 - 052 - 2200 - 2260 - 301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과장(김우정), 사무관(김현정)
국제협력관(공석), 교육국제화담당관(강정자), 사무관(김진아)
국제협력관(공석), 교육국제화담당관(강정자), 사무관(구현규)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이해숙), 사무관(임종일)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사무관(최선애)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사무관(이승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①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담보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공인원 등 7개 기관) 역량강화 지원 ⓑ (평가·인증기구 지정·지도)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정·중간평가 및 지도·감독을 위한 사업 지원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학위인정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지원 ② **(국립대학법인 성과 평가)** 국립대학 법인(서울대, 인천대)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③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국내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및 유학생 실태관리 조사 ④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대학사회 인식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진흥 프로그램 개발·확산 ⑤ **(공학교육혁신지원)**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9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7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2개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 등
지원조건	○ 지원 방법 : 민간보조, 출연 ○ 지원 비율 : 100% 이내 - 단,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은 60% 이상 자체재원 대응 조건
사업시행주체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공인원 등 7개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간접비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6개기관) - ('18) 간접비항목없음 → ('19) 간접비항목없음 ○ (공학교육인증제지원) - ('18) 34백만원(4.8%) → ('19) 34백만원(4.8%) ○ (평가인정기구 지정 및 지도) - ('18) 9백만원(15%)→ ('19) 9백만원(15%)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 ('18) 9백만원(15%)→ ('19) 10백만원(1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18) 39백만원(15.3%) → ('19) 39백만원(15.3%) ○ (공학교육 혁신지원) - ('18) 39백만원(6.6%) → ('19) 39백만원(6.6%)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 1,207백만원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 지원)**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담보 및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간평원 등 6개 기관)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6개기관×52백만원 = 312백만원

▪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신규지정 및 재지정, 평가인증기구 지도를 위한 위탁 사업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구 (재)지정 및 중간평가, 지도·자문 등
- 인정기관심의위원회(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소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등) 지원
- 미인정기관 컨설팅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질 담보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평가인증기구 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 (산출내역) 1개기관×93백만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

- (산출내역) 1개기관×702백만원 = 702백만원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UNESCO 학위인정 지역협약 참여('11.11, 도쿄)에 따라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학위 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및 운영 지원

- (산출내역) 1개기관×100백만원 = 100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대학(서울대, 인천대) 운영성과 평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2개교 x 30백만원 = 60백만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사업 : 301백만원

▪ 국내대학 유학생 유치·관리에 대한 질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및 유학생 실태관리 조사를 위한 사업비

- 인증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 대학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인증심사 및 실태조사, 외국인유학생 관리역량 미흡대학 컨설팅 등

- (산출내역) (인증평가및실태조사) 1식 x 270백만원 = 270백만원

(만족도조사 및 관련홍보(인증패제작등) 확산) 1식x31백만원=31백만원

※ '14년부터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2232-308) 세부사업에서 '대학평가 및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 93백만원

▪ 국립대학양성평등 조치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미흡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대학별 워크숍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38개교 x 2.44백만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 국제적 수준의 공과대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학교육인증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인증실효성확보및제도개선) 158백만원, (이해증진 및 기반강화) 263백만원, (국제협의체 활동) 18백만원, (사업운영비 등) 149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평가및운영	2,285	2,249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지원	1,214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6개 × 52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 지원 (1개 × 702백만)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1개 × 100백만원)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1개 × 100백만원)	1,207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6개 × 52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 지원 (1개 × 702백만)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1개 × 93백만원)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1개 × 100백만원)
■ 국립대학법인운영 성과평가	60 (2개교×30백만원=60백만원)	60 (2개교×30백만원=60백만원)
■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323 인증평가 및 실태조사 (1식×290백만원) 만족도 조사 및 관련 홍보 등 (1식×33백만원)	301 인증평가및실태조사 (1식×270백만원) 만족도 조사 및 관련홍보 등 (1식×31백만원)
■ 국립대학양성평등 조치계획평가	100 (38교×2.6백만원)	93 (38교×2.44백만원)
■ 공학교육혁신지원	588 인증실효성확보 및 제도개선 (1식×158만원) 이해 증진 및 기반강화 (1식×263백만원) 국제협의체활동 (1식×18백만원) 사업운영비 등 (1개×149백만원)	588 인증실효성확보 및 제도개선 (1식×158만원) 이해 증진 및 기반강화 (1식×263백만원) 국제협의체활동 (1식×18백만원) 사업운영비 등 (1개×14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 학문단위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질 보증 강화

-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질 관리 체제 확립을 통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및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고지원 필요

- 특히, '17.2.22.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양성 프로그램(의학, 치의학,

한의학 및 간호학)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 시행으로 엄격한 프로그램의 질 담보 필요

■ 의료법, 건축사법 개정으로 인한 해당 분야 평가·인증 의무화

- 의료법('12.2.1) 개정으로 정부인정 평가인증기관(간평원, 의평원, 치평원, 한평원)의 인증을 받은 학과의 졸업생만 관련 면허·자격시험 응시 가능('17.2.2.시행)

- 건축사법('11.5.30) 개정으로 인증 대학(5년제) 및 전문대학원에서 각각 학부 8학기 이상 이수, 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해 실무수련(3년) 자격 조건을 부여함('24.1.1.시행)

■ 평가인증기구(정부 인정기관) (재)지정 및 지도 내실화

- '17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재지정 심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신규지정 심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중간평가 수행을 위한 비용 필요

- 평가인증기구 정부 인정기관 지정 이후 인정기준 준수여부, 인정기관 이행사항 추진 여부,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도·자문을 위한 예산 필요

-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의 경우 평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관련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음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학위정보센터(NIC) 운영 지원

- UNESCO 학위인정 지역협약 참여('11.11, 도쿄),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비준('17.12.) 및 발효('18.2.1.)에 따라 국가 학위인정 정보센터(N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

< 국가 학위인정 정보센터(NIC) 역할>
- 해외학위인정기구 및 이해관계자(대학, 기업 등)에게 국내외 고등교육에 대한 공인된 정보 제공
- 국내 대학들의 학위인정 시 필요한 해당국(유학생 파견국가)의 고등교육 정보 제공(인증대학 여부 등)
- 해외 각국의 학위인정정보센터와의 네트워킹

- 국가 학위정보센터 내 최소 인력(2명 이상)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국내외 고등교육 정보 수집, 해외 국가정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비용 등 필요

※ 유럽주도 NIC 협의체(ENIC-NARIC) 가입국: 55개국(유럽 51, 미주 2, 태평양 2) 아셈 NIC협의체(ANICCW) 가입국: 23개국 (아태 10, 유럽 13)('17.4 기준)

※ OECD 35개 국가 중 남미 2개국 (멕시코, 칠레), 아시아 2개국 (일본, 한국) 제외한 전 국가에서 공식 NIC 설립 운영 중, 일본 NIC설립 예정(2018)

■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 공학교육인증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 양성체제 구축과 우리나라 공학교육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공학교육인증을 통한 국내 공과대학의 품질 보장, 교과운영체제 정립 및 공학 학부교육의 국제적 등가성 확보(Washington Accord)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 평가 지원

- 서울대 및 인천대 법인화 후 대학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내실있는 성과평가와 효과적인 컨설팅을 통한 대학운영의 책무성과 효율성 제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적 평가로서 매년 예산지원 필요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한하여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책무성 제고 필요

- 유학생 1명 이상 재학 대학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

- 부실대학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보편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상향평준화 달성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및 지원

-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대학별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사업성과〉

◈ **(국·공립대 여교수 증가)** '08년 1,928명에서 '16년 3,048명으로 1.6배 증가하였고, 여성교원 비율은 '08년 12.2%에서 '17년 15.8 %로 증가

※ 국·공립대 남녀교수 구성비 변화

(단위: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5,366	17,488	18,563	18,844	19,011	19,364	20,251	19,773	76,190
남교수	13,402	15,176	16,083	16,268	16,338	16,560	17,262	16,725	16,754
여교수	1,964	2,312	2,480	2,576	2,673	2,804	2,989	3,048	3,141
여교수비	12.8	13.2	13.4	13.7	14.1	14.5	14.8	15.4	15.8

◈ **(국·공립대 여성보직자 비율 증가)** '09년 8.9%에서 '17년 13.4%로 50.6% 증가

※ 국·공립대학 여성보직자 비율 : ('09)8.9% → ('10)9.7% → ('11)10.7%→ ('12)11.8% → ('13)11.9% → ('14)12.8% → ('15)12.4% → ('16)12.3% → ('17) 13.4%

○ 공학교육혁신지원

- 공과대학 교육의 현장지향성을 제고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실무 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우수 공학인재 양성 기반 구축 필요
- 국내 공과대학생들의 국제적 학위 등가성 보장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 교육과정 개선·확산을 위한 공학교육 인증 국제협의체 참여 및 제도 개선 지원 필요

< 각 주체별 공학교육인증의 필요성>

- **(학생)** 국가 간 학위의 등가성 확보를 통한 **해외 취업, 진학 및 자격증 취득** 시 유리하고, 수요 지향 교육이수를 통한 **취업 경쟁력 우위** 확보
- **(대학)** 지속적인 **강의 품질 개선**을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
  - 인증 받은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신입생 유치**에 유리
  -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교육을 통해 **해외 유학생 확보**에 유리
- **(산업체)** 창의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한 시간 및 경비 절감
- **(국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인증제 후원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 공급**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평가 및 운영**	**2,405**	**2,285**	**2,249**	**△36**	**△1.6**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1,244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6개×57.8백만원) 평가인증기구지정 및지도사업 (1개×95백만원) 학위인정기구구축 지원 (1개×100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지원 (1개×702백만원)	1,214 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지원 (6개x52백만원)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1식 x 100백만원) 학위인정기구구축 지원 (1식 x 100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지원 (1개×702백만원)	1,207 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 지원 (6개×52백만원)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1개×93백만원) 학위인정기구구축·지원 (1개×100백만원) 공학교육인증원지원 (1개×702백만)	△7	△0.6
▪ 국립대학법인운영성과 평가	60 (2개교×30백만원)	60 (2개교×30백만원)	60 (2개교×30백만원)	-	-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353 인증평가및실태조사 (1식×320백만원) 만족도조사및관련 홍보등 (1식×33백만원)	323 인증평가및실태조사 (1식×290백만원) 만족도조사및관련 홍보등 (1식×33백만원)	301 인증평가및실태조사 (1식×270백만원) 만족도조사및관련 홍보등 (1식×31백만원)	△22	△6.8
▪ 국립대학양성평등조치계획평가	100 (38개×2.6백만원)	100 (38개×2.6백만원)	93 (38개×2.44백만원)	△7	△7
▪ 공학교육혁신지원	648 인증실효성확보·제도개선 (1식×170백만원) 이해증진 및 기반강화 (1식×292백만원) 국제협의체활동 (20백만원) 사업운영비(166백만원)	588 인증실효성확보·제도개선 (1식×158백만원) 이해증진 및 기반강화 (1식×263백만원) 국제협의체활동 (18백만원) 사업운영비(149백만원)	588 인증실효성확보·제도개선 (1식×158백만원) 이해증진 및 기반강화 (1식×263백만원) 국제협의체활동 (18백만원) 사업운영비(149백만원)	-	-
□ **비목**(합계)	**2,405**	**2,295**	**2,249**	**△36**	**△1.6**
○ 민간경상보조(320-02)	2,052	1,962	1.948	△14	△0.7
○ 출연금(350-02)	353	323	301	△22	△6.8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 관리 체제 구축

- 대학의 공학, 컴퓨터 정보기술과 공학기술 및 관련분야의 교육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인증 및 자문 시행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협의체 요구에 부합하면서 전문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글로벌 공학 전문인력 배출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외 고등교육에 대한 공인 정보를 제공하는 학위인정기구(Qualification Recognition Center) 구축 지원

○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정착 및 확산, Washington Accord 정회원 활동으로 공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 공학교육인증제에 대한 연구 및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다양한 도구 개발 등 공학교육 인증평가 시스템의 지속적 품질 향상
-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입사 시 가산점 부여 등)를 위해 산업체에 인증제도 홍보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국립대학 법인의 책무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 국립대학법인의 비전관 목표, 경영전략, 운영계획 등을 고려한 성과평가를 통해 대학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국립대학법인 성과관리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효과적인 법인운영의 성과관리 제고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등 대학의 국제화 교육 역량을 평가 및 컨설팅하여 우리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405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24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53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1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648백만원			
'18	2,285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21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23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1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2,285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21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23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1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
'19	2,216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21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254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1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2,249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207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01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33
'20	3,989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2,21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20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587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2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788백만원	2,106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06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01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1,883
'21	3,989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2,214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20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587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200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788백만원	2,064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022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01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1,925
'22			2,043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 1,001백만원 ▪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 60백만원 ▪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 301백만원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실적 평가 및 지원 : 93백만원 ▪ 공학교육 혁신지원 : 588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2,285</td><td>2,249</td><td>△36</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32</td><td>31</td><td>△1</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4</td><td>14</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36p.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참조(민간경상보조는 표4. 해당산업 참조)
○ 38p.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참조
- 교육서비스는 1인 고용창출에 0.72억 필요
- 사업비 22.85('19년 22.49)억을 1인 고용창출 필요액(0.72억)으로 나누어 재정지출 고용효과 32명('18년 31명) 산출</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 2,249백만원 ÷ 72백만원 = 31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pp.31~38 참조)

☐ 2018년 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 2,285백만원 ÷ 72백만원 = 32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대학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 평가·인증을 통한 고등교육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고등교육 수요자의 사회진출을 지원</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교육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히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 제8.3조, 제8.4조

제8.3조
각 당사자는 고등교육 정보를 제공할 국가정보센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국가정보센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제8.4조
당사자는 국가정보센터를 통하여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다음의 활용을 촉진한다.
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학위 보조자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자격 보조자료, 그리고
나.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의 질 좋은 제공을 위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 그리고/또는 당사자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각각의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유사한 문서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교육기본법」제29조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제10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7조(사증발급) ① ~ ②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 **교육기본법 제17조의1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원 >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개정안 채택('11.11, 도쿄) 및「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비준('18.2.)
  - ▪ 아태지역 학위인정협약 지역위원회 개최 및 참석
    - · 제11차 지역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개최 ('12. 5., 서울)
    - · 제1차 전문가회의 및 실무진회의 참석 ('12. 10., 난징)
    - · 제12차 지역위원회 및 워크숍 참석 ('13. 5., 방콕)
    - · 제13차 지역위원회 및 워크숍 참석 ('14. 8., 콜롬보)
    - · 제1차 협약실행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15. 10.,방콕)
    - · 제14차 지역위원회 및 워크숍 참석 ('16. 8.,시드니)
    - · 제1차 도쿄협약 지역위원회 및 제15차 방콕협약 지역위원회 개최('18.10., 서울)

< 공학교육인증 >

- 1999.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원) 창립
- 2007.6 공인원의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07.6.20)
- 2007.11 IT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어코드 추진)
- 2010. 6 SA/DA 준회원 가입(공학기술교육인증 국제협의체)
- 2013.1 교육부 인정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 2013. 전문대학 공학분야 졸업자 학력의 상호인정을 목표로 설립된 시드니 어코드('01~) 및 더블린 어코드('02~)가입 및 활동
- 2016. 공학교육인증평가 결과, 총 97개 대학 580개 프로그램 인증
- 2018. 공학교육인증원 교육부 인정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재지정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0.12.27)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등기('11.12.28)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4개년 대학성과목표 수립('12.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12.3.21)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등기('13.1.18)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4개년 대학성과목표 수립('13.5)
- 제2기 국립대학법인 대학성과목표 수립, 서울대·인천대 평가('17.5)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11.5)
- '11년도 인증제 시범도입 및 결과 발표('11.5~12)
- '12년도 사업 시행계획 수립('12.3~5) 및 인증평가 실시
- '13년도 인증평가 실시('13.7~12) 및 사업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4.1~)
- '14년도 인증평가 실시('14.8~12) 및 사업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5.1~.3)
- '15년도 인증평가 실시('15.10~16.1) 및 사업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6.2~3)
- '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사업 확대·개편 기본계획 수립('16.8월) 및 평가('16.9월~'16.12월), 결과 발표('17.2월)
- '17년도 인증평가 실시('17.10~18.1) 및 사업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18.2~3)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 교육공무원법 및 대통령령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03.7.)
-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선정 및 지원('05~)

※ ('05)4교, 1.2억 / ('06)4교, 1.8억 / ('07)4교, 1.8억 / ('08)9교, 5.5억 / ('09)5교, 2.3억 / ('10)5교, 2.5억 / ('11)4교, 2.4억 / ('12)2교, 1억

-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대학을 모든 국·공립대학으로 확대('07.6.)
- 국립대학, 5단계('16년~'18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15.7)

※ (1단계) '04~'06, (2단계) '07~'09, (3단계) '10~'12, (4단계) '13~'15

- 교육부, '16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 계획 확정('16.4)
- 교육부,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컨설팅 및 사례공유 추진 ('16.9.~'16.12.)

※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 공학교육혁신지원 >

- '99. ABEEK(한국공학교육인증원) 창립
- '01.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통한 공학교육인증평가 추진
- '07.6 공인원의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07.6.20)
- '07.11 IT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어코드 추진)

- '10.6 시드니어코드(SA)/더블린어코드(DA) 준회원 가입(공학기술교육인증 국제협의체)
- '11.12 5개 대학 595개 학과 인증
- '13.1 교육부 인정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 '13.6 시드니어코드(SA)/더블린어코드(DA) 정회원 가입
- '14~'16 교육프로그램 이수 졸업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가점부여 기업체 수 149개→180→198→207개

- '14~'16 국제협의체(Washington Accord, Sydney Accord, Dublin Accord) 활동을 통한 한국 공학교육의 국제적 질 제고
- '17 국제적으로 회원국 간 학력의 동등성 유지를 위한 시드니/더블린어코드 정기평가(두원공과대학, 영남이공대학)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평가및운영	18	-	21	19	-	24	-	22.8	-

※ '05년부터 추진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사업'이 '16년부터 '대학평가 및 운영사업'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 '07년부터 추진된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출연)이 '17년부터 '대학평가 및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1.25**	0	0	21.25	**20.25**	0	1
	(21.25)	(0)	(0)	(21.25)	**(20.25)**	(0)	(1)
'16년	**19.12**	0	0	19.12	**19.12**	0	0
	(19.12)	(0)	(0)	(19.12)	**(19.12)**	(0)	(0)
'17년	**24.05**	0	0	**24.05**	**24.05**	0	0
	(24.05)	(0)	(0)	**(24.05)**	**(24.05)**	(0)	(0)

※ 제22차 OECD 고등교육운영협의회(IMHE) 이사회(2015.11.16, 파리 OECD 본부) 결과, 고등교육 학습성과 측정 본평가 실시를 지지하는 충분한 국가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종료를 통보해 옴(2015.11.19, 주OECD대한민국대표부)으로써, 예산 불용(100백만원)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405		2,285		2,285	2,285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지원(6개) 국고보조금 교부 312백만원 집행완료

■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00백만원 집행완료

■ 공학교육인증제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702백만원 집행완료

■ 학위인정구축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100백만원 집행완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국고보조금 교부 323백만원 집행완료

■ 국립대양성평등 국고보조금 교부 100백만원 집행완료

■ 국립대법인성과평가 국고보조금 교부 60백만원 집행완료

■ 공학교육혁신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588백만원 집행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2년도 결산, 교문위) :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저조함

  ⇒ (조치사항) 간호교육평가원('11.11, '16.11 재지정), 건축학교육인증원('12.5, '17.5 재지정), 공학교육인증원('13.1), 경영학교육인증원('13.9), 의학교육평가원('14.5), 치의학교육평가원('15.1), 한의학교육평가원('16.5) 지정

- ('13년도 결산, 교문위) : 기관평가인증 시 재정지원제한대학·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반영 등 결과의 신뢰도 제고

  ⇒ (조치사항) 기관평가인증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결과 반영(전문대학 '13, 대학 '17)

- (2013년 결산) 공학교육인증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연계하여 인증유지 대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등 각 대학의 인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014년 감사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선정 시 공학교육인증제 획득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업 연계를 강화

  ⇒ (조치사항) '15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신규 선정 시 공학교육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 시 반영 완료*, 인증률 제고를 목적으로 졸업생 채용 우대를 위해 산업체와 제휴 확산** 지속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공학인증 등) 추구 정도 항목 추가

  ** ('13년) 103개 → ('14년) 149개 → ('15년) 180개 → ('16년) 198개

- ('14년 결산, 교문위)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외에도 대학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성과지표로 확대·보완 필요

  ⇒ (조치사항)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국립대 주요위원회 여성보직자 비율'을 성과지표로 추가 적용('16~)

- (2015년 예산, 교문위) '공학교육 혁신지원사업' 중 공학교육인증제 지원*(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은 '대학평가 및 운영사업' 중 공학교육 평가인정기관 지원사업(공학교육인증원에 보조)과 유사하므로 공학교육인증원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

  * 공학인증 관련 국제협의체 회의 등 참석, 공학교육인증제도 성과확산

  ⇒ (조치사항) '15년도부터 공학교육인증제 지원(국제협의체 활동 및 제도개선) 예산은 '대학평가 및 운영' 사업으로 이관

- (2015년 예산, 교문위) 공학교육인증원은 다른 인증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인증평가 지원 예산을 줄이도록 하고 공학교육인증평가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공학교육인증원의 재정자립화를 도모할 필요

  ⇒ (조치사항) 무리한 수수료 인상 및 우리부 예산삭감은 공학교육인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15년 이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인증 수수료 인상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대학 현장의 반발이 큰 상황임

- (2017년 예산, 교문위) 학생들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학교육 단일인증 프로그램 도입여부를 재검토 필요

  ⇒ (조치사항)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현장의견('12~14)을 수렴하여 단일인증제도('16)를 도입한 만큼,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17.상) 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겠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를 체계화

- 미국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연방교육부(USDE)에서 대학 평가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00)
- 일본 :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인 '도야마플랜'의 일환으로 정부의 인증평가기관 인증제 도입('04)
- 영국 : 대학 질 보장 및 평가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99)

- UNES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고등교육의 국제 통용성 제고 및 학생,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 수준의 대학평가체제 마련 권고

-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05)은 각 국가는 교육의 질 보장과 평가인증 체제 정비가 필요함을 천명

※ OECD, 한국 고등교육 주제검토 보고서('07) : 한국 고등교육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강해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정립이 필요

※ UNESCO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11) : 고등교육 학위 및 자격은 가능한 널리 인정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공인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유럽장관회의에서 "유럽고등교육 질 향상 지침"을 채택('05)

- 미국(ABET)

- 미국의 공학교육 인증기관인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은 1932년에 미국의 공학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대학들의 공학교육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대학들에 대해서 인증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등을 통해 현재 세계 최고의 공학수준의 교육에 도달

- ABET이 인증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각 주의 모든 위원회들, 전문 학회, 엔지니어 고용 산업체, 교육 기관들과 같은 단체에서 폭 넓게 수용되며 ABET은 공학 분야 28개 전문단체의 연합체로서 공학프로그램이 설치된 대학의 약 90% 이상이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JABEE)

- 일본의 공학교육인증기구인 JABEE(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는 2000년도에 20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인증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6년에는 51개 프로그램에 인증 진행

- JABEE의 설립 이래 일본의 기술사법이 개정되어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기술사 1차 시험이 면제되며, 2005년 워싱턴 어코드에 정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었으며 2007년 평가된 프로그램은 1400개에 이르며 144개 대학 344개 프로그램을 인증

- 호주(EA)

- 워싱턴 어코드의 설립국으로, 호주의 공학교육 인증은 호주 엔지니어 조직인 Engineers Australia(EA)에서 담당하며 공과대학의 교육인증 활동 외에 엔지니어의 등록과 교육 훈련 등에 보다 많은 활동

- EA의 회원은 학생회원(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재학생), 졸업생 회원(graduate member), 회원(졸업 후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자), 펠로우의 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패스와 졸업 후 등록된 자격을 갖는 패스로 가는 회원(chartered status)으로 구성

○ 일본, 싱가포르 등 국립대 법인화 선도 국가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성과평가 실시

-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을 근거로 각 대학은 중기계획에 맞춘 연도 계획을 수립, 평가 실시 후 우수한 성과를 거둔 법인에 대해 추가 재정 지원

- (싱가포르) 대학은 교육부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평가 포럼을 통해 대학법인의 성과를 평가

○ 호주 고등교육기관 인증제

- '07 국가 규례에 외국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방 교육기관의 경우, 인증원(CRICOS) 과정에 등록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 명시

- 이에 따라, 호주의 교육기관은 CRICOS에 등록을 해야만 외국인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 가능

▪ 호주 대학 질적수준 관리위원회(Australian Universities Quality Agency)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통의 인증절차를 확립하고 AUQA를 설립('00년), 평가는 5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

○ 프랑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성 표준화

▪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기구의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우수성 표준화」에 기초하여 Campus France* 운영

* Campus France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담 네트워크 기구

○ 일본의 유학생 유치, 수학 및 생활·취업지원, 우수대학 인증 사업, 수시 실태점검 등 유학생 관련 업무 현황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유학생 지원 사업에 예산 126억 책정, 497명 인력 운영

○ 공학교육혁신지원 사례

- (외국 사례) Olin 공대의 SCOPE 프로그램 및 MIT의 Media Lab. 등 : 물리적 실험/실습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하에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실무형 공학인재 양성에 주력
- (국내 사례) 금오공대 디자인스튜디오 : 금오공과대학교의 인재상을 kit 디자인스튜디오 공간에 반영하여 공간의 명칭을 지정, 같은 건물 내 부속공장, 공동실험실습관과 연계하여 One-Stop 설계교육 지원
- (미국) 엔지니어 2020(The Engineer of 2020) : 미국의 경쟁력 확보는 연구 뿐 아니라, 우수한 공학교육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천명하고, 공학한림원(NAE)을 중심으로 미래의 공학인상 제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제시
- (유럽) 볼로냐 선언(The Bologna Declaration) : 학제개편, 실험실습 강조, 산업계 수요반영 강화 등 공학교육시스템 혁신 강조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시행계획수립 및 교부 신청	⇒	사업비 교부	⇒	정산보고
(교육부)		(보조기관/출연기관)		교육부		(보조기관/출연기관)

<< 보조사업자 >>

- 평가인증기관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 한국연구재단
- 학위인정기구 구축·지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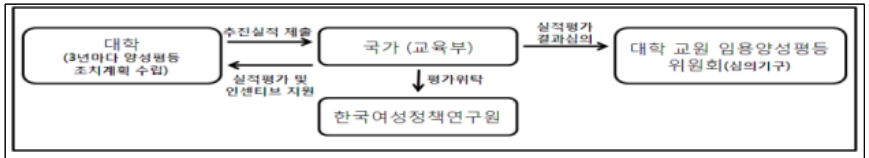

· 각 대학은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 여성교원 임용 실적 보고(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단서)

·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1~2단계의 평가(정량·정성→현장)를 연말까지 수행(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3항)

·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기초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실시

< 공학교육 혁신지원 >

교육부	• 기본계획수립, 사업 총괄 • 예산확보 및 지원
평가관리계획 보고 ↑↓ 승인	
한국연구재단	• 사업 관리 및 감독, 사업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협약체결 지원 • 사업점검,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 등
협약요청 ↑↓ 협약체결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공학교육인증제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등 실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가인증 만족도(점)	목표	85	(폐지)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만족도는 성과지표로 부적절하여 삭제		
	실적	88.1							
	달성도	103.6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수 지정 수(개)	목표	(신규)	1	(폐지)			('16년 지정 완료)		
	실적								
	달성도		100						
공학교육인증 졸업생 가점부여 기업체 수(개)	목표	123	190	207	219	-	'17년 실적치 207개를 기준으로 목표치 약 6% 증가한 219개로 설정	전년도 가점기업+당해년도 신규가점기업(당해년도 목표기업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조사 자료
	실적	180	198	207	-				
	달성도	146	104	100	-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비율(%)	목표	14.2	15.1	15.3	15.8	16.0	'16년실적치보다 0.2p높은 15.6%로 설정	(전체 여교수/전체교수) *100	교육통계(KEDI)
	실적	14.8	15.4	15.8					
	달성도	104.2	102	103					
국립대 주요위원회 여성보직자 비율(%)	목표	신규	17	17.2	17.2		'17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되어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전체 여성위원수/전체 위원수)*100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적		16.4	16.7					
	달성도		96.4	97.1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만족도(점)	목표			신규	80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됨에 따라, 평가인증의 질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 목표치를 80%로 설정	평가위원 및 평가담당자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료과정 프로그램별 평가인증 운영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시
	실적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1)학위정보센터 운영 지원

< 사업성과>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지역협약 지역위원회 주도국가로서 자리매김

· 아태지역 학위인정협약 지역위원회 3회 개최(11차 방콕협약 '12년 서울, 15차 방콕협약 및 1차 도쿄협약 '18년 서울)

□ 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태지역협약 국내 비준 ('17.12)

※ 호주, 중국,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5개국 비준에 따른 협약 발효('18.2.1)

□ 한국 고등교육 학위관련 정보지원 웹사이트 개설 및 운영('18.6월)

○ 고등교육 국가학위인정 정보센터의 국제 네트워킹 구축방안 연구 ('12)
○ 유럽 및 아태지역 학위인정 및 학위인정 정보센터 현황조사 연구 ('13)
○ 주요 유학생 파견국 학위인정 자료 조사 연구 및 국문 자료집 개발 ('14)
○ 주요 유학생 파견국 학위인정 자료 조사 및 영문 자료집 개발 ('15)
○ 한국 고등교육 정보센터 설립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17.2)

< 현장의 변화 >

□ 한국이 아태지역 학위인정분야 주도국으로 인정받으며, 협약 문안 작성 및 전문가 위원으로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음

□ 2017년 국제협약 비준에 따라 학위인정 절차 마련에 적법한 대응이 요구됨

(2)공학교육인증사업

< 사업성과>

□ 공학교육인증졸업생 증가 및 우대기업 확산

- (졸업생) '14년 졸업생 17,053명 → '15년 졸업생 19,187명(누적99,552명) → '17년 졸업생 23,206명(누적144,489명)
- (우대기업) '14년, 148개 업체(누적) → '15년, 180개 업체 → '17년 207개 업체(삼성, STX, 한솔그룹 등)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에 공학교육인증 취득 명시

-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개정 (국제협약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과정을 이수한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등으로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17.8.24))

< 현장의 변화 >

□ 공학교육인증제가 국내에 자리잡으면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은 일반 졸업생보다 전공이해도가 높아 이론적 근거과 계량적인 결과 도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는 의견이 많고, 특히 입사 초기에 현장 적응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음 (중앙일보 18.2.12)

□ 공학교육에서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한 창의적 종합 설계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공과대학은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인간 중심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과 제품의 기획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사고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며 공과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송동주 공인원 수석부원장/중앙일보.18.2.12)

(3)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사업성과>

□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가입률 등이 '12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시행 초기에 비해 대폭 개선

* (언어능력) '12년 22.74% → '17년 44.47%, 초기 대비 21.73%p 증가
(등록금부담률) '12년 80.99% → '17년 121.66%, 초기 대비 40.67%p 증가
(의료보험가입률) '12년 73.69% → '17년 87.77%, 초기 대비 14.08%p 증가

< 현장의 변화 >

□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유학생유치 확대에 기여

○ 인증 취득을 위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화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박준식 한림대학교 비전협력처장/ 대학저널 18.1.2)

○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으로 광주권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할 것(손완이 호남대 국제교류본부장 / 노컷뉴스 '18.3.12)

○ 국내고등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 : ('12년) 86,878명 → ('17년) 123,858명

(4)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

<사업성과>

□ 서울대 및 인천대 국립대학법인 전환('12년, '13년) 이후 대학 운영성과 진단 및 결과 환류를 통한 확대된 자율권에 상응하는 대학 운영의 책무성 및 효율성 제고

- 법인화 후 서울대학 운영목표 설정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하여 대학 자체적인 성과관리 기반 마련, 서울대학의 운영성과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우수" 수준 유지

※ 특히 '17년 평가결과 전년대비 2.3점(2.9%) 상승. QS 대학 순위 ('11) 42위 → ('16) 35위, 피인용 상위 1% 논문은 ('12) 500건 → ('16) 835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 유도

참고 2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 관련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②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개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3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관련 법령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00]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528	4,980	4,236	**△744**	**△14.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68 - 300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류정섭), 교육통계과(양창완), 사무관(신태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대학알리미 운영 -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재정, 특성화정보*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정기(4·6·8·10월) 및 수시 공시 * 학교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교육과정프로그램 인증 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등 ○ 고등교육기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운영 - 5대 학과분류체계(인문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운영을 위한 교육편제단위 조사, 학과분류정보 제공 등
사업기간	'0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전국 고등교육기관 417개교(대학 224교, 전문대학 148교, 대학원대학 45교)
지원조건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위탁)
간접비	('18) 349백만원 (7%) → ('19) 297백만원 (7%)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대학정보공시 및 특성화 정보 조사 운영 : 972백만원

▪ 고등교육기관 417개교의 학생 및 교원, 예·결산 현황, 특성화계획 등 101개 세부항목을 정기(4·6·8·10월) 및 수시로 공시

▪ 산출내역

- 952백만원(정기·수시공시, 표준분류 조사 및 공시 79.4백만원×12개월)
- 20백만원(외부모니터링단 운영 0.2백만원x50명x2회)

○ 현장점검 및 연수 : 126백만원

▪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학 담당자 대상 권역별 연수 및 공시 후 현장점검 실시

▪ 산출내역

- 61백만원(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0.61백만원x100개교)
- 65백만원(담당자 연수 4.4백만원×15회)

○ 홍보 및 자료집 발간 : 95백만원

▪ 공시정보 활용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박람회 및 국민 참여 활동 등 운영

▪ 산출내역

- 70백만원(지침서, 자료집 등 제작 7천원x10종×1000부)
- 25백만원(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4.2백만원×6회)

○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품질평가 측정 : 30백만원

▪ 사용자(학생, 학부모, 연구자 등)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웹사이트 품질평가 도구를 활용한 품질 측정

▪ 산출내역 : 30백만원(만족도 조사 및 품질평가 측정 30백만원x1종)

○ 대학정보공시 항목별관리기관 운영 : 143백만원

▪ 대학의 행정부담 경감 및 통계 자료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한 항목별관리기관 자료 연계 및 적극적인 협조체계 운영

▪ 산출내역

- 143백만원(항목별관리기관 지원금 143백만원x1회)

○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 조사 운영 : 50백만원

▪ 고등교육기관의 학부·과(전공)에 대한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 산출내역

- 50백만원(표준분류심의위원회 운영 0.19백만원x66명x4회)

[2] 통합시스템 운영 : 2,820백만원

○ 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 유지보수 : 603백만원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산출내역

- 166백만원(HW 유지보수 1,660백만원(장비도입비)×10%)
- 131백만원(상용 SW 유지보수 1,092백만원(장비도입비)×12%)
- 306백만원(개발 SW 유지보수 2,550백만원(장비도입비)×12%)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장비 및 산정근거	예산
HW(10%)	·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기타장비 등(38식)	166,060
SW(12%)	· DBMS, 리포팅, 보안솔루션, 모니터링솔루션, UI툴 등(67식)	130,940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12%)	· 입력시스템, 대학알리미 시스템 구축 비용의 12%	306,000
합계		603,000

○ 전산장비 IDC운영, 보안장비 24시간 관제 : 122백만원

▪ 산출내역 : 122백만원(IDC 위탁운영 10.2백만원×12개월)

(단위 : 천원)

구분	회선	예산
공간	총 9개 Rack기준 · 일반Rack(전력량 10A) : 9개	71,280
회선	· 100Mbps전용(이중화)	10,560
관제	· 방화벽(기존장비) · 웹방화벽, IPS	40,920
합계(십만원 단위절사)		**122,760**

※ 고도화 장비 도입 등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관제 장비 증가 ('18년) 6 → ('19년) 9Rack

○ 고등교육 정책 개선에 따른 공시 항목(장표) 개발 : 180백만원

▪ 산출내역 : 180백만원(항목(장표) 개발)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FP개발 용역	개발원가	286FP	166,961	FP방식에 의한 원가산정
	직접경비	개발원가x5%	8,348	여비, 인쇄비 등
	이윤	개발원가x3%	5,009	개발원가의 25% 이내
합계			**180,318**	

○ 한국교육개발원(진천→서울) 및 한국장학재단(대구→서울) 연계 회선 임대 : 61백만원

▪ 산출내역 : 61백만원(VPN/전용회선 운영 2.55백만원×2개×12개월)

* **(한국교육개발원)** 전용회선(4M급, 200Km이내) 1회선, 시큐어박스 50(VPN) 2회선 기준, 2.3백만원x12개월=28백만원

* **(한국장학재단)** 전용회선(2M급, 400Km이내) 1회선, 시큐어박스 50(VPN) 2회선 기준, 2.8백만원x12개월=33백만원

※ 항목별관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장학재단간 10만건 이상 전송에 필요한 연계자료 보안구간 설정 및 정보공시 수정 자료의 기관간 데이터 동기화 필요

○ 통합시스템 고도화 2단계 : 1,854백만원

▪ 산출내역

- 361백만원(프로그램 기능 개선)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FP개발 용역	개발원가	586 FP	334,847	FP방식에 의한 원가산정
	직접경비	개발원가x5%	16,742	여비, 인쇄비 등
	이윤	개발원가x3%	10,045	개발원가의 25% 이내
합계			361,634	

- 581백만원(S/W 취득 56식×10.38백만원)
- 912백만원(H/W 취득 : 17식×53.65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S/W	1. 데이터 정합성	· EAI 연계 솔루션 증설	7,700천원X2식=15,400천원	581,264
		· 메타데이터 관리도구 구축	153,200천원X1식=153,200천원	
	2 통합인증/권한관리	· EAM 구축	59,500천원X1식=59,500천원	
	3. 노후장비 교체	· OS	1,400천원X6식=8,400천원	
		· WAS모니터링(Core) 증설	3,712천원X22Core=81,664천원	
		· 가상 방화벽(F/W) 교체	46,500천원X2식=93,000천원	
	4. 정보보호/재해복구	· 서버보안 증설	2,500천원X9식=22,500천원	
		· 통합로그관리 증설	138,000천원X1식=138,000천원	
		· 백업 Agent 증설	800천원X12Agent=9,600천원	
H/W	2 통합인증/권한관리	· EAM서버 구축	39,000천원X1식=39,000천원	912,028
	3. 노후장비 교체	· Web서버(통합입력) 교체	80,000천원X4식=320,000천원	
		· 백본 스위치 교체	49,700천원X2식=99,400천원	
		· L2스위치(NAS용) 증설	18,430천원X1식=18,430천원	
		· SAN스위치 교체	31,680천원X2식=63,360천원	
		· 방화벽(F/W) 교체	58,146천원X2식=116,292천원	
		· 침입탐지시스템(IPS) 교체	53,240천원X2식=106,480천원	
	4. 정보보호/재해복구	· 서비스거부공격보안시스템(DDos) 구축	49,533천원X2식=99,066천원	
		· 2차 백업(소산) 구축	50,000천원X1식=50,000천원	
총계				1,493,292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980백만원	4,236백만원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공시대상대학 422개교에 대한 대학정보공시 조사 운영	▪ (1,416백만원) 공시대상대학 417개교에 대한 대학정보공시 조사 운영
■ 통합시스템 운영	▪ (696백만원) 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 유지보수 ▪ (98백만원) 전산장비 IDC운영, 보안장비 24시간 관제 ▪ (180백만원) 공시 항목(장표) 개발 ▪ (61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연계회선 임대 ▪ (2,529백만원)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개발	▪ (603백만원) 통합시스템(연계시스템 포함) 유지보수 ▪ (122백만원) 전산장비 IDC운영, 보안장비 24시간 관제 ▪ (180백만원) 공시 항목(장표) 개발 ▪ (61백만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장학재단 연계회선 임대 ▪ (1,854백만원) 통합시스템 고도화 및 개발 2단계

□ **지원 필요성**

○ 새정부의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체질을 강화"**하는 **교육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알리미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

○ **'17년 예산심의 시 국회 교문위**에서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BPR&ISP 예산**이 **반영**되었고, '17년 BPR&ISP를 수행하여 **고도화 과제(안)***을 **도출**함

* 현황 파악, 수요자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거쳐 **BPR&ISP를 수행**했고,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및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18년 예산**에 **1차 고도화**를 위한 2,529백만원이 **반영**됨

○ **BPR&ISP 고도화 과제(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18년 1차 고도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고도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반영 필요**(참고자료 2)

○ 특히, **포항 지진*** 등 **안전사고** 및 **랜섬웨어, 디도스**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공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임

* **'16년 경주 지진** 후 **"NEIS 서버 보호"**를 위한 **'17년 예산**이 **국회**에서 **긴급 편성됨**

**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 **연구**,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정량지표로 쓰이고, 최근 **교육부 주요사업(어디가 등), 민간부가가치 창출 지원** 등으로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활용도에 맞는 **자료 보호 조치**가 **매우 절실**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528**	**4,980**	**4,236**	**△744**	**△14.9**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1,416	**1,416** (12개월×118백만원)	**1,416** (12개월×118백만원)	-	-
■ 통합시스템 운영	1,112	**3,564** (12개월×297백만원)	**2,820** (12개월×235백만원)	**△744**	**△20.9**
□ **비목**(합계)	**2,528**	**4,980**	**4,236**	**△744**	**△14.9**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28	4,980	**4,236**	**△744**	**△14.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별 공시정보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전제로, 통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강화

-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생·학부모·대학관계자·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대학별 비교 자료인 맞춤형 공시정보 제공으로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의 알권리 극대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528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1,112백만원			
'18	4,980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3,564백만원	4,980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3,564백만원	-
'19	4,236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2,820백만원	4,236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16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2,820백만원	-
'20	2,512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25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1,087백만원	4,236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25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2,811백만원	1,724
'21	2,587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25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1,162백만원	4,236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25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2,811백만원	1,649
'22			4,236	■ 공시정보 조사 및 제도 운영 : 1,425백만원 ■ 통합시스템 운영 : 2,811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경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07.5) 및 동법 시행령 제정('08.11)
-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 '대학알리미' 개시('08)
- 대학알리미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11, '12)
- 고등교육기관 학부·과 전공 코드 표준화 추진('12)
- 대학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시스템 구축('13)
- 대학알리미 사립대학재정회계지표 서비스 개시('14)
- 공공데이터 포탈(data.go.kr)을 통한 Open API 서비스 제공('14)
- 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특성화알리미를 대학알리미로 통합*('14, '15)
  * 국회 교문위 결산지적 :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비스이므로 통합할 것
- 비목변경(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 및 총괄·항목별 관리기관 지정('17.1)
- 대학정보공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2.5	0	32.3	31.69	0	25.28	0	49.8	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2.3 (32.3)	( )	( )	32.3 (32.3)	32.3 (32.21)	( )	(0.09)
'16년	31.69 (31.69)	( )	( )	31.69 (31.69)	31.69 (31.6)	( )	(0.09)
'17년	25.28 (25.28)	( )	( )	25.28 (25.28)	25.28 (25.06)	( )	(0.22)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528	0	4,980	0	4,980	4,98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행정안전부) '17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평가 **'16년도 투명한 정부 부분 우수사례**로 선정

<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민간제공 및 활용지원 >

- '보물찾기대학찾기'(개발 중), '스마트배치표(대학닷컴)', '대학등록금(Tomato Box)', '유니헬프(아카데미 리서치)' 등 다양한 민간 개발 서비스(앱) 지원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대입 및 대학생활 관련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여 맞춤형 대입정보서비스 제공('16년 53만 명 활용)

○ (기획재정부) '17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16년) 결과 : **우수**

※ 원점수 97점, 표준점수 75.8점으로 평가결과 "우수"

○ '16년도 자체평가 결과 "다소우수"(외부 심사위원 평가) : "'16년 신규 지표인 대학알리미 서비스 품질측정 지표 목표 달성", "대학공시정보 등 API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 "현장 협업을 위한 항목별관리기관과의 정례적인 협의 및 합동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 원활" 등의 평가를 받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NCES*에서 고등교육데이터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방정부/학부 지원 비용, 수업료, 교재비, 등록 학생 수, 학위 수여자, 졸업률, 인증 기구 등의 정보 제공

*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 연방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원의 고등통계센터에서 교육통계자료를 수집·분석 공표

○ 영국 : 재정지원기구(HEFCE)의 위탁을 받은 고등교육통계청(HESA)이 학생 및 교원현황,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 및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대학교육질정보(TQI : Teaching Quality Information) 사이트를 통하여 개별 대학 전체 및 각각의 학과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 일본 :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학의 조직,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사립대학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교육, 연구,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정보와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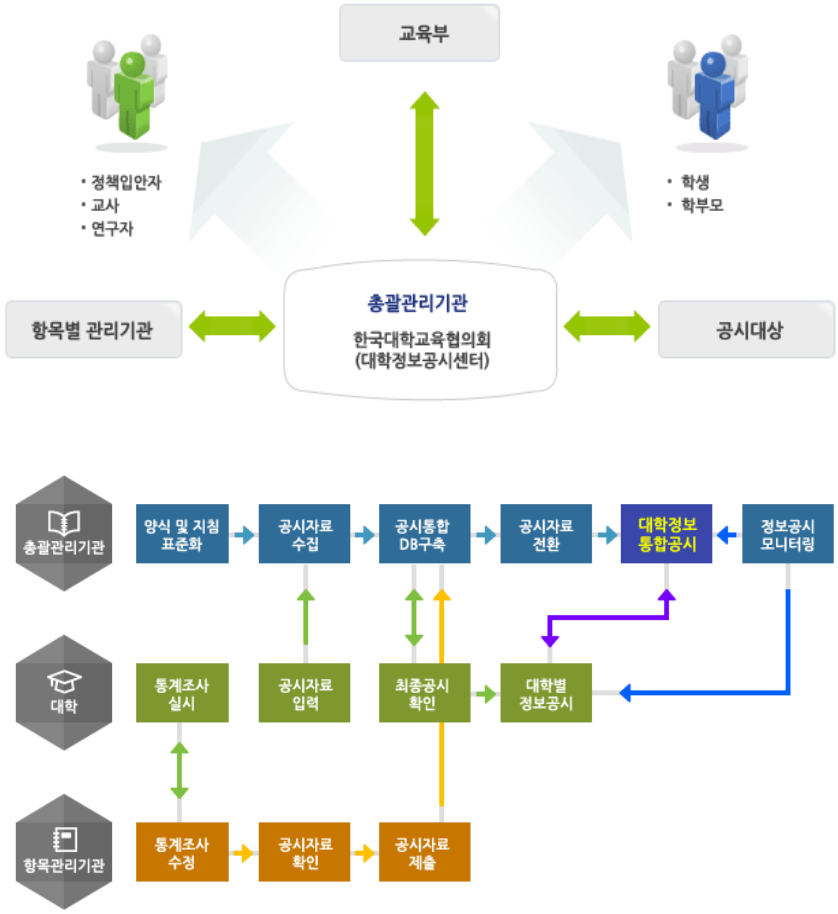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0.2	75	77	79.5	80.5	'18년 수요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한 80.5%로 상향 설정함	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으로 대학알리미 서비스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적	71.5	75.4	77.5	-	-			
	달성도	101.9	100.5	100.6	-	-			
대학알리미 서비스 품질 측정 (단위: 점)	목표	신규	75	77	78.2	79.5	'19년은 2차 고도화를 통한 정보보호체계 및 인프라 강화에 대한 시스템품질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18년 증가분(1.2%p) 보다 상향하여 1.3%p 수준으로 적극 설정	서비스 품질 측정 도구(SERVQUAL 등)를 이용하여 지표 산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웹사이트 품질측정
	실적	신규	77.3	77.8	-	-			
	달성도	-	103.1	101.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2018년 대학정보공시 월별공시 항목

○ 참고2.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BPR/ISP 결과 및 고도화 구축(안)

○ 참고3.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고도화 2단계 구축안

참고 1 2018년 대학정보공시 월별공시 항목

[수시공시] 6개 분야, 9개 항목,11개 세부항목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직접입력
3-가-1. 신입생 모집 요강	직접입력
3-가-2. 편입생 모집 요강	직접입력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KEDI 취업통계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KEDI 취업통계
9-가-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직접입력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직접입력
14-가. 정관	직접입력
14-나. 법인의 임원 현황	직접입력
14-자-1. 대학 자체평가 결과[PDF]	직접입력
14-자-2. 대학별 평가인증 현황	대학특성화정보

[4월공시] 4개 분야, 5개 항목, 10개 세부항목	
2-가-1. 전공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2. 교양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3. 교직과목 성적 분포	직접입력
2-가-4. 졸업생의 졸업성적 분포	직접입력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9-가. 등록금 산정 근거[PDF]	한국장학재단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직접입력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직접입력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직접입력

[5월공시] 4개 분야, 20개 항목, 25개 세부항목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대교협,전대협
4-나. 기회균형 선발 결과	대교협,전대협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대교협,전대협
8-가-1. 국·공립대 대학회계 예산	직접입력
8-다-1.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예산	직접입력
8-라. 에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1. 법인회계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1.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1. 산학협력단회계 현금예산서[예산]	한국사학진흥재단
12-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2-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자-1.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1. 현장실습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2. 캡스톤 디자인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3. 학교기업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2-카-4.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한국연구재단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한국연구재단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한국연구재단
12-하-1. 교원·학생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하-2. 창업교육 지원 현황	한국연구재단
12-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
14-차. 강사 강의료	직접입력

[8월공시] 9개 분야, 31개 항목,45개 세부항목	
4-다. 신입생 충원 현황	KEDI 고등통계
4-라-1. 재학생 충원율	KEDI 고등통계
4-라-2. 편입학 선발 결과	직접입력
4-마. 재적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바-1. 외국인 유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KEDI 고등통계
4-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4-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KEDI 고등통계
5-가. 졸업생 현황	KEDI 고등,취업
5-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KEDI 고등통계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KEDI 고등통계
6-가-1.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가-2. 전체 신규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KEDI 고등통계
6-다-1. 국가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6-다-2. 전공계열별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KEDI 고등통계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한국연구재단
8-가-2. 국·공립대 대학회계 결산	직접입력
8-다-2. 국·공립대 발전기금회계 결산	직접입력
8-라. 에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2. 법인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3. 법인회계 운영[손익]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마-4. 법인회계 대차대조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2. 교비회계 자금계산서[결산]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3. 교비회계 운영[손익]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바-4.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사. 적립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아. 기부금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2.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3.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한국사학진흥재단
8-자-4. 산학협력단회계 재무상태표	한국사학진흥재단
8-차-1. 등록금 현황	한국장학재단
8-차-2.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한국장학재단
8-카-1.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직접입력
8-카-2. 입시수당 산정 기준[PDF]	직접입력
9-가. 등록금 산정 근거[PDF]	한국장학재단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직접(국공립),시학(사립)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한국연구재단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한국장학재단
12-다-2. 학자금 대출 현황	한국장학재단
12-라-1.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PDF]	직접입력
12-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KEDI 고등통계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한국연구재단
14-사. 직원 현황	KEDI 고등통계
14-카.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직접입력

[10월공시] 4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11-가-1. 학교 발전계획[PDF]	대학특성화정보
11-가-2. 학교 특성화 현황	대학특성화정보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직접입력
12-나-2.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직접입력
12-나-3. 대학 강의 공개 실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마-1. 기숙사 수용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마-2. 기숙사 운영 결과	한국사학진흥재단
14-마-3.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바-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바-2.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한국사학진흥재단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대학특성화정보
14-파-1.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현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4-파-2. 시설 안전관리 현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4-파-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14-파-4. 폭력예방교육 현황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참고 2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BPR/ISP 결과 및 고도화 구축

BPR/ISP 과제 수립 (14개 이행과제)	고도화 세부계획	
·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	'18년	
· UI/UX 기반 시스템 구축	'18년	
· 개발 프레임워크 통합	'18년	
· 데이터 모델 재설계	'18년	DB 테이블 구성도 재설계
· 입력(업무) 시스템 통합 개선	'18년	공시/표준분류/특성화입력시스템 통합, 사용자 권한관리체계 강화(통합인증)
	'19년	EAI 연계시스템 기능 개선 개발 EAI 솔루션 증설
·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	'18년	데이터 통합, 데이터 모델 구축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IT 인프라 강화	'18년	노후화 WAS서버, DB서버, WEB방화벽 교체 및 이중화
	'19년	노후화 WEB서버, NW장비 교체 및 이중화 WAS모니터링 증설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18년	데이터 표준화
	'19년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모바일서비스 도입		
· 인프라 가상화를 통한 운영환경 고도화	'19년	소산 2차 백업 구축
· Cloud 인프라 구성을 통한 차세대 시스템구축		
·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18년	개인정보역량평가
· 정보보안시스템 체계 강화	'18년	보안로그수집 및 분석 구축
	'19년	사용자 권한관리체계 강화(권한관리(EAM)) 구축 서버보안 증설 보안로그수집 및 분석(대상 방화벽, DDos, 웹방화벽 등) 증설 노후화 방화벽, IPS, 가상방화벽 교체 및 이중화 서비스거부공격(DDos) 방어체계 구축
· 대국민 홍보방안 수립	'18년~ '19년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참고 3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 고도화 2단계 구축(안)**

고도화 및 개발 2단계 사업 개요

○ **(내용)** '17년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관련 환경 및 현황분석,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수립(ISP) 및 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확대 운영 계획의 2단계 구축

○ **(구축방향)** 노후 보안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응용서비스 확대에 맞는 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정보보안 체계 강화

○ **(효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수요자의 대학정보공시 정보 활용 증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안시스템 체계 운영

□ **구축 방향**

<인프라 및 연계시스템 기능 개선>

○ **(항목별관리기관 연계 강화)** 항목별관리기관(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연계 솔루션 구축 및 노후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관 간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신뢰도 향상

○ **(노후 인프라 교체)** '18년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EOS(End of Service)인프라 교체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 확보

<정보보안 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체계강화)**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역량 강화

○ **(권한관리 구현)** 대학정보공시·표준분류·특성화알리미의 일원화된 통합시스템 권한 및 계정관리시스템 도입

○ **(보안시스템 고도화)** 수요자 맞춤서비스로 개편 및 고도화된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표준분류·특성화정보의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체계 강화

[300]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재량, 계속, R&D)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60,198	229,168	292,515	**71,347**	**32.3**

* 사업코드 : 13 - 39 - 2 - 050 - 052 - 2200 - 2256

* 담 당 자 : ①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김수정)
②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이재용)
③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박성빈)
④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김민하)
⑤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엄중흠)
⑥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이해숙), 사무관(김완중)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①(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체제로 전환하여 대학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 기업연계 등 종합 지원하고 사회맞춤형학과 육성을 통해 취업연계율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지식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공유 학습체계 구축, 교수법 혁신,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②(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대학 내 창의적 자산(기술, 특허, 아이디어 등)의 '탐색-실사-고도화(비즈니스모델 설계, 기술 융·복합, 상용화개발, 시제품제작, 후속R&D컨설팅 등)-실용화(기술의 사업화, 기업이전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기능 활성화 도모, 대학 재무구조 다변화, 대학 발 창업 활성화 등 촉진 ③(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로의 캠퍼스 이전과 함께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산학연 교류·협력 생태계 확장 ④(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산학협력 EXPO·산학연 소통포럼 등 산학협력 기반조성 및 성과 확산

	⑤(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고졸자의 진학 욕구 및 조기취업과 기업의 기본소양 및 전공 기초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조기 확보 ⑥(지역선도대학 육성)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이 연계·협력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인력수요 분석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 지역에서 취업 후 정주하는 선순환 인력양성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사업기간	①'17~, ②'15~, ③'11~, ④'06~, ⑤'18~, ⑥'14~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①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75교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교 포함), ②대학(산학협력단) 18개교 내외, ③산업단지캠퍼스 2개교 계속지원 및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2개교 신규지원, ④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 실태조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협력 EXPO 등, ⑤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5개교 지원, ⑥지역선도대학 10개 컨소시엄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①한국연구재단, ②한국연구재단, ③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④한국연구재단, ⑤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⑥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 예산 및 산출근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의 발굴·확산, 신산업 인재양성, 대학-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위한 LINC+ 사업단 75개교 지원

* 인력양성, 기술이전, 산-학 공동기술개발, 대학 내 연구장비 개방 등

▪ 산출내역 : **(55교* × 4,167백만원) + (20교 × 1,200백만원) = 253,181백만원**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20,000백만원)은 산학협력 고도화형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고급 인재양성 및 대학 내 기술혁신 등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지원('18년, 10교→ '19년, 20교)

▪ **(사업비 지원 단가 현실화)** 대학-지역기업-지역사회간 **산학협력이 본격 추진되어 성과 거양이 가능한 '19년** 이후부터는 **사업비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증액 불가피**

▪ (국정과제 추진 독려) 대학과 지역(산업)간 적극적 산학협력 추진(국정과제 5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4C형 문제해결형 인재양성(국정과제 54), 청년 창업활성화 등의 과제 수행을 위한 LINC+ 사업대학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 **(사업 확대 증액) 지역 특화형 다양한 신산업 분야 및 권역별(지역별) 지원 대학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 특화형 유망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증액 필요**

※ 혁신선도대학 10개 대학('18년) → 20개 분야(또는 대학)('19년), 총 200억원 지원

* '18년의 경우, LINC+ 예산 내 총 100억원을 활용하여, 10개 대학에 교당 10억원 지원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국정과제 54(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및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필요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 기술 간 융·복합 사업화, 수요기반 실용화 프로젝트 추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혁신 등을 위해 사업 수행 주관대학 18교 및 융·복합 프로젝트 참여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 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 BRIDGE+ 사업수행 대학(주관대학)과 함께 기술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학·기관

▪ 산출내역 : **18교 × 919백만원 = 16,536백만원**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증액) ①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사업화 추진 ② 기업 수요기반 실용화 프로젝트 확대 ③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혁신 ④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능(기술이전 성과 재투자, 실용화 경험관리) 수행

※ (확대) 18개교 내외 교당 평균 7억원('18년)→9.2억원('19년) 지원(총 165억원)

* 1년차('18년) 시 설계한 대학 간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출하는 참여대학에 실용화 비용 지원, 대학 보유 기술 및 기업 수요 공유 DB구축·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BRIDGE+대학 공동 인프라 구축·운영 등 2년차('19년) 예산(단가) 확대

▪ (국정과제 추진 독려)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사업화 추진(국정과제 52), 고부가가치 중대형 기술이전 과제 수행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BRIDGE+ 사업대학 역할 강화 필요

◆ **국정과제 52-2(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으로 대학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 실현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대학 내 유휴부지에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산출내역 : (계속2교 × 770백만원) + (신규2교 × 2,000백만원) = **5,540백만원**

▪ (**사업확대**에 따른 증액) 대학 내 유휴부지에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확대 추진

- 대학이 대학-기업 간 접근성을 활용한 지역혁신, 기업성장, 대학 창업활성화 등 산학협력 활동의 중심지로 가능하도록 사업 개편

◆ **국정과제 52-6(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협력 EXPO 개최 등

▪ 산출내역 : 2개분야 × 629백만원 = **1,258백만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실무능력 배양 교육을 결합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선도모델 창출을 위해 5개교에 사업비 지원

▪ 산출내역 : **5교 × 1,200백만원 = 6,000백만원**

※ ('18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8,000백만원(5교×1,600백만원) 지원

○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 :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인력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융합전공, 공공인재트랙 등) 운영으로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후 지역에 정주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지방대학육성사업에서 이관**

※ '18년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이후 '19년 본사업화 추진

▪ 산출내역 :(대학-지자체-공공기관 협력) 10개 컨소시엄* × 1,000백만원 = **10,000백만원**

* 대학 : 지방 국·사립 대학 5개 내외 구성, 지자체 : 광역(필수), 기초(선택), 공공기관 : 지방 소재 공공기관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구 분	'18예산	'19예산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21,168	292,51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02,531 (55교×3,342백만원)+(20교×935백만원)	253,181 (55교×4,167백만원)+(20교×1,200백만원)
▪ 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12,522 (10개 사업단 × 1,252백만원)	16,536 (18교×919백만원)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317(1식×1,317백만)	
▪ 대학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3,540(4교(신규1, 계속3)×885백만원)	5,540 (770백만원x계속2교)+(2,000백만원×신규2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773(2개분야×386백만원)	1,258 (2개분야×629백만원)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485(8개분야×61백만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6,000 (5교×1,200백만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	16,020* (10개×1,102백만원)+(5개×1,000백만원) * 지방대학 육성사업에서 이관	10,000 (10개 컨소시엄×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

○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통한 대학과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대학-지역(기업) 간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발 창업 활성화 등 지원

- 다양한 신산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이 배양된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교육과정·방법·환경의 지속가능한 혁신 지원 확산 필요

* 4C 능력 :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협업능력<Collaboration>

- 대학과 지역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와의 적극적 산학협력 추진(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과제, 국정과제 52),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4C형 문제해결형 인재양성(국정과제 54), 청년 창업활성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LINC+ 사업대학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국정과제 54(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및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필요

②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 기술 간 융합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이 창출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연구·산업역량 집중 요구

※ 한국 SCI 논문 발표 수는 47,066편(세계 10위)이고 국내 대학 기술개발 건수는 12,482건에 달하지만, 기술이전은 2,431건으로 연간 기술이전율은 미국(38%)의 절반 수준인 19.5%에 불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람" (VIP 말씀, '17.11.28. 혁신성장 전략회의)

○ 대학이 보유한 혁신적 지식의 융합 및 이전·사업화 촉진, 수요중심 실용화 확대, 기술이전 전담조직 강화 등 기업가적 대학 모델 창출을 위한 BRIDGE+ 사업대학 역할 강화 필요성 증대

- 따라서, 대학 연구성과의 실용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학발 기술사업화 촉진 필요

* 「자산탐색·실사 - 자산설계 - 비즈니스모델 설계 - 실용화 개발 - 기술사업화(기술이전·기술창업 등)」

ㅇ 기술 간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 확보·이전을 위해 대학 보유 기술의 실용화 융·복합 선도모델 신설확대 운영

- 기존 참여 대학의 융·복합 실용화 추진 및 전담조직 강화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선도 Track 확대
- 권역별 지역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전담인력 양성 지원하여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기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Track 신설

◆ **국정과제 52-2-3(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 미래성장 동력분야 기술혁신,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사업화 촉진

③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ㅇ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만으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고용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어 산업단지로의 캠퍼스 이전과 함께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환경 조성을 통한 산학연 교류·협력 생태계 확장

- 대학-기업 간 접근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의 공간적 융합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대학 내 유휴부지에 기업, 연구소 등을 입주시켜 지역혁신, 기업성장, 대학 창업활성화 등 산학협력 활동의 중심지로 가능하도록 사업 확대

◆ **국정과제 52-6(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④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ㅇ 산학협력 정책기획 및 제도 개선 지원,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등 산학협력 활성화지원을 통한 산업계 눈높이에 맞는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EXPO·산학연 소통포럼 개최를 통한 산학협력 성과 창출·교류 등 **산학협력 확산 필요성 증대**

◆ **교육부 업무보고** (산업체 눈높이에 맞춘 산학협력 체계 구축) : '18.1.
- 4주기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평가대상 분야 확대 및 대학 컨설팅 개선방안 수립·시행

◆ **'17.국정감사결과보고서** (산학협력단 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집중 필요) : '18.2.

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ㅇ 대졸자의 **졸업소요기간***이 길고 **입직연령****이 늦어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에 애로**가 있으며, **중소·창업기업은 R&D인력난에 직면**

* 4년제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5년 1.4개월**(남 6년 2.8개월, 여 4년 4.5개월, '16.7월 통계청)

** **최초 입직연령** : 한국 25세, 미국 22세, 프랑스 23.2세, OECD 평균 22.9세

ㅇ 현재의 **대학교육과 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로 인해, 산업체는 신입직원의 **재교육 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신입직원 교육에 평균 대기업 23.1개월, 중소기업 13.9개월, 평균비용은 1인당 5,959만 소요('13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신산업 분야**(IoT, AI, 스마트팩토리 등)에 대한 **연구인력** 양성 요구 증대

➡ 개인의 **진학 욕구**와 **조기 취업 목적**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조기 확보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범부처 협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모델 마련**

⑥ 지역선도대학 육성

ㅇ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이 육성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 정주하는 여건 조성 필요성 증대

-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취업 후 정주하는 양성 체계 구축
-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역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보조사업 점검결과 : 해당없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 감 (B-A)	%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60,198**	**221,168**	**229,168 (8,000)**	**292,515**	**71,347**	**32.3**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38,272	202,531 (55교x3,342백만원) +(20교x935백만)		253,181 (55교x4,167백만원) +(20교x1,200백만원)	**50,650**	**25.0**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BRIDGE+)	14,731	12,522 (18교x697백만원)		16,536 (18교x919백만원)	**4,014**	**32.1**
▪ 대학창업교육체제구축	1,550	1,317 (1식x1,317백만원)		-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4,165	3,540 (1식x3,540백만원)		5,540 (2교,계속x770백만원) +(2교,신규x2,000백만원)	**2,000**	**56.5**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910	773 (1식x3,540백만원)		1,258 (2식x3,540백만원)	**1,258**	**0**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570	485 (1식x485백만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18추경반영)**			8,000 (5교×1,600백만원)	6,000 (5교x1,200백만원)	**6,000**	**순증**
▪ 지역선도대학 육성 *지방대학육성사업에서 이관	(13,500)	(16,020) (10개×1,102백만원)+ (5개×1,000백만원)		10,000 (10개x1,000백만원)	**10,000**	**순증**
□ 비목(합계)	**260,198**	**221,168**	**229,168 (8,000)**	**292,515**	**71,347**	**32.3**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5)	260,198	221,168	229,168 (8,000)	292,515	**71,347**	**32.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과 지역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체제 구축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와 수요 지향적인 산학협력 추진
- 대학-기업간 인력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고용 제고에 기여하는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갈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지원 확대
- 창의력과 융·복합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융합 학습 기회 확대
-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PBL(프로젝트·문제해결 기반 수업) 등의 혁신적 수업방법 확산 지원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대학발 기술사업화 활성화
- 대학별 창의적 자산의 집적 및 융·복합,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수요정보에 기반한 대학 보유기술 매칭을 통해 대학 기술사업화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 간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기술 확보·이전을 위해 대학 보유 기술의 실용화 융·복합 선도모델 신설·확대 운영

○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로의 캠퍼스 이전과 함께 대학 내 기업·연구소 유치환경 조성을 통한 산학연 교류·협력 생태계 확장
- 대학-기업·연구소 간 접근성 제고를 통해 대학을 지역혁신, 기업성장, 대학창업활성화 등 산학협력활동 중심지로 가능하도록 지원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 컨설팅 등 산학협력 기반조성과 산학협력 EXPO·산학연 소통포럼 등 산학협력 성과 창출 및 교류를 통한 산학협력 확산 및 산업체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산학협력 체계 구축

○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실무능력 배양 교육 결합 추진
-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역량 배양을 위한 물리적 교육환경 구축지원과 함께 창의적인 학생 아이디어의 기업화 지원

○ 고졸자의 진학 욕구 및 조기 취업과 기업의 기본소양 및 전공 기초지식을 갖춘 우수인재 조기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과 연계한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우수인재 공동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실현
-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정착 지원 및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8	2,211.68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2,025.31억원 - (33.42억원×55교)+(9.35억원×20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 125.22억원 - 12..52억원×10개 사업단 ▪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 13.17억원 - 13.17억원×1식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47.98억원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 8.85억원×4교 = 35.4억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3.86억원×2개분야 =7.73억원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 0.61억원×8개분야≒4.85억원		
'19	2,925.1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2,531.81억원 - (41.67억원×55교)+(12억원×20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 165.36억원 - (9.2억원×18개교)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 55..40억원 - (7.75억원x2교)+(20억원x2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12.58억원 - 6.29억원×2개분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 60억원 - 12억원×5개교 ▪ 지역선도대학 육성 : 100억원 - 10억원×10개 컨소시엄		
'20	4,593.8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4,100억원 - (45.71억원×70교)+(30억원×30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 225억원 - (9.2억원×18개교)+(3억원x20개교)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 48.85억원 - (8.85억원x1교)+(20억원x2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20억원 - 10억원×2개분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 100억원 - 20억원×5개교 ▪ 지역선도대학 육성 : 100억원 - 10억원×10개 컨소시엄		

(억원)

구 분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21	4,60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4,100억원 - (45.71억원×70교)+(30억원×30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 225억원 - (9.2억원×18개교)+(3억원x20개교)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 60억원 - 20억원x3개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20억원 - 10억원×2개분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 100억원 - 20억원×5개교 ▪ 지역선도대학 육성 : 100억원 - 10억원×10개 컨소시엄		
'22	4,605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 4,100억원 - (45.71억원×70교)+(30억원×30교)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 : 225억원 - (9.2억원×18개교)+(3억원x20개교))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 60억원 - 20억원x3개교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20억원 - 10억원×2개분야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 100억원 - 20억원×5개교 ▪ 지역선도대학 육성 : 100억원 - 10억원×10개 컨소시엄		
연평균 증가율 (%)				

3-2. 중장기재정 소요전망('19～'28) : 해당없음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221,168</td><td>292,515</td><td>71,347</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2,485.03</td><td>3,366.26</td><td>881.23</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1.23</td><td>11.51</td><td>0.28</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은 일자리사업이 아니므로 재정지출 고용효과로 산출
○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P.34)에 따라 일반재정지출사업/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고용: 2,625.15억원 ÷ 0.89 = 2,949.60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360-05 연구개발 활동비 등)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해당하며, 아래 방식으로 산출
○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
- 고용: : 300억 ÷ 0.72억 = 416.66명
* <표3> 교육서비스에 해당되어 정부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간접고용 산출
☞ 총 고용효과 3,366.26명
= 재정지출 고용효과 2,949명 + 일자리사업 간접고용효과 416명</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3,366.26명
- 총고용: 2,925.15억원 ÷ 0.87 = 3,366.26
- 예산 10억원당 고용 : 3,366.26억원 ÷ 292.515 = 11.51

□ 2018년 고용효과
- 총고용 : 2,485명 / 예산 10억원당 고용 11.23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해당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 및 제12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 2, 제13조의2, 제22조, 제22조의 2, 제27조, 제39조
- 「고등교육법」 제22조

○ 추진경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16~'20) 수립 ('16.4.)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공청회('16.11.)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7.1.2.)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17.1.3.)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17.2~4.)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 선정('17.6.)

※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교, 사회맞춤형 중점형 20교 등 일반대학 총 75교 선정

- 산학협력 EXPO 내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17.11.)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성과포럼 개최('17.12.)
- '18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추진계획 수립('18.3.)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국정과제 54(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및 지식정보·융합교육 강화 필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확정 및 공고('15. 2. 12)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 선정('15. 5.)

※ 총 20개 사업단 (산학협력단 혁신형 18개, 연구소 혁신형 2개)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2차 연도 연차평가('17.3월)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단 컨설팅('17. 5~8월)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17.9월)
- BRIDGE 페스티벌(실용화경진대회, 투자유치설명회 연계) 개최('17.10.31.~11.2.)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종합평가('18.1월)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개편(BRIDGE+)안 확정·공고('18. 1. 31.)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수행대학 선정평가('18.3.)
-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사업 수행대학(18교) 선정('18.4.5.)

◈ **국정과제 52-2-3(연구성과 집적 및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으로 대학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기여 실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 '10.9.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추진계획 수립
- '11.2.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시 교지의 기준면적 완화
  *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교지 소유의무 미부여('14.2월 개정)
- '11.3.~7. 2011년 산업단지 캠퍼스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
- '11.6.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교원의 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을 주요 요소로 반영, 산업계와 연계된 교육과정(석·박사과정 등) 운영, 기업지원 활성화 등 규정('12.9월 개정)
  * 캠퍼스 설립계획서의 구체적 내용 및 설립인가 신청 절차 마련('13.11월 개정)
  * 위치 변경기준 명확화(기존 광역경제권 준용 → 별표 신설), 산학협력 교원 친화적 인사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노력 추가('18.5월 개정)
- '12.5.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정
  * 심의위원회 기능, 사업비의 산정기준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14.4월 개정)
- '12.10.「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 제정
- '16.4.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계획('16~'20)」에 **'대학 캠퍼스를 산학협력 집적기지로 육성'**과제 제시
- '16.5. **산업체 등의 대학 교사시설 이용제한 완화***「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8항 개정
  * 교사 기준면적의 10%와 초과 확보면적의 합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 종목에 한하여 산업체 등이 대학 교사시설 이용 가능
- '18.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내 **'산학연간 공간적 융합환경 조성'** 과제 제시

◈ **국정과제 52-6(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 '06~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 '08.7 「산학협력종합지원 센터(UICC)」 구축
- '08~ 개별 행사를 '산학협력 EXPO'로 통합·확대 개최
- '09.4 산학협력 포털 정보 사이트(www.uicc.re.kr) 구축
- '09.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및 산학협력단 운영매뉴얼 발간
- '10~ 실태조사 항목 중 일부를 대학정보공시로 연계
- '11~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정보공시 연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2.11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집 발간
- '14. 글로벌 산학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산학협력」 홍보자료 제작
- '15. 산학협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15.11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산학협력 길라잡이' 발간
- '16. 글로벌 산학협력 포럼 개최
- '17.10. 지자체(부산광역시)와 공동주최로 '산학협력 EXPO' 개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0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근거 마련
-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산업체 부담 학자금 100%→ 50% 이상으로 완화
- '1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개정
  ※ 계약학과 운영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 지원
- '1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계약학과 설치·폐지 신고 의무화 등 품질관리
- '17.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정원 기준 조정(채용조건형 : 10/100→ 20/100, 재교육형 : 무제한 → 20/100, 필요한 경우 50/100이내 증원), 고시 제정 근거 마련
- '18.3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근거 마련
- '18.3 청년 일자리대책(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및 지원) 발표
  ※ 선취업 후학습 방안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운영' 반영
- '18.5 청년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반영(80억원, 5개교)
- '18.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지역선도대학육성>

- '13.11 지방대학 육성방안 시안 발표('13.8) 및 최종 발표
- '14.10 2014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협약 및 사업 개시
- '15.9 2015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 '16.6 2016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실시
- '16.7 2016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컨설팅 실시
- '16.11 2016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실시
- '17.2 2017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4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 '17.6 2017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컨설팅 실시
- '18.2 2018년 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연계·협력형 시범사업 계획 수립
- '18.6 2018년 대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연계·협력형 시범사업 선정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466.6	2,466.6	-	2,468.3	-	2,601.9	-	2,2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66.6 (2,466.6)	( )	( )	2,466.6 (2,466.6)	2,466.6 (2,466.6)	( )	( )
'16년	**2,468.3** **(2,468.3)**	( )	( )	2,468.3 (2,468.3)	2,468.3 (2,468.3)	( )	( )
'17년	**2,601.9** **(2,601.9)**	( )	( )	**2,601.9** **(2,601.9)**	**2,601.9** **(2,601.9)**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4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60,198	-	221,168	-	221,168	216,370	9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사업의 내실화 필요(동 사업의 성과지표가 정량지표 위주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성과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3 교문위)
- 부처별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14 교문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지원>

- 지원기관 평가시 성과가 미흡한 학교는 지원비 삭감 등 평가관리 강화('14 예정처)
-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과 연계 강화 필요('15 예결위·예정처)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보통('17)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사업 연차평가 정성평가 시 분야별 우수성과 및 사례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간 상피제 적용

- 교육부와 중기청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 사업의 창업교육은 대학생 창업마인드 교육을,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일반인 위주 실전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14년말)

-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중기청과 협의하여 창업교육지원기구(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연계·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대학에 안내('15.12), 2016년 'LINC사업 계획'에 반영('16.2)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 '14년도 평가부터 사업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사업 지원비를 일부 삭감하여 삭감액만큼 사업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지원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공동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고, 사업설명회, 성과공유 및 캠퍼스 인가 등 동일 캠퍼스에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 협업 중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동 성과보고회 개최('15.12월, 동서대 센텀캠퍼스)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 RTP*(Research Triangle Park) 시스템

- (특징) 3개 대학(듀크, UNC-채플힐, NCSU)이 중심이 되어 산학협력을 추진
  * RTP : 세 개의 도시와 그 안의 세 개 대학을 연결하는 지역을 의미
- (주요내용) ① 우수한 대학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성과, ② 이를 산업계와 연결하는 지자체의 리더십과 정책, ③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④ 여러 네트워크 조직과 클러스터를 통한 사업화의 노력

ㅇ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산학협력시스템

- (특징)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을 활성화
  ▪ 산학협동지원부서인 연구혁신부서(Department of Research and Innovation)를 운영하여 "연구에서 공장으로"의 구호 아래 연구협력, 특허지원, 학생교류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 (주요내용) ① 대학의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산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지원 **(Research Collaboration)** ② 연구원의 기술이전을 적극 장려**(Licensing)** ③ 기업체와의 학생교류를 기업체와 학생들에게 아주 큰 상호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극 지원 [인턴십과 과제 협력(Internship and Project Collaboration), 취업지원(Recruitment), 경력지도프로그램 (Career Mentor Program)]

ㅇ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연간 $ 2billion(약 2조원)

- 1단계(Phase 1)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탐색**하는데 약 6개월 동안 최대 $100,000(약 1억원)을 지원
- 2단계(Phase 2) : Phase 1에서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프로토 타입을 완성**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750,000(약 7억 5천만원)까지 지원

○ **핀란드(산학일체형 테크노폴리스)** : 대학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 도마다 1개의 공과대학을 세우고,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건설

○ **프랑스(산업클러스터 정책)** : 마르세유 도심과 인접한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150개 기업, 2개 그랑제꼴, 2개 대학의 입지를 입체화하는 도시공간정책 추진

○ **스웨덴(시스타 사이언스시티)** : 스웨덴 왕립공대(KTH)와 스톡홀름 대학이 연합하여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내에 'IT 대학' 설립

○ **독일 (DHBW의 Duales Studium)** 독인 '바덴-뷔르템베르크' 내 12개 지역에 9개 DHBW 운영 중, 현재 **34천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9천여 개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연계

- 3학년 6학기이며, 1학기 내 실습(3개월)과 이론교육(3개월)을 교차 병행, 학생은 파트너 기업에 취업 후 입학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하에 학업 진행,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질 높은 인력을 조기 확보

○ **캐나다(워털루대학의 Co-op)** 학교수업과 관련 회사에서 인턴십을 공식적으로 결합하여 운영, 현재 Engineering&Science 중심 대학으로 30,600명의 학부생과 5,300명의 대학원생 재학, 캐나다 정부는 Co-op학생 고용회사에 임금의 2/3 지원

- 1년 3학기제(1학기 4개월) 총 14학기(56개월)로 운영하며, 8학기는 대학에서 수업, 6학기는 기업 인턴십을 하는 취업학기제로 운영하여 학생의 실무능력 향상과 창업문화 조성 동시 달성

(6) 사업추진절차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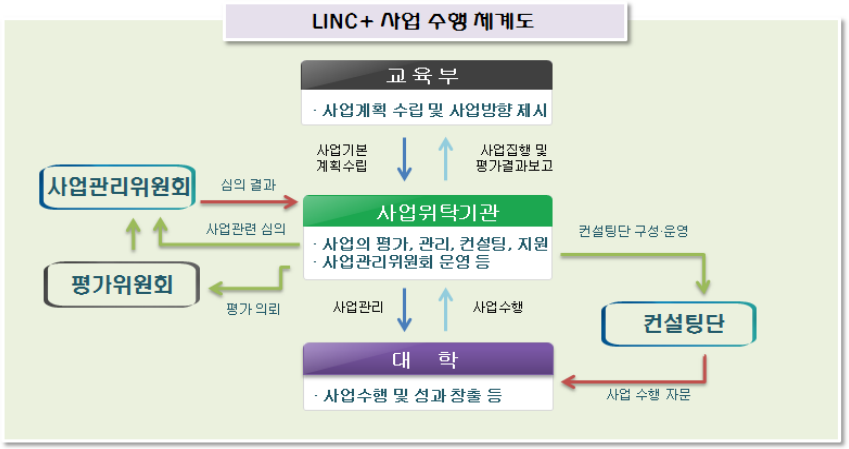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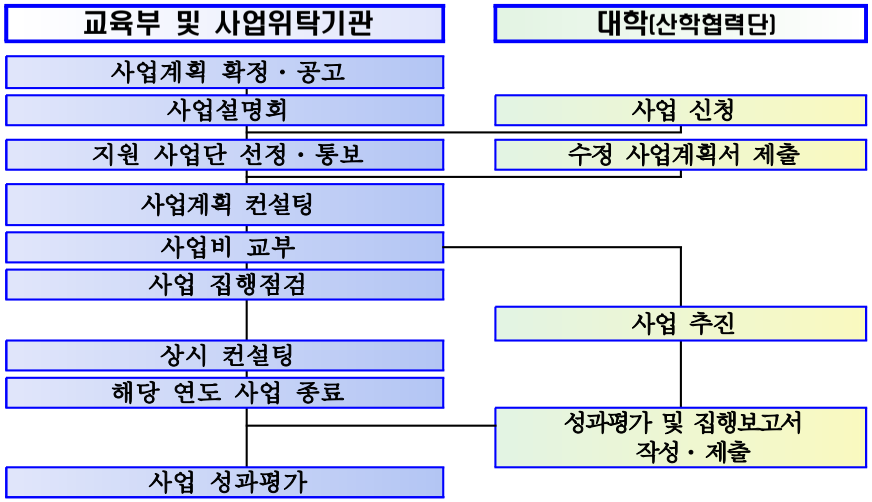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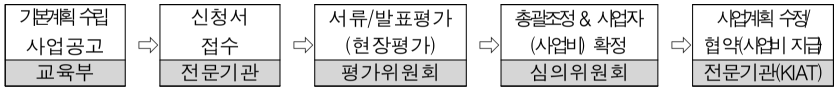

○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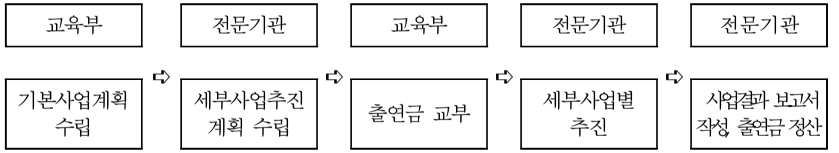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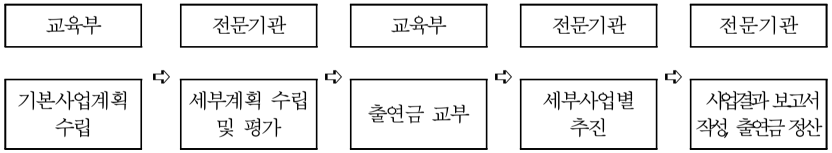

○ 지역선도대학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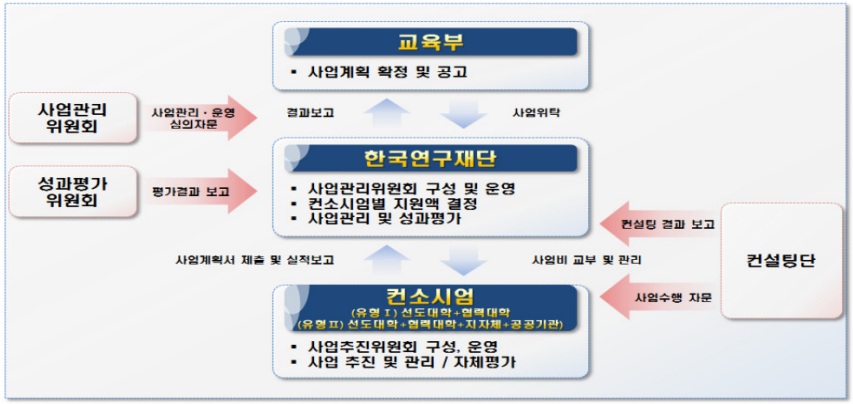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LINC 대학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단위: %)	목표	19.3						LINC 사업단 참여 학과의 3,4학년 전체 학생 대비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19.3							
	달성도	100.0							
산학협력 가족회사로의 취업률 (단위: %)	목표	13.4	13.9					LINC 사업단 참여학과의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산학협력 가족회사로의 취업자 수 비율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	14.2						
	달성도	-	102.2						
LINC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건수 (단위: 건)	목표			2,100	2,200	2,310	'18년 목표치 2,200건을 기준으로 5% 상승하도록 설정	LINC 사업 수행대학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수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2,105	-	-			
	달성도			100	-	-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사업 실용화 건수 (단위: 개)	목표			615				BRIDGE 사업단 실용화 건수 (실용화시작품+지식재산군 설계건수)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660					
	달성도			107.3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사업 기술이전수입료 (단위: 백만원)	목표				16,790	18,133	'18년 실적 목표치 대비 전체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연평균 증가율(8%)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BRIDGE+ 사업 참여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	-			
	달성도				-	-			
산업단지캠퍼스 참여학과의 취업률 (단위: %)	목표			65.1				(이전학과 취업자수 / 이전학과 졸업자 수) x 100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달성도			-					
산업단지캠퍼스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단위: %)	목표				69.8	70.8	'18년 실적목표치인 69.8%보다 1% 상향 설정	(이수학생 수/산업단지캠퍼스 이전학과 졸업생 기준 현장실습 대상 학생수)×100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달성도				-				
참여 학생 수 (단위: 명)	목표	-	-	-	-	신규		1개교 당 참여 학생수(누적 인원)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대학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대학 선정 개수(개)	목표	-	-	-	-	1	'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대학 1교 선정	대학내 산학협력단지 조성대학 선정 개수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2400] 학술연구 역량강화

(050)교육 - (052)고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2400] 학술연구 역량 강화	820	**808,679**	**872,646**	**63,967**
[2432]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일반회계)	821	240,709	247,955	7,246
[301] 인문사회 기초연구(R&D)	821	147,021	161,744	14,723
[302] 인문학 진흥(R&D)	839	50,296	44,854	△5,442
[303] 한국학 진흥(R&D)	857	16,522	15,272	△1,250
[306] 사회과학 연구지원(R&D)	880	26,870	26,085	△785
[2433]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일반회계)	895	48,836	48,755	△81
[301]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R&D)	895	29,023	29,292	269
[303]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951	19,813	19,114	△699
[2434] 고전문헌 국 역지원(일반회계)	986	3,708	4,227	519
[300] 고전문헌 국역 지원(R&D)	986	3,708	4,227	519
[2437] 학술자원 관리체계 및 연구윤리기반 구축(일반회계)	1003	9,703	10,003	300
[301]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R&D)	1003	8,998	8,998	-
[302] 연구윤리활동지원(R&D)	1020	705	1,005	300
[2438] 학술단체 지원(일반회계)	1035	7,885	7,637	△248
[300] 학술단체 지원(R&D)	1035	7,885	7,637	△248
[2439]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일반회계)	1055	13,005	12,935	△70
[300]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R&D)	1055	13,005	12,935	△70
[2440] 학술연구 국제교류 강화(일반회계)	1073	4,788	5,018	230
[301]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지원(R&D)	1073	4,788	5,018	230
[2446] 이공학학술연구조성(일반회계)	1088	452,471	509,900	57,429
[3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1088	103,980	217,669	113,689
[301] 개인기초연구(R&D)	1109	348,491	292,231	△56,260
[2447] 한국바로 알리기(일반회계)	1121	17,268	15,526	△1,742
[30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121	16,202	14,585	△1,617
[302] 한국바로 알리기	1140	1,066	941	△125
[2448]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일반회계)	1163	10,306	10,690	384
[301] 한국사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1163	5,369	5,682	313
[6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수입대체경비)	1195	4,937	5,008	71

[301] 인문사회기초연구(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인문사회기초연구	151,446	147,021	161,744	14,723	10.0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2 - 2400 - 243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경주), / 기획담당관(김영진), 사무관(안희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인문사회분야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로 체계적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을 통한 학술 진흥 ※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연구지원, 우수학자지원, 명저번역지원, 신흥지역연구지원, 학제간융합연구지원, 인문사회연구소지원, 토대연구지원
사업기간	'63～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매년 4,000여 과제 선정·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학문후속세대지원 : 36,252백만원**

- 박사학위 취득 초기의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에서 연수 기회 제공 및 학술연구교수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의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 **박사후국내연수** : 9,180백만원
· 270과제 내외 × 34백만원 = 9,180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 9,120백만원
· 228과제 내외 × 40백만원 = 9,120백만원

▪ **시간강사연구지원** : 17,952백만원
· 1,282과제 내외 × 14백만원 = 17,952백만원

○ **일반연구지원 : 69,611백만원**

-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 연구형태별(개인-공동) 체계적 지원으로 국가 연구역량 제고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신진연구자** : 17,745백만원
· 1,109과제 내외 × 평균 16백만원 = 17,745백만원

▪ **중견연구자** : 22,486백만원
· 1,249과제 내외 × 평균 18백만원 = 22,486백만원
※ (트랙1) 장기소액(1～7년), (트랙2) 후속연구(3～6년), (트랙3) 일반(1～7년)

▪ **우수학자지원** : 1,294백만원
· 33과제 내외 × 평균 39.2백만원 = 1,294백만원

▪ **일반공동연구** : 28,086백만원
· 302과제 내외 × 평균 93백만원 = 28,086백만원

○ **명저번역지원 : 1,848백만원**

- 동서양 명저 번역을 통해 학술성과의 세대 간 전수, 일반대중의 동서양 명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해외명저번역) 96과제 내외 × 평균 13백만원 = 1,248백만원
▪ (출판지원비 등) 60권 × 10백만원 = 600백만원

ㅇ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백만원

- 해외 신흥지역 전문가 양성 및 지역 정보 생산, 신흥시장 진출 전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신흥지역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연구 지원

▪ 6과제 × 평균 286백만원 = 1,716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사업통합에 따라 계속과제만 지원

ㅇ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3,810백만원

- 인문사회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연구 지원으로 복잡한 사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 (새싹형) 14과제 내외 × 평균 260백만원 = 3,640백만원

▪ (융합연구총괄센터) 1과제 × 170백만원 이내 = 170백만원

ㅇ 인문사회연구소지원 : 33,757백만원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일반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해 우수 연구성과 창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로 등록되어 있는 연구소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신흥지역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124과제 내외 × 평균 274백만원 = 33,757백만원

ㅇ 토대연구지원 : 14,750백만원

- 인문사회분야(한국학 포함) 토대연구지원(사전편찬, 기초연구DB, 희귀연구자료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독창적 연구이론 발전의 원천 제공

▪ 59과제 내외 × 평균 250백만원 = 14,750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사업통합에 따라 계속과제만 지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인문사회기초연구	**147,021백만원**	**161,744백만원**
▪ 학문후속세대	**36,252백만원** ▪ 박사후연수 : 9,180백만원 (270과제 내외×34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 9,120백만원 (228과제 내외×40백만원) ▪ 시간강사 : 17,952백만원 (1,282과제 내외×14백만원)	**36,252백만원** ▪ 박사후연수 : 9,180백만원 (270과제 내외×34백만원) ▪ 학술연구교수 : 9,120백만원 (228과제 내외×40백만원) ▪ 시간강사 : 17,952백만원 (1,282과제 내외×14백만원)
▪ 일반연구지원	**65,638백만원** ▪ 신진연구자 : 18,070백만원 (1,130과제 내외×평균 16백만원) ▪ 중견연구자 : 25,380백만원 (1,410과제 내외×평균 18백만원) ▪ 일반공동연구 : 21,018백만원 (226과제 내외×평균 93백만원) ▪ 우수논문지원 : 1,170백만원 (90과제 내외×평균 13백만원)	**69,611백만원** ▪ 신진연구자 : 17,745백만원 (1,109과제 내외×평균 16백만원) ▪ 중견연구자 : 22,486백만원 (1,249과제 내외×평균 18백만원) ▪ 우수학자지원 : 1,294백만원 (33과제 내외×평균 39.2백만원) ▪ 일반공동연구 : 28,086백만원 (302과제 내외×평균 93백만원)
▪ 우수학자지원	**1,803백만원** (46과제 내외×평균 39.2백만원)	※ 일반연구지원사업으로 이동
▪ 명저번역지원	**942백만원** (해외명저) 34개 내외×평균 13백만원 (출판) 50개 내외×평균 10백만원	**1,848백만원** (해외명저) 96개 내외×평균 13백만원 (출판) 60권 내외×평균10백만원
▪ 신흥지역연구지원	**1,716백만원** (6과제 내외×평균 286백만원)	**1,716백만원** (6과제 내외×평균 286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통합에 따라 계속과제만 지원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5,000백만원** (40과제 내외×평균 125백만원)	**3,810백만원** (새싹) 14과제 내외×260백만원 (센터) 1과제×170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16,420백만원** (60과제 내외×평균 274백만원)	**33,757백만원** (124과제 내외×평균 274백만원) ※ 신흥지역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사업명칭 변경
▪ 토대연구지원	**19,250백만원** (77개 내외×평균 250백만원)	**14,750백만원** (59개 내외×평균 250백만원)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과 통합에 따라 계속과제만 지원

□ 지원 필요성

○ **현 정부**에서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지식창출을 위해 **순수 기초학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정과제 제52조)** 순수기초 예산 2배 증액 및 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 (개헌안 제134조)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 장려
※ **(이낙연 총리 말씀)** "학문 사이의 벽은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높고 두껍다. 과학이나 **인문학 같은 기초학문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17.9.18.)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은 정부 R&D 예산의 1.5%*에 불과하여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 '18년 기준 정부 R&D 전체 예산 19.7조원 중 인문사회분야는 2,933억원 지원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 R&D 예산은 2.6%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은 0.2%로 13배 차이

<최근 5년간 국가 R&D 및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A)	17조 7,358억 원	18조 9,231억 원	19조 942억 원	19조 4,615억 원	19조 6,681억 원	2.6%
인문사회 R&D 예산(B)	2,909억 원	2,955억 원	2,990억 원	3,011억 원	2,933억 원	0.2%
비율(B/A)	1.6%	1.6%	1.6%	1.5%	1.5%	-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공분야는 8.1%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는 0.2%로 **약 40배 차이**

<최근 5년간('14~'18)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이공 R&D 예산(A)	3,313억원	3,365억원	3,415억원	3,875억원	4,525억원	8.1%
인문사회 R&D예산(B)	2,909억원	2,955억원	2,990억원	3,011억원	2,933억원	0.2%

*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만 해당(과기정통부 등 예산은 제외한 수치)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 인문사회분야는 민간 투자 유인이 특히 부족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처가 거의 **교육부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

- 특히, 연구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시간강사 등 **비전임 연구자**들에게 **독립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설계 및 **연구력 증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기여**

※ 출처: 대학 내 비정규직 신진연구자 설문조사 결과('17.8.16.~8.31., 545명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사업 만족도 및 의견 등에 대해 조사)

[사업별 지원 필요성]

○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학위 취득 초기**의 취업이 어려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전임급 연구원으로 성장하기까지 **안정적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

▪ **(박사후국내연수 / 학술연구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인 박사후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 능력**이 **시작단계**에서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독자적인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시간강사연구)** 전업시간강사 대상 유일한 연구지원 사업으로서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

○ **(일반연구지원)** 연구자의 **성장단계별**(신진-중견), **연구형태별**(개인-공동) **체계적 지원**으로 **국가 연구역량 제고**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 필요**

▪ **(신진/중견연구자)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지원하여 향후 인문사회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연구자**를 **발굴**하고, **우수연구자**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필요**

▪ **(우수학자지원)**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가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심층연구** 및 **저술출판**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석학 배출** 및 **학술발전 공헌**에 **기여**

▪ **(일반공동연구) 집단 지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국가사회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연구**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공동연구 기반 확보**

○ **(명저번역지원)** 시장성이 없어 **민간 출판사에서 번역·출간이 어려운 학술도서 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명저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명저 관련 후속 연구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학문의 발전 토대 제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함

※ 청와대 국민청원('18.2.7.), 신동아('18.3.4.) 및 교수신문('18.3.26.) 기고 등 번역지원 확대에 대한 연구자 및 학계 요청 빈번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ICT 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인문사회분야**의 **미래지향적 활로 개척**을 위해 **인문사회 중심 학제간 융합연구 지원 필요**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기존 집단연구지원사업* 통합**하여 전문적인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신흥지역연구지원, 토대연구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인문사회기초연구**	**151,446**	**147,021**	**161,744**	**14,723**	**10.0**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36,252**	**36,252**	**36,252**	**-**	**-**
- 박사후국내연수	9,180 (270과제x34백만원)	9,180 (270과제x34백만원)	9,180 (270과제x34백만원)	-	-
- 학술연구교수	9,120 (228과제x40백만원)	9,120 (228과제x40백만원)	9,120 (228과제x40백만원)	-	-
- 시간강사연구지원	17,952 (1,122과제x16백만원)	17,952 (1,282과제x14백만원)	17,952 (1,282과제x14백만원)	-	-
▪ **일반연구지원**	**69,461**	**67,441**	**69,611**	**2,170**	**3.2**
- 신진연구자	17,560 (1,100과제x16백만원)	18,070 (1,130과제x16백만원)	17,745 (1,109과제x16백만원)	△325	△1.8
- 중견연구자	27,718 (1,540과제x18백만원)	25,380 (1,410과제x18백만원)	22,486 (1,249과제x18백만원)	△2,894	△11.4
- 우수학자지원	1,883 (48과제x39.2백만원)	1,803 (46과제x39.2백만원)	1,294 (33과제x39.2백만원)	△509	△28.2
- 일반공동연구	21,000 (197과제x106.598백만원)	21,018 (226과제x93백만원)	28,086 (302과제x93백만원)	7,068	33.6
- 우수논문지원	1,300 (220과제x5.91백만원)	1,170 (90과제x13백만원)	-	△1,170	△100 (순감)
▪ **명저번역지원**	**1,063**	**942**	**1,848**	**906**	**96.2**
- 해외명저	563 (22과제x25.6백만원)	442 (34과제x13백만원)	1,248 (96과제x13백만원)	806	182.4
- 출판	500 (50권x10백만원)	500 (50권x10백만원)	600 (60권x10백만원)	100	20
▪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 (7과제x286백만원)	**1,716** (6과제x286백만원)	**1,716** (6과제x286백만원)	**-**	**-**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5,000**	**5,000**	**3,810**	**△1,190**	**△23.8**
- 씨앗형	520 (10과제x52백만원)	468 (9과제x52백만원)	-	△468	△100 (순감)
- 새싹형	4,310 (17과제x260백만원)	4,362 (17과제x260백만원)	3,640 (14과제x260백만원)	△722	△16.6
- 센터	170 (1과제x170백만원)	170 (1과제x170백만원)	170 (1과제x170백만원)	-	-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16,420** (60과제x274백만원)	**16,420** (60과제x274백만원)	**33,757** (124과제x274백만원)	**17,337**	**105.6**
▪ **토대연구지원**	**21,250** (85과제x250백만원)	**19,250** (77과제x250백만원)	**14,750** (59과제x250백만원)	**△4,500**	**△23.4**
□ **비목**(합계)	**151,446**	**147,021**	**161,744**	**14,723**	**10.0**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51,446	147,021	161,744	14,723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인문학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17.1.장관결재) 및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17.12.장관결재)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 **학문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인문사회분야 풀뿌리 연구를 지원하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지속 확대 필요**

- 대학 연구자 수혜율에서 인문사회 분야는 이공분야보다 25.9%p.가 낮고, 1인당 연구비도 이공분야의 1/7 수준

※ 과제 수혜율 : 13.3%(이공분야 39.2%), 1인당 연구비 : 13.2백만원(이공분야 92.9백만원)

※ 1인당 연구비 격차 : ('14년) 75백만 원 → ('15년) 77.5백만 원 → ('16년) 79.6백만 원

○ 효용성과 활용성이 높은 인문사회분야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력 및 책무성 강화**

- 과학기술 및 예술 분야 등과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 간 연계 활성화 및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구 생태계 조성**

- 국내 연구환경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문분야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신규과제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지원

* 연구자 규모, 연구 수요, 주요 성과 등

-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안정적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및 중장기 연구 활성화

○ 연구자가 **보다 연구**에 **몰입**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제 평가와 관리 등에 있어 지속적 **제도개선**(평가 간소화, 질적평가 도입 등)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51,446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9,461 ▪ 명저번역지원 : 1,063 ▪ 신흥지역연구지원 : 2,000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 ▪ 토대연구지원 : 21,250	-	-	-
'18	147,021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7,441 ▪ 명저번역지원 : 942 ▪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 ▪ 토대연구지원 : 19,250	147,021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7,441 ▪ 명저번역지원 : 942 ▪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 ▪ 토대연구지원 : 19,250	-
'19	146,181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6,601 ▪ 명저번역지원 : 942 ▪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 ▪ 토대연구지원 : 19,250	161,744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9,611 ▪ 명저번역지원 : 1,848 ▪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3,810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 33,757 ▪ 토대연구지원 : 14,750	15,563
'20	147,643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6,252 ▪ 일반연구지원 : 67,648 ▪ 명저번역지원 : 1,073 ▪ 신흥지역연구지원 : 2,000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 ▪ 토대연구지원 : 19,250	135,480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0,500 ▪ 일반연구지원 : 57,940 ▪ 명저번역지원 : 1,138 ▪ 신흥지역연구지원 : 1,716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2,080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 32,606 ▪ 토대연구지원 : 9,500	△12,163
'21	149,119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7,248 ▪ 일반연구지원 : 67,648 ▪ 명저번역지원 : 1,073 ▪ 신흥지역연구지원 : 2,000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900 ▪ 토대연구지원 : 19,250	132,770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0,500 ▪ 일반연구지원 : 57,502 ▪ 명저번역지원 : 1,300 ▪ 신흥지역연구지원 : 1,500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1,040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 33,428 ▪ 토대연구지원 : 7,500	△16,349
'22	-	-	131,423	▪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 34,260 ▪ 일반연구지원 : 60,435 ▪ 명저번역지원 : 1,900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20 ▪ 인문사회연구소지원 : 32,058 ▪ 토대연구지원 : 2,250	-
연평균 증가율 (%)	△0.4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47,021</td><td>161,744</td><td>-</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652</td><td>1,817</td><td>165</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1.2</td><td>11.2</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816.9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문사회기초연구 1,617억원은 <표3>의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617억원 ÷ 0.89억원 = 1,816.9명

□ 2018년 고용효과: 1,651.7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학문후속세대 지원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전임급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학술진흥법」 제정
- ('01)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 추진
- ('05)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분리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 ('08) (舊)교육과학기술부 출범(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통합)

- ('09) 학술연구조성사업 사업구조 개편, 한국연구재단 출범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 기초연구, 리더연구, 기반연구를 인문사회학술 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
- ('10)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現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신설
  ※ '11년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12)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추진 구조 개편
  ※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방안,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등 → 개인연구군/집단연구군/성과확산군/국제교류군으로 구조화
  ※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신설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규정 정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 ('15) 생애주기별(학문후속세대-신진-중견-우수학자) 지원체계 정착 및 내실화
- ('1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중·장기연구 지원트랙 신설로 지속적·안정적 연구지원 강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인문사회기초연구	1,330	1,330	1,350	1,364	1,364	1,514	1,514	1,47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50**	-	-	1,350	**1,350**	-	-
	(1,350)	(-)	(-)	(1,350)	**(1,341)**	(-)	(9)
'16년	**1,364**	-	-	1,364	**1,364**	-	-
	(1,364)	(-)	(-)	(1,364)	**(1,358)**	(-)	(6)
'17년	**1,514**	-	-	1,514	**1,514**	-	-
	(1,514)	(-)	(-)	(1,514)	**(1,509)**	(-)	(5)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51,446	151,446	144,021	3,000	147,021	147,021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신진연구자 지원 : 2,070백만원
- 일반공동연구 : 930백만원

○ 집행현황

- 학문후속세대지원 : 36,252백만원
- 일반연구지원 : 65,638백만원
- 우수학자지원 : 1,803백만원
- 명저번역지원 : 942백만원
- 신흥지역연구 : 1,716백만원
- 학제간융합연구지원 : 5,00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16,420백만원
- 토대연구지원 : 19,25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우수논문 지원사업이 다수에게 소액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 성과 제고가 미흡한 동시에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문사회분야 사업 중에는 사업별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방식 및 의무사항이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음('13년 결산 교문위)	▪우수논문 지원사업 지원 시 논문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지원하고 후속연구와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음. 또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성과물로 논문·저서뿐만 아니라 DB, 콘텐츠 등으로 다양화함 ※ 사업별 연구성과물 : (토대연구) DB, (인문브릿지) 콘텐츠, (저술출판) 교양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지원금액 상향 필요 ('14년 결산 교문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지원단가 1백만원 상향 조정 ※ 연도별 지원단가 : ('14) 12,000천원 → ('15) 13,000천원 → ('16) 14,000천원
▪인문사회기초연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 설정, 성과 목표 및 달성 기준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할 것 ('15년 결산 교문위)	▪'16년 성인지 결산서 자체평가에 반영함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를 재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목표 및 달성기준 마련 ※ 사업대상자 : (기존) 사업신청인력 → (변경) 사업신청가능인력
▪패널 전체 합의평가 방식을 변경하고, 평가위원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16년 교문위 국정감사)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특성과 평가방법 개선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 검토하고, '17년부터는 종합평가에서 내부 평가위원 제외
▪인문사회 분야 R&D 사업의 연구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한 협약기간 조정 등,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갈 것('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하반기 일부 사업의 연구개시일을 앞당겨 추진

▪연구개시 되지 않은 사업 중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당해연도 고시율을 적용하도록 2017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간접비 지급 관련 법령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2018년 신규선정 과제부터 협약시점이 아닌 당해연도 간접비 적용비율로 지급
▪신흥지역연구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신청자격에 대학부설연구소 외에 일반 연구기관도 포함할 것 ('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신흥지역연구의 신청자격을 일반연구기관까지 확대 예정('18년 신규예산 미확보로 인해, '19년부터 적용가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NEH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ESRC (Economic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INSHS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인문학 분야의 연구와 자료보존, 연구성과의 활용 분야를 중점 지원 ○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연구 활성화에 기여	○ 사회문제 해결 분야와 대규모 공동연구 및 소규모 개인 연구, 기관 간의 네트워크, 워크숍, 사회적 확산·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 지원	○ 중장기 계획 하에 사회적 아젠다 중심의 연구를 전략 지원 ○ 전체 예산의 66.7%를 사회문제 중심의 아젠다 연구분야 집중 지원	○ 상·하향식 연구 지원의 능동적 결합을 통해 전략분야와 연구자 중심의 창의주제 분야를 병행하여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지원	○ 창의적 주제와 융합연구, 연구성과의 확산·활용 분야를 지원하나, 융합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 지원
○ 2010년도 예산 : 1,860억원 (연평균: 15.7%증가)	○ 2009~2010년 예산 : 1,785억원 (연평균: 7.9%증가)	○ 2009~2010년 예산 : 3,489억원 (연평균: 14.5%증가)	○ 2010년도 예산 : 3조6,020억원 (연평균: 25.5%증가)	○ 2009년도 예산 : 4,050억원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문사회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도 (단위 : %)	목표	6.5	7.0	종료	-	-		성과논문 중 국제저널 게재 논문 비율 (국제저널 논문수/전체 논문수)*100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기준
	실적	7.5	7.0	-	-	-			
	달성도	125	100	-	-	-			
SCI급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평균 (단위 : 지수)	목표	-	신규	51.0	51.6	51.8	최근 3년간('15~'17) 실적 평균(50.9)과 '18년 목표치의 평균(51.25) 대비 0.2%p 상향하여 '19년 목표치를 51.8로 설정	ΣSCI급 논문의 mmIF / SCI급 논문 건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기준
	실적	-	-	51.19	-	-			
	달성도	-	-	100.4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연구자) 이공분야 대비 지원이 부족한 인문사회분야 전체 예산 확대를 통해 원활한 연구 추진 필요

□ (연구자) 장기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연구 보장

□ (연구자)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단절 최소화 방안 필요

□ (연구자) 인문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번역활동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유일한 명저번역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

※ 청와대 국민청원('18.1.8.), 신동아('18.3.4.) 및 교수신문('18.3.26.) 기고 등

< 예산(안) 반영사항 >

□ 지속적/안정적 연구를 위한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예산 확대

· ('18) 1,470억원 → ('19) 1,617억원(147억원 증액)

□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특성화·전문화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 ('18) 164억원 → ('19) 338억원(174억원 증액)

□ 개인연구 성과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동연구 활성화

· 일반연구(일반공동) : ('18) 210억원 → ('19) 281억원(71억원 증액)

□ 명저번역지원사업 예산 확대

· 명저번역 : ('18) 9.4억원 → ('19) 18.5억원(9.1억원 증액)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 산출지수 지속 향상

· ('14) 6,132편 → ('15) 6,309편 → ('16) 6,422편 → ('17) 6,578편

□ 국내 및 국외전문학술지 및 SCI급 우수학술지 게재논문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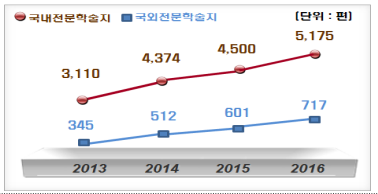

< 국내 및 국외 논문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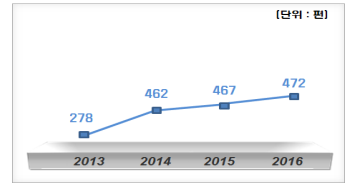

< A&HCI, SSCI급 논문 수 >

□ 인문사회분야 선정율 유지를 통한 안정적 연구지원

· 30%대 선정률 유지 : ('14) 35.5% → ('15) 34.3% → ('16) 32.1% → ('17) 38%

□ 중·장기연구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지속적·안정적 연구 지원

- 장기연구는 연구비는 소액으로 하되 최대 7년까지 계속 지원
- 중기연구는 기 수행 연구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후속연구 추가 지원

□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 및 규제 폐지로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세부 항목 통합 등 서식 표준화·간소화
- 연차점검을 폐지하고, 연차보고서 제출로 대체(개인연구사업)

< 현장의 변화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 /교육부, 문체부 공동),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17.1)

□ 중장기 지원방안 마련으로 한 가지 연구에 대한 한 우물 파기 연구지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중장기 연구지원 트랙 신설(기존3년→7년)을 통해 중장기 안정적 연구지원에 대한 현장 수요에 대응

* ('17) 중장기연구 지원트랙 신설에 대해 84.3%가 만족이상 응답

□ 개인연구(신진·중견·우수학자) 지원사업에서 연차점검을 연차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여 현장 만족도 제고

* ('17) 연차점검 간소화에 대해 93.1%가 만족이상 응답

[302] 인문학진흥(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인문학진흥	53,136	50,296	44,854	△5,442	△10.8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2 - 2400 - 243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경주), 사무관(조의정) / 대학학사제도과장(문상연), 사무관(김정훈)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사회적 적실성을 갖춘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우수한 인문학 및 해외 지역학 연구소 육성 - 인문학과 대중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인문학의 외연을 확대 ※ 인문한국(HK),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인문학대중화(인문도시, 인문강좌, 인문주간, 인문학포럼, 성과확산), 인문전략연구, 기초교양교육강화
사업기간	'07～계속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 '11～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연구소 40개 등 연간 600여 과제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학술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문한국(HK)지원 : 33,684백만원**

-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아젠다 연구 강화

▪ (신규 6과제 × 평균 1,022백만원) + ('17년 선정 8과제* × 평균 1,022백만원 × 10/12) + ('16년 이전 선정 16과제 × 평균 1,022백만원)= 29,054백만원

* 교육위 검토보고서 지적에 따라 '17년 선정과제 협약 기간 조정 : 기존('19.11.~'20.10.) → 조정('19.11.~'20.8.)

▪ 성과확산총괄센터 : 1과제 × 130백만원 = 130백만원

▪ HK^{+} 2유형 : 15개 연구소* 내외 × 평균 300백만원 = 4,500백만원

* 계속 과제 9개, 신규 과제 6개

※ HK^{+}2유형 : 기 지원종료 연구소 중 우수연구소 지원

○ **저술출판지원 : 2,940백만원**

- 학술서·교양서 대상 연구성과의 저술·발간을 지원으로써 학술성과 축적 제고

▪ 294과제 내외 × 평균 10백만원 = 2,94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 : 3,300백만원**

-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

▪ 330종 × 10백만원 = 3,300백만원

○ **인문학대중화 : 3,460백만원**

-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과의 소통 확대

▪ **인문도시** : 17과제 내외 × 평균 140백만원 = **2,360백만원**

▪ **인문강좌** : **200백만원**

▪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 인문학 포럼 등** : **800백만원**

▪ **홍보 및 성과확산** : 100백만원

· 인문학 연구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100백만원

○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500백만원**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17. 한국연구재단)에 따라 인문학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한 인문학 진흥 관련 연구, 정책 조사·분석·평가, 국내외 인문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필요

▪ 전담직원 인건비 : 7명(정규직3, 위촉직2, 사무직2) × 평균 43백만원 = 300백만원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50백만원

▪ 성과분석·조사보고서 등 발간 40백만원

▪ 성과 DB 구축활용 30백만원

▪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연구 추진 : 2과제 × 40백만원 = 80백만원

○ **기초교양교육강화** : **970백만원**

- 기초학문 기반 대학 교양교육과정 확산 및 내실화, 기초교양교육 지원시스템 강화

▪ 교양교육연구, 개선지원, 인식제고 : 770백만원

▪ 기관운영비 : 2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인문학 진흥	**50,296백만원**	**44,854백만원**
▪ 인문한국지원	**33,590백만원** ▪ 일반 : 30,660백만원 (30과제 내외×1,022백만원) ▪ 성과확산센터 130백만원 ▪ HK+ 2유형 : 2,800백만원 (9과제 내외×300백만원)	**33,684백만원** ▪ 일반 : 29,054백만원 (6과제×1,022백만원 + 8과제×1,022백만원 ×10/12 + 16과제×1,022백만원) ▪ 성과확산센터 130백만원 ▪ HK+ 2유형 : 4.,500백만원 (15과제 내외×300백만원)
▪ 저술출판지원	**5,000백만원** (500과제×10백만원)	**2,940백만원** (294과제×1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	**3,650백만원** (365종X10백만원)	**3,300백만원** (330종X10백만원)
▪ 인문학대중화	**5,100백만원** ▪ 인문도시 : 3,000백만원 (신규 10과제 내외×140백만원, 계속 16과제X100백만원) ▪ 석학인문강좌 : 800백만원 ▪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등 : 800백만원 ▪ 홍보 및 성과확산 : 500백만원	**3,460백만원** ▪ 인문도시 : 2,360백만원 (계속 17과제X140백만원) ▪ 인문강좌 : 200백만원 ▪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등 : 800백만원 ▪ 홍보 및 성과확산 : 100백만원
▪ 인문전략연구	**1,956백만원** ▪ 인문학국책 : 656백만원 (5과제×130백만원) ▪ 디지털인문학 : 600백만원 (3과제×200백만원) ▪ 인문브릿지 : 700백만원 (2과제×350백만원)	-
▪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500백만원** (전담기관 운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500백만원)
▪ 기초교양교육강화	**1,000백만원** ▪ 연구개발+컨설팅+홍보810 ▪ 기관운영비190	**970백만원** ▪ 연구개발+컨설팅+홍보770 ▪ 기관운영비200

□ 지원 필요성

○ **현 정부**에서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지식창출을 위해 **순수 기초학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정과제 제52조)** 순수기초 예산 2배 증액 및 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 (개헌안 제134조)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 장려

※ **(이낙연 총리 말씀)** "학문 사이의 벽은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 높고 두껍다. 과학이나 **인문학 같은 기초학문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 '17.9.18.)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은 정부 R&D 예산의 1.5%*에 불과하여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 '18년 기준 정부 R&D 전체 예산 19.7조원 중 인문사회분야는 2,933억원 지원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 R&D 예산은 2.6%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은 0.2%로 13배 차이

<최근 5년간 국가 R&D 및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A)	17조 7,358억 원	18조 9,231억 원	19조 942억 원	19조 4,615억 원	19조 6,681억 원	2.6%
인문사회 R&D 예산(B)	2,909억 원	2,955억 원	2,990억 원	3,011억 원	2,933억 원	0.2%
비율(B/A)	1.6%	1.6%	1.6%	1.5%	1.5%	-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공분야는 8.1%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는 0.2%로 **약 40배 차이**

<최근 5년간('14~'18)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이공 R&D 예산(A)	3,313억원	3,365억원	3,415억원	3,875억원	4,525억원	8.1%
인문사회 R&D예산(B)	2,909억원	2,955억원	2,990억원	3,011억원	2,933억원	0.2%

*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만 해당(과기정통부 등 예산은 제외한 수치)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

○ 인문사회분야는 민간 투자 유인이 특히 부족하고,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처가 거의 **교육부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

- 특히, 연구환경과 처우가 열악한 시간강사 등 **비전임 연구자**들에게 **독립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설계 및 **연구력 증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기여**

※ 출처: 대학 내 비정규직 신진연구자 설문조사 결과('17.8.16.~8.31., 545명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사업 만족도 및 의견 등에 대해 조사)

[사업별 지원 필요성]

○ **(인문한국지원사업)** 지속적 **지원 확대**로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자생력 확보**, 소외·보호/창의·도전분야 지원 등 **인문학**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저술출판지원)** 인문·사회분야 저술지원을 통해 **우수 학술성과**의 **사회적 활용 및 대중성**을 **제고**

※ 저술출판지원사업을 통해 출판된 도서가 세종도서(舊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및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도서 등에 선정되는 등 기존 학술서와 차별화됨

○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 선정·보급**을 통하여 기초학문분야 우수 연구성과 확산 및 공유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인문학대중화) 인문학**에 대한 **시대적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인문학 대중화 및 성과확산** 등 인문학 진흥 **지원 확대 필요**

○ **(인문학전담기관 운영)** 한국 인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문학**의 **대중성·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16.2.3.제정)에 근거하여 지정한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을 **허브**로 **인문학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인문학 진흥 업무 추진 확대 필요

*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체제 구축,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지원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운영 필요

○ **(기초교양교육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필요**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등을 통한 교양 교육 지원 체계구축

※ 대학별 체계적인 교양교육 수립을 위한 컨설팅 실시 및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수업모델 및 교수·학습법 발굴 등 지원 활성화

※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내용반영(장관결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인문학진흥**	**53,136**	**50,296**	**44,854**	**△5,442**	**△10.8**
▪ **인문한국지원**	**35,900**	**33,590**	**33,684**	**94**	**0.2**
- HK(HK+1유형)	35,770 (35과제x1,022백만원)	30,660 (30과제x1,022백만원)	29,054 (22과제x1,022백만원 + 8과제x1,022백만원x10/12)	△1,606	△5.2
- 성과확산센터	130 (1과제x130백만원)	130 (1과제x130백만원)	130 (1과제x130백만원)	-	-
- HK+2유형	-	2,800 (9과제x300백만원)	4,500 (15과제x300백만원)	1,700	60.0
▪ **저술출판지원**	**5,730** (478과제x12백만원)	**5,000** (500과제x10백만원)	**2,940** (294과제x10백만원)	**△2,060**	**△41.2**
▪ **우수학술도서**	**3,650** (365종x10백만원)	**3,650** (365종x10백만원)	**3,300** (330종x10백만원)	**△350**	**△9.6**
▪ **인문학대중화**	**5,300**	**5,100**	**3,460**	**△1,640**	**△32.1**
- 인문강좌	800 (1식x800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200 (1식x200백만원)	△600	△75
- 인문도시	3,100 (27과제x114.8백만원)	3,000 (26과제x115.4백만원)	2,360 (17과제x140백만원)	△640	△21.3
- 인문주간,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등	900 (1식x900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	-
- 성과 및 홍보확산	500 (1식x500백만원)	500 (1식x500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400	△80.0
▪ **인문전략연구**	**1,956**	**1,956**	**-**	**△1,956**	**△100 (순감)**
- 인문학국책	656 (5과제x130백만원)	656 (5과제x130백만원)	-	△656	△100 (순감)
- 디지털인문학	600 (3과제x200백만원)	600 (3과제x200백만원)	-	△600	△100 (순감)
- 인문브릿지	700 (2과제x350백만원)	700 (2과제x350백만원)	-	△700	△100 (순감)
▪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	**500** (1식x500백만원)	**500**	**100 (순증)**
▪ **기초교양교육강화**	**600**	**1,000**	**970**	**△30**	**△3.0**
- 연구개발, 컨설팅, 홍보	**410** (1식x410백만원)	**810** (1식x810백만원)	**770** (1식x770백만원)	△40	△4.9
- 기관운영비	**190** (1식x190백만원)	**190** (1식x190백만원)	**200** (1식x200백만원)	10	5.3
□ **비목**(합계)	**53,136**	**50,296**	**44,584**	**△5,442**	**△10.8**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53,136	50,296	44,584	△5,442	△10.8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인문학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17.1.장관결재) 및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17.12.장관결재)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

○ 인문한국플러스(HK+)의 사업을 통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를 **확립**하여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아젠다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또한 HK+ 2유형 지원을 통해 인문학 연구거점으로 성장한 우수 HK연구소의 기 구축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발전 지원

○ **우수 인문저술**의 **출판지원**을 통해 인문학 특성에 맞는 연구지원 모델 창출 및 **인문학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 **우수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을 위하여 **세계인문학포럼 등 대중화사업 규모 확대**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신 부가가치 창출

○ **인문학 전담기관**을 허브로 **인문학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인문학 진흥 업무 추진 확대

○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 도모**

○ 대학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단 및 처방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학부교육의 핵심인 **교양기초교육의 내실화 및 기초교양 전문강사 인력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3,136	▪ 인문한국 : 35,900 ▪ 저술출판지원 : 5,730 ▪ 우수학술도서 : 3,650 ▪ 인문학대중화 : 5,300 ▪ 인문전략연구 : 1,956 ▪ 기초교양교육강화 : 600	-	-	-
'18	50,296	▪ 인문한국 : 33,590 ▪ 저술출판지원 : 5,000 ▪ 우수학술도서 : 3,650 ▪ 인문학대중화 : 5,100 ▪ 인문전략연구 : 1,956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50,296	▪ 인문한국 : 33,590 ▪ 저술출판지원 : 5,000 ▪ 우수학술도서 : 3,650 ▪ 인문학대중화 : 5,100 ▪ 인문전략연구 : 1,956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
'19	48,005	▪ 인문한국 : 32,100 ▪ 저술출판지원 : 4,730 ▪ 우수학술도서 : 3,500 ▪ 인문학대중화 : 5,000 ▪ 인문전략연구 : 1,275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900	44,854	▪ 인문한국 : 33,684 ▪ 저술출판지원 : 2,940 ▪ 우수학술도서 : 3,300 ▪ 인문학대중화 : 3,460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970	△3,151
'20	48,485	▪ 인문한국 : 32,100 ▪ 저술출판지원 : 5,000 ▪ 우수학술도서 : 3,610 ▪ 인문학대중화 : 5,000 ▪ 인문전략연구 : 1,275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46,348	▪ 인문한국 : 32,098 ▪ 저술출판지원 : 4,450 ▪ 우수학술도서 : 3,300 ▪ 인문학대중화 : 5,000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2,137
'21	48,970	▪ 인문한국 : 32,100 ▪ 저술출판지원 : 5,000 ▪ 우수학술도서 : 3,650 ▪ 인문학대중화 : 5,100 ▪ 인문전략연구 : 1,620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45,421	▪ 인문한국 : 32,101 ▪ 저술출판지원 : 3,520 ▪ 우수학술도서 : 3,300 ▪ 인문학대중화 : 5,000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3,549
'22	-	-	44,967	▪ 인문한국 : 32,097 ▪ 저술출판지원 : 3,070 ▪ 우수학술도서 : 3,300 ▪ 인문학대중화 : 5,000 ▪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500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	-
연평균 증가율 (%)	△2.0		△2.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0,296	44,854	△5,442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565	503	△6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503.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문학진흥 448억원은 <표3>의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448억원 ÷ 0.89억원 = 503.3명 **□ 2018년 고용효과: 565.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신규과제 예산 지속 확보를 통해 HK(연구)교수 등 연구인력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6) 전국 인문대학 학장의 '인문학 위기선언', 인문학의 사회적 소통강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제기
  ※ 인문학이 미래한국의 문화자본이라는 인식하에 인문학의 장기적 육성 및 활용을 위한 계기로 인문학 진흥방안 수립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인문한국 100년(Humanities Korea) 프로젝트 사업 신설

- ('08) (舊)교육과학기술부 출범(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통합)
- ('09) 학술연구조성사업 사업구조 개편, 한국연구재단 출범
- ('11)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개편, 세계인문학포럼 개최
- ('12)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추진 구조 개편
  ※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방안,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등 → 개인연구군/집단연구군/성과확산군/국제교류군으로 구조화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규정 정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 ('14) 한·중인문학포럼 개최를 통한 인문학의 국제교류 내실화, 사회적 기여도 및 실용성 강화 등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기획사업 추진(인문학국책연구, 인문브릿지, 디지털 인문학)
- ('15) 2015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1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전담기관 : 한국연구재단)
- ('17)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신규 추진
- ('18)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2유형 신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인문학진흥	599.04	599.04	619.04	614.25	614.25	531.36	531.36	502.9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19.04** (619.04)	- (-)	- (-)	619.04 (619.04)	**619.04** (618.06)	- (-)	- (0.98)
'16년	**614.25** (614.25)	- (-)	- (-)	614.25 (614.25)	**614.25** (612.16)	- (-)	- (2.09)
'17년	**531.36** (531.36)	- (-)	- (-)	531.36 (531.36)	**531.36** (524.81)	- (-)	- (6.55)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3,136	53,136	47,296	3,000	50,296	50,296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인문한국(HK)지원 : 2,800백만원
- 기초교양교육강화 : 200백만원

○ 집행현황

- 인문한국지원 : 33,590백만원
- 저술출판지원 : 5,00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 : 3,650백만원
- 인문학대중화 : 5,100백만원
- 인문전략연구 : 1,956백만원
- 기초교양교육강화 : 1,00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교육부 인문학진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과 유사·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부처 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15년도 예정처 검토보고서)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를 발표('14.8.6), 부처 통합 법률제정 등 적극적인 협업 체계 강화 추진 중 ▪교육부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학 중심의 인문강좌 운영 기반 강화('15년도 종합계획 반영)
▪인문학대중화 관련 객관적인 성과지표 보완 필요('15년 결산 교문위)	▪ '17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반영 -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지표 추가
▪인문도시 선정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비율 상향 필요('15년 결산 교문위)	▪ '17년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 인문도시 선정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비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권역별 균형 선정이 되도록 반영('17년도 종합계획 반영)
▪인문사회 분야 R&D 사업의 연구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한 협약기간 조정 등,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갈 것('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인문한국(HK)플러스지원사업의 연구개시일을 앞당겨 추진
▪법령에 부합하도록 2018년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간접비 지급 관련 법령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간접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당해연도 간접비 적용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지적사항	조치결과
▪인문전략연구지원 사업 지원대상자의 연구종료 후 상당기간 경과 시, 연구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추적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 ('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연구결과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문전략연구에 추적평가 제도 도입
▪HK교수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HK 사업종료 후 총괄평가를 통해 HK 교수(정년트랙)의 고용승계 등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며 협약 미이행 정도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18.8.)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NEH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ESRC (Economic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INSHS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학 분야의 연구와 자료보존, 연구성과의 활용 분야를 중점 지원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후속연구 활성화에 기여	○사회문제 해결 분야와 대규모 공동연구 및 소규모 개인 연구, 기관간의 네트워크, 워크숍, 사회적 확산·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 지원	○중장기 계획 하에 사회적 아젠다 중심의 연구를 전략 지원 ○전체예산의 66.7%를 사회문제 중심의 아젠다 연구분야 집중 지원	○상·하향식 연구지원의 능동적 결합을 통해 전략분야와 연구자 중심의 창의주제 분야를 병행하여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 지원	○창의적 주제와 융합연구, 연구성과의 확산·활용 분야를 지원하나, 융합연구에 우선순위를 두어 중점지원
○2010년도 예산 : 1,860억원 (연평균 15.7%증가)	○2009~2010년 예산 : 1,785억원 (연평균 7.9%증가)	○2009~2010년 예산 : 3,489억원 (연평균 14.5%증가)	○2010년도 예산 : 3조6,020억원 (연평균 25.5%증가)	○2009년도 예산 : 4,050억원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문학대중화 사업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4	4.4	4.6	4.65	최근 2년간('16~'17) 실적 평균(4.57) 및 '18년 목표치 평균(4.59) 대비 0.06%p. 상향하여 '18년 목표치를 4.65로 설정	인문학대중화사업 참여 일반 시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과제별 결과보고서
	실적	-	4.55	4.58	-	-			
	달성도	-	113.8	104.1	-	-			
인문사회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시민 참여자 수 (단위 : 명)	목표	신규	신규	156,000	184,600	184,750	'17년 실적치 및 '18년 목표치 평균(184,573명) 대비 0.1% 상향한 184,750명을 목표치로 설정	인문강좌, 인문도시, 인문주간, 우수 성과교류회,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에 참가한 시민참가자 수의 합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과제별 결과보고서
	실적	-	-	184,547	-	-			
	달성도	-	-	118.3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연구자) 인문한국 지원을 통해 구축된 연구성과 및 인프라가 사장되지 않도록 후속연구 지원 필요

□ (연구자) 인문학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융복합분야 지원 등 연구 주제 및 운영방식 다양화 필요

□ (연구자)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지원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인문한국$^{+}$(HK^{+})사업 2유형을 통해 기 지원종료 우수연구소 지원
- HK^{+} 2유형 : ('18) 28억원 → ('19) 45억원(17억원 증액)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인문학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운영비 반영
- 전담기관 : 한국연구재단
- '19 예산 : 전담기관 운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비 5억원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인문한국(HK)연구소 지원 및 연구인력(HK교수, HK연구교수) 육성

- 인문분야 연구소 27개(HK교수 175명, HK연구교수 118명 지원)
- 해외지역분야 연구소 16개(HK교수 62명, HK연구교수 57명 지원)
- (HK+) 인문기초학문, 해외지역, 소외·보호/창의·도전분야 연구소 총 9개 (HK교수 11명, HK연구교수 80명 임용 예정, 2018년 기준)

□ 우수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HK사업 개편

·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분야를 다양화하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지역인문학센터' 기능 부여

HK('07~'16)		
유형 다양화	Bottom-Up 선정방식	인문분야
		해외지역분야(일방향)
신설	-	-

사업 개편('17~)		
Bottom-Up 선정방식	인문기초 학문분야	소외·보호/ 창의도전 분야
	해외지역분야(쌍방향)	
Top-Down 선정방식	국가 전략·융복합 분야	

□ 세계인문학포럼 및 한·중 인문학포럼 지속 개최

- 세계인문학포럼
  - 제1회('11.11.24.~11.26., 부산 벡스코, UNESCO와 공동 개최)
  - 제2회('12.11.1.~11.3., 부산 벡스코, UNESCO와 공동 개최)
  - 제3회('14.10.30.~11.1., 대전컨벤션센터, UNESCO/대전광역시와 공동 개최)
  - 제4회('16.10.27.~10.29., 아주대학교, UNESCO/경기도/수원시와 공동 개최)
  - 제5회('18.10.31.~11.2., 부산 F1963, UNESCO/부산광역시와 공동 개최)
- 한·중 인문학포럼(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 개최)
  - 제1회('15.10.30.~10.31., 한양대), 제2회('16.11.4.~11.5., 중국사회과학원(북경)), 제3회('17.11.24.~11.25., 연세대), 제4회('18.10.26.~10.27., 중국사회과학원(북경))

□ 인문사회 연구 성과의 확산과 인문학 대중화 지원 확대

- 다양한 인문학 주제들로 석학인문 정규강좌(30회), 인문공감콘서트(6회), 청춘 인문강좌(5회) 개최 / 총 41회, 55,408명 참석(온라인 49,086명 포함)
- 온라인 인문강좌 신설(10강좌)로 온·오프라인 투-트랙* 방식의 맞춤형 인문강좌 실시

* (중장년·노년층) 오프라인 강좌, (청소년·청년층)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병행

< 현장의 변화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교육부, 문체부 공동),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마련

- 단절적·기관중심의 인문 교육·연구에서 연속적·종합적 인문 교육·연구 진흥으로 탈바꿈
- 양질의 인문학 연구 성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지원
- 인문학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17.1.25., 한국연구재단)

□ 인문학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매년 시행계획과의 연동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가능

□ 인문학대중화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및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이해도 제고

* '17년 실적 : (석학인문강좌) 총 41회(정규30강, 지방6강, 청춘5강), 총55,408명 참석, / (인문주간) 전국 27개 인문도시에서 232개 행사개최, 총128,514명 참석, / (한중포럼) 인문학분야 한중 양국의 우호적 학술분위기 조성, 625명 참석

[303] 한국학진흥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학진흥사업	20,120	16,522	15,272	△**1,250**	△**7.6**

* 사업코드 : 11- 0 - 050 - 052 - 2400 - 243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최원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기획 연구 및 세계 수준의 융합 학문적 한국학 연구를 지원 ○ 해외한국학 거점을 지원하고 학문 재생산의 원천인 인력 양성 강화 ○ 한국학 기초자료 수집과 체계화, DB 구축 및 한국학 사전 편찬 등 학술 연구의 토대가 되는 학문적 공공재 구축 강화 ○ 한국학 총서 지원 및 성과 공유로 대중과의 소통 확산
사업기간	'0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가. 글로벌 한국학 사업 : 9,861백만원

○ 한국학 세계화 랩 : 3,900백만원

▪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한 국제 비교 연구 지원으로 우수한 한국학 연구성과물(저서/SCI급 논문) 산출 (연간 300백만원 이내, 5년)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3,900백만원

(계속과제 12개×300백만원, 신규과제 1개×300백만원)

○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 3,841백만원

▪ 한국학 인프라가 일정 수준 구축된 대학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한국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3,841백만원

(계속과제 21개×167백만원, 신규과제 2개×167백만원)

○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 1,622백만원

▪ 한국학 초보 단계 지역의 해외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 기초단계의 교육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

▪ 산출내역 : 1,622백만원

(계속과제 22개×51백만원, 신규과제 10개×50백만원)

○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사업: 498백만원

▪ 한국인의 정신과 사상, 문화를 담은 고전을 엄선하여 영문으로 번역함으로써 한국 고전을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498백만원

(계속과제 6개×49백만원, 신규과제 4개×51백만원)

나. 한국학 인프라 구축사업 : 4,420만원

ㅇ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 2,980백만원

- 국학기초자료사업 : 1,980백만원

▪ 전국에 산재한 조선시대 고서 및 고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980백만원

(계속과제 5개×220백만원, 신규과제 4개×220백만원)

- 역사기초자료구축 : 200백만원

▪ 한국 고대사 및 중세사 연구 중점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200백만원(신규과제 2개×100백만원)

-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 800백만원

▪ 중앙허브 및 국가전적 소장기관 및 지방 권역센터, 해외한국학 자료 수집센터 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800백만원

(계속과제 2개×200백만원, 신규과제 2개×200백만원)

ㅇ 한국학 사전 편찬 : 800백만원

▪ 한국 고대사 및 중세사 연구 중점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800백만원

(신규과제 2개×150백만원, 신규과제 1개×500백만원)

ㅇ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 640백만원

▪ 한국사의 생생한 증언인 구술자료를 채록하고 DB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640백만원

(신규과제 4개×160백만원)

다. 한국학 지식확산 사업: 991백만원

ㅇ 한국학 총서 : 991백만원

▪ 개인 연구 및 공동 연구를 통한 테마별 총서 시리즈 출판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991백만원

(계속과제 5개 × 12백만원 = 60백만원
계속과제 1개 × 500백만원 = 500백만원
신규과제 4개 × 50백만원 = 200백만원
신규과제 21개 × 11백만원 = 231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학진흥	16,522	15,272
■ 글로벌한국학	(9,836백만원)	(9,861백만원)
-한국학세계화랩	(3,600백만원)국제 비교 연구 지원 12과제	(3,900백만원)국제 비교 연구 지원 13과제
-해외한국학중핵대학 육성	(4,218백만원)해외 대학의 한국학 거점 양성 25과제	(3,841백만원)해외 대학의 한국학 거점 양성 23과제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1,518백만원)한국학 초보 단계 지역의 해외대학 지원 33과제	(1,622백만원)한국학 초보 단계 지역의 해외대학 지원 32과제
-한국고전100선영문 번역	(500백만원)한국 고전 영문 번역 및 소개 11과제	(498백만원)한국 고전 영문 번역 및 소개 10과제
■ 한국학인프라구축	(4,728백만원)	(4,420백만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3,458백만원)	(2,980백만원)
· 국학기초자료	(2,558백만원)산재한 고서 및 고문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가공 11과제	(1,980백만원)산재한 고서 및 고문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가공 9과제
· 역사기초자료구축	(500백만원)한국 고대사 및 중세사 연구 중점 지원 5과제	(200백만원)한국 고대사 및 중세사 연구 중점 지원 2과제
· 한국학자료센터구축	(400백만원)한국학자료센터 개설 및 지원 2과제	(800백만원)한국학자료센터 개설 및 지원 4과제
-한국학사전편찬	(300백만원)한국학 관련 주제별 연구사전 편찬 2과제	(800백만원)한국학 관련 주제별 연구사전 편찬 3과제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970백만원)구술자료 채록 및 DB구축 5과제	(640백만원)구술자료 채록 및 DB구축 4과제
■ 한국학지식확산	(1,958백만원)	(991백만원)
-한국학총서	(1,958백만원)테마별 총서 출판 지원 21과제	(991백만원)테마별 총서 출판 지원 31과제

□ **지원 필요성**

○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국가브랜드 파워 12위(2014년 기준) 등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적 브랜드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해외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제대로 알리는 한국학 연구는 크게 부족**

- 종래의 한국학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교육과 연구 분야는 한국어학과 한국문학 중심으로 치우쳐 발달해온 경향이 있음. **한국학 발전 지역과 학문 분야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대두

- 한국학 연구 및 해외한국학 진흥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매력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소프트 파워***로서 이를 통해 우리의 국격(國格)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음.

  * 하드 파워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력 등 물리적 힘을 뜻한다면, 소프트 파워란 한 국가가 문화, 교육, 스포츠 등을 통해 자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매력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 예산 감액 시 기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유지 곤란으로 연구진행, 성과도출 등 사업운영 전반의 제한사항 발생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학진흥**	**20,120**	**16,522**	**15,272**	**△1,250**	**△7.6**
▪ 글로벌한국학	10,203	9,836	9,861	25	0.2
- 한국학세계화랩	3,600 (12과제x300백만원)	3,600 (12과제x300백만원)	3,900 (13과제x300백만원)	300	8.3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384 (26과제x168.6백만원)	4,218 (25과제x168백만원)	3,841 (23과제x167백만원)	△377	△8.9
-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1,725 (36과제x47.91백만원)	1,518 (33과제x46백만원)	1,622 (32과제x50백만원)	104	6.8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94 (12과제x41.17백만원)	500 (11과제x45백만원)	498 (10과제x49.8백만원)	△2	△0.4
▪ 한국학인프라구축	7,408	4,728	4,420	△308	△6.5
- 한국학기초자료	5,491.2 (25과제x219.6백만원)	3,458 (18과제x192백만원)	2,980 (15과제x198백만원)	△478	△13.8
- 한국학사전편찬	299.8 (2과제x150백만원)	300 (2과제x150백만원)	800 (3과제x266.6백만원)	500	1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1,618 (6과제x269.6백만원)	970 (5과제x194백만원)	640 (4과제x160백만원)	△330	△34
▪ 한국학지식확산	2,508	1,958	991	△967	△49.3
- 한국학총서	2,508 (30과제x83.6백만원)	1,958 (21과제x93백만원)	991 (31과제x31.96백만원)	△967	△49.3
□ **비목**(합계)	20,120	16,522	15,272	**△1,250**	**△7.6**
○ 연구개발출연금-연구활동비등(360-05)	20,120	16,522	15,272	△1,250	△7.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가. 글로벌 한국학 사업 :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성과물 도출

○ 지속적인 한국학세계화랩 설치를 통해 영향력 있는 저서 최소 250여권의 저서와 625여 편의 한국학 논문(SSCI급) 창출

※ 저술은 구미의 A급 학술출판사 출판 목표, 논문은 국제학술지 발표 목표

○ 전 세계적으로 한국학 거점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향후에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한국학 중핵대학이 없는 지역(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계속적 지원 확대

○ 해외 한국학 취약 지역 및 광범한 지역에서 한국학자 지원·육성

○ 국내외 한국학 수요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차세대 한국학 글로벌 리더 양성 및 지역전문가로서의 성장 지원

○ 한국 고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 학자와 학생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학고전 100선 영문번역 저서 60여권 발간 목표
- 고전번역의 용어 용례 제공을 통한 연구자 활용성 확대

※ 현재 33,000건 서비스, 향후 50,000건 추가 구축 예정

나. 한국학 인프라 구축사업 : 한국학 기초 자료의 학문적 공공재 구축

○ 한국 고문서 DB 20만건 구축 추진(미국 버클리 대학 소장 한국자료 및 일본 동양문고,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소장 한국자료 포함)

○ 한국학 자료집 150권 및 대구부 호적 대장 DB 완성

- 구비문학대계 130여권 발간 목표(2008년부터, 10년간)
-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목표(2009년부터, 10년간)

○ 한국학 테마사전 32권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 지원

다. 한국학 대중화 사업 : 한국학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확산

○ 한국과학문명의 발자취를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눠 국문판 30권, 영문판 7권 등 한국과학문명사 총서 37권 발간 목표(2010년부터, 10년간)

※ 한국과학문명사 총서의 영문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출판부 등에서 발간 예정

○ 왕실문화총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한국학 총서 발간

- 왕실문화총서 60권, 한국학 총서 300권 발간 목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0,120	▪ 글로벌한국학 9,709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600(12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384(26과제×168.61) - (해외한국학씨앗형) 1,725(36과제×47.9) ▪ 한국학인프라구축사업 6,717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4,799.2(18과제×266.62) - (한국학사전편찬) 299.8(2과제×149.9)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1,618(6과제×269.6) ▪ 한국학대중화사업 3,694백만원 -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 1,292(11과제×117.45) - (한국학총서) 1,908(26과제×73.4)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94(12과제×41)			
'18	16,522	▪ 글로벌한국학사업: 9,836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600(12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218(25과제×169) - (해외한국학씨앗형) 1,518(31과제×49)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500(11과제×45) ▪ 한국학인프라구축 : 4,728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3,458(18과제×192) - (한국학사전편찬) 300(2과제×150)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970(5과제×194) ▪ 한국학지식확산 : 1,958백만원 - (한국학총서) 1,958(21과제×93)	16,522	▪ 글로벌한국학사업: 9,836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600(12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4,218(25과제×169) - (해외한국학씨앗형) 1,518(31과제×49)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500(11과제×45) ▪ 한국학인프라구축 : 4,728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3,458(18과제×192) - (한국학사전편찬) 300(2과제×150)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970(5과제×194) ▪ 한국학지식확산 : 1,958백만원 - (한국학총서) 1,958(21과제×93)	
'19	16,770	▪ 글로벌한국학사업: 11,111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900(13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3,841(23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2,872(52과제×55.2)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98(10과제×49.8) ▪ 한국학인프라구축 : 4,4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800(3과제×26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1,239백만원 - (한국학총서) 1,239(50과제×24.8)	15,272	▪ 글로벌한국학사업: 9,861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900(13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3,841(23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1,622(32과제×50.7)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98(10과제×49.8) ▪ 한국학인프라구축 : 4,4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800(3과제×26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991백만원 - (한국학총서) 991(31과제×31.96)	△1,498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16,938	▪ 글로벌한국학사업: 11,079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900(13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4,008 (24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2,600(50과제×52)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571 (11과제×51.9) ▪ 한국학인프라구축 : 4,6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1,000(4과제×250)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 (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1,239백만원 - (한국학총서) 1,239(50과제×24.8)	15,225	▪ 글로벌한국학사업: 9,814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900(13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3,841 (23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1,622(32과제×50.7)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51(9과제×50.1) ▪ 한국학인프라구축 : 4,4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800(3과제×26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991백만원 - (한국학총서) 991(31과제×31.96)	△1,713
'21	17,107	▪ 글로벌한국학사업: 11,271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900(13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4,200 (25과제×168) - (해외한국학씨앗형) 2,600(50과제×52)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571 (11과제×51.9) ▪ 한국학인프라구축 : 4,6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 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1,000(4과제×250)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1,216백만원 - (한국학총서) 1,216(45과제×27)	14,921	▪ 글로벌한국학사업: 9,510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600(12과제×300)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3,841 (23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1,618(32과제×50.6)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51 (9과제×50.1) ▪ 한국학인프라구축 : 4,4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800(3과제×26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991백만원 - (한국학총서) 991(31과제×31.96)	△2,186
'22			14,771	▪ 글로벌한국학사업: 9,360백만원 - (한국학세계화랩) 3,450(12과제×287.5) -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 3,841 (23과제×167) - (해외한국학씨앗형) 1,618(32과제×50.5) - (한국고전100선영문번역) 451(9과제×50.1) ▪ 한국학인프라구축 : 4,420백만원 - (한국학기초자료)2,980(15과제×198) - (한국학사전편찬) 800(3과제×266.6) -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 640(4과제×160) ▪ 한국학지식확산 : 991백만원 - (한국학총서) 991(31과제×31.96)	
연평균 증가율 (%)	5.3		△2.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6,522	15,272	△1,25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86	172	△1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	11	0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7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0 - 인건비 총액 0원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 인건비 외 사업비 15,272백만원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연구개발) 89백만원 = 171.6 **□ 2018년 고용효과: 18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 규정」 제11조(전문기관)

○ 추진경위

- '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설립 및 육성법 제정
- '93년 <국학진흥사업> 시작
- '06년 "해외한국학진흥계획"(구 교육인적자원부) <해외한국학진흥사업> 시작
- '07년 "인문학진흥방안"(구 교육인적자원부) <인문학진흥사업> 시작,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기획사업단> 설치
- '09년 <한국학기획사업단>을 <한국학진흥사업단>으로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학진흥	216.44	-	221.24	226.24	-	201.20	-	165.2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1.24** **(221.24)**	- (5.41)	- (-)	221.24 (226.65)	**221.24** **(225.33)**	- (1.29)	- (0.03)
'16년	**226.24** **(226.24)**	- (1.29)	- (-)	226.24 (227.53)	**226.24** **(226.77)**	- (-)	- (0.76)
'17년	**201.20** **(201.20)**	( )	( )	201.20 (201.20)	**197.80** **(197.80)**	( )	3.40 (3.40)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0,120		16,522	-	16,522	16,522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6,522백만원 전액 집행 완료

- 글로벌한국학사업 9,836백만원
- 한국학인프라구축사업 4,728백만원
- 한국학대중화사업 1,958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해외한국학 성과지표 보완
  → 단순 참가기관 수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탈피,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적인 측면 보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한국학총서 출판매뉴얼 마련 필요
  → 총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출판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정한 출판매뉴얼 제정을 완료함

○ 2016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사업 발생이자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
  → 향후, 정책용역이 필요한 경우 "학술장학지원관 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을 추진
- 인문사회·한국학 분야의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 계획 수립 필요
  → '18년 사업 시행계획에 회계연도 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연 3회 (6/8/9월) 연구 개시 시점을 연2회 (6/9월)로 조정

○ 2018년 예산 교문위 지적사항

- 신규과제 선정 시 NTIS 유사도 검색 시스템 활용 필요
  → 향후 한국학 관련 정부 지원 연구과제 선정 심사 시, NTIS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에 반영

○ 한국학세계화랩 사업의 신규 선정 평가 시 "오픈평가" 도입 필요
  → 신규과제 평가 시 암맹평가를 오픈평가로 전환하여, 연구자의 업적 및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선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8년에는 3만 달러 달성이 예상되며, **해외 한국학분야 국가 전체 예산은 국민 1인당 0.55달러***로서 비슷한 소득 시기, 독일, 일본의 각각 3분의 1 또는 절반 수준에 불과

○ **GDP 대비 다른 국가의 예산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최소 2배 이상 예산 증액 필요**

〈표〉 해외한국학분야 예산[4)]

총지출(USD)	해외한국어	해외 연구 및 교류	1인당 지출*	GDP대비(%)
0.27억	0.053억	0.22억	0.55	0.00225

* 해외한국학 예산 현황 (2013년 기준) : 한국국제교류재단 + 한국학진흥사업단 + 세종학당 + 한국문화교류센터 = 2,700만 달러 (한화305억원, 2017년 기준)

〈표〉 1인당 국민소득 2~3만 달러 수준에서 국민 1인당 자국학 예산 지출액

구분	미국	독일	일본
1인당 GDP	0.6달러 ($20,000)	1.47달러($22,000)	0.91달러 ($20,000)
	0.93달러($24,000)	1.49달러($31,000)	1.15달러 ($30,000)

○ **한국학진흥사업단은 국내외 한국학 진흥이라는 연구 및 교육 지원 성격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관광개발" 이 목적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가야사 복원사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 향후 적극적 예산 증액** 필요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한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6년 기준 예산은 1,109억원으로서 **한국학진흥사업 예산 311억원 대비 3.6배** 수준이며,

** 충청권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자치단체가 화합해 **8천억원(국비 3천4백억원 포함)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가 '17. 12. 28. 확정 발표한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은 '찬란한 가야사 완전 복원과 경남 및 영호남 역사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년간 추진되는 사업비는 1조726억원임

4) 최동주 외, 『해외 한국학 중장기 발전방안』,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6) 사업추진절차

진 행 순 서	내 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별 시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홍보 및 참여 독려
신규사업 공고 접수·심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별 신규 사업 공고 및 접수 심사 사업공고→신청과제 접수→평가위원회 구성→평가실시→최종 과제 선정→ 결과 통보(주관연구기관)→이의 제기 과제 처리
심사결과 보고 및 신규 사업 협약	심사결과 **교육부** 보고 및 예비선정 후 수정계획서를 접수.검토 후 최종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
연차 및 단계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연차 및 단계평가 시행
연차 및 단계 평가 결과 보고	심사결과 **교육부** 보고 및 해당 과제별 사후조치 통보
사업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실적물 등 사후관리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외한국학 연구기관 지원 실적 (단위: 건)	목표	32	33	34	34	34	해외한국학 연구기관 선정대학 수를 목표치로 설정 ※한국학세계화랩, 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된 기관 수를 목표로 설정	해외한국학연구 참여기관 수 (계속+신규)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32	33	34	-	-			
	달성도	100	100	100	-	-			
해외한국학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	4.1	종전 실적치가 없어 점진적 증대를 위해 전반적 만족도를 4점 '만족' 수준으로 설정	해외한국학지원 사업 연구자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한국학중앙 연구원 과제관리 시스템 설문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2017 해외컨설팅(독일 베를린자유대) 요청사항

○ 독일 내 한국학 지원의 필요성 강조

- 교육부 정책과제 '한국학 중장기 발전 방안(2015)'에 따르면 독일은 한국학 지원국 4그룹 중 3순위에 해당하는 등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가 많지만 모두 인건비 지원 프로젝트임. 즉, 한국의 지원이 없어도 한국학자의 자리는 보전되지만, 학문적 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을 요청함.

□ 2017 한국학진흥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AKSE 학회장)

○ 사업 선정 및 평가 시 평가 소견의 구체화 요구

- 사업 선정 및 중간 평가 시 평가 소견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향후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함.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나 피평가자의 알 권리 역시 중요하므로 어떠한 부분에서 감점이 되었거나 탈락이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 2017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협의회 요청사항

○ 협의회 정례화의 필요성 제안

- 해외 한국학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의 정례화를 요구함. 기존 권역별 한국학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주요 사업성과>

□ **(세계화랩) 세계화 랩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물 산출**

○ 23개 연구팀의 124명의 우수 연구자 지원

- 미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이자 미국 내 동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빅터차 교수, 한국인 최초로 케임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유럽 문화인류학계의 우수한 학자로 뽑히는 권헌익 교수, 영미권 동양철학계에서 손꼽히는 학자이자 홍콩시립대 석좌교수인 필립 아이반호 교수 등 124명의 석학 및 우수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의 랩 연구팀의 Post-doc으로 참여하였던 박시내 박사의 경우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에 하버드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산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해외 저명출판사 및 학술지에서 저서 41권, 연구논문 143편이 출판

- 총 23개 랩을 지원하여 저서 110여권, 논문 330여편 도출 예정
- 2014년도에는 하버드대 Nicholas Harkness 교수의 "Songs of Seoul"(캘리포니아대 출판사), 위스콘신대 허욱 교수의 "South Korea's Rise"(캠브리지대 출판사), 2016년에는 조지타운대 빅터차 교수의 "Power Play"(프린스턴대 출판사), 서울대 문휘창 교수의"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옥스포드대 출판사), 2017년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선임부소장이자 조지타운대 교수 Michael Green 교수의"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콜롬비아대 출판사), 미국 Naval War College의 Terence Roehrig 교수의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콜롬비아대 출판사)와 같은 우수한 저서가 출판되어 해외 한국학 연구 및 교육에 활용 중.
- 하버드대 Nicholas Harkness 교수는 동 저술로 Edward Sapir Book Prize(세계인류학회가 수여하는 우수학술상)를 수상하였고, 허욱 교수는 동 연구결과물로 교육부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되었음.

헤럴드경제 'K-전략' 英 옥스포드대 출판부 출간 화제

기사입력 2016-05-25 11:40

[헤럴드경제=이윤애 기자]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기적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형철 교수의 저서 'K-전략'이 최근 영국 옥스포드대 출판부에서 출간돼 화제다. 옥스포드대에서 출간된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한국경제성장전략)'은 2012년 출간된 'K-전략'(미래의창)의 수정 보완판 격으로, 문 교수는 전작의 내용을 더 심화시키고 직접 영어로 기술했다. 한국학 책이 번역본이 아닌 영어로 출간된 것은 이례적이다.

THE STRATEGY FOR KOREA'S ECONOMIC SUCCESS

HWY-CHANG MOON

전작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와 일반사실을 담아 썼다면, 옥스포드대 출판본은 전 세계 독자들을 위해 저자가 30년동안 학자와 연구자로서의 삶을 담아 체계화시킨 학문적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교수는 책에서 한국의 성장비결로 흔히 대두되는 교육열, 유교문화, 재벌, 정부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냈다.

특히 한국경제 모델의 특징인 '짧은 시간 내에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낸 비결로 민첩성, 변칙마찰, 융합, 현상 등 네 가지 요소를 꼽아 ABCD모델을 제시한 게 새롭다. 옥스포드대 출판본는 이 책의 "ABCD모델이 과거의 한국처럼 발전도상에 있는 다른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K-전략' 英 옥스퍼드대 출판부 출간 화제 (헤럴드 경제, 2016.05.25.)>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 노래 잘하는 이유 5가지

[조문산 기자/인턴] 2016.03.17 11:28

'막놀녀세가 난다' '성격이 급하고 무례하다' '부지런하고 수학을 잘한다'

서양 사람이 한국인에게 가진 고정관념이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해도 한번 박힌 (악간은 인종차별 냄새도 풍기는) 고정관념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수정가하는 고정관념도 있는데, 바로 노래 실력이다. 한국인은 확인의 '소질' 가득한 창법을 좋아하지만, '한국' 하면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떠올리는 서양 사람이 꽤 많다.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안 망하는 이유는, '악마의 편집'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줄입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힘과 일도기 때우 높기에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시실리(노래 잘하는 사람을 많이 배출한 이탈리아의 지방)'라 불리기도 한다. 일본의 인기 가수들은 한국계라는 루머가 많이 돈다.

그 이유, 그 루머를 찾아 하난 외국인이 있다. 하버드대 니콜라스 하크니스 교수(인류학). 그는 2014년 한국 노래의 근원을 찾아 인류학적 모험을 떠났다. 하크니스 교수는 한국의 의식소통과 문화에 대해 기호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다. 특히 한국에 조예가 깊다. 한국의 종교와 언어, 도시 등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2014년 출판한 "서울의 노래: 한국 기독교의 목소리에 관한 인류지학 (Songs of Seoul: An Ethnography of Voice and Voicing in Christian South Korea)"은 인류학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인류학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에드워드 새피어상을 수상했다. (아십게도 책은 아직 국내에 번역돼 있지는 않다.)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 노래 잘하는 이유 5가지 (Korea Daily, 2016.03.17.)>

BOOKS / REVIEWS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 Timely lessons from history

BY IAN BUCKLEY

SPECIAL TO THE JAPAN TIMES

"By More Than Providence" is an overview of U.S.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1783. Michael J. Green first examines the rise of the U.S. in this arena from independence to Theodore Roosevelt. He then turns his attention to Japa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and China from 1989 to the present day. The final chapter is an examinat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pivot to Asia.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 by Michael J. Green. 760 pag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onfiction.

Green served on President George H.W. Bush's National Security Council until 2006, producing strategic planning documents on the region, and this book combines his academic expertise with a firsthand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foreign policy and statecraft. When he describes U.S. statecraft in Asia in the decades leading up to WWII as "the worst in the history of American grand strategy," for example, it has a convincing heft.

APR 8, 2017

ARTICLE HISTORY

PRINT SHARE

PHOTOS

CLICK TO ENLARGE

KEYWORDS

HISTORY, ASIA,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Book Review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The Japan Times, 2017.04.08.)

By Gordon G. Chang April 7, 2017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

By Michael J. Green

Illustrated. 725 pp. Columbia University Press. $45.

It was "by more than Providence" that the United States,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two centuries, became the pre-eminent power in Asia and the Pacific. Commerce, faith and notions of self-defense drove Americans westward, not only across a continent but also a wide expanse of ocean, says Michael J. Green, who served as special assistant to President George W. Bush and senior director for Asia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Modern America's pre-eminence in the Pacific was no accidental byproduct of victory in the Second World War, as many cursory histories suggest," Green writes in "By More Than Providence," his important and comprehensive study of America's relations with the region. "It has intellectual roots going back to the handful of New Englanders who first carried Bibles, ginseng and visions of Pacific empire to the Far East."

As they moved across the Pacific, restless Americans took control of geographical specks like the Sandwich Islands — now called Hawaii — Samoa and Guam. The prize of the war with Spai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as the Philippines. In the process, Asia became America's neighbor, as President Polk's Treasury secretary, Robert Walker, declared.

<Book Review "By More than Providence: Grand Strategy and American Power in the Asia Pacific Since 1783"(The New York Times, 2017.04.07.)>

□ **(중핵대학) 해외 유수 대학을 한국학 교육의 거점으로 지정하여 해외 한국학 연구 인력 증원**

○ 지역별 유수 대학을 중핵대학으로 선정, 집중 지원하여 17개국 41개 대학에서 899명의 학·석·박사 과정 한국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장학생 중 22명은 미국 듀크대, 플로리다대 등 지역별 명문 대학에 정규 교원으로 진출 성공

○ 중핵대학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한국학 교수는 총 31명으로, 해외 유수 대학의 한국학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함.

○ 2017년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일본 히토츠바시대(一橋大學) 2개 대학의 한국학연구소를 신규 개설하여 현재까지 총 9개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었음.

<미국 조지워싱턴대에도 한국학연구소 설립 (연합뉴스, 2017.01.13.)>

'한국학'은 한국을 홍보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의 이은정 교수를 정회원으로 선출했다. 1700년에 시작된 프로이센 왕립 아카데미의 후신으로 300년 역사를 가진 이 학술원에서 아시아 출신 학자의 이름이 호명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학자로서 가장 큰 영예를 안게 된 이은정 교수를 3월 초 서울에서 만났다.

죽어 한사를 전해지 않스러워 하며, 혹시 소식을 알리는 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 교수의 아카데미 회원 선출 소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독일 내 한국학의 현재 위상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학술원은 이 교수를 선출한 이유로 두 가지를 거론했다. '독일 내에 새로운 차원의 한국학을 개설한 공로와 학문적으로 '정치사상사에 새로운 분석틀을 도입하여 상호문화적인 연구를 개척한 것을 높이 산다고 했다.

"저로서는 그동안 그냥 계속해온 일인데 그 점이 인정받았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회원선출 심사를 오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심사대상이란 것도 몰랐어요. 학술원 선발 과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요. 지난해 여름에 학술원 회장으로부터 회원선출을 수락하면 겨울나고 봄는 분지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지요. 11월 가을에 포츠담에서 아카데미 모든 회원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어요. 이번에 9명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프랑스 생화학자, 미국의 역사학자,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모두 여성이었어요."

□ **(중핵대학) 해외 참여 연구자의 수상 및 승진을 통한 연구 기반 구축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베를린자유대 이은정 교수는 그간의 한국학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인 최초로 지난 2016년 11월 베를린-베란덴부르크 학술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음. 위 학술원은 1700년에 라이쁘니츠가 세운 프러시아 왕립학술원의 후신이며, 정회원은 전 세계 180명 규모임.

○ SOAS 중핵대학 사업에서 Research Fellow 지원을 받은 Deborah Smith 박사는 2016년 한강 작가의 <The Vegetarian> 번역으로 맨부커 상 공동 수상

○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캠퍼스 Todd Henry 교수는 중핵대학 신청 당시 조교수(비종신직)이었으나, 2013년부터 중핵대학 사업 선정을 이끌어내고 그간의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성과를 인정 받아 학교에서 2015년 7월 한국학 종신 교수로 임용됨.

□ **(씨앗형) 열세지역 해외 한국학 지원을 통한 한국학 교육기반 확충**

○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씨앗형 사업을 통한 전 세계 한국학 교재 출판(90권 출판 완료)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폴란드 바르샤바대 안나 파라돕스카 교수는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폴란드 사전을 편찬하고 있으며, 더불어 폴란드 최초로 동양어 중 e-book으로 한국어 사전을 출간해 한국어 연구 및 교재로 활용할 예정임.

<안나 파라돕스카 교수 "한국어 매력,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한국일보, 2016.08.23.)>

<러시아 언론매거진 Magarif에 보도된 러시아 카잔연방대학교 국제한국학세미나(Magarif, 2016.10.29.)>

○ 씨앗형 사업 지원을 통해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학교는 2017년 상반기에 서아프리카 최초로 한국학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씨앗형 사업을 지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틸렌보쉬대, 이집트 아인샴스대,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 이어 서아프리카 지역에도 한국학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아프리카 대륙 동·서·남·북 모두 한국학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게 됨

○ 칠레 센트럴대학교(UCEN)는 2018년 4월 중남미 최초로 한국학 전공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학교의 경우 중국학, 일본학을 제치고 2013년부터 한국학 학부전공과목 개설하고 현재 석사과정까지 개설해 남미에 한국학자 1세대를 육성하여 한국학 교육 기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코트디부아르 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 한국학 석사과정 신설"(연합뉴스, 2017.05.15.)>

<"칠레에 한국학 석사학위 개설 경제교류가 문화교류로 번져" (한국경제, 2017.12.21.)>

○ 또한 2016년 필리핀 국립대학교 및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 및 국립필리핀대, 2017년 대만 가오슝대학교, 페루 리카르도팔마대 등 에서 한국학 연구소가 개설되는 등 한국학 열세지역에 한국학 센터를 개설하여 한국학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음.

○ 씨앗형 사업으로 총 31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한국학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장학생 중 38%가 교원 또는 한국학 상위 학위과정(석·박사)으로 진학하는 등 한국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

※ 2014년 선정 씨앗형 사업의 장학생 진로추적 결과(결과평가 종료과제)

구분	교원진출	진학(한국학 석·박사 과정)	취업	기타(미졸업 등)	계
학생수(명)	13	4	8	22	47
비율	28%	8%	17%	47%	100

□ 해외 소장 한국자료 발굴, 정리 및 DB화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 문고 소장 한국자료 2,500여점을 조사하던 중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함.

○ 가와이 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1873~1918) 박사가 수집한 자료를 교토대가 구입한 것으로, 연구사업 수행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귀중한 문서도 많지 못하며, 위조문서가 많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음.

* 강순애,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2008, 66쪽

○ 그러나 조사 결과 추사 김정희의 친필 시첩인 「노설첩」,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가장본(家藏本) 등 목록에 없는 자료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둠.

○ 본 사업을 통한 장기 지원 결과 연구팀과 일본 대학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교섭 및 신뢰의 결과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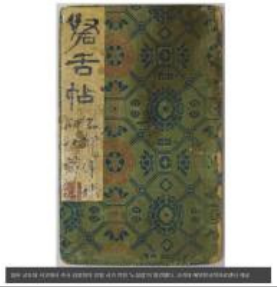

<추사 시첩 '노설첩' 등 조선후기 고문헌 수천점 찾았다(한국일보, 2017.2.27.)>
<조선시대 학술-예술 희귀 자료... "수십년 연구거리 나왔다(동아일보, 2017.2.27.)>

□ 한국학진흥사업 연구성과 확산

○ 성과포털서비스 개선 및 구글 등 종합 포털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함.

- 구글, 네이버, 연구재단 등 다른 종합 포털 시스템과의 연계, 사이트 시인성 및 검색 편의성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 ('16년 32만명 → '17년 52만명)

한국학진흥사업 결과물 503,084건(2017신규 DB 60,181건 구축)을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서비스(http://waks.aks.ac.kr)에 탑재하여 종합포털서비스와의 연계 진행

<현장의 변화>

□ 한국학진흥에 대한 해외한국학자의 인식변화로 지원 경쟁률 심화

○ 글로벌한국학사업은 해외 지원자 급증으로 지원자 대비 선정 비율이 랩사업(20.7%), 중핵사업(34%), 씨앗형사업(26.3%), 고전100선영문번역(41.2%) 으로 지원자 대비 예산 부족.

※ 랩 사업은 누적 기준, 중핵, 씨앗형사업, 고전100선영문번역은 '17년도 기준

□ '한국학부' 설치를 통한 한국학 연구 심화 및 인재 양성 토대 구축

○ K-pop, 한류 등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해외 각 권역의 관심이 학문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학과 개설 또는 한국학부 개설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2015. 1. 전세계 최초로 베트남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과가 한국학부로 승격, 2015. 9. 유럽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명문대학인 스페인 살라망카대에 한국학과가 개설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스페인 지역 한국학 발전 및 확산의 토대 마련

□ '해외 한국학 홍보 강화'를 통한 한국학 관심제고 및 저변 확대

○ 해외사업설명회, News letter, 한국학 우수 성과 Review 등 지속적인 한국학 홍보로, 해외 한국학의 인지도 제고

○ 한국학의 지속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및 권역에 대한 지속적 Monitoring, 한국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지 및 동기 부여,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현장 요청 사항>

□ 해외 한국학 상승효과 극대화를 위한 각 기관 연계프로그램 활용 강화

○ 한국학 도입 열세지역에 대한 '한국학' 관심유도, 연구 심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학문후속세대양성,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강의교수파견・E-school,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육 등 국내 각 기관 프로그램의 연계강화를 통해, 한국학 보급, 발전, 확산, 심화를 위한 상승효과 극대화

※ 학과(부) 설치 등 한국학 인프라구축을 위한 강의교수지원, 한국학 커리큘럼 및 컨텐츠 개발, 한국학 연구성과물 보급 등에 대한 한국 각 기관의 적극적 지원 요청

□ **현지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 강화방안 모색**

○ 제2외국어서로서 현지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도입 장려를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학 등으로 관심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관련 기사>

▷ **한국어 수업이 아닌 한국학 수업이 필요해요 (시사저널, 2016. 11. 24.)**

- 한국문화와 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학문적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국학 공부 및 연구가 필수적인데 한국학 수업이 턱없이 부족함.

[306] 사회과학연구지원(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사회과학연구지원	27,652	26,870	26,085	△785	△2.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경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가·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집단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10～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연구집단지원과제 및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소형/중형/대형) 등 50여 과제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회과학연구지원 : 26,085백만원**

▪ **연구집단지원과제 :** 1과제 × 270백만원 = 270백만원

▪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 25,815백만원

· 소형(계속) 17개 내외 × 평균 135백만원 = 2,295백만원

· 대형(계속) 40개 내외 × 평균 588백만원 = 23,5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사회과학연구지원	**26,870백만원**	**26,085백만원**
▪ 연구집단 지원과제	270백만원 (1과제 × 270백만원)	270백만원 (1과제 × 270백만원)
▪ 우수연구집단 육성과제	**26,600백만원** · 소형: 2,444백만원 (19과제 내외×135백만원) · 중형: 2,400백만원 (8과제 내외×300백만원) · 대형 : 21,756백만원 (37과제 내외×588백만원)	**25,815백만원** · 소형: 2,295백만원(17과제 내외×135백만원) · 대형 : 23,520백만원 (40과제 내외×58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쟁과 융합'**의 과정을 통한 **소형(연구팀)→중형(연구단)→대형(센터)의 단계적 성장모형**으로 설계

※ '10년도 소형으로 시작한 과제가 '16년도에 최초로 대형과제인 연구센터(17개)로 발돋움

-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 제고

- 연구팀 간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 유도

【SSK사업의 단계 진입 시 성장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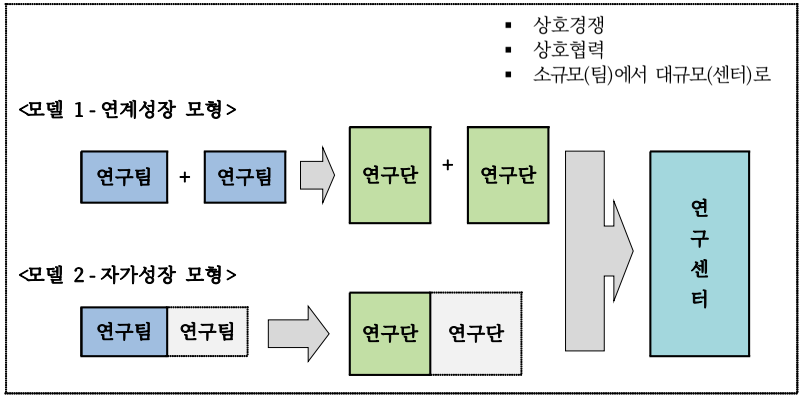

○ 사업의 **최초 설계 당시 목표는 소형 연구팀 300개를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SSK 소형연구팀 중 15%만 대형연구센터로 성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형연구센터(전임교원 300명당 1개 센터) 45개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나,

- '14~'16년 소형 신규과제 예산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250여개 내외 연구팀만 선정하여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

- 기존 아젠다 외에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및 당면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신규 아젠다 지원은 2기 사업('20년~) 설계 시 반영하여 지원 필요

< 예시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트랜드 >

구분	2014	2015	2016
1	중동, 북아프리카의 사회적 긴장 고조	소득 불균형 심화	난민 위기
2	소득 불균형 확대	치솟는 실업률	기상이변
3	지속되는 구조적 실업	리더쉽 실종	기후변화대응 실패
4	사이버 위협의 심화	지정학 갈등 고조	국가 간 갈등
5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책	정부에 대한 불신	자연재해
6	경제정책에 있어 자신감상실	환경오염	국가통치구조 실패
7	리더십의 가치 부족	기후변화	실업 불완전 고용
8	아시아 중산층의 확대	국가주의 심화	데이터 범죄
9	메가시티의 중요성 증대	물 부족	물 위기
10	온라인오보의 빠른 확산	의료 격차	부정거래

< 예시 : 다보스 포럼 주제 및 내용 >

※ 2016년 다보스 포럼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학문후속세대 및 지역우수인력에 대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지원**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간접 일자리 제공

- 지역 연구자를 고려한 "지방화와 상생발전" 등 연구의제 설정으로 지역우수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사회과학연구지원**	**27,652**	**26,870**	**26,085**	**△785**	**△2.9**
▪ **연구집단지원과제**	**300** (1과제x300백만원)	**270** (1과제x270백만원)	**270** (1과제x270백만원)	-	-
▪ **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27,352**	**26,600**	**25,815**	**△785**	**△3.0**
- 소형	1,620 (13개x124.6백만원)	2,444 (19개x128.63백만원)	2,295 (17개x135백만원)	△149	△6.1
- 중형	7,800 (26개x300백만원)	2,400 (8개x300백만원)	-	△2,400	순감
- 대형	17,932 (31개x578.45백만원)	21,756 (37개x588백만원)	23,520 (40개x588백만원)	1,764	8.1
□ **비목**(합계)	**27,652**	**26,870**	**26,085**	**△785**	**△2.9**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7,652	26,870	26,085	△785	△2.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과학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과학 각 분야의 대형연구센터의 전략적 육성 필요**

- 정부정책 연계지표 개발을 통한 연구결과의 국가·사회적 기여 반영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간접 일자리 제공

○ 사업 기본 모형은 '**경쟁과 융합**'을 통한 SSK 대형연구센터 육성으로, **소형**(연구팀)→**중형**(연구단)→**대형**(연구센터) **단계적 성장**을 통한 **Agenda 중심의 융합연구 추진**

-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경쟁력 제고
- 연구팀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소통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 융합을 통한 성장 유도
- 따라서, **단계적 성장구조**(소형→중형→대형)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소형, 중형, 대형 지원과제 조정 필요**

※ (소형) '17년(11개), '18년(6개) 선정 소형과제 계속 지원 필요 / (중형) '19년 대상과제 없음 / (대형) '10년(15개), '11년(13개), '12년(8개), '13년(4개)에 소형으로 시작한 과제(총 40과제)를 대형연구센터로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7,652	▪ 연구집단지원 : 30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7,352 - 소형 : 12개×평균135=1,620 - 중형 : 25개×평균300=7,500 - 대형 : 31개×평균588=18,232	-	-	-
'18	26,870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6,600 - 소형 : 19개×평균135=2,444 - 중형 : 8개×평균300=2,400 - 대형 : 37개×평균588=21,756	26,870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6,600 - 소형 : 19개×평균135=2,444 - 중형 : 8개×평균300=2,400 - 대형 : 37개×평균588=21,756	-
'19	25,243	▪ 연구집단지원 : 30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4,943 - 소형 : 11개×평균135=1,423 - 대형 : 40개×평균588=23,520	26,085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5,815 - 소형 : 17개×평균135=2,295 - 대형 : 40개×평균588=23,520	842
'20	25,495	▪ 연구집단지원 : 30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5,195 - 소형 : 56개×평균135=7,519 - 중형 : 6개×평균300=1,800 - 대형 : 27개×평균588=15,876	17,457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17,187 - 소형 : 5개×평균135=775 - 중형 : 6개×평균300=1,900 - 대형 : 24개×평균588=14,512	△8,038
'21	25,750	▪ 연구집단지원 : 300 ▪ 우수연구집단육성 : 25,450 - 소형 : 83개×평균135=11,218 - 중형 : 20개×평균300=6,000 - 대형 : 14개×평균588=8,232	10,338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10,068 - 중형 : 9개×평균300=3,000 - 대형 : 11개×평균588=7,068	△15,412
'22	-	-	5,622	▪ 연구집단지원 : 270 ▪ 우수연구집단육성 : 5,352 - 중형 : 8개×평균300=2,600 - 대형 : 4개×평균588=2,752	-
연평균 증가율 (%)	△1.8		△32.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26,870</td><td>26,085</td><td>△785</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302</td><td>293</td><td>△9</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1.2</td><td>11.2</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293.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회과학연구지원 261억원을 <표3>의 ‘연구개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261억원 ÷ 0.89억원 = 293.1명

□ 2018년 고용효과: 301.9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신규과제 예산 지속 확보를 통해 전임연구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등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10) 한국사회기반연구지원사업(SSK) 신설
- ('11)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으로 분리 개편
- ('12)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추진 구조 개편
  ※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방안,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등 → 개인연구군/집단연구군/성과확산군/국제교류군으로 구조화
- ('13) 2단계 중형연구단 38개 최초 선정, “SSK-정부정책연계지원사업” 신설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규정 정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 ('14) 중형연구단 신규 5과제 최초 선정
- ('16) 대형연구단 신규 17과제 최초 선정, “SSK-Networking사업”과 “SSK-성과·홍보확산사업” 통합
- ('17) 대형연구센터 14과제 선정, 소형연구팀 신규 13과제 선정
- ('18) 대형연구센터 8과제 선정, 소형연구팀 신규 6과제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사회과학연구지원	297	297	273.65	271	271	276.52	276.52	26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3.65 (273.65)	( )	( )	273.65 (273.65)	273.65 (273.65)	( )	0 (0)
'16년	271.00 (271.00)	( )	( )	271.00 (271.00)	271.00 (271.00)	( )	0 (0)
'17년	276.52 (276.52)	( )	( )	276.52 (276.52)	276.52 (274.94)	( )	0 (1.58)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7,652	27,652	24,870	2,000	26,870	26,870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신규 소형과제) 6개 X 135백만원 = 824백만원
- (계속 대형과제) 2개 X 588백만원 = 1,176백만원

○ 집행현황

- 연구집단지원 : 270백만원
- 우수연구집단육성 : 26,60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기과제(우수연구집단육성과제) 평가체계의 형평성 제고 필요 ('15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평가위원들에게 선정 및 탈락 점수구간을 비롯한 평가방법 및 평가방향,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평가의 형평성 제고
▪단기과제(연구집단지원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수행 필요 ('15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16년에 SSK 성과홍보·확산지원과제와 SSK 네트워킹 지원과제를 통합하여 단기과제의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
▪인문사회 분야 R&D 사업의 연구개시일을 앞당기기 위한 협약기간 조정 등,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갈 것 ('16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동 사업의 철학 및 특징*을 고려하여 2기 사업 기획 시 반영·추진 * '경쟁과 융합'의 과정을 통한 단계적 성장 모형에 따라, 다른 선정연도 과제 간 연합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과제별 종료시기 일치 필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영국	중국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ESRC (Economic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Council,)	CAS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 2003년부터 '인문·사회과학 진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5개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구 추진(연구기간 3~5년)	○ 2005년부터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제적·국제적 협력 연구를 강화하는 7대 연구영역을 제시하고 연구센터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전략적 특정연구지원 : SRI)를 추진 중	○ 중국과학원 철학사회과학학부를 기반으로 '77년 "중국사회과학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3,000여명의 연구원 포함, 4,000여명의 직원 근무)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문사회 국제적 연구역량 향상도 (단위 : %)	목표	6.5	7.0	종료	종료	종료	-	성과논문 중 국제저널 게재 논문 비율(국제저널 논문수/전체 논문수)*100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기준
	실적	7.5	7.0	-	-	-			
	달성도	125	100	-	-	-			
SCI급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평균 (단위 : 지수)	목표	-	-	51.0	51.6	51.8	최근 3년간('15~'17) 실적 평균(50.9)과 '18년 목표치의 평균(51.25) 대비 0.2%p. 상향하여 '19년 목표치를 51.8로 설정	∑SCI급 논문의 mrnIF / SCI급 논문 건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기준
	실적	-	-	51.19	-	-			
	달성도	-	-	100.4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연도별 지원과제 수 현황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연구자) SSK사업 대형센터 연구수행 후에 종료연구소 등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예산(안) 반영사항 >

□ 2기 사업(2020년~)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시 후속지원 방안 등도 포함하여 검토 예정

※ 1기 사업 종료 시기(2019년)를 고려하여 2019년 소형 신규 예산은 미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SSK 대형연구센터 설립 및 박사급 전임연구인력 육성

- ('16) 대형연구센터 17개(박사급 전임연구인력 68명 지원)
- ('17) 대형연구센터 31개(박사급 전임연구인력 124명 지원)

□ 사회과학분야 연구성과(논문, 저역서) 산출지수 지속 향상

- ('14) 651편 → ('15) 1,272편 → ('16) 1,318편 → ('17) 1,751편

< 현장의 변화 >

□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연계 강화 및 입법화를 통해 연구 결과의 국가, 사회적 기여도 제고

- 실증적 사례연구를 통한 실용학문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사회과학의 현장성을 담보하는 실증적 사회과학분야 연구환경 기대
- 정부정책의 선제적 연구지원 활동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 기대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연구단계별 목표 >

구분	소형 : 연구팀 (Research Clan)	중형 : 연구단 (Research Cluster)	대형 :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연구 기간	3년(2+1)	3년(2+1)	4년(2+2)
단계별 목표	-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한 기틀 마련	- 집단연구 거점 형성 및 중장기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 세계적 수준 문제해결형 Agenda 특화 연구센터 육성 -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Think Tank 기능
연구 활동	- 연구기반 구축 및 기초연구 - 학문의 다변화에 따른 사회과학 분야 학제간 연구 - 타 학문 분야와의 교류 연계 활동	- 연구 아젠다의 확장과 심화 - 사회과학분야 장기 응용연구 - 거점대학 연구시설 및 공간 확보	- 연구성과 집약 및 확산을 통한 지식의 체계화 - 국내외 대학간 국제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 필요 시 한국사회 특정 Agenda분야 정책지원 공급 허브 육성
연구비	연간 1억 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간 2.3억 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간 4.5억 원 이내 (간접비 별도)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공동연구원(일반공동/전임연구) 2명 이상	[참여연구원 7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일반공동연구원 4명 이상(최소요건) -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최소요건)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참여연구원 14명 이상] - 연구책임자 1명 - 일반공동연구원 9명 이상(최소요건) - 전임연구인력 4명 이상(최소요건) - 행정지원인력(Staff) 1명

참고 3 연도별 지원과제 수 현황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10년 선정	(소형) 92과제 최초선정 ('10년)	(소형) 92과제 컨설팅평가 ('11년)	(소형) 83과제 연차평가 ('12년) ※ 하위 10% 9과제 탈락	(중형) 38과제 단계평가 ('13년) ※57개 연구단으로 연합 하위 33%인 19과제 탈락	(중형) 38과제 컨설팅평가 ('14년) ※탈락없음	(중형) 30과제 연차평가 ('15년) ※하위20% 8과제 탈락	(대형) 17과제 단계평가 ('16년) ※25개 연구센터로 연합, 하위 32% 인 8과제 탈락	(대형) 17과제 컨설팅평가 ('17년) ※ 탈락없음	(대형) 15과제 연차평가 ('18년) ※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	(대형) 15과제 ※지원종료
'11년 선정	-	(소형) 71과제 최초선정 ('11년)	(소형) 71과제 컨설팅평가 ('12년)	(소형) 61과제 연차평가 ('13년) ※ 하위 13% 10과제 탈락	(중형) 29과제 단계평가 ('14년) ※ 44개 연구단으로 연합, 하위 34%인 15과제 탈락	(중형) 29과제 컨설팅평가 ('15년) ※탈락없음	(중형) 25과제 연차평가 ('16년) ※하위 14% 4과제 탈락	(대형) 14과제 단계평가 ('17년) ※14년 선정과제 포함 26개 연구센터로 연합, 하위 46%인 12과제 탈락	(대형) 14과제 컨설팅평가 ('18년) ※탈락없음	(대형) 13과제 연차평가 ('19년) ※ 하위 10% 내외 탈락 가능
'12년 선정	-	-	(소형) 43과제 최초선정 ('12년)	(소형) 43과제 컨설팅평가 ('13년)	(소형) 37과제 연차평가 ('14년) ※41과제 중 하위 10% 4과제 탈락, 2과제는 바로 중형으로 연합 신청	(중형) 19과제 단계평가 ('15년) ※30개 연구단으로 연합, 하위 37% 11과제 탈락	(중형) 19과제 컨설팅평가 ('16년) ※탈락없음	(중형) 16과제 연차평가 ('17년) ※ 하위16% 3과제 탈락	(대형) 8과제 단계평가 ('18년) ※ 하위 50% 내외 탈락 예정	(대형) 8과제 컨설팅평가 ('19년) ※탈락없음
'13년 선정	-	-	-	(소형) 23과제 최초선정 ('13년)	(소형) 23과제 컨설팅평가 ('14년) ※ 탈락없음	(소형) 18과제 연차평가 ('15년) ※ 하위 17% 4과제 탈락 1과제는 바로 중형으로 연합 신청	(중형) 10과제 단계평가 ('16년) ※15개 연구단으로 연합, 하위 33% 5과제 탈락	(중형) 10과제 컨설팅평가 ('17년) ※ 탈락없음	(중형) 8과제 연차평가 ('18년) ※ 하위 20% 내외 탈락 예정	(대형) 4과제 단계평가 ('19년) ※ 하위 50% 내외 탈락 예정
'14년 선정	-	-	-	-	(중형) 5과제 최초 선정 ('14년)	(중형) 5과제 컨설팅평가 ('15년) ※탈락없음	(중형) 3과제 연차평가 ('16년) ※하위 40% 2과제 탈락	(대형) 0과제 단계평가 ('17년) ※'11년 선정과제 포함 단계평가결과 3과제 탈락	(대형) 0과제	(대형) 0과제
'17년 선정	-	-	-	-	-	-	-	(소형) 13과제 최초선정 ('17년)	(소형) 13과제 컨설팅평가 ('18년)	(소형) 11과제 연차평가 ('19년) ※하위 15% 2과제 탈락
'18년 예정	-	-	-	-	-	-	-	-	(소형) 6과제 최초선정 ('18년)	(소형) 6과제 컨설팅평가 ('19년)
총 지원 과제 수	소형 92개 (신규)	소형 163개 (신규71, 계속92)	소형 197개 (신규43, 계속154)	소형 127개 (신규23, 계속104) 중형 38개 단기과제 4개 <총 169개>	중형 72개 (신규5, 계속67) 소형 60개 단기과제 3개 <총 135개>	중형 83개, 소형 18개, 단기과제 3개 <총 104개>	대형 17개, 중형 57개 단기과제 1개 <총 75개>	대형 31개, 중형 26개, 소형 13개(신규) 단기과제 1개 <총 71개>	대형 37개, 중형 8개, 소형 19개 (신규6, 계속13) 단기과제 1개 <총 65개>	대형 40개, 소형 17개, 단기과제 1개 <총 58개>

[301]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7,918	29,023	29,292	**269**	**0.9**

* 사업코드 : 11 - 0 - 050 - 052 - 2400 - 2433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최원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한국문화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교육
사업기간	'7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인건비 : 16,044백만원(전년대비 284백만원 증가)

- 산출내역: 210명 × 76.4백만원 ≒ 16,044백만원(전년대비 1.8%증가)

2 경상경비 : 2,486백만원(전년대비 29백만원 증가)

- 산출내역:
  · 2018년도 기존 운영비 : 2,457백만원
  · 공익근무요원(7명) 및 청소,차량, 방호 용역인력의 무기계약직전환에 따른 급여증가분(23명): 29백만원

3 건축비: 387백만원(공사기간: 총5년, 총공사비: 296.2억원)

- 산출내역: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신축: 387백만원(1차년도, 기술용역 및 기타부대비용) 《참고7》 참조

4 기관고유사업비 : 14,689백만원(전년대비 364백만원 감액)

① 연구사업 : 3,132백만원(전년대비 443백만원 감액)

< 사업개요 >

- 민족문화 유산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미래 한국학의 연구방향 제시 및 한국학 학술진흥에 기여

○ 한국학기초 및 중점 연구: 925백만원

▪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의제와 과제를 개발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성과 양산

▪ 산출내역: 37과제 × 25백만원

○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300백만원

▪ 고전자료의 탈초·역주를 통한 국내외 연구 저변 확대

▪ 산출내역: 9책×33.3백만원

ㅇ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 : 200백만원**

▪ 한국의 전통인문정신문화 관련 대중교양총서 발간,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 산출내역: 5과제 × 40백만원

ㅇ **연구·교육 연계 : 200백만원**

▪ 한국학대학원 수업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공동연구를 통한 DB, Working Paper, 보고서, 번역, 저술, 학술지 논문 등의 우수한 연구 결과물 양산

▪ 산출내역: 10과제 × 20백만원

ㅇ **장서각 소장 한글 기록문화 유산 집대성 : 300백만원**

▪ 장서각 소장 한글 기록문화 유산을 집성하여 심화연구.문화유산 향유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글 기록문화 연구의 중추적 기틀 마련

▪ 산출내역: 10과제 × 30백만원

ㅇ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 200백만원**

▪ 사회발전의 토대인 협동, 신뢰, 호혜등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에 기여 및 세계시민교육과 현대 자본주의 및 산업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제공

▪ 산출내역: 1과제 × 200백만원

ㅇ **신집현전 사업 : 907백만원**

▪ 국내외 우수 한국학자의 양성(태학사), 한국학분야 대계 편찬 및 한국학 학술용어의 정리 및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공구서 양산

▪ 산출내역: 3과제 × 302.3백만원

ㅇ **한국학 학술회의 개최 : 100백만원**

▪ 학술대회·콜로키움 개최를 통하여 한국학 연구성과를 학계에 확산

▪ 산출내역: 5회 × 20백만원

② **한국학대학원사업 : 1,480백만원**(전년동액)

< 사업개요 >

ㅇ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4개학부, 16개전공) : 566백만원**

▪ 한국학 제분야의 심오한 이론을 탐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국내외 한국학인재 양성

▪ 산출내역: 1식 × 566백만원

ㅇ **청계서당 운영 : 59백만원**

▪ 고전의 폭넓은 이해를 위한 한문 독해력 향상과 한국학연구 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통 한문교육과정 운영

▪ 산출내역: 14강좌 × 4.2백만원

ㅇ **한국문화학당운영 : 100백만원**

▪ 외국인 학생의 학문 목적의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을 통하여 한국어 및 한국학기초 교육 내실화

▪ 산출내역: 14강좌 × 7.14백만원

ㅇ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 : 35백만원**

▪ 한국학 저변확대 및 한국전문가 양성을 위해 해외거주 한국학 전공 학생들을 위하여 차세대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 산출내역: 5명 × 7백만원

ㅇ **학문후속세대양성 : 720백만원**

▪ 한국학대학원에서 우수 외국인 학생을 장학유학생으로 선발하여 차세대 한국학자로 양성하기 위한 해외한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추진

▪ 산출내역: 80명 × 2학기 × 4.5백만원

③ **장서각사업 : 2,533백만원**(전년대비 450백만원 감액)

< 사업개요 >

ㅇ **고전적 조사수집 및 자료집간행 : 71백만원**

▪ 민족문화 및 한국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고서·고문서를 조사·수집·정리하고 자료집으로 편찬하여 학계에 보급

▪ 산출내역: 5책 × 14.2백만원

ㅇ **장서각 소장 등록류 영인 :** 50백만원

▪ 장서각 소장 유일본을 중심으로 자료를 영인화하고, 세부해제, 표점, 소개문의 번역(한, 중, 일), 색인작업 등을 통하여 체계화함으로써 연구활용도가 높은 결과물을 양산함

▪ 산출내역: 2책 × 25백만원

ㅇ **고전적 보존처리(950건 및 RFID) : 1,100백만원**

▪ 소장 및 수집된 희귀자료중 멸실, 훼손된 자료를 물리적인 보존을 통하여 자료의 생명력을 복원함

▪ 산출내역: 1식 ×1,100백만원

ㅇ **고전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650롤) : 102백만원**

▪ 소장 및 수집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출내역: 1식 × 102백만원

ㅇ **21세기 장서각 연구 : 1,210백만원**

▪ 장서각 소장 자료 및 한국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연구자와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에 기여

▪ 산출내역: 6주제 × 201.6백만원

④ 한국문화교류사업 : 2,318백만원(전년대비 130백만원 증액)

< 사업개요 >

- 해외한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한국학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성과를 상호교류함으로써 한국학 저변확대와 수준을 제고함

ㅇ **해외한국학학술활동지원 : 2,028백만원**

▪ 해외대학 및 연구자의 한국학관련 학술활동지원(학술회의,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한 한국학의 저변 확대

▪ 산출내역: 90과제 × 22.53백만원

ㅇ **국제학술회의개최 : 130백만원**

▪ 한국학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학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 산출내역: 1회 × 130백만원

ㅇ **한국문화강좌 : 80백만원**

▪ 해외한국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술적특성을 가미한 한국어·한국학 프로그램, 전통문화교실,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한국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증진 및 향후 한국학 연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

▪ 산출내역: 40명×2백만원

ㅇ **한국학클럽운영: 80백만원**

▪ 국내 거주 VIP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한국문화 강연회 개최

▪ 산출내역: 4회 × 20백만원

⑤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 2,600백만원(전년대비 500백만원 감액)

< 사업개요 >

ㅇ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 1,800백만원**

▪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집대성·콘텐츠화하여 디지털매체를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정보화·체계화를 통한 한국학연구의 기반마련

▪ 산출내역: 13지역 × 138.5백만원

ㅇ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 800백만원**

▪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하여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초판본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신규 연구성과 및 개념을 반영한 개정판을 편찬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 포털지식검색의 원천자료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출내역: 1식 × 800백만원

⑥ 한국학학술정보화사업 : 586백만원(전년동액)

ㅇ **한국학 학술자료 정보화 : 122백만원**

▪ 한국학관련 학술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한국학 및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RINKs)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산출내역: 1식 × 122백만원

ㅇ **한국학전문도서관 운영 : 464백만원**

▪ 국내외 한국학 도서자료 및 학술전자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연구 및 교육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교육 활동에 기여

▪ 산출내역: 1식×464백만원

⑦ 정보기반구축사업 : 801백만원(전년동액)

ㅇ **한국학정보인프라(한국학종합전산망) 운영 관리: 801백만원**

▪ 한국학 관련 정보인프라(40개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보안관리

▪ 산출내역: 1식 × 801백만원

⑧ 기획홍보사업 : 190백만원(전년동액)

ㅇ **찾아가는 한국학 아카데미(3회), 한국학콘서트(16회) : 190백만원**

▪ 한국학연구성과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중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학 연구실적, 발간자료와 사업성과를 연구자와 일반시민에게 홍보

▪ 산출내역: 1식 × 190백만원

⑨ 시설개선사업 : 499백만원(전년대비 349백만원 증액)

< 사업개요 >

- 약55,000평, 중대형 12개 건물이 위치한 연구원의 전기, 기계, 건물내외부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ㅇ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및 설치 : 75백만원**

▪ 공공기관은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해야함.

[연도별 LED보급 목표]

구분	'18	'19	'20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86.7% (순차적 보급)	93.3% (순차적 보급)	100% (정부기준)

▪ 산출내역: 1식 × 75백만원

ㅇ **노후시설 개선: 424백만원**

▪ 개원 후 40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의 안정화 및 유지보수가 시급한 기계 및 건축물 유지보수 《참고6》 참조

▪ 산출내역: 2식 × 212백만원

⑩ 출판문화사업 : 550백만원(전년대비 30백만원 감액, 이관)

< 사업개요 >

- 한국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학술지 및 도서를 출판하여 보급함.

ㅇ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4회) : 67백만원**

▪ 한국학 연구논문 및 기획논문을 비롯하여 한국학쟁점과 토론, 한국학의 발전적 제언, 해외한국학동양, 서평으로 구성된 한국학 분야의 대표학술지 발간

▪ 산출내역: 4회 × 16.75백만원

ㅇ **영문학술지 발간(2종) : 183백만원**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SCOPUS등재학술지) 및 Korea Journal(A&HCI등재 학술지)은 국내외 한국학 연구성과 공유하기 위한 한국학 대표영문학술지로써 해외한국학자들의 한국학학술연구성과 발표의 장으로 활용

▪ 산출내역: 2종 × 91.5백만원

ㅇ **한국학연구 출판보급(26책) : 300백만원**

▪ 한국학 우수콘텐츠를 선정하여 연구서, 고전자료, 대중서, 외국어도서, 전자책 등으로 발간

▪ 산출내역: 26책 × 11.54백만원

5 자체수입 : △4,314백만원(전년대비 67백만원 증액)

ㅇ이자수입 383백만원, 등록금 수입 299백만원, 기숙사사용료 수입 283백만원, 잡수입 722백만원, 간접비 수입 54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080백만원

< 수입 산출내역>

- 이자수입 : 383백만원(최근 3개년 평균)
  - ('15) 275백만원, ('16) 257백만원, ('17) 190백만원
- 등록금 수입 : 299백만원(최근 3개년 평균)
  - ('15) 295백만원, ('16) 303백만원, ('17) 298백만원
- 기숙사사용료 수입 : 283백만원(최근 3개년 평균 및 인상액반영)
  - ('15) 257백만원, ('16) 259백만원, ('17) 274백만원 및 기숙사사용료 인상액: 20백만원
- 잡수입 : 722백만원(최근 3개년 평균)
  - ('15) 507백만원, ('16) 599백만원, ('17) 642백만원
- 간접비 수입 : 547백만원(최근 3개년 평균)
  - ('15) 551백만원, ('16) 636백만원, ('17) 455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2,080백만원
  - 산식 : '18년 가결산잉여금* + ('17년 실결산잉여금 - '17년 가결산잉여금)
    * '18년 가결산잉여금 = 과년도 3년평균 실결산 잉여금±특이소요
      '18년 가결산 잉여금 = 2,286('15년 결산잉여금) + 2,092('16년 결산잉여금) + 1,861('17년 결산잉여금)의 3년 평균 = 2,08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9,023	29,292
○인건비	**15,760**	**16,044(전년대비 284 증)**
○경상경비	**2,457** ■ 연료비, 난방비 등 2,457	**2,486(전년대비 29 증)** ■ 연료비, 난방비 등 2,486
○건축비	**-** ■ -	**387(신규)** ■ 외국인유학생기숙사신축: 387(신규)
○기관고유사업비	**15,053**	**14,689(전년대비 364 감)**
■연구사업	**3,575** ■ 한국학기초및중점연구 925 ■ 고전자료현대화연구 500 ■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연구 400 ■ 한국독립운동사아카이브 70 ■ 연구 교육연계 200 ■ 장서각소장 한글기록문화유산 집대성 연구 300 ■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500 ■ 한국학 학술회의 개최 100 ■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 69 ■ 한국학연구 출판보급 328 ■ 영문학술지 발간 183 ■ -	**3,132(전년대비 443 감)** ■ 좌동 ■ 고전자료현대화연구 300(△200) ■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연구 200 (△200) ■ 한국독립운동사아카이브 0(△70) ■ 좌동 ■ 좌동 ■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200(△300) ■ 좌동 ■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 0(△69) ■ 한국학연구 출판보급 0(△328) ■ 영문학술지 발간 0(△183) ■ 신집현전 사업 907(신규)

■ 한국학 대학원 사업	**1,480** ■ 학위과정운영 566 ■ 청계서당운영 59 ■ 한국문화학당 100 ■ 학문후속세대양성 720 ■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 35	**1,480(전년 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장서각사업	**2,983** ■ 고전적조사 수집 및 자료집 발간 71 ■ 장서각소장등록류 영인 50 ■ 고전자료마이크로필름화 102 ■ 고전적 보존처리 1,250 ■ 21세기 장서각사업 1,510	**2,533(전년대비 450 감)** ■ 좌동 ■ 좌동 ■ 좌동 ■ 고전적 보존처리 1,100(△150) ■ 21세기 장서각사업 1,210(△300)
■한국문화 교류사업	**2,188** ■ 해외한국학 학술활동지원 1,928 ■ 국제학술회의 개최 130 ■ 한국문화강좌 50 ■ 한국학클럽 80	**2,318(전년대비 130 증)** ■ 해외한국학 학술활동 지원 2,028(100 증) ■ 좌동 ■ 한국문화강좌 80(30 증) ■ 좌동
■한국문화 콘텐츠개발사업	**3,100** ■ 지역별문화대전편찬 2,10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1,000	**2,600(전년대비 500 감)** ■ 지역별문화대전편찬 1,800(△30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800(△200)
■한국학학술 정보화사업	**586** ■ 한국학 학술자료 정보화 122 ■ 한국학도서관운영 464	**586(전년 동)** ■ 좌동 ■ 좌동
■정보기반구축사업	**801** ■ 한국학 정보 인프라(한국학종합 전산망) 운영 관리 801	**801(전년동)** ■ 좌동
■기획홍보사업	**190** ■ 홍보 및 경영효율화 190	**190(전년 동)** ■ 좌동
■시설개선사업	**150** ■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및 설치 150 ■ -	**499(전년대비 349 증)** ■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및 설치 75(△75) ■ 노후시설 개선 424(신규)
■출판문화사업	- ■ - ■ - ■ -	**550(전년대비 30 감, 연구사업에서 이관)** ■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 67(이관) ■ 한국학연구 출판보급 300(△28, 이관) ■ 영문학술지 발간 183(이관)
○자체수입	**△4,247** ■ 이자수입 276 ■ 기숙사수입 265 ■ 잡수입 553 ■ 전년도이월금 2,226 ■ 간접비수입 617 ■ 등록금수입 310	**△4,314(전년대비 67 증)** ■ 이자수입 383(107 증) ■ 기숙사수입 283(18 증) ■ 잡수입 722(169 증) ■ 전년도이월금 2,080(△146) ■ 간접비수입 547(△70) ■ 등록금수입 299(△11)

□ 지원 필요성

- ○ 한국학은 한국문화와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한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및 한류의 확산을 위해 한국학진흥 예산확대 필요
- ○ 주변국은 자국중심의 학술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여 지구촌에 자국학 융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한국학의 독자성 보존과 주변국의 역사왜곡, 한반도문화의 종속화, 자국중심의 국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 및 토대 구축의 필요성이 큼
- ○ 인문.사회과학 및 한국학분야의 기초연구와 한국학 기초자료의 수집·체계화와 관련된 분야는 연구역량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야이므로 집중보호·육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필요
- ○ 한국학 학술진흥의 허브역할수행, 국내외 한국학 연구·교육인재 양성, 국제사회의 한국이해 및 해외 한국학 연구진흥, 한국학 연구자료의 생산·보존 및 국내외 보급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27,918	29,023	29,292	269	0.9
① 인건비	14,991	15,760	16,044	284	1.8
▪ 인건비	14,991	15,760 (210명x75.047백만원)	16,044 (210명x76.4백만원)	284	1.8
② 기본경비	2,836	2,457	2,486	29	1.2
▪ 기본경비	2,836	2,457 (1식x2,457백만원)	2,486 (1식x2,486백만원)	29	1.2
③ 건축비	-	-	387	387	순증
▪ 외국인유학생 기숙사신축	-	-	387 (1차년x3.87백만원)	387	순증
④ 기관고유사업비	14,373	15,053	14,689	△364	△2.4
▪ 연구사업	2,727	3,575	3,132	△443	△12.4
-한국학기초 및 중점연구	925	925 (37과제x25백만원)	925 (37과제x25백만원)	-	-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500	500 (15책x33.3백만원)	300 (9책x33.3백만원)	△200	△40
-한국전쟁아카이브 구축	100	-	-	-	-
-한국독립운동사 아카이브	100	70 (1과제x70백만원)	0	△70	순감
-한국의 인문정신문화 스토리 연구	542	400 (10과제x40백만원)	200 (5과제x40백만원)	△200	△50
-연구교육연계	-	200 (10과제x20백만원)	200 (10과제x20백만원)	-	-
-장서각 소장 한글 기록문화유산 집대성 연구	-	300 (10과제x30백만원)	300 (10과제x30백만원)	-	-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	500 (3과제x166.7백만원)	200 (1과제x200백만원)	△300	△60
-신집현전 사업	-	-	907 (3과제x302.3백만원)	907	순증
-한국학학술회의 개최	100	100 (5회x20백만원)	100 (5회x20백만원)	-	-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	69	69 (4회x17.3백만원)	-	-	-
-한국학 연구 출판 보급	328	328 (26책x12.6백만원)	-	-	-
-영문학술지 발간	63	183 (2종x91.5백만원)	-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학대학원사업**	1,645	1,480	1,480	-	-
-학위과정운영	566	566 (1식x566백만원)	566 (1식x566백만원)	-	-
-한국학오픈아카데미	100	-	-	-	-
-청계서당 운영	59	59 (14강좌x4.2백만원)	59 (14강좌x4.2백만원)	-	-
-한국문화학당 운영	100	100 (14강좌x7.14백만원)	100 (14강좌x7.14백만원)	-	-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	100	35 (5명x7백만원)	35 (5명x7백만원)	-	-
-학문후속세대양성	720	720 (80명x4.5백만원x2학기)	720 (80명x4.5백만원x2학기)	-	-
▪ 장서각사업	3,093	2,983	2,533	△450	△15.1
-고전적조사 수집 및 자료집 간행	71	71 (5책x14.2백만원)	71 (5책x14.2백만원)	-	-
-장서각소장 등록류 영인	50	50 (2책x25백만원)	50 (2책x25백만원)	-	-
-고전자료 마이크로 필름화	102	102 (1식x102백만원)	102 (1식x102백만원)	-	-
-고전적 보존처리	1,250	1,250 (1,250건x1백만원)	1,100 (1,100건x1백만원)	△150	△12
-21세기 장서각 사업	1,620	1,510 (6주제x251.7백만원)	1,210 (5주제x242백만원)	△300	△19.9
▪ 한국문화교류사업	2,364	2,188	2,318	130	5.9
-해외한국학 학술활동 지원	2,050	1,928 (90과제x21.42백만원)	2,028 (90과제x22.53백만원)	100	5.2
-국제학술회의 개최	130	130 (1회x130백만원)	130 (1회x130백만원)	-	-
-한국문화강좌	50	50 (25명x2백만원)	80 (40명x2백만원)	30	60
-해외학술기관 교류	34	-	-	-	-
-한국학클럽 운영	100	80 (4회x20백만원)	80 (4회x20백만원)	-	-
▪ 한국문화콘텐츠개발사업	2,556	3,100	2,600	△500	△16.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2,556	2,100 (13지역x161.5백만원)	1,800 (13지역x138.5백만원)	△300	△14.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	1,000 (1식x1,000백만원)	800 (1식x800백만원)	△200	△20
▪ 한국학학술정보화사업	686	586	586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한국학 학술 자료 정보화	122	122 (1식x122백만원)	122 (1식x122백만원)	-	-
-한국학전문도서관운영	564	464 (1식x464백만원)	464 (1식x464백만원)	-	-
▪ 정보기반구축사업	685	801	801	-	-
-한국학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685	801 (1식x801백만원)	801 (1식x801백만원)	-	-
▪ 기획홍보사업	205	190	190	-	-
-홍보 및 경영효율화	205	190 (1식x190백만원)	190 (1식x190백만원)	-	-
▪ 시설개선사업	412	150	499	349	233
-한국학대학원 냉난방기 설치	412	-	-	-	-
-고효율 LED등기구교체 및 설치	-	150 (1식x150백만원)	75 (1식x75백만원)	△75	△50
-노후시설 개선	-	-	424 (2식x212백만원)	424	순증
▪ 출판문화사업	-	-	550	△30	△5.2
-학술지 정신문화연구 발간 (연구사업에서 이관)	-	-	67 (4회x16.75백만원)	△2	△2.9
-한국학연구 출판 보급 (연구사업에서 이관)	-	-	300 (26책x11.54백만원)	△28	△8.5
-영문학술지 발간 (연구사업에서 이관)	-	-	183 (2종x91.5백만원)	-	-
▪ **자체수입**	△4,282	△4,247	△4,314	67	1.6
-자체수입	△4,282	△4,247 (1식x-4,247백만원)	△4,314 (1식x-4,314백만원)	67	1.6
□ **비목**(합계)	27,918	29,023	29,292	269	0.9
○연구개발인건비(360-01)	14,991	15,760	16,044	284	1.8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	2,836	2,457	2,486	29	1.2
○연구개발건축비(360-03)	-	-	387	387	순증
○연구개발활동비(360-05)	10,091	10,806	10,375	△431	△4.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민족문화의 재발견, 한국학 연구인재 양성, 고전자료의 수집.정리, 한국문화의 디지털화,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통하여 한국학의 세계화 확산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27,918	• 기본사업비 : 14,373 • 인건비 : 14,991 • 기본경비 : 2,836 • 자체수입 : △4,282	-	-	
'18	29,023	• 기본사업비 : 15,053 • 인건비 : 15,760 • 기본경비 : 2,457 • 자체수입 : △4,247	29,023	• 기본사업비 : 150.53 • 인건비 : 157.60 • 기본경비 : 24.57 • 자체수입 : △42.47	-
'19	28,951	• 기본사업비 : 14,373 • 인건비 : 14,991 • 기본경비 : 2,836 • 자체수입 : △4,282	29,292	• 기본사업비 : 14,689 • 인건비 : 16,044 • 건축비 : 387 • 기본경비 : 2,486 • 자체수입 : △4,314	269
'20	29,241	• 기본사업비 : 14,373 • 인건비 : 14,991 • 기본경비 : 2,836 • 자체수입 : △4,282	29,023	• 기본사업비 : 15,053 • 인건비 : 15,760 • 기본경비 : 2,457 • 자체수입 : △4,247	△218
'21	29,533	• 기본사업비 : 14,373 • 인건비 : 14,991 • 기본경비 : 2,836 • 자체수입 : △4,282	29,023	• 기본사업비 : 15,053 • 인건비 : 15,760 • 기본경비 : 2,457 • 자체수입 : △4,247	△510
'22	-	-	29,023	• 기본사업비 : 15,053 • 인건비 : 15,760 • 기본경비 : 2,457 • 자체수입 : △4,247	29,023
연평균 증가율 (%)	1.6		△1.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9,023	29,292	26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379	431	5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	15	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431.19**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210명 - 연구개발인건비: 2019년 정원 210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221.19 - 경상경비: 2,486백만원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연구개발경상경비) 48백만원 = 51.8 - 인건비·경상경비 외 사업비 15,076백만원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연구개발) 89백만원 = 169.39 **□ 2018년 고용효과: 37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효과 증대 필요 - 한국학연구인력이 창출한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제고(정보화,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 필요 - 해외한국학 저변확대를 위한 한국학자료의 제2외국어 번역 양산이 필요하며, 관련 제2외국어 전문인력 고용이 필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제2조(출연금), 국가는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

○ 추진경위

-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좌표를 탐구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개원하여 사업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292.5	292.5	291.95	307.25	307.25	279.18	279.18	290.23	290.2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실집행 이월 사유 :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연구비 이월 등 사업비 사고 이월 발생

○ '16년 실집행 불용 사유 : 기본연봉, 정현원차 예비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및 기본경비 집행 중 발생한 소액 잔액

○ '17년 실집행 불용 사유 : 기본연봉, 정현원차 예비비 등 인건비 집행 잔액 및 기본경비 집행 중 발생한 소액 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1.95** **(291.95)**	- (-)	- (-)	291.95 (291.95)	**291.95** **(291.46)**	- (0.49)	- (-)
'16년	**307.25** **(307.25)**	- (0.49)	- (-)	307.25 (307.74)	**307.25** **(302.16)**	- (-)	- (5.58)
'17년	**279.18** **(279.18)**	- (-)	- (-)	**279.18** **(279.18)**	**279.18** **(272.60)**	(-)	(6.58)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7,918	-	28,523	500	29,023	29,023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 연구사업 :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신규) : 500백만원 증액
- ■ 인건비 : 379백만원 증액(건강 및 요양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로 이관)
- ■ 경상경비 : 379백만원 감액(건강 및 요양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로 이관)

○ 집행현황: 29,023백만원 집행 완료

- ■ 사업비 : 10,806백만원
- ■ 인건비 : 15,760백만원
- ■ 운영비 : 2,457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15년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활용 실적 저조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편찬이 완료된 문화대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 조치결과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지역별문화대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1회 동화공모전"을 ㈜교보문고와 공동 개최('16.12.)하였으며, 지자체 SNS를 통한 홍보 및 교육용 콘텐츠 제공 등 지역별문화대전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16년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비목 계상 필요
  - ·교육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기관예산 편성 시 건강 및 요양보험 사업자부담금을 인건비 비목에 편성할 것
  - → 조치결과 :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건강 및 사업자부담금을 인건비 비목에 편성함.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자국학 진흥을 위한 대만의 중앙연구원, 중국의 사회과학원, 일본의 국제일본문화교류센터, 독일의 학술교류처(DAAD), 유럽의 유럽공동체 대학연구소 설립 운영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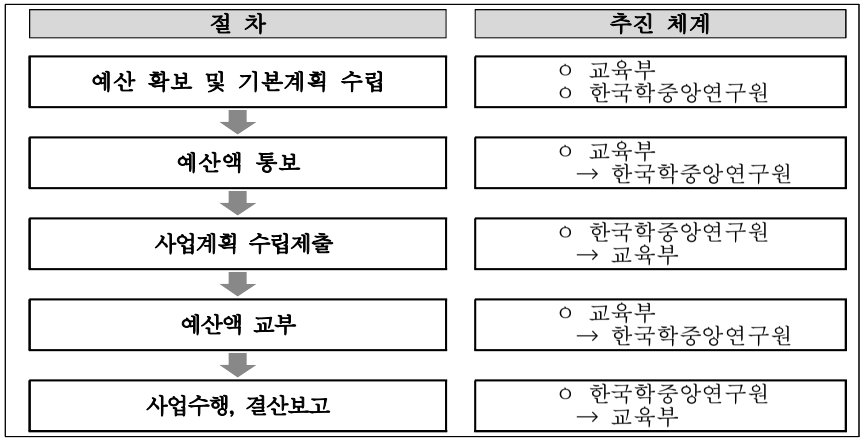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학 정보서비스 이용 실적 (만명)	목표	2,200	2,420	2,662	2,928	3,220	당해 연도 정보서비스 이용 건수를 측정하며,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로 설정	당해 연도 정보서비스 이용 건수 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서비스	한국학정보서비스 이용실적
	실적	2,254	2,495	2,788	-				
	달성도	102.5	103.1	104.7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향상(%)	목표	신규	60.78	68.5	75.9	폐기	최근 3년('14~'16) 실적 평균(62.3%) 대비 10% 상승된 68.5%로 목표치 설정	대학정보공시자료기준 전체 외국인 재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률	대학정보공시자료 기준 외국인 재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확인
	실적	-	66.9	77.7	-				
	달성도	-	110.1	113.4	-				
대학원생의 학술역량강화 활동건수(1인당 평균 건수)(%) (신규)	목표	-	-	-	42.1	45.3	최근3년('16~'18)간 재학생대비 학술역량강화활동실적의 표준편차(0.032)를 도출하여 「목표부여(편차) 방식」의 최고목표치(45.3%)로 설정	당해연도 대학원재학생 1인당 학술역량강화활동건수 (학술역량강화건수/재학생)×100	학술지등재건수, 해외학술행사참여지원건수, 과제참여건수, 연구·교육연계 참여건수
	실적	-	49.5	43.4	-	신규			
	달성도	-	-	-	-	신규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신접현전 사업(신규)
○ (참고4) 해외한국학학술활동지원 - 한문연수운영(증액)
○ (참고5) 한국문화강좌(증액)
○ (참고6) 노후시설 개선(증액)
○ (참고7)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신축(신규)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연구자, 학생,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

- 한국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한국학 신진학자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학술저서·학술용어 개념어 사전 집필을 통한 한국학 연구 토대 마련
- 주변국의 자국학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학의 독자성 향상을 위한 학술정책개발과 연구방향 제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석학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 필요
- 해외 소재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문화 체험을 통하여 이미지를 제고
- 노후화된 건축 시설물 및 전기, 기계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
- 한국학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유학왔으나, 기숙사시설이 열악하며, 기혼자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

< 예산 반영사항 >

□ 연구자, 학생,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

- 신집현전 사업 신설(907백만원)
- 한국문화강좌(80백만원) 증액 30백만원
- 한문연수운영(100백만원) 증액 100백만원
- 노후시설 개선(499백만원) 증액 424백만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한국학 기초 연구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한국학 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교양 강좌 실시: 한국방송통신대학 Prime College 협업
-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고려사 지리지 역주』
- 2017년 한국대학출판협회 우수도서 선정: 『동아시아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창안과 과학성』, 『카터 시대의 남북한』, 『한국인, 무엇을 먹고 살았나』
- 2018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발해와 일본의 교류」, 『카터 시대의 남북한』

□ 한국학 연구와 교육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

- 학술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 공동체 운영
- 실질적 연구과제 및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연구·교육 역량 강화
- 학생 역량 강화를 통한 졸업생 취업률 상승: '16년 71.930% → '17년 79.630%(전년대비 7.7%↑)

□ 한국기록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정보 자원 제공

- 기록문화유산 자료 제공을 통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KBS1 역사다큐멘터리> 등 기록 유산 이미지 제공
- 중요 유산 복제본 제작을 통한 주요 소장 자료 전시 및 대여

□ 한국학 콘텐츠의 지속적 관리 및 보급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신규 편찬 지역 확대 및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편찬사업 고도화
- 한국학 종합 정보 및 콘텐츠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향상

< 현장의 변화 >

구 분		주 요 내 용
경영여건	내부	• 기관장 기관 경영 방침으로 '우리사회와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한국학 회통의 장' 강조 • 한국학 연구, 교육, 한국문화기록유산 및 국내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구조, 장을 구축하여 '한국학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 •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한국학 연구와 확산'을 통하여 기관장 기관 인지도 및 한국학 이해도 제고 충족
	외부	• 한국학 연구의 총본산으로서 정체성 정립 및 중추적 역할 요구 확대 •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강화를 통한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창달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 강화 요구 확대 • 한국학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등 사회적 수요 지속적 증대

참고 3 신집현전 사업(신규)

1. 사업배경

□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실태

○ 불확실한 미래와 생계형 연구에 직면하여 신진 학자의 창의적인 연구 저하

○ 논문 편수만 중시하는 풍토: 단행본 연구서 기피 현상 초래

○ 기초 공구서의 부족: 학문의 토대가 되는 학술용어의 혼돈야기

<기존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사업(BK21, HK 등)의 문제점>
○ 개인연구자 지원보다는 공동연구팀 위주의 지원, 과제 관리에만 역점
○ 연구자 개인의 연구력 저하, 연구팀의 행정업무에 지나치게 예속

○ 고등교육(대학교, 대학원과정)에 대한 민간 및 정부의 학술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편이나, 신규박사학위 취득자가 양질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

○ 어려운 취업
- 2014년도 기준 국내에서 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학업전념자 3744명 중 58%만 취업(비정규직, 시간직 포함)
- 인문계열의 비정규직 비율이 90.8%로 가장 높고, 예술·체육(89.7%), 의약(78.4%), 사회(78.0%), 자연(72.4%), 교육(58.5%), 공학(40.1%)이 그 다음

○ 열악한 경제적 환경 직면
- 비정규직 취업자의 평균 연봉 2642만원,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많은 시간강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1772만원

○ 대학교강사제도는 독일의 도젠트제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열악하고 비참한 수준

□ 고전으로 부터의 **한국인문학 부흥모델** 모색(집현전 제도)

○ 세종대왕의 집현전 설립, 인재 양성: 집현전에서 37년간 90여명의 뛰어난 능력을 갖춘 학자를 육성

○ 뛰어난 학술적 성취: 사상, 문화, 정치, 경제, 기술 방면의 업적

○ 집현전에서 한글을 창제하여 한국문화는 물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한중연 『신집현전 사업』을 통한 **한국학 학술진흥 정책** 추진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제, 사회, 문화전반의 치세를 이룩한 세종대왕의 '싱크탱크'였던 집현전을 기반으로 한 신집현전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한국학자를 양성하고자 함

○ 한국학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학전문 연구인력 양산
- 기존학술전문인력: 학사 → 석사 → 박사
- 한국학전문인력양성: 학사 → 석사 → 박사 → 태학사

2. 사업 목적

□ 인문 사회과학의 위기를 돌파할 학문 후속세대 양성

○ 극심한 실업난에 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신진 학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정적인 여건에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집현전과 같은 공동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진 학자들의 학문적 역량을 학제적인 방향으로 넓혀가도록 유도

□ 인문사회과학 명저 탄생의 기반 조성

○ 단기간, 개인의 노력으로 완성하기 어려운 한국학분야의 대계를 집대성하여 한국학 분야의 명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우수 연구자들의 심도있는 연구여건조성을 통한 명저 탄생 유도

□ 한국학의 기초 개념 용어의 정리

○ 한국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학술용어들의 개념 역사 정리

○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 개념사 자료 집성, 용례 및 분류 사전 등 기초 공구서 제작

○ 한국 학술용어 계통 및 분류 체계 완성

3. 사업 개요

□ 신집현전 사업 구성

□ 주요내용

구분	집현전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	한국학 모노그래프 지원 (한국학대계 집대성)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 편찬
내 용	○ 우수 신진 한국학 연구자에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국내외 석학을 초빙하여 팀 티칭 기회 부여 ○ 세계적 수준의 학술 저서 집필 지원	○ 한국학 분야의 대계 집대성을 통하여 한국학 명저 발간의 기틀을 마련	○ 한국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할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 편찬 및 web 출판(update 가능)
지원 기간 및 예산	○ 연간 예산 5억원 - 9명×연간 50백만원 - 운영비: 50백만원 - 5년 지원	○ 연간예산 2억원 - 9명×연간 20백만원 - 운영비 20백만원 - 5년 지원	○ 연간예산 2.07억원 - 12항목×15백만원 - 편찬위 운영 12백만원 - WEB 15백만원 - 5년 지원
지원 내역	○ 1단계 사업: 5년 - 매년 9명씩 선발하여 5년차부터 45명 지원	○ 매년 9명씩 신규 지원	○ 한 항목 당 1년 6개월 - 준비단계: 6개월 - 원고집필: 6개월 (200매) - 수정: 6개월 (각 2개월×3차례)
비고	세부사업1(참고3-1)	세부사업2(참고3-2)	세부사업3(참고3-3)

참고 3-1 신집현전 태학사(太學士) 양성 프로그램

1. 사업 목적

□ 우수 신진한국학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속 및 학술저서 집필 기회 부여

○ 한국학 분야에서 우수 신진학자를 엄선하여 5년간 장기 지원함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우수 연구를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역량 강화 여건 제공

> 독일 대학의 하빌리타치온 과정처럼 신진 박사들에게 『새로운 학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도약시켜 독창적인 학술 저서를 완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우수한 신진학자들에게 장기적 개별지원을 하여 한국학 분야의 창의적 연구 진작 및 세계적 연구 성과 도출

□ 한국학 발전을 담보할 『연구 클러스터』 조성

○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적 교류를 통한 공동 연구의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한중연의 연구환경을 활용하여 한국학의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

비 전 ▣ 한국학 연구 집적단지 조성 - 한국학의 본산 수립
▣ 한국학의 위상 정립

목 표 ▣ 한국학 우수 전문 연구 인력 양성
▣ 한국학 독창적 연구성과 및 한국학의 학술적 확산

추진내용 집현전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진 한국학 연구자의 창의적 학술 연구와 단행본 연구서 집필 지원

2. 추진 배경

□ 박사학위 취득 후 창의적 연구 상실

○ 현재 한국학 분야의 신진학자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 생계를 위해 집단적 연구 결과물을 양산하는 공동연구프로젝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

- 박사학위 논문 작성 때 지녔던 독창적·창의적 연구가 불가능
- 연구팀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 소요
-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역량을 진작할 수 있는 기회 상실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를 위협하는 불완전한 생계

○ 미취업 인문계열 박사 대다수는 시간강사로 연구활동 수행 어려움

- 전업시간 강사 총 5만여명 중 70%가 인문사회(예체능)분야 시간강사로 추산되며, 시간 강사의 연평균 보수액은 약600~800만원

□ 차세대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타기관 사례

○ 국내에서 2012년부터 이공분야 『리서치 펠로우』 제도 운영 중

○ 현재 교육부의 인문사회지원 정책도 개인연구자의 경우 하나의 연구과제를 연구자의 성장단계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연구할 수 있게 해 연구의 지속성과 연속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2018년도 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따른 연계 지원구조-

<성장단계별 연계 지원 구조 >

구분 (개인지원)	학문후속세대 (최대2년)		신진연구자 (최대3년)		중견연구자지원 (최대 7년)
발전 단계	▸박사후 국내연수	⇨	▸신진연구자	⇨	▸중견연구자

< 연구재단의 학술인문사회사업 성장단계별 지원 구조 >

구분 (개인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발전 단계	▸박사후 국내연수(~2년) ▸학술연구교수	⇨	▸신진연구자(~3년) ▸학문후속양성(~3년)	⇨	▸중견연구자
지원금액	연간3,400만원		연간2,000만원		장기소액(3+4년) 후속연구(~3년) 중견연구(~3년) 신진양성(장기,일반)

※ 인문사회 분야 개인연구자의 생애주기별 연구지원 가운데 최종적인 단계에 속했던 인문사회 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연 30백만원, 3+2년 지원)은 2018년에 들어 신규과제 공모를 중단하고 계속과제만 지원

○ 해외의 경우에도 학자양성과 새로운 학문이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내 신진학자들을 위한 학술저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해외 사례>

○ **독일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자격 취득 과정**으로써 전문학술저서 생산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학위취득자에게 부여

- 독일의 하빌리타치온을 통해 생산된 저술은 이후 학자의 학문적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학계에도 새로운 학문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
- 하빌리타치온 제도는 신진 학자의 창의적 학문적 저술 집필을 가능하게 하여 독일의 인문사회학계 새로운 흐름과 발전에 기여

·독일의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의 하빌리타치온 저서『공론장의 구조변화』는 사회학과 언론학에서 획기적인 저서로 인정받으며, 이후 의사소통행위 이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역시 하빌리타치온 저서 『궁정사회 Die Höfische Gesellschaft』를 통해 본인의 학문적 문제의식을 형성, 이후 명저『문명화의 과정』저술

<국내 민간기관 사례>

○ 포니정재단-고려대학교 '포니정 펠로우십': 2016년 5월 기관간 '한국학연구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포니정 펠로우십 운영실시

- 박사학위 취득 5년내의 해외한국학자 2명을 선발하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로 초빙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집현전 태학사(太學士) 양성 프로그램의 비교 우위

○ 『**한국학 분야에 국한**』하여 신진 박사들을 엄선하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전폭적으로 지원

- 연간: 1인당 약5,000만원(※ 연구비 중앙관리에 맞게 비목설정)

· 연구재단의 신진학자 관련 지원금(약3,400만원)의 약1.5배

○ 집현전 태학사(太學士)가 양산한 연구 결과물을 총서로 간행하고, 개인의 연구 성과를 지속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마련

· 한중연 신집현전(가칭)내에서 각 태학사의 초기연구분야-학제간 연구(융합)-콜로키움 등을 통한 연구이력을 통한 차기 연구분야 및 의제 제시 등의 연구관리 체계 마련

○ 최적의 연구환경 제공

- 연구비 관련 등 행정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 한중연내 연구공간제공, 태학사 및 한국학대학원교수, 대학원생과의 활발한 토론의 장 마련(각종 콜로키움, 국제학술대회 등 연간 70여회)
- 한중연내 태학사의 연구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

○ 한중연 및 국내외 학계의 권위자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 자신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중연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과 유사 사업 비교>

구분	집현전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 (한국학중앙연구원)	학문후속세대 혹은 신진연구자 지원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과정 펠로십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상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 한국학분야)	국내 신진연구자 (조교수 이상 교원 임용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인문사회 전 분야 및 이공분야)	외국시민권, 영주권 소지한 자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 한국관련 주제로 박사학위취득한자 교수직, 연구기관 전임연구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는자
결과물	전문 학술저서	논문, 저역서	논문 출판 지원
주요내용	- Fellow 상호간의 콜로키움, Book workshop 개최 - 한중연 각종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 한중연 '코리아저널','정신문화연구' 논문 기고기회 부여 - 태학사 인증제 운용 - 실질적 지도교수제 운용 - 연구원 각종 인프라 제공	예산지원에 국한	예산지원에 국한
지원금액	50백만원/9명	20백만원/515명(신규,2017년)	유동적(연간소요연구비)/10명
기간	5년	최대 ~2년 혹은 ~3년 2018년 이후 최대 3년 이공분야는 최대 5년	1년

※ 고려대학교 '포니정 펠로우십': 한국학분야에서 최근 5년내에 박사학위취득한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간 2명 선발(총6천만원 지원(연구지원비: 5천만원, 출판지원금: 1천만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임용)

3. 사업 내용

□ 사업 개념

○ 박사 취득 후 하빌리타치온과 같은 창의적 모노그래프 저술을 목표로 연구를 유도하고, 우수한 한국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 연차별 목표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선정인원 (연차별 지원인원)	9 (9)	9 (18)	9 (27)	9 (36)	9 (45)	9 (45)	9 (45)	9 (45)	9 (45)	9 (45)
연차별 성과							누적 9권	누적 18권	누적 27권	누적 36권
	1차년 20%	1차년 40%	1차년 60%	1차년 80%	1차년 100% (초고완성)	6개월 이내 결과물 제출	1차년 9권 간행			
		2차년 20%	2차년 40%	2차년 60%	2차년 80%	2차년 100% (초고완성)	6개월 이내 결과물 제출	2차년 18권 간행		
			3차년 20%	3차년 40%	3차년 60%	3차년 80%	3차년 100% (초고완성)	6개월 이내 결과물 제출	3차년 27권 간행	
				4차년 20%	4차년 40%	4차년 60%	4차년 80%	4차년 100% (초고완성)	6개월 이내 결과물 제출	4차년 36권 간행

※ 5년 집필, 집필 후 2년 내 출판을 목표로 7차년 이후 매년 9권의 모노그래프 총서 간행

※ 영미권의 A급 학술전문출판사(Academic Press)의 엄정한 출판심사 관례를 고려하여 영어로 해외에서 출판할 경우 출판 시한 연장 가능.

□ 사업 최종 목표

○ 신집현전 태학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후, 미국의 인문고등연구원(The National Humanities Center), 프린스턴 대학교 고등연구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y)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집적 단지 조성

□ 사업 내용

○ 사업예산 : 총 500백만원

- 연구지원비: 9명 × 50백만원 = 총 450백만원
- 운영비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총 50백만원

항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콜로키움 개최등	20회×475,000원	9.5백만원
운영비	- 사무용품 9명×1백만원 -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9명×1.5백만원 - 각종 학술지원: 9명×2백만원	40.5백만원
총액		50백만원

○ 사업 기간 (1단계 5년, 2019~2023)

회계연도	규모	예산액(백만원)
2019년	9명	500
2020년	18명	1,000
2021년	27명	1,500
2022년	36명	2,000
2023년	45명	2,500

4. 추진 체계

구분	사업	기대효과
사업 목표	▪ 한국학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위한 지원 사업	▪ 창의적 한국학 연구서,모노그래프 생산 ▪ 우수한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분야	▪ 한국학 관련 전 분야 ▪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 미취업자	▪ 한국학 연구 환경 개선 ▪ 창의적 연구주제 활성화로 한국학 다양성에 기여

지원 방법	▪ 1인당 50백만원 연구지원금 ▪ 공동연구실제공 ▪ 실질적 지도 교수 지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집필을 위한 주제 전문가) ▪ **Fellow 상호간의 콜로키움** ▪ **Book workshop 개최** ▪ 국내외 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 신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이론적, 물적 토대 지원 제공으로 생애 최초 학문저술 집필 몰입 기회 제공
활용 방안	▪ 매년 집필 주제와 워크숍, 콜로키움 진행 ▪ 5년 후 모노그래프 간행 ▪ 한중연 **인증서 발급**	▪ 우수한 한국학 연구자 양성 ▪ 우수한 연구 성과물 산출 ▪ 인증서 발급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연구기관 취업에 활용

5. 기대 효과

□ **창의적 한국학 연구결과물 양산**에 기여

○ 한국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신진학자들이 학위 취득 후 참신한 문제의식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의적 저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계의 임팩트 있는 우수 연구 결과물 도출

※ 독일의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가 쓴 하빌리타치온 저서『공론장의 구조변동』과 같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살린 창의적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 야기

□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우수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육성**에 기여

○『한국학 학술진흥정책』의 인재육성 방안으로 우수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및 연구·교육환경의 유기적 체계구축의 성공사례로 제시

○ 안정적 지속적 연구과제지원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력 향상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한국학 연구의 양질의 개선 효과

○ 창의적 연구주제 몰입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성과 창출

○ 선도적 연구과제·성과의 전파 및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창의적 연구자 선순환 및 확대 재생산

참고 3-2 한국학 모노그래프 (한국학 대계 집대성)

1.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한국학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연구를 지원하고 이를 집적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한국학 저서 발간

○ 영미 선진국에서는 인문학자 개인의 모노그래프가 학계에 큰 영향을 주며 학계의 연구를 선도

※ 영미 대학에서 테뉴어 심사 시 모노그래프 중시

※ 논문 쪼개기의 학계 풍토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모노그래프를 중시함으로써 한국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한국학 대계 시리즈』기획·양산을 통한 학문적 수월성 제고

□ 타 기관 사례와의 비교

	모노그래프 (한국학중앙연구원)	저술출판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총서지원사업 (한국학진흥사업단)
대상	한국학분야 단독 학술저서	인문사회 전분야 학술서 및 교양서	교양총서 발간지원 (대중화 목적)
지원금액	연2,000만원	연1,000만원	연1,200만원
지원기간	5년	2~3년	3년
내용	대계집필에 국한 콜로키움 지원	저술 출판 자체에 국한	학술서, 교양서 병행발간을 목적으로함
비고	2019년 한국사상사대계 기획	2018년 총125과제	2017년 5과제 2018년 신규과제 중단

○ 한국학 모노그래프 사업(한국학 대계 집대성)의 비교 우위

- 한국학 분야의 전문 연구에 특화된 지원
- 창의적 모노그래프(단독 학술 저서) 및 대계 집필만을 지원
- 안정적으로 집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지원하고 연구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원고료로 지급
- 선발된 필자들의 워크숍과 콜로키움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

※ 미국의 National Humanities Center 등은 모노그래프 필자들이 Book Forum, 워크숍, 콜로키움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연간소요금액: 20백만원 (5년간 지원)

2.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 지원대상 : 우수 한국학 연구자(공모 및 지정을 통해 선정)

□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의 한국학 대계 발간 및 학술저서발간
  ○ 학술서 및 전문서 발간지원을 원칙으로 함

※ 교양서,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대상에서 제외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모노그래프 명저 집필·지원 9명×20백만원
  ○ 운영비 20백만원

<향후 5년간 운영계획>

회계연도	규모	예산액(백만원)
2019년	9건	200
2020년	18건	400
2021년	27건	600
2022년	36건	800
2023년	45건	1,000

※ 2023년 이후 매년 45명 내외규모로 선정

3. 기대 효과

□ 한국학분야의 대계 집필·발간 지원을 통해 인문학・사회과학의 사회적 활용 및 학문적 소통 증진

□ 한국학 우수 학술서 및 전문서 저술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저술 의욕 고취

□ 『한국학 개인연구 활동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연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한 한국학 연구자 육성

□ 생애 전환기를 맞는 **중견 한국학자들**에게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집대성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 분야와 연구 방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참고 3-3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 사전 편찬

1. 사업 목적

□ 한글 창제 정신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계승
  ○ 한글을 창제하기 위하여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기울였던 연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학 분야 학술용어들의 생성 연원과 의미 변천 및 관련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 한국학에 속한 여러 분야의 학술용어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성과의 종합적인 정리를 통한 학문적 소통 및 학술용어의 개념화를 통한 한국학의 토대 마련

□ 한국학 관련 연구들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학술용어들에 대한 학술사적인 점검 필요성 증대
  ○ 독일, 프랑스, 영국-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각 국가별로 주요 학술용어들의 역사에 대한 탐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타국 사례】
① 독일: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이 주도하여 편찬한 개념사 사전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② 프랑스 언어학자 에밀 벤브니스트의 인도-유럽 사회의 제도, 문화, 어휘 연구 『Vocabulaire des institutions Indo-Européenne』
③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헝가리 등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유럽 어휘 프로젝트(European Lexicon Project)』
④ 중국 사회과학원: 18세기 이후 신조어 생성과 변화 연구
⑤ 일본: 이와나미 문고의 『사고의 프론티어』 시리즈

  ○ 학술용어들에 대한 연구(사료 정리, 용례 사전, 개념사 사전)를 통한 현재의 학문적 성취정도 및 미개척분야를 확인

2. 사업내용

□ 사업 개요
  ○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 편찬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에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보급**함
  ○ 개념사 사전 편찬이 완료 후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자료 집성』, 『한국학 학술용어 개념사 용례 및 분류 체계』 등의 후속조치 추진

□ 주요 내용

○ 학술용어 개념사 사전 편찬위원회에서 선정한 12개의 전문 학술용어에 대한 개념사 사전 집필을 검증된 학계 전문가에게 의뢰 (항목당 200매 내외, 총 4,000매)

1) 집필전 준비 단계: 개념 및 용어 선정 및 원고 청탁 - 6개월
2) 원고 집필 6개월 (200매)
3) 원고 검토 및 수정
4) 사전 원고 전체 집필 기간 : 한 항목 당 1년 6개월

○ 종이 출판을 지양하고 web 출판을 통하여 Update 가능토록 함

○ 『개념사 사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념사 자료 집성』(매년 5개 학문 분야 12개 용어를 선정하여 각 용어 당 전근대 및 근현대 자료 20건, 도합 1,000건의 자료를 집성함), 『개념사 용례 및 분류 사전』 등을 기획

3. 소요예산

□ 개념사 사전 집필 비용

○ 180백만원(12항목×15백만원)

- 항목 당 집필료 9백만원
- 자문/검토/수정/ 6백만원

□ 편찬위원회 운영비 및 웹(출판비)

○ 운영비 12백만원

○ 웹(출판비) 15백만원

4. 기대효과

□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는 학술용어와 혼재된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한 개념사 사전을 편찬하여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 공구서 제공

□ 한국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추동력 발휘

□ 국내외 한국학 전공자들의 학문적 소통에 기여

□ 한국학 관련 학술용어들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한국학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

참고 4 해외한국학학술활동지원 - 한문연수 운영

1. 추진 배경 및 목적

○ 해외한국학자 및 한국학전공학생들에게 전근대 한국학에 대한 자료 연구에 필수적인 한문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근대 한국학 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외한국학자의 한국학역량을 제고하고 한국학 범주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해외한국학 지원의 결실

- 1974년 정부정책으로 시작된 해외한국학지원은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하였음

<해외한국학 강좌개설현황>

구분	2007년	2017년
개설강좌수	55개국, 632개	105개국, 1,348개
한국학센터 수	16개국, 43개	32개국, 119개처

☞ **10년간 약2배이상 한국학관련 강좌 개설성과 야기**

- 향후 전 세계적으로 신진한국학자의 양적팽창이 기대되며, 한국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제반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현재 해**외한국학자의 연구분야는 근현대분야에 쏠려있는 바. 원인**은 전근대 연구에 필수적인 한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한문교육의 장이 없기 때문임.

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문에 대한 철저한 교육 기회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코리아헤럴드 2017.12.10., 한국고전 영문 번역 국제학술회의 참석자 로스킹 인터뷰 등)

○ 전근대 해외한국학연구 및 연구자의 부재는 주변국의 역사왜곡 및 연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학연구의 쏠림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야기될 수 있음

한국학은 통시적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학이란 무엇인가를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세부연구분야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근대한국사에 국한된 한국학 개념하에서의 세부연구는 한계점을 노출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해외한국학의 저변확대와 연구의 질적향상에 필수적인 「학술적 한문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외부 사례 조사

○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국내 한문학자 양성 기관)

- 1976년 제1기 한문연수생을 선발한 이래 매년 10명씩 선발하여 3년 과정으로 한문교육을 실시하여(수업 자료: 『논어』, 『맹자』 등), 향후 연수생이 교수, 연구원, 강사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한문학자 양성에 국한

·연수생에게 1인 1실의 연구실이 제공되며 매월 5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함.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문교육연수 프로그램

- 대상자: ⅰ) 기존 해외한국학 연구자 ⅱ) 한국학과 학생 ⅲ) 국내체류 해외한국학 펠로우
- 과 정: 총2개(연구양산형 및 강좌형)과정으로 개설하여 신청자의 한문연수의 목적에 따라 코스웍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과정	코스	내 용
연구양산형	어드바이저코스 (advisor Course)	·기존 연구자의 연구활로 개척을 위한 과정
강좌형	응용 코스	·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을 목적으로 강좌형태로 운영
	중급 코스	
	기초 코스	

- 운영특성:
  - 코스웍마다 테스트를 통한 한문역량 인증제 실시
  - Fail의 경우 한국학연구과제 참여제한 등 페널티제도 마련
  - 국가예산에 대한 중복수령금지 등 엄격한 행정관리

4. 사업 내용

지원자격	인원	기간	지원내용
한국학 전공 해외 연구자	연3~6명 내외	12개월 범위내	·연구지원비 ·왕복항공료 **·한문강좌 및 개별 연구** **·타 기관과의 합동강좌 개설**

5. 세부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

일 정(날 짜)	세 부 내 용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사업 계획 수립
전년도 11월	사업 공모
전년도 12월	신청서 접수 및 선정심사
1월	연수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2월 ~ 10월	한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1월	인증서 발급
12월	운영결과 보고

6. 세부 예산 내역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산출근거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 연구지원비: 3건 × 6개월 × 250만원 = 45백만원 · 항공료: 3건 × 2백만원 = 6백만원 · 한문강사료: 15주 × 9시간 × 2학기 × 8만원 × 2명 = 43.2백만원 (한국학대학원 시간강사 시간당 8만원 기준 적용) · 특강 및 개별수업: 3건 × 0.5백만원 = 1.5백만원 · 기타운영비: 4.3백만원

(※ 최종 사업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구지원건수와 수업시수, 강사수 및 단가는 조정될 수 있음)

7. 기대 효과

○ 전문적인 한문 교육을 통해 해외 한국학자의 요구 수용 및 해외 한국학 연구분야의 질적 다양화

○ 본원 연구 인력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외 한국학 네트워크 강화

○ 「한국학관련 한문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교재에 대한 해외보급을 통한 해외한국학교육 및 연구기관의 질적 제고

8. 향후 사업 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2020년도	연 10건 지원	연구자 및 교육관리등 피드백을 통해 성과확대 노력
2021년도	연 15건 지원	
2022년도	연 20건 지원	

참고 5 한국문화강좌 운영

1. 목적

○ 해외 소재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 또는 한국학 과목을 이수한 외국인 학부생들(2학년 이상)을 초청하여 학술적인 한국학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미지 제고와 향후 한국학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추진배경

○ K-pop과 K-drama의 인기에서 기인한 한류열풍을 한국학으로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친한세력을 양성하고자 함

3. 현황 및 문제점

○ **신청자 증가에 따른 참가자 확대 필요(기존: 30명 → 확대: 40명)**

연도	신청자	선발자	선발률
2013년	24개국 96명	23개국 31명	32.3%
2014년	26개국 64명	26개국 31명	48%
2015년	46개국 234명	30개국 30명	13%
2016년	60개국 299명	30개국 30명	10%
2017년	58개국 381명	30개국 30명	7.8%

○ **차별화된 한문문화 프로그램운영**

-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다방면으로 있으나, 한국적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하여,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한국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타 한국문화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환 학생 제도 등 학생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본원의 한국문화강좌는 향후 한국학 관련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원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국학적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점에서 향후 한국학자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데에 기여함

5. 사업 내용

○ 해외 한국학 전공·부전공자 및 관련 수업 이수자들에게 한국문화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증대 기회 제공

○ 한국문화강좌는 한국어 수업, 한국학 특강, 전통문화체험, 공연 관람 및 지방답사 등 한국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연 1회 개최, 매년 7~8월 중(4주)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규모 : 40명
- 지원근거 : 공모·심사를 통해 참가자 선발

1993년 처음 개최된 한국문화강좌는 2017년 제25회 한국문화강좌에 27개국 28명이 참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19명이 참가하였음.

6. 세부 예산 내역

○ 소요예산: 80백만원

○ 산출근거

구분	산출내역: 총 80백만원
2019년 제27회 한국문화강좌 운영	- 원내 시설사용료, 인쇄물 제작, 수당: 27백만원 - 버스 임차료: 5백만원 - 개도국 지원자 항공료 보조비: 4백만원 - 체험비, 지방답사비 및 식비: 40백만원 - 일용임금: 3백만원 - 공공요금: 1백만원

7. 기대 효과

○ 한국문화에 관한 심도 있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한국학에 대한 이해도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미지 제고

○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고취를 통한 한국학대학원 진학 유도

8. 향후 사업 계획

○ **한국학 취약 지역**인 아프리카 및 남미에서 매년 2명의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강좌 종료 후 실시되는 참가자 설문조사에서 높은 참가자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강좌 운영에 만전을 기함.

※ 향후 3년간의 사업 운영 방향

연도	예산액	사업규모	한국학 취약 지역 참가자 수	참가자 만족도
2020년	100,000,000원	50명	2명	9.5점
2021년	100,000,000원	50명	2명	9.5점
2022년	100,000,000원	50명	2명	9.6점

9. 주요실적

○ **최근 3년간 한국문화강좌 참가학생 중 한국학대학원 진학자: (총4명)**

No.	이름	국적	강좌참여연도	입학시기	전공	학위
1	Gunay Sultanova	아제르바이잔	2015년	2016 후기	경제학	석사
2	Czentye Mihai Levi	루마니아	2015년	2017 후기	국문학	석사
3	Xu Mengmeng	중국	2015년	2017 후기	한국문화학	석사
4	Sribna Zarina	우크라이나	2017년	2018 전기	정치학	석사

(※ 상기 실적은 2015년부터 추적한 것이며, 매해 누적인원 수 증가에 따라 대학원 진학생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기타**: 한국문화강좌 출신 학생의 한국학대학원 지원 및 국내 타학교 지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참고 6 노후시설 개선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약 55,000평에 약12개의 중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본원의 특성상 설립이후 40여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보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매년 연구사업 중심의 예산증액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됨

2. 주요내용

○ 건축시설 보수 - 장서각 노출 방수, 기숙사 욕실보수 등

○ 기계시설 보수 - 시습재 보일러 교체 등 기계시설 유지,보수

3. 지원 필요성

○ 건축시설 개·보수

- (장서각 노출방수의 주기적 유지 관리) 장서각의 옥상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급 중요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건물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3년에 1회마다 상도(방수층 보호피막)를 시공필요 【참고 6-1】
- (기숙사 욕실보수) 대학원생의 기숙사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샤워실 타일 탈락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참고 6-2】

○ 기계시설 개·보수

○ (시습재 보일러 교체)'03년에 설치된 기숙사 보일러(총 3대)의 내용연수(11년)가 경과됨에 따라 열전도율 저하, 매년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가 증가

4. 소요 예산

○ 건축시설 개·보수 : 145백만원

구 분		산출 내역	계
장서각 방수	우레탄 방수	2,875㎡×30천원	86,250천원
	소 계		**86,250천원**
기숙사 욕실(샤워실) 강화도어 보수	강화도어 보수	91개×650천원	59,150천원
	소 계		**59,150천원**
총 계			**145,400천원**

○ 기계시설 개·보수 : 279백만원

구 분		산출 내역	계
시습재 보일러 교체	온수보일러	1대×107,830천원	107,830천원
	난방보일러	2대× 55,764천원	111,528천원
	설치 및 철거 등	1식×60,000천원	60,000천원
총 계			**279,358천원**

참고 6-1 장서각 우레탄 방수

☐ 신장서각 노출방수의 주기적 유지 및 공법 교체 등

○ 2010년 준공된 신장서각은 최상부의 방수가 노출방수(노출우레탄 방수)로 시공하여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하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조치를 하지 못한 실정

○ 기본 골조위에 ①프라이머(일명 본드) 도포, ②중도(방수층), ③상도(방수층 보호피막)로 이루어지나, 상도의 경우 최소 3년 ~ 최대 5년에 한번은 피막 하여야 하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단기 계획으로는 장서각이라는 건물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소 3년에 1회마다 상도(방수층 보호피막)를 시공하고, 노출우레탄방수의 사용연한(최장 15년으로 봄)이 경과하면, 전체를 철거하고, 비노출복합방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방수공법 및 금액 산출표

노출 도막(우레탄)방수[시습재, 장서각]	비노출 복합방수[문형관]
④상도(3년 주기 보수하여야함)	⑤콘크리트 누름타설(방수층 매립하여 보호)
③중도(방수층으로 방수연한 15년)	④도막(방수층2차)
	③시트(방수층1차)
②하도(본드)	②하도(본드)
①옥상 바닥 골조(콘크리트)면	①옥상 바닥 골조(콘크리트)면
금액 : 30,000×2,875㎡= 86,250,000원	**금액 : 145,000×2,875㎡= 416,875,000원 (문형관 단가 기준 콘크리트비용 포함)**

※ 현장사진

실내 천정 누수

옥상 방수 하자 발생

참고 6-2 기숙사 욕실(샤워실) 강화도어 보수

□ **추진배경**

○ 대학원생 기숙사(2003년 11월 완공)의 노후로 샤워실 이용시 타일 탈락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필요성**

○ **예산 부족** : 2018년 연구원의 시설·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124백만원에 불과하며, 각종 법정 점검, 시험, 세관 및 공용차량 유지 등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는 약 60백만원이 소요됨. 따라서 잔여액(64백만원)으로는 기계·전기·통신·영선·소방 등의 유지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안전성 결여** : 기숙사 욕실(샤워실) 강화도어의 노후화(부식)로 개폐가 어려워 많은 힘이 소요됨. 이로 인해 벽타일이 탈락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산출근거]

· 기숙사 욕실(샤워실) 강화도어 등 보수 : 59백만원

구 분	산출 내역	계
기숙사 욕실(샤워실) 강화도어 보수	91개×650천원	59,150천원
계		**59,150천원**

※ 현장사진

참고 7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신축

1. 사업 목적

□ 한국학대학원은 개원이후 38년 동안 94명의 한국학 분야 외국인 박사와 283명의 외국인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외국의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한국문화를 현지에 알리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외국인 입학 지원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현재 38개국에서 온 154명의 외국인 석·박사생 재학 중). 또한 한국학 진흥의 국가정책의 결실로 인해, 2017년 105개국에 1300여개의 한국학·한국어 강좌가 개설됨에 따라 석박사과정의 외국인 학생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은 해외한국학진흥정책에 수반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는 부재한 상태이며, 기혼자 혹은 가족 단위의 외국인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 부재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유치와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 내국인 학생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 기숙사는 수용인원이 부족과 공간의 협소, 기초 복지시설이나 wi-fi 설비 미미 등 시설 여건이 **지극히 열악한 상태**임.

□ 최근 본 대학원의 외국인 입학생의 국가범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본국의 대학교 및 대학원 기숙사 시설보다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신축』은 우수한 외국인을 한국학 분야로 유치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2. 사업 내용

□ 현장위치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내
□ 현장지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480번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기타학교시설(학교부지)
□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부속시설(기숙사)
□ 사업기간 : 54개월(4년 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51,344㎡(학교부지)
 ○ 연 면 적 : 9,680㎡(약 2,928평)
 ○ 주요시설{(Ⅳ 면적 계획(Space Program)참조)
  -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170실(대학원생 기숙사 150실, 기혼자 기숙사 20실)
  - 복지시설(휴게실, family room, 공동 취사장 및 식당, 공동 세탁실 등)
  - 관리시설 및 체육시설(체력단련실)
 ○ 규모 : 지하1층 ~ 지상 4층 규모(건축면적 3,700㎡ 이하)

3. 검토 사항

가. 관련 법률 검토

검토항목	근 거 법	검 토 내 용	비고
대형공사입찰 방법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사업규모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하로 해당 사항 없음.	×
총사업비관리 대상공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3조(교육부)	기재부 - 200억 이상, 교육부 - 50억 이상으로 총사업비관리대상에 해당 됨.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45조(도시계획시설결정)	학교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세부조성계획 입안 대상임.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도시교통촉진법 제13조3, 제15조	주차대수 증가 및 도로개선(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변경)심의를 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사항 없음.	×
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인.허가 대상이며, 해당관청의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법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이하이므로 현 학교부지에서 건축면적 3,700㎡를 넘을 수 없음.	△
소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 시 소방분야 협의(허가)필요.	○
문화재지표 조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81조	해당 없음.	×
설계(VE)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해당됨.	○
공사감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건설사업관리, 시공감리 등)	교육연구시설 중 부대시설(기숙사)은 건설사업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공감리 대상임.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적용	건축법제66조의2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규정 제6조	신축(증축)면적이 연면적 3,000㎡이상일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12조1항, 시행령 제15조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신축 건축물로 공급의무비율 30% 반영(2020년 기준)하여야 함.	○
예술장식품 설치	문화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교육연구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

※ ○ : 해당법률 적용, × : 해당법률 미적용, △: 해당법률 추가검토 필요

나. 사업 소요기간 및 연차별 사업비 분석(296억)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조달청 약정체결																					2개월
사업추진계획 확정																					3개월
설계과업내용 협의																					1개월
기술용역업체 선정																					3개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3개월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설계용역 (설계VE 포함)																					9개월
설계도서 검사·검수																					3개월
시설공사 계약자 선정																					
공사 착공 및 공사기간																					30개월
준공검사·검수실시																					3개월
건물 시운전																					
인수인계 및 사업종료																			사업종료		
건물 개관 및 입주																				개관	
소요예산	기술용역	기술용역 : 3.47억 (기본계획 2.00억, 도시계획변경 1.47억)				기술용역 : 19.29억 (설계비 15.59억, 교통0.90억, 감리비 2.80억)				기술용역 : 3.10억 (감리비 3.10억)				기술용역 : 3.1억 (감리비 3.10억)				기술용역 : 0.30억 (감리비 0.30억)			29.26억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40억				시설부대비 0.20억				시설부대비 0.15억				시설부대비 0.10억				시설부대비 2.90억			3.75억
	공사비	-				공사비 76.00억 (공사비76.00억)				공사비 60.00억 (공사비 60.00억)				공사비 60.30억 (공사비 60.30억)				공사비 57.00억 (공사비57억)			253.30억
	기자재비 구입	-				-				-				-				기자재구입및 비품비 : 9.89억			9.89억
계		**3.87억**				**95.49억**				**63.25억**				**63.5억**				**70.09억**			**296.20억**

※ 연도별 소요예산은 사업예산에 따라 약식(계속비)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산 집행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가용부지 검토(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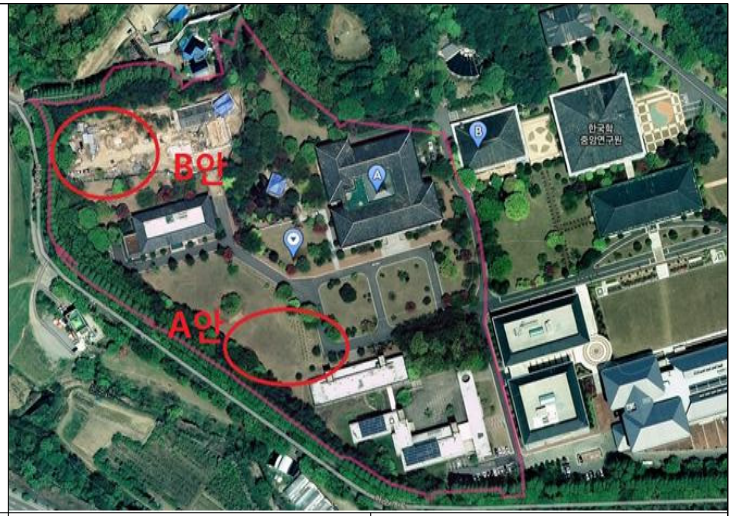	
비교(안)	**A안**	**B안**
내용	-기존 기숙사(시습재)와 인접하여 설치	-기존 기숙사(시습재)와 이격하여 설치하는 방안
특징	-기숙사와 인접하여 기숙사 Zone으로 통합관리가 가능 -기존 기숙사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음 -부지면적 3,000㎡이상으로 유휴부지(휴식공간 등)가 많음 -대학원생의 이전(이사 등)에 유리함.	-대학원과 인접하여 대학원생의 수업 동선이 단축 -공사 시 후문 사용으로 연구원 소음 등 피해 저감 -부지면적 3,000㎡이하로 협소하여 유휴부지(휴식공간 등)가 적음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고층(4층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

4. 면적 계획(Space Program)

구 분	실 명	기준면적 (실당면적)	실 수	면 적 (실당면적×실수)	비 고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대학원생 기숙사	28	146실	**4,088**	전용면적 29㎡ × 146실
	대학원생 장애인 기숙사	30	4실	**120**	전용면적 32㎡ × 4실
	기혼자(부부)기숙사	48	19실	**912**	전용면적 50㎡ × 19실
	기혼자(부부)장애인 기숙사	53	1실	**53**	전용면적 58㎡ × 1실
관리시설	안 내 실	29	1실	**29**	메인동 1실(기준층에 배치)
	사 감 실(교수)	40	1실	**40**	전용면적 50㎡ × 1실
	사감보실(학생)	32	2실	**64**	기존 시습재(기숙사) 기준
	중앙(인프라)통제실	22	1실	**22**	문형관 통제실 기준/2
	기계 · 전기실	600	1실	**600**	시습재(기숙사) 면적대비 산출
	기자재창고 / 자재창고	29	2실	**58**	전용면적 29㎡ ×2실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218	1실	**218**	헬스 + 요가실 포함 (문형관기준)
	락커 · 샤워실	38	2실	**76**	탈의실, 샤워실(남여 각2실)
복지시설	휴 게 실	29	6실	**174**	전용면적 29㎡ ×각층 6실
	family room	58	3실	**174**	외국인 초청 가족실
	공동취사장 · 식당	118	2곳	**236**	시습재(기숙사) 면적대비 산출
	공동 세탁실	25	2곳	**50**	시습재(기숙사) 면적대비 산출
공용공간	복도, 계단, 화장실 등			**2,766**	전용면적 대비 40% 적용
합 계				**9,680**	

※ 상기 면적계획(space program)의 내용은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소요 예산

예 산 항 목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비	비 고
1. 공 사 비		25,326,689,000원	
합 계		**25,326,689,000원**	
2.설계 용역	-설계비 (계획+중간+실시)	1,350,000,000원	- 기술용역(설계비)
	-친환경인증 (최우수등급)	130,000,000원	- 예비인증 30%(설계비) - 본인증 70%(공사비)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50,000,000원	- 에너지효율(1등급)적용
	-지능형 건축물 (해당 없음)	0원	- 법령상 의무사항 아님
	-설계 VE용역	120,000,000원	- 중간+실시설계 2회적용
소 계		**1,650,000,000원**	
3. 감리용역		932,000,000원	- 시공감리 대상으로 산출
소 계		**932,000,000원**	
4.기타 용역	-기본계획	200,000,000원	- 통합 기숙사 기본계획수립
	-교통영향분석(변경)	90,000,000	-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대상
	-도시계획시설(변경)	147,000,000원	- 학교 부지일 경우 적용
소 계		**347,000,000원**	
5. 시설부대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포함)		374,834,000원	- 기획재정부 지침 기준 - 맞춤형서비스 일괄대행 기준
소 계		**374,834,000원**	
6. 기자재구입 및 비품비		989,288,000원	
소 계		**989,288,000원**	
총 합 계		**29,619,811,000원**	

6. 입사생 현황 및 타 대학 사례

▢ 기숙사 입사생 현황

구 분	2004년	2010년	2013년	2017년	2018년(상)
기숙사 입사생 수	128명	144명	218명	247명	247명
재적생 수	172명 국외: 62명 국내:110명	240명 국외:111명 국내:129명	261명 국외:138명 국내:123명	286명 국외:156명 국내:130명	310명 국외:158명 국내:152명

※ 2004년 대비 외국인 재적생 155% 증가, 외국인 수료생(연구논문 등록생) 138명은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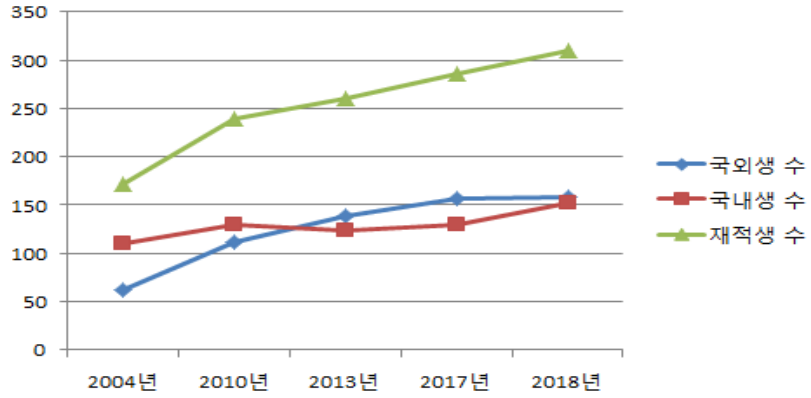

▢ 타 대학 사례

구 분	기혼자 기숙사	대학원생 기숙사	비 고
서울대학교	200실 보유 (14~15평 규모)	1인 1실 ~ 2인 1실 (일반대학생과 분리)	
카이스트 (KAIST)	110실 보유 (15평 규모)	1인 1실 ~ 3인 1실 (일반대학생과 분리)	
광주과학기술원 (GIST)	180실 보유 (14~21평 규모)	2인 1실 (일반대학생과 분리)	
한국학대학원	없음	1인1실 ~ 4인1실	

7. 단계별 사업추진 검토

가. 기획단계

1)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설계+시공)관리를 위한 약정체결
2)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3) 사업추진계획 확정

나. 설계단계

1) 설계용역 + 설계VE(Value Engineering)시행
   ㅇ 설계용역 발주방안 비교 검토
   - PQ(Pre- Qualification)심사에 의한 입찰, 설계 현상공모에 의한 입찰 등

구 분		PQ심사에 의한 입찰	설계현상공모
1. 내용		ㅇ업체의 기술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 심사(PQ) 후 입찰참가자 선정	ㅇ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
2. 특징	장점	ㅇ부실설계, 용역방지와 공사규모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 ㅇ무경험업체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	ㅇ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선정 가능 ㅇ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상징성 있는 시설물에 적합
	단점	ㅇ설계현상 공모보다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접할 기회가 적음 ㅇ신규업체의 진출을 차단	ㅇ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시비 우려 ㅇ지나치게 디자인 위주의 설계로 경제성 및 시공성 경시 우려
3. 적용 건물		ㅇ문형관, 장서각	ㅇ시습재(기숙사)

※ 본 사업은 연구원 경내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으로 설계현상공모 보다는 PQ 심사에 의한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설계VE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로서 총공사비 100억 이상은 의무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용역 시행

ㅇ 사업부지(운중동480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성남시 세부조성 계획 수립(변경) 결정 및 고시가 되어야 함.

3)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시설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증가 및 도로개선(변경) 등이 발생 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변경)심의를 받아야 함.

※ 기존 심의 의결 내용 변경 시(주차대수 5%이상, 건축면적 증가 등)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8조에 의거 변경심의 대상임.

다. 공사 및 감리단계

1) 공사발주(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 공사입찰방법 비교 검토

- 일반(기타)공사, TurnKey방식 등

구 분 / 공사발주		일반(기타)공사	TurnKey 방식 (설계.시공일괄입찰)
1. 기획단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검토 ○기본계획	
2. 입찰방법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거	
3. 설계자선정		○설계용역 입찰공고 - 계획설계(Master plan)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설계.시공일괄입찰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기술심의 및 평가심의에 의한 선정
4. 시공자선정		○공사입찰공고 ○현장설명 ○공사입찰 및 계약	○공사입찰공고(기본설계기간 포함) - 기본설계 심의 및 보완 - 실시설계 심의 - 공사계약
5. 특 징	장 점	○안정적(오랜 계약 선례를 확보)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인 발주자의 의견 반영 가능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설계 및 시공을 동일업체에서 실시함으로서 책임소재가 분명함 ○공사 진행과정 설계변경 가능성 감소
	단 점	○단계별 분리발주로 절차 번잡	○발주자 의견 반영이 소극적임 ○발주자 제안과 다른 업체가 선정 가능
비 고		○시습재, 장서각, 문형관, 청계학당은 일반(기타)공사로 발주	

※ 본 사업은 신규복합공사가 아닌 학교부속시설(기숙사)로서 **사용자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므로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기타)공사의 PQ심사를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감리용역(조달청 설계+시공관리서비스+시공감리)

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사업(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을 단계별로 관리해 주는 맞춤형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경우 설계+시공단계를 관리·요청하여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감사수행 업무 등을 위하여 맞춤형서비스관리 요청하고자 함.

(※ 시습재, 장서각, 문형관의 시설사업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시행함.)

나) 감리용역

○ 감리발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전문 회사 등을 대상으로 감리용역을 시행함.

○ 감리는 건설사업관리(CM),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등이 있으나, 조달청의 사업관리+시공감리로 상호 보완적 사업 관리가 가능함.

구 분	조달청+시공감리	건설사업관리(CM)
1. 내용	○조달청(공무원)+용역업체(민간)가 상호 보완적 공사관리	○용역업체(민간)가 공사관리
2. 특징	○사업의 투명성 확보 ○계약전문기관(조달청)의 업체선정으로 공정성 확보	○의사결정의 단순화로 기간단축가능 ○국내 도입기간이 짧아 업체선정 시 위험부담(Risk)이 있을 수 있음
3. 예산	○약13억 소요(조달청3억+감리10억)	○약 20억 소요
4. 관리	○상호보완적 사업관리	○감독권한을 포함한 일방적 사업관리
5. 적용 건물	○문형관, 장서각, 시습재(기숙사)	○없음

라. 사후관리 단계

○ 사후관리

- 준공 후 하자검사 및 점검 실시(2년간 총4회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61조)

[303]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7,059	19,813	19,463	△350	△1.8

* 사업코드 : 11 - 0 - 050 - 052 - 2400 - 2433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최원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고전번역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6,650백만원**

▪ 전년도 인건비 : 6,463백만원
▪ 전년도 정원 증원 인건비(1명×6/12×46백만원) : 23백만원
▪ 신규 정원 증원 인건비(2명×6/12×47백만원) : 47백만원
▪ 공통인상(1.8%) : 117백만원

○ **운영비 : 956백만원**

▪ 전년도 운영비 : 1,049백만원
▪ 전년도 한시소요 감액 : △143백만원
▪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용역 : 2백만원
▪ 청사이전에 따른 3개월치 운영비 : 42백만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 6백만원

○ **기관고유사업비 : 12,822백만원**

[고전번역사업] : 8,476백만원

▪ **한국문집번역 : 350백만원**

<사업개요>

- **(한국문집번역)**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주요 문집 10책을 교감·표점·번역

<산출내역>

- 한국문집번역 (10책×35백만원) : 350백만원

▪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 : 4,535백만원**

<사업개요>

- 권역별거점연구소를 통해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주요 문집 및 지역적 특색을 가진 문집을 교감·표점·번역

<산출내역>

- 대형거점연구소 지원(1개소×540백만원) : 540백만원
- 준대형거점연구소 지원(2개소×420백만원) : 840백만원

- 중형거점연구소 지원(3개소×300백만원) : 900백만원
- 소형거점연구소 지원(6개소×180백만원) : 1,080백만원
- 간접비(1식×336백만원) : 336백만원
- 성과관리비(1식×184백만원) : 184백만원
- 성과관리 출판비(1식×535백만원) : 535백만원
- 클러스터 지원비(12개×5백만원) : 60백만원
- 번역정보수집비(1식×60백만원) : 60백만원

▪ 역사문헌번역 : 2,991백만원

<사업개요>

- **(승정원일기 번역)**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 56책 번역
- **(일성록 번역)** 세계기록유산인 일성록 18책 번역
- **(조선왕조실록 번역 현대화)** 현대화 표준 지침에 의거하여 조선왕조실록 9책 재번역

<산출내역>

- 승정원일기 번역(56책×35백만원) : 1,960백만원
- 일성록 번역(18책×35백만원) : 63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번역 현대화(9책×44.5백만원) : 401백만원

▪ 특수고전번역 : 600백만원

<사업개요>

- **(특수고전)** 분야별 특수고전 자료 8책 교감·표점·번역

<산출내역>

- 특수고전번역(8책×75백만원) : 600백만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1,041백만원

▪ 원전정리 : 911백만원

<사업개요>

- **(한국문집총간 색인)** 『한국문집총간 속편』 150집에서 기문(記文)류 내용의 편목을 선별하여 대표명 아래에 모아 배열함으로써 『한국문집총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 **(한국고전문헌총목 편찬)** 국내외 소장 한국고전문헌 전체를 현대 학문 기준에 맞추어 주제별로 분류, 학문 분야별 고전문헌의 정리·번역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 **(한국고전총간 편찬)** 한국의 모든 고전적(古典籍)을 정리, 집대성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에 제공하는 편찬 간행사업

<산출내역>

- 한국문집총간 편목색인(2책×30.5백만원) : 61백만원
- 한국고전문헌총목 편찬(1식×250백만원) : 250백만원
- 한국고전총간 편찬(1식×600백만원) : 600백만원

▪ 고전번역연구 : 130백만원

<사업개요>

- **(기획연구)** 고전번역에 관련된 연구과제 및 사업정책관련 정책과제 수행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고전 및 고전번역 관련 학술회의 개최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고전번역학 정립과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연계 도모
- **(고전번역연감발간)** 국내의 모든 고전번역 정보를 망라하는 연감 1책 발간

<산출내역>

- 기획연구(1식×27백만원) : 27백만원
  · 고전번역 기획연구(1식×27백만원) : 27백만원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 49백만원
  · 학술지 『민족문화』 발간(2회×17백만원) : 34백만원
  · 학술대회 개최(1회×15백만원) : 15백만원
- 고전번역연감 발간(1책×54백만원) : 54백만원

[번역성과보급사업] 1,981백만원

▪ 정보화사업 : 773백만원

<사업개요>

- **(서지DB구축·운영)** 국내에서 출간된 고전번역서에 대해 역자정보·내용·판본형태·출간연도 등 고전번역서 서지 관련 정보DB 구축
- **(고전종합DB구축·운영)** 국내 출간 고전번역서와 고전원문자료 등 103책을 DB로 구축,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고전종합DB 서비스 개선)** 고전자료 이용의 활성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산출내역>
- 서지DB 구축·운영 : 52백만원
- 고전종합DB 구축·운영 : 721백만원
  · 번역서 DB 구축(100책×3.31백만원) : 331백만원
  · 원문 DB 구축(3책×30백만원) : 90백만원
  · 고전종합DB 서비스 개선(1식×100백만원) : 100백만원
  · 유지보수비(1식×200백만원) : 200백만원

▪ 대중화사업 : 1,208백만원

<사업개요>
- **(국민고전자문서비스)** 한문고전 자료와 관련된 일반인, 학계, 문화계의 다양한 요구나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 **(도서출판)** 번역원 성과물 및 대중적인 고전 관련 도서 출판
- **(고전번역홍보)** 고전번역 계간지『고전사계』발간 및 우리 고전의 홍보

<산출내역>
- 국민고전자문서비스(1,300건×47천원) : 61백만원
- 도서출판(75책×15백만원) : 1,125백만원
- 고전번역홍보 : 22백만원
  · 고전사계발간(4회×5.5백만원) : 22백만원

[번역인재양성사업] 975백만원

▪ 고전번역교육원운영 : 845백만원

<사업개요>
- **(교육원 운영)** 고전번역인재 양성을 위해 부설 고전번역교육원(서울교육원, 전주·밀양분원)을 설치·운영

<산출내역>
- 서울교육원 운영 : 530백만원
  · 정규과목 강사료(21과목×32주×3시간×7만원) : 140백만원
  · 특강과목 강사료(2과목×40일×3시간×7만원) : 17백만원
  · 서원(집중)학습 강사료(710시간×7만원) : 49백만원
  · 번역후계자·우수교육생 장학금(1식×280백만원) : 280백만원
  · 서울교육원 운영비(1식×44백만원) : 44백만원

- 전주분원 운영 : 156백만원
  · 정규과목 강사료(12과목×32주×3시간×7만원) : 81백만원
  · 특강과목 강사료(2과목×18일×3시간×7만원) : 8백만원
  · 우수교육생 장학금(1식×42백만원) : 42백만원
  · 전주분원 운영비(1식×25백만원) : 25백만원
- 밀양분원 운영 : 159백만원
  · 정규과목 강사료(12과목×32주×3시간×7만원) : 81백만원
  · 특강과목 강사료(2과목×18일×3시간×7만원) : 8백만원
  · 우수교육생 장학금(1식×24백만원) : 24백만원
  · 밀양분원 운영비(1식×46백만원) : 46백만원

▪ 인재양성지원 : 130백만원

<사업개요>
- 국내 고전번역협동과정 재학 대학원생 중 고전번역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졸업 후 고전번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번역인력을 관리

<산출내역>
- 협동과정 석박사 장학 지원 : 130백만원
  · 석박사 장학금(12명×2학기×5백만원) : 120백만원
  · 장학생 선발 전형비(2회×5백만원) : 10백만원

[신청사이전비] 349백만원

<사업개요>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따른 신청사 건물 취득세 중과분 납부

※ 신청사 현황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진관동 163-5번지 일원
·시설 : 부지 면적 2,975.2㎡, 건축 연면적 7,500㎡
·사업기간 : '15.1 ~ '18.5.(총사업비 22,598백만원)

<산출내역>
- 취득세(1식×349백만원) : 349백만원

○ **자체수입 : △965백만원**

- 이자수입(3,900백만원×1.4%(예금평잔×정기예금이자율) 55백만원
- 도서판매수입 57백만원
  - 도서판매(2,590부×22천원) 57백만원
- 교육원수입 155백만원
  - 연수과정수업료(109명×500천원×2학기) 109백만원
  - 특강수업료(300명×120천원) 36백만원
  - 교육원신입생전형료(220명×45천원) 10백만원
- 잡수입 109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5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9,813**	**19,463**
○인건비	**6,463** (전년도 6,235) (공통인상 2.6% 163) (전년도 정원증원 2명×6/12×42=42) (신규 정원증원 1명×6/12×46=23)	**6,650** (전년도 6,463) (전년도 정원증원 1명×6/12×46=23) (신규 정원증원 2명×6/12×47=47) (공통인상 1.8% 117)
○운영비	**1,049** (전년도 906) (청사이전 운영비 127) (비정규직 처우개선 16)	**956** (한시소요감액 △143)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용역 2) (비정규직 처우개선 6) (청사이전에 따른 3개월치 운영비 42)
○기본사업비	**13,242**	**12,822**
▪ 고전번역사업	**8,476**	**8,476**
- 한국문집번역	350 (문집번역10책×35)	**350** (문집번역10책×35)
-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	**4,535** (대형거점 1개×540) (준대형거점 2개×420) (중형거점 3개×300) (소형거점 6개×180) (간접비 1식×336) (성과관리 1식×184) (출판비 1식×535) (클러스터지원비 12개×5) (번역정보수집비 1식×60)	**4,535** (대형거점 1개×540) (준대형거점 2개×420) (중형거점 3개×300) (소형거점 6개×180) (간접비 1식×336) (성과관리 1식×184) (출판비 1식×535) (클러스터지원비 12개×5) (번역정보수집비 1식×60)
- 역사문헌번역	**2,991**	**2,991**
· 승정원일기번역	1,960 (번역56책×35)	1,960 (번역56책×35)
· 일성록번역	630 (번역18책×35)	630 (번역18책×35)
· 실록번역현대화	401 (번역9책×44.5)	401 (번역9책×44.5)
- 특수고전번역	600 (번역8책×75)	**600** (번역8책×75)
▪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741**	**1,041**
- 원전정리	**611**	**911**
· 한국문집총간색인	61 (2책×30.5)	61 (2책×30.5)
· 한국고전문헌총목편찬	250 (1식×250)	250 (1식×250)
· 한국고전총간편찬	300 (1식×300)	600 (1식×600)
- 고전번역연구	**130**	**130**
· 기획연구	27 (이론및정책 1식×27)	27 (이론및정책1식×27)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술지·학술대회	49 (학술지 2회×17) (학술대회 1회×15)	49 (학술지 2회×17) (학술대회1회×15)
· 연감발간	54 (1책×54)	54 (1책×54)
▪ 번역성과보급사업	**1,981**	**1,981**
- 정보화	**773**	**773**
· 서지DB구축운영	52 (1식×52)	52 (1식×52)
· 고전DB구축운영	721 (번역서DB 100책×3.31) (원문DB 3책×30) (서비스개선1식×100) (유지보수1식×200)	721 (번역서DB 100책×3.31) (원문DB 3책×30) (서비스개선1식×100) (유지보수1식×200)
- 대중화	**1,208**	**1,208**
· 고전자문서비스	61 (1,300건×47천원)	61 (1,300건×47천원)
· 도서출판	1,125 (학술출간 75책×15)	1,125 (학술출간 75책×15)
· 고전번역홍보	22 (고전사계 발간 4회×5.5)	22 (고전사계 발간 4회×5.5)
▪ 번역인재양성사업	**975**	**975**
- 교육원운영	**845**	**845**
· 서울교육원	530 (정규과목 강사료 2,000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240시간×7만원) (서원학습 강사료 710시간×7만원) (장학금1식×280) (학사운영1식×44)	530 (정규과목 강사료 2,000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240시간×7만원) (서원학습 강사료 710시간×7만원) (장학금1식×280) (학사운영1식×44)
· 전주분원	156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 1식×42) (학사운영 1식×25)	156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 1식×42) (학사운영 1식×25)
· 밀양분원	159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 1식×24) (학사운영 1식×46)	159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 1식×24) (학사운영 1식×46)
- 인재양성지원	**130**	**130**
· 석박사장학지원	130 (12명×2학기×5) (전형2회×5)	130 (12명×2학기×5) (전형2회×5)
▪ 신청사이전비용	**1,069** (1식×1,069)	**349** (1식×349)
○자체수입	△941	△965

□ **지원 필요성**

○ 우리나라 고전문헌인 전통시대 모든 기록은 95% 이상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한글 번역이 필요

○ '고전번역'은 일제강점기 등으로 인해 단절된 우리 조상들의 격조 높은 문화와 사상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재발굴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기초 작업이며 한국학 진흥, 문화사업 활성화, 국가정체성 확립과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기반이므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한세대 앞서 고전적 정리·번역을 착수, 외교적으로 활용 중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지원 확대 필요

○ 미번역 주요 고전문헌은 여전히 산적해 있으나 원로 한학세대의 급속한 퇴장과 장기간(7년) 소요되는 고전번역 전문인재 양성 현실을 감안할 때 번역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 시급

○ 학계연구를 반영한 학술번역 및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고전번역의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고전 정보화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번역성과 확산 촉진 필요

○ 고전번역 성과 확산을 통해 대중 및 문화 산업계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대중화 사업 지원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7,059**	**19,813**	**19,463**	**△350**	**△1.8**
○ 인건비	**6,235**	**6,463** (전년도 6,235) (공통인상 2.6% 163) (전년도 정원증원 2명×6/12×42=42) (신규 정원증원 1명×6/12×46=23)	**6,650** (전년도 6,463) (전년도 정원증원 1명×6/12×46=23) (신규 정원증원 2명×6/12×47=47) (공통인상 1.8% 117)	187	2.9
○ 경상경비	**906**	**1,049** (전년도 906) (청사이전 운영비 증액 127) (비정규직 처우개선 16)	**956** (전년도 1,049) (한시소요감액 △143) (청사이전에 따른 경비용역 2) (비정규직 처우개선 6) (청사이전에 따른 3개월치 운영비 42)	△93	△8.9
○ 기관고유사업비	**10,679**	**13,242**	**12,822**	△420	△3.2
▪ 고전번역사업	**7,479**	**8,476**	**8,476**	-	-
-한국문집번역	**661**	**350** (문집번역10책×35)	**350** (문집번역10책×35)	-	-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	**3,249**	**4,535** (대형거점 1개×540) (준대형거점 2개×420) (중형거점 3개×300) (소형거점 6개×180) (간접비 1식×336) (성과관리 1식×184) (출판비 1식×535) (클러스터지원비 12개×5) (번역정보수집비 1식×60)	**4,535** (대형거점 1개×540) (준대형거점 2개×420) (중형거점 3개×300) (소형거점 6개×180) (간접비 1식×336) (성과관리 1식×184) (출판비 1식×535) (클러스터지원비 12개×5) (번역정보수집비 1식×60)	-	-
-역사문헌번역	**2,819**	**2,991**	**2,991**	-	-
승정원일기번역	1,610	1,960 (번역56책×35)	1,960 (번역56책×35)	-	-
일성록번역	630	630 (번역18책×35)	630 (번역18책×35)	-	-
실록번역현대화	579	401 (번역9책×44.5)	401 (번역9책×44.5)	-	-
-특수고전번역	**750**	**600** (번역8책×75)	**600** (번역8책×75)	-	-
▪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441**	**741**	**1,041**	300	40.4
-원전정리	**311**	**611**	**911**	300	49
한국문집총간색인	61	61 (2책×30.5)	61 (2책×30.5)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한국고전문헌총목 편찬	250	250 (1식×250)	250 (1식×250)	-	-
한국고전총간편찬	-	300 (1식×300)	600 (1식×600)	300	100
-고전번역연구	**130**	**130**	**130**	-	-
기획연구	27	27 (이론및정책 1식×27)	27 (이론및정책 1식×27)	-	-
학술지·학술대회	49	49 (학술지 2회×17) (학술대회 1회×15)	49 (학술지 2회×17) (학술대회 1회×15)	-	-
연감발간	54	54 (1책×54)	54 (1책×54)	-	-
▪ 번역성과보급사업	**1,950**	**1,981**	**1,981**	-	-
-정보화	**1,042**	**773**	**773**	-	-
서지DB구축·운영	52	52 (1식×52)	52 (1식×52)	-	-
고전DB구축·운영	990	721 (번역서DB 100책×3.31) (원문DB 3책×30) (서비스개선 1식×100) (유지보수 1식×200)	721 (번역서DB 100책×3.31) (원문DB 3책×30) (서비스개선 1식×100) (유지보수 1식×200)	-	-
-대중화	**908**	**1,208**	**1,208**	-	-
고전자문서비스	61	61 (1,300건×47천원)	61 (1,300건×47천원)	-	-
도서출판	825	1,125 (학술출간 75책×15)	1,125 (학술출간 75책×15)	-	-
고전번역홍보	22	22 (고전사계 발간4회×5.5)	22 (고전사계 발간4회×5.5)	-	-
▪ 번역인재양성사업	**948**	**975**	**975**	-	-
-교육원운영	**818**	**845**	**845**	-	-
서울교육원	531	530 (정규과목 강사료 2,000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240시간×7만원) (서원학습 강사료 710시간×7만원) (장학금1식×280) (학사운영1식×44)	530 (정규과목 강사료 2,000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240시간×7만원) (서원학습 강사료 710시간×7만원) (장학금1식×280) (학사운영1식×44)	-	-
전주분원	156	156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1식×42) (학사운영1식×25)	156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1식×42) (학사운영1식×25)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밀양분원	131	159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1식×24) (학사운영1식×46)	159 (정규과목 강사료 1,152시간×7만원) (특강과목 강사료 108시간×7만원) (장학금1식×24) (학사운영1식×46)	-	-
-인재양성지원	**130**	**130**	**130**	-	-
석박사장학지원	130	130 (12명×2학기×5) (전형2회×5)	130 (12명×2학기×5) (전형2회×5)	-	-
▪ 정규직전환인건비	**△139**	**-**	**-**	-	-
▪ 신청사이전비용	**-**	**1,069** (1식×1,069)	**349** (1식×349)	△720	△67.4
○ 자체수입	**△761**	**△941**	**△965**	△24	△2.6
□ 비목(합계)	**17,059**	**19,813**	**19,463**	△350	1.7
○연구개발인건비(360-01)	6,235	6,463	6,650	187	2.9
○연구개발경상비(360-02)	906	1,049	956	△93	△8.9
○연구활동비등(360-05)	9,918	12,301	11,857	△444	△3.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적 차원에서 고전문헌 번역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고 번역 사업을 조사·관리함으로써 조기에 주요고전문헌의 번역을 완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전번역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한문고전번역 후속세대양성을 확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수행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

○ 분야별 주요자료 번역 등 번역 대상을 다각화하고 고전의 현대적 가치 재발굴 토대 확장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7,059	○ 인건비 : 6,235 ○ 운영비 : 906 ○ 사업비 : 10,679 ○ 자체수입 : △761			
'18	19,813	○ 인건비 : 6,463 ○ 운영비 : 1,049 ○ 사업비 : 13,242 ○ 자체수입 : △941	19,813	○ 인건비 : 6,463 ○ 운영비 : 1,049 ○ 사업비 : 13,242 ○ 자체수입 : △941	-
'19	19,450	○ 인건비 : 6,277 ○ 운영비 : 906 ○ 사업비 : 13,208 ○ 자체수입 : △941	19,463	○ 인건비 : 6,650 ○ 운영비 : 956 ○ 사업비 : 12,822 ○ 자체수입 : △965	13
'20	19,645	○ 인건비 : 6,340 ○ 운영비 : 915 ○ 사업비 : 13,331 ○ 자체수입 : △941	19,576	○ 인건비 : 6,631 ○ 운영비 : 1,080 ○ 사업비 : 12,806 ○ 자체수입 : △941	△69
'21	19,841	○ 인건비 : 6,403 ○ 운영비 : 924 ○ 사업비 : 13,455 ○ 자체수입 : △941	19,576	○ 인건비 : 6,631 ○ 운영비 : 1,080 ○ 사업비 : 12,806 ○ 자체수입 : △941	△265
'22			19,576	○ 인건비 : 6,631 ○ 운영비 : 1,080 ○ 사업비 : 12,806 ○ 자체수입 : △941	19,576
연평균 증가율 (%)	3.85		△0.3		△4.15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9,813	19,463	△35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252	248	△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	13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② = 24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연구개발인건비 : 정원 95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153 - 경상경비 : 9.56억원 ÷ <표2>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연구개발경상경비) 0.48억원=20 - 사업비 : 118.57억원 ÷ <표2>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연구개발활동비등) 0.89억원=133 **□ 2018년 고용효과 : 25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965년 11월 민족문화추진회 창립
▪ 1974년 5월 국역연수원 개원
▪ 1993년 3월 전주분원 개원
▪ 2007년 8월 3일 한국고전번역원법 제정·공포(법률 제8579호)
▪ 2007년 11월 23일 한국고전번역원 설립
▪ 2011년 10월 세종문화상(대통령상) 민족문화부문 수상
▪ 2012년 2월 밀양분원 개원
▪ 2012년 12월 한국문집총간 500책 완간
▪ 2013년 초중등용 고전읽기자료(대중화 도서) 개발 보급
▪ 2016년 11월 신청사 신축 기공식
▪ 2018년 2018년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착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53.36	153.36	169.1	171.27	171.27	170.59	170.59	198.13	198.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9.10 (169.10)	- (-)	- (-)	169.10 (169.10)	169.10 (169.10)	- (-)	- (-)
'16년	171.27 (171.27)	- (-)	- (-)	171.27 (171.27)	171.27 (171.26)	- (-)	- (0.01)
'17년	170.59 (170.59)	- (-)	- (-)	170.59 (170.59)	170.59 (170.59)	- (-)	- (-)

※ '16년 불용액 1백만원은 경상경비 집행잔액임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7,059	17,059	19,163	650	19,813	19,813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승정원일기번역 10책×35백만원 : 350백만원

▪ 도서출판 20책×15백만원 : 300백만원

○ 집행현황 : 19,813백만원 전액 집행 완료

▪ 인건비 : 6,463백만원

▪ 운영비 : 1,049백만원

▪ 사업비 : 12,301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결산 교문위**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준용하여 성과급 집행 지침 개선 필요

→ 성과급 지급 지침 개정 완료('16.11.4)

○ **'16년 국정감사**

▪ 고전번역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인원 및 번역작업수행 예산이 부족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의 번역작업 완료 예상기간이 30~40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번역업무수행을 위한 정원을 증원(1명, '17.1.) 하였으며, '17년 역사문헌번역 예산을 '16년대비 411백만원증액('16년 2,408백만원 →'17년 2,819백만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번역인력 및 예산을 증액하여 번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 **'16년 결산 교문위 예비심사**

▪ 수탁과제의 간접비를 자체수입에 계상하는 방안 마련할 것

→ 수탁사업 규정 개정(이사회 의결, '17.12.28)

▪ 이월예산의 목적에 맞는 집행 및 예산 등의 주요내용 변경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을 것

○ **'17년 국정감사**

▪ 중국 고서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우리 고전문헌의 집대성과 세계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우리 고전문헌 1만종, 10만 책(약 8억 7천 5백만 자)를 교감·표점, 간행, DB구축하는 한국고전총간편찬사업을 추진하겠음

▪ 초중등 인성함양을 위한 탈무드와 같은 고전 교육용 교재 제작하는 방안 마련할 것

→ 대중화 도서출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임

▪ 누적된 미출간 번역원고의 적체해소 및 대학원대학 설립과 번역인재양성 방안 마련할 것

→ 도서출판 예산을 확보하여 미출간 번역원고 적체를 해소하며 번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학위과정인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며 단기적으로 고전번역실무전문과과정을 개설하여 번역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임

▪ 조선왕조의궤 집중번역을 위한 종합계획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선왕조의궤 집중번역 사업을 추진하여 1차적으로 10년간 중요의궤 200종을 번역·간행·DB구축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30년내 완역을 추진하겠음

▪ 국가 고전번역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계획을 마련할 것

→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성과물 평가 지원,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중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임원경제지 조기 완역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

→ 임원경제연구소와 협약을 통해 번역 지원 중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 완역 추진하겠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중국·일본·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의 고전적 번역사업은 우리나라보다 1세대 앞서며, 고전자료를 서책·CD-Rom·Web 등을 통해 해외에 배포함으로써 자국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을 홍보하여 자국 문화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

< 고전적 정리·번역 해외 사례 요약표 >

구분	중국	일본	대만
시작시기	195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주관	전국고적정리출판기획소조	문화청, 동경대 사료편찬소	국립편역관
인력양성	전국고등원교고적정리 연구공작위원회 주관	대학 및 전문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	국립편역관 주관
특이사항	- 중국고적선본서목, 중국 고적총목 등 정리 -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중국기본고적 등 대형 고전정리사업 추진	- 국서총목록, 고전적총합 목록 등 정리 - 목록류에 대한 세밀한 정보화	- 국학기본총서 정리 (대표 고전 선본) - 중국과 정보화사업 협력 추진

(6) 사업추진절차

①기본계획수립(교육부) → ②세부사업계획수립(한국고전번역원) → ③사업승인 및 출연금 교부(교육부) → ④고전정리·번역, 인재양성사업 수행(한국고전번역원) → ⑤교육부에 사업결과보고(한국고전번역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고전번역 달성률 (단위: %)	목표	14.0	15.6	16.5	18.0	19.0	5.5%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고전번역 실적 / 전체고전번역대상×100%	한국 문집 총간 번역서 / 역사문헌 및 특수고전 번역서
	실적	14.2	15.6	16.8	-	-			
	달성도	101.4	100	101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인건비(정원증원)

○ (참고 2) 한국고전총간편찬사업 개요

참고 1 인건비(정원증원)

□ 정규직 인력 증원(2명)

○ 도서관 전문 인력 1명

▪ '18년 신청사 이전('18.5월 이전) 후 **고전번역 전문도서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대민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사서) 증원 필요

▪ 신청사 이전으로 도서관 시설이 확대(150m²→562m², 3.7배 증가)됨으로써 현 자료실을 일반 국민 이용 가능한 공공개방 형태의 고전번역 전문도서관으로 확대·개편 운영

- 국내 최대의 고전번역 전문도서관 구축을 위한 양질의 한문고전 전문자료 확보를 위하여 17년 말 현재 연평균 수증 도서량(2,000권)보다 **약 2배(5,000권)의 도서 수증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리 인력 증원 필요

▪ 신청사 이전 후 인근 지역주민 및 일반인 등 **대국민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이용자 확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보강 필요

※ 소장자료의 대다수가 한문고전 영인본, 족보, 문집류 등 한문고전 전문자료이므로 전문인력이 아닌 일용직 업무 전담 시 대응 및 정보제공에 미숙

▪ 면적 및 장서 등 **도서관 인프라 증가**와 야간 및 주말 **연장 운영**에 따른 담당인력 확충 필요

※ 신청사가 위치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의 인구는 56,121명으로 현재 이용자(연 평균 100명)의 약 500배 이상 증가 예상

○ 안전관리 및 청사 시설물 운영 인력 1명

▪ 전기, 기계 등 화재 위험요소에 대비한 사전 점검 및 사후 대처 전문 인력의 채용 필요

▪ 특히, 신청사가 주변 대단지 아파트(은평뉴타운)와 인접해 있어 전기발전 시설 등의 화재 사고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의 상시적 안전점검과 관리 필요

▪ 신청사 이전('18. 5. 완료)으로 인한 관리 면적의 증가(약 4배)

▪ 책무성을 가지고 신규 전기·기계 시설물 전반의 안전을 전담할 기술인력 필요

※ 태양광 발전, 승강기, 도시 가스, 기계실 등 구 청사에 없던 설비 증가

□ 소요예산

○ 예산 및 산출근거

▪ 2명×6/12×47백만원 = 47백만원

□ 기대효과

○ (도서관 전문 인력) 고전도서를 지역 주민 및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역사·사상의 결정체인 고전문헌을 널리 알리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대중화에 기여

○ (안전관리 및 청사 시설물 운영 인력) 승강기, 중앙 냉난방시설, 태양광 설비 등의 기계·전기·가스 설비 등을 효율적인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청사 이용과 안전에 전반적으로 기여

참고 2 한국고전총간편찬사업 개요

□ 개요

○ 한국인의 모든 한문저술을 집대성하는 민족사적 편찬사업

○ 중국의 '고서공정'에 대항하는 한국문화의 고유성 확보사업

○ 인문학 전공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창출 연구사업

□ 필요성

○ 한국인 저술 고전문헌의 체계적·종합적·국가적 정리 미비

▪ 한국고전문헌의 국가적 계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고전총서사업의 부재

▪ 소장기관별로 파편화된 사업으로 한국고전의 보존·활용에 한계 노정

○ 중국『유장(儒藏)』등 고서공정에 대응하는 한국고전 집대성사업 절실

▪ 한국의 역사·문화를 중국의 아류(亞流)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 초래 우려

▪ 동아시아 문화권 내의 한국의 독자성·고유성 수호를 위한 적극 대응 필요

○ 한국 전통의 계승·발전·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절실

▪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고전문헌DB 구축 필요

▪ 한문고전의 정리·편찬을 담당할 대규모 인재 양성 및 고용 확충 절실

□ 사업 대상 및 추진 계획

○ 사업 대상

한국 한문고전문헌 총량
23,000여 종 한적(漢籍) 60,000여 책

⇩

준비년(2018)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우선 편찬 대상 서목 338종 선정

⇩

1단계 10개년(2019~2028) 사업
우선 편찬 대상 서목 338종
양장본 영인서 150책, 교점서 300책 편찬·간행

⇩

2019년도 1차 시범사업
편찬 대상 서목 8종
양장본 영인서 2책, 교점서 4책 편찬·간행

○ 1단계 10개년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준비년('18)	1차년('19)	2차년('20)	3차년('21)	4차년('22)	5차년('23)	6차년('24)	7차년('25)	8차년('26)	9차년('27)	10차년('28)	마감년('29)
종합계획 수립	■											
주요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											
1차 시범사업 및 피드백		■										
2차 시범사업 실시			■									
전국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									
정리·편찬사업 실시		■	■	■	■	■	■	■	■	■	■	
정보화(DB)사업 실시		■	■	■	■	■	■	■	■	■	■	
해외문헌 수집 및 편찬					■	■						
백서 편찬 및 간행												■

○ 1단계 10개년 연차별 간행 계획

▪ 우선 편찬 대상 서목 338종(영인서 150책, 교점서 300책)

(단위 : 책)

구분(연도)	준비년('18)	1차('19)	2차('20)	3차('21)	4차('22)	5차('23)	6차('24)	7차('25)	8차('26)	9차('27)	10차('28)	마감년('29)	계
양장본 영인서	-	2	4	18	18	18	18	18	18	18	18	-	**150**
양장본 교점서	-	4	8	36	36	36	36	36	36	36	36	-	**300**

○ 2019년도 1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

1차 시범사업 대상 저본 선정

⇩

주요 고전문헌 소장기관 소장 원전 촬영·보정

⇩ ⇩

영인편집 / 원문text입력

⇩ ⇩

목차·해제 작성 / 교감·표점

⇩ ⇩

편집교정

⇩

인쇄

⇩

DB구축

⇩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

○ 2019년도 1차 시범사업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전 촬영·보정												
영인본잡원문text입력												
목차·해제작성												
교감·표점												
편집교정												
인쇄												
DB 구축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증액

○ 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원전 촬영·보정비	71	· 촬영·보정비: 140책×50만원=70백만원 · 장비 이동비: 1개소×100만원=1백만원	
목차·해제작성비	10	· 목차: 4종×50매×2만원=4백만원 · 해제: 4종×50매×3만원=6백만원	
교감·표점비	92	· 2책×46백만원=92백만원	
영인서 편집교정비	5	· 1책×5백만원=5백만원	
교점서 편집교정비	13	· 2책×6백5십만원=13백만원	
영인서 인쇄비	5	· 1책×5백만원=5백만원	
교점서 인쇄비	10	· 2책×5백만원=10백만원	
DB구축비	54	· 1책×5천4백만원=54백만원	
참고자료 구입비	40	· 800책×5만원=40백만원	
계	**300**		

※ 붙임1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예산 산출근거 세부 내역

□ 기대효과

○ 한국인 저술 고전문헌의 체계화 및 세계화

▪ 한국 한문고전적의 전체 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교감·표점·해제를 통해 체계적·학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체계성·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한국학 연구 촉진에 기여

○ 한국 전통문화 및 학술·사상의 고유성, 독자성 확보

▪ 한국 사상·학술·문화의 고유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한문문화권에서 독립적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 전통 사상·학술·문화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이해도 제고

○ 인문학 전공자의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 한문고전의 목차·해제 작성, 교감·표점, 교정·편집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연간 약 130여 명의 인재를 양성·고용하여 한국의 한문 고전적 정리·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한국 인문학 중흥의 인적 토대 마련

※ 붙임2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고용 창출 내역

[붙임 1]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예산 산출근거 세부 내역

▪ 원전 촬영·보정비 : 71백만원

- {50만원(촬영·보정 단가)×140책}+{100만원(장비이동 단가)×1개소}
- 촬영·보정 단가(1책 150면 기준)

구분	자료량	금액	부가세	합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1	61,050	6,105	67,155
낱장스캔(촬영)	150	253,526	25,353	278,879
이미지 보정 및 검증	150	94,260	9,426	103,686
		408,836	40,884	449,720

* SW 대가 기준표 적용(2017년 임금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7년 개정판), 2017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장비 이동 단가(1장소 기준)

구분	단위	금액	부가세	합계
현지 장비 이동	1지점	631,356	63,136	694,492

▪ 목차·해제작성비 : 10백만원

- 목차 : 4백만원 = 2만원×50매×4종
- 해제 : 6백만원 = 3만원×50매×4종

▪ 교감·표점비 : 92백만원

- 46백만원(책당 원고료 단가)×2책
- 책당 원고료 단가(1책 1,800매 기준)

부여등급	원고료	교열료
S급	25,500	-
A급	20,500	15,500
B급	18,500	14,000
C급	16,500	12,500

* S급 서종 원고료 25,500원×1책 1800매=45,900,000원
* 번역사업본부 등급별 원고료 조정[안](2016. 12. 22. 번역사업본부)의 특수고전 S급 원고료를 준용

▪ 영인서 편집교정비 : 5백만원

- 5백만원(책당 편집교정비 단가)×1책

▪ 교점서 편집교정비 : 13백만원

- 6백5십만원(책당 편집교정비 단가)×2책
- 책당 편집교정비 단가

구분	판형	산출내역	금액	합계
편집비	4×6배판	8,000원×400p	3,200,000원	6,280,000원
교정비		7,700원×400p	3,080,000원	

▪ 영인서 인쇄비 : 5백만원

- 5백만원(책당 인쇄비 단가)×1책
- 책당 인쇄비 단가(4×6배판 500P/1도, 300부 기준)

내역	금액	소계	부가세	합계
인쇄대	896,000원	4,539,000원	453,900원	4,992,900원
용지대	757,715원			
표지·제본대	2,885,285원			

▪ 교점서 인쇄비 : 10백만원

- 5백만원(책당 인쇄비 단가)×2책
- 책당 인쇄비 단가(4×6배판 400p/1도, 300부 기준)

내역	금액	소계	부가세	합계
인쇄대	700,000원	4,253,000원	425,300원	4,678,300원
용지대	668,055원			
표지·제본대	2,884,945원			

▪ DB구축비 : 54백만원

- 30백만원(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 1책 DB구축 단가)×1.8(한국고전총간 DB 구축시 예상 보정 계수)×1책

※ 영인서 책당 단가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원전 촬영·보정비	12백만원	50만원×4종×한적 6책	양장본 1책 4종 수록. 1종당 한적 6책
목차작성비	4백만원	2만원×4종×50매	양장본 1책 4종 수록
해제작성비	6백만원	3만원×4종×50매	양장본 1책 4종 수록
편집교정비	5백만원	-	
인쇄비	5백만원	인쇄대+용지대+표지·제본대	세부 금액은 영인서 인쇄비 참조
DB구축비	54백만원	-	세부 내역은 DB구축비 참조
계	**86백만원**		

※ 교점서 책당 단가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교감·표점비	46백만원	25,500원×1,800매(1책)	
편집교정비	6백5십만원	15,700원×400매(1책)	세부 내역은 교점서 편집교정비 참조
인쇄비	5백만원	인쇄대+용지대+표지·제본대	세부 금액은 교점서 인쇄비 참조
계	**57.5백만원**		

[붙임 2]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일자리 창출 내역

구분	사업 내역	전체 사업량	연간 업무량	등급	연간 평균 소요 인력	'19년 소요 인력
영인서	목차 작성	338종 (150책)	28종/1인	석사	1명	1명
	해제 작성	338종 (150책)	30종/1인	박사	1명	1명
교점서	교정·편집	300책	5책/1인	석사	6명	1명
	교감·표점	300책	1책/1인	박사	30명	4명
계					**38명**	**7명**

[별첨]

1.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수행 절차 설명

1-1 한국고전총간 편찬사업 수행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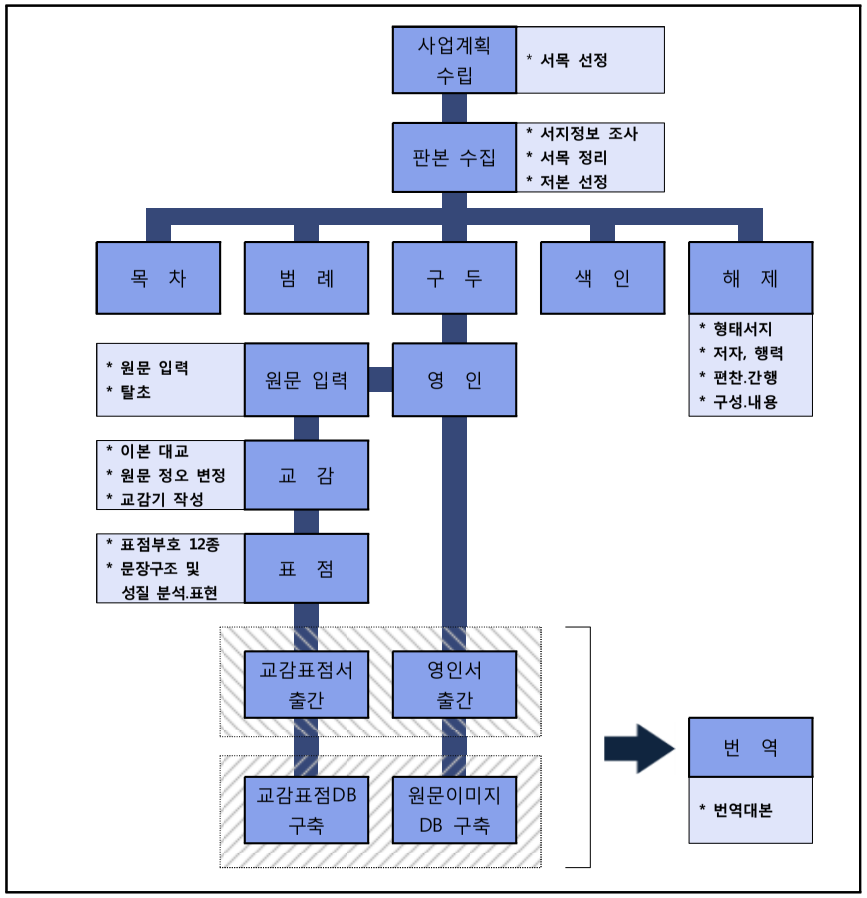

1-2 판본 수집 예시 (사례 : 성호전집)

< 퇴로본(退老本, 1917년 초간본) >

< 모렴당본(慕濂堂本, 1922년 중간본) >

< 교정고본(校正稿本, 규장각 古3428-90) >

1-3 원문 구두 예시 (사례 : 일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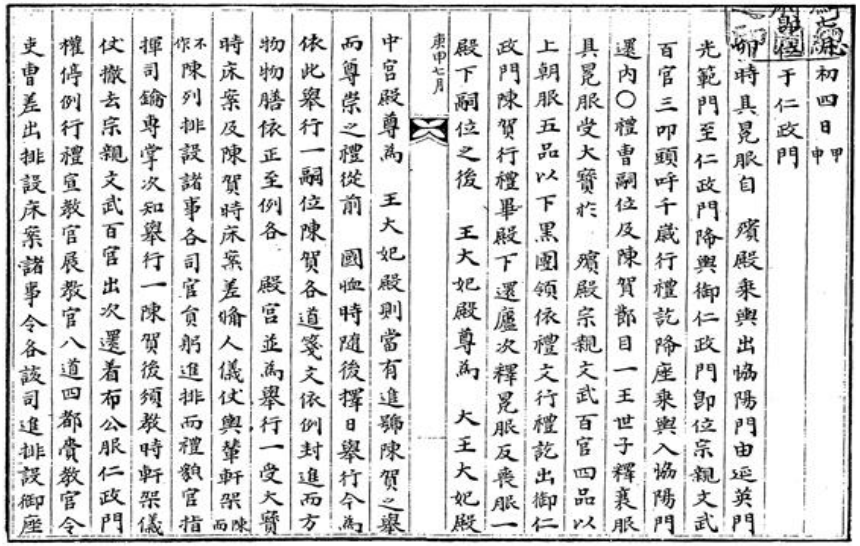

1-4 원문입력 및 표점 예시 (사례 : 회재집)

원문입력

<페이지 number="mm_a_024_432a"/>
晦齋先生集卷之八

疏

進修八規

臣謹按。孔子贊易於乾之九三。發明爲學之道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誠。所以居業也。蓋德是道之得於心者。業是功之見於事者。大學之誠意正心修身。德也。齊家治國平天下。業也。君子志於學。日乾夕惕。無時間斷。故德之進者日益崇。業之修者日益廣。臣不佞又取進德修業之義。衍爲八規。以爲 聖學之助。淸閑之燕。儻賜省覽。深味

<페이지 number="mm_a_024_432b"/>
而力行之則帝王存心出治之要。繼天立極之道。具於此矣。臣不勝惓惓之至。

표점

疏

進修八規

臣謹按: 孔子贊《易》, 於《乾》之九三發明爲學之道曰: “君子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蓋德是道之得於心者, 業是功之見於事者, 《大學》之誠意、正心、修身, 德也; 齊家、治國、平天下, 業也。 君子志於學, 日乾夕惕, 無時間斷, 故德之進者日益崇、業之修者日益廣。 臣不佞又取進德修業之義, 衍爲八規, 以爲聖學之助, 淸閑之燕, 儻賜省覽, 深味而力行之, 則帝王存心出治之要、繼天立極之道, 具於此矣。臣不勝惓惓之至。

1-5 교감 예시 (사례 : 열하일기)

<대만 중화총서위원회 영인본(필사)>

七月初一日丁丑曉大雨留行與鄭卞諸君及來源或看書或閒話送晷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필사)>

七月初一日丁丑曉大雨留行與鄭卞諸君及來源或看書或閑話送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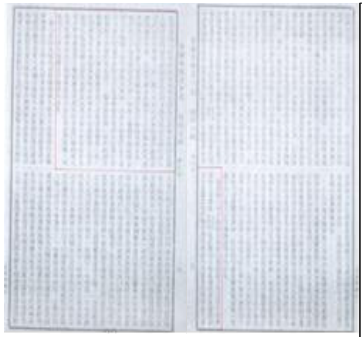

<광문회본(신연활자)>

七月初一日丁丑曉大雨留行與鄭進士周主簿卞君來源趙主簿學東[上房乾粮判事]賭紙牌以遣閒且博飮資也諸君以余手劣黜之座但囑安坐飮酒諺所謂觀光但喫餠也尤爲忿恨亦復柰何坐觀成敗酒則先酌也 … (중략) … 蓋歲閱東人尋常親熟故也庭廣數百間久雨泥淖河邊水磨小石如碁子大黃雀卵者本無用之物而揀其形色相類者當門處錯成九苞飛鳳以禦泥淖。其無棄物推此可知鷄皆毛羽脫落一如抽鑷往往肉鷄踽跚醜惡不忍見

1-6 DB 구축 예시 (사례 : 제정집)

< 원문이미지D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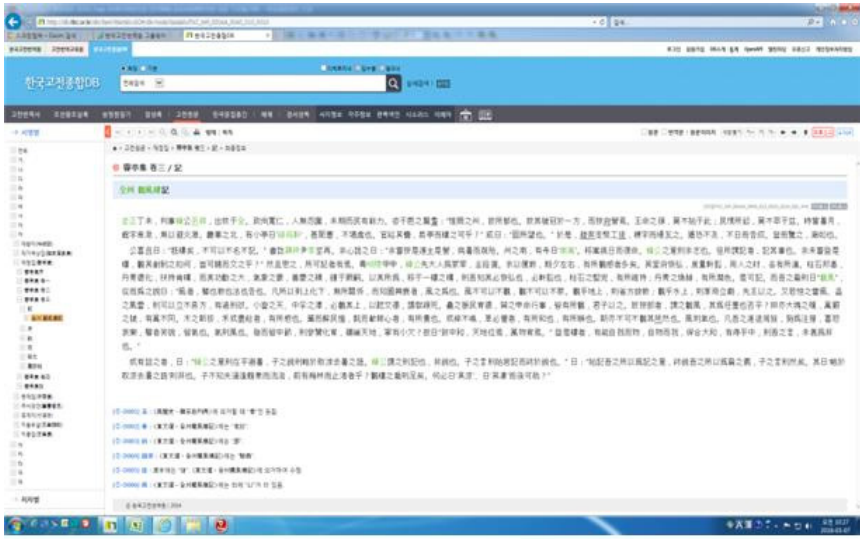

< 교감표점DB >

[300] 고전문헌국역지원(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고전문헌국역지원	3,758	3,708	4,227	519	13.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4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경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고전문헌을 연구·조사하여 고전문헌의 현대화 및 문화융성 기반 조성
사업기간	(세종) '66 ~ 계속 (전통) '01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세종고전 28책, 과학기술고전 12책, 세종한글고전DB 20책 동양고전역주 25책, 동양고전종합DB 9책, 동양고전어휘정보화 1,666만 어절.어휘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사업시행주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
간접비	('18) 176백만원(5%) → ('19) 200.9백만원(5%)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91백만원

ㅇ 세종고전국역사업 : 1,246백만원

▪ 사업개요 : 우리 한문고전과 한글고전의 국역을 통한 한국학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사업규모 : 28책 간행×44.5백만원=1,246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420.6백만원
  ①전임연구인력 11명×36.6백만원 ②연구보조원 1명×18백만원
- 국역비 : 387.7백만원
  ①한문고전 18,900매(책당 200자원고지 1,260매×15책)×13,000원 =245.7백만원
  ②한글고전 14,950매(책당 200자원고지 1,150매×13책)×9,500원 =142백만원
- 교열비 : 33,850매×5,500원=186.2백만원
- 전산교정비 : 33,850매×1,800원=60.9백만원
- 인쇄비 : 117.6백만원
  ①한문고전 350부×15책×12,000원
  ②한글고전 350부×13책×12,000원
- 심사평가비(과학기술고전포함) : 34책×0.40백만원≒13.7백만원
- 간접비 : 59.3백만원(인건비+직접비의 5%)

ㅇ 과학기술고전국역사업 : 595백만원

▪ 사업개요 : 천문, 수학, 의학, 지리, 농업, 군사무기 등 과학기술 분야 고전의 국역을 통해 한국과학사 서술 및 연구기반 구축

▪ 사업규모 : 12책 간행×50백만원≒595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204.5백만원
  ①전임연구인력 5명×37.3백만원 ②연구보조원 1명×18백만원
- 국역비 : 15,240매(책당 200자원고지 1,270매×12책×13,000원=198.1백만원
- 교열비 : 15,240매×5,500원=83.8백만원
- 전산교정비 : 15,240매×1,800원=27.5백만원
- 인쇄비 : 350부×12책×12,000원=50.4백만원
- 심사평가비 : 6책(의방유취 증가분)×0.4백만원=2.4백만원
- 간접비 : 28.3백만원(인건비+직접비의 5%)

ㅇ 세종한글고전DB 구축 : 150백만원

▪ 사업개요 : 한글고전 역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전국역 문헌 지원사업결과물 DB구축

▪ 사업규모 : 20책 DB×7.5백만원=150백만원

▪ 산출내역

- DB구축 : 20원×23만자(1책당)×20책=92백만원
- S/W개발 및 연구 : 1식×13.2백만원=13.2백만원
- DB구축 및 기획 관리 : 2.75백만원×1식×12월=33백만원
- 서버 위탁 관리비 : 호스팅 400,000원×1식×12월=4.8백만원
- 간접비 : 7백만원(직접비의 5%)

(2) 전통문화연구회 : 2,236백만원

ㅇ 동양고전역주사업 : 1,136백만원

▪ 사업개요 : 동양고전의 역주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이해 및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

※ '19년 동양고전 역주사업계획

· 원고+출판(7책) : 역대군감2, 열녀전2, 묵자간고3, 한비자집해4, 순자집해7,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14, 19

· 출판(9책) : 세설신어보1, 역대군감1, 열녀전1, 당육선공주의2, 이정전서2, 동래박의4, 주역정의4, 당송팔대가문초-구양수6, 상서정의6

· 원고 작성(9책) : 관자1, 명청팔대가문초1, 열자1, 세설신어보2, 당육선공주의3, 이정전서3, 동래박의5, 상서정의7,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15

▪ 사업규모 : 25책×45.44백만원≒1,136백만원

▪ 산출내역

- 원고료* : 16책×35.5백만원≒568백만원

  * (기본고전) 1,935매×13책×18,000원=452.79백만원
    (난해고전) 1,921매×3책×20,000원≒115.21백만원

- 교열윤문료 : 400면×16책×17,500원=112백만원
- 교정료 : 400면×16책×17,500원=112백만원
- 편집비 : 400면×16책×15,000원=96백만원
- 국역진행비 : 16책×3백만원=48백만원
- 연구비 및 자료비 : 16책×2백만원=32백만원
- 회의비 및 자문료 : 16책×2백만원=32백만원
- 국역결과물 평가비 : 10백만원×1회=10백만원
- 출판비 : 16책×300부×15,000원=72백만원
- 간접비 : 직접비×5%=54백만원

○ 동양고전종합DB구축 : 600백만원

▪ 사업개요 : 역주한 동양고전의 데이터화를 통해 일반이용자 및 학계의 접근가능성을 높여 우리고전 연구 및 대중화에 기여

▪ 사업규모

- (DB구축) 18책×22.25백만원≒400.2백만원
- (VOD) 444시간×0.45백만원=199.8백만원

▪ 산출내역

- DB구축 : 18책×12.54백만원=225.72백만원
- DB용 콘텐츠 제작 : 444시간×0.45백만원=199.8백만원
- SW연구개발 : 5식×11.54백만원=57.7백만원
- HW및기자재 : 2식×10백만원=20백만원
- 기술심사 및 완료평가비 : 2회×2.13백만원=4.26백만원
- 기획관리비 : 1명×12월×4.1백만원=49.2백만원
- 서버위탁관리비 : 5식×12월×0.25백만원=15백만원
- 간접비 : 직접비×5%≒28.32백만원

○ 동양고전 어휘정보화(동양고전지식정보망) : 500백만원

▪ 사업개요 : 동양고전에 사용된 어휘 및 말뭉치를 정보화하여 향후 동양고전 번역의 속도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한자·한문 문화권의 동양고전 지식 자료를 연계하는 정보망 구축

▪ 사업규모

- (현대문헌) 300만어절×5.67원≒17백만원
- (고전문헌) 1,353만어절×32원≒432.9백만원
- (고전어휘) 13만×385.8원≒50.1백만원

▪ 산출내역

- DB구축 : 330백만원
  - (고전문헌) 1,353만어절×20원=270.6백만원
  - (현대문헌) 300만어절×5원=15백만원
  - (고전어휘) 13만어휘×342원≒44.4백만원
- SW연구개발 : 77백만원
  - (웹서비스 개선 유지) 1식×17백만원=17백만원
  - (한문번역지원시스템개발연구) 2.4백만원×2명×7월=33.6백만원
  - (한자어휘자동수집 변환 모듈 고도화) 2.4백만원×1명×11월=26.4백만원
- HW및기자재 : 3.2백만원
  -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 2식×1.6백만원=3.2백만원
- 연구비 : 9.8백만원
  - (어휘정보화연구비) 6백만원×1건= 6백만원
  - (디지털한문고전학 국제학술발표회) 3.8백만원×1회=3.8백만원
- 기획관리비 : 12월×3.4백만원=40.8백만원
- 회의비 및 자문비 : 2회×1.1백만원=2.2백만원
- 자료비 : 10종×0.1백만원=1백만원
- 서버위탁관리비 : 4식×12월×0.25백만원=12백만원
- 간접비 : 직접비×5%≒2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고전문헌국역지원**	**3,708**	**4,22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46**	**1,991**
▪ 세종고전국역	1,246 (28책x44.5백만원)	1,246 (28책x44.5백만원)
▪ 과학기술고전국역	350 (7책×50백만원)	595 (12책×50백만원)
▪ 세종한글고전DB구축	150 (20책×7.5백만원)	150 (20책×7.5백만원)
○ 전통문화연구회	**1,962**	**2,236**
▪ 동양고전역주사업	1,154 (26책x44.38백만원)	1,136 (25책x45.44백만원)
▪ 동양고전종합DB	308 (DB 11책x22.25백만원) (VOD 180시간x0.35백만원)	600 (DB 18책x22.25백만원) (VOD 444시간x0.45백만원)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500 (현대문헌 300만어절x5.67원) (고전문헌 1,353만어절x32원) (고전어휘 · 속성 13만x385.8원)	500 (현대문헌 300만어절x5.67원) (고전문헌 1,353만어절x32원) (고전어휘 · 속성 13만x385.8원)

□ **지원 필요성**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 고전국역사업은 한국학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며, 지식 기반사회의 학술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으며, 1차적 수혜자인 한국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작가, 드라마나 영화제작자, 일반 시민에 이르는 2차적 수혜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

○ 향후 100년 이상을 번역해야할 정도의 방대한 자료가 발굴되어 있으나, 고전문헌을 현대 국어로 번역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 현재 국역에 참여하는 **역자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생존시 조기번역이 시급**하며, 장기간(5~8년) 소요되는 고전번역 전문인재 양성 현실을 감안할 때 **번역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 시급**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고전국역사업은 인문학 학술인프라 사업으로 공익성이 큰 사업이지만 수익성이 불확실하므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 (세종고전/한문고전) 1968년 세종장헌대왕실록의 국역을 시작으로 진행된 한문고전 국역은 조선왕조실록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업으로 각사등록, 치평요람, 연행록 등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우리 한문고전을 국역하는 사업, 2017년까지 42종 494책을 국역하여 국내 학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

- (세종고전/한글고전) 1991년부터 시작한 한글고전 역주는 한문고전 번역에 치우쳐 왔던 우리나라 고전국역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67종 153책을 간행하였음.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한글고전의 국역을 통해 국어사를 비롯하여 윤리·종교·교육·의약·병학 연구 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함

- (과학기술고전) 2013년부터 시작한 과학기술고전 국역은 천문·의학·농학 등 각 분야 대표 고전을 발굴하여 국역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업임. 2017년까지 30종 34책을 국역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사 분야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세종한글고전DB구축) 매년 책당 350부를 발간하여 국공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기증하고 있지만 성과 확산에는 한계가 있고, 온라인서비스를 통해서만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음.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DB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함.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6년에 창립되어 1968년부터 세종실록 국역에 착수, 2017년까지 681책을 국역하면서 반세기 가까이 축적된 국역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역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

※ 세종고전국역 및 과학기술고전국역 성과

구분	조선왕조실록 (별책 색인포함)	승정원일기 (별책 색인포함)	한문고전 (별책 색인포함)	한글고전 (색인 첨부)	과학기술고전 (색인 첨부)	세종한글 고전DB	합계
1968년~2017년	222책	7책	265책	153책	34책	-	681책
2018년	-	-	15책	13책	7책	20책	55책
합계	222책	7책	280책	166책	41책	20책	736책

*세종한글고전DB 20책은 합계에서 제외

○ **(전통문화연구회)**

- 한국고전 번역 및 한국학 발전의 선결 과제로 21세기 문화 창출의 기반 조성과 고전대중화에 기여
- 난해한 고전번역을 위해 원로한학자 생존시 조기 번역이 필요
- 동양고전 DB콘텐츠 확충으로 동양학 및 한국학 연구의 전자 지식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보급시키는데 이바지함
- 고전번역에 대한 기반 자료를 정보화함으로써 번역 수준 향상
- 정보화 시대 한자한글자동변환으로 한자 생활 혁명
- 韓·中·日·臺灣 동양고전 및 한자 어휘의 종합 정보망(Hub)으로 동양학 선도
- 동북아시대에 국가적 정책 수립이나 경제적 교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3,758**	**3,708**	**4,227**	**519**	**13.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710	1,746	1,991	**245**	**14**
▪ 세종고전국역사업	1,410	1,246 (28책x44.5백만)	1,246 (28책x44.5백만)	-	
▪ 과학기술고전국역사업	300	350 (7책×50백만)	595 (12책×50백만)	**245**	**70**
▪ 세종한글고전DB구축사업	-	150 (20책×7.5백만)	150 (20책×7.5백만)	-	-
○ **전통문화연구회**	**2,048**	**1,962**	**2,236**	**274**	**13.9**
▪ 동양고전역주사업	1,218 (28책×43.5)	1,154 (26책x44.38백만원)	1,136 (25책x45.44백만원)	**△18**	**△1.5**
▪ 동양고전종합DB	330 (DB 12책×22.25) (VOD 180시간×0.35)	308 (DB 11책x22.25백만원) (VOD 180시간 x0.35백만원)	600 (DB 18책x22.25백만원) (VOD 444시간 x0.45백만원)	**292**	**94.8**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500 (현대문헌 200만어절x5.67원) + (고전문헌 1,353만어절 x32원) + (고전어휘 속성 100만x55.8원)	500 (현대문헌 300만어절x5.67원) (고전문헌 1,353만어절x32원) (고전어휘·속성 13만x385.8원)	500 (현대문헌 300만어절x5.67원) (고전문헌 1,353만어절x32원) (고전어휘·속성 13만x385.8원)	-	-
□ **비목**(합계)	**3,758**	**3,708**	**4,227**	**519**	**13.9**
○민간경상보조(320-01)	3,758	3,708	4,227	519	13.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 ~ '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 문화의 핵심인 고전을 국역 발간하고 국·공립도서관 및 학술단체에 기증 배포 및 웹 사이트 제공, 한국학 연구의 전문화, 한국학 후속세대 양성, 지식기반 사회의 학술·문화 간접자본 구축, 고전의 대중화를 추진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외부기관의 사업수행 평가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 동양고전을 체계적으로 번역, 정보화하여 21세기 새문화 창출의 기반 조성과 고전 대중화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758	- 세종고전국역:4.5×31책=1,410 - 과학기술고전국역:50×6책=300 - 동양고전역주:28책×43.5백만원=1,218 - 동양고전종합DB : 330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53만어휘어절× 30.2원=500			-
'18	3,708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6책×44.4백만원=1,154 - 동양고전종합DB : 308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3,708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6책×44.4백만원=1,154 - 동양고전종합DB : 308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
'19	3,713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6책×44.4백만원=1,154 - 동양고전종합DB : 313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4,227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12책=60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5책×44.4백만원=1,100 - 동양고전종합DB : 294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514
'20	3,750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73 - 동양고전역주:26책×45.27백만원=1,154 - 동양고전종합DB : 327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3,422	- 세종고전국역:45.5×24책=1,092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3책×44.4백만원=1,021 - 동양고전종합DB : 309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328
'21	3,788	- 세종고전국역:44.5×28책=1,246 - 과학기술고전국역:50×7책=35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5책=187 - 동양고전역주:27책×44.4백만원=1,199 - 동양고전종합DB : 306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3,353	- 세종고전국역:45.5×25=1,137 - 과학기술고전국역:50×6책=30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2책×44.4백만원=976 - 동양고전종합DB : 290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435
'22			3,320	- 세종고전국역:45.5×24책=1,092 - 과학기술고전국역:50×6책=300 - 세종한글고전DB구축:7.5×20책=150 - 동양고전역주:22책×44.4백만원=977 - 동양고전종합DB : 301 - 동양고전어휘정보화 : 1,666만어휘어절×30원=500	△33
연평균 증가율 (%)	0.8		△2.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708	4,227	51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34명	37명	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18년 대비 고전문헌국역사업 연구전임인력 3명 증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3명[세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연구전임인력 3명 증원 - 0.968÷0.35=2.7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9년 사업계획서(안) □ 2018년 고용효과: 없음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효과 증대 필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4조 및 제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추진경위

- 1955년, 조선왕조실록('55~'58), 비변사등록('59~'60) 영인 (국편위)
- 1966년, 고전정리 및 국역 착수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족문화추진회('65년~'07년)의 경우 한국고전번역원('07.11)으로 전환
- 1974년, 「문예진흥 5개년 계획」('74~'78, 문화공보부)

- 1977년, 「고전국역사업 촉진계획」 수립
- 1981년, 고전국역사업 소관부처 이관 (문공부 → 문교부)
- 1987년, 「고전국역 활성화 방안」 수립
- 2010년, 고전번역 국역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 「고전번역사업수행 민간단체 지원·협동방안」('10.8)
- 2013년, 2014년, 고전문헌 국역지원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조정 및 사업중단(주관 : 한국고전번역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고전문헌국역지원	21.3	21.3-	30	36	-	37.58		37.0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0 (30)**	( )	( )	30 (30)	**30 (30)**	( )	( )
'16년	**36 (36)**	( )	( )	36 (36)	**36 (36)**	( )	( )
'17년	**37.58 (37.58)**	( )	( )	37.58 (37.58)	**37.58 (37.58)**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758	-	3,658	50[세종]	3,708	3030	81.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과학기술고전국역(50백만원 증액)

'17년 300백만원(50백만원×6책)→ '18년 350백만원(50백만원×7책)

의방유취 국역 물량 1책 증가

○ 집행현황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397백만원
- 전통문화연구회 1,633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도 결산 국회 교문위 지적사항

■ 고전문헌국역지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 관리 철저 필요

○ 조치결과

■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액 성실한 집행 및 정산보고 철저

※ 2016년 고전문헌 국역지원 사업 자체부담금 집행내역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체부담액	자체실집행액
1,925,000,000원	1,900,000,000원	25,000,000원	30,000,000원

*집행내역: 세종한글고전 DB구축 사업/3천만원 집행(2016.11.29.)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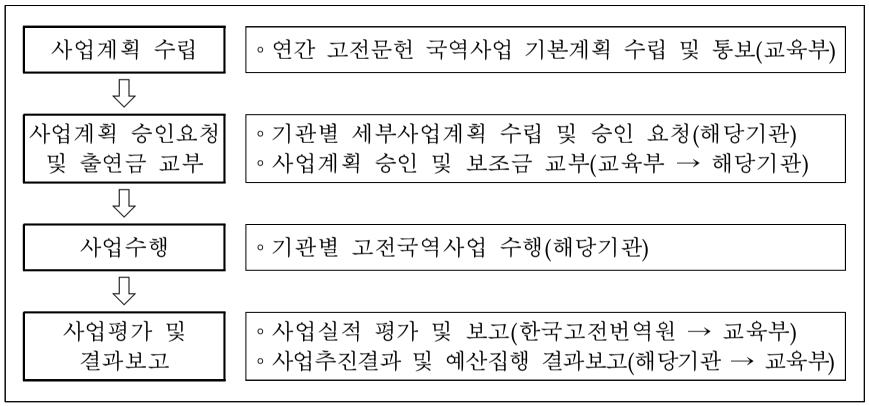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수한 번역책 발간 실적(0.5)	목표	80	83.3	88.9	90	90.2	전체 번역 성과물을 평가한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15년~'17년) 평균 실적* 반영	전체 번역 성과물 결과 평가 점수합 /번역책 수	고전문헌 국역 지원사업 평가 결과
	실적	100	100	89.7		-			
	달성도	125	120	110		-			
당초 계획 대비 성과달성(0.5)	목표	100	100	100	100	100	'19년도 시행계획 대비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당해 12월 기준 실적 / 기본계획에 명시된 계획량) ×100%(DB,책)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100	100	100		-			
	달성도	100	100	100		-			

*('15년) 91.45점, ('16년) 89.42점, ('17년) 89.74점

※ 2017년부터 측정산식 변경

- ('16년) (B등급이상 번역책수/전체번역책수)×100 → ('17년) 전체번역성과물 결과 평가 점수합 / 번역책수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현장 의겸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생)

-한문고전은 DB자료가 풍부하지만, 옛한글고전은 상대적으로 DB구축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임, 수업에 필요한 옛한글 원문 자료와 번역문이 매우 필요함

□ (국어학 교수 및 연구자)

-옛한글고전의 DB가 구축된다면 번역서 한 권 단위가 아니라 전체 자료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는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한글의 시대별 변천 모습과 풍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음

-옛한글고전 문헌에는 옛한글의 서체가 그대로 들어있고, 책마다 다양한 한글 서체를 이용하여 컴퓨터 글꼴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옛한글고전 문헌에는 당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판화가 첨부된 책이 풍부하여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사 연구나 문화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예산 반영사항 >

□ 세종한글고전DB구축 사업 예산반영

-'18년 150백만원 반영(7.5백만원×20책)

-'19년 150백만원 반영(7.5백만원×20책)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사업성과 >

□ 국역도서 기증 배포 예정

•2017년 사업 결과물 37책을 책당 350부씩 간행하여 국 · 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학술기관 등 공공기관에 기증하여 한국학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동양고전 역주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동양학 기초연구자료 축적

※ 간행실적 : (2001~2017) 43종 109책 간행

□ DB구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자체적으로 세종한글고전DB구축 사업진행(8책), 2016년 7월 개통 및 현재 대국민 서비스 진행

•한국고전번역원 및 자체 서버를 통해 2017년도 발행 국역 도서 및 DB 미구축 도서 37책 DB구축(옛한글고전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버 이용)

•번역문과 원문의 자유로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여 우리 고전의 대중화에 기여

• 2017년 국역서 12책의 번역문과 한문원문의 자유로운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국학연구자 및 번역자의 활용에 기여

- 난해한 동양고전의 이해를 돕고 국역사업 성과물의 활용을 증대 위한 멀티미디어 고전강의를 180시간 이상 구축하여 동양 고전의 대중화에 기여

□ 국역 의방유취 제1집 국내 최초로 국역 및 간행(150책 예상)

•조선 시대 세종의 명으로 편찬된 의방유취는 임진왜란 당시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로서 당시 동아시아의 방대한 의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조선의 소중한 의학서임.

< 현장의 변화 >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차 성과물의 확산

• <각사등록>은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모아놓은 책으로 당시의 주요 현안들이 수록되어 있음

- '04년부터 국역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총69집 발간함

• <각사등록-경기도편>과 <각사등록-경상도편>에 나오는 각 지방의 강우량 보고 공문을 토대로 당시의 강우량 통계를 복원한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의 연구물이 출간됨

- 조선시대 역사자료를 이용한 기상 · 기후 복원 기획연구(2011)

- 각사등록 측우기 지방기록: 경상도(2014)

• <치평요람>의 완간으로 <치평요람의 편찬 및 그 목적>(2014) <치평요람의 한국사에 대한 접근>(2015) <치평요람속 한국 이야기1, 2>(2016) <한권으로 읽는 치평요람>(2017) 등 치평요람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는 연구논문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들이 지속적으로 간행되고 있음

• <조선왕조실록>은 과거 <대장금>, <이산>, <명량> 등을 비롯하여 최근의 <장영실>, <역적> 등 드라마나 영화 등의 소재에 핵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의 확산에 기여

□ (전통문화연구회)

• 한국학과 동양학 연구의 自生力과 效率性 提高

- 주요 동양고전을 번역함으로써 한국학·동양학 연구자들의 기본 참고자료 확보. 漢文文理 이해의 기본인 전통적 懸吐를 반영하여, 독자의 한문 독해 능력 제고

• 교육자와 문화관계인 및 일반인을 위한 동양문화 교양자료 제공

- 동양문화 콘텐츠 등 교육, 문화 방면의 기초자료 제공

-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구축

• 정보자료 탐색 및 학습, 연구 활용 기기의 변화에 따른 연구성과물 서비스 방법의 다양화

- 현재 정보자료의 이용 및 학습, 연구에 있어 개인PC뿐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경향에 따라 동양고전번역서에 대한 동양고전DB를 웹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양고전종합DB 이용수(2016년하반기 사이트 개편, 대화면 모바일 지원)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웹페이지	69,097	281,124	463,363	693,636	908,224	1,775,304	1,440,278	5,631,026
모바일	2,495	6,599	52,559	275,267	934,565	668,018	545,283	2,484,786
전체	71,592	287,723	515,922	968,903	1,842,789	2,443,322	1,985,561	8,115,812

[301]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일반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술자원공동관리 체계구축	9,418	8,998	8,998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7 - 301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조의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①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교육연구 인프라 강화 - 대학도서관 통계 수집 및 관리 - 대학도서관 평가 및 운영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을 통한 지식정보 격차 완화 - 전문인력(사서) 교육과정 운영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지원 ②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물 수집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성과의 대중화 및 후속 연구 활성화 지원 - 연구성과물 수집 DB구축사업단 운영 -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없음
사업규모	학술DB 28종 구독,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0개 운영 등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사항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206백만원**

- **대학도서관 자원(통계) 관리시스템 운영 156백만원**
  - 산출내역 : 통계시스템 운영 1식 × 126백만원 = 126백만원
  - 산출내역 : 통계분석 연구 1종 ×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학도서관 평가 및 운영 50백만원**
  - 산출내역 : 평가운영 1종* × 50백만원 = 50백만원

    * '19년 대학도서관 본평가 운영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8,276백만원**

- **전문인력(사서) 교육과정 운영 149백만원**
  - 산출내역 : 전문인력 교육과정 13종 × 11.5백만원 = 149백만원
-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운영 3,101백만원**
  - 산출내역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0개 × 310.1백만원 = 3,101백만원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지원 5,026백만원**
  - 산출내역 : 대학라이선스 28종 × 180백만원 = 5,026백만원

    ※ 대학라이선스 구독지원시스템, 해외학위논문서비스, 전자정보 전문위원회 운영 및 협상, 자문 비용 등 포함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원**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240백만원**
  - 산출내역 : 120백만원 × 2개 센터 = 240백만원
- **기초학문자료센터 시스템 운영 276백만원**
  - 산출내역 : 1식x276백만원=276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998	8,998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8,482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16백만원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 156백만원 ·대학도서관 평가 및 운영 : 50백만원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276백만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 149백만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3,101백만원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지원 : 5,026백만원	8,482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16백만원 ·대학도서관 통계시스템 156백만원 ·대학도서관 평가 및 운영 : 50백만원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276백만원 ·전문인력 교육과정 : 149백만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3,101백만원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지원 : 5,026백만원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51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 240백만원 · 시스템 운영 : 276백만원	51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 240백만원 · 시스템 운영 : 27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교육·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대학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자원**(학술지, 학술 DB, 전자저널 등)의 **확보 및 공동활용**을 통한 **국가 차원의 예산 절감** 및 학술자원 총량 증대 필요
-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 정보(결과보고서, 중간산출물 등)의 대중화 및 후속 연구 활성화 지원 필요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운영>

○ **국가 학술자원 현황조사·관리**를 통한 정책지원 및 신뢰 제고

- 개별 대학도서관의 보유 **학술자원 현황**(장서 등)을 **분석·제공**하여 국가 및 대학(대학도서관)의 **정책 수립 지원 필요**
- 대학도서관 **통계의 공동 활용**으로 중복 조사 지양 및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통계(한국교육개발원), 국가도서관통계(문체부) 등 7개 기관 공동활용

○ **대학도서관 평가를 통한 자체진단 및 도서관 진흥 · 발전에 기여**

- 평가데이터 및 평가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학도서관 **평가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 대학도서관 평가를 통해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수준의 자체진단** 및 **대학 본부의 도서관 투자 유도**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대학도서관 **사서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 향상 지원

-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필요
- 대학도서관 본 평가('19년)에서 계량 지표인 사서 교육과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점진적 확대** 필요

※ 대학도서관 사서 수('17년 기준: 2,625)×27시간 = 70,875시간 수준 교육 필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사서 등)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지원확대를 통한 **외국학술지 총량 증대**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사업】
주제별로 지정된 10개 센터가 주요 저널 등의 학술자원을 수집·구독하고 학술연구자들에게 무료 제공하여 학술자원의 공동활용을 제고하는 국가 사업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분담수서를 통해 중복학술지 구독을 중단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 확대**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분담수서를 통한 예산절감효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해년도 비용절감 효과	13억	20억	26억	32억	35억

- 인쇄학술지 구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대학도서관 예산은 감소하여,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원문복사 의존도 매년 상승**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원문복사 서비스 점유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원문복사 서비스 점유율 (RISS 해외학술지 기준)	63.1%	83.6%	88.7%	89.6%	90.1%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를 통한 학술연구 기반 확충

【대학라이선스 사업】
수요가 높은 핵심 전자자료를 국가가 구독료의 약 30%를 부담하고 대학이 약 70%를 부담하여 국내 모든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비구독기관 학술연구자는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무료 이용

- 핵심 학술DB의 대학라이선스 확보를 통하여 **대학간 지식정보격차 완화** 및 **학술자료**의 **접근성 확대**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확대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률(%)
대학라이선스 도입	24종	27종	28종	**3.7%**
이용 건수	133,834천건	200,692천건	209,552천건	**4.4%**

-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한 **대학예산 절감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사업임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참여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성장률(%)
참여기관 수	308기관	321기관	**4.2%**
예산절감 효과	1,184억원	1,270억원	**7.3%**

- 현재 구독중인 대학라이선스 28종('18년 기준)을 국내 4년제 상위 20개 대학 구독 **평균 70종* 수준으로 확대 필요**

* 70종 : 4년제 대학 상위 20개 기관 평균 학술DB 구독 평균 종수('17년 기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n Research Memory) 구축·운영>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한 연구성과 관리 및 후속연구 지원

- 학술지원사업 **학술활동결과물**(중간산출물, 결과보고서, 결과발표물 등) **수집·관리**를 통해 **국고 투입된 연구 성과의 체계적 관리 필요**

<학술진흥법>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고 투입된 연구성과물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학계 연구자를 위한 지속적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이 필요
- 기초학문 분야 연구의 학술활동결과물 수집 및 공동 활용 확대로 연구자 만족도 향상

구분	DB구축	이용/조회	원문보기
'16년	10,104건	789만건	233,236건
누적	653,563건	3,046만건	891,148건('12년이후)

※ 연구자 만족도 : ('15년) 91점 → ('16년) 92.3점 → ('17년) 93.1점

○ 기초학문자료센터 DB는 연구재단 소관 연구 성과물에 국한되어 유관기관 간 학술활동결과물 DB 연계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연-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인문학 연구성과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로 개편 추진('18)

○ 인문학대중화사업(세계인문학포럼, 석학인문강좌) 연구성과물* 제공으로 인문학 성과의 온라인 확산 지원

* 제1~4회 세계인문학포럼 : 주제 및 행사정보, 발표·토론문, 개최동영상 등
제1~9기 석학인문강좌 : 주제 및 강연내용, 강좌영상, 요약영상 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학술자원공동관리 체제구축**	**9,418**	**8,998**	**8,998**	-	-
①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506**	**206**	**206**	-	-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86	156	156	-	-
-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운영 (기관운영출연금)	126 (1식x126 백만원)	126 (1식x126백만원)	126 (1식x126백만원)	-	-
- 통계분석 연구 (기관운영출연금)	60 (2종x30백 만원)	30 (1종x30백만원)	30 (1종x30백만원)	-	-
▪ 대학도서관 평가 및 운영	320	50	50	-	-
- 평가운영 (기관운영출연금)	120 (3종x40백 만원)	50 (1종x50백만원)	50 (1종x50백만원)	-	-
-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기관운영출연금)	200 (1식x200 백만원)	-	-	-	-
②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8,422**	**8,276**	**8,276**	-	-
▪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기관운영출연금)	149 (13종x11.5 백만원)	149 (13종x11.5백만원)	149 (13종x11.5백만원)	-	-
▪ 외국학술지센터 운영 (기관운영출연금)	3,233 (10센터 x323.3백 만원)	3,101 (10센터x310.1백만원)	3,101 (10센터x310.1백만원)	-	-
▪ 학술DB 대학라이 선스 구독지원 (기관운영출연금)	5,040 (28종x180 백만원)	5,026 (28종x179.5백만원)	5,026 (28종x179.5백만원)	-	-
③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490**	**516**	**516**	-	-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 구축 (기관운영출연금)	240 (2센터 x120백만 원)	240 (2센터x120백만원)	240 (2센터x120백만원)	-	-
▪ 센터 및 시스템 운영 (기관운영출연금)	250 (1식x250 백만원)	276 (1식x276백만원)	276 (1식x276백만원)	-	-
□ **비목(합계)**	**9,418**	**8,998**	**8,998**	-	-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9,418	8,998	8,998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도서관진흥법('15.3.제정)에 따라 대학도서관 시범평가(3단계) 지표 점검과 평가 수행을 통해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대학 자체의 도서관 지원 촉구

○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의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인력에 대한 최소교육시간(연간 27시간)에 따라 교육훈련 과정 지속적 운영

○ 대학라이선스 구독 및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학술자원 총량 증대 및 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 효과 제고

【학술자원 총량 증대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증대】

- 대학라이선스 예산절감 효과 증대

('14) 988억원 → ('15) 1,007억원 → ('16) 1,184억원 → ('17) 1,270억원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예산절감효과 증대

('14) 20억원 → ('15) 26억원 → ('16) 32억원 → ('17) 35억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성과물 수집 및 인문 자산 원스톱(One-Stop) 포털 서비스* 구축을 위한 개편 추진

- '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연구소 포괄) 디지털 인문학 자료를 집대성한 인문학 DB 구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16.2월),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추진('16.12월)에 따라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418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902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696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18	8,998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482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276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8,998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482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276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19	9,133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617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411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8,998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482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276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135
'20	9,224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708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502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8,292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7,776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7,570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932
'21	9,316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800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8,594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8,126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7,610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7,404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1,190
'22			8,045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7,529백만 - 학술자원 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 7,323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백만 - 시스템 운영 : 1식×376 =276 - 연구성과물 수집 및 DB구축 : 2사업단×120=240	
연평균 증가율 (%)	△0.2%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자 정보 및 업적, 연구 성과 및 평가, 학술실태조사 자료 등의 학술정보를 축적·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학술정보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14조(대학도서관평가)

>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2. 11 인적자원개발회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 5개년 계획 심의확정
- ’05. 03 기초학문자료센터 시범사업 실시
- ‘06. 8 외국학술지지원센터(전기·전자·통신 분야) 지정(1개 센터)
- ‘07. 9 기초학문자료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 ‘08. 11 제 1차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09~13) 수립
- ’08. 12 학술정보 통계시스템(Rinfo) 구축 완료
- ‘13. 11 2013년도 외국학술지지원센터 1개 확대(총 10개)
- ‘14. 03 제 2차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14~18) 수립
- ‘16. 02. 해외 학술DB社 연계 서비스 개시(Ex-Libris社 연동 서비스 오픈)
- ‘16. 03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 수립
- ‘16. 12 대학도서관 시범평가(1단계, 정량) 실시
- ’17. 12 대학도서관 시범평가 실시(25개 지표, 정량+만족도 조사)
- ’17. 12 2018년 대학도서관진흥 시행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80.39	79.90		84.66		94.18		89.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 5백만원 불용(위탁계약 잔액 발생)
2016년 : 12백만원 불용(환율변동에 따른 차액발생 등)
2017년 : 72백만원 불용(위탁계약 낙찰 차액, 계약직 채용 지연 등)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9.90 (79.90)	( )	( )	79.90 (79.90)	79.90 (79.85)	( )	(0.05)
’16년	84.66 (84.66)	( )	( )	84.66 (84.66)	84.66 (84.55)	( )	(0.12)
’17년	94.18 (94.18)	( )	( )	94.18 (94.18)	94.18 (93.46)	( )	(0.72)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9,418		8,998		8,998	8,998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없음
○ 집행현황 : 8,998백만원 전액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연번	지적사항	처리현황	처리결과
1	학술정보자원의 전략적 확보를 통한 총량 확대 및 자원 공유로 대학 연구경쟁력 강화,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예산 증액 필요 (2008.10. 국회 예결위)	완료	- 2008년 국회 예결위 지적 후, 2013년 예산을 증액 받아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10개로 확대 · 운영(2013. 7~현재)
2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예산 확대편성 지적 (2017.10. 강길부, 박광온, 이종배, 송기석 의원)	미완료	- 국회 교문위 상임위원회(이은혜, 전재수, 김세연 의원)에서 전자저널 국가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기재부에 요구(2017.11.) - 최종 미반영되어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예정
4.	개별사업 출연금의 기관운영성 경비 집행 부적절 (교문위 ‘16년 결산검토보고서)	완료	- 수탁사업에 기관 운영성 경비가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18년 수탁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지침 개선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전자저널 국가라이선스 사례

국가	내용
프랑스	- 교육부 -엘스비어 ScienceDirect 국가 라이선스 체결(Couperin Consortium) - ‘14년 ~ ’18년, 5년간 프랑스의 600여 개 공공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ScienceDirect*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체결 * ScienceDirect는 2,200여 종 저널, 2만5천여권 이상의 e-Book 등 제공
영국	- JISC의 UK National Academic Archive 프로젝트 - 아카이브 전자자원 26종을 제공 중이며 이 중 21종은 전 참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중이며 5종은 참여기관에서 Access Fee만 지급하면 이용 가능 * JISC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교육기금위원회가 지원하는 정부기관

- 학술자원 공동활용 사례

국가	제도내용
일본	- '80년대부터 「외국잡지센터관 운영 기본방침」에 의거 대학도서관을 외국잡지센터로 지정 운영 ※ 운영비와 학술지 구입예산은 문부과학성에서 지원
미국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UC계열 대학에 상위 10개 학술DB 구독료 전액과 그 외 DB구독료 50% 지원

- 기초학문자료센터 사례

국가	제도내용
미국	- The Human Relations Area Files(HRAF)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미, 카리브해, 중동,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 민속지·고고학 자료, 수고 컬렉션지원
일본	-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SSJDA)을 통해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조사, 사회조사 수치데이터와 조사에 관한 정보를 보존, 연구자들에게 이차분석 자료로 제공 지원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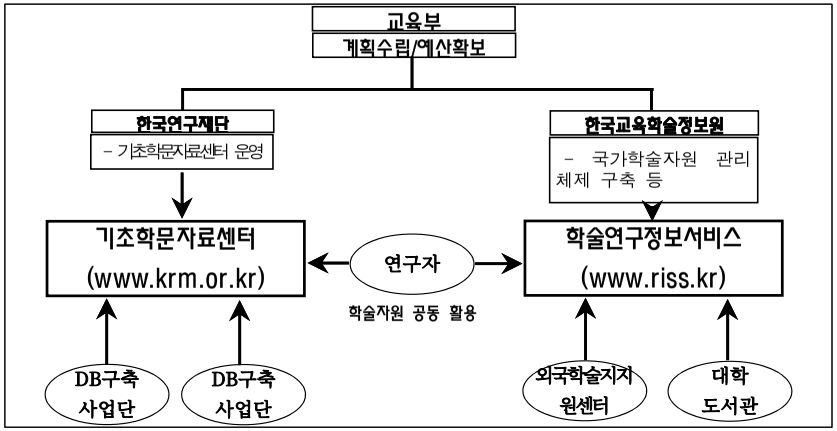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술자원 공동활용 건수(만건)	목표	3,382	3,944	4,489	4,713	4,807	전년실적 대비 5% 향상	RISS, KRM 학위논문, 학술논문, 기타 보고서 다운로드 건수	시스템 통계 - www.riss.kr - ww.krm.or.kr
	실적	3,867	4,358	4,493	-				
	달성도	114	110	100	-				
외국학술지 지원센터의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85	88	88.7	88.9	전년실적 대비 0.1상향	센터별 이용자의 설문조사 결과 점수의 평균	외부 용역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87	88.6	-				
	달성도	-	102	101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없음

7. 참고자료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2]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현황
[참고 3] 기초학문자료센터 콘텐츠 구축 현황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1,270억원**

대학라이선스 구독금액				예산절감액 (E)
개별 구독 시 금액 총합(A)	국고 출연금(B)	KERIS 출연금(C)	대학 부담금(D)	
140,568백만원	4,455백만원		9,089백만원	127,023백만원

※ 예산절감액(E) = 개별구독금액(A)- {국고출연금(B) + KERIS출연금(C)}- 대학부담금(D)

※ 환율은 $1=1,130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분담수서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 35**억원**

구분		산출	편익	예산절감효과(누적)
대학도서관 비용 절감 효과	2012년 구독 중단	652종 (94개 대학 회신)	881백만원	881백만원
	2013년 구독 중단	359종 (108개 대학 회신)	403백만원	1,285백만원
	2014년 구독 중단	666종 (84개 대학 회신)	702백만원	1,987백만원
	2015년 구독 중단	712종 (115개 대학 회신)	646백만원	2,632백만원
	2016년 구독 중단	615종 (109개 대학 회신)	568백만원	3,207백만원
	2017년 구독 중단	364종 (105개 대학 회신)	316백만원	3,524백만원

□ 학술가치가 높은 기초학문 분야 학술활동결과물 수집 및 공동 활용

구분	DB구축	이용/조회	원문보기
’ 17년	10,992건	810만건	370,562건
누적	664,485건	3,856만건	1,261,710건(‘12년이후)

< 현장의 변화 >

□ 외국학술지지원센터의 분담수서체계 확립을 통해 국내 대학의 학술지 구독 중단 효과 발생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학술지 중 구독을 중단한 대학의 학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년 기준 364종 구독 중단(누적 비용절감효과 35억원)

□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자 만족도 지속 상승 (기초학문자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 ’16년 92.3점 → ’17년 93.1점)

참고 2 외국학술지지원센터(FRIC) 현황

주제분야	대학명	17년 지원금	서비스 종수 (’ 16.12. 기준)		서비스 종수 (’ 17.12. 기준)		상호대차 제공실적 (’ 17.12 기준)
			학술지 (종수)	논문 (건수)	학술지 (종수)	논문 (건수)	
임상의학	연세대	328,600	515	2,799,924	515	2,890,041	14,615
자연과학	서울대	376,000	2,504	5,883,124	2,511	6,069,252	9,269
농·축산	전북대	254,400	676	1,439,000	676	1,480,032	4,126
인문학	고려대	275,000	2,176	1,071,266	2,237	1,117,109	9,207
기술과학	부산대	371,000	16,532	1,648,270	16,554	1,715,811	3,602
전기·전자·정보통신	경북대	376,000	6,555	1,142,755	6,549	1,195,160	2,580
생명공학	강원대	381,000	1,726	2,646,704	1,722	2,714,592	7,660
교육·사회·예체능	이화여대	328,000	2,401	1,192,790	2,434	1,331,997	13,053
행정·경영학	충남대	265,000	1,562	557,989	1,582	568,764	3,289
환경·에너지	경상대	270,000	354	202,902	347	241,767	2,511
합 계		**3,225,000**	**35,001**	**18,584,724**	**35,127**	**19,324,525**	**69,912**

참고 3 기초학문자료센터 콘텐츠 구축 현황

(2017.12.31.기준)

년도	구분	단행본	보고서	학술논문	조사자료	고문서	고도서	이미지	동영상	녹음자료	웹사이트	기사자료	날장자료	총건수
'06	자료	361	1,124	4,669	259	454	1,463	567	292	96	6	2,028	827	12,146
	파일	324	1,017	3,475	1,248	81	1,398	4,187	1,167	1,037	3	3,686	5,376	22,999
'07	자료	214	3,134	5,933	306	1,483	2	119	169	68	42	11	1,750	13,231
	파일	142	3,291	5,899	913	3,622	2	2,944	1,861	1,032	1,186	10	11,966	32,868
'08	자료	260	3,998	6,412	319	363	92	706	152	86	7	177	2,062	14,634
	파일	354	4,980	6,504	1,214	1,033	1,098	7,245	2,796	403,319	2	263	6,833	435,641
'09	자료	754	3,899	3,783	619	546	-	277	67	279	22	2	1,233	11,481
	파일	771	5,064	4,111	1,096	442	-	5,844	171	53,002	18	60	27,239	97,818
'10	자료	84	2,074	2,662	254	-	-	68	35	135	0	10	341	5,663
	파일	110	2,367	2,955	615	-	-	3,595	121	808	0	28	632	11,231
'11	자료	230	5,203	4,648	193	13	17	49	17	81	8	2	133	10,594
	파일	0	7,080	92	511	1012	0	264	6	931	0	1	1269	11,166
'12	자료	3,005	9,699	13,562	133	1	20	10	21	32	8	1	189	26,681
	파일	3	13,111	9	447	1	0	308	12	279	0	2	323	14,495
'13	자료	1,265	3,373	2,312	178	1	32	19	74	58	12	0	329	7,653
	파일	0	4,633	10	670	0	0	488	20	137	1	0	567	6,526
'14	자료	1,423	4,406	4,499	101	2	0	17	87	48	34	0	138	10,755
	파일	53	4,385	4,082	435	0	0	537	21	876	0	0	326	10,715
'15	자료	695	4,706	3,981	67	2	37	13	39	11	12	1	573	10,137
	파일	259	4,767	3,584	241	0	0	399	64	20	0	1	769	10,104
'16	자료	825	3,547	6,920	61	2	21	9	16	8	20	0	229	11,658
	파일	351	3,440	6,178	139	3	0	87	19	43	0	0	662	10,922
계	**자료**	**9,116**	**45,163**	**59,381**	**2,490**	**2,867**	**1,684**	**1,854**	**969**	**902**	**171**	**2,232**	**7,804**	**134,633**
	파일	**2,367**	**54,135**	**36,899**	**7,529**	**6,194**	**2,498**	**25,898**	**6,258**	**461,484**	**1,210**	**4,051**	**55,962**	**664,485**

[302]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연구윤리활동지원	730	705	1,005	**300**	**42.6**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7 - 302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배소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연구윤리 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 -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 -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인식 확산 도모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연구윤리 제도 확립 및 기반 조성 지원 : 360백만원

▪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학술단체 자체 연구윤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풍토 조성 : 240백만원

※ 학문분야별(모학회 중심)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개념 및 기준 정의, 연구윤리 위반 원인, 유형, 판단 및 처리절차 수립, 연구윤리 저해요인 파악 및 예방을 위한 활동 등

※ 규제에 의한 연구윤리 준수가 아닌 자발적인 연구윤리 의식 수준 제고 추진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학문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20백만원×2과제 = 40백만원	·학문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20백만원×12과제 내외 = 240백만원

▪ 대학 및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규정, 가이드라인 연계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포럼개최 : 10백만원

※ 주요 연구윤리 이슈, 사례, 규정 및 운영현황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대학과 학회중심의 연구윤리 제도 선진화 기반 확립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연구윤리 포럼 개최 1회(300명 내외 참석) = 10백만원	·연구윤리 포럼 개최 1회(300명 내외 참석) = 10백만원

▪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사례검색 시스템 구축 : 110백만원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연구윤리 실태·인식조사(200여개 대학 대상) = 10백만원	·온라인 연구윤리 실태조사.사례검색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110백만원

○ 대학 및 연구자 등을 위한 연구윤리 현장지원 강화 : 230백만원

▪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연구윤리 인식 확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230백만원

※ 웹사이트 운영(사용자 편의 개선), 홍보(뉴스레터, 이슈페이퍼 발간, 각종 콘텐츠 제작 등) 등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연구윤리 정보센터 운영 : 230백만원 - (조직 및 운영) 상주 전담인력 1명 - (정보제공) 학술DB 등 5,153건 제공 - (상담센터 운영) 전화, 이메일 등 506건 -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포럼 등 12회 - (콘텐츠 개발) 영문 연구윤리 웹툰 5편, 인포그래픽 2종, 뉴스레터 3종, 이슈페이퍼 3건 발간, 동영상 4종 등	·연구윤리 정보센터 운영 : 230백만원 - (조직 및 운영) 상주 전담인력 1명 - (정보제공) 학술DB 등 5,153건 제공 - (상담센터 운영) 전화, 이메일 등 506건 -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포럼 등 12회 - (콘텐츠 개발) 영문 연구윤리 웹툰 5편, 인포그래픽 2종, 뉴스레터 3종, 이슈페이퍼 3건 발간, 동영상 4종 등

○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 강화 : 415백만원

▪ (온라인)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통한 학문분야별(이공, 인문 등) 온라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대학원생 등) 연구윤리 교육 실시 : 215백만원

※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연구윤리 교육 심화과정 개발 및 콘텐츠 최신화 등) 및 홍보 강화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 215백만원 - 교육이수자 수 : 19,635명 - 콘텐츠 개선 : 심화 콘텐츠 분야별 사례 확장(이공 3, 인문 2, 예체능 1, 총 6개)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 215백만원 - 교육이수자 수 : 19,700명 - 콘텐츠 개선 : 상시 학습을 위한 비정형 콘텐츠 도입(이공 3, 인문 3, 총 6개)

▪ (오프라인)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교육(방문형) 지원 : 200백만원

※ 대학교원(신임교원 등),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원,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술단체 등 대상 연구현장 방문을 통한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 강사 지원

'18년 추진실적(목표)	'19년 산출내역
·대학 방문형 교육 : 4백만원×45회 =180백만원 ·연구기관/학회 방문형 교육 : 4백만원×5회=20백만원	·대학 방문형 교육 : 4백만원×45회 =180백만원 ·연구기관/학회 방문형 교육 : 4백만원×5회=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연구윤리활동지원	705	1,005
■ 제도확립 및 기반 조성	(40백만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2과제)	(240백만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12과제)
	(10백만원) 포럼개최(1식)	(10백만원) 포럼개최(1식)
	(10백만원) 실태 및 인식조사(1식)	(110백만원) 실태조사 및 사례검색 시스템 구축(1식)
■ 연구현장 지원	(230백만원)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인식확산 지원(1식)	(230백만원)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인식확산 지원(1식)
■ 연구윤리 교육 강화	(215백만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안정화 운영(1식)	(215백만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안정화 운영(1식)
	(200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1식)	(200백만원) 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1식)

□ 지원 필요성

○ 연구윤리 확립은 학술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 2007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이후 대학별 자제 연구윤리위원회 등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 인식 확산을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

- 특히, 최근 연구윤리가 쟁점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바 선제적·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연구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학문·국가 간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윤리 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

<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록 문제 관련 기사>
- 중·고생 자녀 '스펙' 쌓아주는 교수들… '아빠 논문 공저자' 최소 10명 확인 (국민일보, 2017.12.04.)
- 자기 논문에 高3자녀 공동저자로… 교수 '이름 끼워넣기' 10년간 82건(조선일보, 2018.01.26.)

<논문 표절 관련 언론보도 및 기사>
- 총장 논문 표절 논란에 뿔난 00대 학생・교수들(중앙일보, 2018.02.26.)
- 논문 돌려막기인가 상납인가… 00대 선후배 교수 사이 표절(한국일보 2017.06.19.)
- 00대 교수들, 논문표절 동료 교수에 "사직 권고"(KBS 뉴스, 2017.06.16.)

<최근 3년간 대학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발생빈도(건)	25건	36건	53건	38건
증가율(%)	-	44%	47.2%	45.6%

※ 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한국연구재단)
※ 대학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는 설문에 근거한 것으로, 매해 조사 응답률과 조사대상 등에 차이가 있어 연도별 단순 비교 제한

<최근 3년간 대학 연구윤리 관련 부서 평균인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평균인원(명)	2.27명	2.35명	2.24명	2.3명
증가율(%)	-	3.81%	△4.79%	△0.6%

※ 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한국연구재단) 결과를 토대로 재작성(연구윤리 관련 부서인원은 대학별 최소 1명, 최대 5명으로 조사)

○ **(제도확립 및 기반 조성)** 학문 분야별 자발적인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연구윤리 현장 지원)** 증가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윤리정보센터 기능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필요

- 연구윤리는 징계처분 등 사후조치보다는 인식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연구윤리 정보 제공,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연구윤리 인식 확산

○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윤리(사이버, 방문형) 교육의 경우 수요자 증대와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따라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질적 심화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730**	**705**	**1,005**	**300**	**42.6**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100	60 (가이드라인 2과제 x20백만) (포럼 1회 x10백만) (실태조사 1회 x10백만)	360 (가이드라인 12과제 x20백만) (포럼 1회 x10백만) (조사 시스템 구축 1식 x110백만)	**300**	**500.0**
■ 연구윤리 현장지원	250	230 (정보센터 운영 1식x230백만)	230 (정보센터 운영 1식x230백만)	-	-
■ 연구윤리 교육강화	380	415 (온라인 교육 1식×215백만) (오프라인 교육 1식×200백만)	415 (온라인 교육 1식×215백만) (오프라인 교육 1식×200백만)	-	-
□ **비목**(합계)	730	705	1,005	**300**	**42.6**
○사업출연금(350-02)	730	705	1,005	300	42.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 확립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올바른 연구문화 정착지원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학회 중심 연구윤리 규정, 가이드라인 등 체계화 및 고도화, 연구윤리 제보센터 신설 및 사례·통계 확보
- (연구윤리 현장지원 확대) 증가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윤리정보센터 기능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 (연구윤리 교육 강화)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질적 심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730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10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5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380백만원	-		-
'18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
'19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1,0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3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300
'20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
'21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
'22	-		705	■ 제도확립 및 기반조성 60백만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230백만원 ■ 연구윤리 교육강화 415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0.9%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705	1,005	3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7.9	11.3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1.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10.05억원은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0.05억원 ÷ 0.89억원 = 11.3명 **□ 2018년 고용효과: 7.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및 동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7조(대학 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 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07.02), 연구노트 관리지침('07.12) 제정
- ('09)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09.12)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

「연구윤리확립 종합추진계획('10~'12)」수립('09.12)

- ('10) 학위논문 대필 근절 대책 수립.시행('10.06)

- ('11) 학술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윤리시책추진 및 예산지원근거 마련('11.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개정('11.06)
- ('12) 연구윤리정보센터 확대개편('12.07),
- ('1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개정('14.03)
- ('15)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시스템 오픈('15.0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 개정('15.11)
- ('16)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15.3~) 및 공동연구원('16~)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17~'18) 연구윤리 교육(온/오프라인) 지속 확대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연구윤리활동 지원	8.4	8.4	-	8.4	-	7.3	-	7.0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4 (8.4)	( )	( )	8.4 (8.4)	8.4 (8.4)	( )	( )
'16년	8.4 (8.4)	( )	( )	8.4 (8.4)	8.4 (8.4)	( )	( )
'17년	7.3 (7.3)	( )	( )	7.3 (7.3)	7.3 (7.3)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730	-	705	-	705	705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연구윤리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지표 등 개선 필요('15 결산 교문위)

☞ '17년부터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윤리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 4년제 대학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시 비율 추가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97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국가	사 례
미국	· 엄격한 법률 적용, 각 대학별 연구윤리지침 마련 · 연구윤리교육 개발 지원 · 미국 대학의 경우, 리포트 표절 검색프로그램 도입
영국	· 연구윤리를 법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침·강령 적용 · 연구윤리교육 실시 - 특히, 연구책임자는 연구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 연구윤리위원회의 지침을 고려하여 각 대학마다 독자적인 규정을 적용·활용
호주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호주 연구진실성위원회(ARIC) 설립·운영 - 연구윤리 준수여부 조사·검토 후상위기관인 호주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가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에 보고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사업 추진계획 심의·승인	· 교육부
↓	
총괄협약 체결·사업비 지급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개별협약 체결·사업 추진	· 한국연구재단→주관연구기관
↓	
연구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연구윤리교육(온·오프라인) 이수자 비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5.5	(최근 3년간('17~'19) 연구윤리교육 이수자 수 / 고등교육기관 전임·비전임 교원)×100	연구윤리교육 대상자로 등록·이수한 사람의 수 측정	한국연구재단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연구윤리교육 참가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83	84.7	84.8	87	한국연구재단 운영 연구윤리교육 이수자 만족도 평균 (100점 만점)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참가자의 만족도평균	한국연구재단보고서
	실적	신규	88	87.9	-				
	달성도	신규	106	104	-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실시 비율 (%)	목표	신규	신규	64	64.7	66.5	(연구윤리교육 실시 대학 수/4년제 대학 수) × 100 * 실태조사	4년제 대학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	한국연구재단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64	-				
	달성도	신규	신규	100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관련 통계 등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의견(요청사항) >

□ (대학교수)

· 대학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의견수렴 대상 : 총 1,182명

· 설문조사 기간 : 2018.2.22. ~ 3.2.

· 연구윤리 실천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요청 사항

구분	응답자수	필요하다는 응답자수	필요하다 비율(%)	우선순위
(제도지원)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1,182	908	76.8%	1순위
(제도지원) 연구윤리 지원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1,182	844	71.4%	-
(교육지원) 학문분야별 맞춤형 연구윤리교육	1,182	841	71.2%	2순위
(자료지원)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재 및 동영상 개발	1,182	829	70.1%	3순위

< 예산(안) 반영사항 >

□ (1순위)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2억 반영

□ (2순위)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 8억 반영

□ (3순위) 연구윤리 정보 제공을 통한 인식 확산 : 4억 반영

※ 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예산 반영 시 제외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 실시 강화 및 교육부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대학 연구윤리 교육 실시 비율(당해) : ('14) 56.6% → ('16) 72.5%

교육 실시 여부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실시한 적이 있다	113	56.6%	133	67.5%	132	72.5%
최근 1년 이내는 없지만 실시한 적이 있다	30	14.6%	23	11.7%	34	18.7%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57	28.8%	41	20.8%	16	8.8%
합계	200	100.0%	197	100.0%	182	100.0%

※ 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 157쪽

· 교육부 정책(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교육 관련 책자 발간)에 대한 인식

· (교육부 정책의 만족도) ('14) 67.9% → ('15) 66.7% → ('16) 70.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학수	비율
대체로 만족 및 매우 만족	133	67.9%	126	66.7%	124	70.1%
불만족 및 그저 그렇다	63	32.1%	63	33.3%	53	29.9%
합계	196	100.0%	189	100.0%	177	100.0%

※ 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 192쪽

< 현장의 변화 >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사후조치 보다는 건전한 연구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정책적 지원 필요

·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적 지원안을 마련하여 사후에 문제를 찾기보다 건전한 연구윤리를 가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춘해보건대 000 교수)

참고 3 관련 통계 등

□ 연도별 유형별 연구부정행위 발생 현황

구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논문 대필	제보 방해 등	기타	전체
전체(2012)	-	-	7	3	6	-	-	-	16
전체(2013)	1	3	7	4	4	-	-	-	19
전체(2014)	-	1	20	1	3	-	-	-	25
전체(2015)	1	-	17	10	8	-	-	-	36
전체(2016)	2	1	22	20	7	-	1	-	53
전체	4	5	73	38	28	-	1	-	149

※ 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한국연구재단)

□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미실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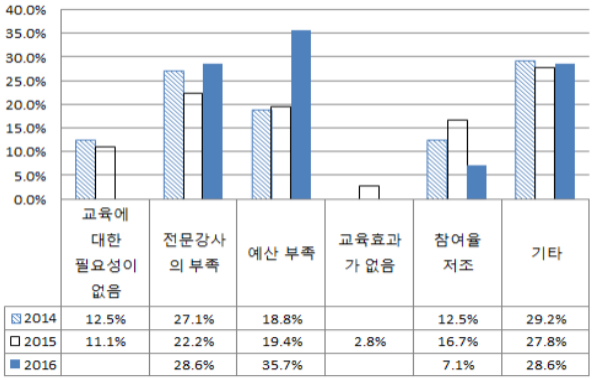

※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연구윤리 교육 미실시 대학 '14년 48개, '15년 36개교, '16년 14개교 대상 조사결과(출처 : 2016년도 국내 연구윤리 활동실태 조사 및 연구윤리 위반 요인 분석(한국연구재단))

[300] 학술단체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술단체지원사업	8,737	7,885	7,637	**△248**	**△3.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8 - 30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배소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인문사회분야] ○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생·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학문의 다양성을 제고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학회의 행정업무 경감 [이공분야] ○ 기초학문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분야 학회의 학술활동(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학문발전에 기여 ○ 학술지 및 학술대회 국제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위상 제고
사업기간	'91～계속(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12～계속(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출연(인문사회분야), 민간경상보조(이공분야)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인문사회 분야]

○ **학술대회 지원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국내 학술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2,238백만원**
('18년도 2,362백만원 → '19년도 2,238백만원 ('18년도 대비 5.2% 감액)

▪ 사업개요 : **국내 학술단체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함. 국제대회의 경우 5개국~20개국 참가, 외국학자 10명~200명 이상 참가

▪ 산출내역 : 남북한 정상회담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국제학술대회 개최 가능성, 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정책과제(학술대회) 추진, 국내 학술단체 신청건수, 신청액 대비 실질적인 지원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비율 : ('18년) 281과제×8.4백만원=2,362백만원→ ('19년) 233과제×9.6백만원=2,238백만원
* 신청건수 : ('16년) 490과제→ ('17년) 421과제 → ('18년) 417과제

○ **학술지 지원** : 학술단체(신생·소외분야 포함)의 **학술지 발행을 지원**하여 학술 활동 활성화 및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1,610백만원**

▪ 사업개요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 및 신생·소외분야, 토착학문분야 학술지에 대해 발행 소요액의 100% 이내 지원

▪ 산출내역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의 현실적 지원을 강화하여 발행 소요액의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1,610백만원

* ('18년) 1,610백만원 → ('19년) 1,610백만원
* ('18년) 260과제×6.2백만원=1,610백만원 → ('19년) 260과제×6.2백만원=1,610백만원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구축** : 국내 학술단체의 **논문 투고·심사과정을 표준화**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시스템 무상 보급**

▪ 사업개요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생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 온라인 투고 심사시스템 무상 보급

▪ 산출내역 : 신규 시스템 보급 학회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존 보급 학회 운영지원을 위해 **225백만원**

* 신규 보급 학술단체 수('17년) 178개 → ('18년) 168개 → ('19년) 100개

[이공 분야]

○ **학술지지원** : **학술지 발간 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2,733백만원**
('18년도 2,857백만원 → '19년도 2,733백만원 ('18년도 대비 4.3%감액))

▪ 사업 개요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를 단계별 구분하여 지원
- 학술지 발전 단계 중 "학술지국제화와 국제학술지" 로 구분
: 국내학술지 → **학술지국제화** → **국제학술지** → 세계적학술지로 성장
(국문) (영문, 40편이상) (SCI(E), SCOPUS) (Nature, Science와 경쟁)

▪ 산출내역
① 국제학술지지원(2,553백만원)
(해외 유명 색인 DB인 **SCI(E), SCOPUS 등재지**만을 지원)
- 발간경비지원 : 106종 × 24.08백만원 = 2,553백만원
② 학술지국제화지원(180백만원)
(국내 영문학술지 중 **SCI(E)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 집중 지원)
- 산출근거 : 6종 × 30.0백만원 = 180백만원

○ 국제 학술대회 지원 :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350백만원 ('18년 350백만원 → '19년 350백만원)

▪ 사업 개요 :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규모가 큰 학술대회 20개국 이상 참가, 외국학자 구두 발표 논문 수 200편 이상인 학술대회지원

▪ 산출 내역 : 세계학술대회 국내 유치 증가 추세* 반영 및 개최 파급효과 등 국가 기여도를 고려, 학술대회 지원과제수 대비 350백만원
· 8과제×43.75백만원=350백만원
* 신청건수 : ('14) 18과제 → ('15) 25과제 →('16) 18과제 →('17) 7과제 →('18) 11과제

○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 **연구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편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220백만원**
('18년도 220백만원 → '19년도 220백만원)

▪ 사업 개요 : 국내 학술지의 해외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출판윤리 교육 등 학술단체에 꼭 필요한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
① 연구성과국제화 : 글로벌 표준이 적용된 형태(전자저널 등)로 구현된 **학술정보 국제포털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실현

② 학술지편집인역량강화 : 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출판윤리, 편집인 교육, 학술지운영 노하우, 세계동향 등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표준을 요구하는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산출내역
① 연구성과 국제화 : 180백만원
- ScienceCentral 운영·활성화 및 해외저널 유치 강화 : 100백만원
- eNEST(과학기술학술활동지원시스템) 운영 : 80백만원
② 학술지발행역량강화(원고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편집인워크숍, 출판윤리포럼 개최 등) : 40백만원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61백만원**

▪ 사업 개요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심사평가관리비 및 참여인력 인건비**

▪ 산출 내역
· 심사평가·관리비 : 20백만원
· 참여인력 인건비 : 241백만원

구 분	'18예산	'19 예산
□ 학술단체지원	7,885	7,637
■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 지원 : 281개×8.4백만원 =2,362백만원 ·학술지 지원 : 260과제×6.2백만원=1,610백만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 168학회×0.77백만원=129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96백만원 (심사시스템 개발비 500백만원+누적보급비 781백만원)×7.5%	·학술대회 지원: 266과제×8.4백만원= =2,238백만원 ·학술지 지원: 260과제×6.2백만원=1,610백만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100학회×1.19백만원=119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106백만원 (심사시스템 개발비 500백만원+누적보급비 910백만원)×7.5%
■ 이공분야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 지원 : 8개 × 43.75백만원 = 350백만원 ·학술지 지원 : 114개 × 25백만원 = 2,857백만원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 220백만원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261백만원	·학술대회 지원 : 8개 × 43.75백만원 = 350백만원 ·학술지 지원 : 112개 × 24.4백만원 =2,733백만원(지원단가 4.3% 감액)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 220백만원 ·연구기획평가관리비 : 261백만원

□ **지원 필요성**

[인문사회 분야]

○ 학술단체의 주요 활동인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을 지원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가 절실

※ 인문사회 분야 등재 학술지(1,332종/2018. 3.31.기준) 중 국제적인 저널 수는 39종으로 2.9%에 불과

-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93번)에 제시된 남북교류 활동화를 위한 방안의 주요내용에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교류가 제시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학술단체 지원 필요

※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93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역량의 국제화를 위한 선행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대 필요

※ 인문사회 분야 학술단체 국제화를 위한 선행과제(예시): 학술지의 영문 출판, 국제저널 발간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편집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XML을 활용한 저널 발간 확대 지원, 학술대회 개최 지원액의 현실화 등

※ 2017년 선정과제 중 신청액 대비 지원율이 90% 이상인 과제는 34.2%로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학술대회 지원의 현실화 필요

○ (전 분야)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 '17년 178개 → '18년 168개(예정) → '19년 100개(예정)

[이공 분야]

○ **본 사업은** 기초학문의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의 근간이라 할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학회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필수

○ (학술지 발행· 육성 지원)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한 학술지원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학술지의 국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18년 기준 **우리나라 학술지 중 IF(학술지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지의 **IF가 5.584에 불과**하여, 학술지의 질적 제고 시급

※ '18년 기준 **우리나라 SCI급 학술지 99종** 보유(**전체 SCI(E) 학술지의 1% 수준**에 불과)

○ (학술대회 운영 지원) 국내·외 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최근 학술연구 동향, 성과교류 및 학술토론을 촉진하고 학술단체 중심의 다양한 전문가 활동지원을 통한 학술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각 세계대회별 개최 총 소요비용(예시)

· 제39차 국제 고에너지 물리학회 학술대회 ('18. 7. 4~7. 11) : 12억
· 제11차 세계지반신소재대회 ('18. 9. 15~9. 21) : 11억
· 제24차 국제 생화학분자생물학연맹 서울 국제학술대회 ('18. 6. 2~6. 8) : 10억

-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2위('08년 12위 → '17년 1위)*로 꾸준히 상승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 출처(홈페이지) : e-나라지표 - 국제회의 개최 현황 -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건수

※ 국제회의 파급효과
-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출액 : 1인당 $2,621 (환율 1,098.35원 기준) (한화 약 ₩2,878,775)
- 참가자 1,000명 규모의 학술대회 개최시
  · 참가자 소비지출액 : 약 29억원

* 출처 : [2013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2013 MICE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관광공사(2014. 12.)

- 2017년 국제대회II(세계대회)에 한하여 추산시 190억여원의 소비지출이 있음 (7개 대회, 6,600여명 기준)

○ (학술활동 기반 확충 및 고도화)

- ScienceCentral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글 스칼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여 학술지 노출 증가도 및 인용도 증가에 기여
- eNEST(과학기술학술활동지원시스템) :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준비부터 선정, 심사, 지원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심사, 선정, 지원 등 전주기적 관리
  - 공지사항, 최신정보 제공 등 학술단체와의 소통 창구 역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술단체지원사업**	**8,737**	**7,885**	**7,637**	△ 248	△ 3.1
① **학술단체지원사업**	**8,737**	**7,885**	**7,637**	△ 248	△ 3.1
▪ 학술단체지원(인문사회분야)	4,187	4,197	4,073	△ 124	△ 2.9
- 학술대회지원사업 (사업출연금)	2,362	2,362 (281과제x8.405백만원)	2,238 (266과제x8.413백만원)	△ 124	△ 2.9
- 학술지지원사업 (사업출연금)	1,610	1,610 (260과제x6.192백만원)	1,610 (260과제x6.192백만원)	-	-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사업출연금)	215	225 (1과제x225백만원)	225 (1과제x225백만원)	-	-
▪ 학술단체지원(이공분야)	4,550	3,688	3,564	△ 124	△ 3.3
- 학술대회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434	350 (8과제x43.75백만원)	350 (8과제x43.75백만원)	-	-
- 학술지발행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3,246	2,857 (114과제x25.06백만원)	2,733 (112과제x24.4백만원)	△ 124	△ 3.3
- 학술활동기반확충 및고도화 (민간경상보조)	216	220 (3과제x73.3백만원)	220 (3과제x73.3백만원)	-	-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민간경상보조)	-	261 (1과제x261백만원)	261 (1과제x261백만원)	-	-
- 학회운영활성화 (민간경상보조)	179	-	-	-	-
- 학술비전구축 (민간경상보조)	475	-	-	-	-
□ **비목(합계)**	**8,737**	**7,885**	**7,637**	△ 248	△ 3.1
○ 민간경상보조 (320-01)	4,550	3,688	3,564	△ 124	△ 3.3
○ 사업출연금(350-02)	4,187	4,197	4,073	△ 124	△ 2.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인문사회분야]

○ 인문사회분야 국내 학술단체가 주도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의 안정적 지원으로 학술단체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 세계적인 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 외국 학술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국내 학술단체의 질적 수준 제고

○ 국내 학술단체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구축률 대폭 확대로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신은자 외, 2016.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은 국제 학술지의 특성 중 하나로 학술단체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

[이공분야]

○ 국가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이공계 학회·단체들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해 풀뿌리 기초연구 활성화

○ 국내 학회·단체들의 학술활동 성과를 국제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를 육성함으로써 한국의 과학기술 위상 제고

○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학술 정보 유통을 지원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학술지 발행과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875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325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4,550백만원			
'18	7,885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197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688백만원	7,885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197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688백만원	
'19	8,003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073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930백만원	7,637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073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564백만원	△366
'20	8,083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500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580백만원	7,266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500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2,766백만원	△817
'21	8,164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600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3,564백만원	7,121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500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2,621백만원	△1,043
'22			7,050	■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400백만원 ■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2,65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7%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7,885	7,637	△248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14	112	△2
		재정지출 고용효과	114	112	△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전문편집 및 외국어 교정은 학술단체에서 주로 전문계약직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용효과 산출방식은 학술지 지원 사업에서 매년 114개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산출함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학술지 발행 관련 전문편집 및 외국어 교정 전문직 고용 · 112과제 × 1명 = 112명 □ **2018년 고용효과** - 학술지 발행 관련 전문편집 및 외국어 교정 전문직 고용 · 114과제 × 1명 = 11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지원에 지속적인 추진 및 전문직 종사자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학술진흥법」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교육부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조(적용범위), 제9조(전문기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9조(전문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년 학술진흥법 제정
- '91년 국내학술지지원사업 시작
- '93년 학술대회지원사업 시작
- '96년 국제학술지지원사업 시작
- '10년 사업 위탁기관 조정
  (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과총은 과학기술분야 지원)
- '11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이관
- '12년 과학기술 분야 학회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이공계학술활동지원' 사업 신규편성
- '13년 '이공계학술활동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사업 이관
- '13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신규 도입, 국내 신생·소외 분야 학술지 지원 시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학술단체지원사업	89.1	101.6	-	87.5		88.7		78.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87.5	( )	( )	( ) 87.5	( ) 87.5	( )	( )
'16년	( ) 87.5	( )	( )	( ) 87.5	( ) 87.5	( )	( )
'17년	( ) (88.7)	( ) ( )	( ) ( )	( ) (88.7)	( ) (88.7)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737	-	7,885	-	7,885	7,885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국제학술지 선정 시 우수학술지 집중 지원 필요(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국제학술지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학술지의 수를 줄이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소수의 우수 학술지 집중 지원

・선정율 : (개선 전) 100% → (개선 후) 71.8%

・지원 / 평균지원금액 : ('14) 139종, 17.6백만원 → ('15) 146종, 17백만원 → ('16) 115종, 21.6백만원 → ('17) 110종, 24.1백만원('17.6월 선정)

○ '15년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필요(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결과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등 2개 학회에 2년간 신청 제한 조치('16.6.17)

○ '16년도 결산 교문위 지적사항

■ 보조금 이월금의 관리 철저(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교육부는 현장점검 시 미승인 보조금 이월에 대해 향후 미승인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함.

○ ‘18년도 예산 교문위 지적사항

■ 이공분야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기획평가관리비 별도 내역 분리 필요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이공분야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연구기획평가관리비(261백만원)를 산정하여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학술지, 학술대회 지원에 예산 편성함.

○ ‘17년도 결산 교육위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통합관리망 미 사용(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2017년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정산보정을 통해 정보공시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지원사업은 통합관리망을 사용하여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함.

■ 간접보조사업자의 별도 국고계정 미 설정 및 이자 미 반납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 2018년 지원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 국고계정을 설정하고, 이자 수입을 반납 하도록 안내 하였음.

※ 2018년 사업에 대해서 간접보조사업자의 별도 국고계정 설정 및 이자 반납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작하여 안내하고, 학술단체 대상으로 e나라 도움 집합교육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회 원	재 원	주요업무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12만 개인/기관 ·262개 제휴조직	·총 1,000억(05-06) - 정부보조 : 282억(28%)	·과학기술정책 건의 ·장학, 출판사업 ·Project 2061 ·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문화진흥사업
영국왕립학회 (The Royal Society)	·회원 1,327명 ·외국인 회원 136명	·총 1,373억(08-09) - 정부(의회)보조 : 740억(54%)	·과학기술정책자문 ·출판물 발간 ·장학사업 ·연구비 지원사업

(6) 사업추진절차

○ 인문사회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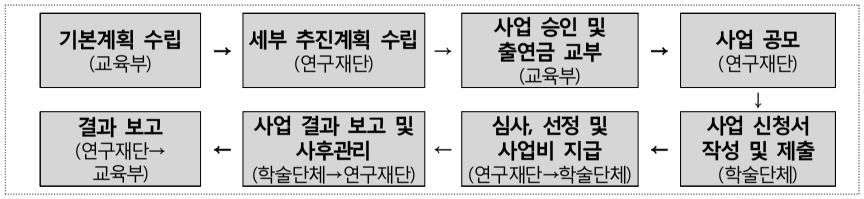

○ 이공분야

사업계획 수립	○ 교육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지원 과제 공모 및 신청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신청과제 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지원과제 선정 공고 및 연구비 지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사업 관리 및 평가·정산	○ 교육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홈페이지 공개율 (단위: %)	목표	60	61.8	69.2	71.3	73.4	최근 3년간('15년~'17년) 실적 평균은 71.0%로, '18년도 목표치는 지속적인 공개율 상승을 고려하여 '17년 목표치(69.2%) 대비 3% 증가된 71.3%로 목표치 설정 ※ '15년 : 74.7%, '16년 : 69.2%, '17년(예정) : 69.2%	(발표 논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학술대회 건 수 /총 학술대회 건 수)×100	전년도 및 당해년도 접수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실적	74.7	69.2	75.9*					
	달성도	100	100	100					
SCI(E)등재 학술지 총 수(건)	목표	94	96	98	99	100	최근 3년간 실적 추세 및 등재취소 현황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16~'18년) 평균 실적(98건) 대비 3건 증가한 100건으로 목표치 설정	매년 클래이베이트 애널리틱스에서 갱신되는 한국 SCI(E) 등재 학술지 전체 건수 점검	사업결과 보고서/ 클래리베이트
	실적	95	97	98	99	-			
	달성도	101%	101%	100%	-	-			

* ’17년 학술대회지원사업 연구기간 종료(2018. 4.30.) 이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임에 따라 향후 ’17년 실적은 변동될 수 있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별첨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인문사회분야]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술단체)

- SSCI, SCI(E), SCOPUS 등에 등재되는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논문 발행비가 연 1억 가까이 소요. 연 1천만원 전후의 지원비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현실에 맞는 지원 요청
- 매년 국내 학술지의 국제색인DB 등재 증가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학술지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학술지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학술지 및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 국내학술단체의 집중 지원 요청

[이공분야]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술단체)

- 매년 국내 학술지의 국제색인DB 등재 증가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학술지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학술지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학술지 및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한 국내학술단체의 집중 지원 요청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인문사회분야]

< 사업성과 >

□ 외국학자 발표의 꾸준한 실적으로 국내 학술단체의 국제적 역량 제고

· 학술대회지원사업 외국학자 발표자 수 : '15년 3,054명 → '16년 3,479명 → '17년 3,002명 (평균 3,178명 외국학자 국내 학술단체 발표실적)

< 현장의 변화 >

□ 인문사회 분야 국제저널 등재 학술지 수의 확대로 국제적 역량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3년 국제 저널 등재 종수 : ('16) 33종 → ('17) 36종 → ('18) 39종

※ 국제저널 종류 : A&HCI, SSCI, SCOPUS, (매년 초 기준)

[이공분야]

< 사업성과 >

□ 이공분야학술단체지원사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는 2017년 기준 SCI(E)등재지의 경우 99종 등재되어 학술지의 국제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연도별 SCI(E) 등재수 : ('97) 3종 → ('05) 27종 → ('08) 62종 → ('11) 89종 → ('15) 95종 → ('16) 97종 → ('17) 98종 → ('18) 99종

□ 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강화

· 학회가 자발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SCI(E) 등재지의 경우 피인용지수(Impact Factor)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저저널 전환 및 우수논문 유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학술지 국제화 사업의 경우 SCI(E)에 등재 되기 위해 학술지 질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8년도에는 대한비뇨기과학회의 학술지(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가 SCI(E)에 등재 되었음.

참고3-1 2019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 지원사업 기본계획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국제학술대회 격년제 적용, 전자저널 지원 등 학술단체의 지속적인 국제적 역량 강화**

- 국제학술대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제학술대회Ⅰ·Ⅱ(세계대회)의 지원대상을 격년제로 적용

※ 2018년 국제대회Ⅰ·Ⅱ 선정 학술단체는 2019년 국제대회 Ⅰ·Ⅱ 신청 불가(국내대회는 신청 가능)

- 전자저널(XML) 학술지에 대해 가산점(3점) 부여
- 전자저널 지원 규모를 1천만원→2천만원으로 확대

◇ **(행정예고) 학술단체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통합 학술지에 대해 가산점 3점 부여

(통합 후 신청 1회에 한함. 2020년부터 시행)

□ 지원 내용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지원 가능기간		지원한도	'18년 지원규모
학술대회 지원	일반과제	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	국내	'19. 5. 1. ~ '20. 4. 30.(1년)	20	266과제
			국제		30	
			세계	'19. 5. 1. ~ '21. 4. 30.(2년)	100	
	특별 정책과제	全학문 분야	국내	'19. 1. 1. ~ '19. 12. 31.(1년)	20	
			국제		50	
			세계	'19. 1. 1. ~ '20. 12. 31.(2년)	300	
학술지 지원	국내 (신생·소외 포함)	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포함)	'19. 10. 1. ~ '20. 9. 30.(1년)		10 (15)	260과제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구축·보급		全학문 분야	'19. 4. ~ '20. 3.(1년)		-	(신규) 168개 (계속) 1,063개

※ 학술대회 지원 가능기간은 대회 개최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원

참고3-2 2019 이공분야 학술단체 지원사업 기본계획

□ 기본계획 주요 내용

◇ 학술지·학술대회 지원사업 지원 자격요건 강화

- 학술단체의 대표자(학회장, 연구소장 등)가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학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 제한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별도 분리

- 연구기획평가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기획평가관리비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
- 간접비는 학술단체의 학술지, 학술대회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출

◇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학회에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논문 게재의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학회의 행정업무 경감

◇ 연구윤리 강화

- 연구윤리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연구윤리 대토론회, 학술지 역량강화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 연구자 및 학술지 편집인 교육 실시

□ 지원 내용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18년 지원규모
학술대회 지원 (국제대회II)		▪ 대륙간 순환 개최 및 20개국 이상, 외국학자 구두 발표논문수 200편 이상 국제학술대회	'19. 1. 1. ~ '19.12. 31.(1년)	100	8과제
학술지 지원	학술지 국제화	▪ 연간 4호(게재논문 기준 40편) 이상 발행하는 국내 영문 학술지 중 SCI 등재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	'19. 1. 1. ~ '19.12. 31.(1년) (중간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지원)	46	8과제
	국제 학술지	▪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된 영문학술지	'19. 1. 1. ~ '19.12. 31.(1년)	40	106과제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	▪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회장 및 학회 임직원	'19. 1. 1. ~ '19.12. 31.(1년)	40	-
	연구성과 국제화	▪ 과학기술분야 학술단체	'19. 1. 1. ~ '19.12. 31.(1년)	180	-

참고 4 관련 통계 등

□ 2018년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 지원사업 주요 추진실적

○ 학술대회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신청	선정	지원액	1과제당 지원액		
					평균	최고	최저
일반과제	국 제II(세계)	8	3	134.8	44.9	58.7	19.6
	국 제I	51	25	435.5	17.4	30	5.2
	국 내	358	167	1,173.9	7.0	10	1.1
	소 계	417	195	1,744.2	-	-	-
특별정책과제	국 제II(세계)	1	1	100	100	100	100
	국 제I	-	-	-	-	-	-
	국 내	3	3	35.6	11.8	13	10.7
	소 계	4	4	135.6	-	-	-

○ 학술지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

구분	신청	선정 (선정률)	지원액	과제당 평균지원액	지원기간
국내학술지 (신생·소외 분야 포함)	621	280(45)	2,108	7.5	12개월 ('18.10.~'19.9.)
소 계	621	280(45)	2,108	7.5	

□ 분야별 등재(후보)학술지 현황

(2018.5.18.기준)

구분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					계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소계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소계	
등재	513	714	107	77	1,411	112	208	222	69	611	2,022
등재후보	58	142	20	24	244	16	33	59	6	114	358
계	571	856	127	101	1,655	128	241	281	75	725	2,380

□ 2018년 이공분야 학술단체 지원사업 주요 추진실적

○ 학술대회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신청	선정	지원액	1과제당 지원액		
				평균	최고	최저
국제대회II(세계대회)	11	8	350	43.75	46.80	41.50
소 계	11	8	350	43.75	46.80	41.50

○ 학술지 지원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신청	선정	지원액	1과제당 지원액		
				평균	최고	최저
학술지국제화	16	9	207.9	23.10	32.83	3.84
국제학술지	150	109	2,649.1	24.30	38.10	5.00
소 계	166	118	2,857	24.11	38.10	3.84

[300]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사업	13,525	13,005	12,935	**△70**	**△0.5**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39 - 30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조의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체계의 효율성·신뢰성 강화 - 안정적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통하여 창의적 연구 및 지식 창출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연구지원 체제 구축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간접비	('18) 1,446백만원 → ('19) 1,396백만원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직접비 : 5,049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평가위원 수당**, **사업관리**(수행과제 컨설팅, 사업비 점검 등),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사업 설명회, 성과 발표회, 연구자워크숍, 시스템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4,446백만원 = 과제당 평가비 184.6천원 × 32,338과제(추정) × 74.5%*
  * 실 소요는 5,970백만원이나 지출한도 범위를 고려, 약 74.5% 수준 반영
  ※ 과제 수 증가 ('17) 27,929 → ('18) 29,636 → ('19 추정) 32,338

◇ **(국정과제 52번 수행) 기초연구 분야 예산 2배* 증액** 기조에 따른 기초연구지원사업 **과제 수 증가**로 인한 **심사평가비 소요 증가**
※ **국정과제 :**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기초연구사업 투자 강화**로 **신규과제 대폭 확대 및 선정율 제고**, SGER 연 2회(기존 1회) 평가 및 선정, 신규 관리 사업 추진(인문한국 플러스(HK+) 등으로 평가 및 관리 과제 수 증가에 따른 **심사비 등 직접비 소요 증가**

◇ **국정과제**인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및 연구자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연구과제 특성이 반영된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선정평가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평가자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심층 평가 확대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으로 평가비 상한(30만원 → 60만원) 조정, 기존의 **낮은 평가비**(온라인 4만원/오프라인 20~30만원)에 대한 **평가자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 쇄도 예상** 및 **양질의 평가·컨설팅 실시 어려움**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으로 평가비 지급 상한액 인상

◇ **관리 사업 예산 대비 기평비 비율 매년 지속 감소*** ⇒ **평가 및 관리 내실화 저하 우려**
* '15년도 2.21%(사업비 596,633백만원/기평비 13,200백만원) → '18년도 1.85%(사업비 701,681백만원/기평비 13,005백만원)
※ **연합뉴스('16.4.7) '정부 R&D 질적평가 전환에도 예산지원은 제자리...현실화 시급'** (기획심사평가비/사업비) **연구재단 평균 1.8%, 국내전문기관 평균 3.0%, 해외전문기관 평균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평가 지원액: 평가위원 수당, 사업관리비**(수행과제 컨설팅, 사업비 점검 등),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비**(사업설명회, 성과발표회, 연구자워크숍, 과제관리/성과포털시스템관리, 한국학진흥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 자문 등)
- 423백만원 = 과제당 평가비 1,157천원 × 366과제(추정)

◇ **국내외 한국학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 확대**에 따른 과제 **평가 관리 비용 점진적 증가**

◇ **지원성과의 확산 도모**를 위한 **성과포털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대한민국학술원]

- **평가위원 수당, 사업관리**(관리실태 점검 등), **사업홍보**(계획 및 선정결과 공고) 등에 소요 ※ 심사비, 배송물류비, 공고료 등
- 180백만원 = 과제당 평가비 등 600천원 × 300과제(추정)

○ **인건비 : 6,160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심사평가,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등 **사업담당 인력 인건비**
- 6,020백만원 = 내부인건비 4,306백만원 + 외부인건비 1,714백만원
  - **(내부인건비)** 4,306백만원 = 담당 인력 58명 총 소요 인건비 4,769백만원('18 추정) +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3%) = 4,912백만원 × 87.7%*

  * 실 소요는 4,912백만원이나 지출한도 범위를 고려, 약 87.7% 수준 반영
  ※ 내부 인건비 소요 ('17) 4,470백만원 → ('18) 4,769백만원 → ('19 추정) 4,912백만원

  - **(외부인건비)** PM 및 계약직 등 인건비 1,714백만원

  ※ (PM) 112백만원 × 10명 +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3%) = 1,154백만원 × 72.6%* = 838백만원

  ※ (계약직 등) 35.5백만원 × 33명 +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3%) = 1,206백만원 × 72.6%* = 876백만원

  * 실 소요는 2,360백만원이나 지출한도를 고려, 약 72.6% 수준 반영

◇ **(국정과제 16번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조** 및 **PBS제도 적용**에 따른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 확보가 필수 ⇒ 미반영될 경우 **해당 참여 인력에 대한 급여 조달 문제**로 참여 **인력 감축 불가피** ⇒ 1인당 관리 과제 수 및 **업무량 증가로 충실한 평가 및 과제 관리에 어려움** 발생

※ 내부 인건비 반영 비율 ('17) 93.9%→('18) 93.9%→('19) 87.7%

◇ **(국회 교문위 '16 결산 검토) 기초연구사업 등의 기획, 평가 업무 수행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사업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인건비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되며 **관련 사업의 기획, 평가, 연구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직접성 경비의 적정 예산 편성, 집행 기평비 구조의 내실화**를 위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출연금화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국정과제 16)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에 따라 **임금 현실화** 및 **처우개선 비용** 및 **외부인건비의 지속적인 인상분** 등 **발생**

※ 외부 인건비 규모 ('17) 1,870백만원 → ('18) 1,959백만원 → ('19 추정) 2,360백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관리 대상 사업 평가/홍보/성과관리 담당 인력 인건비**
- **외부인건비** : 계약직 인건비 99.5백만원
  * (계약직) 33.2백만원 × 3명 = 99.5백만원

[대한민국학술원]

- **외부인건비** : 지원인력 인건비 20.5백만원
  - 22.4백만원 × 2명 × 5.5/12개월 = 20.5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정책연구비) : 350백만원**

-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평가체계 선진화** 및 **새로운 지식창출** 등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용** 350백만원 = 50백만원 × 7과제
  - **기초연구지원사업 규모 지속 증가**(국정과제)로 기존 사업 **분석 대상의 범위** 및 **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 사업 비전 체계 재정립** 및 **사업 기획·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필요성 증대**
  - 학술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 등 **개인연구지원사업** 향후 **지원개선 방안 연구** 추진

- 학술연구지원 **연구소중심지원사업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추진

※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 등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인문학분야 연구소 지원계획 수립 등

- **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연구 추진
- **한국학진흥 정책 탐색 및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및 **사업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지원 등

○ **간접비 : 1,396백만원**

▪ **기관 간접지원 활동 및 안정적 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비용**

▪ 1,396백만원 = (한국연구재단 직접비 4,446백만원 + 인건비 6,020백만원) × 17% × 78.5%*

* 실 소요는 1,779백만원이나 지출한도 범위를 고려, 약 78.5% 수준 반영

※ 간접비 계상 방식 : (직접비 + 인건비) × 간접비 고시율

※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고시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17%

- **사업 관리**에 따른 **평가 시설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상승 요인** 지속 발생

- 연구기획평가사업은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 특성상 성과정보 분석, 성과 확산, 통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개선 등 지원 인력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 많은 간접비 투입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13,005	12,935
■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5,049백만원) 직접비 (6,160백만원) 인건비 (350백만원) 위탁연구개발비 (1,446백만원) 간접비	(5,049백만원) 직접비 (6,140백만원) 인건비 (350백만원) 위탁연구개발비 (1,396백만원) 간접비

□ **지원 필요성**

[한국연구재단]

○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 체제 다원화**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제도 개선** 등으로 관리 대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필요성 증대

-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속적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지원**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관리·평가** 필요

○ **(사업관리 안정화를 위한 인건비 확보)**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건비 조달방식인 **PBS(Project-Based System)에 따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확보** 필요

-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100% 확보**는 **안정적 사업 관리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 지속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일자리 정책과도 직결**

○ **(직접비 확보)** 연구자의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세부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추진에 따른 평가 소요 예산 필요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체제가 다원화** 되어 있으며, **평가비 부족은 연구과제 평가 심사단계 축소** 및 **심사자 수 제한** 등으로 이어져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 훼손** 우려

- 향후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역량 확충 등 **국정과제 수행**으로 **평가·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확대**

○ **(기획 강화)** 학술연구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지식창출** 및 **국가정체성 회복 등의 시의성 높은 과제**에 대한 투자 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업기획 강화) 한국학 연구수요는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

- **해외 한국학 핵심지역 중심 지원** 방안 및 **국내 한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 필요

○ **(사업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

- **점진적인 사업 확대**로 신규신청·선정·계속 **과제 수 증가**에 따른 **사업 평가 및 관리 비용 증대** 필요

- 사업 목적 달성 및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과제별·주제별 전문가 심층 평가 강화** 필요

○ **(사업홍보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인건비 확보)**

- **해외한국학의 단계별 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해외홍보 강화 필요**에 따라 담당인력 인건비 필요

- **52만건에 달하는** 축적된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성과포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고급 전산 인력 확보** 필요

* 성과포털사이트 : http://waks.aks.ac.kr

[대한민국학술원]

○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전국 **대학에 보급**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비**(심사비, 물류비 등), **외부인건비 등 필요**

※ 우수학술도서 심사평가비 : 2억('15 ~ '18)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13,525**	**13,005**	**12,935**	**△70**	**△0.5**
■ 직접비	5,765	5,049 (27,351과제x0.1846백만)	5,049 (27,351과제x0.1846백만)	-	-
■ 인건비	6,027	6,160 (1식x6,160백만)	6,140 (1식x6,140백만)	**△20**	**△0.3**
■ 위탁연구개발비	350	350 (7과제×50백만)	350 (7과제×50백만)	-	-
■ 간접비	1,383	1,446 (1식×1,446백만)	1,396 (1식×1,396백만)	**△50**	**△3.5**
□ **비목**(합계)	**13,525**	**13,005**	**12,935**	**△70**	**△0.5**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3,525	13,005	12,935	△70	△0.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연구기획·평가·관리의 전문성 확보**

○ 안정적·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 인력 인건비 확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3,525	■ 직접비 : 5,765백만원 ■ 인건비 : 6,027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383백만원			-
'18	13,005	■ 직접비 : 5,049백만원 ■ 인건비 : 6,16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446백만원	13,005	■ 직접비 : 5,049백만원 ■ 인건비 : 6,16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446백만원	-
'19	13,200	■ 직접비 : 5,244백만원 ■ 인건비 : 6,16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446백만원	12,935	■ 직접비 : 5,049백만원 ■ 인건비 : 6,14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396백만원	△70
'20	13,332	■ 직접비 : 5,376백만원 ■ 인건비 : 6,16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446백만원	11,984	■ 직접비,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11,984백만원	△1,348
'21	13,465	■ 직접비 : 5,509백만원 ■ 인건비 : 6,160백만원 ■ 위탁연구개발비 : 350백만원 ■ 간접비 : 1,446백만원	11,744	■ 직접비,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11,744백만원	△1,721
'22			11,627	■ 직접비,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11,627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0.1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3,005	12,935	△7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46.1	146.1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46.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연구기획평가사업비 130억원은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30억원 ÷ 0.89억원 = 146.1명 **□ 2018년 고용효과 : 146.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예산을 확대하여 고용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교육기본법」 제22조

제22조(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 4조(출연금의 지급 · 사용 ·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때에는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학술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1조(전문기관)

제 11조(전문기관) ①장관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및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등의 연구비의 관리
2. 학술연구지원 관련 정책연구
3. 학술연구지원 대상의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체결, 학술연구비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지원 결과물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7. 학술연구지원 성과의 보급·확산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

제 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제45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추진경위

- 연구기획평가사업 도입(학술진흥과, 인문사회연구과로 구분) : '09년도
- 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사업으로 통합 : '10년도
- 대학지원관 연구기획평가사업 추진 : '11~'13년도

※ 교과부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명 변경('11) : 대학지원관 연구기획평가사업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 교육부로 이관 : '13년도
- 학술장학지원관 연구기획평가사업으로 통합 : '14년도

※ 교육부 직제 개편에 따른 사업명 변경('19) :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사업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	130	-	132	125.4	-	135.3	-	130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2** **(132)**	( )	( )	132 (132)	**132** **(131.1)**	( )	(0.9)
'16년	**125.4** **(125.4)**	( )	( )	125.4 (125.4)	**125.4** **(124.8)**	( )	(0.6)
'17년	**135.3** **(135.4)**	( )	( )	135.3 (135.4)	**135.3** **(134.5)**	( )	(0.8)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3,525	-	13,005	-	13,005	13,005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3,005백만원 집행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가.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0년도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 신규선정 이의신청제도 신설 필요('10년 국정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개별사업 출연예산에서 정규직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부는 출연예산편성·실행예산 승인·교부 업무 등을 보다 철저히 할 것('17년 교문위)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행정인턴 채용 시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고려할 때 행정인턴 인건비로 편성된 2천만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18년, 예결위)

나. 감사원 지적 : '12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것

다.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라.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연구기획평가사업 이의제도 신설 운영 중('11년도~)
- ㅇ 개별사업 출연예산에서 정규직 인건비를 미편성하여 시행계획 수립('18.3월)
- ㅇ 한국학중앙연구원 인건비에서 행정인턴 인건비 편성액 2천만원 감액('18.1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대학학술정책관 연구기획평가사업비**('17년 2.08%, '18년 1.85%)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4.5%,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4.6%, **독일**연구협회(DFG) 2.3%에 비해 **관리비의 절대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

<해외 주요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비중>

국가	전문기관	주요사업	연구개발비(A)	연구기획평가비(B)	비율(B/A)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기초과학연구사업	73억 달러	3.3억 달러	4.5%
	미국보건원(NIH)	보건연구개발사업	209억 달러	15.6억 달러	7.4%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	연구개발사업	1,484억 엔	68억 엔	4.6%
독일	독일연구협회(DFG)	연구개발사업	2,630백만 유로	61백만 유로	2.3%

※ 미국(NSF,NIH:'15년 예산 기준), 일본('14년 예산 기준), 독일('13년 예산 기준)

※ 출처 : www.nsf.gov, www.nih.gov, www. nedo.go.jp, www.dfg.de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는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운영 방향 결정과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평가 및 관리, 연구결과의 평가 및 성과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

□ **(교육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출연기관)**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비 집행, 선정 및 결과 평가,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예산확정	국회 심의 후 예산 확정
⇩	
계획수립 및 승인	교육부 계획 수립 및 출연기관의 세부추진계획 승인
⇩	
사업수행	교육부 사업비 지급 후 출연기관에서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한국연구재단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ㅇ (참고1) 국내·외 주요 기관 연구기획평가비 비교
- ㅇ (참고2) 사업 관련 주요 현안 사항
- ㅇ (참고3) 관리 대상 사업 현황

참고 1 국내·외 주요 기관 연구기획평가비 비교

□ 국내 주요 전문기관 연구기획평가비 현황

○ 사업비 대비 연기평 사업비 비중이 국내 타 전문기관의 1/3 수준으로 연구기획평가비가 크게 부족

* (참고) 주요 기관별 기획심사평가사업비/사업비 비교('16년도)
  - 환경산업기술원(4.1%), IITP(3.7%), KIAT(3.7%), 에기평(3.5%)
    >> 대학학술정책관 연기평('16년도 2.09% ⇒ '18년도 1.85%)

<최근 5년 간 대학학술정책관 연기평 관리 대상 사업비 대비 비중>

(금액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 대상 사업비	589,339	596,633	600,632	649,242	701,681
연기평 예산	13,000	13,200	12,540	13,525	13,005
비중	**2.21%**	**2.21%**	**2.09%**	**2.08%**	**1.85%**

<2016년 전문기관별 사업비 대비 연구기획평가비 비중>

(단위: 억원)

부처	기관명	총 사업비(A)	연구기획평가비(B)	비중(B/A)
과기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847	361	**3.7%**
산업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357	546	**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633	538	**3.7%**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178	200	**4.8%**
해수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655	118	**4.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44	79	**4.1%**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13	14	**4.3%**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2016.12.09. '주요전문기관 현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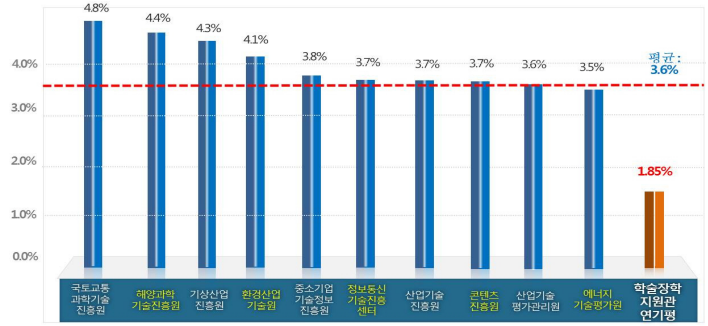

참고 2 사업 관련 주요 현안 사항

○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속적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강화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획·관리·평가 필요

- 국정과제 관련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창의도전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원과제 확대* 및 상/하반기 선정평가 실시 증가 등으로 연구기획평가사업 예산 확대 필요

  * ('17) 27,929과제 → ('19 추정) 32,338과제 → ('22 추정) 34,797과제

<국정과제 세부이행 계획(발췌)>

○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하여, 창의·도전연구 및 보호·소외 연구 지원 확대

○ 연구비와 연구기간 등을 자율 선택하는 맞춤형 지원 지속

- 교육부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5개년)에 따른 투자 규모 확대('22년까지 6천억원 지원) 정책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중점연구소 등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과제 대폭 확대*

  * 중점연구소 지원 확대 : 70개('18) → 105개('19)

○ 과정중심 평가체계의 도입으로 과제에 대하여 성실/불성실을 판단하는 등의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의 심층평가 추진 등으로 평가 관련 예산 확대 필요

참고 3 관리 대상 사업 현황

□ 한국연구재단

(단위 : 천원)

예산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A)	2018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총 합 계		617,702,000	674,464,000	56,762,000	9.19%
인문사회 기초연구	박사후국내연수	9,180,000	9,180,000	-	-
	학술연구교수	9,120,000	9,120,000	-	-
	시간강사지원	17,952,000	17,952,000	-	-
	신진연구자	17,560,000	18,070,000	510,000	2.90%
	중견연구자	27,718,000	25,380,000	△2,338,000	△8.43%
	일반공동연구	21,000,000	21,018,000	18,000	0.09%
	우수논문지원	1,300,000	1,170,000	△130,000	△10.00%
	우수학자지원	1,883,000	1,803,000	△80,000	△4.25%
	명저번역지원	1,063,000	942,000	△121,000	△11.38%
	학제간융합연구지원	5,000,000	5,000,000	-	-
	신흥지역연구지원	2,000,000	1,716,000	△284,000	△14.20%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6,420,000	16,420,000	-	-
	토대연구지원(재단)	12,750,000	11,500,000	△1,250,000	△9.80%
	소 계	142,946,000	139,271,000	△3,675,000	△2.57%
인문학 진흥	인문한국(HK)지원	35,900,000	33,590,000	△2,310,000	△6.43%
	저술출판지원	5,730,000	5,000,000	△730,000	△12.74%
	인문학대중화	5,300,000	5,100,000	△200,000	△3.77%
	인문전략연구	1,956,000	1,956,000	-	-
	소 계	48,886,000	45,646,000	△3,240,000	△6.63%
사회과학 연구지원	사회과학연구(SSK)지원	27,652,000	26,870,000	△782,000	△2.83%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글로벌연구네트워크	5,320,000	4,788,000	△532,000	△10.00%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구축	기초학문자료센터	490,000	516,000	26,000	5.31%
연구윤리 활동지원	연구윤리활동지원	730,000	705,000	△25,000	△3.42%
학술단체 지원	학술단체지원	4,187,000	4,197,000	10,000	0.24%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	기본연구	261,492,000	303,168,000	41,676,000	15.94%
	보호연구	1,250,000	1,533,000	283,000	22.6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0,658,000	43,790,000	3,132,000	7.70%
	소 계	303,400,000	348,491,000	45,091,000	14.86%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구축	박사후국내·외연수	11,866,000	22,266,000	10,400,000	87.65%
	리서치펠로우	34,048,000	34,579,000	531,000	1.56%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10,448,000	9,012,000	△1,436,000	△13.74%
	대학중점연구소	27,729,000	38,123,000	10,394,000	37.48%
	소 계	84,091,000	103,980,000	19,889,000	23.65%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명 구분	사업군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 대상	지원분야, 대상 및 조건	'18년 예산 (신규)	지원 기간	'18년 과제수 (신규)
한국학진흥	글로벌 한국학	한국학 세계화 랩	▪국내외 석학을 한국학 연구로 영입,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물 산출로 한국학 국제 경쟁력 강화	대학 연구기관	▪(분야)타 학문분야의 우수학자들이 한국학 연구에 참여하는 국제비교 연구 랩 ▪(대상)국내외 우수학자(랩당 5인 이상으로 구성) ▪(조건)1개 랩당 최소 저서 5권, 논문 15편 출간, 국제학술대회 1회 이상 개최	3,600 (625)	5년	12 (신규 2) ※과제당 3억원 이내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세계의 한국학 중심대학을 중핵 대학으로 선정, 장기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대학	▪(분야)한국학교육프로그램(석박사과정생 1인이상 장학금지원 필수), 한국학연구소 설립, 연구소를 통해 주변 지역 한국학이 취약한 대학과 연구자 교류사업(국제학술대회 1회 이상 개최) ▪(대상)한국학전임교원 2명이상, 한국학분야 대학원 학위과정(석박사)이 설치된 대학	4,218 (328)	5년	25 (신규 2) ※과제당 2억원 이내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대학 연구기관	▪(분야)한국학초보단계지역에 한국학관련 교육환경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강의개설,인력양성,한국학센터/연구소설립, 장학금, 학회개설등) ▪(대상)연구팀 책임자는 현지 정규대학 또는 연구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조건) 신규강의 최소 1개 개설, 장학금 1~2명 지원, 한국학 워크숍 연 1회 이상 개최 필수	1,518 (610)	3년	32 (신규 12) ※과제당 50~100백만원 이내
		한국고전 100선 영문번역	▪한국 고전을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한국학 지식의 대중화 도모	개인/대학 연구기관	▪(분야)한국대표고전의 영문번역 ▪(조건)고전100선 지정도서 또는 자유 신청 고전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해외 저명 학술전문출판사에서 출판	500 (296)	3년	11 (신규 6) ※과제당 25~100백만원 이내
	소 계					9,836 (1,859)	-	80 (신규 22)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고서, 고문서 자료집 간행 및 한국학 자료의 표준화된 지식 콘텐츠 가공 및 DB 구축	대학 연구기관	▪(분야)고문서, 고문헌 등 국학고전자료 수집 정리와 DB구축, 한국학 자료센터 구축, 한국역사자료 구축	3,458 (200)	2~10년	18 (신규 1) ※과제당 60~400백만원 이내
		한국학사전편찬	▪한국학 분야 주제·분야별 사전 편찬	대학 연구기관	▪(분야)주제별·분야별 사전 편찬	300	3년	2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 구술자료 수집, 채록, 아카이브 구축	대학 연구기관	▪(분야)현대한국 구술자료의 수집	970	10년	5
	소 계					4,728 (200)	-	25 (신규 1)
	한국학 대중화	한국학총서	▪한국에 대한 테마별 총서, 한국과학문명 총서, 해외한인 총서 발간 지원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대중화 실현	개인/대학 연구기관	▪(분야)자유주제	1,958	3~10년	21 ※과제당 12백만원~500백만원 이내
	소 계					1,958	-	21
	합 계					16,522 (2,059)	-	126 (신규 23)
인문사회기초연구사업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		▪한국학 분야 학술 기반 구축 및 지식 재생산 기반 제공	대학 연구기관	▪(분야)한국학분야(전근대 및 근현대) 자료학 ▪(조건)자정 주제 또는 자유 주제 지원	7,750 (1,106)	3~5년	31 (신규 4) ※과제당 2.5억원이내
총 계						24,272 (3,165)	-	157 (신규 27)

[301]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지원사업	5,320	4,788	5,018	230	4.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4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김경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지원 확대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과제당 8천만원(간접비 별도) 이내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문사회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 제고**와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 신규
- 6과제×102백만원×9/12개월=457백만원

▪ 계속
- ('17년 선정 계속) 26과제×101백만원×12/12개월=2,625백만원
- ('17년 선정 종료) 11과제×87백만원×5/12개월=396백만원
- ('16년 선정 종료) 28과제×101백만원×6.5/12개월=1,54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4,788백만원	5,018백만원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17년 선정 계속) 35과제×102백만원×10/12개월=2,975백만원 ('16년 선정 계속) 28과제×102백만원×7.5/12개월=1,813백만원	(신규) 6과제×102백만원×9/12개월=457백만원 ('17년 선정 계속) 26과제×102백만원×12/12개월=2,625백만원 ('17년 선정 종료) 11과제×87백만원×5/12개월=396백만원 ('16년 선정 종료) 28과제×101백만원×6.5/12개월=1,5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은 **해외우수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 역량 제고 및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인문사회분야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임**

○ ’17년부터 다양한 분야 및 국가와 실적적인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해외 공동연구 대응자금 평가요소 도입, **해외 공동연구 소수지역 연구 확대**를 위해 신청 자격 요건 개선

- 해외 공동연구 대응자금 평가요소 도입(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대응자금에 따른 가산점 제도 운영 등)하여 **해외공동연구 목적 적합성 강화**

※ (17년) 신규과제 접수 과제 수 97개중 7개 과제 가산점 부여

- 해외 공동연구 소수지역 연구 확대를 위한 신청자격 요건 개선으로 기존 영미권 중심의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네트워크 다변화**

※ (16년) 북미 40.8%,→ (17년) 북미 36%

※ (17년) 남미 3개 국가와 신규 공동연구 추진(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국가적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 및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전 지구적 이슈 심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인문사회분야**의 다자간 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필요성 증대**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현장의 목소리(정책연구보고서) >

○ GRN 사업이 유사 사업에 비하여 질적 성과(질을 보정한 논문성과) 측면 및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공동연구를 반영하는 논문성과), 국제교류성과(국제학술대회 성과) 창출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높으며,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음

- 동 사업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학자들이 해외의 학자들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국내 학자들의 해외 출판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해외 우수연구자와 직접적인 교류협력 강화

- 공동연구를 통하여 관심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논할 수 있고, 국제학술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외네트워킹을 강화

○ 국내 연구자와 초빙 대상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협력일정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등 유연한 체재 기간 운용으로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에 기여하는 사업임

○ 인문사회분야 연구교류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진연구자,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도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해외 학자와의 대등한 연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5,320**	**4,788**	**5,018**	**230**	**4.8**
▪ **글로벌연구네크워크지원**	**5,320**	**4,788**	**5,018**	**230**	**4.8**
- 신규	2,717 (35과제x102백만원 ×9/12개월)	-	457 (6과제x102백만원 ×9/12개월)	457	순증
- 선정 계속(전년도)	2,367 (28과제x102백만원 ×10/12개월)	2,975 (35과제x102백만원 ×10/12개월)	-	△227	△4.7
- 선정 계속(전전년도)	-	1,813 (28과제x102백만원 ×7.5/12개월)	2,625 (26과제x102백만원 ×12/12개월)		
- 선정 종료(전년도)	-	-	-		
- 선정 종료(전전년도)	236 (4과제x58백만원)	-	1,936 · 28과제x101백만원 ×6.5/12개월=1,540백만원 · 11과제x87백만원×5/12개월=396백만원		
□ **비목**(합계)	**5,320**	**4,788**	**5,018**	**230**	**4.8**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5,320	4,788	5,018	230	4.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320	▪ 신규 : 2,717(35과제×102×9/12개월) ▪ 계속 : 2,603 - 종료 : 4과제×58=236 - 계속 : 28과제×102×10/12개월 =2,367	-	-	-
'18	4,788	▪ 계속 : 4,788 - '17년 선정계속 : 35과제×102 ×10/12개월=2,975 - '16년 선정계속 : 28과제×102 ×7.5/12개월=1,813	4,788	▪ 계속 : 4,788 - '17년 선정계속 : 35과제×102 ×10/12개월=2,975 - '16년 선정계속 : 28과제×102 ×7.5/12개월=1,813	-
'19	4,788	▪ 신규 : 169(2과제×102×9/12개월) ▪ 계속 : 4,619 - '17년 선정계속 : 26과제×102 ×12/12개월=2,652 - '17년 선정종료 : 9과제×102× 5/12개월=396 - '16년 선정종료 : 28과제×102 ×6.5/12개월=1,571	5,018	▪ 신규 : 457(6과제×102×9/12개월) ▪ 계속 : 4,561 - '17년 선정계속 : 26과제×102 ×12/12개월=2,625 - '17년 선정종료 : 11과제×87× 5/12개월=396 - '16년 선정종료 : 28과제×101 ×6.5/12개월=1,540	230
'20	4,788	▪ 신규 : 1,269(16과제×102×9/12개월) ▪ 계속 : 3,519 - '19년 선정계속 : 28과제×102 ×12/12개월=2,856 - '17년 선정종료 : 26과제×102 ×3/12개월=663	4,788	▪ 신규 : 3,071(40과제×102×9/12개월) ▪ 계속 : 1,717 - '19년 선정계속 : 6과제×102× 12/12개월=612 - '17년 선정종료 : 26과제×102 ×5/12개월=1,105	-
'21	4,788	▪ 신규 : 300(4과제×102×9/12개월) ▪ 계속 : 4,488 - '20년 선정계속 : 16과제×102 ×12/12개월=1,632 - '19년 선정계속 : 28과제×102 ×12/12개월=2,856	4,788	▪ 신규 : 96(1과제×102×9/12개월) ▪ 계속 : 4,692 - '20년 선정계속 : 40과제×102 ×12/12개월=4,080 - '19년 선정계속 : 6과제×102× 12/12개월=612	-
'22	-	-	4,788	▪ 신규 : 606(8과제×102×9/12개월) ▪ 계속 : 4,182 - '21년 선정계속 : 1과제×102× 12/12개월=102 - '20년 선정계속 : 40과제×102 ×12/12개월=4,080	-
연평균 증가율 (%)	△2.5		0.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788	5,018	23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54	56	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② = 56.4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글로벌연구네트워크 50.2억원은 <표3>의 '연구개발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50.2억원 ÷ 0.89억원 = 56.4명 **□ 2018년 고용효과 : 5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학술진흥법」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① 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 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 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제11조(국내외 학술 교류활동의 지원) ①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학술단체의 연구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교원 중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학술 교류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와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학술 교류활동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외 학술 교류활동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학술정보의 축적 및 관리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국외 학술 교류활동을 이유로 그 교원의 신분 및 급여에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추진경위

- 대통령 공약사항('07년) : "연구자 중심지원"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ㅇ 대학 사업단위별 지원도 연구자 또는 연구자 집단 중심지원으로 전환하여, 연구비 출처(정부부처)나 연구자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에 상관없이 공개 경쟁을 통해 실력이 있는 연구자가 집중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ㅇ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유능한 석학이나 전문가, 해당 분야의 해외동료 연구자가 연구과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지원은 영어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내전문가는 물론 해외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08년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실시(1월)
- '08년 사업계획 시안 마련(5월), '08. 신규 34과제 선정(12월)
- '09년 2009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8월 신규 15과제 선정
- '10년 2010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신규 16과제 선정
- '11년 2011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신규 40과제 선정
- '12년 2012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54과제 계속과제만 지원)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 교육부 이관
- '13년 2013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신규 16과제 선정
- '14년 2014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신규 41과제 선정
- '15년 2015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12월 신규 1과제 선정
- '16년 2016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9월 신규 31과제 선정
- '17년 2017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8월 신규 37과제 선정
- '18년 2018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계속과제 65과제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지원	66.0	66.0	66.0	75.9	75.9	53.2	53.2	47.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6.0 (66.0)	( )	( )	66.0 (66.0)	65.6 (65.6)	( )	( )
'16년	75.9 (75.39)	( )	( )	75.9 (75.9)	75.9 (75.9)	( )	( )
'17년	53.2 (53.2)	( )	( )	53.2 (53.2)	53.2 (53.2)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320		4,788		4,788	4,788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18.8월 기준 4,788백만원 전액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지적사항)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한다는 성과 관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15년 감사원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 "지원과제의 국제 학술대회 평균 참여 건수" 지표 대신 해외연구자와의 협력 정도 관련 질적 성과지표 마련 필요('17.11.교문위)

▪ (조치결과)

- '16년부터 인문사회분야만 선정할 계획으로 인문사회분야지원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SCI급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 평균)로 변경
- 국내·외 연구자간 공동연구로 국제적 연구역량 강화라는 사업특성을 반영한 국제학술대회 평균 참여건수로 성과지표 변경
- 해외연구자의 협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지표(GRN 연구성과물(논문) 국제공저 비율)를 개발하여, '19년 성과계획서 반영('18.5.)

<평가결과>

▪ '15년도 국과위 상위평가 결과 : 보통

▪ '17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 : 미흡

▪ '18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 : 보통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유럽연합	싱가폴	핀란드	일본
EU Framework Program(2007-2013)	CREATE(연구수월성과 기술사업을 위한 캠퍼스프로그램)	핀란드 아카데미의 연구지원시스템	Global 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
○저성장·고실업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외국과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에 71억 유로의 예산을 공동출자	○해외대학과 싱가포르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한 후, 싱가포르 대학·연구소와 협동연구를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영문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매년 1천여 명의 외국인 심사자와 계약을 맺어 심사에 활용	○대학 내 국제적 연구소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영문연구계획서 패널심사와 면담심사를 위해 국제동료심사제 활용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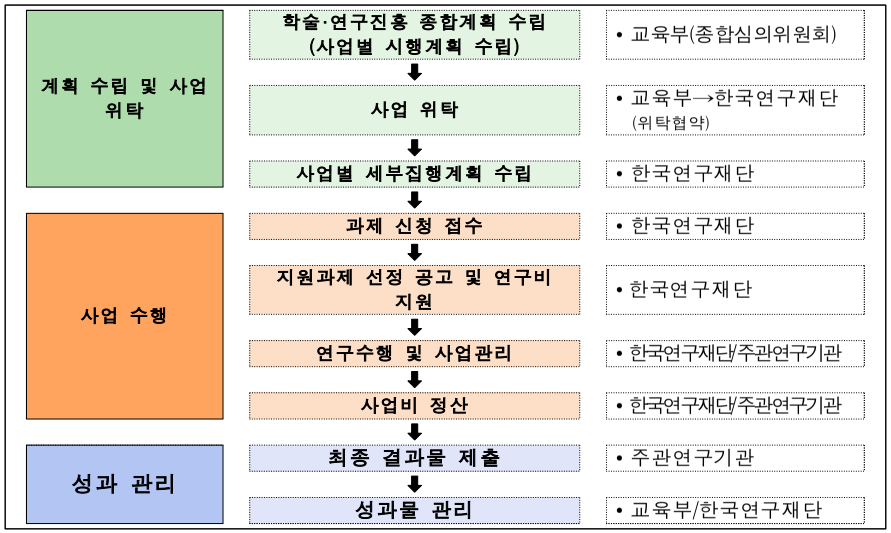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SCI급 논문 1건당 IF (단위:지수)	목표	3.8	종료	-	-	-	지표종료	SCI급 학술지 게재 실적의 평균 IF 지수 (IF 총합/논문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	4.5	-	-	-	-			
	달성도	118.4	-	-	-	-			
지원과제의 국제 학술대회 평균 개최 건수(건수)	목표	신규	0.8	0.82	1.02	종료	지표종료	∑국·내외에서 실시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건수 / 당해년도 지원과제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	신규	0.99	1.01	-				
	달성도	신규	123.8	123.2	-				
SCI(E)급 논문 표준화된 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 평균(지수)	목표	신규	68.4	69	71.5	70.71	'16~'17년 평균 실적(70.1) 대비 0.9% 상향 조정하여 목표 설정	∑전체논문의 표준화된 순위 보정지수/ 논문편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	신규	70.09	70.10	-				
	달성도	신규	102.5	101.6	-				
GRN 연구성과물(논문) 국제공저비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9.9	최근 3년('15~'17) 평균 실적(49.41) 대비 1% 상향 조정	GRN 연구성과물(논문) 국제공저 논문 수 / GRN 연구성과물(논문) 총 논문편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 시스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관련 통계

참고 1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연구자) 국내·외 연구자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유일한 국제공동 연구지원 사업이므로 예산 확대 필요

□ (연구자) 해외공동연구 목적 적합성 강화를 위해 매칭자금에 따른 선정평가 가산점 부여

□ (연구자) 해외공동연구 소수지역 연구를 위한 신청자격 요건 완화 추진

< 예산(안) 반영사항 >

□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19 신규 지원 예산 필요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 ('18) 48억원 → ('19) 50(2억원 증액)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정량적 연구 성과

(단위: 편,건,명)

논문		특허		국내외 학술활동		학위 배출 인력	국내외 인력교류		언론 보도 성과
SCI	비 SCI	출원	등록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실적	학술대회 발표실적		해외 파견	국내 유치	
89	41	6	4	49	228	53	15	9	19

※ 출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 정성적 연구 성과

○ 국제학술지 영향지수(IF)는 국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여, 국가적 R&D과제의 질적 수준 향상 견인

※ 국가 평균치 mmIF('16 59.66), 글로벌연구네트워크 mmIF('16년 70.10)

< 현장의 변화 >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 /교육부, 문체부 공동), 국가 차원의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마련

□ 인문학 진흥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17.1)

□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현장의 목소리(정책연구보고서)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해외공동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인문사회에 특화된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국제공동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한국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 2008년 사업시행 이후 2013년까지 이공분야 과제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고, 2014년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확대 및 2015년 이후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신규과제 지원

참고 3 관련 통계 등

○ 최근 5년간 지원 과제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백만원)	6,600	6,600	7,590	5,320	4,788
신규과제	41	1	31	37	-
계속과제	16	56	40	32	65
과제수 합계	57	57	71	69	65
접수	243	6	116	106	
선정률(%)	16.80%	16.60%	26.70%	34.91%	

○ 최근 3년간 정량적 연구성과

(단위:편,건,명)

연도	논문		특허		국내외 학술활동		학위 배출 인력	국내외 인력교류		언론 보도 성과
	SCI	비 SCI	출원	등록	국제 학술대회 초청강연 실적	학술대회 발표실적		해외 파견	국내 유치	
2017	89	41	6	4	49	228	53	15	9	19
2016	113	20	9	2	87	228	37	34	40	14
2015	137	23	7	3	105	308	48	25	27	48

※ 출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 2016년 이후 신규과제를 인문사회분야만 지원하여 연구성과가 인문사회분야 성과로 변경되고 있음 (비 SCI 논문실적 및 인력양성(학위배출 등)

○ 최근 3년간 연구비 비목별 현황

(단위:백만원, 백만원 미만 절사)

연도	인건비(A)		직접비(B)			연구비 (C=A+B)	간접비 (E)	정부출연금 (F=C+E)
	내부	외부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2017	0	1,299,366	157,906	1,856,255	852,875	4,166,402	1,148,710	5,315,111
	0%	31%	4%	45%	20%	100%		
2016	10,502	1,992,264	844,739	2,171,464	891,265	5,910,234	1,679,465	7,589,699
	0%	34%	14%	37%	15%	100%		
2015	10,502	1,988,286	1,128,134	1,441,536	536,980	5,105,438	1,463,859	6,569,296
	0%	39%	22%	28%	11%	100%		

○ 최근 3년간 참여인력 현황(외부인건비)

뷁 ᄒᆞᆯᄇᆞᆯᆞᆫ 뷁

연도	박사급		연구보조원				계
	Post - Doc	박사급	박사과정생	석사과정생	석사학위자	학부생	
2017	18	2	83	82		19	204
2016	19	3	121	97	1	24	265
2015	18	1	102	97	3	44	265

○ 최근 3년간 해외공동연구원 현황

뷁 ᄒᆞᆯᄇᆞᆯᆞᆫ 뷁

연도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계
	미국	캐나다	기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기타	뉴질랜드	호주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기타	
2017	55	5	3	11	10	3	3	3	1	10	5	1	18	3	2	9	5	147
2016	51			10	18	3	5	5	1	3	2	2	16	3	2	8	6	135
2015	45	1		6	15	2	3	5		2	5	1	6	1	1	4	1	98

○ 최근 3년간 해외파견현황

뷁ᄒᆞᆯᄇᆞᆯᆞᆫ 뷁

구분		파견국가				파견목적		파견기관 유형			파견자 직책	
연도	인원	미국	일본	스위스	기타	공동연구	정보교환	대학	외국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교수	연구보조원
2017	15	5	4	3	3	14	1	11	3	1	3	12
2016	34	8	8	1	17	28	6	27	1	6	23	11
2015	25	12	5	1	7	23	2	16	2	7	9	16

[30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84,091	103,980	217,669	113,689	109.3

* 사업코드 : 12 - 11 - 00 - 050 - 052 - 2400 - 2446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권지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 및 독립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경험 축적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기초과학분야 학과의 연구·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 (학문균형발전지원) 기초연구 성장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기반 강화,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창의·도전연구 및 지역·보호분야 등 연구지원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사업기간	○ (학문후속세대지원) '82~계속, (대학연구기반구축) '99~계속, (학문균형발전지원) '89~계속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연 20백만원(2년), 박사후국내·외연수 연 45백만원(1/2/3년)/ 대통령포닥펠로우십 연 130백만원 내외(3+2년) ○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연 7억원 내외(3+3+3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학과당 연 5억원 내외(3+3년) ○ (학문균형발전지원) 과제당 연 10~100백만원/1~10년
지원조건	○ 출연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학문후속세대지원 : 36,919백만원** ('18년 대비 △28,938백만원)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우수한 박사과정생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 지원 지원 : 3,000백만원

▪ 산출내역

(신 규) 150개내외x20백만원×12/12개월 = 3,000백만원

- **(박사후국내·외연수)**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 유지 및 초기 일자리 창출 지원 : 27,000백만원('18년 대비 +4,734백만원)

▪ 산출내역

(계 속) 100개내외x45백만원×12/12개월 = 4,500백만원

(신 규) 500개내외x45백만원×12/12개월 = 22,500백만원

※ 미국(NSF), 일본(JSPS), 독일 등 해외의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도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지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오현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6)

※ 박사후 국내연수 357개(자유공모 1년 247개, 2년 110개 내외), 박사후 국외연수 143개(자유공모 106개, 4차산업 지정공모 37개 내외)

< 4차 산업혁명관련 국외연수 지원 >

-4차 산업혁명관련 신성장서비스분야(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해당분야 중점지원

-핵심리더 양성을 위하여 특정 연수국가 과제수 50%이상 배분제한 조건 완화

※ 예상 선정율 : 37%(국내 43%, 국외 26%)(최근5년간 신청과제수 기준)

▪ 전년대비 53과제 이상 신규과제 지원 규모 증가를 통한 신진연구인력 대상 타 사업 대비 낮은 선정률 제고 필요 및 과도한 경쟁 해소

<최근 3년간 신진연구인력 대상 지원사업 선정율>

(단위 : %)

사업명	선정율			
	2015	2016	2017	3년평균
신진연구(생애첫연구포함)	24.6%	34.3%	42.2%	33.7%
박사후국내·외연수	13.6%	19.2%	25.5%	19.4%

※ '18년 527개, 223억원→ '19년 600개, 270억원(73과제, 47억원 증액)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구역량이 우수한 박사후연구원이 선도연구자, 대학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6,919백만원 (계속과제 지원)('18년 대비 △2,093백만원)

▪ 산출내역

(기일치) 42개내외×122.9백만×12/12개월 = 5,160백만원

(계 속) 11개내외×102.8백만x10/12개월 = 942백만원

(종 료) 14개내외×116.7백만×6/12개월 = 817백만원

※ '18년 67개, 90억원→ '19년 67개, 69억원(지원과제 수 유지, 21억원 감액)

- **(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지원 내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사업으로 개편

○ **대학연구기반구축 : 66,226백만원**('18년 대비 +28,103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대학 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및 우수 신진연구인력 양성 지원 : 48,679백만원('18년 대비 +10,556백만원)

▪ 산출내역

(기일치) 51개내외×561.8백만원×12/12개월 = 28,654백만원

(계 속) 11개내외×550백만원×10/12개월 = 5,042백만원

(종 료) 8개내외×549.8백만원×2/12개월 = 733백만원

(신 규) 20개내외×950백만원×9/12개월 = 14,250백만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 추진('19년 1~2개 내외)

< 4차 산업혁명관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

-4차 산업혁명관련 연구분야(AI, IoT, 빅데이터 등) 대학부설연구소 인프라구축 및 인력 양성을 위해 해당분야 중점지원

※ 우수 중점연구소 후속 지원 추진

< 우수대학중점연구소 육성 >

-기 종료된 중점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중점연구소를 대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8개 내외)

▪ 단가 : 직접비 5억 → 7억원

※ 최근 13년간('05년 이후) 과제당 기본단가는 5억원 규모로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력양성/기반구축/연구개발 모두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단가 7억원 수준까지 점진 상향 필요 (대학중점연구소장협의회간담회, '18.3.21.)

▪ ‘18년 전체 부설연구소(2,698개)의 2.6% 수준에서 ‘22년까지 4.5%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과제수	54개	70개	90개	100개	110개	120개
수혜율	2.0%	2.6%	3.3%	3.7%	4.1%	4.5%

※ ‘18년 70개, 381억원→ ‘19년 90개, 487억원(20과제, 106억원 증액)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순수 기초과학 연구 및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역량 및 연구기획력 강화 지원 : 17,547백만원

▪ 산출내역

(신 규) 10개x2,340백만원x9/12개월 = 17,547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 114,524백만원**

-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박사후연구원이 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되는 경우 독립적·안정적 연구 지원 : 53,422백만원 (’18년 대비 +18,843백만원)

※ 기존 학문후속세대 양성 내 ‘리서치펠로우’ 사업 개편(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학 내 연구전담 계층으로 고용계약 체결하는 경우 지원)

▪ 산출내역

(계 속) 358개내외×50백만원×12/12개월 = 17,900백만원

(종 료) 392개내외×48.9백만×4/12개월 = 6,384백만원

(신 규) 777개내외x50백만원×9/12개월 = 29,138백만원

※ ‘18년 832개, 346억원→ ‘19년 1,527개, 534억원(695과제, 188억원 증액)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규과제 미선정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지원 감소, 매년 배출되는 이공분야 박사학위 인력(8,500명 내외) 수요대응, 대학 내 비전임교원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과제수 증가 지원

-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균형성을 유지하고 해당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 지원 : 6,085백만원(’18년 대비 +4,552백만원)

▪ 산출내역

(기일치) 22개내외x46백만원x12/12개월 = 1,013백만원

(계 속) 2개내외x49.8백만원x10/12개월 = 83백만원

(종 료) 12개내외x47.3백만원x4/12개월 = 189백만원

(신 규) 64개내외x100백만원×9/12개월 = 4,800백만원

▪ 단가 : 5천만원 → 1억원

※ 보호 연구의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인력 조건 신설, 학생인건비를 반영하여 단가 상향

※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3,000만원(월250만원), 석사과정 2,160백만원(월180만원)

※ ‘18년 36개, 15억원→ ‘19년 100개, 61억원(64과제, 46억원 증액)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지역대학 연구자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의 수도권 편중 현상 방지 및 균형있는 연구 생태계 조성 : 55,017백만원(’18년 대비 +11,227백만원)

▪ 산출내역

(기일치) 710개내외x49.6백만원x12/12개월 = 35,223백만원

(계 속) 11개내외x49.9백만원x10/12개월 = 458백만원

(종 료) 262개내외x46.2백만원x4/12개월 = 4,036백만원

(신 규) 204개내외x100백만원x9/12개월 = 15,300백만원

▪ 지역 연구자 연구기회 확대 및 연구자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과제 지원(’19년 예상 선정율 23% 내외, 최근 5년간(’13~’17) 평균 선정률 35%)

▪ 단가 : 5천만원 → 5천만원/1억원

※ 박사후연구원 포함하여 지원할 경우 5천만원 추가 지원

※ 이공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평균연봉 3,563만원(자연 3239만원, 공학 4835만원)(박사조사 2016)

※ ‘18년 983개, 438억원→ ‘19년 1,187개, 550억원(204과제, 112억원 증액)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03,980**	**217,669**
■ 학문후속세대지원	**65,857**	**36,919**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	**3,000** (신규) 150개×20.0백만x12/12 =3,000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22,266** (종료) 80개×40백만x8/12= 2,151백만원 (신규) 447개×45백만x12/12 = 20,115백만원	**27,000** (계속) 100개×45백만x12/12= 4,500백만원 (신규) 500개×45백만x12/12 =22,500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9,012** (기일치) 55개×140.2백만x12/12=7,712백만원 (계속) 12개×130백만x10/12=1,300백만원	**6,919** (기일치) 42개×122.9백만x12/12=5,160백만원 (계속) 11개×102.8백만x10/12=942백만원 (종료) 14개×116.7백만x6/12=817백만원
-리서치펠로우	**34,579** (기일치) 219개×50백만x12/12= 10,950백만원 (계속) 455개×44백만x10/12=16,679백만원 (종료) 82개×50백만x12/12= 4,100백만원 (신규) 76개 × 50백만 x9/12= 2,850백만원	※창의·도전연구기반 지원 으로 개편
■ 대학연구기반구축	**38,123**	**66,226**
-대학중점연구소지원	**38,123** (기일치) 27개×550백만x12/12=14,850백만원 (계속) 11개×548.5백만x10/12=5,009백만원 (신규) 32개×570.8백만원 = 18,264백만원	**48,679** (기일치) 51개×561.8백만x12/12=28,654백만원 (계속) 11개×550백만x10/12=5,042백만원 (종료) 8개×549.8백만x2/12=733백만원 (신규) 20개×950백만×9/12=14,250백만원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	**17,547** (신규) 10개x2,340백만x9/12=17,547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	**114,524**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	**53,422** (계속) 358개×50백만×12/12=17,900백만원 (종료) 392개×48.9백×4/12=6,384백만원 (신규) 777개x50백만×9/12=29,138백만원
-보호연구	***(1,533)*** *(기일치) 14개×46.4백만x12/12 =650백만원* *(계속) 14개×50 백만x10/12 =583백만원* *(신규) 8개×50백만x9/12 =300백만원*	**6,085** (기일치) 22개x46.0백만x12/12=1,013백만원 (계속) 2개x49.8백만x10/12=83백만원 (종료) 12개x47.3백만x4/12=189백만원 (신규) 64개x100백만×9/12=4,800백만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 *(기일치) 496개×50 백만x12/12 =24,800백만원* *(계속) 275개×48.1 백만x10/12 =11,040백만원* *(신규) 212개×37.5 백만 =7,950백만원*	**55,017** (기일치) 710개x49.6백만x12/12=35,223백만원 (계속) 11개x49.9백만x10/12=458백만원 (종료) 262개x46.2백만x4/12=4,036백만원 (신규) 204개x100백만x9/12=15,3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학문후속세대지원 】

○ 신진 연구인력이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초기 연구지원 필요

- 매년 8천여명 내외의 이공분야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배출됨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및 박사과정생이 선도연구자, 대학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 필요

구 분	국내 이공분야 박사학위 배출현황(명)*					'13~'17 증감율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연계열	2,251	2,352	2,282	2,397	2,512	2.8%
공학계열	3,163	3,171	3,332	3,581	3,665	3.8%
의학계열	2,219	2,285	2,056	2,293	2,362	1.6%
계	**7,633**	**7,808**	**7,670**	**8,271**	**8,539**	2.8%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대(소)계열별 졸업상황(석박사)

- '16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미취업 비율은 평균 21.6%*으로 증가하는 박사인력의 수와 고용불안정에 따른 정부 역할이 중요

※ 2016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설문응답자 중 자연과학계열은 27.4%, 공학계열은 25.4%, 의약계열은 13.8%가 미취업

* 출처 : 2016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구자 생애주기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제고를 통해 역량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및 연구 저변 확대 필요

< 2017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사업 신규과제 선정율 >

사업	학문후속세대	신진연구	개인기초	중견연구
선정율	**37.2**	42.2	62.4	49.4

○ 박사후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개선 및 연구에 전념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지원제도 도입 필요

※ 국내 대학원생 500명에 대한 설문에서는, 비정규직(박사후과정) 연구직 대기가능평균 연수는 2.6년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인력 경력개발과 고용촉진 전략'(엄미정, STEPI, 2011)

※ 미국(NSF), 일본(JSPS), 독일 등 해외의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도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지원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오현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6)

< 미국, 일본, 독일의 박사 후 연구원 지원제도 주요 내용>

국가	특징	프로그램	지원기간	개인당 지원금액	지원 내용	선정 과제수	선정율 (%)
미국	- 분야별 제안서 제출 - 인건비 및 연구비 등 지급 - 분야별 제안서 제출일 고정됨	지구대기 (AGS-PRF)	2년	년 $86,000	인건비, 연구비, 복리후생지원비	10	
		지구과학 (EAR-PF)	2년	년 $87,000	인건비, 연구비, 복리후생지원비	10	
		수학 (MSPRF)	2-4년	년 $150,000	인건비, 연구비, 연구수당, 복리후생지원비	30~33	
		생물학 (PRFB)	2년	년 $69,000	인건비, 연구수당, 복리후생지원비	40	
		천문 (AAPF)	3년	년 $89,000	인건비, 연구교육 활동비, 복리후생	8~9	
		사회과학 (SPRF)	2년	년 $62,000	인건비, 연구 및 여행경비	12~16	
		과학기술 (STS)	2년	년 $50,000	인건비, 연구관련비용 청구가능	40	
일본	- PD → SPD 2단계 특별 지원 - RPD 경력 단절자 지원 - 국내포닥의 경우 3년 지원 - 해외특별연구원 지원 제도 있음. - 인건비 및 연구비 등 지원	PD	3년	월 362,000 년 1,500,000	인건비, 연구비	350	11.2
		SPD	3년	월 446,000 년 3,000,000	인건비, 연구비	14	
		RPD	3년	월 362,000 년 1,500,000	인건비, 연구비	67	26
		해외특별 연구원	2년	그룹별 월 14,400-10,400	체제비, 항공료	192	23.7
독일	- 신진포닥 → 주니어 포닥 → 시니어포닥의 단계별 지원제도 - 인건비 및 연구비 등 지원	리서치 펠로우십	2년	년 17000€	인건비, 거주비, 가족수당 등	이 80 공 12	이 27 공 4
		리서치 그랜트	3년		인건비, 연구비, 장비구입비	이 107 공 44	이 25 공 33
		리서치 트레이닝	4.5년 (최대9년)		인건비, 연구보조금 등	이 62 공 41	
		국외 리서치 트레이닝			인건비, 연구보조금 등	이 16 공 4	
		에미뇌터	3+2년 (6년가능)		인건비, 연구보조금 등	이 20 공 11	이 16 공 29
		하이젠베르그 펠로우십	3+2년	월 €4,450	인건비, 가족수당 및 출판비용 등	이 17 공 7	
		하이젠베르그 프로페서십	3+2년	월 €5,000	인건비, 가족수당 및 출판비용 등	이 5 공 3	

【 대학연구기반구축 】

○ 중점연구소사업은 **연구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현장 수요 충족 및 대학연구소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이공분야 대학 부설연구소 등록현황 : 총 2,698개 이공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가 설립·운영 중(2018.3월 기준)

※ '18년 총 2,698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중 70개만 지원(수혜율 2.6% 수준)

- 현장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선정율이 매우 낮은 상황

※ 중점연구소를 신청하는 대학은 대학별 내부 경선을 통하여 선별한 우수한 연구소만 신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중점연구소 선정율은 3~20% 수준

※ 대학중점연구소 연도별 선정율 : 6년('12~'17) 평균 11.2% 수준

- 과도한 경쟁체재를 해소하고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사업 수혜율 확대 필요

※ '18년 사업수혜율 2.6% 수준에서 '22년 4.5% 수준까지 점진적 확대

○ 대학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해 기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소를 선정하여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공급

-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지역사회 경제 및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기구축된 인프라 및 인력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기존 연구소 성과창출 동기부여, 지역산업 발전과 연계,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 등)

< 대학중점연구소의 지역사회 기여 사례 >

대학명	연구소명	지역사회 기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양돈과학기술센터	-지역동물생명산업(생물바이오)이 경상남도 특화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되는데 크게 기여
한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의료, 바이오산업이 강원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육성되는데 크게 기여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생명산업이 제주도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되는데 크게 기여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항공기부품산업이 경상남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육성되는데 크게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형 연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순수 기초과학의 중요성 증대

【 학문균형발전지원 】

○ **(기초연구의 중요성)** 기초연구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원천이 되며, 응용연구와 실용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의 필수적인 단계

※ 기초연구투자 1% 증가 및 개발연구투자 1% 감소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0.08% 증가(기초·원천연구 부문의 재정투자 이슈와 정책과제, 엄익천·정재영; 2012)

- 특히, 기초연구는 민간 투자 이윤이 부족한 대표적 시장실패 영역으로 장기적·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한 국가 전체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풀뿌리 기초연구지원 강화

○ **(변혁적 연구기반 마련)** 기존의 정형화된 연구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적·실험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문화 형성

○ **(학문의 다양성·균형성 유지)**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개발 산업화 측면에 초점을 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의 양적 증대는 이루었으나 학문분야별 균형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성과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순수 기초연구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국가차원의 전략적 보호·육성이나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문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고 소외학문 및 희귀학문 분야의 연구 지속성 담보
-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연구역량 제고 및 균형 있는 연구지원 생태계 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84,091**	**103,980**	**217,669**	**113,689**	**109.3**
○학문후속세대지원	**56,362**	**65,857**	**36,919**	**△28,938**	**△43.9**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	-	3,000 (150과제×20백만원)	3,000	순증
-박사후국내·외연수	11,866 (350개x33.9백만)	22,266 (527과제×42.3백만원)	27,000 (600과제×45백만원)	4,734	21.3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10,448 (86개×121.5백만원)	9,012 (67과제×134.5백만원)	6,919 (67과제×103.3백만원)	△2,093	△23.2
-리서치펠로우	34,048 (832개x40.9백만)	34,579 (832과제×41.6백만원)	-	△34,579	순감
○대학연구기반구축	**27,729**	**38,123**	**66,226**	**28,103**	**73.7**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7,729 (54개x513.5백만)	38,123 (70과제×544.6백만원)	48,679 (90과제×540.9백만원)	10,556	27.7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	-	17,547 (10과제×1754.7백만원)	17,547	순증
○학문균형발전지원	-	-	**114,524**	**114,524**	**순증**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	-	53,422 (1,527과제×35.0백만원)	53,422	순증
-보호연구	-	*(1,533)* *(36과제x42.6 백만원)*	6,085 (100과제×60.9백만원)	6,085	순증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43,790)* *(983과제x44.5 백만원)*	55,017 (1,187과제×46.3백만원)	55,017	순증
□ **비목**(합계)	**84,091**	**103,980**	**217,669**	**113,689**	**109.3**
○일반출연금(350-01)	84,091	-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03,980	217,669	113,689	109.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후연구원 및 박사과정생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확대 추진

○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 연구기반구축을 통해 대학의 전문화·특성화된 연구 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확대 추진

○ (학문균형발전지원) 창의·도전연구 활성화,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 유지를 위해 지원 지속확대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3,025	■ 학문후속세대양성 55,296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10,800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10,448백만원 -리서치펠로우 34,048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27,729백만원			
'18	103,980	■ 학문후속세대양성 65,857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22,266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9,012백만원 -리서치펠로우 34,579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103,980	■ 학문후속세대지원 65,857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22,266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9,012백만원 -리서치펠로우 34,579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
'19	103,980	■ 학문후속세대양성 65,857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22,266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9,012백만원 -리서치펠로우 34,579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217,669	■ 학문후속세대지원 36,919백만원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3,000백만원 -박사후국내·외연수 27,000백만원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6,919백만원 ■ 대학연구기반구축 66,226백만원 -대학중점연구소지원 48,679백만원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17,547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114,524백만원 -창의·도전연구기반지원 53,422백만원 -보호연구 6,085백만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55,017백만원	113,689
'20	103,980	■ 학문후속세대양성 65,857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143,400	■ 학문후속세대지원 23,992백만원 ■ 대학연구기반구축 44,986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74,422백만원	39,420
'21	103,980	■ 학문후속세대양성 65,857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163,900	■ 학문후속세대지원 27,421백만원 ■ 대학연구기반구축 51,417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85,062백만원	59,920
'22		■ 학문후속세대양성 65,857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38,123백만원	183,200	■ 학문후속세대지원 30,650백만원 ■ 대학연구기반구축 57,472백만원 ■ 학문균형발전지원 95,078백만원	183,200
연평균 증가율 (%)	5.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03,980	217,669	113,68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32.9	27	△6
		재정지출 고용효과	1,445.7	3,095.5	1,65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0.3	0.1	△0.2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4.0	0.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라. R&D-<인력양성>"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1] 직·간접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연구개발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6873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 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표2>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훈련인원 × 수료율 × 취업률 × 1년 고용유지율 × 추가고용기여율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① + ② = 3,095.5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1,269.2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173.52억원 ÷ 0.6873 = 252.5명 ※ 최근 3년간('15~'17) 인건비 지급비율 평균 47%('15년 44.6%, '16년 46.3%, '17년 51.0%), 간접비 지급비율 평균 14%('15년 14.7%, '16년 14.9%, '17년 14.1%), 그 외 연구비는 예산비목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비에 포함하여 예산 추정치 산출 - 대학연구기반구축 : 332.28억원 ÷ 0.6873 = 483.5명 ※ 최근 3년간('15~'17) 인건비 지급비율 평균 48%('15년 49.8%, '16년 47.1%, '17년 47.4%), 간접비 지급비율 평균 7%('15년 7.1%, '16년 7.2%, '17년 7.4%), 그 외 연구비는 예산비목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비에 포함하여 예산 추정치 산출 - 학문균형발전지원 : 366.48억원 ÷ 0.6873 = 533.2명 ※ 최근 3년간('15~'17) 인건비 지급비율 평균 32%('15년 32.6%, '16년 32.5%, '17년 32.2%), 간접비 지급비율 평균 21%('15년 21.7%, '16년 21.5%, '17년 21.4%), 그 외 연구비는 예산비목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비에 포함하여 예산 추정치 산출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연구개발활동비 등을 <표2>의 '연구개발활동비 등'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 1,116.6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143.98억원 ÷ 0.89 = 161.8명 - 대학연구기반구축 : 311.52억원 ÷ 0.89 = 350명 - 학문균형발전지원 : 538.26억원 ÷ 0.89 = 604.8명 ○ 간접비를 <표2>의 '연구개발경상경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4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 709.7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51.69억원 ÷ 0.48 = 107.7명 - 대학연구기반구축 : 48.46억원 ÷ 0.48 = 101명 - 학문균형발전지원 : 240.5억원 ÷ 0.48 = 501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27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500명 × 1.0 × 1.0 × 1.0 × 0.0481 = 24.1명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선정 인원 기준 산출 - 대학연구기반구축 : 60명 × 1.0 × 1.0 × 1.0 × 0.0481 = 2.9명 * 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 고용 인원 기준 산출(연구소당 전임연구원 5명 이상 채용) □ **2018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1,445.7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931.1명(직접고용효과 450.4명+간접고용효과 480.7명) - 대학중점연구소 : 514.6명(직접고용효과 266.2명+간접고용효과 248.4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32.9명 - 학문후속세대지원 : 25.2명 - 대학중점연구소 : 7.7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신진연구인력인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규모 확대 필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 및 제7조

>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 ▪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학문후속세대지원 】

- 1982년 : 박사후 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과학기술처)
- 1996년 : 박사후 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2001년 :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2006년 : 박사후 국내·외연수지원,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으로 통합
- 2011년 : 우수포닥을 위한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신설
- 2016년 : 리서치펠로우 사업을 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으로 이관

【 대학연구기반구축 】

- 1980년대 중반 :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1999년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실시(연간 2억원 이내, 3단계 6년)
- 2004년 : 이공계 중점연구소 중점 지원(연간 5억원, 2단계 5년)
- 2005년 :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모델 완성 (연간 5억원, 3단계 9년)

【 학문균형발전지원 】

- 1963년 :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1979년 :「학술진흥법」제정
- 1992년 : 총리실에서 부처간 역할 조정
  - ▸ (교육부) 우수인력양성과 연구기반 저변 확충을 위한 학술기초연구지원
  - ▸ (과학기술처) 탁월성 위주의 기초연구, 공공복지기술, 거대과학기술 지원
- 1904년 : 여성·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지원사업 소관부처 변경
  -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향'에 따른 과기혁신본부 신설의 후속조치
- 1909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과부로 통합 후, 양 부처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통합
- 2013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2016년 :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세부 시행계획 통합 공고 추진
  -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1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408.7	423	-	734	-	830	841	1,0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23 **(423)**	( )	( )	423 **(423)**	423 **(414)**	( )	(9)
'16년	734 **(734)**	( )	( )	734 **(734)**	734 **(726)**	( )	(8)
'17년	841 **(841)**	( )	( )	841 **(841)**	841 **(821)**	( )	(20)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3,025	84,091	103,980	-	103,980	103,980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18.12월까지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잔여예산으로 연구소를 추가 선정 시 당초 선정연구소와의 형평성과 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할 것(국회 교문위, '14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결과) '15년도는 당초 계획 대비 추가선정연구소가 없었으며, '14년 추가선정연구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타 연구소와의 형평성, 연구소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2차년도부터 연구비 전액(550백만원) 지원함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 선정 시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것(국회 교문위, '14년 결산 시정요구)

※ 2012~2013년도의 경우 수도권대학 지원이 지역대학 지원보다 많음에도 수도권대학 선정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조치결과) 수도권-지역대학의 비전임 박사후연구원에게 동등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5년부터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을 수도권, 지역대학 구분 없이 전국 대학으로 확대

- 국내연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사후국외연수의 별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 필요(국회 교문위 예산검토, '16)

☞ (조치결과)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을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착수·중간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16년~)

○ 정부 R&D 평가 결과

-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 우수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로그램 (지원기관)	K99R00 (NIH)*	University Reasearch Fellowship (Royal Society)	Emmy Noether (DFG)	SPD (Superative Post-doctoral Researcher) (JSPS)
지원자격	포닥연구경력 5년미만	박사학위 취득 후 3~8년 이내의 연구경험자	2~4년의 포닥경험자 및 해외 연구경험 1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국적제한 없음	영국 및 EU국가출신으로 제한	국적제한 없음	외국국적 가능
지원기간	5년(2+3)	5년	5년(3+2)	3년
선발인원/연	200명 내외	35명	50~60명 내외	15명 내외
지원금액	(k99)연간 인건비 75,000USD내외, 연구비 25,000USD내외 (R00)249,000USD 지원	연간인건비 FEC (연구총경비계산법) 에 따라 지원 연간연구비 1년차 13,000파운드/이후 11,000파운드	표준급여표에 따라 인건비 지급 연구비는 연간 평균 20만 유로 내외 지급	연간 급여 446,000엔, 연간 연구비 3,000,000엔

(6) 사업추진절차

<신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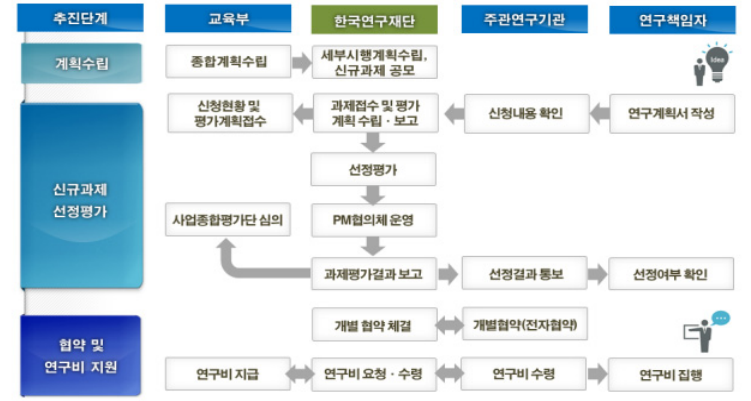

<계속과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문후속세대지원 연수자1인당 평균논문발표건수 (단위: 건)	목표	1.8	-	-	-	-	[종료지표]	논문발표건수/과제수 - 가중치 적용 SCI 1.5, 비SCI 1.0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2.33	-	-	-	-			
	달성도	129.4	-	-	-	-			
대학중점연구소지원 10억원당 특허 출원/등록)건수 (단위: 건)	목표	4.65	-	-	-	-	[종료지표]	특허(출원/등록)건수/10억원당 - 가중치 적용 등록 0.75, 출원 0.25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5.35	-	-	-	-			
	달성도	115.1	-	-	-	-			
등록 특허 지수 평균(K-PEG기준)	목표	신규	80.1	80.8	-	-	[종료지표]	∑[(K-PEG지수)/특허등록건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한국특허정보원
	실적	81	83.8	81.45	-	-			
	달성도	-	104.6	100.8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표준화된 순위보정 학술지 영향력 지수(mrnIF)	목표	-	-	신규	60.94	61.54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60.17) 대비 약 2% 상향된 목표 설정	∑(SCI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논문 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수도권 지역간 연구격차지수(mrnIF)	목표	-	-	신규	0.916	0.916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0.909) 대비 약 1% 상향된 목표 설정	지역 연구자의 mrnIF 평균/수도권 연구자의 mrnIF 평균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등록 특허 지수 평균(K-PEG 기준)	목표	-	-	신규	6.07	6.09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6.00) 대비 약 1% 상향된 목표 설정	∑[(K-PEG 특허등급지수)/특허등록건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한국특허정보원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고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정부 R&D 평가결과

○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등급** 달성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성과

○ SCI 논문생산성 등 성과는 과기정통부 타사업 대비 높은 수준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최근 5년 평균
대학중점연구소	SCI(E)	1,123	845	1,052	1,079	1,063	1,032
	10억당	42.18	31.74	44.43	42.48	42.12	40.59
(타사업) 선도연구센터	SCI(E)	3,089	2,727	2,910	2,527	2,452	2,741
	10억당	28.34	25.02	28.12	23.87	22.55	25.58
(타사업) 기초연구실	SCI(E)	399	369	443	506	582	460
	10억당	22.17	18.00	21.61	24.68	24.58	22.21

※ 2018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17.11) 통계 기준

○ SCI논문 질적수준(Impact Factor, mrnIF) 전년대비 지속상향
- (Impact Factor) '15년 3.45→'16년 3.54, (mrnIF) '15년 65.11 →'16년 66.08

※ 2017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17.12) 기준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성과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연구자('11~'15년) 중 현재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비중은 19.1%에 달함

구분	대학 전임교원	대학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	기타기관취업	계
인원	244	231	566	234	1,275
비율	19.1	18.1	44.4	18.4	100

※ 2017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17.12) 기준

< 현장의 변화 >

□ 이공계 박사후 연구자 수 지속증가 및 전임임용기간 장기화

○ 국내 이공분야 박사학위 배출자 수는 매년 순증하고 있으며, 전임교수로의 임용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문후속세대사업 잠재적 수혜대상 지속증대

국내 이공분야 박사학위 배출현황(명) 2013	2014	2015	2016	2017	'13~'17 증감율
7,633	7,808	7,670	8,271	8,539	2.8%

[301] 개인기초연구(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개인기초연구	303,400	348,491	292,231	△56,260	△16.1

* 사업코드 : 12 - 11 - 00 - 050 - 052 - 2400 - 2446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학술진흥과장(윤소영), 사무관(권지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 연구비·연구기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연구자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사업기간	○ '89~계속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과제당 연구비/연구기간 : 10~50백만원/1~10년
지원조건	○ 출연
사업시행주체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간접비	○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기본연구)** 소규모 풀뿌리 순수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전 연령대의 연구자를 지원하여 국가 연구저변 확대에 기여 : 292,231백만원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만 지원, 6,712과제내외)

- 산출내역

(기일치) 5,083개내외x52.1백만원x12/12개월 = 264,844백만원

(계 속) 72개내외x49.0백만원x10/12개월 = 2,942백만원

(종 료) 1,557개내외x47.1백만원×4/12개월 = 24,445백만원

※ 교육부-과기부 국정과제 수행관련 기초연구 역할분담 협의에 따라 계속과제는 교육부, 신규과제는 과기부에서 매칭하여 지원

○ **(보호연구)**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이관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개인기초연구	348,491	292,231
■ 이공학개인기초연구	348,491	292,231
-기본연구	**303,168** (기일치) 2,286개×48.9백만x12/12 =111,731백만원 (계속) 1,786개×45.3백만x10/12 =67,427백만원 (종료) 459개×54.5백만x12/12 =25,010백만원 (신규) 2,640개×50백만x9/12 =99,000백만원	**292,231** (기일치) 5,083개x52.1백만x12/12 = 264,844백만원 (계속) 72개x49.0백만x10/12 = 2,942백만원 (종료) 1,557개x47.1백만×4/12 = 24,445백만원
-보호연구	**1,533** (기일치) 14개×46.4백만x12/12 =650백만원 (계속) 14개×50백만x10/12 =583백만원 (신규) 8개×50백만x9/12 =300백만원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43,790** (기일치) 496개×50백만x12/12 =24,800백만원 (계속) 275개×48.1백만x10/12 =11,040백만원 (신규) 212개×50백만x9/12 =7,95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기초연구의 중요성)** 기초연구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의 원천이 되며, 응용연구와 실용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의 필수적인 단계

※ 기초연구투자 1% 증가 및 개발연구투자 1% 감소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0.08% 증가(기초·원천연구 부문의 재정투자 이슈와 정책과제, 엄익천·정재영; 2012)

- 특히, 기초연구는 민간 투자 이윤이 부족한 대표적 시장실패 영역으로 장기적·안정적 연구지원을 통한 국가 전체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개인단위의 연구지원 강화
- 2012년 이후 총 연구개발비 투자 대비 기초연구비 투자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가 원천기술 개발, 응용연구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투자비중 강화

<우리나라의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투자실적>

(단위 : 10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구개발비	기초	4,918.7 (15.7)	5,537.1 (16.1)	6,849.1 (18.1)	7,991.0 (18.2)	9,013.2 (18.1)	10,153.3 (18.3)	10,665.7 (18.0)	11,242.6 (17.6)	11,361.70 (17.2)	11,086.7 (16.0)
	응용	6,210.8 (19.8)	6,773.9 (19.6)	7,574.3 (20)	8,742.7 (19.9)	10,116.5 (20.3)	10,572.7 (19.1)	11,315.8 (19.1)	12,058.5 (18.9)	13,745.0 (20.8)	15,621.4 (22.5)
	개발	20,171.9 (64.4)	22,187.1 (64.3)	23,505.1 (62)	27,121.2 (61.9)	30,760.7 (61.6)	34,724.2 (62.6)	37,319.3 (62.9)	40,433.0 (63.4)	40,852.80 (61.9)	42,697.4 (61.5)
	계	31,301.4 (100)	34,498.1 (100)	37,928.5 (100)	43,854.8 (100)	49,890.4 (100)	55,450.2 (100)	59,300.9 (100)	63,734.1 (100)	65,959.40 (100)	69,405.5 (100)
증 가 율		14.5%	10.2%	9.9%	15.6%	13.8%	11.1%	6.9%	7.5%	3.5%	5.2%
기초연구비 투자비중		15.7%	16.1%	18.1%	18.2%	18.1%	18.3%	18.0%	17.6%	17.2%	16.0%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3.00%	3.12%	3.29%	3.47%	3.74%	4.03%	4.15%	4.29%	4.23%	4.24%
정부·공공:민간		26:74	27:73	29:71	28:72	26:74	25:75	24:76	24:76	25:75	24:76

※ 출처 :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2017.12)

○ **(연구자 맞춤형·장기적 연구지원)** 기술의 복잡성과 융복합 가속화 등으로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지원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거나 우수성과가 기대되는 연구자에 대한 장기연구 지속 지원
- 타사업 대비 투자 효율성이 높은 기초연구지원으로 국가전체 역량 강화 및 우수연구 성과확산을 위해 안정적 지원

○ **(민간R&D촉진)** 기초연구는 직·간접적으로 민간 R&D를 촉진*하며, 주요 수행 주체인 대학의 R&D 활동은 기업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대학 연구가 10% 증가하면 민간 R&D는 7% 증대효과가 있고, 기초/약학분야 공동연구 1% 증가가 8년 후 기업 R&D 1.7% 증가에 영향

** 미국 연구에 따르면 대학 R&D 활동 10%증가가 기업 특허 1~4%를 증가시키며, 신제품의 15%, 새로운 프로세스의 11% 개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Mansfield 보고서, 1991)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개인기초연구**	**303,400**	**348,491**	**292,231**	**△56,260**	**△16.1**
○이공학개인기초연구	303,400	348,491	292,231	△56,260	△16.1
- 기본연구	261,492 (6,212개x42.1백만)	303,168 (7,171개x42.3백만)	292,231 (6,712과제x43.5백만원)	△10,937	△3.6
- 보호연구	1,250 (31개x40.3백만)	1,533 (36개x42.6백만)	-	△1,533	순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0,658 (983개x41.4백만)	43,790 (983개x44.5백만)	-	△43,790	순감
□ **비목**(합계)	**303,400**	**348,491**	**292,231**	**△56,260**	**△16.1**
○일반출연금(350-01)	303,400	-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	348,491	292,231	△56,260	△16.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개인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전략적 연구지원을 통해 체계적 기초연구 육성

-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연구 계속과제 지원 지속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03,400	■ 기본연구 261,492백만원 ■ 보호연구 1,250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0,658백만원			-
'18	348,491	■ 기본연구 303,168백만원 ■ 보호연구 1,53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백만원	348,491	■ 기본연구 303,168백만원 ■ 보호연구 1,53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백만원	-
'19	348,491	■ 기본연구 303,168백만원 ■ 보호연구 1,53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백만원	292,231	■ 기본연구 292,231백만원	△56,260
'20	348,491	■ 기본연구 303,168백만원 ■ 보호연구 1,53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백만원	480,600	■ 기본연구 405,130백만원 ■ 보호연구 10,37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65,097백만원	132,109
'21	348,491	■ 기본연구 303,168백만원 ■ 보호연구 1,533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43,790백만원	549,100	■ 기본연구 434,618백만원 ■ 보호연구 14,140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00,342백만원	200,609
'22			614,000	■ 기본연구 459,300백만원 ■ 보호연구 14,200백만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140,500백만원	614,000
연평균 증가율 (%)	3.5%		15.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48,491	292,231	△56,26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987.4	4,182.3	△805.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4.3	14.3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연구개발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6873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 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4,182.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935.14억원 ÷ 0.6873 = 1,360.6명 ※ 최근 3년간('15~'17) 인건비 지급비율 평균 32%('15년 32.6%, '16년 32.5%, '17년 32.2%), 간접비 지급비율 평균 21%('15년 21.7%, '16년 21.5%, '17년 21.4%), 그 외 연구비는 예산비목에 따라 연구개발활동비에 포함하여 예산 추정치 산출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연구개발활동비 등을 <표2>의 '연구개발활동비 등'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373.49억원 ÷ 0.89 = 1,543.2명 - 간접비를 <표2>의 '연구개발경상경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4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613.68억원 ÷ 0.48 = 1,278.5명 **□ 2018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1,115.17억원 ÷ 0.6873 = 1,622.5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b. 1,637.91억원 ÷ 0.89 = 1,840.3명 c. 731.83억원 ÷ 0.48 = 1,52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이공분야 풀뿌리 개인연구자의 연구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추진경위

-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 학술진흥법 제정
- ('92) 총리실에서 부처간 역할 조정
  - ▸ (교육부) 우수인력양성과 연구기반 저변 확충을 위한 학술기초연구지원
  - ▸ (과학기술처) 탁월성 위주의 기초연구, 공공복지기술, 거대과학기술 지원
- ('04) 여성·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지원사업 소관부처 변경
  -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향'에 따른 과기혁신본부 신설의 후속조치
- ('09)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과부로 통합 후, 양 부처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을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통합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16)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세부 시행계획 통합 공고 추진
  -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1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개인기초연구	2,905	2,943	-	2,681	-	3,034	-	3,4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43 (2,943)	( )	( )	2,943 (2,943)	2,943 (2,927)	( )	(16)
'16년	2,681 (2,681)	( )	( )	2,681 (2,681)	2,681 (2,679)	( )	(2)
'17년	3,034 (3,034)	( )	( )	3,034 (3,034)	3,034 (3,018)	( )	(16)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03,400	-	348,491	-	-	348,491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18.12월까지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지역배려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역대학우수과학자사업은 지방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과제 확대 필요(국회 교문위, '14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결과)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신규과제 확대를 위해 '16년도 예산편성시 전년 대비 50억원(55과제) 증액 편성함

※ 예산 : ('15) 24,750 → ('16) 29,750백만원, 신규과제 지원수 : ('15) 220→ ('16) 275개

○ 정부 R&D 평가 결과

-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 보통(재정사업통합평가)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미 국

○ 2007년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투자 및 미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제정
- 세계적 경쟁력이 결국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서 나온다는 인식과 더불어 기초연구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증가
- 기초연구 투자확대를 위해 기초연구관련 3대 연방정부기관인 국립표준기술원(NIST), 에너지부(DOE) 과학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연구비 예산을 10년 간('17년까지) 두 배로 확대 ('06년 97.5억 달러 → '16년 194.9억 달러)
-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 및 대학교육·연구지원 강화 등

○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기초연구 역량강화 방안 권고
※ Transformation and Opportunity : The Future of The U.S. Research Enterprise ('12.11)
- 기초연구의 리스크, 시장실패 등으로 인해 정부가 투자자로서 역할 강화
- 창의적 연구, 학제간 연구, 연구자 중심 연구의 투자에 대한 구체적 전략 제시
※ 연구자 중심(people based) 지원, 우수 연구자에 대한 장기지원을 통해 연구자 생산성 증대 권고
-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학생의 유치 및 보유 강화
- 연구성과의 이전 등 혁신 생태계 허브로써 미국 대학의 역할 확대

○ 미국립과학재단(NSF)은 학제 간 연구 및 기초연구의 사회적 기여 강조
- 창의·도전적 연구(Transformative Research) 투자, STEM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연구인프라 향상, 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선도적 연구 강조
- NSF 프로그램과 사회적 필요를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유 럽

○ 연구, 혁신, 경쟁력 촉진을 위해 '14~'20년간 총 800억 유로 규모('20년 GDP의 3% 투자 목표)의 「Horizon 2020」을 추진
- 과학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첨단연구, 인력양성 등 지원
- 전 세계 우수 연구자·혁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 유럽과 전 세계의 공통된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처

○ 영국 EPSRC : Research Grants프로그램(개인연구)
- 지원규모('13) : £781million(약 1조 3천억원)

○ 독일 DFG : Individual Grants Programmes (개인연구)
- 지원규모('10) : €2.3billion(약 3조 2천억원)

일 본

○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연구와 인재육성 강화
- 연구자 경로정비 등을 통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신진연구자를 육성
- 제도 간소화 및 독창성·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제도 추진

○ 일본 JSPS : 과학연구비조성사업(개인연구)
- 지원규모('14) : 2,276억엔(약 2조 1천억원)

중 국

○ 장기적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 추진(12차 5개년 계획)
- 학문 간 균형적 발전 및 융합 촉진, 기초연구 성과 축적 등
- 과학기술인재그룹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재양성시스템을 개선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강화
- 2006~2010의 자유신청과제예산의 3~4%를 탐구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혁신적 연구에 지원

(6) 사업추진절차

<신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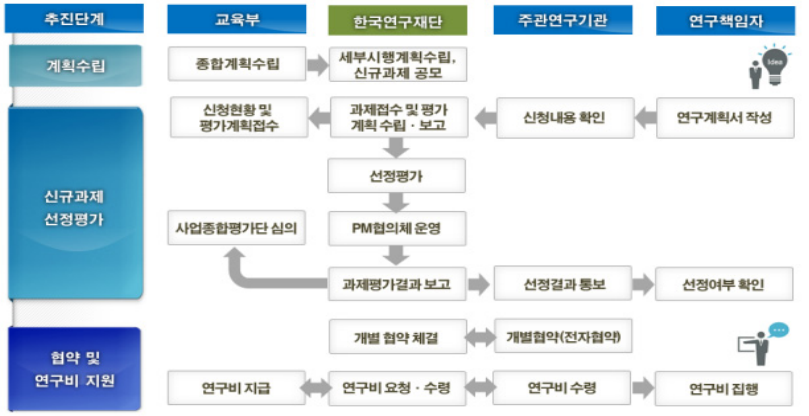

<계속과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억원당 SCI 논문 발표건수 지수(단위: 건)	목표	2.2	-	-	-	-	[종료지표]	학술지(SCI 논문 등) 발표 수/1억원 당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2.27	-	-	-	-			
	달성도	103.2	-	-	-	-			
표준화된 순위보정 학술지 영향력 지수 (mrnIF)	목표	신규	61.84	61.87	-	-	[종료지표]	Σ(SCI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논문 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	62.04	61.87	-	-			
	달성도	-	100.3	100.0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표준화된 순위보정 학술지 영향력 지수(mrnIF)	목표	-	-	신규	60.94	61.54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60.17) 대비 약 2% 상향된 목표 설정	Σ(SCI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SCI논문 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수도권 지역간 연구격차지수(mrnIF)	목표	-	-	신규	0.916	0.916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0.909) 대비 약 1% 상향된 목표 설정	지역 연구자의 mrnIF 평균/수도권 연구자의 mrnIF 평균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등록 특허 지수 평균(K-PEG 기준)	목표	-	-	신규	6.07	6.09	최근 3년간('15~'17) 실적치 평균(6.00) 대비 약 1% 상향된 목표 설정	Σ[(K-PEG 특허등급지수)/특허등록건수]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 한국특허정보원
	실적	-	-	-	-	-			
	달성도	-	-	-	-	-			

참고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성과**

□ 개인기초연구 성과

○ SCI 논문생산성 등 성과는 지원단가가 높은 과기정통부 타사업 대비 높은 수준

구 분		연도별					최근 5년 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개인기초연구	SCI(E)	6,100	5,981	6,941	7,359	6,278	6,532
	10억당	21.26	22.07	26.98	27.98	23.42	24.3
(타 사업) 리더연구	SCI(E)	523	535	541	611	680	578
	10억당	9.18	10.51	10.53	10.77	11.74	10.5
(타 사업) 중견연구	SCI(E)	5,290	5,269	6,381	7,391	8,126	6,491
	10억당	17.90	17.37	19.70	21.09	21.99	19.6

※ 2018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17.11) 통계 기준

○ SCI논문 질적수준(Impact Factor, mrnIF) 전년대비 지속상향

- (Impact Factor) '15년 2.86→ '16년 3.01, (mrnIF) '15년 59.69 →'16년 59.87

※ 2017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16년 성과기준)(17.12) 기준

[301]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870	16,202	14,585	**△1,617**	**△10.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400 - 2447 - 301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동북아교육대책팀장(김영재), 주무관(이혜복)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o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현안 분석, 조사·연구, 대응논리 개발, 교류·협력활동 o 동북아역사 자료 확충 및 DB시스템 구축, 역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도서발간
사업기간	'0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기관고유사업비 : 5,916백만원(전년 대비 1,802백만원 감액)**

①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895백만원(전년 대비 531백만원 감액)

※ 사업명 변경 : (당초)'한중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변경)'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개요>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과 정책대안, 연구기반 구축 및 심화 연구**를 장기적·종합적으로 추진, **세계사 속의 한국 고대사 정립**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 질서와 학술 담론의 지형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바람직한 미래질서를 위한 한중관계사, 동아시아사의 이론과 서술 방법 수립**

<사업규모>

- **한국상고사·고대사 정립**(연구과제 10건, 현지조사 2회, 편찬사업 등) : **499백만원**(전년 대비 445백만원 감액)
  ※ 당초 '한국고대사 정립 연구' 사업에서 사업명 변경
-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연구과제 3건 등) **: 82백만원**(전년 대비 2백만원 감액)
  ※ 당초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사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북방지역의 종족과 역사**(연구과제 4건 등) **: 123백만원**(전년 대비 15백만원 감액)
  ※ 당초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사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중국의 변경·민족정책과 대국화전략**(연구과제 6건 등) **: 191백만원**(전년 대비 70백만원 감액)
  ※ 당초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사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②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 660백만원(전년 대비 242백만원 감액)

※ 사업명 변경 : (당초)'한일역사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변경)'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개요>

-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한일 미해결 과제 관련** 방대한 국내외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분석, 학술적 연구 추진**을 통해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을 위한 학술적 기반 구축**
- 일본 역사왜곡의 역사적 근원과 실태 및 동북아국제질서와 역사문제 연구를 통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사업규모>

-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연구과제 4건 등) : **171백만원**(전년 대비 112백만원 감액)

※ 당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대륙침략전쟁과 수탈, 강제동원**(연구과제 5건, 학술회의 1건 등) : **169백만원** (전년 대비 51백만원 증액)

※ 당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강제동원 피해 등 국제 공동연구(72백만원)**
▫ 추진사유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 피해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 공유 및 조사를 통해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
- 한국 소장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및 북한 측 보유 일제강점기 재판 자료 등을 공유하여 강제동원 피해의 전체상을 밝힘
-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무 동원 피해실태 파악을 통한 연구 지평 확대

▫ 주요내용
- 일제강점기 피해실태 관련 자료 현황 및 연구 성과 비교 검토 학술회의 개최 등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연구과제) 2건×20백만원=40백만원
- (학술회의) 1회×32백만원=32백만원

- **일본군'위안부'**(연구과제 4건, 자료집 제작 2건, 학술회의 2회 등) : **190백만원**(전년 대비 3백만원 증액)

※ 당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료 집성 및 연구(76.5백만원)**
▫ 추진사유
- 일제식민지배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해제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밝히고자 자료 공유를 통한 연구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에 대한 목록 자료집을 발간, 이를 DB화 및 해외 배포
- 일본군'위안부'중 일본이 반박하고 있는 핵심 자료집을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 국제사회에 배포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증언을 영어로 번역, 전시상황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임을 분명히 밝힘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자료집) 1건×15.2백만원=15.2백만원
- (연구과제) 3건×20.4백만원=61.3백만원

※ 일본문서목록(2권), 중국어문서목록(2권), 미국문서목록(1권), 동남아시아문서목록(1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증언집 영문발간(1건)

- **전근대 한일관계**(연구과제 2건 등) : **50백만원**(전년 대비 25백만원 증액)

※ 당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연구과제 2건 등) : **80백만원**(전년 대비 209백만원 감액)

※ 당초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③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 662백만원(전년 대비 238백만원 감액)

※ 사업명 변경 : (당초)'영토주권수호' 사업→(변경)'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개요>

- 독도 관련 **현안 대응 및 전략·정책 개발**, 대정부 정책 건의
- 독도 관련 방대한 **국내외 자료의 체계화**를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및 심층연구**
- 해외 웹사이트상의 **동해·독도 관련 표기명칭에 대한 모니터링 및 표기오류 시정**
- 지명위원회 수로국, 정부기관 등 직접 방문, 교섭함으로써 **표기 확산 효과 극대화** 및 해외 저명인사 접촉,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활동**, 지도제작사 대상 국제지명표준화 세미나 개최
- 동해 표기명칭과 관련한 역사학적, 지리학적 연구를 통해 표기의 정당성 확보

<사업규모>

- **독도주권의 연원**(연구과제 7건 등) : **156백만원**(전년 대비 43백만원 증액)

※ 당초 '영토해양 관련 조사연구' 사업에서 사업명 변경

□ **독도주권의 연원(156백만원)**
▫ 추진사유
- 독도 관련 역사, 지리,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역사적 실체 등 학술연구서의 발간을 통해 일본학계에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적 정의 전파

▫ 주요내용
- 일본의 독도와 울릉도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를 통해 근대 시기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변화를 한국과 일본 사료 중심으로 파악
- 재단 정체성에 부합하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이후 한일 어업관계에 대한 국제법 연구
- 동북아 국가간 해양경계획정 사례 및 조약(협정) 연구
- 「섬을 통해 보는 동아시아 정치지리」 및 「서구 탐험가의 동해 진출과 독도의 발견」 출판을 위한 연구 수행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기획연구) 7건×22.3백만원=156백만원

- **일본 주장의 허구성 연구**(연구과제 6건 등) : **191백만원**(전년 대비 109백만원 감액)

※ 당초 '영토해양 관련 정책대응'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동해명칭표기**(연구과제 3건, 학술회의 7회 등) : **285백만원**(전년 대비 52백만원 감액)

※ 당초 '국제표기명칭오류시정' 사업 이동 및 사업비 내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로 전환

- **동아시아 영토·해양 연구**(연구과제 2건 등) : **30백만원**(전년 대비 120백만원 감액)

※ 당초 '영토해양 관련 정책대응'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④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869백만원(전년 대비 159백만원 증액)

※ 세항사업 중 '한중 역사현안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및 '한일 역사현안 분석 및 정책개발' 사업 등 이동 통합

<사업개요>

- 역사 현안 및 왜곡 동향 수시 모니터링, **한중 역사학 및 역사교육계간의 정례 학술 교류 및 지원**을 통한 역사 현안문제 해결 모색
- **일본 역사왜곡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제시 및 학술회의나 재단 입장 발표 등을 통한 직접적인 대응 추진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 및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 고양

<사업규모>

- **중일 역사현안 대응**(연구과제 2건, 학술회의 2회, 현지조사 10회, 전문가 간담회, 학술 동향 모니터링 등) : **152백만원**(전년 대비 154백만원 감액)
- **역사대화와 화해 모색**(연구과제 5건, 학술회의 4회 등) : **390백만원**(신규)

□ 동북아평화공동체 한중·한일포럼(200백만원)

▫ 추진사유
- 동북아 역사·영토·안보 갈등 요인으로 퇴색한 동북아공동체 담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역내 갈등을 넘어서는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중 및 한일 전문가 포럼
- 양국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양국간의 미해결과제 및 역사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논의

▫ 주요내용
- 포럼 주관(재단), 중국측 사무국(중국 북경대학 역사연구소), 일본측 사무국(일본 동경대)
- 포럼은 1년에 2차례 개최(서울, 북경 / 서울, 동경) 및 발표문 출판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한중포럼) 2회×50백만원=100백만원
- (한일포럼) 2회×50백만원=100백만원

□ 역사대화와 화해 모색 내 관련 연구 사업(190백만원)

▫ 추진사유
- 전근대 시대를 포함하여 현대까지 한일 양국의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현대적 의미를 돌아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역사인식 차이 극복
- 국제사회의 역사화해 사례를 연구(번역), 한일 및 한중 역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화해를 위한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착목하여 세계 각국의 역사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연구

▫ 주요내용
- 한일 교류와 우호관계에 기여한 인물을 고대, 중근세, 근대, 현대 등 각 시대별로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과 우호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 역사화해의 핵심 쟁점들을 법적, 도덕적, 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 당 연간 2개의 쟁점들을 선별하여 이론 분석
- 과거 지배, 피지배, 전쟁과 전후책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연구
- 역사화해 기획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화해 관련 연구자와 학술회의를 갖고 네트워크 확대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한일 역사화해 인물연구) 1건×35백만원=35백만원
- (역사화해 사례 연구) 1건×50백만원=50백만원
- (세계 역사교육과 역사화해 연구) 1건×40백만원=40백만원
- (역사화해 국제네트워크 구축) 1건×45백만원=45백만원
- (제주포럼) 1건×20백만원=20백만원

- **국내외 학계와 협력**(연구과제 6건, 학술회의 6회 등) : **229백만원**(전년 대비 137백만원 감액)
-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입문서 발간 1건, 역사사전 온라인 탑재 등) : **58백만원**(전년 대비 20백만원 증액)

□ **역사사전 온라인 탑재(20백만원)**
▫ 추진사유
- 2008~2016년 재단에서 진행한 '동아시아관계사사전' 편찬사업의 결과물 총 3,600여개 항목에 대한 검토, 조정, 재 집필 과정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 수행
▫ 주요내용
- 기 집필 원고 검토 및 수정 대상 원고 선정, 재 집필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역사사전 온라인 탑재) 1식×20백만원=20백만원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학술회의 1회) : **40백만원**(신규)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40백만원)**
▫ 추진사유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하여 한국을 비롯하여 한중일 3국이 향후 정치, 경제뿐만아니라 사회, 문화 및 역사 등 관련 분야에서 미래 공동체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향후 100년간 미래 비전의 내용을 논의하는 학술적 계기 마련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국제학술회의 개최) 1회×40백만원=40백만원

⑤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001백만원(전년 대비 586백만원 감액)

※ 사업명 변경 : (당초)'동북아역사독도 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 및 '바른역사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변경)'교류, 홍보, 교육 사업'
- 세항사업 중 '독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사업 이동 통합

<사업개요>
- 동북아지역 역사현안에 대한 **청소년, 대학생 등 일반시민의 바른 역사인식 함양 및 공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이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 동북아역사 및 독도 관련 현안에 대한 **교원 연수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인프라 구축 및 한·중·일 학생·교원 등 교류 내실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수호 교육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국내외 시민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사 현안에 관한 올바른 이해 확산**
- 국제 사회의 **한국사 왜곡과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 국제적 규모 **해외 역사 연구 기관, 전문 연구자들과 학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 활성화로 **한국사 연구 기반 확충**
- 언론 등 미디어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영토 현안에 대한 대중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국내외 홍보**

<사업규모>
- **동북아역사 교양총서 발간**(총서 발간 5건 등) : **70백만원**(신규)

□ **동북아역사 교양총서 발간(70백만원)**
▫ 추진사유
- 동아시아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교양총서 발간
-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및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 공유에 기여
▫ 추진내용
- 한국사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역사 관련 각종 역사교양서 발간
▫ 예산 산출근거
- (발간비) 5건×14백만원=70백만원

- **우리 연구성과 해외 확산**(번역·출판 3건 등) : **200백만원**(전년 동일)
- **동아시아사 교원연수**(교원대상 연수 4회 등) : **150백만원**(전년 동일)

※ 당초 '동아시아사 및 독도교육연수'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동해독도 홍보 및 교육**(독도지킴이학교 운영지원, 시민(재외동포 포함)교육 4회, 독도체험관 관리, 전시물 신규 제작, 영문저널 발간, 대중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 미디어활용 대응 등) : **1,156백만원**(전년 대비 239백만원 감액)

※ 당초 '동아시아사 및 독도교육연수' 사업에서 일부 사업명 변경 및 재분류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시민단체 지원 40건, 연구과제 4건 등) : **425백만원** (전년 대비 417백만원 감액)

※ 당초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에서 사업명 변경

⑥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 514백만원(전년 대비 242백만원 감액)

<사업개요>
- 역사현안 관련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대국민 역사인식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기여**
- 정보시스템 및 전산인프라 운영 관리를 통해 업무환경 전산화 기반 구축,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 추진**

<사업규모>
- **역사자료확충 및 기록물관리**(도서관 관리운영 등) : **230백만원**(전년 대비 156백만원 감액)
- **아카이브구축 및 전산관리운영**(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전산관리 운영, 홈페이지 통합 운영관리 등) : **284백만원**(전년 대비 86백만원 감액)

⑦ 연구관리 및 지원 : 315백만원(전년 대비 122백만원 감액)

<사업개요>
- 수요포럼, 전문가간담회 개최 및 수준 높은 **연구 사업 결과물 창출을 위한 연구 사업 평가와 의견수렴**
- **연구결과물을 도서로 발간**하여 연구 성과 확산

<사업규모>
- **연구역량강화 및 종합지원**(기획위원회 운영, 역사현안 일일동향 분석 및 관련 정보 수집 등) : **85백만원**(전년 대비 30백만원 감액)
- **도서발간**(도서발간 및 도서관리 등) : **230백만원**(전년 대비 92백만원 감액)

※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자료발간비를 동 항목으로 이동 통합

□ **도서발간(230백만원)**
- ▫ 추진사유
  - 수준 높은 연구성과물을 발간하여 정책연구와 역사현안 관련 연구 성과 확산 도모
- ▫ 주요내용
  - 한중, 한일 역사현안 관련 도서 발간 및 동북아역사논총, 영토해양연구 등 정기 학술지 발간
- ▫ '19년도 예산 산출근거
  - 도서 발간 : 16권×14.4백만원=230만원

○ **인건비 : 7,422백만원(전년 대비 667백만원 증액)**
- '18년도 인건비 : 6,755백만원
- '18년도 사업비 내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 전환분 : 536백만원
- 공통 인상분(1.8%) : 131백만원

○ **경상비 : 3,089백만원(전년 동일)**
- '18년도 경상비 : 3,089백만원

○ **자체수입 : △1,842백만원(전년 대비 482백만원 증액)**
- 이월금, 이자수입, 잡수입 최근 3년간 평균결산액 등 반영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202	**14,585**
■ 사업비	7,718	**5,916**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1,426 (계속4과제×356.5백만)	**895** (계속4과제×223.7백만)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902.4 (계속5과제×128.4백만)	**660** (계속5과제×132백만)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899.8 (계속4과제×225백만)	**662** (계속4과제×165.5백만)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709.6 (계속3과제×236.5백만)	**869** (계속3과제×146.3백만)+ (신규2과제×215백만) - 한중·한일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평화공동체 포럼 개최비 반영(200백만원) - 역사대화와 화해 모색을 위한 기획연구(190백만원)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반영(40백만원)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2,587 (계속3과제×862.3백만)	**2,001** (계속4과제×482.7백만)+ (신규1과제×70백만) - '동북아역사독도관련교육및연수' 사업과 '바른역사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통합
-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구축	756 (계속2과제×378백만)	**514** (계속2과제×257백만)
- 연구관리 및 지원	437.2 (계속2과제×218.6백만)	**315** (계속2과제×157.5백만) - **사업별로 분산 되어 있던 자료 발간비를 통합** 하여 관리
■ 인건비 ※ 인건비 예산범위 내 운용한 기간제근로자 활용 인력(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18.1.1)됨에 따라 산출근거에 변동사항 반영	6,755 (83명*×77.88백만)+ (9명**×23.4백만)+ (19명×4.3백만)*** * 임원 2명, 정규직 81명 ** 인건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3 *** 사업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19명은 소요인원파악 조사('17.7)당시 해당인원)	**7,422** (113명×65.68백만) - 사업비 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18.1.1)에 따라 사업비 내 무기계약직 보수를 인건비로 전환(21명, 536백만원) - 공통처우개선분 반영(1.8%, 131백만원)
■ 경상비	3,089 (12월×257.4백만)	**3,089** (12월×257.4백만)
■ 자체수입	△1,360	**△1,842** - 최근 3년간 결산액 등 반영

□ **지원 필요성**

○ 중국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심화·확산 및 일본의 노골화 되는 역사왜곡·독도영유권 도발 등에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연구 및 대응 전략 개발 필요

○ 역사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론 등 선제적 비전 제시 및 추진동력 확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16,870**	**16,202**	**14,585**	△1,617	△10.0
▪▪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1,460	1,426	895	△531	△37.2
▪▪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664	902	660	△242	△26.8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778	900	662	△238	△26.4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연구	1,083	710	869	159	22.4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3,041	2,587	2,001	△586	△22.7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856	756	514	△242	△32.0
▪▪ 연구관리 및 지원	508	437	315	△122	△27.9
▪▪ 인건비	6,505	6,755	7,422	667	9.9
▪▪ 경상비	3,089	3,089	3,089	-	-
▪▪ 자체수입	△1,114	△1,360	△1,842	△482	△35.4
❑ **비목(합계)**	**16,870**	**16,202**	**14,585**	△1,617	△10.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9,594	9,844	10,511	667	6.8
○○ 사업출연금(350-02)	7,276	6,358	4,074	△2,284	△35.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

○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6,470	○ **사업비 : 7,990**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460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664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778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1,084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641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856 - 연구관리 및 지원 : 507 ○ **인건비 : 6,505** ○ **운영비 : 3,089** ○ **자체수입 : △1,114**			
'18	16,202	○ **사업비 : 7,718**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426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02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90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71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587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756 - 연구관리 및 지원 : 437 ○ **인건비 : 6,755** ○ **운영비 : 3,089** ○ **자체수입 : △1,360**	16,202	○ **사업비 : 7,718**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426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02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90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71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587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756 - 연구관리 및 지원 : 437 ○ **인건비 : 6,755** ○ **운영비 : 3,089** ○ **자체수입 : △1,360**	-
'19	16,202	○ **사업비 : 7,718**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426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02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90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71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587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756 - 연구관리 및 지원 : 437 ○ **인건비 : 6,755** ○ **운영비 : 3,089** ○ **자체수입 : △1,360**	14,585	○ **사업비 : 5,916**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895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660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662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869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001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514 - 연구관리 및 지원 : 315 ○ **인건비 : 7,422** ○ **운영비 : 3,089** ○ **자체수입 : △1,842**	△1,617
'20	29,164	○ **사업비 : 10,500**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2,000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500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1,300	16,002	○ **사업비 : 6,378**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88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724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708	△13,162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 초		'18~'22 중기계획 변 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90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3,200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1,000 - 연구관리 및 지원 : 600 **○ 동북아역사관 건립 : 7,950** **○ 인건비 : 7,942** **○ 운영비 : 3,182** **○ 자체수입 : △41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93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141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550 - 연구관리 및 지원 : 337 **○ 인건비 : 7,942** **○ 운영비 : 3,182** **○ 자체수입 : △1,500**	
'21	29,164	**○ 사업비 : 10,500**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2,000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1,500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1,300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900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3,200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1,000 - 연구관리 및 지원 : 600 **○ 동북아역사관 건립 : 7,950** **○ 인건비 : 8,180** **○ 운영비 : 3,182** **○ 자체수입 : △648**	16,002	**○ 사업비 : 6,440**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98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731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715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939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162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555 - 연구관리 및 지원 : 340 **○ 인건비 : 8,180** **○ 운영비 : 3,182** **○ 자체수입 : △1,800**	△13,162
'22			16,002	**○ 사업비 : 6,440** - 중국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998 - 일본의 역사왜곡대응 연구 : 731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 715 - 역사화해와 동아시아사 정립 연구 : 939 - 교류, 홍보, 교육 사업 : 2,162 - 동북아 역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 : 555 - 연구관리 및 지원 : 340 **○ 인건비 : 8,180** **○ 운영비 : 3,182** **○ 자체수입 : △1,800**	16,002
연평균 증가율 (%)	20.02%		△0.4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6,202	14,585	△1,617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재정지출 고용효과	214	212	△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	14	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정원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4, 교육서비스> ※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상 공공기관 1인당 평균임금 0.68억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② = 212.4명**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113명 ※ '18년도 사업비 내 무기계약직 보수 인건비 전환(30명)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71.63억원 ÷ 0.72억원 = 99.4명 **□ 2018년 고용효과 : ① + ② = 214.2명**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83명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94.47억원 ÷ 0.72억원 = 131.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한 재단-민간 상생 협력 강화 필요 - 재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시 '초빙연구제도' 도입을 통한 비상임 연구위원, 공동연구인력 등 민간부문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정·현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정원 관리 방안 마련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북아역사재단 혁신계획(안)」 혁신과제 이행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5호, 2006.5.19.)

>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출연금 등)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2005.03.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설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결정
- 2005.04.08.『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7호) 제정
- 2005.04.20.『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출범
- 2006.05.02.『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국회 의결
- 2006.05.19.『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2006.08.18.『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 2006.09.22.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동북아역사재단지원	181.09	-	185.85	194.72	-	168.70	-	162.0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85.85 (185.85)	( )	( )	185.85 (185.85)	185.85 (185.85)	( )	( )
'16년	194.72 (194.72)	( )	( )	194.72 (194.72)	190.72 (190.72)	( )	4 (4)
'17년	168.70 (168.70)	( )	( )	168.70 (168.70)	168.70 (168.70)	( )	( )

※ (불용) '16년도 중국 오한기 박물관 유물전시 사업(4억원)
- 유물전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공모 지원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수시예산 미배정)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6,870		16,002	200	16,202	16,202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 연구(독도교육홍보자료 제작, 200백만원)

○ 집행현황

■ 기관운영출연금 : 9,844백만원

■ 사업출연금 : 6,358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과제명	평가대상년도	교육부		기획재정부	
		제출점수	평가등급	최종점수	평가등급
동북아역사재단지원	2011년	86	우수	70	보통
	2014년	70	보통	70	보통
	2016년	85	보통	-	-
	2017년	78	미흡	-	-

○ 국회 지적사항(최근 3년간 국회 교문위,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집행 필요('14년 결산 교문위)

·(시정) 한중역사교육자협의회 운영, 백두산 간도연구, 한·중·일 역사학술 번역 및 발간 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재단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운영 등 온라인 표기오류 시정 분야의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전담운영(2명)

* '14.10. 1명(영어), '16.12. 1명(영어, 불어)

- 동북아역사지도 사업 관련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연구진 구성과 철저한 검수 필요('14년 결산 교문위)

·(시정)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에 대한 재단 재심사 결과, 출판불가 판정('16.6.10), 동북아역사지도 재간행사업계획('16.9.)을 수립하여 동북아역사지도의 최종본 완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향후 사업 계획에 따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수진을 구성하여 검수를 추진하겠음

- 동북아역사재단 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15년 결산 교문위)

·(시정) 기관운영비의 78%를 차지하는 임차료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동북아역사관(독립청사)' 신축 추진 중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술회의 개최 주의 필요('15년 결산 교문위)

·(시정) 향후 학술회의 프로그램이 재단 설립 목적이나 사업 취지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없도록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부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중장기적 사업 추진전략 수립필요('16년 결산 교문위)

·(시정) 동북아역사재단의 고유기능 강화 및 내부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18.8.)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업 및 조직 관리에 만점을 기함으로써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 동북아역사지도 재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16년 결산 교문위)

·(시정) 동북아역사지도 재간행사업('16.9.)은 기 연구·개발된 내용 및 수집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나, 동북아역사지도 재간행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국가차원의 지도제작 기술 활용 및 역사사료 수집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음

- 불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개선 필요('16년 결산 교문위·예결위)

·(시정)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어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의하고, 업무매뉴얼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및 예산' 국회 승인 ⇒ 출연금 교부계획 통보 (교육부→재단)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출 (재단→교육부) ⇒ 출연금 교부 (교육부→재단) ⇒ 사업수행 (재단) ⇒ 사업결과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 (재단→교육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역사자료 평균이용건수 (단위:건)	목표	신규	8.6	24	(24.5)	(24.7)	'17년도 실적치와 '18년도 목표치 평균 대비 4%상향된 24.7건을 목표로 설정함	역사자료 원문서비스 이용건수 / 역사자료 제공건수	학술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DB사업과 자체DB사업을 대상으로 '동북아역사넷' 원문DB 서비스 평균 이용건수를 측정
	실적	-	23.79	23	-	-			
	달성도	-	276.6	96	-	-			
동북아역사·영토 관련 대정부 정책·동향 보고서 생산 (단위:건)	목표	60	95	97	폐기	-	-	동북아 역사·영토 관련 대정부 정책 동향보고서 생산건수의 총합	정부기관 제출 정책·동향보고서 목록 ※ 정식 절차를 생략한 일상적 업무 참고자료는 제외
	실적	93	95	97	-	-			
	달성도	155	100	10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 조성

○ **(역사·영토문제 조사 및 연구사업)** 동북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분석을 통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 독도 및 영토·해양 연구를 통한 독도 영유권 논거의 국제적 확산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 세계사 속의 한국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강화 및 한일 과거사 미해결과제와 역사왜곡 대응 중장기 연구 추진

○ **(역사·영토 현안 정책대응사업)** 역사 현안 정책형성 지원 및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역사갈등 쟁점별 맞춤 대응과 선제적 갈등 관리

· 시민단체 지원 및 교류, 학술교류 등을 통해 독도·동해 표기 정당성 강화 및 국제적 인식 확산

○ **(역사인식 교육·홍보 사업)** 동북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지식 함양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

· 독도체험관 전시해설 역량 강화 및 동북아 역사·독도 교원연수 강화, 맞춤형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

< 현장의 변화 >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일본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19.3. 예정)**

· 초등학교 사회과 : (현행) 언급없음 → (개정) "죽도와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언급할 것"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17.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302] 한국바로알리기(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바로알리기	1,063	1,066	941	△125	△11.7

* 사업코드 : 11 - 12 - 00 - 050 - 052 - 2400 - 2447 - 302

* 담 당 자 : 교육과정정책관(남부호), 동북아교육대책팀장(김영재), 교육연구사(김도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개선 활동(오류시정 및 한국 관련 내용 신·증설)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외국교과서 분석 - 오류시정활동(교과서 전문가 초청, 현지 방문, 교과서 세미나 등) -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국제교과서 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 해외민간단체 지원 등 **추진배경** • 주변국의 역사왜곡 대응 및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 성과 확대 요청 (**국회, 정부, 언론** 등) • 재외공관과의 공동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도출 확대 필요 • 주요국 뿐만 아니라 비주요국에 대한 외국교과서 분석 활동 강화 필요성 제기
사업기간	'03 ~ 계속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출연,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2019년도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추진 개선 방향

기존	개선
• 외국교과서분석 - 전수조사	• 외국교과서분석 **- 집중과 선택**
• 오류시정활동	• 오류시정활동 - **확대(전문가 네트워킹 강화)**
• 한국이해자료개발 - 표준화	• 한국이해자료개발 - **확대 / 현지화**
• 오류시정기반조성	• 오류시정기반조성 - **콘텐츠 실시간 유통체계 구축 / 안정화**

○ **【외국교과서 분석】: 외국교과서 분석을 위한 사업비 99백만원**

■ 외국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한국 관련 오류를 발견하고, 한국 관련 내용 증·신설 논리 개발을 위한 사업비 99백만원

* 분석대상국의 집중과 선택: 주요국 분석량 증대, 미분석국 확대로 전수조사 조기 종료 필요

■ 산출내역

- **외국교과서 분석**: 22개국×4.2백만원 ≒ **93**백만원

* 분석국가: ('18년) 27개국 → ('19년) 22개국

<선택과 집중형 분석 추진>

* [주요국, 개정임박국] -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필요

☞ (예) **미국, 영국, 프랑스** - 한국 관련 내용이 질적으로 높고, 서술양도 많은 국가임.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매년 서술 경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분석국] - 전체 대상국가 198개국 대비 현재 30%이상이 미분석 상태 → 신규 분석국의 지속적 확대는 필요 ☞ (예) **모리타니, 토고** 등

· **외국교과서 분석대상국(총 198개국)에 대한 전수 분석 완료가 시급함**

- 2017년도 말 기준 미분석 국가는 66개국으로 **전 세계의 약 34%가 여전히 미분석국가인 상태로 남아 있음.** 이에 대한 **전수조사(신규 분석국 확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전수 분석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오류시정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교과서 분석국가 현황(2017년도 말 기준)

구 분	분석대상국	기분석국	미분석국
국가수	198개국	132개국	66개국
비 율	100%	66.7%	33.3%

◆ 2015~2017년 연도별 외국교과서 분석국가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국가수	35개국	30개국	27개국	주요국, 개정임박국 포함 수치임

☞ 외국교과서 분석국가는 최근 3년간 예산상의 한계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각종 보고서 제작**: 4종×1.7백만원 ≒ 6백만원

○ **【오류시정활동】: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시정을 위한 사업비 314백만원**

■ 외국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시정 및 증·신설을 위해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 현지방문 개선활동, 교과서 세미나, 현지공관 협업 및 후속조치, 해외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314백만원

■ 산출내역

- **초청/현지/세미나 활동 등**: 10회×27.4백만원 = **274**백만원

* 오류시정활동 조정: ('18년)12회 → ('19년)10회

· 최근 각종 **언론 및 국회**로부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매년 <외국교과서 개선 성과 제고> 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회의원 박주선(2017. 10. 언론보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외국교과서 개선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별 맞춤형 오류시정활동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분석국가수 대비 당해년도 오류시정활동 비율**은 매년 50% 미만임

◆ 전년도 분석국가수 대비 차년도 오류시정활동 비율

구 분	2015	2016	2017	비고
오류시정 활동비율	**46.7%** (14회/30개국)	**37.14%** (13회/35개국)	**43.33%** (13회/30개국)	

· 해당 국가별 안정적인 맞춤형 오류시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외국교과서 개선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음

◆ **오류시정활동에 따른 교과서 개선 기반 강화 사례**(2017년도)

(아르헨티나 교과서 개선)

· 추진사항 - 아르헨티나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아르헨티나 교과서 관계자 초청 연수"** 수행

· 추진결과 - **2017년도**에 아르헨티나 **<지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 신설**

→ 신설내용: **대한민국의 도시(도시 인구와 도시, 한국의 도시 시스템, 서울의 급속 성장) / 한국 관련 사진 2매 / 한국의 도시 체계 관련 전문가 인터뷰**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한정된 예산 지원 상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오류시정활동**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교과서 개선 성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외국교과서 개선 실적 - **(역대 최고치 달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외국교과서 내용 개선 건수	121	151	223	**277**

☞ 2019년도에도 교과서 내용 개선 대상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한 후 교과서 개선을 위한 「**오류시정활동 확대 추진**」 필요

(예시) **미국** - 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서 초청연수 정례화를 통한 집중공략 / **인도** - 남아시아 협력 거점국으로서 호혜적 협업 공고화 필요 / **독일** -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에 영향력 미치고 있는 주요국 / **모로코** - 교과서 기 분석 완료국이나 해당국 인적네트워크 부재로 오류시정에 난항

- **해외민간단체 지원** : 4개×10백만원 = **40**백만원

  * 해외민간단체 지원수 조정: ('18년) 7개 → ('19년) 4개

· 해외민간단체 지원은 **단순 1회성 성격의 지원이 아니라** 해외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바로알리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당국의 교과서 내용 개선 기반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해외민간단체지원**) **한국바로알리기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현지에서의 자발적인 교과서 내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 목표

- 대표적 성공 사례(2017년도)

○ 일자: 2017년 10월 28일
○ 장소: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 연방대학교
○ 주제: "러시아 카잔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 관련 교육세미나 - 양국교과서 개선 방안"
○ 목적: **타타르공화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한국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정보 및 자료 제공**
○ 추진배경
- 본 세미나를 주최한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 연구소』**는 교육부 소관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민간단체지원사업'의 지원단체**임
- 본 연구소는 **2016~2017년도 해외민간단체지원사업의 지원 단체로 선정·지원**
○ 향후 기대효과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교과서 오류시정활동과의 연계**를 통해 **러시아 교과서에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이해자료개발 및 배포】: 개선 대상국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한국이해자료개발 및 배포를 위한 사업비 93백만원**

■ 현지어로 제작된 맞춤형 한국이해자료개발 및 배포를 통한 오류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93**백만원

* 최근 한국 관련 내용 증·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외국교과서 전문가 증가, 현지어로 된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지속적 요청 쇄도 → 오류 시정 제고를 위한 맞춤형 한국이해자료 제작 필요

■ 산출내역 :

- 집필: **2**종×15백만원 = **30**백만원
- 제작: 3종×20백만원 = **60**백만원
- 배포: 100처×0.03백만원 = **3**백만원

* 집필('18년 1종→'19년 2종) / 제작('18년 3종→'19년 3종) / 배포('18년 270처→'19년 100처)

· **한국이해자료 다국어판 소요 충족(재확대 제작) 필요**

- 한국이해자료 소관 예산 감소로 인하여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대표적 한국이해자료**이며 외국교과서 관계자 접촉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포코리아」가 **기존의 4종에서 1종(영어판)으로 축소 제작**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별 맞춤형 오류시정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료인「인포코리아」의 3종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으로의 **재확대 제작**이 필요

【인포코리아】		**외국의 교과서 제작진과 교사 등** 한국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해 개발된 한국 소개 잡지임. 인포코리아는 외국의 교과서 저자나 편집자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고할** 수 있고, **교사들이 수업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함**. 또한, 인포코리아는 **한국의 문화, 사회, 역사, 경제 관련 주제를 특집으로 제공**

· **[코리아인더월드] 디지털 파일(10개국 언어) 확대 제작 필요**

- 「**코리아인더월드**」는 **해외의 교육현장에서 보조 교재**로 채택되고 있으며, **해외 공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 외국교과서 집필자들이 **교과서 집필·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식의 파일 제작이 필요: 현재 5개국어 제작(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및 활용 중
- **10개국어(루마니아어, 폴란드어, 아랍어 등) 디지털 파일 추가 제작** 필요→ 대상국 현지의 한국이해자료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코리아 인더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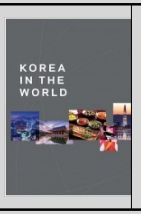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음. <코리아인더월드>는 **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요약적 한국소개서**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발자취를 모아 간명하게 설명**함. 한국을 교과서 안에 넣고 싶은 교과서 집필자와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자료임

◆ 연도별 한국이해자료배포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한국이해자료 배포수	3,078건	3,218건	2,538건	

※ 2017년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400건) 외 2,138건의 한국이해자료를 배포

◆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맞춤형 한국이해자료 요구** 사례

1. 주**가봉**대사관(17. 8) - **가봉 현지「고등학교 교과서 부교재」**
2. 주**짐바브웨**대사관(17. 12) - **「한국의 경제발전사 설명 영문자료」**

○【오류시정기반조성】: 홈페이지, 온라인 뉴스 레터 제작 및 국제도서관 운영 등 오류시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53백만원

■ 홈페이지, 온라인 뉴스 레터 제작 및 국제교과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53백만원

* 홈페이지를 해외 교과서 네트워크 소통의 장, 한국이해자료 제공이 용이한 환경으로 개선 필요

* 물가상승을 고려한 홈페이지 및 국제교과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의 증액 필요

■ 산출내역 :

- 홈페이지* 및 국제교과서도서관** 운영: 12개월×4.4백만원 ≒ 53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 대·내외적 관심 제고를 위한 한국 관련 콘텐츠 제공 및 한국바로알리기 홍보 등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 국제교과서도서관 운영: 외국교과서 및 사업결과물을 수집·소장하여 국내 교과서 연구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외국교과서 연구활동에 기여

· 『국제교과서도서관』 소장 **외국교과서 자료의 적정 관리** 및 외국 **현지(재외공관 포함)로부터 원활하게 교과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 운영비(교과서 구입비, 국제 EMS 배송비 및 각종 소모품 및 장비 구입·유지비)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현실화 필요

◆ 국제교과서 도서관 외국교과서 소장 현황

구분	국가수	소장권수	비고
외국교과서 소장 현황	총 141개국	13,801권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및 온라인 뉴스 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종 소요경비 증액 필요(홈페이지 개선 - 불어 홈페이지 추가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뉴스레터 다국어 번역료 및 한국이해자료 온라인 접근 활용 시스템 구축 소요 비용 등)

◆ 연도별 온라인 소식지 발송 건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비고
발송건수	15,200건	15,900건	16,360건	

○【운영비】: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382백만원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을 위해 '18년 대비 동일 수준 예산액

※ 사업 투입 인력(전문원 / 석사급 이상)에 대한 인건비(4대 보험 및 퇴직연금 포함) 및 사업 운영 경상경비 필요

■ 산출내역 :

- **사업 투입 인력 인건비** : 7명×53.86백만원 ≒ 377백만원

※ 현재 전체 대상국 198개국에 대해 7명의 소수 인력이 분석, 오류시정활동 및 한국이해자료개발 추진 중

- **경상경비**: 12월×0.42백만원 ≒ 5백만원

※ 사업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각종 노후 기자재 교체 및 기타 제반운영 경비 필요

구 분	'18예산	'19예산
□한국바로알리기	1,066백만원	941백만원
■ 외국교과서분석	**121**백만원 (분석국가 27개국)	**99**백만원 (분석국가 22개국)
■ 오류시정활동	**422**백만원 (초청연수, 현지방문 등 12회) (해외민간단체지원 7개)	**314**백만원 (초청연수, 현지방문 등 10회) (해외민간단체지원 4개)
■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85**백만원 (집필 1종/ 제작 3종) (배포 270처)	**93**백만원 (집필 2종 / 제작 3종) (배포 100처)
■ 오류시정기반조성	**56**백만원 (홈페이지, 국제교과서 도서관 운영)	**53**백만원 (홈페이지, 국제교과서 도서관 운영)
■ 운영비	**382**백만원 (인건비 7명, 경상경비)	**382**백만원 (인건비 7명, 경상경비)

□ 지원 필요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오류시정 및 내용 증·신설 개선 활동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임

○ **(외국교과서 상의 한국 이미지 개선 필요)**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가 틀렸거나, 기술되었더라도 한국을 후진국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외국의 차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따라서,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개선, 증·신설하기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 유일의 외국교과서 분석·오류시정활동 전문기관)** 이러한 활동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외국교과서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을 피할수 있고 사업 수행 및 성과 도출이 더욱 용이하므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매우 높음

○ **(국회 및 언론의 주요 관심 사항)** 한편, 언론 및 국회에서는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및 이에 대한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매년 외국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교과서 오류시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성과 "

□ 외국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시정 및 내용 증·신설 성과 지속적 확대!

【한국 관련 내용 개선 성과 창출】

• 한국 관련 내용 개선 성과

구 분	2015	2016	2017
개선 국가 수	5개국	23개국	24개국
개선 건수	151건	223건	277건

*2017년도 개선 성과인 [277]건은 역대 최고치임!

교과서 개선 대표 사례	
	(체코/현대사/초등학생용)
	"북한의 항구 인천" ➡ "서울과 가까운 인천"
	(프랑스/지리/고등학교 3학년)
	(한국 관련 내용 신설) 한국의 면적, 수도, 인구 등 개괄 정보 / 경제 성장 및 문화 / 주요 도시, 교통망(지도) 등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지속적 언론보도 ! "

- **2014년(YTN 뉴스, 연합뉴스 외 주요언론 6개사) : 외국교과서 한국 왜곡 심각 대책 필요**

. 한국에 관해 잘못된 내용을 담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서술한 외국 교과서의 5년간 오류 시정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세계 110개국 교과서 977권 가운데 461권(47.2%)에서 한국과 관련한 오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한중연이 해당국에 오류 시정을 요청한 881건 가운데 실제 시정된 사례는 101건(11.5%)에 불과했다. (중략)

. 한중연은 교육부 위탁을 받아 세계 교과서 오류 조사와 시정 작업을 하고 있으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14. 10. 1.)

- **2014년(연합뉴스 외 주요언론 7개사) : 외국교과서 한국관련 오류시정율 11%에 불과**
- **2014년(SBS 뉴스) : "일본옷 입는 한국? 외국 교과서 '한국 왜곡' 심각"**

. 외국교과서 중에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중국과 혼동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담은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시정을 요구해도 고쳐지는 건 겨우 10% 정도에 불과하여 대책 마련 시급

- **2015년(한수진의 SBS 전망대 / 인터뷰) : "한국이 중국어 사용하는 국가?...외국 교과서 엉망"**

. 외국교과서의 우리나라와 관련한 오류 심각 - 우리나라 위치나 나라 이름 등 단순 사실 관계 오류 사례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경우,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

- **2016년(연합뉴스) : "칠레 교과서에 타지마할 대신 청계천 사진 수록"(사업성과)**
- **2016년(아주경제) : "「박혁거세 신화」 배우는 과테말라 어린이들 "(사업성과)**
- **2016년(KBS) : "인도 1억 명이 보는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록 전망"(사업성과)**
- **2016년(KBS뉴스) : "남한이 북한 공격? 외국 교과서 오류 심각"**

. 코스타리카 교과서(2003~2004년 사이, 남한이 북한 선박을 공격), 러시아 교과서(한국에 소련군이 들어간 직후부터 친소 단일 정부가 수립), 라오스 교과서(90년대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여러차례 만남), 룩셈부르크 교과서(한국이 스페인 점령지), 예멘 교과서(한국이 영국 식민지)... 지난 4년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전 세계 교과서는 90여 종에 이름

- **2017년(KBS) : "한국 경제 발전, 美 교과서에 실린다"**
- **2017년(조선일보) : "美 고교 세계사 교과서, 석굴암·'한강의 기적'도 싣는다 "**
- **2017년(KBS) : "인도 교과서에 가야 김수로왕-허왕후 설화를"**
- **2017년(NEWS1) : "인도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 확대된다" - 교육부, 인도 표준교과서 편찬기관과 업무협약 →** ***(교육부 차관 언급: "인도 NCERT는 인도 전역의 초·중등학교가 채택·활용하고 있는 표준교과서를 편찬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있는 일" / "앞으로도 교육부와 한중연은 한국바로알리기를 위해 해외 교과서 편찬기관·출판사 등과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어로알리기	1,063	1,066	941	△125	△11.7
▪ 외국교과서 분석	121	121 (분석 27개국 × 4.2백만) (보고서 5종 × 1.5백만)	99 (분석 22개국×4.2백만) (보고서 4종×1.7백만)	△22	△18.2
▪오류시정활동	430	422 (초청등 12회 × 29.3백만) (민간단체지원 7개 × 10백만)	314 (초청등 10회×27.4백만) (민간단체지원 4개×10백만)	△108	△25.6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85	85 (집필 1종× 15백만) (제작 3종 × 20백만) (배포 270처 × 0.04백만)	93 (집필 2종×15백만) (제작 3종×20백만) (배포 100처×0.03백만)	8	9.4
▪오류시정기반 조성	56	56 (12월 × 4.6백만)	53 (12월 × 4.4백만)	△3	△5.4
▪운영비	371	382 (인건비 7명× 53.86백만) (경상경비 12월× 0.42백만)	382 (인건비 7명× 53.86백만) (경상경비 12월× 0.42백만)	-	-
□ 비목(합계)	1,063	1,066	941	△125	△11.7
○ 출 연 금 (350-02)	1,063	1,066	941	△125	△11.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오류시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형』 대상국가 선정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교과서 수집·분석활동 강화
- 오류시정활동 협력 체계 강화
- 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과 제고 기반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063	▪ 외국교과서·분석 : 121 ▪ 오류시정활동 : 430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85 ▪ 오류시정기반조성 : 56 ▪ 운영비 : 371			
'18	1,066	▪ 외국교과서·분석 : 121 ▪ 오류시정활동 : 422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85 ▪ 오류시정기반조성 : 56 ▪ 운영비 : 382	1,066	▪ 외국교과서·분석 : 121 ▪ 오류시정활동 : 422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85 ▪ 오류시정기반조성 : 56 ▪ 운영비 : 382	-
'19	980	▪ 외국교과서·분석 : 125 ▪ 오류시정활동 : 442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11 ▪ 오류시정기반조성 : 38 ▪ 운영비 : 264	941	▪ 외국교과서·분석 : 99 ▪ 오류시정활동 : 314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93 ▪ 오류시정기반조성 : 53 ▪ 운영비 : 382	△39
'20	1,764	▪ 외국교과서·분석 : 211 ▪ 오류시정활동 : 715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90 ▪ 오류시정기반조성 : 90 ▪ 운영비 : 558	982	▪ 외국교과서·분석 : 125 ▪ 오류시정활동 : 442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11 ▪ 오류시정기반조성 : 38 ▪ 운영비 : 266	△782
'21	1,764	▪ 외국교과서·분석 : 211 ▪ 오류시정활동 : 715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90 ▪ 오류시정기반조성 : 90 ▪ 운영비 : 558	963	▪ 외국교과서·분석 : 113 ▪ 오류시정활동 : 439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08 ▪ 오류시정기반조성 : 35 ▪ 운영비 : 268	△801
'22			953	▪ 외국교과서·분석 : 111 ▪ 오류시정활동 : 435 ▪ 한국이해자료개발·배포 : 106 ▪ 오류시정기반조성 : 33 ▪ 운영비 : 268	953
연평균 증가율 (%)	13.5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066	941	△12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8**	**16**	△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2	1	△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 교육서비스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4> - 교육서비스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① + ② = **16**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3.77억원 ÷ 0.4812억원 = 7.8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5.64억원 ÷ 0.72억원 = 7.8명 □ **2018년 고용효과 :** ① + ② = **1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3.77억원 ÷ 0.4812억원 = 7.8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6.89억원 ÷ 0.72억원 = 9.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효과 증대 필요 - 동 사업은 권역별 전문인력의 직·간접고용효과가 큼(권역별: 최소 6명의 간접 고용 효과 발생(분석: 1명, 자료개발: 집필, 감수 2명, 온라인화 1명, 오류시정활동: 통역 1명, 번역 1명), 특히, 아랍어권 전문가의 직접고용은 언어의 희귀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권역의 사업 수행시 간접 고용효과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판단함(최소 8명이상)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2조

○ 추진경위
- 1979년 1월「한국관시정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1980년 4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사업 이관
- 1981년 9월 문화공보부에서 사업총괄, 교과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
- 2001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주무기관으로 선정
- 2003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사업이관
- 2005년 2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2011년 세출예산 변경(민간경상보조금(03~10) → 사업출연금(1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한국바로알리기	11.28	12.79	-	11.51	-	10,63	-	10.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79** ( )	( )	( )	12.79 ( )	**12.79** (12.15)	( )	(0.64)
'16년	**11.51** ( )	( )	( )	11.51 ( )	**11.51** (11.22)	( )	(0.29)
'17년	**10.63** ( )	( )	( )	10.63 ( )	**10.63** (10.26)	( )	(0.37)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063	-	1,066	-	1,066	1,066	100

○ 집행현황: 1,066백만원 집행 완료('18. 12월 기준)

- 외국교과서 분석 : 121백만원
- 오류시정활동 : 422백만원
-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 85백만원
- 오류시정기반조성 : 56백만원
- 운영비 : 382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국가브랜드위원회 정책과제 평가결과 최우수과제 선정**

- 최우수과제 선정은 21개 정부부처의 69개 과제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브랜드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국가브랜드 정책과정(계획-집행-성과)별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중 글로벌 소통강화 분야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

▪ **국회, 언론의 관심 증대**

- 국회, 언론 등에서는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주시**하고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강조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년도	구분	주요내용
2014	2013년도 결산 교문위 검토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담당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신분 불안정과 과다한 업무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관련 전문인력의 정규직화 추진** · 14년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 결과 전환 승인 불가(14년 9월) · 15년도 : 정규직 전환 요청 관계 부처와 재협의 (6월) 연구인력(계약직) 1명 증원, 기재부에 정규직 전환 7명 신청 (7월) 기재부와 정규직 증원 협의 실시 (12월) 기재부에서 정규직화 적극 검토 · 16년도 2월 : 무기계약직 전환 승인(☞ '5명' 무기계약직 전환 / 16년 8월)

년도	구분	주요내용
2015	2014년도 결산 교문위 검토	- 한국이해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의 보급 확대 방안 강구 ☞ **한국이해자료 출판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한국이해자료: '유교' 및 '서울' ('15.10.), '주거' 및 '종교'('16.2) - 미분석국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을 추진하고 시정률 제고에 힘을 기울여 사업이 실용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 **미분석국의 교과서 수집 및 분석 실시** · ' 15년 35개 분석 국가 중 가나, 동티모르 등 18개국을 신규 분석('14년, 1개국) ☞ **오류시정활동 확대를 통한 개선 성과 제고** · 최근 3년간 오류 발견 국가 대비 오류시정 활동 현황 분석, 자체 오류시정 활동 및 외교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개선 성과 제고 (14년 121건 → 15년 151건 → 16년 223건)
2016	2015년도 결산 교문위 검토	- 사업목적에 맞게 해외단체나 학회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외교부의 민간단체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사업목적에 맞는 해외 민간단체 지원 추진 및 유관기관과 지원단체 중복 방지** · 해외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과 부합되게 추진: 16년도 해외 민간단체 지원(총 8개국 9개 기관) · 지원 사업 유관기관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심사 강화, 업무 협의 정례화(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 16.7, 연2회 정례화(1월·7월)) - 교육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한시적 조직이 아닌 고정된 전문부서에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상설 소관 부서 운영** · 교육부 現 동북아교육대책팀에서 동 사업 담당
	2015년도 교문위 국정감사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관련 오류 시정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좀더 적극적인 오류 시정 활동을 해야할 것 ☞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활동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 2016년도 총 443권의 외국교과서 분석 성과 도출 · 외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내용 개선 성과 도출(역대 최대, 총 223건)

▪ 최근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관련

- 2017년도 통합 재정사업 자체 평가 - [우수]
- 2018년도 통합 재정사업 자체 평가 - [미흡]

▪ **관련 언론보도 내용**

- 2018년(연합뉴스) : **"인도 고교생들 '한국 촛불혁명' 교과서로 배운다"**
- 2017년(KBS) : "**한국 경제 발전, 美 교과서에 실린다**"

- 2017년(조선일보) : "**美 고교 세계사 교과서, 석굴암·'한강의 기적'도 싣는다** "
- 2017년(KBS) : "**인도 교과서에 가야 김수로왕-허왕후 설화를**"
- 2016년(연합뉴스) : "칠레 교과서에 타지마할 대신 청계천 사진 수록"
- 2016년(아주경제) : "「박혁거세 신화」배우는 과테말라 어린이들 "
- 2016년(KBS) : "인도 1억 명이 보는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수록 전망"
- 국회의원 박주선(2017. 10. 언론보도):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기관명	설립 및 인원	사 업 내 용	예 산
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 국제교과서 연구소)	-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 (1975년 법제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보장 기여를 위해 국가 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 개최 - 자국 역사·지리 교과서의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 수정	-주정부 산하에서 재정 지원 받음
일본 (국제교육 정보센터)	- 외무성 외곽단체 (1958~2004)	- 해외 교육 자료의 조사 오류 정정, 일본 중심의 표현으로 정정 및 일본 소개자료의 제작·배포 - 해외 교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일본 연수 실시를 통한 친일본화 전략 -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에 대한 미화 내용이 외국교과서에 발견되는 것은 이기관의 활동에 기인한 경우가 상당수임	- 기금 50억엔 (약500억원)으로 출발, 외무성 및 일반기업 후원
영국 <리얼 UK> (영국의 참모습알리기)		- 영국의 모습을 외국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영국 여행 지원 - 영국으로 외국 유학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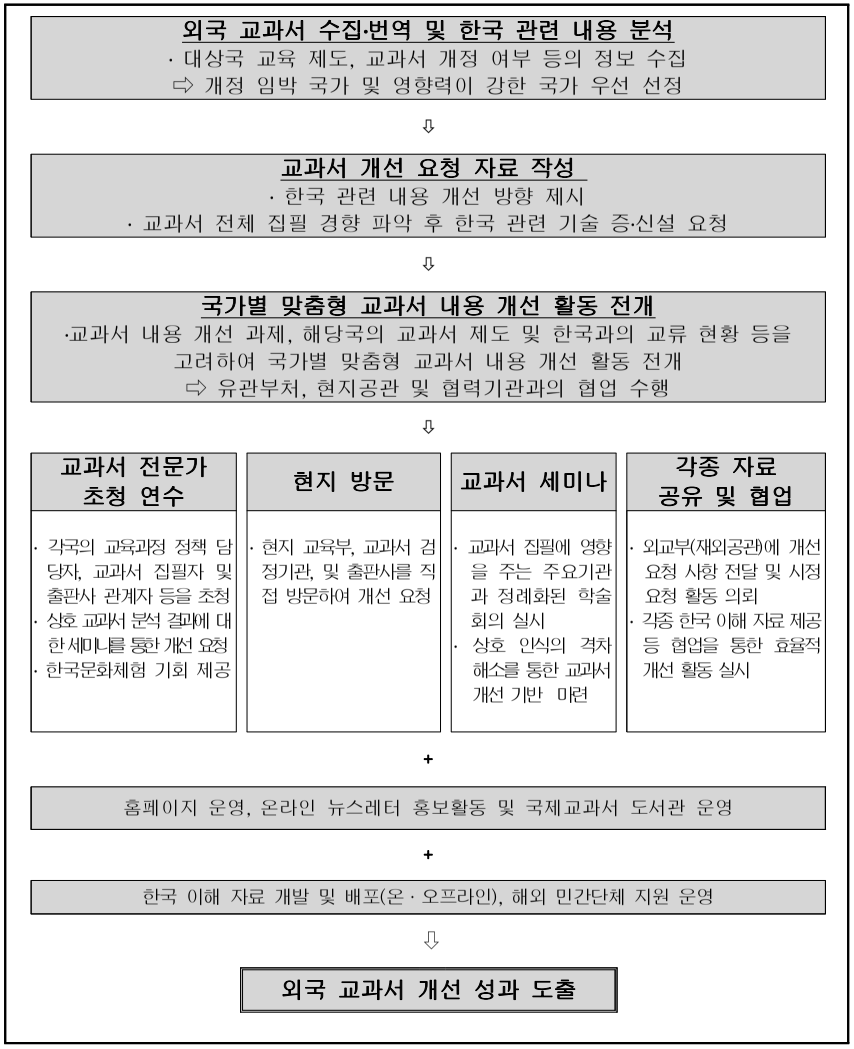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국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오류시정 비율 (%)	목표	14.25	35.42	56.34	(68.69)	(69)	최근 3년간 「오류시정요청 건수 대비 오류시정 건수」의 평균값 기준	최근 3년간의(오류시정 건수 / 오류시정요청 건수)×100	1.외국교과서분석 결과(오류발견건수 및 내용증신설대상건수) 2.각종 오류시정활동을 통한 오류시정 및 내용 증신설 건수 [자료출처] 오류시정요청 자료 및 오류시정 성과보고서
	실적	33.86	51.83	57.56	-	-			
	달성도	238	146	102.17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 참고 1.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성과 관련 언론 보도 내용 1부
- 참고 2.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연도별 실적 현황 1부

참고 1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성과 관련 언론 보도 내용

- 2018년(연합뉴스): "인도 고교생들 '한국 촛불혁명' 교과서로 배운다" -

연합뉴스

인도 고교생들 '한국 촛불혁명' 교과서로 배운다

입력 2018.05.10 15:00 수정 2018.05.10 19:50

▌인도 표준교과서 세계사에 한국 관련 내용 대폭 보강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평화적인 집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이 인도 고교생 수백만 명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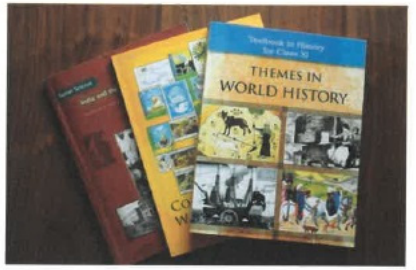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 등 한국 관련 내용을 보강한 개정 인도 표준 교과서들

10일 인도 국가교육연구훈련위원회(NCERT)에 따르면 연방 표준 교과서를 만드는 이 기구가 올해 새로 발행한 11학년(고교 2학년) 세계사 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등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이끈 2016년 촛불 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발전에 빚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화주의를 고양한 것은 시민의 높아진 정치의식"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과서는 이를 포함해 '근대화의 길'을 주제로 한 11과에서 조선 시대 말부터 시작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근대화 과정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초점을 맞춰 6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선출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이은 3번째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취임 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친구를 비밀리에 국정에 관여하게 해 전국적인 시위에 직면해 탄핵당했다고 서술했다.

(뉴델리=연합뉴스) 니확진 특파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 등 한국 관련 내용을 보강한 개정 인도 표준 교과서들

또 한국이 1997년 외환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국의 경제성장이 민주화에 기여했는지 등을 연습문제로 제시했다.

NCERT는 10학년 역사 교과서에는 인쇄술의 발달을 설명하며 팔만대장경, 직지 등 한국의 인쇄기술 관련 내용을 추가했고 12학년 정치학 교과서에도 한국 관련 설명을 보강했다.

이들 교과서는 이미 각급 학교에 보급돼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번 학기 수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NCERT는 전했다.

NCERT 국제관계국장인 P.K. 만달 박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전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일본, 중국, 대만 등에 관한 설명에 비해 한국 관련 내용이 부족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 개정 교과서는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인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별로 교과 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도 내 3만여 개 초중고교가 NCERT의 표준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년별로는 수백만 명, 전체적으로는 1억 명에 이르는 학생이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셈이다.

또 주 정부 산하 기관이나 민간에서 만드는 교과서들도 NCERT의 표준교과서를 참고하기에 이번 개정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NCERT는 지난 3년간 주인도한국대사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인도-한국 간 교육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인도 뉴델리 국가교육연구훈련위원회(NCERT)에서 열린 한국 인도 교과서 및 교육협력 워크숍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원영균 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오른쪽으로), 주인도한국대사관 이해광 공사(참사), 대사대리, 호쿠시에서 세나파티 NCERT 원장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rao@yna.co.kr

- 2017년(KBS): "한국 경제 발전, 美 교과서에 실린다" -

'한국 경제 발전', 美 교과서에 실린다

입력 2017.07.28 (19:14) | 수정 2017.07.28 (19:22) | 637 뉴스 7

<앵커 멘트>

미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에 내년부터 한국 관련 분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치, 경제적 발전과 독창적 문화 유산이 주로 기술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화됐지만,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룩한 경제 발전의 기적.

독재 정권에 맞서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민주화 과정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세계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한국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 교과서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간단한 언급만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는 한국이 두 쪽에 걸쳐 소개됩니다.

특히, 문화 유산 가운데 석굴암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사진도 함께 실립니다.

<인터뷰> 서경덕(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 "그만큼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갔다는 증거입니다. 교과서에 실렸다는 자체는 미국 내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조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 교과서 집필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주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다희(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 " 경제 성장 모습을 직접 저희 한국 방한때 경험을 하시고 굉장히 놀라워 하셨습니다. 왜냐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 있는 나라인 점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새 세계사 교과서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참고 2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연도별 실적 현황

■ **오류시정 및 증.신설 성과**: 113개국 898건 (※ 중복국가제외시 : 52개국)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1	2	2	6	5	5	2	6	6	5	6	15	5	23	24	113
건수	1	2	3	22	11	8	2	10	28	11	28	121	151	223	277	898

■ **외국교과서 분석**: 344개국 3,832책 (※ 중복국가제외시 : 132개국)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31	12	11	20	24	14	15	20	23	25	27	30	35	30	27	344
	중복국가제외시 : 93개국											신규 5	신규 18	신규 9	신규 7	132
분석 권수	139	148	87	380	326	68	84	195	197	252	249	448	382	423	454	3,832

■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오류시정활동**: 89개국 104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1	8	4	8	5	7	3	3	4	5	7	9	9	9	7	89
횟수	3	7	6	9	7	9	5	4	5	6	8	10	9	9	7	104

■ **외국교과서 세미나**: 39개국 30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2	5	2	3	2	3	3	1	2	3	5	2	2	2	2	39
횟수	2	1	4	3	2	2	2	1	2	1	2	2	2	2	2	30

■ **현지방문 오류시정활동**: 56개국 39회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3	12	3	8	4	4	3	1	1	·	4	4	3	3	3	56
횟수	3	7	4	4	3	3	2	1	1	·	2	2	3	2	2	39

■ **해외민간단체 지원**: 78개국 97개 단체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수	1	3	·	·	3	4	6	7	7	7	8	9	9	8	6	78
단체수	1 (9)	3 (7)	· (3)	· (7)	4 (6)	6 (11)	7 (7)	8 (8)	8 (8)	10 (10)	12 (12)	12 (12)	11 (11)	9 (9)	6 (6)	97 (126)

※ **('03-'08년) 국내·외** 민간단체 지원 / **('09년~) 해외** 민간단체 **집중** 지원

■ **한국이해자료 개발 및 배포**: 88(35*)종 4,291처 52,527부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개발종	3	6	10	2	6	5	6	3	12(8*)	10(4*)	5(3*)	6(6*)	7(7*)	4(4*)	3(3*)	88
배포처	·	·	·	·	446	807	355	472	482	390	262	407	455	174	41	4,291
배포수	·	·	·	·	3,696	7,275	7,836	8,087	5,525	3,861	3,981	3,432	3,078	3,218	2,538	52,527

(*) 디지털자료

[301]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5,226	5,369	5,682	**313**	**5.8**

* 사업코드 : 11 - 12 - 0 - 050 - 052 - 2400 - 2448 - 301
* 담 당 자 : 편사부장(김우철), 기획협력실장(박진희), 편사연구사(이미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한국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국내외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범국가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책 수립과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문헌자료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근현대사 사료에 대한 종합적 현황조사와 수집을 통해 한국사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한국사 연구의 심화 및 체계적 정립을 위한 사료집 및 역사서 편찬·간행·정보화 - 한국사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사료고종시대사 등의 시대사 자료와 한국사료총서 등 주제별 자료의 편찬·간행 - 한국역사정보포탈서비스 운영·시스템 관리, 기본사료 정보화, 한국사 콘텐츠 구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한국사 연구 역량 강화 및 역사지식정보 향유 기회 확산 - 남북한 역사인식 공유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일 대비, 인접국과의 역사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 - 대한민국 대표 역사기록물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영역하여 세계 지식자원화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한국사 사료 조사·수집·정리 - 사료 수집 : 국외 문헌사료 수집 1,000만장, 국내 문헌사료 수집 200만장, 국내 지역사 기초조사 360개 시군구·읍면동 문헌사료수집 1,000만장, 구술자료 생산 10,000시간 - 보존·공개 : 자료정리 DB구축 200만건, 구술동영상 DVD 360개 제작, 디지털 이미지 1,000만장, 간행 200책 ○ 한국사 연구·편찬·정보화 - 한국사료총서, 사료고종시대사,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 등 간행 5,000책 - 포털서비스 40세트, 기초사료 정보화 10,000책 - 남북협력·국제교류 100회 - 조선왕조실록 영역 67책
지원조건	국고
사업시행주체	국사편찬위원회(직접수행)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내 사료 조사 수집 : 778백만원

- 원본사료 수집비 : 174백만원(17.4건×10,000,000원)
-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비 : 231백만원(12.4과제×18,600,000원)
- 구술자료 수집비 : 205백만원(410시간×500,000원)
- 수집자료 정리비 : 111백만원(1.85만건×6,000원)
- 편찬 간행비 : 38백만원(2책×19,000,000원)
- 국내외 여비 : 13백만원
- 사업추진비 : 6백만원

○ 국외 사료 조사 수집 : 678백만원

- 자료 수집비 : 240백만원(149,069장×1,610원)
- 수집자료 정리비 : 255백만원(57,303장×4,450원)

▪ 편찬 간행비 : 36백만원(3책×12,000,000원)

▪ 국외사료 해제 지원 사업비 : 75백만원(15과제×5,000,000원)

▪ 국내외 여비 : 67백만원

▪ 사업추진비 : 5백만원

○ 자료 보존 관리 : 962백만원

▪ 소장자료 보존처리 : 85백만원(8,500장×10,000원)

▪ 소장자료 정리비 : 245백만원(12,250책×20,000원)

▪ 자료 정리 및 보존 물품 구입비 : 80백만원

▪ 국내 여비 : 2백만원

▪ 수서, 열람, 사료정리 등 인건비 : 162백만원(고용부담금 포함)

▪ 역사자료관 운영 : 41백만원

▪ 소장자료 보존 설비 : 347백만원

○ 시대별·주제별 편찬 : 1,839백만원

▪ 통사 및 고중세 사료 편찬 : 145백만원

▪ 조선시대 사료편찬 : 620백만원

▪ 근현대 사료편찬 : 799백만원

▪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 편찬 : 275백만원(7,330매×37,500원)

○ 한국역사정보화 : 813백만원

▪ 한국사콘텐츠(우리역사넷) DB 구축 : 358백만원(1식×358백만원)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 구축 : 108백만원(1식×108백만원)

▪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운영 : 347백만원(1식×347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 210백만원

▪ 『북한관계사료집』 간행 : 126백만원(2책×63백만원)

▪ 기초조사 연구지원 : 30백만원(12과제×2.5백만원)

▪ 국제학술회의 개최 : 54백만원(3회×18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 402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 : 392백만원(13,517매×29,000원)

▪ 기초조사 연구지원 : 10백만원(1과제×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5,369	5,682
▪ 국내사료조사수집	778 (29만건×2,712원)	778 (29만건×2,712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678 (24만건×2,860원)	678 (24만건×2,860원)
▪ 자료보존관리	729 (14,238책×51,200원)	962 (18,789책×51,200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662 (15책×43백만원)	1,839 (42.8책×43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1,910 (32책×60백만원)	813 (13.6책×6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210 (4회×53백만원)	210 (4회×53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402 (13,862매×29,000원)	402 (13,862매×29,000원)

□ 지원 필요성

○ 귀중자료 및 **유네스코 등재자료 등 보존 처리가 시급**한 자료의 보존처리 강화 및 소장 자료의 원활한 열람서비스 제공

- 훼손 기록물의 보존 처리를 위해 소독시스템 도입

○ 역사기록유산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개방·공유**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창작 진흥과 인문정신문화 융성**에 기여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우리 역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한국사 콘텐츠** 프로젝트 진행

- 연구자를 위한 **전문가용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한 콘텐츠 제공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역사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사의 **시대별·주제별 편찬** 사업 추진

○ **한국사 연구수준의 심화**를 위한 토대 제공 및 연구 지원

- 인접 국가와의 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 재외 동포, 외국인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기초 지식 전달 및 자발적 학습의 장 제공**

- 대일본 외교, 동북아 역사 분쟁에 활용 가능한 **국가 정책적 자료 수집·구축 및 제공**

-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간행

- 한·일간, 동북아 지역, 유엔에서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근거를 갖춘 효과적 대응 기반 구축

○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향상** 및 **국민의 역사 의식 고취**

- **3·1운동 100주년(2019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정확한 실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재조명**

- 3·1운동의 발발 연도와 의미도 모르는 청소년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족사적 가치에 대한 이해 기반 마련

  ※ **3·1운동 연구의 심화에 기초한 정확한 역사교육** 절실[「청소년 '빈약한 역사 인식' 심각」(KBS뉴스, 2013.06.21]

○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사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범국가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책 수립과 우리 역사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사료 제공**

- 고령화되어가는 역사적 산 증인에 대한 구술자료의 신속한 채록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사 사료의 종합적 현황조사와 수집을 통한 새로운 한국근현대사 연구 인프라 구축

- 멸실이 우려되는 원본 사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처리

○ **국사편찬위원회**가 그간 수행해 온 **사료편찬사업(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토대로 학계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료편찬 사업 추진

- 기 구축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려운 전통 시대의 자료를 연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법령자료** 등 대규모 기초 자료를 **집대성하여 이용 편의성 증대**

- 2018년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 **고려시대 묘지명 DB 구축(2018~2020년)** 사업 추진

○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을 세계인 누구든지 편리하게 한국의 역사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번역** 제공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 증진	**5,226**	**5,369**	**5,682**	**313**	**5.8**
▪ 국내사료조사수집	836	778 (3종x60백만)	778 (29만건×2,712원)	-	-
▪ 국외사료조사수집	751	678 (1식x70백만)	678 (24만건×2,860원)	-	-
▪ 자료보존관리	760	729 (2과제×50백만)	962 (18,789책×51,200원)	**233**	**32**
▪ 시대별·주제별편찬	659	662 (2회×3백만)	1,839 (42.8책×43백만원)	**1,177**	**178**
▪ 한국역사정보화	1,609	1,910 (2회×3백만)	813 (13.6책×60백만원)	**△1,097**	**△57**
▪ 남북협력·국제교류	223	210 (2회×3백만)	210 (4회×53백만원)	-	-
▪ 조선왕조실록영역	388	402 (2회×3백만)	402 (13,862매×29,000원)	-	-
□ 비목(합계)	**5,226**	**5,369**	**5,682**	**313**	**5.8**
○상용임금(110-03)	60	114	129	15	13.1
○일용임금(110-04)	15	-	-	-	-
○일반수용비(210-01)	1,066	1,010	1,175	165	16.3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12	12	-	-
○임차료(210-07)	60	54	63	9	16.6
○복리후생비(210-12)	1	2	2	-	-
○일반용역비(210-14)	2,825	2,943	2,837	△106	△3.6
○국내여비(220-01)	21	11	11	-	-
○국외업무여비(220-02)	126	136	136	-	-
○사업추진비(240-01)	19	16	17	1	6.2
○일반연구비(260-01)	665	786	836	50	6.3
○고용부담금(320-09)	13	12	30	18	150
○자산취득비(430-01)	346	273	434	161	5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ㅇ 국내외에서 빠르게 멸실되고 있는 한국사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정리하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ㅇ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기하여 한국사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여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부여
- ㅇ 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우리 역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고품질 콘텐츠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250	▪ 국내사료조사수집 308,997건 ×2,712원=83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62,937건 ×2,860원=752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4,882책×51,200원 =762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5책 ×441,300원=662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27.3책×59백만원 =1,61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6백만 원=224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3,862매 ×29,000원=402백만원			
'18	5,369	▪ 국내사료조사수집 286,873건 ×2,712원=77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37,062건 ×2,860원=678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4,238책×51,200원 =729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5책 ×441,300원=662백만원	5,369	▪ 국내사료조사수집 286,873건 ×2,712원=77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37,062건 ×2,860원=678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4,238책×51,200 원=729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5책×43 백만원=662백만원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한국역사정보화 27.3책×59백만원=1,91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2.5백만원=21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3,862매×29,000원=402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32책×60백만원=1,91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3백만원=21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3,862매×29,000원=402백만원	
'19	5,369	▪ 국내사료조사수집 286,873건×2,712원=77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37,062건×2,860원=678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4,238책×51,200원=729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5책×441,300원=662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27.3책×59백만원=1,91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2.5백만원=21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3,862매×29,000원=402백만원	5,682	▪ 국내사료조사수집 29만건×2,712원=77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4만건×2,860원=678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8,789책×51,200원=962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42.8책×43백만원=1,839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13.6책×60백만원=813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3백만원=210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3,862매×29,000원=402백만원	313
'20	9,664	▪ 국내사료조사수집 645,280건×2,712원=1,750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546,853건×2,860원=1,564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30,956책×51,200원=1,585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35책×39백만원=1,365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35책×60백만원=2,10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8회×58백만원=464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28,833매×29,000원=836백만원	4,948	▪ 국내사료조사수집 323,746건×2,712원=878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14,335건×2,860원=613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2,757책×51,500원=657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3.8책×39백만원=539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28.5책×60백만원=1,709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6백만원=224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1,310매×29,000원=328백만원	△4,716
'21	9,664	▪ 국내사료조사수집 645,280건×2,712원=1,750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546,853건×2,860원=1,564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30,956책×51,200원=1,585백만원	4,849	▪ 국내사료조사수집 316,740건×2,712원=859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09,790건×2,860원=600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2,485책×51,500원=643백만원	△4,815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시대별·주제별편찬 35책×39백만원=1,365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35책×60백만원=2,100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8회×58백만원=464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28,833매×29,000원=836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3.5책×39백만원=528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27.9책×60백만원=1,672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6.7백만원=227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1,034매×29,000원=320백만원	
'22			4,800	▪ 국내사료조사수집 304,203건×2,712원=825백만원 ▪ 국외사료조사수집 201,398건×2,860원=576백만원 ▪ 자료보존관리 12,000책×51,500원=618백만원 ▪ 시대별·주제별편찬 13책×39백만원=507백만원 ▪ 한국역사정보화 28.9책×60백만원=1,738백만원 ▪ 남북협력·국제교류 4회×57.3백만원=229백만원 ▪ 조선왕조실록 영역 10,586매×29,000원=307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6.5		△2.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시행) 및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시행)

○ 추진경위

- 국내사료 조사수집 : 2004년~
- 국외사료 조사수집 : 2001년~
- 1995년 조선왕조실록 표점시작으로 하여 2005년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
- 한국역사정보포탈서비스 운영 및 유네스코 등재 『승정원일기』의 효율적 보존 및 콘텐츠 활용도 제고
- 민주시민 사회에 부합하는 역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 대두
- 한국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 운영, 24개 기관·31개 사이트 연계
- 한국역사정보화사업 : 1989년~
-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 2001년~
- 조선왕조실록 영역 : 2012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사 연구·편찬 및 이해증진	53.46		50.9	51.97		52.50		53.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0.9** ( )	( )	( )	50.9 ( )	**49.98** ( )	( )	0.92 ( )
'16년	**51.97** ( )	( )	( )	51.97 ( )	**51.19** ( )	( )	0.78 ( )
'17년	**52.5** ( )	( )	( )	52.5 ( )	**52.26** ( )	( )	0.24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250		5,369		5,369	4,116	76.7%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5년 결산 교문위검토보고서 : 조선왕조실록 영문판 보급 사업의 우수 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 2016년 예산 교문위검토보고서 : 전자사료관의 이용자 편의성 개선 노력 필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자료 수집

-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통치 시기 관련 국외 소재 문서 수집에 10년간 1,000만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만 장의 문서를 수집하였음
- 북미,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미 수준 높은 구술사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단체에서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일부 진행되었을 뿐, 예산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ㅇ 선진 각국, 역사지식 정보화에 총력 지원

- 미국국립인문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 의한 Center for Children and Technology 및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주관 "Picturing Modern America(1880~1920)" 프로젝트
- 미국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 : 국립인문학기금(NEH),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관. 버지니아대학 '로마의 재탄생' 프로젝트, 네브래스카대학 '철도와 근대 미국의 형성' 사이트, 프린스턴대학 '단테' 프로젝트 등의 콘텐츠 제공

ㅇ 선진 각국, 원시사료의 가공을 통한 지식정보화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역사자료 정리·가공·편찬 사업 추진

- 미국 역사프로젝트(American Memory Project) : 의회도서관이 추진하는 국가전자도서관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의 유산과 역사 자료를 집성하고 디지털화
- UK Archives Hub : 영국의 국가적 자료 네트워크 구성사업으로 대학 내의 Archives를 연결하여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 허용

구분	EU	미국	일본	중국
프로젝트	eContent('01), eContent*plus*('05)	DLI('94), NDIIPP('01)	e-Japan 전략('01)	CNKI('99)
주요내용	EU회원국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디지털 자료 수집·축적·보존 추진 / 교육·역사·학술 등 자료의 디지털유산화	국가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추진	국가적으로 학술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학술정보를 디지털화 추진

※ DLI : Digital Library Initiative
※ NDIIPP :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
※ CNKI :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 영국 TNA, 호주 NA 등이 수집 사료의 통합 서비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료와 역사 연구 결과물의 전자적 서비스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
- 원시 사료의 난해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이미 각국에서 번역 사업 및 콘텐츠 서비스를 다수 채택하고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과제 사이트 : 의식주, 건축, 의례 신앙, 교통 통신, 군사 외교, 역사 민속, 예술, 과학 기술, 문학 문헌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 제공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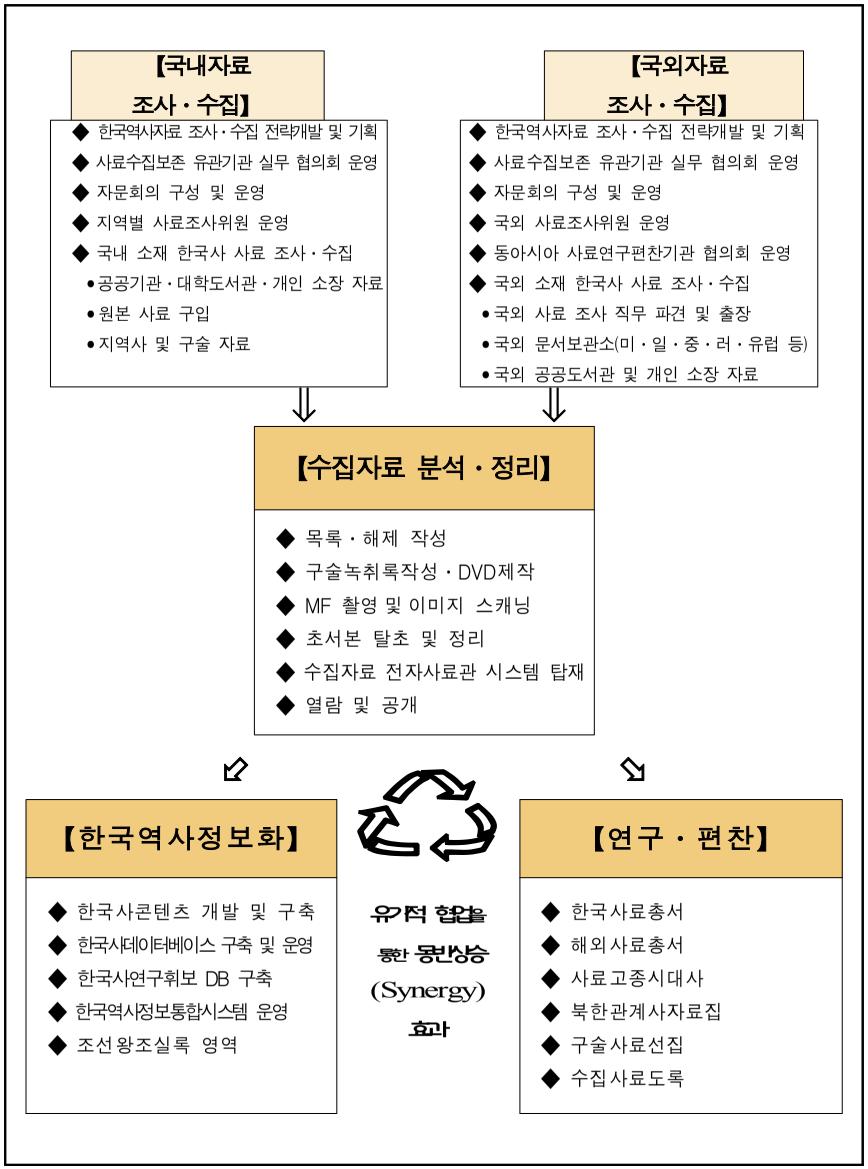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사 연구·편찬 온라인 서비스 이용 건수 (단위: 백만 건)	목표	110	114	117	121	6	측정기준 및 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1/4분기 방문수를 기준으로 '19 목표치 설정	전수조사 (웹로그분석 프로그램(Wiselog v7) 이용('18.4교체)	이용자 현황 (웹페이지 방문 수)
	실적	113	115	119	-	-			
	달성도	109.3	101	102	-	-			
한국사 연구·편찬 온라인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점)	목표	74.5	76.5	76.7	77	77.4	최근 3년 평균 76.1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조사
	실적	75.5	76.5	76.3	-	-			
	달성도	101	100	99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2017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사항(참고1)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반응(참고2)
○ 3·1운동 100주년 기념 DB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참고3)
○ 관련 법령 조문(발췌)(참고4)
○ 관련 일반통계(참고5)
○ 시대별·주제별 편찬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내용(참고6)

참고 1 **2017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반영사항**

< '검색을 통한 수집 사료 이용' 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

□ (요약)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자료 이용의 간편성·효율성을 확대해야 함
○ 조사 결과 사료 검색, 검색 속도, 검색 서버 불안정 등 검색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음
○ 특히 검색 기능을 세분화하여 손쉽게 자료를 찾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우선 개선 요구 사항)수집 사료의 원문 이미지 서비스 확대 40.5%, 검색 시스템 개선(신속성, 정확성 등) 22.0%, 주제 분류 강화 15.0%

□ (조사 대상) 국사편찬위원회 이용 고객
○ 교수/강사, 대학(원)생, 공무원/전문(사무)직 등 총 200명

※ 조사기관 및 기간: (주)코리아리서치센터, 2017.11.7.~11.17.

< 예산(안) 반영사항 >

□ 전자도서관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증액 편성
○ 자료관리보존사업, 1,253백만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반응

< 사업성과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대외적으로 적극 활용됨

○ 2017년도 소장 자료 대외 협조 : 총 71기관 106회

○ 역사자료관 견학 : 총 1,703명

□ 동계스포츠 및 판문점·한국전쟁 관련 사진자료 공개, 개성의 고려유적 사진자료집 간행 등 국편의 사료 조사·수집 사업의 성과를 주요 언론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판문점·한국전쟁 사진자료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기여

○ 개성 지역에 산재한 고려시대 문화유산의 사진을 담은 사진자료집은 북한 지역 문화재와 남북 학술교류에 대한 관심을 환기

□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제730호로 등록(2018.10.1.)

< 현장의 반응 >

□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편찬 사업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평가 (2018년)

연번	언론사	보도일자	내용
1	MBC 외	2018년 2월 5일	국편,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동계스포츠 자료 공개
2	연합뉴스 외	2018년 3월 7일	국편-중앙박물관 고려시대 묘지명 DB구축 사업 관련 MOU 체결
3	연합뉴스 외	2018년 4월 19일	국편, 남북정상회담 맞이 판문점 관련 사진자료 공개
4	인천일보 외	2018년 5월 1일	안성시, 청소년 위한 안성독립운동사 발간
5	뉴시스 외	2018년 5월 3일	국편, 재미있는 초등역사 개발
6	연합뉴스 외	2018년 5월 17일	국편, 제52회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7	연합뉴스 외	2018년 6월 7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문서, 겸재 박성원 자료 기증
8	연합뉴스	2018년 6월 18일	조광 국편위원장 "정사(正史) 편찬·제공 안할 것"
9	문화일보 외	2018년 6월 22일	국편, 한국전쟁 관련 사진자료 공개
10	연합뉴스 외	2018년 7월 23일	국편, 제53회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11	문화일보 외	2018년 8월 16일	국편,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시상식
12	제주의소리	2018년 9월 4일	제주학연구센터, 현종 시기 승정원일기 제주 내용 번역
13	MBC 외	2018년 10월 1일	국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문화재 등록
14	동아일보 외	2018년 12월 10일	국편, 개성의 역사와 유적 사진자료집 간행

참고 3 3·1운동 100주년 기념 DB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추진 배경

○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 대두

○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 최대의 역사자료 사이트인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기능 수행

○ **역사자료 정보화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3·1운동의 실상과 의미를 밝히는 데 투여하기 위해 **3·1운동 DB 구축 사업 기획**

○ **2016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 사업 착수

❑ 사업 개요

○ 사업명 : 3·1운동 100주년 기념 DB 구축 사업

○ 사업 목표 : 3·1운동의 실상을 알려 주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3·1운동 종합 DB의 제작과 공개

○ 사업 기간 : 2016년~2019년(4개년)

○ 사업 내용

- 3·1운동 시위 정보 DB 구축
- 3·1운동 공간 정보 DB 구축
- 3·1운동 DB 웹서비스 시스템 제작
- 3·1운동 주제도 제작 및 간행

❑ 사업 세부 내용

1 3·1운동 시위 정보 DB 구축

○ 3·1운동 **개별 시위 사건 1차 사료***를 종합하여 **텍스트 기반** 시위 정보 DB 구축(약 3,000건)

○ 개별 시위 사건 DB를 **출처별 정보 DB와 연계***(약 18,000건)

2 3·1운동 공간 정보 DB 구축

○ 시위정보 표현을 위한 **GIS 기반** 공간 정보 DB 구축

○ Base Map 구축 및 수치지도화, 행정구역 레이어 제작, 지명 입력 등

○ 1910~20년대 제작 1:50000 지형도를 저본으로 3·1운동 각 사건을 GIS를 활용하여 지도상에 표현

3 3·1운동 DB 웹서비스 시스템 제작

○ 텍스트 기반 3·1운동 시위 정보 DB와 GIS 기반 공간 정보 DB를 포괄하는 웹서비스 사이트 및 관리시스템 제작

※ 3·1운동 DB 웹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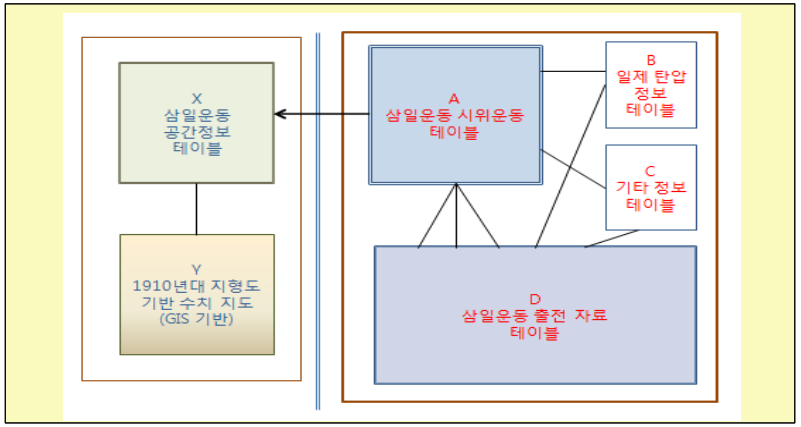

4 3·1운동 주제도 제작 및 간행

○ 3·1운동 주제도 제작(Info-graphic 형태)
- 통계 기반 주제도(시간별 공간별 3·1운동 개요를 살필 수 있는 주제도)
- 시계열 기반 주제도(날짜 변화에 따른 3·1운동의 전개를 살필 수 있는 주제도)
- 지역별 주제도(특정 지역 중심의 주제도)
- 네트워크 기반 주제도 등

○ Info-graphic 형태 주제도 중심의 통계 책자 간행

❑ 연차별 사업 추진 경과 및 계획

○ 2016~2017년 : 3.1운동 시위정보 추출

○ 2018년 : 3·1운동 시위 정보 확충, 사건별 개요 집필 및 사건별 상호 연계, GIS 기반 삼일운동 공간 데이터 구축, 삼일운동 DB 웹서비스 시스템 개발

○ **2019년 : 3·1운동 DB 웹서비스 개시,** 3·1운동 주제도 제작·간행, 3·1운동 통계 책자 발간

참고 4 관련 법령 조문(발췌)

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료의 조사) ①위원회는 사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단위의 사료조사 및 국외의 사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편찬) ①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사료 및 한국사를 연구하고, 해당 결과를 편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또는 편찬하여야 한다.

1. 시대별 기본 사료
2. 주제별 기본 사료
3.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사료
4. 한국사 관련 연구 결과

제17조(한국사 연수) ①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료의 수집) ①위원회가 사료를 수집하는 때에는 대차, 복제, 구매, 수증, 수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기·타자·녹음 및 녹화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생애사·사건·사안에 관한 면담 또는 증언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통하여 사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사료의 제공자가 사료의 비공개 또는 일부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료의 관리) ①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업무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사료의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는 사료의 평가·정리·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소장하는 사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사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5 관련 일반통계

1 국내 사료 수집 현황(2004~2017)

구분	전근대자료	지역사자료	구술자료
수량	50,963건 (1,208책/189,912장)	142,929건/3,510,411장	320주제/1,942명/6,050여 시간

2 국외 사료 수집 현황(2001~2017)

구 분	일 본 기타 아시아	중국·대만	미 주	유럽·독립국 가연합	합 계
문서(이미지포함)	1,135,042	231,212	6,242,664	574,596	8,183,514
MF(컷)	611,569	-	14,981	116,341	742,891
MF(롤)	2,453	1,697	694	348	5,192
마이크로피시(장)	34	-	100,848	3,493	104,375
CD/DVD(장)	1,049	-	1	21	1,071
도서(권)	17,597	1,519	156	2	19,274
그림/지도/글씨(장)	64	-	410	-	474
사진(장)	77	2,105	562	2,292	5,036
테이프/비디오(개)	-	694	54 / 108	11	759 / 108
슬라이드(매)	-	-	12,277	-	12,277
기타	1	335	1,229	-	1,565

3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도서 현황

❑ 2017년까지 총 107종 1,727책 간행

분류	번호	서 명	간행 연도	책수
총서류 12종 293책	1	한국사	1973~1979	25
	2	한국사(신편)	1993~2002	52
	3	한국문화사	2005~2011	40
	4	국사상의 제문제	1959~1960	6
	5	한국교육사자료	1973~1975	2
	6	한국사론	1977~2007	45
	7	사고지조사보고서	1986	1
	8	국사관논총	1989~2006	108
	9	한국사연구지원보고자료집	1996~2004	8
	10	우리역사길라잡이	2008	2
	11	학술회의 총서	2015~2017	3
	12	역사를 보는 창, 사료	2016	1
고대사 5종 16책	13	고조선	1986	1
	14	중국정사조선전 국역	1989	1
	15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1986~1990	4
	16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1995~1996	3
	17	한국고대사료집성	2006	7
중세사 15종 510책	18	조선왕조실록	1955~1958	48
	19	조선왕조실록 총색인	1963	1
	20	광해군일기(태백산본)	1988~1991	3
	21	조선왕조실록분류집	1987~1994	12
	22	비변사등록	1959~1960	28
	23	비변사등록 색인	1997	2
	24	국역 비변사등록	1989~2007	30
	25	승정원일기	1960~1977	126
	26	승정원일기 : 고종	1986	15
	27	각사등록	1981~2006	101
	28	한국사료총서	1955~2017	114
	29	한국사료총서 번역서	2014~2017	13
	30	대마도종가문서 자료집	2005~2012	5
	31	수집사료해제집	2006~2017	11
	32	세종실록 영역본	2016	1
근대사 24종 373책	33	고종시대사	1967~1972	6
	34	한국독립운동사	1965~1969	5

분류	번호	서 명	간행 연도	책수
	3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70~2005	43
	36	일제침략하 한국삼십육년사	1966~1978	13
	37	한민족독립운동사	1987~1994	13
	3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86~2007	70
	3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991~1993	9
	4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목차 · 색인	2008	1
	41	동북지역 조선인항일역사	2003	10
	42	한국근현대지역사자료총서	2005~2006	2
	43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	2009	1
	44	일제강점기 사회 · 사상운동자료 해제	2007~2008	2
	45	주한일본공사관기록(번역본)	1986~2000	28
	46	주한일본공사관기록(영인본)	1988~1994	40
	47	통감부문서	1998~2000	11
	48	재외동포사총서	2005~2013	17
	49	재외동포사 연표	2005~2012	4
	50	한국근대사자료집성	2001~2011	19
	5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05~2011	51
	52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2010~2016	8
	53	신편 고종시대사	2014	1
	54	사료 고종시대사	2015~2017	13
	55	프랑스외무부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015~2016	3
	56	일본군 '위안부'·전쟁범죄 자료집	2017	3
현대사 18종 300책	57	대한민국사	1988	1
	58	대한민국사연표	1984~1985	2
	59	대한민국사 연표	2008	3
	60	편년 대한민국사	2011~2012	2
	61	자료대한민국사	1968~2008	29
	62	자료대한민국사 CD-ROM	2002	1
	63	자료대한민국사 목차색인집	1996	1
	64	대한민국사자료집	1987~1998	42
	65	한국현대사자료집성	1999~2010	24
	66	실록 대한민국사 자료집	2009~2013	9
	67	북한관계사료집	1983~2017	82
	68	남북한관계사료집	1994~1996	25
	69	남북역사학논총	2001~2004	9
	70	해외사료총서	2002~2016	31
	71	대일과거청산소송자료집	2005	10

분류	번호	서 명	간행 연도	책수
	72	구술사료선집	2006~2017	24
	73	독도자료	2008	3
	74	한국 현대사 자료총서	2014	2
목록류 · 기타 33종 235책	75	장서목록	1990	1
	76	고서목록	1990	1
	77	고문서목록	1993~1994	2
	78	국사편찬위원회 간행서 목록 해제집	2011	1
	79	국사편찬위원회 귀중자료 해제집-한국편	2008	1
	80	사진 · 유리필름목록	1998	2
	81	사진 · 유리필름화집	2001	1
	82	사진 · 유리필름 CD-ROM	2001	1
	83	한국독립운동사론저목록	1984	1
	84	북한사자료목록	1986	1
	85	한국민주화운동자료목록집	2005~2010	3
	86	대마도종가문서기록류목록집	1990	1
	87	대마도종가문서서계목록집	1991~1994	5
	88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목록집	1995~1996	2
	89	해외 한국사연구 문헌목록	1986	1
	90	한국관련해외사료소장목록집	1995	1
	91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집	2001	5
	92	구술사매뉴얼	2008	2
	93	명미당 이건창가 자료 해제집	2009	1
	94	녹촌 고병익 박사 기증도서 목록	2007	1
	95	한국사 종합논저 목록 CD-ROM	2003	1
	96	한국사연구휘보	1973~2017	179
	97	BULLETI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1990~1997	8
	98	국사편찬위원회사	1990	1
	99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2012	2
	100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미국 NARA 자료 편람	2014	1
	101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중국 · 대만 자료 편람	2014	1
	102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러시아 자료 편람	2015	1
	103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일본 자료 편람	2015	1
	104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15년 2001~2015	2015	1
	105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지역사자료 편람	2016	1
	106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2016~2017	3
	107	국사편찬위원회 간행물 목록집(1995~2016)	2017	1
합 계			총 107종 1,727책	

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시대구분	번호	자료명	언어 유형	위원회 간행 여부
통사	1	한국사	국문	○
	2	신편 한국사	국문	○
	3	한국사론	국문	○
	4	국사관논총	국문	○
	5	한국사료총서	한문	○
	6	해외사료총서	국문/일문·노문 등	○
	7	중국정사조선전	한문/국문	○
	8	한국사연구휘보	국문	○
	9	동학농민혁명사논저목록	국문	
	10	재외동포사총서	국문/일·노문 등	○
	11	주제별 연표	국문	
	12	재외동포사연표	국문/영·일·중·노문 등	○
고대	13	삼국사기	한문/국문	
	14	삼국유사	한문/국문	
	15	해동고승전	한문/국문	
	16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문/국문	
	17	한국고대금석문자료집	한문	○
	18	한국목간자료	한문	
	19	한국고대사료집성 중국편	한문	○
	[중복_통사]	중국정사조선전	한문/국문	○
	20	일본육국사 한국관계기사	한문/국문	
	21	입당구법순례행기	한문/국문	
	22	고대사연표	국문	
고려시대	23	고려사	한문/국문	
	24	고려사절요	한문/국문	
	25	동인지문사륙	한문/국문	
	26	동인지문오칠	한문/국문	
	27	제왕운기	한문/국문	
	28	보한집	한문/국문	
	29	파한집	한문/국문	
	30	선화봉사고려도경	한문/국문	
	31	원고려기사	한문/국문	
	32	중국사서 고려·발해유민 기사	한문/국문	
	33	고려시대 금석문	한문/국문	
조선시대	34	조선왕조실록	한문/국문	○
	35	비변사등록	한문/국문	○
	36	승정원일기	한문	○
	37	각사등록	한문	○
	38	각사등록 근대편	한문	
	39	사료 고종시대사	국문/한문/일·영·불문 등	○
	40	고종시대사	국한문	○
	41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일문/국문	○
	42	근대한일외교자료	일문	○
	43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한문/국문	
	44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국문	

시대구분	번호	자료명	언어 유형	위원회 간행 여부
	45	동학농민혁명 연표	국문	
	46	대마도종가문서자료집	일문	○
	47	한국고지도목록	국문	
	48	명실록	한문	
	49	청실록	한문	
	50	조선시대 법령자료	국문/한문	
대한제국	[중복_조선]	사료 고종시대사	국문/한문/일·영·불문 등	○
	[중복_조선]	고종시대사	국한문	○
	[중복_조선]	각사등록 근대편	한문	
	[중복_조선]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	일문/국문	○
	51	한국근대사자료집성	한문/일문	○
	52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국문	○
	53	직원록자료	국문	
	54	한국근현대잡지자료	국한문/한문	
	55	근대사연표	국문	
일제 강점기	56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일문	○
	57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국문	○
	58	한민족독립운동사	국문	○
	5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국문/국한문/일문	○
	6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일문	○
	6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국한문/중문/영문	○
	62	국내 항일운동 자료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일문	
	63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보고철	일문	
	64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일문	
	65	국외 항일운동 자료 : 일본 외무성 기록	일문	
	66	중추원조사자료	일문	
	[중복_대한제국]	한국근대사자료집성	한문/일문	○
	[중복_대한제국]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국문	○
	[중복_대한제국]	직원록자료	국문	
	67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문	
	68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	국문	
	69	한국근대지도자료	국한문	
	70	한국근대지지자료	국한문	
	71	일제시기 희귀자료	국한문	
	[중복_대한제국]	한국근현대잡지자료	국한문/한문	
	72	동아일보	국한문	
	73	시대일보	국한문	
	74	중외일보	국한문	
	75	중앙일보	국한문	
	76	조선중앙일보	국한문	
	77	공립신보	국한문	

시대구분	번호	자료명	언어 유형	위원회 간행 여부
	78	신한민보	국한문	
	79	부산일보	일문	
	80	조선시보	일문	
	81	신문스크랩자료	국한문/일문	
	82	사진유리필름자료	한문	○
	[중복_대한제국]	근대사연표	국문	
대한민국	83	자료대한민국사	국문	○
	84	FRUS	영문/국문	
	85	반민특위조사기록	국문	
	86	친일파관련문헌	한문	
	87	미군정기군정단·군정중대문서	영문	○
	88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의 문서	영문	○
	89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영문	○
	90	미군정기 자료 주한미군사	영문/국문	○
	91	SWNCC	영문/국문	
	92	이승만서한철	영문	○
	93	휴전회담회의록	영문	○
	94	유태하 보고서	영문/국문	○
	[중복_일제]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문	
	[중복_일제]	동아일보	국한문	
	95	자유신문	국한문	
	96	경남신문계열	국한문	
	97	대한민국사연표	국문	○
	98	동학농민혁명증언록	국문	

5 한국사 콘텐츠(우리역사넷) 구축 현황

구분	콘텐츠명	콘텐츠 내용	구축 물량	모바일 서비스
교과서 속 우리 역사	역대 국사교과서	개화·대한제국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역대 국사교과서의 원문과 해제	27종 51책	○
	재미있는 초등역사	초등학교 역사 교육용 콘텐츠	62건	○
교양 우리 역사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93~2002년 52책으로 간행한 한국통사	52책	○
	한국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한국문화사 40책 DB 구축	40책	○
	주제로 본 한국사	한국사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관련 사료와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자세한 설명과 해설	6건	○
	사료로 본 한국사	중고등학교 역사 및 한국사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사료의 원문, 번역문, 해설	947건	○
	영문 한국사	200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재외동포의 한국사 이해를 위해 간행한 교양 한국사 교재	1건	○
영상·이미지 속 우리 역사	교과서 속 이미지 자료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이미지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	831건	○
	근현대사 사진자료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거나 수집한 근현대사 사진자료에 대한 소개와 해설	106개 주제 991컷	○
	영상 책 이야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책에 대한 멀티미디어 동영상과 해설	11건	○
	영상 문화예술 이야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문화 예술 관련 주제에 대한 동영상과 해설 -한글본, 영어본	18건 (영어본 18건)	○
우리 역사 나침반	오늘의 역사	조선시대부터 2008년까지의 역사적 주요사건 기록	11,170건 (고려~현대)	○
	한국사 콘텐츠	한국사 관련 인물, 사건, 조직단체 등을 원문사료와 전문가 해설, 연관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280건	○
	교과서 용어 해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역사 용어에 대한 해설	802건	○
	역사 지리	역사 속 옛 지명에 대한 현재의 명칭 및 위치를 제공	3건	

참고 6 시대별 · 주제별 편찬 사업 관련 언론 보도 내용

❑ 고려시대 묘지명 DB구축 사업 관련 언론 보도내용(2018.3.7.자)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고려 건국 1천100주년을 맞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펼쳐진 특별전과 학술 행사를 앞두고 박물관과 연구기관들이 교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는 학술 교류와 정보·자료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의 첫 번째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묘지명(墓誌銘) 180여 건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돌이나 도자기에 새긴 유물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까지 고려 묘지명의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고,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려사'·'고려사절요' 등 자료가 집대성된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KOREA)에 사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려 묘지명의 표점(標點원문에 마침표나 쉼표를 찍는 것)과 판독 작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6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7,341	4,937	5,008	**71**	**1.4**

* 사업코드 : 11 - 12 - 0 - 050 - 052 - 2400 - 2448 - 651
* 담 당 자 : 편사부장(김우철), 역사진흥실장(류주희), 사무관(정원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국사 교육의 방향 제시
사업기간	'06～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건축)	해당사항 없음
(장비)	해당사항 없음
(연구비 등)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연 4회 시행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사편찬위원회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을 위한 수입대체경비: 5,008백만원

▪ 산출내역

- 시험 운영 상용임금 : 25,750천원×4명=103백만원
- 문항출제, 문답지 제작 인쇄 등 : 376,500천원×4회=1,506백만원
- 시험운영 공공요금 : 333천원×12개월=4백만원
- 출제합숙시설 사용 : 115,250천원×4회=461백만원
- 시험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 : 3,830천원×12개월=46백만원
- 시험 운영 복리후생 : 500천원×4명=2백만원
-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 696,000천원×4회=2,784백만원
- 출제자 및 감독관 여비 : 18,000천원×4회=72백만원
- 위원 업무 협의 : 1,500천원×4회=6백만원
- 고용부담금 : 1,667천원×12개월=20백만원
- 시험 운영 자산구입비 : 2,000천원×2대=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4,937	5,008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운영	4,937	5,008

□ 지원 필요성

○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흐름 반영

- 교육공무원 임용 및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군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 자격으로 채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12. 12. 28.)

※ 공무원임용시험령('15. 5. 6.)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16. 11. 22.)

○ **민간기업 채용과정에서도 우리 역사의 중요성 강조**

* 국민일보 보도('14.11.3, 최고 역사 지식인 가린다. '제1회 전국한국사경시대회' 개최) "최근 대기업 트렌드를 살펴보면 '한국사'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도 우리 역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역사 관련 기본지식이 부족한 사원들이 세대 간, 직위 간에 의사소통이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 **시험 응시 및 응시료 수입의 증가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최근 2~3년간 국회로부터 '매년 과소계상하여 반복적으로 초과지출승인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사업 성과>

15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 약 34만 명에서 **16년~18년에는 평균 약 37.2만 명**으로 매년 약 1~3만 명 정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 **(응시인원)** 16년 352,700명 → 17년 363,064명 → 18년 399,528명

○ **교육공무원 임용 및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으로 대체**하면서 응시자 수 꾸준히 증가

○ **사관학교 및 민간기업의 선발과정**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도 증가**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4대 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2017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

<세부 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능력검정시험운영 (수입대체경비)**	**7,341**	**4,937**	**5,008**	**71**	**1.4**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7,341**	**4,937**	**5,008**	**71**	**1.4**
▪ 시험 운영 상용임금 (상용임금)	20 (4명x5백만원)	93 (4명x23.25백만원)	103 (4명x25.75백만원)	10	10.8
▪ 시험 운영 일용임금 (일용임금)	52 (4명x13백만원)	-	-		
▪ 문항출제, 문답지 제작 인쇄 등 (일반수용비)	1,339 (4회x334.65백만원)	1,031 (4회x257.75백만원)	1,506 (4회x376.5백만원)	475	46.1
▪ 시험운영 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2 (12개월x0.17백만원)	4 (12개월x0.3백만원)	4 (12개월x0.3백만원)	-	-
▪ 출제합숙시설 사용 (임차료)	306 (4회x76.5백만원)	325 (4회x81.25백만원)	461 (4회x115.25백만원)	136	41.8
▪ 시험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65 (12개월x5.42백만원)	28 (12개월x2.3백만원)	46 (12개월x3.8백만원)	18	64.3
▪ 시험 운영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1 (4명x0.25백만원)	2 (4명x0.5백만원)	2 (4회x0.5백만원)	-	-
▪ 고사장 관리 등 시험 운영 (일반용역비)	5,466 (4회x1,366.5백만원)	3,358 (4회x839.5백만원)	2,784 (4회x696백만원)	△574	△17.1
▪ 출제자 및 감독관 여비 (국내여비)	67 (4회x16.75백만원)	72 (4회x18백만원)	72 (4회x18백만원)	-	-
▪ 위원 업무 협의 (사업추진비)	7 (4회x1.75백만원)	6 (4회x1.5백만원)	6 (4회x1.5백만원)	-	-
▪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12 (12개월x1백만원)	14 (12개월x1.17백만원)	20 (12개월x1.67백만원)	6	42.9
▪ 시험 운영 자산구입비 (자산취득비)	4 (2대x2백만원)	4 (2대x2백만원)	4 (2대x2백만원)	-	-
□ **비목(합계)**	**7,341**	**4,937**	**5,008**	**71**	**1.4**
○ 상용임금(110-03)	20	93	103	10	10.8
○ 일용임금(110-04)	52	-	-	-	-
○ 일반수용비(210-01)	1,339	1,031	1,506	475	46.1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	4	4	-	-
○ 임차료(210-07)	306	325	461	136	41.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5	28	46	18	64.3
○ 복리후생비(210-12)	1	2	2	-	-
○ 일반용역비(210-14)	5,466	3,358	2,784	△574	△17.1
○ 국내여비(220-01)	67	72	72	-	-
○ 사업추진비(240-01)	7	6	6	-	-
○ 고용부담금(320-09)	12	14	20	6	42.9
○ 자산취득비(430-01)	4	4	4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한국사 교육의 방향 제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99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6,813명×4회×16,000원 =2,996백만원			
'18	4,93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7,140명×4회×16,000원 =4,937백만원	4,93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7,140명×4회×16,000원 =4,937백만원	0
'19	4,93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7,140명×4회×16,000원 =4,937백만원	5,00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8,250명×4회×16,000원 =5,008백만원	71
'20	8,88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8,859명×4회×16,000원 =8,887백만원	4,54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1,078명×4회×16,000원 =4,549백만원	△4,338
'21	8,88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38,859명×4회×16,000원 =8,887백만원	4,45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9,656명×4회×16,000원 =4,458백만원	△4,429
'22			4,4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68,969명×4회×16,000원 =4,414백만원	4,414
연평균 증가율 (%)	49.2%		△2.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회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05.04.27.)
- 청와대 제79회 국정과제회의 보고('06.06.15.)
-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06.11.25.)
- 교육인적자원부 역사교육강화 방안('06.11.27.)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공포('07.12.1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교원임용시험 자격시험화(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2012.12.28)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13.12.10.)
-「법원공무원규칙」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14.4.3.)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14.11.19.)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15.5.6.)
- 4대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16)
- 2017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중고등학생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증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무원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16.11.22)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7급 국가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대체할 예정임.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496호. '18.08.2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24.60		34.38	37.88		29.96		49.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15~'17년 이·전용 : 초과지출 승인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4.38** ( )	( )	29.83 ( )	64.21 ( )	**63.95** ( )	( )	0.26 ( )
'16년	**37.88** ( )	( )	23.68 ( )	61.56 ( )	**60.86** ( )	( )	0.70 ( )
'17년	**29.96** ( )	( )	43.47 ( )	73.43 ( )	**73.41** ( )	( )	0.02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996		4,937		4,937	6,667	135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2016년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

"매년 수입대체경비를 과소 계상하여 반복적으로 초과지출승인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로, 3년간 결산 평균(58억 5,000만원)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8억 5,400만원 증액 필요"
(조훈현, 도종환, 손혜원 의원)

ㅇ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2017회계년도 결산 소위원회 회의

"수입대체경비를 과소편성하여 연례적인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홍문종 의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일본은 '일본사능력검정시험'과 '세계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

ㅇ 미국은 "National History Day"를 정하여 각종 경시대회를 통해 자국사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심화에 기여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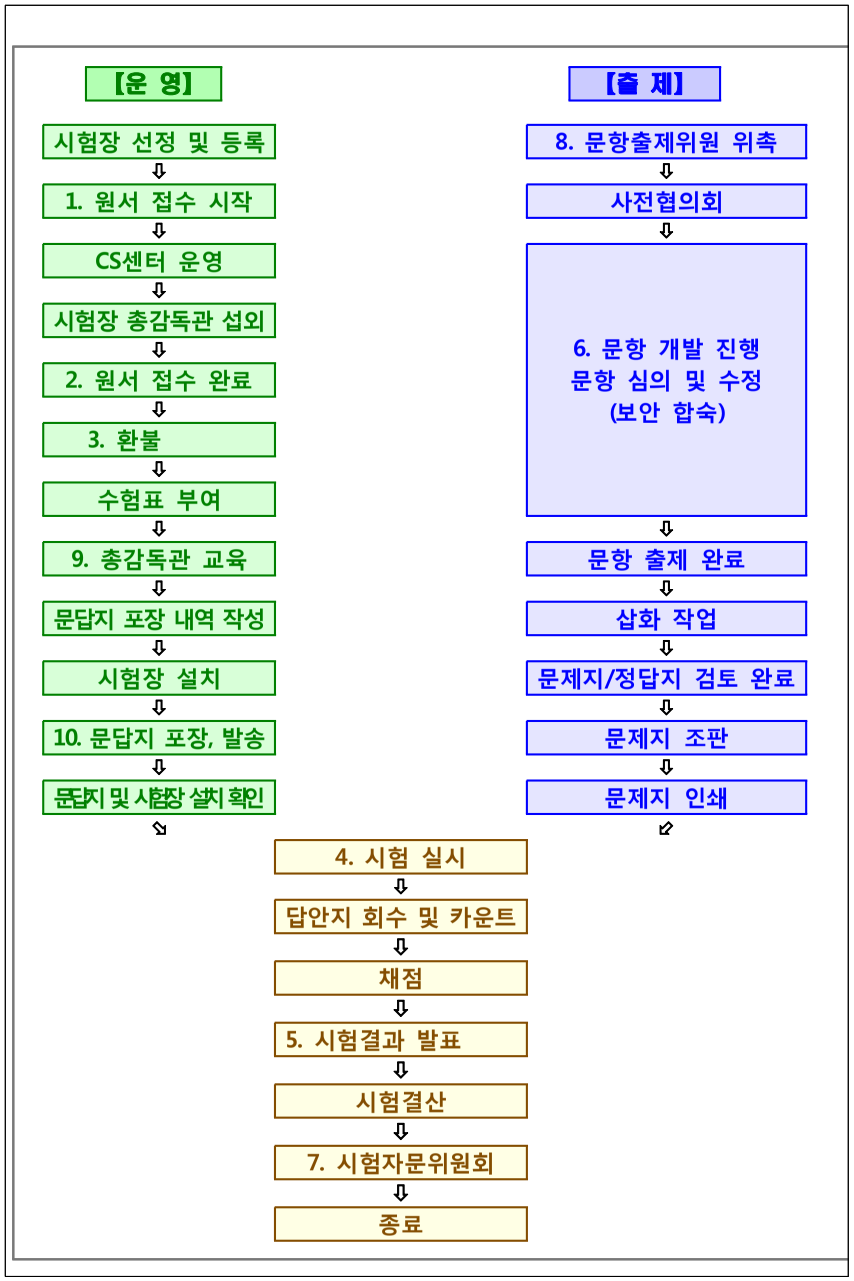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의 한국사 이해 증진 기여도 조사 (단위: 점)	목표	74.5	81	82	83.3	84.3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81.4점을 고려하여 능동적 목표 설정으로 84.3점을 성과목표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사업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측정
	실적	79.5	81.7	83.1	84.5	-			
	달성도	107	101	102	101	-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운영 만족도 조사 (단위: 점)	목표	74.5	78	81	83.9	84.9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80.4점을 고려하여 능동적 목표 설정으로 84.9점을 성과목표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사업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측정
	실적	76.7	80.9	83.7	85	-			
	달성도	103	104	103	101	-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응시자 수 (단위: 만명)	목표	신규	신규	36	37	42	최근 3년 실적 평균(34.6) 및 전년도 실적(36)을 고려하여 목표(42) 설정	당해연도 시험 응시자 수	응시자 답안지 수량 파악
	실적	33	35	36	40	-			
	달성도	-	-	100	108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그간의 현장 의견 수렴 결과 >

□ **시험 시행 횟수 증대 및 시험장 확대 개설** 요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기관의 증가로 **응시자 및 학부모의 시험 시행 횟수 증대 요청**이 계속되어 **연1회에서 연4회**로 시행 횟수를 증대하였으며, 민원 요청에 따라 **군산시·세종시 등에 신규 시험장 확대** 개설

□ **수수료 인하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 요청

→ '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응시료를 50%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응시 기회 확대**

※ 고급(18,000원 → 9,000원) / 중급(16,000원 → 8,000원) / 초급(11,000원 → 5,500원)

□ 접속자 폭주에 따른 서버 다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요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실시('14) 및 서비스 **AP 부하 성능테스트** 실시('18)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 체계적인 **시험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요청

→ 고사장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유선보고를 통해서는 현장의 긴급 돌발 상황 및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험 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17)

□ **단체 합격자 조회 시스템 개발** 요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기관이 **시험 합격자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발 추진** 예정('19)

< '19년도 예산(안) 반영사항 >

□ **응시자 증가에 따른 시험 운영 예산 증액 요구**

→ '18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군무원 채용 활용에 따른 응시자 폭증에 대비하여 시험 운영 관련 예산 증가분 일부 반영

□ 시험 운영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추진**

→ **7급 국가공무원 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활용**이 확정('21)됨에 따라, **응시자 폭증에 대비**하여 **시스템 지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 운영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공신력 있는 시험 관리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활용하는 기관·학교의 지속적 증가**

·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채용 및 일부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가 활용되고 있으며, **'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활용**하는 방안 확정

※ '17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 조회 요청 기관 수 : 97개

□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사 시험**으로 자리매김하며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대**

· 연간 응시자수는 **81,179명('10)에서 399,528명('18)**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간 고사장수도 **154개('10)에서 830개('18)**로 증가함
38회 시험('18.2)의 응시자수는 **128,728명으로,** 이는 '17년 1월에 실시된 **34회 시험 대비 14% 증가**한 것임

※ 지난 3일 올해 첫 시행된 **제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총 14만7511명이 지원**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시험인 **제37회(8만1657명)보다 무려 80.7%포인트 폭증한 수치**다.('18.2, 법률저널)

< 현장의 변화 >

□ **새롭고 참신하며 신뢰성** 있는 문항 개발로 **역사교육 발전에 기여**

·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한국사 문항 개발로 **일선 학교의 역사교육 및 평가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학습용 앱(app) 개발에도 활용됨**

※ 한빛소프트(대표 김유라)는 자사가 개발 중인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역사탐험대AR'에 초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퀴즈 형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금일(8일) 밝혔다. … "**정보의 공신력을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재미뿐 아니라 유익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17.5, 게임동아)

□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일부 유명인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소식** 등이 전해지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인식 고조**와 더불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수준**이 더욱 높아짐

* 설현, 전효성 등 연예인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보도 등

참고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현황

연도	실시 현황			
2006	제01회(11. 25)			
2007	제02회(05. 27)	제03회(10. 27)		
2008	제04회(06. 14)	제05회(10. 25)		
2009	제06회(05. 23)	제07회(10. 24)		
2010	제08회(05. 08)	제09회(08. 14)	제10회(10. 23)	
2011	제11회(05. 14)	제12회(08. 13)	제13회(10. 22)	
2012	제14회(01. 14)	제15회(05. 12)	제16회(08. 18)	제17회(10. 27)
2013	제18회(01. 26)	제19회(05. 11)	제20회(08. 10)	제21회(10. 26)
2014	제22회(01. 25)	제23회(05. 24)	제24회(08. 09)	제25회(10. 25)
2015	제26회(01. 24)	제27회(05. 23)	제28회(08. 08)	제29회(10. 24)
2016	제30회(01. 23.)	제31회(05. 28.)	제32회(08. 13.)	제33회(10. 22.)
2017	제34회(01. 21.)	제35회(05. 27.)	제36회(08. 12.)	제37회(10. 28.)
2018	제38회(02. 03.)	제39회(05. 26.)	제40회(08. 11.)	제41회(10. 27.)

참고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 및 응시 인원

(단위: 명)

연 도	회 차	접수인원	응시인원
2014	제22회	123,775	109,218
	제23회	77,350	64,385
	제24회	102,676	88,341
	제25회	69,953	58,056
	계	373,754	320,000
2015	제26회	128,966	113,969
	제27회	84,270	69,545
	제28회	110,327	94,751
	제29회	74,339	61,370
	계	397,902	339,635
2016	제30회	128,315	112,278
	제31회	90,119	73,974
	제32회	123,358	104,543
	제33회	75,821	61,905
	계	417,613	352,700
2017	제34회	129,574	112,320
	제35회	91,557	75,554
	제36회	127,353	108,576
	제37회	81,657	66,614
	계	430,141	363,064
2018	제38회	147,510	128,718
	제39회	113,939	94,287
	제40회	121,779	103,372
	제41회	89,953	73,151
	계	473,181	399,528

참고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응시료 수입	지출액	순수익(C=A-B)
2014	제22회	2,173	1,587	586
	제23회	1,393	1,147	246
	제24회	1,840	1,487	353
	제25회	1,248	1,757	-509
	소계	6,654	5,978	676
2015	제26회	2,151	1,885	266
	제27회	1,441	1,367	75
	제28회	1,886	1,676	210
	제29회	1,261	1,467	-206
	소계	6,739	6,395	344
2016	제30회	2,169	1,623	546
	제31회	1,547	1,305	242
	제32회	2,105	1,827	278
	제33회	1,289	1,330	-41
	소계	7,111	6,086	1,025
2017	제34회	2,194	2,123	71
	제35회	1,579	1,683	-104
	제36회	2,181	2,021	160
	제37회	1,389	1,514	-125
	소계	7,343	7,341	2
2018	제38회	2,499	2,296	203
	제39회	1,957	1,917	40
	제40회	2,088	2,106	-18
	제41회*	1,537	336	1,201
	소계	8,081	6,655	1,426

* 제41회 금액은 11월말 현재 수입액 및 집행액임.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50)교육 - (052)고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2600]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210	**4,240,415**	**4,226,017**	**△14,398**
[2638] 한국장학재단 출연(일반회계)	1211	197,629	227,414	29,785
[300] 한국장학재단 출연	1211	197,629	227,414	29,785
[2645]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일반회계)	1235	4,042,786	3,998,603	△44,183
[3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1235	4,042,786	3,998,603	△44,183

[300] 한국장학재단 출연(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한국장학재단 출연	197,501	197,629	227,414	29,785	15.1

* 사업코드 : 13-11-0-050-052-2600-2638-30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사무관(박재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콜센터 운영, 소득구간 산정체계 운영,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09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간접비	-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대출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157,469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164,331**	**157,469**
(산출근거)	○ 대납이자 : 164,331백만원 ① '10년~'17년 채권발행분 : 154,321백만원 = 6,397,205백만원 × 2.41%* * '10년 채권평잔 110,000(4.76%), '11년 채권평잔 280,000(3.61%), '12년 채권평잔 480,000(2.38%), '13년 채권평잔 767,781(2.39%), '14년 채권평잔 1,423,616(2.41%), '15년 채권평잔 1,245,808(2.41%), '16년 채권평잔 1,240,000(1.97%), '17년 예상 채권 발행 850,000(2.41%)의 예상 가중평균 조달금리 ② '18년 채권발행분 : 14,954백만원 = 1,019,167백만원*×2.70%×7/12 * '18년 신규 대출액 1,253,237백만원 - 예상 융자원리금회수액 854,070백만원 + 차환채권 620,000백만원 ③ 군이자면제 지원분 : △4,944백만원	○ 대납이자 : 157,469백만원 ① '10년~'18년 채권발행분 : 143,789백만원 = 6,199,644백만원 × 2.32%* * '10년 채권평잔 110,000(4.76%), '11년 채권평잔 280,000(3.51%), '12년 채권평잔 364,329(2.18%), '13년 채권평잔 753,151(2.20%), '14년 채권평잔 1,230,164(2.23%), '15년 채권평잔 1,166,466(2.36%), '16년 채권평잔 1,157,096(1.93%), '17년 채권평잔 708,438(2.27%), '18년 예상 채권 발행 430,000(2.49%)예상 가중 평균 조달금리 ② '19년 채권발행분 : 17,778백만원 = 1,136,437백만원*×2.68%×7/12 * '19년 신규 대출액 862,926백만원 - 예상 융자원리금회수액 826,489백만원 + 차환채권 1,100,000백만원 ③ 군이자면제 지원분 : △4,098백만원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복무자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4,098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4,944**	**4,098**
(산출근거)	·8.81만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x 2.49백만원(대출잔액) x 2.25%(대출금리)	·7.62만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x 2.45백만원(대출잔액) x 2.20%(대출금리)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예산 추계 세부내역 ≫

구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산정 근거
지원인원 (A)	8.81만명	7.62만명	'17년 기준 대출자 중 남학생(178,545명) x 42.7%* * 남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이자 면제자 비율('17년)
대출잔액 (B)	2.49백만원	2.45백만원	'17년 결산금액(2.5백만원) x (1+△2.19%*) * '17년 대비 '18년 1인당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액 감소율
대출금리 (C)	2.25%	2.20%	'18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금리
소요예산 (A×B×C)	**4,944백만원**	**4,098백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복무자에 대한 이자 면제(1,865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2,040**	**1,865**
(산출 근거)	·2.62만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x 2.83백만원(대출잔액) x 2.75%(대출금리)	·2.67만명(대출자 중 군복무자) x 2.70백만원(대출잔액) x 2.58%(대출금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예산 추계 세부내역 ≫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산 정 근 거
지원인원 (A)	2.62만명	2.67만명	'17년 기준 대출자 중 남학생(121,596명) x 22.0%* * 남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군이자 면제 비율('17년)
대출잔액 (B)	2.83백만원	2.70백만원	'17년 결산금액(2.6백만원) x (1+2.17%*) * '17년 대비 '18년 1인당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액 증가율
대출금리 (C)	2.75%	2.58%	직전 5개년도 평균 대출금리
소요예산 (A×B×C)	**2,040백만원**	**1,865백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경제적 사정 곤란 등으로 일반상환학자금 상환이 곤란한 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5,477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5,987**	**5,477**
(산출 근거)	·3,186명(지원인원)×1.9백만원(1인당 지원액) • 생계곤란자(유형 1~5, 7, 10, 11) : 1,828백만원 : '18년 총 지원인원(988명)×'14～'16년 연평균 지원액(1.85백만원) • 연체자(유형 6, 9) : 629백만원 : '18년 총 지원인원(340명)×'14～'16년 연평균 지원액(1.85백만원) • 특례조치(유형8) : 3,530백만원 : '18년 총 지원인원(1,858명)×'14～'16년 연평균 지원액(1.90백만원)	·3,160명(지원인원)×1.75백만원(1인당 지원액) • 생계곤란자(유형 1~5, 7, 10, 11) : 2,212백만원 : '19년 총 지원인원(1,286명)×'15～'17년 연평균 지원액(1.72백만원) • 연체자(유형 6, 9) : 514백만원 : '19년 총 지원인원(284명)×'15～'17년 연평균 지원액(1.81백만원) • 특례조치(유형8) : 2,751백만원 : '19년 총 지원인원(1,590명)×'15～'17년 연평균 지원액(1.73백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소요예산 추계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17년 약정자(a)	지원인원 '18~'19년 추가 약정(b)*	지원인원 소계 (A=a+b)	지원단가** (B)	예산 (=A×B)
생계곤란자 (유형 1~5, 7, 10, 11)	460	826	1,286	1.72	2,212
연체자(유형 6, 9)	72	212	284	1.81	514
특례조치(유형8)	90	1,500	1,590	1.73	2,751
합계	622	2,538	3,160		5,477

* 최근 3년간 평균 약정인원 적용 ** 최근 3년간 유형별 평균 지원액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유형별 지원 조건 ≫

공통요건	유형별 세부 요건		비고
① 학부 졸업생 ②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③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단 채무조정(분할상환자)인 자) ④ 만 35세 이하	유형1	부 또는 모가 사망	
	유형2	부 또는 모가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3	본인이 수급자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환자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유형7	기타 경제적 곤란사항(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등)에 처한 자	
	유형8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	
	유형9	군복무자(군복무예정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연체자	학부 졸업생 여부 무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소기업청에서 정한 기술창업 사업화 대상자에 한함)	
	유형11	본인이 차상위계층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의 소득수준별 이자 지원 및 조달채권과 대출의 금리차 지원(3,972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7,669**	**3,972**
(산출 근거)	· 순수이자 지원 : 4,230백만원 ① ~ '09년 대출 : 2,718백만원 + ② '10년 대출 : 944백만원 + ③ '11년 대출 : 415백만원 + ④ '12년 대출 : 153백만원 · 금리 인하 지원 : 3,439백만원 ① '13년 745백만원 : 126,301백만원 × 0.59%* * '13년 조달 3.49% - 대출 2.9% + ② '18년 2,694백만원 : 839,682백만원*×0.55%**×7/12 * '18년 신규 대출채권 발생액 ** '18년 조달 2.80% - 대출 2.25%	· 순수이자 지원 : 986백만원 ① ~ '09년 대출 : 530백만원 + ② '10년 대출 : 293백만원 + ③ '11년 대출 : 109백만원 + ④ '12년 대출 : 54백만원 · 금리 인하 지원 : 2,986백만원 ① '13년 736백만원 : 120,000백만원 × 0.61%* * '13년 조달 3.51% - 대출 2.90% ② '18년 1,099백만원 : 960,000백만원 × 0.11%* * '18년 조달 2.31% - 대출 2.20% ③ '19년 1,151백만원 : 334,381백만원* × 0.59%**× 7/12 * '19년 신규 대출채권 발생액 ** '19년 조달 2.79% - 대출 2.20%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예산 추계 세부내역 ≫

○ **(순수이자 지원) 986백만원**

-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종료('13년)에 따른 자연 감소
- 산출 방식 : Σ[계좌별 대출평균잔액*×지원금리]

* '18년 연중 평잔 추정 : 학자금 대출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상환 스케줄 반영

① ~'09년 대출 : 530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1.00%	-	-	6.25%	0.1	0.01
1.50%	745	11.1	6.59%	-	-
2.00%	-	-	6.66%	-	-
3.00%	-	-	6.84%	-	-
4.00%	2,374	95	6.95%	-	-
4.25%	21	1	7.00%	-	-
4.50%	162	7.2	7.05%	-	-
4.59%	-	-	7.30%	1,131	83
4.75%	2	0.1	7.65%	-	-
4.84%	-	-	7.80%	-	-
4.95%	-	-	8.00%	-	-
5.00%	-	-	8.25%	1	0.07
5.05%	-	-	8.50%	0.3	0.02
5.80%	5,732	332.5	9.20%		
6.00%	-	-	합계		530

② '10년 대출 : 293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1.5%	926	14	5.2%	2,490	129
4%	1,566	63	5.7%	1,527	87
합계					293

③ '11년 대출 : 109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1.5%	346	5	4.9%	1,592	78
4%	635	26	-	-	-
합계					109

④ '12년도 대출 : 54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지원금리(A)	대출평잔(B)	소요액(A×B)
1.5%	140	2	3.9%	1,337	52
합계					54

○ **(금리 인하 지원) 2,986백만원**

① 기존분 : 1,835백만원

구분	대출금리* (A)	조달금리** (B)	기간 계산 (C)	재단채 잔액 (D)	금리인하지원 =[(B-A)×C×D]
'13년	2.90%	3.51%	12/12	120,000백만원	736백만원
'18년	2.20%	2.31%	12/12	960,000백만원	1,099백만원
합계					1,835백만원

* 대출금리 : 해당연도 대출금리 ** 조달금리 : 해당연도 발행 재단채 금리

② 신규('19년) : 1,151백만원

구분	대출금리* (A)	조달금리** (B)	기간 계산 (C)	대출채권 잔액 (D)	금리인하지원 =[(B-A)×C×D]
'19년	2.20%	2.79%	7/12	334,381백만원	1,151백만원

* 대출금리 : 2.20% 유지 가정 ** 조달금리 : '19년 신규 발행 재단채 예상 조달금리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미상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3,020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2,385**	**3,020**
(산출 근거)	· '16년 상각 실적 : 2,385백만원 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713백만원 ②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672백만원	· '17년 상각 실적 : 3,020백만원 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2,400백만원 ②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620백만원

○ (**고유사업비**) 콜센터 운영 및 학자금 지원 IT 구축·운영 등(39,063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38,855**	**39,063**
(산출 근거)	· 차세대리더멘토링 : 1,980백만원 ① 활동비(1,580백만원) : 2,370명×0.67백만원 (수도권 1,580/비수도권 790명) ② 운영비 400백만원 · 대학생 재능봉사 : 1,728백만원 ① 활동비(1,528백만원) : 3,730명×0.41백만원 ② 운영비 200백만원 · 민간기부인프라 구축 : 306백만원 ① 홍보캠페인 : 226백만원 ② 운영비 : 80백만원 · 통계조사분석 : 585백만원 ① 조사비(385백만원) : 1만명×3.85만원 ② 운영비 : 200백만원 · 맞춤형콜센터 운영 : 16,451백만원 ① 상담원(9,746백만원) : 328명×29.7백만원	· 차세대리더멘토링 : 2,400백만원 ① 활동비(2,000백만원) : 2,985명×0.67백만원 (수도권 1,791/비수도권 1,194명) ② 운영비 400백만원 · 대학생 재능봉사 : 1,901백만원 ① 활동비(1,701백만원) : 4,150명×0.41백만원 ② 운영비 200백만원 · 민간기부인프라 구축 : 304백만원 ① 홍보캠페인 : 224백만원 ② 운영비 : 80백만원 · 통계조사분석 : 588백만원 ① 조사비(385백만원) : 1만명×3.85만원 ② 운영비 : 203백만원 · 맞춤형 콜센터 운영 : 16,693백만원 ① 상담원(9,922백만원) : 328명×30.3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38,855**	**39,063**
	② 서류처리원(476백만원) : 48명×9.9백만원 ③ 신용보호상담원(3,146백만원) : 100명×31.5백만원 ④ 좌석대여비(2,131백만원) : 428명×4.8백만원 + 48석×1.6백만원 ⑤ 운영비 : 952백만원 ·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 1,647백만원 ① 기존(1,157백만원) : 385.7백만원 × 3개소(부산, 광주, 대전) ② 신규(경기, 강원) : 490백만원 · 소득구간 산정체계 운영 : 603백만원 ① 상담원(459백만원) : 12명 × 3.2백만원 × 12개월 ② 우편통보(24백만원) : 3만명 × 2회 × 400원 ③ SMS(120백만원) : 150만명(학생)×2(학기)×20원×2(회) · 학자금 지원 IT 구축 및 운영 : 15,555백만원 ① 정보화 사업 운영 : 11,242백만원 ② 정보화 시스템 구축 : 3,203백만원 ③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 1,110백만원	② 서류처리원(485백만원) : 48명×10.1백만원 ③ 신용보호상담원(3,203백만원) : 100명×32.0백만원 ④ 좌석대여비(2,131백만원) : 428명×4.8백만원 + 48석×1.6백만원 ⑤ 운영비 : 952백만원 ·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 1,933백만원 ① 기존(1,933백만원) : 386.6백만원 × 5개소(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 소득구간 산정체계 운영 : 611백만원 ① 상담원(467백만원) : 12명 × 3.24백만원 × 12개월 ② 우편통보(24백만원) : 3만명 × 2회 × 400원 ③ SMS(120백만원) : 150만명(학생)×2(학기)×20원×2(회) · 학자금 지원 IT 구축 및 운영 : 14,633백만원 ① 정보화 사업 운영 : 11,242백만원 ② 정보화 시스템 구축 : 2,281백만원 ③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 1,110백만원

○ (**재단운영비**) 인건비 및 경상경비(44,111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41,769**	**44,111**
(산출 근거)	·인건비 : 27,178백만원 ● 기존분 26,305백만원 (25,638백만원*×1.026**) * '17년 인건비 예산 ** '18년 인건비 인상률 2.6% 반영 ● 자연증가분 352백만원 (343백만원*×1.026**) * '17년 증원분 인건비 ** '18년 인건비 인상률 2.6% 반영 ● '18년 증원분 521백만원 (14명×74.4백만원×6/12) ·경상경비 : 14,591백만원	·인건비 : 30,172백만원 ● 기존분 27,667백만원 (27,178백만원*×1.018**) * '18년 인건비 예산 ** '19년 인건비 인상률 1.8% 반영 ● 자연증가분 531백만원 (521백만원*×1.018**) * '18년 인건비 예산 ** '19년 인건비 인상률 1.8% 반영 ● '18년 증원분 1,974백만원 (35명*×56.4백만원) * 수시 21명, 정시 14명 증원 반영분 ·경상경비 : 13,939백만원

○ (**자체수입**) 예치금 이자 및 법인세 환급 등(△31,661백만원)

(백만원)

구분	'18 예산	'19 예산
예산	**△70,351**	**△31,661**
(산출 근거)	·예치금 이자 : △976백만원 ·기타 재원 활용 : △3,796백만원 ·보증 기본재산 : △65,579백만원	·예치금 이자 : △519백만원 ·기타 재원 활용 : △8,316백만원 ·보증 기본재산 : △22,826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장학재단 출연	197,629	227,414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164,331	157,469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4,944	4,098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2,040	1,865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5,987	5,477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7,669	3,972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2,385	3,020
■ 고유사업비	38,855	39,063
■ 재단운영비	41,769	44,111
■ 자체수입	△70,351	△31,661

□ **지원 필요성**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제도('10년 도입)의 대출재원 조성을 위해 발행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대납이자 지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소득수준별 이자 및 특별상환유예 지원

○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콜센터 운영, IT 기반 구축 등 재단 고유사업 및 재단운영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장학재단 출연**	**197,501**	**197,629**	**227,414**	29,785	15.1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대납이자	125,478	164,331 기존분 154,321 (6.4조원x2.41%) 신규 14,954 (1.0조원x2.70%x7/12) 군이자면제 △4,944백만원	157,469 기존분 143,789 (6.2조원x2.32%) 신규 17,778 (1.1조원x2.68%x7/12) 군이자면제 △4,098백만원	△6,862	△4.2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4,562	4,944 (8.81만명x2.49백만원 x2.25%)	4,098 (7.62만명x2.45백만원 x2.20%)	△846	△17.1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 면제	2,047	2,040 (2.62만명x2.83백만원 x2.75%)	1,865 (2.67만명x2.70백만원 x2.58%)	△175	△8.6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5,220	5,987 (3.2천명x1.88백만원)	5,477 (3.2천명x1.75백만원)	△510	△8.5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8,294	7,669 순수이자 지원 4,230백만원 금리 인하 지원 3,439백만원	3,972 순수이자 지원 986백만원 금리 인하 지원 2,986백만원	△3,697	△48.2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1,883	2,385 '16년 상각 2,385백만원	3,020 '17년 상각 3,020백만원	635	26.6
■ 고유사업비	36,106	38,855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 1,980백만원 ·대학생 지식봉사	39,063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 2,400백만원 ·대학생 재능봉사	208	0.5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1,728백만원 ·민간기부인프라 구축 : 306백만원 ·통계조사분석 : 585백만원 ·맞춤형 콜센터 운영 : 16,451백만원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 1,647백만원 ·소득분위 산정체계 운영 : 603백만원 ·학자금 지원 IT 구축 및 운영 15,555백만원	: 1,901백만원 ·민간기부인프라 구축 : 304백만원 ·통계조사분석 : 588백만원 ·맞춤형 콜센터 운영 : 16,693백만원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 1,933백만원 ·소득구간 산정체계 운영 : 611백만원 ·학자금 지원 IT 구축 및 운영 14,633백만원		
■ 재단운영비	40,042	41,769 ·인건비 : 27,178백만원 ·경상경비 : 14,591백만원	44,111 ·인건비 : 30,172백만원 ·경상경비 : 13,939백만원	2,342	5.6
■ 지방이전비	484	-	-		
■ 자체수입	△26,615	△70,351 ·예치금 이자 : △976백만원 ·기타 재원 활용 : △3,796백만원 ·보증 기본재산 : △65,579백만원	△31,661 ·예치금 이자 : △519백만원 ·기타 재원 활용 : △8,316백만원 ·보증 기본재산 : △22,826백만원	38,690	△55.0
□ **비목**(합계)	197,501	197,629	227,414	29,785	15.1
○ 기본운영출연금(350-01)	40,526	41,769	44,111	2,342	5.6
○ 사업출연금(350-02)	156,975	155,860	183,303	27,443	17.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학자금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콜센터 운영, 소득구간 산정체계 운영, 학자금 IT 구축·운영 등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 및 운영비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51,703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73,093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6,352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면제 : 2,278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5,797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 8,796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1,883 ▪ 고유사업비 : 38,399 ▪ 재단운영비 : 40,960 ▪ 지방이전 : 760 ▪ 자체수입 : △26,615	-		
'18	197,629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64,331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944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면제 : 2,040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5,987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 7,669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 2,385 ▪ 고유사업비 : 38,855 ▪ 재단운영비 : 41,769 ▪ 자체수입 : △70,351	197,629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64,331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944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2,040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5,987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 7,669 ▪ 일반상환학자금 손실보전금 : 2,385 ▪ 고유사업비 : 38,855 ▪ 재단운영비 : 41,769 ▪ 자체수입 : △70,351	-
'19	234,259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203,562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군이자면제 5,000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1,912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6,218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5,598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2,614 ▪ 고유사업비 40,162 ▪ 재단운영비 39,771 ▪ 자체수입 △70,578	227,414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57,469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098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1,865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5,477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 3,972 ▪ 일반상환학자금 손실보전금 : 3,020 ▪ 고유사업비 : 39,063 ▪ 재단운영비 : 44,111 ▪ 자체수입 : △31,661	△6,845
'20	421,666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301,605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6,633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3,794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9,218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21,316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3,602 ▪ 고유사업비 40,727 ▪ 재단운영비 39,771 ▪ 자체수입 △5,000	252,794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60,963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098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1,865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5,477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 7,172 ▪ 일반상환학자금 손실보전금 : 3,020 ▪ 고유사업비 : 39,063 ▪ 재단운영비 : 45,291 ▪ 자체수입 : △14,155	△168,872
'21	421,666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301,605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6,633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3,794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9,218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21,316 ▪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 3,602 ▪ 고유사업비 40,727 ▪ 재단운영비 39,771 ▪ 자체수입 △5,000	252,794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60,963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098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1,865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5,477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 7,172 ▪ 일반상환학자금 손실보전금 : 3,020 ▪ 고유사업비 : 39,063 ▪ 재단운영비 : 45,291 ▪ 자체수입 : △14,155	△168,872
'22	-		252,794	▪ 취업후상환학자금 채권 대납이자 : 160,963 ▪ 취업후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4,098 ▪ 일반상환학자금 군이자면제 : 1,865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5,477 ▪ 일반상환학자금 이차보전 : 7,172 ▪ 일반상환학자금 손실보전금 : 3,020 ▪ 고유사업비 : 39,063 ▪ 재단운영비 : 45,291 ▪ 자체수입 : △14,155	252,794
연평균 증가율 (%)	13.8		3.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8. 2월 : 대통령 공약사항 및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30-3) 학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 등 지원/ (31-5)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09. 5월 : 한국장학재단 설립('09.5.7.)
- '09. 11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행계획」발표
- '10. 1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
- '17. 7월 : 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49-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4	-	3,353	2,044	-	2,517	-	1,976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불용사유
- 채권 조달금리 하락(2.65%→2.15%)에 따라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집행액 감소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대상자 중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인원 감소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집행액 감소로 불용 발생 등

○ '16년 불용사유
- 채권 조달금리 하락(2.65%→1.80%)에 따라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집행액 감소로 불용 발생

- 학생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지원 대상 대출잔액의 감소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집행액 감소로 불용

○ '17년 불용사유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채권 조달금리 하락* 및 학자금 대출 공급 규모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 (기존 채권 발행분) 계획 2.39% → 실적 2.04% / (신규 채권 발행분) 계획 2.41% → 실적 2.19%

** 대출 공급 계획 : 13,485억원 → 실적 : 9,046억원

(단위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53 (2,749)	(132)	( )	3,353 (2,881)	2,749 (2,829)	(22)	604 (29)
'16년	2,044 (1,428)	(902)	( )	2,044 (2,331)	1,428 (2,264)	(41)	615 (26)
'17년	2,517 (1,975)	(266)	( )	2,517 (2,241)	1,975 (2,146)	(47)	542 (48)

(3) 국회 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50,703	-	202,637	△5,008	197,629	173,954	88.0

○ 국회 반영 증감내역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채권 대납이자 35억원, 일반상환학자금 금리 인하 지원 8억원, 경상경비 7억원 감액

* 정부안 202,637백만원 → 국회 197,629백만원(△5,008백만원)

○ 집행현황 : '18년 예산 197,629백만원 중 173,954백만원 집행(88.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14년 결산국회>

○ (교문위) 한국장학재단은 '14년도 고유사업비 398억 3,300만원의 87.8%인 34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히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사업은 재단이 시범사업으로 부산에 맞춤형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려는 사업이나 사업 지연으로 집행률이 25.2%이며,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도 집행률이 67.0%로 실적이 부진함.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과다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치) 맞춤형 학자금 지원 모니터링 사업은 '14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15년 예산 편성 시 '14년의 실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고, '16년에는 '14년 개소 비용과 '15년 운영비를

감안하여 편성함
- '16년 예산 편성시 내역별 집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

○ (교문위)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의 수혜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병보유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학생 창업자 등이 있는데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

⇒ (조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유예제도 차상위계층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15.11.20.~)

※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병 보유자 등 지원유형에 "차상위계층" 유형 추가(특별상환유예 심사시스템 개선)

※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콜센터 안내를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홍보 실시

<'15년 결산국회>

○ (교문위)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의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조치) '17년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 편성시 '15년 결산 실적(203,119백만원)을 반영하여, '16년 대비 172억원 감액 편성

※ '17년 대출 지원 수요(198,199백만원) 현실화

○ (교문위)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제도를 정비할 것

⇒ (조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16년 2학기~)

※ (기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더라도 대출 불가

⇒ (개선)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가능자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대출제도(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 (교문위, 예결위) 교육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조달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조치 1) '16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7%에서 2.5%로 추가 인하

※ '16년 2학기 신규 대출자 및 이전에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 적용

⇒ (조치 2) 상환기간 도래 채권 집중관리, 지자체 연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등 상환율 제고 노력 지속

<'16년 결산국회>

○ (교문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상환학자금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고 자발적 상환금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가 소득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채무액을 상환하도록 하며, 관련 입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

⇒ (조치) 상환방식 개선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공포('18.3.13.)

- 실직·폐업·육아휴직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곤란자에 한해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 개정)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 (교문위, 예결위)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정원 감축, 국가장학금 확대 등 여건 변화 및 기 공급된 대출의 회수 규모 등 신규 대출 수요 감소 요인을 감안하여 학자금 대출 채권 발행 규모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조치) 학자금 대출 채권 발행 규모 예측 정확도 제고 추진

- 학자금 대출 채권 발행 규모 산정은 ①대출 공급-②대출 회수+③채권 원리금 상환으로 구성
- ③채권 원리금 상환은 정해진 상환 스케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여,
- ①학자금 대출 공급계획과 ②학자금 대출 회수계획에 대한 정확도 제고 추진

① 학자금 대출 공급계획 예측의 정확도 제고

- 학자금 대출 공급 추계 시 기존에는 정원 감축,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의 증가,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등 대출 증감 요인을 감안하였으나,
- 향후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규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등을 추가로 감안

※ '16년 대출규모 감소의 주요 요인은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강화 및 등록금 수납기간 준수 등 자체적인 학자금 지원 효율성 개선 노력에 따른 결과임

② 학자금 대출 회수계획 정확도 제고

- 대출 잔액 산정 방식 변경

(기존) 전년도와 전전년도 말일(12월 31일)의 대출 잔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결정 → (개선) 전연도의 일일(365일) 대출 잔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결정

- 졸업자 수·취업률 등의 요인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미치는 효과(연관성)를 자체 분석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액 추계 정교화

○ (교문위, 예결위)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과 햇살론 대출자 현황 및 학자금, 주거비 등에 대한 금융 수요 규모와 현실적인 자금 조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학생 및 청년이 금리가 높은 햇살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의 대상 및 한도를 조정하는 등 대학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1)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실시(학기당 100만원→150만원, 연간 300만원)

⇒ (조치 2) 상대적으로 저금리('18. 1학기 기준 2.20%)인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에 대한 안내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생활비) 대출제도 안내 공문 시행('17.7월)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홍보 포스터 배포 완료('17. 8월)
- '18. 1학기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된 한국장학재단 대출제도 안내*와 홍보 포스터 배포('18. 3월)

* 금리 인하(2.25%→2.20%), 생활비 한도 확대

○ (예결위) 교육부는 취업연계 신용회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과 연계하여 부실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활성화 추진

- 부실채무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에 대한정보를 제공하고,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부실채무자에게는 신용유의정보 해제, 분할상환 및 손해금 감면혜택 제공('17.12.~)

* 실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거쳐 희망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고용노동부 주관)

※ '18. 2월 현재 부실채무자 5명이 본 사업을 통해 취업 및 신용회복 지원 혜택 수혜

⇒ (조치 2) 지자체 연계를 통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

- 지자체(서울시, 대구시, 울산시)와의 협약을 통해 부실채무자에게 지자체가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또는 연체이자를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약정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 '17년 지자체 연계 신용회복 지원 : 237명 지원

※ 공공기관 취업연계의 한계 :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므로, 부실채무자에게 우선 선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 논란 및 부실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분	대출종류	대출금리	국채금리(5년)	지원 대상 및 용도	비고
미국 (FSA)	플러스론	6.31%	2.62%	■ 학부생의 학부모 및 대학원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수수료 (4.272~4.292%)
	스테포드론 (비보조)	3.76%(학부) 5.31%(대학원)		■ 학부생, 대학원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수수료 (1.068~1.073%)
	스테포드론 (정부보조*) * 재학 중 무이자	3.76%		■ 저소득층 학부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 ■ 전체 학자금 대출 중 24% 차지	대출수수료 (1.068~1.073%)
	퍼킨스론 (대학보조*) * 재학 중 무이자	5.0%		■ 저소득층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등록금 및 생활비 / 전체 학자금대출중 2% 차지	대출수수료 없음
영국 (SLC)	ICRL (Income Contingent Repayment Loan)	3.9%	1.17%	■ 전일제/시간제 학생, 영국 및 EU 학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물가상승률 + 최대 3%
호주 (교육부·국세청)	HELP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1.9% (물가상승률)	2.38%	■ 등록금 및 생활비	물가상승률 감안, 금리 결정
일본 (JASSO)	제1종 대출	(1종) 0%(무이자)	-0.11%	■ 저소득층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
	제2종 대출	(2종) '17년 기준 0.33%(고정형) 0.10%(변동형)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등록금 및 생활비	졸업 후 최대 연 3% 금리 적용
뉴질랜드 (교육부·국세청·사회개발부)	Student Loan	무이자	2.44%	■ 등록금 및 생활비	-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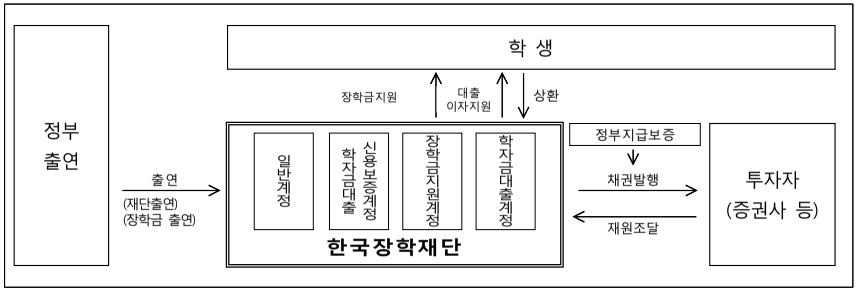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자금 대출 수혜 인원 (만명)	목표	39	39	지표 삭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16년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수혜인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연간 취업후상환학자금 수혜인원 + 연간 일반상환학자금 수혜인원) / 2 ※1, 2학기에 모두 지원받는 학생 수를 1명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임	한국장학재단 통계
	실적	43	42	-					
	달성도	110	107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이용률 (%)	목표	75	78	지표 삭제			학자금 지원제도의 다양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자 확대	한국장학재단 이용 학생 수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한국장학재단 통계
	실적	75	78	-					
	달성도	100	100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	'19년 목표치(5,952억원)는 최근 3개년 평균 상환액*(4,983억원)에 최근 3개년 표준편차(969억원)을 합산한 최고 수준 목표임 * 최근 3개년 실적 : ('15) 3,962억원 → ('16) 5,096억원 → ('17) 5,891억원	연간 상환액(반환금 제외) / 연간 상환목표액(최근 3년간 평균 상환액+최근 3년간 표준편차) X100	한국장학재단 통계
	실적	신규	100	100	-	-			
	달성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율 (%)	목표	신규	신규	97.32	97.85	98.03	최근 4개년 평균 상환율 수준으로 설정 ※상환율 : ('14) 97.69% → ('15) 97.92% → ('16) 98.66% → ('17) 97.84%	당해연도 대출 상환액 / 당해연도 대출상환약정액 X 100	한국장학재단 통계
	실적	97.92	98.66	97.84	-	-			
	달성도			100.5					
부실채권 회수율 (%)	목표	신규	신규	신규	9.82	12.09	최근 3개년 평균 회수율 수준으로 설정 ※부실채권 회수율 : ('15) 9.07% → ('16) 12.44% → ('17) 14.77%	당해연도 부실채권 회수액 / 직전 3개년 부실채권 발생액 X 100	한국장학재단 통계
	실적	9.07	12.44	14.77	-	-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참고 1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학생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7.11. 학자금 수혜 학부모 간담회)

□ (학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이 있는지 여부('17.6월, 전문대총학생회장 간담회)

< 예산(안) 반영사항 >

□ '18년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를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함에 따라 확대분 반영

□ 물가 상승 및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위해 '22년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여 예산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대출금리 인하)** '09년 학자금 대출 최초 시행 이래로,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 ('09) 5.8% → ('11) 4.9% → ('13) 2.9% → ('16.2학기) 2.5% → ('17.2학기) 2.25% → ('18.1학기) 2.20%

≪ 학자금 대출금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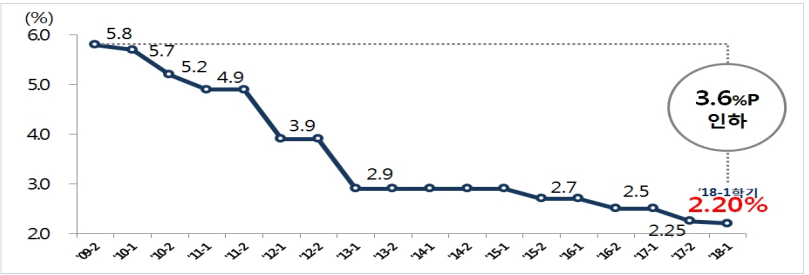

□ **(저금리 기조 유지)** 대내·외 금리 상황*의 불확실성 및 재원 조달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정책기조 유지

* 미국 금리 인상 추세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17.11.30., 0.25%p↑) **및 시중금리, 국내 정책자금 금리, 재단채 조달금리**도 **동반 상승**세

□ **(이자 부담 경감)** 국정과제(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 '17. 2학기부터 '18. 7월까지 학자금 대출자 **161만명**이 **113.3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 현장의 변화 >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국정과제 신속 이행

·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일보, '17.7.18.)

참고 3 정책수요 및 추계(산정)근거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 ('18) 164,331→('19) 157,469백만원

○ **지원사유**

- 학생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 대출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재단채권의 이자비용을 재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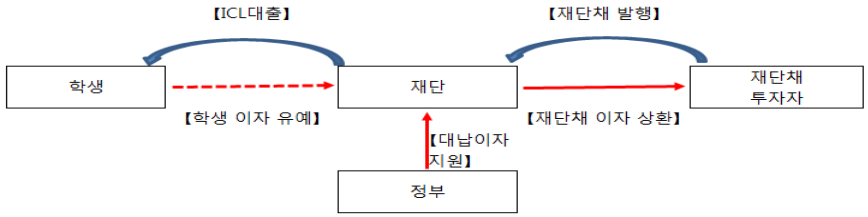

○ **예상 조달금리** : 기존분 2.32%, 신규분 2.68%

- '18년 국고채 금리* 및 '19년 국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국내 증권사 평균치)등을 감안하여 가정(금리 산정 세부내역 별첨 참조)

* 국고채 금리 추이(5년물) : '17년말 금리 2.34%, '18.6월말 금리 2.35%, '18년말 금리(증권사 전망 평균) 2.52%

○ **예산 내역 : 157,469백만원**

구분	대납이자 (=A×B×C)	금리 (A)	기간 계산(B)	잔액(C)	비 고
기존분	143,789백만원	2.32%	12/12	61,996억원	'10~'18년 채권발행분의 '19년 추정 평잔
신규분	17,778백만원	2.68%*	7/12	11,364억원	= [신규 대출(8,629억원) - 대출원리금 상환(8,265억원) + 재단채 원금 상환(11,000억원)]
군이자 중 복	△4,098백만원	-	-	-	
합 계	**157,469백만원**			73,360억원	

* 변동금리 발행(2.38%)과 고정금리 발행(2.79%)을 조달 포트폴리오(변동 27% +고정 73%)로 발행 시 산출되는 금리(금리 산정 세부내역 별첨 참조)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금리인하 지원) : ('18) 3,439 → ('19) 2,986백만원

○ **지원사유**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금리와 조달금리 간의 차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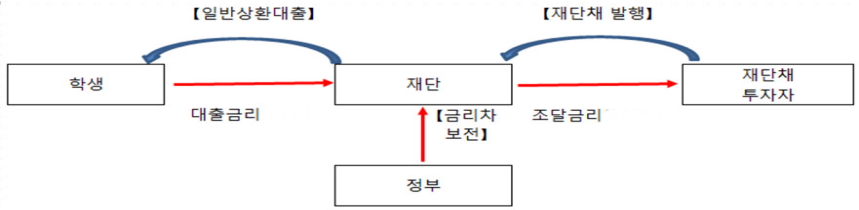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 '19년 예산 산정내역

구분	'18 예산(A)	'19 예산(B)	차이(B-A)
예산	**3,439백만원**	**2,986백만원**	**△453백만원**
(산출 근거)	• **금리 인하 지원 : 3,439** ① 13년 745백만원 : 126,301백만원 × 0.59% ② 18년 2,694백만원 : 839,682백만원 × 0.55% × 7/12	• **금리 인하 지원 : 2,986** ① 13년 736백만원 : 120,000백만원 × 0.61% ② 18년 1,099백만원 : 960,000백만원 × 0.11% ③ 19년 1,151백만원 : 334,381백만원 × 0.59% × 7/12	• **금리인하 지원: △453백만원**

○ **(금리인하 지원) 2,986백만원**

① 기존분 : 1,835백만원

구분	대출금리* (A)	조달금리** (B)	기간 계산 (C)	재단채 잔액 (D)	금리인하지원 =[(B-A)×C×D]
'13년	2.90%	3.51%	12/12	120,000백만원	736백만원
'18년	2.20%	2.31%	12/12	960,000백만원	1,099백만원
합계					1,835백만원

* 대출금리 : 해당연도 대출금리 ** 조달금리 : 해당연도 발행 재단채 금리

② 신규('19년) : 1,151백만원

구분	대출금리* (A)	조달금리** (B)	기간 계산 (C)	대출채권 잔액 (D)	금리인하지원 =[(B-A)×C×D]
'19년	2.20%	2.79%	7/12	334,381백만원	1,151백만원

* 대출금리 : 2.20% 유지 가정 ** 조달금리 : '19년 신규 발행 재단채 예상 조달금리

별 첨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산정 세부내역**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산정 내역

○ 신규분 2.68% (변동 27%, 고정 73%)

취업후상환 학자금 2.68% (100%)	=	변동금리 2.38% (27%)	+	고정금리 2.79% (73%)
		CD 2.00% + 스프레드* 0.38%p		국고채(5년)** 2.55% + 스프레드 0.17%p

* 스프레드 : (변동금리) 조달 시 CD금리에 가산, (고정금리) 정부보증채와 국고채 5년물 금리 차이

** 국고채(5년) : '18년 발행 취업후상환 재단채 평균 만기 기준

※ '19년 변동/고정금리 조달 비중은 '18년 재단채 발행 포트폴리오 계획 비중 유지 가정

- 변동금리 : 2.38%(A+B)

. CD 금리 전망 : 2.00%(A)

'18년 CD 금리(A)	'19년 기준금리 인상(B)	'19년 CD 금리 전망(A+B)
1.90%*	0.10%p**	2.00%

* 1.90% : '18.6월말 CD 금리(1.65%) + '18년 하반기 기준금리 1회 인상(0.25%p)

** 0.10%p : '19년말 기준금리 전망(1.85%) - '18년말 기준금리 전망(1.75%)
('18. 11월말 기준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금리 전망' 참고)

. 변동 조달 스프레드 : 0.38%p(B)

정부보증채 5년물 1년간 평균(A)	IRS 5년물 1년간 평균(B)	변동 조달 스프레드(B-A)
2.51%	2.13%	0.38%

【변동금리 조달 구조】

거래구분		금리
채권발행	지급(A)	정부보증채금리
IRS계약	수취(B)	IRS금리
	지급(C)	CD금리
한국장학재단 최종 지급금리(A-B+C)		(정부보증채-IRS)+CD금리

※ IRS (Interest Rate Swap) : 고정(변동)금리를 변동(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계약

- 고정금리 : 2.79%

구 분	금 리	비 고
'18년 국고채 5년물 금리 예상(A)	2.52%	국내 증권사 전망 평균 적용
'19년 국내 기준금리 인상(B)	0.10%p	'19년말 기준금리 전망(1.85%) - '18년말 기준금리 전망(1.75%)
'19년 국고채 5년물* 금리 전망(A+B)	2.62%	
정부보증채 스프레드*(C)	0.17%p	정부보증채 5년물 금리(2.51%) - 국고채 5년물 금리(2.34%) ※ 최근 1개년 평균
'19년 고정 조달금리 전망(A+B+C)	2.79%	

* 5년물 : '18년 발행 취업후상환 재단채 평균 만기 기준

【'18년 증권사 국고채 5년물 금리 전망】

기 관 명	금 리
신영증권	2.50%
NH투자증권	2.60%
유진투자증권	2.60%
현대차투자증권	2.50%
하나금융투자	2.40%
삼성증권	2.80%
IBK투자증권	2.20%
대신증권	2.50%
평 균	2.52%

○ 기존분 2.32%

(단위 : 억원)

구분	고정금리 조달		변동금리 조달		합계	
	평잔(비중)	금리	평잔(비중)	금리	평잔(비중)	금리
'19년 예상	26,802 (43%)	2.44%	35,194 (57%)	2.22%	61,996	2.32%

【기존분 금리 조달 상세】

(단위 : 억원)

발행연도	고정조달		변동조달		합계	
	평잔	금리	평잔	금리	평잔	금리
'10년	1,100	4.76%	-	-	1,100	4.76%
'11년	1,400	4.66%	1,400	2.36%	2,800	3.51%
'12년	-	-	3,643	2.18%	3,643	2.18%
'13년	-	-	7,532	2.20%	7,532	2.20%
'14년	-	-	12,302	2.23%	12,302	2.23%
'15년	5,815	2.49%	5,850	2.22%	11,665	2.36%
'16년	8,776	1.84%	2,795	2.22%	11,571	1.93%
'17년	5,412	2.26%	1,672	2.31%	7,084	2.27%
'18년(예상)	4,300	2.49%	-	-	4,300	2.49%
합계	**26,802**	**2.44%**	**35,194**	**2.22%**	**61,996**	**2.32%**

[300]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A) (2018추경)	2019예산 (B)	증 감 (B-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33,259	3,995,772 (4,042,786)	3,998,603	2,831	0.1

* 사업코드 : 13-11-0-050-052-2600-2645-300
* 담 당 자 : 대학학술정책관(심민철), 대학재정장학과장(김태경), 사무관(나지인, 유가희, 신영국)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김홍오), 주무관(장명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장학금 지원) Ⅰ유형(소득분위별 정액차등 지원),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교내, 교외),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학생·후학습자에 대한 등록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취·창업 유도하고,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사업기간	'09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간접비	-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장학금 : 3,605,140백만원 >>

○ 사업개요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

○ 산출근거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 3,218,981백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 : 2,738,981백만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 400,000백만원
  · 지역인재장학금 : 80,000백만원
- 다자녀장학금 : 383,204백만원
- 사업운영비 : 2,955백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287,366백만원 >>

○ 사업개요

- 근로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완화
- 대학생(멘토) 국가근로를 통해 다문화·탈북 학생(멘티)의 학교생활 적응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 산출근거

- 교외근로 장학금 : 145,918백만원(4.6만명×10,500원×302시간)
- 교내근로 장학금 : 131,505백만원(6.0만명×8,350원×0.8×330시간)
  * (대학 대응투자) 교내근로 국가근로장학금의 20% 대응투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6,750백만원(4천명×13,000원×130시간)
- 사업운영비 : 3,193백만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19,690백만원 >>

○ 사업개요

-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인재 육성
- 예체능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학문간 균형 발전과 관련 분야의 부가가치 제고
-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해외유학 기회 제공

○ 산출 근거

- 인문100년장학금 : 12,988백만원(2,400명×5.4백만원)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2,240백만원(280명×8백만원)
- 드림장학금 : 3,953백만원(유학준비생 50명×7.6백만원 + 유학생 58명 ×61.6백만원)
- 사업운영비 : 509백만원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86,407백만원 >>

○ 사업개요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 고졸 후학습자)** 후학습자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미스매치(고졸 인력 과소공급) 해소

○ 산출 근거

- Ⅰ유형 장학금 : 28,080백만원(3.6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 Ⅱ유형 장학금 : 57,600백만원(9천명 × 2학기 × 3.2백만원)
- 사업운영비 : 727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5,772백만원**	**3,998,603백만원**
■국가장학금 지원	- Ⅰ유형 장학금 : 2,941,600백만원 - Ⅱ유형 장학금 : 400,000백만원 - 지방인재장학금 : 80,000백만원 - 다자녀장학금 : 260,000백만원 - 사업운영비 : 2,941백만원	- Ⅰ유형 장학금 : 2,738,981백만원 - Ⅱ유형 장학금 : 400,000백만원 - 지방인재장학금 : 80,000백만원 - 다자녀장학금 : 383,204백만원 - 사업운영비 : 2,955백만원 ※ 인건비 처우개선율 1.8%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 교외근로 장학금 : 112,237백만원 - 교외근로 장학금 : 140,779백만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6,7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3,173백만원	- 교외근로 장학금 : 145,918백만원 - 교내근로 장학금 : 131,505백만원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6,7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3,193백만원 ※ 인건비 처우개선율 1.8%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인문100년 장학금 12,988백만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240백만원 - 우수학생해외유학(드림) 장학금 3,953백만원 - 사업운영비 507백만원	- 인문100년 장학금 12,988백만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240백만원 - 우수학생해외유학(드림) 장학금 3,953백만원 - 사업운영비 509백만원 ※ 인건비 처우개선율 1.8%
■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 28,080백만원 - 사업운영비 : 524백만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 28,080백만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 57,600백만원 - 사업운영비 : 727백만원 ※ 인건비 처우개선율 1.8%

□ 지원 필요성

<< 국가장학금 >>

○ 대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교육 격차 완화

<< 대학생 근로장학금 >>

○ 전공과 연계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생활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학업생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시급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할 수 있는 유인 필요

○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 노동시장 미스매치(고졸인력 과소공급)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후학습자 학비 경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 감 (B-A)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33,259**	**3,995,772**	**4,042,786 (+47,014)**	**3,998,603**	**2,831**	**0.1**
▪ 국가장학금 지원	**3,612,097**	**3,684,541**		**3,605,140**	**△79,401**	**△2.2**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3,379,374 (Ⅰ유형) 2,677,919 (Ⅱ유형) 623,393 (지역인재) 78,062	3,421,600 (Ⅰ유형) 2,941,600 (Ⅱ유형) 400,000 (지역인재) 80,000		3,218,981 (Ⅰ유형) 2,738,981 (Ⅱ유형) 400,000 (지역인재) 80,000	△202,619	△5.9
- 다자녀 장학금	229,802	260,000		383,204	123,204	47.4
- 사업운영비	2,921	2,941		2,955	14	0.5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73,651**	**262,939**	**(10,991)**	**287,366**	**24,427**	**9.3**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263,756 (교외근로)122,977 (4.4만명 × 9,500원 × 323시간) (교내근로)140,779 (6.7만명 × 8,000원 × 0.8 × 330시간)	253,016 (교외근로) 112,237 (3.7만명×9,500원 ×323시간) (교내근로) 140,779 (6.7만명×8,000원× 0.8×330시간)	10,991 (교외근로) 10,991 (0.3만명 × 10,500원 × 161.5시간 + 36,557명 × 1,000원 × 161.5시간)	277,423 (교외근로) 145,918 (4.6만명×10,500원× 302시간) (교내근로) 131,505 (6.0만명*×8,350원× 0.8×330시간) * 59,657	24,407	9.6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6,750 (4천명×13,000원 ×130시간)	6,750 (4천명×13,000원 ×130시간)		6,750 (4천명×13,000원 ×130시간)	0	0.0
- 사업운영비	3,145	3,173		3,193	20	0.6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 감 (B-A)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8,910**	**19,688**		**19,690**	**2**	**0.01**
- 인문100년 장학금	12,988 (2,400명 × 5.4백만원)	12,988 (2,400명 × 5.4백만원)		12,988 (2,400명 × 5.4백만원)	0	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2,240 (280명×8백만원)	2,240 (280명×8백만원)		2,240 (280명×8백만원)	0	0.0
- 드림장학금	3,178 (유학준비생 20명×12백만원 + 유학생 52명×56.5백만원)	3,953 (유학준비생 50명×7.6백만원 + 유학생 58명×61.6백만원)		3,953 (유학준비생 50명×7.6백만원 + 유학생 58명×61.6백만원)	0	0.0
- 사업운영비	504	507		509	2	0.4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01**	**28,604**	**(36,023)**	**86,407**	**57,803**	**202.1**
- 희망사다리 장학금	28,080 Ⅰ유형 28,080 (3.6천명×1.5학기×5.2백만원)	28,080 Ⅰ유형 28,080 (3.6천명×1.5학기×5.2백만원)	35,820 Ⅰ유형 7,020 (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Ⅱ유형 28,800 (9천명 ×1학기 3.2백만원)	85,680 Ⅰ유형 28,080 (3.6천명×1.5학기×5.2백만원) Ⅱ유형 57,600 (9천명×2학기×3.2백만원)	57,600	205.1
- 사업운영비	521	524	203	727	203	38.7
□ 비목(합계)	**3,933,259**	**3,995,772**	**4,042,786 (47,014)**	**3,998,603**	**2,831**	**0.1**
○사업출연금(350-02)	3,933,259	3,995,772	**4,042,786** (47,014)	3,998,603	2,831	0.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장학금 지원 >>

○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 확대 등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 근로장학금 초과수요 반영을 위하여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양질의 교외근로지를 적극 발굴하여 교외근로를 활성화

○ 허위근로 등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체계 보강 등 사업관리 체계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적 핵심 리더 양성

○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 제공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창업 문화를 활성화

○ 후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확대로 선취업 후학습 문화 정착과 나아가 노동시장 미스매치(고졸인력 과소공급) 해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945,043	■ 국가장학금 지원: 3,634,621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62,911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8,910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01			
'18	3,995,772	■ 국가장학금 지원: 3,684,541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62,939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88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04	3,995,772	■ 국가장학금 지원: 3,684,541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62,939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88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04	-
'19	3,950,640	■ 국가장학금 지원: 3,633,440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68,908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88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04	3,998,603	■ 국가장학금 지원: 3,605,140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87,366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90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86,407	47,963
'20	4,645,704	■ 국가장학금 : 4,328,504 ■ 대학생 근로장학금 : 268,908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19,688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28,604	4,172,368	■ 국가장학금 지원: 3,778,905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87,366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90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86,407	△473,336
'21	4,445,704	■ 국가장학금 : 4,128,504 ■ 대학생 근로장학금 : 268,908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19,688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28,604	4,222,368	■ 국가장학금 지원: 3,828,905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87,366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90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86,407	△223,336
'22			4,252,368	■ 국가장학금 지원: 3,858,905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87,366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9,690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86,407	4,252,368
연평균 증가율 (%)	6.3		1.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995,772	3,998,603	2,83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64.2	264.2	-
		재정지출 고용효과	55,497.2	55,536.2	39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0.06	0.06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국가장학금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으로 구성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표4>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4>고용장려금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1] 직·간접고용효과 : 가. 일반재정지출사업에 포함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대상 인원 ×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 추가고용기여율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 일반재정지출사업 : ① + ② = 55,536.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 39,986억원을 <표2> 및 <표4>의 '교육서비스업 사업출연금'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39,986억원 ÷ 0.72억원 = 55,536.2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64.2명** a. 3,600명[1] x 1[2] x 0.0734[3] = 264.2명 1) 지원대상 인원: '18년 3,600명, '19년 3,600명 2)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100% 3) 추가고용기여율: 기타 0.0734 적용 **□ 2018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55,497.2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264.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장학금 >>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국정과제)** 49-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51-1.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입학지원 강화
  * 49-4-1 체감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49-4-3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추진

○ 추진경위

- '11년 :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립(11월)
- '13년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발표
- '14년 :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3.45조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및 지방인재장학금 신설
- '15년 : 국가장학금 예산(3.6조원)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학년 → 1~2학년)
- '16년 : 국가장학금 예산(3.65조원)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3학년)
- '17년 : 국가장학금 예산(3.63조원) 및 다자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4학년)
- '18년 : 국가장학금 예산(3.68조원),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등 지원 대상 확대*
  *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120% 이하,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생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 대학생 근로장학금 >>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추진경위

- '09년 : 4년제 대학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설(한국장학재단)
- '10년 :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
- '12년 :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
- '13년 : '방학중 교외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전공연계형 근로지 및 공익적 근로지를 발굴하여 교외근로 활성화
- '14년 : 국가근로장학사업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우수근로장학기관 인증제 도입
- '15년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유형 예산 통합,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및 우수근로장학기관 150개 선정
- '16년 : 취업연계 중점대학 확대 운영(11개→25개), 우수근로장학기관 150개 선정
- '17년 :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지원) 신설 및 시범운영, 교외근로 의무비율 37%로 상향, 취업연계 중점대학 확대(25개→34개)
- '18년 : 교외교육근로 활성화 및 근로활동 범위 구체화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추진경위

- '09년 :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 국가우수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
- '11년 :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생' 사업 신설
- '12년 : 저소득층의 해외유학 지원을 위한 '드림장학금' 사업 신설
- '15년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사업 신설
- '16년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마련
- '17년 :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 선발인원 확대(100명→200명)
- '18년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저소득층 지원강화

<<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국정과제)** 52-6. 대학 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중소기업 취업 연계 및 창업 활성화)

○ 추진경위

- '13.5월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계획수립 시행
- '14.5월 : 기획재정부, 20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
- '15.2월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유형 신설, 창업장학생 190명 지원
- '16.3월 :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 및 장학생 보증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 '17.3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고용장려금) 편입
- '18.6월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6,753	38,456	39,446		39,450	39,558	39,958	470
- 국가장학금 지원	34,575	36,000	36,546		36,346	36,346	36,845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1,943	2,095	2,506		2,629	2,737	2,629	110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135	161	181		189	189	197	-
-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100	200	213		286	286	286	36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4년 불용사유 :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과 정부의 지원 기준금액과의 차이 및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추가 확충)이 예상보다 적어 발생

○ 2016년 불용사유 : 지방인재장학금(Ⅱ유형)의 높은 선발기준 및 계속 지원조건 미충족에 따른 대상학생 부족으로 불용 발생

* 제도개선('17년) : 선발기준 완화 및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 확대 등

○ 2017년 불용사유 : 다자녀장학금 수요 부족으로 불용 발생

* 제도개선('18년)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확대 및 연령 완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456 (38,456)	( )	( )	38,456 (38,456)	38,456 (38,190)	(1)	(265)
'16년	39,446 (38,946)	( )	( )	39,446 (38,946)	38,946 (38,850)	(1)	500 (95)
'17년	39,558 (39,333)	( )	( )	39,558 (39,333)	39,333 (39,131)	(1)	225 (201)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945,043	3,955,783	3,995,772	-	3,995,772	4,039,848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예산 3,995,772백만원(추경 4,042,786백만원) 중 4,039,848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장학금 지원 >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교육부는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집행실적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인재장학금 제도를 개선할 것('15년 교문위)

○ 교육부는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시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6년 예결위)

□ 조치사항

○ '16년 지방인재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5년 1학년 → '16~'17년 1~2학년)를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16.10. 완료)으로, 지방인재장학금 제도개선(선발 성적기준 완화*, 대학의 자율적인 인재 유치 기회 확대**)

* 선발 성적기준 : ('16) 수능·내신 2등급 → ('17) 수능·내신 3등급 → ('18) (일반대) 수능·내신 3등급, (전문대) 수능·내신 4등급 / 계속지원 성적기준: ('16) 85점 이상 → ('17년) 80점 이상

** 대학 자율인재 육성 비율 : ('16) 30% → ('17) 50%

○ ’18년부터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기준에 소득요건 도입(기초~8구간)으로 지역인재장학금의 역진적 지원 구조 해소 및 소득연계 강화*

* 소득 5구간 이하는 전(全)학기 내 등록금 전액 지원, 소득 6~8분위는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근로장학금의 교외 근무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15년 결산국회)

□ 조치사항

○ 대학의 교외근로 의무비율은 그 동안 꾸준히 높여와 ’17년 37%까지(’13년 10%) 설정하고 있으며,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게는 다음 연도 예산을 감축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함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고용부 및 중기청 등 관련부처와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연계 필요(’15년 예정처 예산심의)

○ 고용보험 외의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15년 교문위 결산)

○ 희망사다리장학생의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관리 기준이 모호함 (’16년 교문위 결산)

□ 조치사항

○ (장기근무 유도) 미래부 Grand ICT* 사업의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석사과정) 대상자 선발 시 의무근무 완료한 희망사다리 장학생을 선발 우대하여 장기근무 유도**(’15. 7.)

* 대규모 산학 공동연구 및 창의적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였던 미래부 사업

** 의무근무 기간 외에 계약학과 재학 기간만큼 중소기업 근무 연장 효과

- 고용부 및 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희망사다리 장학생의 장기근무유도방안 지속 협의

○ (사회보험 연계) 고용보험 외에 건강보험공단과 건보DB자료 협의 완료하여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15.10)

○ (의무종사 확인 강화)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해 의무종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18.3.)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국가장학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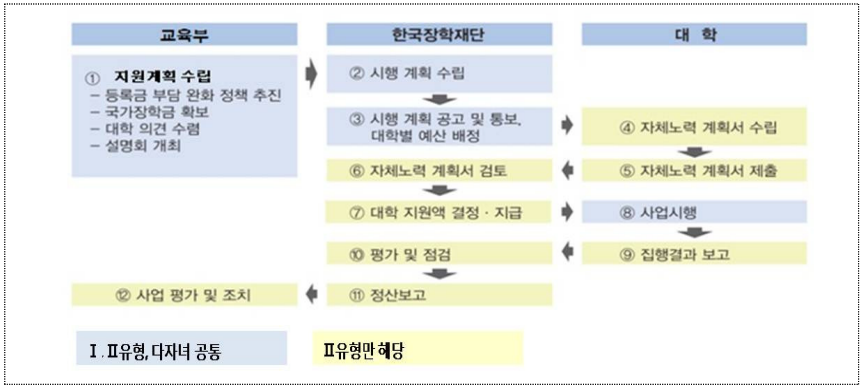

<< 대학생 근로장학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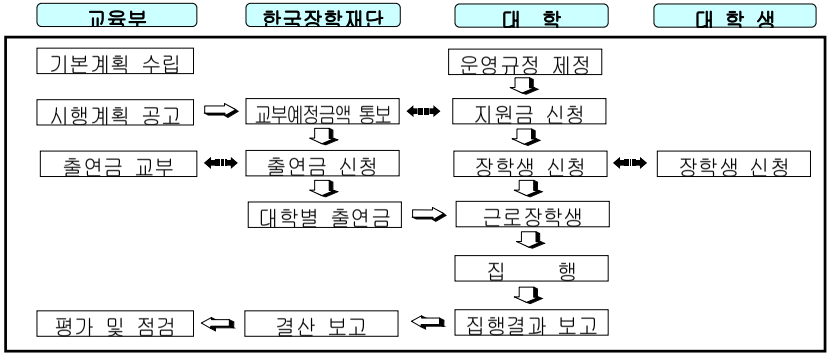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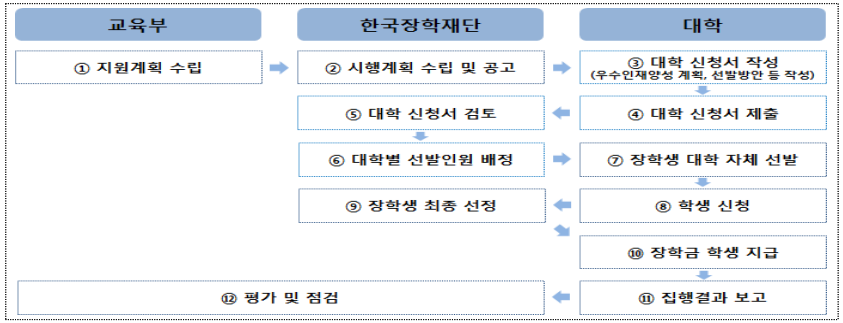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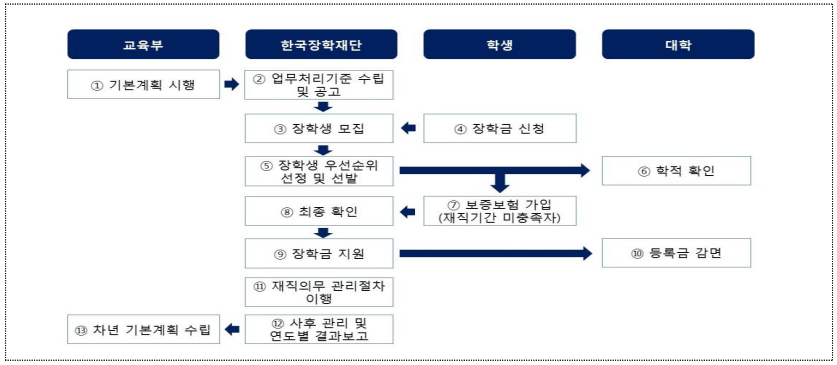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장학금 1인당 학기 평균지원액 (만원)	목표	신규	170	183	187	192	예산 감액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18년 실적치(193만원) 보다 1만원 하향한 192만원을 목표치로 설정 *192만원≒193만원('18년 실적치) ×99.6%(예산변동율/학령인구감소율)	국가장학금 1인당 학기 평균 지원액 =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총액) +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총액)] / [('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 ('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인원)]	한국장학재단 사업별 결과 보고
	실적	신규	190	194	193	-			
	달성도	-	112	101		-			
교외 근로 비율(%)	목표	신규	30	32	38	40	'19년 목표는 '18년 교외근로 의무비율(37%), '18년 목표(38%), '18년 추경요구액(110억원) 등을 감안하여 '18년 목표보다 2% 상향한 40%를 목표치로 설정	'19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외 근로시간 / '19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전체 근로시간 (해당년도 1~12월 기준)	한국장학재단 IT 시스템
	실적	신규	31	37.4	-	-			
	달성도	-	103	117		-			
희망사다리 장학생 만족도	목표	신규	78.1	80	82	84	최근 4년간 실적 증가율 평균(2.1%, '14년: 76.5점→'15년: 77.3점→'16년: 79점→'17년 81.5)과 '18년 목표 82점을 고려하여, '18년 목표 보다 2% 상향한 84점으로 설정(전년 대비 증가율 2.4%)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 무작위 표본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신규	79	81.5	-	-			
	달성도	-	101	102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2700] 국립대학 운영지원

(050)교육 - (052)고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2700] 국립대학 운영지원	1253	**3,109,782**	**3,310,423**	**200,641**
[2702] 국립대학 인건비(일반회계)	-	1,561,843	1,620,392	58,549
[100] 국립대학 인건비	-	1,561,843	1,620,392	58,549
[2703] 국립대학 기본경비(일반회계)	-	139,210	141,069	1,859
[200]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대상)	-	23,355	23,733	378
[250]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115,855	117,336	1,481
[2704]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일반회계)	1254	202,230	203,497	1,267
[300]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254	112,344	119,444	7,100
[30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264	59,480	53,532	△5,948
[304]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274	19,255	19,255	-
[30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280	1,959	1,953	△6
[306]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1290	9,192	9,313	121
[2740] 국립대학 시설확충(일반회계)	1305	619,123	736,698	117,575
[300] 국립대학 시설확충	1305	523,031	609,271	86,240
[301]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1320	96,092	42,427	△53,665
[305]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1345	-	85,000	85,000
[2742]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일반회계)	1351	523,348	545,620	22,272
[30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1351	437,148	457,377	20,229
[302]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377	86,200	88,000	1,800
[2743]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일반회계)	1386	64,028	63,147	△881
[301] 국립대병원 지원	1386	64,028	63,147	△881

[300]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16	112,344	119,444	**7,100**	**6.3**

* 사업코드 : 11 - 11 - 0 - 050 - 052 - 2700 - 2704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고등교육정책과장(이해숙), 사무관(임종일), 주무관(김재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등 지원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국립대(39개교)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대학(국립)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지원 : 119,444백만원**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료 지원 112,344백만원과 고등교육법 개정('19.8.1 시행)에 따른 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등) 소요액 추가 7,100백만원 편성
- 대학(39개교)의 특성, 시간강사 채용요인, 대학의 부담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뮬러 지표를 활용하여 배정

※ 국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산출내역

{[(대학 시간강사 강의료 소요 총액 - 대학 자구노력 반영 조정*액) + 퇴직금 등)] × 국가부담률(70%)} + 인센티브 지원액

* 자구노력 반영 조정 : 비전임교수강의율, 교수미충원, 교수면제(안식·연구년·제7호 파견), 최소수강인원 강의 초과분 패널티 반영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112,344	119,444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 지원 → 전업 88.7천원, 비전업 33.0천원 ※ '17년 공무원 임금상승률(3.5%) 등 고려	·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 지원 → 전업 88.7천원, 비전업 33.0천원 · 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등) 차등 지원

□ 지원 필요성

○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시간강사의 처우수준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 ('13~'15) 1,111억원 → ('16) 1,090억원 → ('17) 1,123억원 → ('18) 1,123억원

- 강사법 유예법률안('16.1.1.) 논의 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 중 강의료 단가 인상의 필요성 제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통과('15.12.23.) 시 국회 부대의견(발췌)】

3. 정부는 정부 예산 지원,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정부는 **국립대학 강사처우 개선 사업('16년, 약 1,090억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16년, 약 180억원)의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7. 정부는 강사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내 연구 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도서관 이용 및 대학 내 주차 등 **학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강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성과) 열악한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인상*하여 시간강사에 대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 강의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보장으로 **교육의 질 제고**

  * ('10) 4.25만원 → ('11) 6만원 → ('12) 7만원 → ('13~'15) 8만원 → ('16) 8.28만원 → ('17) 8.57만원 → ('18) 8.87만원

○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11.12.30)하였으나 대학 현장의 이견으로 4차례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18.2~9)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19.8.1일 시행 예정

- 이에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으로 소요되는 대학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통해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16**	**112,344**	**119,444**	**-**	**-**
■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비	112,316 (강의료: 217,322백만원*1식 퇴직금 등: 23,155백만원*1식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135,953백만원*1식 인센티브 지원 7,820백만원*1식)	112,344 (강의료: 217,322백만원*1식 퇴직금 등: 23,155백만원*1식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135,953백만원*1식 인센티브 지원 7,820백만원*1식)	**112,344** (강의료: 217,322백만원*1식 퇴직금 등: 23,155백만원*1식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135,953백만원*1식 인센티브 지원 7,820백만원*1식) **7,100(방학중임금)**	-	-
□ **비목**(합계)	**112,316**	**112,344**	**119,444**	**-**	**-**
○상용임금(110-03)	112,316	112,344	119,444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본적인 연구여건 조성 및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대학 자구노력에 대응한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배정정원 미충원 및 강의시수 면제 등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2,344	112,344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22,344*1식)			
'18	112,344	112,344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12,344*1식)	112,344	112,344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12,344*1식)	
'19	112,344	112,344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12,344*1식)	119,444	112,344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12,344*1식) 7,100(방학중임금)	
'20	202,219	202,219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202,219*1식)	136,562	116,276 (강의료,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16,276*1식) 14,697(방학중임금), 퇴직금(5,589)	
'21	202,219	202,219 (강의료, 퇴직금,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202,219*1식)	141,342	120,346 (강의료,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20,346*1식) 15,211(방학중임금), 퇴직금(5,785)	
'22			146,289	124,558 (강의료, 자구노력 조정 및 대학부담률, 인센티브 지원 124,558*1식) 15,744(방학중임금), 퇴직금(5,987)	
연평균 증가율 (%)	3.5		3.5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12,344	119,444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334	2,481	147
		재정지출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20.8	20.7	△0.1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2,48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상용임금(110-03) 1,123억원을 가이드라인〈표1〉의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81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194억원 ÷ 0.4812억원 = 2,481명 ※ 시간강사는 특성상 **고급 지식이 필요한 전문영역**이며, 시간제 근무로 **비교적 단기간 근무**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복무 특성이 달라 실제 창출 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시간강사 **일자리 안정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고용효과: 2,334명** - 상용임금(110-03) 1,123억원을 가이드라인〈표1〉의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812억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a. 1,123억원 ÷ 0.4812억원 = 2,33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료 및 처우개선비(방학 중 임금 등)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강의 경험 축적으로 교육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기여 * 시간강사는 90% 이상이 석·박사급인 고급 인력이며, 학문후속세대로서 교육·연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산·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일자리임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회통합위원회, 대학 시간강사 대책 관련 방안('10.10.25)
  · 당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도 낮고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강의료 인상 추진
- 국회 교문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 유예('16.1.1.→'18.1.1.) 시 부대의견 제시('15.12.31.)

※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대의견' 중 관련 내용

정부는 국립대학 강사처우 개선 사업('16년, 약 1,090억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16년, 약 180억원)의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공립대학과 사립학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 완화 및 대학내 연구공간 제공·학내시설 이용에 차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전문가(국회 추천)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여 고등교육법("강사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19.8.1)

* 총 18회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18.2월 ~ '18.8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10.6	-	1,110.6	1,090.5	-	1,123.4	-	1,123.4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10.6	-	-	1,110.6	1,110.6	-	0.05
'16년	1,090.5	-	-	1,090.5	1,090.3	-	0.16
'17년	1,123.4	-	-	1,123.4	1,123.1	-	0.28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2,344	-	112,344	-	112,344	110,514	98.4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대학별 시간강사료 110,514백만원 집행(98.4%)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가.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12년 결산 상임위 검토>

▪ 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강사료 인상 등 대학 강사의 처우(사립대학 강사 포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나.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립대학 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 기준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 교무과장 회의를 개최('14.1.28)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강사의 전업·비전업 구분 기준 설정

▪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반영('14.3월)하여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유도

- 또한, 시간강사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13년 160억→'14년 179억)하여 사립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교육부 예산 교부 → 예산 집행(사업수행) → 사업집행 후 정산 반납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대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률(%	목표	2	2	3.5	3.5	2	전년도와 예산 액이 동일함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당해년도 평균 강의료-전년도 평균 강의료)/ 전년도 평균 강의료}*100	대학정보공시
	실적	0.6	2	1.4	-	-			
	달성도	60	100	4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시간강사법 시행유예에 대한 부대의견(붙임1)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구성 및 명단(붙임2)

붙임 1 **시간강사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대의견**('15.12.31)

1. 정부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시간강사법")의 시행 유예 이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정부와 대학·교수·시간강사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이하 "대학 강사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사 제도 발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협의체를 통해 시간강사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학과 강사 등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 법률안을 내년도 8월까지 제출한다.

3. 정부는 정부 예산 지원,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반영과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사 강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정부는 국립대학 강사처우 개선 사업('16년, 약 1,090억원) 및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16년, 약 180억원)의 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평균 강의료 인상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 지표에 전임교원 확보율, 시간강사 강의료 수준 등 필요한 정책적 지표를 반영한다.

6.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7. 정부는 강사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 내 연구 공간 제공에 노력하고, 도서관 이용 및 대학 내 주차 등 학내 시설 이용에 있어서 강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붙임 2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명단

□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구 분	구 성		역 할
협의회	강사대표 (4)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강사법 등 법령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논의 및 도출
	대학대표 (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교무처장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교무입학처장협의회	
	전문가 (4)	▸ 국회 추천	
⇧	⇧		⇧(지원)
협의회 자문팀	▸ **국회, 강사·대학·교육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 * 이슈페이퍼 형태의 보고서 작성		▸ 협의체 논의 안건 관련 현황 및 대안, 쟁점 분석

□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명단

구분	추천기관(단체)	성명	비고
강사 (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
		이상룡	정책위원장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동애	지도위원
		채효정	강사
대학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정책연구팀장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장우진	아주대 교무처장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강문상	인덕대 교무처장
전문가 (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숙진	전주비전대 교수
		이용우 (위원장)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남기욱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
		유주희	경복대 교수

[303]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503	59,480	53,532	**△5,948**	**△10.0**

* 사업코드 : 070 - 110 - 0 - 050 - 052 - 2700 - 2704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무관(최문태), 주무관(양동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장비 구축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확충과 실험·연구공간 분리 및 실험실 내 전기·소방·환기 성능개선 등을 포함한 안전시설 개선
사업기간	'9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국립대학 39교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대학 39교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48,532백만원

○ 국립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노후기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 및 4차 산업혁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첨단 연구장비 구축 지원

- 11년 이상 **노후기자재 보유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 필요**

* **11년 이상 노후기자재 보유액** : ('15년) 6,512억원(36.5%) → ('16년) 7,091억원(39.2%) → ('17년) 6,923억원(42.5%) → ('18년) 7,554억원(44.4%)

☞ **[산출근거] : 7,554억원(노후기자재 보유액) × 6.4% = 485억원**

- 학생의 교육·실습과 전문분야 연구를 위해 **'교육·실습 : 공실관 : 고가·첨단기자재'**는 **60% : 30% : 10%** 비율로 배분

- **교육·실습 기자재 구입(30,904백만원)** : 대학 및 학부(과) 단위에서 활용하는 교육, 연구, 실험·실습용 장비
-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구입(12,103백만원)** : 연구개발 및 특수 전문 분야의 분석지원서비스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 **고가·첨단 기자재 구입(5,525백만원)** : 1억원 이상 또는 대학이 요구하는 첨단 연구장비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5,000백만원

○ 실험실 안전사고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악한 실험실 환경개선 지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총 소요액 >

(단위 : 억원, 기준 : '17.5월)

총 소요액	'18년 투자액				'19년 이후 소요액					
	소계	고위험 안전 장비	안전 환경 개선	위험물 취급소 (저정소)	소계	안전장비		노후 실험 장비	안전 환경 개선	위험물 취급소 (저정소)
						고위험	일반			
4,980	50	25	11	15	4,930	921	276	2,987	560	186

< '19년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수요조사 >

(단위 : 백만원, 기준 : '18.4월)

구분	합 계	위험물	안전장비	안전환경
소요액	45,758	2,005	31,312	12,441
학교수	34교	11교	32교	28교

- **(위험물취급·저장소)**「위험물관리법」개정('16.8.)으로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가 의무화**

☞ **[산출근거] '19년도 소요액 2,005백만원 × 100% = 2,005백만원**

- **(안전장비 확충)** 유해물질 사용 등으로 인한 **치명적 사고예방**을 위한 **고위험 안전장비 확충**

☞ **[산출근거] : '19년도 소요액 31,312백만원 × 7.9% = 2,467백만원**

- **(안전환경 개선)** 실험·연구공간 분리 및 노후 전기·소방·환기 성능개선 등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안전시설 개선**

☞ **[산출근거] : '19년 소요액 12,441백만원 × 4.2% = 52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480백만원	53,532백만원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액 : 54,480백만원 - 교육·실습기자재 32,688백만원 - 공동실험실습관 16,344백만원 - 고가·첨단기자재 5,448백만원	예산액 : 48,532백만원 - 교육·실습기자재 30,904백만원 - 공동실험실습관 12,103백만원 - 고가·첨단기자재 5,525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예산액 : 5,000백만원 - 위험물취급·저장소 : 1,439백만원 - 안전장비 확충 : 2,500백만원 - 안전환경 개선 : 1,061백만원	예산액 : 5,000백만원 - 위험물취급·저장소 : 2,005백만원 - 안전장비 확충 : 2,467백만원 - 안전환경 개선 : 528백만원

□ 지원 필요성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신규 수요 지속 증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 등 **대학 실험실습 여건 개선 수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은 매년 대폭 삭감*(연 △5.1%)** 되고 있는 실정

* **기자재 예산현황** : ('14년) 673억원 → ('15년) 653억원 → ('16년) 626억원 → ('17년) 595억원 → ('18년) 545억원 : 연 △5.1% 삭감

○ **(노후 기자재 증가) 내용연수(10년)가 초과된 노후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후기자재 교체 시급

* **11년 이상 노후기자재 보유액** : ('15년) 6,512억원(36.5%) → ('16년) 7,091억원(39.2%) → ('17년) 6,923억원(42.5%) → ('18년) 7,554억원(44.4%)

- 국립대학 협의회 등을 통해 **노후 기자재 교체 예산 증액 지속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감액으로 사용자(학생, 교수 등) 만족도 지속 감소**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17.10.23.) 및 전국 국립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17.11.21.) 건의사항 :** 첨단기자재 가격 상승 및 기자재 노후도가 심각수준으로 **노후기자재 교체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 요구**

< 연도별 노후기자재 보유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총 보유액	11년이상 기자재 보유액	총 보유액	11년이상 기자재 보유액	총 보유액	11년이상 기자재 보유액
합계	18,075	7,091 (39.2)	16,274	6,923 (42.5)	17,021	7,554 (44.4)
교육·실습 기자재	12,313	4,944 (40.2)	10,756	4,618 (42.9)	11,763	5,286 (44.9)
연구용 기자재	5,762	2,147 (37.3)	5,518	2,305 (41.8)	5,258	2,268 (43.1)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및 실험실 사고(1,024건)** 중 **83.3%(853건)**가 **대학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악한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지속 지원** 필요

< 최근 5년간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합 계	112	175	215	273	249	1,024
대학교	**97**	**153**	**170**	**216**	**217**	**853 (83.3%)**
연구소	15	22	45	57	32	171 (16.7%)

○ **「위험물관리법」 개정('16.8.)**에 따라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보유 시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보관 의무화***

* **(벌칙조항)** 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학 위험물 실태점검' 결과('17. 4월), **조사 대학 15교 중 13교(87%)가 위험물질 지정수량을 평균 2배, 최대 4.4배까지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어 위험물취급·저장소 설치가 시급한 상황

○ **대학**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에 비해 **숙련되지 않은 연구자들(학생)이 많지만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이 오히려 열악**하여 **실험실 사고에 취약**

- 실험실 **안전장비 확충** 및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503**	**59,480**	**53,532**	△5,948	△10.0
①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503**	**54,480**	**48,532**	△5,948	△10.9
▪ 교육실습기자재	40,263 (39교x1,032.4백만원)	32,688 (39교x838.2백만원)	30,904 (39교x792.4백만원)	△1,784	△5.5
▪ 공동실험실습관	16,890 (24교x703.8백만원)	16,344 (24교x681 백만원)	12,103 (24교x504.3백만원)	△4,241	△25.9
▪ 고가,첨단기가재	2,350 (8교x293.8백만원)	5,448 (13교x419.1백만원)	5,525 (14교x394.6백만원)	77	1.4
②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	**5,000**	-	-
▪ 위험물취급,저장소	-	1,439 (9교x159.9백만원)	2,005 (11교x182.3백만원)	566	39.3
▪ 안전장비 확충	-	2,500 (25교x100백만원)	2,467 (21교x117.5백만원)	△33	△1.3
▪ 안전환경 개선	-	1,061 (18교x58.9백만원)	528 (10교x52.8백만원)	△533	△50.2
□ **비목(합계)**	**59,503**	**59,480**	**53,532**	△5,948	△10.0
○ 공사비(420-03)	-	2,500	2,533	33	1.3
○ 자산취득비(430-01)	59,503	56,980	50,999	△5,981	△10.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통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활성화 및 안전장비 확충을 통한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9,48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59,480백만원			
'18	59,48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54,480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59,48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54,480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
'19	59,480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54,480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53,532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48,532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5,948
'20	107,064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82,064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25,000백만원	54,811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49,811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52,253
'21	107,064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82,064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25,000백만원	53,715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48,715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53,349
'22			53,177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48,177백만원 -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5,00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5.8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9,480	53,532	△5,948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633	569	△6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0.6	10.6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사업비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4>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535억원 ÷ 0.94억원* = 569명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기타 제조업) ※ 자료출처 :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 2018년 고용효과 - 595억원 ÷ 0.94억원* = 633명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기타 제조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내수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예산의 확대 지원 (사업비 증액시 1억 당 고용 창출 효과 1명 상승)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8. 4월 : '대학운영의 자율화' 방안으로 '실험실습여건개선 사업' 을 종료하고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합 운영('09~)

▪ '13. 6월 :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사업을 분리하여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단독 운영('14~)

▪ '15. 9월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사업은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으로 통합('1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73	673	653	876	876	595	595	595	5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이·전용, 이월·불용 사유

▪ 이월사유 : 실험실습기자재 구매지연 및 외자기자재 납품지연 등

▪ 불용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16년 이·전용, 이월·불용 사유

▪ 전용사유 : 실험실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치 및 고위험 실험실 공간분리 등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자산취득비→시설비)

▪ 불용사유 : 집행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53** ( )	4 ( )	0 ( )	657 ( )	**651** ( )	5 ( )	1 ( )
'16년	**876** ( )	5 ( )	43* ( )	881 ( )	**880** ( )	0 ( )	1 ( )
'17년	**595** ( )	0 ( )	0 ( )	595 ( )	**595** ( )	0 ( )	0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9,480	59,480	59,480	-	59,480	59,427	99.9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8.12월말 기준 59,427백만원 집행(99.9%)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및 감사원 지적

▪ 사업집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강화가 필요하고, 대학별 예산집행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15년도 결산, 교문위·예결위)

▪ 실험실습기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및 실태점검 등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17년도 결산, 교육위·예결위)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분기별 예산 집행실적 점검 강화 및 집행제외품목 구매방지에 관한 담당자 교육 실시

▪ 대학별 예산집행 데이터 관리시스템(맞춤형업무정보시스템) 구축

▪ 실험실습기자재 기자재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19년부터 예산 배분 시 기자재 활용실적 배분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목적 외 집행 관리·감독 강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지출한도 배분(교육부) → 예산 자율 편성(대학) → 예산심의·확정(국회) → 예산 자율 집행(대학)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실험실습기자재 사용자 만족도(점)	목표	65	75	77	79	지표 폐지	기자재 활용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 반영한 지표 설정	항목별 5점 척도에 따른 100점 환산	만족도조사
	실적	80.6	76.3	75.9	-	-			
	달성도	124	101.7	98.6	-	-			
실험실습기자재 활용건수(건)	목표	-	-	98	100	101	5천만원 이상 총 기자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용건수를 조사하여 지표 설정	∑5천만원 이상 기자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용건수 / ∑5천만원 이상 총 기자재 수	실험실습기자재 활용건수 조사
	실적	-	-	99.2	-	-			
	달성도	-	-	101.2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04]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교수 보직수행경비 지원	19,083	19,255	19,255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700 - 2704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예산담당관(이영찬), 사무관(유수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 교수 중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행경비 지원
사업기간	'02 ~ 계속 ※ '01년 지원근거 마련 ('14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 편성)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대학 39개교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대학 교수 중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행경비 지원 : 19,255백만원

- 산출내역 : 대학 교원 인건비 총액의 1.75%이내(1,110,120백만원* × 1.75% = 19,255백만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지원

* '18년 국립교원 봉급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18예산 (A)	'19예산 (B)
□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 경비지원	**19,255**	**19,225**
■ 교수보직경비	19,255	19,255

□ 지원 필요성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월정직책급 등)", "한국교원대 설치령 제11조(월정직책급 등)"에 따라 자율 책임 경영체제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9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한국교원대 설치령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11조(월정직책급 등) 제6조의2·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2012. 2. 29.>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 경비지원	**19,083**	**19,255**	**19,225**	**-**	**-**
■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 경비 지원	19,083	19,255	19,255	-	-
□ 비목(합계)	**19,083**	**19,255**	**19,255**	**-**	**-**
○교수보직경비(250-04)	19,083	19,255	19,255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립대학 교원 인건비의 일정비율 내에서 대학별 배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8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
'19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
'20	34,659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5,404
'21	34,659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5,404
'22			19,255	▪ 국립교원 인건비 총액 × 2% 이내 지원	19,255
연평균 증가율 (%)	12.5%		-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고등교육법」제7조,「국립학교설치령」제15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제9조,「한국교원대설치령」제11조

○ 추진경위

- ('08.3월) 교과부 업무보고 시 '대학 운영의 자율화' 방안으로 정부지원금의 용도제한 완화 보고
- ('08.4월) 교원성과급, 시간강사연구보조, 교수보직수행경비, 실험실습여건개선사업을 종료하고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사업 통합 신설
- ('14.9월) '국립대학교육기반조성'사업에서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경비지원' 사업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	173	-	173	193	-	193	-	193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교수보직 공석 또는 공석으로 인한 겸직에 따라 경비집행 잔액으로 133백만원 불용

○ (2016년) 교수보직 공석 또는 공석으로 인한 겸직에 따라 경비집행 잔액으로 130백만원 불용

○ (2017년) 교수보직 공석 또는 공석으로 인한 겸직에 따라 경비집행 잔액으로 172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3** ( )	- ( )	- ( )	173 ( )	**171** ( )	- ( )	1 ( )
'16년	**173** ( )	- ( )	- ( )	173 ( )	**171** ( )	- ( )	1 ( )
'17년	**193** ( )	- ( )	- ( )	193 ( )	**191** ( )	- ( )	2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 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율
19,255	-	19,255	-	-	19,255	100

○ 집행현황

■ '18년 12월 기준으로 19,255백만원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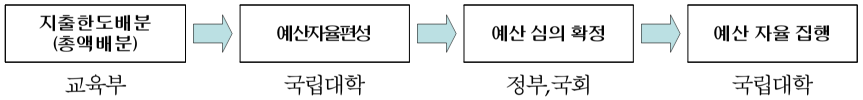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0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1,959	1,959	1,953	**△6**	**△0.3**

* 사업코드 : 11 - 11 - 0 - 050 - 052 - 2700 - 2704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사무관(임수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 조교의 동기유발을 통한 역량제고를 위해 매년 근무(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
사업기간	'12년 ~ ※ '15년부터 성과급으로 통합 지원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국립대학 39개교 조교 2,855명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953백만원
- 조교 2,855명 x 월 57,000원 x 12월 = 1,953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59	1,953
▪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2,864명 × 684천원 = 1,959백만원	2,855명 × 684천원 = 1,953백만원

※ 연구성과금 지원 대상 인원 감소 : 2,864명 → 2,855명

□ 지원 필요성

○ 교육공무원 신분인 조교의 동기유발을 통한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성과금 지급 필요

○ 조교에 대한 성과급(연구성과금)은 '15년도부터 지원해오던 사업으로서 조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중단될 경우, 일반직 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현재, 일반직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사업성과 >

□ **조교 성과평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체계 확립**

- 조교의 근무(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차등적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능력개발 등 **역량제고 보상체계 확립**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평가 및 운영	**1,959**	**1,959**	**1,953**	**△6**	**△0.3**
▪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59 (2,864명 × 684천원)	**1,959** (2,864명 × 684천원)	1,953 (2,855명 × 684천원)	**△6**	**△0.3**
□ 비목(합계)	**1,959**	**1,959**	**1,953**	**△6**	**△0.3**
○사업출연금(350-02)	1,959	1,959	1,953	**△6**	**△0.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립대학 39개교 조교의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차등적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와 능력개발 등 역량제고 보상체계 확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964	▪ 국립대 조교 2,872명 × 684천원			
'18	1,959	▪ 국립대 조교 2,864명 × 684천원	1,959	▪ 국립대 조교 2,864명 × 684천원	-
'19	1,959	▪ 국립대 조교 2,864명 × 684천원	1,953	▪ 국립대 조교 2,855명 × 684천원	△6
'20	1,959	▪ 국립대 조교 2,864명 × 684천원	1,953	▪ 국립대 조교 2,855명 × 684천원	△6
'21	1,959	▪ 국립대 조교 2,864명 × 684천원	1,953	▪ 국립대 조교 2,855명 × 684천원	△6
'22			1,953	▪ 국립대 조교 2,855명 × 684천원	1,953
연평균 증가율 (%)	△0.1		△0.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6">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959</td><td>1,953</td><td>△6</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27</td><td>27</td><td></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td><td>13</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당 사업은 국립대학 조교의 동기유발을 통한 역량제고를 위하여 성과급적 연구보조비를 지원하는 출연사업으로서,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36p. <표2>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및 <표4>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을 참조하여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을 적용</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pp.31~38
- 교육서비스업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72백만원 적용
- 19.53억원 ÷ 0.72억원 = 27명

□ 2018년 고용효과
- 19.59억원 ÷ 0.72억원 = 27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아님
○ 다만 연구성과금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 조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동기를 유발하여 자발적 역량제고를 지원함</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교육부 훈령)

○ 추진경위
- ('94) 교원의 교육·연구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성과급 예산 도입
- ('05)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교원 및 조교 연구보조비를 성과급으로 통합지급
- ('06) 개별대학의 전년도 성과급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등급별 차등 교부 시행 ※ 차등지급률 확대 ('06년 20%, '07년 23%, '08년 26%)
- ('09)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사업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하여 포뮬러-블럭펀딩 방식으로 지원
- ('12) '국립대학 교원 성과제고'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1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실시('15)에 따라 사업명 변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306.5		19.6	19.6		19.6		19.6	

※ '15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실시에 따라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사업'으로 축소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64 (19.64)	- ( )	- ( )	19.64 (19.64)	19.61 (19.61)	- ( )	0.03 (0.03)
'16년	19.64 (19.64)	- ( )	- ( )	19.64 (19.64)	19.64 (19.64)	- ( )	 ( )
'17년	19.64 (19.64)	- ( )	- ( )	19.64 (19.64)	19.59 (19.59)	- ( )	0.05 (0.05)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964		1,959		1,959	1,953	99.6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8년 5월 집행완료(1,953백만원, 99%)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교문위('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지적사항)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부적절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개정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인사혁신처는 수당 신설에 부정적 입장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내 용
「재정지원계획」 수립 < 교육부 >	○ 대학별 재정지원 규모 확정
↓	
대학별 예산 교부 < 교육부 → 대학 >	○ 확정된 예산을 대학별로 교부
↓	
업적평가 및 성과급 지급 < 대학 → 조교 >	○ 평가단위별로 대상 조교의 업적평가 실시 ○ 업적평가에 따라 성과급 책정 및 지급
↓	
운영결과 제출 < 대학 → 교육부 >	○ 당해연도 운영결과 및 다음연도 운영계획 등 관련자료를 교육부에 제출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조교 연구성과금」 사업 법적근거 및 규정

○ (참고2) 국립대학 조교의 특성

○ (참고3)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4)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조교 연구성과금」 사업 법적근거 및 규정

□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7조, 제8조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국가는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관련 훈령** :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

제2조 (교부) ① 연구보조비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대상학교"라 한다)의 기성회 회장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조비 교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성과급 예산교부 단가는 별표3과 같으며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성과급 예산을 교부할 때는 대상학교별 전년도 차등지급 실적에 따라 차등교부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대상학교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지급) ① 연구보조비는 지급대상학교 교원(재외한국인학자 유치계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원을 포함한다)과 조교에게 기성회 회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조비는 교원의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조교의 근무실적 등 대상학교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하"성과급"이라 한다)과 …… 이 경우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급기준과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④ 성과급의 지급액은 대상학교에 교부되는 성과급 연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대상학교별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⑤ 성과급은 연4회 이내로 지급하고, 교원 및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 총액을 분할 또는 일괄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대상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부신청 등) ① 연구보조비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매년도 연구보조비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연구보조비를 집행한 대상학교의 기성회 회장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지급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 국립대학 조교의 특성

구 분	주 요 내 용
신 분	○ 공무원의 구분 체계상 특정직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으로 분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1호) * 교원, 조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사) 등
복 무	○ 조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임
임 용	○ 조교는 대학의 장이 **1년 단위**로 임용함이 원칙(교육공무원법 제26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2제4항) ※ 법상 정년보장에 대한 규정 없음 ○ 기산호봉 : 대학조교 **2호봉**, 전문대학 조교 **1호봉** ○ 대다수의 대학은 **학과조교**의 경우 재임용 연수를 **2~5년 범위내**로 제한 ○ 조교는 법령상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 자격을 정하고 있음(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역 할	○ 법상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역할 수행(고등교육법 제15조제4항) ○ 대학에서는 편의상 조교를 **'학과조교'** 및 **'행정조교'**로 구분하고, 그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음 * 학과조교 : 학과(부)에 소속되어 교수의 수업 및 연구 지원, 학사처리, 학생지도(취업상담, 생활지도 등) 담당 ** 행정조교 : 본부, 행정실, 부속기관, 연구소에 소속되어 행정업무 지원 담당
급 여	○ 조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름(제5조 별표 12) ※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감한 후 산정 ○ 조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 수당**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은 교원과 같이 미지급
평 가	○ 대다수의 대학(약 44%)이 자체 「조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지침)」에 따라 조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음(재임용심사 또는 성과급 지급 시 활용) ○ 성과급 지급을 위한 조교 **근무실적**을 별도 **성과평가**하고 있으며, 일부대학은 **'근무성적평정' 결과** 활용

참고 3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이해관계자) 대학 사회에서는 조교 연구성과금의 지원기준액(현재 57,000원 × 12월 = 684,000원)의 상향 조정을 요구

< 예산(안) 반영사항 >

□ 조교 연구성과금이 아직 공무원 수당으로 편입되지 않고,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지 못함

참고 4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근무 실적 평가 및 차등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및 능력개발 보상체계 마련

< 현장의 변화(예시) >

□ 대학은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 재임용 평가 등에 활용

※ OO대는 조교의 근무실적 평가표를 마련하여, 실적을 3등급(A, B, C)로 평가하고,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조교 연구성과금 차등 지급

[306]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	8,861	9,192	9,313	121	1.3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2700 - 2704 - 306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예산담당관(이영찬), 사무관(유수민), 주무관(노성원)
  - 내역별 : ①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현장적합형 인재양성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시스템 구축,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실습지원, 법정경비(급식비): 예산담당관실 노성원 주무관, ② 초등교원 양성기관 스마트교육 실습실 인프라 구축 : 교원양성연수과 정가을 교육연구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우수 전문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등을 위한 국립 특수목적대학(한체대, 교원양성대,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한국교통대) 학생에 대한 실습비 등 지원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국립대학 16개교 (한국체육대, 12개 교원양성대, 한국복지대, 금오공대, 한국교통대)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 2,283백만원**

- **(해외 전지훈련 지원)** 해외 선진 경기기술 습득 등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지원 1,283백만원
  - ▪ 해외 전지훈련(하계종목): 646명*×1.738백만원=1,123백만원
    * 24개 종목 선수 및 지도자 : 레슬링, 배드민턴, 복싱,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남,여),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체조, 태권도, 펜싱, 근대5종, 조정, 카누, 테니스, 하키(남,여), 핸드볼, 골프, 볼링
  - ▪ 해외 전지훈련(동계종목): 68명*×2.36백만원=160백만원
    * 3개 종목 선수 및 지도자: 빙상, 스키, 썰매(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포함)
- **(국내 전지훈련 등)** 우수 체육인재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 여건 제공 및 국내대회 출전 지원 1,000백만원
  - ▪ 대회출전 지원: 862명*×1.16백만원 = 1,000백만원
    * 전문실기 27개 종목에 대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인원

○ **초등교원 양성기관 스마트교육 실습실 인프라 구축**

-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 인프라 구축 : **204백만원**
  - ▪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AR·VR을 활용한 수업 등 첨단교육 기자재 17백만원(1교당)×12개교(교대 10개교, 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 스마트교육 실습실 구축 세부 예산 내역(1교실 기준 필수 기자재) >

품목	상세 내역	산출내역
단말기	학습자용 스마트 패드	700천원 × 25대 = 17,500천원
무선인터넷	AP, 라이센스, PoE인젝터, 설치비 포함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강의 녹화 시스템	수업행동분석, 강의녹화 시스템(강사위치 추적시스템 포함)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미러링 시스템	미러링 시스템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Beam Projector	단초점 빔프로젝터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전자교탁	유·무선 마이크, 강의용 앰프, 중앙집중식 통합콘트롤러, 강의용 타블렛 모니터, 셋탑박스, 전자교탁 S/W가 포함된 일체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보조도구	가구, 칠판, 보관함, 이동식 화이트보드, 충전함 등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인테리어 마감	첨단교육 실습실 인테리어 마감	7,500천원 × 1식 = 7,500천원
계		**50,000천원**

※ 미러링 시스템 : 수업 실연하는 학생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강의실 내 강의자 컴퓨터와 수강 학생의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화면 및 파일 공유 가능

※ 1실 구축 기준단가 50백만원 기준으로 부족분은 대학에서 매칭

○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공학교육 의무인증제 시행과 12학점 이상의 설계교과목 필수 이수 등 설계 및 실험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재료비 50백만원
  - ▪ 3,4학년(3인 1팀) 1,000팀 × 50천원 = 50백만원

※ ('17) 특허출원 : 40건/ 기술협약 체결 : 11개사, 13건/ 학생 아이디어 작품화 : 5건

○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 788백만원**

- **(장애대학생 교육통역 및 상담·생활 지원)** 장애학생 대학생활 적응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통역, 상담 등 전담인력 지원 688백만원
  - ▪ 상담사 : 1명×38백만원 = 38백만원
  - ▪ 학습지원사 : 21명×30.9백만원 = 650백만원

※ 장애유형별 교육통역 전담인력 : 수화통역사(청각), 속기사(지체, 청각, 시각), 점역사(맹), 보조공학사(지체, 청각, 시각 등)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통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100백만원
  - ▪ 강사 인건비 : 10종(명)×1백만원×10개월 = 100백만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독자 과정과 장애인 사회성 신장을 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바리스타 등 직업(자격증)교육, 음악아카데미, 다도, 점역, 수화, 제과제빵과정, 다도과정, 미술과정, 심리상담과정, 여가활용과정

○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실습지원 : 689백만원**

- **(항공운항과 항공실습 유류비)** 조종사 항공 실습훈련에 필요한 항공기 유류비 지원 285백만원
  - ▪ 유류비 : 4,200시간*×시간당 소모량(40L/HR)×유가(1,698원/L) = 285백만원

※ 비행훈련 인원(28명)당 연간 150시간 비행훈련 필요(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75조 및 제91조 제3항)

- **(항공기 정비비)** 프로펠러 교체 등 항공기 안전유지 등을 위한 정비비 지원 404백만원
  - ▪ 항공기 정비 : 6대×67.4백만원 = 404백만원

※ 항공안전법 제23조 제7항, 제8항에 따라 항공기 감항성(항공기 안전상태 등)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9호 : 5.9 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 5,299백만원**

-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5,299백만원

*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

▪ 한체대 체육특기생 급식비 : 947명×14천원×330일 = 4,375백만원

▪ 한국교원대 생활관 입소생 급식비 : 1,200명×7천원*×110일 = 924백만원

* '18년 예산 작성 세부지침 상 의경 1일 급식비 지원단가(7,481원) 수준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192	9,313
▪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2,283백만원) 해외 전지훈련 1,283백만원, 국내 전지훈련 등 1,000백만원	(2,283백만원) 해외 전지훈련 1,283백만원, 국내 전지훈련 등 1,000백만원
▪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 실습 지원	(229백만원) 교원양성대학 지원비	(204백만원) 교원양성대학 지원비
▪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금오공대 실습재료비	(50백만원) 금오공대 실습재료비
▪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642백만원) 장애학생 통역, 상담인력 지원 512백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100백만원, 고등교육지원 자료 개발 30백만원	(788백만원) 장애학생 통역, 상담인력 지원 688백만원, 평생교육프로그램 100백만원
▪ 항공운항과 실습지원	(689백만원) 항공실습 유류비 309백만원, 항공기 정비비 380백만원	(689백만원) 항공실습 유류비 285백만원, 항공기 정비비 404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5,299백만원) 한체대 체육특기생 4,375백만원, 한국교원대 생활관생 924백만원	(5,299백만원) 한체대 체육특기생 4,375백만원, 한국교원대 생활관생 92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차원의 특정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등 특수목적대학의 설립 및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 실험·실습비 및 교육환경 제공기반 구축 지원** 필요

-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체육특기생의 국내외경기 성적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및 다수의 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참관을 통한 **선진기술 동향 파악 및 신기술 습득 필요(한국체대)**

※ 한체대 출신 선수 주요 성과 :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한국 전체메달 17개 중 13개(76%) 획득, 2017년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전체메달 50개 중 26개(52%) 획득, 2016년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 대회 한국 전체메달 21개 중 6개(29%) 획득

※ 향후 주요대회 일정 : 제29회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러시아, '19.3),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19.7),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19.7),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20.7~8)

-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 실습지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환경을 학교현장과 유사하게 첨단화하여 **예비교원들의 첨단기기 활용 수업 사전 경험** 및 **수업역량 강화 여건 조성(교원양성대 12개교)**

▪ 초·중등 교육현장의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수업 혁신 추진 및 일선 초·중등학교에 **스마트 기기 비치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진행 중**

▪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스마트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원의 스마트 교육실습 경험 부족 및 임용 이후 선진화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 발생**

※ ('17년 정기국회 시 박경미 의원 지적) 초중등학교 현장보다 낙후된 대학 교육환경(실험·실습실 등)에서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없음, 교원양성기관의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 필요

-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현장 중심 공학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 설계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금오공대)**

▪ **금오공대**는 이공학분야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이 가능한 현장중심 인재양성을 위해 **실무중심교육과정 운영 중**

▪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현장밀착형 및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교육과정 운영, 공학교육인증 의무제 시행에 따른 **공학설계, 실험실습 교육 강화를 위해 실험실습 재료비 지원**

*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작품 설계부터 제작까지를 총망라하여 실습하는 종합 설계 교육프로그램

-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률 향상 기여(**한국복지대**)

▪ 장애학생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 장애인 학과(3학과 총60명) 신설 및 전공심화 학제편제로 장애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원사(수화속기사, 점역사, 상담사 등) 필요**

* 장애학생 수: ('16) 192명 → ('17) 223명 → ('18년) 237명

※ 관련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 3-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 '16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교육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 3-4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 **(항공운항과 실습지원)** 우수 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비행 실습 훈련에 필요한 유류비 및 정비비 지원(한국교통대)**

▪ (**항공분야 우수인력 공급**) 한국교통대는 교통 특성화대학으로, 항공운항학과 실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전원이 공군조종사 임관 또는 면허증 취득완료**

< '14~'17년 공군조종사 임관 및 면허증 취득 현황 >

구 분(기수)	공군조종사 대상학생*		면허증 취득 현황	
	대상	임관	대상	면허증 취득
'14년(1기)	15	15	20	20
'15년(2기)	17	17	27	27
'16년(3기)	21	21	26	26
'17년(4기)	22	20	27	27

* 공군(국방부)장학금 수령학생으로 졸업 후 공군조종사 임관 예정인 학생

▪ (**항공 안전사고 예방조치**) 운항 실습 항공기 감항성(항공기 안전상태 등) 유지를 위한 정비비를 확보하여 **실습환경 안전 확보 필요**

-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관계법령에서 명시**한 **법정지원경비 지원(한국체대, 한국교원대)**

▪ '16년까지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원하였으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이관**

※ 사업목적

-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

※ 사업목적

- 국립대학 기본경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공공요금, 청소·시설관리용역비 등) 지원
-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각 특수목적대학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실습 경비 등 지원

〈세부 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	**8,861**	**9,192**	**9,313**	121	1.3
① 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1,948**	**2,283**	**2,283**	-	-
▪ 해외 전지훈련 지원	948	1,283	1,283	-	-
- 훈련시설 임차료 (일반수용비)	254 (1식x254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	△100	순감
- 훈련시설 임차료 (임차료)	-	-	100 (1식x100백만원)	100	순증
- 급식비 (급식비)	356 (468명x0.76백만원)	845 (669명x1.263백만원)	845 (714명x1.183백만원)	-	-
- 국외여비 (국외업무여비)	338 (468명x0.723백만원)	338 (669명x0.505백만원)	338 (714명x0.474백만원)	-	-
▪ 국내 전지훈련 등	1,000	1,000	1,000	-	-
- 급식비 (급식비)	980 (860명x1.14백만원)	950 (860명x1.105백만원)	1,000 (862명x1.16백만원)	50	5.3
- 보험료 (공공요금 및 제세)	10 (1식x10백만원)	40 (1식x40백만원)	-	△40	순감
- 차량 유류비 (유류비)	10 (1식x10백만원)	10 (1식x10백만원)	-	△10	순감
②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 실습 지원	**250**	**229**	**204**	△25	△10.9
▪ 교원양성기관 첨단교육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250 (12교x20.8백만원)	229 (12교x19.1백만원)	204 (12교x17백만원)	△25	△10.9
③ 현장적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습 지원	**50**	**50**	**50**	-	-
▪ 금오공대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재료비)	50 (1,000팀x0.05백만원)	50 (1,000팀x0.05백만원)	50 (1,000팀x0.05백만원)	-	-
④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구축	**604**	**642**	**788**	146	22.7
▪ 장애대학생 교육 통역 및 상담 지원	476	512	688	176	34.4
- 지원 인건비 (상용임금)	381 (20명x19.05백만원)	397 (20명x19.87백만원)	537 (22명x24.4백만원)	140	35.3
- 지원 인력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95 (20명x4.75백만원)	115 (20명x5.73백만원)	151 (22명x68백만원)	36	31.3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100 (10명x1백만원x10월)	100 (10명x1백만원x10월)	100 (10명x1백만원x10월)	-	-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질 제고 정책연구 (정책연구비)	28 (2종x14백만원)	30 (2종x15백만원)	-	△30	순감
⑤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실습 지원	**672**	**689**	**689**	-	-
▪ 항공실습 유류비 (유류비)	292 (4,350시간x1.56천원x43L/시간)	309 (4,350시간x1.65천원x43L/시간)	285 (4,200시간x1.698천원x40L/시간)	△24	△7.8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항공기 정비비 (시설장비유지비)	380 (6대x63.3백만원)	380 (6대x63.4백만원)	404 (6대x67.4백만원)	24	6.3
⑥ 법정경비(급식비) 지원	**5,337**	**5,299**	**5,299**	-	-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생 급식비 지원 (급식비)	4,431 (959명x0.014백만원x330일)	4,375 (947명x0.014백만원x330일)	4,375 (947명x0.014백만원x330일)	-	-
▪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입소생 급식비 지원 (급식비)	906 (1,176명x7천원x110일)	924 (1,200명x7천원x110일)	924 (1,200명x7천원x110일)	-	-
□ 비목(합계)	**8,861**	**9,192**	**9,313**	121	1.3
○ 상용임금(110-03)	381	397	537	140	35.3
○ 일용임금(110-04)	100	100	100	-	-
○ 일반수용비(210-01)	254	100	-	△100	순감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0	40	-	△40	순감
○ 급식비(210-04)	6,673	7,094	7,144	50	0.7
○ 임차료(210-07)	-	-	100	100	순증
○ 유류비(210-08)	302	319	285	△34	△10.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80	380	404	24	6.3
○ 재료비(210-11)	50	50	50	-	-
○ 국외업무여비(220-02)	338	338	338	-	-
○ 정책연구비(260-02)	28	30	-	△30	순감
○ 고용부담금(320-09)	95	115	151	36	31.3
○ 자산취득비(430-01)	250	229	204	△25	△10.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체육대, 교원양성대, 금오공과대, 한국복지대, 한국교통대 등 국립 특수목적대학 학생에 대한 실습관련 경비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888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1,948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50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31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7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337백만원			
'18	9,192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2,283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29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42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89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299백만원	9,192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1,948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50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31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7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337백만원	0
'19	8,190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1,684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20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07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2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007백만원	9,313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2,283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04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788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89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299백만원	1,123
'20	8,026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1,520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20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607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2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007백만원	8,470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2,120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199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582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6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4,857백만원	444
'21	7,946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1,470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20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597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02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4,987백만원	9,466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2,336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04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788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89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399백만원	1,520
'22			9,560	▪ 체육인재 전지훈련 지원 2,336백만원 ▪ 교원 참단교육 실습 지원 204백만원 ▪ 공학인재 재료비 지원 50백만원 ▪ 장애학생 교육 지원 882백만원 ▪ 항공운항 실습지원 689백만원 ▪ 법정경비(급식비) 5,399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2.6		1.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192	9,313	12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14	118	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2	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인건비 지출에 따른 정부의 직접고용효과와 인건비 이외의 정부 사업비 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합산 -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 (간접고용효과) 인건비 외 각 사업비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간접고용효과 값이 1 미만인 비목은 산출 제외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총액 788백만원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0.4812억원 = 16.3 → 16명 - (간접고용효과) ① 급식비 7,144백만원 ÷ 0.77억원 = 92.7 → 93명 ② 시설장비유지비 404백만원 ÷ 0.47억원 = 8.6 → 9명 □ **2018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10명 - (간접고용효과) 일반수용비 1명, 급식비 93명, 시설장비유지비 10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서 제34조, 「평생교육법」제21조
- 항공운항과 실습 지원: 「항공법」 제15조, 제24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76조, 제93조제3항

- 법정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제20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 제12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39호 : 5.9 항공기 및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

○ 추진경위

- ('12년) 우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실습 지원 강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경비에서 분리하여 별도 신규 사업 편성

  ※ 수·해양계대학(7개) 선박승선 실습 및 한국체육대 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 ('13년) 교원양성기관 첨단 교육실습 및 금오공대 실험실습 재료비, 한국복지대 장애학생 실습교육비 신규 내역 편성
- ('14년)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비행훈련 실습비 추가 지원

  * ('11.3) 국립대 최초 항공운항학과 개설 → ('13.1) 국립대 최초 공군학군단(ROTC) 설치 → ('14.7) 비행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국토교통부)

- ('16년) 수·해양계대학 선박승선실습비는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사업'으로 분리
- ('17년) 법정경비(급식비)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에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	105	97	97	41	41	89	89	9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 한국복지대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27백만원

○ ('16)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실습지원 낙찰차액 및 한국복지대 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시스템 집행잔액 114백만원

○ ('15) 수해양계 대학, 한국교통대 등의 선박 및 항공기 유류단가 인하에 따른 선박승선 실습, 비행훈련 실습 지원사업 집행잔액 824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7 ( )	( )	( )	97 ( )	89 ( )	( )	8 ( )
'16년	41 ( )	( )	( )	41 ( )	40 ( )	( )	1 ( )
'17년	89 ( )	( )	( )	89 ( )	88 ( )	( )	1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888	8,888	9,192		9,192	9,159	99.6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9,159백만원 집행 ('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교문위, '14회계연도 결산) 학습지원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인건비를 기타직보수로 편성할 필요

⇒ (조치내용) '16년 예산 편성 시 학습지원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인건비를 기타직보수(110-02)로 편성(20명, 310백만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예산편성요구 (국립대학) ⇨ 예산 심의 확정 (정부,국회) ⇨ 예산 집행 (국립대학)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지훈련 참가자 수 (단위: 명)	목표	430	-	-	-	-	-	조사방법 : '15년 훈련 실적치	실적조사
	실적	477	-	-	-	-			
	달성도	111	-	-	-	-			
수·해양계 대학 승선실습 실적(시간)	목표	6,480	-	-	-	-	-	- 해양계 : 3급 상선항해사 연간 승선실습실적(대학당 1,440시간) - 수산계 : 3급 어선항해사 연간 승선실습실적(대학당 720시간)	실적조사
	실적	8,359	-	-	-	-			
	달성도	129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한국체육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한 우수 선수 및 비인기 종목 육성을 위하여 체육특기생 지원 요청

□ (한국복지대) 중증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을 위해 교육통역, 수업보조자료(영상) 자막제작, 생활 등의 지원 확대 희망
('17년 장애학생 간담회 및 장애학생 지원 요구조사 결과)

□ (한국교통대) 원활한 항공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유류비, 항공기 정비비 단가 상승 반영

< 예산 반영사항 >

□ (한국복지대) 학습지원사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한국체육대) 국내외 전지훈련 인원을 확대하여 우수 체육인재 경기력 향상 유도

※ 한체대 출신 선수 주요 성과 :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한국 전체메달 17개 중 13개(76%),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전체메달 50개 중 26개(52%) 획득, 2017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한국 전체메달 21개 중 18개(86%), 2016년 제31회 리우 하계올림픽 대회 한국 전체메달 21개 중 6개(29%) 획득

※ 한체대 출신 주요 입상 선수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스켈레톤 윤성빈, 스노보드 이상호, 쇼트트랙 임효준), 2016 리우 하계올림픽(펜싱 박상영), 2014 소치 동계올림픽(빙상 이상화·김아랑), 2012 런던 하계올림픽(체조 양학선)

□ (금오공대) Kit Engineering Fair*, 작품 전시회 등으로 프로그램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작품 기술사업화를 위한 특허 발굴, 산업체와 MOU 체결식 개최

※ 특허출원 : ('16) 67건/ ('17) 40건
기업체와 기술협약 체결 : ('16) 15개사, 23건/ ('17) 11개사, 13건
학생 아이디어 작품화 : ('16) 13건/ ('17) 5건

□ (한국복지대) 질 높은 교육통역, 상담·생활 지원 제공으로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기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수어통역, 속기 등 강의지원 시수 : ('17) 총 1,678시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 ('16) 31개 → ('17) 40개

□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실습 지원을 통해 공군조종사 대상 인원 임관, 기타 조종사 면허증 취득

< 현장의 변화 >

□ (한국체육대) 2015년도부터 주요 국제 대회에 출전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을 획득한 선수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랭킹 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 확대 필요

□ (금오공대) 실험실습비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 공학인력 양성

□ (한국복지대)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강화 및 국민 관심 확대

· 평생교육 개정 주요 사항('16.5.29.)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제9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제19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제20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제34조)

□ (한국교통대) 경쟁력있는 지방대 육성 교통특성화 대학으로 엘리트 조종사 양성 항공운항학과 및 비행훈련원 운영

[300] 국립대학 시설확충(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531,428	523,031	609,271	86,240	16.5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700 - 2740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무관(황형덕), 주무관(박정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의 부족한 시설 확충, 노후 시설의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내진보강, 석면 제거, BTL 기숙사 정부지급금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대학 39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18) 523,031 → ('19) 609,271백만원(+86,240, 16.5%)**

《시설확충 및 보수》: ('18) 458,359 → ('19) 537,270백만원(+78,911, 17.2%)

① **확충사업 : ('18) 240,895 → ('19) 308,680백만원(+67,785, 28.1%)**

○ **(신규사업) ('18) 18,646(23건) → ('19) 13,100백만원(26건)(△5,546, △29.7%)**

- **(신축)** 체육관(강릉원주대), 의생명융합관(전북대), 산학협력관(제주대), 융합과학기술대학(부산대), 복합스포츠센터(강원대), 공동실습공장(공주대) 6건, **(개축)**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3건, **(리모델링)** 25년 경과 노후 건물 환경개선 17건

※ 신축 5,160백만원(6건), 개축 1,559백만원(3건), 리모델링 5,381백만원(17건)

※ 산출내역 : 13,100백만원(1식 × 13,100백만원)

○ **(계속사업) ('18) 217,738(67건) → ('19) 291,581백만원(72건)(+73,843, 33.9%)**

- 사업을 완료하는데 2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사업(72건, 잔사업비 6,331억원)을 적정 공기 내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91,581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291,581백만원(72건 × 4,050백만원)

○ **(비품비) ('18) 4,511(14건) → ('19) 3,999백만원(15건)(△512, △11.4%)**

- '19년에 준공예정인 15건의 신.증축 건물에 필요한 집기 등 비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3,999백만원 반영

※ 산출내역 : 3,999백만원(15건 × 267백만원)

② **시설·설비보수 : ('18) 91,079 → ('19) 94,590백만원(+3,511, 3.9%)**

○ **(일반보수) ('18) 90,779 → ('19) 94,290백만원(+3,511, 3.9%)**

-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등의 유지보수, 화재 예방을 위한 드라이비트 교체 등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반영

< 5년 경과 노후시설 규모 증가 현황 >

연도	연면적(천㎡)	보수비 예산 (백만원)	단위면적당 금액 (천원)
'16년	8,924	79,793	8.9
'17년	9,196	85,054	9.2
'18년	9,422	90,779	9.6
'19년	9,619	94,290	9.8

※ 산출내역 : 94,290백만원(39교 × 2,418백만원)

○ **(시설사업 관리 평가 및 중앙점검단 운영) ('18) 300 → ('19) 300백만원**

- **(사업관리 평가)** 사업을 완료(준공)한 신·개·증축 사업에 대해 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 사업 관리 전반을 평가하여, 향후 추진하는 사업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

※ **(평가 및 점검대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개·증축 사업(19건)

- **(중앙점검단 운영)** 신·개·증축 중인 사업에 대해 추진 단계*별로 민간전문가 점검단이 시공 품질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품질 등을 제고

* 시공 초기(공정률 30~50%), 완성 단계(공정률 90%) 총 2회 점검

※ **(평가 및 점검대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개·증축 사업(19건)

※ 산출내역 : 300백만원(1식 × 300백만원)

③ **정책사업 : ('18) 126,385 → ('19) 134,000백만원(+7,615, 6.0%)**

○ **(내진보강) ('18) 100,000 → ('19) 100,000백만원(±0, ±0%)**

- 지진으로부터 학생 안전확보를 위해 '18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 할 예정으로, '19년 소요사업비 반영

※ 투자계획 : 총 소요 4,997억 / '18년부터 매년 1,000억 수준 투자 = 5년 내 완료('22년)

※ 산출내역 : 100,000백만원(37교 × 2,703백만원)

○ **(석면제거) ('18) 19,385 → ('19) 22,000백만원(+2,615, 13.5%)**

- 학생건강 안전 강화를 위해 '18년부터 투자를 확대하여 '27년까지 석면제거를 완료 할 예정으로, '19년 소요사업비 반영

※ 투자계획 : 총 소요 2,205억 / '18년부터 매년 220억 수준 투자 = 10년 내 완료('27년)

※ 산출내역 : 22,000백만원(35교 × 629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18) 3,000 → ('19) 6,000백만원(+3,000, 100%)**

- 국립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은 3.1%('17년 기준) 수준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대학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을 5% 정도로 상향할 계획으로, '19년 소요 사업비 반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①제4조(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마련으로 강화) 및 ②제15조(교육연구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으나, '09년부터 포함)

※ 예산 반영 추이 : ('17) 5,597백만원 → ('18) 3,000백만원 → ('19) 6,000백만원

※ 투자계획 : 총 소요 799억 / '19년부터 매년 60억 수준 투자 = 13년 내 완료('31년)

※ 산출내역 : 6,000백만원(22교 × 273백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18) 4,000 → ('19) 6,000백만원(+2,000, 50%)**

- 국립대의 장애인 E.V 설치비율은 63%('17년 기준) 수준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의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 E.V를 100% 설치할 계획으로, '19년 소요 사업비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17) 5,221백만원 → ('18) 4,000백만원 → ('19) 6,000백만원

※ 투자계획 : 총 소요 1,230억 / '19년부터 매년 60억 수준 투자 = 20년 내 완료('37년)

※ 산출내역 : 6,000백만원(23교 × 261백만원)

《BTL 정부지급금》 ('18) 64,672(56개) → ('19) 72,001백만원(62개)(+7,329, 11.3%)

○ BTL 기숙사 임차료 : 72,001백만원 요구(36개교, 62개 사업)

- 국립대학 36교 62건('18년 대비 6개 추가 개관)의 BTL기숙사 확충사업에 대한 20년간 임대료 지급을 위한 정부지급금 소요액 반영

※ 산출내역 : 72,001백만원(62건 × 1,161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시설확충	523,031	609,271
○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보수	458,359	537,270
■ 시설확충	240,895 (18,646백만원) 신규사업 23건 (217,738백만원) 계속사업 67건 (4,511백만원) 비품비 14건	308,680 (13,100백만원) 신규사업 26건 (291,581백만원) 계속사업 72건 (3,999백만원) 비품비 15건
■ 보수비	91,079 (90,779백만원) 국립대 39교 (300백만원) 사업관리 평가 등	94,590 (94,290백만원) 국립대 39교 (300백만원) 사업관리 평가 등
■ 정책사업비 (석면) (내진) (신재생) (장애인)	126,385 (19,385백만원) 국립대 39교 (100,000백만원) 국립대 39교 (3,000백만원) 국립대 39교 (4,000백만원) 국립대 39교	134,000 (22,000백만원) 국립대 35교 (100,000백만원) 국립대 37교 (6,000백만원) 국립대 22교 (6,000백만원) 국립대 23교
○ BTL정부지급금	(64,672백만원) 56개 기숙사	(72,001백만원) 62개 기숙사

□ 지원 필요성

○ 국립대학 내 기존의 시설이 노후되어 교수.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사업비 지원 필요

- **(확충사업)**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시설의 신.증축, 노후시설 등의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필요

- **(보수)** 노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 수명 연장 등을 위해 지원 필요
- **(정책사업)** 석면제거.내진보강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장애인 등의 이동권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등을 위해 지원 필요
- **(BTL 정부지금금)**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축한 BTL 방식의 기숙사의 정부 의무 지급금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531,428	523,031	609,271	86,240	16.5
① 국립대학 시설확충 및 보수	474,368	458,359	537,270	78,911	17.2
■ 시설확충비	240,250	240,895	308,680	67,785	28.1
- 신규	22,804 (29건×786백만원)	18,646 (23건)총사업비 164,905백만원×11.3%	13,100 (26건)총사업비 300,015백만원×4.4%	△5,546	△29.7
▸신 · 증축	4,362 (9건×485백만원)	194 (2건)총사업비 4,626백만원×4.2%	5,160 (26건)총사업비 115,803백만원×4.5%	4,966	2,559.8
▸개축	3,165 (4건×791백만원)	5,128 (5건)총사업비 42,556백만원×12.1%	1,559 (3건)총사업비 38,952백만원×4.0%	△3,569	△69.6
▸리모델링	15,277 (16건×955백만원)	13,324 (16건)총사업비 117,723백만원×11.3%	6,381 (17건)총사업비 145,260백만원×4.4%	△6,943	△52.1
- 계속	208,765 (65건×3,212백만원)	217,738 (67건)잔여사업비 720,836백만원×30.8% (39교×5,699백만원)	291,581 (72건)잔여사업비 633,135백만원×46.1% (39교×7,476백만원)	73,843	33.9
- 비품비	8,681 (19건×457백만원)	4,511 (14건×322백만원)	3,999 (15건×267백만원)	△512	△11.4
■ 보수비	82,964	91,079	94,590	3,511	3.9
- 일반보수비	82,964 (39교×2,127백만원)	90,779 (39교×2,328백만원)	94,290 (39교×2,418백만원)	3,511	3.9
- 사업관리평가 및 중앙점검단	-	300 (1식×300백만원)	300 (1식×300백만원)	-	-
■ 정책사업비	151,154	126,385	134,000	7,615	6.0
- 석면교체	7,831 (39교×201백만원)	19,385 (39교×497백만원)	22,000 (35교×629백만원)	2,615	13.5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내진보강	1,680 (39교×43백만원)	100,000 (39교×2,564백만원)	100,000 (37교×2,703백만원)	-	-
- 신재생에너지	5,591 (39교×143백만원)	3,000 (39교×77백만원)	6,000 (22교×273백만원)	3,000	100.0
- 장애인편의시설	5,245 (39교×134백만원)	4,000 (39교×103백만원)	6,000 (23교×261백만원)	2,000	50.0
- LED 교체	130,807 (39교×3,354백만원)	-	-	-	-
② BTL 정부지급금	57,060 (51개×1,119백만원)	64,672 (56개×1,155백만원)	72,001 (62개×1,161백만원)	7,329	11.3
□ 비목(합계)	531,428	523,031	609,271	86,240	16.5
○임차료(210-07)	57,550	65,162	72,601	7,439	11.4
○일반용역비(210-14)	-	300	300	-	-
○건설보상비(410-00)	-	-	2,621	2,621	100.0
○기본설계비(420-01)	8,105	46,311	6,519	△39,792	△85.9
○실시설계비(420-02)	7,338	5,130	10,091	4,961	96.7
○공사비(420-03)	446,883	397,220	506,822	109,602	27.6
○감리비(420-04)	1,859	3,268	4,792	1,524	46.6
○시설부대비(420-05)	1,012	1,129	1,526	397	35.2
○자산취득비(430-01)	8,682	4,511	3,999	△512	△11.4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내진보강 등 학생 안전 예산 투자 강화

- 지진 및 석면으로부터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 제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강화

○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 투자 확대

- 기존시설의 재활용 및 노후시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축.리모델링.환경개선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사업 추진

○ **대학구조개혁 등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 연계 투자**

- 미래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시설의 계획적인 캠퍼스 조성 유도를 위해 중장기발전계획(마스터플랜)에 따른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05,569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241,854** (신규-23건×811백만원=24,272) (계속-67건×3,118백만원=208,899) (비품-17건×511백만원=8,683) **- 보수비 : 85,054** (일반-39교×2,181백만원=85,054) **- 정책사업비 : 20,064** (석면-39교×134백만원=5,230) (내진-39교×46백만원=1,810) (장애인-39교×134백만원=5,221) (신재생-39교×144백만원=5,597) (LED-39교×57백만원=2,206) **- BTL상환금 : 58,597** (51개×1,149백만원)	-		
'18	523,031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240,895** (신규-23건×811백만원=18,646) (계속-67건×3,250백만원=217,738) (비품-14건×322백만원=4,511) **- 보수비 : 91,079** (일반-39교×2,328백만원=90,779)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26,385** (석면-39교×497백만원=19,385)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103백만원=4,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64,672** (56개×1,155백만원)	523,031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240,895** (신규-23건×811백만원=18,646) (계속-67건×3,250백만원=217,738) (비품-14건×322백만원=4,511) **- 보수비 : 91,079** (일반-39교×2,328백만원=90,779)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26,385** (석면-39교×497백만원=19,385)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103백만원=4,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64,672** (56개×1,155백만원)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383,616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179,546** (신규-1식×11,850백만원=11,850) (계속-1식×179,546백만원=179,546) **- 보수비 : 85,054** (일반-39교×2,181백만원=85,054) **- 정책사업비 : 22,000** (석면-39교×128백만원=5,000) (내진-39교×128백만원=5,000) (장애인-39교×128백만원=5,000) (신재생-39교×128백만원=5,000) (LED-39교×51백만원=5,000) **- BTL상환금 : 85,166** (60개×1,419백만원)	609,271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308,680** (신규-26건×504백만원=13,100) (계속-72건×4,165백만원=291,581) (비품-15건×267백만원=3,999) **- 보수비 : 94,590** (일반-39교×2,418백만원=94,290)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34,000** (석면-35교×629백만원=22,000) (내진-37교×2,703백만원=100,000) (장애인-23교×261백만원=6,000) (신재생-22교×273백만원=6,000) **- BTL상환금 : 72,001** (62개×1,161백만원)	225,655
'20	523,031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240,895** (신규-23건×811백만원=18,646) (계속-67건×3,250백만원=217,738) (비품-14건×322백만원=4,511) **- 보수비 : 91,079** (일반-39교×2,328백만원=90,779)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26,385** (석면-39교×497백만원=19,385)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103백만원=4,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64,672** (56개×1,155백만원)	458,638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182,114** (신규-1식×8,218백만원=8,218) (계속-1식×170,197백만원=170,197) (비품-14건×264백만원=3,699) **- 보수비 : 74,300** (일반-39교×1,897백만원=74,000)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28,000** (석면-39교×564백만원=22,000)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77백만원=3,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74,224** (62개×1,197백만원)	△64,393
'21	523,031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240,895** (신규-23건×811백만원=18,646) (계속-67건×3,250백만원=217,738) (비품-14건×322백만원=4,511) **- 보수비 : 91,079** (일반-39교×2,328백만원=90,779)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449,466	·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172,039** (신규-1식×8,218백만원=8,218) (계속-1식×160,122백만원=160,122) (비품-14건×264백만원=3,699) **- 보수비 : 72,800** (일반-39교×1,859백만원=72,500)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73,585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정책사업비 : 126,385 (석면-39교×497백만원=19,385)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103백만원=4,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64,672** (56개×1,155백만원)		**- 정책사업비 : 128,000** (석면-39교×564백만원=22,000)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77백만원=3,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76,627** (64개×1,197백만원)	
'22	-		444,971	·39개 국립대학 시설지원 **- 시설확충 : 167,680** (신규-1식×8,218백만원=8,218) (계속-1식×160,122백만원=155,763) (비품-14건×264백만원=3,699) **- 보수비 : 72,000** (일반-39교×1,859백만원=71,700) (사업평가-1식×300백만원=300) **- 정책사업비 : 128,000** (석면-39교×564백만원=22,000) (내진-39교×2,564백만원=100,000) (장애인-39교×77백만원=3,000) (신재생-39교×77백만원=3,000) **- BTL상환금 : 77,291** (65개×1,189백만원)	444,971
연평균 증가율 (%)	6.6		△4.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58,359	534,049 (토지매입비 2,621, 임차료 72,601 제외)	75,69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712	5,480	76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0.3	10.3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기본조사설계비(420-01) 65.2억원을 <표2>의 '기본조사설계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65.2억원 ÷ 0.85억원 = 76.7명 - 실시설계비(420-02) 100.9억원을 <표2>의 '실시설계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00.9억원 ÷ 0.85억원 = 118.7명 - 시설비(420-03) 5,068.2억원을 <표2>의 '공사비' 1인 고용창출 산출을 위해 <표4>의 18번 '건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5,068.2억원 ÷ 0.98억원 = 5,171.7명 - 감리비(420-04) 47.9억원을 <표2>의 '감리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d. 47.9억원 ÷ 0.85억원 = 56.4명 - 시설부대비(420-05) 15.3억원을 <표2>의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15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e. 15.3억원 ÷ 1.15억원 = 13.3명 - 자산취득비(430-01) 40억원을 <표2>의 '자산취득비' 1인 고용창출 산출을 위해 <표4>의 18번 '건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f. 40억원 ÷ 0.98억원 = 40.8명 - 기본용역비(210-14) 3억원을 <표2>의 '일반용역비' 1인 고용창출 산출을 위해 <표4>의 '전 산업 평균'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1.18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g. 3억원 ÷ 1.15억원 = 2.6명 ☐ **2018년 고용효과** - 5,480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6조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7조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국립학교 설치령」제20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추진경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립대학 시설확충	3,867	3,867	3,651	4,122	4,122	4,056	5,372	5,23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용

- **('16년)** '서울대 AID차관사업'의 원금과 이자가 환율인상으로 부족하여,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의 집행잔액 22백만원을 예산 이용함

○ 이월

- **('15년)** 국립대학 29교의 시설확충, 보수 및 정책사업 38개 사업에서 총 205억원이 이월

※ 학사 일정으로 인한 겨울방학공사(9건, 9교, 34억), 선박 건조 상세 설계에 따른 공기 부족(1건, 1교, 31억), 수시배정 지연(1건, 1교, 5억), 학내외 협의 지연(11건, 9교, 55억) 및 기타(13건, 9교, 80억)

- **('16년)** 국립대학 2교의 시설확충사업 및 보수 4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10억원 이월액 발생

※ 에너지자립학교 공모 신청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1건, 1교, 7억), 학사 일정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으로 공기부족(2건, 1교, 1억), 공사에 따른 대체 공간 확보 지연(1건, 1교, 2억)

- **('17년)** 국립대학 3교의 시설확충사업 및 보수 7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29억원 이월액 발생

※ 행정절차(공공센터 사전심의, 지자체와의 건축협의) 및 대학 구성원 간 협의 기간 소요로 설계가 차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설계비 이월(1건, 1억), 설계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이 늦어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2건, 22억)

○ 불용

- **('15년)** 국립대학 39교의 시설확충, 보수, 정책사업 및 BTL정부지급금 108개 사업에서 총 73억원 불용

※ 총사업비 조정(1건, 1교, 11억), 낙찰차액·준공금 정산(85건, 33교, 41억) 및 BTL 정부지급금 재무모델 변경 등 집행잔액(22건, 19교, 21억)

- **('16년)** 국립대학 39교의 시설확충 등 137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총 79억원 불용

※ 낙찰차액·준공금 정산(115건, 39교, 50억), 사업부지 관리전환 미승인에 따른 계획 변경(1건, 1교, 8억), BTL재무모델 변경(18건, 16교, 17억) 및 기타(3건, 3교, 5억)

- **('17년)** 국립대학 39교의 시설확충 등 17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총 39억원 불용

※ 낙찰차액·준공금 정산(148건, 39교, 21억), 사업규모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3건, 3교, 3억), BTL 기숙사 시설임대료 금리 인하(23건, 18교, 15억)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651 ( )	117 ( )	- ( )	3,769 ( )	3,490 ( )	205 ( )	73 ( )
'16년	4,122 ( )	205 ( )	△0.2 ( )	4,327 ( )	4,238 ( )	10 ( )	79 ( )
'17년	5,372 ( )	10 ( )	- ( )	5,382 ( )	5,314 ( )	29 ( )	39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05,569	537,212	442,529	80,502	523,031	512,635	98.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확충사업(9교, 24,492백만원), 보수사업(4교, 6,010백만원), 내진보강.내진성능평가(39교, 50,000백만원) 사업비 총 80,502백만원 증액

<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회 증감 내역 >

(백만원)

학교명	사업명	예산 형태	사업규모			국회 증액
			총사업비	규모(㎡)	기간	
	계					**80,502**
청주교대	수영안전교사교육관신축	계속	11,013	3,960	17~19	3,000
진주교대	제2생활관리모델링	신규	4,279	3,116	'18~'19	179
전북대	소운동장개선사업		1,000	5,200	18	1,000
전남대	민주정신교육을위한민주길조성	계속	7,000	L=12km	18~19	500
	디지털도서관신축	계속	24,813	10,506	16~19	5,000
강원대	장기민원부지매입에따른 도로등기반조성			5,160	18	2,010
충북대	글로컬교육스포츠센터	계속	29,421	8,359	16~19	3,000
경상대	학생회관리모델링	신규	9,805	7,774	18~19	3,000
제주대	시설설비보수			1식	18	1,500
한국교원대	미래도서관신축공사	완성		14,200	18	696
안동대	학내도시가스인입				18	1,500
군산대	대학본부리모델링	계속	5,159	3,692	17~19	2,000
경남과기대	학술림현장실습동개축	신규	3,200	1,000	18~19	3,200
경남과기대	생명과학2호관리모델링	신규	3,301	2,475	18~19	△83
한경대	교육및지역문화복합관신축	계속	15,276	7,000	15~19	4,000
국립대 39교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계속	-	-	-	50,000

○ 집행현황

■ '18년에 추진한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을 완공하여 '18.12월까지 512,635백만원(98.0%) 집행(예정)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①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 필요('15년 결산)

  * 강원대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예산을 158억원 지원

⇨ **(신규사업 제재)**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는 신규사업을 미반영 하였음

※ 부실대학(D등급)에 대한 재정제한은 공모사업 등에 대해 하고 있어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강원대는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16년에 구조개혁 자구 노력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 해제함

- ②신규사업 반영 시 신축사업 반영을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신축사업 비율이 높음('15년 결산)

⇨ **(신·증축 사업 최소화)** 신·증축사업은 최소화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및 개축사업 위주로 편성함

※ 신규사업 반영 추이

구분	16년	17년	18년
신축·증축	18건	9건	2건
개축·리모델링	10건	20건	21건

- ③연례적으로 이·불용액이 발생하여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음('15년,'16년 결산)

⇨ **(이·불용 최소화)** 시설사업 특성 상 낙찰차액 및 준공금 정산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나,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이·불용액은 감소추세*이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최근 3년 간 이·불용액 : ('15) 3,651억원 중 278억(7.6%) → ('16) 4,122억원 중 89억(2.2%) → (17) 5,372억원 중 68억(1.3%)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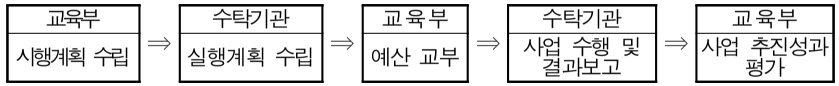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확충시설 만족도(점)	목표	70	73	75	76	-	지표폐지	지표폐지	지표폐지
	실적	72.3	74.6	75.2	-	-			
	달성도	103	102	100	-	-			
연간 학생 1인당 시설확충 면적(㎡/인)	목표	0.17	-	-	-	-	지표폐지	지표폐지	지표폐지
	실적	0.31	-	-	-	-			
	달성도	182	-	-	-	-			
주요 사립대학 대비 학생 1인당 시설면적 비율* (%)	목표	신규	79	82	-	-	지표폐지	지표폐지	지표폐지
	실적	신규	81	83.4	-	-			
	달성도	신규	102	102	-	-			
석면제거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8.3	80.7	○ **목표증가율: 2.4%** - '17년 말 기준 국립대의 석면 제거율은 75.9%로 '18년부터 '27년까지 10년 내 완료할 예정 - 석면제거 잔여비율 24.1%를 10년 내 100% 해소하기 위해 석면 제거율을 매년 2.4%씩 상향 설정 * 2.4%=24.1%/(17년 기준 석면제거 잔여비율)/10 ※ 80.7%=78.3%+2.4%	○80.7%=78.3%(18년 석면제거율)+(24.1% (17년 기준 잔여비율) / 10년)	연도말 대학별 석면 해소 실적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내진보강 완료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55.6	66.7	○ **목표증가율: 11.1%** - '17년 말 기준 국립대의 내진보강률은 44.5%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내 완료할 예정 - 내진보강 잔여비율 55.5%를 5년 내 100% 완료하기 위해 내진 보강율을 매년 11.1%씩 상향 설정 * 11.1%=55.5% (17년 기준 내진보강 잔여 비율)/5 ※ 66.7%=55.6%+11.1%	○66.7%=55.6%(18년 내진보강률)+(55.5% (17년 기준 잔여비율) / 5년	연도말 대학별 내진보강 완료 실적 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신규	신규	신규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301]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94,272	96,092	42,427	**△53,665**	**△55.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700 - 2740 - 301

* 담 당 자 : 교육정보안전국장(류정섭), 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무관(이승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 수산·해양계 대학(7교)의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실습선 건조 및 선박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1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수산·해양계 대학(7교)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대학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18)96,092백만원→(’19)42,427백만원(△53,665백만원)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국립대학 선박건조》 (’18)83,994백만원→(’19)26,483백만원(△57,511백만원)

○ **(신규사업) (총사업비48,461백만원) (’19)613백만원(순증)**

▪ 경상대 선박인 새바다호(선령 17년)는 대체선박건조 기준 선령인 20년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① 안전사고 예방, ② 주요장비수리 및 보수 한계, ③ 대체실습선 부재로 선박건조 시급

* 부경대 나라호(’15년 건조)의 경우에도 안전상 문제로 선령 17년에 설계 반영

- 완공연도 감안 시 대체선박 인도시점에는 기준 선령 초과(선령 22년)

① **(안전사고 예방)** 메인엔진, 발전기 및 프로펠러 부식 등 주요 기관들의 잦은 고장 → **선박안전 사고의 징후**

* 원양실습 중 **제8호 태풍「마리아」**로 인한 바람과 파도 발생 → 선박 경사도 좌현 30°, 우현 35°로, 복원성 경사도 **안전기준 값인 34°가 초과되어** 해수 유입 → **전복 위험 순간 발생**

□ **새바다호 주요사고 현황**

○ ’10년 원양실습 중 메인엔진 배기관 파공으로 **해상에서 12시간 표류**

○ 발전기 펌프 고장으로 항해 중 **선박 기능 마비**로 해상 표류(’18. 3. 7.)

○ ’16.5월 통신 장비의 고장으로 항해 중 **조난 통신 불가**

○ 항해용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으로 **선박 간 충돌 위험 정보 감지 불가**

○ 승선실습 기간에 전자해도의 고장 등으로 선박 항해 시 **선박 좌초위험 초래**

② **(주요장비수리 및 보수 한계)** 주요장비 대부분이 해외제품으로 **단종 또는 대체 부속품 부재**

③ **(면허취득 자격조건 미충족 가능성)** 실습선 고장시 **해기사 면허취득 자격조건 충족 불가** → 학생과 학부모의 엄청난 민원*

* 원양실습 중 **제8호 태풍「마리아」**로 선박 침수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학생들이 학부모들에게 연락 → 선박교체를 강하게 요구

< 연도별 투자계획 >

(백만원)

사업명	비목	연차별 투자계획					
		’19	’20	’21	’22	’23	합 계
경상대 대체선박 건조 (3,900톤)	소 계	613	920	1,192	28,753	16,983	48,461
	기본설계비	600	-	-	-		600
	실시설계비	-	900	-	-		900
	건조비	-	-	900	28,000	16,599	45,499
	감리비			250	600	250	1,100
	시설부대비	13	20	42	153	134	362

○ **(계속사업) (’18)83,994백만원→(’19)25,870백만원(△58,124백만원)**

▪ 목포해양대(5척) 잔 사업비 10,439백만원, 부경대 4년차 사업비 15,431백만원을 반영하여 계획된 기간 내 건조완료

<국립대학 실습선박 건조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선박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15	’16	’17	’18		’19	’20	
						본예산	예비비*			
계속	5*	272,758	5,016	60,197	83,994	82,994	30,118	10,439	-	목포해
	1	53,166	-	627	-	1,000	-	15,431	36,108	부경대
	소계	325,924	5,016	60,824	83,994	83,994	30,118	25,870	36,108	

※목적예비비: 30,118백만원(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693. ’18. 7. 30.)

- 사유: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조선・자동차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건조 등 안정적 수요확보 및 부품 기자재 R&D 등 지원)

《부두(접안)시설 개축》

○ **(계속사업) (’18)540백만원→(’19)4,618백만원(4,078백만원)**

▪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포해양대 부두시설은 계속사업*으로 ’19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4,618백만원 반영

* 총사업비 7,158백만원(’18. 본예산 540백만원 ’18. 예비비 2,000백만원, ’19. 본예산 4,618백만원)

《국립대학 선박보유현황》

▪ 선박보유현황 : 총 14척(7개 대학) ('19. 12월 기준)

선령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경상대	군산대	전남대	제주대	부경대	합계
20년 이상	**1**	**0**	**0**	**0**	**0**	**0**	**1**	**2**
20년 미만	2	2	2	1	2	2	1	12

《국립대학 승선실습비》

('18)8,948백만원→('19)10,320백만원(1,372백만원)

○ **(전기요금) ('18)343백만원→('19)588백만원(245백만원)**

▪ 부두에 실습선을 정박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유 대신 육상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예산 588백만원 반영

○ **(급식비) ('18)3,676백만원→('19)4,804백만원(1,128백만원)**

▪ 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하는 수산·해양계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4,804백만원 반영

*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16조 제6항(학비보조 등)

※ 급식비(1일 3식) 단가: '14~'18년(5,000원)→'19년(6,500원)

※ 의경 급식비(1일 3식) 단가

- '14년(6,848원), '15년(7,190원), '16년(7,334원), '17~'18년(7,481원), '19년(7,855원)

○ **(유류비) ('18)4,929백만원→('19)4,928백만원(△1백만원)**

▪ 선박 항해 승선실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4,928백만원 반영

《안전검사수리비》

○ **(안전검사수리비)('18)2,610백만원→('19)1,006백만원(△1,604백만원)**

▪ 선박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은 항해*를 금지하고 있어, 선박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및 선박 수리비를 7교 대학교(12척)**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1,006백만원 반영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 선박 총 14척 중 2척 미반영('19년 2월 건조 한국해양대, 군산대 해림2호)

- '18년 건조 선박(3척) 안전검사비 반영(수산계 5백만원, 해양계 12백만원), 수리비는 하자보수 기간으로 미반영

※ 선박안전법 제8조 및 제16조(정기 5년, 중간 2.5년 연차검사 매년 실시)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노후 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96,092**	**42,427**
▪ 선박건조	▪ 선박건조 83,994백만원 선박 5척×16,599백만원 선박 1척×1,000백만원	▪ 선박건조 26,483백만원 선박 5척×2,087.8백만원 선박 1척×15,431백만원 선박 1척×613백만원
▪ 부두개축	▪ 부두 540백만원 부두 1식×540백만원	▪ 부두 4,618백만원 부두 1식×4,618백만원
▪ 승선실습지원	▪ 승선실습 8,948백만원 전기료 7교×49백만원 급량비 7교×525백만원 유류비 15척×329백만원	▪ 승선실습 10,320백만원 전기료 7교×84백만원 급량비 7교×686.28백만원 유류비 14척×352백만원
▪ 안전검사수리	▪ 안전검사 2,610백만원 선박 14척×186백만원	▪ 안전검사 1,006백만원 선박 12척×83.8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립대학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실습선 건조하여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승선실습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세계인 인재 양성

▪ **(선박 건조)** 선령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선박은 주요 장비 고장 및 선체 파공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국제 협약 기준 미달로 대체 선박 건조 지원

▪ **(부두 개축)** 현재 대체 선박은 세계 선대 규모 및 협약 등 선박 안전 관련 국제법 강화 등에 맞춰 건조 중으로 그 규모가 대형화 되어 기존 부두(접안)시설에 정박 불가능

▪ **(승선실습경비 지원)** 수산·해양계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승선실습 경비 지원을 통해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 취득 기본요건* 충족

* 1년 이상 승선실습(세계해사기구(IMO) 협약)

▪ **(안전검사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해를 위해 선박안전검사에 필요한 선박안전검사 및 수리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94,272**	**96,092**	**42,427**	**△53,665**	**△55.8**
▪ 선박 건조	선박건조 83,730 16,746백만원×5척	선박건조 83,994 16,599백만원×5척 1,000백만원×1척	선박건조 26,483 2,087.8백만원×5척 15,431백만원×1척 613백만원×1척	**△57,511**	**△68.5**
▪ 부두안벽(접안)시설	-	설계비 540 540백만원×1식	시설비 4,618 4,618백만원×1식	**4,078**	**755.2**
▪ 승선실습 지원	승선실습 8,478 전기료 49백만원×7교 급식비 485.42백만원 × 7교 유류비 315.8백만원× 15척	승선실습 8,948 전기료 49백만원×7교 급식비 525백만원 ×7교 유류비 329백만원× 15척	승선실습 10,320 전기료 84백만원×7교 급식비686.28백만원 ×7교 유류비 352백만원 ×14척	**1,372**	**15.3**
▪ 안전검사수리비	안전검사 2,064 (147.43백만원×14척)	안전검사 2,610 (186.43백만원×14척)	안전검사 1,006 (83.83백만원×12척	**△1,604**	**△61.5**
□ 비목(합계)	**94,272**	**96,092**	**42,427**	**△53,665**	**△55.8**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3	343	588	245	71.4
○ 급 식 비 (210-04)	3,398	3,676	4,804	1,128	30.7
○ 유 류 비 (210-08)	4,737	4,929	4,928	△ 1	△0.02
○시설장비유지비(210-10)	2,064	2,610	1,006	△1,604	△61.5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70	600	330	122.2
○실시설계비(420-02)	-	917	-	△ 917	순감
○ 시 설 비 (420-03)	80,556	80,408	29,908	△50,500	△ 62.8
○ 감 리 비 (420-04)	2,256	2,593	400	△ 2,193	△ 84.6
○ 시설부대비(420-05)	918	346	193	△ 153	△ 44.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립대학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실습선 건조로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해양계 대학교의 승선실습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인재 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94,572	▪ 선박건조:83,994백만원 (5척×16,798.8백만원) ▪ 승선실습지원: 8,509백만원 (7교×1,215.57백만원) ▪ 안전검사: 2,069백만원 (14척×147.78백만원)			
'18	96,092	▪ 선박건조:83,994백만원 (5척×16,598.8백만원+1척×1,000백만원) ▪ 부두개축(1식): 540백만원 ▪ 승선실습: 8,948백만원 (7교×1,278.28백만원) ▪ 안전검사: 2,610백만원 (14척×186.43백만원)	96,092	▪ 선박건조:83,994백만원 (5척×16,598.8백만원+1척×1,000백만원) ▪ 부두개축(1식): 540백만원 ▪ 승선실습: 8,948백만원 (7교×1,278.28백만원) ▪ 안전검사: 2,610백만원 (14척×186.43백만원)	0
'19	96,092	▪ 선박건조:83,994백만원 (5척×16,598.8백만원+1척×1,000백만원) ▪ 부두개축(1식): 540백만원 ▪ 승선실습: 8,948백만원 (7교×1,278.28백만원) ▪ 안전검사: 2,610백만원 (14척×186.43백만원)	42,427	▪ 선박건조:26,483백만원 (5척×2,087.8백만원+1척×15,431백만원+1척×613백만원) ▪ 부두개축(1식): 4,618백만원 ▪ 승선실습: 10,320백만원 (7교×1,474.28백만원) ▪ 안전검사: 1,006백만원 (12척×83.83백만원)	△53,665
'20	172,966	▪ 선박건조(4척):149,025백만원 ▪ 부두개축(1식): 6,618백만원 ▪ 승선실습(7교): 13,713백만원 ▪ 안전검사(14척): 3,610백만원	45,878	▪ 선박건조(2척):34,088백만원 (1척×33,168백만원+1척×920백만원) ▪ 승선실습: 10,320백만원 (7교×1,474.28백만원) ▪ 안전검사: 1,470백만원 (12척×83.83백만원)	△127,088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72,966	■ 선박건조(4척):149,025백만원 ■ 부두개축(1식): 6,618백만원 ■ 승선실습(7교): 13,713백만원 ■ 안전검사(14척): 3,610백만원	11,558	■ 선박건조(1척):1,288백만원 (1척×1,288백만원) ■ 승선실습: 9,320백만원 (7교×1,331.43백만원) ■ 안전검사: 950백만원 (12척×79.16백만원)	△161,408
'22			11,558	■ 선박건조:1,288백만원 (1척×1,288백만원) ■ 승선실습: 9,320백만원 (7교×1,331.43백만원) ■ 안전검사: 950백만원 (12척×79.16백만원)	11,558
연평균 증가율 (%)	20.4		△30.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원)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61	427	△534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043	431	△61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04.3	43.1	△61.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1>직접일자리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431명**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a. 155.505억원 ÷ 0.4594억원 = 338.50명 1)인건비 총액 : 선박건조 및 부두시설비 311.01억원의 50%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종합건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594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88억원을<표2>의 '공공요금 및 제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5.13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5.88억원 ÷ 5.13억원 = 1.15명 - 급식비(220-04)48.04억원을<표2>의 '급식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7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48.04억원 ÷ 0.77억원 = 62.39명 - 유류비(240-08)49.28억원을<표2>의 '유류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7.33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d. 49.28억원 ÷ 7.33억원 = 6.72명 - 시설장비유지비(240-10)10.06억원을<표2>의 '시설장비유지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47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e. 10.06억원 ÷ 0.47억원 = 21.40명 □ **2018년 고용효과: 1,043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교육기본법」제16조,「고등교육법」제4조 및 제7조,「국립학교 설치령」제16조 및 제20조(경비부담 등)

○ 추진경위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사업에서「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2740-301)」사업을 분리하여 편성('16년~)

* 기존에 각각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비와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에 속해 있던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선박비, 선박안전검사 수리비를 승선실습지원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	-	-	443	693	946	-	961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	- ( )	- ( )
'16년	**693** ( )	- ( )	- ( )	693 ( )	**690** ( )	- ( )	3 ( )
'17년	**946** ( )	- ( )	- ( )	946 ( )	**943** ( )	- ( )	3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94,572	-	96,092	-	96,092	96,092	100

○ 교문위 검토보고서('17. 11. 08.)

▪ 검토의견: 수산·해양계 대학생들의 급식비 현실화 필요

- 급량비 지원은「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산·해양계대학의 특수성 그리고 안정적인 실습지원을 보장하고 학생복자 증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열악한 급량비 지원예산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현재 1식 기준단가인 1,600원은 너무 열악하므로 1식당 기준단가를 2,000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약 7억원을 증액할 필요

○ 집행현황

▪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 사업비의 집행액은 '18.12월말까지 96,092백만원으로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결산)

▪ 2016년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

- 노후선박건조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250억 중 248억 9,500만원이 이월됨

☞ 2016년 사고이월액 248억 9,500만원 전액 집행 완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예산 요구(국립대학) → 대학별 한도액 배분(교육부) → 사업별 금액 배분(대학) → 대학별 예산 편성 취합(교육부) → 기재부 제출(교육부) → 예산 확정(국회) → 예산배정 → 사업집행(국립대학)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선박승선실습지원 만족도 (단위: 점수)	목표	-	70	-	73	74	'16년 만족도 실적 반영	만족도=(단계별점수×인원수)/조사참여인원수	만족도 조사 (인터넷)
	실적	-	72.7	-	-	-			
	달성도	-	104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 (참고2)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 (참고3) 적용물량 · 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 (참고4) 국립대학 선박보유현황

○ (참고5)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원양실습 중 침수 상황

○ (참고6)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복원성 자료

○ (참고7)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선박 주요사고 현황

참고 1 조선산업 발전전략

□ 정부는 **'18.4.5**(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 4.5(목) 10:00~11:0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3대 혁신 : 원가혁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

□ **친환경으로 전환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연관선박 중심의 선제적 시장창출, 5.5조 원 규모 공공발주 등 일감확보 확대**

○ **(액화천연가스(LNG)연료선)** 관공선의 시범발주(매년 1~2척) 및 민간선사의 발주를 유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 적합선박 선정 추진('18년)

* 중장기적으로 국내 연안해역의 배출규제해역(ECA) 지정 검토

○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9년)을 통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및 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 발주('19년, 710억 원)

* 민관 합동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협의체 발족('18. 5월)

○ **(국내발주) 5.5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 국내 발주** 선박*에 대한 수주노력 경주

* '18~'20년간 국내선사 발주 총 200척 및 '18~'19년간 공공선박 발주 총 40척 전망

참고 2 해당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교육기본법」 제16조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7조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및 제20조

제16조(학비보조 등) ①대학의 학사과정 간호계 학과 또는 학부의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②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③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 중 승선생활관 또는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피복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한국체육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⑥승선실습 기간 중 실습선에 승선 근무하는 경상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부경대학교·전남대학교·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20조(경비부담등) ①이 영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선박안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7조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항 생략, ③항 생략

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항 생략, ③항 생략, ④항 생략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검사(이하"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호, 6호, 7호 생략

②항 생략, ③항 생략, ④항 생략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 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선박검사증서 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요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참고 3 적용물량 및 산출내역

❑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사업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백만원)

구 분	선박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기투자	'18		'19	'20	'21	'22	'23	
				본예산	예비비						
합계	**7**	**374,385**	**149,834**	**83,994**	**30,118**	**26,483**	**37,028**	**1,192**	**28,753**	**16,983**	
신규	1	48,461	-	-	-	613	920	1,192	28,753	16,983	경상대(01년)
계속	5*	272,758	149,207	82,994	30,118	10,439	-	-	-	-	목포해대 등(5척)
	1	53,166	627	1,000	-	15,431	36,108	-	-	-	부경대
	소계	325,924	149,834	83,994	30,118	25,870	36,108	-	-	-	

❑ 국립대학교 실습선 건조계획(6척)

구 분	강재절단	진수일 (L/C)	인수예정일 (D/L)	선적항	시운전	계약상대자
제주대	2016.12.15.	2017.11.28.	2018. 8.24.	제주	2018. 6~ 7.	한진중공업
군산대	2017. 4.18.	2018. 2.28.	2018.11.20.	군산	2018. 9~10.	
전남대	2017. 5.10.	2018. 4. 5.	2019. 1.15.	여수	2018.11~12.	
목포해양대	2017. 2.15.	2017.11.28.	2018.12.17.	목포	2018.10.~11.	
한국해양대	2017. 6.16.	2018. 4. 5.	2019. 2.28.	부산	2018.12.~19.1.	
부경대	2019. 4.1.	2020.2.28.	2020.12.10.	부산	2020.10.~12.	대선조선(주)

❑ 부두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백만원)

구 분	시설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 고
			기투자	'18		'19	'20	'21	
				본예산	예비비				
계속	1	7,158	-	540	2,000	4,618	-	-	목포해양대 부두설치

❑ 전기요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용도	전기계약용량 (A)	실습시간 (B)	단가(원) (C)	보정률(%) (D)	예산 (E=A×B×C×D)
합 계						**588,000**
한국해양대	실습선	1,400	1,440	152	62.5	191,400
목포해양대	실습선	1,400	1,440	152	62.5	191,400
경상대	실습선	400	720	152	62.5	27,360
군산대	실습선	400	720	152	62.5	27,360
전남대	실습선	600	720	152	62.5	41,040
제주대	실습선	600	720	152	62.5	41,040
부경대	실습선	1,000	720	152	62.5	68,400

※산출식: 전기 계약용량(KW)×정박 시 실습시간×전기요금 단가

※전기 계약용량(KW): 해양계 800kw~1,400kw, 수산계 200kw~1,000kw

※실습시간: 해양계 1,440시간, 수산계 720시간

※전기요금 단가: 152원('18년 사용실적 평균단가)

※보정률: ('17년 결산액/'19년 산출금액)×100

- (588,000천원/941,184천원)×100≒62.5%)

□ 급량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대학명	구 분		승선정원(a)			정원보정(b)	보정인원	급식비 1일 단가(c)	승선일(d)	일수보정(e)	보정일	'19년 예산
	선박명	용도	학생	교직원	합계							
합 계												4,804,000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실습선	200	39	239	93%	223	6,500	365	50%	182	264,000
	한바다호	실습선	205	41	246	93%	229	6,500	365	50%	182	271,000
	승선생활관		1,620	0	1,620	85%	1,377	6,500	365	50%	182	1,628,000
	소계											2,163,000
목포해양대	유달호	실습선	200	39	239	93%	223	6,500	365	50%	182	264,000
	새누리호	실습선	168	40	208	93%	194	6,500	365	50%	182	229,000
	승선생활관		1,650		1,650	85%	1,403	6,500	365	50%	182	1,660,000
	소계											2,153,000
경상대	새바다호	항해	40	28	68	60%	41	6,500	365	70%	256	68,000
		기관	40		40	60%	24	6,000	180	70%	126	20,000
	소계											88,000
군산대	새해림호	항해	44	24	68	60%	41	6,500	365	70%	256	68,000
		기관	44		44	60%	27	6,500	180	70%	126	22,000
	소계											90,000
전남대	새동백호	항해	50	30	80	60%	48	6,500	365	70%	256	80,000
		기관	30		30	60%	18	6,500	180	70%	126	15,000
	소계											95,000
제주대	아라호	항해	38	25	63	60%	38	6,500	365	70%	256	63,000
		기관	47		47	60%	29	6,500	180	70%	126	24,000
	소계											87,000
부경대	가야호	항해	66	36	102	60%	62	6,500	365	70%	256	103,000
		기관	50		50	60%	30	6,500	180	70%	126	25,000
	소계											128,000

※산출식: 보정인원수×급식비단가×보정일수

※보정인원수: 승선정원 대비 실제 탑승인원 비율(해양계 93%, 수산계 60%)

※급식비단가: ('18년)5,000원→('19년 6,500원)

※보정일수(방학 및 공휴일 공제일)

- 해양계 182일(6.0개월), 수산계 항해사 256일(8.5개월), 기관사 126일(4.2개월)

□ 유류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학교명	선박명	용도	톤수/용량	주기관(HP)	실습시간	유류소모기준	단가(원)	보정률(%)	'19년 예산		
									주연료	잡유	소계
합계									4,623,000	305,000	4,928,000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실습선	9,197	8,871	1,800	0.130	458.9	75.62	720,000	48,000	768,000
	한바다호	실습선	6,686	8,130	1,800	0.130	458.9	75.62	660,000	44,000	704,000
	아치호	조사선	26	1,100	400	0.112	1,098.1	75.62	41,000	3,000	44,000
	소계								1,421,000	95,000	1,516,000
목포해양대	유달호	실습선	9,197	8,871	1,800	0.130	458.9	75.62	720,000	48,000	768,000
	새누리호	실습선	4,701	6,060	1,800	0.130	458.9	75.62	492,000	32,000	524,000
	소계								1,212,000	80,000	1,292,000
경상대	새바다호	실습선	999	3,300	720	0.125	1,098.1	75.62	247,000	16,000	263,000
	참바다호	조사선	36	1,218	400	0.112	1,098.1	75.62	45,000	3,000	48,000
	소계								292,000	19,000	311,000
군산대	해림호	실습선	2,996	4,690	720	0.125	1,098.1	75.62	351,000	23,000	374,000
	해림2호	폐선							0	0	0
	소계								351,000	23,000	374,000
전남대	새동백호	실습선	2,996	4,690	720	0.125	1,098.1	75.62	351,000	23,000	374,000
	청경호	조사선	115	1,300	400	0.112	1,098.1	75.62	48,000	3,000	51,000
	소계								399,000	26,000	425,000
제주대	신아라호	실습선	2,996	4,690	720	0.125	1,098.1	75.62	351,000	23,000	374,000
	제라호	조사선	161	1,600	400	0.125	1,098.1	75.62	67,000	4,000	71,000
	소계								418,000	27,000	445,000
부경대	가야호	실습선	1,737	2,976	720	0.130	1,098.1	75.62	231,000	15,000	246,000
	나라호	탐사선	1,494	4,000	720	0.125	1,098.1	75.62	299,000	20,000	319,000
	소계								530,000	35,000	565,000

※산출식

- 주연료: 유류소모기준(ℓ/HP,시간)×주기관 마력수×실습시간×유류단가
- 잡유: 주연료 소요액×6.6%

※유류소모기준: 저속(0.130), 중고속(0.125), 고속(0.112)(단위:ℓ/HP,시간)

※유류단가: 선박용 경유(0.05%) 단가 1,098.1원

선박용 중유(LRFO 1.0%) 단가 458.9원

※실습시간

- 해양계: 실습선 1,800시간(225일), 조사선 400시간(50일)
- 수산계: 실습선 720시간(90일), 탐사선 720시간(90일), 조사선 400시간(50일)

※보정률: ('18년 예산편성금액/ '19년 산출금액)×100

- (4,928,000천원/6,516,065천원)×100≒75.62%

□ 안전검사수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대학명	선박명	규모(톤)	선령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검사종류	금액	검사종류	금액
합 계					**2,610,000**		**1,006,000**
한국해양대	한나라호	3,460	25	정기	401,000	폐선	-
	한나라호	9,197	0	신조	-	연차	-
	한바다호	6,686	13	연차	209,000	연차	210,000
	소 계				**3,011,000**		**210,000**
목포해양대	유달호	9,197	1	신조	-	연차	12,000
	새누리호	4,701	15	연차	147,000	연차	179,000
	새유달호	3,644	25	정기	401,000	폐선	-
	소 계				**3,158,000**		**191,000**
경상대	새바다호	999	17	중간	225,000	연차	120,000
	참바다호	36	14	연차	8,000	연차	9,000
	소 계				**3,383,000**		**129,000**
군산대	새해림호	2,996	1	건조	-	연차	5,000
	해림호	1,057	25	중간	237,000	폐선	-
	해림2호	124	17	연차	35,000	폐선	-
	소 계				**3,620,000**		**5,000**
전남대	새동백호	2,996	1	건조	-	연차	5,000
	동백호	1,057	25	중간	236,000	폐선	-
	청경호	115	17	중간	60,000	연차	33,000
	소 계				**236,000**		**38,000**
제주대	신아라호	2,996	1	건조	-	연차	5,000
	아라호	990	25	중간	223,000	폐선	-
	제라호	161	5	정기	56,000	연차	38,000
	소 계				**459,000**		**43,000**
부경대	가야호	1,737	25	연차	138,000	중간	300,000
	나라호	1,494	3	중간	234,000	연차	90,000
	소 계				**597,000**		**390,000**

※ '18년 건조한 선박 4척: 안전점사 수수료만 반영, '19년 2월 준공(한국해양대) 미반영

※ 연차검사료 산식: 선박톤수×선령과 톤수 구간 단가

(예) 4년 선박으로 1,500톤인 경우: 1,500톤× 59,609원= 89,413,500원

선체	선령	300톤미만	300~1,500톤	1,500~3,000톤	3,000톤이상
실습선 (강선, FRP선)	1~5년	139,776	59,609	39,739	18,974
	6~10년	181,709	77,491	51,661	24,666
	11~15년	230,630	98,355	65,570	31,307
	16년이상	279,552	119,218	79,478	37,948

※ 정기 및 중간검사료 산식: 연차검사료+입거수리비

규 모	입거수리비
300톤미만	50,000천원-(300-톤수)×120천원
300～1,500톤	50,000천원+(톤수-300)×80천원
1,500～3,000톤	150,000천원+(톤수-1,500)×50천원
3,000톤 이상	250,000천원+(톤수-3,000)×20천원

참고 4 수 · 해양계 대학 선박 보유현황(2019.12.기준)

구분	학교명	선박명	용도	규모 (톤)	승선인원	건조년월	선령	비고
해양계	한국 해양대	**한나라호**	**실습선**	**3,640**	**202**	**1993.12**	**25**	**폐선**
		한나라호	**실습선**	**9,197**	**239**	**2019.02**	**0**	
		한바다호	실습선	6,686	246	2005.12	13	
		아치호	조사선	26	20	1995.10	23	
	목포 해양대	**유달호**	**실습선**	**9,197**	**239**	**2018.12**	**1**	
		새누리호	**실습선**	**4,701**	**208**	**2003.03**	**15**	
		새유달호	실습선	3,644	202	1993.10	25	폐선
수산계	경상대	새바다호	실습선	999	108	2001.08	17	
		참바다호	조사선	36	25	2005.09	14	
	군산대	**새해림호**	**실습선**	**2,996**	**110**	**2018.11.**	**1**	
		해림호	**실습선**	**1,057**	**112**	**1993.12**	**25**	**폐선**
		해림2호	조사선	124	30	2002.10	17	폐선
	전남대	**새동백호**	**실습선**	**2,996**	**110**	**2019.01**	**1**	
		동백호	**실습선**	**1,057**	**134**	**1993.12**	**25**	**폐선**
		청경호	조사선	115	34	2001.11	17	
	제주대	**새아라호**	**실습선**	**2,996**	**110**	**2018.08**	**1**	
		아라호	**실습선**	**990**	**112**	**1993.08**	**25**	**폐선**
		제라호	조사선	161	29	2013.07	5	
	부경대	**가야호**	**실습선**	**1,737**	**152**	**1993.08**	**25**	**건조 중 ('20.12준공)**
		나라호	탐사선	1,494	66	2015.06	3	

* 한국해양대 조사선(아치호, 26ton, 선령 22년)는 군산세관에서 관리전환(2017.10) 받은 선박으로, 배를 2018년 4월까지 보수하여, 해양탐사나 바닷물 시효채취 등 실험으로 활용(1대학 2척 원칙)

참고 5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원양승선실습 중 침수 상황

○ 항해 실습 중 높은 파도에 의한 실습선 선체 파손 위험 노출

원양승선실습 중 제8호 태풍「마리아」으로 심한 바람과 파도에 실습선이 심한 선체(전·후·좌·우)운동으로 선체에 큰 충격을 주면서, 승선실습 중인 학생들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음

○ 선수 체인로커(앵커체인 수납공간) 침수로 실습선 선수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면서, 선박 복원성에 심각한 위험발생

○ 실습선의 노후화로 밀폐된 자연 환풍구로 선수 좌측 자연 환풍구로 해수 유입

선수 자연 환풍구

선수 좌현 자연 환풍구

○ 자연 환풍구로 해수 유입

실습생 침실 통로측 자연 환풍구

제2강의실(식당겸용) 해수 유입

수면하 학생침실로 해수 유입

○ 파도에 의한 경사 심각(제8호 태풍「마리아」)

위 사진은 새바다호에 설치된 경사계로 2018. 7. 7. 일본으로 항해 중 촬영하여 좌현 30도, 우현 35도의 경사각을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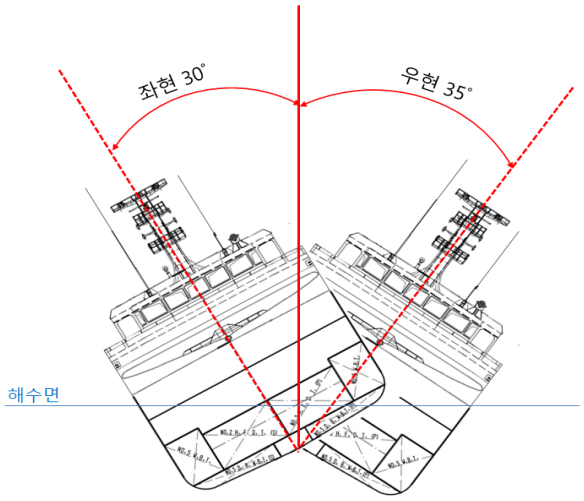

실습선 새바다호는 설계시 어선+여객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승선실습 중 강한 파도에 의한 경사가 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위험 요소

참고 6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복원성 자료

□ 실습선 새바다호 경사도 안전 기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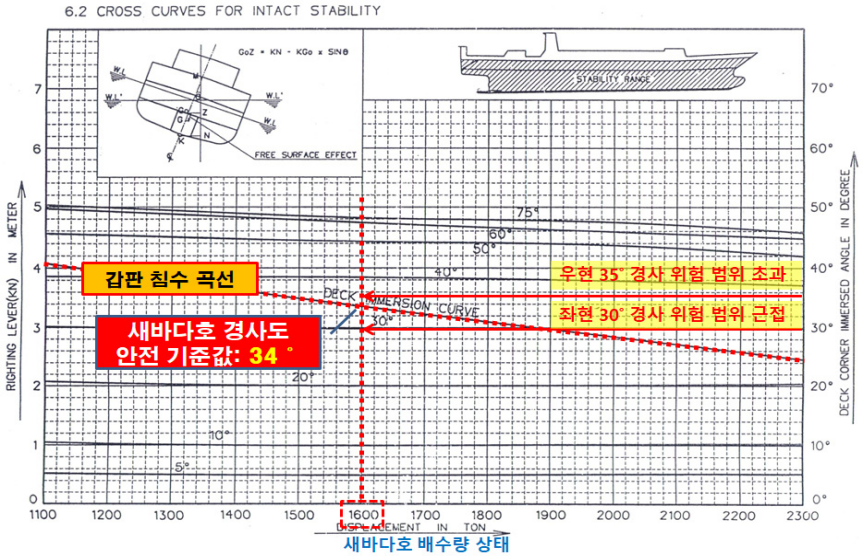

○ 새바다호 복원성 경사도 안전 기준 값은 34°이며, 실습선 경사각이 좌측, 우측 34°를 넘어서면, 갑판으로 해수 유입

○ 새바다호는 수면하부 학생 거주구(침실), 수면상부와 갑판 중간에 강의실, 식당, 승무원 거주구가 위치 → 실습선 경사가 34°가 넘으면, 거주구 창문이 물속에 잠김

○ 선령이 증가하여 실습선의 노후도가 증가됨에 따라 갑판 하부의 각종 수밀 창문의 안전 강도가 낮아지고, 강한 파도와 수압에 수밀 창문이 파손되어 침수되면, **대형 인명사고 발생**

○ 또한 새바다호가 우측으로 35°를 기울어진 상황에 커다란 파도를 만나 **무게 중심이 순간적으로 우측으로 솔리면, 침몰의 위험 발생**

※ '18년 원양승선실습 중 새바다호 경사 값이 좌현 30°, 우현 35°로 안전기준 값을 초과

참고 7 경상대학교 새바다호 선박 주요사고 현황

장비명	선박 주요사고 현황	비고
메인엔진	'10년 승선실습을 위해 일본으로 출항하던 중 통영근해에서 기관실 메인엔진 배기관의 파공으로 기관실 및 선내에 엔진 배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 선내 긴급 기관정지 실시 및 긴급 투묘를 실시하였고, 선내에 유출된 가스로 인해 실습중인 학생들은 갑판으로 대피하는 큰 사고가 발생 → **해상에서 12시간에 걸친 긴급 수리**	
FIRE ALARM SYSTEM (화재감지기)	'13년 화재감지기 배전반 노후로 인한 잦은 오작동과 고장으로 선박안전항해에 지장을 초래하여, 선내 전체 감지 장치, Line 및 센서를 교체하여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Main 기판만 교체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화재경보기 정비 및 Line 교체 시급	
항해용 RADAR	'14년 항해 승선실습 중 레이더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선박 간 충돌위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항해 시 충돌위험 초래**	
위성콤파스의 안테나	'15년 11월 항해 승선실습 중 위성콤파스의 안테나 노후화로 인해 오작동 → **선박 간 충돌위험 초래**	
VHF DSC	'16.5월 선교실 통신 장비 VHF DSC(초단파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수신회로 기판 고장으로 DSC 수신이 불량 → **항해 중 조난 통신 불가**	
CALORIFIER (온수기)	'16년 7월 노후로 인한 온수저장탱크의 파공으로 **스팀 누수 발생** ※ 기관실에서 수업 중이던 기관사관 및 학생들의 고압 스팀에 의한 화상사고 발생	
스팀파이프	'16.12월 선실 내부 천장으로 지나가는 스팀파이프의 파공으로 스팀누수가 심각 → 고온의 스팀과, 온수가 침실로 흘러 **안전사고 발생**	
DRAIN COOLER	'17년 선내 보일러 DRAIN COOLER의 노후화로 열교환 파이프 및 경판의 파공으로 보일러 작동이 불가하여 교체함	
발전기	'18.3월 항해 중 선내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 고장으로 선박이 Shut Down되어 엔진, 항해장비 및 안전장비의 정지로 타선박과 충돌위험 발생 → **긴급 투묘하여, 6시간 동안 해상에서 긴급 수리**	

[305]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	-	85,000	**85,000**	**순증**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700 - 2740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시설과장(정영린), 사무관(정재선), 주무관(황상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민간투자사업인 ㈜효원이앤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농협(대주)에서 실시협약 해지 및 부산대를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제기 - 부산대의 채무보증 등의 사유로 해지시지급금 등을 국고에서 지급 필요
사업기간	- 2009년 ~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효원문화회관(수익시설) : 54,143㎡ - 종합체육관 등 교사시설 : 20,055㎡ ※ 해지시지급금(예상액) : 85,000백만원 : 해지시지급금 771억 + 부가세 77억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부산대학교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소송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배상금) 지급액 국고반영 : 85,0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	85,000

□ **지원 필요성**

○ 파기환송심 해지시지급금 확정시 원고의 건물명도와 동시에 해지시지급금(국고) 지급 필요

- 해지시지급금(예상액) : 85,000백만원 : 해지시지급금 771억* + 부가세 77억

***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있어 법정 다툼(파기환송심_18나55176) 진행 중**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	-	85,000	85,000	**순증**
■ 국립대학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소송 관련 지급금	-	-	85,000	85,000	**순증**
□ 비목	-	-	85,000	85,000	**순증**
○무형자산(440-00)	-	-	85,000	85,00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해당없음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216조, 제219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추진경위

- '13. 2.13. (대주*→부산대)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소송 제기

  * 대주 : 농협 / 대리금융기관 : 한국투자신탁운용(주) / 투자자 : 과학기술인공제회

- '15. 1. 7. 1심 선고 (부산지법)
  - ▪ 실시협약 해지. 부산대의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기성회 보증책임 없음
- '15.12. 9. 2심 선고 (부산고법)
  - ▪ 실시협약 해지. 부산대의 동시이행항변권 부정. 기성회 보증책임 없음
- '18. 7.24. 3심 선고 (대법원)
  - ▪ 실시협약 해지. 부산대의 동시이행항변권 파기환송. 기성회 보증책임 없음
    - ※ 파기사유 : 피고 부산대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대한 원고의 악의, 중과실
- '18. 7.27. 파기환송심 접수 (부산고법)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건립 및 소송진행 경과

참고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건립 및 소송진행 경과

○ ('05.12.7) 민간투자 교육시설 사업 **주무관청 지정** 통보
- **부산대학교 총장**을 **주무관청**으로 **지정·위임**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모집공고 등 추진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시설 구성

○ ('05.12.20)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건립·운영 BTO사업 기본계획」 **고시**

○ ('06.6.1) SPC((주)효원이앤씨 대표 구자봉)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07.3.21) SPC 400억원 대출(하나캐피탈(주) - 이자율 연 7.5%, 3년 약정)

○ ('09.2.13) 효원문화회관 개관(사업승인 '05.12. / 실시협약 '06.6.)

○ **('10.10.14) SPC 400억원 대출***(**부산대 기성회담보**, 이자율 연 8.4%, 3년 약정)
* **대주: 농협** / 대리금융기관: 한국투자신탁운용(주) / 투자자: 과학기술인공제회

➲ **부산대**가 '**제2차 보충사업약정서**('10.10.14) 및 **확인서**('10.10.14)' 작성

○ ('11.6.30) **NC백화점**과 SPC(주. 효원이앤씨) **위탁운영** 계약 체결

➲ **부산대**가 **NC백화점**(임차인)에게 **최대 2039년**까지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 협약 체결**(부산대-사업시행자-NC백화점, **'11.7.13)**

○ ('12.3.1) NC백화점 영업 개시

○ **('12.4.16)** SPC 상반기 이자(1,684백만원) 미납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통지**(농협 → 부산대, SPC)

○ **('12.5.18) 실시협약 해지 통보**(농협 → 부산대, SPC)
※ **(1·2심 판결) '12.5.17일자로 협약 해지**

○ **('13.2.13) 농협**(대주) **해지시지급금 청구** 등 **소송 제기**
- **원고 : 농협** / 피고 : 대한민국(주채무자), 부산대기성회(보증채무자)

○ **('15.1.7) 1심 선고**(원고 일부승소)
- **(대한민국)**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해지시지급금 지급**
- (부산대 기성회) 해지시지급금 부담 약정 무효

○ **('15.12.9) 2심 선고**(원고 승소)
- (대한민국) 원고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배척 → 대출원리금 즉시 지급**
- (부산대 기성회) 해지시지급금 부담 약정 무효(※ 원심 유지)

○ **('18.7.24.) 대법원 최종심 선고**(원고 일부승소,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에 따른 파기환송)
- (대한민국)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해지시지급금 지급**
- (부산대 기성회) 해지시지급금 부담 약정 무효(※ 원심 유지)

◘ 소송 결과

1심 판결내용('15.1.7)
○ **협약**은 **해지**됨**('12.5.17)**
○ 국가는 '해지시 지급금(771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금: 선고일 현재 약 604억원)
- 단, **건물 인도와 동시**에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 발생 **(동시이행 항변 인정)**
- **부산대 기성회**는 **보증의무 없음**
2심 판결내용('15.12.9)
○ **협약**은 **해지**됨**('12.5.17)**
○ 국가는 '해지시 지급금(771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금: 선고일 현재 약 673억원)
- 건물인도와 상관없이, **대출금 상환할 때까지 연체이자 발생** **(동시이행 항변 불인정)**
- **부산대 기성회**는 **보증의무 없음**
최종심 판결내용('18.7.24)
○ **협약**은 **해지**됨**('12.5.17)**
○ 국가는 '해지시 지급금(771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단, **건물 인도와 동시**에 '해지시 지급금' 지급의무 발생 **(동시이행 항변 인정)**
- **부산대 기성회**는 **보증의무 없음**

※ 참 고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00]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52,688	437,148	457,620	**20,472**	**4.7**

* 사업코드 : 교육부 - 11 - 0 - 050 - 052 - 2700 ~ 2742 - 300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사무관(조홍선), 주무관(박찬서)
서울대학교 예산과장(김지현), 행정관(김광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서울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학생 : 33,540명(학사:20,294명, 석사:8,624명, 박사:4,622명) - 교직원 : 6,081명(교수 2,104명, 부설학교 교원 162명, 조교 365명, 직원 1,030명, 기금교원 99명, 기타교원 987명, 전공의 34명, 시간강사 1,300명) - 부지 : 대학 8,006천m^2, 부설학교 92.4천m^2 - 건물 : 대학 1,594천m^2, 부설학교 40.4천m^2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서울대학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서울대학교 운영>

○ 인건비 : 260,374백만원

▪ 기존 교직원 인건비, 신규교원 인건비, 시설관리직원 인건비

▪ 산출내역 : 260,374백만원('18년도 예산액 241,048백만원×'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 1.8%=245,387백만원, 융복합연구 및 데이터사이언스혁신대학원 신설에 따른 신규 교원 28명 채용 2,800백만원, 시설관리직원 인건비* 12,187백만원)

* 시설관리직원 인건비 : 시설관리직 운영 사업을 운영비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 및 시설관리직 최저임금 상승분(처우개선 포함) 반영

○ 운영비 : 36,450백만원

▪ 공공요금, 연료비, 대학경상운영비, 보직수행경비, 교원및조교성과급, 시간강사료

▪ 산출내역 : 36,450백만원(정부 기준 운영비 증가율 3% 반영)

○ 사업비 : 114,556백만원

▪ 기존 23개 사업, 3개 신규사업*

▪ 산출내역 : **114,556**백만원(기존 23개 사업 111,879백만원, 3개 신규사업 2,677백만원)

* 신규사업 : 데이터사이언스혁신대학원 설립 763백만원, 미래인재육성사업 1,414백만원, 한국고등교육혁신센터 운영 500백만원

○ 성과사업비 : 18,940백만원

▪ 7개 성과사업비

▪ 산출내역 : 18,940백만원(노벨수상자급 석학유치 1,000백만원, 신임교원 연구지원 2,050백만원,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4,710백만원,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3,800백만원, 미래 기초학문 분야 기반 조성 2,050백만원, SNU Young Star Program 3,100백만원, 규장각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 2,230백만원)

<부설학교 운영>

ㅇ 인건비: 15,650백만원

- 부설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각종 공적부담금,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 산출내역 : 15,650백만원('18년도 예산액 15,373백만원×'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8%)

ㅇ 운영비: 2,357백만원

- 교육 및 연구 중심의 부설학교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비 지원
- 산출내역 : 2,357백만원(공공요금 421백만원, 연료비 58백만원, 시설관리유지비 297백만원, 학교 경상운영비 735백만원, 학생건강 및 안전 관리 83백만원, 교수학습활동비 578백만원, 저소득층 지원 155백만원, 특수학급 운영비 30백만원)

ㅇ 사업비: 2,979백만원

- 학력증진지원비 부설학교 교육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
- 산출내역 : 2,979백만원(학력증진지원비 1,853백만원, 부설학교 교육지원 사업 349백만원, 부설학교 연구지원 사업 400백만원, 시설물 유지비 64백만원, 학교운영지원 313백만원)

ㅇ 시설사업비: 6,314백만원

- 시설사업비: 부설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 산출내역 : 6,31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가+나)	437,148	457,620
■ 서울대학교 운영(가)	410,386	430,320
· 인건비	241,048	260,374
· 운영비	42,619	36,450
· 사업비	107,779	114,556
· 성과사업비	18,940	18,940
■ 부설학교 운영(나)	26,762	27,300
· 인건비	15,373	15,650
· 운영비	2,289	2,357
· 사업비	2,786	2,979
· 시설사업비	6,314	6,314

□ **지원 필요성**

○ **(서울대 법인화 법률 취지 달성 필요)** 서울대학교 출연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대학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고등교육예산증가율, 교육부 주관 대학운영평가결과 '우수'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학부 입학금 폐지('18년), 입시전형료 인하('17년), 비학생조교 정규직 전환('17년), 용역직 정규직 전환('18년, 763명) 등 교육부 및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였으며, 학생 교육 지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필요

○ **(국내 최대 고용창출 공교육기관)** 서울대학교 내에는 교직원 6,081명(교수, 교직원, 조교, 시간강사, 부설학교 교원, 전공의 등), 연구원 3,725명, 무기계약직 503명, 계약직 780명, 용역직원(시설, 청소, 경비) 763명,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101명, 생활협동조합 260명, 발전기금 36명 등 1만 2,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창출 공교육기관임

○ **(국내 최고의 인재양성 기관)** 서울대학교는 세계대학평가에서 30위권에 있는 유일한 국내 대학으로, 세계 유수 대학과의 경쟁력 유지와 미래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 필요

- 서울대의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6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학문분야 평가 세계 50위권 학과는 29개 학과로 증가

○ **(부설학교 지원은 법적 의무)** 부설학교는 의무 공교육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자체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필요

< 초·중등교육법 >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52,688**	**437,148**	**457,620**	**20,472**	**4.7**
■ 인건비	234,940 (1식x234,940백만원)	241,048 (1식x241,048백만원)	260,374 (1식x260,374백만원)	19,326	8.0
■ 운영비	42,619	42,619	36,450	△6,169	△14.5
- 공공요금	3,442 (1식x3,442백만원)	3,442 (1식x3,442백만원)	3,545 (1식x3,545백만원)	103	3.0
- 연료비	3,353 (1식x3,353백만원)	3,353 (1식x3,353백만원)	3,454 (1식x3,454백만원)	101	3.0
- 시설관리직운영	4,892 (1식x4,892백만원)	7,230 (1식x7,230백만원)	-	△7,230	순감
- 대학경상운영비	13,515 (1식x13,515백만원)	11,177 (1식x11,177백만원)	11,512 (1식x11,512백만원)	335	3.0
- 교수보직수행경비	1,293 (1식x1,293백만원)	1,293 (1식x1,293백만원)	1,332 (1식x1,332백만원)	39	3.0
- 교원및조교성과급	7,242 (1식x7,242백만원)	7,242 (1식x7,242백만원)	7,459 (1식x7,459백만원)	217	3.0
- 시간강사료	8,882 (1식x8,882백만원)	8,882 (1식x8,882백만원)	9,148 (1식x9,148백만원)	266	3.0
■ 사업비	125,400	107,779	114,556	6,777	6.3
- 선한인재 양성 프로그램 I (교육분야)	1,000 (1식x1,0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	-
- 선한인재 양성 프로그램 II (학생지원분야)	1,000 (1식x1,0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	1,200 (1식x1,20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	-
- 빅데이터 융합연구 기반 구축	600 (1식x600백만원)	540 (1식x540백만원)	540 (1식x540백만원)	-	-
- 데이터사이언스혁신대학원 설립(신규)	-	-	763 (1식x763백만원)	763	순증
- 창업·취업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1,000 (1식x1,000백만원)	900 (1식x900백만원)	900 (1식x900백만원)	-	-
- 세계선도 학술분야 지원	1,200 (1식x1,20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	-
- 통일연구 기반 구축	1,650 (1식x1,650백만원)	1,480 (1식x1,480백만원)	1,480 (1식x1,480백만원)	-	-
- 기초학문 육성, 학문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석사)	700 (1식x700백만원)	700 (1식x700백만원)	700 (1식x700백만원)	-	-
- 미래인재육성(신규)	-	-	1,414 (1식x1,414백만원)	1,414	순증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0,000 (1식x10,000백만원)	9,256 (1식x9,256백만원)	9,256 (1식x9,256백만원)	-	-
- 서울대 정보화	8,737 (1식x8,737백만원)	7,800 (1식x7,800백만원)	7,800 (1식x7,800백만원)	-	-
- 학술정보 기반 조성	9,100 (1식x9,100백만원)	9,100 (1식x9,100백만원)	9,100 (1식x9,100백만원)	-	-
-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10,200 (1식x10,200백만원)	9,100 (1식x9,100백만원)	9,100 (1식x9,100백만원)	-	-
-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기반 조성	1,500 (1식x1,500백만원)	1,319 (1식x1,319백만원)	1,319 (1식x1,319백만원)	-	-
- 신임교원 연구정착 지원	1,500 (1식x1,500백만원)	-	-	-	-
- 대학의 사회책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 (1식x1,000백만원)	900 (1식x900백만원)	900 (1식x900백만원)	-	-
- 글로벌사회공헌단운영 및 사회공헌 인력 양성	998 (1식x998백만원)	894 (1식x894백만원)	894 (1식x894백만원)	-	-
-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운영 및 의료취약국가의 의학교육과정 개발 지원	1,200 (1식x1,20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	-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200 (1식x1,20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1,080 (1식x1,080백만원)	-	-
- 지식나눔활성화 사업 (edX-SNUx)	500 (1식x500백만원)	450 (1식x450백만원)	450 (1식x450백만원)	-	-
- 한국고등교육혁신센터(신규)	-	-	500 (1식x500백만원)	500	순증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시설사업비	45,881 (1식x45,881백만원)	41,300 (1식x41,300백만원)	45,400 (1식x44,600백만원)	4,100	9.9
-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운영	17,100 (1식x17,100백만원)	12,600 (1식x12,600백만원)	12,600 (1식x12,600백만원)	-	-
-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조성·운영	3,800 (1식x3,800백만원)	3,000 (1식x3,000백만원)	3,000 (1식x3,000백만원)	-	-
- 아시아연구소 연구사업	1,800 (1식x1,800백만원)	1,400 (1식x1,400백만원)	1,400 (1식x1,400백만원)	-	-
- 문화재 보존 및 기록화 사업 (박물관, 미술관)	800 (1식x800백만원)	720 (1식x720백만원)	720 (1식x720백만원)	-	-
- 스마트 정보 공유환경 구축	1,000 (1식x1,000백만원)	-	-	-	-
- 지속가능한 친환경 캠퍼스 조성	734 (1식x734백만원)	-	-	-	-
■ 성과사업비	21,559	18,940	18,940	-	-
-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	1,800 (1식x1,8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1,000 (1식x1,000백만원)	-	-
- 신임 교원 연구지원	2,600 (1식x2,600백만원)	2,750 (1식x2,750백만원)	2,050 (1식x2,050백만원)	△700	△25.5
- 글로벌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5,459 (1식x5,459백만원)	4,010 (1식x4,010백만원)	4,710 (1식x4,710백만원)	700	17.5
-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3,800 (1식x3,800백만원)	3,800 (1식x3,800백만원)	3,800 (1식x3,800백만원)	-	-
- 미래 기초학문 분야 기반조성	2,300 (1식x2,300백만원)	2,050 (1식x2,050백만원)	2,050 (1식x2,050백만원)	-	-
- SNU Young Star Program	3,100 (1식x3,100백만원)	3,100 (1식x3,100백만원)	3,100 (1식x3,100백만원)	-	-
- 규장각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계승	2,500 (1식x2,500백만원)	2,230 (1식x2,230백만원)	2,230 (1식x2,230백만원)	-	-
■ 부설학교 운영	28,170	26,762	27,300	538	2.0
- 교직원 인건비	14,983 (1식x14,983백만원)	15,373 (1식x15,373백만원)	15,650 (1식x15,650백만원)	277	1.8
- 운영비	2,223 (1식x2,223백만원)	2,289 (1식x2,289백만원)	2,357 (1식x2,357백만원)	68	3.0
- 사업비	2,786 (1식x2,786백만원)	2,786 (1식x2,786백만원)	2,979 (1식x2,979백만원)	193	6.9
- 부설학교 시설사업비	8,178 (1식x8,178백만원)	6,314 (1식x6,314백만원)	6,314 (1식x6,314백만원)	-	-
□ **비목**(합계)	**452,688**	**437,148**	**457,620**	20,472	**4.7**
○기관운영출연금(350-01)	452,688	437,148	457,620	20,472	4.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ㅇ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는 선한 인재 양성
- ㅇ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 ㅇ 공교육 정상화, 지식나눔 등 사회 공헌 강화를 통한 대학의 사회 책무성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55,18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55,188 백만원			-
'18	437,14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37,148 백만원	437,14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37,148 백만원	0
'19	423,600	■ 서울대학교 출연금: 423,600 백만원	457,620	■ 서울대학교 출연금: 457,620 백만원	34,020
'20	500,000	■ 서울대학교 출연금: 500,000 백만원	437,14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37,148 백만원	△62,852
'21	500,000	■ 서울대학교 출연금: 500,000 백만원	437,14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37,148 백만원	△62,852
'22	-		437,148	■ 서울대학교 출연금: 437,148 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2.4%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437,148	457,620	20,472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7,837	8,258	42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7.9	18.1	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8,25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2,760억원 ÷ 0.4812억원 = 5,736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1,816억원 ÷ 0.72억원 = 2,522명 **□ 2018년 고용효과: ① + ② = 7,837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2,563억원 ÷ 0.4812억원 = 5,326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1,808억원 ÷ 0.72억원 = 2,51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등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010. 12.「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11. 9.「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11.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 2013.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서울대 부설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변경
- 2014. 1. 서울대 부설학교 법인화(서울대 법인에 귀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083	-	4,373	4,552	-	4,526		4,3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373 (4,373)	(341)	( )	4,373 (4,714)	4,373 (4,381)	(309)	(23)
'16년	4,552 (4,552)	(332)	( )	4,552 (4,884)	4,552 (4,666)	(187)	(30)
'17년	4,526 (4,526)	(217)	( )	4,526 (4,744)	4,526 (4,549)	(180)	(14)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52,688		440,148	△3,000	437,148	440,148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사업비 △3,000백만원

※ 실험실습실안전환경기반조성 △31백만원, 신임교원연구정착지원 △920백만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조성운영 △400백만원, 아시아연구소연구지원 △200백만원, 글로벌창의선도연구자지원 △1,449백만원

○ 집행현황

■ 서울대학교(부설학교 포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95,840백만원 ('18.7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부당겸직 교원에 대한 제재이행 여부와 교원겸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 그동안 교원겸직에 대한 지적이 있어 겸직 교원의 대외활동은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주당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겸직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되도록 함

또한, 교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겸직허가 없이 부당 겸직한 사례 발견 시, 5년간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제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함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서울대 논문당 피인용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9.8	10.1	10.3	실적 상승률 0.2% 유지	기준연도 직전 최근 5년간 발간된 논문이 피인용된 횟수/기준연도 직전 최근 5년간 발간된 논문 수	해당연도 12.31.기준, SciVal(Scopus기반 성과분석프로그램)의 Citations per Publication
	실적	신규	신규	9.9	-				
	달성도	-	-	101					
② 서울대 대학운영성과 '교육영역 평가 결과(등급)	목표	우수	우수	우수	삭제	삭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 평가영역 중 교육영역의 목표달성도 -획득점수를 100점 환산하여 매우우수(90~100), 우수(80~89), 보통(70~79), 미흡(60~69), 매우미흡(59이하)으로 구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교육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실적	우수	우수	우수	삭제	삭제			
	달성도	100	100	100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참고 1 서울대학교 2016~2019년도 대학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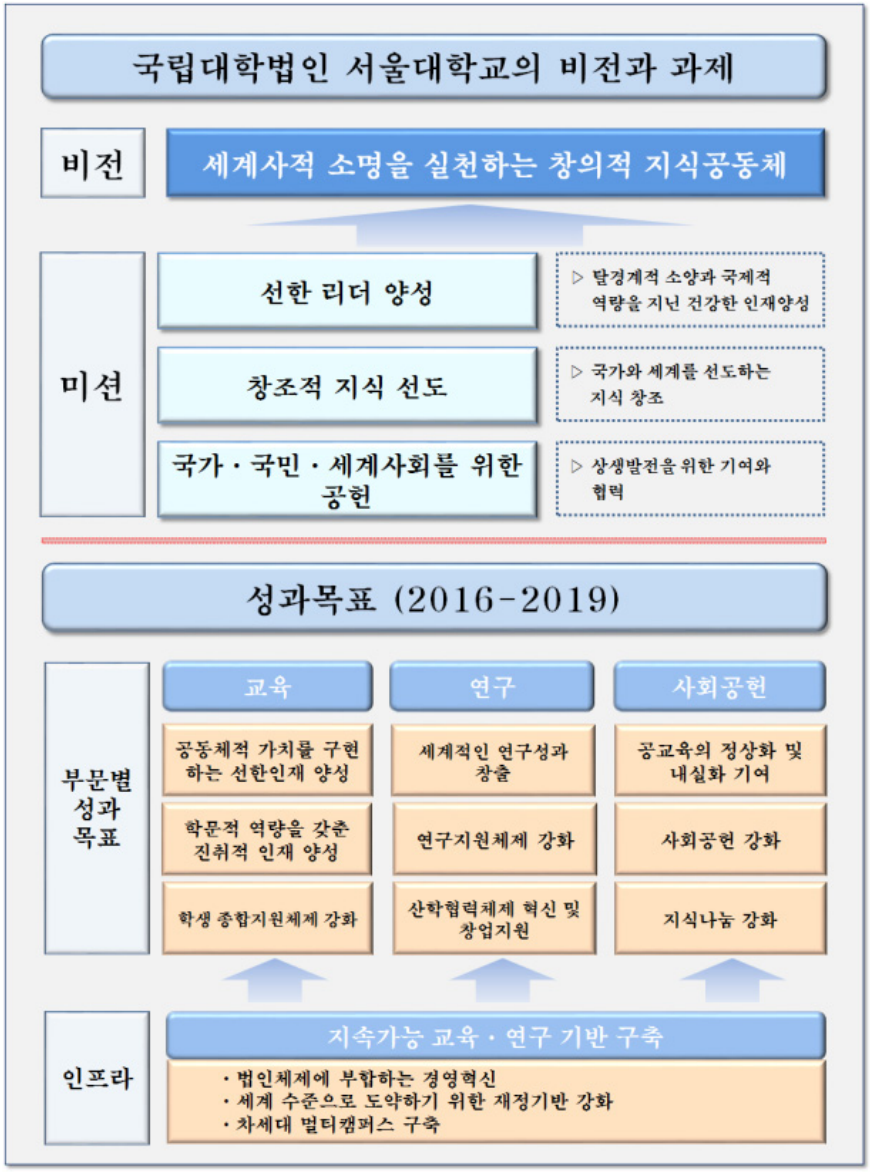

참고 2 서울대학교의 국가발전 기여 성과

서울대학교의 국가발전 기여 성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Ⅰ 그간의 성과

□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교육·연구의 발전을 선도하여 한국 및 세계 사회에 기여해왔음**

○ 서울대학교는 1946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음**

□ 부존자원이 빈약한 한국의 **성공요인 중 하나가 인재의 양성**이었으며,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사회 각 분야로 배출**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해왔음

○ 한국의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상응하는 다양한 학과들을 증설·운영**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왔음

○ 서울대학교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 진출하여 발전을 이끌었음

□ 서울대학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화 현장에서 함께 하며 **조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였음

○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4.19. 민주혁명을 주도**하여 독재 종식에 기여하였음

○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9년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 반대 시위** 등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파동의 중심에 서울대학교가 있었음

○ **1987년** 서울대학교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화 운동**과 직선제 개헌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서울대학교는 **학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과 글로벌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왔음

○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서울대학교에 포진**하여 학문분야별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연구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음

Ⅱ 서울대학교의 의의 및 국가에의 기여

1. 세계적인 대학과 겨를 수 있는 한국의 대표 대학

□ 서울대학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을 선두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

□ 서울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세계 30위권 대학**으로서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국가 위상 제고(**'18 QS 세계대학 평가 36위**)

○ 서울대의 세계대학 순위 상승은 국내 타 대학의 브랜드가치를 동반 상승시켜 **국내 타 대학의 세계 순위 및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견인**

<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 세계대학평가 순위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순위	37위	35위	31위	36위	35위	36위	36위

○ **2018년 QS 세계대학평가** 학문분야별 학과 순위를 살펴보면, **9개 학과가 세계 20위 이내, 29개 학과가 세계 50위 이내**에 포진하여 여러 학문분야가 우수

< 2018년 QS 학문분야별 50위 이내 학과 순위 >

분야 / 순위	인문·예술	공학·기술	생명과학·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경영	계
1~10위					체육학(10위)	1
11~20위	현대언어학(18위)	화학공학(16위) 기계·항공·산업공학(18위) 전기·전자공학(19위)	약학(20위)	재료과학(19위) 화학(19위)	사회정책·행정학(18위)	8
21~30위	언어학(30위)	토목·구조공학(24위)	치의학(26위)		정치·국제학(29위)	4
31~40위	건축학·건축환경(35위) 미술·디자인(40위)	컴퓨터공학·정보시스템(40위)	농·임학(34위)	환경과학(31위) 물리·천문학(31위)	언론정보학(32위) 사회학(32위) 경영학(36위) 법학(39위)	10
41~50위	철학(48위) 역사학(50위)		의학(42위)		재무·회계학(44위) 경제·계량경제학(46위) 문헌정보학(47위)	6
학과 수	**6**	**5**	**4**	**4**	**10**	**29**

○ 서울대학교의 재정 규모는 UC버클리의 54.2%, 동경대학교의 60% 수준이나(2016년 기준), **재정 규모에 비해 높은 세계대학 순위를 기록**

※ '18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서울대 36위, UC버클리 27위, 동경대 23위

2. 한국의 지식 창조를 주도하는 중추적인 학술연구기관

□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창조**하여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 서울대학교는 2006~2016년 11년 간 전체 **논문 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관**(65,400건, 세계 32위)

○ 또한 2006~2016년 11년 간 **피인용 상위 1% 및 0.1% 논문 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기관**

- 한국의 피인용 상위 논문 중 서울대학교의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

구분	피인용 상위 1%	피인용 상위 0.1%	피인용 상위 0.01%
국내 전체 해당 논문 수(A)	3,975	476	69
서울대학교 논문 수 (B)	797	120	19
비율 (B/A)	20.1%	25.2%	27.5%

※ 출처: 한국연구재단, 「2006-2016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18.4.)

□ **법인화 이후**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및 SCI급 논문 수가 증가하여 **연구의 질과 양 모두 획기적으로 향상**

<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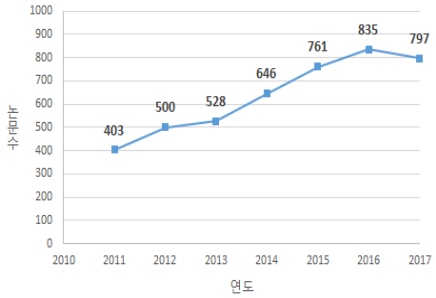

< SCI급 논문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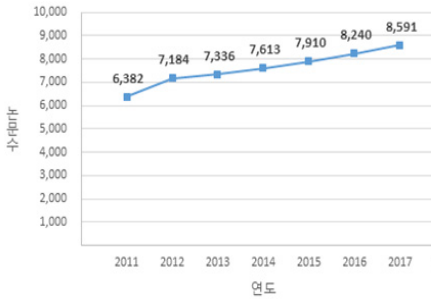

3. 세상을 바꾸는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 서울대학교는 **35만 명(1947-2017)의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

※ 산업 및 경제 발전에의 기여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 CEO(출신학교 기재자) 중 서울대 출신이 19.4%, CEO를 포함한 등기임원 전체 중 서울대 출신이 19.9% (코스닥협회, '18.5.)
-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2011~2015년 기술력을 인증한 벤처기업 CEO 출신 대학 분석 결과, 서울대가 두 번째로 많은 CEO 배출 (한국경제신문, '16. 10. 26.)
- 한국의 반도체 산업 신화의 핵심에 서울대 동문들이 있었으며, 세계 최초 16M DRAM, 세계 최초 64M DRAM, 세계 최초 256M DRAM 모두 서울대 출신이 개발의 주역을 담당

□ 국립대학으로서 **공교육 발전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조성에 기여

○ **고교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운영

- **학생부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공교육에 기반한 우수 인재 선발

※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79.6%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

- 대학 입시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원내 전형을 **3개 전형으로 단순화**(논술, 특기자전형 폐지)

- 고교 간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역균형 모집인원: '16학년도 681명(21.7%) → '17학년도 736명(23.4%) → '18학년도 757명(23.8%)

○ 법인화 이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확대**

※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학부 ('12) 49.8% → ('17) 56.1%, 대학원 ('12) 67.6% → ('17) 74.1%

※ 선한인재장학금 신설('1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 1분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 및 매달 생활비 30만원씩 연간 30억원 지원

○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등록금**) 법인화 이후 지속적·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동결**

※ 등록금 변화: ('11)동결→('13)0.25%↓→('15)0.3%↓→('17)0.36%↓→('18)동결

- (**입학전형료**)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전형료 총액의 **15.5% 인하**
- (**입학금**) 법인화 이후 입학금을 지속 동결하였으며, **2018학년도부터 학부 입학금 폐지**

4. 4차 산업혁명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혁신성장의 메카

□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선점**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식의 독자적 산출 체계 구축이 절실**

○ 대학은 지식융합 문화를 보유하면서 **지식창조 및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는 주체**로 더욱 부상할 것으로 예상

□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력, 지식·기술,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대학으로서 다양한 분야 간 **융복합 교육·연구가 용이**

○ 서울대학교는 **각 학문분야를 선도하는 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학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독창적 연구 성과 창출에 유리**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노력**

○ **빅데이터연구원 설립**('14) 및 **데이터사이언스혁신대학원** 설립 추진('19 예정)

-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미래 기술 연구 및 인프라 확보**
- 다학제적 지식과 창의적 감성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데이터사이언스 혁신 인재 육성**

○ 국가 전략사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융복합 R&D 시대를 열기 위하여 **시흥캠퍼스 조성**

- 미래기술 스마트 캠퍼스로서 **자율주행미래모빌리티센터 설립 및 무인이동체 연구단지 조성** 예정

※ 주요 추진 경과

-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컨소시엄 조성 협약**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 텔레콤 등과 체결('17.12.)
  - 자동차·반도체·통신 분야의 핵심기업이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
- 무인이동체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무인이동체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한국드론기업연합회 등과 체결('18.6.)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의 실증도시로 **시흥시 선정**('18.7.)

Ⅲ 재정 지원 필요성

□ 2016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출연금**(4,209억원)은 **해외대학**(4개 평균) 9,573억원 **대비 43.9%** 수준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적 투자 필요

○ **재정의 투입규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며, 해외 유수 대학과 재정규모 격차가 커지면 경쟁력도 하락

< 세계대학 대비 비교 자료 (억원) >

구분	서울대	UC 버클리	싱가포르 국립대	동경대	교토대
재정총계	14,296	26,353	22,071	23,849	18,921
정부출연금 (비율)	4,209 (29.4%)	10,176 (38.6%)	10,770 (48.8%)	9,423 (39.5%)	6,517 (34.4%)
QS 순위(2018)	36위	27위	11위	23위	35위
학생 수(2016)	28,630명	37,055명	34,715명	26,614명	22,862명
학생 1인당 교육비(2016)	43백만	84백만	62백만	87백만	73백만

※ 재정 총계(법인회계+산단회계+발전기금), 정부출연금: 2016년 결산 기준
※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알리미(2016) 고시 기준
※ 해외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의 총지출액(인건비+운영비) / 학생 수

□ 서울대학교를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에 걸맞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 및 국가 브랜드를 제고할 필요

○ 서울대학교는 국가 발전을 견인하도록 전략적으로 육성되었으며, **한국의 지적 역량과 자원이 집결된 국립대학**

- 탁월함과 나눔을 지향하며 인재 육성과 우수한 연구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

○ 서울대학교는 세계적인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지적 파워를 보유**

참고 3 서울대학교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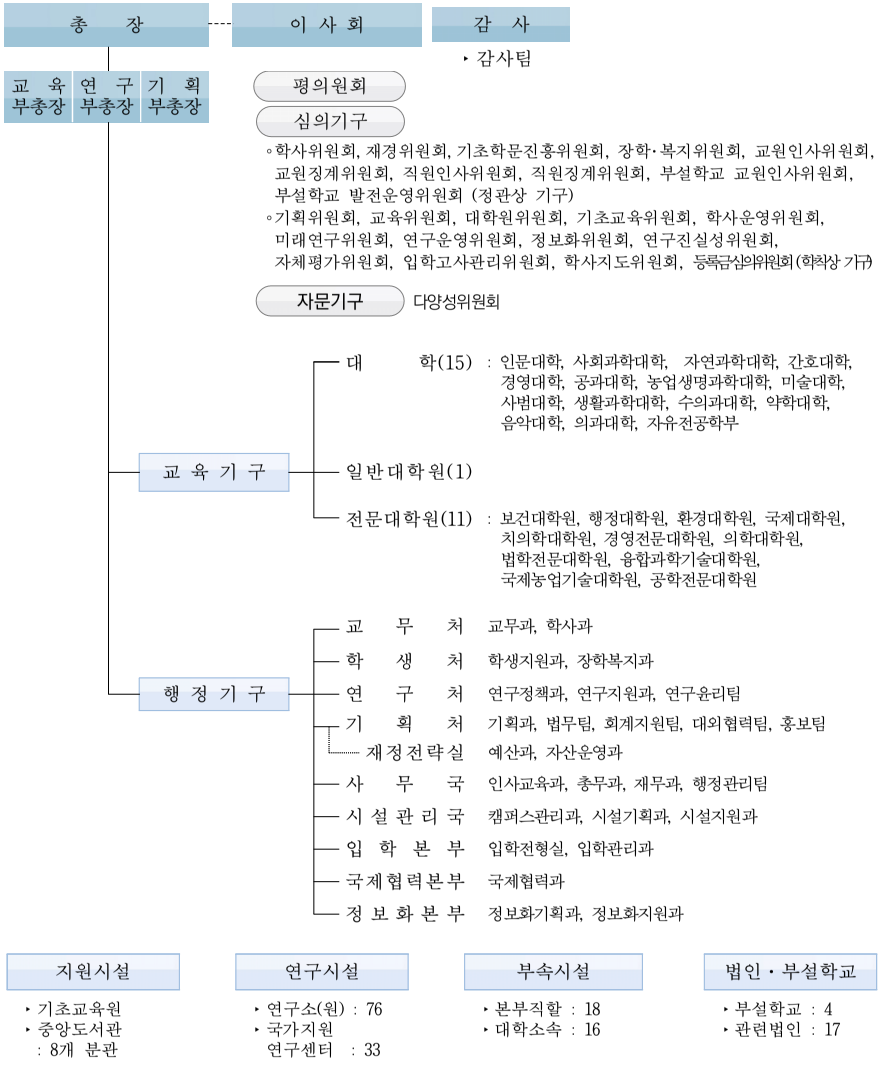

2 인 원

가. 교원

(단위 : 명, 2017. 12. 1. 기준)

구 분	전임교원		기금교원		HK교원		BK교수		초빙교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현 원	1,776	326	82	17	22	11	36	19	12	-	1,928	373
	2,102		99		33		55		12		2,301	
(외국인)	(110)		-		-		(9)		(6)		(125)	

※ 조교 292명(남 105, 여 187)

나. 직원

(단위 : 명, 2017. 12. 1. 기준)

구 분	행정		사서		전산		공업 시설		농림 식품		보건 환경		학예 입학전형		시설 운영		연구 설비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현 원	195	381	23	57	29	18	130	6	50	2	15	19	7	6	75	11	2	0	526	500
	576		80		47		136		52		34		13		86		2		1,026	

다. 학생

(단위 : 명, 2017. 12. 1. 기준)

구 분	학 사		석 사		박 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현 원	12,971	7,237	4,628	3,971	2,659	1,881	20,258	13,089
	20,208		8,599		4,540		33,347	

※ 학생수(33,347명)는 외국인 학생(1,350명)이 포함된 숫자임

3 시 설

가. 토지

(단위 : 천㎡, 2017. 12. 1. 기준)

교 지 체육장	실 습 장 부속농장	학술림 등	기 타	계
4,409	3,481	104 (양여 보류 : 186,712)	12	8,006

나. 건물

(단위 : ㎡, 2017 12. 1. 기준)

교사시설		연구 시설	부속시설			기타 시설	계
교육 기본시설	지원 시설		특수 시설	기숙 시설	계열별 부속시설		
638,173	152,636	429,878	22,981	70,538	132,688	152,826	1,599,720

다. 학생생활관

(단위 : 명, 2017. 12. 1. 기준)

구 분	관 악		연건		평창	계		
	학부	대학원	학부	대학원	대학원	학부	대학원	총계
수용인원	2,466	2,544	564	189	133	3,030	2,866	5,896

※ 학사과정 학생 수용률 : 19.2%(3,030/15,801, 수용인원/재학생수)
※ 대학원생 수용률 : 24.6%(2,866/11,640, 수용인원/재학생수)

4 장 서

(2017. 12. 1. 기준)

장 서	비도서 자료	학술지	전자자료	열 람 석
5,257,870책	229,834점	4,360종	159,904종	9,604석

※ 장서에 e-Book 694,246책 포함

[300]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증 감 (B-A)	%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10,200	86,200	88,000	**1,800**	**2.1**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1 - 1400 - 1412 - 300
* 담 당 자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과장(최수진), 담당자(조홍선)
  인천대학교 대외전략과장(고덕봉), 담당자(한상훈)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육, 연구,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 세계일류대학과 경쟁하는 아시아 선두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학생 : 13,500명(학부 12,053명, 대학원 1,447명) • 교직원 : 1,482명(전임교원 470명, 비전임 142, 조교 96명, 교육조교 93, 직원 247명, 계약직 9명, 시간강사 425명) • 부지 : 721,081m^2 • 건물 : 321,255m^2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인천대학교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53,680백만원**

▪ 기존 교직원 인건비 및 법적 기관부담금 등 지급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53,680백만원(인건비, 1대학×53,680백만원)

○ **운영비 : 14,486백만원**

▪ 교육·연구 및 기관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시간강사료, 건축물·장비 보수유지관리, 시설용역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4,486백만원(관리운영비 등, 1대학×14,486백만원)

○ **사업비 : 9,634백만원**

▪ **(기숙사 BTL 임차료 지원)**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신축한 BTL방식의 기숙사 정부지급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2,010백만원(BTL 임차료, 75%×2,679백만원)

▪ **(글로벌 아시아·창업IT 도서관 신축)** 타 국립대 대비 현저히 부족한 도서관 수용률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축 2차년도 사업비

※ 전국 23개 국립대학 도서관 대비 학생 1인당 면적(23위) 및 1인당 열람석 수(22위)

▪ 산출내역 : 2,000백만원(시설비, 1식×2,000백만원)

▪ **(글로벌 우수 연구교원(G.R.T.) 유치)** 성과중심 인재유치 메커니즘인 글로벌 기준의 새로운 교수제도(Global Research Track) 전면 도입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 기반조성 사업비

▪ 산출내역 : 3,104백만원(인재유치·연구비 등 2학기×1,552백만원)

▪ **(혁신적 산학협력(Matrix형) 교육제도 구축)**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교육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2,520백만원(과정개설·교육과정 개발 등, 2학기×1,260백만원)

○ 성과사업비 : 10,200백만원

▪ 취약한 취업, 연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0,200백만원(취업역량강화 등 3개분야×3,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 예산
□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86,200	88,000
▪인건비	(68,166백만원) 교직원 인건비	(53,680백만원)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	(14,486백만원) 관리운영비, 제세공과금, 시간강사료 등
▪사업비	(3,834백만원) BTL 임차료, 도서관 신축	(9,634백만원) BTL 임차료, 도서관 신축, G.R.T유치, 매트릭스형 교육제도 구축
▪성과사업비	(10,200백만원) 취업, 연구, 교육역량강화 등 3개 분야	(10,200백만원) 취업, 연구, 교육역량강화 등 3개 분야
▪차입금 상환지원	(4,000백만원) 시설비 차입금 원금상환 지원	-

□ 지원 필요성

○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거점 국립대학과의 **Resource Gap을 극복**하고 **기존 국립대학과 차별화된 대학운영체계 혁신 및 글로벌 특성화사업을 추진**, 추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국가지원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립대학, 미래대학, 세계대학에 걸맞는 혁신적 대학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필요

○ 인천대학교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우수 교직원(교원, 직원, 조교, 계약직 등)확보 및 1,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창출 공교육기관으로서 상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0,200**	**86,200**	**88,000**	**1,800**	**2.1**
▪ 인건비		68,166 (1대학x68,166백만)	53,680 (1대학x53,680백만)	**△14,486**	**△21.3**
▪ 운영비			14,486 (1대학x14,486백만)	**14,486**	**순증**
▪ 사업비		3,834 (2개×1,917백만)	9,634 (4개×2,408.5백만)	**5,800**	**151.3**
▪ 성과사업비	10,200 (3분야×3,400백만)	10,200 (3분야×3,400백만)	10,200 (3분야×3,400백만)	-	-
▪ 차입금 상환지원		4,000 (1대학x4,000백만)	0	**△4,000**	**△100**
□ 비목(합계)	**10,200**	**86,200**	88,000	**1,800**	**2.1**
○사업출연금(350-02)	10,200	86,200	88,000	1,800	2.1

* '18년도 예산부터 "인천대 성과관리사업비"는 "인천대 출연지원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취약 분야인 취업, 연구, 교육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대학운영 성과목표 달성

○ 실질적인 법인화 원년을 맞아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산학연계 연구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발전 선도모델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0백만원			-
'18	86,2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6,200백만원	86,2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6,200백만원	-
'19	80,0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0,200백만원	88,0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8,000백만원	8,000
'20	95,0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95,000백만원	80,2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0,200백만원	△14,800
'21	95,0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95,000백만원	80,2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0,200백만원	△14,800
'22			80,200	▪ 인천대학교 출연금 : 80,200백만원	80,200
연평균 증가율 (%)	순증		△1.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6,200	88,000	1,8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667	1,592	△75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9.0	18.0	△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592.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536.8억원 ÷ 0.4812억원=1,115.5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외 지출항목 343.2억 ÷ 0.72억원=476.7명 **□ 2018년 고용효과: ① + ② = 1,667.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681.66억원 ÷ 0.4812억원=1,416.6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외 지출항목 180.34억 ÷ 0.72억원=250.5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8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6. 4. 3 :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MOU 체결 (법인화 6년차부터 대학운영비 지원)
- '08. 11 : 인천대 교수회, 법인화 추진 결정
- '09. 6. 2 : 조전혁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 2012. 1.17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2012. 9. 4 : 인천시의 인천대학교 대학운영비 지원계획 확정
  ※ 2013~2017, 5년간 연평균 운영비 600억원(현금 300억, 장기차입금 300억)
- 2012. 9.17 : 인천대 운영비 지원 기준 합의(교육부-인천시)
- 2013. 1.18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40	40	102	102	102	102	102	862

* '18년도 예산부터 성과관리 사업비는 인천대 출연지원사업으로 포함하여 편성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2 (102)	( )	( )	102 (102)	102 (102)	( )	0 ( )
'16년	102 (102)	( )	( )	102 (102)	102 (102)	( )	0 ( )
'17년	102 (102)	( )	( )	102 (102)	102 (102)	( )	0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8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4,200	2,000	86,200	40,757	47.3%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사업비 2,000백만원 증 (인프라 구축)

○ 집행현황

▪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 : 47.3% ('18.8월 기준)

▪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회기는 3.1~익년 2.28까지로 정상 집행중임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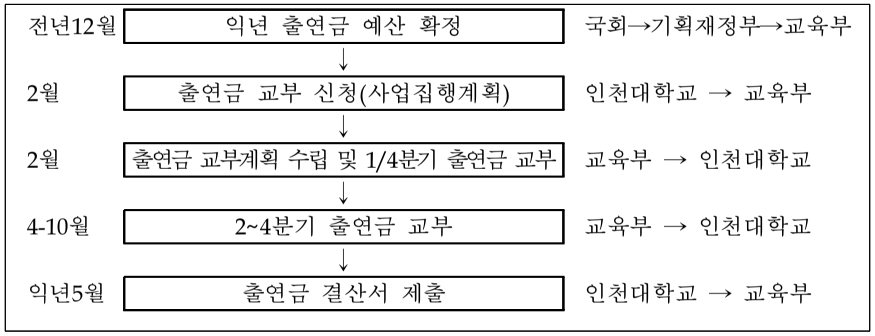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졸업생 취업률 (%)	목표	-	56.4	57.5	68	68.1	대내외적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전년 목표대비 0.1% 상승한 목표치설정	취업자(건강보험DB 연계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취업자)/〔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 대상자)〕×100(%)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
	실적	-	57.6	67.7					
	달성도	-	102	118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게재 건수(건)	목표	-	-	0.49	0.53	0.54	최근 연평균 상승률 5%를 목표로 '19년 목표는 0.54로 설정	전임교원 1인당 SCI 논문게재 건수 = 국제전문학술지(SCI급/Scopus) 게재논문 환산 편수/전임교원 수	대학정보공시
	실적	-	-	0.50					
	달성도	-	-	102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01] 국립대병원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A) (2018 추경)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립대병원 지원	53,254	56,028 (64,028)	63,147	**△881**	**△1.4**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743 - 301

* 담 당 자 : 고등교육정책관(김규태), 국립대학정책과장(최수진), 사무관(정기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연구 및 국가의료기술을 선도하는 국립대학병원 기본 시설·설비 지원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국비(출연) 25% 수준 지원 : 국립대학병원 시설비, 장비구입비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산하 14개 국립대학병원(10개 종합병원, 4개 치과병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강원대병원 신규 의료장비 보강(신규)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 국고 3,000백만원, 자체 9,000백만원
- 사업규모 : 혈관조영촬영장비 외 38종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노후장비를 대체하는 신규 의료장비와 치료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진료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2,000	3,000	9,000	
'19년	의료장비 보강	4,000	1,000	3,000	
'20년	의료장비 보강	4,000	1,000	3,000	
'21년	의료장비 보강	4,000	1,000	3,000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no.	장비명	단가	수량	금액	도입유형
1	혈관조영촬영장비	1,500,000	1	1,500,000	노후교체
2	자율신경검사기	25,000	1	25,000	최신도입
3	적외선 체열진단기	50,000	1	50,000	최신도입
4	경식도심초음파	350,000	1	350,000	추가소요
5	다안현미경	17,860	1	17,860	노후교체
6	카세트 프린터	57,000	1	57,000	최신도입
7	조직자동처리기	67,000	1	67,000	노후교체
8	이미지 스캐너	95,000	1	95,000	최신도입
9	체외충격파쇄석기	650,000	1	650,000	노후교체
10	방광경영상시스템장비	90,000	1	90,000	노후교체
11	요역동학검사장비	80,000	1	80,000	노후교체
12	전기소작기(ERBE)	70,000	1	70,000	노후교체
13	전기쇄석기(EHL)	40,000	1	40,000	최신도입
14	대장내시경	60,000	1	60,000	노후교체
15	위내시경	50,000	1	50,000	노후교체
16	마노메트리	80,000	1	80,000	최신도입

no.	장비명	단가	수량	금액	도입유형
17	이동식 환자감시장치	19,770	2	39,540	노후교체
18	인공호흡기	34,000	2	68,000	노후교체
19	환자체온유지기	35,000	1	35,000	추가소요
20	뇌혈류 초음파기	100,000	1	100,000	노후교체
21	자율신경계시스템	193,000	1	193,000	최신도입
22	두개 네비게이션 시스템	330,000	1	330,000	최신도입
23	심장초음파 진단기기	310,000	1	310,000	노후교체
24	이동형일반촬영기	220,000	1	220,000	노후교체
25	초음파진단기	270,000	1	270,000	노후교체
26	유방촬영기	790,000	1	790,000	추가소요
27	투시촬영기	600,000	1	600,000	노후교체
28	내시경 본체세트	200,000	1	200,000	최신도입
29	비디오 후두경	39,600	1	39,600	추가소요
30	인공호흡기	45,000	4	180,000	노후교체
31	환자감시장치	20,000	9	180,000	노후교체
32	수술현미경	300,000	1	300,000	추가소요
33	스트로보스코프	140,000	1	140,000	최신도입
34	경두개자장자극기	130,000	1	130,000	최신도입
35	관절경세트	150,000	1	150,000	노후교체
36	로봇수술장비	3,000,000	1	3,000,000	최신도입
37	고강도집속형 초음파수술기	45,000	1	45,000	최신도입
38	엑시머레이저	198,000	1	198,000	최신도입
39	SPECT-CT	1,200,000	1	1,200,000	추가소요
	총 계			**12,000,000**	

②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0년 ~ 2020년
- 총사업비 : 208,548백만원
  - 국고 70,344백만원, 자체 138,204백만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92,144㎡ (700병상 종합의료시설)
- 지원조건 : 출연 35%, 자체 65%
- 사업내용 :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208,548	70,344	138,204	
~'16년	설계, 공사, 감리비 등	51,762	43,154	8,608	
'17년	공사, 감리비 등	22,282	8,800	13,482	
'18년	공사, 감리비 등	65,895	9,195	56,700	
'19년	공사, 감리비 등	52,602	6,437	46,165	
'20년	공사, 감리비 등	16,007	2,758	13,249	

※ '19년 6월 완공 예정에서 '20년 6월 완공으로 연장,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 필요

③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의료장비 도입(계속)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0년까지 연장 신청 예정)
- 총사업비 : 46,490백만원
  - 국고 11,623백만원, 자체 34,867백만원
- 사업규모 : 700병상 종합의료시설 의료기기 및 전산시스템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임상실습동 건립공사가 2019년 준공예정으로, 700병상 종합의료시설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도입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46,490	11,623	34,867	
'18년	의료기기 및 전산시스템	13,947	3,480	10,467	
'19년	의료기기 및 전산시스템	19,526	4,886	14,640	
'20년	의료기기 및 전산시스템	13,017	3,257	9,760	

④ 서울대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총사업비 : 19,000백만원(출연금:4,750백만원,자체:14,25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6,410㎡ (본관 지상 2층- 신설 8실, 리모델링 27실)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수술장 확충을 통하여 수술적체를 해소하고, 1970년대 건립되어 노후화된 본관 수술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며 체계적인 수술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19년 사업비 1,901백만원 요구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 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9,000**	**4,750**	**14,250**	
'16년	수술실 8실 신설	4,750	950	3,800	
'17년	수술실 9실 리모델링	4,750	1,266	3,484	
'18년	수술실 9실 리모델링	2,375	633	1,742	
'19년	수술실 9실 리모델링	7,125	1,901	5,224	

⑤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사업기간 1년연장, '18.6월 총사업비조정)
- 총사업비 : 42,535백만원(국고: 106억원, 자체: 319억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8,836㎡(지하3층~지상10층)
- 지원조건 : 출연금 25%, 자체 75%
- 사업내용 : 기존 간호기숙사 건물('68년 준공)을 진료지원시설로 재건축하여, 최근 의료법 개정 등 정부정책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과 '권역별응급의료센터' 기준 충족을 통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진료지원동을 건립하고자 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 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42,535**	**10,634**	**31,901**	
'17년	설계비, 철거비, 공사비	6,337	1,463	4,874	
'18년	공사비, 감리비	7,695	2,032	5,663	
'19년	공사비, 감리비	13,726	3,438	10,288	
'20년	공사비, 감리비	14,777	3,701	11,076	

⑥ 서울대병원 본관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신규)

- 사업기간 : 2019년
- 총사업비 : 17,416백만원
  - 출연금 4,354백만원 요구, 자체 13,062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8,707.5㎡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지하외래센터 완공 후, 본관 등의 주요 외래 및 검사기능이 지하로 이전함에 따라 본관 내 조정될 공간의 시설개선 및 환자 편의시설을 확충/보강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 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7,416**	**4,354**	**13,062**	
'19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5,224	**1,306**	3,918	
'20년	공사비	12,192	3,048	9,144	

⑦ 분당 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신규)

- 사업기간 : 2019년~2022년
- 총사업비 : 47,960백만원
  - 출연금 11,990백만원, 자체 35,97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2,664㎡ (지상1층~12층)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부족한 연구실 및 진료지원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연구 및 공공의료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인력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47,960**	**11,990**	**35,970**	
'19년	**설계비**	**1,482**	**370**	**1,112**	
'20년	공사비, 감리비	18,600	4,650	13,950	
'21년	공사비, 감리비	23,200	5,800	17,400	
'22년	공사비, 감리비	4,678	1,170	3,508	

⑧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융복합 치의료센터 건립 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14,879.3백만원
  - 국고 11,159.5백만원, 자체 3,719.8백만원

※ 총사업비 변경 : ('17)14,911.3백만원→('17)14,879.3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5,328.28㎡ (지상 8층)
- 지원조건 : 출연 75%, 자체 25%
- 사업내용 : 임상실습 교육공간 확충을 통한 글로벌 치의료 인재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융복합 치의료기술 연구 활성화 및 관련 산업체와 연계하여 연구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전국단위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 확립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4,879.3**	**11,159.5**	**3,719.8**	
'17년	설계·설계VE·교통영향평가, 안전진단	788.0	591.0	197.0	
'18년	건축·설비.전기공사, 감리	6,085.4	3,922.0	2,163.4	
'19년	건축·설비.전기공사.장비도입	8,005.9	6,646.5	1,359.4	

⑨ 전남대병원 첨단의료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계속)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
- 총사업비 : 400억원(국고 100억원, 자체 300억원)
- 사업규모
  - 전산화단층촬영기(CT) 1대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1대
  - 투시조영장치 1대 - 양성자치료기 1대(Proton Therapy System) 1대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본·분원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첨단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환자만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수련의 및 지역 의료인들에게 최신 지견을 습득케 함으로써 미래 의료산업의 중추적 인재로 양성코자 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40,000	10,000	30,000	
'18년	CT, MRI, 투시조영장치 각 1대	7,000	1,750	5,250	
'19년	**양성자치료기 도입 계약**	**7,800**	**1,950**	**5,850**	
'20년	양성자치료기 설치 완료	10,800	2,700	8,100	

⑩ 전북대학교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고 7,500백만원, 자체 22,500백만원)
- 사업규모 : 영상유도방사선치료기(LINAC) 등 39종 116점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통한 전문진료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의료 욕구 충족 등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병원의 역할 제고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30,000	7,500	22,500	
‘17년	의료장비 도입	10,000	2,500	7,500	
‘18년	의료장비 도입	10,000	2,500	7,500	
‘19년	의료장비 도입	6,000	1,500	4,500	
‘20년	의료장비 도입	4,000	1,000	3,000	

⑪ 제주대병원 의료장비 확충사업(신규)

▪ 사업기간 : 2019년~2020년(2년)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자체 9,000백만원)

▪ 사업규모 : LINIAC외 19점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교육사업 및 연구, 진료사업 등 국립대학교병원의 고유 역할 및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교체, 신규 의료장비의 확충사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2,000	3,000	9,000	
‘19년	의료장비 확충사업	3,600	900	2,700	
‘20년	의료장비 확충사업	8,400	2,100	6,300	

⑫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 건립(계속)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총사업비 : 217,622백만원(국고 65,286백만원, 자체 152,336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73,845㎡(지하 3층, 지상 11층)

▪ 지원조건 : 출연 30%, 자체 70%

▪ 사업내용 : 세종분원 건립을 통한 세종시 조기정착 및 의료공백 해소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고
		합계	국고	자체부담	
	합 계	217,622	65,286	152,336	
‘15년	설계비, 토지비, 감리비, 공사비	8,719	5,000	3,719	
‘16년	공사비, 감리비	24,228	16,881	7,347	
‘17년	공사비, 감리비	39,357	11,807	27,550	
‘18년	공사비, 감리비	9,944	8,034	1,910	
‘19년	공사비, 감리비	62,837	18,851	43,986	
‘20년	공사비, 감리비	34,066	5,484	28,582	

⑬ 충남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7년~2019년

▪ 총사업비 : 18,747백만원(국고 4,687백만원, 자체 14,06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6,332㎡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75%

▪ 사업내용 : 1984년 병원건립 이래로 33년간 사용 중인 중앙수술실의 심각한 노후화와 이용포화로 수술실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증축을 통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첨단화된 수술환경을 구축하여 최상의 수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8,747	4,687	14,060	
‘17년	설계비,공사비	9,765	2,442	7,323	
‘18년	공사비, 감리비,시설부대비	6,540	1,123	5,417	
‘19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442	1,122	1,320	

⑭ 충남대학교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계속)

▪ 사업기간 : 2018년~2019년

▪ 총사업비 : 11,420백만원(국고 2,855백만원, 자체 8,565백만원)

▪ 사업규모 : 노후의료장비 9종 39점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노후장비교체를 통하여 내원객의 만족도 제고, 적시에 필요한 검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 효과 제고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1,420	2,855	8,565	
‘18년	노후의료 장비	6,460	1,610	4,830	
‘19년	노후의료 장비	4,960	1,245	3,735	

⑮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 의료장비 도입(신규)

- 사업기간 : 2019년~2020년
- 총사업비 : 82,424백만원(국고 20,606백만원, 자체 61,818백만원)
- 사업규모 : 신규의료장비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세종시는 종합병원 부족 지역으로 세종분원에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충족 및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료장비 도입이 시급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34,212	8,553	25,659	
‘19년	의료장비·전산장비	27,360	6,842	20,518	
‘20년	의료장비·전산장비	6,852	1,711	5,141	

⑯ 충북대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년)
- 총사업비 : 61,585백만원(국고 15,396백만원, 자체 46,189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35,780㎡(지하3층, 지상10층)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부족한 진료공간, 연구시설, 교육지원시설, 주차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진료·연구·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사업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61,585	15,396	46,189	
‘17년	설계비,	12,513	3,128	9,385	
‘18년	시설비,감리비	18,472	4,618	13,854	
‘19년	시설비,부대비	6,120	1,530	4,590	
‘20년	시설비,부대비	12,240	3,060	9,180	
‘21년	시설비,부대비	12,240	3,060	9,180	

⑰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건립사업(계속)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3년)
- 총사업비 : 12,431백만원(국고 3,108백만원, 자체 9,323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5,585㎡(지하1층, 지상7층)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국립대병원으로서 의과대학학생, 전공의, 간호직, 약학계 학생들의 임상실습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내 부족한 교육공간 마련 및 분산되어있어 교육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 해결하여 의료역량강화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2,431	3,108	9,323	
‘18년	설계비,시설비	3,992	998	2,994	
‘19년	시설비	1,688	**422**	1,266	
‘20년	시설비	6,751	1,688	5,063	

⑱ 부산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센터 건립(신규)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3년)
- 총사업비 : 8,800백만원(국고 6,600백만원, 자체 2,2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4,200㎡(지하1층, 지상5층)
- 지원조건 : 출연 75%, 자체 25%
- 사업내용 : 치과계 신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임상연구 및 IT 산업 등과 접목된 융복합 연구를 위한 센터, 지역 치과의

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임상교육 센터,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진료시설 확보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8,800	6,600	2,200	
'19년	설계비,시설비	800	600	200	
'20년	시설비	5,000	**3,750**	1,250	
'21년	시설비	3,000	2,250	750	

⑲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신규)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3년)
- 총사업비 : 27,089백만원(국고 6,772백만원, 자체 20,317백만원)
- 사업규모 : 연면적 19,504㎡(지하4층, 지상1층)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서울대병원의 의료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로 잇단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하여 원내외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진료지원시설을 이전 배치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27,089	6,772	20,317	
'19년	설계비,시설비	925	230	695	
'20년	시설비	13,082	3,271	9,811	
'21년	시설비	13,082	3,271	9,811	

⑳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병원정보시스템(신규)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
- 총사업비 : 14,000백만원(국고 3,500백만원, 자체 10,500백만원)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노후된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및 의생명융합연구, 3개 분원 및 지역병원과 진료협력 도모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합 계	14,000	3,500	10,500	
'19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	350	88	262.5	
'20년	1단계 : 사업발주 및 구축	4,550	1,137	3,412.5	
'21년	2단계 : 시스템 구축	4,550	1,137.5	3,412.5	
'22년	3단계 : 시스템 구축	4,550	1,137.5	3,412.5	

(21) 충북대병원 수술장 증축 및 리모델링(신규)

- 사업기간 : 2019년(1년)
- 총사업비 : 4,273백만원(국고 1,068백만원, 자체 3,205백만원)
- 지원조건 : 출연 25%, 자체 75%
- 사업내용 : 수술장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분야	예산(백만원)			비 고
		합계	국고	자체	
'19년	시설, 설계, 감리비 전액	4,273	1,068	3,205	

□ 사업총괄표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립대병원 지원	56,028	61,161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사업	9,195	6,437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의료장비 도입	3,480	5,700
서울대학교병원-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633	1,901
서울대학교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2,032	3,4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융복합치의료센터 건립 사업	3,922	6,646.5
전남대학교병원-첨단의료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1,750	1,950
전북대학교병원- 노후의료장비교체사업	2,500	1,500
충남대학교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610	1,245
충남대학교병원- 세종 분원 건립	8,034	18,851
충남대학교병원-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1,123	1,122
충북대학교병원- 교육인재관건립 사업	998	422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건립 사업	4,618	1,530
강원대학교병원- 신규의료장비 보강사업	(신규)	1,000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	(신규)	1,306
서울대학교병원(분당) -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신규)	370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장비 확충사업	(신규)	900
충남대학교병원-세종분원 의료장비 도입	(신규)	6,842
부산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 진료센터 건립	(신규)	600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신규)	230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88
충북대병원 수술실 증축	(신규)	1,068

□ 지원 필요성

○ 국립대학병원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정 사업 지원 및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함

○ **(우수 의료인력 양성 및 연구)** 대학병원은 **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의학기술 발전을 위한 임상 연구 등,「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 특히, 의료 연구를 통한 신의료 기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분야 연구의 수행으로 **대내외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브랜드 제고**

※ '17. 한국 임상시험 국가 순위는 세계 6위(NIH : 미국 국립보건원)

○ **(공공보건의료 기능)** 대학병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 보건의료, 아동·모성·장애인·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지원)**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 및 기여

* **<국정과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비율은 35.6%('18. 1.) → 98.2% ('18. 7.)에 달하며 이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는 병원 자체 부담**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감 (B-A)	%
국립대병원 지원	**53,254**	**56,028**	**64,028 (8,000)**	**63,147**	**7,119**	**12.7**
강원대병원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1,134 (1식x1,134백만원)	-		-	-	-
강원대병원응급환자중환자실설치사업	400 (1식x400백만원)	-		-	-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8,800 (1식x8,800백만원)	9,195 (1식x9,195백만원)		6,437 51,682백만×35%×35.5%	△2,758	△30.0
경북대치과병원 전산서버 및 전산장비 구입비 지원	480 (1식x480백만원)	-		-		
창원경상대병원 개원준비비	3,858 (1식x3,858백만원)	-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사업	4,880 (1식x4,880백만원)	6,523 (1식x6,523백만원)		-	△6,523	순감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1,266 (1식x1,266백만원)	633 (1식x633백만원)		1,901 (19,000백만×25%×40%)	1,268	200.3
서울대병원(분당)임상연구센터 건립	1,300 (1식x1,300백만원)	-		-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건립	1,463 (1식x1,463백만원)	2,032 (1식x2,032백만원)		3,438 (42,535백만×25%×32.3%)	1,406	69.2
서울대병원(분당)진료시설 개선	1,170 (1식x1,170백만원)	-		-		
서울대치과병원 융복합치의료센터건립	591 (1식x591백만원)	3,922 (14,879백만×64.45%×40.9%)		6,647 (14,879백만×83.02%×53.81%)	2,725	69.5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730 (1식x2,730백만원)	830 (1식x830백만원)		-	△830	순감
전남대병원(화순) 노후의료장비 교체	2,250 (1식x2,250백만원)	-		-		
전북대병원 노후의료장비교체	2,500 (1식x2,500백만원)	2,500 (10,000백만원×25%)		1,500 (10,000백만원×25%×60%)	△1,000	△40.0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		8,000 (국고55,592백만원 중 연차사업비 8,000백만원)	-		
제주대병원 외래진료동 신축	1,631 (1식x1,631백만원)	-		-		
충남대병원 세종 분원 건립사업	11,807 (1식x11,807백만원)	8,034 (217,523백만*30%*12.5%		18,851 (217,622백만×30%×28.8%)	10,817	134.6
충남대병원 본관지하교육진료공간창조	1,424 (1식x1,424백만원)	1,423 (1식x1,423백만원)		-	△1,423	순감
충남대병원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2,442 (1식x2,442백만원)	1,123 (18,747백만×25%×23.9%)		1,122 (18,747백만×25%×24%)	△1	△0.1
충북대병원 의생명 진료연구동 건립	3,128 (1식x3,128백만원)	4,618 (1식x4,618백만원)		1,530 (61,585백만원×25%×9.94%)	△3,088	△66.9

구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감 (B-A)	%
강원대병원 전산시스템 개선	-	325 (1식x325백만원)		-	△325	순감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의료장비 도입	-	3,480 (1식x3,480백만원)		5,700 (32,570백만원×25%×70%)	2220	63.8
경북대치과병원 개원준비비	-	3,119 (1식x3,119백만원)		-	△3,119	순감
부산대병원 첨단임상진료동 건립 및 지하진료시설 확충	-	200 (1식x200백만원)		-	△200	순감
서울대병원 분당 임상연구센터 장비 지원	-	2,713 (1식x2,713백만원)		-	△2,713	순감
전남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	1,750 (1식x1,750백만원)		1,950 (10,000백만원x19.5%)	200	11.4
제주대병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	1,000 (1식x1,000백만원)		-	△1,000	순감
충남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	1,610 (11,420백만*25%*56.5*%		1,245 (11,420백만×25%×43.6%)	△365	△22.7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건립	-	998 (1식x998백만원)		422 (12,431백만×25%×13.6%)	△576	△57.7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장비 확충사업	-	-		900 (12,000백만원×25%×30%)	900	순증
분당서울대병원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	-		370 (47,960×25%×3%	370	순증
강원대병원 의료장비 확충	-	-		1,000 (12,000백만원×25%×33.3%)	1,000	순증
서울대병원 본관 재배치 및 환경개선	-	-		1,306 (17,416백만×25%×30%)	1,306	순증
충남대병원-세종분원 의료장비 도입	-	-		6,842 (34,212백만원×25%×80%)	6,842	순증
부산대치과병원 치의학융복합 진료센터 건립	-	-		600 (800백만원×75%)	600	순증
서울대병원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	-		230 (925백만원×25%)	230	순증
전남대병원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		88 (350백만원×25%)	88	순증
·충북대병원 수술실 증축	-	-		1,068 (4,273백만원×25%)	1,068	순증
□목(합계)	**53,254**	**56,028**		**63,147**	**7,119**	**12.7**
민간경상보조(320-01)	3,858	3,119	-	-	△3,119	순감
기관운영출연금(350-01)	49,396	52,909	8,000	63,147	7,119	12.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연구 및 국가의료기술을 선도할 기반기술을 개발·적용할 시설기반 인프라와 첨단의료개발 사업 확대

○ 의료시설·장비가 열악한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중점 지원

○ 신 치료법 및 신기술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자재 도입·교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3,254	■ 11개 병원 19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3,254백만원 * 1식			
'18	56,028	■ 11개 병원 20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6,028백만원 * 1식	56,028	■ 11개 병원 19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6,028백만원 * 1식	-
'19	60,000	■ 6개 병원 6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60,000백만원 * 1식	63,147	■ 10개 병원 21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63,147백만원 * 1식	3,147
'20	108,000	■ 6개 병원 6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108,000백만원 * 1식	54,479	■ 7개 병원 7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4,479백만원 * 1식	△53,521
'21	108,000	■ 6개 병원 6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108,000백만원 * 1식	54,479	■ 7개 병원 7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4,479백만원 * 1식	△53,521
'22			54,479	■ 7개 병원 7개 사업에 대한 국고(25% 수준) 지원 - 54,479백만원 * 1식	
연평균 증가율 (%)	19.3		△0.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6,028	63,147	7,11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674.6	760.8	86.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2	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760.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법령출연금(350-01) 631.47억원을 <표4>의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3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631.47 ÷ 0.83억원 = 760.8명 **□ 2018년 고용효과: 67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9조,「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제14조,「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
-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연금 지급
-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 운영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 원리금 상환 시 경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

○ 추진경위

구 분	사업기간	비고
경북대학교병원 - 임상실습동 건립 사업	'10 ~ '19	계속
경북대학교병원 - 임상실습동 의료장비 도입	'18 ~ '19	계속
서울대학교병원 -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16 ~ '19	계속
서울대학교병원 -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	'17 ~ '19	계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융복합치의료센터 건립 사업	'17 ~ '19	계속
전남대학교병원 - 첨단의료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18 ~ '20	계속
전북대학교병원 - 노후의료장비교체사업	'17 ~ '19	계속
전북대학교병원 - 군산분원 건립	'13 ~ '22	계속
충남대학교병원 - 노후의료장비 교체	'17 ~ '19	계속
충남대학교병원 - 세종 분원 건립	'15 ~ '19	계속
충남대학교병원 - 중앙수술실 증축 및 리모델링	'17 ~ '19	계속
충북대학교병원 - 교육인재관건립 사업	'18 ~ '19	계속
충북대학교병원 - 의생명진료연구동건립 사업	'17 ~ '19	계속
강원대학교병원 - 신규의료장비 보강사업	'19 ~ '21	신규
서울대학교병원 - 본관 재배치 및 환경개선 사업	'19 ~ '20	신규
서울대학교병원(분당) - 복합진료지원동 건립	'19 ~ '22	신규
제주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확충사업	'19 ~ '20	신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 의료장비 도입	'19 ~ '20	신규
부산대치과병원 - 치의학융복합 진료센터 건립	'19 ~ '21	신규
서울대병원 - 고객주차장 보강 및 리모델링	'19 ~ '21	신규
전남대병원 - 차세대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19 ~ '22	신규
충북대병원 - 수술실 증축	'19	신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립대병원 지원	542	-	521	587	-	532		560	6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4년 불용 2,967백만원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용(2,730백만원)
- 서울대치과병원 지하공간개발공사 총사업비 감액으로 불용(237백만원)

○ '15년 불용 511백만원
-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511백만원)

○ '17년 불용 59백만원
- 제주대병원 외래진료동 신축 사업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59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21** **(516)**	( )	( )	521 (516)	**516** **(516)**	( )	5 ( )
'16년	**587** **(587)**	(63)	( )	587 (650)	**587** **(557)**	(93)	- ( )
'17년	**532** **(532)**	( )	( )	532 (532)	**531.95** **(531.95)**	( )	0.59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3,254		47,227	8,801 (8,000)	56,028 (64,028)	56,028 (64,028)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의료장비 도입 3,480백만원(순증)
-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장비 지원 2,713백만원(순증)
- 충남대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1,610백만원(순증)

▪ 충북대병원 교육인재관 건립 998백만원(순증)

○ 집행현황(10월말 현재)

■ 64,028백만원 전액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교문위, 예결위 결산 공통지적**

○ 지적사항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예산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장기적인 경영개선방안 모색 필요

○ 조치사항

-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예산 교부시 사업의 진척도·집행시기 등을 조사하여 원인행위 확인 후 월별로 예산 배부 지속 추진
- '15년부터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등의 평가를 통해 경영개선 유도

☐ **'14년 교문위, 예결위 예산 공통지적**

○ 지적사항

- 저조한 사업 실집행과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부담비율 미준수, 계획대비 구입품목 변경시 교육부 미승인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사 성과급제가 병원 수입증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도록 성과급지표 개선이 요구됨

○ 조치사항

-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 개선(대학정책과-958, 16.2.2.)"을 시행, 사업집행상황을 분기별 정기점검하여 집행부진 및 자부담 집행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해 사업비 미교부, 신규사업 미반영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였으며, 구입장비 변경시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집행관리 제고방안을 마련함.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성과급지표에 '공공의료' 항목을 반영**하여 성과보상(매년연말 진행) 평가기준을 마련('16.11)

☐ **'14년 교문위, 예결위 결산 공통지적**

○ 지적사항

- 사업비 실집행률이 73%에 그치고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하며 각 병원에서 국고지원금을 우선 집행하고 자부담분 집행을 계획대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발생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 조치사항

-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사업집행이 일부 미진한 병원은 집행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명백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 미교부함

  * '16년 집행현장점검 실시 :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 국립대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방만 경영,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평가를 위한 「교육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연구('14.5월~11월) 완료 및 경영평가 시행('15.6월)

☐ **'15년 교문위, 예결위 결산 공통지적**

○ 지적사항

-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지침' 상 전체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70%는 병원이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자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자부담 계획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자부담 실적 미흡사업 : 부산대병원의생명종합연구동개축, 전북대병원군산분원건립사업, 서울대병원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서울대의생명연구원리모델링, 전남대병원의생명연구지원센터, 전남대병원노후병동개보수

○ 조치사항

- 자부담 이행 점검을 통해 자부담 이행을 독려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자부담 이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후 미반영 함

  ※ 자부담 실적 미흡 사업

병원명	사업명	사업기간	조치사항	비고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3~'19	병원에서 국고출연금을 요구하였으나, 국고지원에 대한 자부담 이행률이 높지 않아 2016년도 예산 미반영함	
부산대병원	의생명종합 연구동개축사업	'12~'16	2016. 4월 부진사업으로 지적 및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6년도 배정 예산을 경북대병원으로 내역변경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13~'21	국고지원에 대한 자부담 이행률이 높지 않아 2016~2017년도 예산 미반영함	

· 자부담 이행으로 종료사업 : 전남대병원 노후병동개보수('16년 종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17년 상반기)

· 자부담 이행으로 정상추진사업 :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18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① 국립대병원 사업계획서 제출 → ② 사업별 예산 요구액 검토·조정(1차/담당부서) → ③ 예산조정안 예산부서 이송 및 검토·조정(2차/예산부서) → ④ 예산심사원회 심사 → 해당연도 예산안 확정 및 기획재정부 이송 → ⑤ 기획재정부 검토·조정 → 국회 이송(심의 및 조정, 확정) → ⑥ 국립대병원 교부요청서 제출 → 예산교부 → 사업비 집행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서울대학교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0년 2월 ~ '10년 8월

○ 조사결과

- AHP분석결과 '사업시행' 대안 점수가 0.501로 '사업 미시행' 점수 0.462보다 높게 나타남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 건립>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14년 1월 ~ ' 14년 8월

○ 조사결과

B/C ratio	AHP
0.94	0.537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 09년 1월 ~ ' 09년 8월

○ 조사결과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한 결과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됨

☞ 본사업의 AHP(계층화분석) 평가결과 시행·미시행 점수는 '사업시행' 점수가 0.511로 '사업 미시행' 점수인 0.489 보다 높게 나타남

(8) 총사업비 관리

<경북대병원 임상실습동 건립>

(백만원)

구 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 초	2010	252,178		2010	2014	
(1)차 변경	2010		249,800	2010	2014	-부지변경으로 보상비 감액
(2)차 변경	2011		246,812	2010	2014	-설계용역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14		249,074	2010	2016	-부지매입비 상승 및 사업기간 연장
(4)차 변경	2014		205,585	2010	2016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5)차 변경	2014		204,146	2010	2016	-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6)차 변경	2015		206,388	2010	2017	-사업기간 연장 및 비목조정
(7)차 변경	2017			2010	2019	-사업기간 연장
2018예산		9,195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 개발>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1	94,273		2011	2013	
(1)차 변경	2014			2011	2014	기간연장
(2)차 변경	2017		96,755	2011	2018	기간연장 및 사업비조정
2018예산		6,523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7	42,535		2017	2019	
(1)차 변경						
(2)차 변경						
2018예산		2,032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3	27,900		2013	2015	
(1)차 변경	2016	27,900	27,900	2013	2019	사업기간 연장, 사업부지 변경
(2)차 변경	2018		27,125	2013	2019	부대시설 낙찰차액 자율 조정
2018예산		830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건립>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5	241,748		2015	2017	
(1)차 변경	2016		219,875	2015	2018	-물가상승분 및 지하주차장 단가조정 -사업기간 연장
(2)차 변경	2016		217,413	2015	2018	-CM용역 낙찰차액 자율조정
(3)차 변경	2016		217,523	2015	2018	-CM용역 물가변동분 자율조정
(4)차 변경	2017		217,622	2015	2018	-CM용역 물가변동분 자율조정
(5)차 변경	2018		228,339	2015	2019	-실시설계 결과반영
(6)차 변경	2018		230,909	2015	2019	-설계시공 낙찰차액, 설계보상, 지가상승 자율조정
(7)차 변경	2018		230,909	2015	2020	-사업년도 조정예정
2018예산		8,034				

<충북대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사업>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7	61,585		2017	2019	
(1)차 변경	2018	61,585	61,585	2017	2021	기간연장
2018예산		4,618				

<충남대병원 중앙수술실 증축사업>

(백만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7	18,747		2017	2018	
(1)차 변경						
(2)차 변경						
2018예산		1,123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대병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단위: 점)	목표	88	89	90	91	91	기획재정부 만족도조사 3년('14~'16) 평균 88.8 대비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자 1점 상향 조정	만족, 품질, 성과 모형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만족요소별로 가중치를 두어 고객만족도 환산(100점 만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88.5	89.7	90	-	-			
	달성도	100	100	100	-	-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평가결과 우수 이상 병원수 (단위: 개)	목표	6	6	6	7	7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3년 ('14~16) 평균 6.6 대비 상향 설정 (7)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문항별 3~5점 배점으로 서류평가 실시(100점 만점)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결과
	실적	5	10	12	-	-			
	달성도	83	166	20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8400/8600/8700] 회계기금간 거래

(050)교육 - (052) 고등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413	**815,057**	**895,689**	**80,632**
[8411] 사립대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1414	815,057	895,689	80,632
[8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사학연금부담금)	1414	815,057	895,689	80,632
[86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422	**1,154**	**659**	**△495**
[86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1422	1,154	659	△495
[883]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 예수원금상환	1422	1,154	659	△495
[8700]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428**	**26**	**19**	**△7**
[8711] 교육차관사업(일반회계)	1428	26	19	△7
[884]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 차관이자상환	1428	26	19	△7

[882]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교원연금국가부담금)(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국가부담금	823,969	815,057	895,689	80,632	9.9

* 사업코드 : 12 - 12 - 0 - 050 - 8411 - 882
* 담 당 자 : 학교혁신정책관(최은희), 교육협력과장(최성유), 사무관(박종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법정 부담금 지원 - 연금부담금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 x 3603/8750('19년) (군소급부담금 및 국립대학법인 부담금 포함) - 퇴직수당부담금 : 법인부담액(대학소요분의 40%), 공단부담액(236억원)을 제외한 잔여액
사업기간	'7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6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직접수행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 내용 : 895,689백만원

- 연금국가부담금 : 393,934백만원

▪ 교원개인부담금합계액 × 3,603/ 8,750('19년)

* 군소급부담금 및 국립대법인부담금 포함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 501,755백만원

▪ 퇴직수당급여지급 소요비용 중 사학연금공단 부담액(23,630백만원) 및 퇴직수당법인부담금(대학소요분의 40%)을 제외한 금액

○ '19년도 국가부담금 요구내역(총괄)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추정	'19예산	산출내역
소요액	연금 국가부담금(A)	365,476	375,986	388,724	교원수×기준소득월액×개인부담률(8.75%)×12월×국가부담률(3,603/8,750)
	퇴직수당 국가부담금(B)	364,306	391,502	412,597	퇴직수당급여액 - 공단부담금(연간 236억원) - 퇴직수당대학법인부담금
	당년도 소요액(A+B)	729,782	767,488	801,321	
	전년도 미수액(C)	284,614	190,427	142,858	
	계(D=A+B+C)	1,014,396	957,915	944,179	
당년도 수납(요구)액(E)		**823,969**	**815,057**	**895,689**	'18년 미전출액 일부 (94,368백만원) 포함
당년도 미수액(F=D-E)		190,427	142,858	48,490	

- '19년도 연금국가부담금 산출내역

(백만원)

구 분	상 세	'17결산	'18추정	'19예산	산출근거
교원	국가부담금(A)	332,278	343,442	355,900	교원수 × 평균기준소득월액 × 개인부담률(8.75%) × 12월 × 국가부담률(3,603/8,750)
	군소급 부담금(B)	18,725	18,216	18,387	
국립대법인 국가부담금(C)		14,473	14,460	14,437	
당년도 소요액 (D=A+B+C)		365,476	375,986	388,724	
전년미수액(E)		33,108	26,785	22,169	
국고부담금 총 소요액 (F=D+E)		398,584	402,771	410,893	
당년도 수납(요구)액(G)		**371,799**	**380,602**	**393,934**	
당년도 미수액(F-G)		26,785	22,169	16,959	

- '19년도 퇴직수당국가부담금 산출내역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추정)	'19예산	비 고
퇴직수당급여	480,201	506,295	532,030	
국무조정실 퇴직수당급여	1	37	38	
교육부 퇴직수당급여(A)	480,200	506,258	531,992	국무조정실 퇴직수당 제외
공단부담금(B)	23,630	23,630	23,630	매년 정액 부담
퇴직수당 대학법인부담금 등(C)	92,264	91,126	95,765	대학소요분의 40% 반영
당년도 소요액(결산/추정) (D=A-B-C)	364,306	391,502	412,597	
전년도 미수액(E)	251,506	163,642	120,689	
국가부담금 총 소요액 (F=D+E)	615,812	555,144	533,286	
당년도 수납(요구)액	**452,170**	**434,455**	**501,755**	
당년도 미수액	163,642	120,689	31,531	

※ ‘16년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부담률

구 분	‘16	‘17	‘18	‘19	‘20	‘21
개인부담률	8.000%	8.250%	8.500%	8.750%	9.000%	9.000%
법인부담률	4.705%	4.852%	5.000%	5.147%	5.294%	5.294%
국가부담률	3.295%	3.398%	3.500%	3.603%	3.706%	3.706%
계	16%	16.5%	17%	17.5%	18%	18%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국가부담금	815,057	895,68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국가부담금	(380,602백만원) 연금부담금 (434,455백만원) 연금부담금	(393,934백만원) 연금부담금 (501,755백만원) 연금부담금

□ **지원 필요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인부담금 일정액,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재정부담 완화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가부담금**	823,969	815,057	895,689	**80,632**	**9.9**
■ 일반회계에서 사학연금기금으로 전출	연금부담금 371,799 + 퇴직수당부담금 452,170	연금부담금 380,602 + 퇴직수당부담금 434,455	연금부담금 393,934 + 퇴직수당부담금 501,755	**80,632**	**9.9**
□ **전출금 등**(합계)	823,969	815,057	895,689	**80,632**	**9.9**
○전출금 등(610)	823,969	815,057	895,689	**80,632**	**9.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법정 국가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23,969	■ 연금국가부담금 371,799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52,170백만원			
‘18	815,057	■ 연금국가부담금 380,602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34,455백만원	815,057	■ 연금국가부담금 380,602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34,455백만원	0
‘19	804,527	■ 연금국가부담금 413,077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391,450백만원	895,689	■ 연금국가부담금 393,934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501,755백만원	91,162
‘20	821,403	■ 연금국가부담금 440,049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381,354백만원	883,360	■ 연금국가부담금 417,244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66,116백만원	61,957
‘21	838,032	■ 연금국가부담금 447,054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390,978백만원	862,102	■ 연금국가부담금 403,967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58,135백만원	24,070
‘22			889,042	■ 연금국가부담금 406,368백만원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482,694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0.4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 및

▪ 동 시행령 제68조의2 및 제69조의3

○ 추진경위

▪ 학교경영기관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학교경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

- 연금국가부담금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73. 12. 20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0/55
'96.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65
'99.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0/75
'01.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
'10.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883/7,000
'16.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295/8,000
'17.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398/8,250
'18.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00/8,500
'19. 1. 1	○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603/8,750

- 퇴직수당국가부담금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91.10. 1	○ 퇴직수당제도 실시(공단 부담액 236억원)
'93. 1. 1	○ 공단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
'14. 3. 1	○ 공단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국가와 법인이 6:4의 비율로 부담(단 대학에 한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국가부담금	6,123	6,551	6,551	7,934	7,934	8,240	8,240	8,150	8,15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551 ( )	( )	( )	6,551 ( )	6,551 ( )	( )	( )
'16년	7,934 ( )	( )	( )	7,934 ( )	7,934 ( )	( )	( )
'17년	8,240 ( )	( )	( )	8,240 ( )	8,240 ( )	0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1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23,969	823,969	815,057	-	815,057	815,057	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지적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년 결산 지적 및 시정요구) 매년 전년도 미수금을 다음연도 예산으로 정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미수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국가부담금 미수금 해소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마련할 것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 결산 지적 및 시정요구) 교문위와 동일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연금공단에서 국가부담금 소요액 요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	
국가부담금 소요액 예산 계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	
국가부담금을 연금공단에 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
⇩	
퇴직교직원이 연금공단에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제63조의2
⇩	
퇴직교직원에게 퇴직급여/퇴직수당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883]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차관원금상환(계속)

< 일반회계 - 공자기금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공공자금관기기금(차관계정)차관원금상환	1,181	1,154	659	△495	△42.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8600 - 8611
*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이주희), 사무관(김영래), 주무관(송윤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전대차관원금상환
사업기간	'69～'22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개 차관선(상환완료 제외)
지원조건	직접수행, 차관협약서에 의한 지원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차관사업 : 원금상환을 위한 사업비 659백만원

· 산출내역 : $599,000 × 1,100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차관사업		
▪ 예수원금상환	전대차관원금상환액 1,154백만원	전대차관원금상환액 65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차관협약에 의한 원리금 상환으로 국가 신뢰도 제고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공공자금관리금(차관계정)차관원금상환	**1,181**	**1,154**	**659**	△495	△42.9
① 전대차관원금상환	**1,181**	**1,154**	**659**	△495	△42.9
· 예수원금상환 (전대차관 원금상환)	1,181 (1,050,146$ x1.125원)	1,154 (1,021,230$ x1.130원)	659 (599,000$ x1,100원)	△495	△42.9
□ 비목(합계)	**1,181**	**1,154**	**659**	△495	△42.9
○ 전대차관 원금상환 (510-06)	1,181	1,154	659	△495	△42.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차관협약서에 의한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감 (B-A)
	요 구		검 토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208	-	-	-	
'18	1,154	$1,021,230*1,130원	1,154	$1,021,230*1,130원	-
'19	659	$599,000*1,100원	659	$599,000*1,100원	-
'20	65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65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
'21	65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65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
'22			65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연평균 증가율 (%)	△137		△12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각 차관선별 협약서

ㅇ 추진경위 : '69. 6. 4 제1차IDA 교육차관 도입이래 '94. 2. 16 제11차IBRD 교육차관까지 6개 차관선이 21회에 걸쳐 도입 되었으며, 원리금 상환은 2022년까지 추진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교육차관사업	25	25	25	11	11	12	12	1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이용사유 : 예산액 대비 실제 상환 시 환율인상으로 예산부족

ㅇ 불용사유 : 집행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5** ( )	( )	( )	25 ( )	**23** ( )	( )	2 ( )
'16년	**11** ( )	( )	1 ( )	12 ( )	**12** ( )	( )	- ( )
'17년	**12** ( )	( )	( )	12 ( )	**11.8** ( )	( )	0.2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208	1,208	1,154	-	1,154	1,154	100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ㅇ 집행현황 : 차관협약서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집행예정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ㅇ IDA차관선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고지서) → 교육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2017년까지 상환실적

번호	차관선	도입금액	2017까지 상환액	미상환잔액
1	제1차 IDA	$ 15,004,862.88	$ 14,554,716.72	$ 450,146.16
2	제2차 IDA	$ 20,000,000.00	$ 17,000,000.00	$ 3,000,000.00
계 2개선		$ 35,004,862.88	$ 31,554,716.72	$ 3,450,146.16
		원 40,255,592,312	원 36,287,924,228	원 3,967,668,084

* 상환완료 된 차선제외, 적용환율=1,150원, 엔화의 대미환산율 적용

[884] 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차관이자상환(계속)

< 일반회계 - 공자기금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공공자금관기기금(차관계정)차관이자상환	36	26	19	△7	△26.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8700 - 8711
*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이주희), 사무관(김영래), 주무관(송윤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전대차관이자상환
사업기간	'69～'22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2개 차관선(상환완료 제외)
지원조건	직접수행, 차관협약서에 의한 지원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차관사업 : 이자상환을 위한 사업비 19백만원

· 산출내역 : $17,000 × 1,100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차관사업		
▪ 예수이자상환	전대차관이자상환액 26백만원	전대차관이자상환액 1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차관협약에 의한 원리금 상환으로 국가 신뢰도 제고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공공자금관리금(차관계정)차관이자상환	**36**	**26**	**19**	△7	△26.9
① 전대차관이자상환	**36**	**26**	**19**	△7	△26.9
▪ 예수이자상환 (전대차관 이자상환)	36	26	19 (17,000$ x1,100원)	△7	△26.9
□ 비목(합계)	**36**	**26**	**19**	△7	△26.9
○ 전대차관 이자상환 (510-07)	36	26	19	△7	△26.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차관협약서에 의한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감 (B -A)
	요 구		검 토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9	-	-	-	
'18	26	$23,000*1,130원	26	$23,000*1,130원	-
'19	19	$17,000*1,100원	19	$17,000*1,100원	-
'20	1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15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4
'21	19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10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9
'22			5	차관협약서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산정(환율변동반영)	-
연평균 증가율 (%)	△2		△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각 차관선별 협약서

ㅇ 추진경위 : '69. 6. 4 제1차IDA 교육차관 도입이래 '94. 2. 16 제11차IBRD 교육차관까지 6개 차관선이 21회에 걸쳐 도입 되었으며, 원리금 상환은 2022년까지 추진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교육차관사업	1.5	1.5	1.41	0.44	0.44	0.39	0.39	0.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이용사유 : 예산액 대비 실제 상환 시 환율인상으로 예산부족

ㅇ 불용사유 : 집행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1** ( )	( )	( )	1.41 ( )	**0.9** ( )	( )	0.5 ( )
'16년	**0.44** ( )	( )	0.03 ( )	0.47 ( )	**0.47** ( )	( )	- ( )
'17년	**0.39** ( )	( )	( )	0.39 ( )	**0.36** ( )	( )	0.03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9	39	26	-	26	26	100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ㅇ 집행현황 : 차관협약서의 상환 스케줄에 따라 집행예정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ㅇ IDA차관선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고지서) → 교육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2017년까지 상환실적

번호	차관선	도입금액	2017까지 상환액	미상환잔액
1	제1차 IDA	$ 15,004,862.88	$ 14,554,716.72	$ 450,146.16
2	제2차 IDA	$ 20,000,000.00	$ 17,000,000.00	$ 3,000,000.00
계 2개선		$ 35,004,862.88	$ 31,554,716.72	$ 3,450,146.16
		원 40,255,592,312	원 36,287,924,228	원 3,967,668,084

* 상환완료 된 차선제외, 적용환율=1,150원, 엔화의 대미환산율 적용

[평 생 직 업 교 육]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000]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437	**2,398**	**2,467**	**69**
[4031]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일반회계)	1438	1,227	1,296	69
[300]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1438	871	871	-
[30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1457	356	425	69
[4033] 정책연구개발사업(일반회계)	1472	1,171	1,171	-
[300] 정책연구개발사업(R&D)	1472	1,171	1,171	-

[300]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71	871	871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4000 - 4031 - 300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미래교육기획과장(유지완), 사무관(전민환)
  사회정책총괄과장(이강복), 서기관(박현정), 주무관(윤소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인재개발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효과적인 사회정책 연계협력 체계 마련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인재개발정책관련 포럼 운영) 인재개발 관련 포럼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촉진 - (대한민국 인재상) 우수인재를 발굴 및 시상하여 바람직한 인재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사회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의제 발굴 및 사회정책 거버넌스 방향 제시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신문사 등 (직접수행·민간경상보조)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재개발 정책 관련 포럼 운영 150백만원**

▪ 글로벌인재포럼 회의장 임차비 100백만원

▪ 영상장비 임차비 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111백만원**

▪ 인증심사 81백만원(신청기관 45개 × 1.8백만원)

▪ 역량강화 컨설팅 15백만원(10개 기관 × 1회 ×1.5백만원)

▪ 인적자원개발·관리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경비 등 15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410백만원**

▪ 수상자 상금 225백만원(수상자 100명 × 2.25백만원)

※ 고등학생 50명 × 2백만원 + 대학생·청년일반 50명 × 2.5백만원

▪ 심사경비 33백만원(신청자 650명 × 0.15백만원 × 2일)

▪ 시상식 개최 25백만원(초청자 250명 × 0.1백만원)

▪ 수상자연수 33백만원(100명 × 0.165백만원 × 2일)

▪ 숨은인재 발굴, 우수 인재 모델 확산을 위한 제경비 29.5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20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1식 × 2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871백만원	871백만원
▪ 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 운영	150백만원 - 글로벌 인재 포럼 개최	150백만원 - 글로벌 인재 포럼 개최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111백만원 - 인증심사 신청기관(45개) 심사 경비 등	111백만원 - 인증심사 신청기관(45개) 심사 경비 등
▪ 대한민국 인재상	410백만원 - 수상자(100명) 상금, 심사 경비, 수상자 연수비 등	410백만원 - 수상자(100명) 상금, 심사 경비, 수상자 연수비 등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20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20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 **지원 필요성**

○ **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 운영**

- 인재 육성 및 활용은 우리나라의 성장 원천인 동시에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공동 당면과제**

- 미래 전망에 기반한 인재정책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국내·외 및 사회 각 분야의 H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사업성과 >

○ '06년부터 '18년까지 **총 13회의「글로벌 인재포럼」을 개최**

- 우리나라의 **인재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고, **인재개발을 통한 지구촌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 글로벌 인재포럼 2018 주제 : 미래를 여는 도전(Future Makers : Challengers Create Tomorrow)

○ **매년 만족도 및 참가자수 증가 추세**

성과지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참가자 만족도	84	84	85.3	86	87
포럼 참가자수 (사전등록+현장등록)	3,000	2,580	3,138	4,513	5,363

※ '18년 참가자 만족도 및 포럼 참가자수 집계 중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인적자원개발 투자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발굴·인증**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고취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사업성과 >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매년 발굴 및 인증

- '06년 시범사업 이후 **503개 기관 신청, 421개 기관 우수기관 인증**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백만원)		126	162	123	111	111
신청기관 수		52	32	62	58	51
인증된 기관수	신규	18	14	21	16	19
	재인증	29	15	30	33	30
	계	**47**	**29**	**51**	**49**	**49**

○ **대한민국 인재상**

- 대한민국 인재상은 '01년부터 지속 운영*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재 육성 제도**로 정착

* ('01~'07)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 ('08~현재)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

- **미래 국가를 이끌 인재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청년에 대한 격려**를 위해 지속 지원 필요

< 사업성과 >

○ 총 1,100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08~'18) 선정

-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학업위주**의 **인재관 극복**에 기여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고교	60	60	60	60	60	60	60	50	50	50	50	620
대학	40	40	40	40	40	40	40	42	40	40	50	480
청년일반	-							8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00

※ '18년부터 대학, 청년일반 분과 구분 폐지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사회문제는 발생 원인이 복잡다기**하여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에 한계**

- 부처별 **사회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협업의제를 발굴**하여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사회현안 해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671**	**871**	**871**	**-**	**-**
▪ 인재개발정책 관련 포럼 운영	150	150 (회의장 임차 1식x100백만+영상장비 임차1식x50백만)	150 (회의장 임차 1식x100백만+영상장비 임차1식x50백만)	-	-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111	111 (인증심사 45개x 1.8백만+역량강화 컨설팅 25개x0.6백만 +제경비 1식x15백만원)	111 (인증심사 45개x 1.8백만+역량강화 컨설팅 25개x0.6백만 +제경비 1식x15백만원)	-	-
▪ 대한민국 인재상	410	410 (수상자 상금 100명x 2.25백만+심사 650명x0.15백만+ 시상식 250명x0.1백만 +수상자 연수 100명x 0.165백만x2일+제경비 1식x29.5백만)	410 (수상자 상금 100명x 2.25백만+심사 650명x0.15백만+ 시상식 250명x0.1백만 +수상자 연수 100명x 0.165백만x2일+제경비 1식x29.5백만)	-	-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200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의제 발굴 1식x200백만)	200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의제 발굴 1식x200백만)	-	-
□ **비목**(합계)	**671**	**871**	**871**	**-**	**-**
○일반용역비(210-14)	261	261	261	-	-
○정책연구비(260-02)	-	200	200	-	-
○민간경상보조(320-01)	-	410	410	-	-
○사업출연금(350-02)	410	-	-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인재개발 정책 관련 포럼 운영 : 인적자원개발 정책 의제를 국내·외 석학 및 정책수요자 등과 공동 발굴·논의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발굴·인증하여 인재개발 투자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 인재상 :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범부처 연계·협력 기반 조성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96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35백만원			
'18	8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200백만원	8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200백만원	-
'19	618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06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02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8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200백만원	253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1,112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30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4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25백만원	6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441
'21	1,112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30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4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25백만원	6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441
'22			671	▪ 인재개발정책관련포럼 운영 : 150백만원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111백만원 ▪ 대한민국 인재상 : 410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12.4		△6.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871</td><td>871</td><td>-</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9</td><td>19</td><td>-</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① + ② = 19.4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용역비(210-14) 2.61억원을 ‘사업지원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3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2.61억원 ÷ 0.39억원 = 6.7명

- 민간경상보조(320-01) 4.10억원을 ‘사업지원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3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4.10억원 ÷ 0.39억원 = 10.5명

- 정책연구비(260-02) 2.00억원을 ‘연구개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2.00억원 ÷ 0.89억원 = 2.2명

□ 2018년 고용효과 : 19.4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28조 :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사무 관장
-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제28조 : 학문・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 및 장학제도 수립・실시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 :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총괄,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등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5-75호)
- 글로벌인재포럼 교육부-한경-직능원간 업무협약서(MOU) 체결 (‘06.5월, ’10.5월, ’13.5월 갱신, ’16.4월 갱신, 3년마다 체결)

○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포럼 운영(글로벌 인재포럼)**
  - 인적자원개발 관련 글로벌 트렌드 논의, 정보교류 및 협력채널 구축
  - ’06~’18 : 매년 11월 첫째주 글로벌 인재포럼 개최(1~13회)
    ※ VIP 개회 축사(’08) / 개회 축하 영상 메시지 및 서면축사(’06, ’09, ’12, ’15, ’16, ’17, ’18)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 ’01.12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6대 정책분야 중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개발・활용 선진화”추진계획 수립
  - ’04.3 : 대통령 업무보고 시 주요 추진과제로 보고
  - ’05 : 민간부문 우수기관 인증 시범사업 추진(10개 기업 인증)
  - ’06 : 공공부문 인증제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12개 기관 인증)
  - ’06~’18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 및 인증(신규 인증 258개 기관, 재인증 212개 기관)

- **대한민국 인재상**
  - ’01.5 : 대통령장학생 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 요청(교육문화수석)
  - ’01~’07 :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운영
  - ’08~ :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명칭 변경 후 매년 수상자 100명 선발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 부처 간 장벽을 넘어 국정과제 및 각종 현안 대응 등 사회정책 추진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추진
  - ‘18.9. : ‘포용국가 전략회의’ 후속조치로 ‘포용국가 추진계획’ 수립 결정
  - ‘18.10.~ : ‘포용국가 추진계획’ 실무작업팀 구성 및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 활성화	8.35	8.35	8.14	7.73	7.73	6.71	6.71	8.71	8.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14** **(4.82)**	0.45 ( )	( )	8.59 (4.82)	**8.54** **(4.82)**	( )	0.05 ( )
’16년	**7.73** **(4.80)**	( )	( )	7.73 (4.80)	**7.69** **(4.80)**	( )	0.04 ( )
’17년	**6.71** **(4.10)**	( )	( )	6.71 (4.10)	**6.71** **(4.10)**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71		671	200	871	594	68.2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발굴 내역사업 신설(’18) : 200백만원×1식

○ 집행현황

▪ 각 내역사업별로 선급금 70% 집행 완료

※ 인재개발 정책 관련 포럼 운영 105백만원,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77백만원, 대한민국 인재상 287백만원, 사회정책 조사분석 및 협력의제 124.7백만원

▪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잔금 집행 예정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감사원 2015년 재무감사 지적사항

- (지적사항) 글로벌 인재포럼 성과지표 상의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자 수” 실적치의 정확성 부족
- (조치사항) 2017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명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 등록자수”로 변경 및 목표치 상향 조정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 IIP(Investors In People) 인증제도

· 1980년대 후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판단하고, 기업체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기업체의 가치와 생산성 향상 촉진

· 1988년에 고용부가 착수하여, 1991년에 공식적인 IIP 표준 발표

· 1993년, 비정부 공공조직인 IIP UK를 설립하여 교육고용부에서 이관

· ’10년까지 29,089개 기관 인증(인증 통계는 현재 기관홈페이지 자료 활용)

○ 싱가포르 : PD (People Developer) 인증제도

·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가중되는 경쟁압력과 고임금·저성장 경로 극복을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제고가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

· 1995년, 영국의 IIP 사례 등 약 2년간의 국제적인 연구와 55개 기업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개발인증제의 개념적 틀인 People Developer 기준 마련

· 1998년 생산성&표준위원회에서 도입, ’02년 이후 기술표준원(SPRING Singapore)에서 관리

· ’11년까지 657개 기관 인증(인증 통계는 현재 기관홈페이지 자료 활용)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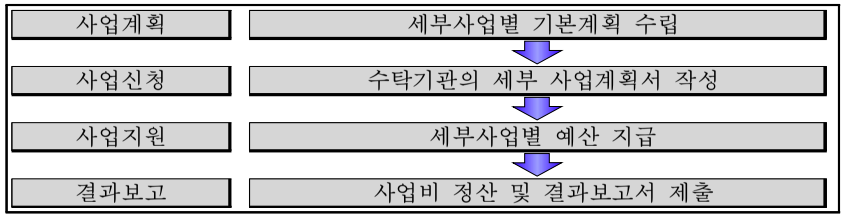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자 수(명)	목표	3,100	3,255	4,745	-	4,745	-	포럼 참가등록자 수 = 포럼 사전 등록자수 + 현장등록자수	결과보고서
	실적	3,138	4,513	5,363	-	-			
	달성도	101.2	138.6	113	-	-			
Best-HRD 참여기관 만족도(점)	목표	82	82	83	-	83	-	(참여기관 만족도 평점)×20 * 측정방법 :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한 참여기관 만족도 평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사업평가 보고서 (참여기관 설문조사)
	실적	82	82.4	80	-	-			
	달성도	100	100.5	96.4	-	-			
대한민국 인재상 홍보실적(건)	목표	신규	300	330	-	330	-	홍보실적= 대한민국 인재상 관련 신문, 방송보도 건수	사업보고서
	실적	신규	313	403	-	-			
	달성도	신규	104.3	122.1	-	-			
'학업' 이외 분야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비중(%)	목표	80	지표 삭제	지표 삭제	-	지표 삭제	-	('학업' 이외 심사기준 고득점자 수/ 전체 수상자 수) *100	사업보고서
	실적	83	지표 삭제	지표 삭제	-	지표 삭제			
	달성도	103	지표 삭제	지표 삭제	-	지표 삭제			

※ 단위 사업 기준 10억원 미만은 성과관리 대상사업 제외로 '18년도 성과지표 미제출(기재부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 학부모, 학생 등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별 추진 개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 >

□ **(글로벌 인재포럼)** 참가자 및 연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포럼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진행**(응답자 661명, '17)

○ **(포럼 운영)** 발표자들의 토론형식 추가, 홈페이지에 발표자에 대한 사전 질문 항목 개설 및 프로그램북 조기 발행 등 건의

○ **(포럼 홍보)** 지속적 포럼 홍보, 특히 지방에도 적극적 홍보 필요

○ **(포럼 주제 선정)** 청소년(미래인재)을 위한 세션 확대, 매년 발표된 주제의 성공사례에 대해 검증 필요

○ **(연사 선정)** 실제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다양한 국가의 발표자 섭외 등 건의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컨설팅 대상 기관수는 많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

※ '17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컨설팅 만족도 3.45점으로, 사업전체 만족도 4.00점에 크게 미달

< 예산(안) 반영사항 >

□ **(글로벌 인재포럼)** '18년 포럼 계획 수립 시 포럼 홍보 확대, 추천 주제 선정, 다양한 연사 선정 등 **포럼 참가자 의견을 반영 추진**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컨설팅 대상 기관수는 줄이고 기관당 지원 규모는 확대하여 내실화

※ '17년 23개 기관 지원 → '18년 최대 8개 기관 선정 및 기관 당 지원 규모 확대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글로벌 인재포럼)** '17년 참가자 만족도 87점, 사전·현장등록 참가자수 5,363명으로 **매년 만족도 및 참가자수 증가**

성과지표	'13	'14	'15	'16	'17
참가자 만족도	84	84	85.3	86	87
포럼 참가자수 (사전등록+현장등록)	3,000	2,580	3,138	4,513	5,363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06년부터 총 **470개 기관 우수기관 인증**하여 **인재개발 투자촉진 및 경쟁력 강화 유도**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계
신청기관 수		17	37	31	38	43	51	40	42	52	32	62	58	51	**554**
인증된 기관수	신규	12	21	24	23	22	30	19	19	18	14	21	16	19	**258**
	재인증	-	-	-	9	13	16	17	20	29	15	30	33	30	**212**
	계	**12**	**21**	**24**	**32**	**35**	**46**	**36**	**39**	**47**	**29**	**51**	**49**	**49**	**470**

□ **(대한민국인재상)** 총 1,100명의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08~'18) 선정하여 **학업위주의 인재관 극복**에 기여

※ ('01~'07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운영, ('08)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 ('15) 청년일반 부문 신설, ('18) 대학·청년일반 부문 통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총 계
고교	60	60	60	60	60	60	60	50	50	50	50	620
대학	40	40	40	40	40	40	40	42	40	40	50	480
청년일반	-							8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00

< 현장의 변화 >

□ **(글로벌인재포럼)** 4차산업혁명 등 **미래 한국 교육개혁 방향성 제시**

· 5천여명의 참가자가 다녀간 이번 포럼은 명실공히 최고의 HR포럼으로, 참가자들은 "인재포럼에 오면 세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평가(한경신문)

· '학교 밖 학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고 한국 교육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포럼 23명 좌장 평가)

참고 3 글로벌 인재포럼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위기, 저성장 등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 개최시기 : '06년 1회 포럼 개최후 매년 11월초 개최

○ 주최 기관 : 교육부·한국경제신문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공동 주최)

※ '06년부터 3년 단위로 공동개최 업무협약 체결('16~'18년 제5차 협약체결)

□ 개최현황

구분	주제	세션	연사 및 토론자	참석 규모
제1회 ('06)	Global Talent, Global Prosperity! 인재가 미래다	2개 분과 13개 세션	14개국 50여명	2,500여명
제2회 ('07)	HR Solutions for Next Generation 차세대를 위한 인적자원전략	4개 분과 23개 세션	35개국 150여명	3,500여명
제3회 ('08)	Creative Talents for Global Collaboration 창조적 인재와 글로벌 협력	5개 분과 30개 세션	43개국 180여명	4,000여명
제4회 ('09)	Creative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5개 분과 32개 세션	65개국 200여명	4,500여명
제5회 ('10)	Open and Ready for Tomorrow 세계가 함께하는 미래준비	5개 분과 30개 세션	52개국 200여명	4,800여명
제6회 ('11)	Smart Education : Reinventing the Future 100세 시대의 인재	4개 분과 24개 세션	65개국 200여명	5,000여명
제7회 ('12)	Better Education, the Best Welfare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	6개 분과 20개 세션	60개국 150여명	5,100여명
제8회 ('13)	Beyond Walls 벽을 넘어서	6개 분과 24개 세션	60개국 200여명	6,500여명
제9회 ('14)	Human Resources for Trust and Integration 신뢰와 통합의 인재	4개 분과 22개 세션	13개국 100여명	5,000여명
제10회 ('15)	Diverse Talent, Changing Societies 다양한 인재가 세상을 바꾼다	6개 분과 22개 세션	13개국 99여명	4,800여명
제11회 ('16)	Let's Dream, Challenge and Create 꿈, 도전 그리고 창조	6개 분과 22개 세션	13개국 100여명	5,000여명
제12회 ('17)	Future in Your Hands 우리가 만드는 미래	6개 분과 22개 세션	14개국 100여명	5,200여명
제13회 ('18)	Future Makers : Challengers Create Tomorrow 미래를 여는 도전	6개 분과 23개 세션	15개국 100여명	5,400여명

참고 4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 Best HRD 사업 개요

○ **(목적) 인적자원개발·관리** 측면에서 **우수한 공공기관*을 인증**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

* 대상기관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

○ **(경과) '06년 시범사업** 도입, **'07년**부터 **본사업** 추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06~'18년 누적 554개 기관 인증 신청, 258개 기관 신규 인증 및 212개 기관 재인증
'18년 말 유효 인증(인증 후 3년 이내) 보유 기관 수 149개

○ **(운영체계) 교육부**가 **사업 총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인증**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 운영**

※ 민간부문 : 고용노동부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 사업 주요내용

○ **(인증 심사)** 인증 신청 기관에 대해 **인적자원관리**(400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부문으로 구성된 심사지표로 **서류·현장심사** 실시

- **70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대상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인증 기관 인센티브)**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임을 **3년간 인증**하고, **정기근로감독 면제**(3년간), 담당자 **연수 기회 제공** 등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최우수기관(신규2, 재인증1)을 선정하여 담당자에 대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심사 종료 후 모든 기관에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홍보 및 환류

○ **(홍보)** 공공·민간부문 **공동 사업공고**, 사업설명회, 우수사례집 배포 등

○ **(환류)** 사업 종료 후 참여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외부 평가기관 위탁)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개선사항 반영**

참고 5 대한민국 인재상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우수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

※ 심사지표에 따라 총 100명(고등학생 50, 대학생·청년일반 50)의 청년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대학·일반 1인당 250만원) 수여

○ **(경과) '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으로 도입한 후, **'08년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

※ '21세기를 이끌 우수 인재상' 누적 796명, '대한민국 인재상' 누적 1,100명 선발

○ **(운영체계) 교육부 사업 총괄, 사업 수행기관**(공모 선정)이 **세부사업 수행**

□ 심사 및 선발

○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 제외)**을 가진 청년**(만15~29세)

○ **(선발기준) 3개 심사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인재 100명을 선정

* ①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 ②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 ③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

○ **(심사·선발절차) 후보자 접수** → **지역심사** 진행 및 **중앙심사 추천**(지역심사위원회 운영) → **중앙심사**(중앙심사위원회 운영) → **수상자 최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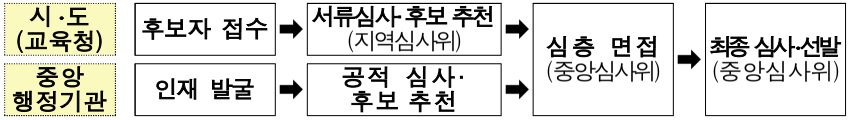

□ 시상 및 사후관리

○ **(시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 전원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및 **상금**(고등학생 200만원, 대학·일반 250만원) 수여

○ **(사후관리) 수상자 연수** 및 각종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수상자 성장 지원** 및 수상자 간 **네트워크 형성 유도**

○ **(결과 홍보)** 선발 결과에 대한 **홍보 보도자료** 및 **수상자 사례집** 배포

참고 6 (가칭)범부처 사회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개요

□ 추진배경

○ 범부처가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가칭)범부처 사회정책전략」 수립 필요**

※ VIP '18년 신년사 핵심메시지 :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

□ 추진근거

○ **"2018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방향"**('18.1.26,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

- 국가차원의 사회분야 중장기비전 수립 추진

□ 연구내용

○ **(과제명)** 『(가칭)**범부처 사회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 대·내외 환경 분석 및 미래 한국사회 모습 전망
- 사회정책 분야별 핵심의제 발굴
- 사회정책 거버넌스 방향 제시

□ 추진체계 및 활용계획

○ **(추진체계) 사회정책전략회의**('18.9)를 통해 수립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정책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정책협력망, 사회정책포럼** 등과 연계하여 **「(가칭)범부처 사회정책전략」 마련**

◁ 추진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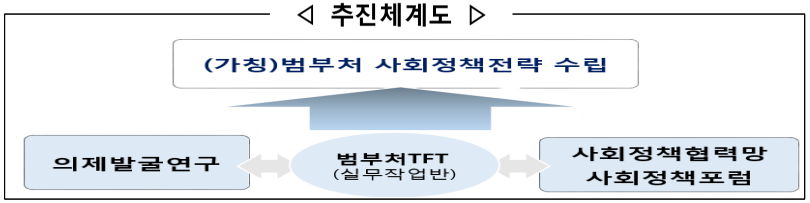

○ **(활용계획)** "(가칭)**범부처 사회정책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301]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56	356	425	69	**19.4**

* 사업코드 : 12 - 11 - 050 - 053 - 4000 - 4031 - 301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진로교육정책과장(송은주), 서기관(강양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진로교육법」('15.6.22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진로교육 현황조사, 기초연구, 연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 지원 등 업무 수행
사업기간	'17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진로교육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직원 3명 인건비 **140백만원**

※ 책임연구원 1명(50백만원), 연구원 1명(58백), 연구보조원 1명(32백만원)

※ 인건비 산출 근거 ('18년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 기재부 고시)
- 책임연구원 1명(참여율 70%), 연구원 1명(참여율 100%), 연구보조원 1명(참여율 100%,10개월)
· (책임연구원 1명) 국가진로교육센터 총괄 관리, 정책개발, 대외협력 등
· (연구원 1명) 현황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연수 관리, 국가-지역 협력 체계 강화
· (연구보조원 1명) 각 세부 사업별 운영 및 기타 업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 급	월 임금(' 18) 참여율 50%*	월 임금(' 18) 참여율 100%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 가능

○ **경상비 :** 기본경비 및 포럼 개최 등 **50백만원**

※ 포럼(14백), 일반수용비(인쇄10백, 소모품3백, PC등 렌탈3백, 관리비20백)

○ **사업비 :**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수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 **235백만원**

- **(진로교육 현황조사)** 초·중·고등학교(60백) 및 대학(60백) **120백만원**

※ 진로교육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 : ('18년) 초·중등 1,200교 및 (전문)대학 400교

-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성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40백만원**

※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12백만원×2회(회당 연수인원 100명)

※ 사회적배려대상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 8백만원×2회(회당 연수인원 100명)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성인의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55백만원**

※ 경력 단절, 실직 등 진로변화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 분석, 진단, 상담 등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19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20년~)

- **(국가-지역 협력체제 구축)** 중앙-시·도 및 진로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우수 프로그램 발굴·공유 및 발전방안 협의 **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356	425
■ 인건비	**(140백만원)** 직원 3명	**(140백만원)** 직원 3명
■ 경상비	**(50백만원)** 일반수용비 및 관리비	**(50백만원)** 일반수용비 및 관리비
■ 사업비	**(166백만원)**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수 제공, 프로그램 개발, 협력체제 구축 4개 사업	**(235백만원)**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수 제공, 프로그램 개발, 협력체제 구축 4개 사업
- 진로교육 현황조사	**(120백만원)**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120백만원)** 초·중등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 진로교육 관계자연수	**(16백만원)**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40백만원)**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30백만원)** 성인 진로탄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55백만원)** 성인의 진로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진로교육 협력체제 구축	-	**(20백만원)** 중앙-시·도 및 진로교육 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 및 발전방안 협의

□ **지원 필요성**

○ **(인건비 및 기본경비)**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 필요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진로교육 현황 조사)** 진로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현황조사 필요

※ 진로교육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전문적인 진로교육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관계자(교원, 특수 및 다문화 진로교육 관계자, 지역진로교육센터 운영자 등) 연수 실시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력 단절, 실직 등 진로변화를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 분석, 진단, 상담 제공 및 제2,3의 진로 설계 지원

○ **(중앙-지역-기관 진로교육센터 연계체제 구축)**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진로정책 추진, 발굴된 우수 진로교육 사례 보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56**	**356**	**425**	**69**	**19.4**
■ 인건비	95 (2명x47.5백만원)	140 (3인x46.6백만)	140 (3인x46.6백만)	-	-
■ 경상비	40 (12개월x3.33백만)	50 (12개월x4.16백만)	50 (12개월x4.16백만)	-	-
■ 사업비	121	166	235	**69**	**41.5**
- 진로교육 현황조사	85 (1식x85백만원)	120 (2식x60백만원)	120 (2식x60백만원)	-	-
- 진로교육 관계자연수	13 (1식x13백만원)	16 (2회x8백만원)	40 (2회x12백만원, 2회×8백만원)	**24**	**150.0**
-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23 (1식x23백만원)	30 (1식x30백만원)	55 (1식x55백만원)	**15**	**50.0**
- 국가-지역 협력체제 구축			20 (1식x20백만원)	**20**	**순증**
□ **비목**(합계)	**256**	**356**	**425**	**69**	**19.4**
○민간경상보조(320-01)	256	356	425	69	19.4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체계적, 지속적, 종합적으로 추진**

○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누구에게나 양질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56	■ 인건비 95백만원 ■ 경상비 40백만원 ■ 사업비 121백만원			
'18	356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166백만원	356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166백만원	-
'19	236	■ 인건비 95백만원 ■ 경상비 40백만원 ■ 사업비 101백만원	425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235백만원	189
'20	425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235백만원	356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166백만원	△69
'21	425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235백만원	356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166백만원	△69
'22			356	■ 인건비 140백만원 ■ 경상비 50백만원 ■ 사업비 166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56	425	6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5.96	6.91	0.95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5.96	6.91	0.95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6.9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1.5억원[1] ÷ 0.4812억원[2] = **3.1명** 1) 인건비 총액: 상용임금(110-03)+복리후생비(210-12)+고용부담금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교육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평균값 0.4812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를 제외한 국가진로교육센터 사업비 2.75억원은 <표2>에 의거, <표3>의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2.75원 ÷ 0.72억원 = 3.81명** **□ 2018년 고용효과: 5.9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진로교육법 제정('15.6.22 제정)
- 진로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15.12.22, 12.23 제정)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 수립.발표('16.4.5 국무회의 보고)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	-	-	-	-	2.56	-	3.56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256 (256)**	- (-)	- (-)	256 (256)	**256 (256)**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56	-	356	-	356	356	100

○ 집행현황

▪ 356백만원 집행(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년 초·중등 진로체험에 창업체험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도전정신 함양의 중요성 촉구 및 진로교육 만족도 제고**

('17.12.14 동아일보 등 보도자료)

○ 초·중등 단계에서 실시해온 **진로교육현황조사 대상에 대학을 추가하여,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대상을 고등교육으로 확대**

('17.12.14 교수신문 등 보도자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진로개발,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지원체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수준의 기관으로 NCDA(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이 1913년에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학생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자격심사, 진로개발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 촉진 및 지원 역할을 수행

※ (관련근거) The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6 (진로와 기술교육 향상에 관한 법)

○ **(덴마크)** 국립 진로교육 대화기구로 교육부장관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Nationalt Dialogforum Vejledning이 있으며, 포럼방식으로 우수 진로교육 사례, 경험, 혁신적인 생각 등을 논의함

※ (관련근거) Bekendtgørelse af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samt pligt til u-ddannelse, beskæfti-gelse m.v.(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 **(프랑스)** 학생들에게 직업세계, 기업, 교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센터(CIO, Les centres d'information et d'orientation)를 운영 중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교육, 직업, 자격, 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진로계획서 작성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

※ 교육-직업국가정보사무소(ONISEP)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모든 교육청에 설치(약 600개)된 CIO(전국의 진로정보센터)에 진로정보 생산·배포

※ (관련근거) loi d'orientati -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 de 2005(학교 미래를 위한 진로지도와 교육과정법)

○ **(아일랜드)** 아일랜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질 높은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진로지도 교재 개발, 우수 사례 제공, 진로현장과 수요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아일랜드의 진로교육센터(NCGE, National Centre for Guidance in Education)

※ (관련근거) Education Act 1998 (교육법)

(6) 사업추진절차

절 차	승인/의결/추진 주체
사업 공모 및 운영 기관 선정	ㅇ교육부
↓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ㅇ교육부 ㅇ국가진로교육센터
↓	
진로교육 관련 사업 확정	ㅇ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	
지정 및 사업비 집행	ㅇ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ㅇ국가진로교육센터
↓	
사업집행	ㅇ국가진로교육센터 ㅇ과제 책임자
↓	
사업 진도관리 및 중간·결과평가	ㅇ국가진로교육센터
↓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ㅇ교육부 ㅇ국가진로교육센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 관계자연수 만족도 (단위:점수)	목표	-	-	-	70	74	'18년도 목표치인 70점에서 5% 상향하여 설정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이에 대한 평균값을 100분위로 환산 (리커트 5점 척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요(붙임1)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18.11.) 중 관련 내용(붙임2)

○ 관련 근거(붙임3)

참고1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요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성격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

○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인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 진로교육법 제15조제1항 :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 **지원 역할**

-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및 정책 추진 지원**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진로상담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지역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진로체험 **운영 지원을 하도록 유도**

○ **체계도**

- **정책개발·지원** : 기획 집행, 정책제언 및 연구 개발, 진로교육 관계자(시도교육청, 지자체, 대학 관계자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교육 연수** : 진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공유
- **진로정보 제공 등** : 진로정보, 콘텐츠, 상담 지원 등 자문 지원, 각종 홍보 업무 등

<국가진로교육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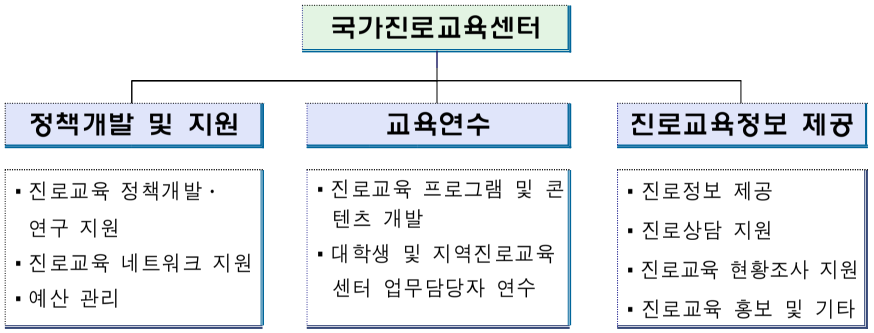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요 역할	예산
교육부	· 국가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 진로교육 총괄·조정	
국가진로교육센터	· 진로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진로상담 지원 ·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등	국고
시·도 교육청	· 지역 진로교육계획 수립 · 단위학교 진로교육 예산 지원 및 평가, 운영 지도 등	지방비
지역진로교육센터	· 시·도 실정에 맞는 진로콘텐츠 개발·보급 · 학교 진로교육·진로체험 운영 지원 등	

참고2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18.11.16, 사회관계장관회의) 중 관련 내용

3.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2 생애 전환기 진로개발 지원 기반 확충

□ **평생학습자의 진로개발 지원 제도 개선**

○ **(평생학습자 진로지원) 평생교육 관점**에서 **성인의 원활한 제2의 진로설계** 등 **생애 전환기 진로설계·개발 지원**

○ **(진로지원 체제 강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에 **성인 진로개발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수 등 진로지원 강화**('19.~)

□ **성인 진로개발 프로그램 시범 적용**

○ **(성인 진로탄력성 개발)** 실직·은퇴 등 **생애전환기 중장년층**의 **자존감 회복 지원**을 위한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시범적용('19.)

* 진로장벽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등 심리·인지적 역량과 정서 안정감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성인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예시) >

자기이해	일과 생애의 이해	변화 대응력 향상	경력 재설계
▪자기인정 ▪자기긍정성 강화	▪삶의요소 탐색 ▪환경변화 탐색	▪강점 및 지지 자원 탐색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시안 마련 및 시범적용('19.~) → 프로그램 확산('20.~)

※ 평생교육기관 150명('19.) →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고용센터 250명('20.)

○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 연수)** 진로상담의 원리, 정보제공 및 연령별 진로개발 사례 공유 등 성인 진로개발 관계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19)

* 평생교육기관, 지역고용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관계자 연수 프로그램 확산

□ **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설계

목 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강화

추 진 과 제

전략 1 학생 진로탐색 지원 강화
- 1 교육과정 속 진로교육 확산
- 2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 3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지원 강화

전략 2 혁신 성장을 위한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1 학교 수업 기반 창업체험교육 지원
- 2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전략 3 생애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확대
- 1 대학생의 도전적 진로개발 지원
- 2 생애 전환기 진로개발 지원 기반 확충

전략 4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생태계 구축
- 1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 2 부처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참고3 관련 근거(진로교육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00] 정책연구개발사업(재량, 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정책연구개발사업 (R&D)	1,195	1,171	1,171	-	-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3 - 4000 - 4033 - 300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기획담당관(김영진), 사무관(안희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설정과 새로운 정책 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개발 ·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지원하여 정책의 현장 적응력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사업기간	'0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정책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171백만원

○ 산출내역 : 36개 과제 × 3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정책연구개발사업 (R&D)	1,171	1,171
■ 정책연구개발사업 (R&D)	- 새 정부에서 추진할 신규 정책(국정과제 등)의 질 제고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구축 방안	- 교육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혁신교육 추진 방안 - 교육자치 강화 방안 - 기타 행정환경 급변에 따른 현안과제 해결

□ 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

-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신규 정책 과제 발굴
- 현안과제 해결 및 현장 실태조사·점검 등을 지원하여 정책 추진 과정의 시의성과 현장 적합성 제고

○ 사업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49조 내지 제56조, 동 규정 시행규칙(행자부령) 제35조 내지 제42조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교육부 훈령)」

○ 사업 실적('14~'17년)

- '14년 : 정책연구과제 58개 수행(정기과제 47개, 수시과제 11개)
- '15년 : 정책연구과제 47개 수행(정기과제 35개, 수시과제 12개)
- '16년 : 정책연구과제 52개 수행(정기과제 37개, 수시과제 15개)
- '17년 : 정책연구과제 35개 수행(정기과제 28개, 수시과제 7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1,195**	**1,171**	**1,171**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1,195	1,171 (36개 과제x 32.5백만)	1,171 (36개 과제x 32.5백만)	-	-
□ **비목**(합계)	**1,195**	**1,171**	**1,171**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260-02)	1,195	1,171	1,171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책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지원하여 정책의 현장 적응력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 국가 차원의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새로운 정책 도출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시의성·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207	■ 32.2백만원 × 37과제			
'18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
'19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
'21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
'22			1,171	▪ 32.5백만원 × 36과제	
연평균 증가율 (%)	△0.8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49조 내지 제56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제35조 내지 제42조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교육부 훈령)」

○ 추진경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출연기관의 업무가 국무총리실로 이관('99.1.19)됨에 따라 '99년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연구비 중 일부를 소관부처 연구비로 편성 운영
-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개발비와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 내 정책연구비를 '08년부터 통합 운영
- '08.3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사업비 통합 편성
-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사업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정책연구개발사업	19.50	-	14.50	14.50	-	12.07	-	11.7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월액 발생 사유

- 연구비는 계약 시 70%, 최종보고서 제출 후 나머지 30%를 잔금으로 지급
- 하반기에 선정·추진되는 과제 중 적정 연구기간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년도에 연구를 종료하게 되는 과제들은 잔금(30%) 지급분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모든 원인행위는 당해년도에 이루어짐)

○ 불용액 발생 사유

- 연구과제별 연구비 정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4.50** ( )	3.71 ( )	- ( )	18.21 ( )	**15.29** ( )	2.28 ( )	0.64 ( )
'16년	**14.50** ( )	2.28 ( )	- ( )	16.78 ( )	**14.98** ( )	1.40 ( )	0.40 ( )
'17년	**12.07** ( )	1.40 ( )	( )	13.47 ( )	**11.95** ( )	1.07 ( )	0.45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207	1,207	1,171	-	1,171	847	72.3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급금 및 연구완료 후 잔금 847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4년 정기국회 지적사항 : 정책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률이 저조하여 이월액이 매년 발생하므로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수행을 최소화할 것
- '15년 교문위 지적사항 :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준수 필요
- '16년 교문위 지적사항 : 특정 연구 주제 및 연구자 지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강화 필요
- '17년 교문위 지적사항 : 예산심의단계 시 제출한 연구과제 목록 형식화 우려 및 과다이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조기 추진 필요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연구 종료시점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선제적 수요조사로 연도말 계약 체결 및 집행을 자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
-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정 완료('15.7.23)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방식 개선 사항」 안내('16.1월)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준수 요청 공문 발송('16.7.8)
- '17년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3명 추가 보강하여 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강화(기존 : 총 16명(외부위원 9, 내부위원 7) → 변경 : 총 19명(외부위원 12, 내부위원 7) → '18년 교육부 내부위원 1명 추가(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추가)
- 연구과제 선정 시, 최근 3년 간 교육부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과제와의 중복 여부 심사 강화
- 조기 수요조사('17.8월)를 통한 '18년도 상반기 추진 예정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과제 목록 교문위 입법조사처 제출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과제 선정

□ **정기**과제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① 정책연구과제 **수요조사**
* (위탁형) 연구자 단독 수행으로 종합보고서 제출
(자문형) 연구자가 특정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시

②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내부위원) : 1.5배수 이내 예비 선정

③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내·외부위원) : 과제 최종 선정

□ **수시**과제 : 정책연구심의위원장 전결로 선정(긴급 사안)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결재 과제에 한함

⬇

연구자 선정

□ **공모과제** 연구자 선정

○ 연구자 공모* → 과제담당부서 심사의견 제출
→ 심의위원회(연구자 선정)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연구자 공모 게시(최소 2주)(단, 긴급한 사유 발생시 1주까지 단축 가능)

□ **지정과제** 연구자 선정

○ 과제담당부서 지정연구자 추천*(지정사유서 제출)
→ 심의위원회(연구자 선정)
* (참여제한)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자, 교육부 퇴직 5년 미만인 자는 참여 불가(한국연구재단에 요청)
(중복참여) 참여과제수는 연구책임자 1건, 공동연구자 3건 이내로 제한

⬇

연구진행관리

□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 중간보고회, 협의회, 워크숍, 중간보고서 제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연구기간 동안 **2개월에 2회 이상 진행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
* 연구결과 외부전문가 평가/보고회 1회로 인정

⬇

연구결과관리

□ 정책연구최종보고서(안)에 대한 평가 실시
※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이 공동 평가

□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대국민 공개
※ 온-나라 정책 연구시스템(www.prism.go.kr) 등재

□ 정책연구결과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 법령·규정(모든 단계 적용)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2018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요약)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초·중등 교육)** 미래교육, 고등학교 교육체제 발전, 중고등학교 휴학제,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고교 무상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수요 발생

□ **(평생·직업 교육)** 평생학습 진흥, 평생 교육 및 직업 교육 혁신, 초·중등 진로체험 활동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의 필요성 제기

< 예산(안) 반영사항 >

□ 각 부서별 대면 검토 및 주무과장 회의('17.9.30), 제15차 정책연구심의위원회('18.2.12)를 거쳐 정책연결성,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8년도 상반기 정기과제 선정

□ **(초·중등 교육)** 미래형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개선방안, 고등학교 교육체제 발전 방향 모색, 중고등학교 휴학제 개선 방안, 자유학기제 발전 및 지속성 강화 연구,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정착방안 연구, 고교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방안 연구 등 실시

□ **(평생·직업 교육)**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 등 실시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15~'17년 정책연구 과제 수행 건수

연도	사업성과
'15년	정책연구과제 47개 수행(정기과제 35개, 수시과제 12개)
'16년	정책연구과제 52개 수행(정기과제 37개, 수시과제 15개)
'17년	정책연구과제 35개 수행(정기과제 28개, 수시과제 7개)

□ '15~'17년 정책연구 주요 정책 반영 예시

연번	과제명	활용유형	구체적 활용 사례
1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정책반영	201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14.12)에 활용
2	다문화·탈북학생 취업 지원 방안 연구	정책참조	다문화·탈북학생의 진로·진학상담 보조자료 개발에 활용('15~)
3	한국형 MOOC 연구를 위한 온라인 강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반영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구축·운영 기본계획(안)('15.2)에 활용
4	대학별 맞춤형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방안 연구	정책참조	대학 구조개혁 컨설팅 방안 마련·시행('15.10)에 활용
5	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참조	수업지원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안) 수정 고시에 활용
6	일반고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참조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에 활용
7	초등학생 수영교육 국가사업 지원방안 및 학년별 운영내용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책참조	'17년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정책 수립에 반영

< 현장의 변화 >

□ 정책연구 결과를 제도 개선,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정책 참조 시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정책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한 부내 직원의 관심도 및 정책수립 역량 제고

참고 3 2018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요약)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지원**

○ **(예산규모)** 국고 **1,171백만원**

○ **(지원근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 시행규칙(행안부령),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교육부 훈령) 등

□ 지원 방식(과제 선정→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자 선정)

① **(과제선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사안**(수시지원)은 부총리 결재 과제에 한해 **위원장**(기조실장) **전결 처리**

② **(연구자 선정) 공모 원칙***, **연구제한자** 및 **연구 중복 참여** 등 엄격 제한

* 해당 분야 전문가 부족 등 예외적인 경우 과제 담당부서에서 연구자 추천 후 위원회 심의

□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 **수요조사** 시부터 **정책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사전심의** 시 정책연구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

- 과제 신청 **철회** 또는 **주제 변경** 시에는 **사유서 제출 의무화**

○ **정기과제**를 **조기 선정**하여 **계약기간 차년도 연장** 및 **이월액 발생 방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담당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주요 추진일정

○ 상반기 과제 수요조사('17.10.) → 상반기 최종과제 심의·선정('18.2.) → 하반기 과제 수요조사('18.5.) → 하반기 최종과제 심의·선정('18.6.)

[4100]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100]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483	**111,948**	**136,116**	**24,168**
[4131] 평생학습 기반구축(일반회계)	1484	6,620	8,876	2,256
[300] 평생학습진흥 지원	1484	1,031	1,031	-
[301]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1505	1,084	1,044	△40
[303]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운영지원	1521	1,314	3,532	2,218
[30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1530	2,391	2,509	118
[306]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1542	800	760	△40
[4134]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1553	21,530	39,996	18,466
[3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553	17,530	24,130	6,600
[302]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66	4,000	4,460	460
[308]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1585	-	11,406	11,406
[413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일반회계)	1601	8,600	7,846	△754
[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1601	8,600	7,846	△754
[414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1620	1,698	1,398	△300
[30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20	1,698	1,398	△300
[415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일반회계)	1633	73,500	78,000	4,500
[30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633	73,500	78,000	4,500

[300] 평생학습 진흥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학습진흥지원	1,141	1,031	1,031	-	-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1400 - 4131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박봉서), 연구관(김태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평생교육사 제도 운영 및 연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관리 및 자격 발급, 평생교육사 전문역량강화 연수 운영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평생학습 대상 시상을 통해 평생학습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문화 증진, 참여 동기 부여
사업기간	'00～계속 (평생학습계좌제 '09～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평생학습계좌제 ('17년 66,592개 계좌, 215,061 이력 등록)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및 연수 운영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평생학습대상 시상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50백만원

- 국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관리하는 국가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350백만원(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식×166백만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2회×50백만원,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2종×42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73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관리 및 평생교육 연수운영비
- 산출내역 : 343백만원(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30백만원(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직무교육 2회×15백만원=30백만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5백만원(65백만원×1식), 제도개선 및 위원회 등 운영 50백만원(5백만원×10회), 자격발급 및 상담 등 180백만원(3백만원×5명×12개월), 자격증 인쇄 등 40백만원(5,000원×4,000매×2회), 매뉴얼 개발 등 8백만원(4백만원×2종)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8백만원

- 평생학습 문화 풍토 조성 및 국가 평생학습 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학습박람회 및 평생학습 대상 추진 사업비(전년 동)
- 산출내역 : 308백만원(평생학습박람회 개최 1식×263백만원, 평생학습대상 선정 및 시상 1식×45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평생학습진흥지원	1,031	1,03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178)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00)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72)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등	(166)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00)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84)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등
■ 평생교육 연수사업	(313) 시스템 운영비, 제도개선 연구조사, 자격발급비 (60) 평생교육사 전문교육 및 자격제도 담당자 전문교육	(343) 시스템 운영비, 제도개선 연구조사, 자격발급비 (30) 평생교육사 전문교육 및 자격제도 담당자 전문교육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263)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장 대관료, 대행사 선정비, 기타운영비 (45) 평생학습대상 사업운영비 및 시상금	(263) 평생학습정책관 운영비, 차기 박람회 개최지 선정비, 기타운영비 (45) 평생학습대상 사업운영비 및 시상금

□ **지원 필요성**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경제 및 인구패러다임의 변화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 29.8%('07) → 35.8%('17)

○ 평생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관 및 학습과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및 성인학습자의 계속학습 지원 필요

※ 평생교육기관 수(비형식·준형식) : 5,072개('17) / 비형식프로그램 수 : 214,413개('17)

○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타 제도 또는 사업 등에서 연계하여 평생학습이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활성화 필요

※ 검정고시·성인문해·방송통신중고 국민의 초중등학력연계 등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국가 평생교육 진흥의 핵심과제로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확충 필요

- 국가자격으로서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여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 '17년 기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4,032개) 내 평생교육사 4,985명 배치(기관당 1.2명)

○ 일자리 변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발생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평생교육사의 새로운 역량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등 연수 지원체제 마련 시급

※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평생교육사 재교육 및 연수를 위한 전담연수센터 설치,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지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성인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박람회를 통해 **평생학습 결과 공유**(학습결과 전시, 발표 및 체험 등)**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체계 강화** 필요

※ '12~'18년까지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회 개최

○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국무총리 및 부총리 표창)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국가 평생학습 문화진흥**에 기여

○ 전국단위 박람회 개최 및 부대행사(컨퍼런스, 관계자 대회, 전시 홍보 체험 부스 운영 등)를 통한 평생교육 성과공유 및 대국민 학습문화 풍토 조성

○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을 통한 17개 시·도, 국가(교육부)평생학습 주제관 운영 및 국정과제 홍보 병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학습진흥지원**	**1,141**	**1,031**	**1,031**	**-**	**-**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사업	400	350	350	-	-
-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98	178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 안정성 강화 1식×155백만, 유관기관·사업 등과 학습이력 연계시스템 구축 1식×23백만)	166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1식×139백만, 유관기관·사업 등과 학습이력 연계시스템 구축 1식×27백만)	△12	△6.7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126	100 (학습과정 평가인정 2회×40백만원, 평생학습계좌제 기관 연계 2회×10백만)	100 (학습과정 평가인정 2회×40백만원, 평생학습계좌제 기관 연계 2회×10백만)	-	-
-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 등	76	72 (노동시장 연계협의체 구성·운영 1개분야×3백만, 학습자에 대한 지원 강화 2인×10월×3백만, 학습자 대상 홍보 2회×4.5백만)	84 (학습자에 대한 지원 강화 2인×12월×3백만, 제도 홍보 2회×6백만)	12	16.7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403	373	373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323	313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5백만×1식, 제도개선 및 위원회 등 운영 5백만원×10회, 자격발급 및 상담 등 3백만원×5명×12개월, 자격증 인쇄 등 5,000원×4,000매×2회) 매뉴얼 개발 등 4백만원×2종)	343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5백만×1식, 제도개선 및 위원회 등 운영 5백만원×10회, 자격발급 및 상담 등 3백만원×5명×12개월, 자격증 인쇄 등 5,000원×4,000매×2회) 매뉴얼 개발 등 4백만원×2종)	-	-
- 평생교육 연수운영	80	60 (평생교육사 전문교육 15백만원×2회,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직무교육 10백만원×3회)	30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직무교육 15백만원×2회)	-	-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338**	**308**	**308**	-	-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93	**263** (행사장 대관료 1식×135백만, 대행사 선정비 1식×108백만, 기타운영비 1식×20백만)	**263** (평생학습정책관 운영 1식×152백만, 차기박람회 개최지 선정 1식×50백만, 기타운영비 1식×61백만)	-	-
- 평생학습대상	45	**45** (평생학습대상 시상금 1식×28백만, 기타운영비 1식×17백만)	**45** (평생학습대상 시상금 1식×28백만, 기타운영비 1식×17백만)	-	-
□ **비목**(합계)	**1,141**	**1,031**	**1,031**	**-**	**-**
○사업출연금(350-02)	1,141	1,031	1,031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부처.교육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개인의 학습이력을 평생학습 계좌제를 기반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

○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학습과정을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성인학습자 계속학습 지원

○ 맞춤형 홍보를 확대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포트폴리오와 학습경험의 초중등학력연계, 학습자의 학습이력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평생교육사 전문성 제고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평생학습기반 확대

※ ('18) 자격체계 및 교육과정 개선 정책연구 → ('19) 관련 법령 개정 → ('20) 자격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 ('21) 개편된 자격체계에 의한 자격 관리 운영

○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체제 마련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통해 평생학습 우수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박람회 기간 중 평생교육 행사 유치를 통해 "평생학습의 달" 형성 및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17년 3회, 19년 4회로 순차적 확대를 통해 찾아가는 평생학습박람회 정례화 추진)

○ 일상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대상을 시상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평생학습 풍토 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4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40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403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38백만원			
'18	1,03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5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73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8백만원	1,03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5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73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8백만원	-
'19	1,05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7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73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8백만원	1,03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5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73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8백만원	△20
'20	1,892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947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630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15백만원	950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25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25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00백만원	△942
'21	1,892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947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630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315백만원	931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20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21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290백만원	△961
'22			922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317백만원 ■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318백만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287백만원	922
연평균 증가율 (%)	10.6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0.31	10.31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4.31	14.31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일반재정지출사업의 예산비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4.31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출연사업으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 10.31억원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 의거 '산업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의 1인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10.31억원 ÷ 0.72억원 = 14.31명 **□ 2018년 고용효과 : 14.3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추진경위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사업 시작년도 : 2009년
- 대통령 공약사항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08.2) :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발표
■ 대통령 업무보고('08.3) :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활성화의 대책으로 평생학습계좌제 제시
■ 국정과제 :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과제 70.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 평생학습계좌제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사업 ('06.8)
※ 7개 지역(경기 광명, 이천, 강원 삼척, 충북 단양, 전남 목포, 순천, 경북 칠곡)
■ 2008 지역인재육성활성화(RHRD) 시범사업 ('08.6 ~ '09.2)
※ 3개 지역(순천, 구미·칠곡·군위, 제주)
■ 2008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08.9 ~ '10.2)
※ 5개 지역(경기도 이천, 대전 대덕구, 부산 사상·연제·진구, 충북 청주, 전북 군산)

-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신설('07.12) 및 동법 개정 ('08.10 ~ '09.4)
※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의 학습계좌 등록과정 평가인정 권한 및 취소의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09.4, '10.12)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1.1)
※ 주요내용 : 평가인정 기준 및 취소, 학습계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11.11)
■ 제23조제5항 신설('13.12.30)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전국 개통('10.10)
- 전국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10~)
- 학업 중단자 및 저학력 소외계층을 위한 초·중등 학력 인정제도 연계('11~)

■ 초·중등 학력인정 다양화 방안 : 검정고시 시험과목 일부 면제
■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 : 기초문해교육 학습과정 이수 인정 연계
■ 방송통신중고 학습경험인정제 : 방송통신중.고 졸업학점 인정 연계

- 학습과정 평가인정 온라인 신청, 평가시스템 개통, 운영('12)
- 유관기관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 국방부, 생산성본부 등 타 부처·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 관리의 편의성. 효율성 등 증대
※ 연계 기관(사업) : 국방부(나라사랑포털), 한국생산성본부(자격개발인증), 방송대(프라임칼리지), EBS(Lang), 중앙교육연수원,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고용노동부(HRD-Net) 등

- 학습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추진

■ 제도 내실화 및 활용 제고를 위한 연구 시행('10~)
■ 고등(국내 대학/대학원) 학력 증명서 첨부시스템 구축('13)
■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다각적 홍보 채널 마련('12~)
■ 산업계 협의체 구성 및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협약 등('1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00. 3월 평생교육법령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제시
- '00년~'07년 평생교육 연수사업 실시(한국교육개발원 업무수행)
- '07. 12. 14.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
- '08년 평생교육 연수사업
  . 사업수행기관 변경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 시범운영
- '09년 평생교육 연수사업 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관리] 편성
- '13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원화 관련 법령 개정(5.22)
- '14.1.1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일원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제1회~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01~'11년)
- 제1회~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12~'18년)

※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부산광역시 BEXCO)

- '04년「제1회 평생학습대상」사업 시작 이후, 개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18년 제15회까지 개인·기관·단체 등에 시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평생교육진흥지원	14.09	14.09	14.09	13.39	13.39	11.41	11.41	10.31	10.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39 (13.39)**			13.39 (13.39)	**13.39 (12.07)**		- (1.32)
'16년	**13.39 (13.39)**			13.39 (13.39)	**13.39 (12.06)**		- (1.33)
'17년	**11.41 (11.41)**			11.41 (11.41)	**11.41 (11.31)**		- (0.1)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41	1,141	1,031	-	1,031	1,031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출연금 1,031백만원 교부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간 시스템 상호 연계 필요 (2016, 예결위)
  - 유관 기관 및 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계좌제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2016, 교문위)
○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16년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HRD-net) 연계 시범 실시 ('16. 6~12월, 총 224건)
  - 2017년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HRD-net)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완료('17.7월)
  -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동영상 신규 제작 완료('17.8월)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뉴질랜드)** 국가자격제도(NQF)에 등록된 학습자의 누적 학습결과를 학습과 고용 등으로 연계하는 자료로 활용

○ **(영국)** 개인학습계좌제 운영, 정부가 직접 예산 지원(1인당 연간 200파운드)

○ **(미국)** 평생학습계좌제법 제정 중이며, 500불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소득공제하는 간접지원 방식 채택

○ **(일본)** 평생학습패스포트 운영(학습비 지원 없이 개인의 학습이력 관리), 개인이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경기 이천)** 평생학습 시민대학 수첩을 도입하여 인정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이천시 센터의 정보시스템에 누적 기록

○ **(전남 순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포인트로 누적하고 시가 운영하는 '정겨운 시민대학'의 학과(교양학과, 직업능력개발학과) 졸업자격 부여를 위한 학사관리 장치로 활용

○ **(부산 사상구)**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계좌제 서포터즈 운영, 각종 직종 채용 시 우선 순위 혜택 부여, 평생학습계좌제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 취.창업 지원 등으로 활용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 10등급 중 성인교육관련 자격은 세 등급 차지, 업무활동의 복잡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각 등급에 필요한 최소 학점을 이수하여 평가받은 후 교육훈련기관이나 국가자격본부에 제출하여 자격 인정

※ 뉴질랜드는 국가주도로 1992년 전국에 통용되는 뉴질랜드 자격체제를 구축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독일)** 교육박람회와 더불어 계속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 전시홍보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및 훈련 워크숍, 우수 프로그램 릴레이 강연회, 학술행사, 계속교육 혁신 대상 수여식 등을 운영

○ **(영국, 호주)** "성인학습자 주간"을 개최하여 평생학습문화진흥행사(대상, 무료상담, 국제 컨퍼런스, 우수사례소개 등) 개최

○ **(일본)** 생애학습축제 개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 **(미국)** 미국 성인계속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으로 AAACE(American Associa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National Award는 성인교육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각 분야의 학자, 지식인 등에게 상을 수여

○ **(카타르)** WISE 재단 주관으로 전 세계를 대상 지역사회 또는 평생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 사업(프로젝트)들을 시상하여 우수한 교육적 실천 사례들을 발굴 및 시상하는 The WISE(The World Innovation Summit for Education) Awards 운영

○ **(영국)** NIACE(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England and Wales) 주관으로 매년 성인학습자주간(ADULT LEARNERS' WEEK)을 운영하며 행사주간중 시상식 진행. 지역펀드 및 지역재단과 연계하여 3개 부분에 걸쳐 약 90여명에게 상을 수여

(6) 사업추진절차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계좌제 운영	⇒	사업결과 및 정산 승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 및 연수]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자격제도 및 연수 운영	⇒	사업결과 및 정산 승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대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박람회 개최 및 대상 운영	⇒	사업결과 및 정산 승인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습계좌 개설 인원 수 (단위: 명)	목표	신규	16,000	16,800	12,841	삭제	-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습자 수 합계 (당해연도 신규 학습계좌 개설 인원 수)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계좌 개설 학습자 DB 확인
	실적	-	8,055	12,549	-	-			
	달성도	-	-	74.7	-	-			
학습이력 등록건수 (단위: 건)	목표	-	-	신규	42,876	45,000	최근 3년('16~'18)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자의 평균 학습이력 등록 건수(45,470)를 고려할 때 '18년 목표의 5% 상향치인 45,000로 설정 '16) 44,895/ '17) 48,641/ '18) 42,876(목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습자 등록한 학습이력 건수 합계 (당해연도 신규 학습이력등록건수)	학습이력관리시스템 학습이력등록 DB 확인
	실적	-	-	-	-	-			
	달성도	-	-	-	-	-			
평생교육 연수사업 참여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신규	76	78	82	삭제	-	교육내용, 교강사, 교육성과 등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평생교육사 보수교육과정,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등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적	-	76	85.2	-	-			
	달성도	-	100	109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사업 주요성과
○ (참고2) 평생학습계좌제 주요 통계
○ (참고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요
○ (참고4)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및 배치 현황

참고 1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사업 주요성과

□ 학습자 참여 및 교육기관 학습과정 등록 확대

○ **(학습계좌 개설)** '10년 977명 → '17년 66,592명
○ **(학습과정 등록)** '10년 878개 → '17년 21,630개

('17.12.31. 기준 / 단위 : 명,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학습계좌 개설자	977	1,490	2,153	15,709	11,240	14,419	8,055	12,549	**66,592**
평가인정학습과정	878	433	458	655	3,427	4,708	5,864	5,207	**2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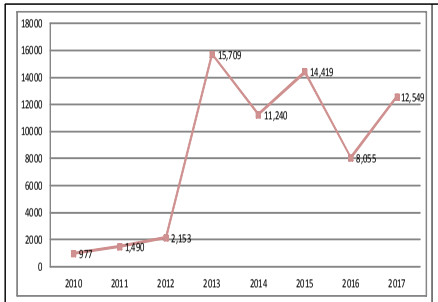

[학습계좌 개설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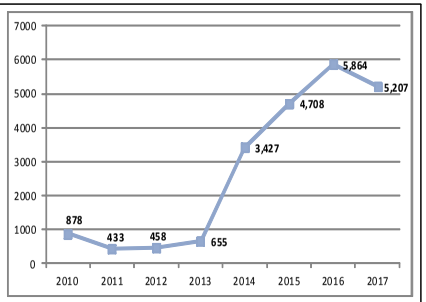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 협약기관 및 유관사업 연계 확대

○ 협약기관 및 유관사업(제도)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 자격이력 등의 연계 확대 및 학습이력 관리의 편의성 증대

연도	연계 내용
2010	NEIS(학력취득정보)
2011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평가면제), 방송통신중고 학습경험인정제(학습이력)성인학습자 초등학력인정체제(학습이력), 검정고시(학습이력)
2012	독학학위제(합격정보), 학점은행제(학습이력), 중앙교육연수원(연수/학습이력), EBSLang(학습과정/이력)
2013	LG전자(이력증명서), 한국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학습이력)
2014	늘배움(학습이력), 학부모On누리포털(학습과정/이력), 한국생산성본부(자격이력), 국방부 나라사랑포털(학습과정/이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습과정/이력)
2015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자격이력),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학습과정/이력), K-MOOC(시스템 로그인 연동), 한국저작권위원회(학습이력)
2016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연수이력), 평생학습단과대학 지원사업(학습과정/이력),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교원연수이력), K-MOOC(학습이력), 학점은행제(학위취득정보), 독학학위제(학위취득정보), 행복학습센터(학습이력), (재)아침편지 문화재단(학습이력)
201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보망(HRD-Net)(학습이력), 국립특수교육원(학습이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팟(유사서비스 제공), 한국정보화진흥원(연계협약 체결)

□ 학습이력의 사회적 활용 제고

○ **(학습이력 등록)** '10년 3,615건 → '17년 215,061건

('17.12.31. 기준 / 단위 : 건)

구분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	합계
2010년	741	980	422	647	825	3,615
2011년	764	803	359	561	409	2,896
2012년	946	753	576	544	663	3,482
2013년	11,013	3,583	2,402	13,402	3,524	33,924
2014년	4,013	2,901	1,612	25,539	6,659	40,724
2015년	4,842	2,857	8,450	13,170	7,565	36,884
2016년	2,947	3,483	2,283	30,669	5,513	44,895
2017년	3,120	3,017	3,185	32,709	6,610	48,641
총계	**28,386**	**18,377**	**19,289**	**117,241**	**31,768**	**215,061**

[학습이력 등록 건수]

* 기타 :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및 기고, 특허, 해외경험/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 및 동아리 등

○ **(학력 연계)**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를 통한 초·중등 학력 연계

※ 9차('16.11) : 437개 학습과정 연계, 10차('17.12) : 235개 학습과정 연계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 **(시스템 접속)** '12년 666회 → '17년 17,161회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10년 387건 → '17년 21,632건

('17.12.31 기준 / 단위 : 회,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시스템 월 평균 접속	-	-	666	3,900	3,356	4,352	2,072	2,815	**17,161**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387	574	745	6,840	3,493	5,714	921	2,958	**21,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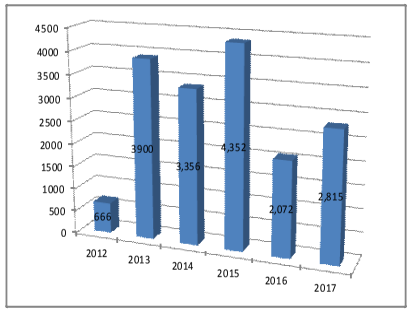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 평균 접속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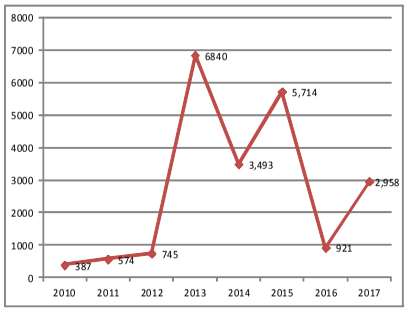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건수]

참고 2 평생학습계좌제 주요 통계

□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 현황

('17.12.31. 기준 / 단위 : 명, 건)

연도	학습계좌 개설	학습이력 등록 합계	구분				
			학력	자격	경력	평생학습이수	기타*
2010	977	3,615	741	980	422	647	825
2011	1,490	2,896	764	803	359	561	409
2012	2,153	3,482	946	753	576	544	663
2013	15,709	33,924	11,013	3,583	2,402	13,402	3,524
2014	11,240	40,724	4,013	2,901	1,612	25,539	6,659
2015	14,419	36,884	4,842	2,857	8,450	13,170	7,565
2016	8,055	44,895	2,947	3,483	2,283	30,669	5,513
2017	12,549	48,641	3,120	3,017	3,185	32,709	6,610
합계	**66,592**	**215,061**	**28,386**	**18,377**	**19,289**	**117,241**	**31,768**

* 기타 : 자원봉사활동, 수상, 논문 및 기고, 특허, 해외경험/어학연수, 외국어, 독서, 취미 및 동아리 등

□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

('17.12.31. 기준, 단위 :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인정 학습과정	878	433	458	655	3,427	4,708	5,864	5,207

□ 초·중·고 학력 연계 학습과정 현황

(단위 : 개, 누적)

검정고시 면제 과목	학력수준			합계
	초졸	중졸	고졸	
가정과학	-	-	125	125
공업기술	-	-	143	143
과학	15	25	80	120
기술·가정	5	284	1,918	2207
기업경영	-	-	34	34
농업과학	-	-	45	45
도덕	7	20	184	211
미술	106	516	1,182	1804
사회	26	134	446	606
실과	51	-	-	51
영어	101	-	-	101
음악	47	133	186	366
일본어	-	-	30	30
정보사회와 컴퓨터	-	-	210	210
중국어	-	-	24	24
체육	25	130	185	340
한국사	-	-	85	85
한문	-	-	29	29
해양과학	-	-	14	14
총 계	383	1,242	4,920	6,545

참고 3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요

□ 운영목적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의 양성

※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이후,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전환

□ 평생교육사 취득과정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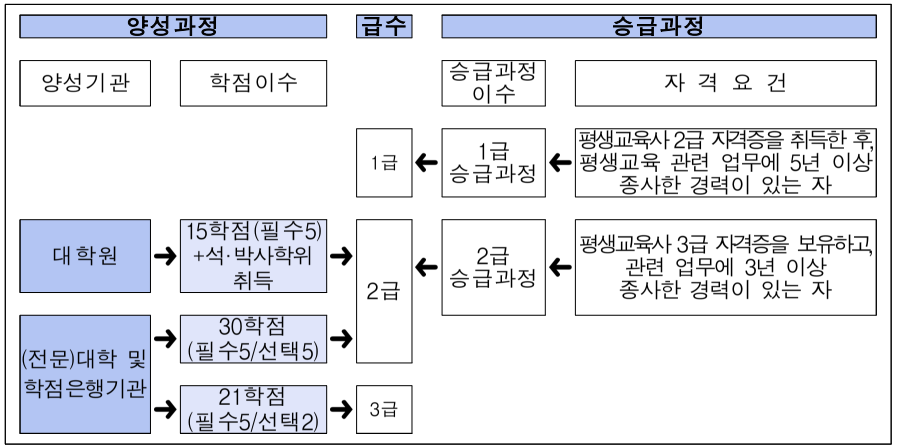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배치대상	배치기준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2명 이상 (1급 또는 2급 1명 포함)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명 이상 (1급 또는 2급)
4. 법 제30조~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참고 4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및 배치 현황

□ 연도별 평생교육사 양성(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연도	1급	2급	3 급	총 계	비 고
1986~1999년	-	21,007	2,008	23,015	(구)사회교육 전문요원
2000년	22	1,548	344	1,914	평생교육사
2001년	25	2,878	513	3,416	
2002년	38	2,957	636	3,631	
2003년	31	2,982	601	3,614	
2004년	32	2,776	551	3,359	
2005년	26	3,734	490	4,250	
2006년	33	3,735	143	3,911	
2007년	16	4,566	316	4,898	
2008년	33	5,448	273	5,754	
2009년	57	5,447	260	5,764	
2010년	55	6,697	383	7,135	
2011년	30	6,808	221	7,059	
2012년	70	7,900	183	8,153	
2013년	58	7,633	156	7,847	
2014년	42	7,791	113	7,946	
2015년	44	8,278	82	8,404	
2016년	38	6,923	81	7,042	
2017년	43	6,386	67	6,496	
총 계	**693**	**115,494**	**7,421**	**123,608**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

□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기준 : '17. 5월 기준, 단위 : 개, %)

기관유형		총 기관수	평생교육사 배치기관수	배치비율
총계		**4,032**	**3,150**	**78.1**
학교 부설	초·중등학교부설	5	2	40.0
	대학(원)부설	412	328	79.6
	소계	417	330	79.1
사업장부설		424	405	95.5
언론기관부설		707	535	75.7
지식·인력개발형태		579	434	75.0
시민사회단체부설		515	385	74.8
원격형태		949	710	74.8
평생학습관		424	334	78.8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17	100.0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평생교육통계자료

[301]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281	1,084	1,044	△40	△3.7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1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박봉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평생교육기관의 통계DB 구축 및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평생교육정책 수립 시 활용 ○ OECD 국가들의 성인역량 수준과 직무에서의 활용 정도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참여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사업기간	'0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평생교육통계조사) 전국의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4,1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만25~79세의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표본조사('18년 약 11,000명) ○ (OECD국제성인역량조사) 16-65세 성인 6,667명(1주기 조사)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지원조건	출연금, 국제분담금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 303백만원
-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4,1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산출내역 : 144백만원(통계조사 및 검증 1식×144백만원), 27백만원(통계 자료집 발간 9백만원×3종), 132백만원 인건비(44백만원×3명)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 268백만원
- 조사장비 노후화로 인한 오류발생으로 시스템 신규도입
- '17년 1단계(4.9억) 및 '18년 2단계 장비 교체(2억) 완료에 따른 '19년 3단계 교체 ※ 1단계(WAS, DB서버 도입), 2단계(WEB서버), 3단계(스토리지, 백업시스템)
- 산출내역 : 125백만원(하드웨어 도입 1식×125백만원), 69백만원(1·2단계 하드웨어 신규장비 유지보수 690백만원×10%), 74백만원(기존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1식×74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334백만원
-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양상 및 참여성과, 학습활동 등 평생학습 실태를 진단하여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산출내역 : 240백만원(평생학습 개인실태 조사비 25,000원×9,600명), 50백만원(전문가 협의회 11회×2백만원, 자료집 발간 13백만원, 통신비 등 제경비 15백만원), 44백만원(인건비 1명×44백만원)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 139백만원
- OECD 국가들의 성인역량 수준과 직무에서의 활용정도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사업 참여
- PIACC 2주기 조사('18~'23)에 따른 국제분담금 증액, 2주기 조사 문항개편,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시행에 따른 국내사업비 증액
- 산출내역 : 124백만원(OECD 국제분담금 124백만원), 15백만원(국제회의 참석 15백만원)

※ '19년 예상 분담금액 : 190,097유로(고용부와 공동부담)
190,097/2*1,300 '18.4.10.기준) ≒ 12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1,084	1,044
■ 평생교육통계조사	(303) 평생교육통계 조사실시 및 검증, 자료집발간 등	(303) 평생교육통계 조사실시 및 검증, 자료집발간 등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8) 신규 장비 일부 도입 등	(268) 신규 장비 일부 도입 등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371) 조사단가 25,000원 (표본규모 11,360명) 등	(334) 조사단가 25,000원 (표본규모 9,600명) 등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27) 국제 분담금 (15)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124) 국제분담금 (15) 국제회의

□ 지원 필요성

○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과 성과 평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

- 평생교육분야의 교육환경 및 인적자원 전반에 대한 국가수준의 유일한 통계조사로 평생교육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도 인재양성 관련 통계조사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 국제 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PIAAC*)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우리나라 성인능력 수준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를 실시 필요

*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은 OECD에서 '07년 이후 주관하고 있는 계속사업, 우리나라는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2부처에서 국제분담금 등을 공동부담하면서 사업 운영

- 성인 능력의 국가 간 평가·비교를 통해 국가별 인적자원의 총량과 질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장단점 파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 통계 구축	**1,281**	**1,084**	**1,044**	**△40**	**△3.7**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0	**303** 조사 및 검증 (155백만×1식) 자료집 발간 (9백만×2종) 인건비 (43.3백만×3명)	**303** 조사 및 검증 (144백만×1식) 자료집 발간 (9백만×3종) 인건비 (44백만×3명)	-	-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553	**268**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268백만×1식)	**268** 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 (268백만×1식)	-	-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0	**371** 실태조사 (25만원×11,360명) 자료검증 및 자료집발간 (44백만×1식) 인건비 (43백만×1명)	**334** 실태조사 (25만원×9,600명) 자료검증 및 자료집발간 (50백만×1식) 인건비 (44백만×1명)	**△37**	**△10**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PIAAC)	58	**142** 국제회의 참석 (15백만×1회) 국제분담금 (127백만×1회)	**139** 국제회의 참석 (15백만×1회) 국제분담금 (124백만×1회)	**△3**	**△2.1**
□ 비목(합계)	**1,281**	**1,084**	**1,044**	**△40**	**△3.7**
○ 일반출연금(350-02)	1,238	957	920	△37	△10
○ 국제분담금(340-02)	43	127	124	△3	△2.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 관련 현황에 대한 기본통계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고, 정확한 성과 평가의 객관적 지표 제공

○ 평생교육 참여현황 및 개인의 사회적 성과지표를 조사하여 국가수준 평생교육의 수준 제시 및 국가신인도 제고

○ PIAAC 2주기 조사과정('18~'23)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성인역량 수준 측정 및 국가 간 비교 및 공동 연구 수행

※ 2주기 데이터는 '18-'22년 조사하여, '23년 발표 예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281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0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553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0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58백만원			
'18	1,08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3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8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1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42백만원	1,08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3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68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1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42백만원	-
'19	1,180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6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342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90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42백만원	1,04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0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553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34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39백만원	△136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0	2,12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420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680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780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244백만원	999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300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205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70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24백만원	△1,125
'21	2,124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420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680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780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244백만원	979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298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95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66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20백만원	△1,145
'22			969	■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295백만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92백만원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362백만원 ■ OECD 국제성인 역량조사 120백만원	969
연평균 증가율 (%)	10.6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9.57</td><td>9.20</td><td>-</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3</td><td>12.8</td><td>-</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9</td><td>13.9</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해당 사업은 일반재정지출사업의 예산비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2.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출연사업으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 9.20억원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 의거 '산업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의 1인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9.20억원 ÷ 0.72억원 = 12.8명

□ 2018년 고용효과 : 13.3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 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통계청 승인통계조사 : 제334006호(평생교육통계조사), 제334009호(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추진경위

【평생교육통계조사】

- '00~'01 : 평생교육통계 조사 필요성 제기
- '02~'03 :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수행
- '04~'05 : 평생교육통계조사 프로세스 개발
- '06 : 평생교육통계 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조사 실시
- '07~'18 : 평생교육기관통계조사 및 평생학습개인 실태조사 실시
- '18 : 2주기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방안 연구 수행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사업】

- '07 : PIAAC-JRA(직무요구분석법) 사업 준비단계 참여
- '08 : JRA예비조사(초등교사 103명, 일반성인 501명) 실시
- '09 : 교육부-고용노동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예비조사 문항 개발 및 표본추출
- '10 : 현장 예비조사(3,000가구 접촉 1,700개국 완료) 실시, 본조사 준비
- '11~'12 : PIAAC 본조사 실행(8,830가구)
- '13 : 국제보고서, 조사 원자료 및 국내심층보고서 발표

- '14 : OECD 심층분석보고서 검토 및 번역자료 발간, PIAAC Korea 홈페이지 개편
- '15 : '한국-OECD 공동 컨퍼런스' 개최, PIAAC 2주기 배경 설문 및 직접평가 개편 관련 논의 참여
- '16 : OECD 심층분석 보고서 의견 개진, Education and Skills Online 활용 타당성 검토, PIAAC 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확산 활동
- '17 : PIAAC 2주기 조사 수리력 평가 및 문제해결력 모듈 프레임 개발 및 배경설문 및 조사방법 개편 논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8.86	8.86	8.86	9.42	9.42	12.81	12.81	10.84	10.8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86** **(7.61)**			8.86 (7.61)	**8.05** **(7.61)**		0.81 (-)
'16년	**9.42** **(8.77)**			9.42 (8.77)	**9.19** **(8.76)**		0.23 (0.1)
'17년	**12.81** **(12.38)**			12.81 (12.38)	**12.81** **(12.38)**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281	1,281	1,084	-	1,084	1,082	99.8%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사업출연금 957백만원 교부, OECD 국제분담금 125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사회 교육행정상의 기초자료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관련 기본사항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평생학습 기관 정보 수집에 초점, 평생교육관련 기관별로 통계조사를 별도로 시행하여 기관의 기초정보, 프로그램 정보 등을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조사

※ 일본 평생교육통계조사 종류 : 지정통계조사(사회교육행정조사, 공민관조사, 도서관조사, 박물관조사, 청소년교육시설조사, 부인교육시설조사, 사회체육시설조사등), 승인통계조사(박물관유사시설조사, 민간체육시설조사, 문화회관조사, 생애학습 사회교육관계법인조사, 문화센터조사등)

○ **(핀란드,** Adult Education Survey**)** 핀란드 통계청에서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성인교육조사(Adult Education Survey) 수행, 전체 인구(약 524만명)중 약 5,000명 표본크기로 18~64세 영주권자 대상 개인조사

○ **(스웨덴,** Swedish Survey of Staff Training**)** 스웨덴 통계청에서 노동력 인구조사 수행, 6개월 주기 조사 시행하며 CATI 방식으로 자료수집, 전체인구(약 905만명) 중 13,000명 표본크기로 16~64세 소득이 있는 취업자 대상 가구 조사

○ **(스위스,** Swiss Survery on CET**)**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서 노동력인구조사 수행, 매년 조사 시행하며 CATI 방식으로 자료수집, 전체 인구(약 758만명) 중 16,000~18,000명 표본크기로 15~74세 스위스 거주자 대상 가구 조사

(6) 사업추진절차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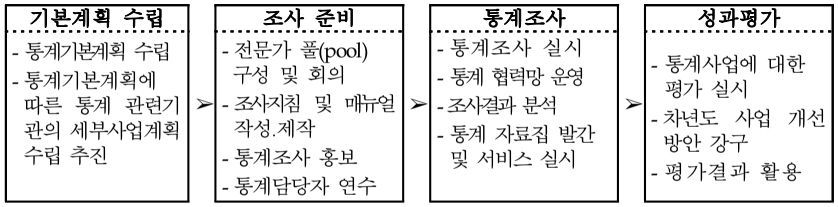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생교육통계 만족도 조사 (단위:점)	목표	75.0	75.4	75.9	76.1	76.5	'18년도 목표치 대비 0.4점 상향 조정하여 76.5점을 목표치로 설정	평생교육정책 담당자, 평생교육통계 담당자,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통계자료 요청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통계 활용 만족도와 지속활용 의향 정도 조사 -리커트 5점 척도 후 매우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 25점, 매우불만족 0점으로 환산 -만족도=(평생교육통계 활용 만족도+지속 활용의향 정도)/2	평생교육통계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생교육통계 만족도 조사
	실적	73.7	75.6	72.0	72.9	-			
	달성도	98.3	100.3	94.9	95.8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개요

○ (참고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요

○ (참고3) 평생교육통계 주요지표

참고 1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개요

< 평생교육통계 조사 개요 >

○ **조사기준일** : 매년 5월 1일

○ **조사대상** : 교육청관할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등

.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초·중등학교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 및 지정 평생학습관, 지자체 설치 평생학습관),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4,170개('18년 기준) 기관 전수조사

○ **조사항목** : 기관개황,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 평생교육 일반 현황 전수조사

. 기관개황(작성자, 기관현황, 기관위치, 설립현황) 관련 32개 항목

. 프로그램 및 학습자 관련 17개 항목

. 교·강사 관련 8개 항목, 사무직원 관련 9개 항목

○ **조사방법** : 전수조사

○ **조사체계 및 방법**

· 교육청관할 : 평생교육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KEDI

·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또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KEDI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 대학본부 → KEDI

○ **주요 추진일정**

사전조사(2월~3월) → 담당자 교육(4월) → 조사 실시(5월) → 자료 검증(6월~9월) →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발간(10월~11월) → 평생교육통계조사 결과 발표(11월)

참고 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개요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사업 개요 〉

○ **목적**
- 평생학습사회 성숙도 가늠을 위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양상, 불참요인, 학습수요, 학습의 활동패턴 등의 이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실태 등 현황 파악 및 진단
-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및 정책의 성과평가 및 방향의 정량적 기초자료로 활용
- 공급관점의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대비되는 수요관점의 개인표집조사 실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사 당시 국내 거주하는 만 25~79세 이하 성인남녀

○ **조사 기준일** : 전년도 7월 1일 ~ 당해년도 6월 30일

○ **조사일시**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

○ **표본 크기** : 약 11,000명 예정('18년 기준)

○ **표본 추출** : 서울 및 광역시(8개 지역)와 기타 도 지역을 동지역 및 읍면지역으로 나눈 행정구역별로 층화표집 실시(1차 추출단위: 조사구, 2차 추출단위: 조사구내의 거처명부 순으로 구분된 cluster, 3차 추출단위: 가구)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 개별 면접조사

○ **조사 내용** : 성인의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등에 관한 활동,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등

○ **주요 추진일정** : 조사 준비(2월~4월) → 용역업체 선정(3월~5월) → 표본추출 및 면접원 교육(5월~6월) → 본조사 실시(7월~8월) → 자료검증 및 재확인 조사(9월~11월) → 자료집 발간(10월~12월) →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결과 발표(12월)

※ 학습범주의 정의
- 평생학습 : 형식이나 목적, 비용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교육훈련
- 형식교육 :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 비형식교육: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통해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함 (예;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 및 인터넷 강의, 학습동아리, 개인교습 등)
- 직업관련(job-related) 비형식교육: 현재 또는 미래의 직업을 위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며, 소득을 증가시키고, 승진 기회 향상을 위한 참여 등 직업적 의도를 지닌 교육(훈련).학습 활동을 말함

참고 3 평생교육통계 주요지표

1. 평생교육 기관수

(단위 : 개)

시설유형	기관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2,221	2,620	2,807	3,213	3,591	3,768	3,965	4,342	4,144	4,153	4,032
초·중등 학교부설	9	12	11	12	11	10	8	9	9	6	5
대학부설	375	378	380	388	397	403	405	402	403	406	412
원격형태	502	611	674	781	853	887	876	883	903	927	949
사업장 부설	207	244	268	298	328	357	375	392	414	426	424
시민사회 단체부설	166	244	275	386	461	495	524	556	549	544	515
언론기관 부설	78	92	107	203	376	494	703	1,038	882	792	707
지식·인력 개발형태	570	681	713	761	774	727	687	669	626	608	579
평생 학습관	314	358	379	384	391	395	387	393	358	444	42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	-	-	-	-	-	-	-	17

※ 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대상으로 추가됨

2. 평생교육 프로그램수

(단위 : 개)

시설유형	프로그램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00,989	107,349	136,123	160,249	182,844	178,971	180,843	205,546	211,193	212,339	214,413
초·중등 학교부설	34	91	95	109	54	59	32	44	47	57	73
대학부설	18,318	19,416	24,037	25,568	25,799	26,920	26,952	28,098	28,685	29,532	28,882
원격형태	14,571	29,083	38,797	47,702	60,789	48,162	45,247	58,951	62,517	63,602	70,272
사업장 부설	37,593	30,783	40,019	50,882	55,599	61,833	63,348	65,449	72,519	70,511	65,779
시민사회 단체부설	2,651	2,742	3,116	3,922	5,234	5,497	5,350	7,434	6,375	6,206	4,970
언론기관 부설	4,149	2,524	3,177	3,853	4,621	4,520	6,485	10,914	5,293	4,624	4,557
지식·인력 개발형태	12,565	11,689	13,300	13,158	13,012	13,108	12,574	12,126	12,898	10,824	10,429
평생 학습관	11,108	11,021	13,582	15,055	17,736	18,872	20,855	22,530	22,859	26,983	27,774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	-	-	-	-	-	-	-	1,677

※ 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대상으로 추가됨

3. 평생교육 학습자수

(단위 : 명)

시설유형	학습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0,124,305	11,403,373	22,454,539	27,026,042	28,920,780	17,618,495	18,260,301	12,919,836	11,982,654	11,336,564	11,897,236
초·중등 학교부설	1,222	6,236	2,193	3,283	2,035	1,390	388	1,078	1,094	1,337	1,321
대학부설	523,439	615,923	758,586	883,196	856,432	845,860	833,176	869,789	824,011	902,600	882,884
원격형태	7,964,106	8,425,854	19,083,102	23,123,612	24,972,426	13,669,575	13,799,283	8,670,272	8,043,523	7,304,497	8,013,061
사업장 부설	885,271	1,095,290	1,169,182	1,236,890	1,187,437	1,036,910	1,197,333	1,150,763	1,179,153	1,206,895	1,160,749
시민사회 단체부설	64,973	109,582	132,987	169,401	178,937	186,712	170,032	196,724	140,058	156,000	116,438
언론기관 부설	96,184	113,747	126,862	119,007	146,959	134,454	225,355	417,086	188,735	151,101	151,703
지식·인력 개발형태	170,418	562,005	633,724	768,736	833,343	840,451	869,497	813,185	767,210	664,509	630,856
평생 학습관	418,692	474,736	547,903	721,917	743,211	903,143	1,165,237	800,939	838,870	949,625	911,650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	-	-	-	-	-	-	-	28,574

※ 17년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대상으로 추가됨

4. 평생교육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시설구분	계	학력 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총계	164,160	20,967	634	67,470	22,593	52,297	199
초·중등학교부설	73	-	6	6	51	8	2
대학(원)부설	27,688	14,223	24	4,645	2,661	6,108	27
원격형태	65,656	5,126	7	53,595	6,347	581	-
사업장부설	34,105	45	1	996	3,389	29,672	2
시민사회단체부설	3,239	134	115	974	572	1,419	25
언론기관부설	3,913	71	21	1,411	658	1,743	9
지식·인력개발형태	8,583	1,237	25	3,373	897	3,036	15
평생학습관	20,015	131	432	2,301	7,714	9,332	105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888	-	3	169	304	398	14

※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수업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수업시수가 8시간 미만인 단기성 프로그램은 총합계 수준에서만 조사되어 본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5. 평생교육 수요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시설구분	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
총계	164,160	21,895	4,517	125,234	2,057	10,457
초·중등학교부설	73	46	5	15	3	4
대학(원)부설	27,688	64	1,507	24,457	81	1,579
원격형태	65,656	90	123	62,094	19	3,330
사업장부설	34,105	15,043	635	15,331	116	2,980
시민사회단체부설	3,239	187	60	2,407	96	489
언론기관부설	3,913	552	89	2,892	35	345
지식·인력개발형태	8,583	1,030	421	6,545	50	537
평생학습관	20,015	4,867	1,675	10,641	1,645	1,187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888	16	2	852	12	6

※ 프로그램의 상세정보는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수업시수가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수업시수가 8시간 미만인 단기성 프로그램은 총합계 수준에서만 조사되어 본 결과에 포함하지 않음

※ 어린이 : 만 8세 이하 / 청소년 : 만 9세-만 24세(청소년기본법에 따름) / 성인 : 만 25세-만 64세 / 노인 : 만 65세 이상 / 통합 : 연령구분 없음

6.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pt)

구분		평생학습 참여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증감)
총계		29.8	26.4	28.0	30.5	32.4	35.6	30.2	36.8	40.6	35.7	35.8(▲0.1)
성별	남	28.9	24.4	25.5	28.7	30.7	31.8	29.1	37.5	41.3	34.4	34.4(-)
	여	30.7	28.4	30.5	32.3	34.0	39.4	31.3	36.1	39.8	37.1	37.2(▲0.1)
연령	25-34세	36.3	32.7	33.1	37.3	42.7	39.3	35.9	43.5	48.0	46.6	41.8(▽4.8)
	35-44세	29.2	27.5	29.4	33.1	35.7	35.8	31.9	38.9	42.2	39.1	39.2(▲0.1)
	45-54세	26.5	21.3	23.7	25.2	26.5	34.7	26.3	33.1	37.3	31.6	34.0(▲2.4)
	55-64세	23.9	20.8	22.4	21.2	21.0	31.5	25.4	29.2	32.1	26.5	28.9(▲2.4)
학력	중졸이하	16.8	14.9	16.7	19.3	16.9	22.0	19.7	22.3	24.3	20.0	20.5(▲0.5)
	고졸	24.5	22.1	21.8	25.2	25.2	33.6	26.2	29.6	33.8	29.1	28.8(▽0.3)
	대졸이하	39.4	34.3	37.1	38.4	44.9	40.9	37.2	48.4	50.4	45.3	44.3(▽1.0)

※ 평생학습 참여율(%) = (형식교육참여자+비형식교육참여자-동시참여자) / (만 25세-만 64세 한국의 성인)×100%

[303]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운영	-	1,314	3,532	**2,218**	**168.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1 - 303
* 담 당 자 : 장애인평생교육과장(김종무), 교육연구사(박해룡)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및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연계체제 구축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기간	'18～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특수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3,532백만원('19)**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3,451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조사 : 27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 및 중장기 계획 연구) 조사연구('18) 결과를 반영한 **조사표 최종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18)조사연구(1개 시도) → ('19)조사연구(17개 시도) → ('20)본조사 → ('21)후속조치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표준화 지원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표준안 수립**

· 산출내역 : 27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연구(150백만) 및 중장기 계획 연구(50백만) : 2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표준화 지원 연구 : 7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1,108백만원

· 장애인의 평생교육 격차 해소, **장애유형을 고려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연차적 개발 및 온라인 보급**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 유형·수준을 고려한** 평생교육 내용, 방법,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개발 유형(4종) : 시각, 청각, 지체, 중도·중복

※ 개발 내용 : ('18)일상생활적응 → ('19)기초문해 → ('20)학력보완 → ('21)직업능력 향상 → ('22)인문교양 → ('23)문화예술 → ('24)시민참여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보급)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관·시설 대상 교재 확대 보급

※ 개발 유형(4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인쇄물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교재 보급 수단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변환·제작**

· 산출내역 : 1,108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0백만원(4종×50백만)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 개발 : 808백만원(4종×202백만)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100백만원(1종×100백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 200백만원

·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평생교육과정 개발**의 연차적 추진

※ 개발내용 : ('18)지역사회 → ('19)평생교육 6대 영역 → ('20)대상별 → ('21)기관별

· 산출내역 : 200백만원(1종×200백만)

-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 31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인력 연수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의 **장애이해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연수대상 : 평생교육 시설장·평생교육사, 교·강사, 담당자 등 관계자 등

· 산출내역 : 31백만원(4회×7.8백만)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 142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세미나 및 협의회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최신 정보 및 연구 동향 공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협의회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수단 다양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교류 체계 구축, 장애당사자에 대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의 평생교육정보 수집 방법으로 '동료의 소개'가 37%', 복지시설이 33.7%로 조사됨에 따라 정보 제공 수단의 다양화 및 확대 필요

·산출내역 : 142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세미나 및 협의회 운영 : 3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시스템 구축 : 112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지원 : 1,7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표준화** 유도,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발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등의 운영 모델 보급·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및 교·강사 대상 시·도별 시범 운영

· 산출내역 : 1,700백만원(17개 시·도×100백만원)

ㅇ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 81백만원

□ **추진 근거(평생교육법 시행령)**
ㅇ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및 장애인 편의지원 강화를 위한 시설·물품 확보

· 산출내역 : 81백만원

· 장애인 편의제공 보조기기 등 물품 구입 : 31백만원(20종)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 5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1,314	3,532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1,181백만원 - 현황 조사연구 100백만 - 프로그램 4종, 교재·교구 4종 개발 800백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 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31백만 -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	○평생교육 지원: 3,451백만원 - 조사 1건, 연구 1건 270백만 - 프로그램 4종, 교재·교구 4종, 콘텐츠 1건 1,108백만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1종 개발 200백만 - 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31백만 - 연계체제구축 142백만 - 기관·시설지원 1,700백만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센터 운영: 133백만 - 자산취득 31백만 - 건설비 102백만	○센터 운영: 81백만 - 자산취득 31백만 - 운영 50백만

□ **지원 필요성**

ㅇ **(평생교육법 개정, '17.5. 시행)** 국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책무성 강화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18.)

ㅇ **(국정과제 추진)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및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세부 이행과제로 추진

ㅇ **(장애인 교육격차 해소)**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의 **56%인 140만여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 심각한 학력소외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 장애인 학력수준(2014 장애인 실태조사) : 중졸이하 56.6%, 무학 11.6%

- 특히,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인력 지원 필요)**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지원 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함에 따라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	**1,314**	**3,532**	**2,218**	**168.1**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181 ·조사1건 100백만 ·프로그램 800백만 ·발달교육과정 1건 200백만 ·연수1건 31백만 ·세미나 50백만	3,451 ·조사,연구 270백만 ·프로그램 3건 1,108백만 ·발달교육과정 1건 200백만 ·연수1건 31백만 ·연계구축 142백만 ·기관지원1,700백만	2,270	192.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133 .물품구입 31백만 .건설비 102백만	81 .물품구입 31백만 .운영 50백만	△52	△39.1
□ **비목**(합계)		**1,314**	**3,532**	**2,218**	**168.1**
· 일반수용비(210-01)		107	167	60	56.1
· 특근매식비(210-05)		1	2	1	100
· 임차료(210-07)		2	5	3	150
· 재료비(210-11)		1		△1	순감
· 국내여비(220-01)		8	8	-	-
· 사업추진비(240-01)		2	2	-	-
· 일반연구비(260-01)		1,060	3,317	2,257	212.9
· 시설설계비(420-02)		5		△5	순감
· 시설공사비(420-03)		97		△97	순감
· 자산취득비(430-01)		31	31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증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반 조성·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8	1,314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1,181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0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 ○ 센터 운영 : 133백만	1,314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1,181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0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 ○ 센터 운영 : 133백만	-
'19	1,314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1,181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0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 ○ 센터 운영 : 133백만	3,532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3,451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27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1,108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142백만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1,700백만 ○ 센터 운영 : 81백만	2,218
'20	2,365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2,244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95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1,298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6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127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182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82백만 ○ 센터 운영 : 121백만	3,020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2,940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6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1,700백만 ○ 센터 운영 : 80백만	655
'21	2,365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2,244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195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1,298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6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127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182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82백만 ○ 센터 운영 : 121백만	3,111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3,031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25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50백만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1,700백만 ○ 센터 운영 : 80백만	746
'22			3,204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3,123백만 -평생교육 현황 조사: 250백만 -평생교육 프로그램,교재·교구 800백만 -발달장애 평생교육과정 개발 200백만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개발 31백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 142백만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 1,700백만 ○ 센터 운영 : 81백만	3,204
연평균 증가율 (%)	21.6		25.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둔다.
>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1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 ②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 ○국정과제 51. [2](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2018. 2., 교육부)

> 1-[2]-나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
>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시·도 간 분담체계 구축
> ·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

○ 추진경위

- (법령) 평생교육법 개정(' 16.5.29.) 및 시행령 개정('17.5.29)
- (예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18. 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								13.14	13.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314		1,314	1,287	98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집행현황

■ 조달 낙찰 차액 발생(27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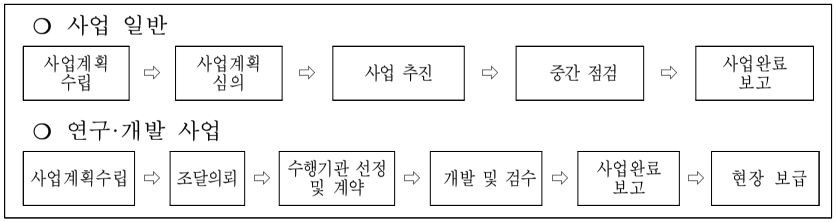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요자 만족도(단위:점)	목표	-	-	-	65	66	전년도 목표치가 대비 1점 상향	(5점척도 해당점수×응답자 수의 합/전체 응답자 수)/5×100	수혜자 및 관련 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30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391	2,509	**118**	**4.9**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1 - 304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임동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실질적 제공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저소득층 5,000여명 대상 연간 최대 35만원 지원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1,691백만원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및 학력취득목적 외 교육(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참여 비용 지원

▪ 산출내역 : 1,691백만원(5,000명×최대 35만원 내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818백만원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축 : 628백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전산시스템 대여(2/5년차) : 152백만원×1식

▪ 바우처 전산인프라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 140백만원×1식

※ 실시간 자격확인 서비스 고도화(20백만원), 문서보안을 위한 EDMS 도입(40백만원), 부정사용 추적시스템 도입(80백만원)

▪ 바우처 콜센터 운영 : 250백만원×1식

▪ 개인정보영향평가 : 86백만원×1식

○ 사업관리비 : 190백만원

▪ 바우처 관계자연수 및 매뉴얼 제작 : 65백만원×1식

▪ 사업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단 운영 : 125백만원×1식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391	2,509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1,691백만원)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연간 최대 35만원 지원	(1,691백만원)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연간 최대 35만원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700백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업관리비	(818백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보완 및 사업관리비

□ 지원 필요성

○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

- 특히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성인교육 영역에서의 국가 책무 강화 필요

○ 잠재적 바우처 수요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규모를 고려, 바우처 지원규모의 장기적 확대 필요

※ ('18) 총 5,000여명 지원(시범사업) → ('19) 10,000여명 지원(누적)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391**	**2,509**	**118**	**4.9**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1,691	1,691	**-**	**-**
■ 학습자 지원금	-	1,691 (5,000명×35만원 내외)	1,691 (5,000명×35만원 내외)	**-**	**-**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700	818	**118**	**16.9**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구축	**-**	500	628	**128**	**25.6**
■ 사업관리비	**-**	200	190	**△10**	**△5**
□ 비목(합계)	**-**	**2,391**	**2,509**	**118**	**4.9**
○사업출연금(350-02)	**-**	2,391	2,509	118	4.9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확대)** 잠재적 수요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고려한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			
'18	2,391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1,691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5,000명 =1,691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7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5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00백만원	2,391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1,691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5,000명 =1,691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7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5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00백만원	-
'19	4,056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3,500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10,000명=3,300 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556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381백만원 - 사업관리비 : 175백만원	2,509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1,691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5,000명 =1,691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818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628백만원 - 사업관리비 : 190백만원	△1,547
'20	9,704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8,704백만원** - 학습자지원 : 44만원X20,000명 ≒ 8,704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10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564백만원 - 사업관리비 : 436백만원	7,327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6,427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20,000명 ≒ 6,427억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9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6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0백만원	△2,377
'21	9,704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8,704백만원** - 학습자지원 : 44만원X20,000명 ≒ 8,704백만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10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564백만원 - 사업관리비 : 436백만원	7,327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6,427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20,000명 ≒ 6,427억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9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6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0백만원	△2,377
'22	-	-	7,327	ㅇ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금 : 6,427백만원** - 학습자지원 : 35만원X20,000명 ≒ 6,427억원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900백만원** - 지원시스템구축 : 6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300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32.3		25.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2,391	2,509	118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33.2	34.8	1.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중 출연금(350) 사업 ○ 출연금(350)은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으로 산정 - 총 사업비 지출 ÷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34.8명**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2,509백만원)>** ○ 2,509백만원을 "교육서비스업"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72백만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 2,509백만원 ÷ 72백만원 = 34.8명 □ **2018년 고용효과** - 33.2명 예상(2,391백만원 ÷ 72백만원 = 33.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원 후 진로·취업 등에 활용 정도를 확인할 예정 □ 저소득층의 고용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고용효과 증대 도모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새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5.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 추진경위

- '18. 2.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 '18. 3.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MOU* 체결

  * 바우처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교육부·NH농협카드·BC카드·국평원 간 MOU 체결

- '18. 5. 평생교육 바우처 관계기관(지자체, 평생교육기관 등) 설명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	-	-	-	-	23.91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18년 신규사업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	5,391	△3,000	2,391	2,391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5,391백만원→2,391백만원(△3,000)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2,954백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비 △46백만원 감액

○ 집행현황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16.91억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7억원 집행완료(출연)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독일)** 학비 보조 바우처

- '08년 독일 교육연구부 시작
- 저소득층의 계속교육 및 훈련을 지원 목적으로 수강료의 50%(최대 금액 1,000유로, 약 130만원) 지원
- 독일 전역에 카운슬링 센터 지정, 바우처 이용자 학습계획 수립 및 이용 지원
- 사업 운영 결과, 파트타임 종사자, 여성, 이민자 가정 출신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적극 참여 나타남

○ **(싱가포르)** SkillFuture Credit

- '16년부터 25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국민에게 연간 500싱가포르 달러(약 40만원) 지원

  ※ '17년까지 누적 수혜자 285,000명

- 공공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및 직업 기술 관련 훈련 프로그램 참여에 활용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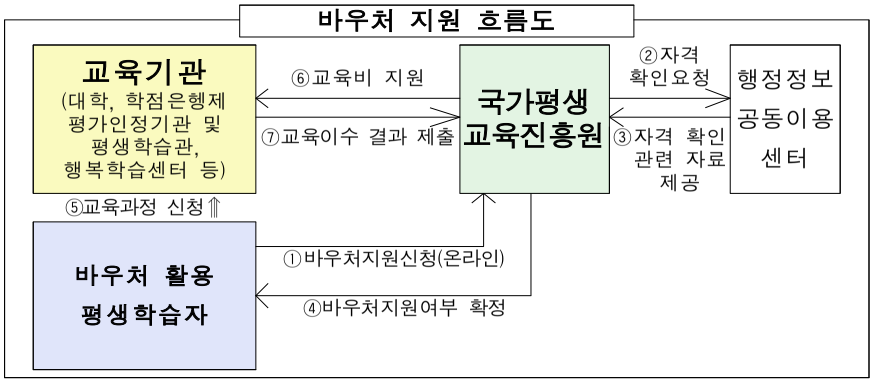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생학습바우처 지원받은자의 평생학습 중도 탈락율(%)	목표	-	-	신규	5	5	'16년 성인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 평생학습 참여 후 중도 포기한 비율 3.8%로 해당 사업 대상자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5% 설정	평생교육바우처 학점취득 학습자 중 학점취득 과정 중도탈락자 수/ 평생교육바우처 학점 취득과정 학습자 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조사
	실적	-	-	신규	-	-			
	달성도	-	-	신규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개요
○ (참고2) 관련 통계 등
○ (참고3) 평생교육법 시행령

참고 1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개요

□ 추진배경

○ 학습자 스스로 **본인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학습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 지원**

○ 소득 등 **경제적 여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평생학습 참여 차이를 완화**하고 **능력개발 기회 격차를 좁혀** 사회 **양극화 완화**

⇒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전 생에에 걸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산	▪ '18년 **총 1,691백만원** ※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바우처 시스템 구축비 500백만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규모	▪ 5,000명 내외 ※ 기초생활수급자 2,000명 우선 선발	
대상교육	▪ **학력 취득 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 취득 목적 외 교육**(매치업(구 한국형 나노디그리), 지자체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연간 지원한도	▪ 최대 **35만원**	
바우처 사용기간	▪ '18.8~'18.12(1·2차 지원) / '18.10~'19.2(3~6차 지원)	

□ 사업일정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발표(3.27) → 교육부·NH농협카드·BC카드·국평원 간 MOU 체결(3.28)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구축(3월~) → 사업설명회 개최(5.18) → 신청접수 실시(6월~)

참고 2 관련 통계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동법 **제7조 제1항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16년 기준 총 163만명으로 집계

< (참고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표 5-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1~2016)

(단위: 천 명, %, 천 가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급자 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수급률	3.0	2.8	2.8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3.2
일반수급가구 수	698	691	718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

표 5-2 성별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 (2016)

(단위: 천 명,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439	94	61	180	243	201	322	1,540
남자(%)	50.8	46.9	41.0	44.0	56.5	48.6	29.1	45.5
여자(%)	49.2	53.1	59.0	56.0	43.5	51.4	70.9	54.5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7

구분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수	1,581,646	1,234,559	1,390,944	1,351,427	335,004
가구 수	1,122,992	907,191	985,960	935,767	233,682

* 총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시설 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숫자임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차상위계층)** '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144만명으로 집계

2005년 실태조사 ('03년 기준)		2008년 실태조사 ('06년 기준)		2011년 실태조사 ('10년 기준)		2015년 실태조사 ('14년 기준)		2017년 실태조사 ('15년 기준)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비수급 빈곤층	103만명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	비수급 빈곤층	118만명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최저 생계비 ~120%	86만명	최저 생계비 ~120%	67만명	최저 생계비 ~120%	68만명	중위40% ~50%	85만명	중위40% ~50%	51만명
계(차상위)	**263만명**	계(차상위)	**170만명**	계(차상위)	**185만명**	계(차상위)	**203만명**	계(차상위)	**144만명**

※ '03년, '06년, '10년 최저생계비, '14년 실태조사의 중위소득, '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보건복지부(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차상위계층 유형별 인원>

구분	정의	규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155,868명[1] (2017년 기준)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99,952명 (2016년 기준)
차상위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수급자	45,085명 (2016년 기준)
차상위 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12,085명 (2016년 기준)
차상위확인서 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	128,997명 (2016년 기준)

주: 법정차상위계층 중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일부 계층을 제시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1) 18세 미만 제외

참고 3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받으려면 교육부장관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위하여 진흥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교육부장관 및 진흥원의 장은 제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06]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	800	760	△40	**△5.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1 - 306
* 담 당 자 : 학생지원국장(정인순), 교육기회보장과장(배동인), 사무관(홍강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검정고시 학습 콘텐츠 개발, 검정고시 제도 운영지원 매뉴얼(상담매뉴얼, 검정고시 제도안내서 등) 개발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 검정고시 유관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워크숍·협의회 실시 및 센터 운영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지원센터 1개소
지원조건	민간보조(지속지원), 보조율 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19) 160백만원 (21%)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 310백만원
  ▪ 산출내역 : 310백만원(프로그램 운영 20개)×1식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 190백만원
  - 검정고시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50백만원
  - 검정고시 관련 현황 조사 및 콘텐츠 개발 : 140백만원
  ▪ 산출내역 : 50백만원(연구)×1식, 140백만원(현황조사 및 콘텐츠 개발)×1식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 260백만원
  - 검정고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 : 100백만원
  - 인건비 : 160백만원
  ▪ 산출내역 : 100백만원(네트워크 구축)×1식, 160백만원(인건비)×1식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800	76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350	'18년 신규사업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프로그램 시범 지원 310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검정고시 현황 파악 등 190 - 기초연구(50) - 검정고시 관련 현황 조사 및 콘텐츠 개발(140)	검정고시 현황 파악 등 190 - 기초연구(50) - 검정고시 관련 현황 조사 및 콘텐츠 개발(140)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검정고시지원센터 구축 260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100) - 인건비(160)	검정고시지원센터 구축 260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회(100) - 인건비(160)

□ 지원 필요성

○ 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복지 및 평생교육 이념 구현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	**800**	**760**	△40	△5.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	350 (1식x350백만)	310 (1식x310백만)	△40	△11.4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	190 기초연구 (1식x50백만) 현황조사 및 매뉴얼 개발 (1식x140백만)	190 기초연구 (1식x50백만) 현황조사 및 매뉴얼 개발 (1식x140백만)	-	-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운영	-	260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 (1식×260백만)	260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 (1식×260백만)	-	-
□ **비목**(합계)	-	**800**	**760**	△40	△5.0
○민간경상보조(320-01)	-	800	760	△40	△5.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 및 상급 학교 진학 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학습콘텐츠 등 검정고시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제공
  ○ 시도 교육감 사무로 되어 있는 검정고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8	80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5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90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60백만원	80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5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90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60백만원	-
'19	-		760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1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90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60백만원	760
'20	-		737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0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77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60백만원	737
'21	-		722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0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77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45백만원	722
'22	-		715	▪ 검정고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원 300백만원 ▪ 검정고시 운영 활성화 지원 170백만원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운영비 245백만원	715
연평균 증가율 (%)			△2.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00	760	△4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4.4	4.4	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4.4명** **- 검정고시 네트워크 구축 : 1.6억원 ÷ 0.36억원 = 4.4**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절 학력인정

○ 추진경위

- ‘18년 국고예산 신규 반영 및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 및 진학 기회제공을 위해 검정고시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제공(국회 예결위, 2017.12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평생교육검정고시지원	-	-	-	-	--	-	-	8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 )	( )	( )	( )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800	800	8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은 국회에서 ‘18년 예산 전액 증액(8억원)

○ 집행현황

■ 검정고시지원센터(1개소) 공모 지정함에 따른 예산 800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가 검정고시 준비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2018년 국회 예결위 백재현 의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선정 ⇒ 수탁기관 실행계획 수립 ⇒ 교육부 예산 교부 ⇒ 수탁기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 교육부 사업 추진성과 평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참여자 만족도	목표	-	-	-	신규1	65점	신규 사업인 관계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보통’(50점)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도전적으로 이보다 상향된 65점으로 설정	(측정산식) 사업 참여자 종합만족도 = Σ(차원만족도i × 차원중요도i) - 리커트 5점 척도(100점으로 환산)	평생교육 검정고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중 표본조사(사업참여기관의 학습자 비율에 따라 층화표집)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 현황

○ (참고2)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연계과정 개설 현황

○ (참고3)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시행 결과(※ 출처: NEIS 통계자료)

○ (참고4) 검정고시 제도 관련 법령

참고 1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사업 현황

1. 검정고시제도의 목적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 학력검정 시험을 통한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교육복지 이념 구현

*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2. 기관별 역할

○ **(교육부)** 검정고시 제도개선 추진, 법령 해석 등

- 시·도교육청간 상이한 시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 방지를 위해 일관된 기준 마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운영

○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험 시행계획 수립·협의, 시도별로 검정고시 시행

* 순번제로 시험 시행 주관교육청을 지정하여 고사 실시 등 제반사항 관리

** 검정고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자체충당

○ **(관계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나이스(검정고시) 관리,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 시스템 운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 검정고시 문제 출제

3. 현황

○ **(검정고시 운영 사업) 시도자치사무로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검정고시 시험 시행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별도의 추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교부금)**

○ **(평생교육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제도 시행에 머무르지 않고 검정고시 대상 발굴에서 합격 후의 진로 및 진학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국고)**

-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기회제공 및 학습콘텐츠 개발 등 검정고시 대상자 지원
- 시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검정고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참고 2 평생학습계좌제 검정고시 연계과정 개설 현황

□ 개요

○ 성인 학습자가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관련 과목에 대한 검정고시 시험을 면제함

○ 검정고시 연계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해 별도의 연계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과목 및 학력수준 등을 분류함

□ 면제과목별 학습과정 개설수

('18.2.13 기준 누적/ 단위 : 개)

검정고시 면제 과목	학력수준			합계
	초졸	중졸	고졸	
가정과학	79	-	-	79
공업기술	322	-	-	322
과학	62	6	1	69
기술・가정	369	88	-	457
기업경영	28	-	-	28
농업과학	36	-	-	36
도덕	8	-	-	8
미술	384	306	38	728
사회	181	33	1	215
실과	-	-	40	40
영어	-	-	89	89
음악	77	70	23	170
일본어	39	-	-	39
정보사회와 컴퓨터	156	-	-	156
중국어	13	-	-	13
체육	44	49	8	101
한국사	43	-	-	43
한문	21	-	-	21
해양과학	53	-	-	53
총 계	1,915	552	200	2,667

□ 평생교육 영역별 학습과정 개설수

('18.2.13 기준 누적/ 단위 : 개)

분류	학력수준			합계
	초졸	중졸	고졸	
기초문해교육	17	-	26	43
문화예술교육	489	278	65	832
시민참여교육	44	27	-	71
인문교양교육	211	72	95	378
직업능력교육	1132	174	12	1,318
학력보완교육	22	1	2	25
총 계	1,915	552	200	2,667

참고 3 최근 3년간 검정고시 시행 결과 (※ 출처: NEIS 통계자료)

1 초졸 검정고시 시행 결과

구 분		지원자	응시자	응시율	미응시자	미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5년	1회	2,095	1,921	91.69	174	8.30	1,737	90.42
	2회	1,944	1,817	93.47	127	6.53	1,688	92.90
	계	**4,039**	**3,738**	**92.54**	**301**	**7.45**	**3,425**	**91.63**
2016년	1회	2,179	1,998	91.69	181	8.31	1,828	91.49
	2회	1,958	1,813	92.59	145	7.41	1,584	87.37
	계	**4,137**	**3,811**	**92.12**	**326**	**7.88**	**3,412**	**89.53**
2017년	1회	2,322	2,154	92.76	168	7.24	1,923	89.28
	2회	1,942	1,780	91.66	162	8.34	1,565	87.92
	계	**4,264**	**3,934**	**92.26**	**330**	**8.39**	**3,488**	**88.66**

2 중졸 검정고시 시행 결과

구 분		지원자	응시자	응시율	미응시자	미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5년	1회	8,357	7,466	89.34	891	10.67	5,462	73.16
	2회	7,578	6,766	89.28	812	10.71	5,451	80.56
	계	**15,935**	**14,232**	**89.31**	**1,703**	**10.69**	**10,913**	**76.68**
2016년	1회	7,526	6,739	89.54	787	10.46	4,991	74.06
	2회	7,037	6,269	89.09	768	10.91	4,659	74.32
	계	**14,563**	**13,008**	**89.32**	**1,555**	**10.68**	**9,650**	**74.19**
2017년	1회	7,208	6,447	89.44	761	10.56	5,232	81.15
	2회	6,170	5,572	90.31	598	9.69	4,268	76.60
	계	**13,378**	**12,019**	**89.84**	**1,359**	**10.16**	**9,500**	**79.04**

3 고졸 검정고시 시행 결과

구 분		지원자	응시자	응시율	미응시자	미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5년	1회	32,025	27,152	84.78	4,873	15.22	15,033	55.37
	2회	30,409	25,536	83.98	4,873	16.02	17,666	69.18
	계	**62,434**	**52,688**	**84.39**	**9,746**	**15.61**	**32,699**	**62.06**
2016년	1회	27,271	22,940	84.12	4,331	15.88	13,854	60.39
	2회	27,596	23,257	84.28	4,339	15.72	18,006	77.42
	계	**54,867**	**46,197**	**84.20**	**8,670**	**15.80**	**31,860**	**68.97**
2017년	1회	23,283	19,672	84.49	3,611	18.36	14,931	75.90
	2회	24,085	20,573	85.42	4,339	21.09	13,814	67.15
	계	**47,368**	**40,245**	**84.50**	**7,950**	**16.78**	**28,745**	**71.14**

참고 4 검정고시 제도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자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6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검정고시위원회를 둔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및 고졸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라 한다)의 공고, 응시원서의 접수 및 검정고시의 시행
2. 출제, 채점 및 합격증 발급
3.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한다.

제32조(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는 다른 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와 공동으로 검정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00]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A) (2018추경)	20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5,359	12,730 (17,530)	24,130	**6,600**	**37.6**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4 - 300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임동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후학습자 및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고등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기간	('18)단년도 → ('19)다년도('19~'22)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 24,130백만원

-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대학(4년제) : 20개교 × 1교당 평균 900백만원
  ※ 운영 모델에 따른 예산액 차등 지원
-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대학(전문대) : 6개교 × 1교당 평균 900백만원
  ※ 운영 모델에 따른 예산액 차등 지원
- 사업운영관리비 : 730백만원 × 1식
  ※ 4년제 대학 사업운영관리비 530백만원, 전문대학 사업운영관리비 2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7,530	24,13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16,130)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대학 20개교	(24,130)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대학 26개교
■ 방송대 중심의 원격 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	(1,400) 학습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30개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경예산 4,800백만원 포함

□ **지원 필요성**

○ 지역의 사회구조, 특성 및 학습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제도 모델**을 **구축·운영**하도록 **유도**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선취업자**에게 **후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하여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필요**

○ **성인 친화적 학사체계**, **유연화된 학사제도** 등 기존 **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확산** 필요

- **국정과제 52-5**(K-MOOC 등 성인평생교육 활성화) **실현**을 위해 **'성인친화적 교육 선도대학 육성***'을 추진, **지원 규모 및 분야를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하고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기반 확대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과제('18.2)

** 4년제 대학 20개교('18) → 4년제 대학 20개교, 전문대학 6개교 내외 지원('19)

○ 대학 내 **후학습자 전담 모집단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 **사업기간 변경** 추진(단년도→다년도)

- **중간평가**를 통해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현황, 교육과정, 충원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지원 여부 결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8추경	'19예산 (B)	증 감 (B-A)	%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25,359**	**12,730**	**17,530 (4,800)**	**24,130**	**11,400**	**89.6**
▪ 국가스마트 후진학 체계 구축	1,027	(종료)	**-**	-	**-**	**-**
- 재직자 기초과정 개발 운영	500 (50백만원×10개)	-	-	-	-	-
- 스마트캠퍼스 허브대학 운영	527 (527백만원×1식)	-	-	-	-	-
▪ 방송대 중심의 원격고등 평생학습체계 구축	1,200	1,400	**-**	(종료)	**△1400**	**순감**
- 학습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1,200 (40백만원×30개)	1,200 (40백만원×30개)	-	-	△1200	순감
- 인건비	-	140 (35백만원×4명)	-	-	△140	순감
- 사업운영비	-	60 (60백만원×1식)	-	-	△60	순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23,132	11,330	**-**	24,130	**12,800**	**113.0**
- 대학지원금(4년제)	22,602 (1883.5백만원×12개교)	10,800 (900백만원×12개교)	(4,800) (600백만원×8개교)	18,000 (900백만원×20개교)	7,200	66.7
- 대학지원금(전문대)	-	-	-	5,400 (900백만원×6개교)	5400	순증
- 사업운영관리비	530 (530백만원×1식)	530 (530백만원×1식)	-	730 (730백만원×1식)	200	37.7
□ 비목(합계)	**25,359**	**12,730**	**(4,800)**	**24,130**	**11,400**	**89.6**
○상용임금(110-03)	256	125	-	-	△125	순감
○일반수용비(210-01)	142	60	-	-	△60	순감
○복리후생비(210-12)	3	2	-	-	△2	순감
○일반연구비(260-01)	1,800	1,200	-	-	△1,200	순감
○고용부담금(320-09)	26	13	-	-	△13	순감
○사업출연금(350-02)	23,132	11,330	(4,800)	24,130	12,800	113.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령자, 고졸취업자, 다문화 가족, 경력단절 여성 등 성인 학습자의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평생직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기능 강화 및 학습여건 확대 조성

○ 대학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분야를 발굴·개설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5,359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23,132 ■ 국가스마트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1,027 ■ 방송대중심의원격고등평생학습체제구축: 1200			
'18	12,73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1,330 ■ 방송대중심의원격고등평생학습체제구축: 1,400	12,73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1,330 ■ 방송대중심의원격고등평생학습체제구축: 1,400	-
'19	15,73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5,730 - 지원 대학(950×16교) - 사업관리비(530×1식)	24,13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24,130 - 지원 대학(900×26교) - 사업관리비(730×1식)	8,400
'20	28,314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28,314 - 지원 대학(1,060×26교) - 사업관리비(730×1식)	11,731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1,731 - 지원 대학(933×12교) - 사업관리비(530×1식)	△16,583
'21	28,314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28,314 - 지원 대학(1,060×26교) - 사업관리비(730×1식)	11,496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1,496 - 지원 대학(913×12교) - 사업관리비(530×1식)	△16,818
'22			11,381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11,381 - 지원 대학(904×12교) - 사업관리비(530×1식)	-
연평균 증가율 (%)	2.2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2,730	24,130	11,4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70.4	335.1	164.7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3.3	13.9	0.6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335.1명** ○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사업출연금(350-02) 241.3억원을 <표4>의 '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 241.3억원 ÷ 0.72억원 = 335.1명 **□ 2018년 고용효과 : 170.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평생교육법」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국정과제)** 52.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추진경위

- '08~1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평생학습중심대학을 통한 성인 전기·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과제로 포함
- '15. 12.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17. 1.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통합·개편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지원	180.83	-	170.08	184.25	-	253.59	-	127.3	48
○선취업 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	24	-	24	-	-	-	-	-	-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	-	신규	300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국가 스마트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

- '15년 330백만원 불용 : 콘텐츠 자체장비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70백만원), 낙찰차액(223백만원), 인건비집행잔액(37백만원)등

○ 방송대 중심의 블렌디드러닝 환경 구축 사업

- '15년 257백만원 불용 : 낙찰차액(87백만원), 집행잔액(170백만원) 등

○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사업

- '15년 1,798백만원 불용
- '16년 7,423백만원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70.08**		0.89	170.08	**164.21**		5.87
	(107.33)	( )	( )	(107.33)	**(89.44)**	( )	(17.89)
'16년	**184.25**		2.5	184.25	**184.25**		-
	(131.33)	( )	( )	(131.33)	**(83.18)**	( )	(48.15)
'17년	**253.59**			253.59	**253.59**		
	(231.32)	( )	( )	(231.32)	**(216.76)**	(14.56)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5,359		15,730	△3,000	12,730	17,530*	10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추경예산 4,800백만원 포함

○ 국회반영 증감내역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4,330백만원→11,330백만원(△3,000)

○ 집행현황

- 방송대 중심의 원격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 1,400백만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16,130백만원(추경 4,800백만원 포함)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16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평단사업은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목적·운영과정 등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모색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요구됨

○ ('16년 예산안 교문위 부대의견)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 '선취업후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 이내에 평단사업과 통합 필요함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대학에 전일제로 다닐 수 없는 재직 성인학습자의 학사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시간제학위 강화 및 일터를 기반으로 한 비형식/무형식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전경험인정제도
-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GP(Good Practice)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사업을 지원
  * 지역만들기사업(北海道대학의 홋카이도 도민칼리지), 지역대학 간 컨소시움(京都지역 대학컨소시움), 분교 활용한 지역교육지원(북해도교육대학) 등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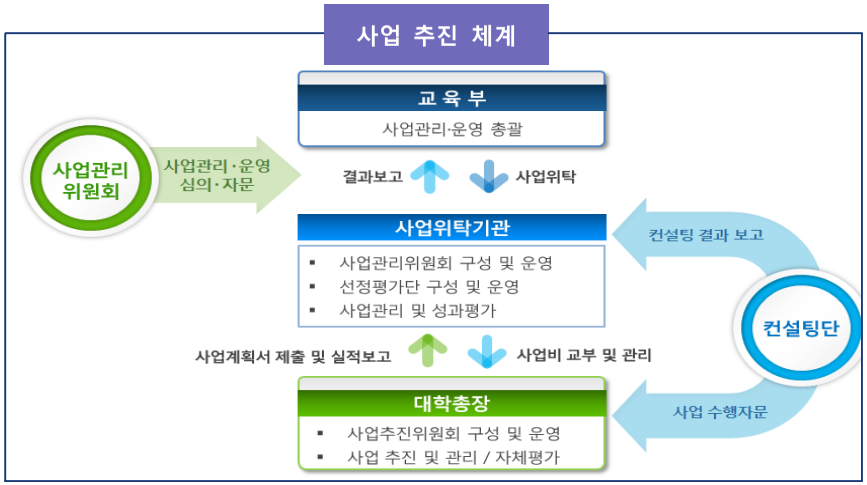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 대학의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개)	목표	150							
	실적	153							
	달성도	102							
성인친화형 교과목 프로그램 개발 수(개)	목표	60	90	40	-				
	실적	98	96	47	-				
	달성도	163	106	117.5	-				
중장년층 맞춤 특화 프로그램 수(개)	목표	신규	30						
	실적		67						
	달성도		223						
학위·비학위 연계프로그램 개설 학교수(개)	목표		신규	10	-				
	실적		신규	15	-				
	달성도		신규	150	-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학습자 중도탈락률(%) (하향지표)	목표			신규	6.5	6.3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 '17년 중도탈락률(6.7%)를 고려, 목표 조정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학과 중도탈락 학생수/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학과 재적 학생수) * 100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	-			
	달성도			신규	-	-			
대학의 평생교육 학습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72.5	'16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69.1점)를 고려, 기존 결과에서 5% 상향 조정(69.1점->72.5점) (* 조사 결과보고서: '17. 7. 4)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학과 재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00점 만점)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			
	달성도				신규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요
○ (참고2) 전문대학 지원 확대 필요성
○ (참고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

참고 1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을 탈피, 성인친화형 대학시스템 발전 유도

□ 사업 내용

○ **(사업비/지원기간)** 16,130백만원(추경 4,800백만원 포함) / '18년(단년도)

○ **(지원규모) 21개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4년제 대학**)

○ **(운영모델)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운영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학위과정**은 **필수** 운영

□ 대학별 운영학과

권역	대학(운영모델)	운영학과(학위과정)	모집인원 (정원내/외)
수도권 (8개교)	동국대(단과대)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52(3/149)
	명지대(단과대)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189(43/146)
	서울과기대(단과대)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케어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	243(75/168)
	아주대(학과)	융합시스템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106(2/104)
	중앙대(학과)	지식경영학부	245(1/244)
	경희대(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	120(1/119)
	동덕여대(학과)	세무회계	51(1/50)
	한성대(단과대)	법·행정, 비즈니스컨설팅, 호텔외식경영, 뷰티디자인	90(10/80)
충청권 (3개교)	서원대(단과대)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공	119(30/89)
	한밭대(단과대)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전기시스템공학과, 회계세무부동산학과, 창업경영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77(81/96)
	청운대(단과대)	사회복지상담, 사회적기업, 청소년상담교육, 창업경영	101(30/71)
대경 강원권 (3개교)	가톨릭관동대(단과대)	언어재활상담전공, 치매전문재활전공, 산림치유학과, 중독재활학과	100(80/20)
	경일대(단과대)	스마트자동차전공, 스마트팩토리전공,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 산업경영전공, 빅데이터응용전공	110(30/80)
	대구한의대(학과)	평생교육융합	25(1/24)
동남권 (4개교)	부경대(단과대)	평생교육상담학과, 기계조선융합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공공안전경찰학과	201(61/140)
	영산대(단과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연계전공학부	130(105/25)
	동서대(단과대)	미래ICT융합, 경찰사법	98(20/78)
	경상대(학과)	산업경영, 해양산업융합	55(10/45)
호남 제주권 (3개교)	순천대(단과대)	융합산업학과, 물류비즈니스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100(25/75)
	조선대(단과대)	휴먼융합서비스, 신산업융합학부	140(20/120)
	제주대(단과대)	건강뷰티향장, 관광융복합, 부동산관리, 실버케어복지	155(41/114)
계	**21개 대학**	**67개 학과**	**2,707(670/2,037)**

참고 2 전문대학 지원 확대 필요성

□ 전문대학 지원 확대 필요성

○ **(학습자)** 기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재직자의 **다양한 학습 수요 충족**에 **한계**

-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자**의 경우 **직무역량의 심화·발전**을 목표로 **후학습에 참여**하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대학 진학 기회 부족 → 전문대학 내 후학습 전담과정 확보 필요**

○ **(전문대학)** 전문대가 보유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인프라를 활용·강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 수요 충족 가능**

- 전문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운영** 중이나,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과정** 운영 → **전담과정 운영 유도 필요**

□ 현장 관계자 의견

○ **(직업계고 관계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체득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담과정 추가 개설·운영** 필요

> **(A직업계고 교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재직자 특별전형 전형 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데, **4년제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중략)… **전문대학에서도 재직자 특별전형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18.6.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 **(전문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재직자**와 **일반 성인학습자** 간 **학습 수요 차이**에 대한 고려 필요

> **(B대학 교수)** 향후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비중 확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필요 …(중략)…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일반 성인학습자와 구분**하여 후학습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후략) ('18.6.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참고 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

□ 다년 지원 필요성

○ **(학습자)** 본 사업을 통해 진학한 **재직자·성인학습자**의 안정적인 양질의 **계속학습 기반 마련 필요**

- 후학습자 전담과정이 **4년 학위과정**임을 감안할 때, 재학기간(4년)간 **학습자들이 안정적인 일·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대학)** 대학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에 기초한 투자**와 **사업 추진·운영 환경을 구축**하여 전담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후학습자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학사제도 유연화, 학습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축적 및 확산 도모**

□ 현장 관계자 의견

○ **(대학)** 최소 **3~5년간 지속적인 지원 보장**을 통해 후학습자들의 **안정적인 학습 지속**과 학교의 **자생적 운영 능력 확보** 필요

- "저는 **국가가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대학이 스스로 잘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3진 아웃제라든가 5년 일몰제로요. **최소한 1학년으로 들어왔던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겠어요.**"(D대학교 교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대학교('17), 「재직자특별전형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학평생학습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 **(전문가) 사업우수모델 발굴 및 본부차원의 지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 여건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성 보장 필요**

- **"가장 큰 어려움은 '평생' 교육분야의 사업으로 5년은 되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 '1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18.3.22),

- "**사업 우수모델 발굴은 대학 본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년도 사업의 특성상 우수 모델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 '18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제2차 사업관리위원회 회의('18.4.11)

[30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766	4,000	4,460	**460**	**11.5**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4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김민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의무교육 수준인 초·중학 학력인정 기회 부여로 성인 문해학습자의 기초학습권 보장
사업기간	'06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18년 160개 지방자치단체, 389개 문해교육기관 지원
지원조건	출연(사업선정 지자체 지원액 대비 70%이상 대응투자) ※ 대응투자 : ('15) 30% → ('16~'17) 50% → ('18) 70% → ('19) 70%(예정)
사업시행주체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4,000백만원**

▪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4,000백만원(교육수혜자 연간 교육지원비, 40,000명x0.1백만원)

○ **문해교육활성화 : 460백만원**

▪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문해교원 보수교육, 대국민 인식 확산, 문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 산출내역

-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0.2백만원×400개기관=80백만원
- (문해교원 보수교육 등) 문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등 20백만원×6개권역=120백만원
- (문해교육 활성화)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1식×110백만원=110백만원
- (네트워크 지원 및 사업운영 등)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민간기관과 문해교육 협력 추진 등 1식×150백만원=15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000**	**4,460**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500** * 3.5만 명 × 0.1백만원	**4,000** * 4만 명 × 0.1백만원
■ 성인문해교육활성화	**420** -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 0.2백만원×400개기관=80백만원 - 문해교육교원 보수교육 : 20백만원×4개영역=80백만원 -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 110백만원×1식=110백만원 - 네트워크 지원 및 사업운영 :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460** -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 0.2백만원×400개기관=80백만원 - 문해교육교원 보수교육 : 20백만원×6개영역=120백만원 -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 110백만원×1식=110백만원 - 네트워크 지원 및 사업운영 : 150백만원×1식=150백만원
■ 국민기초학습역량조사	**80** - 정보문해능력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4천 명×0.02백만원=8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은 일상생활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개인 행복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선 지원 필요

· 국가 및 지자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의무(평생교육법 제39조)
· 성인의 기초능력 확보는 임금과 경제성장 등 국가경제력과 함께 건강, 사회적 신뢰 등 개인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 (OECD, 2012)
· 성인의 기초학습권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 (1948년 세계 인권선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해득능력에서 **기초생활능력(금융, 교통, 정보 등)까지 확대**되었고, 문해능력은 **고령화시대 건강한 삶의 필수 요건**으로 등장

·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함(평생교육법 제2조, '14년 개정)
· 교육부「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2016. 12)」-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응하여 누구나 스마트기기·콘텐츠를 활용한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보문해교육 활성화
· 치매환자 6명 중 1명은 문맹 때문('17.1.3 중앙일보, 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인용 보도 등)
· 서울대 정신건강의학팀 연구 결과, 65세 미만 성인의 비문해율이 '0'으로 감소할 경우, 2050년까지 치매 환자 비율은 1.62% 감소하여 치매관리 비용은 60조원 절약 추정

○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명시**

·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 **'16.2.3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정과제 52-5-1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 확대(연 8만명)**

○ **'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통계청 승인 통계) 결과,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7.2%에 해당하는 311만 명이** 일생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로 추정되고 그 중 11%인 34만 명이 문해교육 참가 희망

(지역별 비문해 인구 분포) 농산어촌 16.2% > 중소도시 7.2% > 서울 및 광역시 5.7%
(연령별 비문해 인구 분포) 80대 이상 67.7% > 70대 28.7% > 60대 14.2%
(무학력자의 한글 학습경로) 독학 또는 가족으로부터 학습 39.3% > 기관 6.9%

○ **제4차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18~'22)** 수립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를 마련하여 문해, 학력보완의 기회 확대 계획 발표

* '22년까지 문해교육 수혜자 누적 64만 명까지 확대('06~'17까지 30만명, '18~'22년까지 34만명)

· 주요 추진과제 :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
· (문해교육 지원 확대) 향후 5년간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 제공 → '22년 누적수혜자 64만명 달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766**	**4,000**	**4,460**	**460**	**11.5**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266	3,500 (3,500명x0.1백만)	4,000 (4,000명x0.1백만)	500	12.5
■ 문해교육 활성화	420	420 (1식x420백만)	460 (1식x420백만)	40	9.5
■ 국민기초학습역량 (문해력) 통계 조사	80	80 (4,000명x0.2백만)	-	△80	순감
□ **비목**(합계)	**3,766**	**4,000**	**4,460**	**460**	**11.5**
○사업출연금(350-02)	3,766	4,000	4,460	460	11.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향상 지원(국정과제 52-5-1, 연 8만명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76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266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20백만원 ■ 국민기초학습역량조사 80백만원			
'18	4,000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5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20백만원 ■ 국민기초학습역량조사 80백만원	4,000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5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20백만원 ■ 국민기초학습역량조사 80백만원	-
'19	3,470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70백만원	4,460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4,0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60백만원	990
'20	6,24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5,5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746백만원	3,68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2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86백만원	△2,560
'21	6,24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5,5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746백만원	3,612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2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12백만원	△2,634
'22			3,576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백만원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576백만원	3,576
연평균 증가율 (%)	10.6%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및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평생교육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성인 비문해자, 의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문해교육 지원 확대)

○ 추진경위

- 2006년 교육부 주요업무계획(대통령 업무보고) : '06. 2.
  ※ 소외계층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 보고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 '06. 3. 6
  ※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수립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06. ~ 현재
-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대통령 교육복지 대책) : '08.12.17
  ※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15대 핵심과제 선정('08.10.7, 국무회의), 중졸 미만 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 초·중학 학력인정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문해교육'의 개념 확장*** 등「평생교육법」개정('14.1)
  ※ (의미) **'문자해득' → '생활문해'까지,** (대상) **'일반성인문해자' → 신문해 계층 (다문화가정, 탈북주민 등)까지 포함**
-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 추진체제**(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평생교육법」개정('16.2.3)
- '성인문해교육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 마련 등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사회관계장관회의, '16.9.30.)

- **'제4차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18~'22)'**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다리를 마련하여 문해, 학력보완의 기회 확대 계획 발표('18.2.23.)

- '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발표**('18.3.15.)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8.35	-	38.43	38.59	-	37.66		40.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43 (38.43)			38.43 (38.43)	38.43 (38.43)		
'16년	38.59 (38.59)			38.59 (38.59)	38.59 (38.59)		
'17년	37.66 (37.66)			37.66 (37.66)	37.66 (37.66)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766		4,000		4,000	4,0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18년 국정과제 조정 당정협의)** 국정과제 **연 8만명 대상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내용 조정없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 **('17년 국정감사)**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사람은 264만 명에 이르며, **문해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요청

- **('15년 국정감사)** 국민행복 실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기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해교육기관 지원확대, 성인문해교과서 보급, 문해교육 교육방송 제작 등 **문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15년 교문위 결산지적)**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260만명의 **문해교육 수요자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문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4년 결산심사)**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고 예산 증액**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비율 상향**조정, 행복학습센터 등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14년 예결산 특별위원회**-새정치민주 송호창 의원**)** 문해교육 수혜 대상자가 260만 명이 넘은 상당한 비중이 되는데 문해교육 예산은 28억에 불과하여 **예산 증액 필요**

- **('14년 교문위 예산소위**-새누리당 신성범, 서용교, 윤재옥, 이상일 의원, 새정치민주 도종환의원**)** '15년 성인문해교육 수혜자율 10% 달성을 위해 49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

- **('13년 교문위 결산 검토보고)**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규모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독려** 방안 마련 필요, 또한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수혜 학습자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 필요

- **('13년 국회 업무보고**-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기초문해력은 국가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현정부 최우선 과제임. 한 평생 까막눈으로 살아오신 저학력·비문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 요구

■ **기타 사항**

- '17년 저출산고령화 시행계획 : **'20년까지 고령층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기초문해교육 수혜율 19% 달성 목표**('18년까지 13% 달성)

> (참고) 치매환자 6명 중 1명은 문맹 때문(중앙일보, '17. 1. 3)
> 서울대 정신건강의학팀 연구 결과, 65세 미만 성인의 비문해율이 '0'으로 감소할 경우, 2050년까지 치매 환자 비율은 1.62% 감소하여 치매관리 비용은 60조원 절약 추정

- 비문해율 감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향상 :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문해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여 국가 비문해율을 감소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

> 우리나라 문맹률은 국가경쟁력 주요 지표로, IMD 국가경쟁력 지표 문맹률은 **61개국 중 34위**(종합순위 25위/'15년), ICT 발전지수(ICT 발전정도와 정보격차 순위 발표)의 문맹률은 **167개국 중 22위**(종합순위 1위/'15년), 성격차지수의 문맹률 142개국 중 66위(종합순위 117위/'16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246만명 참여(기준 : 2013~2014년)

- 2020년까지 문해력 있는 성인 비율 95% 목표 설정(세계 수준 기술보고서, 2007)
- 문해, 언어, 수리력 학습에 대한 요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Get On 문해교육 홍보 캠페인
- 비문해자들의 학습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문해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소개 등의 활동으로 구성
- TV 광고 방송, 문해학습자 생애 DVD 제작 및 배포

○ (프랑스)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ANLCI)

- 2000년 설립된 비문해 퇴치를 위한 전문 기구
- 문해력 조사 평가 및 조사결과 분석, 비문해자 지원을 위한 개발

○ (미국) 국가문해교육원, 지역 문해자원센터 등

- 주정부에 의해서 지원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총 200만명 참여(기준 : 2010~2011년)

- 1991년 국가문해법, 1998년 성인교육·가족문해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문해교육원을 설립하고 주마다 문해자원센터를 설치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가가족문해센터를 설치하여 가족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6) 사업추진절차

추진체계	주요 역할
교육부 <총괄 기획·조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타부처 역할 조정·협업 강화
국가문해교육센터 <사업전담기관>	·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추진 · 사업신청서 접수·선정평가 · 사업수행 지원, 결과 분석 등
시·도 및 시·도교육청 <시·도단위 사업 주체>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설치·지정 · 문해교육 교원 연수, 네트워크 구축 등
시·군·구 <시·군·구 단위 지원 주체>	· 사업신청서 작성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 문해교육기관 지도·점검
성인문해교육기관 <사업 수행기관>	· 문해교육 특성화 수업 운영 · 프로그램 개설·운영 · 문해 학습자 관리 ·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인 문해교육 참여자 만족도(%)	목표	90	89.5	삭제	삭제	삭제	5점척도 중 '아주 만족한다'에 가까운 90점을 목표값으로 도전적 설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대상 만족도 조사(교육내용,강사, 학습자관리 등) -점수도출방법 : 종합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종합 만족도 = Σ(차원만족도i × 차원중요도i)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대상 설문조사
	실적	89.4	91.3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99.3	102	-	-	-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프로그램 이수율(%)	목표	85	83	삭제	삭제	삭제	학습자 특성 및 위해 전년도 이수율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프로그램 이수율 전수조사 실시 -이수율=이수자 수/등록자수*100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전수조사 실시
	실적	82.3	83.5	삭제	삭제	삭제			
	달성도	96.8	101	-	-	-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개)	목표	신규	신규	1,185	1,443	1,536	최근 3년간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평균(1,312) 대비 10%로 상향 조정하여 1,443으로 설정	해당년도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사업참여 지자체의 학력인정·미인정 프로그램 수 측정)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1,565	-	-			
	달성도	-	-	132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요약
○ (참고3) 문해교육 관련 언론보도 현황
○ (참고4) 문해교육 관련 법령 조문 및 지원 근거
○ (참고5) 문해교육 대상자 현황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문해교육 지원 확대)** '06년부터,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약 30만 여 명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

< 문해교육 프로그램 국고 지원 현황('06~'17)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액(백만원)	1,375	1,800	2,000	2,000	2,000	1,800	1,500	1,950	2,200	2,250	2,436	2,436
시·군·구(개)	61	108	118	130	134	129	107	130	142	146	162	165
문해교육기관(개)	178	356	439	353	348	360	189	261	306	318	384	377
수혜자수(명)	14,668	21,294	25,579	24,638	23,778	20,135	16,334	19,745	23,879	35,614	36,039	39,732

○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성인문해교과서(38종), 생활문해교과서(3종) 및 교육과정 개발·개정, '15년 최초 무상 교과서 제공*, 문해교육 교원(4,081명)** 양성

※ (초등) 교과서 개발 및 보급('06~'09, 18종), 교육과정 고시('09), 교과서 개정('13), 교육과정 고시 2차 개정('18)
(중학)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09~'12, 20종), 교육과정 고시('13), 교육과정 고시 2차 개정('18)
(생활문해) 금융문해교육, 교통안전문해교과서('16, 2종), 정보문해교과서('17, 1종)
* 초등 및 중학교 문해교과서(총 30종)를 약 11만5천여명에게 약 57만부 지원 ('15~'17)

※ (문해교육교원 양성) 60명('08) → 678명('17), (총 누적 4,081명, 초등 3,297명, 중학 784명)

○ '11~'18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초·중학 학력인정자 11,082명** 배출

※ 초·중학 학력인정자 수 : ('11) 58명 → ('18.6.기준) 2,270명 (누적 11,082명)
※ 시·도교육청 지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264개('18.6. 기준)

□ **(문해교육 지원 제도 구축 등)**

○ '07년,「평생교육법」에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 촉진·지원** 및 시·도 교육청의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법적 근거 신설

○ '14년 사회요구에 따라 **문해교육 영역 확대**(문자해득능력→생활문해까지)

○ '16년 국가 및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법적 근거 신설

□ **(농산어촌 및 70대의 비문해율 감소)** ‘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결과, 농산어촌의 비문해인구 ’14년 21.4%→ ’17년 16.2%로 5.2%p 감소 및 70대의 비문해율이 ’14년 37.8% → ‘17년 28.7%로 9.1%p 감소

□ **(비문해 학습자 변화)** 비문해 성인에게 기초문해력 향상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원

송경자(79세, 여)
충남 청양군

“글을 몰라 농약병을 잘못썼다가 농사를 망친적이 있어요. 못배워서 그렇구나 많이 자책했어요.”

저 어릴적에는 전쟁도 나고 난리통이라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큰딸은 살림밑천이라고 해서 더 안가르쳤으니까. 농사짓고 길쌈하고, 집안일은 도맡아 해왔지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이제 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 늙어서 낱부끄럽게 뭘 배우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하나 배울수록 모든게 다 새롭고 재미있던 걸요. 절어서는 은행 일이든 세금 내는 일이든 남편이 다했지,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배워야 해요. 누가 먼저 돌아갈지 모르는 거니까. 얼마 전에 선생님이랑 읍내 농협에 가서 통장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글을 잘 몰라서, 농약병을 아무거나 썼다가 농사를 망친 적이 있어요. 겉만 대충 보고 약을 썼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못배워서 이렇구나 자책을 많이 했지요. 지금은 그럴일이 없지요. 돋보기 쓰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알아요.

김연심(91세, 여)
숙박업 운영
경기 안양시

“졸업장 꿈만 같아”, 91세 초등학교 졸업장 받는 늦깎이 할머니

아흔한 살의 할머니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지10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1925년생 김연심 할머니가 안양사회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안양시민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2006년이다. 한글 기초를 배우는 병아리반에서 문해(文解·문자해독) 공부를 시작한 그는 지난해 아흔 살에 초등학력 인정반인 지혜반에 진급해 배움의 꿈을 이뤘다.입학 초기 낙상사고로 6개월 만에 공부를 중단해야 했고, 이후에도 지병인 고혈압과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중간 중간 쉬어야 했다.그러나 나이와 질병은 그의 열정과 집념을 꺾지 못했고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에 졸업장을 받게 됐다.

늦깎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재벌이나 유명인 후손의 재산 다툼을 보면서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공부를 물려주고 싶었다”는 명언도 남겼다.(중부일보, 2016.2.25)

참고 2 **20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요약**

1. 배경 및 필요성

○ **읽고 쓰고 셈하기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원할 의무**(「평생교육법」제39조)

○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적인 일상문제 해결이 어려운 수준**(초등1~2학년 수준 학습 필요)의 인구(이하 **‘비문해 인구’**)는 전체 성인 중 **7.2%**로 약 **311만명**으로 추정*(‘17년 성인문해능력조사, 국평원)

* 2014년 6.4%(264만명)에서 0.8% 증가(단, 표집오차(±2.3%p) 범위 내)

2. 추진 계획

◈ **’18~’22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비문해 국민(34만명*)**에게 문해교육 기회 제공(**’06~’17년까지 누적 30만명 지원, ’22년까지 누적 64만명 목표**)

* (’14년) 비문해 인구 264만명/ 문해교육 희망 50만명 → (’17년) 311만명/ **34만명**

1 국가-지역간 전달체계 구축 확대

○ **(국가문해교육센터 운영 내실화)** 문해교육 관련 정책 추진과 다양한 현장에서의 문해교육 실시를 총괄 지원하는 국가문해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각종 연구·조사, 현장 지원(문해교원 연수, 보수교육, 기관 컨설팅) 등 실시

* ’16.2.3.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16.2.5. 출범

○ **(시.도문해교육센터* 설치 확대 지원)** 시·도문해교육센터 기설치 지역(경기, 충남, 대전)은 지역 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센터별 최대 2천5백만원) 하고, 미설치 지역은 센터 설치 유도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지역별 최대 1천만원)

* 17년말 현재 3개(경기, 충남, 대전) → ’22년까지 17개 모든 시·도 설치 목표

2 수혜자 중심 문해교육 활성화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조건 완화*로 교육 소외 지역의 소규모 문해교육 지원 확대(대응투자 70%이상)

* 프로그램당 최소 학습자 수(10명 이상 → 5명 이상) 및 기관당 최소 학습자 수(30명 이상 → 10명 이상) 완화(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이내)

○ **(개인 학습자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 개인 및 가정 내 학습 지원을 위해 성인문해교육방송을 보급*하고, 문해교과서 무상보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없는 문해능력 향상 지원

* ('16) 초1~3학년 과정, 78편 → ('17) 초4~6학년 과정, 52편 → ('18) 기초생활영어, 26편

3 생활문해 중심 문해교육 지원

○ **(생활문해 내용 확대를 위한 문해교육과정 개편)**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포함하여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13년 기개발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실생활 중심으로 개편

* ('18년 상반기) 교과서 집필 → ('18년 하반기) 교과서 검토 → ('19) 교과서 제작·보급

○ **(다양한 생활문해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문해학습자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문해교과서 개발* 및 '생활문해교육 가이드라인', 생활문해능력 측정도구 등 개발 등

* ('16)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교과서 → ('17) 정보문해교과서 → ('18) 건강문해교과서

4 대국민 인식 확산 및 민·관 협력 강화

○ **(대국민 인식 확산)**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및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18.9월), 문해의 달과 연계한 '세종대왕의 꿈' 캠페인 등 각종 홍보 전개

○ **(민·관 협력 강화)** 범부처 협력을 통해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다양한 분야의 인력과 자원 활용 확대

※ 정보문해교육(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문해(도로교통공단), 금융문해교육(금융감독원), 문해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삼성꿈장학재단) 등

참고 3 문해교육 관련 언론보도 현황

□ (문해교육 필요성 관련 보도)

· 외래어에 어려운 IT·금융 용어까지… "어르신, 불편하시죠"(동아일보, 2018. 3 .22)
· 문맹, 치매발생위험 높다(헬스조선, '17. 1. 3.)
· 글 모르는 성인에게 '재난 문자'는 무용지물…(연합뉴스, '16. 9. 30.)
· 성인 6.4% 아직도 까막눈(문화일보, '16. 3. 2.)
· 늘어나는 新문맹 외국인 등 유입 증가로 264만명(국민일보, '16. 3. 2.)
· 문해교육 심층기획보도(총 4편) (EBS 뉴스, '15. 4. 9.~ 4. 14.)

□ (문해학습자 사례 보도)

· "글 배워 처음 써보니 응어리 풀려… 글이 이리도 소중한고"(문화일보, 2018. 3. 8)
· '늦깎이의 꿈'…다시 배움의 길로(KBS 9시 뉴스, '17. 9. 2.)
· 장롱 속에 보관만 하길 40년…이제야 읽는 아들의 편지(SBS 9시 뉴스, '17. 9. 2.)
· '까막눈 어르신'들이 한글 배운 이유는?(YTN, '17. 5. 31.)
· 글 깨친 기형도 시인의 어머니, 팔순 돼 아들 작품 앞에 앉다(한겨레신문, '15.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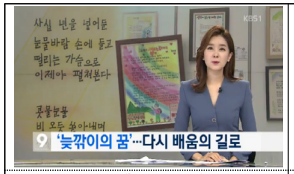

KBS('17. 9. 2.)

SBS('17.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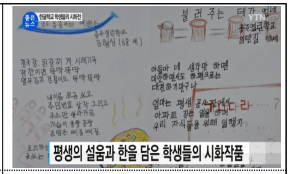

YTN('17. 5. 31.)

□ (문해 기획 프로그램)

· 세계 문해의 달 특집 <공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EBS, '17. 9. 8.)
· 1박 2일 <시인과 함께 떠나는 감성여행> 경남 하동 할머니들의 시 낭송회(KBS, '17. 4. 16.)
· 스타킹 <칠곡 시스타> 칠곡군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의 시 소개(SBS, '16. 1. 19.)
· 추석특집 <할머니는 1학년> 프로그램 방영(KBS1, '14. 9. 9.)
· 도전 골든벨, 설특집 <늦깎이 한글학생 행복골든벨> 방영(KBS1, '14. 2. 2.)

공부꽃이 피었습니다(EBS,'17. 9. 8.)

1박 2일(KBS, '17.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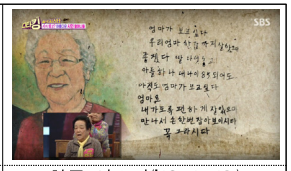
칠곡 시스타('16. 1. 19.)

참고 4 문해교육관련 법령 조문 및 지원 근거

□ 관련 법령 조문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가문해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 근거

- **국정과제 52-5-1**
- **'18~'22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사다리 마련' 추진계획 발표, '18.2.23, 교육부)
  - 문해·학력보완 기회 확대-**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 집중 지원 기간 설정,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원 확대** 등 기본계획 발표
- **'18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18.3.15)
  - 소규모 문해교육에 대한 수요 부응, 개인학습 지원, 생활문해교육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면서 '17년 성인문해능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비문해 인구가 311만명으로 추정되고 그 중 11%인 34만명이 문해교육 참가 희망에 따라 '22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발표

참고 5 문해교육 대상자 현황

1 2017년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2017년 국가승인통계조사)

- 조사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행 : (주)한국리서치)
- 조사대상 : 17개 시·도 모든 가구 내 만 18세 이상 성인(유효표본: 4,004명)
- 조사내용 : 생활문해능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총 43개의 측정 항목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로 가구 개별방문 대면면접(표집틀: 국가기초구역)
-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의 최대허용(표집오차 ±2.3%p)
- 조사기간: 2017년 9월 15일~ 11월 17일

□ 문해수준별 추정인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2017년 국가승인통계조사)

구분	수준정의	비율(%)	추정인구(명)	'14년 대비
수준1	성인초등문해교육과정 1단계(초1~2학년 수준 학습 필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7.2**	**3,111,378**	**0.8% 증**
수준2	성인초등문해교육과정 2단계(초 3~4학년 수준 학습 필요)	2.2	937,603	0.9% 감
	성인초등문해교육과정 3단계(초 5~6학년 수준 학습 필요)	2.9	1,235,799	
	기본적인 읽고,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5.1	2,173,402	
수준3	성인중학문해교육과정 1단계(중 1학년 수준 학습 필요)	1.0	413,062	6.1% 감
	성인중학문해교육과정 2단계(중 2학년 수준 학습 필요)	4.0	1,703,826	
	성인중학문해교육과정 3단계(중 3학년 수준 학습 필요)	5.1	2,211,238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10.1	4,328,126	
수준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능력을 갖춘 수준(중학 이상)	77.6	33,365,908	6.2% 증
합계		100	42,978,815	

□ 지역별 현황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이상
서울 및 광역시	5.7%	4.3%	9.3%	80.8%
중소도시	7.2%	5.4%	11.1%	76.4%
농산어촌	**16.2%**	7.4%	9.3%	67%

□ 연령대별 현황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이상
18~29세	1.2%	0.6%	4.6%	93.6%
30~39세	1.3%	1.3%	4.9%	92.6%
40~49세	0.7%	1.4%	6.6%	91.3%
50~59세	3.3%	4.6%	11.6%	80.4%
60~69세	14.2%	10.9%	20.9%	54%
70~79세	28.7%	21.7%	22%	27.6%
80세 이상	**67.7%**	11.9%	7.8%	12.5%

2 저학력 성인 현황(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약 13.1%) 추정

[30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6,928	9,393	11,406	2,013	21.4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운영	6,928	7,840	9,734	1,894	24.2
- 매치업 운영	-	1,553	1,672	119	7.7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4 - 303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미래교육기획과장(유지완), 사무관(황영숙), 연구사(이윤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K-MOOC 개발 및 운영)**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양방향 학습관리를 지원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매치업 운영)** 4차 산업혁명 대비 성인학습자 대상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기간	'15 ~ 계속 (**K-MOOC 개발 및 운영** '15 ~ 계속, **매치업 운영**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K-MOOC 개발 및 운영)** K-MOOC 강좌 약 500여개 운영 ○ **(매치업) 10개 과정 운영** ※ '18년부터 매년 10과정 추가 개발·운영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 없음

※ 사업이관

- K-MOOC : ('18)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 ('19)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활성화'
- 매치업 : ('1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 ('19)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활성화'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K-MOOC 개발 및 운영 : 9,734백만원

○ **(사업내용)**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 촉진

- 기관의 자율성을 토대로 **학문 분야별로 학습자 활용도와 범용성이 높은 양질의 강좌 개발**
- K-MOOC 강좌의 **오프라인 수업 활용**을 활성화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확산**

① 강좌 개발 및 운영 : 8,520백만원

- **강좌 개발(신규) : 50백만원 × 120개 강좌 = 6,000백만원**

※ 개발비 단가 : 강좌개발비 38백만원 + 강좌운영비 12백만원 = 50백만원

※ 개발비 물량 : 무크선도대학 30개('17선정 10개교×3개) + 묶음 강좌 및 개별강좌 90개

- **강좌 운영(기존) : 12백만원 × 200개 = 2,400백만원**
  4백만원 × 30개 = 120백만원*

※ 운영비 단가 : 1백만원(TA운영비) × 6개월 × 2회 = 12백만원

※ 운영비 물량 : 100개('17년 개발강좌)+100개('18년 개발강좌)

* 운영비 지원이 종료('15~'16년 개발) 되는 강좌 중 우수강좌 선정 후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 4백만원 지원, 우수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②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574백만원

-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240백만원 × 1식 = 240백만원
- CDN 이용료 : 120백만원 × 1식 = 120백만원
- 스토리지 증설 등 : 120백만원 × 1식 = 120백만원

※ 강좌 수 증가, 플랫폼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서버 용량 초과로 시스템 부하가 지속적 가중으로 인해 스토리지 및 WAS서버 증설

- K-MOOC 자체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94백만원 × 1식 = 94백만원

③ **K-MOOC 서비스 운영 : 640백만원**

- 정보서비스 이용료 : 40백만원 × 1식 = 40백만원
- 저작권 보호 지원 : 70백만원 × 1식 = 70백만원
- 평가 및 컨설팅 :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홍보 활성화 :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기타 운영비 : 180백만원 × 1식 = 180백만원
- 연구 조사 : 50백만원 × 1식 = 50백만원

2 매치업(Match業) 운영 : 1,672백만원

○ **(사업내용) 성인학습자의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온라인 중심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 운영**

- 대표기업이 **핵심직무**를 **제안**하고,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인증 평가**하므로 **산업-교육 간 미스매치 해소** 및 **산업 변화**에 **즉각 대응** 가능

① **매치업(Match業) 운영 관리시스템 개발 및 도입 : 510백만원**

-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유지비 :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유지비 : 220백만원 × 1식 = 220백만원
- 타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비 : 190백만원 × 1식 = 190백만원

② **과정개발 및 평가 : 990백만원**

- (신규) 과정개발 및 평가 : 80백만원 × 10과정 = 800백만원
- (계속) 기존과정 유지보수 및 인증평가 : 19백만원 × 10과정 = 190백만원

③ **협의체 운영 및 기반조성 : 172백만원**

- 협의체 운영 : 29백만원
  - 상설자문단 운영 : 2.5백만원 × 2회 = 5백만원
  - 상시협의체 운영 : 12백만원 × 2회 = 24백만원
- 기반조성(기업 MOU, 가이드북 제작, 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등) : 143백만원×1식= 143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활성화	7,840	11,406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강좌 100여개 신규 개발 반영	**강좌 120여개 신규 개발** 운영강좌 증가에 따른 플랫폼 스토리지 등 증설 등 제반비용 증가 K-MOOC 자체 플랫폼 구축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반영
▪ 매치업 운영	매치업 프로그램 10개 신규 과정 운영	**매치업 신규 10개 교육과정 운영** 매치업 기존 10개 교육과정 수정·보완 매치업 플랫폼 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운영비 반영

□ **지원 필요성**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무크(MOOC)의 국제적 확산과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수·학생·성인 학습자들의 수강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요분야의 과목 개발·제공 필요
  - (학습자) 강좌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관심사항을 가진 학습자의 요구 부응을 위해 개설 강좌 확대 필요
  - (대학) 국내 대학의 좋은 강의 모델의 공개·확산을 통한 대학 수업 혁신 촉진 및 국내 고등교육의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
  -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 K-MOOC를 활용한 교원,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시간 인정 및 민간기업의 직원 재교육 연수 활용

○ **매치업(Match業) 운영**

- 지식의 생명 주기 감소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제공 필요
  - (학습자)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최대한 보장
  - (교육기관) 자율과 책임 원칙으로 교육과정 개설·운영의 자율성 보장
  - (노동시장) 기업·산업체가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결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여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 해소
  - (정부) 교육기관과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습자의 실질적 선택권 확보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에 중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6,928**	**9,393**	**11,406**	**2,013**	**21.4**
① K-MOOC 개발 및 운영	6,928	7,840	9,734	1,894	24.2
▪ 강좌 개발 및 운영	6,008	6,968	8,520	1,552	22.3
- 강좌 개발(신규)	5,000 (100개x50백만원)	5,000 (100개x50백만원)	6,000 (120개x50백만원)	1,000	20.0
- 강좌 운영(기존)	1,008 (84개x12백만원)	1,968 (164개x12백만원)	2,520 (200개x12백만원)+ (30개x4백만원)	552	28.0
▪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330	360	574	214	59.4
-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10 (1식x210백만원)	240 (1식x240백만원)	240 (1식x240백만원)	-	-
- CDN 이용료	120 (12월x10백만원)	120 (12월x10백만원)	120 (12월x10백만원)	-	-
- 스토리지 증설 등	-	-	120 (1식x120 백만원)	120	순증
- K-MOOC 자체 플랫폼 구축 및 기능고도화를 위한 ISP수립비	-	-	94 (1식x94백만원)	94	순증
▪ K-MOOC 서비스 운영	590	512	640	128	25.0
- 정보서비스 이용료	40 (1식x40백만원)	40 (1식x40백만원)	40 (1식x40백만원)	-	-
- 저작권 보호 지원	60 (1식x60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70 (1식x70백만원)	-	-
- 평가 및 컨설팅	70 (1식x70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150 (1식x150백만원)	50	50.0
- 홍보 활성화	258 (1식x258백만원)	150 (1식x150백만원)	150 (1식x150백만원)	-	-
- 기타 운영비	112 (1식x112백만원)	152 (1식x152백만원)	180 (1식x180백만원)	28	18.4
- 연구조사	50 (1식x50백만원)	-	50 (1식x50백만원)	50	순증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② 매치업 운영	-	1,553	1,672	119	7.7
▪ 매치업(Match業)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도입	-	320	510	190	59.4
-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유지비	-	100 (1식x100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	-
-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유지비	-	220 (1식x220백만원)	220 (1식x220백만원)	-	-
- 타기관 연계시스템 구축·유지비	-	-	190 (1식x190백만원)	190	순증
▪ 과정개발 및 평가	-	800	990	190	23.8
- (신규) 과정개발 및 평가	-	800 (10과정x80백만원)	800 (10과정x80백만원)	-	-
- (계속) 기존과정 유지보수 및 인증평가	-	-	190 (10과정x19백만원)	190	순증
▪ 협의체 운영 및 기반조성	-	433	172	△261	△60.3
- 협의체 운영	-	29 (1식x28.74백만원)	29 (1식x29백만원)	-	-
- 기반조성(기업 MOU, 가이드북 제작, 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등)	-	143 (1식x143백만원)	143 (1식x143백만원)	-	-
-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261 (1식x261백만원)	-	△261	순감
□ **비목**(합계)	**6,928**	**9,393**	**11,406**	2,013	21.4
○사업출연금(350-02)	**6,928**	**9,393**	**11,406**	2,013	21.4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운영

- 신산업·주요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직업교육 강좌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강좌 확대 제공
-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자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거꾸로 수업 등 수업혁신을 통한 대학 변화 유도, 학점인정 및 재작자 공통 직무역량 강화 지원 등 K-MOOC 강좌 활용 유도

○ 매치업 운영

- 매년 10개의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 개발·운영하여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단계적 확대
- 학습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선 및 기능고도화 지속 관리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의 참여 확대 및 이수결과 활용 지원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	-	-	-	-
'18	-	-	-	-	-
'19	-	-	11,406	■ K-MOOC 개발 및 운영 9,734 ■ 매치업 운영 1,672	-
'20	-	-	11,406	■ K-MOOC 개발 및 운영 9,734 ■ 매치업 운영 1,672	-
'21	-	-	11,406	■ K-MOOC 개발 및 운영 9,734 ■ 매치업 운영 1,672	-
'22	-	-	11,406	■ K-MOOC 개발 및 운영 9,734 ■ 매치업 운영 1,672	-
연평균 증가율 (%)	-	-	-	-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393	11,406	2,013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중 출연금(350) 사업 ○ 출연금(350)은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으로 산정 - 총 사업비 지출 ÷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한국형온라인강의 개발 및 활용 활성화(11,406백만원)>** ○ 11,406백만원을 "교육서비스업"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72백만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 11,406백만원 ÷ 72백만원 = 158.4명 □ **2018년 고용효과: 130.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4조③
- 「고등교육법」제26조(공개강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

○ 추진경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 및 운영】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15.2.3)
- '15년 K-MOOC 시범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15.2.26., 부총리 결재)
- K-MOOC 시범서비스 개통('15.10.14, www.kmooc.kr)

【매치업(Match業) 운영】

- 더민주 대선 공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 조성"('17.4.28.)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17.7.19.)
- (가칭)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본계획 수립('17.10.23.부총리 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K-MOOC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	-	22.68	40.18	-	69.28	-	93.93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2.68** **(22.68)**	- (-)	- (-)	22.68 (22.68)	**22.68** (22.68)	- (-)	- (-)
'16년	**40.18** **(40.18)**	- (-)	- (-)	40.18 (40.18)	**40.18** **(40.18)**	- (-)	- (-)
'17년	**69.28** **(69.28)**	- (-)	- (-)	69.28 (69.28)	**69.28** **(69.28)**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9.28		93.93	-	93.93	93.93	100

○ 집행현황

- K-MOOC(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 7,840백만원 집행
- 매치업 운영(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1,553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지적사항	조치결과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예·결산의 과도한 불일치 개선 및 K-MOOC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15년 결산 교문위)	■ 교육부 내 사업담당과(대학재정과)와 예산담당과(국평원 출연금, 평생학습정책과)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관리 추진
■ K-MOOC 사업은 '대학교육의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평원의 기관 고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6년 교문위 검토보고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에서 분리하여 '18년부터 '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 출연사업으로 편성
■ K-MOOC 사업과 KOCW 사업 연계 활성화 및 통합 관련 협의 필요('16년 국정감사)	■ KOCW를 K-MOOC 강좌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17년 사업기본계획에 반영, K-MOOC와 KOCW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단계적 추진방안 논의
■ K-MOOC 사업과 KOCW 사업의 사업성과 분절, 예산분배 비효율 개선 필요 ('17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 동일 사업(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분배의 효율성 개선/ 체계적인 예산 관리 체계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
■ 사이버대학, 산업계 참여 등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강좌 개설 필요, K-MOOC와 KOCW의 서비스 일원화 관리 필요('17년 국정감사)	■ '18년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강좌개발 주체를 기존 대학·전문대학에서 사이버대학·기업·출연연까지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직업무크 신규 도입 등 다양한 강좌 확대 ■ K-MOOC와 KOCW 통합방안 등 K-MOOC 플랫폼 개편방안 검토 중

<매치업 운영>

지적사항	조치결과
■ 매치업 운영의 효과성 및 통용성 검토 후 단계적 확대 필요('17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 '18년 10개 신규과정 시범 도입하였고, 매년 10개 신규과정을 추가·개발함으로써 단계적 확대 예정
■ 매치업 운영의 시범사업 전환 필요 ('17년 교문위 검토보고서)	■ '18년 10개 신규과정 시범 도입하였고, 매년 10개 신규과정을 추가·개발함으로써 단계적 확대 예정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MOOC 활성화

- '12년 미국에서 시작된 무크(MOOC)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 가속

구분		Coursera	edX	Fun	Udacity	XuetangX
설립		'12.4 (美) 대학교수주도 (Andrew Ng. & Daphne Koller)	'12.5 (美) 대학주도 (Harvard, MIT)	'13.10 (佛) 프랑스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	'12.2 (美) 대학교수주도 (Sebastian Thrun)	'13.10 (中) 중국 정부
주체		**기업** (실리콘밸리)	**대학** (Harvard, MIT)	**프랑스 정부** (고등교육 및 연구부)	**벤처기업** (Andressen 등)	**대학(칭화대) 중국 정부**
강좌	수	1,988	1,335	254	206	1,056
	묶음강좌	**Specialization** (3과목 이상 묶어 유료 과정 운영)	**XSeries** (대학-기업 등 협력단체 연계) **MicroMaster** (강좌개발기관 학점 인정)	-	**Nanodegree** (기업체 개발, 분야별 전문가 지도 및 멘토링) **Udacity connect** (학습자 간 면대면 학습)	-

○ 애리조나주립대 MOOC 학점 인정

- 2015년 7월부터 글로벌 신입생 아카데미 도입, edx를 통해 정규 학점 인정이 가능한 12개의 신입생용 교양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 과목 선택 시 49달러를 내고 등록하거나 청강생으로 선택해 무료로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받은 후 과목당 600달러 지불하면 애리조나 주립대의 정규학점을 취득

(6) 사업추진절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매치업(Match業)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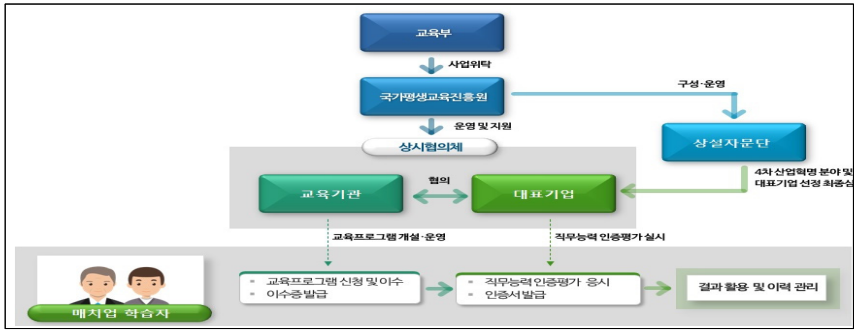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K-MOOC 수강신청 누적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898,483	K-MOOC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20% 상승으로 목표치 설정	전년 수강 신청 건수(누적) * 120%	K-MOOC 플랫폼에서 내려 받기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용 현황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습자) 다양한 분야의 우수강의 콘텐츠 확보 필요('16년 K-MOOC 만족도 조사 응답자 건의사항, 전체응답자의 59.9%)

※ 미국 edX 1,900개, Coursera 2,670개('18.2 기준)

□ (대학)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수업운영 사례 공유 등('15년 무크 선도대학 대상 의견조사, '18.1.실시)

□ (산업체) 4차 산업분야 관련 강좌 개발 및 신입사원·재직자 직무역량 교육활용 확대 필요(K-MOOC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17.2., H사 및 S사 교육담당자)

참고2 사업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4차 산업혁명분야 및 직업교육 분야 강좌 확대로 취업·재교육 지원**

○ **(취업 지원)** K-MOOC 강좌 "알기 쉬운 드론항법 제어"를 수강하고 무인항공기 업체에 취업(취업준비생 김○○씨)

○ **(실무형 직무역량 교육) '18년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강좌**(5묶음) 및 **직업교육분야**(11강좌)**를 신설·선정 →** 대학생, 취업준비생, 기업 재직자 등에게 **다양한 직업분야 실무역량 강화 지원**

※ SK주식회사에 K-MOOC강좌 중 4차 산업분야 강좌(30여개)를 선별적 제공

○ **(산-학 연계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강좌개발에 기업 참여 확대** → 현장실무과정 확대로 기업 인재 양성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주)SK가 클라우드 과정을, 세종사이버대가 세종대, 한국정보보호학회, ㈜NSHC와 블록체인 과정을 공동개발

○ **(공공분야 강좌 활용 확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 교육 훈련 등 상시학습 인정

□ **단기간에 K-MOOC 이용자 대폭 확대**

○ **(이용 확대)** 약 3년간 **방문자 수, 수강신청 건수 비약적 증가**

※ 방문자 수(누적) : ('15) 45만→ ('16) 220만→ ('17) 470만→ **('18.5) 596만**

※ 수강신청건수(누적) : ('15) 5.6만→ ('16) 18.2만→ ('17) 44.5만→ **('18.5) 58.1만**

□ **명품 콘텐츠 개발 및 차별화된 교수-학습 지원 제공**

○ **(우수 명품 콘텐츠) 개발단계**부터 **온라인콘텐츠의 특성**을 **활용, 유수대학* 참여 확대** → 우수 **명품 콘텐츠 개발·제공**

※ 강좌 개발 현황 : ('15) 27강좌 → ('16) 143강좌 → ('17) 324강좌 → ('18) 500강좌

* 서울대, 포항공대, 부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단국대, 경북대 등 70교 참여

○ **(양방향 교수학습 지원) 기존 온라인 강좌와 차별화된**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 **토론, 퀴즈 및 과제제출** 등의 폭넓은 **학습기능** 지원

※ '17년 K-MOOC 만족도 조사 결과, 기존 E-러닝과 K-MOOC의 차이점에 대해 유명한 교수님들의 우수 강좌가 많음(63.8%),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 쌍방향 소통(9.9%)으로 응답

< 현장의 변화 >

□ **대학 학점인정 확대 및 교수-학습 혁신 지원**

○ **(대학 간 학점인정 확대) K-MOOC 참여대학 간 협약 등을 통해 학점 인정·교류 확대**

※ '17년 2학기 기준, 33개교에서 101강좌, 타교 K-MOOC 강좌 11개교 학점인정

○ **(교수-학습 혁신 지원)** 대학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확산 등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에 K-MOOC가 촉매제**로서 역할

※ K-MOOC 참여대학 70개교중 24개교에서 거꾸로 학습 진행('18.2)

참고2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용 현황('18.11.30. 기준)

□ 학습자 현황

○ '15.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18년 11월말 기준 **방문 752만** 건, **수강신청 75만** 건, **회원가입 35만** 명

구 분	방문(건)	수강신청(건)*	회원가입(명)
인원(누계)	7,524,051	748,736	348,854

* 청강신청(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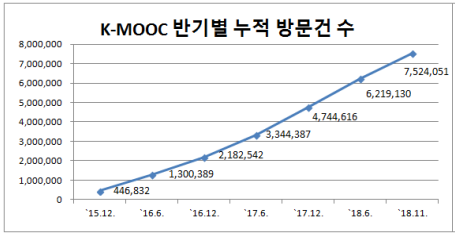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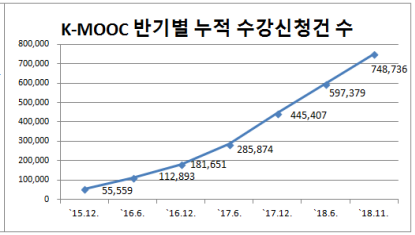

□ 연령별 회원가입자 수

○ 20대(42.1%), 20세 미만(17.4%), 30대(14.4%), 40대(13.9%) 순으로 분포

구 분	인원(%)
20세 미만	60,588 (17.4)
20세 ~ 29세	146,792 (42.1)
30세 ~ 39세	50,365 (14.4)
40세 ~ 49세	48,569 (13.9)
50세 ~ 59세	31,117 (8.9)
60세 이상	11,423 (3.3)
계	348,8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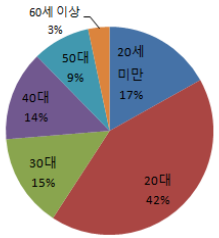

□ 강좌 개발 및 운영 현황

○ K-MOOC는 **'15년 27개** 강좌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17년 324개** 강좌를 개설·운영하였으며 **'18년 500개 이상 강좌 제공**

※ 강좌 수(누적) ('15) 27개 → ('16) 143개 → ('17) 324개 → ('18.11.) 510개

< 학문 분야별 강좌 수('18.11.22. 기준) >

구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총계
강좌수	133 (26.1%)	120 (23.5%)	19 (3.7%)	120 (23.5%)	57 (11.2%)	29 (5.7%)	32 (6.3%)	510 (100%)

구 분		전체인구 (20세이상)	합 계 (잠재수요자 비율,%)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중학교 잠재수요자
특별광역시	서 울	7,850,612	681,614 (8.7%)	173,434 (2.2%)	508,180 (6.5%)
	부 산	2,792,377	354,288 (12.7%)	95,984 (3.4%)	258,304 (9.3%)
	대 구	1,943,199	249,968 (12.9%)	68,600 (3.5%)	181,368 (9.3%)
	인 천	2,235,462	237,278 (10.6%)	66,991 (3.0%)	170,287 (7.6%)
	광 주	1,139,935	118,198 (10.4%)	36,041 (3.2%)	82,157 (7.2%)
	대 전	1,184,074	128,317 (10.8%)	34,887 (2.9%)	93,430 (7.9%)
	울 산	884,359	86,349 (9.8%)	24,639 (2.8%)	61,710 (7.0%)
도	경 기	9,360,325	911,797 (9.7%)	271,174 (2.9%)	640,623 (6.8%)
	강 원	1,206,863	243,246 (20.2%)	82,729 (6.9%)	160,517 (13.3%)
	충 북	1,223,604	225,613 (18.4%)	72,923 (6.0%)	152,690 (12.5%)
	충 남	1,605,880	333,196 (20.7%)	111,422 (6.9%)	221,774 (13.8%)
	전 북	1,433,909	293,899 (20.5%)	110,826 (7.7%)	183,073 (12.8%)
	전 남	1,414,445	375,221 (26.5%)	146,885 (10.4%)	228,336 (16.1%)
	경 북	2,120,411	447,598 (21.1%)	156,468 (7.4%)	291,130 (13.7%)
	경 남	2,554,048	399,594 (15.6%)	145,976 (5.7%)	253,618 (9.9%)
특별자치도	제 주	453,548	67,053 (14.8%)	26,406 (5.8%)	40,647 (9.0%)
특별자치시	세 종	148,570	19,367 (13.0%)	5,918 (4.0%)	13,449 (9.1%)
합 계		39,551,621	5,172,596 (13.1%)	1,631,303 (4.1%)	3,541,293 (9.0%)

*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중퇴+미취학 / 중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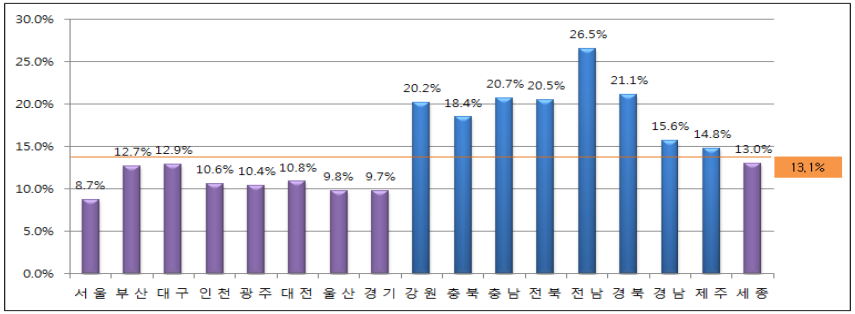

[3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출연	14,407	8,600	7,846	△754	△8.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35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박봉서), 연구관(김태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지원 ○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국가 수준 평생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전담 추진기구의 통합 구축 지원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4항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학점은행제 등록 학습자 141.6만명(연 11.5만명) ○ 학점인정 규모 연 8백 6십만 학점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연 7만 3천명 ○ 독학학위제 학적보유자 14만 2천명(연 1만명) ○ 독학학위제 시험 지원자 연 2만 9천명 ○ 평생교육백서 발간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1 인건비 : 정규직 인건비 5,687백만원

2 경상비 : 기관 운영비 3,262백만원

3 사업비 :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11,102백만원

① 학점은행제 운영 : 6,438백만원

▸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 운영지원

[1. 학점은행제 제도운영] : 1,187백만원

1-1. 제도 개선 : 27백만원

○ 표준교육과정 등 제도 개선 : 27,000천원×1식=27백만원

1-2. 학위수여식 개최 : 72백만원

○ 학위수여식 개최 : 72,000천원×1식=72백만원

1-3.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 13백만원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 : 2,250천원×6회=13.5백만원

1-4. 학점은행제 사업운영경비 : 578백만원

○ 학점은행제 사업운영경비 : 540,000천원×1식=540백만원
○ 학점은행제 홍보 : 29,000천원×1식=29백만원
○ 제도운영을 위한 회의비 : 9,000천원×1식=9백만원

1-5. 학점은행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497백만원

○ 학점은행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496,800천원×1식=496.8백만원

[2. 평가인정] : 752백만원

2-1. 학점은행제 유형별 평가인정 : 732백만원

○ 학점은행제 유형별 평가인정 : 732백만원
- 기본운영여건 : 250천원×390개(기관수)×2인=195백만원
- 학습과정 : 300천원×696명(평가위원수)×2인=418백만원
- 출장비 : 300천원×175개(기관)×2인=105백만원
- 제반운영비 : 14,000천원×1식=14백만원

2-2.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 20백만원

○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 200천원×2명×50회=20백만원

[3. 학사행정상담] : 2,104백만원

3-1.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 21백만원

○ 학위증 등 각종 양식 인쇄 : 9,000천원(단가)×2회=18백만원
○ 학점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 800천원(단가)×4회=3백만원

3-2. 학사행정서비스 : 201백만원

○ 각종 행정지원 시스템 : 201백만원
- 인터넷증명서발급시스템·무인증명서 발급기기 유지보수
: 1,833천원x12월=22백만원
- SMS 사용료 : 1,256천원x12월=15백만원
- 학점인정 등 각종 결제서비스 지불대행 수수료
: 40,400천원x4분기=162백만원
- PC원격 접속프로그램 사용료 : 345천원x4분기=1.4백만원
-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 : 55천원x12월=0.6백만원

3-3. 학점인정 신청접수 및 자료입력 등 위탁운영 : 436백만원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방문접수 지원 등 : 436백만원
- 위탁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등 : 436,000천원×1식=436백만원

3-4. 학점은행제 콜센터 위탁 운영 : 1,446백만원

○ 학점은행제 콜센터 위탁 운영 : 1,446백만원
- 위탁운영비 : 1,213,000천원×1식=1,213백만원
- 시스템 및 시설임대 : 193,000×1식=193백만원
- 상담 어플리케이션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 40,000천원×1식=40백만원

[4. 사후관리] : 99백만원

4-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 90백만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정기 및 수시) : 90백만원
- 사후관리 전문가 수당 : 300천원(단가)×120회=36백만원
※ 사후점검 현황(정기) : 연평균 110개 기관 사후관리
- 사후관리 현장실사 여비 : 150천원(단가)×120회×3명=54백만원
※ 1인 전문가수당 = 1개 기관당 300천원
※ 여비 : 일비, 운임비, 간담회비 등 포함

4-2.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 7백만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실무자 연수 개최 : 7백만원
- 장소 임대료 : 1,000천원×1식=1백만원
- 자료집 및 배너 등 : 5,000천원×1식=5백만원
- 연수 준비(간담회비 등) : 1,000천원x1식=1백만원

4-3. 각종 인쇄 등 : 2백만원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실태 보고서 인쇄 : 1백만원
- 인쇄비 : 1,000천원×1식=1백만원
○ 벌점부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 인쇄 및 통보 조치 : 1백만원
- 인쇄 및 우편발송 : 1,000천원×1식=1백만원

[5.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 800백만원

5-1.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자료 수집·검증·관리·운영 : 320백만원

○ 오류, 허위정보 등 신고센터 운영 : 10,000천원×1식=10백만원

○ 분석 및 조사 : 25,000천원×1식=25백만원
○ 협의체(자문위원회, 모니터링단 등) 운영 : 26,000천원×1식=26백만원
○ 홍보 및 활성화(홍보물 제작, 연수 등) : 35,000천원×1식=35백만원
○ 현장 실태조사(현장점검 및 컨설팅) : 45,000천원×1식=45백만원
○ 전담조직 운영 : 179,000천원×1식=179백만원

5-2.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시스템 개선 및 운영 : 480백만원

○ 정보공시 관리시스템(관리, 검증, 공시통계) 개선
: 245,000천원×1식=245백만원
○ 학점은행제 알리미(대국민홈페이지) 기능 개선
: 84,000천원×1식=84백만원
○ 인프라(HW, SW) 유지보수 : 36,000천원×1식=36백만원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 115,000천원×1식=115백만원

[6.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496백만원

② 독학학위제 운영 : 2,967백만원

▸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직자, 군인, 수용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학습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 제공

[1. 고사관리] : 805백만원

○ 학위수여식 개최 : 8,100천원×1회=8백만원
○ 시험문답지 등 제작 : 45,225천원×4회=181백만원
○ 시험운영 관련 출장비 : 5,850천원×4회=23백만원
○ 시험관리감독 제수당 : 119,000천원×4회=476백만
○ 시험장 및 시험실 임차료 : 11,250천원×4회=45백만원
○ 시험자격 심사 관련 비용 : 7,200천원×4회=29백만원
○ 제도개선, 법령 및 규정관리 : 4,000천원×1식=4백만원
○ 독학학위제 자료 제작 : 9,675천원×4식=39백만원

[2. 출제관리] : 968백만원

2-1. 시험문항개발 및 전산관리 : 289백만원

○ 문항개발 의뢰 및 회수 : 1,250천원×4회=5백만원
○ 시험문항개발 수당 : 20천원(문항당 단가)×14,216문항=284백만원

2-2. 시험 선제관리 : 80백만원

○ 선제위원 수당 : 210천원×217과목=45백만원
○ 선제관리위원 수당 : 50천원×217과목=11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6,000천원×4회=24백만원

2-3. 시험 편집관리 : 378백만원

○ 합숙장소 임차료 : 27,950천원×4회=112백만원
○ 편집위원 수당 : 33,000천원×4회=132백만원
○ 검수위원 수당 : 10,850천원×4회=43백만원
○ 격리수당 : 4,700천원×4회=19백만원
○ 편집위원 등 식비 : 15,025천원×4회=60백만원
○ 수송 차량 및 사무기기 임차료 등 : 3,000천원×4회=12백만원

2-4. 시험 채점 및 합격자관리 : 200백만원

○ 채점/점자해독 수당 : 65,000천원×2회=130백만원
○ 채점보조 일용임금 : 6,000천원×4회=24백만원
○ 채점위원 식비 등 : 6,000천원×2회=12백만원
○ 일반계약직 고용 : 33,600천원×1명=34백만원

2-5. 독학학위제 운영 : 21백만원

○ 운영위원회 : 3,000천원×4회=12백만원
○ 분과위원회 : 200천원×11전공×4회=9백만원

[3. 독학정보시스템 유지] : 72백만원

○ 독학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72,000천원×1식=72백만원

[4.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122백만원

③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200백만원

▸ 제4자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변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 간행물(평생교육백서 등) 발간, 정책연구·조사, 포럼·세미나 개최 등

[1.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100백만원

1-1. 지원 및 조사분석 : 100백만원

○ 평생교육정책연구 등 : 100백만원

[2.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00백만원

④ 평생교육양성연수 : 127백만원

▸ 국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정책·사업 관련 동향 및 우수사례 정보교류 및 각종 新-변화요인·문제점·해결책 등에 대한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1. 평생교육양성연수] : 27백만원

1-1.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27백만원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등 : 27백만원

[2.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00백만원

⑤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 158백만원

▸ 국내외 평생교육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우리나라 평생교육 우수 정책 및 사업 운영 경험의 국제사회 공유·확산

[1.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58백만원

1-1.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및 확대 : 58백만원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및 확대 등 : 58백만원

[2.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00백만원

⑥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 721백만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추진 및 노후 전산 인프라 교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운영 효율성 개선 및 보안 안전성 확보

[1.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 534백만원

1-1. 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534백만원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34,000천원×1식=534백만원

[2.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187백만원

⑦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491백만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교육 정보를 발굴 및 제공하고, 공유유통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표준(KS)화 기반 조성,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업무확대

[1. 평생학습포털] : 238백만원

1-1. 평생학습포털 시스템 고도화 : 189백만원

○ 포털 시스템 고도화 : 85백만원
- 모바일 환경 최적화, CLIP 콘텐츠 개발
- 포털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 구축

○ 포털 인프라(H/W) 유지보수 : 22백만원×1식=22백만원

○ 포털 시스템(S/W) 유지보수 : 82백만원×1식=82백만원

1-2. 평생학습포털 활성화 : 49백만원

○ 평생교육 저장표준 국가표준(KS)화 연구 : 30백만원×1식=30백만원

○ 평생교육정보 콘텐츠 연계 확대 : 19백만원
- 콘텐츠 연계 대상 기관 자료 조사
- 공공 및 민간영역 연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운영

[2.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 253백만원

④ 자체수입 : 기관 자체수입 △12,205백만원

○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 △10,026백만원

○ 독학학위제 수험료 수입 : △520백만원

○ 기타 수입 : △280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1,379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8,600**	**7,846**
■ 인건비	5,460	5,687
■ 경상비	3,264	3,262
■ 사업비	12,132	11,102
·학점은행제운영	6,288	6,438
·독학학위제운영	2,967	2,967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130	200
·평생교육양성연수	127	127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108	158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21	721
·온라인평생학습지원 체제구축	238	491
·나노디그리운영	1,553	-
■ 자체수입	△12,256	△12,205

※ '19년부터 '나노디그리(매치업) 예산'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에 편성

□ 지원 필요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제19조)에 의한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필요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국가에서 출연

-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사행정(학점인정 및 학습자등록, 학위사정 등), 학습자 상담 등에 필요한 사업비
-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 시험 문항 출제 및 선제, 고사관리, 학습자 상담 등에 필요한 사업비
- 평생교육 진흥지원조사,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등 기타 사업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14,407	8,600	7,846	△754	△8.8
1. 인건비	5,322	5,460	5,687	227	4.2
2. 경상운영비	3,494	3,264	3,262	△2	△0.1
3. 사업비	17,546	12,132	11,102	△1,030	△8.5
■ 학점은행제 운영	5,455 (1식x5,455백만)	6,288 (1식x6,288백만)	6,438 (1식×6,438백만)	150	2.4
- 제도운영	1,070 (1식x1,070백만)	1,187 (1식x1,187백만)	1,187 (1식x1,187백만)	-	-
- 평가인정	435 (1식x435백만)	752 (1식x752백만)	752 (1식x752백만)	-	-
- 학사행정상담	1,954 (1식x1,954백만)	1,954 (1식x1,954백만)	2,104 (1식x2,104백만)	150	7.7
- 사후관리	96 (1식x96백만)	99 (1식x99백만)	99 (1식x99백만)	-	-
- 정보공시	900 (1식x900백만)	800 (1식x800백만)	800 (1식x800백만)	-	-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1,000 (1식x1,000백만)	1,496 (1식x1,496백만)	1,496 (1식x1,496백만)	-	-
■ 독학학위제 운영	2,305 (1식x2,305백만)	2,967 (1식x2,967백만)	2,967 (1식x2,967백만)	-	-
- 고사관리	805 (1식x805백만)	805 (1식x805백만)	805 (1식x805백만)	-	-
- 출제관리	832 (1식x832백만)	968 (1식x968백만)	968 (1식x968백만)	-	-
- 독학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	68 (1식x68백만)	72 (1식x72백만)	72 (1식x72백만)	-	-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600 (1식x600백만)	1,122 (1식x1,122백만)	1,122 (1식x1,122백만)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180 (1식x180백만)	130 (1식x130백만)	200 (1식×200백만)	70	53.8
- 지원·조사	100 (1식x100백만)	30 (1식x30백만)	100 (1식x100백만)	70	233.3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80 (1식x80백만)	100 (1식x100백만)	100 (1식x100백만)	-	-
■ 평생교육양성연수	100 (1식x100백만)	127 (1식x127백만)	127 (1식×127백만)	-	-
-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전문가 연수	20 (1식x20백만)	27 (1식x27백만)	27 (1식x27백만)	-	-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80 (1식x80백만)	100 (1식x100백만)	100 (1식x100백만)	-	-
■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320 (1식x320백만)	108 (1식x108백만)	158 (1식×158백만)	50	46.3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40 (1식x240백만)	8 (1식x8백만)	58 (1식x58백만)	50	625.0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80 (1식x80백만)	100 (1식x100백만)	100 (1식x100백만)	-	-
■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 운영	666 (1식x666백만)	721 (1식x721백만)	721 (1식x721백만)	-	-
-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운영	531 (1식x531백만)	534 (1식x534백만)	534 (1식x534백만)	-	-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135 (1식x135백만)	187 (1식x187백만)	187 (1식x187백만)	-	-
■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233 (1식x233백만)	238 (1식x238백만)	491 (1식×491백만)	253	106.3
- 평생학습포털 운영 등	233 (1식x189백만)	238 (1식x238백만)	238 (1식x238백만)	-	-
-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	-	253 (1식x253백만)	253	순증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6,918 (1식×6,918백만)	-	-	-	-
■ 청사이전비	1,369 (1식×1,369백만)	-	-	-	-
■ 나노디그리 운영	-	1,553 (1식×1,553백만)	-	△1,553	순감
4. 자체수입	△12,607	△12,256	△12,205	△51	△0.4
■ 자체수입	△12,607	△12,256	△12,205	△51	△0.4
- 학점은행제 수수료	△10,166	△10,026	△10,026	-	-
- 독학학위제 수험료	△526	△520	△520	-	-
- 전년도 이월금	△1,483	△1,430	△1,379	△51	△3.6
- 기타수입	△432	△280	△280	-	-
□ 비목(합계)	14,407	8,600	7,846	△754	△8.8
○기관운영출연금(350-01)	8,816	8,469	7,846	△623	△7.4
○사업출연금(350-02)	5,591	131	-	△131	순감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평생교육법 제2조의 6대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지원과 제19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11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평생교육 6대 영역 (평생교육법 제2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대 기능 (평생교육법 제19조)
	①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업무 ②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③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④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⑤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⑥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⑦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⑧「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⑨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⑩문해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⑪평생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4,407	■ 인건비 : 5,322백만원 ■ 경상운영비 : 3,627백만원 ■ 고유사업비 : 19,267백만원 ■ 자체수입 : △13,809백만원			
'18	8,600	■ 인건비 : 5,460백만원 ■ 경상운영비 : 3,264백만원 ■ 고유사업비 : 12,132백만원 ■ 자체수입 : △12,256백만원	8,600	■ 인건비 : 5,460백만원 ■ 경상운영비 : 3,264백만원 ■ 고유사업비 : 12,132백만원 ■ 자체수입 : △12,256백만원	-
'19	9,900	■ 인건비 : 5,687백만원 ■ 경상운영비 : 3,262백만원 ■ 고유사업비 : 13,156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7,846	■ 인건비 : 5,687백만원 ■ 경상운영비 : 3,262백만원 ■ 고유사업비 : 11,102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2,054
'20	17,820	■ 인건비 : 5,858백만원 ■ 경상운영비 : 3,360백만원 ■ 고유사업비 : 20,807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7,925	■ 인건비 : 5,858백만원 ■ 경상운영비 : 3,360백만원 ■ 고유사업비 : 10,912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9,895
'21	17,820	■ 인건비 : 6,034백만원 ■ 경상운영비 : 3,461백만원 ■ 고유사업비 : 20,530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7,766	■ 인건비 : 6,034백만원 ■ 경상운영비 : 3,461백만원 ■ 고유사업비 : 10,476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10,054
'22			7,689	■ 인건비 : 6,215백만원 ■ 경상운영비 : 3,565백만원 ■ 고유사업비 : 10,114백만원 ■ 자체수입 : △12,205백만원	7,689
연평균 증가율 (%)	4.3		△2.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600	7,846	△754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9.4	109	△10.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중 출연금(350) 사업 ○ 출연금(350)은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으로 산정 - 총 사업비 지출 ÷ 해당 산업별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09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7,846백만원)>** ○ 7,846백만원을 "교육서비스업"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72백만원으로 나누어 고용효과 산출 - 7,846백만원 ÷ 72백만원 = 109명 **□ 2018년 고용효과: 119.4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사업 분야	근거법령 및 규정
총괄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평생교육법 제19조 제7항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3조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1조 제5항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점은행제 운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독학학위제 운영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의 제1호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평생교육양성연수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의 제4호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평생교육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의 제5호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의 제7호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경위

▪ 종전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및 학점은행센터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의 업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포괄 승계(2008.1.2 진흥원 설립등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개원(2008.2.15)과 함께 각종 평생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7.68	57.68	73.32	100.01	100.01	144.07	144.07	86.00	86.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특이사항 없음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3.32 (73.32)**	(-)	(-)	73.32 (73.32)	**73.32 (73.32)**	(-)	(-)
'16년	**100.01 (100.01)**	(-)	(-)	100.01 (100.01)	**100.01 (100.01)**	(-)	(-)
'17년	**144.07 (144.07)**	(-)	(-)	144.07 (144.07)	**144.07 (144.07)**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4,407	14,407	9,900	△1,300	8,600	8,6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나노디그리(매치업)사업 2,853백만원→1,553백만원(△1,300)

○ 집행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8,600백만원 교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15년도 교문위 결산)

○ [정확한 세입 추계 반영]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입 추계 및 자체수입 확대 방안 등을 통해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2) 감사원 지적 : 해당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2015년도 교문위 결산 후속조치)

○ '18년 자체수입 예산은 정확한 세입 추계(최근 3년간 결산 평균 금액*)를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정확한 자체수입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고유사업의 안정적 추진가능함

* '18년) 12,256백만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학점은행제**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학점은행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생교육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일본)

◈ **일본의 학점인정을 통한 학위수여 제도**
◈ **비영리 목적의 국립기관**

□ **개요**
○ 1991년 설립, 56개 대학(기관)에서 130여개 전공 운영
○ 한국의 학점은행제와 유사한 일본의 단위 취득형 학위수여 제도

학분은행제(중국)

◈ **한국의 학점은행제 벤치마킹(2012년)**
◈ **상하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도입**

□ **개요**
○ 2012년 도입, 운영 조직 및 이용 대상 확대 중
○ 상하이 시민 대학, 25개 대학 연계 운영, 17.5만명 학습자 등록

(6)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계획 승인 및 출연금 교부(교육부) → 사업수행(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사업결과 및 예산집행 결과보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학점은행제운영 (평가인정) 학습과정 수	목표	신규	신규	신규	7,357	7,600	전년 목표치인 7,357과목에서 3% 상향	학습과정수= 당해년도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건수의 합계	학점은행제 DB자료 산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늘배움 포털 제공 콘텐츠 수 (개)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04,198	'17년 실적 689,470개(누적) 보다 매년 8% 상향조정한 804,198개로 설정	당해연도 등록된 컨텐츠 수 (시스템 DB산출)	늘배움 포털 시스템 추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학습자 서비스 만족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5	최근 3년 만족도 결과 평균인 4.25점으로(100점 만점 기준 85점) '19년 목표치 설정	{(응답자의 5점 척도의 합/전체 응답자수)/5}× 100	표준화된 설문을 이용한 전화조사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30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479	1,698	1,398	△300	△17.7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100 - 4143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박봉서)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 안착을 통해 지역단위 평생학습 추진 기반 조성 ○ **(기초자료 개발 및 성과관리)** 평생학습도시 질 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및 기초자료 개발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보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ㅇ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 1,200백만원

- ■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참여 등 지역발전 시책을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삶과 일이 어우러진 지역사회를 가꿀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지원
- ■ UNESCO-GNLC[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등 세계 평생학습도시와 국내외 사례의 공유를 위한 자료개발 및 국제회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평생교육 발전 유도
- ■ 산출내역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7개 내외 시·군·구 × 90백만원 내외,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10개 내외 시·군·구 × 50백만원 내외, UNESCO-GNLC 국제협력 지원 1식 × 70백만원

ㅇ 기초자료 개발 및 성과관리 : 198백만원

- ■ 평생학습도시 선정평가, 컨설팅, 담당자 직무연수, 매뉴얼 개발, 만족도 조사, 관련 협의체 운영 등 198백만원
- ■ 산출내역 : 1식 × 198백만원 = 19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98	1,3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1,200) 신규 지정 7개 내외 시군구×90백만원, 기존 특성화 10개 내외 시군구×50백만원 (70) UNESCO-GNLC 국제협력	(1,200) 신규 지정 7개 내외 시군구×90백만원, 기존 특성화 10개 내외 시군구×50백만원 (70) UNESCO-GNLC 국제협력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498) 사업운영 관리 및 정책연구비	(198) 사업운영 관리

□ 지원 필요성

ㅇ 지역별 평생학습인프라 부족 및 평생학습 참여 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단위 격차 해소 필요

※ 평생학습참여율 격차 : (월소득) 150만원 미만 20.9% vs. 500만원 이상 42.3%, (지역) 서울 및 광역시 35.2% vs. 농어촌 29.8%

- 대상·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 서비스 강화

ㅇ 평생교육예산이 재정자립도,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평생교육 예산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2%에 불과('14)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479**	**1,698**	**1,398**	**△300**	**△17.7**
■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65	-	-	-	-
■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1,200	**1,200** 신규 지정 (7개 내외 시군구x 90백만원) 기존 특성화 (10개 내외 시군구x 50백만원) UNESCO-GNLC 국제협력 (1식x70백만원)	**1,200** 신규 지정 (7개 내외 시군구x 90백만원) 기존 특성화 (10개 내외 시군구x 50백만원) UNESCO-GNLC 국제협력 (1식x70백만원)	-	-
■ 행복학습센터 운영	2,916	-	-	-	-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70	498 (1식x498백만)	198 (1식x70백만)	△300	△17.7
□ **비목**(합계)	**4,479**	**1,698**	**1,398**	**△300**	**△17.7**
○ 정책연구비(260-02)	-	100	-	△100	순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211	1,130	1,130	-	-
○ 사업출연금(350-02)	268	468	268	△200	△42.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
- ○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활성화
- ○ 지역단위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를 지속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컨설팅 등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479	■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65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00백만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2,916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198백만원			
'18	1,6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498백만원	1,6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498백만원	-
'19	4,127	■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220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00백만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2,4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307백만원	1,3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1,2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198백만원	△2,729
'20	7,249	■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350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백만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3,4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499백만원	3,5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598백만원	△3,651
'21	7,249	■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350백만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백만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3,4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499백만원	3,5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598백만원	△3,651
'22			3,598	■ 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백만원 ■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598백만원	3,598
연평균 증가율 (%)	10.6		16.2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698	1,398	△3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23.6	19.3	△4.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8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일반재정지출사업의 예산비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9.3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1.3억원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 의거 '산업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의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11.3억원 ÷ 0.72억원 = 15.6명 - 사업출연금(350-02) 2.68억원을 '예산비목별 1인 교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 의거 '산업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의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2.68억원 ÷ 0.72억원 = 3.7명 □ **2018년 고용효과 : 23.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3-①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지역단위 평생교육 활성화)

3-[2] 평생학습 기반 지역사회 미래가치 창출 지원(지역 단위 시민 역량 강화 지원, 지역사회의 자발적 평생교육 실현)

4-[1] 평생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국가-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연계협력 및 운영 내실화 지원, 국제기구와의 평생교육협력 확대)

○ 추진경위

-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지방자치단체로 개편(평생교육법 개정, '08)됨에 따라 추진체제 개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
- '11년도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세부사업)으로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50.01	50.01	58.31	55.39	55.39	44.79	44.79	16.98	16.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 공모 시, 지자체 신청 수가 적어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사업 잔액 456백만원 발생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8.31 (58.31)**			58.31 (58.31)	**58.31 (57.44)**		- (0.87)
'16년	**55.39 (55.39)**			55.39 (55.39)	**55.39 (54.46)**		- (0.93)
'17년	**44.79 (44.79)**			44.79 (40.23)	**40.23 (39.81)**		4.56 (0.42)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479	4,479	3,898	△2,200	1,698	1,698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자발적 학습모임의 역량강화, 정보제공 등을 위한 예산요구 2,200백만원 삭감

○ 집행현황

■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30백만원 교부

■ UNESCO-GNLC 국제협력, 기초자료개발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출연금 468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정감사)

■ '15~16년 국회(상임위, 예결위) 예산 지적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 운영 예산 증액이 필요

· 행복학습센터의 물량증가와 상시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 (후속조치) '17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예산 18억 증액 및 414개 읍·면·동으로 지원 확대(전년 대비 138개 증)

■ '15년 교문위 결산 지적

· 사업 운영간 국고를 포함한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투자 집행 관리를 위해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운영 투명성 도모

· (후속조치) '17년 권역별 현장점검 및 컨설팅 4회 실시 및 성과평가 실시

■ '17년 국정감사 지적

·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질 관리를 위해 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고려

· (후속조치) '18년 성과평가 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19년 성과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예정,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대응투자 비율에 따른 가점제 폐지(지원조건으로만 활용)

□ (재정사업자율평가)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학습도시 조성사례

○ '92년 OECD에서 지역의 사회통합·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혁신 방안으로 학습도시 사업을 각국에 권고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영국) 노팅햄, 리버풀 등 46개 자치단체가 학습도시(타운) 선언

※ (일본) '79년 이후, 30여년간 14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선언

- '00년 OECD 소속 26개국 175개 도시가 '국제도시연합(The International Associating Cities)'를 결성한 이우 현재까지 35개국 340여개 도시가 가입하였으며 국내 창원시·순천시 가입 활동 중
- '12년 학습도시 발전 방향의 실천적 모색을 위한 국제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 GNLC) 창설

< **국제 학습도시 네트워크**('12~) >

- (개념) 상호영감을 제공하고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수준의 정책 지향적 네트워크
- (회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70년대 교육도시(Educating Cities)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유럽 국가 참여
- 주요기능
  ❶ 학습도시 관련정책 아이디어와 지식, 경험, 실행활동, 파트너가 보유한 전문지식 등 공유
  ❷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통해 회원국(도시)의 사회발전 및 경제적 안정성 제고전략 공유
  ❸ 학습도시 조성과 관련된 측정 및 모니터링 도구, 학습자료 등 공동개발
  ❹ UNESCO의 학습도시상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도출 및 사례 발굴·확산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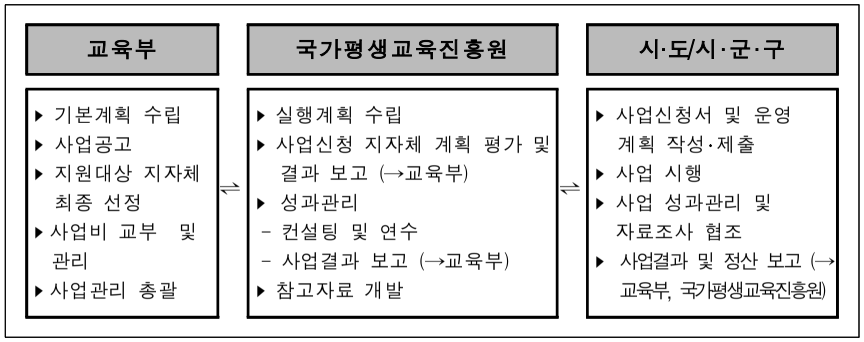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생학습 참여 후 사회환원활동 참여자 시군구 평균 인원(명)	목표	-	신규	100	102	106	'17년 실적 102명 대비 매년 2%p 상향조정하여 '19년 106명으로 목표치 설정	총 사회환원활동(학습형 일자리,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참여자 수/지원 지자체 수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	-	102.5	-	-			
	달성도	-	-	102.58%	-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 만족도(점)	목표	신규	89	90.1	90.5	91.4	'17년 실적 90.8점 대비 매년 0.3점 상향조정하여 '19년 91.4명으로 목표치 설정	국고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표집 설문조사 실시(7단 척도에 의한 만족도 점수 평균을 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	90	90.8	-	-			
	달성도	-	101.1%	100.8%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평생학습도시 조성 현황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국고 지원 효과 : 4.17배

(단위 : 원, 명, 배)

구분		1차 효과(프로그램 효과)			2차 효과(사회환원 효과)	
		평생학습도시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	소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교강사 활동
지자체 국고 지원 (A)		1,808,980,000	1,780,576,000	3,589,556,000	-	-
체감효과	이수자(참여자)수	59,027	22,604		9,152	1,644
	평균체감가치 (직접지불의사 비용)	116,375	110,449.30		187,608.7	190,909.1
	소계	6,869,267,125	2,496,595,977		1,716,994,822	313,854,560
합계		12,955,419,102			2,030,849,383	
경제적 효과 종합 (B)		14,986,268,485				
운영지원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 (B/A)		4.17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성과분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2017) 중 단가(평균체감가치)와 산식을 2017년도 사업결과에 적용

□ 학습형 일자리 참여율

구분	사회환원율*	경제활동율	전체 (학습형 일자리 참여율)
학습도시(특성화)	25.2%	4.6%	29.9%
학습도시(신규)	7.1%	1.4%	8.5%
시·도	16.3%	3.0%	19.2%
행복학습센터	11.2%	1.3%	12.6%
사업전체	13.2%	2.2%	**15.4%**

*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사회공동체 활동

□ 사업 참여에 따른 생활 도움 정도

(응답자 13,558명, 단위 : %)

구분	① 매우 부정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 매우 긍정	긍정 (⑤~⑦)	부정 (①~③)
행복한 생활에 도움	0.3	0.3	0.8	5.4	11.8	28.7	51.1	91.6	1.4
지적 성장에 도움	0.2	0.3	1.0	6.0	13.0	29.0	48.4	90.4	1.6
가족관계 증진에 도움	0.3	0.4	1.6	9.4	15.7	28.0	42.2	85.9	2.4
타인과 어울리는데 도움	0.4	0.5	1.8	8.8	13.9	27.3	45.0	86.3	2.7
지역사회 참여욕구를 높임	0.4	0.5	1.6	8.6	14.6	27.0	44.9	86.5	2.5
직업적 소양을 높임	2.0	1.7	3.8	13.9	15.2	22.5	37.4	75.1	7.5

※ 2017년도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장변화 >

□ 7개 신규 평생학습도시 조례제정 완료, 평생교육협의회 자치단체당 평균 9.8회 운영 등 사업근거 마련 및 의견 수렴 확대

참고 2 평생학습도시 조성 현황 (160개 시·군·구) ('18. 6 기준)

광역	평생학습도시	기초자치단체	지정연도[1]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16	'17	'18
서울	17	25	-	-	-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	은평구	강남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	-	용산구	-	중랑구 구로구
부산	14	16	-	해운대구	-	-	-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남구 사하구 서구	기장군	-	동구	북구 중구	수영구
대구	4	8	-	-	-	-	달서구 동구	-	-	수성구	-	북구	-	-	-	-	-
인천	6	10	-	-	연수구	-	부평구	남구	-	남동구	-	-	서구	-	-	계양구	-
광주	5	5	-	-	-	-	남구	광산구 동구	-	북구	-	-	-	서구	-	-	-
대전	4	5	유성구	-	-	-	-	-	대덕구	-	동구	서구	-	-	-	-	-
울산	5	5	-	-	-	-	-	울주군	중구	-	북구	-	-	-	동구	-	남구
경기	27	31	광명시	부천시	-	이천시	구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양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화성시	고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	여주시	파주시
강원	11	18	-	-	-	-	-	삼척시 화천군	강릉시 횡성군	-	동해시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철원군	영월군	-	춘천시
충북	8	11	-	-	-	청주시	단양군 제천시	진천군	-	-	-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주시	-	-	-
충남	13	15	-	-	-	금산군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서천군 천안시	-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	보령시
전북	9	14	진안군	-	-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	-	-	-	-	부안군	-
전남	12	22	-	-	순천시	목포시[2] (신안·무안)	-	곡성군 광양시 여수시	강진군 영암군	-	-	-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영광군 완도군	-
경북	10	23	-	-	안동시	칠곡군	-	-	경산시 구미시	-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청도군	김천시	-	의성군	-
경남	13	18	-	-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	-	창녕군	합천군	-	함안군	밀양시 산청군	-
제주	2	0[3]	-	제주시 서귀포시		-	-	-	-	-	-	-	-	-	-	-	-
계	160	226	3	3	5	8	14	24	19	6	8	28	11	7	7	10	7

1) '08~'10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2) 목포시(신안,무안)는 하나의 평생학습도시 지정되어 1개로 계산

3)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기초자치제도를 폐지하여 시·군·구수를 0으로 처리

[30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2018추경)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	(73,500)	78,000	**4,500**	**6.1**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3 - 4100 ~ 4151 - 300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중등직업정책과장(최보영), 사무관(최현정), 연구사(강명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목적)** 직업교육을 받은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총 3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중소기업 의무종사(6개월),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등 **<국정과제 51-3 :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 및 산학협력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고졸 인력난 분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제도 최초 실시('18~)
사업기간	'18~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765억, 사업운영비 15억
지원조건	민간경상 보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위탁기관) 한국장학재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내용)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고졸 기술·기능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조기 입직 유도 → 경제적 안정, 빠른 결혼 → 경제활동 기간 증가 → 국가 복지비용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완화 → 국가경쟁력 향상

※ 향후 10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 75만명, 고졸자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 (「'16~'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고3** 직업계고 학생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학생 **약 25,500명**

※ '17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자(109,051명) 중 50.6%(54,909명) 취업, 일반고 위탁과정 13,782명

▪ **(지원조건)** ⅰ) 일정시간 사전교육 이수, ⅱ) 선발시 저소득층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수급자 등) 우선 선발 등, ⅲ) 중소기업 의무종사(6개월) 유지 및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 기업조건 : 고용부 선정 성장유망업종(499개) 10인 이상 중소기업* 우선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단, 벤처, 청년창업기업 등은 10인 미만 가능)으로 건실한 중소기업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 76,500백만원**

▪ (장려금) 25,500명 × 3백만원 = 76,500백만원

○ **사업 운영비 : 1,500백만원**

▪ 시스템 구축, SNS 또는 DM 발송, 회의비, 인쇄비, 수당, 관리인력 등

▪ (사업운영비) 1식 × 1,500백만원 = 1,5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73,500**	**78,000**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72,000** (2.4만명X3백만원)	**76,500** (2.55만명X3백만원)
■ 사업관리비	**1,500** (1식×1,500백만원)	**1,500** (1식×1,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기존 청년일자리 대책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된 바, **고교생(직업계고 등)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이 시급히 요청

- 아울러, 고교생이 대학진학 대신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

※ 취업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 비용 마련(26.6%), 시험합격의 어려움(21.4%), 심리적 스트레스(20.2%) 순('17.8월, 청년희망재단)

※ '16~'26년 **고졸 신규인력 113만명 부족**(고용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17.12)

※ 높은 대학진학률(韓 69%/OECD 43%), 역량 동질화(상위 1% OECD 최하위)

※ 특성화고 미달 현황(KEDI %,명) : ('15) 1.9/1,899 → ('16) 1.4/1,404 → ('17) 3.7/3,354

※ 제조업/서비스업 신규직업 채용시 선호인력('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 (고졸) 52.7/61.2 (전문대졸) 30.2/23.0 (대학졸) 16.5/15.6

○ 국정과제(51-3)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중 고졸인력난 분야 취업연계 장학금 도입('18) 차질없는 이행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

< 취업연계 장려금을 통한 고용 선순환 구조(안)>

구분	현장실습		근로계약 체결 등 확인		취업유지 (6개월)		청년내일채움 공제(고용부)		안정적인 직장생활
기간	9~12월	⇨	10월~	⇨	졸업 이후	⇨	2년 근속	⇨	선취업 후학습*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내용	월 20만원 실습수당(교통비 등) 또는 훈련수당		300만원 지급* *취업준비 및 장기근속 유도		확인 및 관리		1,600만원 목돈 * 청년 300만원+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의 인력 공급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73,500 (추경)**	**78,000**	**4,500**	**6.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72,000 (2.4만명x3백만)	76,500 (2,55만명x3백만)	4,500	6.3
■ 사업관리비	-	1,500 (1식x1,500백만)	1,500 (1식x1,500백만)	-	-
□ **비목**(합계)	**-**	**73,500**	**78,000**	**78,000**	**6.1**
○ 민간경상보조(320-01)	-	73,500	78,000	78,000	6.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통해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재직을 유도**

- 중소기업 고졸 기술·기능 인력 공급으로 인한 **미스매치 해소**

※ 제조업/서비스업 신규직업 채용시 선호인력('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 : (고졸) 52.7/61.2 (전문대졸) 30.2/23.0 (대학졸) 16.5/15.6

○ 안정적 예산 지원('18~'22)을 통해 고등학생의 **취업 진로 투명성 강화**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발전을 촉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당초		'18~'22 중기계획 변경		증 감 (B-A)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
'18			73,500	▪ 사업비 : 24,000명×3백만원 ▪ 위탁운영비 : 1,500백만원	-
'19			78,000	▪ 사업비 : 25,500명×3백만원 ▪ 위탁운영비 : 1,500백만원	4,500
'20			109,700	▪ 사업비 : 27,000명×4백만원 ▪ 위탁운영비 : 1,700백만원	31,700
'21			115,800	▪ 사업비 : 28,500명×4백만원 ▪ 위탁운영비 : 1,800백만원	6,100
'22			151,900	▪ 사업비 : 30,000명×5백만원 ▪ 위탁운영비 : 1,900백만원	36,100
연평균 증가율 (%)			19.9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73,500	78,000	4,50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021	1,083	62
		재정지출 고용효과	1,065	1,132	67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3.9	13.9	-
		재정지출 고용효과	14.5	14.5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4>고용장려금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표4> □ 고교 취업준비 장려금 사업은"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4> 고용장려금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1] 직·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지원대상 인원 × 지원 후 1년 고용 유지율 × 추가고용기여율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 일반재정지출사업 : ① + ② = 1,085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320-1) 781억원은 <표2> 및 <표4>의 '교육서비스업 사업출연금'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780억원 ÷ 0.72억원 = 1,083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132명** a. 25,500명[1] x 0.7[2] x 0.0634[3] = 1,132명 1) 지원대상 인원: '19년 24,000명 2) 지원 후 1년 고용유지율: 70% 3) 고용유지지원금 0.0634 적용 **□ 2018년 고용효과 : 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추경)**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장학금의 지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정과제) 「51-3.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정과제 51-3.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 고졸인력난 분야 취업연계 장학금 도입('18) 차질없는 이행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필요

○ 추진경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18.2.23,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18.2월)
- 선취업 후진학 방안(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발표('18.3월)
- '18년 추경안 국회 통과('18.5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	-	-	-	-	-	800	7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8년 추경(신규)사업으로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	97,500	△24,000	73,500	73,5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학생 1인당 지원금 : 96,000백만원(2.4만명x4백만원)
→ 72,000백만원(2.4만명x3백만원)

■ 사업운영비 : 1,500백만원

○ 집행현황

■ 총 73,500백만원 중 100% 위탁기관에 집행 완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추경 예산 심의시 예결위 부대의견

-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후 관리방안 및 환수 대책을 강구한다.

☞ (대응방안) 사업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엄정한 선발을 거쳐 취업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발하는 한편, 보험이행증권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유사사례 :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매학기 등록금 + 장려금 2백만원 선지급)도 보험이행증권 필수 가입으로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를 통해 환수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장려금 대상 학생 선발 절차(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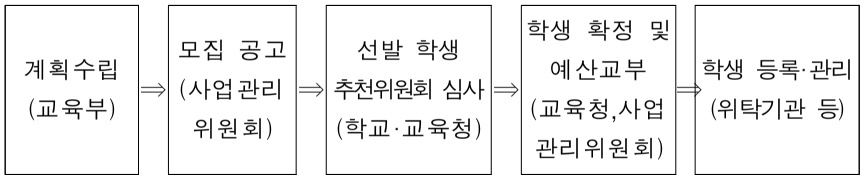

< 지원절차(안)>

[직업계고 학생(3학년)]

구분	현장실습	근로계약 체결 등 확인	취업유지 (6개월)
기간	9~12월	⇨ 10·11월~	⇨ 졸업 이후
지원금	월 20만원 실습수당 또는 훈련수당	300만원 지급	확인 및 관리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3학년)]

구분	직업교육 위탁과정	근로계약 체결 등 확인	취업유지 (6개월)
기간	3~12월	⇨ 12월 ~	⇨ 졸업 이후
지원금	훈련수당	300만원 지급	확인 및 관리

* 저소득층 우선 지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 제2항 제10호 가목.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과 나목.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모두 충족

※ 제14회 국무회의 의결('18.4.3) 완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혜 대상자 만족도 (단위: %)	목표	-	-	-	만족도 70이상	만족도 75이상	'18년 추경(신규사업)으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설문조사를 리커트 5점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고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무작위 표본 대상 만족도 조사	수혜자 대상 설문 조사 실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선취업 후진학 방안('18.3.15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자료 중 발췌)

○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개요

○ 직업계고 현황

○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현황

○ 2018년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중 발췌

○ 중소기업 현황

○ 관련근거

참고1 선취업 후진학 방안('18.3.15 발표자료 중 발췌)

1 선취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신설**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인당 400만원, 저소득층 우선)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6개월),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 >

▸ **(지원 대상) 직업계고 3학년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3학년**
- (직업계고)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채용약정 등)된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이수자(선정 우대)
- (일반계고 위탁과정) 현장실습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발기준 충족 시

▸ **(지원 내용)** 취업 준비 장려금 총 400만원(1인당) 추진

□ **현장실습 훈련 전담 인력 지원**

○ **기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현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 수당 인상**(1인당 30만원 → 80만원)

※ 현장실습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 3,000개소 우선 지원, 이후 단계적 확대

□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18.7.)

* 진로·직업 정보 탐색, 노동 인권 및 노동관계법 교육, "대한민국명장" 특강 등

○ **일반계고 특화 훈련과정**(6개월) **인원 확대*** 및 **자격증 취득과정 우대**('18.하반기) * 목표 참여인원: (현행) 2,000명 → ('18.하반기) 3,000명

□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스마트제조(Smart Factory, Robot 등 포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

※ '19년도 신입생(8개 학과, 200명)에 적용, 성과에 따라 확대 검토

참고2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개요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대학 3·4·5학년 또는 전문대학 2·3·4학년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지원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업(창업)준비 **장려금 200만원**

□ **(선발유형) 취업지원형**(중소·중견기업)과 **창업지원형**으로 구분

□ **(선발방식)** 대학이 학생을 자격을 심사하고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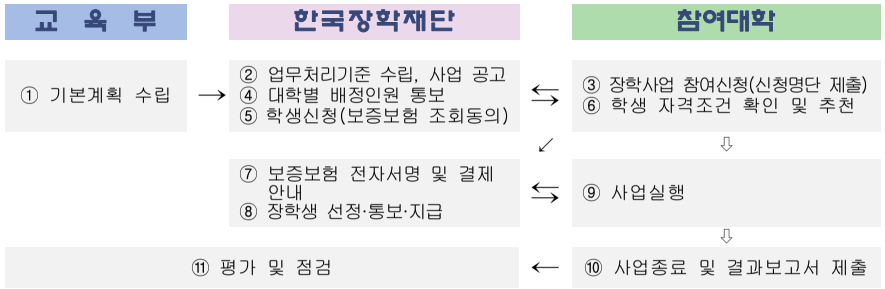

□ **장학생 의무사항 (미준수 시, 장학금 환수)**

○ (재학 중) ① 직무기초(창업)교육 40시간 이수 ② 보증보험 가입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에 근무, 창업 후 창업기간 유지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x6개월)

□ **(지원현황)** '18년 추경 360억원(3.6→4.5천명, 9백명)

(단위: 명, 건, 백만 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지원인원	1,643	1,519	3,127	2,970	**4,152**	**13,411**
지원건수	2,082	2,175	4,363	4,460	**6,211**	**19,291**
지원금액	9,318	9,540	18,957	20,355	**27,921**	**86,091**
평균금액	5.67	6.28	6.06	6.85	**6.72**	**6.42**

□ **(취업율)** 졸업장학생 7,334명 중 6,498명(88.4%)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

구 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 유예자 등	취업률
2013년~2017년	7,334명	6,498명	836명	88.6%

※ 미취업자 등 취업유예자에 대해서는 타부처의 미취업자 지원 사업안내 등 지원

참고3 직업계고 현황

□ 학교 및 학생수 현황('17.2월 기준)

○ **(학교 및 학생수)** 직업계고는 **588개로** 전체 고등학교 2,361개 중 **24.9%, 학생수는 33만명**으로 전체 167만명 중 **19.9%** 차지

- 이 중 **특성화고가 466개교(79%)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반고 직업계열은 76개교(13%), 마이스터고는 46개교(8%)임

□ 취업 현황('17.2월 직업계고 졸업자)

○ **(전체 취업률)** 직업계고 졸업자(109,051명) 중 **50.6%**(54,908명)가 취업 중이며, **32.5%(35,420명)는 대학에 진학**, 나머지는 기타*(18,723명)

* 제외인정자(군 입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무직자 및 미상

※ 취업률(%) : ('11) 25.9 → ('13) 40.9 → ('15) 46.6 → ('17) 50.6
진학률(%) : ('11) 61.5 → ('13) 41.6 → ('15) 36.6 → ('17) 32.5

직업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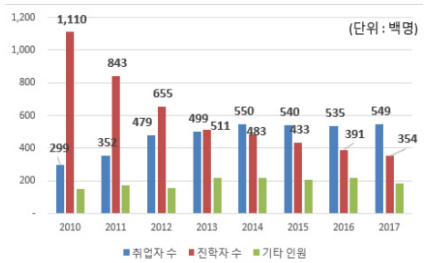

취업률 및 진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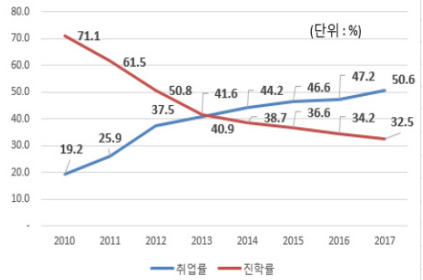

* 자료 : KEDI 교육기본통계 /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 **(기업유형별 현황)** '17년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 74.2%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 **(계열별 취업 현황) 수산해운(69%), 공업(58%), 가사실업(50%),** 상업정보(46%), 농생명(45%), 일반(사무 행정직)(35%) 순으로 나타남.

○ **(직무유형별 취업비중) 생산직**(28.9%), **기술직**(24.4%), **사무직**(21.5%) 순으로 나타남.

참고4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현황

□ 개 요

○ **(목적)**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취업 지원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대상)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 희망 **3학년 학생**

○ **(교육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비스 산업 등 직업교육분야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3학년) 현황>

(단위 : 명)

년도	산업정보학교	직업거점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지정**	폴리텍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계
						대한상의	전문대	민간운영	
'16	3,108	290	250	701	977	549	179	6,252	**12,306**
'17	3,205	244	150	569	873	544	328	7,206	**13,119**
예산	교육청		지자체	고용보험기금					

* 서울시 남부·북부·중부·동부 기술교육원 등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등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교육과정 등)에 따른 교육부「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4~'17년 일반고 3학년 1년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도 이수자	2015년도 이수자	2016년도 이수자	2017년도 이수자
합계	10,657	12,533	12,306	13,119

※ '17년 기준 취업률(33.5% 4,394명, 중소기업 87.1%, 3,827명), 진학률(31.8%, 4,174명)

○ **(예산현황)** 일반고 3학년 위탁과정 관련 교육부 예산 편성 없음

- 2018년 고용노동부 특화과정 배정예산 : **810억원**

※ ('15년) 187개 과정, ('16년) 315개 과정, ('17년) 387개 과정, ('18년) 373개 과정(추가 개설 예정)

참고5 2018년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17년 **참여경로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본격 실시

○ '18년은 **경로 폐지, 임금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원목표: ('16) 1만명→ ('17) 신규 5.5만명(추경 0.5만 포함)→ ('18) 신규 11.5만명(추경 6만)

□ **[지원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17년에는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취성패·일학습병행훈련·고용센터알선 등) 사전참여를 통한 정규직 취업이 전제 조건이었으나, **'18년부터는 참여경로 폐지**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벤처,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구분	2년형(기존)	3년형('18년 추경 신설)
목 적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청년(본인) 적립금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정부→청년 지원금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 (1·6·12·18·24개월 근속시 2년간 5회 분할지급)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지원 (1·6·12·18·24·30·36개월 근속시 3년간 7회 분할지급)
기업→청년 지원금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근속시 2년간 5회 분할지급)	기여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근속시 3년간 7회 분할지급)
최종 적립금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지원규모	9만명(4만명 증)	신규 2만명

참고6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개정 중 발췌

◈ '18년 추경안 통과('18.5.21.)에 따라 **청년과 기업의 가입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의 합리적 개편** 등 지침의 일부내용 개정

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가입 연계

□ **(개 요)** 고교 취업연계 사업(교육부 주관, 3.15. 대책 포함)으로 직업교육을 받은 고교 졸업생들이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사업

□ **(개 선) 의무종사기간(6개월) 종료 후 동일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공제 가입 허용**

* 대학생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수혜자도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하고 있음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적용대상: 추경통과 이후('18.5.21.) 참여자부터 적용**

참고7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전체	3,354,320	3,418,993	3,545,473
	중소기업	3,351,404	3,415,863	3,542,350
	비중	(99.9)	(99.9)	(99.9)
종사자수	전체	14,891,162	15,344,860	15,962,745
	중소기업	13,059,372	13,421,594	14,027,636
	비중	(87.7)	(87.5)	(87.9)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 조사 가공 및 재편

□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개, 명, %)

구분	전 체(A)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 계			
	2013년	2014년	소상공인 2013년		소상공인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사업체수	3,419	3,545	3,317		3,441		99	102	3,416	3,542	3.1	3.1
			2,962		3,063							
	(100.0)	(100.0)	(97.0)		(97.0)		(2.9)	(2.9)	(99.9)	(99.9)	(0.1)	(0.1)
			(86.6)		(86.4)							
종사자수	15,345	15,963	9,524		10,022		3,897	4,006	13,422	14,028	1,923	1,935
			5,778		6,046							
	(100.0)	(100.0)	(62.1)		(62.8)		(25.4)	(25.1)	(87.5)	(87.9)	(12.5)	(12.1)
			(37.7)		(37.9)							

*주 : 1. 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계= 소기업+중기업
2. ( ) 안은 전체에 대한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전국사업체 조사 가공 및 재편

참고8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6. <생 략>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 9. <생 략>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9. <생 략>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00] 국제교육 협력 증진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300] 국제교육 협력 증진	1651	**98,560**	**101,811**	**3,251**
[4331]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일반회계)	1652	68,939	71,466	2,527
[30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1652	68,939	71,466	2,527
[4333] 글로벌 교육협력 지원사업(일반회계)	1684	29,621	30,345	724
[302] 글로벌 교육교류사업(비ODA)	1684	15,546	15,989	443
[303] 글로벌 교육지원사업(ODA)	1753	14,075	14,356	281

[30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7,094	68,939	71,466	2,527	3.7

* 사업코드 : 13-110-00-050-053-4300-4331-300
* 담 당 자 : 국제협력관(공석), 재외동포교육담당관(하유경), 사무관(강명원, 오은경, 최준하), 교육연구관(안희성)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정 지원* * 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시설비, 대수선비 등 - 해외한국어 보급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사업기간	'6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재외한국학교 : 16개국 34개교 - 재외한국교육원 : 18개국 41개원 - 현지 한국어 채택교 : 28개국 1,423교 ('17년 말 기준)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 기준) ▪ 교지 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 시설 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71,466백만원 >

(1) 재외교육기관 지원 : 60,034백만원

1)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 : 46,744백만원

○ **파견공무원 인건비 : 2,818백만원**

- 재외수당 : 33명 × $77,630 × 1,100원 = 2,818백만원

※ (지원인원) 교장 32명(현지채용 교토, 건국 2명 제외), 행정실장 1명(웨이하이)

○ **현지채용 인건비 : 20,156백만원**

- 1,231명 × $14,885 × 1,100원 = 20,156백만원

○ **운영비 : 16,171백만원**

- 34교 × $432,379 × 1,100원 = 16,170백만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 1,727백만원**

- 34개교 × $46,176 × 1,100원 = 1,727백만원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 702백만원**

- 34개교 × $18,770 × 1,100원 = 702백만원

○ **교수학습자료 지원 : 1,017백만원**

- 34개교 × $27,192 × 1,100원 = 1,017백만원

○ **한국학교 NEIS 시스템 운영 지원 : 116백만원**

- (전담인력 및 상담인력) 3,100천원 × 12월 × 1명 = 37백만원
- (사용 환경 점검 및 현장지원) 2,500천원 × 2명 × 2개 지역 = 10백만원
- (현장점검 여비) 2,500천원 × 2명 × 2개 지역 = 10백만원
- (사용자 연수) 2,500천원 × 2명 × 1회 = 5백만원
- (시스템 개선) 54,000천원 × 1식 = 54백만원

○ **임차료 : 1,464백만원**

- 10개교 × 1식 = 1,464백만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재외한국학교에서 납부하는 임차료 총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2019년도 재외한국학교 임차료 지원 계획 >

순	학교명	임차내용	임차료 총액(USD)	국고지원 비율(%)	국고지원액	
					USD	백만원
1	건국	토지	130,516	70%	91,361	101
2	천진	토지, 건물	111,536	70%	78,075	86
3	무석	토지, 건물	596,714	70%	417,322	459
4	청운	토지, 건물	380,380	70%	266,266	293
5	웨이하이	토지, 건물	385,000	70%	269,500	296
6	선양	토지, 건물	149,400	70%	104,580	115
7	연변	토지	10,819	70%	7,573	8
8	타이뻬이	토지, 건물	2,084	70%	1,459	2
9	리야드	건물	66,650	70%	46,655	51
10	테헤란	토지, 건물	69,370	70%	48,559	53
합계			**1,902,469**		**1,331,350**	**1,464**

○ **대수선비 : 584백만원**

- (3개교) $531,232 × 1,100원 = 584백만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대수선비 총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 2019년도 재외한국학교 대수선비 지원 계획 >

순	학교명	사업내용	대수선비 총액(USD)	국고지원 비율(%)	국고지원액	
					USD	백만원
1	천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27,897	70%	229,528	252
2	연변	체육관 대수선 공사	94,930	70%	66,451	73
3	북경	본관 도장 및 냉난방 배관 보수 공사	336,076	70%	235,253	259
합계			**758,903**		**531,232**	**584**

① (천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29,528 × 1,100원 = 252백만원

※ 총사업비 : 설계비($5,644) + 건축공사비($319,337) + 기타부대경비($2,916) = $327,897

② (연변) 체육관 대수선 공사 $66,451 × 1,100원 = 73백만원

※ 총사업비 : 체육관 바닥 공사비($81,283) + 체육관 도색 공사비($13,647) = $94,930

③ (북경) 본관 도장 및 냉난방 배관 보수 공사 $235,253 × 1,100원 = 259백만원

※ 총사업비 : 본관 도장 교체 + 천장 마감제 교체 + 냉난방 배관 보수 = $366,076

○ **시설비 : 1,824백만원**

- (2개교) $1,658,000 × 1,100원 = 1,658백만원

< 2019년도 재외한국학교 시설비 지원 계획 >

순	학교명	사업내용	시설비 총액(USD)	국고지원 비율(%)	국고지원액	
					USD	백만원
1	모스크바	운동장 조성	300,000	90%	270,000	297
2	하노이	교사(고등학습관) 신축	2,725,000	50%	1,388,000	1,527
합계			3,025,000		1,658,000	1,824

① (모스크바) 운동장 조성 : $270,000 × 1,100원 = 297백만원

※ 총사업비 : 기본설계비($47,451) + 토목공사비($237,858) + 감리비($6,691) + 기타부대경비($8,000) = $300,000

② (하노이) 교사(고등학습관) 신축 : $1,388,000 × 1,100원 = 1,527백만원

※ 총사업비 : 기본설계비($120,000) + 건축공사비($2,401,000) + 감리비($50,000) + 기타부대경비($154,000) = $2,725,000

○ **재외한국학교 신설 : 165백만원**

- 1교(프놈펜) : 임차료 40백만원, 운영비 125백만원

2)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 12,092백만원

○ **파견공무원(원장, 부원장, 교원, 직원) 인건비 : 4,638백만원**

- 재외수당 : 48명 × $87,840 × 1,100원 = 4,638백만원

※ (지원인원) 원장 41명, 부원장 4명(LA,타슈켄트,알마티,프랑스), 교직원 3명

○ **현지채용 인건비 : 2,106백만원**

- (행정원) 98명 × $19,536 × 1,100원 = 2,106백만원

○ **운영비 : 1,032백만원**

- 41개원 × $22,882 × 1,100원 = 1,032백만원

○ **사업비 : 2,705백만원**

- 41개원 × $59,978 × 1,100원 = 2,705백만원

○ **임차료 : 1,125백만원**

- (24개원) $1,022,727 × 1,100원 = 1,125백만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재외한국교육원에서 납부하는 임차료를 국고에서 지원

< 2019년도 재외한국교육원 임차료 지원 계획 >

연번	교육원명	임차내용	임차료 총액(USD)	국고지원 비율(%)	국고지원액	
					USD	백만원
1	동경	건물	35,250	100%	35,250	39
2	사이타마	건물	5,450	100%	5,450	6
3	지바	건물	5,309	100%	5,309	6
4	나가노	건물	20,177	100%	20,177	22
5	삿포로	건물	10,382	100%	10,382	11
6	센다이	건물	11,624	100%	11,624	13
7	고베	건물	9,428	100%	9,428	10
8	오카야마	건물	4,572	100%	4,572	5
9	후쿠오카	건물	40,930	100%	40,930	45
10	시카고	건물	40,000	100%	40,000	44
11	휴스턴	건물	42,600	100%	42,600	47
12	애틀란타	건물	56,851	100%	56,851	62
13	로스토프나도누	건물	75,000	100%	75,000	83
14	블라디보스톡	건물	38,000	100%	38,000	42
15	하바롭스크	건물	51,307	100%	51,307	56
16	사할린	건물	60,000	100%	60,000	66
17	비쉬켁	건물	75,000	100%	75,000	83
18	우크라이나	건물	51,600	100%	51,600	57
19	시드니	건물	122,439	100%	116,852	128
20	상파울루	건물	121,100	100%	116,100	128
21	뉴질랜드	건물	37,162	100%	37,162	41
22	태국	건물	94,680	100%	94,680	104
23	오사카	건물	20,000	100%	20,000	22
24	독일	건물	4,453	100%	4,453	5
합계			**1,033,314**		**1,022,727**	**1,125**

○ 한국교육원 신설 : **486백만원**

- (1개원) $441,818 × 1,100원 = 486백만원

3)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 48백만원

○ 8개 기관 × 3명 × 2,000천원 = 48백만원

4) 재외교육기관 현장실사 : 36백만원

○ 6개 기관 × 3명 × 2,000천원 = 36백만원

5)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 : 39백만원

○ **성과평가 심사수당, 인쇄비 등 : 28백만원**

○ **전문가 및 심사위원 업무협의회비 : 2.5백만원**

- 20명 × 5회 × 25천원 = 2.5백만원

○ **집중작업 일용근로자 보수 : 2.5백만원**

- 2명 × 1개월 × 1,250천원 = 2.5백만원

○ **성과평가 현장점검 여비 : 6백만원**

- 1개 기관 × 3,000천원 × 2명 = 6백만원

6)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서비스 확장 및 콘텐츠 개발 : 340백만원

○ 구축된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의 기능 추가 및 확장, 외부 학습사이트와 연계, 신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활용도 및 교육 만족도 제고

○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서비스 확장 및 콘텐츠 개발 : 340백만원

- (사업비) 240백만원 × 1식 = 240백만원
- (운영비) 100백만원 × 1식 = 100백만원

7)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집계·분석·점검 등) 시스템 구축 : 235백만원

○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및 컨설팅

○ 인건비(집계분석, 실태점검) : 2명 × 51.5백만원 = 103백만원

○ 사업관리 : 132백만원

- 회계법인 용역 : 6개교×교당 10,000천원 = 60백만원
- 운영비(출장비, 자문위원회 운영, 회의비 등) : 72백만원

8)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 500백만원

○ 교육과정개발 등 교육지원사업 : 160백만원

○ 교육연수사업지원 : 180백만원

○ 우수사례 공유 및 교류 네트워크 구축 : 40백만원

○ 센터 기반 등 사업운영비 : 120백만원

(2) 해외한국어 보급 : 5,917백만원

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 3,987백만원

○ 30개국 × $120,818 × 1,100원 = 3,987백만원

2)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 940백만원

○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 (체재비) 65명 × $12,420 × 1,100원 = 888백만원
- (항공료) 65명 × 2회 × 400천원 = 52백만원

3)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 주관기관 위탁 : 123백만원

○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 주관기관 위탁

- (운영비) 120백만원 × 1식 = 120백만원
- (현지점검 여비) 3백만원 × 1식 = 3백만원

4) CIS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 292백만원

○ 200개교 × $1,327 × 1,100원 = 292백만원

5) 일본 민족학급 지원 : 407백만원

○ 120개교 × $3,083 × 1,100원 = 407백만원

6)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 : 168백만원

○ (인건비) : 168백만원 × 1식 = 168백만원

※ 한-불 양국 정부가 상대국 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협정을 체결('16.6.)함에 따라, '17년 9월부터 프랑스 초·중등학교 내 한국어 국제섹션 설치·운영

(3)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4,876백만원

○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기반을 제공을 위한 교과용도서 교재 개발 및 보급

- 대상 : 전세계 100여개국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 교재 개발 : 250백만원
  - · 교재 개발 : 248백만원 × 1식 = 248백만원
  - · 심사 수당 : 2백만원 × 1식 = 2백만원
- 교과서 구입 : 4,626백만원
  - · 교과서 구입 : 5,292원 × 534,800권 = 2,830백만원
  - · 교재 제작·인쇄 : 2,780원 × 169,791권 = 472백만원
  - · 발송비 등 : 1,282백만원
  - · 현지 방문연수 : 30백만원
  - · 현지점검 여비 : 10백만원
  - · 심사수당 : 2백만원 × 1식 = 2백만원

(4)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 550백만원

○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 400백만원**

- 400백만원 × 1식 = 400백만원

○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 150백만원**

-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5)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89백만원

○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및 재외교육기관 교원연수 : 89백만원**

- 선발(심사수당 등) 및 연수경비(강사료, 원고 등) : 85,500천원 × 1식 = 85.5백만원
- 협의회비 : 3,500천원 × 1식 = 3.5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8,939백만원**	**71,466백만원**
■ 한국학교 지원	**45,383백만원**	**46,744백만원**
	파견공무원 인건비 2,641백만원	파견공무원 인건비 2,818백만원
	현지채용 인건비 20,081백만원	현지채용 인건비 20,156백만원
	운영비 14,867백만원	운영비 16,171백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770백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727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720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702백만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280백만원	-
	교수학습자료 지원 1,381백만원	교수학습자료 지원 1,017백만원
	NEIS 운영지원 116백만원	NEIS 운영지원 116백만원
	임차료 1,491백만원	임차료 1,464백만원
	대수선비 780백만원	대수선비 584백만원
	시설비 126백만원	시설비 1,824백만원
	한국학교 신설 1,130백만원	한국학교 신설 165백만원
■ 한국교육원 지원	**10,589백만원**	**12,092백만원**
	파견공무원 인건비 4,625백만원	파견공무원 인건비 4,638백만원
	현지채용 인건비 1,318백만원	현지채용 인건비 2,106백만원
	운영비 1,041백만원	운영비 1,032백만원
	사업비 2,727백만원	사업비 2,705백만원
	임차료 878백만원	임차료 1,125백만원
	-	교육원 신설 486백만원
■ 해외한국어 보급	**6,300백만원**	**5,917백만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4,461백만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3,987백만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870백만원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940백만원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 위탁 120백만원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 위탁 123백만원
	CIS지역 한국어교육기관 지원 282백만원	CIS지역 한국어교육기관 지원 292백만원
	일본 민족학급 지원 393백만원	일본 민족학급 지원 407백만원
	프랑스한국어국제섹션 운영 174백만원	프랑스한국어국제섹션 운영 168백만원
■ 기타	**6,667백만원**	**6,713백만원**
	지도조사 39백만원	지도조사 48백만원
	현장실사 36백만원	현장실사 36백만원
	성과평가 39백만원	성과평가 39백만원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488백만원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340백만원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210백만원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259백만원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500백만원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500백만원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4,876백만원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4,876백만원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00백만원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550백만원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09년)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요구 증가

○ **국회 등 재외교육기관 운영.지원 확대 요구***

- 재외교육기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반복 요구

* 교문위,「해외 한국학교・한글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상정」('14.4.15, 원유철의원 등 16인, 소위 회부)

○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한국학교 지원 확대 및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필요**

> ❖ **[국정과제] 10.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 ❖ **VIP 말씀('17.7.1. 동포간담회 인사말)**
> ○ 재외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국의 위상 상승과 한류 붐으로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해외 초·중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한국어채택 통한 친한.지한 인재 양성 및 당사국 간 교육교류 및 협력증진에 기여

* 24개국('13년) → 26개국('14년) → 28개국('15년) → 29개국('16년) → 28개국('17년)

- 초·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현지개발 통해 질 높은 한국어 교육 제공 필요
- 현지인 한국어교사 전문성 신장 위한 온·오프라인 연수 지원 필요

○ **재외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언어권별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등 개발.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 및 연수 추진을 위한 재정 필요**

- 74개 재외교육기관별 3년 주기 기관장 교체로 매년 23여개 기관의 재외교육기관장 선발.파견을 통한 인력 지원
- 재외교육기관에 근무할 자로서 재외동포, 외교 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필요

○ 재외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따른 지도.조사, 성과평가 및 환류, 현장실사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자료구입비 지원 필요

○ 한국학교 교무업무 처리의 편의성 제공 및 학생부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의 나이스 지원 및 컨설팅 필요

○ **재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분석·점검**

- 재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분석
  - ■ 지침*을 통해 재외교육기관의 예·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의 제출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나,
  - **재정자료에 대한 총괄적 집계·검증 및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활용도 저하

*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14.11), 재외한국교육원 회계업무 처리지침('15.9)

  - ■ 이에, 재외교육기관 재정정보를 접수·집계·분석하여 정부·국회 등에 재외동포교육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재외교육기관 예·결산 등 재무·회계 실태 점검 및 컨설팅**
  - ■ 예·결산 및 재무·회계 관련 보고에 대한 검증(서면.현장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재외교육기관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
  - **(재무·회계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재외교육기관 회계처리 및 재산 관리 점검항목(체크리스트)을 체계화하여 실무자의 숙지 및 회계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시
  -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국·공·사립대학 재정자료(예·결산 및 시설·재산 등) 접수·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재정통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 한민족 정체성을 갖춘 우수한 글로벌 인적자원 확충을 위해 현장성과 이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7,094	68,939	71,466	2,527	3.7
○ 재외교육기관 지원	60,151	57,274	60,034	2,760	4.8
■ 한국학교 지원	48,691	45,383	46,744	1,361	3.0
- 파견공무원 인건비	3,710	2,641 (수당)31명×$75,375×1,130원	2,818 (수당)33명×$77,630×1,100원	177	6.7
- 현지채용 인건비	20,482	20,081 (1,231명×$14,436×1,130원)	20,156 (1,231명×$14,885×1,100원)	75	0.4
- 운영비	13,888	14,867 (33개교×$398,683×1,130원)	16,171 (34개교×$432,379×1,100원)	1,304	8.8
-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801	1,770 (33개교×$47,461×1,130원)	1,727 (34개교×$46,176×1,100원)	△43	△2.4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733	720 (33개교×$19,308×1,130원)	702 (34개교×$18,770×1,100원)	△18	△2.5
- 한국학교 진로진학 상담 교사 배치	280	280 (7개교×12개월×3,333천원)	-	△280	순감
- 교수학습자료 지원	1,406	1,381 (33개교×$37,040×1,130원)	1,017 (34개교×$27,192×1,100원)	△364	△26.4
-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129	116 (116백만원×1식)	116 (116백만원×1식)	-	-
- 임차료	1,524	1,491 (11개교×$119,921×1,130원)	1,464 ((10개교)$1,331,350×1,100원)	△27	△1.8
- 대수선비	348	780 (교토$445,218+금강$38,371+북경$206,709)×1,130원	584 ((3개교)$531,232×1,100원)	△196	△25.1
- 시설비	4,390	126 (1개교×$111,504×1,130원)	1,824 (2개교)$1,658,000×1,100원)	1,698	1347.6
- 한국학교 신설	-	1,130 (1교×1,130,00,000원)	165 (1교×165,00,000원)	△965	△85.4
■ 한국교육원 지원	11,251	10,589	12,092	1,503	14.2
- 파견공무원 인건비	4,954	4,625 ((수당)48명×$85,287×1,130원)	4,638 ((수당)48명×$87,840×1,100원)	13	0.3
- 현지채용 인건비	1,328	1,318 (98명×$11,910×1,130원)	2,106 (98명×$19,536×1,100원)	788	59.8
- 운영비	1,007	1,041 (41개원×$22,459×1,130원)	1,032 (41개원×$22,882×1,100원)	△9	△0.9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사업비	2,197	2,727 (41개원×$58,869×1,130원)	2,705 (41개원×$59,978×1,100원)	△22	△0.8
- 임차료	749	878 (17개원×$45,707×1,130원)	1,125 ((24개원)$1,022,727×1,100원)	247	28.1
- 한국교육원 신설	1,016	-	486 (1개원×$441,818×1,100원)	486	순증
■ 지도조사	39	39 (6개기관×3명×2,167천원)	48 (8개기관×3명×2,000천원)	9	23.1
■ 현장실사	36	36 (6개기관×3명×2,000천원)	36 (6개기관×3명×2,000천원)	-	-
■ 성과평가	39	39	39	-	-
- 심사수당, 인쇄비 등	28	28 (28백만원×1식)	28 (28백만원×1식)	-	-
- 협의회비	3	2.5 (2.5백만원×1식)	2.5 (2.5백만원×1식)	-	-
- 일용임금	2	2.5 (2.5백만원×1식)	2.5 (2.5백만원×1식)	-	-
- 현지실사	6	6 (6백만원×1식)	6 (6백만원×1식)	-	-
■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95	488 (488백만원×1식)	340 (340백만원×1식)	△148	△30.3
■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	200 (200백만원×1식)	235 (235백만원×1식)	35	17.5
■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	500 (500백만원×1식)	500 (500백만원×1식)	-	-
○ 해외한국어 보급	6,399	6,300	5,917	△383	△6.1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4,540	4,461 (30개국×$131,585×1,130원)	3,987 (30개국×$120,818×1,100원)	△474	△10.6
■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886	870 (체재비: 68명×$10,614×1,130원) (항공료: 68명×2회×400천원)	940 (체재비: 65명×$12,420×1,100원) (항공료: 65명×2회×400천원)	70	8.0
■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 주관기관 위탁	120	120 (120백만원×1식)	123 (123백만원×1식)	3	2.5
■ 태국 한국어교원 양성 위탁	90	-	-	-	-
■ CIS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	319	282 (200개교×$1,248×1,130원)	292 (200개교×$1,327×1,100원)	10	3.5
■ 일본 민족학급 지원	444	393 (120개교×$2,899×1,130원)	407 (120개교×$3,083×1,100원)	14	3.6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프랑스 한국어 국제섹션 운영 지원	-	**174** (174백만원×1식)	**168** (168백만원×1식)	△6	△3.4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133**	**4,876**	**4,876**	-	-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133**	**250** (250백만원×1식)	**250** (250백만원×1식)	-	-
■ 교과서 및 교재 보급	-	**4,626** (4,626백만원×1식)	**4626** (4,626백만원×1식)	-	-
○ 재외동포교육 진흥 사업	**325**	**400**	**550**	150	37.5
■ 국제학술대회	**203**	**400** (400백만원×1식)	**400** (400백만원×1식)	-	-
■ e-러닝 교수학습센터 시스템	**122**	**-**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과 통합)	-	-	-
■ 재외동포어린이한국어 그림일기대회	-	**-**	**150** (150백만원×1식)	150	순증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6**	**89**	**89**	-	-
■ 선발(심사수당 등) 및 연수경비(강사료, 원고 등)	82	**85.5** (85.5백만원×1식)	**85.5** (85.5백만원×1식)	-	-
■ 협의회비	4	**3.5** (3.5백만원×1식)	**3.5** (3.5백만원×1식)	-	-
□ **비목**(합계)	**67,094**	**68,939**	**71,466**	2,527	3.7
○ 일용임금(110-04)	2	2.5	2.5	-	-
○ 일반수용비(210-01)	144	171.5	169.5	△2	△1.2
○ 임차료(210-07)	1				-
○ 일반용역비(210-14)	20	-			-
○ 국외여비(220-02)	81	94	113	19	20.2
○ 사업추진비(240-01)	7	6	6	-	-
○ 민간경상보조(320-01)	892	6,683	6,713	30	0.4
○ 해외경상이전(340-01)	61,557	61,856	62,638	782	1.3
○ 해외자본이전(340-03)	4,390	126	1,824	1,698	1347.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소재국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지닌 한국학교에 적합한 성장 단계별.유형별 지원

○ 한국어 채택 국가 다변화 및 현지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정 지원

○ 재외국민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용 도서 및 한국어 교재 개발.공급 확대

○ 해외파견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외교육기관 직무능력 및 외교.행정 분야 소양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7,332	▪ 재외교육기관 지원 60,253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6,399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266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325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18	68,939	▪ 재외교육기관 지원 57,274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6,300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4,876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00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68,939	▪ 재외교육기관 지원 57,274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6,300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4,876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00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
'19	68,939	▪ 재외교육기관 지원 57,274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6,300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4,876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00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89백만원	71,466	■ 재외교육기관지원 : 60,034백만원 ■ 해외한국어 보급 : 5,917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4876백만원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 550백만원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89백만원	2,527
'20	124,090	▪ 재외교육기관 지원 109,218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8,024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6,181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85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 182백만원	63,527	■ 재외교육기관지원 : 53,166백만원 ■ 해외한국어 보급 : 5,363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 4,419백만원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 498백만원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81백만원	△60,563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24,090	▪ 재외교육기관 지원 109,218백만원 ▪ 해외 한국어 보급 8,024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6,181백만원 ▪ 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485백만원 ▪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연수182백만원	62,257	■ 재외교육기관 지원 : 52,103백만원 ■ 해외한국어 보급 : 5,255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 4,331백만원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 489백만원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79백만원	△61,833
'22			61,634	■ 재외교육기관 지원 : 51,582백만원 ■ 해외한국어 보급 : 5,203백만원 ■ 교과서 및 교재 개발 : 4,287백만원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 484백만원 ■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78백만원	61,634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파견공무원의 선발·교육훈련·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32조(보고·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장부 등에 대한 검사·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검사·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예산지원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 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 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교육훈련) ①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 또는 채용될 파견공무원등이 동반할 배우자에게도 소양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재외교육기관 지원>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추진경위
  - 1960년대 : 일본지역교포에 대한 교육지원 및 교육문화센터 개설로 동포교육 실시
  - 1970년대 : 해외진출 증가로 중동, 인도네시아, 이집트에 한국학교 설치 등 지역 확대
  - 1980년대 : 재외동포교육의 규모와 범위의 지속적 확대
  - 1990년대 : 공산권 붕괴로 교육지원 대상이 CIS,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 거주 동포로 확대
  - 2000년대 : 국외 인적자원 개발차원의 재외동포교육 지원 추진

  - 2006년 : 하노이.선양.무석.칭다오청운한국학교(4개교) 설립 승인
  - 2009년 : 필리핀한국학교 운영 승인
  - 2011년 : 국가브랜드위원회 신규과제로 '재외교육기관 선진화' 채택
  - 2012년 :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교육원 개원, 말레이시아한국학교 설립 승인
  - 2013년 : 소주한국학교 설립.운영 승인, 광저우한국학교 설립 승인
  - 2014년 : 소주한국학교 교육과정 추가 승인(중.고교과정), 광저우한국학교 설립 승인
  - 2015년 : 광저우한국학교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승인
  - 2017년 : 우크라이나('17.3.17.)·애틀란타한국교육원('17.8.10) 개원, 중국 웨이하이한국학교 설립승인 및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승인

<재외 한국학교 시설비 지원>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추진경위
  - 1960년대 : 재외 한국학교 설립 이후 학교 신증축 시설비 일부 지원
  - 2005년 : 상해.북경한국국제학교 등 2개교
  - 2006년 : 연대.필리핀한국국제학교 등 3개교
  - 2007년 : 연대.대련한국학교 등 3개교
  - 2008년 : 하노이.모스크바한국학교 등 4개교
  - 2009년 : 싱가포르.필리핀한국국제학교 등 7개교
  - 2010년 : 천진.타이뻬이한국국제학교 등 8개교
  - 2011년 : 모스크바.홍콩한국국제학교 등 5개교
  - 2012년 : 북경.하노이한국국제학교 등 2개교
  - 2013년 : 동경.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등 4개교
  - 2014년 : 교토.소주한국학교 등 5개교
  - 2015년 : 소주.타이뻬이한국학교 2개교
  - 2016년 : 호치민.소주한국학교 등 2개교
  - 2017년 : 하노이,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5개교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추진경위

■ 2010년 : 한국학교 1개교, 한국교육원 1개원
■ 2011년 : 한국학교 5개교, 한국교육원 5개원
■ 2012년 : 한국학교 8개교, 한국교육원 5개원
■ 2013년 : 한국학교 5개교, 한국교육원 6개원
■ 2014년 : 한국학교 4개교, 한국교육원 6개원
■ 2015년 : 한국학교 6개교, 한국교육원 5개원
■ 2016년 : 한국학교 7개교, 한국교육원 8개원
■ 2017년 : 한국학교 6개교, 한국교육원 9개원

<재외교육기관장 성과관리>

- 추진근거 :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10.2) 및 재외 한국교육원 선진화 방안('10.5)

※ 재외동포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교육기관의 경영성과 및 책무성 확보 필요

- 추진경위

■ 2011년 :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 시범실시(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9개원)
■ 2012년도~ : 매년 재외교육기관장 성과평가 실시
- 2012년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8개원
- 2013년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8개원
- 2014년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9개원
- 2015년 : 한국학교 32개교, 한국교육원 39개원
- 2016년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9개원
- 2017년 : 한국학교 30개교, 한국교육원 39개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추진경위

■ 1997년 미국 SATⅡ 한국어 채택 이후 '99년부터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채택 확대를 위해 우리부에서 사업비 일부 지원
■ 2004년부터 캐나다(BC주) 한국어교육과정개발 지원 및 호주(NSW주) 한국어 자문관 지원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 확대 : 13개국 540개교('10년) → 23개국 695개교('11년) → 25개국 827개교('12년) → 24개국 1,053개교('13년) → 26개국 1,111개교('14년) → 28개국 1,224개교('15년) → 29개국 1,309개교('16년) → 28개국 1,423개교('17년)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개발·보급>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추진경위

■ 1999~2009년 :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서반아어권, 포르투갈어권, 일어권, 영어권, 러시아어권 교재, 지도서, Audio-Tape, CD 등)
■ 2011년 : 유아용 교재(기본 및 놀이) 및 지도서 개발.보급
■ 2012년 :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용 지도서(3~6단계) 개발.보급
■ 2015년 : 범용한국어 수준별 교재 초.중.고급 3종, 주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각 12권 총(36권) 개발
■ 2016년 : 맞춤형 한국어(영어권,일어권) 수준별 교재 초.중.고급 3종, 주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각 24권 총(72권) 개발
■ 2017년 : 재외동포교육용 한국 역사·문화교재 개발 착수(입문, 심화)
■ 현지 맞춤형 교재 및 지도서 개발.보급 : 영어권('10년) → 베트남어권, 프랑스어권('11년) → 중국어권, 태국어권('12년) → 스페인어권, 독일어권, 인도네시아권('13년) → 포르투칼어권, 아랍어권('14년)
- '86. 3 : 서울대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관련 업무 개시
- '92. 4 :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업무 이관
- '99. 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업무 이관
- '09. 3 : 국립국제교육원 업무 환원
. '09. 5 ~ '13. 12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위탁
. '09. 5 ~ '17. 12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위탁(연장)

<해외 파견공무원 선발·관리>

- 지원근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추진경위 : 1963년 ~ 계속

■ 2008년 : '교사 파견제'를 폐지하고, 교사는 현지채용교사제로 전환

※ 단, 한국학교장 및 한국교육원장 제외

■ 2012년 : 급변하는 재외교육행정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교육원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원에 개방형 직위제 도입(장관결재, '10.12.2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11.10.10 신설)
※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선발('12.3월~ :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 알마티, 시카고 총 5곳)

▪ 2015년

.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선발 : 2명(호치민, 상파울루)
. 비선호 지역 및 일본 민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외한국학교 교사 파견제도 도입(총 49명 선발)
※ '15년도 선발・파견(7명) 및 '16년도 파견예정 교사 선발(42명)
. 한국어 수요가 높은 타슈켄트 및 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원장 선발.파견(총 2명)

▪ 2016년

.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선발 : 1명(뉴욕)
. 신설 한국학교의 개교지원을 위한 교장, 교사 파견 : 총 8명(말레이시아)
. 한국학교의 교무업무 지원 및 비선호 지역, 일본 민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재외 한국학교 교감 및 교사 파견제도 확대('15.9~현재, 총 81명 선발)

▪ 2017년

. 개방형 한국교육원장 선발 : 2명(애틀랜타, 시드니)
. 개교예정 재외한국학교(웨이하이) 기관장 및 파견공무원 선발 : 16명
※ 학교장(1명), 행정실장(1명), 파견교사(14명)
. '18년도 재외한국학교 교사파견 확대('18년 예정자 20명 선발.파견, 웨이하이한국학교 포함)
※ '15.9~'18.2월까지 파견교사 총 100명 선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54	654	621	730	730	673	673	689	68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4년(불용, 253백만원)**

- 일용임금(110-03), 일반수용비(210-01), 사업추진비(240-01) : 해외파견공무원 연수 시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4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국외 공무출장 자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24백만원)

- 해외경상이전(340-01) 및 해외자본이전(340-03) : 재외교육기관 경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 등) 지급 시 환율차이에 따른 집행잔액(209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한국어 교재개발 낙찰 차액에 따른 예산 절감(15백만원)

○ **2015년(불용, 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국외 공무출장 자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1백만원)
- 해외자본이전(340-03) : 재외교육기관 시설비 지원 시 환율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3백만원)
- 위탁사업비(210-15) : 해외파견공무원 연수 시 사업추진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1백만원)

○ **2016년(불용, 3,987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국외 공무출장 자제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1백만원)
- 해외자본이전(340-03) : 현지 사정에 의해 공사 포기로 불용액 발생(아르헨티나, 34백만원)
- 해외경상이전(340-01) : 중국 측과 임차조건 변경으로 임차료 조정(광저우, 3,95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해외파견공무원 연수 시 사업추진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1백만원)

○ **2017년(불용 105백만원, 이월 13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해외파견공무원 연수 시 사업추진비 등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3백만원)
- 해외경상이전(340-01) : 해외파견공무원 재외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1백만원)
- 해외자본이전(340-03) : 현지 사정에 의해 공사 포기로 불용액 발생(상파울로한국교육원, 46백만원) 및 환차에 의한 잔액발생(55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이 '17.12. 착수되어 계약 및 착수금 지급 후 남은 예산을 사고 이월함(133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21 (16)	0 ( )	0 ( )	621 (16)	621 (16)	0 ( )	0.05 (0)
'16년	730 (12)	0 ( )	0 ( )	730 (12)	690 (12)	0 ( )	40 (0)
'17년	673 (9)	0 ( )	0 ( )	673 (9)	671 (8)	1 (1)	1 (0)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7,332	67,332	66,638	2,301	68,939	68,677	99.6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웨이하이한국학교 신설 : 1,130백만원
-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 300백만원
  ※ (정부안) 188백만원 → (최종) 488백만원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ㆍ보급 : 500백만원
  ※ (정부안) 4,376백만원 → (최종) 4,876백만원
-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 197백만원
  ※ (정부안) 203백만원 → (최종) 400백만원
- 프랑스 국제섹션 교사 파견 : 174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1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적사항(평가결과 : 보통)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재설정)** 성과지표를 교육부의 자체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최근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 **(조치결과)** '15년도 성과지표를 교육부의 자체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재구성하였으며, 목표치를 최근 증가율 및 '14년도 달성치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음

2)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사항

가. '14년 국회(교문위)

○ **(나이스시스템 점검·확인)** 현지 거점 재외한국학교별로 나이스 시스템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여 나이스 시스템 설치 등 제반 여건을 점검·확인할 것

- **(조치결과)** 재외한국학교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컨설팅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였음

※ ('15년) 중국 및 베트남 2개 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나이스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진단 및 컨설팅 실시 완료(북경('15.6월), 호치민('15.10월))

※ ('16년) 중국 및 동남아 등 4개 학교에 전문가 파견을 통해 현지 컨설팅 및 시스템 보완 실시 예정

○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시 임차료 집행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 **(조치결과)**「'15년도 재외한국학교 채용 교사 합동연수」계획 수립 시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세출과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음

○ **(한국어 교재 관련 성과지표 개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의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 등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운영 필요

- **(조치결과)** 현지 교사 의견 수렴 및 교재 시범 사용을 통해 '15년도에 교재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한국교육원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16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임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수요 대비 100% 공급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

※ (교문위) 설훈의원, 안민석의원, 정진후의원 / (예결위) 박원석의원, 정호준의원 / ('14년 결산) 유인태의원

나. '17년 국회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수요 대비 100% 공급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

※ (교문위) 조승래의원, 손혜원의원, 송기석의원 / (예결위) 김경협의원, 김진표의원, 이개호의원

3) 감사원 지적사항

가. '14년 재무감사(감사원)

○ **(반납액 세입 철저)** 재외한국교육원 반납액에 대한 세입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고예산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므로 국고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재외공관 및 재외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반납액이 있는 경우 국고에 즉시(1개월 이내) 세입조치 하였음

나. '16년 재외공관 감사

○ **(한국교육원 회계사고 예방)** 현금출납부 작성·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재외 한국교육원으로 하여금 현금출납 상황을 주기적 보고 등 한국교육원의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조치결과)** '18년 예산에 재외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분석·점검 예산 반영 추진 중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재외학교 유형 및 학교 수

- 일본인학교 : 국내와 동일한 유·초·중학교 전일제 교육(51개국, 88개교)
- 보습학교 : 토·휴일, 방과후를 이용 일본의 초·중학교 일부 교과 교육(201개교)
- 사립 재외학교 : 일본의 학교법인이 해외에 학교 설립(22개교)

<미국> 해외 주둔 군인을 위한 정규학교 운영

- 국무부 지원학교(사립 - 일부 지원)
- 국방부 지원학교(공립 - 전액 지원)

<프랑스> 프랑스 교육과정 운영 학교와 식민지 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학교 형태로 구분되며 운영 형태가 다양

- 프랑스 교육과정 운영학교
- 주재국 교육과정을 프랑스어로 교육하는 학교
- 자국과정과 주재국과정을 절충 운영하는 학교

(6) 사업추진절차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지원>

○ **기본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임차료) 및 사업비 등**

- 기관현황 및 예산수요조사·분석[교육부] → 실행예산편성·예산배정[교육부] → 예산송금[재외공관] → 자금수령·집행·결과보고[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 **신·증축 시설비 및 대수선비**

- 예산 수요조사(재외교육기관의 자체대응자금을 포함한 신·증축 추진계획 보고)[교육부] → 사업확정 통보[교육부] → 예산 배정(자체자금 확보액 및 사업추진상황 검토)[교육부] → 예산송금[재외공관] → 자금수령·사업추진 결과보고[재외공관·재외교육기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활동 지원**

- 기초자료 및 수요조사(학교별 지원 내역 산출 자료)[교육부] → 학교별 지원 내역 산출[교육부] → 지원 계획 수립[교육부] → 예산송금[재외공관] → 자금수령·사업추진 결과보고[재외한국학교]

○ **교수학습자료 지원**

-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자료개발 및 교과연구회 공모→ 예산송금[재외공관] → 자금수령·집행·결과보고[한국학교]

○ **재외교육기관 포털시스템 운영**

- 추진계획 수립[교육부]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교육부] → 예산 교부[교육부] → 개발업체 공개입찰·조달계약[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결과보고[보조사업자]

○ **재외교육기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사학진흥재단] → 사업추진 결과 및 집행 내역 보고[사학진흥재단]

○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교육부] → 예산 교부[교육부] → 사업추진 결과 및 집행 내역 보고[보조사업자]

○ **한국학교 나이스(NEIS) 시스템 운영 지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사업추진 결과 및 집행 내역 보고[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외한국어 보급>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CIS 한국어교육기관 지원, 일본 민족학급 지원**

- 예산수요조사·분석[교육부] → 기본계획 수립·예산배정[교육부] → 세부사업 수행[재외공관, 재외교육기관] → 자금수령·집행·결과보고[재외공관, 재외교육기관]

○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위탁**

- 기본계획 송부[국립국제교육원] 및 승인[교육부] → 사업확정 통보 및 예산재배정[교육부]→ 위탁기관 공모·지정[국립국제교육원] → 파견 교원 체재비 송금[교육부] → 사업 결과 및 위탁기관 운영 평가[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교육진흥 사업>

○ 기본계획 승인 [교육부] → 사업확정 통보 및 예산재배정[교육부] → 위탁기관 공모·선정[국립국제교육원] → 사업추진 결과보고[보조사업자]

<재외동포용 교육용교재 개발>

○ 기본계획 승인 및 예산재배정 [교육부]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국립국제교육원] → 교재개발[개발기관(대학 등)] → 최종보고[개발기관] 및 완료·검수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보급 >

○ 사업계획 수립[교육부] → 위탁기관 공모·선정[교육부] → 교과서 및 교재 공급[보조사업자] → 차년도 재외교육기관 수요량 조사[교육부·보조사업자] → 만족도 조사[보조사업자] → 연차평가[교육부]

<해외파견공무원 선발·연수>

○ 기본계획 수립 및 파견공무원 선발 [교육부] → 연수[위탁기관(중앙교육연수원 등)]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 재외한국학교 교육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78	76	77	78	'16년 실적(75.4) 및 18년도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한국학교 교육수혜자 만족도	공문을 통해 재외 교육기관 한국학교 학부모 등 대상 설문지 작성을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신규	75.4	76	76				
	달성도	-	96.7%	100%	98.7%				
(2) 재외한국교육원 교육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78	90	90	90	'16년 실적(90) 및 18년도 지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한국교육원 교육수혜자 만족도	공문을 통해 재외 교육기관 한국교육원 수강생 등 대상 설문지 작성을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신규	89.9	90	90				
	달성도	-	115.3%	100%	100%				
(3) 재외한국학교 교원 연수 실적(%)	목표	신규	77	81	85	88	'16년 목표치()77 대비 실적(80.8)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국내 학교 교원 필수 연수 이수시간(60시간)의 80%(48시간) 달성	한국학교에서 보고한 교원 연수 이수 시간 현황 공문
	실적	신규	80.8	82.5	85				
	달성도	-	104.9%	101.9%	100%				
(4) 현지 한국어 보급을 위한 관련 행사 건수(수)	목표	신규	25	46	48	61	한국교육원이 있는 17개국 중 주요 10개 중점전략국가(미국, CIS권 7개국, 호주, 태국)에서 각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2회씩 실시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보급 관련 학술 세미나, 한국어 교사 현지연수 등	현지 공관 및 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현지 한국어 보급을 위한 관련 행사 건수	한국교육원 및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한국어 보급을 위한 행사 개최 건수 조사
	실적	신규	39	46	50				
	달성도	-	156%	100%	104.2%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재외한국학교 현황('18.4.1.기준)

(참고 2) 재외한국교육원 현황('18.3.1.기준)

(참고 3)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참고 1 재외한국학교 현황('18.4.1.기준)

('18.4.1 기준)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교감)
동경한국학교	'62.03.16		720(18)	360(9)	343(11)	1,423(38)		37	14	14	1	2	68	1	0
교토국제학교	'61.05.11			28(3)	126(6)	154(9)			7	16	1	1	25	0	2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90(6)	44(3)	69(6)	203(15)		12	7	13	1	2	35	1	5
건국한국학교	'76.10.01	33(4)	148(7)	98(6)	168(6)	447(23)	5	11	17	15	1	3	52	0	4
소계(4개교)		**33(4)**	**958(31)**	**530(21)**	**706(29)**	**2,227(85)**	**5**	**60**	**45**	**58**	**4**	**8**	**180**	**2**	**11**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56(3)	389(15)	217(8)	282(11)	944(37)	5	33	21	31	1	2	93	1	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121(6)	316(12)	177(7)	207(10)	821(35)	17	31	20	24	1	2	95	1	0
상해한국학교	'99.07.06		524(22)	241(10)	426(17)	1,191(49)		51	28	48	1	1	129	1	1
무석한국학교	'08.03.01	61(3)	161(8)	123(6)	159(6)	504(23)	4	13	18	18	1		54	1	0
소주한국학교	'13.02.22	16(1)	119(7)	71(6)	108(6)	314(20)	1	9	7	11	1		29	1	0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21(2)	63(6)	13(3)	36(3)	133(14)	4	12	6	7	1		30	1	0
연대한국학교	'02.07.12		186(8)	126(6)	187(8)	499(22)		17	14	16	1	1	49	1	0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70(5)	331(12)	166(7)	207(9)	774(33)	7	22	19	18	1	1	68	1	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11(1)	88(6)	53(3)	94(5)	246(15)	2	14	11	12	1		40	1	0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23(3)	55(6)	46(3)	65(3)	189(15)	6	12	7	7	1		33	1	16
연변한국학교	'98.02.19		48(6)	37(3)	37(3)	122(12)		8	6	7	1		22	1	1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93(6)	51(3)	92(6)	236(15)		13	8	13	1		35	1	0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77(6)	51(3)	41(3)	169(12)		9	6	6	1		22	2	14
소계(13개교)		**379(24)**	**2,450(120)**	**1,372(68)**	**1,941(90)**	**6,142(302)**	**46**	**244**	**171**	**218**	**13**	**7**	**699**	**14**	**48**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18(1)	37(6)			55(7)	1	4			1		6	1	0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8	15(2)	41(5)			56(7)	2	5			1		8	1	0
소계(2개교)		**33(3)**	**78(11)**			**111(14)**	**3**	**9**			**2**		**14**	**2**	**0**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995(30)	389(11)	361(11)	1745(52)		38	19	20	1	2	80	1	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1(2)	935(26)	443(13)	447(14)	1866(55)	2	33	24	27	1	2	89	1	0
소계(2개교)		**41(2)**	**1,930(56)**	**832(24)**	**808(25)**	**3,611(107)**	**2**	**71**	**43**	**47**	**2**	**4**	**169**	**2**	**1**
잿다한국학교	'76.09.18		7(4)			7(4)		1			1		2	1	1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2(1)	24(3)			26(4)	1	3			1		5	1	1
소계(2개교)		**2(1)**	**31(7)**			**33(8)**	**1**	**4**			**2**		**7**	**2**	**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60(13)	133(7)	250(12)	643(32)		27	19	19	1	2	68	1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62(4)	265(11)	49(3)	87(3)	463(21)	6	26	11	13	1	1	58	1	0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32(6)	21(3)	30(3)	83(12)		11	3	6	1		21	1	0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11(1)	75(6)	43(3)	55(3)	184(13)	2	13	10	5	1		31	1	0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55(3)	50(6)			105(9)	3	6			1		10	1	4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93(7)	116(7)			209(14)	22	19			1		42	1	4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32(3)	66(6)			98(9)	3	6			1		10	1	4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17(3)			17(3)		3			1		4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6(5)			26(5)		5			1		6	1	5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4(2)	31(6)			45(8)	2	6			1		9	1	6
브라질한국학교	'98.02.12	과도기교육과정(초등) 운영중													
소계(11개교)		**267(20)**	**938(69)**	**246(16)**	**422(21)**	**1,873(126)**	**38**	**122**	**43**	**43**	**10**	**3**	**259**	**10**	**29**
합 계(16개국, 34개교)		**755(54)**	**6,385(294)**	**2,980(129)**	**3,877(165)**	**13,997(642)**	**95**	**510**	**302**	**366**	**33**	**22**	**1,328**	**32**	**91**

참고 2 재외한국교육원 운영 현황('18.3.1.기준)

관할 재외공관	교 육 원 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 수 (명)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 권자	시민 권자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66.05.01	1	28	1,068	69	92,156	29,284	62,872	
	사이타마한국교육원	'70.01.26	1	7	382	40	20,310	4,979	15,331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7	446	27	19,873	5,295	14,578	
요코하마(총)	가나가와한국교육원	'63.04.02	1	8	321	43	43,134	17,841	25,293	
주니가타(총)	나가노한국교육원	'70.02.26	1	3	55	5	48,667	2,884	45,783	
주삿포로(총)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3	295	14	4,280	1,053	3,227	
주센다이(총)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1	5	207	17	8,509	1,393	7,116	
주오사카(총)	오사카한국교육원	'63.04.01	1	34	1,381	100	103,078	21,976	81,102	
	나라한국교육원	'77.02.01	1	2	52	8	3,454	612	2,842	
	교토한국교육원	'63.04.12	1	12	351	34	28,978	4,183	24,795	
주고베(총)	고베한국교육원	'63.04.01	1	15	1,161	66	43,309	1,350	41,959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1	3	297	10	5,028	402	4,626	
주후쿠오카(총)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3.06.28	1	5	161	14	24,581	3,887	20,694	
주히로시마(총)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21	698	21	10,125	730	9,395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01	1	3	297	3	5,358	266	5,092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56**	**7,172**	**471**	**460,840**	**96,135**	**364,705**	
주미대사관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70	3,840	720	203,481	32,354	27,904	143,223
주뉴욕(총)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157	7,511	1,677	353,479	88,099	56,100	209,280
주시카코(총)	시카고한국교육원	'81.07.01	1	111	2,653	586	297,991	54,878	38,566	204,547
주휴스톤(총)	휴스턴한국교육원	'88.08.10	1	49	3,054	664	141,633	19,892	40,946	80,795
주LA(총)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226	12,307	2,033	651,481	118,580	112,167	420,734
주샌프란스코(총)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17	1	69	4,574	748	206,651	63,112	33,329	110,210
주애틀랜타(총)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7.03.13	1	116	4,550	1,018	239,733	90,689	39,709	109,335
미국지역 소계 (7개원)			**8**	**798**	**38,489**	**7,446**	**2,094,449**	**467,604**	**348,721**	**1,278,124**
모스크바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42	157	1,936	81,262	4,160	184	76,918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11	468	49	26,491	83	35	26,373
주블라디보스톡(총)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14	468	49	29,252	350	78	28,824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6	109	15	8,107	86	6	8,015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73**	**1,202**	**2,049**	**145,112**	**4,679**	**303**	**140,130**
주우즈베키스탄(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53	3,426	65	181,077	2,452	18	178,607
주카자흐스탄(대)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36	1,364	114	109,035	1,729	137	107,169
주키르키즈스탄(대)	비쉬켁한국교육원	'01.05.28	1	4	210	35	19,035	2,067	11	16,957
CIS지역 소계 (3개원)			**5**	**93**	**5,000**	**214**	**309,147**	**6,248**	**166**	**302,733**
주우크라이나(대)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17.03.17	1	20	816	89	13,070	334	25	12,711
주토론토(총)	캐나다한국교육원	'81.07.31	1	84	4,276	528	123,912	18,227	34,172	71,513
주시드니(총)	시드니한국교육원	'89.08.01	1	45	3,574	494	130,646	35,866	58,471	36,309
주영대사관	영국한국교육원	'81.07.01	1	19	841	160	39,934	19,219	11,104	9,611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한국교육원	'75.12.31	1	12	1,041	106	16,251	12,336	2,825	1,090
주프랑크푸르트(총)	독일한국교육원	'81.08.04	1	32	241	1,678	40,170	22,056	8,187	9,927
주파라과이(대)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1	3	273	25	5,090	440	4,510	140
주아르헨티나(대)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77.08.21	1	16	950	151	23,194	484	14,797	7,913
주상파울루(총)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8.09.01	1	24	1576	192	48904	334	19,498	29,072
오클랜드(총)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2.04.01	1	17	1,371	236	33,403	8,040	15,457	9,906
타이왕국대사관	태국한국교육원	'12.03.20	1	5	452	68	20,500	20,319	123	58
주호치민(총)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2.11.13	1	3	544	65	73,958	73,671	274	13
기타지역 소계 (12개원)			**12**	**280**	**15,955**	**3,792**	**569,032**	**211,326**	**169,443**	**188,263**
합 계	**18개국 41개원**		**44**	**1,400**	**67,818**	**13,972**	**3,578,580**	**785,992**	**883,338**	**1,909,250**

참고 3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

○ '17년 지원 현황 : 28개국 1,423교 45.4억원

※ 필리핀 공립중등학교 교사 대상 한국어 집중연수 사업비 지원 포함

국가	사업수행기관	한국어반 개설학교수	국가	사업수행기관	한국어반 개설학교수
미국	워싱턴한국교육원	17	러시아	주러시아대사관(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9
	뉴욕한국교육원	33		사할린한국교육원	7
	시카고한국교육원	25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19
	휴스턴한국교육원	16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7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7	호 주	시드니한국교육원	71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	62	뉴질랜드	뉴질랜드한국교육원	31
	주시애틀총영사관	8	영 국	영국한국교육원	13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	독 일	독일한국교육원	29
	주호놀룰루총영사관	6	프랑스	프랑스한국교육원	17
일본	동경한국교육원	58	불가리아	주불가리아대사관	2
	사이타마한국교육원	11	파 라 과 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16
	지바한국교육원	9	브라질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
	오사카한국교육원	23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5
	나라한국교육원	5	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	13
	교토한국교육원	14	키르키즈스탄	비쉬켁한국교육원	54
	가나가와한국교육원	37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한국교육원	28
	나가노한국교육원	18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5
	삿포로한국교육원	16	타지키스탄	주타지키스탄대사관	2
	센다이한국교육원	20	벨라루스	주벨라루스대사관	2
	고베한국교육원	25	대 만	주타이뻬이대표부	90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9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교육원	7
	히로시마한국교육원	25	태 국	태국한국교육원	114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8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사관	41
	오카야마한국교육원	5	캐나다	캐나다한국교육원	46
중국	주중국대사관	10	몽골	주몽골대사관	24
	주상하이총영사관	10	말레이시아	주말레이시아대사관	10
	주선양총영사관	1	남아공	주남아공대사관	2
			총계		1,423

※ 재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의함 - 지원국 또는 미지원국 중 자료 제출 국가 통계임

[302]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16,032	15,546	15,989	443	2.8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300 - 4333 - 302

* 담 당 자 : 국제협력관(공석), 국제교육협력담당관(박대림), 서기관(장세은), 사무관(채희종, 정구용, 이규성, 황소정),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미래교육기획과장(유지완), 사무관(전민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UNESCO, OECD, APEC, ASEM, ASEAN, ADEA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제 사회의 안목 배양 및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
사업기간	'72 ~ (집행단위사업별로 상이함)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출연, 해외이전 등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참여기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협회연맹, 한국교육개발원, APEC국제교육협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연구재단 등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UNESCO 교육협력지원 】: 1,685백만원

○ 유네스코 정책 참여 강화 : 408백만원

- 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 (40백만원×3건)+(6.5백만원×20회)=250백만원
-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 13.6백만원×5개국=68백만원
- 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 90백만원×1인×1년=90백만원

○ SDG4-교육2030 이행 : 685백만원

- 교육 2030 국내이행 촉진 : 50백만원×3건=150백만원
  ※ 국내 네트워크 회의 개최, 자료발간, 주제별 워킹그룹 운영 등
- 지속가능발전교육 진흥 : 240백만원
  -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60백만원
  ※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연구·출판 및 정책포럼 개최 등
  -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활동 촉진 : 90백만원×2건=180백만원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59백만원×500개교=295백만원

○ 세종프로젝트 : 102백만원

- 아시아 성인교육학습 협력사업 운영 지원 : 17.5백만원×4건=70백만원
- 사업 성과체계 구축 및 운영 : 6백만원×2회=12백만원
- 아시아 성인교육학습 역량공유 워크숍 : 20백만원×1회=20백만원

○ 유네스코 정보 확산 : 330백만원

- 유네스코 저널 발간 : 15백만원×12회=180백만원
- 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국제회의 개최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80백만원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0.1백만원×800회=80백만원

○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지원 : 80백만원

- 국제 유네스코연맹 간 교류활동 : 3백만원×10회=30백만원
- 국내 협회연맹 네트워크 활동 : 2백만원×15회=30백만원
-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협회연맹 회의 개최 : 20백만원×1회=20백만원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2,246백만원

- 인건비 : 61.47백만원×24명=1,473백만원
- 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42백만원×12월=773백만원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4백만원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4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0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백만원(0.6백만원×30명×1회)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수자료개발 : 109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 소지역 연수 :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 개발 : 137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 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 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 개발 : 111백만원

- 영문소식지 <상생> 발간 : 27.5백만원×1종×2회=55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 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 관리 및 정보화 사업: 101백만원

- 멀티미디어 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 1,19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 교원 및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20백만원×5강좌) +(100백만원×2회)=300백만원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213백만원

○ 유네스코 신탁기금 2단계 1차년도 지원 : 200,000$×1,063원=213백만원

- 아태지역 내 고등교육 질 보장, 역량체계, 자격인정 정책 간 이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체제 개발 및 적용
- NQF 가이드라인 등 1차 사업으로 개발된 고등교육 질 관리 도구를 활용한 역내국가 고등교육정책 역량강화 지원
- 아태자격인정협약 하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고등교육 정보교류 지원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305백만원

○ **OECD 교육연구사업 참여 분담금 : 232백만원**

- 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51,200×1,309원=67백만원
- Education2030 분담금 : €29,500×1,309원=39백만원
- 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 분담금 : €25,000×1,309원=33백만원
-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평가 : €12,000×4개대학×1,309원=63백만원
- CELE(학습환경 평가 프로그램) : €23,077×1,309원=30백만원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 73백만원**

- 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등 교육 분야 정책회의 참여 및 국내 전문가협의회 개최 : 10백만원

※ 의제 분석을 위한 전문가 활용 및 협의회 개최,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여비 등

-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 : 63백만원

※ 한국이 참여한 OECD 교육연구사업 결과 파급 및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APEC 교육협력 사업 】: 608백만원

○ **사업(APEC교육협력사업) 운영비 : 220백만원**

○ **APEC 휴먼 네트워크 사업 : 120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단(ALCoB) 운영 : 60백만원
- APEC 교육봉사단 파견 : 15백만원×4개국= 60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사업 : 83백만원**

- APEC 미래교육포럼 및 국제알콥컨퍼런스 개최 : 73백만원x1회= 73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 홍보물 발간 : 10백만원x1회= 1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운영체제 지원 및 교류 : 15백만원**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EDNET 포함), 회원국 교육부 대표회의 확대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사업 : 30백만원**

※ 2013년 APEC 정상회의('13.10)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APEC 역내 학생분야 교류협력 강화

○ **APEC HRDWG 의장(LS)활동 지원 : 70백만원**

※ '17.1월 수임확정된 APEC HRDWG 의장활동(국제회의 주재 등)지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사업 :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국제공동연구 실시 : 40백만원
- APEC CEDI 그룹 구성 및 APEC Education Dialogue 개최 : 30백만원

※ APEC CEDI 활동 추진 및 결과 보고 공식 연차 회의(Offline 연1회 이상 개최 필요)

【 ASEM 교육협력사업 】: 770백만원

○ **ASEM-DUO 장학사업 : 700백만원**

- 아시아와 유럽 간 인적교류확대를 위한 장학 사업비 : 510백만원
- ASEM-DUO 사무국 운영비 : 190백만원

○ **한-체코 써머스쿨 어학코스* 교류 : 20백만원**

- 4백만원×5명=20백만원(ASEM-DUO 사무국 사업추진 운영비 포함)

* 2011년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2014-2016년 한-체코 교육문화교류시행계획서 갱신 서명('14.11.05.)시 "단기 써머스쿨 장학생 5명 지원" 명시

○ **ASEM MOOC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 50백만원**

- 무크 콘텐츠 공동 개발·교류 지원(강좌 콘텐츠 번역, 자막 제작 등) : 10백만원 × 3강좌 = 30백만원
- 무크 이니셔티브 홍보 활동 : 10백만원

※ 제7차 ASEM 교육장관회의('19, 루마니아) 현장 홍보활동 등

- 무크 이니셔티브 총괄관리 운영(전담조직 구축, 법률자문 등) : 10백만원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17.11.20)에서 'ASEM MOOC 네트워크 이니셔티브'(ASEM Network of MOOCs Initiative)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2018년부터 예산 반영된 사업

【 ASEAN 교육협력사업 】: 330백만원

○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협력** 강화 : 180백만원

○ ASEAN+3/EAS 역내 **직업기술교육협력** 활성화 : 150백만원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백만원

○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강의·연구지원, 중등 영어교사의 미국 연수 등 한국인 수혜사업 : 2,500백만원 (19.53백만원×128명)

○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등 미국인 수혜사업 : 1,400백만원 (9.72백만원×144명)

【 한-EU 교육협력사업 】: 256백만원

○ **Erasmus Plus 교육협력사업*** : 243**백만원**(81백만원×3계속과제)

* ICI-ECP 종료 이후, EU측 교육협력 프로그램 개편(Erasmus Plus) 추진

○ **사업총괄관리 운영** : 13**백만원**

- 한-EU 교육협력사업 관련 선정과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 운영비

【 CAMPUS Asia 사업 지원 】: 3,746백만원

○ **CAMPUS Asia - 한일중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초청학생) : 976백만원(17개사업단×8명×8.5월×0.85백만원)
- 사업단 프로그램운영비 : 1,530백만원(17개사업단×90백만원)
- 사업평가・운영비 : 150백만원

○ **CAMPUS Asia - AIMS 1,090백만원**

- 학생교류비(파견학생) : 490백만원(10개사업단×7명×10월×0.7백만원)
- 사업단 프로그램운영비 : 500백만원(10개사업단×50백만원)
- 사업평가・운영비 : 100백만원

【 글로벌 포럼 】: 63백만원

○ 글로벌 인재포럼과 연계하여,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 국가의 인재개발 정책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 연수자 항공·숙박비 : 3백만원×12명=36백만원
- 행사장·차량·장비 임차비 : 4백만원(4백만원×1식)
- 행사 및 운영비(연사섭외 포함) : 23백만원(23백만원×1식)

【 국제교육 연구협력 강화 및 기반구축 】: 87백만원

○ 학술교류 국제기구(ICSU, ISSC, UAI, PSA, IFS) 부담금 : 87백만원

국제학술기구명	연간 부담금액	비고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 42,000	
국제사회과학이사회(ISSC)	€ 16,000	
국제학술원연합(UAI)	€ 2,200	
태평양과학협회(PSA)	$ 5,000	
국제과학재단(IFS)	$ 1,000	

※ 학술기구 간 부담금액 조정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 아프리카 ADEA 교육협력 】: 50백만원

○ **ADEA(아프리카 54개국 교육장관 회의) 분담금 : 50백만원**($50,000)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글로벌교육교류사업 (비ODA)	**15,546**	**15,989**
■ UNESCO 교육협력지원	**1,705** **・ 유네스코 정책참여 강화 : 458백만원** ①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 (50백만원×3건)+(7.5백만원×20회)=300백만원 ②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 13.6백만원×5개국 = 68백만원 ③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 90백만원×1인×1년 = 90백만원 **・SDG4-교육2030 이행 : 755백만원** ①교육2030 국내이행 촉진 : 50백만원×3건 = 150백만원 ②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 : 270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60백만원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촉진 : 70백만원×3건=210백만원 ③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61백만원×550개교 = 335백만원 **・세종프로젝트 : 112백만원** ①아시아 성인교육학습 협력사업 운영지원 : 17.5백만원×4건 = 70백만원 ②사업 성과체계 구축 및 운영 : 6백만원×2회 = 12백만원 ③아시아 성인교육학습 역량공유 워크숍 개최 : 30백만원×1회 = 30백만원 **・유네스코 정보 확산 : 200백만원** ①유네스코 저널(월간) 발간 : 166백만원×12회 = 200백만원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90백만원** ①0.1백만원×900회=90백만원 **・유네스코협회연맹 지원 : 90백만원** ①30백만원×3건=90백만원	**1,685** **・ 유네스코 정책참여 강화 : 408백만원** ①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 (40백만원×3건)+(6.5백만원×20회)=250백만원 ②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 13.6백만원×5개국 = 68백만원 ③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 90백만원×1인×1년 = 90백만원 **・SDG4-교육2030 이행 : 685백만원** ①교육2030 국내이행 촉진 : 50백만원×3건 = 150백만원 ②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 : 240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60백만원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촉진 : 90백만원×2건=180백만원 ③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59백만원×500개교 = 295백만원 **・세종프로젝트 : 102백만원** ①아시아 성인교육학습 협력사업 운영지원 : 17.5백만원×4건 = 70백만원 ②사업 성과체계 구축 및 운영 : 6백만원×2회 = 12백만원 ③아시아 성인교육학습 역량공유 워크숍 개최 : 20백만원×1회 = 20백만원 **・유네스코 정보 확산 : 330백만원** ①유네스코 저널(월간) 발간 : 15백만원×12회 = 180백만원 ②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국제회의 개최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 80백만원** ①0.1백만원×800회=80백만원 **・유네스코협회연맹 지원 : 80백만원** ①26.6백만원×3건=80백만원
■ 아태국제이해 교육원 지원	**3,976** **・인건비 및 운영비 : 2,246백만원** ①인건비 : 61.37백만원×24명=1,473백만원 ②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42백만원×12월 =773백만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4백만원**	**3,976** **・인건비 및 운영비 : 2,246백만원** ①인건비 : 61.37백만원×24명=1,473백만원 ②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42백만원×12월 =773백만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①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4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0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백만원** ①0.6백만원×30명×1회=18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구자료 개발: 109백만원** ①아태지역 교원연수 :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②소지역 연수: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137백만원** ①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③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④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⑤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 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111백만원** ①<상생>발간 : 27.5백만원×1종×2회=55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③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관리 및 정보화 사업 : 101백만원** ①멀티미디어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 1,190백만원** ①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②교원 및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③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④세계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⑤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화	①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4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0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백만원** ①0.6백만원×30명×1회=18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구자료 개발: 109백만원** ①아태지역 교원연수 :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②소지역 연수: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137백만원** ①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③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④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⑤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 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111백만원** ①<상생>발간 : 27.5백만원×1종×2회=55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③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관리 및 정보화 사업 : 101백만원** ①멀티미디어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 1,190백만원** ①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②교원 및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③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④세계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⑤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화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20백만원×5강좌)+(100백만원×2회)= 300백만원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20백만원×5강좌)+(100백만원×2회)= 300백만원
■ 아태지역고등교육통합증진 사업	**237** **· 유네스코 고등교육 발전기금 : 237백만원** ①210,000$×1,130원=237백만원	**213** **· 유네스코 고등교육 발전기금 : 213백만원** ①200,000$×1,063원=213백만원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459**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80백만원** **· OECD 교육사업 참여 분담금 : 379백만원** ①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45,000×1,280원=59백만원 ②Education 2030 분담금 : €29,500×1,280원=38백만원 ③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분담금 : €25,000×1,280원=33백만원 ④ESP(교육과 사회진보) 분담금 : €47,500×1,280원=62백만원 ⑤Skill Strategy(인적역량전략)분담금 : €146,000×1,280원=187백만원	**305**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73백만원** **· OECD 교육사업 참여 분담금 : 232백만원** ①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51,200×1,309원=67백만원 ②Education 2030 분담금 : €29,500×1,309원=39백만원 ③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분담금 : €25,000×1,309원=33백만원 ④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평가 : €12,000×4교×1,309원=63백만원 ⑤CELE(효과적인 학습환경)분담금 : €23,077×1,309원=30백만원
■ APEC 교육협력지원	**608** ○ 사업(APEC교육협력사업) 운영비 : 220백만원 ○ APEC 휴먼 네트워크 사업 : 120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단(ALGOB) 운영 : 60백만원 ▪ APEC 교육봉사단 파견 : 60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 83백만원 ▪ APEC 미래교육포럼 및 국제일류컨퍼런스 개최 : 73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 홍보물 발간 : 1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운영체제 지원·교류 : 15백만원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사업 : 30백만원 ○ APEC HRDWG 의장(US) 활동 지원 : 70백만원 ○ APEC 교육협력프로젝트(EPCP)사업 :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연구과제 선정 및 국제공동연구 실시 : 40백만원 ▪ APEC CEDI 그룹 구성 및 APEC Education Dialogue 개최 : 30백만원	**608** ○ 사업(APEC교육협력사업) 운영비 : 220백만원 ○ APEC 휴먼 네트워크 사업 : 120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단(ALGOB) 운영 : 60백만원 ▪ APEC 교육봉사단 파견 : 60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 83백만원 ▪ APEC 미래교육포럼 및 국제일류컨퍼런스 개최 : 73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 홍보물 발간 : 1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운영체제 지원 및 교류 : 15백만원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사업 : 30백만원 ○ APEC HRDWG 의장(US) 활동 지원 :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사업 :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국제공동연구 실시 : 40백만원 ▪ APEC CEDI 그룹 구성 및 APEC Education Dialogue 개최 : 30백만원
■ ASEM 교육협력사업	**800** ○ASEM-DUO 장학사업 : 730백만원 ▪ 장학사업비 : 512백만원 ▪ ASEM-DUO 사무국 운영비 : 218백만원 ○ 한-체코 써머스쿨 장학 사업비 : 20백만원 ○ ASEM MOOC 네트워크 아너셔티브 : 50백만원	**770** ○ ASEM-DUO 장학사업 : 700백만원 ▪ 장학사업비 : 510백만원 ▪ ASEM-DUO 사무국 운영비 : 190백만원 ○한-체코 써머스쿨 장학 사업비 : 20백만원 ○ASEM MOOC 네트워크 아너셔티브 : 5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아셈MOOC전문가포럼운영 : 30백만원 ▪ 품질관리 국제비교 및 가이드라인 개발 : 20백만원	▪MOOC 콘텐츠 공동 개발·교류 지원 및 강좌 운영 : 10백만원×3강좌 = 30백만원 ▪ 이니셔티브 홍보활동 : 10백만원 ▪ 이니셔티브 총괄관리 운영(전담조직 구축, 법률자문 등) : 10백만원
■ ASEAN교육협력사업	**250** ○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 150백만원 ○ ASEAN+3/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활성화 : 100백만원	**330** ○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 180백만원 ○ ASEAN+3/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활성화 : 150백만원
■ 한미교육위원단지원	**3,900**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강의·연구지원, 중등 영어교사의 미국 연수 등 한국인 수혜사업 : 2,500백만원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등 다양한 수혜사업: 1,400백만원	**3,900** ○미국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강의·연구지원, 중등 영어교사의 미국 연수 등 한국인 수혜사업 : 2,500백만원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등 다양한 수혜사업: 1,400백만원
■ 한-EU교육협력사업	**285** ○ 과제 지원액 : 270백만원 ▪ 90백만원×3개 과제 ○ 사업총괄관리 운영 : 15백만원	**256** ○ 과제 지원액 : 243백만원 ▪ 91백만원×3과제 ○ 사업총괄관리 운영 : 13백만원
■ Campus Asia 사업	**3,110** ○ CAMPUS Asia-한일중: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 : 976백만원 (17개사업단×8명×8.5월×0.85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30백만원 (17개사업단×9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CAMPUS Asia-AIMS: 454백만원 - 학생교류비 : 196백만원 (4개사업단×7명×10월×0.7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200백만원 (4개사업단×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58백만원	**3,746** ○ CAMPUS Asia-한일중 :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 : 976백만원 (17개사업단×8명×8.5월×0.85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30백만원 (17개사업단×9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CAMPUS Asia-AIMS : 1,090백만원 - 학생교류비 : 490백만원 (10개사업단×7명×10월×0.7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500백만원 (10개사업단×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00백만원
■글로벌 포럼	**63**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63**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97** ○ 학술교류 국제기구(UAI, IFS, ICSU, PSA, Future Earth, ISSC) 부담금 : 97백만원	**87** ○ 학술교류 국제기구(ICSU, ISSC, UAI, PSA, IFS) 부담금 : 87백만원
■아프리카ADEA 교육협력	**56** ○ ADEA 분담금 : 56백만원	**50** ○ ADEA 분담금 : 50백만원($50,000)

□ 지원 필요성

【 유네스코 교육협력사업 】

○ **(유네스코 정책 참여 강화)** 對 유네스코 외교력 강화 및 유네스코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정책개발 분야 확대 및 정책회의 참가 지속

○ **(SDG4-교육2030 이행)** 세계교육포럼('15.5월) 개최국으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네스코 「교육 2030」 달성**을 위해 정책·전략 수립 및 제안 등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

○ **(세종프로젝트)** 한국의 **'개도국 소녀들의 더 나은 삶'** 구상과,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교육목표인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실천에 기여

○ **(유네스코 정보확산)** 교육·과학·문화·국제협력 등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을 비롯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확산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사업 】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058호)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17호)에 따른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사업수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

○ 한국의 중점 의제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네스코 「교육 2030」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국제교육목표 달성 역할 수행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 아태지역은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이하며, 종교와 문화, 역사적인 배경 등을 공유하는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역내통합과 소통 부족

○ 최근 아시아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으로 역내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각국의 이질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이 역내 이동성을 제약

○ 동 사업은 아태지역 고등교육 시스템의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사업 실행 과정에서 유네스코를 통한 아태지역 고등교육 표준화 작업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 OECD 가입('96.12)에 따른 회원국으로서 의무사항인 분담금 및 활동 지원

○ OECD와의 지속적인 교육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 교육정책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한국의 교육 선진화 추구 필요

○ 최근 OECD는 단시간내 뛰어난 성장을 이룬 한국경제와 이의 기반이 된 우리교육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최근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가 거둔 높은 성적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OECD 교육사업에 한국의 참여 및 활동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

○ 글로벌 교육시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OECD의 각종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고,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우리 입장의 적극 반영을 통해 국격 제고 기대

【 APEC 교육협력 사업 】

○ `99년 APEC정상회의에서 동 사업이 제안된 이래로 16개 이상 회원국들과 공동 추진, APEC 역내 유일한 교육협력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 필요

※ APEC 정상회의('01,'02.),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05,'08.) 및 교육장관회의('08,'12,'16.) 선언문 등에서 한국의 APEC교육협력사업이 역내 교육체계 개선에 기여함을 치하

○ APEC교육협력사업은 APEC 역내 국가 간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한국의 교육 국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10년 이상의 교육·HRD 분야의 선도적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1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의장국으로 활동 중('17～'20년)

○ APEC 내에서 한국과의 교육협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가 필요함

【 ASEM 교육협력사업 】

○ 아시아-유럽의 기관 간 교류협정을 조건으로 하는 일대일 교류방식을 통한 학생·교수들 교류 지원으로 상호 심층적 이해 확립 및 일부 유럽국가에 편중된 학생교류 불균형 해소에 기여

○ 고등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자에게 선진교육 및 연구기회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지적자원 개발과 학문 발전 기대

○ 제3차 ASEM 정상회담('00.10월, 서울) 시 한국·싱가포르·프랑스가 공동 제안 및 한국이 주도(ASEM-DUO사무국 설립, '01.9월,서울)하는 사업으로 일관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필요

○ 한-체코 교육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과 관련하여 양국 간 학생교류(한-체코 써머스쿨)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필요

【 ASEAN 교육협력사업 】

○ 최근 'ASEAN+3', 'EAS'(ASEAN+8) 등을 중심으로 ASEAN 권역을 둘러싼 국가간 주도권 선점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對아세안 교육협력의 본격적 확대**를 통해 국가 위상제고 필요

※ 아세안 권역내 교육분야가 우선순위과제로 선정, ASEAN+3 교육장관회의, EAS 교육장관회의 창설 등 교육분야 협력이 본격화(2012년)

○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新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 기조**이며, 최근 **VIP 아세안 순방**('17.11.8～11.14)을 통해 **아세안과의 체계적 협력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18. 1월 현재, 외교부 주도로 관계부처 대상 신남방정책 추진 TF 구성 협의중

- **(고등교육 분야)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의 유학생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역내 고등교육 이동성**을 촉진하고 **아세안 교육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활동 필요**

*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 공유, 한-아세안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 이러닝 교육 등

※ '17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11.8%**가 베트남 유학생(총 14,614명)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약 6배가 급증하는 등 성장세

※ **아세안의 중산층 인구** 및 **GDP 증가율**에 따른 **교육수준 확대**를 감안할 때, 향후 **고등교육 교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직업교육 분야) 자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의 직업교육발전 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국가가 늘고 있음

※ '15년 본 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 대상 직업교육 컨설팅에 착수한 이후, 그간 컨설팅의 성과 확산을 바탕으로 컨설팅 희망 국가 지속 증가중 ('18년 기준 8개국)

※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 : 개인의 발달 과정에 있어 상대국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에 대한 친밀도 상승 / 한국의 우수한 교육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국내 모델 전파 및 위상 강화
☞ **경제적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등의 효과**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 한·미 정부 간 교육교류를 위한 협정(Agreement)*에 기반하여 교육교류 활동(Fulbright 장학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

* 협정체결('50.4월) → 협정비준('60.6월))→풀브라이트 장학사업 시작('60.9월)

○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미국 내 친한 인사 및 한국학 전문가 양성

【 한-EU 교육협력사업 】

○ ICI-ECP(2009~2014) 종료 및 EU측의 교육훈련 프로그램(Erasmus Plus, 2014-2020) 개편(통합)에 따라,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기관 지원을 통한 한-EU 간 지속적인 교육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상호 호혜적인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유럽과의 광범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위한 토대의 마련

○ 한-EU 간 학생교류 불균형 현상 해소와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분야에서 한국-유럽 간 학생 교류 지원

○ 한국 학생의 국제화 역량(외국어 능력·국제화 수준 등) 배양 및 인턴십 등 유럽 내 직업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진로 역량 강화 기대

【 Campus Asia 사업 】

○ 아시아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를 양성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한일중 3국 및 ASEAN국가 대학 학생 교류 지원

○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추진을 위한 아시아 대학 간 교류기반 구축

※ 역내 학생교류를 지원하여 서로 다른 국가간 상호이해와 친목을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역내 대학이 협력하여 수준높은 교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한일중)** 한국 주도의 학생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 사업단 대상 워크숍 개최하여 사업 참가 이후에도 교류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 **(AIMS) 아세안**은 인구 세계 3위, GDP 6위,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 상대로 **외교적 중요성**이 매우 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아세안에 대한 선호도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아세안 국가로의 교환학생 파견**을 지원하는 **CAMPUS Asia-AIMS 사업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아세안 지역 전문가 양성 가능**

- 또한 **다른 AIMS 프로그램 참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업단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단 추가 선발 필요**(4개 사업단 → 10개 사업단으로 확장)

* ASEAN국가 중 6개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한국, 일본이 참여 중이며 다른 참여국들도 한국 사업단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

【 글로벌 포럼 】

○ 한국이 인재강국으로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아시아 지역 이니셔티브 유지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국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기반 확대 필요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기구사업 이슈분석 및 국제회의 이니셔티브 주도를 위한 연구협력강화

○ 국제적 연구협력 및 학술발전에 기여 및 지속적인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책 및 정책 제고의 과학적 논거 취득

【 아프리카 ADEA 교육협력 】

○ 아프리카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육을 통해 국격 제고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아프리카 지원 점진적 확대 방침 수립('15.11)

○ ADEA는 아프리카 54개국 장차관급 협의체이며, UNESCO, World Bank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어 정보 수집 및 전문가 활용 등 아프리카에 한국 교육이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 역할 가능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16,042	15,546	15,989	443	2.8
▪ UNESCO 교육협력 지원	1,750 · 대유네스코 외교협력활동 지원: 38백만원 ①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 (2회*1천$)2건*(75백만원/2회)=200백만원 ②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216백만원/5개국=168백만원 ③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70백만원/1인/1년=70백만원 · 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 380백만원 ①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15백만원×4건 = 60백만원 ②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80백만원/1회=80백만원 ③지속가능발전 유네스코 청년포럼 : 50백만원×2건 = 100백만원 ④지속가능발전교육 한일 교사 교류: 47백만원/3건 = 140백만원 · 유네스코학교 사업: 335백만원 ①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5백만원*607개교=315백만원 ②교육2030 이행 촉진: 20백만원 · 세종프로젝트: 132백만원 ①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체 교육사업 지원 : 20백만원×4건 = 80백만원 ②사업 평가모니터링 : 6백만원×2회 = 12백만원 ③태지역 문해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40백만원/1회=40백만원 · 유네스코 정보 확산: 335백만원 ①Korea Journal 발간: 135백만원 -Korea Journal 발간 (0.015백만원×2천부) ×4회 = 120백만원 -코리아저널상 시상 : 15백만원 ②유네스코 저널 발간 : 200백만원 -유네스코 저널(월간) 발간 : (320원×45,000부)×12회 = 172.8백만원 -유네스코 저널 기획편집위원회 운영 : 3.4백만원×2인×4회=27.2백만원 · 외국어 학습하는 문해교실: 90백만원 ①0.1 백만원×900회=90백만원 · 유네스코협회간행 지원: 90백만원 ①30백만원/3개=90백만원	1,705 · 유네스코 정책협력 강화: 455백만원 ①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3회*백만원/3건)+(75백만원/2회*3회)=300백만원 ②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 136백만원/5개국 = 68백만원 ③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90백만원/1인/1년=90백만원 · SDG4 교육2030 이행: 755백만원 ①교육2030 국내이행 촉진 : 50백만원×3건 = 150백만원 ②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 270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60백만원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촉진 : 70백만원×3건=210백만원 ③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61백만원*550개교 = 335백만원 · 세종프로젝트: 112백만원 ①아시아 생애교육센터 협력사업 운영지원: 175백만원/4건 = 70백만원 ②사업 성과체계 구축 및 운영 : 6백만원/2회 = 12백만원 ③아시아 생애교육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30백만원/1회=30백만원 · 유네스코 정보 확산: 210백만원 ①유네스코 저널(월간) 발간 : 16.6백만원×12회 = 200백만원 · 외국어 학습하는 문해교실: 90백만원 ①0.1 백만원×900회=90백만원 · 유네스코협회간행 지원: 90백만원 ①30백만원/3개=90백만원	1,685 · 유네스코 정책협력 강화: 458백만원 ①유네스코 정책개발 및 정책수립 참여 : (4회*백만원/3건)+(65백만원×2회)=250백만원 ②유네스코국가위원회 협력 강화 : 136백만원/5개국 = 68백만원 ③유네스코한국대표부 주재관 파견 : 90백만원/1인/1년 = 90백만원 · SDG4 교육2030 이행: 665백만원 ①교육2030 국내이행 촉진: 50백만원/3건 = 150백만원 ②지속가능발전교육진흥 : 240백만원 -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운영 : 60백만원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촉진 : 90백만원×2건 = 180백만원 ③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0.59백만원*510개교 = 295백만원 · 세종프로젝트: 102백만원 ①아시아 생애교육센터 협력사업 운영지원 : 175백만원/4건=70백만원 ②사업 성과체계 구축및운영 6백만원/2회=12백만원 ③아시아 생애교육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백만원/1회=20백만원 · 유네스코 정보 확산: 330백만원 ①유네스코 저널(월간) 발간 : 15백만원×12회 = 180백만원 ②마다가스카르 라무지 국제회의 개최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 외국어 학습하는 문해교실: 80백만원 ①0.1 백만원×800회=80백만원 · 유네스코협회간행 지원: 80백만원 ①26백만원×3건=80백만원	△ 20	△ 1.2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360 · 유네스코 고등교육 발전기금: 360백만원 ①31.5만$×1,150원=360백만원	237 · 유네스코 고등교육 발전기금 237백만원 ①21 만$×1,130원=237백만원	213 · 유네스코 고등교육 발전기금 : 213백만원 ①200,000$×1,063원=213백만원	△ 24	△ 10.1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3,938 · 인건비 및 운영비 : 2,218백만원 ①인건비 : 37.9백만원*24명*4.5백만원 ②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2백만원*12월=77.3백만원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1백만원	3,976 · 인건비 및 운영비 : 2,246백만원 ①인건비 : 61.37백만원×24명=1,473백만원 ②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2백만원*12월=77.3백만원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1백만원	3,976 · 인건비 및 운영비 : 2,246백만원 ①인건비 : 61.37백만원×24명=1,473백만원 ②운영비(시설임차비 등) : 64.42백만원×12월=773백만원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 : 6.1백만원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백만원)	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백만원)	①이사회 및 운영위원회(2백만원), 관련기구 교류 및 협력(4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백만원 ①0.6 백만원×30명×1회=18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백만원 ①0.6 백만원×30명×1회=18백만원	· 한국교원연수 : 18 백만원 ①0.6 백만원×30명×1회=18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수자료 개발: 109백만원 ①아태지역 교원연수: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②소지역 연수 :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수자료 개발: 109백만원 ①아태지역 교원연수: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②소지역 연수 :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아태지역 교원연수 및 연수자료 개발: 109백만원 ①아태지역 교원연수 : 1,975백만원×40명×1회=79백만원 ②소지역 연수 : (0.75백만원×40명×1회=30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 137백만원 ①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③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④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⑤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 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 137백만원 ①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③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④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⑤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 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 137백만원 ①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 16백만원×1회=16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정책 회의 : 44백만원×1회=44백만원 ③한중일 국제이해교육 학술대회 : 8백만원×1회=8백만원 ④국제이해교육 모범사례 : 4.2백만원×5개 사례=21백만원 ⑤유네스코 교육 카테고리 2 기관 네트워크 운영 : 48백만원×1회=48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111백만원 ①<상생> 발간 : 18.3백만원×1종×3회=55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③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111백만원 ①<상생> 발간 : 27.5백만원×1종×2회=55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③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111백만원 ①<상생> 발간 : 27.5백만원×1종×2회=55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32백만원×1종=32백만원 ③세계유산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 자료개발 : 24백만원×1종=24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관리 및 정보화 사업 : 101백만원 ①멀티미디어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관리 및 정보화 사업 : 101백만원 ①멀티미디어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국제이해교육 자료관리 및 정보화 사업 : 101백만원 ①멀티미디어센터 운영 : 4.08백만원×12월=49백만원 ②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 : 52백만원×1회=52백만원		
	· 글로벌시민교육 확산사업: 1,190백만원 ①글로벌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②교원 및 지자체 글로벌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③글로벌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④글로벌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⑤고등교육기관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강좌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10백만원×10강좌)+(100백만원×2회)= 3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확산사업: 1,190백만원 ①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②교원 및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③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④세계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⑤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20백만원×5강좌)+(100백만원×2회)= 3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확산사업: 1,190백만원 ①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 95백만원×2종=190백만원 ②교원 및 지자체 세계시민교육 연수 : 2백만원×50명×2회=200백만원 ③세계시민교육 체험관 운영 : 166백만원×12월=200백만원 ④세계시민교육 UN·유네스코 포럼 : (50백만원×1회)+(250백만원×1회=300백만원 ⑤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세계시민교육 강좌 및 국제 네트워크 운영 : (20백만원×5강좌)+(100백만원×2회)= 300백만원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80백만원 · OECD 교육사업 참여 분담금: 192백만원 ①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45,000×1,290원=59백만원 ②ESP(교육과 사회진보) 분담금 :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80백만원 · OECD 교육사업 참여 분담금 : 379백만원 ①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45,000×1,280원=59백만원 ②ESP(교육과 사회진보) 분담금 :	· OECD 교육부분 사업 및 활동 지원: 73백만원 · OECD 교육사업 참여 분담금 : 232백만원 ①TALIS(ISCED)(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 분담금 : €51,200×1,309원=67백만원 ②Education 2030 분담금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47,500×1,290원=62백만원 ③Education 2030 분담금 : €29,500×1,290원=38백만원 ④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분담금: €25,000×1,290원=33백만원	€47,500×1,280원=62백만원 ③Education 2030 분담금 : €29,500×1,280원=38백만원 ④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분담금: €25,000×1,280원=33백만원 ⑤National Skills Strategy(국가인적역량전략) 분담금 : €146,000×1,280원=187백만원	€29,500×1,309원=39백만원 ③ECEC(유아교육의 질 관리)분담금: €25,000×1,309원=33백만원 ④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평가 : €12,000×4교×1,309원=63 백만원 ⑤TALE(효과적인 학습환경) 분담금 : €23,077×1,309원=3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지원	**608** -사)APEC교육협력센터 운영비 : 210백만원 - APEC 휴먼네트워크 사업 : 118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82백만원 - APEC교육협력 정책체제 및 교류: 15백만원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 25백만원 -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 사업 : 158백만원	**608** -사)APEC교육협력센터 운영비 : 210백만원 - APEC 휴먼네트워크 사업 : 120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83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정책체제 및 교류: 15백만원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 30백만원 - APEC HRDWG 의제(IS)활동 지원: 7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 사업: 70백만원	**608** - 사)APEC교육협력센터(ALCoE) 운영비 : 220백만원 - APEC 휴먼 네트워크 사업 : 120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주간(ALCoE) 운영 : 60백만원 ▪ APEC 교육정책단 파견: 60백만원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 83백만원 ▪ APEC 미래교육포럼 및 국제랄 콘퍼런스 개최 : 73백만원 ▪ APEC 국제교육협력 홍보물 발간 : 10백만원 - APEC 교육협력 운영체제 지원 및 교류 : 15백만원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사업: 30백만원 - APEC HRDWG 의제(IS)활동 지원: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I) 사업: 70백만원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I) 국제공동연구 실시 : 40백만원 ▪ APEC CEI 그룹 구성 및 APEC Education Dialogue 개최: 30백만원	-	-
▪ ASEM 교육협력사업	**1,552** - 장학사업비 : 512백만원, - 사무국운영비 : 218백만원 - 한체프 싸나룰 장학생: 20백만원 - ASEM 교육장관회의 개최 : 802백만원	**800** - 장학사업비 : 512백만원 - 사무국운영비 : 218백만원 - 한체프 싸나룰 장학생 : 20백만원 - ASEMMOOC : 50백만원	**770** -ASEMDUO 장학사업 : 700백만원 ▪ 장학사업비 : 510백만원 ▪ ASEMDUO 사무국 운영비: 190백만원 -한체프 싸나룰 장학사업비: 20백만원 -ASEMMOOC 네트워크 아나셔브: 50백만원 ▪MOOC 콘텐츠 공동 개발 교류 지원 및 강좌 운영 : 10백만원×3강좌=30백만원 ▪아나셔티브 홍보활동 : 10백만원 ▪ 아나셔티브 총괄관리 운영(전담조직 구축, 법률서문 등) : 10백만원	△30	△3.8
▪ ASEAN 교육협력사업	**250** -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 150백만원 - ASEAN+6/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확성화 100백만원	**250** -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 150백만원 - ASEAN+6/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확성화 100백만원	**330** -ASEAN+3/EAS 역내 고등교육협력 강화 : 180백만원 -ASEAN+3/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활성화 : 150백만원	80	32.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3,600** - 한국인 수혜 장학사업 : 2228백만원 - 미국인 수혜 장학사업 : 1372백만원	**3,900** - 한국인 수혜 장학사업 : 2500백만원 - 미국인 수혜 장학사업 : 1400백만원	**3,900** - 한국인 수혜 장학사업 : 2500백만원 - 미국인 수혜 장학사업 : 1400백만원	-	-
▪ 한-EU 교육협력 사업	**275** - 재수혜제 지원(2개) : 260백만원 - 사업관리운영 : 15백만원	**285** - 신규과제 지원(3개) : 270백만원 - 사업관리운영 : 15백만원	**256** - 과제 지원액 : 243 백만원 ▪ 91 백만원×3과제 - 사업관리 운영 : 13 백만원	△29	△1.2
▪ CAMPUS Asia 사업	**3,183** ▪ CAMPUS Asia-한일중 : 2,729백만원 - 학생교류비 : 879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1,70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CAMPUS Asia-AIMS : 454백만원 - 학생교류비 : 196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210백만원 - 사업운영비 : 58백만원	**3,110** ▪ CAMPUS Asia-한일중 :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 : 976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30백만원 -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CAMPUS Asia-AIMS : 454백만원 - 학생교류비 : 196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210백만원 - 사업운영비 : 58백만원	**3,746** -CAMPUS Asia-한일중: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 : 976 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1,530 백만원 ▪ 사업 운영비 : 150 백만원 - CAMPUS Asia-AIMS : 1,090백만원 ▪ 학생 교류비 : 490 백만원 ▪ 프로그램운영비 : 500 백만원 ▪ 사업 운영비 : 100 백만원	636	20.5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글로벌 포럼	**63**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63**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63** - 포럼 운영비 : 63백만원	-	-
▪ 국제교육연구협력 강화 및 기반구축	**101** - 학술교류 국제기구(UA, IIS 등) 부담금 : 101백만원	**97** - 학술교류 국제기구(UA, IIS 등) 부담금 : 97백만원	**87** -학술교류 국제기구(ICSU, ISSC 등) 부담금 : 87백만원	△10	△10.3
▪ 아프리카 ADEA 교육협력	**90** -ADEA 분담금 : 58백만원(5만불) -2017 ADEA 총회 한국유치 기획 : 32백만원	**56** - ADEA 분담금 : 56백만원(5만불)	**50** -ADEA 분담금 : 56백만원(5만불)	△6	△10.7
□ 비목(합계)	**16,042**	**15,546**	**15,989**	**443**	**2.8**
○ 일용임금(110-03)	-	-	-	-	-
○ 일반수용비(210-01)	14	-	-	-	-
○ 특근매식비(210-05)	5	-	-	-	-
○ 임차료(210-07)	-	-	-	-	-
○ 일반용역비(210-14)	773	-	-	-	-
○ 국내여비(220-01)	10	-	-	-	-
○ 국외여비 (220-02)	-	-	-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5,934	5,866	6,555	689	11.7
○ 국제부담금(340-02)	9,031	9,395	9,178	△217	△2.3
○ 사업출연금(350-02)	275	285	256	△29	△10.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유네스코 교육협력 지원 】

- ○ 교육2030 국내 네트워크 수립 및 운영으로 국내 교육2030 이행 촉진
- ○ 유네스코 주요 정책회의 참가를 통한 한국의 교육외교 강화
-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2030 국내 저변 확대
- ○ 세종프로젝트를 통한 아태지역 저개발국 문해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 ○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사업 지원을 통한 유엔 SDGs 달성에 기여
- ○ 2015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국내 확산
- ○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연례로 개최하여 범국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플랫폼 제공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 사업 】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과정 및 학제현황 조사·연구를 통한 역내 고등교육 이동성 증진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 교수학습연구(TALIS), Education 2030, 영유아보육·교육(ECEC) Survey 등 사업 적극 참여하고 학생의 창의성 평가 및 효과적인 학습환경 사업 신규참여

○ 특히, **National Skills Strategy(국가인적역량전략) 추진**으로 **사람중심 혁신 경제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인 인적역량 강화 전략 마련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 지원

【 APEC 교육협력 지원 】

○ APEC 회원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전략적 교육외교 활동 및 사업 전개로 對 APEC교육협력사업의 영향력 극대화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 의장 활동('17-'20년)을 통한 교육외교력 확대기반 마련

○ APEC 교육혁신공동체(CEDI*) 사업 추진을 통하여 APEC 역내 기준이 되는 교육협력 틀 구축

* APEC Community for Education Innovation : 공식 승인(제42차 HRDWG총회)

【 ASEM 교육협력사업 】

○ '18년 ASEM-DUO 장학사업을 통해 아시아-유럽의 균형적 인적교류에 기여

- DUO-Korea 장학사업 : 104명(52조) 선발 예정

○ ASEM-DUO 장학사업 홍보 및 사업 참여 권유를 통한 ASEM 회원국의 공여국 참여 확대

○ '18년 한-체코 써머스쿨 사업 추진(5명 선발)으로 양국 간 이해증진 및 동반자적 관계 공고화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17.11월) 이후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 확대 도모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성과 확산 및 후속조치 추진

- 장관회의 성과인 'MOOC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위한 MOOC 전문가 포럼 운영 및 품질관리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등 ASEM MOOC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추진

【 ASEAN 교육협력사업 】

○ ASEAN+3 역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에 대한 심층 연구 추진을 통한 국제회의 의제 개발

○ APT 권역 국제회의에 지속적 참여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 국제협력 주도권 확보

- APT WG, 유네스코 아태지역 협력 워크숍 등

○ ASEAN 국가 직업교육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태국 중등직업교육 혁신 모델 확대 추진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사업 지속 추진 등 활발한 교육교류 활동을 통하여 한·미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도모

○ 한국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 70주년('20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역사 및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

※ 학술회의 개최(2회) 및 학술서/회고록/백서 발간 등

【 한-EU 교육협력 사업 】

○ Erasmus Plus 공동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여 EU와의 교육협력 활성화 및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 강화

【 CAMPUS Asia 사업 】

○ CAMPUS Asia-한일중 사업 17개 사업단 안정적 학생교류 추진 및 공동/복수학위 취득 확대 추진

- 제6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개최('17.11)

○ CAMPUS Asia-AIMS 사업 4개 사업단 안정적 학생교류 추진 및 교류분야 확대 추진

- AIMS 참여 국가 및 학문 분야, 학생 수 증가 추세를 반영 사업단 확대 추진

- 제3차 운영위원회 한국 개최를 통한 ASEAN 국가와의 학생 교류 분야 논의 주도

【 글로벌 포럼 】

○ 한국이 인재강국으로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의 선도모델로서 저개발 국가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아시아 지역 이니셔티브 지속적 유지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 국제적 학술연구와 이를 수행하는 학술기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국제적 합의, 정책 마련에 기여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 아프리카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교육을 통해 국격 제고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6,042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6,042**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1,750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88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360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272 ■ APEC 교육협력 지원 : 608 ■ ASEM 교육협력사업 : 1,552 ■ ASEAN 교육협력사업 : 25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600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75 ■ Campus Asia 사업 : 3,183 ■ 글로벌 포럼 : 63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101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90	-		-
'18	15,546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5,546**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1,705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237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459 ■ APEC 교육협력 지원 : 608 ■ ASEM 교육협력사업 : 800 ■ ASEAN 교육협력사업 : 25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85 ■ Campus Asia 사업 : 3,110 ■ 글로벌 포럼 : 63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97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56	15,546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5,546**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1,705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237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459 ■ APEC 교육협력 지원 : 608 ■ ASEM 교육협력사업 : 800 ■ ASEAN 교육협력사업 : 25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85 ■ Campus Asia 사업 : 3,110 ■ 글로벌 포럼 : 63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97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56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15,546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5,546**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1,705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237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459 ■ APEC 교육협력 지원 : 608 ■ ASEM 교육협력사업 : 800 ■ ASEAN 교육협력사업 : 25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85 ■ Campus Asia 사업 : 3,110 ■ 글로벌 포럼 : 63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97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56	15,989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5,989** ■ UNESCO 교육협력 지원 : 1,685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213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305 ■ APEC 교육협력 지원 : 608 ■ ASEM 교육협력사업 : 770 ■ ASEAN 교육협력사업 : 330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56 ■ Campus Asia 사업 : 3,746 ■ 글로벌 포럼 : 63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87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50	443
'20	27,983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27,983**	14,326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4,326**	△13,657
'21	27,983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27,983**	14,039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4,039**	△13,944
'22	-		13,899	**글로벌교육교류사업 13개 내역사업 : 13,899**	-
연평균 증가율 (%)	14.9		△2.8%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예산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15,546</td><td>15,989</td><td>443</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85</td><td>94</td><td>9</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8</td><td>13.8</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일반 재정지출 사업이므로 가이드라인 가-<2>산출방식 적용
①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1)(또는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2))
1) 사업비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민간경상보조, 사업출연금
2) 교육서비스업</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6,811백만원*(민경보조:6,555+출연:256) ÷ 72백만원 = 94명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 유네스코교육협력지원,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APEC국제교육협력사업, ASEAN교육협력사업, CAMPUS Asia 사업, 글로벌 포럼, 한-EU 협력사업
☐ 2018년 고용효과
○ 6,151백만원*(민경보조:5,866+출연:285) ÷ 72백만원 = 85명
*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 유네스코교육협력지원,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APEC국제교육협력사업, ASEAN교육협력사업, CAMPUS Asia 사업, 글로벌 포럼, 한-EU 협력사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해당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 29조 국제교육(내역사업별 참조)

【 유네스코 교육협력사업 】

- 유네스코헌장(한국 유네스코 '50.6.14 가입)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4조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제6조 국민의 유네스코활동・제8조 기능과 역할)
- 한・유네스코 간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95)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058호, '11.8. 전부개정)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17호, '12.1. 공포)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한-유네스코 업무협약 체결('15.5.6)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 우리나라 OECD 정회원국 가입('96.12)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OECD)(다자조약 제1358호, '96.12.18)

【 APEC 교육협력지원 】

- 교육기본법 제29조제4항에 기반하여 APEC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 (제29조 제4항) 국가에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부과
- APEC 정상회의 및 교육장관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01년(APEC 사이버교육네트워크), '03년(APEC 휴먼네트워크), '04년(APEC 미래교육컨소시엄),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12, 한국),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16, 페루) 등

【 ASEM 교육협력사업 】

- 교육기본법 제29조 4항(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기반하여,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ASEM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 한국의 ASEM 가입('96년) 이후, 제3차 ASEM 정상회담('00.10월, 서울) 시 한국·싱가포르·프랑스가 공동 제안 및 추진하기로 합의
  ※ △2기: 5년('06-'10) 연장('04.9월 베트남 정상회의), △3기: 5년('11-'15) 연장('10.10월 벨기에 정상회의), △4기: 5년('16-'20) 연장('14.10월 이탈리아 정상회의)
- 한-체코 문화교육시행계획서 체결('09.12.30) 및 한-체코 써머스쿨 프로그램 국고 예산 지원('11년 시작)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주요 의제로서 'ASEM MOOC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제안('16.11.9.~10.), 13개 ASEM 회원국, 2개 관계기관 참여 의향 확보('17.4)

【 ASEAN교육협력사업 】

- '04.4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VIP)
  ※ 교육분야 협력 등 6개 분야 공동 행동전략 채택(라오스, 비엔티엔)
- '05.12 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한 행동계획 채택

- '09, '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화·인적 교류 증대를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파하여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 필요성 언급
- '12년 ASEAN+3 및 EAS 교육장관 회의 신설
  ※ '12년 ASEAN+3/EAS 교육장관회의 본격화에 따른 ASEAN 및 EAS 국가와의 **교육분야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 '14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AVGⅡ 권고사항**인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필요**
- 한국의 교육 모델에 관심이 높은 ASEAN 국가로부터의 교육협력 수요에 부응, 한국의 우수한 교육정책 사례 및 경험 공유의 필요성 증대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한·미 정부 간의 협정 체결('50.4월) 및 비준('60.9월)

【 한-EU 교육협력사업 】

-「학술진흥법」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시행기관 관리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 '07.11.29 :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제안
- '08.3.21 : 한국, EU측에 참여희망 공식서한 전달
- '14.9월 : EU측의 ICI-ECP 공식 종료(2009-2014) 알림
- '14.1.1 : EU측의 교육훈련 프로그램(Erasmus+,2014-2020) 개편(통합)

【 Campus Asia 사업 】

- (한일중)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10.5)에서 신규협력사업으로 채택,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12.5, 북경) 합의사항 이행**

> 우리는 **3국이 개시한 대학간 교류 시범사업 "CAMPUS Asia"를 환영**하고, 동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우리는 3국이 동 시범사업을 통해 아시아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기여하고,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을 장려**하였다.

- (AIMS) ASEAN+3 정상회의('12년)를 통해 채택된 EAVGⅡ* 권고사항인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실행 계획
  * East Asia Vision Group Ⅱ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제시를 위해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설립, '12년 ASEAN+3 정상회의에 EAVG Ⅱ 보고서(59개 권고사항) 제출, '13년 채택, '15년 주요 권고사항 실행계획 채택

◈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
- ○ **(권고내용)** ASEAN University Network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유수 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 프로그램**도 포함
- ○ **(실행계획)** CAMPUS Asia 및 **AIMS 참여국가 확대**, 운영위원회의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 방안 모색
  ※ (ASEAN+3 정상회의) '13년 EAVGⅡ 보고서 채택, '15년 실행계획 채택

【 글로벌 포럼 】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빈곤감소 및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조성된 KOREA TRUST FUND('07~'12) 25만달러를 '09년부터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결정자 연수'에 사용키로 결정('09.3, 기재부)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 대한민국학술원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제2조: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각호 기재생략"
  . 제15조: 학술원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 아프리카 ADEA 사업 협력 추진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한-ADEA 교육협력 MOU 체결(2014.12.31.)

○ 추진경위

【 유네스코 교육협력사업 】

- 유네스코 아태교육의원연맹 부의장국 진출('08)
-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설치('09)
-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독립 재개관('10)
- EFA High level Meeting(태국 좀티엔) 교육ODA 기초교육 집중 지원 추진 합의('11)
-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교육 2030 실행계획' 채택('15)
-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재진출('07-'19)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수임('17)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 제안(제29차 유네스코 총회)('97. 11)
-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1535호) 체결 및 창립('00.8)

-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058호) 전부 개정('11.8)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12.1)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사업 】

- 한-UNESCO 신탁기금 신규 사업 논의(방콕, '14.2.10)
- UNESCO 아태본부에서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제안('14.2)
- 한-UNESCO 업무협약 체결('15.5)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 우리나라 OECD 정회원국 가입('96.12)
- '97.4월부터 OECD 회원국 자격 및 의무로서 교육정책위원회(EDP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정례 활동에 참여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09)

【 APEC 교육협력지원 】

- 역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APEC 역내 전자교육 협력 프로젝트 필요성 역설('99.9월, 대통령)
- APEC 휴먼네트워크 사업 제안 및 승인(제25차 APEC HRDWG 회의, 말레이시아)('03)
- APEC 미래교육컨소시엄* 사업 제안 및 승인(제3차 APEC 교육장관회의)('04.4)
  - ※ 부총리 제안(제3차 APEC 교육장관회의)→승인(제26차 APEC HRDWG 회의,'04.5월)
  - * 미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이 컨소시엄에 참여(의장 : 한국)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 의장 수임('11~'14)('10.12)
-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 개최 결과 경주선언문 발표('12.5.21~23, 경주)
- 제5차 APEC교육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교육협력프로젝트(ECP) 모델개발('13.)
- APEC 교육협력프로젝트(ECP) 전략보고서 개발연구('15.1~'16.2)
-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협력프로젝트(ECP)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발표('16.10, 페루)
-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 의장 수임('17~'20)('17.1)
- APEC 교육혁신 프로젝트 사업 제안 및 승인('17.7)

【 ASEM 교육협력사업 】

- '00.10월 제3차 ASEM 정상회의(서울) 시, 한국·프랑스·싱가포르 공동제안 및 추진합의
  - ※ △2기: 5년('06-'10) 연장('04.9월 베트남 정상회의), △3기: 5년('11-'15) 연장('10.10월 벨기에 정상회의), △4기: 5년('16-'20) 연장('14.10월 이탈리아 정상회의)
- '01.9월 「아셈듀오(ASEM-DUO) 사무국」 설립(서울) 및 우리 정부 자금 출연으로 DUO-Korea 장학사업 시작
  - ※ '01년 이후 '17년까지 총 3,425명의 교수(교원) 및 학생 수혜

• DUO-France('02.4월), DUO-Singapore('02.4월), DUO-Denmark('03.4월), DUO-Thailand('06.1월), DUO-Sweden('10.4월), DUO-Belgium/Flanders('12.3월), DUO-Belgium/FWB('14.3월) 출범
• DUO-France('08), DUO-Denmark('05) 사업 중단

- ASEM-DUO 동문회 개최 : 사업 경과보고·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제1회('05.11월 서울), △제2회('12.11월 서울), △제3회('16.10월 서울)
- ASEM-DUO 국제전문가회의 개최 : 사업 추진계획.발전방안 소개 및 참여 독려

• △제1회('01.4월, 한국 서울), △제2회('03.11월, 한국 서울), △제3회('06.5월, 프랑스 파리), △제4회('08.6월, 태국 방콕), △제5회('09.5월, 베트남 하노이), △제6회('11.1월, 덴마크 코펜하겐), △제7회('12.3월, 태국 방콕), △제8회('14.4월, 중국 항주), △제9회('15.4월, 라트비아 리가), △제10회('16.11월, 한국 서울)

- 제3차 ASEM교육장관회의('11.5월 덴마크)에서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 한국 유치 확정
-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를 위한 중간고위관리회의(ISOM) 참석('16.4.12-15, 러시아 모스크바)
-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개최('16.11.9-10, 한국 서울)
-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 대비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개최('17.11.20, 한국 서울)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개최('17.11.21~22, 한국 서울)
  - ※ ASEM 미래 교육협력 비전인 '서울선언' 채택, 장관회의 후속조치인 '아셈무크' 공식 출범
- 2009년 한-체코 교육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09.12.30)
- 2011년 한-체코 써머스쿨 프로그램 국고 예산 지원 시작
- ASEM MOOC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 제1차 ASEM 고위관료회의('16.11.9.~10.)에서 사업 제안, 13개 ASEM 회원국 및 2개 관계기관의 참여 의향 확보('17.1), 제1차 ASEM MOOC 관계자 회의 개최('17.4.6)*
  - * 11개 회원국의 16개 기관 관계자 참석, 국가별 담당 역할 및 기관간 MOU 체결 등에 관한 논의 실시

【 ASEAN교육협력사업 】

- '12년 EAS 교육장관 회의에서 공동 협력과제 13개 채택, 한국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
- '13~'15년까지 ASEAN+3 교육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

- '14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EAVG Ⅱ 보고서 채택, 한국은 역내 대학 간 네트워크 강화 부문 주도국 지정
- '14년 한-ASEAN 대학 총장 포럼 개최
- '16년 ASEAN+3 / EAS 교육장관회의 참석('16.5.25)
- **ASEAN/EAS 역내 고등교육협력 강화 추진**

※ 제1차 한일중 대학총장포럼 개최('16.12, 서울), ASEAN 국가 교육혁신 역량강화(미얀마), 한국주도 학생교류 프로그램 성과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착수 및 국제협력 포럼 개최('17.2, 방콕), ASEAN+3 SOM회의 참석('17.12, 태국)

- **ASEAN+3 고등교육 질 보장 실무그룹(WG) 참여**

※ ASEAN 학생교류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16.1, APT 교육장관회의 승인), APT학생교류 성적증명서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개발, 17년 종료 실무그룹 연장을 추진하는 TOR개정('17.10, 제5차 ASEAN+3 WG)

- **동아시아 직업교육 네트워크 사업(EAS TVET Provider Network)** 추진

※ 제2차 한국 아웃리치('16.1, 서울), 제3차 말레이시아 아웃리치('16.2, 푸트라자야), 제4차 미얀마 아웃리치('17.1, 네피도), 제5차 라오스 아웃리치('17.3, 비엔티엔), 제6차 인도 아웃리치('17.12,), 태국 중등직업교육 혁신모델 개발('16.7~), 태국 중등직업교육 모델학교 확대 추진을 위한 교류 학교 및 컨설턴트 공모 및 선정('17.7~), 제3, 4차 EAS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및 총회 개최('17.1, 일본, '17.11, 태국), 한-태국 직업기술교육 협력 워크숍(마이스터고 정책 및 사례 중심)추진('17.4.23~26)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 '50.4.28. : 한.미 양국 간 교육교류를 위한 협정 체결
- '60.6.30. : 협정 비준 및 주한미국교육위원단(USEC/K*) 설치

* USEC/K :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Commission in Korea

- '60.9.1. :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프로그램 시작
- '72.7.10. : 한미교육위원단(KAEC*)으로 명칭 변경 및 한국 정부 자금 출연 시작

* KAEC :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 한-EU 교육협력사업 】

- 유럽연합(EU)측, 한국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참여 제안('07.11.29)
- 유럽연합(EU)에 공식 참여의사 서한 전달('08.3.21)
- 인력교류」과제 신규선정(교육과학기술부 직접관리)('09.1)

※'11.12월 한국연구재단으로 사업 이관

- EU측과 '12년도 공모분야 및 지원 범위 합의('11.9)
- 공동·복수학위」과제 신규선정 선정 및 사업착수 ※경북대('12.10)

- 예산 재원 변경(국고보조금→출연금)('13.3)
- '13년 신규과제(3개*) 선정 및 사업 착수('13.8)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계명문화대(직업교육)

※ '09~'14 신규 선정과제 : 총 16과제
(2009) 경북대, 서울대, 인천대, (2010) 한양대, 울산대, 부경대, (2011) 한국외대, 서울대, 충북대
(2012) 경북대, (2013) KDI국제정책대학원대, 충북대, 계명문화대, (2014) 인천대, 고려대, 숭실대

- 2013년도 Youth Dialogue* 개최

* 한-EU 대학/대학원생간 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 (1회) '13.12월, 벨기에 브뤼셀,한양대 주관 /(2회) '15.6월, 벨기에 브뤼셀,연세대 주관

- '14.9월 : '14년 신규과제(3개*) 선정 및 사업 착수 * 인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 '14.9월 : 유럽연합(EU)측, ICI-ECP 프로그램 공식 종료 알림
- '14.10월 :「한-EU 정책 워크숍」개최(서울) ※한국외대 주관
- '16.3.15 : 제1회 한-EU 고등교육 정책협의회(Policy Dialogue) 개최(벨기에 브뤼셀)
- 한-EU 교육협력사업 컨퍼런스 개최

※ (1회) '11.8월, 인천대/ (2회) '12.11월, 충북대/ (3회) '15.10월, 고려대/ (4회) '16.10월, 경북대/ (5회) '17.9월, KDI국제정책대학원대

【 Campus Asia 사업 】

- (CAMPUS Asia-한일중)
  - '11.5 제3회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 위원회 "CAMPUS Asia 기본계획' 확정
  - '11.10 CAMPUS Asia 사업단 선정(10개 사업단)
  - '12년 ~ '15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15.11) 및 제1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16.1)를 통한 CAMPUS Asia 시범사업을 본 사업을 확대시행 합의
  - CAMPUS Asia-한일중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단 선정('16.10.) **및 학생교류 추진**(기존 사업단(8개): '16.9~, 신규 사업단(9개): '16.10.31~)
  - CAMPUS Asia 본사업 발대식 및 제1회 한일중 총장포럼 개최('16.12.13)
  - 제2회 한일중 대학생교류프로그램 참석('17.9.24~27, 일본)
  - 제6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개최('17.11.22~23, 서울)
- (CAMPUS Asia-AIMS)
  - '15.1 AIMS 프로그램 참여 타당성 검토 실시(고려대, 변기용 교수)
  - '15.상반기 AIMS 사무국(SEAMEO RIHED)과 사업 참여 가능성 논의
  - 제9차 AIMS Review Meeting 에서 한국의 사업 승인('15.10, 일본)

제9차 REVIEW MEETIMG 의사록

The representative from ROK presented the proposal to the Meeting. The Meeting agreed and had the consensus to include ROK in the AIMS programme.

. AIMS 신규사업단 선정 평가('16.6)를 통해 **최종 4개 대학** 선발 및 학생교류 추진

. AIMS 성과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착수('16년 ASEAN 교육협력사업)

. 제1차 AIMS 운영위원회 참석('16.10, 태국) 및 제10차 AIMS Review Meeting에서 한국의 AIMS 참여 **공식 참여에 따른 서명식** 진행('16.11, 말레이시아)

. 제2차 AIMS 운영위원회('17.7), 제11차 AIMS Review Meeting 참석('17.11, 인도네시아)

【 글로벌 포럼 】

- '09.4 ~ '12년, 세계은행에서 **KTF* 활용** 연수 실시

  * KOREA TRUST FUND('07～'12)

- '13 ~ '16년, KTF 사업 종료에 따라 교육부 **글로벌 교육교류사업(비ODA)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세계은행과 공동 연수 실시
- '17년, 유네스코와 공동 연수 실시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5조에 근거, 국제학술기구에 국가회원으로 가입하고 국제분담금 납부

  . 태평양과학협회(PSA) 가입 : 1957년

  .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가입 : 1961년

  . 국제과학재단(IFS) 가입 : 1973년

  . 국제학술원연합(UAI) 가입 : 1977년

  . 국제사회과학이사회(ISSC) 가입 : 2010년

【 아프리카 ADEA 사업 협력 추진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 ADEA 한국의 날(Korea-Africa Day) 행사 추진(2012.2.11 ~ 2.13)
- 한-아프리카 교육과학기술 개발협력 강화방안 마련(2012.6.21)
- 한-ADEA 교육협력 MOU 체결(2014.12.31.)
- 한-ADEA 교육협력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ADEA 운영위원회 회원국 가입('15년~)에 따른 국제분담금 납부
- ADEA 2017 총회 참석 및 제2회 한국의 날(Korea-Africa Day) 행사 개최('17.3.14~3.1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글로벌교육교류사업(비ODA)	143.88	-	168.25	149.64	-	160.42	-	155.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5년 이월 및 불용 등 사유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환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발생(4백만원)
- 한중일캠퍼스아시아 :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학생교류가 감소하여 학생체재비 예산 미집행(131백만원)
- 한-EU ICI 교육협력 : '14년도 초 기본계획 수립 및 '15년도 예산 확보 당시에는 사업종료 이후 EU 측의 신규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EU 측에서의 신규사업 추진 의사 미표명으로 '15년도 예산 미집행(130백만원)
- 국제교육 연구협력 강화 및 기반구축 : 환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19백만원)
- 세계교육포럼 개최 :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29백만원)

○ 2016년 이월 및 불용 등 사유

- ASEM 교육협력사업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ASEM 고위관료회의를 치러낸 바, 일용임금 절감(5백만원)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국제부담금 지출로 환율 차액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5백만원)

○ 2017년 이월 및 불용 등 사유

- 아태지역고등교육통합증진사업 : 환차익에 따른 예산 절감(9백만원)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자발적 기여금 납부 환차익에 따른 예산 절감(3백만원)
- ASEM교육협력사업 :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 효율적 운영 후 집행 잔액(9백만원)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국제부담금 차익에 따른 예산 절감(6백만원)
- ADEA아프리카교육협력 : 국제부담금 차익에 따른 예산 절감(2백만원)

○ 2017년 이·전용 사유

- ASEM 교육협력사업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연기로 인해, 국제행사 개최 및 준비기획단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 소요액 확보(118백만원)

※ (당초) '17.1.1.~6.30. → (변경)'17.1.1.~12.31.(6개월 연장)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8.25** ( )	0.55 ( )	( )	168.80 ( )	**165.67** ( )	( )	3.13 ( )
'16년	**149.74** ( )	( )	( )	**149.74** ( )	**149.64** ( )	( )	**0.1** ( )
'17년	**160.42** ( )	( )	( )	160.42 ( )	**160.13** ( )	( )	0.29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6,042	-	15,546	-	15,546	15,507	97.9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유네스코교육협력지원사업 : 1,705백만원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 3,976백만원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증진 사업 : 237백만원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 438백만원
- APEC 교육협력지원 : 608백만원
- ASEM교육협력사업 : 800백만원
- ASEAN 교육협력사업 : 250백만원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 3,900백만원
- 한-EU 교육협력 사업 : 285백만원
- Campus Asia 사업 : 3,110백만원
- 국제교육연구협력강화 및 기반구축 : 79백만원
- ADEA 아프리카 교육협력 : 56백만원
- 글로벌포럼 : 63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캠퍼스아시아 사업 추진목표(공동학위 개설) 달성노력 제고 필요 (2013년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 공동/복수학위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석사과정생은 복수학위, 학부생은 공동 교육과정운영을 중점으로 추진

○ 세계교육회의 개최 필요성·타당성 검토 필요(2014년도 예산안 국회지적사항)

- 조치사항 : 미래교육의제 설정의 선도적 역할 및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확산의 필요성 강조, 전략적 의제개발·연구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준비기획단 운영 등 예산 필요성 강조

※ '국제행사 유치·개최 심사' 기재부 승인('13. 11. 1)

○ 캠퍼스아시아 사업 교환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과정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방식의 변경 검토 필요(2014년도 예산안 국회지적사항)

- 조치사항 : 한일중 3국 공동 모니터링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향후 단기교류에 대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공동·복수학위 과정 등 장기교류 확대를 추진

○ APEC 교육협력 지원 사업의 예산 내용과 범위에 맞는 집행 필요 (2014년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 2016년도 예산에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고, 예산 편성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

○ 글로벌 창의 포럼 성과물의 학교 현장 공유 노력 필요 (2015년도 교문위 결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 크레존 뉴스레터(수신인 20만 명), 온라인(crezone) 사이트,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포럼 자료집 및 강연 영상(DVD)을 제작하여 성과물의 현장 배포(500교), 현장 교원의 활용도가 높은 크레존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료집, 영상 자료를 탑재·제공하는 등 접근 편의성 강화 추진

○ CAMPUS Asia-AIMS 사업, 균형적 상호 교류 및 국가별 균형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2016년도 예결위 결산검토보고서, 교문위 2018년도 예산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 향후 파견이나 초청인원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참여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17년 필리핀 실적의 경우, 필리핀 내 계엄령 선포('17.5월)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파견 학생을 선발하지 않은 국가적 특수성이 있었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종합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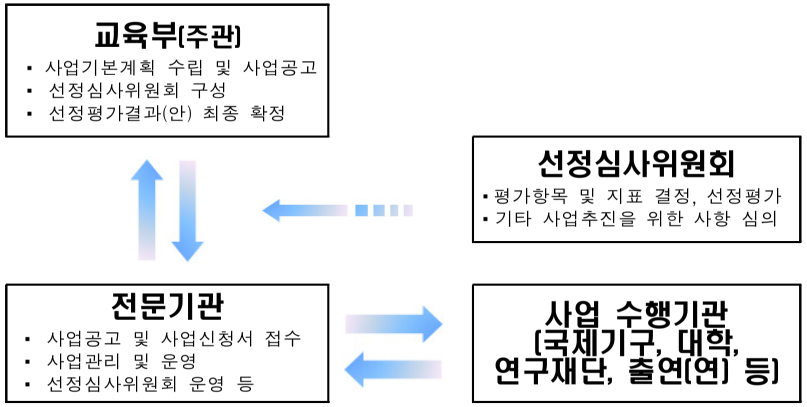

【사업별 추진체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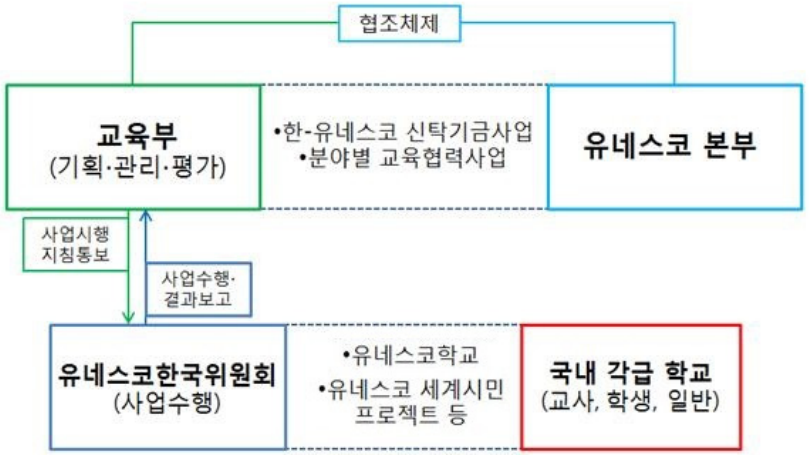

○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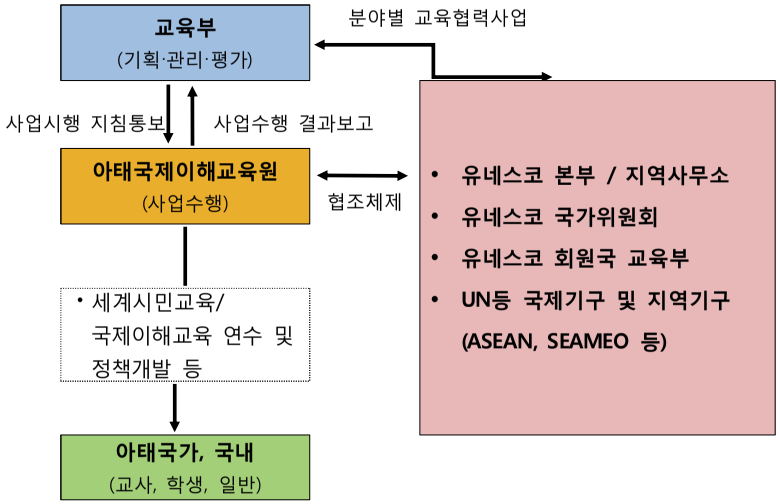

○ 아·태지역 고등교육 통합 증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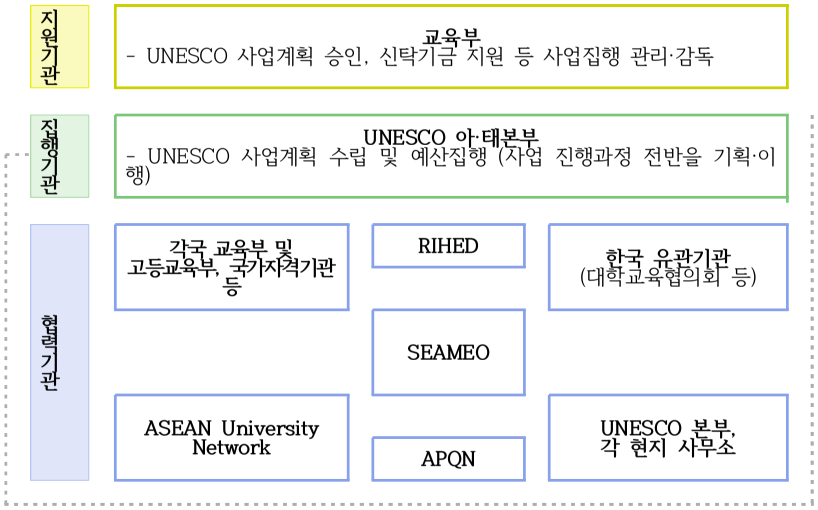

○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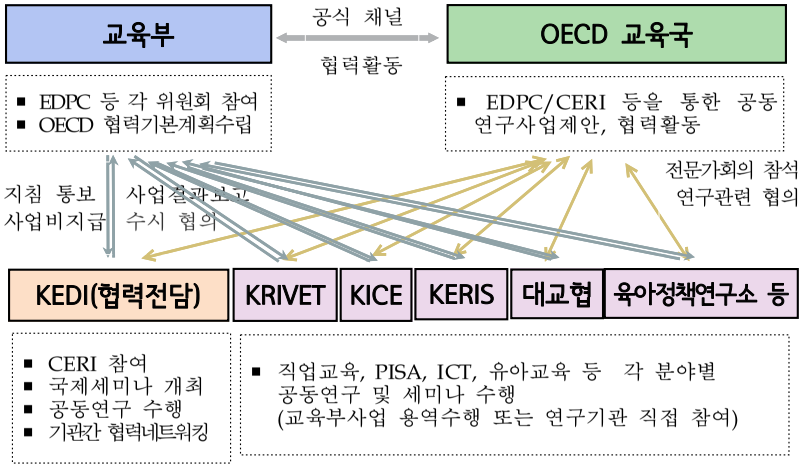

○ APEC 교육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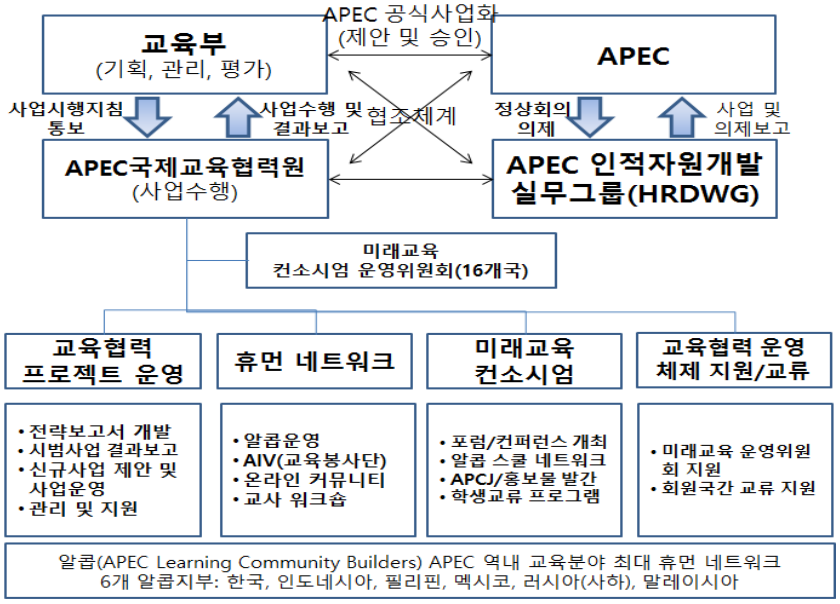

○ 한-EU 교육협력사업

연차별 기본계획 확정	· 연차별 사업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사업 위탁 협약 체결(교육부↔재단)
⬇	
연차 실적.계획서 접수	· 평가용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추진계획서 제출(컨소시엄→재단)
⬇	
중간평가 (연차점검)	· 평가위원회 개최(재단) · 평가결과 보고(재단→교육부) · 평가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재단→컨소시엄) <평가 후, '예산조정' 검토 >
⬇	
출연금 교부	· 대표대학별 출연금 교부 (교육부→재단→컨소시엄)
⬇	
사업 착수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 변경 시 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	
최종평가 (사업종료 6개월 후 실시)	·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컨소시엄→재단) · 평가위원회 개최(재단) · 평가결과 보고(재단→교육부) · 평가결과 통보 및 최종보고서 보완요청(재단→컨소시엄) · 사업비 정산

○ ASEM 교육협력(ASEM-DU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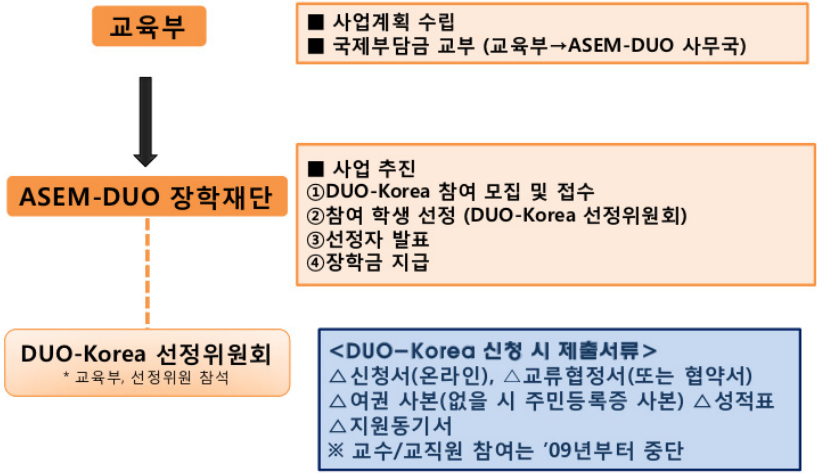

○ ASEM MO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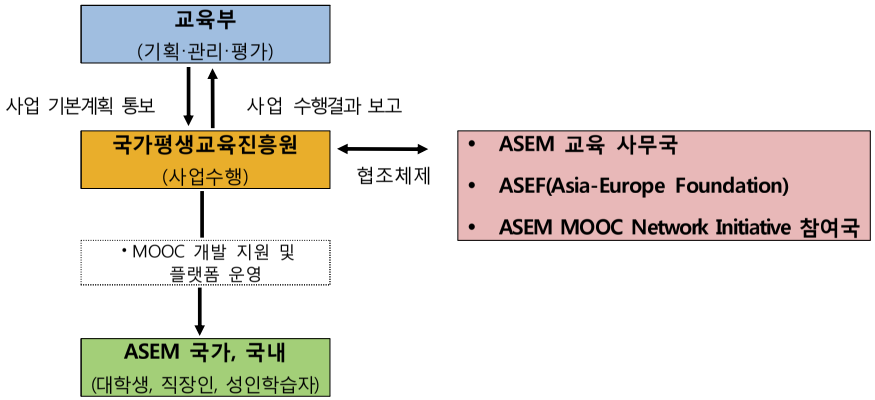

○ Campus Asia-한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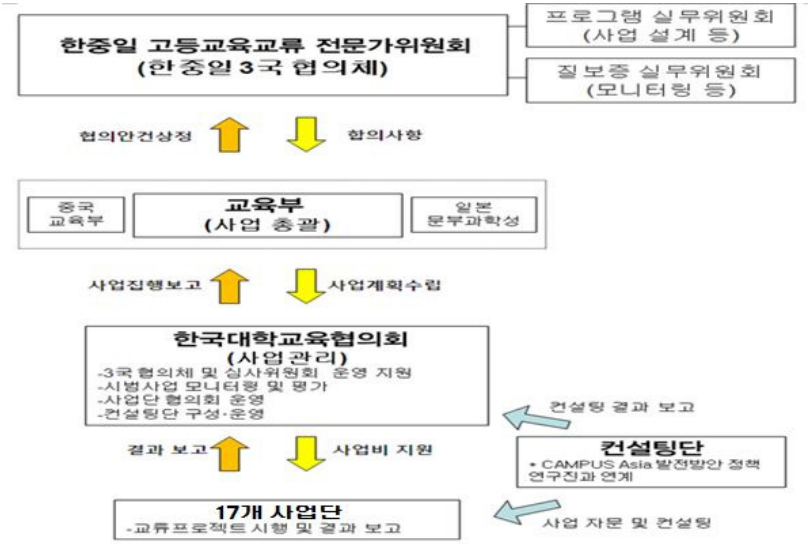

○ Campus Asia-AI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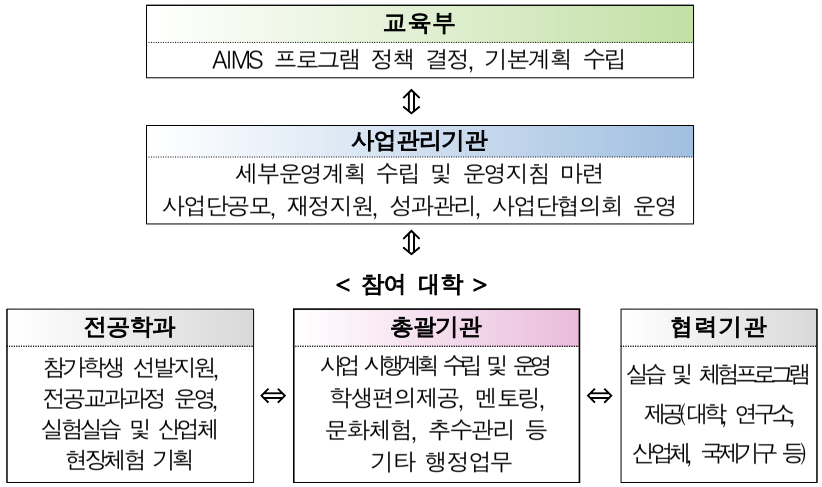

○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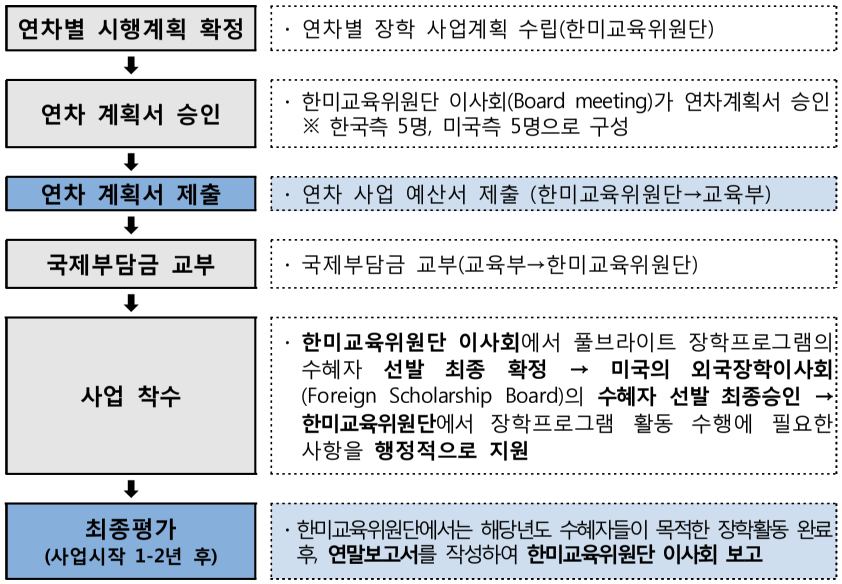

○ 글로벌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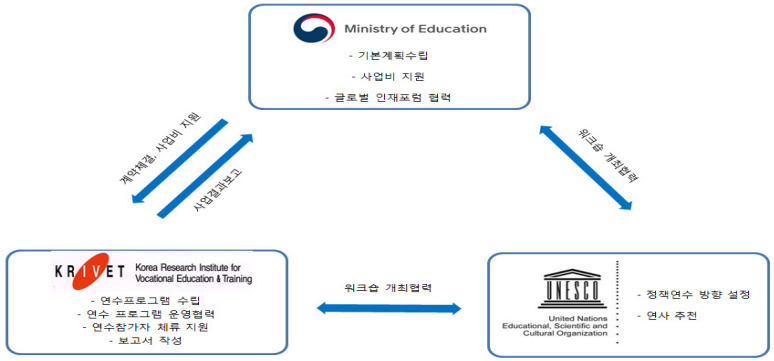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간 교육 협력 약정 체결 실적(건)	목표	신규	7	8	8	8	최근 3년간 체결된 국가 간 교육협력 MOU 및 협약 체결 건수 및 현재 협의 진행 중인 국가를 근거로 하여 2019년 목표치 설정 * '15년 8건, '16년 12건, '17년 8건의 3년간 추세를 반영	국가간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및 협약 체결 실적(건)	MOU 체결현황
	실적	신규	12	8					
	달성도	신규	171.4	100					
교육관련 고위급 회담 및 국제기구 회의 등 교육외교 활동 실적(수)	목표	48	70	78			-	양자간 공동위, 고위급 회담 등 참여 실적(건)+다자간 국제회의, 공동연구, 세미나 등 참여 실적(건)+가중치* * 가중치 : (장차관 참여횟수x50%)+(국과장급 참여횟수x30%)+(담당 사무관 이하 참여횟수x20%)	출장결과 보고서, 회의개최 보고서 등
	실적	76	84	79					
	달성도	158.3	120	101.3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세계시민교육 연수 만족도(점)	목표	신규	신규	70	85	90	-전년도 실적과 세계시민교육은 세계교육포럼('15.5월) 계기로 시작된 비교적 신생 아젠다로 학교현장에서의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19년 목표치 설정	리커트 5점 척도(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를 {(만족도 점수-1)*25} 산식을 활용,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응답자 수로 나누어 평균값 산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및 관련 연수를 이수하고 연구회 활동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만족도 조사 실시
	실적	신규	신규	92.4					
	달성도	신규	신규	132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요
○ (참고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개요
○ (참고4) OECD와의 교육협력
○ (참고5) APEC 교육협력사업
○ (참고5)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의장 활동 내용
○ (참고7) ASEAN 교육협력사업 개요
○ (참고8) CAMPUS Asia-한일중 사업 개요
○ (참고9) CAMPUS Asia-한일중 사업단 명단
○ (참고10) CAMPUS Asia-AIMS 사업 개요
○ (참고11) 글로벌포럼(동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정책 연수) 개요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유네스코교육협력사업]

1 사업성과

□ 對 유네스코 외교·협력 활동 지원

○ SDG4-교육2030 국가조정관네트워크 및 교육2030 운영위원회(아태 지역 대표 자격), SDG4 지표관련 전문가협력그룹 등 지역/글로벌 조정 매커니즘에 정부관계자, 전문가 참여

○ '세계교육현황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문답으로 풀어보는 SDG4-교육2030(Unpacking SDG4-Education 2030)' 등 번역 출간 및 교육 유관,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배포

○ 스위스, 영국 등 7개국 국가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석좌/유니트윈 네트워크 활동 연구' 진행(2016-2017 2개년 사업) - 유네스코 목표 및 유엔 SDG 국내 이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

○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훈련워크숍 개최

○ 유네스코총회, 집행이사회 등 관련 17개 정책회의에 전문가 및 담당자 59인 참가

□ 학생·교사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촉진

○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확대('17년 12개 프로젝트 인증)

○ 유네스코학교 ESD 전학교적 접근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확대 지원('17년도 20개 학습공동체 지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확대('17년 12개 프로젝트 인증)

○ 한국교사 100명, 일본교사 49명 상호 방문

○ 유네스코키즈(초등학생) 세계시민캠프 57명 참가

○ 전국 대학생 14개팀 120명 유네스코 볼런티어 활동 참가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유네스코학교 질적 관리('17년 567개교) 및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프로젝트 프로젝트 참가교 증가('17년 183개교)

□ 세종프로젝트

○ 2016-17년 아시아 지역 6개 저소득국에서 지역학습센터 84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비문해 성인(여성) 및 학교밖 청소년 약 15,000명에게 기초문해교육, 직업기술교육 기회 제공

○ 동 기간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도국 정부, 시민단체 등 10개 기관 단체와 비형식교육 분야 파트너십을 구축

○ 남아시아 지역 협력국가 대상 비형식교육 제도 및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보 공유,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워크숍 개최

□ 유네스코 정보보급

○ Korea Journal 4회 발간, 해외 대학 및 한국학 연구기관에 보급

○ 유네스코저널 12회 발간, 유네스코 관련 기관단체, 유네스코학교, 군부대, 공공도서관에 보급

2 현장의 변화

□ 대 유네스코 외교·협력 활동 지원

○ 개도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웹사이트 제작/지원 워크숍(2013-16)의 결과로 라오스, 부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 지역 5개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웹사이트 운영 중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훈련워크숍(2016-17)을 통해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간 두터운 네트워크 형성과 한국의 위상 강화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파견(2010-현재)으로 대표부와 국내 유네스코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및 공조 체계화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운영

○ 유네스코학교 질적 관리 및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참가교의 지속적인 증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수	112	135	166	251	408	578	567
프로젝트 참가교	50	68	77	93	115	154	183

○ 17개 광역에 유네스코학교 지역협의회(교사)가 구성되어 교육청, 교사간 정보교류 및 상호 학습 등을 자발적 활동을 진행함

□ 세종프로젝트

○ 비형식 교육을 통해 기초문해력을 획득한 학습자들이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더 나은 직업을 갖게되는 사례들이 보고됨

○ 사회, 문화적 관습 및 빈곤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여성의 권한 강화에 기여

○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함께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공교육 학력을 부여하는 학력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교육 지속성 강화

□ 유네스코 정보확산

○ 평화의 문화 정착을 위한 유네스코 주요 이슈 및 정보를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는 저널을 발간하여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및 유네스코 협회연맹, 주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 청년, 학생, 시민들로부터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사회 이슈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데 유익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음

제39차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 아태국제이해교육원지원 】

1 사업성과

□ 한국주도의 글로벌 교육의제인 세계시민교육 확산

○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국제회의 조직・개최

- 세계시민교육 국제 컨퍼런스 정례 개최(서울, '16~), 유엔 세계시민교육 세미나 정례 개최(뉴욕, '15~)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운영을 통한 청소년 및 일반 대중의 세계시민의식 제고

-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17년 총 75개교, 학생 2,466명 참여) 및 일반 대상 상시 체험 및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세계시민교육 연수 36회 개최(2,157명)

- 국내 참가자 대상 29회 1,906명 / 국외 참가자 대상 7회, 251명

○ 2015교육과정을 반영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지침서 개발(초등·중등·고등편 각 1권)

○ 정책입안자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정책가이드 개발(영어, 한국어)

-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및 정부기관을 통해 전세계 배포

○ 고등교육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발 지원(총 17개 대학 23개 강좌)

○ 세계시민교육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권역별 세계시민교육 국제네트워크 회의 개최([아프리카] '17.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 [아랍] '17.10, 이집트 룩소르 / [남미] '17.10, 칠레 산티아고)

2 현장의 변화

□ 국내 학생들의 세계시민성 제고

○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수강한 학생 및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증대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92%(매우만족 64%),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93%(매우만족 65%), 태도와 가치관 변화 89%(매우만족 62%), 진로 준비에 도움 85%(매우만족 57%)

- '17년 세계시민교육 강좌개설 대학별 자체평가 결과(총 477명 수강생 대상)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제고 및 실천능력 향상 확인

□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내외 관심 증가 및 활동의 국제적 확산

○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 증가 및 초청 쇄도

- 유네스코 교육포럼('17.3, 캐나다 오타와), 아프리카교육개발위원회(ADEA) 총회('17.3, 세네갈 다카르),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캐나다 정부 공동 부대행사 개최, '17.11, 프랑스 파리) 등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국내 지자체로부터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전시 요청이 증가하여 이동형 체험관 개발·운영

- 유네스코 교육포럼 및 ADEA 총회 등

○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네트워크 추진으로 권역별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적극적·자발적 활동 동기 부여 및 실질적 활동 증대

【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

< 사업성과 >

□ **PISA, TALIS 등 OECD 공동연구 참여**로 한국 교육의 세계적 좌표를 확인하고, **「교육정책개관**(Education Policy Outlook)」 **등 정책자료 발간**

< 현장의 변화 >

□ 한-OECD국제세미나 개최로 **한국이 참여한 OECD 공동연구에 대한 결과 공유 및 활용**

【 APEC교육협력지원 】

1 사업성과

○ APEC 교육협력사업 결과 및 성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평가지속

※ **한국, APEC HRDWG**(인적자원실무그룹) **의장**(박동선 원장) **수임**('17.2월)
(APEC 회원국 간 경선 실시 결과 15개국 이상의 지지를 통해 수임 확정)

※ **한국 교육부의 지속적인 APEC 교육협력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 조정관 / 인도네시아 교육부 대표, '18.2월 교육분과 연례회의 모두 발언>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tributed to APEC's education development with its projects such as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AEEP), APEC Learning Community (ALCom), APEC Future Education Consortium (AFEC), and APEC Community for Education Innovation (CEDI)."

"The Republic of Indonesia much appreciates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in APEC which have been continued for more than ten years. Indonesia will continue to enhance self-sustainability of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 (ALCoB) branch and hope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Korea in the future."

○ APEC 유일의 휴먼 네트워크인 국제교육협력단(ALCoB) 규모 지속 확대, 구성원 역량강화 및 수혜자 범위 확대 지속

구 분	2015	2017	비고
APEC 국제교육협력단(명)	6,400	6,600	3% (증)
APEC 국제교육협력 전문가 양성(차수)	177명	243명	66명 (증)
국제교육협력단 파견 시 해외 수혜자(명)	510(4개국)	373*(4개국)	137(감)

* 회원국 핵심교사 312명 및 정책가 61명 참여

○ APEC 미래교육사업,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장

구분	2016	2017	비고
APEC미래교육포럼/국제알콥컨퍼런스 해외 참가인원(명)	113	150	37명 (증)
알콥 스쿨 네트워크(ASNet) 운영(학교/개소)	83(9개국)	86(10개국)	3개교 (증)
APEC정상이젠다와 연계한 학생교류프로그램 참가인원(명)	54(8개국)	45(10개국)	2개국 (증)
APEC미래교육컨소시엄 운영위원회(회원국 수)	11	11	-

○ APEC 교육협력 프로젝트 (ECP) 사업 추진

※ APEC 역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협력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개발 연구 및 관련 시범 사업 실시

※ 부총리 ECP 제안('12년, 경주)→ ECP 결과보고('16년, 페루)→신규 사업 제안 및 승인('17.7월)

2 현장의 변화

○ APEC 등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 연계한 교육협력 증진에 기여

· 학생·교사 등 국제교육활동 참여를 계기로 국제화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증대, APEC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수요 증가

【 ASEM교육협력사업 】

1 사업성과

○ ASEM-DUO 사업의 추진을 통한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 지속

※ '01년 이후 '17년까지 총 **3,425**명의 교수(교원) 및 학생 지원

(단위: 명/ 유로)

구분	듀오-코리아	듀오-프랑스	듀오-덴마크	듀오-싱가폴	듀오-태국	듀오-스웨덴	듀오-벨기에F	듀오-벨기에W	합계
수혜자	1,653	480	90	438	326	220	210	8	3,425
수혜금	6,584,000	1,822,000	382,000	1,824,000	1,126,000	851,000	840,900	23,000	13,452,900

○ 2017년 듀오-코리아 장학생 선발·지원

- 신청현황 : 총313개 신청서 접수 (경쟁률: 약 6.27:1)

※ (한국)43개 대학, (유럽)총19개국, 171개 대학지원

- 선발결과 : 대학(원)생 100명(95조) 선발

(단위 : 명, 유로)

구분	듀오-코리아*	듀오-싱가폴	듀오-태국	듀오-스웨덴	듀오-벨기에F	듀오-벨기에W	합계
선발시기	2017. 6	2017. 6	2017. 1	2017. 6	2017. 4	2017.03	
선발인원	100(50조)*	18(9조)	16(8조)	34(17조)**	37(19조)***	6(3조)	211(106조)
수혜금	400,000	72,000	64,000	119,000	148,000	17,000	820,000

* '17년 DUO-Korea 교류 현황 : 유럽 17개국 50명/ 한국학생 50명 총100명 선발
: 오스트리아(2), 벨기에(1), 체코(1), 덴마크(5), 핀란드(5), 프랑스(8), 독일(7), 헝가리(2), 이탈리아(3), 노르웨이(2), 폴란드(2), 포르투갈(1), 스페인(3), 스웨덴(1), 스위스(1), 네덜란드(4), 영국(2)
** 듀오-스웨덴 3조(6명) 추가 선발
*** 듀오-벨기에 선정자 중 1명은 타 장학금 수혜 사유로 중도포기, 1조(2명) 추가 선발

○ ASEM-DUO 국제전문가회의·ASEM-DUO 동문회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홍보·참여제안 등 사업 확대 노력

• **ASEM-DUO 동문회** : △제1회('05.11월 서울), △제2회('12.11월 서울), △제3회('16.10월 서울), △제4회('18.10월 서울)
※ 참석 : 교육부, ASEM-DUO 사무국, ASEM 회원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대학 관계자, 수혜자 등
• **ASEM-DUO 국제전문가회의** : △제1회('01.4월, 한국 서울), △제2회('03.11월, 한국 서울), △제3회('06.5월, 프랑스 파리), △제4회('08.6월, 태국 방콕), △제5회('09.5월, 베트남 하노이), △제6회('11.1월, 덴마크 코펜하겐), △제7회('12.3월, 태국 방콕), △제8회('14.4월, 중국 항주), △제9회('15.4월, 라트비아 리가), △제10회('16.11월, 한국 서울), △제11회('18.11월, 오스트리아)
※참석: 교육부, ASEM-DUO 공여국(한국,벨기에,태국,싱가포르) 담당자 등

○ ASEM 회원국의 장학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활동('17.06.26~30, 남유럽)
- 남유럽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그리스,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협력방안 논의 및 자금 공여국으로 사업 참여 권유

○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참석('17.11.20-22, 서울)
- 장학사업 성과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아시아-유럽 간 **균형적인 교류 우수사례**로써 사업성과 공유 및 홍보

2 현장의 변화

○ 아시아-유럽 기관 간 교류협정을 전제로 하는 인적교류 사업으로써 아셈듀오 교류 이후에도 **기관 간 자발적·지속적 학생 교류가 추진**되고 있음

○ 수혜 받은 사례가 적은 국가 및 기관을 우선 지원하여 **참여 기관·국가를 다각화**함으로서 **학생교류 불균형 해소**에 꾸준히 기여함

【 ASEAN교육협력사업 】

1 사업성과

○ 2013년~2015년 ASEAN 교육협력사업 연구과제 실시

• 한·ASEAN 고등교육 협력방안 수요조사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성균관대학교)
• EAS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SEAN+3 고등교육 WG 모니터링 및 참여(고려대학교)
• 그림으로 배우는 한-아세안 문화이해자료 개발(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 한-아세안 세계시민교육 국제 비교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13~2015년 ASEAN+3 교육장관 회의 공동의장국 수행

○ 2014년 한-ASEAN 총장포럼 개최('14.12, 부산)

○ AIMS 프로그램 참여, 아세안 우수 이공계 초청연수 등 신규협력사업 발굴

○ ASEAN+3 고등교육 질보증 실무그룹에 공동조직국으로 참여하여 ASEAN+3 학생교류가이드라인 개발에 지대한 공헌

○ ASEAN+3/EAS 교육장관회의 참석('16.5.25~27)
- ASEAN+3 공동체가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국들 간 교육협력 강화를 독려**하고, **대(對) 아세안 협력 의지 표명**

○ **동북아 3국 대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한일중 대학총장포럼 개최**('16.12.13)
- **'한·일·중 국가 간 고등교육 이동성의 전망과 비전', '글로벌 고용가능성**(Global Employability)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 **AIMS를 중심으로 ASEAN 역내 고등교육 교류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착수**
- 제10차 AIMS Review Meeting('16.11.13~15)을 통해 동 프로젝트를 공식 제안, 제1차 합동 워크숍 개최('17. 2. 2 ~ 2. 3, 태국 방콕)
- 아세안 고등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17.11, 한국)

○ **태국과의 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태국 중등직업교육 역량 발전 지원**
- 현지 킥오프 회의('16.8, 태국), 태국 교육부 직업교육위원회 및 협력학교 관계자 직업교육 초청 연수 실시('16.10~11)
- 한-태국 직업기술교육 협력 워크숍(마이스터고 정책 및 사례 중심) 추진('17.4.23~4.26)
- 태국 중등직업교육 모델학교 확대 추진을 위한 교류 학교 및 컨설턴트 공모 및 선정('17.7~)

○ **미얀마 교육부장관 방한 초청**('16. 11. 1 ~ 4), **직업교육 아웃리치*** (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해 **ASEAN 국가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
※ 제4차 미얀마 아웃리치('17.1, 양곤, 네피도), 제5차 라오스 아웃리치('17.3, 비엔티엔)
* **(직업교육협력 아웃리치 프로그램)**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 EAS 주요 국가인 **인도의 직업교육 협력 수요**에 부응하여 **인도 국립교육연구훈련원**(NCERT)의 지원 하에 **컨설팅 착수 및 향후 계획 수립**('17.12)

○ **아세안 고등교육 정보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아세안 8개국**(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아세안 고등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18.1)

2 현장의 변화

○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협력 증대 및** ASEAN+3 및 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강화**

○ 한국의 교육 모델에 관심이 높은 ASEAN 국가로부터의 교육협력 수요 증가에 따른 한국의 우수한 교육정책 사례 및 경험 공유의 필요성 증대

【 한미교육위원단지원 】

1 사업성과

○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 한·미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및 지적자원 개발·학문발전에 기여

<참고1> '17년 풀브라이트(Fulbright)장학프로그램 세부 지원현황

세부 장학 프로그램		수혜인원(명)
한국인	인문사회계 대학원 학위과정	28
	이공계 대학원 학위과정	2
	대학원 학위과정 연장	28
	교수 및 전문인 연구지원	21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8
	초중등 영어교사미국학연수	14
	소계	101
미국인	학부졸업생 및 대학원생 연구지원	13
	대학원 학위과정	3
	대학원 학위과정 연장	2
	원어민영어보조교사	68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연장	40
	저명학자 강의지원	1
	교수 강의 지원	4
	교수 강의 및 연구지원	1
	교수 및 전문인 연구지원	3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8
	소계	143
합계		244

<참고2> 연도별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명)

	'61-'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한국인	2,264	87	96	104	124	103	123	134	110	101	3,246
미국인	1,749	118	144	155	164	155	151	157	139	143	3,075
소계	3,818	205	240	259	288	258	274	291	249	244	6,126

※ 각 연도의 수혜자 현황은 연장(1년차 이후 계속 지원을 받은) 인원 포함

2 현장의 변화

○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한·미 우호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공헌

【 한-EU 교육협력사업 】

1 사업성과

○ '**인력교류**' 과제 신규선정(교과부 직접관리)('09.1)

○ OCEANS NETWORK 공동워크숍 개최('12.6) ※ 한국외대 주관

○ '**공동학위·복수학위**' 과제 신규선정('12.10) ※ 경북대

○ EU 실무전문가 인턴쉽 프로그램('12.11~'13.08)

※ (한국) 한국외대, 서강대, (EU) 시앙스포 보르도, 브뤼셀 자유대, 바르셀로나 자치대 주관

○ 한-EU 교육협력사업 설명회 개최('12.12/'13.1, 서울)

○ '**직업교육**' 과제 신규선정('13.10) ※ 계명문화대

※ '09~'14 신규 선정과제 : 총 16과제

(2009) 경북대, 서울대, 인천대, (2010) 한양대, 울산대, 부경대, (2011) 한국외대, 서울대, 충북대, (2012) 경북대, (2013) KDI국제정책대학원대, 충북대, 계명문화대, (2014) 인천대, 고려대, 숭실대

○ **한-EU 교육협력사업 컨퍼런스** 개최 : 총 5회*

* ('11.8, 안천) 인천대, ('12.11, 청주) 충북대, ('15.10, 서울) 고려대, ('16.10, 대구) 경북대 주관, ('17.9, 세종) KDI 주관

○ **한-EU Youth Dialogue** 개최 : 총 2회*

* ('13.12, 브뤼셀) 한양대, ('15.6, 브뤼셀) 연세대 주관

○ 한-EU 교육협력사업 연구자 간담회 개최('14.9, 서울)

○ 유럽연합(EU) 측, ICI-ECP **프로그램 공식 종료 알림**('14.9)

○ 한-EU Policy Workshop 개최('14.10, 서울) ※ 한국외대 주관

○ 한-EU 참여대학 협의체 회의 개최('15.7/'15.8/'16.5, 서울)

○ 한-EU 고등교육 정책협의회(Policy Dialogue) 개최('16.3, 벨기에 브뤼셀)

2 현장의 변화

○ 후속 ICI-ECP 사업 모색을 통한 한-EU 교육협력의 지속

- 한-EU ICI-ECP 교육협력사업(2009~2014) 공식 종료에 따라 2014년 이후 신규과제 추진이 어려운 바, 한-EU 협력 지속을 위한 후속사업 신설 필요
- EU측 Erasmus Plus(2014~2020) 공동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준비 중인 국내기관 지원사업 마련을 통한 한-EU 교육협력 지속방안 마련

○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강화

- '14년(2개) 선정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 및 과제의 개선방향 도출 · 환류

○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참여대학 협의체 간담회 정례화

- 국내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간의 협의체 간담회 정기 개최로 사업 운영상의 노하우 공유 및 개선사항 도출

【CAMPUS Asia 사업】

1 사업성과

(CAMPUS Asia-한일중 사업)

○ 다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시범사업 기간('12~16.8월)동안 **복수학위 취득(예정)자 183명**을 포함 **전체 2,160여명의 학생 교류**
- 학점교류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

※ 서울대(국제·경영), 고려대, 성균관대(문과), 부산대, KAIST 등 총 13개 복수학위 협정 체결

※ 복수학위 취득 학생 수 : ('13년) 44명 →('14년) 53명 →('15년) 55명 →('16년) 32명

- **한중일 공동캠퍼스***,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머스쿨****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인재 양성**을 실현

* (동서대) 각국 10명 총 30명 학생이 중국 광동외대 ⇒ 일본 입명관대 ⇒ 한국 동서대 순으로 **2년에 걸쳐 3학기제 공동 캠퍼스 운영**

** (서울대 경영) 각국 10명이 **2주간 3국을 순회**하며 **한중일 글로벌 비즈니스 하계단기연수 집중교육과정**(DBiA, Doing Business in Asia) 개설, 팀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를 진행하고 학점 부여

○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총 17개 사업단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대표적인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

○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대 특성화 모델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동서대는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라는 **공동학위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학생 모집과 학교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양성을 위한 한일중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를 순환하며 공동수업(2년간 3학기제 이동식 수업 진행)

○ **3국 교육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총 6회의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본구조 설계, 질보증을 수반한 대학교류 가이드라인 개발, 공동 모니터링 시행, 아시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3국 교육부간 협력 기반 마련**

* 3국 교육부 국장급, 대학 총장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국가별 5~6명)

-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쌓은 **3국 교육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

※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CAMPUS Asia 사업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에 합의('16.1)

(CAMPUS Asia-AIMS 사업)

○ AIMS 신규사업단 선정 평가('16.6)를 통해 **최종 4개 대학** 선발

○ **한-ASEAN 대학(다자) 간 학생 교류를 통한 우수 교류협력 모델** 발굴 및 대학별 **특화된 교류프로젝트 구성 · 운영**

사업단	교류국가	2016년('16.12기준)		2017년('17.12기준)	
		파견	초청	파견	초청
강원대	말레이시아	5	2	9	17
	인도네시아	5	2	10	2
대가대	말레이시아	0	0	5	3
	인도네시아	10	0	5	5
	태국	0	2	7	8
	필리핀	0	0	0	19
전남대	말레이시아	0	0	14	18
	인도네시아	5	6	4	1
	태국	0	0	0	1
	필리핀	0	0	0	2
한남대	말레이시아	0	2	8	7
	인도네시아	1	0	1	2
	베트남	4	8	10	8
합 계		30	22	73	93

○ **제10차 AIMS Review Meeting**에서 **한국의 AIMS 참여 공식 참여**에 따른 **서명식 진행**('16.11, 말레이시아)

○ **제2차 AIMS 운영위원회**('17.7, 일본) **제11차 AIMS Review Meeting** ('17.11, 인도네시아) 참석을 통한 국가별 학생교류 방향 논의 및 우수사례 공유

2 현장의 변화

(CAMPUS Asia-한일중 사업)

○ 참여 학생은 **복수학위 취득** 등 **학문적 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조정 능력**을 습득

- 3국을 둘러싼 **역사·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교육과정, 인적 교류, 현지 경험**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역량 함양
-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동아시아 관점에서 3국 관계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국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감소**

※ CAMPUS Asia 사업 참가 전과 후에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친근감 변화('17.12) (5점 척도 만점, 1점 : 매우 낮음 / 5점 : 매우 높음)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참가 전	프로그램 참가 후
한국	3.38	4.01
일본	3.08	3.88
중국	3.27	4.05
동아시아	3.11	3.90

※ CAMPUS Asia 사업이 개인에게 미친 중요도 : 5점 만점에 4.3점('17.12)

- 양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전문가** 등 진로 구체화**

** **성균관대 문과대 사업단 참여학생 향후진로 : 중국 외교부 입사(중국학생 范慧杰), 교토대 박사과정 유학, 대우 International 및 일본 Panasonic 등 글로벌 기업 입사**

○ **특화된 학문 분야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류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및 학생들의 상호 이해 증진**

-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 위주 교류에서 발전하여, **애니메이션, 해양과학, 환경디자인 등 특화된 분야에서의 학생 교류 추진**

※ (한예종-도쿄예술대-중국전매대) 한중일 국제애니메이션 협업 과정 개설

※ (한국해양대-동경해양대-상해해양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 **3국 협업 연구·합동 워크숍, 인턴십 및 산학연계 과정** 등 **일반적인 학생교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류 프로그램의 질 향상** 및 **다양성 증진**

※ (한예종-도쿄예술대-중국전매대) 한중일 국제애니메이션 협업 과정을 개설,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한 3국 협업 연구 및 실용 위주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 (연세대-치바대-저장대) 차세대 농업·환경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중심 프로젝트 및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진행(네이버 산학연계 워크샵 개최('17.1월))

- **한일중 공통 이슈에 대한 심층적 토론** 및 **현장 학습**을 통한 **교류 국가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이해 심화**

※ (서울대 자유전공) 백범 김구에 대한 3국 학생 독서 토론회 개최, 역사비교 영상 제작 및 토론

※ (성균관대 문과) DMZ·판문점 방문 등을 통한 한국의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제고

○ **3국 대학 간 교류 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 제1회 한일중 대학총장포럼 및 본사업 발대식을 개최('16.12.13)하여, 본사업의 시작을 공식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 최초로 한일중 3국 대학 총장·부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킹하고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 3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공감
- **제6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7.11.22~11.23)를 우리부 주도로 개최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논의

(CAMPUS Asia-AIMS 사업)

○ **한-ASEAN 학생 간 상호이해도 증진을 통한 지역전문가 및 지한파 양성**

- '16년 사업 착수 이후 **교류 국가 및 대학**이 다양해지고 **교류 규모 확대**('18년 현재 교류 누적인원 총 218명, 총 4개 사업단)
- 4개 사업단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체험행사**(고궁 방문, 스키장) 등을 통해 **아세안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제고**
- **전공학문 내 아세안 이슈**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의 **아세안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태스크 중심의 교육경험 제공** ☞ 아세안 지역전문가 양성

○ **한-ASEAN 대학 간 학점 상호 인정,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학위 질 보장** 등 대학 간 교류기반 조성에 기여

○ 연례 **AIMS Review Meeting** 등의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AIMS 사업단 대학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AIMS Review Meeting** 등의 행사 등 **한-아세안 대학간 교류 기회**가 확대되고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교류 국가 및 대학의 다변화**에 기여

【 국제교육역량강화 및 협력 사업 】

1 사업성과

○ 국제학술원연합(UAI), 태평양과학협회(PSA) 등 주요 국제학술기구에 국가회원으로 참여하여, 세계 학계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

○ 주요 기구에서 학술원 회원이 임원직을 수행하고 집행부 회의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참고 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요

❑ 설립 목적

-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설립 근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제12844호) * 1963. 4. 27 제정

❑ 주요 연혁

- 1950. 6. 14 한국, 유네스코 가입
- 1953. 7. 6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공포
- 1954. 1. 3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 1963. 4. 27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제정

❑ 조직 및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교육부장관), 부위원장(5인), 위원(54인 이내)

○ 기구 및 조직 : 총회(위원 60인) / 집행위원회(19인) / 사무처(사무총장, 4본부 1실/13팀/1특별조직, 직원 정원 98명)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 주요 사업

추진목표	단위사업·활동
유네스코 정책수립 및 협력 강화	유네스코 정책연구 /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량 강화 및 교류 /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 관리 사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 / 유네스코 정책회의 운영
한국의 SDGs 달성 촉진	교육 2030 추진 / 유네스코학교 사업 / 유네스코 청년 사업 / 문화다양성 증진 / 유네스코 정보 보급 / 유네스코 네트워크 협력
국제개발협력 추진	개발협력사업 기반 구축 /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지속가능한 위원회 경영	위원회 운영 / 시설사업

참고 3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개요

□ 기관 소개

○ **(기관성격)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협정**(조약 2058호)으로 '00년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

※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 : 유네스코 설립목적과 헌장의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유네스코 산하국제기구로 유치국 정부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

○ **(설립목적) 아태**지역 평화의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증진**

□ 조직

○ **이사 : 총 10명**

※ 제3대 이사(현):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체부 문화정책관, 유네스코 포괄·평화·지속가능발전국장,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2), 국제이해교육 전문가(3), 아태교육원장

○ **조직 : 6실**

○ **원장 : 정우탁**

○ **인력 : 34명(원장, 정규직, 계약직 포함)**

※ 정원 : 25명(계약직 제외), 기타 인력 : 사업보조 및 인턴 30~40여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번지**

※ 구로아트밸리 다목적문화예술센터 2,999.65㎡ 임차

□ 주요사업 및 예산

○ 평화 문화 증진을 위한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사업**

- 국제이해교육에 관한 **국가적·소지역·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보급**

○ **2018년 예산 : 8,244백만원**

기 관	지원형태	사업 내용	금액(백만원)
교육부	국제부담금	인건비·운영비 및 기본사업비	3,976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800
	민간경상보조	다문화대상국가 글로벌화 사업	2,436
기타기관(시도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1,032

참고 4 OECD와의 교육협력

□ 개요

○ **OECD 교육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선진 각 국의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획득하고, 한국의 리더십 행사

- **교육위원회(EDP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및 각종 연구사업 참여

* EDPC(Education Policy Committee), CERI(Center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 추진 현황

○ '96.12월, 우리나라 OECD 정회원국 가입

○ **OECD 교육연구사업 지원 및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 EDPC 및 CERI 회의에서 제안한 연구사업 중 우리 교육정책에 시사점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

○ **EDPC, CERI 및 산하 작업반 정기회의(매년 봄, 가을) 참가**

- 관계기관 공동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입장 정립 및 발표

○ '08.9월, 「OECD 교육차관회의」 개최

○ '99~'17년,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 (총 16회)

※ '17년 한-OECD국제세미나 11.29 개최 예정

○ '16.11월, 교육정책개관(Education Policy Outlook) 한국 보고서 발간

○ '18. 6월, 국가별 교육정책개관(Education Policy Outlook) 발간

○ **한국 관련 OECD 주요 보고서 발간 검토**

* '11년 OECD 한국사회정책보고서, '1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13년 OECD 한국사회통합보고서, '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참고 5 APEC 교육협력사업

❑ APEC 개요

○ **출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89년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

○ **회원국 : 총 21개국**

- (아시아·대양주 지역, 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ASEAN 7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 (미주지역, 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회의 : 정상회의, 교육장관회의* 등 주요 장관회의, 고위공무원회의, 조정국회의

* 교육장관회의 : 역내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사안을 협의 ☞ 이와 관련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회의 (HRDWG) 운영**

<교육장관회의 개최내역>

구분	개최지	개최일 (참석자)	주제
1차 ('92년)	미국 (워싱턴)	'92.8.5-8.6 (조완규 장관)	"21세기 교육기준 마련" - 교육표준(standard) 마련을 통해 APEC 회원국이 급변하는 21세기에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기여
2차 ('00년)	싱가포르	'00.4.6-4.7 (문용린 장관)	"21세기 사회를 배우기 위한 교육" - 밀레니엄 시대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경제와 사회 복지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평한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 개발
3차 ('04년)	칠레 (산티아고)	'04.4.29-4.30 (안병영 장관)	"향후 교육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함양" - 교육분야 연계와 공동계획 강화를 통한 공동체 기회 균등 증진과 경제통합, 개방, 번영 확대
4차 ('08년)	페루 (리마)	'08.6.10-6.12 (박종용 실장) ※인재정책실장	"모두를 위한 질 교육: 21세기 능력과 기술 함양" - 질 교육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격차 축소 -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경제통합과 세계화 혜택증진
5차 ('12년)	한국 (경주)	'12.5.21-5.23 (이주호 장관)	"미래의 도전과 교육적 대응": 글로벌 교육 혁신교육 및 교육협력의 강화 - 교육을 통한 APEC역내 미래대응 및 협력·발전의 토대 마련
6차 ('16년)	페루 (리마)	'16.10.4-10.6 (이준식 부총리)	"포괄적 교육과 양질의 교육(An Inclusive and Quality Education)" -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을 강조

❑ APEC 교육협력사업 개요

<추진 배경>

○ APEC 회원국 간 지적·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역내 우수 핵심 인재 양성, 회원국 공동 번영** 추구

○ 교육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 제고, 한국의 우수한 교육성과, 발전경험 및 교육시스템 공유·전파**

<주요 내용>

○ **APEC 휴먼네트워크 사업**

- 국제교육협력단(ALCoB)*을 양성하고, APEC 개도국 회원국에 파견하여 교육분야 역량개발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알콥(ALCoB,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 : 우리나라 APEC국제교육협력 사업에 참여·활동 중인 교육행정가·학자·교사·학생·기업인 등

○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사업**

- 알콥스쿨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간 교류 활성화 지원
- 미래교육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글로벌 교육이슈 등에 대한 APEC 회원국 간 논의의 장 마련, 홍보자료 발간 등

○ **APEC 교육협력 운영체제 지원 및 교류지원**

- APEC 교육장관회의, HRDWG* 등 교육 관련 국제회의 참석, 미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APEC HRDWG 의장국 활동 수임('17~'20) 등

  *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

○ **APEC 학생교류 프로그램**

- 역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대학생 대상 다국적 팀 기반 프로젝트 활동*

  * 연례 APEC 정상 및 장관회의 의제와 연계하여 사전-현장-사후 활동으로 구성

○ **APEC 교육혁신공동체(Community for Education Innovation) 사업**

- APEC 공동의 교육비전달성을 위한 **교육혁신공동체(CEDI)** 사업으로 **회원국 간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

  * 부총리 ECP 결과 보고('16.10월, 페루) → 신규사업제안 및 승인('17.5월, 베트남)

* **CEDI 주요내용** : ①국제 연구그룹 구성 ②교육혁신 국제 공동연구 수행 ③온·오프라인 교육외교 채널 및 연구 플랫폼 구축 ④연구결과에 기반 한 시범 사업 시행

참고 6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의장 활동 내용

❑ 의장 수임 배경

○ **APEC 유관부처**(교육부·외교부·고용부) **합의** → **부총리 추천**(추천서 회원국 회람) → **회원국 투표 실시**('16.12월, 외교부 투표) ※회원국별 1개의 투표권 → **회원국 의견 수렴**('17.1월) → **한국 최다득표**로 의장수임(21개 국가 중 15개국 지지)

❑ 개요

○ **의장** : APEC국제교육협력원 원장(박동선)

○ **수임기간** : '17년~'20년(4년)

※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 APEC 경제·기술협력체의 고위관리회의 운영위원회(SCE) 산하 15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21개 회원국 교육·노동 관계자 참여

○ **주요역할**

①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대표 및 총괄

- **(주요회의 참석)** 실무그룹을 대표하여 고위관리회의(SOM) 등 참석

※ **SOM**(Senior Officers' Meeting) : 고위관리회의, 연 5회 개최
※ **HRDWG 총회** : 통상적으로 SOM 시기에 연간 1회 개최하며,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기술회의, 21개 회원국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는 개회식, 산하 3개 분과별(CBN, EDNET, LSPN) 회의, 폐회식으로 구성하나, 회원국 필요에 따라 연 2~3회 개최 가능
※ **SOM SCE**(Senior Officers' Meeting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 APEC 경제·기술협력체의 고위관리회의 운영위원회, 연 3회 개최

- **(실무그룹 기획·관리)** 2년 간 실무그룹 중기 계획수립 및 회원국 협의, 인적 자원 개발 분야 이니셔티브 설정 및 회원국과 협력
- **(모니터링)** 각 회원국 프로젝트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② APEC 정상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의제 발굴

- (정상회의) 역내 인적자원개발 주요 의제 발굴 및 정상회의 상정
- (장관회의) APEC 인적자원개발 장관회의('18년 예정) 추진, 교육장관회의('16년) 사후관리 및 회원국 후속활동 장려

③ APEC HRDWG 관련 회의 주재

- (회의 기획) 실무그룹 총회, 3개 분과(교육, 역량, 노동) 회의일정 및 의제 설정
- (회의 주재) 회의 주재, 회의록 작성·회람 등 전반적 회의 운영

④ 기타 대외활동

-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간 연구·교류 활동 촉진

참고 7 ASEAN 교육협력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10.10) 및 '15년 이후 **아세안 통합 가속화***로 **아세안의 영향력 강화**

* '15년 아세안 경제통합, 정치적 화합 등을 위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 '12년부터 **아세안+3/EAS 교육장관회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교육협력 증대** 및 **한국의 이니셔티브 확보 필요**

○ '17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17.11)을 통해 발표한 **對아세안 협력 비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교육 분야 실행계획 수립 필요

* 대통령 아세안 순방을 계기로 발표한 3P(People, Prosperity, Peace)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 구축 비전으로 신남방협력의 기본 방향 제시

☐ 추진 경과

○ **('07~'09)** 한-아세안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아세안 6개국 직업교육 통계 및 제도 분석(KRIVET) 등 6개 과제 추진(3년, 연80백만원)

○ **('10~'12)** 한-아세안 교육협력사업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한-ASEAN 교육협력 프로그램 개발(KEDI) 등 6개 과제 추진(3년, 연80백만원)

○ **('13~'15)** 對아세안 협력 관련 연구과제별로 연구기관에 수탁

○ **('16 ~)** 연도별 ASEAN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 2018년 사업 예산 : 250백만 원

☐ 2018년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과 제	주요 내용
ASEAN+3 / EAS 역내 **고등교육 협력 강화**	○ ASEAN+3 역내 고등교육 교류 프로그램 성과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 ASEAN+3 역내 교육협력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의제개발 ○ ASEAN과의 고등교육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ASEAN+3 / EAS 역내 **직업기술교육 협력 강화**	○ ASEAN 국가 직업교육혁신 역량 강화 ○ EAS 직업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직업교육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역량 및 경험 공유

참고 8 CAMPUS Asia-한일중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한일중 대학생 교류 및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한일중 대학간 학생교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교류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프로그램 :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지원 내용)** 각국 정부는 학생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각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교류비**) 초청 학생의 생활비를 각국 정부초청장학생 수준으로 지원
- (**프로그램운영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언어교육 지원, 교직원 교류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

□ 본 사업 기간 : '16. 9 ~ '21. 2

□ 2018년 지원 규모 : 총 17개 사업단

□ 2018년 사업 예산 : 2,656백만원

※ 학생교류비 (976백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530백만원), 사업운영비 (150백만원)

□ 사업 주체

교육부	사업총괄, 정책 결정 및 예산지원 ※ 중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과 공동 추진
사업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 및 예산 관리·집행 총괄 사업단 선정 및 평가관리 지원,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등 사업단 협의회 운영 및 사업단 프로그램 관리
각 사업단(참여대학)	교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학생 선발 및 지원

참고 9 CAMPUS Asia-한일중 사업단 명단(총 17개 사업단)

(정렬: 가나다순)

연번	한국	일본	중국	프로그램명
1	고려대 (국제대학원)	고베대	복단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2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와세다대	북경대	다층적 분쟁해결 및 사회혁신을 위한 동아시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3	동서대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리츠메이칸대	광동외어외무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4	부산대 (기계공학부 /환경공학과)	큐슈대	상해교통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5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큐슈대	동제대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도시건축 환경개발을 리드할 인력양성 협력교육 프로그램
6	서울교육대학교	동경학예대	북경사범대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대학원 프로그램
7	서울대 (국제대학원)	동경대	북경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 DDMP)
8	서울대 (경영대학원)	히토쓰바시대	북경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9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동경대	북경대	The BeST 지역 전문가 양성 사업
10	성균관대 (문과대학/ 동아시아학술원)	오카야마대	길림대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11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나고야대	인민대/ 칭화대/ 상해교통대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12	성균관대 (수지원전문대학원)	나가사키대	산동대	동아시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
13	연세대(서울) (의과대학)	오사카대	북경대 칭화대 상해교통대 천진중의약대	의과학 및 보건학 고령화시대 연관 질병 극복을 위한 글로벌 의과학 및 보건 인재 양성프로그램
14	연세대(원주) (디자인예술학부)	치바대	절강대 칭화대	동아시아의 Eco Culture를 위한 글로벌 디자인 인재 양성 : 차세대 농업, 환경, 서비스 분야 중심
15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도쿄예술대학	중국전매대	한중일 국제 애니메이션 협업과정 개설
16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 전문대학원)	동경해양대	상해해양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17	KAIST	동경공업대	칭화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Tsinghua U-KAIST-Tokyo Tech. 간 연구 중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참고10 CAMPUS Asia-AIMS* 사업 개요

* 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Program

□ 추진 배경

○ 한국에 있어 ASEAN은 **교역, 투자, 건설수주 등 경제협력 핵심파트너**로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지역전문가 양성**이 시급

- ASEAN은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국, 투자지역, 건설 수주시장**임에도 **ASEAN과의 학생교류는 저조**

※ ASEAN 내 한국 유학생 1.7%(3.723명), 국내 ASEAN 유학생 9.8%(8,946명)

○ 우리 기업의 **ASEAN 진출 확대** 및 **ASEAN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ASEAN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 **AIMS 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한-ASEAN 대학 간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다자간 교류 중심)

- (**파견**) 전략적 협력대상인 ASEAN 국가의 한국전문가 양성 지원

※ 정규과목 이수, 현지어 습득 및 생활 이해, 봉사활동 등

- (**초청**) 전공학문 및 한국 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ASEAN 특화 프로그램 설계,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사업 기간 : '16. 7. ~ '21. 2.

□ 2018년 사업 예산 : 454백만원 (총 4개 사업단)

※ 사업단지원비 : 396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58백만원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	사업총괄, 정책 결정 및 예산 지원, AIMS 운영위 참석
사업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단 선정 및 평가관리, 세부운영지침 마련,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등
참여대학	교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학생 선발 및 지원

참고11 글로벌포럼(동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정책 연수) 개요

□ 행사 개요

○ **(목적)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 국가의 **정부 공직자, 전문가**들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논의 및 **글로벌 협력방안** 모색

○ **(개최시기)**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인재포럼과 연계 추진

※ '18년 EAP연수 기간 : '18. 11. 8(목) ~11.9(금)

○ **(주최/주관기관)** 교육부 / 유네스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연도별 개최 실적 (총 9회 실시, 누계 총 21개국 195명 참가)

년도	일시 (장소)	주제	참가인원
2009	11.3~11.6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Benchmarking Education System for Results	8개국 (38명)
2010	10.25 ~ 10.28.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Skills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10개국 (33명)
2011	10.31 ~ 11.3.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Higher Education for Productivity and Growth in East Asia	9개국 (28명)
2012	10.22 ~ 10. 25. (롯데호텔 서울)	From Input to Outcomes : Results-based Governance and Financing in Education	9개국 (24명)
2013	11.4. ~ 11.5.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개혁과 발전 Reforming TVET in Higher Education	4개국 (9명)
2014	11.3~ 11.6.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바림직한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제도 Developing the right skills for the Job	6개국 (12명)
2015	11.2 ~ 11. 3.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유연한 중등 직업훈련교육 시스템 Building Flexible and Responsive Secondary TVET System	6개국 (16명)
2016	10.31 ~ 11.1. (오크우드 & 호텔 페이토 강남)	21세기 사회정서적 스킬 개발 Developing Socioemotional Skills in the 21st Century	12개국 (24명)
2017	10.30 ~ 10. 31. (오크우드)	아태지역 국가역량체계 구축의 성과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 Sharing Achievement and Seeking Future Development on NQF Establishment in Asia-Pacific Region	5개국 (11명)

[303]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재량, 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ODA)	4,241	14,075	14,356	**281**	**2.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805	700	700	**-**	**-**
- 한-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	2,436	2,744	**308**	**12.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1,000	800	800	**-**	**-**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4,017)	3,314	4,018	**704**	**21.2**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	- (5,137)	4,545	3,694	**△851**	**△18.7**
- UNESCO UNITWIN 사업 지원	- (1,936)	1,870	2,070	**200**	**10.7**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 (423)	410	330	**△80**	**△19.5**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300 ~ 4333 - 303

* 담 당 자 : 국제협력관(공석), 교육국제화담당관(강정자), 국제교육협력담당관(박대림), 사무관(김진아, 유지선, 이규성, 정구용, 채희종)

※ 2018년 예산 과목구조개편에 따라 세부사업 통폐합 및 내역사업 이관
- 내역사업(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타 세부사업(대학국제협력활성화지원)에서 이관
- 세부사업(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 전체 통합 이관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UNESCO UNITWIN 사업,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도국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 원조 모델 발굴 및 사업지원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사교류를 통한 국내 다문화교육 수요 부응 및 양국 교원 국제교육역량 강화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개발도상국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성숙한 한국형 교육ODA 모델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확산과 Post-2015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국제협력선도대학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 대학의 학과(단과대학) 구축 등 역량 강화와 기초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의 교육역량 강화 지원 (UNESCO UNITWIN 사업지원) 유네스코 UNITWIN 활동을 지원하여 저개발국 대학의 역량강화 지원 (아프리카 브릿지) 아프리카 저개발국 내 문해교육 및 기초교육 역량강화
사업기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06~계속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12~계속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15~계속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12~계속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09~계속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1~계속 (아프리카 브릿지) '13~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국제부담금, 민간경상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700백만원

○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 570백만원**

▪ 수원국의 교육분야 ODA 수요 조사 및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사업설계(3개 과제 × 50백만원)

※ 예비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

* 발굴된 원조모델은 범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교육협력모델 후속지원분야) 또는 KOICA·EDCF, 교육부 내 타 ODA 사업으로 연계 추진

▪ 발굴된 원조모델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기 완료된 사업의 후속 지원(4개 과제 × 80백만원)

▪ 국가별 맞춤형 교육정책 컨설팅 : 한국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교육정책수립에 대해 국내 전문가의 컨설팅 및 개도국 행정가와의 공동연구 지원(2개 과제 × 50백만원)

○ **교육ODA 기반 강화 : 100백만원**

▪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100백만원

○ **사업평가관리비 : 30백만원**

▪ 연구자 선정평가, 중간 및 최종평가, 사업평가기획, 사후관리 등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과의 교육교류】: 2,744백만원

○ **한국과 국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를 위한 사업**

▪ 국가별 초청·파견 교사별 연수과정 운영, 국내·해외 다문화학생 대상 공동수업자료 개발, 초청·파견교사 교수학습활동 지원

▪ 국내 학교현장에서 급증하는 다문화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대상 국가와의 국가 간 협약을 이행하여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 지속 추진

※ 초·중·고 재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 ('09) 0.35% → ('11) 0.55% → ('15) 1.4% → **('18) 2.2%**

▪ 산출내역 : 7개국 180명 × 15.2백만원 = 2,744백만원

※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8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GCED) 교육과정개발 지원 : 300백만원**

▪ 현황분석 연구 : 25백만원×4개국=100백만원

▪ 역량강화워크숍 및 1기 국가 후속활동 지원 : 50백만원×4개국 =20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250백만원**

▪ 교사교육가 기본연수 : 5백만원×30명×1회=150백만원

▪ 청년리더십 워크숍 : 2.5백만원×40명=100백만원

○ **ICT 활용 세계시민교육(GCED) 확산 지원 : 25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운영 : 70백만원

▪ 세계시민교육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80백만원

- 원격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40백만원×3종=120백만원

-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60백만원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4,018백만원

○ **개도국 대학 학과 구축,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프로그램 개발 등 : 3,618백만원**(9개 대학(계속7, 신규2) × 402백만원)

○ **후속지원 : 200백만원**(2개 대학 × 100백만원)

○ **사업관리비 : 200백만원**(1식 × 200백만원)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3,694백만원

①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 506백만원**

○ 사업개요

▪ 아태지역 9개국 대상 체계적인 교원 ICT 역량개발 및 디지털시민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아태지역 아동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교원 ICT 역량 기준정책 개발 지원 및 이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및 교원연수 지원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506백만원(46만$×1,100원)

▪ 산출근거 : 3차년도 사업비 46만$ 지원

- 아동을 위한 디지털환경 조성 : 10만$
- 교원 ICT 역량개발 및 적용 강화 : 12만$
- 사업결과 공유 및 정책회의 지원 : 9만$
-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 : 11만$
- 사업 운영비 등 : 4만$

②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 138백만원

○ 사업개요

▪ 인종·문화가 다양하고, 경제 발전정도가 상이한 아태지역 내의 소통·통합을 증진하여 유네스코 이념인 평화의 문화 확산에 기여

▪ 9개국 대상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138백만원(12.5만$×1,100원)

▪ 산출근거 : Ⅱ단계 사업('19년~'22년) 총 지원액 50만$ 중 1차년도 사업 지원액(12.5만$)

③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 : 550백만원

○ 사업개요

▪ 아프리카 3개국 대상 ICT 활용 모바일러닝과 원격학습(ODL : Open and Distance Learning) 등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

▪ (초·중등교육) ICT 활용교육을 통한 접근성 확대 및 질 제고

▪ (고등교육) 공개원격학습을 활용한 고등교육시스템 강화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550백만원(50만$×1,100원)

▪ 산출근거 : Ⅱ단계 사업('19년~'23년) 총 지원액 200만$ 중 1차년도 사업 지원액(50만$)

④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 2,500백만원

○ 사업개요

▪ (BEAR 2단계) 아프리카 5개국 대상 직업기술교육 혁신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및 진로상담 도구 개발

▪ (BEAR 1단계 지속성 강화 사업) 1차 지원 대상국(5개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후속 컨설팅, 교재 개발, 직업선도학교 개발 교육과정 이행 지원 및 모니터링, 현지 및 초청연수 등 실시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2,500백만원(BEAR II 200만$(2,200백만원) + BEAR I 후속 300백만원)

※ '16년부터 '20년까지 BEARII 사업 총 1,000만$ 지원하기로 유네스코와 협약('17년 200만$ 집행, '18년 200만$ 집행예정)

▪ 산출근거

▸ BEAR 2단계 4차년도 신탁기금 : 2,200백만원(200만$×1,110원)

▸ BEAR 1단계 지속성 강화사업 : 300백만원

· 한국 직업교육 전문가 현지 방문 컨설팅 : 120백만원(12백만원×2회×5개국)

· 수혜국 수요에 입각한 NCS형 현지 직업교육 과정 연수 : 40백만원(8백만원×5개국)

· 국가 집중 육성 산업 부문 노동시장 분석 및 교육과정/교과서 추가 개발, 한국형 직업교육 발전모델 및 정책 벤치마킹 : 100백만원(20백만원×5개국)

· 각 수혜국별 직업교육 선도학교 지원 및 개발 직업교육과정 적용, 확산을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10백만원(2백만원×5개국)

· 각 수혜국별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UNESCO BEAR사업/타 정부 부처 유관 사업과의 연계방안 확립 및 실행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해당사업 전담팀 운영 : 30백만원

【UNESCO UNITWIN 사업】: 2,070백만원

① UNITWIN-저개발국 지속발전 역량강화(한동대) : 1,461백만원

○ 사업개요 : 저개발국 대학, 정부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훈련, 공동체 창업교육을 확산하고, 현지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1,461백만원

▪ 산출근거

▸ 국제기업가정신훈련사업 : 120백만원

· 국제기업가정신훈련 : 25백만원×2개국=50백만원

· 국제청소년기업가정신훈련 : 15백만원×2개국=30백만원

· 지역리더 기업가정신훈련 : 15백만원×2개국=30백만원

· 훈련생 사후관리 : 5백만원×2개국=10백만원

▸ 개도국대학의 지역공동체개발역량강화사업 : 50백만원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세미나와 지역조사 : 6백만원×3개국×2회=36백만원

· 현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 5백만원×1회=5백만원

· 현지협력기관관계자 초청 협의회 : 9백만원×1회=9백만원

▸ 개도국대학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역량강화사업 : 100백만원

· 적정기술창업/기업가정신워크샵 : 25백만원×2회=50백만원

· 태양광 설비교육 : 20백만원×1회=20백만원

· 현지 기술개발용 시험기계와 재료구입비 : 5백만원×2종=10백만원

· 현지 조사와 기술연구인력 활용비 : 10백만원×2개국=20백만원

▸ 개도국 도시환경개선역량 강화사업 : 100백만원

· 개발도상국 도시환경 현지조사 : 15백만원×4개국×1회=60백만원

· 도시환경 연구 공동 심포지엄 : 4백만원×4개국×1회=16백만원

· 현지 연구자 초청 세미나 : 3백만원×4개국×1회=12백만원

· 기술연구인력 활용비 : 2.5백만원×4개국=10백만원

· 도시환경 연구 관련 문헌 구입비 : 2백만원

▸ OCW/OER* 교육자료 축적 및 공개사업 : 140백만원

* 공개강좌프로그램 및 공개교육지원(Open Course Ware / Open Educational Resources)

· OCW/OER교육자료 수집 : 64개×2학기×1백만원=128백만원

· UUOOI*홈페이지 개선과 서버운영 : 4백만원×1년=4백만원

* 유네스코 유니트윈 교육자료 공개운동(UNESCO UNITWIN OCW OER Initiative)

· OCW/OER활용 선진 사례 연구 : 2개국×1회×4백만원=8백만원

▸ 개도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사업 : 700백만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 50백만원×5개국×2학기=500백만원

· 교육과정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 7백만원×5개국×2회=70백만원

· 신규 교과목 개설 : 10백만원×2개국×2학기=40백만원

· 창업경진대회 개최 : 20백만원×2개국×1회=40백만원

· 창업교육과정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 25백만원×2개국×1회=50백만원

▸ UNITWIN 지원강화사업 : 184백만원

· 국제기구와 협력활동 : 10백만원×2회×4개국=80백만원

· 사업성과평가 연구 : 8백만원×1회=8백만원

· 사업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2회=20백만원

· 현지 협력기관 대표인사 초청 협의회 : 30백만원×1회=30백만원

·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 : 7.5백만원×4개국×1회=30백만원

· EDCF* 연계 사업 지원 : 16백만원×1회×1개국=16백만원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사업관리운영비 67백만×1식=67백만원

② UNITWIN-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숙명여대) : 409백만원

○ 사업개요 : 저개발국 여성의 ICT 역량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 대학과 교과목 공동 개설·운영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409백만원

▪ 산출근거

- 개도국 여성 ICT 역량강화 5개 대학×38.8백만원=190백만원
- 개도국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5개 대학×38.8백만원=190백만원
- 유니트윈 네트워크 구축 9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409백만×5%=20백만원

③ UNITWIN-저개발국 교육인재 양성(방송대) : 200백만원

○ 사업개요 : 저개발국 대학 및 기관에 원격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 및 경험 공유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200백만원

▪ 산출근거

- 저개발국 원격교육시스템 리모델링 지원사업 : 40백만원
- 저개발국 원격대학설립 지원사업 : 100백만원
- 온라인 콘텐츠 공동개발 : 35백만원
- UNESCO UNITWIN 워크컨퍼런스 개최 : 15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200백만원×5%=10백만원

【아프리카 브릿지】: 330백만원

○ 사업개요

▪ 지역학습센터를 교육허브로 문해-유아-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비형식교육의 교육환경개선, 교사연수훈련, 교재보급확산 강화

▪ 수원국별 범정부협의체 운영으로 공무원 책무성·자립역량 제고

※ 지역학습센터(Community Learning Centre)는 비형식·다목적 학습공간으로서 아프리카에 본격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며, 유엔 SDG 교육목표 및 이행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전략(「Education 2030」 Para. 66 Networks of CLC) 연계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예산내용 : 330백만원

▪ 산출근거

- 지역학습센터 특성화 : 45백만원×4개국*=180백만원

* 종료시한 : ('18년) 말라위, 레소토 / ('19년) 르완다, 잠비아 / ('20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 비형식교육 역량강화 : 12백만원×4개국=48백만원
- 아프리카 교육자립 촉진 : 16백만원×4개국=64백만원
- 교육지원 평가체계 구축 : 20백만원×1회=20백만원
- 사업관리운영비 : 1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14,075	14,356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700백만원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520백만원 ·교육 oda 기반강화 150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30백만원	700백만원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520백만원 ·교육 oda 기반강화 150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30백만원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백만원 ·7개국 180명 : 2,436백만원	2,744백만원 ·7개국 180명 : 2,744백만원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800백만원 ·GCED 교육과정 개발 지원 300백만원 ·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50백만원 ·ICT 활용 GCED 확산 지원 250백만원	800백만원 ·GCED 교육과정 개발 지원 300백만원 ·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50백만원 ·ICT 활용 GCED 확산 지원 250백만원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314백만원 ·7개 대학(계속7) 2,814백만원 ·후속지원(3개 대학) 3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4,018백만원 ·9개 대학(계속7,신규2) 3,618백만원 ·후속지원(2개 대학) 2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4,545백만원 ·아태지역 ICT 활용 교육지원 520백만원 ·아태지역 소통 통합 증진 사업 515백만원 ·아프라카 ICT 활용교육 지원 950백만원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교육지원 2,560백만원	3,694백만원 ·아태지역 ICT 활용 교육지원 506백만원 ·아태지역 소통 통합 증진 사업 138백만원 ·아프라카 ICT 활용교육 지원 550백만원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교육지원 2,500백만원
■ UNESCO UNITWIN 사업	1,870백만원 ·한동대 1,461백만원 ·숙명여대 409백만원	2,070백만원 ·한동대 1,461백만원 ·숙명여대 409백만원 ·한국방통대 200백만원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410백만원 ·지역학습센터 설립·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6개국) 410백만원	330백만원 ·지역학습센터 설립·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4개국) 330백만원

□ 지원 필요성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 한국의 교육발전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교육개발협력 요청에 부응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 발굴 및 지원**

-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EDCF, KOICA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하드웨어 지원**에 대응하여, 교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등 양질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발굴**

- 향후 국제기구 발주 ODA 교육분야 협력사업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ODA 전문인력 양성 지원

타부처 또는 교육부 ODA 사업과의 연계 성과
①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09년 성균관대) ⇒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설립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경제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EDCF 사업으로 연계('13년, 정부간 협정체결 완료)
② 르완다·우간다 대학 교육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조사('11년 서울대) ⇒ 르완다 대학교 확충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EDCF 사업으로 대학교 본관, 중앙도서관, ICT 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중('13년, 정부간 협정체결 완료)
③ 동티모르 과학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모델 개발('13 년 서원대) ⇒ '14 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동티모르 과학교사 연수 및 과학거점센터 설립" 후속지원
④ 몽골 장애학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모델 개발('13 년 서울대) ⇒ '14 년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몽골 특수교육 교사 양성체제 설립 기획 및 기반 구축"
⑤ 네팔 특수교육 교원 양성 모형 개발 및 국립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3 년 창원대) ⇒ '14 년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으로 선정 지원
⑥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에비 타당성 조사 사업('14 년 서울대) ⇒ '15~'16 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임상전 단계 실습 중심 역량 강화 사업" 후속지원 ⇒ '17 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미얀마 치과대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사업 선정 지원
⑦ 유상원조자금(EDCF, 231억원)으로 '07년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대학 설립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1년 우송대)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사후관리 프로젝트 실천사업('12년 우송대) ⇒ '14년 KOICA 연계 사업으로 발전(수파노봉대학교의 하드웨어(시설 보수) 및 소프트웨어(교육과정·교과서 개정, 대학 교수 석사학위 취득) 구축을 지원(300만불, '14-'15))
⑧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요청에 의해 EDCF가 구축한 ICT 교육센터 ⇒ 민관협력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ICT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실시 사업('13년, 성신여대)
⑨ 에티오피아 빈곤퇴치를 위한 식품·영양교육 지원 컨설팅 및 시범운영('14, 덕성여대) ⇒ '16년 미래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선정(미얀마 식물자원의 기능성 소재 산업화 역량 강화)
⑩ 캄보디아 PISA-D 사업 시행 지원('15~'1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6~'18년 KOICA 에콰도르 중등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수 사업 선정(남미권에서 PISA-D에 참여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영역의 교육부 및 교원 관계자 역량 제고)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 다문화가정 대상국과 **교사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대상국 교육역량 강화**할 **필요성 증대**

*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11.12, 국회입법조사처)
-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며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으로의 기본방향 정립 필요
- 우리사회는 **전 국민의 2.2%에 달하는 이주외국인들과 그 자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만으로는 이들의 교육소외와 사회부적응을 예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일반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한 교육, 현직교사 연수 및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교대 내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한국인 대상 다문화교육 강화가 필요

- 다문화 대상국의 현직교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초.중등학교에 배치, 현직교사와 매칭을 통한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교육시스템을 소개**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 경험을 전수**하여 **대상국 교육역량 강화**

- 전체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의 **소외감.박탈감** 등 해소하여 **잠재적 미래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지도할 **교사**의 **다문화 이해 역량 배양**이 절실

  * 일반적으로 아동에 대한 **선제적 예방교육 강화**는 **실제 사회문제 발생시 해결비용의 1/10 수준**

-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문화 교육 수요 증대 부응** 및 **상호 이해도 제고**

  ※ 초·중·고 재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중** ('09) 0.35% → ('11) 0.55% → ('15) 1.4% → **('18) 2.2%**

- **베트남.필리핀.몽골** 등 다문화 대상국의 **현직 교사**를 국내에 **초청**, 국내학교에서 **교사**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흥미도 제고 및 자부심 고취 계기**

  * 외국인 교사 수업받은 초등생, 다문화에 더 긍정적(연합뉴스, '15. 5. 2)

  * 보고·듣고·느끼고...멀고도 가까운 문화 즐겁게 알아가요(대전일보, '16.7.11)

- 한국교사의 몽골.필리핀 등 **현지학교 활동**을 통해 다문화 대상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타 문화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배양

  * '교사교류 늘려 필리핀 교육의 질적 성장에 힘쓰겠다'(필리핀 교육부 데리키토 차관보)

  * '**한국에 다녀 온 교사는 의식과 태도부터 다르다.** 지속적 교류를 희망'(몽골 교육부장관)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 한국발 글로벌 교육의제인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네스코 「교육 2030 (Education 2030)」**에 반영됨

*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확산저변 확대

※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달리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경우,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중점적으로 요구됨

- GEFI 핵심지원국그룹(Champion Country)으로서 국제사회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적극적 기여 약속 이행

※ 유엔 GEFI 고위급회의 기조연설('14.9.24, '15.9.26),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 축사('15.5.19), 유네스코 특별연설('15.12.1),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개회식 축사('16.5.30)

- 한국의 강점분야인 **ICT를 활용하여 온라인 세계시민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시성을 향상하고, 세계시민교육에의 효과적 접근성을 주도적으로 확장할 필요

- 제2기 사업('19~'21) 착수에 따른 예산 반영 및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후속활동 지원 필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모델 발굴**

- G20 정상회의 개최 및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한국형 발전경험 공유 및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요구에 부응

- 개도국 대학에 필요한 학과 개설, 교육과정 개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저개발국으로부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협력 요청이 쇄도하면서 **우리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지적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임

○ **수원국 현지 대학의 협력 거점화**를 통한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 기반 조성** 및 **ODA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기여**

○ 범정부적 개발협력 기조인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EDCF와 연계 사업** 추진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①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 아태 ICT 교육장관 포럼에서 회원국들의 최우선 지원과제로 교원 ICT 교육.연수를 채택, ASEAN+3 교육분야 6대 실천전략(2010~2017)에 ICT를 활용한 교사훈련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포함

○ 아태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우리기업의 아태지역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와 아태지역간의 경제·기술적 관계도 더 긴밀해지고 있음

②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 아태지역은 다른 대륙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아 이 지역에만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 정확한 문제 진단과 분석이 뒷받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제안한 세계시민교육(GCE)의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 2015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이후 세계교육의 주요 의제로 발전시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주도권 확대

③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

○ 아프리카는 넓은 국토, 분산된 인구 등 전통적 집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표지역으로 모바일 교육을 통해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에 기여

○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ICT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한국 IT 산업의 아프리카, 아태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

○ 한국의 정보화 경험의 공유 요청 증가, 아프리카 지역의 이동통신 보급이 확대되며* 아프리카가 新 ICT 시장으로 부각**

* 무선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11%

** 아프리카 모바일 접속 인구수 세계 2위 : 2억 명('06년) → 7억3천 명('12년)

○ 혁신적 방법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EFA 목표를 달성하고자 UNESCO에서 한국에 ICT를 활용한 교육혁신 사업 지원 요청

○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아프리카교육장관회의 초청 기조연설(2013.12, 튀지니)

-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광활한 영토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학교를 세우지 않아도 됨
- 아프리카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3S(same time, same place, same age) 교육을 뛰어넘어 곧바로 3A(anytime, anywhere, anyone) 교육**으로 갈 수 있음

④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 **BEAR II**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으로 아프리카 직업교육훈련분야 대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노동시장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취업률 제고 및 체계적인 교사연수를 통한 양질의 산업 인력 양성

○ 세계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국가기능경기대회 개최로 각 수혜국 내 직업교육 가시성 확보 및 한국 직업교육의 우수성 홍보

○ 아프리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진출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진로 컨설팅 도구 개발 및 적용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일반협력국(케냐, 마다가스카르)의 직업교육관련 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적 인적/물적 자원 개발 실시

○ 한국 유관기관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참여를 통한 한국전문가들의 국제협력 관련 역량 개발 및 강화

▸ BEAR I 지속성 강화 사업

○ 단 회로 종료되어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웠던 이전의 공적개발원조의 한계를 벗어나, 유기적인 후속 사업의 실행으로 각 수혜국 별 지속가능한 역량개발 실시

○ BEAR I에서 파생된 역량의 지속적인 강화 및 수혜국내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각 수혜국별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5개년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확립하여 이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사업 실행

○ 한국의 모범적 직업교육 정책(예: 마이스터고등학교)을 현지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모범 직업교육정책의 수혜국 내 확산 유도

○ BEAR 사업의 중점 산업부분 외에 수혜국 내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 산업을 파악하여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분석, 교육과정개발, 교과서 개발을 실시하여 수혜국내 직업교육 선도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UNESCO UNITWIN 사업】

① 한동대학교

○ 개도국 교육부 및 노동부 장관(르완다, 우간다, 가나, 에티오피아, 네팔 교육부장관, 우즈벡 노동부장관 등), 협약대학 총장 등 협력파트너의 요청에 따른 사업 확대와 신규 국가 발굴 필요

- 가나 국제기업가정신훈련사업 실시 후 가나 국가청년인재훈련 프로그램에 자체적 '기업가정신훈련프로그램'을 채택, 6만명 대상 훈련 실시. 이와 관련하여 가나 교육부 장관 제인 아게망(Jane Naana Opoku Agyemang)은 가나 대학(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오브 가나)의 기업가정신센터 개소식에서 향후 가나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교육을 적극 후원 언급(2014.05.)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진 국제기업가정신 훈련에 대하여 국회의장 아바둘라 게메다(Abadula Gemeda)는 국제기업가정신의 내용과 효과성을 훈련 현장에서 확인 후 공무원 대상 특별 기업가정신훈련을 추가 실시 요청(2015.07.)

- 에티오피아 Mekuria Haile 건설부장관, Ahmed Shide 재무부차관, Bereket Simon 수상실 정책장관, Shiferaw Shigutie 교육부장관 등 에티오피아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UNITWIN 사업 설명 및 지지 확인(2015.07.17)
-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장관 Aziz Abdukhakimov은 본 사업단의 우즈벡 대학과의 기업가 양성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좋은 사례를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독려(2015.08.13)
- 우즈베키스탄 민영화반독점경쟁발전 국가위원회 Davron A. Khidoyatov 위원장과 UNITWIN 사업에 대해 논의, "한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경영분야의 세미나 개최,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즈벡 기업경영대학의 연구 시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2015.08.14.)
- David Atchoarena UNESCO본부 고등교육국 국장과 유니트윈 사업의 성과 및 활동 보고, 향후 한동대의 개발도상국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당부(2017.01.17.)
- Andrew Yamanea 파푸아뉴기니 대사와의 유니트윈 사업 논의 및 파푸아뉴기니 대학과 유니트윈 사업을 통한 교육협력 요청(2017.11.13.)

○ UNESCO는 2007년 한동대를 '개도국 지속발전 역량강화 UNITWIN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주관대학으로 지정되어 국제무대에서 국격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지원 필요

- 개도국 공동체 비즈니스 발굴과 그린적정기술 개발을 통해 현지인 의식개혁(기업가 정신, 공동체의식, 협동)과 자생적 역량개발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참여교수 간 지식교류, 자료개방 및 피드백을 통해 개도국 교원 교육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별 현황 조사 및 적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한동대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해외진출에도 기여
- UNESCO UNITWIN 주관대학으로서 지역공동체개발교육, 리더십교육, 기업가정신교육, 그린적정기술 교육, 공동교육과정은 협력대학과

개도국의 지속발전 위한 역량강화에 부응하려는 UNITWIN 사업 목적에 부합

※ 유네스코는 홈페이지에 한동대의 사업을 여러차례 소개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98/189880e.pdf
http://www.unesco.org/new/en/harare/about-this-office/single-view/news/importance_of_entrepreneurship_education_underscored_at_2016

○ UNESCO UNITWIN의 고등교육분야의 개도국 개발협력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되어 있으며, 기여를 확대하도록 지속 지원 필요

- 아프리카 교육장관회의(ADEA)에서 UNESCO UNITWIN 사례를 개도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발표함(2017.3.15. 세네갈 다카르)
- 아시아 지역 UNESCO UNITWIN 주관대학 컨퍼런스를 통해 남남협력을 통한 개도국 발전 지원(2016.12.15. 태국 치앙마이)
- UNESCO본부의 UNITWIN 출범 25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동대학교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표함(2017.10. 프랑스 파리)

○ UN Academic Impact,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확대에 따른 사업범위 확대

-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출범시킨 UNAI*는 2011년 한동대를 UNAI 제5원칙 고등교육 역량강화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지정한 이래, 2014년 재지정

  * UNAI (UN Academic Impact):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도로 2010.11월 시작한 전세계 고등교육기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프로그램

- 반 총장은 2014.9.1. 서사모아 UNAI Forum에서 한동대가 개도국의 지속발전 역량강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치하
- 반 총장은 2015.5.20. 서울 UNAI Forum에서 "한동대는 개도국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유니트윈사업 치하
- 반 총장은 2016.5.30. 경주 UN NGO 컨퍼런스에서 '한동대는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등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달성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치하

○ 우리나라 교육부 요청에 따른 사업대상국(미얀마, 에티오피아, 네팔, 우즈벡 등) 확대에 따른 지원 필요

- 우리 교육부의 미얀마(2014.11)와 우즈베키스탄(2015.10), 에티오피아(2016.05) 대상 사업 추진 및 확대 요청

· 2015년 미얀마 공동교육과정 실시 및 미얀마 컴퓨터교육대학과 MOU 체결(2015.10), 미얀마 양곤기술대학과 MOU 체결(2016.01)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과 MOU 체결(2015.02,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배석), 에티오피아 국제기업가정신훈련 실시(2015.07)

· 2015년 우즈베키스탄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실시 및 웨스트민스터국제대학교(WIUT)와의 MOU 체결(2015.10)

- 우리 교육부의 네팔 대지진(2015.4) 피해 복구 참여 요청을 수용하여 사업 확대

○ 지난 3개년 동안(2014, 2015, 2016년) 교육부 예산안에 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 유니트윈 사업의 20억원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은 최상위등급인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유네스코 유니트윈사업 외부평가위원회 평가회의(2015.4.30)에서 평가위원 5명 중 3명의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와 확대 필요성 제시

-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평가보고서(2017.11)에서 사업성과의 고도화를 위한 현지 학생에 대한 단계적 지원의 확대, 사회경제적 수준의 효과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연계,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지표개발연구의 필요로 인한 지속적 예산 확보의 필요성 제시

② 숙명여자대학교

○ UNESCO는 2014년 숙명여자대학교를 'ICT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여성역량강화' 부문 UNITWIN 주관 대학으로 지정함

○ 국별협력전략 상 중점협력국 및 중점분야(인적 자원 개발)에 부합

※ 사업 대상국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 SDG 이행 및 달성에 부합

- ICT 교육이 지속가능개발의 중요 이행수단으로 인정됨으로써 이를 활용한 협력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제고

※ 참여 교수(주관대학과 협력대학) 간 공동연구,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현지 교육 실시, 심화 워크숍 및 국제 경진대회, ICT 기반 창업 교육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ICT 분야 지식전수 및 국제 협력 기회확대

○ 본 사업의 핵심 주제인 여성과 교육은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인 점을 고려, SDGs 달성의 연계 메커니즘 마련과 경제 사회 개발의 촉진제 역할 기대

○ 국제개발협력 크로스커팅 분야인 여성과 효과적인 개발도구인 ICT를 활용, 젠더&ICT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성 제고 및 전파

○ ICT 및 리더십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통해 개도국 발전의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확보

③ 방송통신대학교

○ UNESCO는 2017년 1월 방송대를 '고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관련 지식 및 경험 공유' 부문 UNITWIN 주관대학으로 지정

○ 국별협력전략 상 중점협력국 및 중점분야에 부합

※ 사업대상국인 네팔, 베트남, 몽골이 2기 중점협력국이며, CPS 중점분야로 '교육'분야 포함

○ 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교육 시스템은 고등 원격교육의 압축 성장 모델로, 방송대 교육시스템에 대한 저개발국의 관심 증대

- 방송대는 원격교육 노하우 중 하나인 교재, 카세트, CD, 인터넷, 모바일 등의 교육 매체 경험을 모두 가진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저개발국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 제시 가능

○ 정부의 신남방정책 관련, 아세안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 하노이개방대학의 원격교육시스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여 사람중심 경제협력 및 상생번영 공동체 달성 모색

○ 201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국형 ODA 모델 수립 연구 <미래

이슈 영역>에서 ‘한국형 ODA 기본프로그램’ 94번에 ‘원격교육 체계 구축(방송대, EBS 등)’ 제시

【아프리카 브릿지】

○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교육개발협력 모델 발굴

- 한국의 ODA 전문인력 파견(2년)을 통해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양자성 교육개발협력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교육발전 노하우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와 개도국의 요구에 부응
- ODA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향후 국제기구 진출 기회 마련
- 아프리카에 본격 도입되지 않은 지역학습센터(「Education 2030」 Para. 66 Networks of community learning centres)를 통한 비형식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수원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교육부)를 이행주체로 활용, △수원국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한 책무성 제고, △한-수원국 유네스코국가위 다자합의(릴롱궤 코뮤니케) 등 차별적인 수행체계를 확보하고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ODA)**	**4,241**	**14,075**	**14,356**	**281**	**2.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805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580백만원 -교육ODA 기반강화: 180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45백만원	700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520백만원 -교육ODA 기반강화: 150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30백만원	700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570백만원 -교육ODA 기반강화: 100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30백만원	-	-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436 (180명×13.5백만)	2,436 (180명×13.5백만)	2,744 (180명×15.2백만)	**308**	**12.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1,000 -GCED 교육과정 개발 지원: 400백만원 -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300백만원 -ICT 활용 GCED 확산 지원: 300백만원	800 -GCED 교육과정 개발 지원: 300백만원 -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50백만원 -ICT 활용 GCED 확산 지원: 250백만원	800 -GCED 교육과정 개발 지원: 300백만원 -GCED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50백만원 -ICT 활용 GCED 확산 지원: 250백만원	-	-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4,017) - 9개대학(계속5, 신규4)×402백만: 3,618백만원 -후속지원 3개대학×100백만: 200백만원 -사업관리비: 199백만원	3,314 - 7개대학(계속7×402백만: 2,814백만원 -후속지원 3개대학×100백만: 3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4,018 - 9개대학(계속7, 신규2×402백만: 3,618백만원 -후속지원 2개대학×100백만: 200백만원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704**	**21.2**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5,137)	4,545	**3,694**	**△851**	**△18.7**
·아태지역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345) (30만$×1,150원)	520 (46만$×1,063원)	506 (46만$×1,100원)	**△14**	**△2.7**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632) (55만$×1,150원)	515 (46만$×1,063원)	138 (12.5만$×1,100원)	**△377**	**△73.2**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아프리카 ICT 활용교육혁신지원	(1,610) (140만$×1,150원)	950 (84만$×1,063원)	550 (50만$×1,100원)	**△400**	**△42.1**
·아프리카 자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BEAR II)	(2,300) (200만$×1,150원)	2,260 (200만$×1,063원)	2,200 (200만$×1,100원)	**△60**	**△2.7**
·아프리카 자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BEAR I 지속성 강화)	(250) (5개국×50백만원)	300 (5개국×60백만원)	300 (5개국×60백만원)	**-**	**-**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936)	1,870	2,070	**200**	**10.7**
[한동대학교]	(1,604)	1,461	1,461	**-**	**-**
·국제기업가정신 훈련사업	(200)	120 (60백만×2개국)	120 (60백만×2개국)	**-**	**-**
·총체적 지역공동체 개발	(50)	50 (16.6백만×3개국)	50 (16.6백만×3개국)	**-**	**-**
·창업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100)	100 (50백만×2회)	100 (50백만×2회)	**-**	**-**
·개도국 도시환경 개선사업	(67)	100 (25백만×4개국)	100 (25백만×4개국)	**-**	**-**
·OCW/OER 교육자료축적	(161)	140 (20백만원×7개국)	140 (20백만원×7개국)	**-**	**-**
·개도국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800)	700 (140백만×5개국)	700 (140백만×5개국)	**-**	**-**
·UNITWIN강화지원	(150)	184 (23백만×8개국)	184 (23백만×8개국)	**-**	**-**
·사업관리운영비	(76)	67 (사업비 5%)	67 (사업비 5%)	**-**	**-**
[숙명여자대학교]	(332)	409	409	**-**	**-**
·개도국여성 ICT 역량강화	(154)	190 (38백만×5개대학)	190 (38백만×5개대학)	**-**	**-**
·개도국여성리더쉽 교육	(154)	190 (38백만×5개대학)	190 (38백만×5개대학)	**-**	**-**
·UNITWIN 네크워크 및 거점구축 컨퍼런스	-	9 (9백만×1식)	9 (9백만×1식)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신규협력대학 워크숍	(8)	-	-	**-**	**-**
·사업관리운영비	(16)	20 (409백만×5%)	20 (409백만×5%)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	200	**200**	**순증**
·개도국 원격교육시스템 리모델링 지원	-	-	40 (40백만×1회)	**40**	**순증**
·개도국 원격대학설립 지원	-	-	100 (100백만×1회)	**100**	**순증**
·온라인 콘텐츠 공동개발	-	-	35 (35백만×1회)	**35**	**순증**
·워크컨퍼런스 개최	-	-	15 (15백만×1회)	**15**	**순증**
·사업관리비	-	-	10 (사업비 5%)	**10**	**순증**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423)	410	330	**△80**	**△19.5**
·지역학습센터 특성화 사업	(270)	270 (45백만×6개국)	180 (45백만×4개국)	**△90**	**△33.3**
·비형식교육 역량강화 사업	(72)	72 (12백만×6개국)	48 (12백만×4개국)	**△24**	**△33.3**
·아프리카 교육자립 촉진 사업	(24)	24 (4백만×6개국)	64 (16백만×4개국)	**40**	**166.7**
·아프리카 교육자립 촉진 사업	(20)	20 (20백만×1회)	20 (20백만×1회)	**-**	**-**
·사업관리운영비	(37)	24 (사업비 6%)	18 (사업비 6%)	**△6**	**△25.0**
□ **비목**(합계)	**4,241**	**14,075**	**14,356**	**281**	**2.0**
○민간경상보조(320-0)	2,436	5,016	5,444	428	8.5
○국제부담금(340-02)	1,000	5,045	4,194	△851	△16.9
○사업출연금(350-02)	805	4,014	4,718	704	17.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 기초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저개발국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 개발** 및 **지역적 균형을 위해 협력국가 다변화 유도**

-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급증한 교육분야 개발협력 지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용이한 기관을 발굴, 총체적 사업 지원**기반 마련

○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ECDF, KOICA)에서 시행하는 **교육분야 ODA의 하드웨어 지원에 대응**한 교육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등 **교육 ODA 패키지 지원 강화**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 다문화대상국가 및 한국 교원의 글로벌 교육역량 및 다문화 이해도를 강화하고 한국형 글로벌 교육 ODA 모델 구축

- 한국교사가 대상국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통해 다문화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교사·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제고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 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사의 교수역량 강화 및 국내 협력교사와의 공동수업안 개발을 통한 협력활동 지원
-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교육 ODA 분야 주도권 확보 및 교육 발전의 경험 공유와 교육시스템 전파 등 교육한류 기반 조성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 **세계시민교육을 매개로** 한 개도국,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효과적 파트너십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새로운 국제 교육 ODA 모델 발굴**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시범 운영 → 보완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수요 및 학교 현장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정개발 역량 강화

※ 제2기('19～'21) 교육과정개발 대상국(잠정) : 레바논, 스리랑카, 페루, 케냐

※ 제1기 사업 평가를 통한 제2기 사업계획 개선 및 보완, 지속적인 사업의 질 관리

※ 제1기 사업 대상국가들의 후속활동 지원을 통한 파급효과 극대화

- 개발도상국 교사교육가, 청년 등을 핵심인력으로 중점 양성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실효성 있는 학교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의제 확산의 지속성을 확보

※ 세계시민교육 핵심인력의 체계적 양성 필요성 확대(심화연수 과정 신설) 및 지속적 수요에 부응(후속활동 지원 등)

- 세계시민교육 클리어링하우스 다국어판의 지속적 운영·관리 및 세계시민교육 기본 및 심화 원격교육과정 개발·운영,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클리어링하우스 : 유네스코와 공동 개발·운영하는 정보 허브로 총 7개 언어로 운용(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정부가 정한 **중점협력대상 24개국을 중심**으로 **정부-대학 공동협력방식의 교육 ODA지원 확대**

- 대학 간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을 포함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 대학의 전문성 및 역량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유지

○ **타 사업과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정부초청장학생사업(GKS)과 연계하여 선도대학 지원 분야의 교수, 연구인력 등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
- EDCF, KOICA 등 원조기관의 현지 대학 건물 등 기반시설구축 관련 사업과 연계 진행하여 원조의 효과성 제고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업 종료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단에 대해 1~2년 동안 **'후속 지원' 추진**

- 교수요원 역량강화 등 **휴먼웨어(Humanware) 중심 과제**로 추진
- 3차년도 평가 시 **후속지원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종료 이후 최종평가**를 통해 **후속지원 여부 확정**

※ 후속지원은 사업단별 연간 최대 100백만원(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별 차등지원)

※ KOICA 사업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종료 후 종료 평가를 거쳐 후속사업 지원

○ 분야별.기관별로 축적된 다양한 모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화하여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입, 교육한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 제고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무성 확보

○ UN, UNESC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구현을 위하여 사업방식 및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 우리나라 비교우위가 있는 직업교육과 ICT 활용 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노하우 및 저개발국과의 네트워크를 양자로 전환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ODA 기여도를 제고

【UNESCO UNITWIN 사업】

① 한동대학교

○ 개도국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현지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

○ 개도국 빈곤 요인 등 사회경제적 현황 분석, 정책방향 및 해결방안 연구에 한국 대학(원)생 및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

○ 수혜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도국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ICT 및 리더십 교육이 현지에 정착되도록 지원

② 숙명여자대학교

○ 수혜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도국 여성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개발을 위한 ICT 및 리더십 교육이 현지에 정착되도록 지원

○ 거시적 관점에서의 개도국 여성 교육 보급 확대와 여성 경제참여율 향상을 위한 계획 추진

○ 개발협력 로드맵

- 1단계: 사업 이니셔티브 수립
  · 협력국 현황 및 수요에 맞춘 사업 기획 및 시행
  · 민·관·학을 아우르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축적 및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 여학생 대상 ICT·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실시
- 2단계: 여성역량강화 교육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상 지역과 참여 대학 확대
  · 교육 참여 대상 확대: 학생, 교수, 정부관계자, 지역 지도자 등으로 교육 수혜자 확대
  ·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개발(예: 직업역량 강화 교육 운영(ICT 기반 창업 교육)
  · 우수 학생 국내 초청 심화 워크숍 실시 및 국제 경진대회 개최
  · 지속성과 자립성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협력 대학 내 교과목 공동 개설·운영 후 자체 운영 유도)
  · 개도국 내 여성 교육 확대와 국가 경제력 향상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3단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 향상
  · 교육 프로그램의 자체 운영 지원 및 후속조치 시행
  · 참여주체의 사회 진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제고

③ 방송통신대학교

○ 회원기관 간 네트워크 공고화 및 확대 발전을 통해 개도국 내 대학의 원격교육 관련 인적역량 강화

○ 개도국 내 원격교육 발전 수준에 따른 수원국 맞춤형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방안 제시 및 적정기술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로 교육 접근성 제고

○ 세계시민교육 관련 공동과정 개발 통해 개도국 내 세계시민교육 관련 의제 확산에 기여

○ 지속적 평가 및 피드백 적용하여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아프리카 브릿지】

○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다목적·비형식 학습공간인 현지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문해-유아-직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교재인쇄보급, 교사 역량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행 역량강화 촉진

○ 유네스코의 고유한 국제협력 네트워크인 '유네스코국가위원회(수원국 교육부 소속)'와 MOU을 맺어 사업시행주체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ODA 전문인력(한국인)을 동 국가위에 상주 파견하여 국별 교육현황 분석 및 학습수요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수원국과 다자 공동성명(Lilongwe Communique, 2016.2)을 채택하여 교육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8개 전략목표에 합의하고, 각국은 의무적으로 자체 범정부협의체(Bridge National Committee)를 운영하여 정부 차원의 자립성·책무성·지속가능성을 강화

○ (사)글로벌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 개발된 브릿지 아프리카 교육개발 협력 성과지표(2016.9)에 따라, 현지 파견된 ODA 전문인력이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보고하는 체계 구축

○ 수원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채결한 MOU 시한에 따라 재정적/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년(2018-2020)에 걸쳐 점진적 출구전략*을 이행할 계획

* ('18년) 말라위, 레소토 / ('19년) 르완다, 잠비아 / ('20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급별 지도자료 개발·보급 등 **풍부한 인성교육 자원 제공**을 통한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 지원**

○ 교사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

○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범국민적 인성교육 강화 추진** 및 인성교육 질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인성교육 정책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241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805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1,000			
'18	14,075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700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800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314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4,545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870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410	14,075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700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800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314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4,545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870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410	-
'19	13,50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71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337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67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179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4,359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794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393	14,356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700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744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800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4,018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3,694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2,070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330	856
'20	13,00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46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250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39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061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4,198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728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378	12,97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33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79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23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630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3,337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870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298	△30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2,500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21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163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11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2,943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4,036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662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364	12,711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20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0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09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557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3,270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833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292	211
'22			12,584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614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06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702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521 ■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3,237 ■ UNESCO UNITWIN 사업지원 1,815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289	12,584
연평균 증가율 (%)	31.0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4075	14,356	28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0	132	22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7.8	9.1	1.3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이드라인 "다. 기타 사업-<2>ODA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지출내역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3> ③ ODA관련 해외 한국인 채용인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132.7명**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 총 예산액 7억원 / '연구개발' 평균지출액 0.89억원 = 7.9명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 : 총 예산액 27.44억원 / '교육서비스' 평균지출액 0.72억원 = 38.1명 -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국제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분석 제외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총 예산액 40.18억원 / '연구개발' 평균지출액 0.89억원 = 45.1명 -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중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지원 사업,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아프리카 ICT 활동 교육혁신 지원사업, BEAR 2단계 신탁기금은 국제부담금에 해당하므로 분석 제외 · BEAR 1단계 지속성 강화사업 : 총 예산액 3억원 / '연구개발' 평균지출액 0.89억원 = 3.3명 - UNESCO UNITWIN 사업(한동대, 숙대, 방송대) : 총 사업비 20.7억원 / '교육서비스' 평균지출액 0.72억원 = 28.8명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 총 예산액 3.3억원 / '교육서비스' 평균지출액 0.72억원 = 4.5명 ③ ODA관련 해외 한국인 채용인원 : 5명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사업단 현지 PM 채용 5명 **□ 2018년 고용효과 : 110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5조(국가등의 책무)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제3항, 제4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5조 제5항, 9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058호)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5조(법률 제11217호)
- 유엔결의(A/67/437, 2012.12.12.)

  ※ Entrepreneur Education과 경제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 유네스코 아프리카 우선구상(37C/4 중기전략 '14-'21), SDG 교육 목표 및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이행계획(교육 2030)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제4조3항(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

○ 추진경위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 '06년 교육 ODA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시작
- '08년 대학 및 기관 ODA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13.11월 「교육 ODA 활성화 방안』 수립
- '14.6월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15.9월 '제2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16.11월 '제3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17.12월 '제4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 '18.11월 '제5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 '10년 한.몽골 교육과학기술 공동위원회(교과부 제2차관 수석대표, 몽골 울란바토르) 시, 양국 간 교사교류 등 합의 : '10.9.7
- 필리핀 교육부 관계자* 면담 및 교사교류 사업협의 : '11.5월

  * 필리핀 교육부 중등교육과장 등 4명
- 「글로벌교원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수립.시행 : '11.7월
- 스리랑카 교육부 장관, 교과부 장관 면담 및 교사교류 사업 협의 : '11.10.19
-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서울) 시, 한국어교원 파견 합의 : '12.4.24
- 한-인도네시아 양국 교육부 간 교사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협정 체결 : '13.9월
- '12년 한국-몽골.필리핀 교사교류(128명) 및 스리랑카 한국어교원 파견(5명)
- '13년 한국-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 교사교류(120명) 및 스리랑카 한국어교원 파견(4명)
-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 초청, '14년도 교사교류사업 협의

  *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14.4.16～17), 필리핀('14.6.2～3)
- '14년 한국-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교사교류(144명) 및 스리랑카 한국어교원 파견(3명)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분석 연구 : '14.9~12
- 대상국 파견 한국교사 최종성과보고회(SSAEM 컨퍼런스) : '14.12.19
- ODA사업 시행지침('14.11)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14.1.14)에 따라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정책연구 : '15.8~11
- 대상국 파견 한국교사 최종성과보고회(SSAEM 컨퍼런스) : '15.12.10
- 한-태국 교사교류 신규 추진을 위한 한-태국교육부 실무 협의회 개최 : '15.12.21
- '15년 한국-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교사교류(142명) 및 스리랑카 한국어교원 파견(2명)
- 2016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보고회(SSAEM 컨퍼런스) : '16.12.8
- 한-캄보디아 교사교류 신규 추진을 위한 캄보디아 교육부 서한 접수 및 실무협의회 개최 : '16.12.9

- '16년 한국-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6개국 161명 교사교류
- 2017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보고회(SSAEM 컨퍼런스) : '17.12.8
- '17년 한국-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캄보디아 7개국 180명 교사교류
- 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성과보고회(SSAEM 컨퍼런스) : '18.11.29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 '12. 9월, UN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출범

  *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①모든 아동 취학, ②교육의 질향상, ③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3대 목표인 국제 교육이니셔티브

- '13~'15, 한국적 상징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세계교육포럼 의제 개발연구
- '14. 8월, 대한민국 GEFI 핵심지원국 가입 및 GCED 지원 공식화
- '15. 5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인천선언문 채택

※ 2030년까지 교육발전목표를 설정하는 「교육2030」 의제 출범

- '15.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개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 '15. 11월, 유네스코 「교육2030 실행계획」 채택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11.12월)
- '12년도 국제협력선도대학 2개교 선정 및 사업개시('12.5월~)
- 교육 ODA 활성화 방안 수립('13.12월)
- 교육부 ODA 사업 시행지침 수립('14.11월)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선방안 및 2주기 기본계획 수립('15.1월)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3주기 기본계획 수립('18.9월)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 기금사업】

①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 UNESCO 아·태본부는 한-UNESCO 신탁기금을 운용하여 '09년부터 ICT 활용한 교육촉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 Facilitating Effective ICT-pedagogy Integration ('09.10-'12.9)

※ Supporting Competency-based Teacher Training Reforms to Facilitate ICT-Pedagogy Integration('13~'16)

- ICT활용 교원역량강화 사업('13~'16) 종료에 따라 UNESCO 아·태본부 측에서는 동 사업의 우수성과 확산 및 연계 사업제안서 제출('16.2), '17년 ODA 시행계획에 포함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 '12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교육우선구상 이니셔티브에 세계시민교육 강조, '15. 5,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및 인천선언문 채택
- UNESCO 아·태본부 주도 하에 **협력기관***과 공동 역사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동남아 지역 역사교육 **실태 분석** ('13-'14년)

* (관련 협력기관) APCEIU, SEAMEO, AUN

- 한-UNESCO 신탁기금 향후 신규 사업 논의 (방콕, '14.2.10)
- UNESCO 아태본부에서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제안('14.5.17)
- UNESCO 본부와 MOU 체결 ('15.5.6)

③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사업

-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세계 각 국은 자원외교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각종 투자 및 지원 확대 추진 중

※ 중국: 2012-2014, $200억 차관 지원, 일본: 아프리카 5개국 총 580억엔 무상 탕감

- 한국의 ICT 인프라·기술, ICT 활용 교육 및 서비스·콘텐츠 분야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

※ ITU(국제정보통신연합) 국가별 ICT 개발지수에서 세계 1위(2008, 2010, 2011, 2012)

※ UN 전자정부(e-Government) 평가 세계 1위 연속 수상 (2010, 2012, 2014)

※ UNESCO 바레인국왕 ICT 교육상 2회 수상 (2006, 2012)

- UNESCO 측에서 ICT를 활용한 아프리카 교육혁신 지원 사업 제안서 제출('14.5.8)
- 한-UNESCO 업무협약 체결 ('15.5.21)
- 국가별 프로젝트팀 구성('15.9월) 및 사업계획 수립완료('16.5월)

④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2차 사업 (BEAR II Project)

- 한-아프리카 간 외교 및 경제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 대두,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4대구상중 4번째에 포함

※ 아프리카와의 포괄적 협력 방안 발표('16.5, VIP AU 총회 기조연설)

- UNESCO 신탁기금으로 추진된 BEAR I(1차)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아프리카 현지 및 UNESCO 본부에서 2차 BEAR 프로젝트 요청

※ '14년 SADC 장관회의에서 BEAR I 사업 대상국이 아닌 국가들이 BEAR 2차 사업 요청

- BEAR I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 국가들이 기존 경험한 유럽식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비교 시 한국 제도에 대한 경쟁력 확인

- BEAR II Inception Phase 종료, Implementation Phase의 착수 공표 및 해당 단계 사업 실행 전략 구상을 위한 BEAR II Official Launching Ceremony 성공적인 국내 개최

※ UNESCO 본부 관계자, BEAR I, II 참여국 (BEAR I 참여국: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잠비아 / BEAR II 참여국: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우간다) 주요 관계자 약 40여명 초청 ('17.12, 서울)

【UNESCO UNITWIN 사업】

① 한동대학교

- 「유네스코-한동대 협약 체결」

· 한동대 UNESCO UNITWIN 주관 대학 선정('07.4.5)

· 한동대 UNESCO UNITWIN 주관 대학 재선정('17.5.22)

· 한동대 UN Academic Impact 제 5대원칙: 글로벌 허브대학 선정('11)

· 한동대 UN Academic Impact 제 5대원칙: 글로벌 허브대학 재선정('14)

② 숙명여자대학교

- 「유네스코-숙명여대 협약 체결」

· 숙명여대 UNESCO UNITWIN 주관 대학 선정(2014.7)

· 숙명여대 UNESCO 본부 MoU 체결(2015.2.2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유네스코-방송대 협약 체결」

· 방송대 UNESCO UNITWIN 주관 대학 선정 및 UNESCO 본부와 MOU 체결('17.1.19.)

· 방송대 UNESCO UNITWIN 1차 워크컨퍼런스('17.1.19.) 및 2차 워크컨퍼런스('18.1.18.) 개최

· UNESCO-UNITWIN 25주년 성과공유회 참석('17.10.31, 파리 유네스코 본부) 및 유니트윈 네트워크 확대방안 논의

【아프리카 브릿지】

- 유네스코 아프리카 우선구상(유네스코 중기전략 2014-2021),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교육2030) 등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제5조 근거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 청년지역활동가 파견 중심의 시범사업(2010~12, 민관협력) 단계를 거쳐,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 교육개발협력 ODA사업(2013~현재)으로 전환

-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협약 체결」

· 레소토(2010, 2013), 말라위(2010, 2013), 보츠와나(2016), 스와질란드(2016), 잠비아(2010, 2013), 르완다(2010, 2014), 짐바브웨(2010, 2015)

- 「전문직원(Project Manager) 파견협정 체결(2016.2)」

·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잠비아, 르완다

- 「릴롱궤 코뮤니케(브릿지 파트너국 공동성명) 체결(2016.2)」

· 국별 교육전략 연계, 브릿지 국별위원회(범정부협의체) 수립, 브릿지 교육현황보고서 발간 등 8대 프로그램 원칙 합의

※ 릴롱궤 코뮤니케를 포함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2016.2) 보고서는 UNESCO 본부 웹사이트 상에 별도 소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30.9	30.9	29.91	45.41	45.41	42.41	42.41	140.75	140.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6년 불용 사유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 내용을 재검토하여 임차료와 홍보비 등 약 10백만원을 감액하고 1,290백만원을 수시 배정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91** **(29.91)**	0 (0)	0 (0)	29.91 (29.91)	**29.91** **(29.91)**	0 (0)	0 (0)
'16년	**45.41** **(32.41)**	0 (0)	0 (0)	45.41 (32.41)	**45.31** **(32.41)**	0 (0)	0.1 (0)
'17년	**42.41** **(32.41)**	0 (0)	0 (0)	42.41 (32.41)	**42.41** **(32.41)**	0 (0)	0 (0)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1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241	4,241	14,075	-	14,075	11,815	83.9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글로벌교육지원사업) 700백만원 집행
-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2,436백만원 집행
-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사업) 800백만원 집행
-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3,314백만원 집행
-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 2,285백만원 집행
  -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520백만원 집행
  -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515백만원 집행
  -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950백만원 집행
  - (BEAR Ⅰ 지속성 강화 사업) 300백만원
- (UNESCO UNITWIN 사업 지원) 1,870백만원 집행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410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 **(교문위 '15년 예산 검토보고서)**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와 목표가 최근 3년간 동일하므로, 재설정이 필요하여 동 사업의 최종평가 시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에서 수원국의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최종평가 결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추진할 것

⇒ (후속조치)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과제 중 우수 등급 이상 비율 50% 이상으로 성과지표 변경

○ **(교문위 '15년 결산 분석보고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본사업으로 발전시키거나 KOICA 등 타부처 제안사업으로 적극 지원하는 등 연계성과 제고 필요

⇒ (후속조치) 수행결과의 우수성을 높이고 연계강화를 위하여 과제평가시 원조기관 관계자 초빙 및 최종평가를 서면에서 발표평가로 전환

○ **(예정처 '18년 예산 검토보고서)** 캄보디아의 OECD PISA-D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후속조치) 과제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표 변경 추진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 **(예정처 '13년 결산 분석보고서)**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파견 교사급 현직교사 확대, 파견기간 확대)을 통해 실효성 확보 필요

⇒ (후속조치) '13년 현직교사 파견인원(0%→40%) 및 파견기간 (2~3개월→3~4개월) 확대, 참가교사 선발 시 영어구사능력평가 강화 등

○ **(2014 회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다문화부모 비율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필요

⇒ (후속조치) '15년부터 국내 다문화부모 비율이 높은 베트남(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 16.5%)과의 교사교류 추진

○ **(2014 회계 결산 교문위 검토보고서)** 교사교류 예산 편성시 대상국가의 사업수행 역량과 체계 고려 후 교류규모 결정 필요

⇒ (후속조치) 대상국가의 사업수행역량, 적극성, 학기를 적극 고려하여 '15년 교류대상국가, 교류기간 조정 추진

○ **(2015 회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 초청·파견 규모 조정에 대한 적정 상·하한선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파견 인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후속조치) 사업 시작 전 교류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초청·파견 인원이 일대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불가피한 인원 조정 시에도 총 교류인원의 10% 범위 이내에서 조정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 **(교문위 '18년 예산 검토보고서)**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관리비 감액 필요

⇒ (후속조치) 예산 편성 시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관리비 규모 조정 추진

○ 언론기사

· '에티오피아·캄보디아에 한국형대학 학과개설'('13.1.25, 뉴시스)
· '한국형 대학모델 저개발 국가 수출; 교과부, 에티오피아·캄보디아에 교수·행정직원 파견·설비 지원'('13.1.25, 서울경제)
· '이화여대, 캄보디아 왕립프놈펜 대학과 교류사업 본격화'('13.2.15, 한국대학신문)
· 'NYT 소개된 이화여대...캄보디아에 '사회복지'씨앗 뿌리다; 2009년 왕립프놈펜대에 '이화-RUPP' 석사과정 설립'('13.7.18, 한국경제)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캄보디아서 한류 골든벨 개최('13.11.1, 한국대학신문)
· 창원대, 네팔 트리부번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대학원 출범('14.12.31, 머니투데이)
· 창원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 네팔에 한국형 특수교육 모델 전수('15.8.20, 뉴시스)
· 인제대, 스리랑카 간호교육 학사학위 과정 개발('14.12.29, 의협신문)
· 인제대, '좋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스리랑카 교육 역량 강조('15.8.4, 머니투데이)
· 인제대, "한국 덕분에 스리랑카 간호교육 질 높였죠"('16.1.20, 조선일보)
· 창원대, "네팔 특수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17.2.16, Republica)
· 인제대, 세계 최고수준 한국 간호학 학위과정..해외 첫 수출 성공('17.2.14, 중앙일보)
· 영남대, The SDGs,: Youth-oriented action towards poverty alleviation(The Philippine Star, '17.3.7.)
· 인제대, Nursing Faculty set up at Sri Jayawardenepura University(Sunday Observer, '17.7.9.)
· 전북대, 전북대 지원으로 이루어진 버섯 재배 교육 실시(The Farmer, '17.10.30)
· 배재대, 라오스 청년인재 육성 본격화('17.11.6, 문화일보)
· 조선대, 한국의 날 행사 소개 및 전반적 사업진행 상황 보도(NTN 뉴스, 2017.11.2.)

【UNESCO UNITWIN 사업】

○ **(교문위 '14년 결산 검토보고서)** 2014년도에 협약체결대학 확대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실제 집행은 UNITWIN 강화지원 사업 및 기관 공통 운영경비 등 다른 항목으로 사용됨.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추가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주의해야 할 것임

⇒ (후속조치) 예산 집행 시 예산 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하도록 해당 기관에 주지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점검

○ **(17년 유니트윈 사업 자체평가)** 2017년도에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4~16년도 사업내용을 OECD/DAC의 5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추진. 유니트윈 사업의 모든 평가지표가 "성공적" 수준(4.32,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또한 현지 사업수행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현지의 사업수행자와 참여자들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후속조치) 일부 선도사업의 확산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더 체계화, 장기화하고 현지 인프라 및 전문가와의 연계가 필요

【아프리카 브릿지】

○ **(교문위 '14년 결산 검토보고서)** 아프리카 희망브릿지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시 센터 증·개축, 교구 구입 등의 교육환경 개선, 학습효과, 지역사회 기여 등의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로 개선

⇒ (후속조치) 국제개발협력 평가분야 외부 전문기관인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정량/정성지표를 포괄하는 '브릿지 교육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017년부터 매년 브릿지 교육현황 보고서(국/영문) 발간 예정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한-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 선진 각국은 해외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교사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음

- **(미국)** 1961년 '**상호교육문화교류법**'을 제정하면서, 교육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음
- **(독일)** 교사양성과 연수에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다문화 교육이 모든 **교육관련 직업의 연수**에 중점적으로 영역화됨
- **(영국)** 교사들로 하여금 이주 청소년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도록 하기 위한 각종 연수를 받도록 함
- 따라서 한국도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사교류를 체계적, 계획적, 안정적으로 **국제 외교 측면에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UNESCO UNITWIN 사업】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016년 포럼 '여성 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인식 공유

○ 미국 LGL (Let Girls Learn)은 전 세계에서 사춘기 및 청년 여성들(10~24세)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권한 신장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 중

○ UKAid GATE(Girls Access to Education)는 영국의 주도 하에 폭력에 노출되고 교육 기회가 적은 시에라리온의 소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18개월간 시에라리온 전역에서 약 20만명이 수혜

○ 아프리카 The Girl Impact는 아프리카 지역의 여성, 청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플랫폼로 젊은 여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활동

(6) 사업추진절차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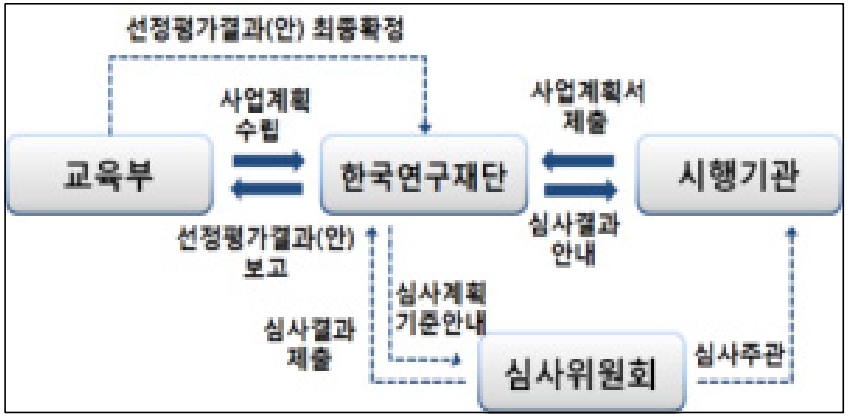

【한-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육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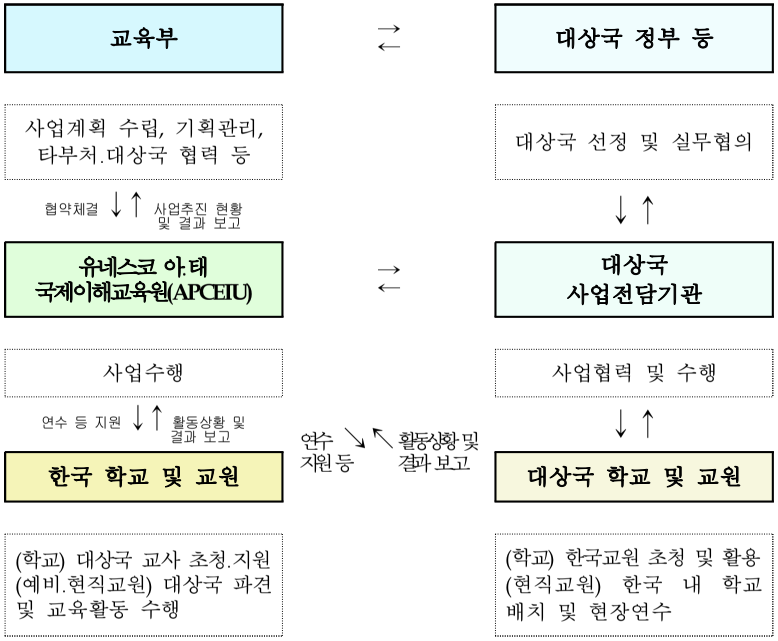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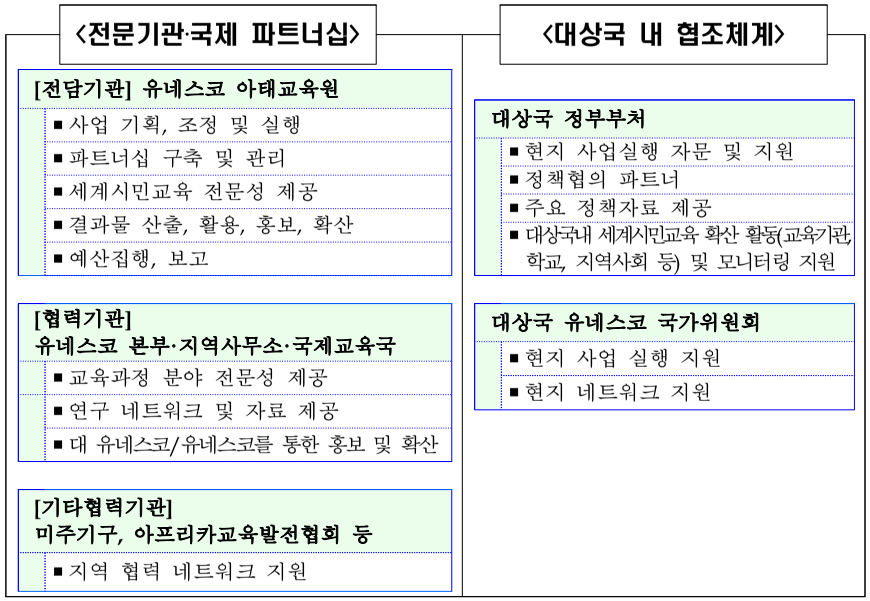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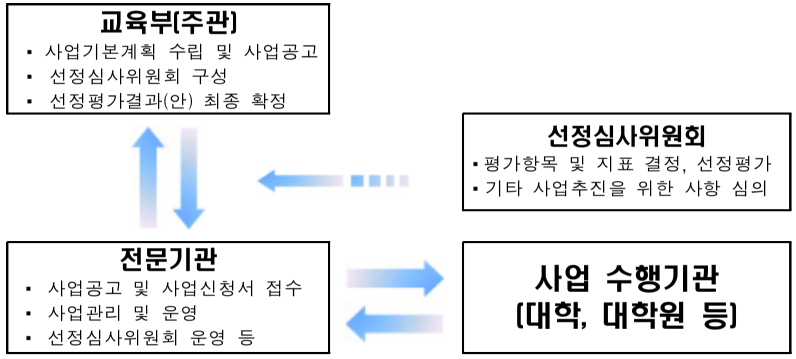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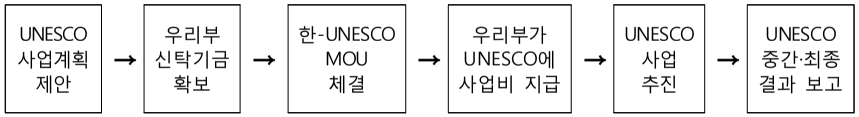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 2차 사업(BEAR Ⅱ Projec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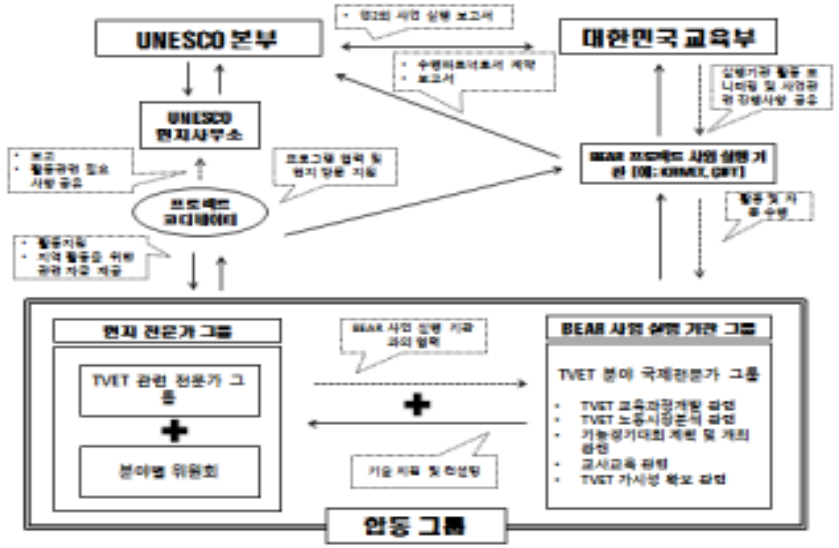

【BEAR Ⅰ 지속성 강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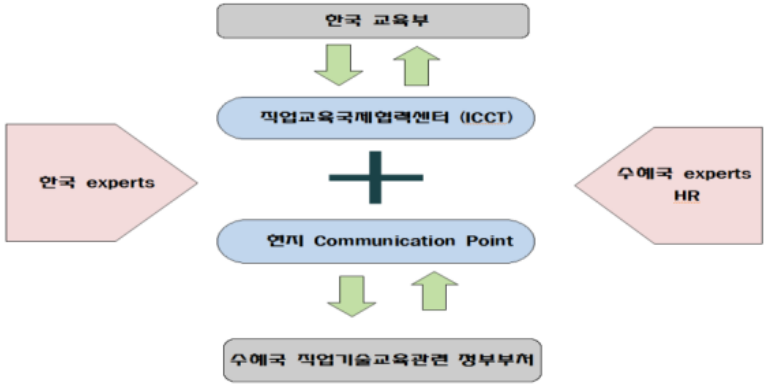

【UNITWIN 사업,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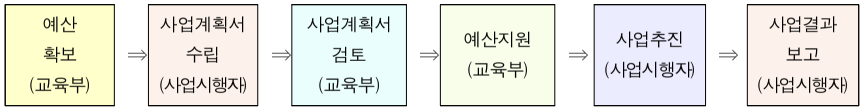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교류 인원 수(명)	목표	144	삭제						
	실적	144							
	달성도	100							
다문화 인식 개선 정도(%)	목표	신규	3.5	3.6	3.7		사업참가자들의 다문화인식 개선 정도	리커트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교류사업 참가 전/후 점수 차 측정 *산식 (만족도) x25	설문평가 분석 (사전/사후 평균 비교)
	실적	-	3.57	3.68	3.78				
	달성도	-	102	102.2	102.1				
개도국 교육원조 수요 발굴 및 모델 개발 건수(개)	목표	7	7	삭제					
	실적	8	8						
	달성도	114	114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과제 수행 중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건수(%)	목표	-	신규	50	63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1.5%p 증가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과제 중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 과제 비율	평가위원회 심의결과/평가결과보고서
	실적	-		61.5					
	달성도	-		123					
개도국 지원 ODA 프로그램 운영 건 수(건)	목표	12	13	18	20		선도대학별 개도국 현지대학대상 지원프로그램 1건 이상 수행	선도대학 연차 보고서 내에 현지 대학 대상 ODA 프로그램 개수	선도대학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 포함)
	실적	12	14	18	-				
	달성도	100	108	100	-				
아프리카지역학 습센터 운영수(곳)	목표	삭제							
	실적								
	달성도								
아프리카지역학 습센터 학습자수(명)	목표	2,580	2,580	삭제					
	실적	2,675	2,675						
	달성도	104	86						
아프리카지역학 습센터 교사역량강화(명)	목표	-	-	220	225		교사 훈련 확대로 예비연수자 수 증가 예상(스와질란드)	교사워크숍 신청자 및 이수자 조사	국별 유네스코국가위 제출자료
	실적	-	-	293	-				
	달성도	-	-	133	-				
프로그램 참가인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목표	74	삭제						
	실적	72							
	달성도	97							
UNITWIN 사업추진 시 1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횟수 (단위: 개)	목표	45	60	삭제					
	실적	67	77						
	달성도	149	128						
UNITWIN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단위: 건)	목표	-	신규	14	14		세부사업 당 1~2건의 보고서 발간	차년도 1월까지 발간된 보고서 반영, 현지와 공동연구 권장	사업수행기관에서 세부사업담당자가 제출
	실적	-	-	17					
	달성도	-	-	121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최근 3년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선정과제 목록
○ (참고 2)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개요
○ (참고 2-1) 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육교류사업 언론기사
○ (참고 3)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개요
○ (참고 4)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요
○ (참고 4-1)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 (참고 4-2)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별 주요 성과
○ (참고 5) 유네스코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개요
○ (참고 6)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증진 1단계 사업 설명자료
○ (참고 6-1)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증진 2단계 사업 설명자료
○ (참고 7)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1단계 사업 설명 자료
○ (참고 7-1)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2단계 사업 설명 자료
○ (참고 8)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개요(BEAR Ⅱ)
○ (참고 9)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개요
○ (참고 9-1)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2017년도 주요성과
○ (참고 9-2) 한동대-UNITWIN 협약 체결 현황
○ (참고 9-3) 2017년 숙명여대 UNESCO UNITWIN 사업 주요 성과
○ (참고 9-4) 방송통신대 UNESCO UNITWIN 사업 주요 성과
○ (참고 10)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개요

참고 1 최근 3년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선정과제 목록

❑ '18년도 과제목록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사업비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520)	네팔의 성인지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0
	라오스 학교 보건담당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요구도 조사	중앙대	50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대학 관광학과 개편 타당성 조사	동아대	50
	인도 직업교육정책 수립 컨설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0
	몽골국립사범대학교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컨텐츠 공동 개발	진주교대	80
	인도네시아 사범대학들의 컴퓨터 기반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콘텐츠 공동 개발·확산	강원대	80
	EBS 수학교육 콘텐츠 기반 베트남 중등 교육 강화	한국교육방송공사	80
	몽골 생명과학대(MULS) 대학원 환경공학전공 기반 구축	인천대	80
교육협력 네트워크(50)	캄보디아의 OECD PISA-D사업 성공적 시행 지원 사업: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KICE	50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100)	제5회 교육 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KEDI	100
합 계(간접비 등 기타사업운영비 포함)			700

❑ '17년도 과제목록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사업비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460)	미얀마 치과대학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서울대	50
	미얀마 국립의대 교육의 질 향상 사업	라파엘 인터내셔널	50
	미얀마 교원대학 설립을 위한 ODA 수요조사	성신여대	50
	말라위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한-말라위 간 교육협력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이화여대	50
	세네갈 시네 살룸 국립대학 현장 맞춤형 농업 교육 역량강화 수요조사	충남대	50
	Center of Excellence(COE) : 한-파키스탄 도시환경센터를 통한 파키스탄 NED 대학 기후국제협력과정 구축	인천대	70
	몽골국립사범대학교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컨텐츠 공동 개발	진주교대	70
	우간다 초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기반 교사교육프로그램	연세대(원주)	70
교육협력 네트워크(50)	캄보디아의 OECD PISA-D사업 성공적 시행 지원 사업: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KICE	50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270)	제4회 교육 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KEDI	100
	교육 ODA 성과 해외 홍보	한국뉴욕주립대	50
	BEAR2 Official Launching Ceremony 개최를 통한 한-아프리카 교육협력관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0
	교육부 ODA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천대	30
	미얀마 교수학습평제도 개선 협력	KICE	50
합 계(간접비 등 기타사업운영비 포함)			805

* 교육부 ODA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위탁연구로 집행

❑ '16년도 과제목록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요 지원내역	주관기관	사업비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550)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사범대학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서울대	60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도시공학 분야 고등교육 모델개발-몽골과학기술대를 시범사례로	서울대	60
	에티오피아 천문우주 첨단 교육협력 수요조사	연세대	60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충남대	60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진료 역량 증진 및 지속성 강화 사업	서울대	77.5
	네팔 팔파지역 감염관리 교육프로젝트(심화)	부산대	77.5
	캄보디아 특수 교육 및 통합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교육협력	공주대	77.5
	지속가능한 기술 실습실 LivingLab 설치와 운영	KAIST	77.5
교육협력 네트워크(50)	캄보디아의 OECD PISA-D사업 성공적 시행 지원 사업: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KICE	50
개발협력 인프라구축 (160)	제3회 교육 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KEDI	100
	개도국 교육협력전략 공동연구 및 컨설팅(동티모르)	한국교원대	60
합 계(간접비 등 기타사업운영비 포함)			805

참고 2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비/기간) 2,744백만원(일반회계, ODA)/'19.1월 ~ 12월(12개월)

○ (내용) 국내 다문화가정 대상국과 우리나라 간 **교사 교류**를 통해 **국내 다문화 이해도 증진, 교류대상국 내 한국이해도 제고**

○ (대상국) 7개국(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참가자 활동) 상대국가 **초·중등학교에 1학기**(3~5개월) **파견**되어 전공 교과 및 자국 문화 소개·다문화 이해 수업, 개별프로젝트 진행

□ 국가별 교류규모

국가	파견		초청		계
	규모	기간	규모	기간	
몽골	12명	3-7월	12명	4-6월	24명
캄보디아	14명	3-7월	14명	4-6월	28명
말레이시아	12명	3-7월	12명	9-11월	24명
태국	14명	3-8월	14명	9-11월	28명
베트남	12명	8-11월	12명	4-6월	24명
필리핀	14명	8-11월	14명	4-6월	28명
인도네시아	12명	8-11월	12명	9-11월	24명
계	**90명**		**90명**		**180명**

※ 국가별 교류 규모, 파견/초청 비율 및 일정은 대상국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 (**파견**) 파견교사 선발(2월/6월) → 출국(3/8월) → 현지 활동(~11월)

○ (**초청**) 국내 배치학교 선정(1~2월) → 국내 활동(3-7월/8-11월)

○ (**성과보고회**) 파견·초청교사 성과보고회(SSAEM Conference, 12월)

참고 2-1 다문화가정 대상국 교육교류사업 언론기사

순	매체명	보도일자	제목
1	투어코리아	17.07.07	'교육 한류' 꿈꾸며 베트남 '응우옌 주' 중학교에서의 90일
2	연합뉴스	17.07.13	캄보디아·필리핀 교사들이 엮은 책 '평화를 향한 여정'
3	중도일보	17.08.16	[다우리 다문화 교육] 세계는 우리 이웃, 세계시민으로 만나요
4	김천내일신문	17.09.19	율곡중, 2017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
5	충청신문	17.11.06	베트남 2개 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
6	한국교육신문	17.11.24	금당초, Happy-I 학습으로 몽골 에르데네트 학교와 교류하다.
7	문화신문	17.12.04	'아시아 7개국과의 교사교류 경험 공유의 장' 5일 개최
8	경기다문화뉴스	17.12.04	다문화이해 교육의 나비 효과?
9	에듀뉴스	18.02.26	대전 화정초,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 교류사업' 대상학교에 3년 연속 선정
10	에듀뉴스	18.03.29	전남 여수미평초, "캄보디아 문화와 교육을 직접 느껴요"
11	학부모뉴스24	18.04.04	울산 언양초, 베트남 교사 2 명 초청 배치
12	충남에듀있슈	18.04.05	베트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문화 이해교육
13	e지역news	18.04.20	충남청양가남초, 베트남 장난감 쭈온쭈온을 아시나요?
14	중부매일	18.04.23	"오늘은 캄보디아 선생님이 수업하는 날"
15	내외뉴스통신	18.04.24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일까?
16	충청일보	18.04.24	보은 세중초, 캄보디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날
17	일요서울	18.05.10	탄현중학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교류 프로그램 7년 연속 운영
18	중도일보	18.05.17	남이초, 글로벌 인재육성 즐거운 베트남어 수업
19	충청신문	18.06.24	청양 가남초, 베트남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정말 즐거웠어요

참고 3 세계시민교육(GCED) 역량강화 2단계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ODA 대상국 내 GCED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개발·제공**) **국가별 경제·교육수준, 인구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GCED 교육과정·교재**를 **개발·제공**('19~'21)

- 4개 권역 4개국*을 지원하여 권역별로 기준 사례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교재를 개발(3개년)

* 2기 대상국(잠정) : (아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케냐, (중남미) 페루, (중동) 레바논

- 1기 대상국가** 내 지속가능한 GCED 이행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활동 지원

** 1기 대상국 : 몽골, 우간다, 캄보디아, 콜롬비아

※ 1기 대상국가의 교육과정개발자 대상 심화워크숍 실시 및 컨설팅 지원

○ (**전문가 육성**) ODA 대상국의 **교사·공무원 등 연수** 및 **GCED 전문가** 육성

- ODA 대상국 교원·교사교육가 대상 전문가 양성 기본 및 심화과정 운영 및 아태지역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아시아·아프리카 등 권역별 심화연수 및 초청 심화연수 과정 개설

- 연수 기참가자들의 지역기반 우수 GCED 후속활동 지원 및 소속 국가 교원들을 위한 후속워크숍 개최

- 청년 주도의 GCED 확산 및 애드보커시 활동을 위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 (**온라인 접근성 확대**) **유네스코 GCED 클리어링하우스 다국어판 및 ODA 대상국 맞춤형 원격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 전세계 GCED 콘텐츠 및 정보를 수집·분류·보급하는 웹기반 플랫폼으로서 **GCED 클리어링하우스 다국어판 운영**

※ 7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운영

- ODA 대상국 환경에 최적화된 GCED 원격교육 교육과정 및 콘텐츠 확대·운영

※ 다국어 원격강좌 및 개도국 대상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과정 개발

참고 4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대학 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현지수요를 반영**한 개도국 개발협력을 통해 **한국형 교육 ODA 모델 발굴.확산** 및 **대학의 ODA 역량 강화**

○ **개도국 대학 내 학과 설치** 지원으로 대학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 개요

○ **국내 대학의 시스템, 자원과 경험** 등을 **개도국 대학에 전수, 개도국 대학 역량 증진**을 통한 「**한국형 교육 ODA 모델**」 **발굴.확산**

○ **'12년 시범사업**으로서 **2개 대학**(이화여대·포항공대)으로 시작하여 **'18년 기준 총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사업단별 연간 약 4억원**씩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국·공·사립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간 컨소시엄 형태
◈ (지원 예산) '18년 33.14억원('17년 40.17억원, '16년 32.17억원)
◈ (지원 내용) 선도대학별 연간 4억원 내외를 4년간 지원
◈ (지원 국가) 중점협력대상국가를 중심으로 선도대학별 1개국 지원
◈ (사업 연계) GKS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 교수요원 역량강화 지원

□ 지원 프로그램 유형

○ 현지 수요를 반영한 개도국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강화 등 ODA 프로그램을 운영

- (필수) 학과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
- (선택) 대학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가능

※ 대학별로 필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

① 학과(또는 단과대학) 구축 및 리모델링 지원 프로그램(필수)

○ 개도국 대학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 구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

- 교육과정 개편, 전담교원 및 행정직원 파견, 기자재 지원 등 **학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 **학과 구축·지원** : 현지 산업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2~4년제 학과 리모델링 또는 신설 지원
- **교육 체제 컨설팅** :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등 교육 인프라 컨설팅
- **인적 자원 제공** : 교수 요원 파견 및 현지 교수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 **물적 자원 제공** : 시설 개보수 교육 기자재 지원 및 활용 지원
- **운영 모델 지원** : 현지 산업체와 연계한 학생 취업 지원 등

○ **정부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 이수 후 본국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궁극적으로 **수원국 대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이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②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선택)

○ 개도국 대학의 역량강화 지원뿐 아니라, **대학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기여(Noblesse Oblige)**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지원

- 기초교육 지원, 대학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ODA 프로그램 지원 가능**

참고 4-1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 현황

구분	국내대학	대상국가	운영 프로그램	
2012 선정	이화여대 *사업종료	캄보디아 (프놈펜 대학)	필수	▪사회복지 석사학위 과정 교과과정 개편 ▪한국어과 교과과정 개편 및 석사학위 개설 ▪환경학과 교육 개선
			자율	▪모두를 위한 교육: 이화사회복지센터 지원 -아동 및 가정지원 서비스, 청소년 한국어 교육
			기관자율	▪캄보디아 개발연구소(CDI) 설립
	포항공대 컨소시엄 *사업종료	에티오피아 (아디마대학)	필수	▪(포항공대) 재료공학과 신설
			자율	▪(부산교대) 수학, 과학 교사역량 강화(지역사회 기여)
2013 선정	인제대 *사업종료	스리랑카 (국립 간호학교)	필수	▪간호교육과정 리모델링(3년제-> 4년제 대학) ▪교수진 역량 강화교육
			자율	▪지역보건의료 역량강화 프로그램 - 학교보건, 모자보건 프로그램 개설 ▪의료정보시스템 확산 프로그램
	영남대 *사업종료	필리핀 (엔드런 칼리지)	필수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신설
			자율	▪교수지원 프로그램 -교수파견, 교수역량강화, 교수법지원, 워크숍개최 ▪영남대-엔드런칼리지 연계프로그램 지원 -진학연계, 방문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2014 선정	가천대 *후속지원	베트남 (국립후에대)	필수	▪간호대학 실무중심 간호교육 역량 강화 ▪정보화교육환경 구축 ▪응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
			자율	▪지역사회 보건교육
	창원대 *후속지원	네팔 (트리부번대)	필수	▪특수교육학과 신설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신설 ▪특수교사 단기양성과정 운영
			자율	▪기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과 후 교실, 장애이해교육프로그램 등
2016 선정	고려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대)	필수	▪환경보건과학과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정개발, 실습기자재지원,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
			자율	▪타슈켄트 지역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서강대	인도네시아 (사나타 다르마대)	필수	▪화학교육학과 신설 - 교수요원양성, 교육과정개발, 기자재지원, 실험실 구축 등
			자율	▪과학센터 설립·운영 - 과학교사 재교육 - 지역 중·고등학교 과학교육 지원
	한국기술 교육대	이집트 (아슈트대)	필수	▪기계 및 전기공학 학과별 교과과정 개편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수역량 강화 ▪실험실습교재 및 강의자료 개발 ▪실험실습실 신설 및 기자재 제공
			자율	▪기업체 애로기술 인력 프로그램 운영 - 기술직원 재교육 - 학생 인턴십

구분	국내대학	대상국가	운영 프로그램	
2017 선정	배재대	라오스 (수파노봉대)	필수	▪ 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 재료공학과 신설 - 재료공학과 교과과정 확립 및 현지 강의 - 실험실 구축 및 장비, 기자재 지원 - 졸업예정자 실습교육 - 교수요원 양성 및 재교육
			자율	▪ 지역 커뮤니티 교육 인프라 구축 - 천연섬유소재 기술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전북대	미얀마 (다곤대)	필수	▪ 다곤대 식물학과 교육 역량 강화 - 교과과정 개편 - 교육여건개선 및 학습역량 강화 - 교수요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다곤대 식물학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연구개발 인프라 개선 - 유용식물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율	▪ 지역사회 대상 유용 식물자원 보존·활용기술보급 - 교육 및 기술지도 - 산업화 지원
	조선대	몽골 (몽골민족대)	필수	▪ 몽골 간호학 및 보건복지전공 교육 역량 강화 - 간호학과 학부 교과과정 개선 및 석사과정 개설 - 보건복지전공 학부 교과과정 개선 - 간호학 및 보건복지 전공 교수역량 강화
			자율	▪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사업 - 말기 암환자 가족 돌봄 교육사업
	연세대	가나 (유하스대)	필수	▪ 유하스대학 보건의료 교육역량 강화 - 교수요원 역량 강화 - 교육과정 개편 - 지역사회 보건의료 실습 교육과정 보완
			자율	▪ 지역보건사업 운영 지원 - CHPS(지역보건기획서비스) 지역사회 진단 및 중재 전략 실행 역량 강화 - 학생들의 볼타지역 대상 현장 실습 - 지역사회 보건인력의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제공
2019 선정	서울대	미얀마 (미얀마치과대)	필수	▪ 미얀마 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 UDM 대학역량 강화 - 우수인재 양성 및 교수요원 역량 강화 - 치과방사선과 신설 및 운영
			자율	▪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 구강보건 전문가 교육
	진주교대	네팔 (카트만두대)	필수	▪ 초등교육학과 개설 - 학과 신설 및 운영지원 - 교수역량 및 예비교사 역량 강화 - 초등교육지원센터 지원
			자율	▪ 지역사회 교사 교육 지원 - 지역사회 초등교사 연수 - 교육봉사 활동 지원 - 지역 초등교육 커뮤니티 운영 지원

참고 4-2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별 주요 성과

기간/예산 (백만원)	국내대학 /해외대학	지원 내용 및 주요성과
'12~'15 /1,818	포항공대 →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	⇒ 에티오피아 최초 재료공학과 신설 ⇒ 입학경쟁률 3:1, 공대 내에서 최상위학점 유지 ⇒ 외부 재정지원 확보(에티오피아 과기부 등)
'12~'17 /1,837	이화여대 →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 사회복지, 한국어, 환경학과 리모델링 ⇒ CDI(캄보디아개발연구원) 개설 ⇒ 본 사업 종료 후 '16년부터 KOICA 사업(사회복지 실무역량 사업)으로 연계·지속
'13~'18 /1,949	인제대 →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	⇒ 국립간호대학 4년제 간호학사과정 정부 승인 획득 ⇒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200억원 투자하여 4년제 간호대설립 확정('16.2.16) 및 추진 ※ '17년 신입생 선발(100명) ⇒ '13년 본 사업을 통해 초청한 교수요원 2명이 인제대 간호석사 학위취득 후 교수 복귀
'13~'16 /1,460	영남대 → 필리핀 엔더런대	⇒ 필리핀 최초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신설 ⇒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MOU 체결 ⇒ 영남대 석사학위 취득 후 복귀한 교수 학과장 임명
'14~'18 /1,718	가천대 → 베트남 후에대	⇒ 베트남 최초 응급의료교육 시스템 구축
'14~'18 /1,840	창원대 → 네팔 트리부번대	⇒ 특수교육학 학부 및 석사과정 신설 ⇒ 사업 성과 네팔 최대 일간지 Kantipur('16.11.4)에 게재
'16~'18 /1,210	서강대 → 인니 사나타달마대학	⇒ 화학교육학과 개설 인도네시아 정부 인가 획득 ('16.12)
'16~'18 /1,185	고려대 → 우즈벡 타슈켄트의대	⇒ 환경보건학과 개설 우즈벡 정부 승인('17.5)
'16~'18 /1,180	한기대 → 이집트 아슈트대	⇒ 최초 산학연계형 공학 교육 모델 개발 추진 ⇒ 현지 진출 기업(삼성, LG)과 산학연계
'17~'18 /800	배재대 → 라오스 수파노봉대	⇒ 라오스 최초 재료공학과 신설 및 정부 인가 획득
'17~'18 /780	전북대 → 미얀마 다곤대	⇒ 미얀마 식물유전자원센터 개소
'17~'18 /800	조선대 → 몽골민족대	⇒ 몽골민족대 간호학과 교육과정 리모델링
'17~'18 /800	연세대 → 가나 유하스대	⇒ 유하스대 3개 단과대학(의과대, 간호대, 보건대) 교육과정 리모델링

※ 관련자료(공식문서 또는 사진 등)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

<전공실험실 구축>

<에티오피아 아다마대학 지원>

<캄보디아 프놈펜대학>

<CDI 개소식>

<2015년 국제학술대회 APISA (the Asian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주최 >

<스리랑카 국립간호대학>

<200억 투입 스리랑카 정부홍보자료(16.05.10.)>

<학사학위 승인 보건부 공문(16.03.24.)>

<필리핀 엔더런대학>

<필리핀 Iloilo, Leyte 주 정부와의 MOU>

<신설학과 출범기념 심포지엄>

<네팔 트리부번대학>

<특수교육학과 학부생>

<특수교사 단기연수>

<베트남 후에대학>

<후에-한라 간호교육센터 개소식>

<미국심장협회 후에대 국제훈련기관 지정 협의>

참고 5 유네스코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유네스코 아·태지역 저개발국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Enhancing National Capacity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in Asia Pacific)
- ○ **수 혜 국 :** 아·태지역 9개국
- ○ **지 원 국 :** 대한민국
- ○ **집행기관 :** 유네스코
- ○ **지원기간 :** 4년 (2017-2020)
- ○ **소요예산 :** 4년간 총 USD 1,500,000 (약 1,725백만원)
- ○ **지원목적 :** 아태 회원국들의 체계적인 교사교육 개발·이행·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추진 경과

○ UNESCO 아·태본부는 한-UNESCO 신탁기금을 운용하여 '09년부터 ICT 활용한 교육촉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 Facilitating Effective ICT-pedagogy Integration('09-'12)

※ Supporting Competency-based Teacher Training Reforms to Facilitate ICT-Pedagogy Integration('13-'16)

○ ICT활용 교원역량강화 사업('13~'16) 종료에 따라 UNESCO 아·태본부 측에서 연계 후속 사업을 제안('16.2)

□ 주요 내용

○ 아태지역회원국들의 ICT활용 교육정책 개발 및 이행 역량 강화

○ 양질의 포괄적인 학습기회 증진을 위한 교원 훈련 및 전문성 향상

□ 기대 효과

○ 한국의 우수한 ICT 활용 교수법 및 정책사례를 아·태지역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아태 권역 내 네트워크를 확대

○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활용한 ICT활용 교육분야 ODA 사업이 'IT 강국'으로 각인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결합되어 對 UNESCO 사업의 가시성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교육외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참고 6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증진 1단계 사업 설명자료

1. 사업 개요

□ **(목적)** 교육을 통해 문화와 언어가 상이한 아태지역의 지역통합 및 소통 증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ODA를 통한 한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 **(법적 근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제4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헌장(조약 제26호), 한-유네스코 사업협력 양해각서

□ **(내용)** 세계시민교육(GCED)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및 동남아시아 공동역사(Shared History) 교육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

□ **(기간 및 예산)** 총 4년('15년~'18년)

(단위 : 한화 백만원, 미화 천불)

연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한화)	2,259	428	684	632	515
예산(미화)	2,035	400	625	550	460

2. 사업 내용

□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사업**(Preparing Teachers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아태지역 3개 권역 총 **9개국*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 교수 학습 자료 공유**

* 남아시아(부탄, 인도, 스리랑카), 동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 대상국의 교과 과정을 조사·분석하여 세계시민교육이 관련 정책 및 교육 내용, 교육 방법론에 포함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공유(Mapping)

- 지역별 전문가 포럼 및 GCED 온라인 포럼을 구축하여 교사와 교육전문가 간의 지식 공유를 활성화

○ **교사 및 예비 교원, 교육전문가를 대상 연수 및 세미나 개최**

-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사 및 예비 교원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 실시
-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한 GCED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국의 교육과정·정책에 GCED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역사 교육**(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 역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참고자료·매뉴얼·소프트웨어 등 교수·학습 교재 개발**

- 역사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교재개발팀을 구성**하여 그동안 사용한 **역사 교과서 및 교재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 3종류의 교육 모듈 및 영문 교재 개발**
- 국가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교재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교과과정(교육내용, 대상 학년, 교육기간, 언어 등)에 맞춘 **현지화 작업 시행**

○ 개발한 공동역사 **교재 보급 및 시범 활용·평가**

- 교재 공유·보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개발 및 교재 내용의 지도 방법 연수를 위한 각국의 교원훈련 기관과 협력
- 개발한 교재의 시범 활용(Pilot Test)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가르칠 역사교사를 선발하여 교재 내용 및 지도 방법을 연수
-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활용 후 평가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

참고 6-1 아태지역 소통과 통합증진 2단계 사업 설명자료

- ○ **사 업 명 :** 아태지역의 소통과 통합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 ○ **수 혜 국 :** 아태지역 9개국 대상
- ○ **지 원 국 :** 대한민국
- ○ **집행기관 :** UNESCO 아태본부
- ○ **지원기간 :** 4년 (2019-2022)
- ○ **소요예산 :** 4년간 총 USD 500,000 (약 550백만원)
- ○ **사업내용 :** 교사 교직 이수자의 세계시민교육 이해 및 수업 역량 증진,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 배경

○ 아태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우리기업의 아태지역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와 아태지역간의 **경제·기술적 관계**도 **더 긴밀**해지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은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아직 **매우 제한적**이며, **적극적인 ODA를 통한 영향력 확대 필요**

□ 주요 내용

○ 세계시민교육(GCED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 방법 모색**, 교실 수업 개선 사례 발굴 및 확산

○ GCED에 **효과적 교실 수업** 및 **학습 결과 평가** 방안 검토

○ **STEM 포함 기존 GCED 미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교실수업 개선** 및 **교사역량 강화 추진**

○ **교사교육기관** 및 **교직 이수자** 대상 **GCED 이해 제고** 및 **수업 능력 향상**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교사역량 강화,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변화로 세계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한 **아태지역 내 소통과 통합 증진에 기여**

참고 7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1단계 사업 설명 자료

1. 사업 개요

□ **(목적)** ICT를 활용한 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해 아프리카 3개국(르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교육발전에 기여

□ **(내용)** ICT 기반 초.중등 시범학교 운영, 콘텐츠 개발 및 교원 연수, 고등교육 ODL 역량 강화, 교육분야 ICT 정책 수립 지원 등

□ **(기간 및 예산)** 총 4년('15.7.1.~'19.6.30.)

(단위 : 한화 백만원, 미화 천불)

연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한화)	6,813	1,876	2,377	1,610	950
예산(미화)	6,167	1,753	2,174	1,400	840

2. [국가별] 사업 내용

□ **르완다**

○ 예비/현직교원의 **ICT 활용역량 제고** 및 **e-평가시스템 개발과 활용연수**를 통해 **양질의 수업 제공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 ICT 활용 교원연수 수료기준 및 지역실정에 맞는 연수 콘텐츠 개발
- 2016년 시행 새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기존 지필 검사를 온라인 평가로 대체하기 위해 **e-평가시스템 도입 및 교원연수 추진**

○ 르완다 국립대의 역량 강화를 통해 **ODeL**(Open and Distance e-Learning) **강좌를 활용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르완다 국립대 교직원의 ODeL 콘텐츠 개발 및 강의활용 역량 강화
- 개발된 ODeL 콘텐츠의 시범적용, 검증, 수정 및 제도화 추진

○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 건설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교육분야 ICT 정책의 논의·조정을 위한 작업그룹(Working Group) 구성·운영

- 지식사회 조성 관련 정책 핸드북 개발 및 정책입안자 역량강화

□ **모잠비크**

○ 모잠비크 실정에 맞는 **e-스쿨 모델 설계 및 시범운영**(교원연수 포함)

- e-스쿨 모델 설계 및 시범학교(22개교) 선정・운영
- e-스쿨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 효과적 거버넌스 확립 등을 위해 **모바일 기반 교육행정정보시스템(EMIS) 도입**

- EMIS 시스템 설계 및 55개 초・중교 시범운영(교직원 연수 포함)

○ **교원 양성・연수기관(IEDA, TTI)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강의역량 강화,** 교원 연수용 **ODL 콘텐츠 개발** 지원

○ **정책개발 및 지식공유 촉진**

- 교육 분야의 새로운 ICT 정책 개발 및 관련 국가정책 업데이트
- 교육분야 ICT 교류그룹 구성 및 정책개발팀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수준의 IFAP* 위원회 구성・운영

* IFAP(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 정보 및 지식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네스코 사업

□ **짐바브웨**

○ 새 교육과정(2015-2022)에 부합하는 **e-스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 e-스쿨 모델 설계 및 시범운영(20개교)
- 교원 연수용 모듈(Training Modules) 개발 및 교원 연수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ICT 기반 **교수・학습자료 개발역량 강화** 및 I교원의 ICT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모듈 개발

- 혁신적인 ICT의 교육적 활용 모델 설계・개발 및 시범적용
- 현직교원 연수용 온라인 코스(온라인 평가 포함) 개발 및 시범적용

○ 교육 분야에서 **ICT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환경 구축**

- 고등교육 분야 ICT 정책 개발 및 시행
- 청년층의 모바일 앱, 교육용 애니/게임 개발 역량 배양
- 관련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국가수준의 IFAP 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 사업 성과**

○ '16.3월(3.22-30) 국가별 수요조사 실시 및 '16.5월(5.16-18) 국가별 세부계획(안) 검증을 위한 워크숍 개최 (Harare, 짐바브웨)

○ '16.9월(9.26 ~ 9.30), **KERIS/방송통신대 주관**으로 ICT 기반 시범학교 운영과 ODL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3개국 정책담당자(9명) 초청연수** 실시

○ '18.1월(1.24 ~ 1.26),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유네스코 주관 3개국 공동워크숍 개최**(르완다)

<국가별 세부계획 검증 워크숍('16.5월)>

<3개국 공동 워크숍('18.1월)>

참고 7-1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2단계 사업 설명 자료

- ○ **사 업 명 :**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2단계 사업 (ICT Transforming Education in Africa II)
- ○ **수 혜 국 : 아프리카 3개국**
- ○ **지 원 국 :** 대한민국
- ○ **집행기관 :** 유네스코
- ○ **지원기간 :** 4년 (2019-2023)
- ○ **소요예산 :** 4년간 총 USD 2,000,000 (약 2,200백만원)
- ○ **지원목적 :** ICT 기술 활용한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 정보화 정책 지원

□ 추진 경과

○ 유네스코로부터 2단계 사업 제안서 접수('18.4월)

- 1단계 사업이 '19.6월 종료됨에 따라 신규로 아프리카 4개국을 선정하여 4년간 ICT를 활용한 교육혁신을 지원할 것을 제안

○ 2019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및 외교부 심의('18.3월 ~ 5월)

□ 주요 내용

○ 수원대상국(잠정) : 3개국* * 가나,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중 최종 선정

○ ICT(모바일 포함) 활용 교육으로 초·중등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질 제고

- ICT의 혁신적 활용모델(시범학교 운영 포함) 개발 및 교육행정 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 지원
-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원의 ICT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

○ 공개원격학습(ODL : Open Distance Learning) 활용 고등교육 시스템 강화

- 교직원의 ODL 콘텐츠 개발 및 강의활용 역량 강화, ODL 콘텐츠 개발 지원

○ 교육분야 ICT 정책 및 마스터플랜 수립(업데이트 포함) 지원

○ ICT 활용 우수 교육사례 발굴·확산 및 국가 간 상호학습 촉진

□ 기대 효과

○ 한국의 ICT 활용 교육 노하우와 1단계 사업시행 경험을 토대로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ICT 교육 분야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유네스코 내 한국의 위상 제고

참고 8 아프리카 저개발국 직업기술교육 지원사업 개요(BEAR II)

- ○ **사 업 명 :**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훈련 지원사업 II (BEAR II :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II)
- ○ **수혜국 : 아프리카 5개국**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 ○ **지원국 :** 대한민국
- ○ **집행기관 :** UNESCO 본부
- ○ **지원기간 :** 5년 (2016~2020)
- ○ **소요예산 :** 5년 간 총 USD 10,000,000 (약 120억 원)
- ○ **지원목적 :**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개선을 지원

□ 추진 경과

○ 한-UNESCO 신탁기금으로 추진된 BEAR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아프리카 현지 및 UNESCO에서 BEAR 2단계 사업 요청

○ '14년 SADC 장관회의 시 BEAR 1단계 사업 대상국 아닌 국가들이 BEAR 2단계 사업 지원 요청

○ '14.9월 UNESCO 본부의 BEAR 1단계 사업 중간평가 결과 긍정적 반응 얻음

□ 2단계 주요 내용

○ **(교육과정 개발)** 국가별 노동시장분석에 기반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 **(교원 연수)** 직업교육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기능인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위상 제고

□ 기대 효과

○ BEAR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對 아프리카 교육ODA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신뢰 외교의 발판 구축 가능

○ UNESCO 본부와의 협력 통해 국내 개발협력인력 역량 강화 및 한국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 가능성 증대

○ 국내의 개발협력 관련 기관이 사업수행에 참여함으로써, 동 유관기관들의 국제협력사업 관리·운영 능력 향상

참고 9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개요

❑ UNITWIN 개요

○ UNITWIN(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은 1992년 UNESCO 제26차 총회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이 교류와 연합을 통해 UNESCO 이상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 UNESCO는 다양한 분야에서 UNITWIN 주관대학을 지정하여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 훈련, 프로그램 개발 향상을 추진하며, 주관대학별로 담당 분야가 상이

※ UNITWIN 주관대학 선정 기회는 전세계 모든 대학에 공개되어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델란드 등의 국가에서 중앙정부 예산 중 UNITWIN 주관대학 활동 지원 예산 편성

○ 현재 총 44개의 UNITWIN 주관대학이 선정되어 운영

❑ 추진경과

○ **(한동대학교)** 2007년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역량강화'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한국최초의 UNITWIN 주관대학)

- 2017년 기준 28개국 58개 대학 및 13개 기관들과 UNITWIN 협약체결

○ **(숙명여대)** 2014년 'ICT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한 여성역량강화'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

- 2017년 기준 7개국 11개 대학과 UNITWIN 협약 체결

○ **(방송통신대)** 2017년 원격고등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

- 2018년 기준 4개국 4개 대학 및 기관들과 UNITWIN 협약 체결

❑ 사업내용

○ **(한동대학교)** 국제기업가정신훈련사업, 개도국 대학의 지역공동체 개발역량 강화사업, 개도국 대학의 창업아이템발굴 및 기술개발역량 강화사업, 개도국 대학의 도시환경개선역량 강화사업, 개도국 대학의 교육자료 축적 및 공개사업, 개도국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사업, UNESCO UNITWIN 지원강화사업

○ **(숙명여자대학교)** 개도국 여성 ICT 역량 강화 사업, 개도국 여성 리더십 교육 사업, UNITWIN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방송통신대학교)** 개도국 원격교육시스템 리모델링지원사업, 개도국 원격대학설립 지원사업,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사업, 개도국 이러닝 교육환경 선진화지원사업, 온라인 콘텐츠 공동개발사업

참고 9-1 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 2017년도 주요성과

❑ 주요성과

○ 2017년 유네스코 UNITWIN 사업을 통해 **총 82개의 단기훈련** 시행, **약 3,838명의 개도국 교수, 대학(원)생, 정책담당자, 공무원, 지역 리더** 등에게 고등교육 혜택 수여

○ 베트남, 짐바브웨에서 **국제기업가정신 훈련** 각 1회 개최

○ 개발도상국 협력대학 교원의 강의 콘텐츠 **총 10개국 107명의 교수, 160개 강의 콘텐츠 수집**(강의노트 113개, 동영상 강의 47개)

○ **우간다, 탄자니아 대학과 적정기술 기반 기업가정신 훈련 총 5회 개최** 및 **적정기술 관련 콘텐츠 3건** 개발*

* 탄자니아 UAUT 대학 :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충전지 컨트롤러

* 우간다 KUMI 대학 : 땅콩 껍질 활용 숯 제조 및 숯 성형기 연구, 크라우딩 펀딩 시스템 도입

○ 2017년 아프리카 교육부장관회의(ADEA)에서 아프리카 대륙권 국가의 교육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들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에게 UNESCO UNITWIN 사업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협력 성과를 설명

○ 국내 UNESCO UNITWIN 주관대학 간 협력 하에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협력 전략" 세미나(박주선 국회부의장실, 유성엽 교문위원장실, 안민석 의원실, 한동대 및 숙명여대 공동주최, 교육부 후원) 개최를 통해 개발도상국 협력대학과 사업성과를 공유,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알림

○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공동교육과정 협력대상 국가의 고등교육관계자(대학교수, 교육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내 관련 분야(경영, 기술, 법 등)에 고등교육의 현황과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 신기술과 경영기법 등에 대한 강의와 견학 프로그램 제공

참고 9-2 한동대-UNITWIN 협약 체결 현황(28개국 58개 대학, 13개 기관)

※ 주요활동대학: 11개 국가의 19개 대학 및 2개 기관(표내 **굵은 글씨**로 표시)

대 륙	번호	국 가	기관유형	기 관 명
동남아시아 (33)	1	캄보디아 (10)	대학	**Pannasastra University of Cambodia**
	2		대학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3		대학	**Royal University of Law and Economics**
	4		대학	**New International Bethany Institute**
	5		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Management**
	6		대학	Life University
	7		대학	NPIC
	8		NGO	**Goel community**
	9		NGO	Farmer Livelihood Development
	10		NGO	Kundamlay
	11	네 팔 (7)	대학	**Agricultural and Forestry University**
	12		대학	**Tribhuvan University**
	13		대학	Ace Management University
	14		대학	Pokhara University
	15		대학	Kathmandu Engineering College
	16		NGO	Fair Trade Group Nepal
	17		NGO	Community Health Evangelism Nepal
	18	미얀마 (3)	대학	Myanmar Institute of Theology
	19		대학	**University of Computer Studies, Yangon**
	20		대학	**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21	베트남 (8)	대학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2		대학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
	23		대학	호치민산업대학
	24		대학	Hanoi University of Business and Technology
	25		대학	다낭 한베IT대학
	26		대학	Saigon Tech University
	27		대학	**Banking Academy of Vietnam**
	28		대학	**Nguyen Tat Thanh University**
	29	라오스(1)	대학	**라오스 국립대학교**
	30	태 국(2)	대학	치앙마이대학
	31		대학	아시아대학
	32	인 도(1)	대학	파트나공과대학
	33	말레이시아(1)	대학	USCI 대학
동북아시아 (8)	34	중 국(2)	대학	대련대학
	35		대학	Changchun University of Technology
	36	러시아(1)	대학	세인트피터스버그대학
	37	몽 골(5)	대학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38		기업	자크은행
	39		기업	칸은행

대 륙	번호	국 가	기관유형	기 관 명
	40		정부부처	Ministry of Labor
	41		대학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중앙아시아 (7)	42	우즈베키스탄 (5)	정부부처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43		대학	**Scientific and Educational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전, Higher School of Business of Uzbek)
	44		연구기관	ISTEDOD
	45		대학	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
	46		대학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search, Tashkent States University of Economics
	47	키르키즈스탄(1)	대학	키르키즈 경제대학
	48	아프가니스탄(1)	대학	칸다하르대학
아프리카 (16)	49	가 나(1)	대학	**Methodist University College Ghana**
	50	케 냐(1)	대학	St.Paul University
	51	나이지리아(1)	대학	Federal University Oye-Ekiti
	52	짐바브웨(1)	대학	**Harare Institute of Technology**
	53	르완다(4)	대학	Kigali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54		대학	School of Finance & Banking
	55		대학	ISAE 농과대학
	56		연구기관	Integrated Polytechnic Regional Centre Kigali
	57	탄자니아(2)	대학	Afric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8		대학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59	우간다(1)	대학	**KUMI University**
	60	말라위(3)	NGO	Africa Child Mission
	61		대학	Daeyang College of Nursing, Daeyang University
	62		NGO	Miracle for Africa
	63	에티오피아(2)	대학	Addis Ababa University(아디스아바바 대학)
	64		대학	Addis Ababa Institute of Technology(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
남미 (5)	65	페 루(3)	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Saint Augustine**
	66		대학	The Amazon Intercultural National University
	67		대학	Universidad Catolica San Pablo
	68	코스타리카(1)	대학	코스타리카대학
	69	과테말라(1)	대학	마리아노 갈베스대학
※ 한동대 유니트윈 협약 체결 선진국 주요 대학 (사업수행에 협력)				
북미(1)	70	미 국(1)	대학	Taylor University (현지교육 협력)
동아시아 (1)	71	일 본(1)	대학	J.F.Oberlin대학 (UNESCO 활동 관련 협력)

참고 9-3 2017년 숙명여대 UNESCO UNITWIN 사업 주요 성과

❑ 2017 숙명여대 유니트윈 사업 요약

○ 약 574명의 개도국 공무원, 교수, 대학생 및 지역 지도자 등의 교육 지원 수혜자 배출

○ 협력대학 내 ICT교과목 공동 운영(정규 교과목 편성, 2학점 부여)

○ ICT 심화 워크숍 및 국제ICT경진대회 개최

○ 블렌디드 러닝 플랫폼(www.unitwin.org)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 및 교육 자료 공유

❑ 주요성과

○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과 공동 ICT와 리더십 연구 실시로 현지 현황 및 수요 파악(보고서 발간)

○ '17. 5월, 협력국 정부 및 대학관계자 24명 국내 초청 워크숍 및 UNITWIN 주관대학 공동 세미나 개최(국회의원 및 주한 에티오피아 공사,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정부부처 및 대학관계자 등 총 32명 참석)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의 협력대학에서 현지교육 실시로 현지학생 및 대학 관계자 약 485명의 역량 강화에 기여

○ 현지교육 우수 수료자 대상 ICT 심화 워크숍 및 국제ICT경진대회 개최

○ ICT 공동교과목(Programming for everyone) 협력대학 내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2학점 부여)

○ 블렌디드 러닝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지원과 교육자료 공유

○ '17년도 사업 대상국가(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및 유네스코 담당자와 협력관계 구축

- '17. 1월, UNESCO 본부 평생교육정책국 David Atchoarena 국장 면담
- '17. 11월, 라오스 교육체육부 Sengdeuane Lachanthaboune 장관 및 부처 관계자 면담
- '18. 1월,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주아세한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및 관계자 면담

❑ 협약체결(7개국 11개 대학과 유니트윈 협약체결)

대 륙	번호	국 가	기 관 명
아시아	1	캄보디아	Life University
	2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3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 (UPH)
	4		Universitas Nasional (UNAS)
	5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UPI)
	6		Universitas Gadjah Mada (UGM)
	7	라오스	Souphanouvong University
	8	몽골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9	태국	Chiang Mai University
	10	베트남	Quy Non University
아프리카	11	모로코	Group ISCAE

참고 9-4 방송통신대 UNESCO UNITWIN 사업 주요 성과

❑ 방송대 UNITWIN 강점

○ **고등 원격교육 압축 성장모델**로 방송대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 지대

- 원격교육 노하우 중 하나인 교재, 카세트, CD, 인터넷, 모바일 등의 **교육 매체** 경험을 가진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으로 개도국 맞춤형 원격교육 모델 제시 가능 등

- 특히, 한국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인 **ICT 활용 교육 분야 접목** 가능 : 온오프라인 활용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 **국제기구 교육컨설팅 참여 전문가 집단 보유**

(※ 유네스코 본부의 ICT 교육혁신 관련 컨설팅 요청에 방송대 교직원, 연구원 등 참여)

요청기관	일자	파견국가	파견 내역
유네스코 본부	2015.9	이집트	UNESCO 주도 이집트 고등 및 원격교육 체계 진단 전문가 파견
	2015.10	프랑스	UNESCO-KFIT(한국신탁기금) Kick-off Meeting 전문가 파견
	2016.4	짐바브웨, 모잠비크	UNESCO-KFIT(한국신탁기금) Need Assessment 전문가 파견
	2016.5	짐바브웨	UNESCO-KFIT(한국신탁기금) 실행계획 워크숍 전문가 파견
	2017.8	모잠비크	UNESCO-KFIT(한국신탁기금) 모잠비크 원격교육 전문가 파견

❑ 주요 성과

○ 국제 경험 풍부

사업명	사업기간	파견 내역
한국국제협력단 국별 연수	2014~2016 (총 3년)	- DR콩고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교수진, 교육공학자 대상 'DR콩고 맞춤형 원격교육모델 전수'연수 진행 - DR콩고 현지확산 세미나 진행(2016.4.)
UNESCO-KFIT (한국신탁기금)사업	2016~현재	- 원격교육 및 OER 부문 UNESCO Study Tour 진행(2016.9.) - 對 아프리카 ICT 교육컨설팅 참여(방송대 교수진 외)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 총회 참석 및 사례 발표	2017.3.	'한국 고등원격교육 협력사례의 성과와 시사점'발표 및 협력파트너인 DR콩고 교수초청을 통한 방송대 원격교육모델 성과 공유

○ 협력관계 구축

항목	일자·장소	내용
UNESCO UNITWIN 워크샵 개최	2015.2.26. 서울	- 주제 : Past and Future Roles of OU in Higher Education : Development Strategies in Asia - 참석자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전문가, 상하이개방대 부총장, 몽골국립대 총장, 스리랑카 개방대 부총장, 교육부 국장 등
상하이개방대학주최 UNESCO UNITWIN 성과 보고회 참석	2016.11. 상해	- UNESCO UNITWIN 사업 운영노하우 벤치마킹 및 정보수집
제1차 UNESCO UNITWIN Work Conference 개최	2017.1.17. 서울	- 주제 :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Distance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 UNESCO UNITWIN 네트워크 회원교 간 협약 체결 및 향후 활동계획 논의 통한 사업 구체화
UNESCO UNITWIN 25주년 성과공유회 참석	2017.10.31. 파리	- UNITWIN 사업 관련 인적교류 및 정보공유
제2차 UNESCO UNITWIN Work Conference 개최	2018.1.18. 서울	- 주제 :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Delivery Methods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 신규 회원기관(몽골과기대) 환영 - 회원기관 간 중장기 공동프로젝트 논의
UNESCO UNITWIN 네트워크 회원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계속	- 아태이해교육원, 몽골과기대, 하노이개방대, 말레이시아개방대, 방송대 5개교 공동교육과정 개발 진행 중

❑ 방송대-UNITWIN 협약 체결 현황

○ 4개국 4개 대학 및 기관과 유니트윈 협약 체결

대 륙	번호	국 가	기 관 명
아시아	1	말레이시아	Open University Malaysia
	2	베트남	Hanoi Open University
	3	몽골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4	한국	아시아태평양이해교육원

참고 10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프리카 브릿지**

○ **수 혜 국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개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 **지 원 국 :** 대한민국

○ **집행기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지원기간 :** 8년 (2013~2020)

○ **소요예산 :** 8년간 총 USD 3,200,000 (약 37억 원)

○ **지원목적 :** 아프리카 저개발국 교육소외계층 기초교육 역량강화 및 교재 인쇄보급, 교사 역량강화

□ 추진 경과

○ 청년지역활동가 파견 중심의 민관협력 시범사업(2010-2012) 단계를 거쳐, 한-아프리카 교육개발협력 ODA사업(2013-현재)으로 전환

○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업무협약 체결('10,'13,'15,'16)

-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 상기 아프리카 6개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전문직원 파견협정 체결('16)

○ 릴롱궤 코뮤니케(브릿지 파트너국 공동성명) 체결('16.2)

- 브릿지의 지역주민 기초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UNESCO 본부 및 각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

※ UNESCO 본부(교육사무총장보 Mr. Qian Tang 서신, 2016.2.1)

· 아프리카 브릿지 사업은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극적인 발전의 열쇠인 교육을 타국과 공유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바로 구체화한 것"이라 평가하고,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아프리카의 유아, 청소년,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증진하는 대표적인 남남협력 모델로 평가

※ 말라위(사회복지부 장관 Ms. Patricia Kaliati, 2016.2.16)

· 지역공동체(community) 단위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을 높게 평가

※ 르완다(기초교육부 장관 Mr. Olivier Rwamukwaya, 2016.2.23)

·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레벨에서 접근하는 브릿지 사업의 교육적 시도에 크게 공감

□ 주요 내용

○ (교육접근성 확대) 다목적·비형식 지역학습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소외계층 대상 기초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의 질 향상) 문해·유아·직업훈련 분야 교재 인쇄보급 및 교사 양성

○ (자립역량 강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및 커뮤니티 리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 기대 효과

○ 아프리카 교육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혜국의 자립역량 강화 (연간 학습수혜자 : 약 3,000명, 교재인쇄보급 : 약 20,000권, 교사 연수 : 약 200명, 자립역량강화 연수 : 약 100명)

○ 한-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공동명의 브릿지 교육현황 보고서(국/영문) 발간을 통해, 對UNESCO 교육 외교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 4번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성과 홍보

○ 전문직원의 아프리카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교육부 내) 상주파견 체제 정착으로 아프리카 지역전문가 육성 및 한국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 가능성 확대

[4500]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500]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831**	**90,858**	**90,787**	**△71**
[4503]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일반회계)	-	7,232	7,533	301
[100] 국립국제교육원 인건비	-	5,801	6,052	251
[200]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대상)	-	651	670	19
[250] 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	780	811	31
[4531]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일반회계)	1832	76,277	76,036	△241
[300]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ODA)	1832	59,244	59,067	△177
[301] 학생 교육교류 지원	1862	13,053	12,302	△751
[302] 특수 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1884	3,180	3,477	297
[303]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1897	0	208	208
[304] 재외동포 초청교육	1908	800	982	182
[4532]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일반회계)	1927	7,349	7,218	△131
[300] 영어교육센터지원	1927	809	891	82
[301]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	1944	6,540	6,327	△213

[300]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사업(재량, 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	58,187	59,244	59,067	**△177**	**△0.3**
- Global Korea Scholarship	51,828	51,941	52,953	**1,012**	**1.9**
- 교원해외진출사업	6,359	7,303	6,114	**△1,189**	**△16.3**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500 - 4531 - 300
* 담 당 자 : 글로벌인재양성부장(박승철), 정부초청장학팀장(이동훈), 주무관(유미영)
  국제교류협력부장(라은종), 교육교류협력팀장(박상준), 주무관(김창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6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Global Korea Scholarship : 4,183명, 52,953백만원 · 주요내용 : 장학생 생활비, 등록금, 어학연수비, 항공료 등 ○ 교원해외진출사업 : 260명, 6,114백만원 · 주요내용 : 항공료, 체재비, 지원금, 사전 연수, 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Global Korea Scholarship(외국인) 사업비 : 52,953백만원 >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 48,626백만원

■ 사업내용

- 목　　적 :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도상국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 양성
- 지원대상 : 전 세계 150여개국으로부터 초청한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 장학생 연간 총 3천여 명
- 내　　용 : 장학금 지원*, 대학담당자 워크숍 실시, 성적 우수자 시상, GKS위원회, 졸업생 동문회 관리 및 지원 등

* 생활비(월 80~90만원), 등록금(학기당 500만원 한도), 어학연수비(분기별 80만원), 연구비(학기당 21~24만원), 보험료(월 2만원), 항공료(실비) 등

- 지원기간 : 한국어과정 1년 연수 후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및 석사 2년, 박사 3년

■ 산출내역

- GKS 위원회 운영 : 3백만원
- 장학생 선발 및 홍보 경비 : 156백만원
- 신규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등 : 120백만원
- 장학생 귀국환송회 운영 경비 : 8백만원
- 장학생 동문회 및 동문초청연수 등 동문 활동지원 : 169백만원
- 뉴스레터 및 각종 안내책자 제작 및 발송 등 : 65백만원
- 수학대학 담당자 워크숍 : 17백만원
- 장학생 및 수학대학 실태점검, 상담 등 : 11백만원
- 장학생 성적우수자 시상 및 송년의 밤 행사 : 44백만원
- GKS 장학생 학사관리시스템 서버 유지 : 10백만원
- 업무지원 코디네이터 및 조교 인건비 등 : 53백만원
- 생활비(대학원, 연구과정) : 20,662백만원
  · 1학기 : 900천원×1,864명×6월×96%= 9,663백만원
  · 2학기 : 900천원×2,105명×6월×96%= 10,912백만원

  · 2학기(연구) : 1,500천원×10명×6월×96%= 87백만원
- 생활비(학부, 전문학사) : 6,133백만원
  · 1학기 : 800천원×679명×6월×96%= 3,129백만원
  · 2학기 : 800천원×652명×6월×96%= 3,004백만원
- 등록금(대학원) : 10,760백만원
  · 1학기 : 4,000천원×1,395명×96%= 5,357백만원
  · 2학기 : 4,000천원×1,407명×96%= 5,403백만원
- 등록금(학부, 전문학사) : 3,683백만원
  · 1학기 : 3,650천원×539명×96%= 1,889백만원
  · 2학기 : 3,650천원×512명×96%= 1,794백만원
- 어학연수비(공통) : 2,315백만원
  · 1학기 : 800천원×609명×2분기= 974백만원
  · 2학기 : 800천원×838명×2분기= 1,341백만원
- 대학원장학생 연구비 : 619백만원
  · 1학기 : 220천원×1,395명= 307백만원
  · 2학기 : 220천원×1,417명= 312백만원
- 보험료(공통) : 643백만원
  · 1학기(학부) : 20천원×679명×12월×96%= 156백만원
  · 2학기(대학원) : 20천원×2,115명×12월×96%= 487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 40천원×700명×2회= 56백만원
- 한국어능력우수자 장학금 : 100천원×765명×12월= 918백만원
- 논문인쇄비 : 300천원×410명= 123백만원
- 입·귀국항공료 등 입귀국지원 : 1,672천원×1,231명= 2,058백만원
- **계 : 48,626백만원**

○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 2,568백만원

■ 사업내용

- 목　　적 : 유학생 상호교류 지원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화 도모하고 교환학생의 한국교육과 문화이해를 통한 국내대학으로의 유학 동기 부여 및 친한·지한 인재 양성

- 지원대상 : 국내 40여개 대학에서 초청하는 교환학생 250명 및 국내 대학 재학 유학생 200명
- 내　　용 : 장학금 지원*,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지원 등

  * 생활비(월 50만원), 보험료(월 2만원), 항공료(실비), 정착금(20만원)
- 지원기간 : 4개월(1학기) 또는 10개월(2학기)

■ 산출내역
-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 홍보물 제작 : 5천원×1,000부×2종= 10백만원
- 대학선정 심사 경비 : 1백만원
- 장학생 선발 심사 경비 : 8백만원
- 장학증서 제작비 : 10천원×300명= 3백만원
- 심사위원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 등 : 2백만원
- 유학생 취업박람회 개최(위탁비) : 100천원×400명= 40백만원
- 생활비 : 500천원×450명×10월×80.2%= 1,805백만원
- 보험료 : 20천원×190명×10월= 38백만원
- 정착지원금 : 200천원×320명(2학기 추가 선발 포함)= 64백만원
- 입출국항공료 : 1,500천원×320명(2학기 추가 선발 포함)= 480백만원
- 외국인유학생상담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117백만원
- **계 : 2,568백만원**

○ 외국인학생단기초청연수 : 1,759백만원

■ 사업내용
- 목　　적 : 전략국가* 중심 교육교류를 통한 한류열풍 확산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

  * 유학생 유치 전략지역인 아세안 10개국, 중남미 및 아프리카, 중앙앙시아 포함
- 지원대상 : 주요국의 대학생 및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고교생 총 480명
- 내　　용 : 국내대학 교류 및 문화유적지 시찰, 산업시설 등 견학, 홈스테이 체험 등 연수경비 및 항공료 지원
- 지원기간 : 11일 또는 5주(7~8월중)

■ 산출내역
- 연수운영비 : 667천원×480명= 320백만원
- 체재비 : 1,423천원×480명= 683백만원
- 항공료 : 1,401천원×480명= 673백만원
- 보험료 : 40천원×480명= 19백만원
- 수료식 경비 : 64백만원
- **계 : 1,759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 사업내용
- 개발도상국 각국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우수 교원 260명**을 **개발도상국 현지 정규학교 등에 파견**하는 사업

■ 산출내역

• 파견인원 : 장기 100명, 단기 160명 총 260명
• 파견기간 : 단기 4~8주, 장기 1년
• 지원내용 : 체재비, 지원금, 보험료, 항공료 등

- 장기 파견자 체재비 : 1,000천원×12개월×100명= 1,200백만원
- '18년 장기 파견자 지원비 : 2,500천원×7개월×90명= 1,575백만원
- '19년 장기 파견자 지원비 : 2,500천원×5개월×90명= 1,125백만원
- '18년 장기 퇴직 자문관 지원비 : 1,500천원×7개월×5명= 53백만원
- '19년 장기 퇴직 자문관 지원비 : 1,500천원×5개월×5명= 37백만원
- '18년 장기 파견자 지원비(직업기술) : 2,000천원×7개월×5명= 70백만원
- '19년 장기 파견자 지원비(직업기술) : 2,000천원×5개월×5명= 50백만원
- 단기 파견자 체재비 : 1,200천원×1개월×160명= 192백만원
- 장기 파견자 왕복항공료 : 3,000천원×100명= 300백만원
- 단기 파견자 왕복항공료 : 2,200천원×160명= 352백만원
- 해외안전관리요원 : 7,200천원×22명= 159백만원
- 파견자 비자 발급,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비 : 730천원×260명= 190백만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비(장기) : 500천원×100명×1회= 50백만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단기) : 100천원×160명= 16백만원

- 사전연수 경비(장단기) : 330백만원
- 보험료(장기) : 2,200천원×100명= 220백만원
- 보험료(단기) : 150천원×160명= 24백만원
- 국내외 홍보 및 선발경비 등 : 70백만원
- 국내외 사업설명, 현지컨설팅 및 MOU 출장 여비 : 60백만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선발협의 경비 : 8백만원
- 업무지원 등 코디네이터 인건비 : 33백만원
- **계 : 6,11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ODA)	59,244	59,067
○ Global Korea Scholarship	(51,941백만원) 3,980명 지원	(52,953백만원) 4,183명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48,223백만원) 3,210명 지원 · 신규 810명, 기존 2,400명	(48,626백만원) 3,253명 지원 · 신규 853명, 기존 2,400명
■ 우수외국인유학생 지원	(2,552백만원) 450명 지원 · 교환 250명, 자비 200명	(2,568백만원) 450명 지원 · 교환 250명, 자비 200명
■ 외국인학생단기 초청연수	(1,166백만원) 320명 지원 · 주요국가 120명 아세안 120명 아프리카·중남미 80명	(1,759백만원) 480명 지원 · 주요국가 120명 아세안 200명 아프리카·중남미 80명 중앙아시아 80명
○ 교원해외진출사업	(7,303백만원) 300명 파견 (장기 140명/단기 160명)	(6,114백만원) 260명 파견 (장기 100명/단기 160명) ·장기파견교원 적정규모 반영

□ 지원 필요성

< Global Korea Scholarship >

<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의 전반적 지원 필요성 >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장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친한·지한 네트워크 구축 가능
- 현재 지원 규모 부족으로 인하여 **타국 장학사업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약해 지속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필요**
- **GKS 졸업생**은 **해당 국가**에서 **사회 주요인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우수 유학생 유치의 견인차) GKS 졸업생은 유학생 중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 이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유인 활성화**
- GKS 졸업생들이 다수 한국어(한국학) 교수 및 강사로 취업, 자신의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학 추천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추세에 따른 성장의 한계에 대비하여 유학생 적극 유치 등 **우수한 인적자원 유입 노력 필요**
  ※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예정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

(대표적 교육 ODA)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비교우위를 이용**해서 개도국 인재를 **교육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대외원조**
-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교육부문 성과 증진
  ※ 다른 ODA 사업과 달리 지원액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 국내 경제 활성화 기여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 **한국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장학 프로그램(장기과정)**으로 **대외국가이미지 제고 및 친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국가 간 추진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신뢰도 제고** 필요
  - 학위 취득에 2년~5년이 소요되므로 성공적 학위 취득을 위해 **누적 지원 인원에 대한 안정적 장학금 지원** 필요

▹ **선발인원** ('15) 838명 → ('16) 871명 → ('17) 692명 → ('18) 810명 → ('19) 853명
▹ **지원인원** ('16) 3,259명 → ('17) 3,195명 → ('18) 3,210명 → **('19) 3,253명** (예측)

▪ **국가 차원 교육 및 외교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선발인원 확대(43명)**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이공계 인력 수급난 해소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 이공계' 전형 선발 확대 필요(10명 증)**

※ 지방대 이공계('15년)50명→('16년)79명→('17년)88명→('18년)100명→(19년)110명

< 文 "획기적 이공계 대책 세워라" - 서울경제, '18.2.8.(목) >

문재인 대통령이 **이공계 기피현상과 저출산으로 심화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수급난을 극복할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공계 기피현상에 더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물론 기업들도 우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3년까지 공학 분야에서만 연평균 2만8,000명의 인력 부족 추산(통계청)

<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18.2, 외국인정책위원회) >

주요 추진과제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3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교육부)
-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 및 재외동포 선발 우대, 지원 규모 확대
-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 초청연수 확대 시행

③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 선발 우대** 및 지방대 이공계, 전문학사 **트랙 지속 확대**

-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ASEAN국가에 대한 배정인원 추가 필요(33명 증)**

<'아세안 기업투자서밋' 대통령 기조연설('17.11.13, 필리핀 마닐라) >

▷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겠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방문해 우호를 다지고 **협력 폭을 넓히겠음**

▷ **정부가 초청하는 아세안의 장학생과 연수생도 대폭 확대**하겠음. 양측의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함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ㅇ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 **해외 우수인재의 한국유학을 견인**하고 친한·지한 인사 양성을 위한 **단기장학프로그램 운영 필요(450명)**

- **교육협력 중요도 및 유학수요 잠재력이 높은 전략국 우수 학생 및 국내 대학과 협정을 체결한 교환학생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유학으로 유인하기 위한 **외국인우수교환학생 지원 필요(10개월 이내, 250명)**
- **외국인 자비유학생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유학생활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한국 인식 제고를 위한 **우수 자비 유학생 지원 필요(10개월, 200명)**

ㅇ **외국인학생단기초청연수**

▪ 주요 전략적 협력 대상국과의 교육교류를 확대하여 유학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친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480명)

- 주요 자원외교 및 전략적 협력국가의 **우수 대학생** 및 **한국어반 우수 고교생 초청연수**를 통해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11일, 120명)**
- **ASEAN국가와의 이공계 분야 교육교류**로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우호증진을 통해 **국내유학 분위기 조성(5주, 200명)**

※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국가와의 단기교류 확대(80명 증)

- **유학생 유치 전략지역(아프리카 및 중남미) 유학생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의 선진 학문과 산업발전상 체험으로 향후 **국내유학 분위기 조성(5주, 80명)**
-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지역과 교육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유학생 유치국 다변화 필요(5주, 80명, 신규)

< 2017년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7.4.19.) >

▷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음

<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18.2, 외국인정책위원회) >

주요 추진과제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3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교육부)
-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 초청연수 확대** 시행

< 교원 해외진출 사업 >

○ **ODA 수원국** 요청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원조 성과 거양**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필요

○ 현지 학교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우수성(전문성)을 알리고, 예비교원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 비교우위를 이용해서 인재를 교육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대외 원조**

○ ODA 경제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공여국으로 한국 역할 확대**

○ 파견후보자 인력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로 **파견인원 조정을** 통해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진** 필요

▪ 수원국 수요 요청 분야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발 → 사전연수 → 파견 → 현지 컨설팅 및 평가 실시

< 교원해외파견사업 파견인원 조정 방향 >

구분(2017/2018)		자격	분야	인원(명)
장기 (1~3년)	유형1	현직·예비 교원	수학·과학 ICT, 초등, 한국어 등	100
	유형2*			30
	퇴직 자문관	퇴직 교직원		10
단기 (4~8주)	단기 해외	교·사대 재학생	기초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160
계				300

⇨

구분(2019)		자격	분야	인원(명)
장기 (1~3년)	교원	현직·예비 교원	수학·과학 ICT, 초등, 한국어, **직업교육** 등	**95** (△35)
	퇴직 자문관	퇴직 교직원		**5** (△5)
단기 (4~8주)	단기 해외	교·사대 재학생	기초교육, 특수교육, 보건교육	160
계				**260** (△40)

* ODA 국가 중 파견비용을 분담하는 국가(중국, 태국)

※ (**주요 활동내용**) 현지 학교에서 주 20시간 내외 수업,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한국어 보급, 현지 교원 연수, 교육방법 전수 등 개발도상국 교육수준 향상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59,230**	**59,244**	**59,067**	**△177**	**△0.3**
▪ **Global Korea Scholarship**	51,927	51,941	52,953	**1,012**	**1.9**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	48,486 (신규 700명×8.4백만 기존 2,630명×16.2백만)	48,223 (신규 810명×9.6백만 기존 2,400명×16.8백만)	48,626 (신규 853명×9.6백만 기존 2,400명×16.8백만)	**403**	**0.8**
-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2,451 (420명×5.8백만)	2,552 (450명×5.7백만)	2,568 (450명×5.7백만)	**16**	**0.6**
- 외국인학생단기 초청연수	990 (320명×3.1백만)	1,166 (320명×3.6백만)	1,759 (480명×3.7백만)	**593**	**50.9**
▪ **교원해외진출사업**	7,303 (300명×24.3백만)	7,303 (300명×24.3백만)	6,114 (260명×23.5백만)	**△1,189**	**△16.3**
□ **비목**(합계)	**59,230**	**59,244**	**59,067**	**△177**	**△0.3**
○ 상용임금(110-03)	-	141	147	6	4.3
○ 일용임금(110-04)	138	-	28	28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385	400	388	△12	△3.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35	335	261	△74	△22.1
○ 특근매식비(210-05)	1	1	-	△1	순감
○ 임차료(210-07)	35	36	16	△20	△55.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10	-	-
○ 복리후생비(210-12)	-	2	2	-	-
○ 일반용역비(210-14)	1,582	1,572	2,169	597	38.0
○ 국내여비(220-01)	55	55	42	△13	△23.6
○ 국외업무여비(220-02)	1,158	1,097	1,022	△75	△6.8
○ 사업추진비(240-01)	81	72	72	-	-
○ 정책연구비(260-02)	30	30	-	△30	순감
○ 기타보전금(310-04)	55,398	55,471	54,883	△588	△1.1
○ 고용부담금(320-09)	22	22	27	5	22.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창의인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는 국제장학사업의 지속적 확대

○ 장학프로그램의 선발분야 확대 등을 통해 **한국유학에 대한 다양화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학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

○ 기초교육향상 지원을 통한 **교육원조 성과 거양 및 정부간 신뢰 유지**를 위한 지속적 사업운영 필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59,402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92명, 52,099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18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80명, 51,941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80명, 51,941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
'19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80명, 51,941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59,067	■ Global Korea Scholarship : 4,093명, 52,953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260명, 6,114백만원	△177
'20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80명, 51,941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4,118명, 53,130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260명, 6,114백만원	-
'21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3,980명, 51,941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300명, 7,303백만원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4,118명, 53,130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260명, 6,114백만원	-
'22			59,244	■ Global Korea Scholarship : 4,118명, 53,130백만원 ■ 교원해외진출사업 : 260명, 6,114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0.1		0.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Global Korea Scholarship >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③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 문화협정·문화공동위원회 합의서, 교육교류약정 등 국가간 약정

< 교원해외진출사업 >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②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추진경위

< Global Korea Scholarship >

- '65년 : 한·일 문화협정 체결로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선발·파견
- '67년 : 한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시작
- '05년 : 'Study Korea Project'의 외국인유학생유치 역점사업 지정
- '08년 : 한국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초청·관리 확대 추진
- '08년 :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12.26) '교육과학기술부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 보고

- '09년 :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통령 보고 시(3.7), 우선 추진 10대 역점 과제로 Global Korea Scholarship 보고
- '09년 : 한-아세안 정상회담(6.1~2) 시, Global Korea Scholarship 추진 발표
- '10년 :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재정비 및 신규 사업 신설 등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국가 브랜드화
- '14년 : Study Korea Project에 따른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방안
- '15년 :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교육부)

※ GKS 장학생 우수 지방대학으로 확대, 아세안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실시

- '17년 :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 (관계부처 합동)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장학생, 초청연수 등 국제장학프로그램(GKS) 대폭 확대 / 공계 비율 상향 조정 /초청연수 사업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

- '18년 :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 GKS 확대 (규모 확대,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 초청연수 확대) / 이공계 전공자 선발 우대 및 지방대 이공계, 전문학사 트랙 지속 확대

< 교원해외진출사업 >

- '12년 :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 지원 활동 계획' 수립
- '13년 ~ '15년 : 수학, 과학, 한국어 과목 20여명 파견
- '16년 : '15년 고위급 회담, 세계교육포럼 등을 계기로 한국 교원 파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이 쇄도하여 '16년 기존사업을 개편
  · 非ODA유형국가(중국, ODA국가 중 파견비용 분담) 및 단기해외봉사 신설 등 파견대상국 및 유형 다변화, 파견규모 확대(총 437명, 장기 130/단기 307)
- '17년 : 태국 직업기술교육 분야 신설 등 총 291명 선발(장기 131/단기 160)

※ 사업 용어 변경('16년 ODA*, 비ODA유형국가** → '17년 유형1*, 유형2국가**)

* 우리원 파견비용 전액 부담 / ** 파견대상국과 파견비용 분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제교육교류 협력활성화	484.9	484.9	469.1	558.8	558.8	592.3	592.3	592.4	59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69.1 ( )	( )	( )	469.1 ( )	464.9 ( )	( )	4.2 ( )
'16년	558.8 ( )	( )	( )	558.8 ( )	553.5 ( )	0.2 ( )	5.1 ( )
'17년	592.3 ( )	0.2 ( )	( )	592.5 ( )	581.9 ( )	( )	10.6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9,230	59,230	59,244	-	59,244	56,913	96.1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 2015 결산 교문위 : 아세안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추진 시 우수한 이공계 대학의 적극적 참여 필요

○ 2015 결산 교문위 : 개도국기초교육향상 지원 사업* 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중도탈락 인원을 고려하여 예비 합격자 선발 * 교원해외진출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16년~)

○ 2016년 결산 교문위·예결위 :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방안 마련 필요

<조치결과>

○ 아세안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사업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사업 홍보 : 한국과학기술원(11.3.), 포항공대(11.25.), 한양대(1.3.)

→ 2017 아세안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연수기관 공모 결과 경희대, 중앙대(수도권), 충남대(충청권), 계명대(경상권), 조선대(전라권) 등 권역별 우수 이공계 대학 선정('17.3월)

○ 개도국기초교육향상 지원 사업 '16년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파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하였고 포기자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6개 선발분야 59명)

○ 교원해외진출사업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사업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7년 정책연구 추진, 이를 토대로 향후 유관기관(수원국, 외교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ODA(개발원조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적사항 개선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Global Korea Scholarship >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 **재외공관 추천 :** 초청 국가 및 인원 확정 → 재외공관추천 → 선발심의(선정위원회)·장학생후보자선정 → 후보자 대학입학전형 → 건강검진 → 장학생확정, 각 공관통보 → 입국 → 한국어연수·대학 및 대학원 수학 → 장학생 학사·생활 관리(대학) → 학위취득 후 출국 및 사후관리(우리원)
- **대학 추천 :** 초청국가 및 인원 확정 → 대학추천 → 선발·심의(선정위원회)·장학생후보자선정 → 건강검진 → 장학생 확정·각 대학통보(우리원) → 입국 → 한국어연수·대학 및 대학원 수학 → 장학생 학사·생활 관리(대학) → 학위취득 후 출국 및 사후관리(우리원)

○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① 우수교환학생지원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우리원) → 신청서 제출(대학)→ 수학 대학 선정 및 배정인원 통보(우리원) → 장학생 추천(선정 대학) → 장학생 선발 및 통보 → 장학금 지급(우리원)→ 집행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우리원 및 대학)

② 우수자비유학생지원

- 선발시행계획 마련(우리원) → 공고(우리원) → 장학생 추천(대학) → 장학생 선발 및 통보(우리원) → 장학금 지급(우리원) → 집행결과 보고 및 추후관리(우리원 및 대학)

○ 외국인학생단기초청연수

- 기본계획수립 → 위탁대학 공모 및 선정 → 위탁대학(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추천의뢰 → 연수생 최종 선발 및 확정 → 연수 실시(11일 또는 5주) → 결과보고

< 교원해외진출사업 >

- 파견대상국가 수요조사 → 파견국가 및 국가별 파견인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지원자 모집 공고 → 지원서 접수 및 파견자 선발 → 사전연수 → 파견 → 파견자 복무 점검 및 사업 홍보 → 평가 및 결과보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한국어연수 성취도 (단위 : %)	목표	72	77.7	83.6	85.4	86.7	정부초청장학생 TOPIK 결과에 따른 성취도 추이	한국어연수 1년 후 TOPIK 시험 3급 이상 취득자 비율	관련공문
	실적	77.6	84.8	88.4	-				
	달성도	107.7	109.1	105.7	-				
GKS 외국인장학생 수학성공률 (단위 : %)	목표	97.5	97.7	97.8	97.9	98.0	5년간 실적평균치 대비 0.1%p상향 설정	입국인원 대비 관리인원 비율 (중도포기자 통계)	관련공문
	실적	97.9	98.0	98.0	-				
	달성도	100.4	100.3	100.2	-				
교원해외진출 사업만족도 (단위: %)	목표	87	89.5	75	86	86	전년대비 14.7% 상향 설정	(만족도평점-1)*25	설문지 및 관련 공문
	실적	92.7	91.6	88.0	-	-			
	달성도	106.6	102.3	117.3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2)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개요
○ (참고3) 2019년 교원해외파견사업 개요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지원

○ 1967년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전세계 155개국으로부터 8,119명**의 장학생을 초청하여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였으며, 귀국 동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한국 유학과 한국어를 홍보**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힘쓰는 **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사례 1> 성공적인 학위 취득으로 세계 각국과 한국을 이어줄 글로벌 인재 배출

세계일보 2018년 02월 20일 화요일 024면 사람들

"미얀마 제자들에 한국의 매력 알릴 것"

GKS프로그램 참가 쉐쉐 아웅
경희대 한국어학 석사학위 취득
"큰 도움 준 한국 사람들 고마워"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매력적인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미얀마 출신 쉐쉐 아웅(32·사진)씨는 이달 말 경희대 대학원에서 한국어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미얀마 만다레 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는 양곤외대 교수로 한국어학을 가르치던 2015년 8월 한국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대상자에 선정돼 2015년 8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GKS는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한국에 초청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비나 숙소를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다. 1967년 시작돼 지금까지 4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아웅씨는 20일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리는 '귀국 환송회'에서 95개국 출신 310명의 GKS 졸업생을 대표해 고별사를 한다. 그는 1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학업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한국어를 전공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언어가 과학적이어서 오히려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것을 점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GKS에 대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미얀마에서도 2016년쯤부터 GKS 신청자가 부쩍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웅씨는 이번에 미얀마로 돌아가면 양곤외대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그는 "한국어 전공자로서, GKS 유경험자로서 학생과 후배들에게 한국은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최영한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GKS 유학생들은 한국 교육의 자력을 경험하며 소중한 학위를 취득한 만큼 자국의 발전은 물론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라며 "이들을 매개로 해당국과 한국의 우호·친선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머니투데이

95개국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310명 졸업...한국 알리미로 나선다

교육부, 세계 각국과 한국 어어을 전한(親韓)·지한(知韓) 글로벌 인재 배출

이란에서 온 쉐르빈(Shervin Hashemi)은 2015년 서울대학교에서 건설환경공학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내 우수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돼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연수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의 건통철학을 바탕으로 첨단의 과학을 접목해 물을 사용하지 않고 분노를 비료화하는 화장실인 '토리(土利)'를 개발했다.

올해 2월 말에도 전국 58개 대학에서 쉐르빈처럼 정부초청으로 온 외국인 장학생 310명(학부 64명, 석·박사 242명, 연구 4명)이 졸업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9일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은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해 친한(親韓)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967년 처음 시작한 이래 42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했고, 교수·기업인·공무원 등 전 세계의 정·계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졸업자는 총 95개국의 다양한 국적 출신으로 권역별로는 아시아(139명, 45%), 유럽(54명, 17%), 아프리카(55명, 18%), 아메리카

- 세계일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GKS 귀국환송회 관련 기사 게재(2018.2.20.)
- 2018년 2월말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310명이 성공적으로 학위 취득
  - 전문학사 10명, 학사 32명, 석박사 243명, 연구 4명
- 출신 국가는 95개국이며 아시아 출신이 139명(46%)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55명, 18%)와 유럽(53명, 18%), 아메리카(32명, 11%) 등 고루 분포되어 있음

<사례 2> 귀국 후 공관과 협조하여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

Korea provides scholarships for shining Lao students

Times Reporter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warded the 2015 Global Korea Scholarship (GKS) to nine outstanding Lao students to study for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at universities in Korea.

The nine scholarships recipients are Mr Vanhnaxay Manivanh, Ms Bangeun Khaikham, Ms Thiphavone Xayasouk, Mr Phothong Saithilvongsa, Ms Nouthlutda Akhavong, Mr Ginoumoua Xaivue, Ms Souphaphone Thavonsouk, Mr Vongsakda Vongxay and Ms Sivilay Xayaheuang, who were selected for their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s and enthusiasm as well as potential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os.

According to a statement from the Korean Embassy to Laos yesterday, the GKS programme is designed to provide higher education in Korea for international students, with the aim of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in education and mutual friendship amongst the participating countries.

This year, the scholarship will be granted to 468 students from 130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full coverage of tuition fees for the duration of the programme, airfares, a monthly stipend and other support.

Students will first take Korean language courses for one year and will take up their two-year master's or three-year doctorate degree programmes at universities of their choic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Laos, Mr Kim Soo-Gwon, met the students in Vientiane on Wednesday to congratulate them before they head to Korea to start their programmes. Ambassador Kim wished them good health, successful completion of their studies and rewarding experiences in Korea.

He stressed that the scholarship programme is a meaningful invest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future of Laos and said he was confident it would pave the way for more prosperous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Laos.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programme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implemen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which is an organisation opera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eginning in 2010, all of the diverse scholarship-related projec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re organically linked and integrated into a new programme, the Global Korea Scholarship.

The objective of the scholarship programme is to generate deeper mutual understanding among countries by facilitating educational exchange and human resource mobili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through educ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of Korea seeks to develop mutual recipro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providing software-oriented development assistance in education, drawing from Korea's experience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ducation.

ROK Ambassador, Mr. Kim Soo-Gwon poses with awarded Lao students in Vientiane Capital.

- 라오스 현지 언론(Vientian Times, 2015.8.7.) 보도를 통해 한국 유학 홍보
- 주라오스 대사가 귀국한 동문과 신규 선발된 장학생을 관저에 초청, 한-라오 관계 발전의 주역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함

<사례 3> 한국어 전공 장학생의 활약으로 현지국의 한국어 보급 확대

태국어엔 없는 존댓말 매력에 한국어 전도사 됐죠

태국 국립대 한국어학 교수 탐마차이

88올림픽 '손에 손잡고' 첫 호기심
한국어학과 만들고 일반인 강좌도

"태국어에는 없는 존댓말이 한국어의 가장 큰 매력 같아요.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태국 방콕의 국립 씨나카린위롯대에서 한국어학을 가르치는 씨티니 탐마차이(43·사진) 교수는 한국어 전도사로 통한다. 1997년 한국 정부 초청으로 서울대에 유학와 국어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01년 귀국했다. 이어 2003년엔 재직 중이던 씨나카린위롯대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중2였던 그는 개막식에서 흘러나오는 '손에 손잡고'를 영어로 따라 부르며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결심한 이유도 TV로 접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다. 그는 "동그라미·네모·세모처럼 보이는 문자가 어떻게 조합돼 언어가 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으로 유학 가서 뭐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땐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었다. 방콕 시내 여기저기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한국어학과가 있는 대학이 2003년 3개였으나 현재 11개로 늘었다. 또 2018학년도부터 태국 대학입학시험에서 한국어도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

탐마차이 교수는 5~6년 정부터 일반인 대상 한국어 강의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어 과외를 받고 싶다"는 직장인, 중·고생의 요청으로 분들 연 주말 어학당은 현재 수강자가 100명이 넘는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길 희망하는 태국인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2016.11.7.)
- 씨티니 탐마차이(태국)
  - 2001년 귀국 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에 한국어과 개설, 300명의 한국어 전공자 배출
  - 2018년부터 태국 대학 입학시험에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는데 기여
  - 태국어로 설명된 한국어교재 및 한국어 문법책을 최초로 집필

< 국제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부초청장학생 주요 동문 현황** >

국적	이름	수학 대학	과정	주요 활동
프랑스	Herve Kernaleguen	서울대	학사	주한 프랑스문화원 원장
인도	Parthasarathy Vyjayanthi Bhashyam	서울대	석사	네루 대학교 한국어 교수 및 학과장, 2015 국무총리상 수상
스위스	Muller Karl	서울대	한국어 연구	스위스 마사이신발회사 대표
가나	Moses Aduko Asaga	연세대	석사	가나 고용복지부 장관
루마니아	Grigore Scarfatoiu	서울대	석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중국	Zhu Chun Nan	아주대	석사	Commercial College of Northeast Normal University 부총장
우간다	Bernard Bashaasha	서울대	석사	Makerere University 농업환경과학대 학장
몽골	Jagir Sukhee	연세대	석사 (연구)	몽골 외교부 아시아 부국장 / 현) 주카자흐스탄 몽골대사
이탈리아	Sofia Teresa Scerbo	서울대	석사	Reggio Calabria University 교수 / 홍길동전 번역
에티오피아	Kallo Gebremariam Mebratu	카이스트	박사	Mizan Teferi University 총장

□ 아프리카·중남미대학생 초청연수 ('17년 신규)

○ 아프리카 및 중남미 권역 대학생을 초청함으로써 **ODA를 기반으로 하는 GKS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 다변화

○ 지역대학과 MOU 체결* 등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채널 마련으로 **교류지역 다변화 및 해당지역 유학생 유입** 가능

* 경북대 : 1개교 (우간다) / 전남대 : 5개교 (콜롬비아 1, 멕시코 3, 코스타리카 1) / 인천대 : 1개교 (도미니카공화국)

○ **유학연계(연계율 2.5%)** : 연수대학(경북대) 석사과정에 연수생(2명) 지원*

* 식품공학부 지원 : 나이지리아(1명), 케냐(1명)

** 연수 대상이 2~4학년 대학생이므로, 연도별 사업 종료 후 약 3년 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유학 연계 성과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체계적·고객지향적 연수운영**으로 참가자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 연수 전반적 만족도 4.6점(5점 만점)

⇒ 연수생 반응 :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경험할 수 있어 흥미로웠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음. 교수님의 강의 역량이 뛰어났으며, 기아자동차 포스코 방문 등이 인상깊었음 등

□ 아세안국가 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16년~)

○ **유학 연계 성과 ('15년 연수생 중 7%, '16년 연수생 중 4%가 한국으로의 유학*)**

* 연수 대상이 2~4학년 대학생이므로, 연도별 사업 종료 후 약 3년 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유학 연계 성과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

< **연수생 중 한국유학 연계 현황 ('18.3월 현재)** >

연번	연수운영대학	성명	국적	진학대학(과정)	비고
1	전남대학교	Pham L.	베트남	전남대 석사과정(신소재공학)	'15년 연수생
2	전남대학교	Darmawan A.	인도네시아	전남대 석사과정(신소재공학)	
3	전남대학교	Charoennnan P.	태국		
4	전남대학교	Tean C.	캄보디아	전남대 석사과정(지역바이오공학)	
5	전북대학교	Suwanta M.	태국	한국외국어대 한국어연수	
6	전북대학교	Jiranuch S.	태국	성균관대 교환학생	
7	충남대학교	Nguyen H.	베트남	한양대 교환학생	
8	경상대학교	Razali M.	말레이시아	경상대 석사과정(기계항공)	'16년 연수생
9	중앙대학교	Davier D.	캄보디아	중앙대 석사과정(전자전기공학)	
10	중앙대학교	Pham Q.	베트남	중앙대 석사과정(전자공학)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11	중앙대학교	Trong H.	베트남	중앙대 석박사과정(통신공학)	
12	전북대학교	Oui S.	라오스	전북대 석사과정(관리정보시스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전년 대비 **전체만족도 상승** : ('15년) 4.59 → ('16년, '17년) 4.68

<연수 참가학생 소감>

☞ Aung Si Min Htet(미안마)은 현재 컴퓨터 공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으로,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한국 대학 편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및 다양한 실습이 이루어져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였다고 밝힘

☞ Mak Davye(캄보디아)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 유학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Han Chi Truc-Chi Lee(베트남)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 참여 기간 동안 교수님과 대학원생 멘토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수학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분실했던 휴대폰을 3일 만에 되찾아 한국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몸소 체험" 했다고 밝힘

□ 주요국가 학생 초청연수사업

○ **57개국 116명**의 초청연수생에게 한국 문화 및 한국의 대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유학에 대한 동기 부여**

○ **유학 연계*** 및 유학생 유치 국가 다변화 가능성 제고

* '16년 7명 (GKS장학생3명, 교환학생4명), '17년 4명(GKS장학생3명, 교환학생1명)

[단기 초청연수 관련 언론 보도 내용]

KBS 뉴스광장 전국방송 — **중남미·아프리카 대학생 초청연수 신규 시행** — 2017년 7월 18일 (오전 7시 20분 방영)

내일신문 —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 장세풍 기자 — 2017년 8월 3일

내일신문 2017년 08월 03일 목요일 018면 정책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한국 초청연수 수료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3일 경북대에서 '2017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수료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나이지리아·르완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등 15개국 학생 40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나라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부터 아세안 국가 학생을 초청해 한국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올해는 이 사업을 아프리카와 중남미로도 확대했다.

5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학문분야 우수사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연수분야별 전공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과제 수행, 산업 발전상 및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운영됐다.

전북대에서 연수를 받은 케냐의 도멘 크문토 나캉고 학생은 "인공수정 실습, DNA 추출법 등 실습을 통해 한국의 동물 생명 과학과 농축산분야 첨단 기술을 접했다"며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뒤 케냐의 농업 발전에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나이지리아 출신인 다밀레이 엠마누엘 에드에미 학생(경북대)은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놀라운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알게 돼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면서 "이번 식품 과학 분야의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농업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번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을 중앙아시아(CIS)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 대학생들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아시아경제 — **아세안국가 이공계 대학생 120명 초청연수 수료** — 2017년 8월 9일

아세안국가 이공계 대학생 120명 초청연수 수료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17-08-09 11:30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10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D홀에서 '2017 아세안 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수료식'을 연다.

아세안 국가의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이공계 학문 분야와 산업 발전상 등을 단기간에 체험하도록 하는 이 연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총 5주간 초청 대학생 120명이 경희대와 중앙대, 충남대, 계명대, 조선대 등에서 이공계 전공 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및 산업체 체험과 한국 문화·역사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공 이론 강의뿐 아니라 그룹별 연구과제 선정 후 한국의 첨단 실험·실습 환경에서 직접 연구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사업 3년차인 올해는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아세안 10개국 출신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등 지원 경쟁률이 3.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연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초청 대상 유학생을 아프리카·중남미 지역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 중앙아시아(CIS)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까지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 교원해외진출사업

○ 해외 현지 언론, 교육부, 학교·학생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으며, 우리 교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사 파견 희망

<사례 1> '전국 중등학교 과학경진대회' 수학 부문 1위 지도(2014, 우간다)

- 현지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셈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풀이과정을 스스로 적고 확인하도록 하는 학습법 도입
- 학생들은 오류를 줄이는 논리적 풀이법 습득을 통해 학습효과 향상

<사례 2> 수학성적 향상 사례(2014, 케냐)

- 케냐 Uhuru Gardens Primary School 8학년 학생인 마리아의 수학 점수 향상 결과

(30점→40점→64점→82점)

- 8학년 WEST 학급은 수학평균이 28점으로 수학 부진이었다. 기초교육과정 부진 학습이 누적되어 지도할 방법이 난감하였다. 우선 5학년과 6학년 수학교육과정부터 다시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힘든 점도 많았지만, 고비를 넘기고 시간이 흐르자 점차 향상되어 갔다. 첫 시험에서는 대부분 40-50점이었으나 마지막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을 획득하는 발전을 보였다. (케냐 파견 교사 황00 파견후기)

<사례 3> 일회성 교육봉사가 아닌 현지 교사 역량 강화, 개도국 기초학력 증진 등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2015, 스와질랜드)

스와질랜드 워크숍에서의 프리젠테이션 교수 경험과 교수 방법 공유(김○○ 파견 수학 교사)

스와질랜드 수학 심포지움에서의 프리젠테이션 교수 경험과 교수 방법 공유(송○○ 파견 수학 교사)

<사례 4> 우리 파견 교사가 속해있는 Sekolah sultan alam shah 학교에서

제2외국어과정으로 한국어교과과정 채택(2016,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보도)

Malaysia gets two Korean language teachers under international scheme

- 말레이시아 Sekolah sultan alam shah 학교에서 '16. 1월부터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과과정" 채택
- 2016년 총 100여명이 한국어를 신청하여 5개 제2외국어 중 가장 인기

<사례 5> 수학교사인 송ㅇㅇ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진급시험을 거의 포기했던 학생이 최고 등급으로 합격(2016, 스와질랜드)

수업 후 같이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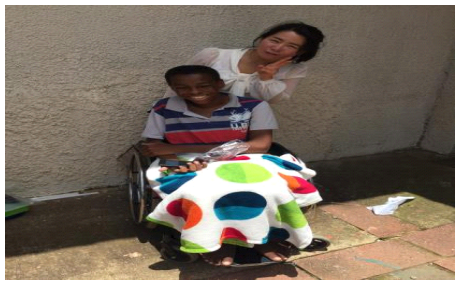

JC EXAM후에 병원 방문해서 찍은 사진

- 교통사고를 당해 파견교사와 같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던 Form3 학생(Sinethemba)은 진급시험(JC EXAM)이 얼마남지 않았고, 학교를 그만두어 진급시험을 거의 포기한 상황이었음. 송ㅇㅇ교사는 금,토, 일마다 3~4시간씩 열심히 가르쳤고, 점점 학생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으며, 결국 Form4 진급시험을 최고등급으로 합격. ('16년 스와질랜드에 근무한 수학교사 송ㅇㅇ의 파견후기 내용)

<사례 6>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열심히 가르쳐 각종 경시대회 수당 등 우수한 교육성과(2017, 피지)

과학 경시대회 2위 수상

컴퓨터 경시대회 수상

ㅇ ODA국가 봉사활동을 통해 예비교원들에게 배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시민 정신을 갖춘 선진국형 교사 양성을 위해 '16년부터 단기해외봉사 프로그램 시행

- 해외 현지 언론, 현지 교사들로부터 한국의 선진적 교수법 도입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 양산

<사례 7> 네팔 아달샤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과 시·청각 장애 학생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식 장애아 통합교육 모델 적용, 현지 긍정적 호응(2018, 네팔)

- 아달샤 초등학교 수학·과학 교과 시간에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포함하는 한국식 장애아 통합교육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현지 긍정적인 호응
- 교육봉사자는 시·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구를 활용하는 개별화 교수법 적용

참고 2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국가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및 국내 대학의 국제화 견인

❑ 주요 내용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 전 세계 155개국 800여명의 우수인재를 초청하여 3년~5년간 전문학사, 학부,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비 등 지원

○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 우수 교환학생 및 자비유학생 450명을 선발하여 4개월 또는 10개월간 생활비 등 지원

○ **외국인학생단기초청연수 :** 주요자원 외교국 및 전략적 협력대상국* 등의 우수 대학생 320명, 한국어반 개설학교 우수 고교생 60명을 초청하여 인문·사회·이공계 분야 및 산업발전상 체험연수 실시(11일 또는 5주)

*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중남미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 추진 경과

○ '67년 : 석사, 박사, 연구과정 외국인을 초청하여 학위취득 지원

○ '04년 : 국제교육 다변화를 위한 동남아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시작

○ '06년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교류지원 사업 학부과정으로 확대

○ '10년 : 7개* 장학프로그램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化)

* 외국인 대상 단기 장학프로그램 2개 과정 신설 포함

○ '13년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사업 대폭 확대

* ('12) 422명 37,791백만원 → ('13) 830명 43,480백만원

○ '15년 : 정부초청외국인 전문학사과정 시범운영 및 아세안국가 우수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과정 신설

○ '17년 :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연구과정 재개설 및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과정 신설

사업 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교류 지원

❑ 목적

○ 국가 간 협정 등에 의한 교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간 우호 증진, 상호 협력 강화 및 한국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150여 개국으로부터 초청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장학생 ※ ODA 국가 학생 지원 비율 : 약 80%

○ 초청현황

구분	'67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인원(명) / 과정별	6	965	133	133	745	504	696	400	422	827	887	838	871	692	**8,119**
전문학사												10	15	17	**42**
학사			28	32	200	147	148	100	100	117	130	110	155	102	**1,369**
석사	5	575	66	59	365	279	393	213	258	555	605	560	569	456	**4,958**
박사		265	31	36	156	78	155	87	64	155	152	156	132	114	**1,581**
연구	1	125	8	6	24							2		3	**169**
초청국가수	3	79	47	54	87	97	107	96	95	137	131	131	143	135	**155**

○ 지원기간 : 한국어 연수 1년 + 전문학사 2년·학사 4년·석사 2년·박사 3년

○ 지원내용 : 등록금, 생활비(학부 월80만원, 대학원 월90만원, 연구 월150만원), 항공료, 한국어연수비(분기별 800만원), 의료보험료, 입귀국 준비금 등

구분	입·출국 항공료	정착 지원금	생활비	의료 보험료	어학 연수비	등록금	한국어 우수자 지원	연구비	논문 인쇄비	귀국 준비금
지급 대상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전문학사, 학부 대학원 어학과정	전문학사, 학부 대학원 학위과정	전문학사, 학부 대학원 학위과정	대학원 학위과정	대학원 학위과정	공통
지급액	실비 (항공권)	20만원 (1회)	월 학부(80만원) 대학원(90만원) 연구(150만원)	2만원 (월)	320만원 (4회분)	입학금 면제, 등록금 500만원 한도	10만원 (월)	인문·사회 : 21만원 자연·공학 : 24만원	50~80만원(실비) (1회)	10만원 (1회)
지급 시기	입·귀국시 1회	최초 입국시	매월초 (연4회)	-	3,6,9, 12월초	학기초	매월초 (연4회)	학기초 (연2회)	논문 완성시	최종 귀국시
지급 절차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교육원 (연4회) → 수학대학 (매월초)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교육원 → 수학대학	교육원 (연4회) → 수학대학 (매월초)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교육원 → 수학대학 → 장학생

○ 예산액 : 48,223백만원 ('18년)

사업 2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2010~)

구분	우수교환학생지원	우수자비유학생지원
목적	유학생 상호교류 지원을 통한 국내대학의 국제화 도모 및 국내대학으로의 유학유인	성적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으로 성공적인 유학생활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인원	국내 대학에서 초청하는 교환학생 250명 *전략적 중점협력국 교환학생 지원 포함 (100명, 4개월)	국내 대학 재학 유학생 200명
기간	4개월 또는 10개월	10개월
지원항목	생활비(월50만원), 준비금(입국 시 20만원), 항공료(실비), 보험료(월2만원)	생활비(월50만원), 학업 및 진로 상담 등
선발방법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유학생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선정 (40여개) → 선정된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선발	국내대학(전문대학 포함) 추천을 받아 성적 우수자 중 장학생 선발 * 지원자격 : 학점평균 80점 이상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예산액 ('18년)	1,465백만원	1,087백만원

사업 3 외국인학생단기초청연수

구분	주요국가학생 초청연수 ('04~)	아세안국가 우수이공계대학생 초청연수 ('15~)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17~)	중앙아시아 대학생초청연수 ('19년 신규)
목적	전략국 중심 교육교류를 통한 친한 인사 양성 및 향후 국내 유학 유도	한국의 이공계 학문과 산업발전상 체험으로 향후 국내 유학 유도	우리나라 학문분야 발전상 체험을 통해 국내 유학 유도	우리나라 학문분야 발전상 체험을 통해 국내 유학 유도
인원	120명 · 주요 자원외교국 및 전략적 협력국 대학생 60명 · 한국어반 개설학교 고교생 60명	120명 · 아세안 10개국 이공계 대학생	80명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대학생	80명 ·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생
기간	11일(7~8월중)	5주(7~8월중)	5주(7~8월중)	5주(7~8월중)
지원항목	체재비, 항공료, 연수경비 및 보험료			
연수내용	대학 방문 및 특강, 정부기관방문,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홈스테이 * 4개 대학 위탁	이공계 전공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소 및 산업체 시찰, 문화체험 * 5개 대학 위탁	전공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소 및 산업체 시찰, 한국문화 체험 * 4개 대학 위탁	전공강의 및 실험실습, 연구소 및 산업체 시찰, 한국문화 체험 * 4개 대학 위탁
예산액 ('18년)	326백만원	413백만원	427백만원	'19년 신규 추진

참고 3 2019년 교원해외파견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ODA국가 기초교육향상 지원,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교원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 (근거) 교육기본법 제29조, 교육부 교원해외파견사업 계획('15. 7. 24.)

○ (주요 내용)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수학·과학·ICT 교원 등을 **현지 정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 지원**

- '15년 세계교육포럼 개최 이후 급증한 **한국 교원**에 대한 **국제수요**를 반영하여 **'16년**부터 **사업 확대**

※ **인원 / 예산** ('15) 8개국 20명 / 8억 → ('16) 24개국, 437명 / 59억 → ('17) 21개국, 291명/ 73억→ ('18) 300명 예정 / 73억 → ('19) 260명 예정 / 61억

구분		자격	분야	역할	인원(명)
장기 (1~3년)	교원	현직·예비 교원	중등 수학·과학·ICT, 초등, 한국어, 직업기술 등	정규교과수업	95
	퇴직 자문관	퇴직교직원		교원연수,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5
단기 (4~8주)	단기 해외	교·사대 재학생	기초교육, 특수교육, 보건에 대한 예방 교육 등 다양	교육봉사	160

□ 사업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상반기	**' 18년 파견 대상국가 선정 및 파견자 모집·선발, ' 18. 8월 파견**	
1/4분기	1~2월 3~4월	' 18년 파견 대상국가 수요 조사 완료 및 파견국가 선정 ' 18년 교원해외파견사업 기본계획 수립, '18년 사업 홍보
2/4분기	4월 5월 6월	' 17년 기파견자(장기) 연장여부 심사 및 결정 ' 18년 교원해외파견사업 파견자 선발 계획 수립 장기 파견자 모집 공고 및 선발(140명) / 단기해외봉사자 선발 및 사전연수(160명)
하반기	**' 18년 파견자 성과 점검, ' 18. 12월 파견 및 ' 19년 파견 대상국가 수요 조사**	
3/4분기	7~8월 ~ 9월	장기 파견자 사전연수, 단기해외봉사자 파견(하계 7월~) 장기 파견교원 파견
4/4분기	10~11월 11월 12월	장기 파견교원 현지 컨설팅, ' 19년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연장평가 계획 수립 ' 18년 12월 장기파견(' 18년 선발자) 파견, ' 18년 파견자 파견성과 점검 단기해외봉사자 파견(동계 12월~)

□ 사업 관련 통계

< ODA 대상국 장기 교사 파견 >

(단위 : 명)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에티오피아	3	3	2	4	3
스와질랜드	11	5	5	7	4
카자흐스탄	2	2	3	3	2
키르기스스탄	5	4	3	9	4
케냐	-	4	-	-	-
우간다	-	2	2	4	5
말레이시아	-	-	2	12	11
칠레	-	-	1	-	-
피지	-	-	2	11	14
탄자니아	-	-	-	10	12
남아프리카공화국	-	-	-	6	15
보츠와나	-	-	-	13	15
네팔	-	-	-	2	2
베트남	-	-	-	5	7
브라질	-	-	-	6	3
파라과이	-	-	-	2	1
페루	-	-	-	3	3
중국	-	-	-	33	20
태국	-	-	-	-	10
계	**21**	**20**	**20**	**130**	**131**

< 단기 해외교육봉사 >

연도	파견국가 및 인원	비고
2016	베트남(42명), 필리핀(22명), 탄자니아(22명) 동티모르(20명), 라오스(15명), 키르기스스탄(22명) 미얀마(22명), 네팔(20명), 캄보디아(22명), 볼리비아(20명), 스와질랜드(20명), 케냐(20명), 남아공(20명), 니카라과(20명)	14개국, 307명
2017	인도네시아(20명), 캄보디아(20명), 우간다(20명), 네팔(20명), 남아프리카공화국(20명), 니카라과(20명), 키르기스스탄(20명), 라오스(20명)	8개국, 160명

※ 고위급 회담, 세계교육포럼('15) 등을 계기로 한국 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 쇄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16년 사업 확대 / 사업명칭 변경(舊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지원)**

[301] 학생교육교류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생교육교류지원	10,852	13,053	12,302	**△751**	**△5.8**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10,207	11,616	11,096	△520	△4.5
- 중고생교류지원	645	661	430	△231	△34.9
- 한국유학홍보	(667)	776	776	-	-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1 - 301
* 담 당 자 : 글로벌인재양성부장(박승철), 해외유학인턴팀장(이병윤), 주무관(정동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77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688명, 11,096백만원 · 주요내용 : 생활비, 등록금, 왕복항공료 ○ 중고생교류지원 : 한중일청소년 520명, 430백만원 · 주요내용 : 교류학생 항공료, 체재비 지원 ○ 한국유학홍보 : 한국유학박람회 운영 21회 한국유학종합시스템 1식 총 776백만원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11,096백만원**

■ 목적 : 이공계 및 기초학문분야 등 국가 전략적 필요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내국인 대상 장학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국외 석박사 및 기술연수 지원

  * 지원내용 : 국비유학생 장학금(3년 범위 내)*, 항공료, 기술·기능인전형 어학연수경비, 선발 · 사전교육 및 사업운영 등

  ※ 연간 지급 단가(미국기준) : 일반전형 USD 40,000
  저소득층 특별전형 및 기술기능인 전형 USD 50,000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일본 국립대 이공계 학부과정 지원

  * 지원내용 : '18년 선발파견자까지의 예비교육과정(1년) 및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 학과(4년) 수학에 필요한 생활비, 입학금, 수업료, 항공료 등/'19년 신규 추진되는 교류유학생의 정착지원금, 생활비, 입학금, 수업료, 항공료 등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사업 추진방식 변경 내용>

*** 일방 파견에서 상호교류로 사업내용 변경('19년~)**

o 일방파견('18년까지)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 학부 과정 지원

* 2019년 누적 관리인원 : 500명

o 상호교류('19년부터)

· **(한국→일본)** 한국 국적자로서 일본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 학부 1년 및 단기 과정 희망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최대 4년 지원)

· **(일본→한국)** 일본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 학부 1년 및 단기 과정 희망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최대 4년 지원)

* 2019년부터 신규 선발하는 인원은 200명이며, 수학 개시는 2020년임

■ **산출내역**

①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행정보조요원 인건비 1,398천원×3명×5개월 = 21백만원
- 홍보물 제작 3,500천원×2회= 7백만원
- 각종 수당 250천원×32회 = 8백만원
- 법률자문료 300천원×8명 = 2백만원
- 선발시험 관리비 77,236천원×1식 = 78백만원
- 시험위원 보험료 등 1,000백만원×1식 = 1백만원
- 선발시험운영 급식비 82,500원×280식 = 24백만원
- 업무지원 일용직 특근매식비 6천원×10명×20일 = 1백만원
- 선발시험 출체본부 임차료 7,000천원 ×1식 = 7백만원
- 선발시험 관련 용역비 6,000천원×1식 = 6백만원
- 선발시험 홍보 출장 100천원×2명×10회 = 2백만원
- 선발시험 시험위원 여비 100천원×30명 = 3백만원
- 수학실태 점검 국외출장 2,000천원×2명 = 4백만원
- 국비유학생 간담회비 22천원×30명×2회 = 1백만원
- 전문가 협의회, 회의, 자문 업무협의회 25천원×10명×4회 = 1백만원
- 국비유학 관련 각종 협의회비 28천원×10명×4회 = 1백만원
- 장학금 40,000천원×139명= 5,560백만원
- 왕복항공료 1,291천원×67명 = 87백만원
- 행정보조 계약직원 4대 보험료 1백만원
- 계 : 5,815백만원

②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 업무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2,000천원×12개월= 24백만원
- 선발지원 인턴 인건비 66천원×2명×14일= 2백만원
- 자료 번역 및 통역비 300천원×2명×20회= 12백만원
- 홍보자료 및 안내책자 제작비 3,787천원×4회= 15백만원
- 사무용품 등 구입비 500천원×2회= 1백만원
- 선발 및 심사 운영비 4,000천원×3회= 12백만원
- 동문회 운영비 300천원×5회= 2백만원

- 멘토 활동비 100천원×15명×12개월= 18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비 2,000천원×1식= 2백만원
- 홍보자료 발송 우편료 등 1백만원
- 코디네이터 및 인턴 특근매식비 6천원×3명×60일= 1백만원
- 심사장소 등 임차료 1,000천원×2회= 2백만원
- 홍보, 협의회 등 국내출장 50천원×2명×20회= 2백만원
- 학사지도 및 실무협의회 국외출장 1,715천원×3명×4회= 20백만원
- 과정 종료자 귀국 항공료 500천원×70명= 35백만원
- 유관기관 협의회비 30천원×10명×15회= 5백만원
- 동문회 행사지원비 30천원×20명×5회= 3백만원
- 수업료 등 장학금 10,240천원×500명= 5,121백만원
- 코디네이터 및 인턴 4대보험 등 고용부담금 3백만원
- **계 : 5,281백만원**

ㅇ 중고생교류지원 : 430백만원

■ 사업목적 : 한·중·일 청소년 교육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청소년의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2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인원 : 한-중, 한-일 상호 교육교류 520명(초청 260명, 파견 260명)
- 주요지원내용 : 파견단 항공료, 초청단 연수경비 등 체재비
- 연수기간 : 5일, 7일, 10일, 6개월

■ 산출내역

① 한일중고생교류(양국 각 100명, 7일)

- 방일단 항공료 : 500천원×100명= 50백만원
- 방일단 보험료 : 20천원×100명= 2백만원
- 방일단 사전교육 및 연수준비용품 : 40천원×100명= 4백만원
- 방일단 인솔자 행정경비 및 업무협의 : 1,000천원×2회= 2백만원
- 방한단 중고생 위탁경비 : 50,000천원×2개단= 100백만원
- 방한단 컨설팅 및 수탁기관 점검비 : 100천원×10회=1백만원
- **계 : 159백만원**

② 한일상대국어선택고교생교류(양국 각 60명, 5일)

- 방일단 항공료 : 450천원×60명= 27백만원
- 방일단 보험료 : 15천원×60명= 1백만원
- 방일단 사전교육 : 20천원×60명= 1백만원
- 방일단 인솔자 행정경비 및 업무협의 : 500천원×2단= 1백만원
- 방한단 초청경비 : 15,000천원×2단= 30백만원
- 방한단 컨설팅 및 수탁기관 점검비 : 100천원×2명×5회=1백만원
- **계 : 61백만원**

③ 한중중고생교류(양국 각 100명, 7일)

- 방중단 사전교육 및 연수준비용품 : 6백만원
- 방중단 항공료 등 : 660천원×100명= 66백만원
- 방한단 연수 위탁 : 1,350천원×100명= 135백만원
- 연수 현장점검 : 1백만원
- 업무협의 : 18천원×10명×10회= 2백만원
- **계 : 210백만원**

ㅇ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 유학수요가 많은 국가 및 전략적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참가·지원 (총 21회)
- 한국유학 안내, 온라인 입학신청서비스 및 GKS 장학생 등록,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등 유학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 산출내역

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운영

- 행사장 임차 및 운영 90,000천원×21회= 189백만원
- 부스 제작·설치 7,860천원×21회= 165백만원
- 행사 통역 및 자료 번역비 600천원 × 21회= 12백만원
- 박람회 운영 및 업무협의회 1,000천원×21회= 21백만원
- 홍보 자료 제작·발송 3,000천원×21회= 63백만원
- 현지 광고비 2,000천원×21회= 42백만원

- 항공료 및 출장여비 1,300천원×2인×21회= 54백만원
- 합계 : 546백만원

②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1식×230백만원= 230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생교육교류 지원	13,053	12,302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200명, 6,119백만원	-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188명, 5,815백만원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파견 · 500명, 5,497백만원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파견 · 500명, 5,281백만원
■중고생교류지원	- 예산액 : 661백만원 - 인원 : 700명	- 예산액 : 430백만원 - 인원 : 520명

□ **지원 필요성**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 선호도가 낮은 학문분야 육성을 통한 학문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국외 유학 기회 확대로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 강화

○ 중소기업 재직 기술·기능인의 해외 유학(또는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가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기회 균등 실현

○ 우수 인재의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 과정 수학을 지원하여 미래의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할 이공계 인재 양성

○ 한일관계를 선도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 양성

< 중고생교류지원 >

○ 양국 교육교류 증진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

○ 한·중·일 청소년간 교육교류로써, 양국의 교육환경 및 문화 등 제분야에 걸친 공유·비교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

○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미래인재 육성

① 한일중고생교류
- 한·일 교육 교류 증진 및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으로 글로벌 청소년 인재 육성

②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 제2외국어로 상대국어 선택 유도 및 한국어 보급 확산 · 입지 강화

③ 한중중고생 교류
- 한·중 중고생간 교육교류 증진 및 상호 이해 제고

< 한국유학홍보 >

○ '해외 한국유학 홍보' 사업은 정부의 「Study Korea Project('04.11)」 및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15.7)」의 수립·추진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23년까지 현재 10만여명의 2배 수준인 20만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한국유학(Study in Korea)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수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해외 홍보 사업임.

※ 외국인 유학생수 : ('17) 123,858명 → ('18) 142,205명 → ('23 목표) 200,000명

<외국인 유학생 수>

(2018.4.1.기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유학생수 (명)	75,850	83,842	89,537	86,878	85,923	84,891	91,332	104,262	123,858	142,205
증감율	⬆18.6%	⬆10.5%	⬆6.8%	⬇3%	⬇1.1%	⬇1.2	⬆7.6	⬆12.4	⬆18.8	⬆14.8%

○ '15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지속적인 개최 필요

* 출신국('18) : 중국(48.2%), 베트남(19.0%), 몽골(4.8%), 우즈베키스탄(3.9%), 일본(2.8%) 등

** 일본(20만('15)→80만('20)), 중국(39만('15)→50만('20)) 유학생 유치계획 수립·추진

○ 정부 핵심 대외 정책인 '신북방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대상 유학생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한 북방지역 국가 대상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확대 필요

* 국내유학생 수('18) : 러시아(1,080명, 0.8%), 카자흐스탄(962명, 0.7%)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생교육교류지원**	**10,852**	**13,053**	**12,302**	**△751**	**△5.8**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10,207	11,616 (700명×16.6백만)	11,096 (688명×16.2백만)	△520	△4.5
■ 중고생교류지원	645	661 (820명×0.8백만)	430 (520명×0.8백만)	△231	△34.9
■ 한국유학홍보	(711)	776 (박람회 21회, 온라인시스템 1식)	776 (박람회 21회, 온라인시스템 1식)	-	-
□ **비목**(합계)	**10,852**	**13,053**	**12,302**	**△751**	**△5.8**
○상용임금(110-03)	-	22	24	2	9.1
○일용임금(110-04)	22	23	23	-	-
○일반수용비(210-01)	146	359	352	△7	△1.9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66	65	△1	△1.5
○급식비(210-04)	12	23	23	-	-
○특근매식비(210-05)	-	1	2	1	100.0
○임차료(210-07)	12	75	69	△6	△8.0
○일반용역비(210-14)	405	810	681	△129	△15.9
○기타운영비(210-16)	16	17	-	△17	순감
○국내여비(220-01)	5	8	8	-	-
○국외업무여비(220-02)	245	330	256	△74	△22.4
○사업추진비(240-01)	14	24	27	3	12.5
○정책연구비(260-02)	-	50	-	△50	순감
○기타보전금(310-04)	9,968	11,240	10,768	△472	△4.2
○고용부담금(320-09)	1	5	4	△1	△20.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 전략적 필요분야 인재양성 및 국제적 감각을 지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교육교류 확대 추진

○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국 다변화 등 해외 한국유학 홍보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898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1,149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749백만원	-	-	
'18	13,053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1,616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661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13,053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1,616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661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
'19	10,346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9,570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776백만원	12,302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1,096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430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1,956
'20	18,623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7,714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909백만원	12,028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0,822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430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6,595
'21	18,623	- Global Korea Scholarshi (내국인) : 17,714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909백만원	11,788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0,582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430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6,835
'22	-		11,670	-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 10,464백만원 - 중고생교류지원 : 430백만원 - 한국유학홍보 : 776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7.2		△2.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③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 한.일 정상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 행동계획의 후속조치

< 중고생교류지원 >

- 한.일 정상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 선언
- 한·중 교육교류약정
- 국립국제교육원과 중국 교육부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와 합의서

ㅇ 추진경위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① 국비유학생 선발 · 파견

· 1977.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 시작

· 1998.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사업 이관

· 2010. 저소득층 특별전형 선발 시행

· 2014. 기술·기능인전형 선발 시행

② 한일 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 선발파견

· 1999. 한·일이공계 학부유학생 첫 선발 및 파견(100명)

· 2008. 제1차 사업 선발 완료 및 제2차 사업기간 연장

· 2017. 제3차 사업(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10년 연장 합의

· 2018. 한·일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 제2차 사업 선발 완료

☞ '18년 100명 선발 후 2차 사업 종료, '19년 3차 사업 200명 선발 시작

< 중고생교류지원 >

- 한.일 교류 : '98. 10. 15 한.일 정상 간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의 일환으로 사업 시행 합의
- 한.중 교류 : '08. 8. 25. 한.중 교육교류약정 개정시 반영
- '99년 '한.일 중.고생 교류' 일환으로 한국학생 방일(파견)연수 실시
- '00년 일본학생 방한(초청)연수 실시
- '05년 일본정부의 어려운 예산상황으로 한.일 교류규모 축소
- '07년 일본정부의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요청에 의거 중고생 일본파견인원 216명 확대 실시
- '08. 5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 '08. 8월 '한.중 교육교류 약정 개정시 반영
- '09. 1월 '한.중 중학생 교류'관련 업무 보고
- '13. 6월 한.중 인문교류 유대강화 방안 협의

< 한국유학홍보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01. 7)
-「Study Korea Project」('04. 11)
-「Study Korea Project」세부추진계획 ('05. 4)
-「Study Korea Project」강화 방안('05. 12)
-「Study Korea Project」발전 방안('08. 7)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11.5)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12. 10, 제12차 교육개혁협의회)

- 「Study Korea 2020 Project 세부 추진계획」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방안'('14. 3, 제3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15.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학생교육교류지원	119	119	111	109	109	119	119	131	13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실적

- 2015년
  ·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운영경비 등 절감, 환율변동 및 병역휴학에 따른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장학금 집행 잔액
- 2016년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일정 축소 및 본원 기숙사시설 이용을 통한 예산 절감, 환율변동으로 인한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장학금 집행 잔액
- 2017년
  · 국비유학생 2017년 선발자 중 유학 미개시자 장학금 미지급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장학금 집행 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0.7** ( )	( )	( )	110.7 ( )	**93.0** ( )	( )	17.7 ( )
'16년	**108.6** ( )	( )	( )	108.6 ( )	**101.6** ( )	( )	7.0 ( )
'17년	**119.0** ( )	( )	( )	119.0 ( )	**108.5** ( )	( )	10.5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898	11,898	13,053	-	13,053	11,578	88.7

○ 집행현황

▪ GKS(내국인) 사업의 추진일정 상 상반기 장학생 선발 후 하반기 유학개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학금 집행 시기가 8~9월에 집중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지적사항 >

○ 2014결산 교문위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기술기능인 실적저조 시 다른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파견 사업의 경우, 정확한 환율 예측치를 마련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조치결과 >

○ 2015예산편성 시 휴학자 및 중도포기자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물량 및 단가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였음

○ 2015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기본계획에 기술기능인 선발 목표인원 미달 시 국비유학 유사 분야로 대체 선발

○ 환율 추이 및 다양한 환율 정보를 고려한 환율을 반영하여 익년도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예산 2억 감액 편성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한국유학홍보 >

○ 해외한국유학홍보

- **일본** : '08년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수립하여 홍보 강화 및 취업 지원(인턴십 등)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기숙사 제공, 취업지원, 대학의 수학 여건 개선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중국** : '10년 '중국유학계획(Study Abroad in China)'수립 추진 중
· 2020년까지 유학생 50만명 유치 목표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유학업무 추진 및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프랑스** : 다각적인 유학생 유인정책 및 간소화된 입국절차 등을 통해 매년 한국학생 수 증가(1,500명 이상)
- **호주** : '17년 '교육국제화 국가전략 2025'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확대 추진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선진 각국의 경우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 처리를 포괄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자국으로의 유학을 지원
· **프랑스** : 'Campus France'를 통해 영어와 불어를 기본으로 각국 대사관에서 해당국 언어로 웹 사이트를 제공, 온라인으로 입학 지원 및 유학 비자 신청 지원, 의료보험·아르바이트·취업 등 정보 제공, 유형별 학교(대학, 그랑제꼴, 건축학교, 예술학교, 특수직업학교) 및 특별전형 정보 제공
· **호주** : 'Study in Australia/PRISMS'를 통해 12개국 언어를 지원, 호주 유학의 장점부터 졸업 후까지 메뉴가 구성되어 전주기를 관리하며 유학을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함

(6) 사업추진절차

<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

○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국비유학 자문위원회 실시 → 선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 원서 접수 → 유학생 선발시험 실시 → 유학생 최종합격자 공고 → 유학생 사전교육 실시 → 각국에 유학생 파견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 → 유학생 학사관리 → 귀국 및 사후관리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파견**
- 한일 실무협의(당해년도 선발 계획 및 사업 추진 관련 협의) → 선발 시행계획 공고 → 시도교육청 추천(필기시험 응시대상자 확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일본 대학 전공지원 → 최종합격자발표 → 등록 → 예비교육과정(1년 ; 한국, 일본 각 6월) → 일본대학 유학(4년) → 졸업 및 사후관리

< 중고생교류지원 >

o 초청 : 당해연도 사업규모협의 → 위탁기관 선정 및 연수일정 검토 → 단별초청자명단 수령 → 입국(방한) → 학교방문 등 일정수행 → 출국

o 파견 : 당해연도 사업규모협의 → 선발계획수립 → 연수대상자선발 → 사전교육 → 출국(방일) → 현지일정수행 → 귀국 → 결과보고

< 한국유학홍보 >

o **해외한국유학홍보**
- 재외공관 및 대학 등 유관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 기본계획 수립 및 참가 희망대학 수요조사 → 사전점검 및 재외공관 등 업무협의(필요시) → 개별 박람회·컨퍼런스 계획 수립 → 참가대학 확정 및 사전협의회 실시 → 홍보물품 제작 및 발송 → 출국 → 박람회 개최 등 현지 일정 수행 → 귀국 → 결과보고

o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시스템 TF팀 업무협의 실시 → 기본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한 전문 운영 업체 선정 → 시스템 추가개발(상반기) → 적용대학 모집을 통한 온라인입학신청 서비스 제공(연중) → 참가대학 모집을 통한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반기 1회) → GKS장학생 등록(연중)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센터 운영(연중)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 (참고2) 관련통계

참고 1 사업의 성과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 학부 유학생활 종료 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업 혹은 대학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기 유학생 중 한명은 일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일 양국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기수	출신대학	최종학위	현근무지	직위
1기	동경농공대학	박사	한미약품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기	히로시마대학	박사	삼성전기	책임연구원
1기	구마모토대학	박사	LG디스플레이	선임연구원
1기	니가타대학	학사	삼성물산	과장
2기	츠쿠바대학	석사	MIT대학	박사과정
2기	츠쿠바대학	박사	효고현립대학	교수
3기	도쿄대학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과정
3기	나고야대학	박사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3기	홋카이도대학	박사	조선대학교	교수
3기	동경공업대학	박사	KAIST	교수
4기	오카야마대학	박사	LG생명과학	대리
4기	나가사키대학	석사	LG전자	주임연구원
5기	츠쿠바대학	박사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원
5기	구마모토대학	석사	한미약품	연구원
6기	나고야대학	석사	LG이노텍	주임연구원
7기	가나자와대학	석사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과정
8기	고베대학	석사	한화케미컬	연구원
9기	지바대학	석사	현대자동차	연구원
10기	동경공대	석사	삼성전자	연구원

□ 중고생교류지원

○ '17년까지 한일교류 사업을 통해 21,260명이 교류에 참여하여, 한·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

○ 청소년의 국제적 안목을 배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한중 청소년 교류를 통해 2,185명이 교류에 참여하여, 상호 우호적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에 기여

□ 해외한국유학홍보

○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연도별 추진 실적

구 분	'01-'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국가	43개국	9개국	9개국	12개국	11개국	13개국	14개국	12개국	12개국	135개국
도시	89도시	11도시	11도시	13도시	14도시	14도시	17도시	16도시	17도시	202도시
참가교	1,022개교	199개교	202개교	193개교	278개교	240개교	308개교	316개교	394개교	3,152개교

○ 2017년 해외 한국유학 홍보 추진 실적

- 규모 : 12개국, 17개 도시, 온라인(사이버 박람회 2회) 총 19회

연번	국가	도시	시기	참가대학수	방문자수
1	세네갈	다카르	3.14~17	9	150
2	몽골	울란바토르	3.18~19	14	3,000
3	대만	가오슝	3.20~23	16	1,400
4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4.22	23	430
5		알마티		25	1,530
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4.23~24	20	3,000
7	대만	타이베이	4.29~30	26	1,370
8	이란	테헤란	4.23	8	1,500
9	미국	엘에이	5.23~25	34	15,000
10	러시아	모스크바	5.30~6.2	18	2,000
11	온라인	-	6.11~12	29	17,443
12	멕시코	멕시코시티	7.12~25	6	2,000
13	스페인	세비야	9.2~3	16	6,000
14	온라인	-	9.12~15	47	7,143
15	베트남	하노이	10.18~31	26	2,500
16		다낭		26	500
17		호치민	10.28	32	1,600
18	말레이시아	페낭	10.29	6	200
19		쿠알라룸푸르		13	710
계			10.28~29	394	67,476

○ 해외 한국유학 홍보 중남미, 유럽, 중동 등으로 다변화

- 중남미 유학 수요 발굴을 위해 '멕시코 한국유학박람회' 최초 개최
  ※ 참가대학 : 국내 6개 대학, 방문자수 : 2,000명(현장 추산)
- 유럽 유학 수요 발굴을 위해 '러시아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 중동 유학 수요 발굴을 위해 '이란 한국유학박람회' 2년 연속 개최

○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개최·참가하는 한국유학 홍보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홍보 채널 다양화**

< '17년도 재외공관의 한국유학 홍보 사례 >

국가	도시	행사명	시기	비고
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국립공대 교육박람회	10.4~6	멕시코대사관 주관 참가
브라질	상파울로	2017 한국대학유학 박람회	10.7	한국교육원 주관 참가
프랑스	파리	2017 파리 국제교육전	10.14	한국교육원 참가
터키	이스탄불	IEFT(International Education Fair Turkey) 국제교육박람회	10.28~29	한국문화원 참가
태국	방콕	2017 태국 국제유학박람회	11.11~12	한국교육원 참가

○ **고등교육 분야 국제 교류·협력 확대 기반 마련**

-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KAFS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3대 국제교류 컨퍼런스 등에 적극 참가

< '17년도 고등교육 국제교류 컨퍼런스 참가 현황 >

컨퍼런스	국가(도시)	일시	참가대학	주요 성과
APAIE (아시아-태평양)	대만(카오슝)	3.20~3.23	16개교	▪ 참가대학 평균 약 38건의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 (시립대) 홍콩소재 4개 대학과 학생 교환 협정 진행 등 14개 신규협정 - (서울과기대) 헝가리, 칠레 신규 국가 등과 15개 협정 체결
NAFSA (북미)	미국(LA)	5.30~6.2	18개교	▪ 참가대학 평균 약 38건의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추진, 전세계 다양한 고등교육 국제교류 관계자에게 한국 고등교육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등을 홍보
EAIE (유럽)	스페인 (세비야)	9.12~9.15	16개교	▪ 상대적으로 교류 네트워크가 부족한 유럽 지역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신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유럽지역 교류·협력 기반 확대

○ **다양한 유관기관·인적자원과 연계하여 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

- 전문대학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 한국어교육관리자협의회 등 국제교류 관련 협의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홍보 지원

국가	도시	행사명	시기	참가대학수	방문자수
대만	타이베이	한국유학박람회(NIIED) (한국어교육 관리자협의회)	4.29~30	26	1,370
베트남	하노이	한국 전문대학 유학박람회(NIIED)	10.18~31	26	2,500
	다낭			26	500
말레이시아	페낭	한국유학박람회 (한국어교육 관리자협의회)	10.29	6	200
	쿠알라룸푸르			13	710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운영**

○ 외국인 대상 **전주기적 한국유학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으로 연간 8,742,294건(월평균 728,525건)의 시스템 접속 수 달성 및 서비스 활성화

- Facebook, 웨이보(중국 블로그) 운영 등의 온라인 홍보활동으로 **'17년 가입 신규 회원 23,725명** 추가 확보 (누적 외국인 회원수 약 35만 명)
- 온라인 장점을 활용한 사이버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165개국 24,586명** 대상 한국유학 및 고등교육기관 홍보
- '17년 신규 인증대학 정보 추가 및 245개 대학 10,070건의 대학 정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최신 한국 유학 정보 제공**
- **자체 콜센터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 상담센터와의 연계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 유학 관련 문의 5,960건 처리

○ '17년 2,171명의 GKS **장학생 등록 지원** 및 16개 대학 2,262명 대상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 한국유학박람회 온라인 사전등록 서비스 기능 추가로 연간 16,102명의 사전 등록 인원 접수 등 오프라인 유치 활동 지원

참고 2 관련 통계 등

□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연도별 선발파견현황

(단위 : 명)

구분	'77	'78~'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국가수(개)	3	78	13	13	11	14	10	13	15	17	16	17	15	17	15	21	20	12	13	49
선발인원(명)	12	1,667	38	35	24	29	36	40	37	41	40	70	45	40	56	67	95	34	34	2,440

○ 국가별 파견 현황

(단위 : 명,%)

구분	'77	'78~'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비율
미국	10	1,305	18	15	9	11	16	14	11	6	18	37	16	16	24	30	42	15	18	1,631	67.04
영국	-	92	6	5	5	1	3	5	-	2	1	6	8	7	12	11	16	8	2	190	7.81
일본	-	43	1	2	1	2	1	2	1	4	1	3	-	-	2	3	3	-	1	70	2.87
독일	1	36	-	-	-	2	1	3	-	2	-	-	2	1	2	1	3	2	1	57	2.33
러시아	-	21	2	2	1	-	4	2	3	6	3	3	3	2	2	2	5	1	1	63	2.58
프랑스	-	19	1	2	2	1	-	-	-	2	-	1	-	-	1	1	3	1	2	36	1.41
중국	-	13	3	3	-	3	5	4	2	5	3	5	2	1	4	2	3	1	1	60	2.45
인도네시아	-	5	-	-	-	1	-	-	-	-	-	1	-	-	-	-	-	1		8	0.33
호주	-	6	-	-	-	-	-	-	1	-	1	1	-	1	2	-	2	-		14	0.58
캐나다	-	5	-	-	-	1	1	-	3	2	-	1	-	-	1	1	1	-	1	17	0.67
헝가리	-	5	-	-	-	-	-	-	-	-	-	-	-	-	-	-	-	--		5	0.21
기타	1	117	7	6	6	7	5	10	16	12	13	12	14	12	6	16	17	5	7	289	11.72
합계	12	1,667	38	35	24	29	36	40	37	41	40	70	45	40	56	67	95	34	34	2,440	100

※ 기타 국가 :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레바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베트남,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캐냐, 탄자니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폴란드, 핀란드 등 49개 국가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 연도별 선발 및 파견 현황

연도별	제1차	제2차									계
	1999~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발인원(명)	1,02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24
파견인원(명)	1,008	98	100	97	100	100	100	100	98	99	1,900

○ 과정 종료자 진로 현황(1기~13기)

선발연도(과정수료)	졸 업									기간내 미졸업	계
	취업			대학원 진학			제3국 체류(취업학업)	병역	진로 미정		
	국내	일본	소계	국내	일본	소계					
1999 ('05.3)	2	4	6	0	51	51	0	18	6	19	100
2000 ('06.3)	1	2	3	4	75	79	5	6	6	17	116
2001 ('07.3)	0	2	2	0	57	57	3	8	1	19	90
2002 ('08.3)	0	0	0	0	86	86	7	12	0	16	121
2003 ('09.3)	0	1	1	0	75	75	1	3	3	14	97
2004 ('10.3)	0	1	1	0	59	59	4	10	3	17	94
2005 ('11.3)	0	0	0	1	69	70	5	8	2	12	97
2006 ('12.3)	1	0	1	4	52	56	9	18	7	9	100
2007 ('13.3)	0	1	1	5	59	64	3	6	6	14	94
2008 ('14.3)	0	1	1	2	48	50	1	12	6	28	98
2009 ('15.3)	1	0	1	2	53	55	10	3	4	25	98
2010 ('16.3)	0	2	2	3	46	49	3	4	1	41	100
2011 ('17.3)	0	1	1	1	41	42	4	3	2	45	97
2012 ('18.3)	5	1	8	2	35	37	0	6	2	47	100
계	10	16	28	24	806	830	55	117	49	323	1,402

□ 중고생교류지원

ㅇ한·일 중고생 교류

(단위 : 명)

구분	199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방일	5,107	216	395	397	199	319	200	199	7,032
방한	2,803	215	207	200	200	200	200	200	4,225
계	7,910	431	602	597	399	519	400	399	**11,257**

ㅇ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단위 : 명)

구분	200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방일	297	60	60	60	59	60	60	60	716
방한	494	58	59	60	60	59	60	60	910
계	791	118	119	120	119	119	120	120	**1,626**

ㅇ 한·중 중고생 교류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방중	100	100	99	100	100	149	149	**797**
방한	100	100	100	99	93	150	150	**792**

[302]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외국어교육진흥	-	3,180	3,477	**297**	**9.3**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1 - 302

* 담 당 자 : 국제교류협력부장(라은종),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장(김동희), 주무관(설용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53개 특수외국어 지원 - 2018년 3개 전문교육기관 선정, 15개 언어 지원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ㅇ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00백만원

▪ 언어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한 평가시험 체제 또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체제 도입 등 추진

▪ 산출내역

- 표준교육과정 설계·개발 : 15개어×20백만원=300백만원
- 평가시험·인증체제구축 : 15개어×20백만원=300백만원
- 사전개발 : 15개어×33.3백만원=500백만원

ㅇ 인력 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특수외국어 인재가 사회적 수요에 맞게 각 분야에서 활용(연구인력, 통번역인력, 기업인력 등) 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내역

- 교과·비교과 활동 지원 : 15개어×73백만원=1,100백만원
- 대학원 통번역 전공 개설 : 15개어×10백만원=150백만원

ㅇ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 499백만원

▪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확대

▪ 산출내역

- K-MOOC 강좌 개발 : 6개어×50백만원=300백만원
- 특수외국어사업전담팀 인건비 : 2명×43백만원=86백만원
- 사업전담팀 운영비 : 1식×83백만원=83백만원
- 종합포털시스템 운영 : 12월×2.5백만원=30백만원

ㅇ 학부교육 내실화 : 628백만원

▪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및 특수외국어 전공자 역량 개발 지원

▪ 산출내역

- 학·석사연계과정(3.5년+1.5년) 운영 지원 : 15개어×2명×3.4백만원=102백만원
- 학부·대학원생 현지 연수 지원 : 15개어×3명×12백만=526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특수외국어교육진흥	3,180	3,477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조사·분석 : 1식×30백만원=30백만원 -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 설계·개발 : 10개어×30백만원=300백만원 - 평가체제 마련 현황 조사 : 1식×30백만원=30백만원 - 평가시험·인증체제 구축 : 10개어×30백만원=300백만원 - 사전개발 : 10개어×50백만원=500백만원	**(1,100백만원)** - 표준교육과정 설계·개발 : 15개어×20백만원=300백만원 - 평가시험·인증체제구축 : 15개어×20백만원=300백만원 - 사전 개발 : 15개어×33.3백만원=500백만원
■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1,450백만원)** - 교과·비교과활동지원 : 15개어×87백만원=1,300백만원 - 대학원 통번역 전공개설 : 15개어×10백만원=150백만원	**(1,250백만원)** - 교과·비교과 활동 지원 : 15개어×73백만원=1,100백만원 - 대학원 통번역 전공 개설 : 15개어×10백만원=150백만원
■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570백만원)** - K-MOOC 강좌 개발 : 6개어×50백만원=300만원 - 특수외국어사업전담팀 인건비 : 2명×38.5백만원= 77백만원 - 사업전담팀 운영비 : 85백만원 - 종합포털시스템 구축 : 1식×108백만원= 108백만원	**(499백만원)** - K-MOOC 강좌 개발 : 6개어×50백만원=300백만원 - 특수외국어사업전담팀 인건비 : 43백만원×2명=86백만원 - 사업전담팀 운영비 : 83백만원 - 종합포털시스템 운영 : 30백만원
■ 학부교육 내실화	-	**(628백만원)** - 학·석사연계과정(3.5년+1.5년) 운영 지원 : 15개어×2명×3.4백만원=102백만원 - 학부·대학원생 현지 연수 지원 : 15개어×3명×12백만=52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 전략지역 진출·교류**에 대비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수요 증대**

-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특수지역 지식산업 전문가** 및 **한류전도사 양성** 필요

※ 중동시장 : 22개 아랍국가와의 교류를 통한 할랄(halal) 시장 활성화, 중남미 :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산업투자 진출,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다자 간 FTA 협정** 체결, **ODA 국가 지원** 및 **글로벌 MICE*** **산업** 분야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문가** 중요

* Meeting(회의)-Incentives(포상관광)-Convention(컨벤션)-Events&Exhibition(행사및전시)

○ **해외 취·창업** 등 **新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소 기대**

- 국가 주도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 청년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조성**

※ 해외 인턴과정 이수자의 현지 취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인턴 수료자 88.9% vs. 일반졸업자 51.7%(2015년 한국외대 건강보험 DB자료)

○ **국제교류 다변화** 및 **전략국가에 대한 정보 확충**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미국, 중국 등 **특정국가에 편중된 교류**는 불확실한 **국가적 리스크에 취약**

※ 주요 수출국('17 수출입동향) : 베트남(3위), 인도(7위), 멕시코(10위), 인도네시아(13위), 말레이시아(15위)

- **세계 주요국***은 **외국어 교육**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략국가와의 **교류 및 정보 수집**에 필요한 **국가적 역량 강화** 노력

* **(미국)** 9.11테러 이후 National Security Language Initiative(NSLI*) 추진 : 미국학생이 주요언어 사용국가(한국,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되어 언어와 문화 체험 등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특수외국어를 양성할 수 있는 국립대가 없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한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국보다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기업이 진출해야 할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지역 등에 대한 긴급한 예산 투입**으로 향후 관련 **국가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학부교육 내실화 지원**은 관련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특수외국어교육진흥**	**-**	**3,180**	**3,477**	**297**	**9.3**
■ 특수외국어교육진흥	-	3,180 (1식x3,180백만)	3,477 (1식x3,477백만)	**297**	**9.3**
□ **비목**(합계)	**-**	**3,180**	**3,477**	**297**	**9.3**
○상용임금(110-03)	-	77	79	2	2.6
○일반수용비(210-01)	-	40	20	△20	△50.0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	1	-	-
○특근매식비(210-05)	-	1	1	-	-
○복리후생비(210-12)	-	1	1	-	-
○일반용역비(210-14)	-	108	-	△108	순감
○관리용역비(210-15)	-	0	48	48	-
○국내여비(220-01)	-	6	6	-	-
○국외업무여비(220-02)	-	15	15	-	-
○사업추진비(240-01)	-	2	3	1	50.0
○민간경상보조(320-01)	-	2,910	3,278	368	12.6
○고용부담금(320-09)	-	7	15	8	114.3
○자산취득비(430-01)	-	12	10	△2	△16.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53개 특수외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		
'18	3,180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770백만원	3,180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770백만원	-
'19	3,180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770백만원	3,477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0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499백만원 ■ 학부교육내실화 : 628백만원	297
'20	5,724	■ 교수학습 역량 제고 : 2,544백만원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770백만원	2,930	■ 교수학습 역량 제고 : 150백만원 ■ 교육지원 체제 마련 : 150백만원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00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08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 550백만원	△2,794
'21	5,724	■ 교수학습 역량 제고 : 2,544백만원 ■ 표준교육과정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25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770백만원	2,872	■ 교수학습 역량 제고 : 150백만원 ■ 교육지원 체제 마련 : 150백만원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1,00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022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 550백만원	△2,852
'22	-		2,843	■ 교수학습 역량 제고 : 150백만원 ■ 교육지원 체제 마련 : 150백만원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 99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1,003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 55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순증		△2.4%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16.8.4.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16.1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17.01. 특수외국어 교육 기본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7.03. 특수외국어 교육 5개년('71-'21)기본계획 수립
- '18.01.~02.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18.02.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선정(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특수외국어교육진흥	-	-	-	-	-	-	-	31.8	31.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	-	3,180	-	3,180	2,550	80.2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주요국은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체계적**으로 **외국어교육지원**

* 프랑스 : 이날코대, 미국 : 국방외국어대, 일본 : 동경외국어대, 오사카외국어대, 중국 : 북경외국어대, 러시아 : 므기모대 등

※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국립 외국어대학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6) 사업추진절차 : "참고 2" 참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8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5년간 재정 투자계획(안)

○ (참고2) 특수외국어 범위

참고 1 **5년간 재정 투자계획(안)**

추진과제	'17	'18	'19	'20	'21	계 ('17~'21)
총 계	80	7,987	8,237	8,497	8,419	33,220
1. 특수외국어 수요분석 및 대학 자율모델 창출	50	-	-	50	-	100
1-1.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50	-	-	50	-	100
2. 특수외국어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	4,230	4,550	4,730	4,730	18,240
2-1. 교수-학습 역량 제고	-	1,870	2,050	2,230	2,230	8,380
2-1-1. 교원 전문성 제고 및 교수인력 확보	-	1,190	1,370	1,550	1,550	5,660
- 교원 연구년을 활용한 현지 연수 지원 * 10명(10개 언어 * 1명) * 20백만원	-	200	200	200	200	800
- 교원 채용 지원 * 연 20백만원 * 2명 * 10개 언어	-	400	400	400	400	1,600
- 학·석사 연계과정(3.5년+1.5년) 운영 * 매년 20명씩 학부(3-2학기부터, 1인당 4.5백만원) 및 대학원(4-1학기&대학원 1학기부터, 1인당 9백만원) 연차적으로 지원	-	90	270	450	450	1,260
- 현지 박사과정 연수 지원 * 20명(10개 언어 * 2명) * 25백만원	-	500	500	500	500	2,000
2-1-2. 학생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	680	680	680	680	2,720
- 외국인 유학생 등 지원 * 10명 * 2백만원	-	20	20	20	20	80
- 비교과활동(학습동아리 등) 지원 * 10개 언어 * 1백만원	-	10	10	10	10	40
- 국내외 연수지원 * 연 6.5백만원 * 10개 언어 * 10명	-	650	650	650	650	2,600
2-2. 교육 지원체제 마련	-	1,050	1,050	1,050	1,050	4,200
2-2-1. 전공교육 다양화·내실화	-	300	300	300	300	1,200
- 학과 및 전공과목 신설·운영 * 연 30백만원 * 10개 언어	-	300	300	300	300	1,200
2-2-3. 대학시설 및 설비 구축	-	750	750	750	750	3,000
- 통역실습, 언어실습, 화상강의시스템 * 30개(10개 언어×3종류) * 100백만원 / 4개년	-	750	750	750	750	3,000
2-3.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	1,310	1,450	1,450	1,450	5,660

추진과제	'17	'18	'19	'20	'21	계 ('17~'21)
2-3-1-[1]. 표준교육과정 개발	-	330	300	300	300	1,230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조사·분석	-	30	-	-	-	30
-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 설계·개발 * (10개 언어 * 120백만원) / 4개년	-	300	300	300	300	1,200
2-3-1-[2]. 평가·인증체제 마련		330	400	400	400	1,530
- 평가체제 마련 현황 조사	-	30	-	-	-	30
- 평가시험·인증체제 구축 * (10개 언어 * 120백만원) / 4개년	-	300	300	300	300	1,200
-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관리	-	-	100	100	100	300
2-3-1-[3]. 교재개발	-	650	750	750	750	2,900
- 기본교육, 심화교육 및 스마트 교재 * (10개 언어 * 20백만원) * 3종류 / 4년	-	150	150	150	150	600
- 사전 개발 * (10개 언어 * 200백만원) / 4년	-	500	500	500	500	2,000
- 평가 등 기타 교재	-	-	100	100	100	300
3.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	2,300	2,300	2,300	2,300	9,200
3-[1]. 연구인력 양성	-	2,000	2,000	2,000	2,000	8,000
- 대학 자율 언어 * 10개 언어 * 100백만원	-	1,000	1,000	1,000	1,000	4,000
- 국가 지정 언어 * 5개 언어 * 200백만원	-	1,000	1,000	1,000	1,000	4,000
3-[2]. 통번역인력 양성	-	300	300	300	300	1,200
- 학과 및 전공개설 * 연 30백만원 * 10개 언어	-	300	300	300	300	1,200
4.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30	1,457	1,387	1,417	1,389	5,680
4-[1]. 일반인, 기업 및 지자체 대상 교육 지원	-	600	600	600	600	2,400
- K-MOOC 강좌 개발 * 10개 강좌 * 50백만원		500	500	500	500	2,000
- 기업 및 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지원 * 10개 강좌 * 5백만원 * 2식	-	100	100	100	100	400

추진과제	'17	'18	'19	'20	'21	계 ('17~'21)
4-[2].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구축	30	857	787	817	789	3,280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계획 위탁용역 및 지정평가	30	-	-	30	-	60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총괄센터 등 인건비 * (전임인력 40백만원*2, 행정인력 35백만원*2) * 4개	-	600	600	600	600	2,400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총괄센터 운영비	-	100	100	100	100	400
- 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	100	30	30	30	190
- 민관 참여 정기 협의회 개최	-	20	20	20	20	80
- 학문교류협정 및 인적교류 지원 등 * (5개 기관 * 30백만원) / 4개년	-	37	37	37	39	150

* 2018년 당초 7,987백만원 규모로 추진계획이었으나 3,180백만원 최종 확정됨.

참고 2 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의 범위(제2조 관련)

지역	언어
1. 중동·아프리카	가. 아랍어 나. 터키어 다. 아제르바이잔어 라. 이란어 마. 파슈토어 바. 다리어 사. 히브리어 아. 하우사어 자. 스와힐리어 차. 줄루어 카. 르완다어 타. 암하라어
2. 유라시아	가. 카자흐어 나. 우즈베크어 다. 키르기스어 라. 우크라이나어 마. 투르크멘어 바. 타지키스탄어 사. 몽골어
3. 인도·아세안	가. 힌디어 나. 우르두어 다. 산스크리트어 라. 네팔어 마. 벵골어 바. 신할리즈어 사. 베트남어 아. 말레이시아어 자. 인도네시아어 차. 태국어 카. 미얀마어 타. 크메르어 파. 라오스어 하. 타갈로그어
4. 유럽	가. 폴란드어 나. 루마니아어 다. 헝가리어 라. 체코어 마. 슬로바키아어 바. 세르비아어 사. 크로아티아어 아. 라트비아어 자. 벨라루스어 차. 조지아어 카. 그리스어 타. 불가리아어 파. 이탈리아어 하. 네덜란드어 거. 노르웨이어 너. 덴마크어 더. 스웨덴어 러. 핀란드어
5. 중남미	가. 브라질어 나. 포르투갈어

[303] 한국어능력시험개선(재량,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	-	208	**208**	**순증**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1- 303
* 담 당 자 : 국제교류협력부장(라은종), 토픽기획팀장(정미례), 교육연구사(양은미), 주무관(김은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평가 운영 IBT*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P** 수립 및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모의 시행** * Internet-based Test(인터넷 기반 시험)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정보화전략계획)
사업기간	'19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208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IBT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관한 **ISP 수립** 등 **말하기 평가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산출내역

- 말하기 평가 **IBT*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68백만원×1식= 68백만원
  * 말하기 평가는 음성 답안의 안정적 수거 및 대규모 시행을 위해 **Internet Based Test(인터넷 기반 시험)의 도입이 필수**임

※ IBT 시스템 인프라 구축 소요 예정 기간 : 3년(2020~2022년)
☞ 추진 로드맵: <붙임> 참조

-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 및 모의 시행**(2회)
  : 70백만원×2회 = 140백만원
- **계: 20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	208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	ISP수립을 통한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IBT시스템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 및 말하기 평가 도입 준비 (208백만원X1식)

□ 지원 필요성

○ 세계적인 언어 평가의 흐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말하기 시험이 부재한 상황**

* (과거) **언어 지식 측정** → (현재) **의사소통 능력 측정**

※ 타 외국어 공인시험 말하기 평가 : TOEFL iBT Speaking(IBT방식), TOEIC Speaking(CBT*방식), TEPS Speaking(CBT방식), 중국어 말하기 HSKK(IBT방식), 일본어 말하기 JSPT(CBT방식) 등

* Computer Based Test(컴퓨터 기반 평가)

○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평가**함으로써, 총체적인 한국어 능력 측정 도구로서의 완성도 제고

* 현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II : 3~6급)은 '읽기, 듣기, 쓰기' 3개 영역 평가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계획 및 IBT시스템 구축 계획과 전략적으로 연계된 **ISP 수립**을 통해 **IBT시스템 인프라 구축 모델 제시**

※ ISP 주요 내용

-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출제·시행·채점 업무 연계 분석 및 말하기 평가 IBT 시스템 구현 방안 제시
- 일반시행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의 확대 구축 전략 수립
- 시스템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정보보안 관리체계 수립
- 목표시스템 이행 계획 수립

○ 국가 주관 유일한 한국어 평가 도구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평가 IBT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유학·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한국어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기업 등의 **인재 선발·활용 기반 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	**208**	**208**	**순증**
■ 한국어능력시험말하기평가	-	-	208	**208**	**순증**
□ **비목**(합계)	-	**-**	**208**	**208**	**순증**
○ 일용임금(110-04)	-	-	4	4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73	73	**순증**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	1	**순증**
○ 급식비(210-04)		-	2	2	**순증**
○ 일반용역비(210-14)	-	-	128	128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IBT시스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말하기 평가를 안정적으로 도입 및 시행**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유학, 체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한국어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대학 및 기업 등의 **인재 활용 기반 조성**

○ **유일한 국가 주관**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어능력시험 확산·발전 및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	-	-	-	-
'18	-	-	-	-	-
'19	-	-	208	■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IBT시스템 구축 : 68백만원 - 모의시행 : 140백만원	208
'20	-	-	1,523	■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IBT시스템 구축 : 1,385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및 문항 출제 등 138백만원	1,523
'21	-	-	611	■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IBT시스템 고도화 : 369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및 문항 출제 등 : 242백만원	611
'22	-	-	444	■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IBT시스템 고도화 : 129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및 문항 출제 등 315백만원	444
연평균 증가율 (%)			181.7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3.03.23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4423호) 제35조 6항

☞ 국립국제교육원의 분장 사무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포함

○ 추진경위

- '97. :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한국학술진흥재단)
- '99. 2 : 사업주체 이관(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9. 12 : 사업주체 이관 결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1. 1 : 사업 이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1.~13. : 연 4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2회)
- '14. : 연 5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3회)
- '15.~'16. : 연 6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4회)
- '17.~'18. : 국내·외 동시 시행 확대(국내 1회, 국내·외 5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어능력시험개선	-	-	-	-	-	-	-	-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타 외국어 공인시험 말하기 평가 현황

언어별	말하기 시험명	주관기관	시험 방식	비고
영어	TOEFL iBT Speaking	ETS(미교육평가국)	IBT	
	TOEIC Speaking	ETS(미교육평가국)	CBT	
	IELTS Speaking	영국문화원	인터뷰	
	OPIc	미ACTFL	IBT	
	TEPS Speaking	서울대학교	CBT	
중국어	HSKK	중국 교육부	IBT	
일본어	SJPT	YBM	CBT	

(6) 사업추진절차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IBT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수립 → 문항 개발 및 출제자 양성 → 시험장 선정 및 모의 시행 → 채점 및 결과 분석 → 환류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말하기 평가 도입 필요성 등

참고 1 말하기 평가 도입 필요성 등

1. 말하기 평가 도입 필요성

○ 전세계적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수요(지원자수, 활용처) 확대** 및 응시자·학계·기업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입 촉구 증폭**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현황(최근 5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자 수(명)	208,448	206,777	250,141	290,638	329,224
시행 국가 및 지역 수	66개국	68개국	72개국	70개국	76개국

○ 현시대 언어 평가 흐름*과 달리 **한국어능력시험은 말하기 시험이 부재**

* (과거) **언어 지식 측정** → (현재) **의사소통 능력 측정**

언어	시험명	주관기관	평가 영역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영어	TOEFL iBT	미국 ETS	○	○	○	○
	IELTS	영국문화원	○	○	○	○
	i-TEPS	서울대학교	○	○	○	○
중국어	HSK, HSKK	중국 교육부	○	○	○	○
일본어	JLPT	일본 외무성 산하일본국제교류기금	○	○	×	×
	SJPT	YBM시사	×	×	×	○

○ 2012 ~ 2017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정책연구** 추진

연번	연도	연구과제명	기관명	비고
1	2012	한국어능력시험 CBT/IBT 기반 말하기 평가를 위한 문항 유형 개발	경희대학교	
2	2015	제2차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3	2016	제3차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4	2017	제4차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 2018 제5차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 **정책연구** 추진

※ 2018 말하기 평가 개발 정책연구 주요 과제

① 평가 구인 확정 ② 과제 유형 확정
③ 말하기 문항 개발 및 예비시행 ④ 출제 매뉴얼 개발
⑤ 채점 매뉴얼 개발 ⑥ 말하기 평가 성적표 개발
⑦ 시행 프로그램 기능정의서 제시

○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요구 조사**

- 대상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자, 대학 관계자(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기업 관계자(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업) 총 772명
- 응답자 분포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무응답	합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무응답	합계
응시자	104	162	0	266	13	169	58	9	2	15	266
한국어교육자	4	95	1	100	0	0	45	44	11	0	100
대학 관계자	46	67	6	119	0	16	63	28	11	1	119
기업 관계자	142	122	23	287	0	21	57	76	102	31*	287
합계	296	446	30	772	13	206	223	157	126	47	772

* 중복 응답 포함

- 시기 : 2015년 및 2018년
- 방법 : 설문지 배포를 통한 설문조사
- 주요결과

① 응시자(외국인 유학생)

· 응답자의 **82.3%**가 **한국어 말하기 시험 필요성에 공감**
· 응시 목적으로 응답자의 65.4%가 말하기 능력 확인을 선택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평가 요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② 한국어교육자(대학 교원)

·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듣기 1순위, 말하기 2순위** 선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사정**에 말하기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89%**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에 **말하기 평가 사용 의향 92%**

③ 대학 관계자(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사정**에 말하기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78.1%**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에 **말하기 평가 사용 의향 63%**

④ 기업 관계자(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능력으로 **듣기 1순위, 말하기 2순위** 선택
·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 말하기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 68%**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형**에 **말하기 평가 사용 의향 53.7%**

2. ISP 수립 이후 인프라 구축 3개년 사업 추진 로드맵

	국고지원			'23년
	1차년도('20년)	2차년도('21년)	3차년도('22년)	
추진내용	☑ IBT시스템 구축 : 1,385백만원 -6개 프로그램 개발 -H/W, S/W 구입 ☑ 전문인력 채용 : 63백만원 ☑ 문항 출제 : 19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등 : 56백만원	☑ 시범 시행 -연 1회(하반기) -700명 ☑ IBT시스템 고도화 : 369백만원 -3개 프로그램 개발 -기존 프로그램 보완 ☑ 전문인력 활용 : 63백만원 ☑ 출제/채점(1회) : 120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등 : 59백만원	☑ 시범 시행 -연 2회(상·하반기) -1,500명(750명×2회) ☑ IBT시스템 고도화 : 129백만원 -기존 프로그램 보완 ☑ 전문인력 활용 : 63백만원 ☑ 출제/채점(2회) : 193백만원 ☑ 출제/채점자 양성 등 : 59백만원	☑ 일반시행 -연 3회(3,6,9월) -6,000명(2,000명×3회) -응시료 6만원 ☑ IBT시스템 유지보수 -기존 프로그램 관리 ☑ 전문인력 활용 ☑ 출제/채점(3회) ☑ 출제/채점자 양성
소요예산	15.2 억원	6.1 억원	4.4 억원	응시료 수입 36억원으로 자체 운영

※ 응시료 6만원 근거 : 국내·외 말하기 시험 응시료 중 최저 금액(중국어 말하기 및 숙명여대 MATE 시험)

3. 기대효과

○ **(정확한 한국어 측정 도구 제공)** 재외동포, 국내·외 외국인 및 다문화 출신 내국인에게 정확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제공 및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 **(인재 선발·활용 기반)**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 인구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국내·외 한국기업의 인재 선발·활용 도구를 제공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공인시험 위상 제고)** 언어의 주요 4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완성된 도구를 갖춤으로써 세계적인 한국어 공인시험으로서의 위상을 높임

○ **(한류 확산 및 한국어 보급 확대)**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韓流)를 다변화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전 세계적인 보급 확대

○ **(시험 운영 체제 혁신)** 말하기 평가를 통해 IBT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체제의 혁신 도모 및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홍보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

[304] 재외동포 초청교육(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재외동포 초청교육	**521**	**800**	**982**	**182**	**22.8**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1 - 304

* 담당자 : 글로벌인재양성부장(박승철), 재외동포팀장(이애경), 교육연구사(정동욱)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
사업기간	'62~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운영 : 8개 과정, 200명
지원조건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참가자 교육비(장학금)* 등 지원 : 524백만원(150명×3.5백만)

* 항공료, 수업료 및 체재비

※ 교육비 지원인원 확대 ('18) 90명, 342백만원 → ('19) 150명, 524백만원

○ 강사수당 등 인건비 : 450백만원(18명×25백만)

○ 사업운영비 8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재외동포 초청교육	800백만원	982백만원
- 강사수당 등 위탁인건비	450백만원	450백만원
- 교육지원비(장학금)	342백만원 교육비 지원 90명	524백만원 교육비 지원 150명
- 사업운영비	8백만원	8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 책무가 수반되는 사업)**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이사업은 **국가적 책무***가 수반되는 사업임

*** 국정과제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국가장학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참여 동포 거주국가가 일본 중심에서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 및 수요가 많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수요에 비해 **참여가 제한(입학포기)****되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배려** 필요

* ('11) 16개국 → ('17) 27개국

** **신북방 정책** 추진 관련 중앙아시아(고려인)동포의 교육참여 확대 필요하나 입학허가생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입학 포기**

<최근 2년 합격생 수 및 포기자 수>

(단위 : 명)

연도	'17	'18
합격생수	239	341
포기자수	20	51
지역별 포기자수	중앙아시아 12(경제적 형편 12) 중남미 2(경제적 형편 2) 중국 1(경제적 형편 1) 일본 3(경제적 형편 1, 취업 2) 미국 1(건강 1), 프랑스 1(건강 1)	중앙아시아 39(경제적 형편 37, 건강 2) 일본 2(경제적 형편 1, 취업 1) 중국 2(진학 1, 개인사정 1) 미주 4(경제적 형편1, 개인사정 3) 대양주 3(경제적 형편 1, 진학2) 중동 1(개인사정 1)

⇒ 경제적 형편으로 입학(또는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액 국가 장학사업으로 단계적 전환 필요

※ 중앙아시아(고려인/CIS국가) , 중국(조선족/연변), 중남미(애니깽/멕시코, 쿠바 등) 지역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된 선열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장학금 효과) 장학금 예산 확대에 따른 효과는** ①한민족정체성 확립(수료생수, 한국어능력) ②차세대 역량강화(대학(원)수학지원) ③글로벌 친한 네트워크 구축이며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18년 **수료생 수**는 29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지표인 **한국어능력** 향상률은 최근 4년간 꾸준히 목표치 초과 달성

<장학금 예산 확대에 따른 수료생 증가 및 성과지표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		'14	'15	'16	'17	'18
장학금예산		52	52	52	**164**	**342**
수료생수		182	182	181	**219**	**290** (예정)
성과지표	목표	55.2	59.6	61.5	63.5	-
	실적	59	61.3	64.3	63.6	-

- **대학(원)수학준비과정** 확대* 및 수학생수 증가 전환**

* ('17) 6개월 1개 과정 → ('18 이후) 5개월 2개 과정

** ('14) 38명 → ('15) 47명 → ('16) 7명 → ('17) 10명 → ('18) 40명

- 재외동포는 피가 섞인 동일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의 전략적 투자보다 **글로벌 친한 네트워크** 구축 효과가 큼

- **(단계적 증액)** '18년 총 4회차 모집 결과 341명이 합격하였으며, **연간 290명이 수료할 것으로 예상**됨. **단계적 증액 측면에서 교육지원비(장학금) 추가 증액 필요**

  * 한민족정체성 회복에 대한 강한 내재동기가 최근의 장학금 예산 확대로 인해 급격한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재외동포 초청교육**	**521**	**800**	**982**	**182**	**22.8**
○ 강사수당 등 인건비	450 (18명x25백만)	450 (18명x25백만)	450 (18명x25백만)	-	-
○ 교육비지원(장학금)	71 (20명×3.52백만)	342 (90명×3.8백만)	524 150명×3.5백만	**182**	**53.2**
○ 사업운영경비	-	8	8	-	-
□ **비목**(합계)	**521**	**800**	**982**	**182**	**22.8**
○ 일반수용비(210-01)	-	7	7	-	-
○ 일반용역비(210-14)	521	792	974	182	23.0
○ 사업추진비(240-01)	-	1	1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교육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인 수업료와 체재비, 항공료 등의 소요 경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여 재외동포 교육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과 서비스 제고를 통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육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21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521백만원 * 교육비 지원 20명	-	-	-
'18	521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521백만원 * 교육비 지원 20명	80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00백만원 * 교육비 지원 90명	279
'19	725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725백만원 * 교육비 지원 70명	982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982백만원 * 교육비 지원 150명	257
'20	82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20백만원 * 교육비 지원 96명	80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00백만원 * 교육비 지원 90명	△20
'21	86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60백만원 * 교육비 지원 115명	80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00백만원 * 교육비 지원 90명	△60
'22	-		800	■ 재외동포 초청교육 - 200명, 800백만원 * 교육비 지원 90명	
연평균 증가율 (%)	14.3		1.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8조

>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 **제37조(국내 교육과정 등)**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정과제(1-3-10) :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 역사, 문화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 (기대효과)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추진경위

① 추진 배경

- 동포사회 중심세대가 3~4세대로 교체됨에 따라 현지 사회로의 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민족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증대
- 3세대 이상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능력 저하 및 민족정체(뿌리의식) 약화로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큰 걸림돌
-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해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가 민족정체성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국가적 지원 강화

② 추진 경과

- 1962 서울대학교 '재일동포 모국수학생 지도'를 모태로 함
- 1977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원 개원
- 1992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및 업무이관
- 20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반영 : 장·단기 및 연수교육과정
- 2008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2009~ 직접수행 및 민간기관 위탁 운영

③ 국고지원 변화 과정

- **(사업 초기)** 재일동포 중심의 참여로 인해 자체수입(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등의 수학생 체재비)으로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음
- **(2009년 이후)** 외부기관으로 민간 위탁함에 따라 전체 운영비를 **자체수입**(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등의 체재비)과 **위탁운영경비 국고지원**(강사수당, 사무원수당 등 인건비)을 통해 충당해왔음
- **(최근)** 참여 동포 거주국가가 일본 중심에서 **중앙아시아(CIS국가), 중남미, 중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국고지원(장학금)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과정별 체재비 내역>

(단위 : 원)

과정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총액**
대학(원)수학준비과정(5개월)	1,150,000	750,000	1,485,000	**3,385,000**
모국이해과정(3개월)*	690,000	450,000	891,000	**2,031,000**
모국이해과정(2개월)	460,000	300,000	594,000	**1,354,000**

* 중앙아시아 등 저소득국가 동포들은 현실적으로 체재비와 왕복항공료 부담 곤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재외동포초청교육	36.3	45.3	45.3	45.3	45.3	43.7	43.7	8.0	-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보급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됨('18년~)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5.3 ( )	( )	( )	45.3 ( )	45.3 ( )	( )	0 ( )
'16년	45.3 ( )	( )	( )	45.3 ( )	45.3 ( )	( )	0 ( )
'17년	43.7 ( )	( )	( )	43.7 ( )	43.7 ( )	( )	0 ( )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보급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됨('18년~)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370	4,370	800	-	800	80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재외동포재단)

○ 목적 :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들의 모국 체험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 형성 국·내외 청년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함양		
. 구 분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 기 간	7.24(화)~31(화), 7박8일	
. 장 소	서울 및 지방 9개 도시	서울 및 지방 3개 도시
. 대 상	만 15세~18세 중고등학생 500명	만 18세~23세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 220명
· 내 용	지역농어촌 체험, 한국음식체험, 전통문화체험, 도시탐험 등 한국문화체험 한국어체험 및 국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홈커밍 선배들과의 토크콘서트, 자원봉사활동, 토론대회 등	
○ 시사점 : 위 사업은 8일 동안 한국 체험활동이 주가 되는 사업임. 한국에 입국한 재외동포 학생들이 위 과정 이수 후 귀국하기 전,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두 과정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재외동포 역량강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됨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위탁교육기관 공모 및 선정 → 재외동포 추천(재외공관) → 지원자 심사 및 선발 → 장학생 심사 및 선발 → 수학생 입국 → 국내교육과정 운영 (위탁교육기관) → 수학생 출국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입학 허가생 수 (명)	목표	-	-	-	208	242	'16~'18 3년간 실적 평균치의 110%에 3년간 평균 증가율 8% 적용	연간 4개 회차 모집 결과, 입학 허가된 지원자 수	입학허가 알림 공문(수신:외교부)의 입학 허가 지원자 명단
	실적	182	181	219	미정				
	달성도					-			

* 지표변경('19년~) : 장기교육과정 학업성취 증가율(%) → 국내교육과정 입학 허가생수(명)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의 변화
○ (참고2) 사업의 성과
○ (참고3) 수료생 일반 통계

참고 1 현장의 변화

□ ‘ 글짓기 대회 ’ 소감문(발췌)

2016	모국이해과정	브라질	남	22세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의 유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세 달 동안 공짜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공주에 와서 놀랐던 것은 **많은 학생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 그 돈으로 공부를 하러 한국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배우려는 열망과 열정입니다.**

□ ‘ 말하기대회 ’ 수학생 소감문(발췌)

2016	대학(원)수학준비과정	러시아	여	29세

<공주대학교에서의 추억>

늘 재외동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한 재외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재외동포 국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역사까지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2016	대학(원)수학준비과정	일본	여	22세

<내가 한국에서 얻은 것들>

8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고, 두 나라의 문화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중간에 있는 존재로서 한국과 일본의 좋은 점을 서로에게 전달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두 나라의 발전과 두 나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 돌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능숙하지는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재일동포로서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재외동포들이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것처럼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본에서 살겠습니다.**

2016	대학(원)수학준비과정	미국	남	21

<우리의 의무>

우리는 각각 여러 나라에서 와서 다른 문화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서로한테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은 다양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할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금까지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 능력을 키워서 국제 사회에서 활약하는 세계인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을 알리고 도와줍시다.**

□ ‘ 사진전 ’ 수학생 소감문(발췌)

2017	대학(원)수학준비과정	콜롬비아	여	24세

<우리 한국 대가족>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을 알아가고,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감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와 같은 재외동포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7	모국이해과정	아르헨티나	여	24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큰 존경심도 느끼게 되었다. 비록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한국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 특히, **나의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투쟁을 잊지 말고 항상 그들의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싶다.**

참고 2 사업의 성과

□ 모의한국어능력시험 등급 향상율(2014~2017)

연도	응시인원		등급 향상 정도			비고
			미향상	1개 등급	2개 등급 이상	
'14	장기과정	37명	1명(2.70%)	12명(32.43%)	22명(59.46%)	판정불가 5명
	단기과정	85명	44명(51.76%)	31명(36.47%)	10명(11.76%)	
'15	장기과정	44명	1명(2.27%)	16명(36.37%)	27명(61.36%)	
	단기과정	64명	27명(42.19%)	32명(50%)	5명(7.81%)	
'16	대학(원)수학 준비과정	28명	2명(7.14%)	8명(28.57%)	18명(64.29%)	
	모국이해과정	70명	16명(22.86%)	30명(42.86%)	24명(34.29%)	
'17	대학(원)수학 준비과정	10명	0명(0%)	2명(20.00%)	8명(80.00%)	
	모국이해과정	135명	67명(49.63%)	38명(28.15%)	19명(14.07%)	판정불가 11명

□ 수료생 대학진학 결과

<2014>

※ 지원자 27명 전원 합격

연번	교육과정	이름	거주국	합격	진학	비고
1	단기3		일본	홍익대 섬유패션디자인학과	홍익대	
2	단기3		토고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고려대 기계공학과		
				연세대 융합과학공학과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3	단기1		콜롬비아	중앙대 경영학과	중앙대	
4	단기1		피지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경희대	
5	장기		일본	부산대 일어일문학과	부산대	
6	장기		일본	인천대 경영학과	인천대	
7	장기		일본	군산대 해양학과	군산대	
8	장기		카자흐스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9	단기3		헝가리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대	
10	장기		일본	동국대 일본어학과	중앙대	
				중앙대 일본어학과		
11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경영학과	공주대	
12	장기		일본	공주대 관광경영학과	공주대	
13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경영학과	공주대	
14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경영학과	공주대	
15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경영학과	공주대	
16	단기2		카자흐스탄	공주대 경영학과	공주대	
17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경영학과	공주대	
18	단기3		태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서강대	
19	단기1		중국	동국대 전기전자공학과	성균관대	
				성균관대 공학계열		
20	장기		일본	중앙대 일본어학과	중앙대	
21	장기		멕시코	중앙대 기계공학과	성균관대	
				성균관대 공학계열		
22	장기		카자흐스탄	숭실대 기독교교육학과	숭실대	
23	장기		일본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24	장기		아르헨티나	전북대 스페인어학과	전북대	
25	단기1		중국	고려대 전기전자공학과	고려대	편입
26	장기		중국	동국대 행정학과	동국대	석사과정
27	단기3		일본	총신대 신학과	총신대	석사과정

<2015>

※ 지원자 20명 중 19명 합격

연번	교육과정	이름	거주국	합격	진학	비고
1	장기		우즈베키스탄	성균관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성균관대	
				중앙대 공과대학		
2	단기3		파키스탄	성균관대 화학과	성균관대	
				한동대 생명과학부		
3	장기		일본	성균관대 인문학계열	성균관대	
				중앙대 인문대학		
				경희대 일본어학과		
4	장기		일본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연세대	
				경희대 경영학과		
5	단기3		미국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연세대	
6	단기3		멕시코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연세대	
7	장기		일본	중앙대 인문대학	중앙대	
				경희대 영어학부		

8	장기		일본	중앙대 인문대학 경희대 일본어학과	중앙대	
9	장기		중국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성균관대 경영학과	경희대	
10	단기3		에콰도르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건국대 영어영문과	한국외대	
11	장기		일본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중앙대 인문대학 경희대 영어학부	한양대	
12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경영학과	공주대	
13	장기		카자흐스탄	공주대 경영학과	공주대	
14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학부	공주대	
15	장기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관광학부	공주대	
16	단기3		카자흐스탄	공주대 관광학부	공주대	
17	단기1		러시아	이화여대 경영학과	이화여대	석사
18	단기1		카자흐스탄	공주대 컴퓨터공학과	·	포기
19	장기		파라과이	부산외대 스페인어과	·	포기
20	단기1		우크라이나	공주대 경영학과	불합격	서류미비

<2016>

※ 지원자 8명 중 7명 합격

연번	교육과정	이름	거주국	합격	진학	비고
1	모국이해		우즈베키스탄	경희대 경영학과	경희대	9월 입학
2	모국이해		미얀마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연세대	9월 입학
3	대학(원)수학		일본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경희대 관광학부	경희대	
4	대학(원)수학		일본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성균관대	
5	대학(원)수학		에콰도르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연세대	
6	대학(원)수학		일본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	불합격
7	대학(원)수학		중국	공주대 문화재보존학과	공주대	편입
8	모국이해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한국어교육학과	공주대	대학원

<2017>

※ 지원자 12명 중 12명 합격

연번	교육과정	이름	거주국	합격	진학	비고
1	모국이해		키르기즈스탄	공주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공주대	
2	대학(원)수학		일본	경희대 관광학부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홍익대 경영학과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경희대	
3	대학(원)수학		일본	부산대 무역학과 공주대 환경공학과 인천대 무역학부	부산대	
4	대학(원)수학		일본	공주대 관광학부 동국대 일본학과	동국대	
5	모국이해		중국	공주대 퍼니처 디자인	공주대	편입
6	모국이해		카자흐스탄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한국항공대	
7	대학(원)수학		콜롬비아	연세대 언더우드국제학부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	연세대	
8	모국이해		중국	공주대 한국어교육학과	공주대	대학원
9	모국이해		우즈베키스탄	공주대 경영학과	공주대	대학원
10	대학(원)수학		일본	경희대 일본어학과	경희대	
11	모국이해		볼리비아	고려대 스페인어과	고려대	
12	모국이해		중국	서경대 예술메이크업	서경대	대학

참고 3 수료생 일반 통계

(단위 : 명)

□ 교육과정별 연도별 수료인원

과 정	개설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대학(원)수학준비과정	'62	4,017	122	140	99	104	100	94	138	149	188	51	50	39	38	47	7	10	5,393
모국이해과정	'81	1,470	113	104	103	85	97	85	-	-	-	67	102	71	84	62	93	182	2,718
방학특별과정		-	-	-	-	-	-	-	-	26	66	81	39	67	60	73	81	27	520
소계		**5,487**	**235**	**244**	**202**	**189**	**197**	**179**	**138**	**175**	**254**	**199**	**191**	**177**	**182**	**182**	**181**	**219**	**8,631**

□ 대학(원)수학준비과정 수료현황(2000~2017)

연번	국 가	연 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	과테말라	4		1						1										6
2	괌		2	1		2	2													7
3	남아공							1												1
4	독일	1	3	1	2		1	1		6	4	4								23
5	러시아	3	2	9	4	5	6	7	5	12	9	12	2	1			1			78
6	멕시코				1	1										1	3			6
7	모로코								1											1
8	미국	1	2				1		1	1	5	4	1							16
9	볼리비아						1				1									2
10	브라질	2	8	1	10	6	4		3	3	2	8	1		3					51
11	스위스									3	3	1				1				8
12	아르헨티나	5	3	1	3	4	2	6	3	5	10	16	9		4	2	1	1	1	76
13	에콰도르			1	2	2	2		1	1	1	1		1	1			1		14
14	엘살바도르						1			0		1								2
15	온두라스								1	1	2	1								5
16	우즈베키스탄	3	4	11	13	10	8	9	4	5	1	1	2	6	4	8	6	1	1	97
17	일본	42	66	57	77	62	60	62	53	53	36	55	22	32	24	16	22	1	6	746
18	중국	30	35	36	20	5	13	12	17	27	55	67	7	5		2	7	1		339
19	카자흐스탄		1	3	6	1	1			5	5	3	1	3	1	6	3	1		40
20	캐나다								1	2		1								4
21	키르기스스탄	1	3						1	0	5		1	1		1	1			14
22	타이베이							2	3	4	2	1								12

연번	국 가	연 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3	파라과이	3				1	2			2		2	2				1	1		14
24	프랑스	1								0	2									3
25	호주				1					0										1
26	휘지				1					0										1
27	몽골									1										1
28	브루나이									1										1
29	오스트레일리아									1										1
30	페루									2										2
31	베트남									1										1
32	캄보디아									1										1
33	이란										1						1			2
34	홍콩										1	2								3
35	콜롬비아										1	1	1	1	2				1	7
36	칠레											3								3
37	케냐										1	1								2
38	필리핀										1	2								3
39	태국										1									1
40	영국											1								1
41	코스타리카												2							2
42	우크라이나															1				1
43	벨라루스																1		1	2
계		**96**	**129**	**122**	**140**	**99**	**104**	**100**	**94**	**138**	**149**	**188**	**51**	**50**	**39**	**38**	**47**	**7**	**10**	**1,601**

□ 모국이해과정 수료현황(2000~2017)

※ 08~10년도는 장기교육과정에서 통합운영

연번	국 가	연 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16	'17		
1	괌				2		1									1		4
2	그루지아		1						1									2
3	네덜란드		1															1
4	덴마크		1															1
5	독일	9	6	8	13	18	10	11	9	1		2	3	4	2	4		100
6	러시아	7	5	3	8	6	6	7	5	6	3	2	5		6	11		80
7	말레이시아			1														1
8	미국	6	5	3	3	1	2			3	4	2		7	2	9		47
9	베네수엘라		4		2	1	2											9
10	벨라루스				1							1	1	1	1			5
11	브라질	4	3	9	3	8	3		3	1	4				1	10		49
12	스웨덴	1			1													2

연번	국 가	연 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16	'17		
13	스위스		1	2	1	1	1	3	1				1					11
14	스페인	2										2	2					6
15	아르헨티나		1			2	1	2	1	2	2	5	5	2	4	6		33
16	우즈베키스탄	9	5	11	23	7	11	9	4	4	9	12		7	14	22		147
17	우크라이나		1			1					1	1	1		2	3		10
18	이스라엘							2										2
19	이집트	1	4	1		1												7
20	인도								1		2							3
21	일본	13	19	31	28	38	30	36	39	14	34	16	21	10	41	30		400
22	중국	38	61	39	18	10	9	11	16	26	6	5	7	4	8	18		276
23	칠레			1							1			1				3
24	카자흐스탄	1		1	1	1	1	6	2	1	12	9	26	10	3	32		106
25	캐나다			1				1			4			3		1		10
26	콜롬비아	1				2		1	1	2			1	3	2	1		14
27	키르키즈스탄						1	1		4	3	4	5	2	5	13		38
28	타이베이					1	1					1						3
29	탄자니아	1																1
30	태국	2	1			1		1	2	1	1		1	1				11
31	파나마			1														1
32	파라과이	1	2	1			1				4	5	1	1				16
33	과테말라									1	2	1				1		5
34	페루		2			3		2										7
35	에콰도르										2			1		2		5
36	온두라스										2							2
37	볼리비아										1	1				4		6
38	코스타리카											1						1
39	프랑스	3	1															4
40	오스트리아										1							1
41	영국										1							1
42	필리핀					1				1								2
43	호주	1														1		2
44	말레이시아						1									1		2
45	몽골						1	1										2
46	미얀마						1	1							1			3
47	방글라데시							1			1							2
48	스리랑카						1											1
49	캄보디아						1				2							3
50	싱가폴											1						1
51	필리핀							1										1
52	가나												1					1
53	헝가리												1					1
54	멕시코												1	1		1		3
55	피지												1			1		2
56	이란													1				1

연번	국 가	연 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16	'17		
57	뉴질랜드													1		6		7
58	벨기에													1		1		2
59	파키스탄													1				1
60	터키														1			1
61	마다가스카르															2		2
62	우루과이															1		1
계		100	124	113	104	103	85	97	85	67	102	71	84	62	93	182		1,472

□ 방학특별과정 수료현황(2009～2017)

연번	국 가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1	일본		17	23	17	22	15	29	19	8	**150**
2	중국		12	7	1		3	4	5	6	**38**
3	미국	8	4	1		4	4		3	4	**28**
4	러시아			2	1	1	2	1	4		**11**
5	키르기즈스탄			1					9		**10**
6	우즈베키스탄				1	4	6	7	3		**21**
7	카자흐스탄			1		5	7	5	4		**22**
8	아르헨티나		5	12	1	5	2	4	7		**36**
9	브라질		16	9	4	7	1			1	**38**
10	파라과이		1	3	1			1			**6**
11	콜롬비아		1		2	2	1	2	3		**11**
12	에콰도르				1	1		1	4		**7**
13	코스타리카			1			2				**3**
14	독일						2	1		2	**5**
15	영국					1	1	3	2		**7**
16	스위스						1			1	**2**
17	칠레				1		2	1			**4**
18	캐나다	1			1			1	1	2	**6**
19	캄보디아			1							**1**
20	호주	17	10	20	7	13	8	5	9	1	**90**
21	멕시코							3			**3**
22	프랑스						1			1	**2**
23	뉴질랜드				1	1	2		1		**5**
24	남아공							5			**5**
25	보츠와나					1			4		**5**
26	사우디아라비아								1		**1**
27	스페인								1		**1**
28	우크라이나								1		**1**
29	도미니카									1	**1**
계		**26**	**66**	**81**	**39**	**67**	**60**	**73**	**81**	**27**	**520**

[300]영어교육센터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영어교육센터지원	793	809	891	82	10.1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2 - 300
* 담 당 자 : 기획조정부장(구연희), 영어교육센터장(이용훈), 주무관(허주훈)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제주영어교육도시* 정주민에 대한 특화된 영어 상용화 프로그램 제공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지원, 국내 영어공교육 선진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정책 개발 등 영어교육 관련 공익기능 수행 * 부처(기관) 공동 추진 사업 - 기재부, 교육부, 건교부, 국조실, 제주도청, 제주교육청
사업기간	'0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영어교육센터 운영 : 각종 연수 6,000명 내외, 인력 17명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영어교육센터 인건비 624백만원

▪ 영어전문강사 등 인건비 : 564백만원

세부 내용	산출내역	
보수*	▪ 4,407천원×9명×12개월 = 475,956천원	476백만원
고용부담금**	▪ 776천원×9명×12개월 = 83,800천원	84백만원
복리후생비	▪ 400천원×9명 = 3,600천원	4백만원

* 전문계약직 공무원 기준단가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 적용 : 가급(박사취득 후 1년) 나급(박사급), 다급(석사급), 라급(학사급)

▪ 시설관리직(청소) 인건비 : 60백만원

세부 내용	산출내역	
보수	▪ 1,979천원×2명×12개월 = 47,496천원	47백만원
고용부담금	▪ 542천원×2명×12개월 = 13,000천원	13백만원
복리후생비	▪ 400천원×2명 = 800천원	1백만원

○ 영어교육센터 기본 운영 267백만원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유지·관리 제반 경비 등 센터 필수 운영 경비

▪ 일반수용비(210-01) : 77백만원
- 센터 운영 및 연수 지원 위한 물품구매 : 775천원×12월 = 9,300천원
- 도서관 운영 물품구입 : 500천원×12월 = 6,000천원
- 홍보물(뉴스레터, 브로셔 등) 제작 : 2,500천원×4회 = 10,000천원
- 연수용 교재 구입 및 인쇄 : 30천원×10종×50권 = 15,000천원
- 차상위계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 620천원×12회 = 7,440천원
- 면접 및 자문위원 수당 : 200천원×5명×8회 = 8,000천원
- 전산(프린터, 복사기, 플로터 등) 소모품 등 : 600천원×12개월 = 7,200천원
- 업무용 컴퓨터백신소프트웨어구입 : 30천원×80개 = 2,400천원
- 수수료 및 기타잡비 998천원×12월 = 11,9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93백만원
-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 1,200천원×12월 = 14,400천원
- 행정용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 595천원×12개월 = 7,140천원
- 인터넷TV 사용료 : 10천원×37대×12개월 = 4,440천원
- 우편요금 : 143천원×12개월 = 1,716천원

- 전기요금(일반용 전력(갑) Ⅰ 고압A 선택Ⅰ기준) : 4,850천원×12월 = 58,200천원
- 상수도요금* : 52,300원+(200㎥×730원/㎥)=198천원×12개월=2,380천원
  * 구경 75㎜, 공공용 50초과~300이하, 730원/㎥ 기준
  (수도요금 요율표 : 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266호, 2016.7.14. 개정)
- 하수도요금* : 150㎥×1,060원/㎥×12개월 = 1,908천원
  * 공공용 50초과~300이하, 2018년 연도별 단가 1,060원/㎥ 기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 1개월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6326호, 2016. 9. 29. 개정)
- 건물 화재보험 가입 : 1,320천원×1회 = 1,320천원
- 영업 배상보험 가입 : 1,676천원×1회 = 1,67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4백만원**(6천원×13명×4회×12개월 = 3,744천원)

▪ **임차료(210-07) : 10백만원**
- 정수기 등 임차 : 175천원×12개월 = 2,100천원
- 업무용 차량 : 450천원×1대×12개월 = 5,400천원
- 연수용 차량 임차 : 550천원×1대×4회 = 2,200천원

▪ **유류비(210-08) : 4백만원**
- LPG 저장탱크 : 2,700천원 = 54,600MJ×49.78원/MJ
  (1,000Kg×1회×54.6MJ/Kg = 54,600MJ)
  * 산출기준(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 2017.3.1. 기준, 냉난방공조용) :
  49.78원/MJ = {(동절기(15.883원/MJ×4개월)) + (하절기(8.5645원/MJ×5개월)) + (기타 (14.329원/MJ×3개월)) / 3
- 업무용차량 유류비 : 105천원×1대×12개월 = 1,26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백만원**
- 저수조 청소 및 소독(법정의무) : 1,000천원×2회 = 2,000천원
  * 산출기초(100톤 이하) : 1,100천원 = 기본료 330천원 + 770천원(저수조 청소·소독 요율표, 2001.1.1)
- 건물 방역(법정 의무) : 500천원×6회 = 3,000천원
- 기계 및 전기실 유지관리비 : 500천원×12개월 = 6,000천원
- 시설관리 소모품 : 500천원×6회 = 3,000천원
-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 : 100천원×1대×12개월 = 1,2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30백만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750천원×12개월 = 9,000천원
- 전기안전관리용역 : 730천원×12개월 = 8,760천원
- 소방안전관리용역 : 360천원×12개월 = 4,320천원
- 승강기안전관리용역 : 360천원×12개월 = 4,32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 : 300천원×12개월 = 3,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백만원**(10천원×5명×120회 = 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백만원**
- 자문위원회 개최 : 30천원×10명×5회 = 1,500천원
- 유관기관 업무협의 : 30천원×5명×10회 = 1,500천원
- 연수운영 다과 등 : 200천원×15회 = 3,000천원

▪ **공사비(420-03) : 22백만원**(재해대비시설보수비 11,000천원×2회 = 22,000천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영어교육센터지원**		809	891
▪ **인건비**		576	624
보수	상용직	4,263천원×9명×12개월=460백만원	4,407천원×9명×12개월=476백만원
	시설관리직(청소)	1,979천원×2명×12개월=47백만원	1,979천원×2명×12개월=47백만원
고용부담금	상용직	509천원×9명×12개월=55백만원	776천원×9명×12개월=84백만원
	시설관리직(청소)	368천원×2명×12개월=9백만원	542천원×2명×12개월=13백만원
복리후생비	상용직	400천원×9명=4백만원	400천원×9명=4백만원
	시설관리직(청소)	400천원×2명=1백만원	400천원×2명=1백만원77
▪ **기본운영비**		233	267
- 일반수용비		6,084천원×12개월=73백만원	6,417천원×12개월=7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750천원×12개월=93백만원	7,750천원×12개월=93백만원
- 특근매식비		6천원×13명×4회×12개월=4백만원	6천원×13명×4회×12개월=4백만원
- 임차료		667천원×12개월=8백만원	834천원×12개월=10백만원
- 연료비		250천원×12개월 = 3백만원	334천원×12개월 = 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833천원×12개월=10백만원	1,250천원×12개월=15백만원
- 관리용역비		2,500천원×12개월=30백만원	2,500천원×12개월=30백만원
- 국내여비		10천원×5명×120회=6백만원	10천원×5명×120회=6백만원
- 사업추진비		500천원×12회=6백만원	500천원×12회=6백만원
- 공사비		-	11,000천원×2회 = 2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의거 7개 부처(기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수행 필요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행 협약(MOU) 체결('07.12) : 교육부는 영어교육센터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지원

*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건교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 센터 완공('14.7) 이후 정주민, 공무원 등 영어 상용화 연수 확대 시행 및 정부주관 연수 유치는 물론 '21년 완성 예정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운영경비 지원 필요(센터 안정화와 기반 구축)

※ 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 : 제주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지원, 영어교사 등 연수, 영어교육정책 연구·개발

※ 국회 등에서 영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요구('14년 예산 국회)

○ 센터 인근 지역 및 도서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어 캠프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운영 초기)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장('17년도 확대 시행)하여 차상위계층 및 다문화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명)	기간	협업기관
제주	차상위계층학생영어수	차상위계층학생(3-6학년)	315	'17.1월~8월	대정지역 아동센터
	제주도서지역학생 영어캠프	가파도, 추자도, 우도, 비양도 초중등학생	114	'17.9월(4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타지역	도서산간학생영어캠프	전남 도서지역학생	25	'17.5월	전남돌산중앙중학교
	영글로벌리더영어캠프	전국 차상위계층학생	36	'17.8월	아시아교류재단/CJ오쇼핑
	레인보우 영어캠프	전국 차상위 및 다문화자녀 학생	20	'17.8월	아시아교류재단
	친한친구 손잡고 영어 학습동아리 캠프	서울시 차상위계층학생	73	'17.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남시 소외계층학생 영어캠프	성남시 차상위계층학생	30	'17.12월	성남시 청소년 재단

<세부내역>

(백만원)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영어교육센터지원	793	809	891	82	10.1
▪ 인건비	513	576 (11명×52.4백만)	624 (11명×56.7백만)	48	8.3
▪ 기본운영비	280	233 (1센터×233백만)	267 (1센터×267백만)	34	14.6
□ 비목(합계)	793	809	891	82	10.1
○ 상용임금(110-03)	438	507	523	16	3.2
○ 일용임금(110-04)	18	-	-	-	-
○ 일반수용비(210-01)	58	73	77	4	5.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93	93	93	-	-
○ 특근매식비(210-05)	1	4	4	-	-
○ 임차료(210-07)	10	8	10	2	25.0
○ 유류비(210-08)	2	3	4	1	33.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	10	15	5	50.0
○ 복리후생비(210-12)	2	5	4	△1	△20.0
○ 일반용역비(210-14)	7	-	-	-	-
○ 관리용역비(210-15)	89	30	30	-	-
○ 국내여비(220-01)	6	6	6	-	-
○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 고용부담금(320-09)	55	64	97	33	51.6
○ 공사비(420-03)	-	-	22	22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센터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전국단위 연수 확대(영어교사심화연수 등), 연수 다변화 및 영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00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1.3백만= 15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18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
'19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891	▪ 인건비 : 11명X12개월X4.73백만 = 624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8백만= 33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7백만 ▪ 사업추진비 : 0.6백만X10회 = 6백만 ▪ 공사비 : 11백만×2회 = 22백만	82
'20	1,456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8.42백만 = 101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5백만= 60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8.5백만 = 102백만 ▪ 국내여비 : 9명X12개월X0.32백만 = 35백만 ▪ 운영비 : 12개월X20백만 = 240백만 ▪ 사업추진비 : 1백만X12회 = 12백만 ▪ 연수사업비 : 10개×23백만 = 230백만 ▪ 정책연구비 : 3개×35백만 = 100백만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647
'21	1,456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8.42백만 = 101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5백만= 60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8.5백만 = 102백만 ▪ 국내여비 : 9명X12개월X0.32백만 = 35백만 ▪ 운영비 : 12개월X20백만 = 240백만 ▪ 사업추진비 : 1백만X12회 = 12백만 ▪ 연수사업비 : 10개×23백만 = 230백만 ▪ 정책연구비 : 3개×35백만 = 100백만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647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2			809	▪ 인건비 : 11명X12개월X4.36백만 = 576백만 ▪ 공공요금 : 12개월X7.75백만 = 93백만 ▪ 연료비 및 유지비 등: 12개월X2백만= 24백만 ▪ 관리용역비 : 12개월X2.5백만 = 30백만 ▪ 국내여비 : 12개월X0.5백만 = 6백만 ▪ 운영비 : 12개월X6.1백만 = 73백만 ▪ 사업추진비 : 0.7백만X10회 = 7백만	
연평균 증가율 (%)	16.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1, 2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고시(2008.10.2., 국토해양부)

- 대통령 지시사항 ('08.4.3) : 제주도를 "영어교육의 메카와 동북아 교육특구"가 되도록 정부에서 확실하게 지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 ('08.6, 제주지원위)

○ 추진경위

-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중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06.12)
- 7개 기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행협약(MOU)' 체결('07.12)

☞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건교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 교과부 : 영어교육센터설립운영 등 교육분야 사업 총괄
- 기재부 :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지원에 협조

- 영어교육센터 부지매매계약 체결('12.12, 교과부, JDC)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조성원가 수준(4,750백만원) 부지 매매계약 체결

- 영어교육센터 기공식('12.12)

- 영어교육센터 총사업비 조정('13.8, 기재부)

※ 총 사업비 조정 내역

⇨ ① '10. 3월 총사업비 33,055백만원

⇨ ② '10.12월 총사업비 1차 조정 17,536백만원 ☞ 총리실·기재부·교과부 단계별 추진 합의

⇨ ③ '12.9월 총사업비 2차 조정 18,850백만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등에 따른 법령 준수 필요

⇨ ④ '13.8월 총사업비 3차 조정 19,799백만원 ☞ 부지매입비 949 증액 조정

- 영어교육센터 준공('14.7.3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제주영어교육센터지원	8.8	10.4	10.4	9.8	9.8	8.0	8.0	8.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15년 불용 사유**

- 원어민 강사(2명) 채용 일정이 '16년 초로 연기됨에 따른 인건비 불용

※ '16.2월에 원어민 강사 채용 완료

▪ 불용액 2.02억원중 인건비 잔액이 1.98억원으로 98%를 차지

※ 인건비(기타직보수, 연금지급금 등) 제외 시, 예산 453백만원 대비 99.1% 집행 : 집행 잔액 4백만원으로 정상 집행

ㅇ **'16년 전용 및 불용 사유**

- (전용) 직원퇴직(4명)에 따른 퇴직금 지급, 계약직원(5명)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지급에 필요한 연금지급금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8백만원 예산전용

- (불용) 인건비 예산 중 원어민 채용 일정 공백에 따른 23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집행잔액, 정책연구비 입찰차액 1백만원

ㅇ **'17년 불용 사유**

- (불용)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등 집행잔액 7백만원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3** ( )	( )	( )	10.3 ( )	**8.3** ( )	( )	2.0 ( )
'16년	**9.8** ( )	( )	±8 ( )	9.8 ( )	**9.8** ( )	( )	0.3 ( )
'17년	**8.0** ( )	( )	( )	8.0 ( )	**7.9** ( )	( )	0.1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00	800	809	-	809	809	100

ㅇ 집행내역

- 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 809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6년 교문위 지적('15년 결산국회) : 교육부는 영어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어교육센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영어교육도시 상용화 연수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영어교사 심화연수 확대, 영어특별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캠프 등 11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연간 5,634명 교육연수 실적을 달성, 센터 활용도 제고와 연수 다각화의 토대 구축

⇒ 정책연구(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영어교육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영어교육과정 운영, 영어교육정책 연구 및 국제교류 활성화, 효율적 영어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

ㅇ '16년 결산국회 : 교육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는 등 안정적 고용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국립국제교육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2017.12.15.)』수립 후 센터 전환 대상자 7명에 대한 내부평가('17.12.22.)를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의결('17.12.28.) 및 정규직 전환 완료('18.2.1.)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	교육부
·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행 상황 점검		· 센터 운영 및 인력 확보 ·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정주민 연수실시 · 센터 활성화 실행		· 센터 활성화 정책 · 예산지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영어교육센터 운영 개요

[참고 2] 2017년 영어교육센터 주요 추진실적

참고 1 영어교육센터 운영 개요

□ 영어교육센터 시설 현황

○ 위치 및 대지면적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8,201㎡

○ 건물 연면적 및 사업비 : 6,766㎡(본관 5,009.58㎡ 기숙사 1,756.87㎡)/19,799백만원

○ 시설 : 지하 1층, 지상 3층 (본부, 상용화 지원 및 연구시설 등)

시설		개수	수용인원(명)
행정.연구(277명)	센터장실	1	1
	사무실	3	28
	연구실	7	14
	대강당	1	214
	소회의실	2	20
상용화 지원시설(389명)	다목적 세미나실 등	2	75
	강의실(중형)	6	184
	강의실(소형)	5	100
	자기주도학습실	3	30
식당	카페테리아	1	200(2교대)
숙소(51명)	1인	13	13
	3인	10	30
	4인(게스트룸)	2	8

□ 영어교육센터 운영 조직

○ 완공 이전 :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설립지원팀' 운영

○ 완공 이후(현재) :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교육팀·관리팀' 운영

○ 향후 조직(안) : 3팀(기획관리/연수지원/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어교육센터 주요 기능

기 능	주요 내용
영어 상용화 지원	○ 입주민, 공공기관, 상업시설 종사자, 차상위계층학생 등 영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연구、개발	○ 중·장기 한국 영어교육정책 연구 ○ 영어상용화 전략 개발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육、연수	○ 영어교사 심화 연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상용 환경 연계)
영어교육 네트워크	○ 민간 및 공공의 영어교육정책 관련 각종 컨설팅, 효과 분석 ○ 영어 상용화지역 및 영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참고 3 2017년 영어교육센터 주요 추진실적

1 영어교육센터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종합연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수 다각화 및 전문성 신장

○ 교육·연수 프로그램 :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연수 운영 : ① 영어 상용화 교육(5개) ② 영어교사 심화연수(2개) ③ 교육·연수(13개) ④ 회의 및 포럼(3개)

○ 주요성과

- '15년 5개 프로그램 → '16년 16개 프로그램 → '17년 23개 프로그램('15년 대비 360% 증가)
- '17년 영어소외계층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도서산간 학생 연수 추가 신설
- 제주의 자연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체험프로그램 개발
-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 발굴
- 영어교사 심화연수 전문성 향상 및 실적 누적 통한 세종시교육청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지정
- 분산된 영어교육 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체계화 하여 영어교육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초·중등 영어교육 통계조사(정책연구) 실시

2 전국단위 연수 확대를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

○ 목적 : 연간 연수 규모 확대를 통한 영어교육센터 활성화

○ 전국단위 연수 확대

- 전국연수 : 영어 상용화 연수 비율 : '15년(6%:94%) → '16년(66%:34%) → '17년(84%:16%)

○ 목표 인원 : 23개 교육과정 및 포럼 등 5,800명

○ 내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常用化) 지원이라는 제한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교육·연수 중심 연수기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연수 비율 대폭 확대

○ 주요성과

- 연수인원 증가 : '15년 3,551명 → '16년 5,634명 → '17년 5,819명
- 연간 운영실적 : 23개 교육과정 5,819명(12.8 기준) 대상 연수 실시
- 연간 기숙사 활용도 : '15년 32.67% → '16년 44.94% → '17년 73.6%

※ 기숙사 수용규모 51명으로 수용에 한계가 있음

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영어소외계층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경제·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투자의 격차 심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필요성 증대

○ 목적 : '영어교육센터'의 교육 전문성과 '제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교육희망사다리' 복원

○ 내용

- 센터 인근 지역 및 도서 지역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어 캠프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
- 제주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활동 중심 구성
- 시·도교육청, 아시아교류재단, 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과 운영 예산을 분담하고, 학생 선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업하여 추진

○ 주요성과

- 연수인원 증가 : '15년 529명 → '16년 670명 → '17년 1,266명 ('15년 대비 139% 증가)
- 전국단위 확대 : '15년 0명 → '16년 40명 → '17년 357명('16년 대비 793% 증가)
- 프로그램 운영 : '15년 1개 → '16년 4개 → '17년 7개('15년 대비 600% 증가)

관련 통계

첨부 1 '15~'17년 연수비율 변화

구분		영어 상용화 교육	영어 특별프로그램	영어교사 심화연수	회의 및 포럼
2015년	연간인원	3,246명	287명	18명	-
	연간시수	1,120시간	77시간	30시간	-
	연수비율	91.3%	6.3%	2.4%	
2016년	연간인원	3,897명	986명	382명	369명
	연간시수	352시간	174시간	440시간	74시간
	연수비율	33.8%	16.7%	42.4%	7.1%
2017년	**연간인원**	**3,720명**	**1,422명**	**417명**	**260명**
	연간시수	**288시간**	**682시간**	**634시간**	**244시간**
	연수비율	**16%**	**37%**	**34%**	**13%**

구분	'15년	'16년	'17년
상용화 연수	94%	34%	**16%**
전국 연수	6%	66%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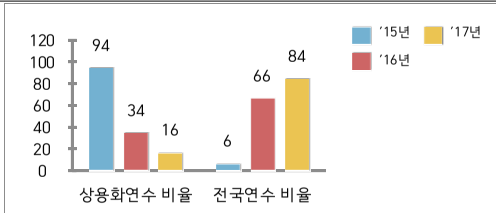

첨부 2 **17년 교육·연수 실적**

구 분	프로그램명	대상	인원(명)	기간
❶영어 상용화 교육	① 정주민영어교육	ㅇ영어도시주민	2,160	01.16~04.06(12주) 04.17~07.06(12주) 09.11~11.30(12주)
	② 공무원영어교육	ㅇ영어도시공무원	90	
	③ 아동센터영어교육	ㅇ차상위계층학생	540	
	④ 자기주도학습	ㅇ영어도시주민	900	
	⑤ Storytelling Class	ㅇ영어도시주민	30	연 2회 운영
	소 계		3,720	
❷영어교사 심화연수	①장기심화연수 (6개월 중 1주)	ㅇUCC영어교사	9	02.06~02.10(5일)
		ㅇ인천영어교사	20	03.06~03.10(5일)
		ㅇ교원대영어교사	29	03.27~03.31(5일)
		ㅇ광주영어교사	30	04.03~04.08(6일)
		ㅇ부산영어교사	16	04.17~04.21(5일)
		ㅇ전북 중등영어교사	19	05.08~05.11(4일)
		ㅇ전북 초등영어교사	20	
		ㅇ충남영어교사	13	05.22~05.26(5일)
		ㅇ강원영어교사	13	
		ㅇ경기 중등영어교사	32	06.05~06.09(5일)
		ㅇ경기 초등영어교사	36	06.12~06.16(5일)
		ㅇ서울영어교사	46	06.26~06.30(5일)
		ㅇ대전영어교사	20	07.17~07.21(5일)
		ㅇ교원대영어교사	27	07.31~08.04(5일)
		ㅇ세종영어교사	12	
		ㅇ전남영어교사	17	10.30~11.03(5일)
		ㅇ교원대 영어교사	23	11.20~11.24(5일)
	②단기집중연수 (1~2주)	ㅇ충남영어교사	15	01.09~01.14(6일)
		ㅇ세종영어교사	20	02.13~02.24(12일)
	소 계		417	
❸학생영어 프로그램	①다문화자녀 영어캠프	ㅇ전국다문화자녀	36	08.07~08.11(5일)
		ㅇ전국다문화자녀	20	08.21~08.25(5일)
	②차상위청소년 영어캠프	ㅇ서울 율현초 차상위학생	78	11.07~11.09(3일)
		ㅇ경남 고성군 차상위학생	30	11.13~11.17(4일)
		ㅇ경기 성남시 차상위학생	34	12.04~12.06(3일)
		ㅇ경남 차상위학생	30	12.18~12.22(5일)
	③꿈자꿀영어해설 프로그램	ㅇ상용화교육생	10	05.24~07.12(8주)
		ㅇ제주대학교 사대부고 학생	41	06.17~06.17(1일)
		ㅇ시도장학사(CPIK)	30	07.07~07.07(1일)
		ㅇ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80	12.07~12.07(1일)

	④재외동포학생 영어수학여행	ㅇ오사카건국학교	30	03.21~03.22(2일)
		ㅇ재외동포 모국 수학생	47	10.12~10.14(3일)
	⑤과학고영어 지질탐사	ㅇ충북지역학생	55	06.01~06.01(1일)
	⑥자유학기 영어캠프	ㅇ제주한림중학교	87	12.06~12.06(1일)
	⑦국제영어체험 학습캠프	ㅇ대구상원고학생	27	11.27~11.29(3일)
	⑧청소년 영어동아리캠프	ㅇ서울교육청초등학생(1차)	47	08.14~08.16(3일)
		ㅇ서울교육청초등학생(2차)	48	08.17~08.19(3일)
	⑨도서산간학생 영어체험	ㅇ전남 돌산중앙중학생	19	05.31~06.02(3일)
		ㅇ충남 금산군북초등생	15	10.17~10.20(4일)
	⑩도서지역 영어캠프	ㅇ1차(추자중학교)	27	09.03~09.05(3일)
		ㅇ2차(우도중학교)	29	09.07~09.09(3일)
		ㅇ3차(추자/가파초등학교)	29	09.12~09.13(2일)
		ㅇ4차(우도/한림/비양초등학교))	29	09.19~09.21(3일)
	⑪영어체험학습	ㅇ제주아동센터	50	01.24~01.24(1일)
		ㅇ제주아동센터(40), 정주민(50)	90	04.26~04.26(1일)
		ㅇ아동센터	50	09.26~09.26(1일)
		ㅇ제주아동센터	20	12.11~12.11(1일)
		ㅇ제주아동센터	20	12.12~12.12(1일)
		ㅇ제주아동센터	25	12.13~12.13(1일)
	⑫영어교사 심화연수 기관 관리 관련 연수 및 워크숍	ㅇ전국 영어교육 컨설팅단	97	11.02~11.03(2일)
		ㅇ시도교육청 영어담당자	45	11.09~11.10(2일)
		ㅇ시도교육청 장학사	130	12.15~12.16(2일)
	⑬국제역량 강화연수	ㅇ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육업무 담당자	5	04.24~04.28(5일)
			5	05.29~06.02(5일)
			3	12.11~12.13(3일)
			4	12.13~12.15(3일)
	소 계		1,422	
❹회의/포럼	①영어교육협의회	ㅇ대구시 교장단 협의회	24	01.18~01.18(1일)
		ㅇSJA Staff Conference	60	10.01.~10.15(15일)
		ㅇ충남외국어연수원	9	10.23~10.23(1일)
		ㅇ미국 국무성 교육문화국	2	12.07~12.07(1일)
		ㅇ코퍼스 영어교육학회	40	12.08~12.09(2일)
		ㅇ대구광역시교육청	30	12.08~12.08(1일)
		ㅇ울산광역시교육청	15	12.17~12.17(1일)
	②Korea Youth Forum	ㅇ전국고등학생	40	07.10~07.14(5일)
	③'17한-중앙아 대학생포럼	ㅇ한중앙아대학생	40	07.24~07.28(5일)
	소 계		260	
총 계			5,819	

첨부 3 17년 교육·연수 다양화 및 활성화 관련 통계자료

□ 교육·연수프로그램 증가('15년~'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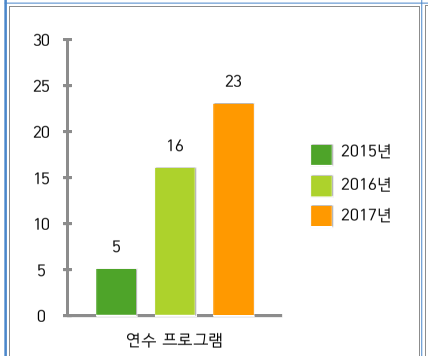

□ 연수인원 증가('12년~'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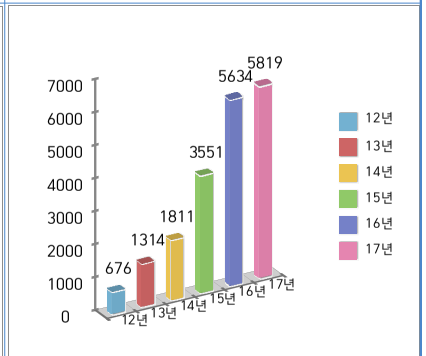

□ 기숙사 연간점유율('14년~'17년)

〈기숙사 연간점유율('14년~'17년)〉

연도	사용 가능일(A)	사용일(B)	점유율 (B/A, %)
2014년	101일	30일	29.70
2015년	251일	82일	32.67
2016년	247일	111일	44.94
2017년	**246일**	**181일**	**73.6**

※ 기숙사 수용규모 : 51명 이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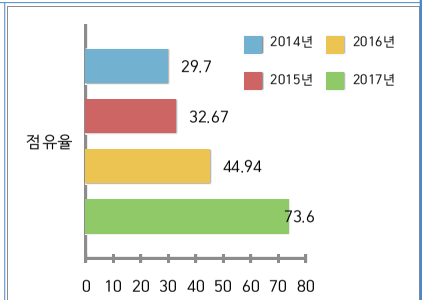

□ 영어소외계층 지원 강화 실적('15년~'17년)

〈지원 실적('15년~'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연수인원	529명	670명	1,249명
전국단위 확대	0명	40명	327명
프로그램 운영	1개	4개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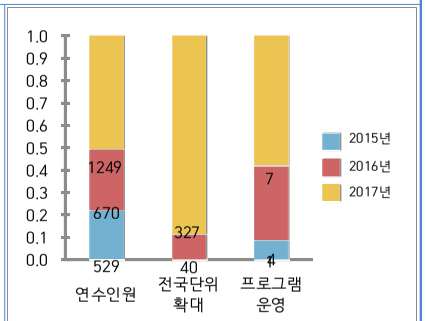

[650]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재량, 계속)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 예산 (B)	증 감 (B-A)	%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운영	10,551	6,540	6,327	△213	△3.3

* 사업코드 : 050 - 053 - 4500 - 4532 - 650
* 담당자 : 국제교류협력부장(라은종), 외국어공교육지원팀장(김동희), 주무관(김현주), 토픽기획팀장(정미례), 주무관(김은숙), 시설관리팀장(손선희), 센터장(이용훈), 주무관(허주훈), 교육교류협력팀장(박상준), 교육연구사(장원창),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영어 봉사 장학생 선발 등 연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통한 국제 이해력 증진 및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공교육 지원 강화,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통한 한국어 보급 확대
사업기간	'09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 150명 선발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 582명 선발 ○ 연수시설운영 : 기숙사 2개동 운영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연 6회 시행, 160,000명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2개 연수기관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213명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립국제교육원
간접비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안 내용 및 산출근거

○ 외국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각종 사업의 위탁 분담금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등 수입 6,327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운영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 사업내용

- 선발인원 : 150명
- 선발방법 : 재외공관 및 해외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선발 등
- 내용 : 원어민 장학생 신규 선발자 사전연수, 입국전 온라인사전연수 및 심화연수, 컨설팅 운영, 프로그램 운영안내서 및 뉴스레터 제작·배포 등

■ 산출내역

- 코디네이터 등 운용경비 : 3,900천원×2명×12월= 94백만원
-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등 : 750천원×2명×12월= 18백만원
- 재외공관 선발·모집 운영비 : 2,660천원×18개 공관×2회= 96백만원
- 홍보물 제작비 : 2,500천원×4종×2회= 20백만원
- 원어민 장학생 사전연수비 등 : 1,600천원×150명= 240백만원
- 모집 홍보 해외출장 여비 등 : 4,000천원×2명×2지역= 16백만원
- 매뉴얼 및 사례집 등 제작·배부경비 : 10,000천원×2종= 20백만원
-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운영 등 사업운용경비 : 21백만원
- **계 : 525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 사업내용

- 선발인원 : 582명
- 선발방법 : 모집협력업체를 통한 선발 및 본원 채용 원어민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직접 선발
- 내용 :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및 연수* 실시 및 국내외 홍보 홈페이지 운영, 상담, 매뉴얼 보급, 워크숍 실시 등

* 입국 전 온라인 사전연수 → 입국 후 집합 사전연수 → 학교배치 후 온라인 심화연수

※ 시도교육청의 위탁 선발인원 증가 : ('17년) 673명 → ('18년) 1,040명

■ 산출내역

- 코디네이터 등 운용경비 : 3,570천원×5명×12월= 214백만원
-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등 : 680천원×5명×12월= 41백만원
- 모집협력기관 원어민 홍보 모집경비 : 950천원×279명= 265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전연수비 : 520천원×553명= 287백만원
- 해외 대학 취업박람회 등 참가 경비 : 5,000천원×2명×2회= 20백만원
- 매뉴얼·사례집 및 뉴스레터 등 제작·배부경비 : 5천원×2,500부×4종= 50백만원
- 국내·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경비 : 3,500천원×3종×4회= 42백만원
- 체험수기 및 동영상 공모 경비 : 20,000천원×1회= 20백만원
- 추천서류 및 합격증 등 국내·외 발송경비 등 운영경비 : 22백만원
- **계 : 961백만원**

<연수시설운영>

▪ 사업내용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연수 운영 지원
- 영어교육센터 연수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영양사, 조리원 등 인건비 : 149백만원
- 강사료 및 현장탐방 등 연수운영경비 : 29백만원
-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등) : 18백만원
- 피복비 250천원×4명 = 1백만원
- 맞춤형 복지 400천원×5명 = 2백만원
- 식재료비 : 143백만원
- 침구류 세탁 등 생활실 관리 : 55백만원
- 정수기 임차 : 4백만원
- 조리원 간담회 등 300천원×4회= 1백만원
- 고용부담금(4대보험 및 퇴직금) : 27백만원
- **합계 : 429백만원**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 한국어능력시험(TOPIK*)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00백만원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최근 3년간 연평균수입액이 61억원에 달하며, 시험 지원인원 증가 및 시행국가·기관 증대 등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고려한, 지원인원 대비 최소 소요액

※ 실제 지원인원 : ('15년)206,777명→('16년)250,141명→('17년)290,638명

※ 응시료 수입 현황 : ('15년) 50.9억 → ('16년) 57.8억 → ('17년) 74.6억

▪ 사업내용

- 시행국가·횟수 : 전세계 76개국 연 6회(국내 1회, 국내·외 동시 5회)
- 지원인원 : 160,000명('19년)
  ·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 첫 시행 이후 누적 지원자수가 227만명에 달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지원자 증가에 대비 안정적 예산 지원 필요
- 목적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한국어 학습 방향과 교육과정·평가 기준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도모. 국내·외에서 유학·취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활용 기반 조성

▪ 산출내역

- 계약직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등 : 3.7백만원×7명×12월= 313백만원
- 출제 및 녹음(수당, 시설 위탁 등) : 149.5백만원×6회= 897백만원
- 채점(수당, 물품 임차 등) : 138백만원×6회= 828백만원
- 인쇄 및 해외 발송(문답지 인쇄, 물품 구매 등) : 75백만원×6회= 450백만원
- 시행(국내 보안 운송, 시행 관리 등): 24.9백만원×6회= 149백만원
- 국내 시행기관 지원금 : 125백만원×6회= 750백만원
- 국외 시행기관 지원금 : 15백만원×5회= 75백만원
- 국내·외 여비(시행기관 관리 및 업무 협의 등) : 59백만원
- 홍보 및 각종 자료·물품 구입과 수선 등 : 21백만원
- 시스템 장비 구입·유지·보수 및 개선 : 219백만원
- 온라인 결제수수료 : 48백만원
- 연구용역비 : 100백만원
- 학습 지원 콘텐츠 제작비 : 28백만원

- 장학생 초청 연수(성적우수자 초청 연수, TOPIK장학생 초청) : 45백만원
- 기타 사업 운영비 : 18백만원
- **계 : 4,000백만원**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 사업내용

-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한 국내·외 연수기관 관리
- 영어수업 컨설팅 지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 산출내역

- 심화연수기관 담당자 워크숍 경비 : 10,000천원×1회= 10백만원
- 연수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경비 : 3,000천원×1회= 3백만원
- 국외심화연수기관 실사 경비 : 3,000천원×4명×2회= 28백만원
- 영어수업 컨설팅 운영경비 등 : 200천원×20명×1회= 4백만원
- 성과보고회 경비 : 3,000천원×1회= 3백만원
- 설문조사 경비 등 : 1,000천원×2회= 2백만원
- **계 : 50백만원**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 사업내용

- 인원 : 213명
- 내용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국내학교 배치 전 사전연수 등

▪ 산출내역

- 원어민 코디네이터 등 채용경비 : 2,401천원×2명×12월= 58백만원
- 연수운영 보조 일용임금 66천원×10명×20일×2회= 27백만원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사전연수 1,052천원×213명= 224백만원
- 수업자료 및 동영상 공모전 : 100천원×100명= 10백만원
- 우수사례 발표회 : 100천원×100명= 10백만원
- 매뉴얼 및 홍보용 자료 등 제작·배부경비 : 7백만원
- 홈페이지 및 D/B시스템 유지 경비 : 4백만원
- 국외출장경비 : 2,250천원×2명×2회= 9백만원

- 자료 발송료 등 기타 운영경비 : 2백만원
- 상용직 고용부담금 등 11백만원
- **계 : 362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6,540백만원	6,327백만원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560백만원 (160명)	525백만원 (150명)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110백만원 (673명)	961백만원 (582명)
▪ 문화협정제2외국어 교원연수	29백만원	비예산 사업 * 항공료 시도교육청 직접집행

□ 지원 필요성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원어민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도시·농산어촌간 영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증진 지원 필요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초·중등학생의 영어구사력 향상 및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우수한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선발 지원 필요

○ **연수시설 운영**

- 국립국제교육원 및 영어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연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필요
- 영어센터 연수 유치 운영으로 영어교사 역량 제고 및 영어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공교육 내실화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전세계 76개국 연 6회(국내 1회, 국내·외 동시 5회) 시행
- 1997년 첫 시행 이후 2017년 역대 최대 지원자수(290,638명)를 달성하며 누적 지원자가 227만명에 달하는 등, 20년 동안 한국 정부의 대표적 한국어 평가 시험으로 발전해 옴. 2019년에도 시험 확산 추세를 (전세계 80개국 이상 시행) 계속 이어나가 국제적인 국가 공인 시험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예산 지원 필요
- 최근 3년 응시료 평균수입액이 61억여원에 달하며, 지원인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안정적 시험 운영을 위해 실소요액 반영 필요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Teaching English in English

- 국외연수기관 간의 경합을 유도하여 연수의 질 제고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연수기관 및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영어교사의 TEE* 능력 향상 지원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중국정부의 추천을 받은 원어민 교사 활용을 통한 중국어 공교육 지원 강화

<세부내역>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증 감 (B-A)	%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10,551	**6,540**	**6,327**	**△213**	**△3.3**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 지원	728	560 (180명×3.1백만)	525 (150명×3.5백만)	**△35**	**△6.3**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1,780	1,110 (673명×1.65백만)	961 (582명×1.65백만)	**△149**	**△13.4**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6,646	4,000 (25,000원X160,000명)	4,000 (25,000원X160,000명)	-	-
▪ 연수시설운영	467	429 (2동×215백만)	429 (2동×215백만)	-	-
▪ 문화협정제2외국어 교원연수	28	29 (80명×0.36백만원)	-	**△29**	**순감**
▪ 영어교사심화연수 기관관리	373	50 (2개기관×25백만)	50 (2개기관×25백만)	-	-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 초청활용	529	362 (213명×1.7백만)	362 (213명×1.7백만)	-	-
□ **비목**(합계)	10,551	6,540	6,327	**△213**	**△3.3**
○상용임금(110-03)	92	645	754	109	16.9
○일용임금(110-04)	673	140	137	△3	△2.1
○일반수용비(210-01)	3,152	1,945	1,938	△7	△0.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7	91	92	1	1.1
○피복비(210-03)	1	1	1	-	-
○급식비(210-04)	24	17	16	△1	△5.9
○특근매식비(210-05)	1	3	2	△1	△33.3
○임차료(210-07)	80	65	59	△6	△9.2
○시설장비유지비(210-09)	48	42	42	-	-
○재료비(210-11)	214	156	143	△13	△8.3
○복리후생비(210-12)	4	6	6	-	-
○일반용역비(210-14)	5,312	2,766	2,536	△230	△8.3
○국내여비(220-01)	376	272	203	△69	△25.4
○국외업무여비(220-02)	103	137	109	△28	△20.4
○사업추진비(240-01)	44	28	29	1	3.6
○정책연구비(260-02)	110	100	100	-	-
○고용부담금(320-09)	125	104	140	36	34.6
○자산취득비(430-01)	76	22	20	△2	△9.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시도교육청 외국어공교육 강화 및 해외 한국어 보급 등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7,193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5백만×180명=63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0명=1,105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03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25천원×180,400명=4,51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524천원×85명=45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67백만원×270명=450백만원			
'18	6,540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1백만×180명=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29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6천원×80명=29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 362백만원	6,54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1백만×180명=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29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관리 0.25백만×200명= 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6천원×80명= 29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 362백만원	-
'19	6,628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3.1백만×180명= 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29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3,520명=4,088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6천원×80명= 29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362백만원	6,327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5백만×150명=525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582명=961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29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관리 0.25백만×200명= 50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7백만×217명= 362백만원	△301
'20	11,93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2.5백만×350명= 875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 1.65백만×1,200명=1,98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670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309,840명=7,746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9백만×80명=31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7백만×340명= 578백만원	6,54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1백만×180명=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58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362백만원	△5,390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1,93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2.5백만×350명=875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 1.65백만×1,200명=1,98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670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309,840명=7,746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9백만×80명= 31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7백만×340명= 578백만원	6,54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1백만×180명=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29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50백만원 -문화협정제2외국어교원연수 0.36천원×80명=29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362백만원	△5,390
'22			6,540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3.1백만×180명=560백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1.65백만×673명=1,110백만원 -연수시설 운영 458백만원 -한국어능력시험운영 25천원×160,000명=4,000백만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관 관리 0.25백만×200명= 50백만원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1.4백만×270명= 362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8.1		0.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

- '08. 3 :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지시
- '08. 4 :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기본계획 수립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 '05. 5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
  *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
- '09.12 : 교과부「원어민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개선방안」발표
  * 본원을 동 사업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정립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 '13.0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4423호) 제35조 6항*
  * 국립국제교육원의 분장 사무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포함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 '08. 1 : 대통령 인수위원회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 '08. 7 :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 마련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 '11.11 국립국제교육원과 중국공자학원총부/국가한어보급판공실간 교사 교류합의서 체결
- '18. 1 양국간 합의서 연장 및 수정안

ㅇ 추진경위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

- '08. 4 : 영어봉사장학생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08. 4 : TaLK팀 설치
- '15. 1 : 영어교육지원팀(TaLK사업, EPIK사업 등) 신설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 '94. 7 : 교육부「국제화교육 추진 종합계획」중점과제 선정
- '95. 7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시작(한국교원대학교)
- '05. 5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발표
- '06. 11 : 영어교육혁신방안 대통령 보고(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 포함)
- '07. 7 : 사업주체 이관(한국교원대학교→ 국제교육진흥원)
- '10. 3 : 시·도교육청과 본원 간「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 협약」체결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 '97. :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한국학술진흥재단)
- '99. 2 : 사업주체 이관(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9. 12 : 사업주체 이관 결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0. 5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근거 마련
- '11. 1 : 사업 이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립국제교육원)
- '11.~13. : 연 4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2회)

- '14. : 연 5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3회)
- '15.~'16. : 연 6회 시행(국내 2회, 국내·외 4회)
- '17.~'18. : 국내·외 동시 시행 확대(국내 1회, 국내·외 5회)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 '08.1 : 대통령 인수위원회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 '08.7 :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방안 마련
- '09.9 : 영어교사 영어 수업능력 신장 지원 방안 수립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 '11.3.14 :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제2외국어 교육 강화 계획」보고
- '11.3.17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과 사업 추진 관련 협의
- '11.3.23~'11.4.5 :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사업」 수요조사 실시
- '11.4.~ : 주한중국대사관과 사업추진 관련 MOU 체결 협의
- '11.11.24 : 한·중 교육장관 회담 계기, 양국 기관* 간 교사교류 합의서 체결
- '18.01.22 : 양국간 합의서 연장 및 수정안

* 한국 측 : 국립국제교육원, 중국 측 : 중국 국가 한어 보급 판공실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운영	94.9	94.9	85.3	76.2	76.2	71.9	71.9	65.4	65.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 연수경비 등 예산 절감액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직접 선발 증가로 인한 선발경비 절감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5.3** ( )	( )	11.4 ( )	96.7 ( )	**91.8** ( )	( )	4.9 ( )
'16년	**76.2** ( )	( )	30.5 ( )	106.7 ( )	**96.7** ( )	( )	10.0 ( )
'17년	**71.9** ( )	( )	35.0 ( )	106.9 ( )	**105.5** ( )	( )	1.4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7,193	7,193	6,540	-	6,540	12,110	185.1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교문위) 지적

- 한국어능력시험 : 연례적 수입대체경비(면허료 및 수수료) 과소 편성에 대한 주의 필요('15년 국회 예결위)

○ 조치결과

- '17년 예산 증액편성('16년 대비 35%증액)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선발지원 >

○ 모집·선발 기본계획 수립 → 재외공관/MOU대학을 통한 모집 → 재외공관 1차 심사(서류 및 인터뷰) → 국립국제교육원 2차 심사(인터뷰, 심의위원회) → 최종합격 확정 → 입국 → 사전연수(3주) → 시도교육청 배치 및 연수(1주) → 학교 배치 → 정착 지원→ TaLK 학교 컨설팅 및 온라인 심화연수 → 장학인증서 교부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 기본계획수립 →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및 원어민 모집 → 지원자 인터뷰 및 서류심사(우리원) → 시·도교육청에 후보자 추천 → 최종심사(시·도교육청) → 합격자 입국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학교배치(시·도교육청) → 심화연수 및 각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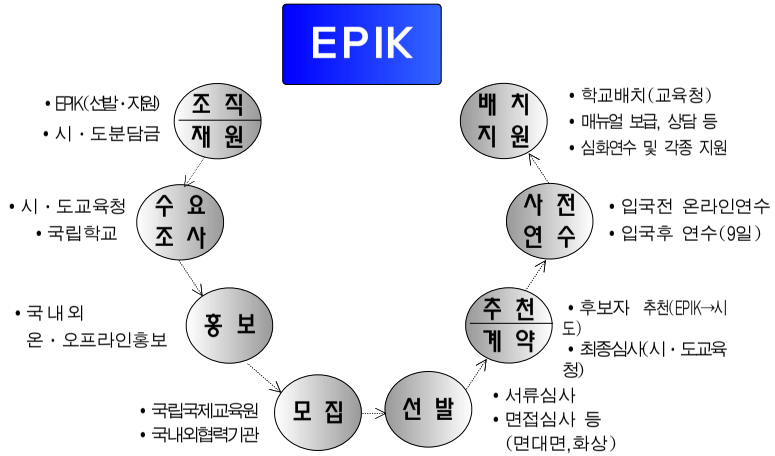

<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 차년도 사업 국내·외 시행조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계획 확정 → 업무처리지침 작성·배포 → 홍보 계획 수립 → 시험 공고 → 출제위원단 선정 및 구성 → 출제위원 위촉 및 워크숍 → 출제본부 운영 → 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자 및 시험장 설치 현황 취합 → 듣기 평가 녹음 → 문답지 인쇄 및 포장 → 문답지 발송 → 시험 시행 → 답안지 회수 및 검토 → 채점 → 평가 사정회 개최 → 합격자 발표 및 시험 결과 통지 → 사업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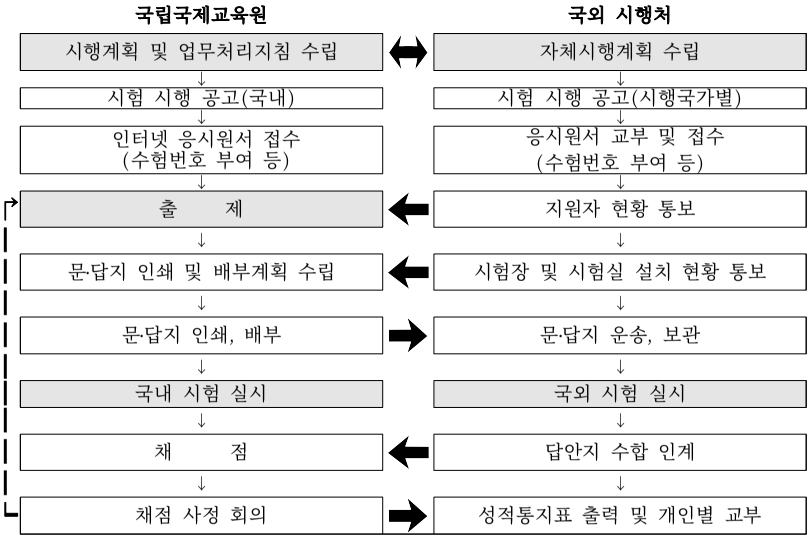

<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 국외심화연수기관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선정위원회) → 국외심화연수기관 pool 구성 → 최종선정(국내연수기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등 지원

<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가.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배치 추진 절차

○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 후보자 추천(중국 국가한판) → 심사(국립국제교육원) → 시·도교육청에 합격자 추천 → 계약(시·도교육청) → 입국 및 사전연수 → 배치(초·중등학교)

※ 배치 후, 평가 등을 통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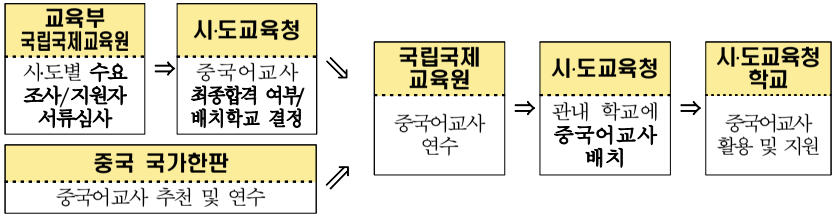

나. 한국인 교사 선발 및 중국 배치 추진 절차

○ 중국 파견 수요 조사(교육부) → 파견교사 추천(시·도교육청) → 선발심사 및 선정(국립국제교육원) → 사전연수 및 출국지원(국립국제교육원) → 배치(중국 전문대 및 초·중등학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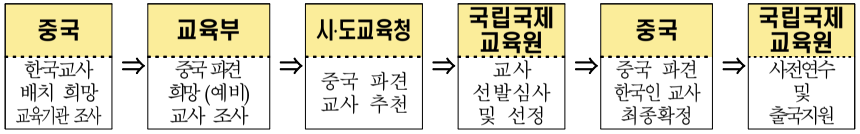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규 선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자격증 소지자 비율 (단위: %)	목표	88.8	90.8	95.3	99.7	99.8	전년 목표치 대비 0.1%상향설정	(자격증소지자 수, 교육학전공자수/ 신규선발원어민)*100	선발결과보고서
	실적	93.8	93.5	99.6					
	달성도	105.6	103.0	105.3	-				
TOPIK 지원자 수 (단위: 명)	목표	179,000	194,356	243,964	274,103	310,180	최근3년 평균 실적 110%	당해연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인원	지원자수
	실적	206,768	250,141	290,638					
	달성도	115.5	128.7	119.1					
TOPIK 검사 신뢰도(신규)	목표			0.8	0.8	0.8	Cronbach α 계수 값의 기준(0.8≤α <0.9: 높음)에 근거	검사신뢰도 (Cronbach α)	시험 검사 신뢰도
	실적			0.9					
	달성도			112.5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사업의 성과 등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선발·지원]

< 사업성과 >

☐ **현장 지원 중심의 컨설팅 확대 실시 :** 25개교('16년)→40개교('17)

○ 현장지원 중심의 컨설팅 확대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장학생 복무 및 수업 개선을 통한 TaLK 만족도 제고

내용		만족도	비고
학부모	TaLK 수업 지속 참여 의사	**89.14%**	('16.) 88.70.%
학교관계자	영어 자신감 증가	**90.68%**	('16.) 90.27%
	TaLK 영어교육격차 해소	**87.95%**	('16.) 87.91%

☐ **추진실적** (2017.12.31.기준)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	
전체	380	374	543	596	596	530	502	496	493	491	490	418	372	379	373	234	248	217	231	7,963
신규	380	175	441	293	345	230	306	224	290	211	278	128	217	118	155	84	127	97	96	4,185

< 현장의 변화 >

☐ **(영어교육격차 해소)** 학생들의 수업 흥미 및 참여 향상으로 영어 기능 자신감이 향상되고, 학부모는 학교 영어교육 개선에 기여되었다고 인식

☐ **(지한·친한 인재육성)** 원어민장학생의 만족도 및 한국의 정체성 및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음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선발지원]

< 사업성과 >

☐ **자격요건 강화를 통한 우수한 원어민교사 질적 수준 향상**

○ (교육 경험 보유자 증가) 전체 배치자의 99.65%가 교육학 전공자 및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추진실적 (2017.12.31.기준)

연도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선발·배치 인원(명)		236	688	1,263	1,821	2,138	1,483	1,590	1,165	937	1,231	1,141	13,693
연수 인원 (명)	집합 연수	1,227	1,914	5,032	4,888	2,826	1,763	1,782	1,295	1,050	1,271	1,307	24,355
	원격 연수	-	-	-	2,396	2,384	3,567	3,385	2,600	1,823	2,223	2,282	20,660
	계	1,463	2,602	6,295	9,105	7,348	6,813	6,757	5,060	3,810	4,725	4,730	58,708

< 현장의 변화 >

□ 수요자와 상시 피드백을 통해 사업 개선책 공동 모색 및 해결

○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 공유 및 해결책 제시로 원어민 관리의 효율화 도모

[한국어능력시험운영]

< 사업성과 >

□ 시험 **2017년** 지원자수가 1997년 첫 시행 대비 **약 107배* 증대**

* 지원자수 : (1997년) 4개국 2,692명 → (2017년) 70개국 290,638명

○ 한국어능력시험 최근 지원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번	연도별 / 국가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한국	74,104	82,736	111,325	96,212	112,320	133,931
2	중국	36,494	41,262	48,846	48,849	65,014	70,774
3	일본	18,132	17,906	16,546	18,108	19,970	23,365
4	베트남	2,965	3,627	6,175	13,160	16,106	18,486
5	대만	4,341	4,026	5,316	6,176	7,210	10,650
6	우즈베키스탄	1,928	2,383	2,652	3,509	4,246	3,755
7	태국	1,086	1,603	1,558	1,924	4,190	4,221
8	몽골	1,162	1,336	1,415	1,653	2,139	2,707
9	미국	2,555	2,477	2,412	2,464	1,918	1,923
10	미얀마	429	801	714	1,302	1,824	3,248
11	러시아	848	997	1,031	1,377	1,554	1,726
12	캄보디아	285	293	620	1,572	1,479	1,381
13	인도네시아	608	726	827	839	1,208	1,675
14	카자흐스탄	805	695	810	819	936	1,066
15	키르기스스탄	534	600	625	750	901	948
16	필리핀	266	503	1,258	854	848	1,046
17	인도	401	340	426	474	580	668
18	싱가포르	458	599	454	581	538	581

연번	연도별 / 국가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9	호주	430	479	397	508	500	466
20	터키	106	184	345	449	487	617
21	말레이시아	194	353	464	455	485	608
22	네팔	-	-	-	435	386	545
23	독일	232	223	286	261	353	363
24	타지키스탄	125	107	144	248	333	377
25	아르헨티나	273	192	327	265	301	283
26	이집트	141	152	176	191	297	294
27	프랑스	142	179	254	252	292	442
28	캐나다	367	322	280	254	261	294
29	브라질	259	298	317	313	256	272
30	멕시코	104	97	124	117	220	169
31	이란	49	43	114	172	180	675
32	파키스탄	-	92	39	125	156	184
33	루마니아	-	62	82	42	143	100
34	스페인	71	159	151	154	141	185
35	스리랑카	-	154	147	117	141	115
36	아랍에미리트	62	84	50	60	121	112
37	파라과이	195	252	169	94	120	148
38	아제르바이잔	153	159	126	70	119	95
39	불가리아	74	84	98	123	114	112
40	쿠바	-	-	83	85	103	123
41	우크라이나	48	75	62	48	97	98
42	라오스	-	66	80	123	91	94
43	이탈리아	62	86	55	79	88	70
44	베네수엘라	71	35	57	76	81	142
45	헝가리	39	54	45	79	79	91
46	과테말라	-	138	81	54	78	83
47	콜롬비아	25	-	67	55	72	55
48	모로코	-	-	-	-	69	46
49	방글라데시	66	72	120	131	68	83
50	네덜란드	-	-	-	33	67	46
51	칠레	31	36	13	28	63	65
52	벨라루스	25	45	52	72	61	76
53	아르메니아	32	32	35	49	60	50
54	뉴질랜드	-	21	14	32	60	32
55	조지아	-	-	-	21	58	62
56	영국	65	110	72	50	55	158
57	요르단	-	-	27	51	53	92
58	투르크메니스탄	63	76	48	51	52	52
59	브루나이	23	31	43	15	49	35
60	케냐	74	70	65	38	46	55
61	그리스	-	45	39	39	39	61
62	폴란드	-	-	-	-	32	84
63	포르투칼	18	26	41	42	27	23
64	페루	-	60	66	40	27	78
65	도미니카	32	25	27	15	26	18

연번	연도별 / 국가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66	남아공	-	38	32	37	24	11
67	체코	17	14	20	12	22	-
68	오스트리아	-	-	30	13	21	-
69	에콰도르	26	75	44	57	20	80
70	핀란드	-	-	12	-	19	19
71	코스타리카	-	48	-	24	14	30
72	자메이카	-	-	-	-	13	19
73	노르웨이	-	-	18	-	-	-
계		151,166	167,853	208,448	206,777	250,141	290,638

< 현장의 변화 >

□ 동 시험은 시험의 활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유학·진학, 체류,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부담 공인시험(high-stake test)으로 변모하고 있음

○ 주요 활용처 현황

구분	활용처
유학 ·진학	- 외국인 국내 대학 입학 시 3급 이상(대학에 따라 다름) - 외국인의 국내 대학원 졸업 시 토픽 성적 요구(필수 또는 권장)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대학 진학 및 학사관리 : 3급 이상 -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 동포의 국내대학 입학 - 각종 장학생 선발에 활용
취업· 인사고과	- 국내 외국인 직원의 인사고과에 반영(삼성 그룹 등) - 해외 한국기업체 취업, 인사고과 인센티브에 반영 - 시군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통역상담원 채용 : 3~4급 이상 - 외국어고등학교 외국어(중국어 등)강사 선정 : 토픽 자격자 우대
체류 (비자)	- 외국인 국내체류 자격 요건 2급 이상 요구(법무부, '13.9.1시행) · 일반 귀화 대상자(국적법 제5조) : 3급 이상 · 우리 국민의 배우자(F-6) 및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 2급 이상 · E-9(비전문 취업)에서 E-7 비자(특정활동 체류자격)로 변경 시 : 3급 이상 ·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시 : 2급 이상 · 점수제로 거주(F-2)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 2급 이상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 변경허가 : 3급 이상 - 결혼이민자의 비자(F-6) 취득 시 : 1급 이상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필수항목(최대 4급 20점)
학점 인정· 졸업 요건	-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및 페더럴웨이교육청 TOPIK 결과 학점 인정 (최대 3학점까지 고등학교 외국어능력 인정에 활용) - 미국 Stony Brook 뉴욕주립대 · 한국어 수업 수강생의 TOPIK 시험 결과를 교내 challenge exam 성적으로 활용 · 한국어교사양성 프로그램 전공자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TOPIK 6급 필요 - 치대 졸업자의 국내 면허 시험 취득을 위해 TOPIK 활용 - 중국내 일부 대학 한국어과 학생의 졸업 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요구
기타	- 외국인 의대 졸업자의 국내 면허 시험 참가 자격 : 5급 이상

	-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시험(2~3급) 참가 자격 : 6급 이상 - 한글학교 재학생의 한국어 실력 확인에 활용 - 한국어를 정규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의 한국어 능력 평가 활용 또는 학교 성적에 반영 활용 - 한국어과 학생 학사운영 및 교수 채용에 반영 - 한류보급에 따른 한국어 학습 현지인의 한국어 실력 검증 도구로 활용

□ **의사소통 중심 평가 도구에 대한 요구 증대**

○ 말하기 평가 수요조사 결과, 응시자 집단 80% 이상이 말하기 평가 도입 요구

※ 말하기 평가 수요 조사 결과 주요 내용('18.4.기준)

☞ 총 772명 응답(응시자 266명, 한국어교육자 100명, 대학 관계자 119명, 기업 관계자 287명)

◦ (응시자) 82.3%가 한국어 말하기 시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한국어교육자) 92%가 말하기 평가 결과를 입학 전형에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향 보임

◦ (대학 관계자) 78.1%가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입이 입학 사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

◦ (기업 관계자) 68%가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입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

□ **한국어능력시험 확산·발전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전세계에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보급 확대 및 한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 인적 자원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

[영어교사심화연수기관관리]

< 사업성과 >

○ 국내·외 연수기관 선정 : 3개 기관

○ 수업실습형 영어교사 심화연수 인원 : 68명

○ 영어교사 심화연수 참가자 수업력 향상도 분석 및 측정도구 개발

○ 영어교육 중앙컨설팅단 구성 운영 : 20명(전국 시·도 전문가)

○ 전국 영어교육컨설팅단 직무연수 상·하반기 운영 : 293명

○ 전국 영어교육 담당자 워크숍 : 45명

○ 영어교사 심화연수 추수연수 및 성과보고회 : 263명

[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초청활용]

< 사업성과 >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현장의 수요가 높은 중국어 원어민 활용 교육 강화 / 중국원어민을 지한·친한 인사로 활용

□ 협력수업, 수업지도안 작성 등 체험 및 우수사례 공유

○ 교수-학습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담당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질 향상에 기여

▪ 전국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배치 학교 수

(단위 : 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전체학교수(A)	11,360	11,408		11,446	11,526	11,563	11,613
배치학교수(B)	200	252	248	265	271	324	326
원어민 배치학교비율(B/A)	1.8%	2.2%	2.2%	2.3%	2.4%	2.8%	2.8%

▪ **중국파견 한국교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직교사	28(65.1%)	27(100%)	26(100%)	4(100%)	4(100%)	-
예비교사	15(34.9%)	-	-	-	-	-
계	43(100%)	27(100%)	26(100%)	4(100%)	4(100%)	-

〈 CPIK홈페이지 바탕화면 〉

〈우수사례 공유 화면 〉

< 현장의 변화 >

□ 중국어교과교실 학습 분위기 및 환경 변화

○ 한국어 교사의 문법 설명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회화수업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600] 산학연 협력 활성화	1966	**346,577**	**400,878**	**54,301**
[4601] 산학협력 기반조성(일반회계)	1967	1,931	2,423	492
[300]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967	891	846	△45
[303]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976	1,040	1,577	537
[460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일반회계)	1993	8,029	7,068	△961
[300]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1993	8,029	7,068	△961
[4601] 학교기업 지원사업(균특회계)	2026	7,173	6,814	△359
[300] 학교기업 지원사업(R&D)	2026	7,173	6,814	△359
[4602] 전문대학 혁신 지원(균특회계)	2040	250,764	290,786	40,022
[300] 전문대학 혁신 지원(R&D)	2040	250,764	290,786	40,022
[4603]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균특회계)	2048	78,680	93,787	15,107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2048	78,680	93,787	15,107

[300]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071	891	846	△45	△5.1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600 - 4601 - 300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전문대학정책과장(안수미), 사무관(장수용), 주무관(노미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공표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지원
사업기간	'9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교육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 621백만원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립·공표 지원, 대학별 입학전형 등 정보 제공 등
- 산출내역 : 1식×621백만원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 225백만원

- 산업체 위탁교육 등 운영 지원, 기초학습·전공기초 역량 증진 프로그램 개발,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운영 등
- 산출 내역 : 1식×225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891	846
■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1식×641백만원	1식×621백만원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1식×250백만원	1식×22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동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34조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에 근거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교육수요자에게 **전문대학 입학전형 정보 등**을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필요**

○ 또한, **국정과제(52-4 전문대학의 질 제고)** 등과 연계되는 중요과제로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차원에서 안정적 지원 필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 조성**	**1,071**	**891**	**846**	**△45**	**△5.1**
■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711	641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 1식×641백만원)	621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 1식×621백만원)	△20	△3.1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활성화 지원	270	250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 1식×250백만원)	225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 1식×225백만원)	△25	△10.0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90	-	-	-	-
□ **비목**(합계)	**1,071**	**891**	**846**	**△45**	**△5.1**
○민간경상보조(320-01)	1,071	891	846	△45	△5.1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071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711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70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90			
'18	963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643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50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70	891	■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641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50	△72
'19	963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643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50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70	846	■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621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225	△141
'20	963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643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50 ■ 전문대학 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70	963	■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713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250	-
'21	963	■ 전문대학 입시관리 및 입학전형 계획 수립 643 ■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 지원 250 ■ 전문대학선진화 및 직업교육 정책개발 지원 70	963	■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713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250	-
'22			963	■ 전문대학 입학전형 계획 수립 및 입시관리 713 ■ 고등직업교육과정 개선 및 교수학습 내실화 지원 250	
연평균 증가율 (%)	△2.1		1.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A)	'19예산(B)	증감(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91 (인건비 233)	846 (인건비 233)	△45 (인건비 -)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4.8명	4.8명	-
	예산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20.8명	20.8명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의 실제 일건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하여 직접고용효과 산식을 적용 ※ 간접고용효과 없음 = 인건비 총액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 근로자 임금(0.4812억원)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2.33억원 ÷ 0.4812억원 = 4.8명 □ **2018년 고용효과** - 2.33억원 ÷ 0.4812억원 = 4.8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직·간접 고용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설계 방안 등 검토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제9조(경비보조 등)

○ 추진경위

- 전문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5년부터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12.89		13.05	11.90		10.71		8.9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3.05 (13.05)	( )	( )	13.05 (13.05)	13.05 (12.99)	( )	(0.06)
'16년	11.90 (11.90)	( )	( )	11.90 (11.90)	11.90 (11.81)	( )	(0.09)
'17년	10.71 (10.71)	( )	( )	10.71 (10.71)	10.71 (10.432)	( )	(0.278)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071		891		891	794	89.2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794백만원 집행('18.12.12.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단계적 감축(3년 30%)

○ '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산학협력 기반조성): 보통(84점)

○ '17년 결산 시 국회 예결위 시정요구사항 : 보조금 관련 규정(분할지급 원칙) 준수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결과보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산업체인사가 참여하는비교과 입학전형 실시 대학 수(교) (단위: 60%)	목표	10	10	10	-	-	예산감소로 지원대학수 10개로 변동없음	학생선발에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취업역량을 평가하는 비교과 입학전형 실시 대학수	사업공모신청 접수후 평가로 선정
	실적	10	10	9	-	-			
	달성도	**100**	**100**	90	-	-			

○ '18~'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신규)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차년도 수시입학전형 공표율(%)	목표	신규	신규	85	87	'17년 실적(2018학년도 수시입학전형 공표율)을 근거로 8.8% 향상된 목표 설정(87)	공표한 전문대학수 /전체 136개 전문대학 수 ×10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실적 집계
	실적	신규 (75)	신규 (80)					
	달성도							
② 기초학습 진단도구 사용률(%)	목표	신규	신규	20	20.5	최근 3년간('15~'17년) 실적 평균값(19.1=20.2+18.2+19.1)/3)에 7.3% 향상된 목표(20.5) 설정	기초학습 진단 사용자수 /전문대학 신입생수 × 10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실적 집계
	실적	신규 (18.2)	신규 (19.1)	-	-			
	달성도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고교)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에 대한 **입학정보**가 **부족**한 상황

□ (교육청) 전문대학 **진로 및 진학지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전문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입학정보 제공** 등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요**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및 현장의 변화 >

□ **자료집** 발간·제공을 통해 **대입전형 정보 적시 안내**

※ 수시/정시 입학정보, 전문대학 입학상담 자료집을 전국 고교, 교육청에 배포

□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2개교)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개최**(12건)를 통해 **교수학습 우수 사례 보급** 및 **교수학습 활성화 지원 여건 마련**

참고 3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보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03]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146	1,040	1,577	**537**	**51.6**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600 - 4601 - 303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김홍오), 주무관(장명헌)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최보영), 사무관(최현정), 교육연구사(강명철)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로·취업 현황 분석을 통해 재학·졸업생의 진로·취업 지도와 청년층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선취업 후학습 정책의 기초자료 취득 및 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DB 연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 : 51-3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사업기간	'02~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약 58만명 연 6회 조사(학교조사 1회)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약 10만명 연 5회 조사(학교조사 1회)
지원조건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간접비	('18) 151백만원 (14.53%) → ('19) 229백만원 (14.53%)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1,040백만원

- 취업통계 조사 및 자료집 발간, 통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상시 현장점검, 시스템 운영 등 관련 예산 반영
- 산출내역 : 1,040백만원×1식

※ 담당자 연수, 콜센터 운영 등 320백만원, 자료집 발간 28백만원, 조사 실무자 인건비 297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310백만원, 시스템 운영 인건비 85백만원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19년 신규) : 537백만원

- 취업통계 조사 시스템(홈페이지, VPN 등) 구축, 조사도구 개발 등
- 산출내역 : 537백만원×1식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040	1,577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040백만원) 통계조사 실시, 시스템 운영 등	(1,040백만원) 통계조사 실시, 시스템 운영 등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537백만원) 시스템 구축, 조사도구 개발 등

□ 지원 필요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전수조사하는 유일한 통계**로 학생 진로설계와 각종 정책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중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의 안정적 조사·공표 및 통계 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현행 특성화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졸업자 취업통계는 이해당사자인 학교 중심으로 조사되어 **통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지취업률, 상세 취업정보 등 **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산출 불가**

○ 국정과제(51-3,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및 제주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건('17.11.)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공공DB 연계**를 통한 **특성화고 취업통계를 산출**하고 **학교 조사부담 경감 및 통계 신뢰성, 정확성 제고 필요**

※ 현행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전환(공공DB와 연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취업 질적정보 산출 추진** ('17.12 사회관계장관회의)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계획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146**	**1,040**	**1,577**	**537**	**51.6**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146	1,040 (1식x1,040백만)	1,040 (1식x1,040백만)	-	-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537 (1식x537백만)	**537**	**순증**
□ 비목(합계)	**1,146**	**1,040**	**1,577**	**537**	**51.6**
○민간위탁사업비(320-02)	1,146	1,040	1,577	**537**	**51.6**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진학자 DB 구축 및 공공DB연계 확대로 통계 조사 효율화 추진

○ 특성화고졸 취업통계를 공공DB 연계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교의 조사부담 해소 및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46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146백만원			
'18	1,04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040백만원	1,04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040백만원	
'19	1,056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056백만원	1,577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040백만원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537백만원	521
'20	1,901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901백만원	958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632백만원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326백만원	△943
'21	1,901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1,901백만원	939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620백만원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319백만원	
'22			930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614백만원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316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3.5		△2.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040	1,577	52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	19	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	11.8	△1.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9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5.6명 - 3.82억원 ÷ 0.6873억원(연구개발업 연평균 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13.4명 - 11.95억원* ÷ 0.89억** * 총 사업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민간위탁사업비 320-02)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연구개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2018년 고용효과: 13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3('17.3.21 개정, 법률 제14600호)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17.3.21 개정, 법률 14603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14.11.19 개정, 법률 제12844호)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통계법」('16.1.27 일부개정, 법률 제13818호)
  ※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제30조(통계자료의 제공),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청 일반조사 승인번호 제33403호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14.3.24 개정, 교육부훈령 제50호)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사업」 위탁협약서('12.2.17)

○ 추진경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0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작('06년 일반대학원 확대)
- '04~'09년 대학교 및 일반대학원 졸업자 취업통계 전수조사* 실시
  * 대학에서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졸업자의 취업현황 자체조사
- '0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현황 대학알리미 공시
- '10~'11년 건강보험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조사(연 1회)
- '11~'14년 건강보험, 국세DB연계를 통한 취업통계조사 및 유지 취업현황 조사 실시(연 2회)
  ※ '02년 유지취업률 조사 확대(연 2회→ 연 4회)
- '15년 연 2회 조사(6.1, 12.31)는 유지, 취업률은 12.31일로 일원화
- '16년 취업통계조사 공표 기준일 12.31. 자 일원화
- '17년 취업통계조사 법적 근거 상향 및 질적 취업정보 연계 시범조사 시행, 유지취업률 기준일 12.31. 자 일원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63년 교육기본통계조사 승인(제11201호), 국립교육평가원 수행
- '9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규정(98. 3, 교육부훈령 제565호)
- '11년 차세대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으로 교육통계조사 실시
- '14년~현재 나이스 학교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및 학교교육통계 실시
  ※ 학교에서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졸업자의 취업현황 자체조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9.02		10.32	10.32		11.46		10.4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32**	-	-	10.32	**10.32**	-	-
	(10.32)	(-)	(-)	(10.32)	**(10.313)**	(-)	(0.7)
'16년	**10.32**	-	-	10.32	**10.32**	-	-
	(10.32)	(-)	(-)	(10.32)	**(10.30)**	(-)	(2)
'17년	**11.46**	-	-	11.46	11.46	-	-
	(11.46)	(-)	(-)	(11.46)	(11.46)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46		1,040		1,040	1,040	10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작업반(2016년) 지적**

- 청년층 및 대학에서는 취업과 진로결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이고, 한정된 정보마저도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일선 대학의 정보 부재 및 인력적·재정적 어려움으로 재학·졸업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해 청년층 진로결정에 애로가 있음

2) 감사원 지적

□ **감사원(2016년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감사결과 보고서)**

- 청년고용대책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중 >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67.7%…수도권·지방 격차 1.6%p : 교육부 관계자는 … "앞으로 각 대학에 전공별 취업현황, 취업업체 규모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취업 상담 시 활용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7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개정**으로 취업처, 월평균임금 등 **취업의 상세정보**까지 **연계조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 추진, **통계청 변경 승인 완료, 시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발표**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12.1 현안보고)**

- 취업률 조사방식을 행정통계에서 국가 승인통계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것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7.12.1.)**

-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 승인통계 방식으로 전환하여 통계 신뢰성 제고

※ (현행) 학교에서 취업증빙서류 확인 → (개선) 주민번호 활용하여 고용보험 등 조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관련 기사 >

▸'제2의 이민호' 나오지 않게…'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경향신문, '17.12.01) : 정부는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취업률 집계 '주먹구구'...부실자료로 교장 성과금까지(한겨레, '17.11.28) : 현재 교사가 직접 입력하는 취업률 집계방식을 국가승인통계 장식으로 전환 추진 중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8년 국가 승인통계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조사대상 확대로 승인통계 추진, '19년 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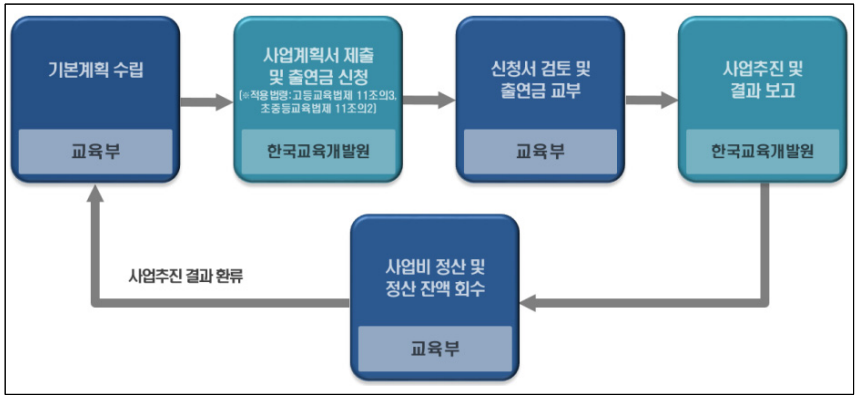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취업통계 이용건수 (단위: 건)	목표	74	81	84	87	90	최근 3년간 목표치 증가 추이(매년 3건 증가)를 적용함	관련부처, 교육연구기관, 연구소(자), 민간기관 등의 취업통계 자료 신청 건수	전문기관 의뢰 (한국교육개발원 등)
	실적	83	86	93	-	-			
	달성도	112.2	106.2	110.7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 취업통계조사 지원 근거법령
○ 취업통계 사업 성과
○ 2017년 취업통계 조사결과('16.12.31.기준)
○ 직업계고 취업률 관련 언론기사
○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관련 시스템 예산 설명자료

참고 1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 사회관계장관회의, 취업률 조사방식 전환 검토 ('17.12.1) >

□ **직업계고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및 조사방식 전환**

(취업률 조사)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방안 및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 조사 방안 검토

< 교육부,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18.2.23) >

□ **학습중심 현장실습 성과관리 개선**

(취업률 관리) 취업률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취업의 질을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 개선(교육부, '19~)

※ (현행) 학교에서 취업증빙서류 확인으로 취업률 조사 → (개선) **건강보험** 조회로 취업률 + 유지취업률 (졸업 후 6개월, 1년 등) 조사

참고 2 취업통계 조사 지원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제15조, 18조, 23조 및 24조**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경제 · 사회현상의 연구 ·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참고 3 취업통계 사업 성과

□ 교육부 시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조정 평가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활용

○ 조사단계별 검증체계 확립으로 검증기간 단축 및 자료의 정확성 제고로 고등교육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세계적수준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구조개혁, 대학/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

□ 전략적 조사계획 수립을 통한 조사의 내실화와 데이터 신뢰도 향상

○ 교육부, 감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네트워크 강화로 대학 점검 체계화

○ '14년도 예술계열 취업통계조사 개선방안 연구 수행결과에 따른 개정된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기준 적용 및 인정심의기구 운영

* 공연, 전시(장소 및 역할 기준 완화), 영상제작물(신설), 출판 및 출판(웹툰, E-book 등 온라인 출판 인정)

* 7개조(총 18명)의 심의위원회 구성, 총 2,878건('16년)의 증빙자료 타당성 검토

□ 공공DB연계 확대로 대학의 자체조사 항목 감소, 대학 취업통계담당자의 업무 경감

○ 유관기관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비교검증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취업자, 사망자, 입학당시기취업자),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자), 병무청(입대자), 보건복지부(의료급여수급자), 국세청(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청(1인창(사)업자), 한국고용정보원(허위취업자 비교검증), 법무부(해외취업자 및 해외진학자 비교검증) 등

○ 공공DB연계 확대로 대학의 자체조사 및 제출 증빙서류가 대폭 감소

* '12년 기준 688개 대학의 18,150개 학과의 취업통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약 0.5MM), 1MM당 732,800원('12년 최저임금 적용, 20일 근무)으로 책정하였을 경우, 약 6,650백만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추정

* '17년 질적 취업통계조사의 통계승인 완료로 인해, 407개 대학의 4,896개 학과의 취업통계 담당자의 교내취업자 증빙서류 수합 업무를 경감시킴

□ '15년도 취업통계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률 일원화

○ 기존 2회 조사 체제는 유지하되, 12.31일 취업률로 일원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의 공시시기를 8월에서 수시(12월)로 변경

○ 취업률 혼용과 혼동방지 및 각종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일관성 유지

* 보도자료 배포시점을 기존 8월에서 12월로 변경
*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제외된 불완전한 취업률에 의한 평가방지로 대학 평가사업의 공정성 확보
* 취업률 일원화로 취업률 정확성 강화 및 대학의 업무부담 감소 효과가 언론에 긍정적 평가 받음
  - '교육부, 대학졸업생 진학·취업 조사 신뢰성 높인다'(데일리안, '17.1.30)
  - '대학취업률조사 12월로 일원화...창업·프리랜서 등 포함'(news1, '17.1.24)
  - 건보·국세DB 연계 대학취업률 '12월 조사'로 일원화(이데일리, '17.1.24)

○ 대학의 행정력 낭비 방지를 통한 취업·진로 교육 정상화

* 졸업자 취업준비기간 연장을 통한 취업시장 현실 반영 및 취업률 제고
* 미취업자에 대한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졸자 취업난 해소에 기여

□ '16년도 취업통계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통계의 타당성 제고

○ 1인 창(사)업자 인정기준 개선

* 1인 창(사)업자의 인정금액 기준(5.1개월의 창업활동기간 고려) 완화(1,200만원 이상→605백만원 이상)
* 기술형 창업인정 기준 산설로 인정기준 다원화 및 외부DB연계 확대로 창업시장의 현실과 특성 반영

□ '17년도 취업통계의 법적 근거 상향으로 질적 취업통계 생산으로 통계의 다양성 제고

○ 「고등교육법」 11조의3 개정으로 승인통계범위 질적 취업정보로 확대, 대졸자 취업분야, 임금현황 등을 기반으로 취업의 질적 분석 가능

참고 4 2017년 취업통계 조사 결과('16.12.31.기준)

○ '16.2월('15.8월 포함) 졸업자의 **'16.12.31일 기준 건보 및 국세DB 취업률**

- '16.12.31일 기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67.7%**로 **'15.12.31일 대비 0.2%p 상승**
- 취업자는 총 349,584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 318,438명, 해외취업자 2,333명, 1인 창(사)업자는 4,791명, 프리랜서는 20,280명 등이며,
- 프리랜서는 전년 대비 0.5%p, 해외취업자 0.3%p, 1인 창(사)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0.1%p씩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전년 대비 0.8%p 감소함

< '15년 대비 '16년 변동폭 >

구 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15	91.9%	0.4%	0.8%	1.3%	5.3%
'16	91.1%	0.7%	0.9%	1.4%	5.8%
변동폭	△0.8%p	0.3%p	0.1%p	0.1%p	0.5%p

○ '16.2월('15.8월 포함) 졸업자의 **4차 유지취업률**

- '16년 12월 31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중 취업 후 1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자는 76.8%**로 **6월 1일 기준 유지취업률(73.4%)** 대비 **3.4% 높게 나타남**
- '16년 유지취업률은 1차 89.8%(3개월 후) → 2차 84.4%(6개월 후) → 3차 79.2%(9개월 후) → 4차 76.8%(11개월 후)로 나타남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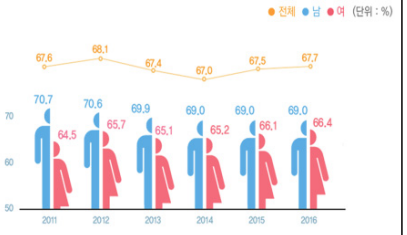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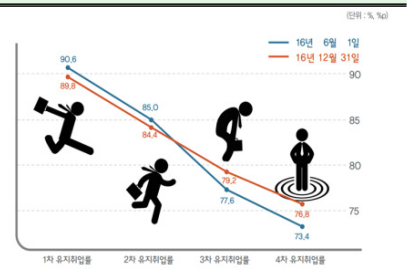

○ 산업별 취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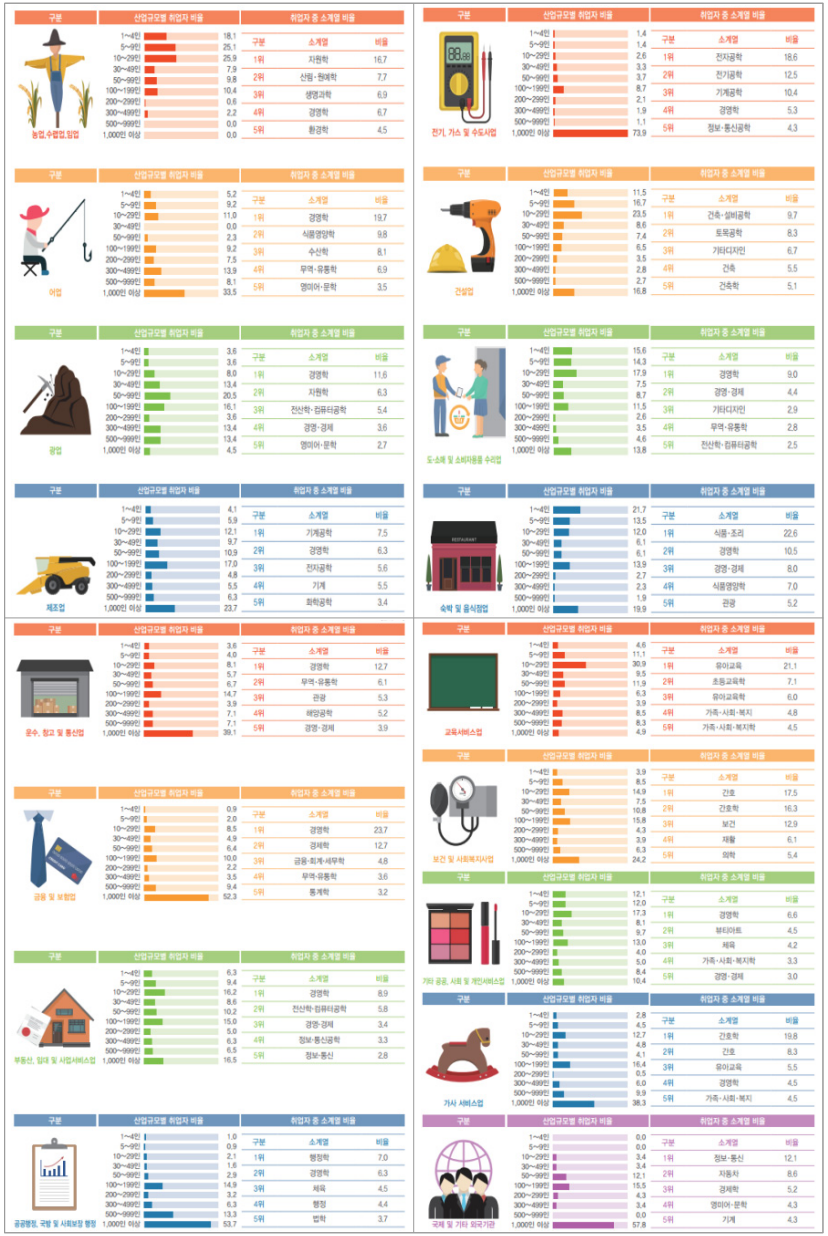

참고 5 직업계고 취업률 관련 언론 기사

경향신문 2017년 12월 02일 토요일 001면 종합

'제2의 이민호' 나오지 않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사회관계장관회의 대책 추진
'학습 중심 실습' 제한적 허용

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을 중·축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18)은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크게 다쳤고 같은 달 19일 숨졌다.

정부는 우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맹·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원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만4000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 지원 내실화,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찬수·남지원 기자 soo43@kyunghyang.com

내일신문('17.11.30)

한겨레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00면 종합

취업률 집계 '주먹구구'…부실자료로 교장 성과급까지

한겨레('17.11.28)

경향신문 2017년 12월 02일 토요일 001면 종합

'제2의 이민호' 나오지 않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사회관계장관회의 대책 추진
'학습 중심 실습' 제한적 허용

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을 중·축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18)은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크게 다쳤고 같은 달 19일 숨졌다.

정부는 우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맹·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원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안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만4000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 지원 내실화, 남녀 공동의 출산·육아 책임의식 강화 등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찬수·남지원 기자 soo43@kyunghyang.com

경향신문('17,12.2)

국민일보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010면 사회

정부 "특성화·마이스터高 학생 취업률 7년 연속 상승"

'직장의 질' 지표 빠진 반쪽 통계

정규직 여부·취업유지율 공개 안해

교육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률이 7년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등 '직장의 질(質)'에 대한 지표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을 졸업한 11만4225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5만3504명(47.2%)이 취직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09년 16.7%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해 왔다.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3만9054명(34.2%)으로 7년 새 가장 낮은 비율이다. 진학자를 제외한 인원으로만 취업률을 산정하면 72%로 지난해 대학 졸업자 취업률 67%보다 높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90.3%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47.0%, 일반고 직업반 졸업생은 23.6%가 취직했다.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정규직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로부터 고졸 취업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내용을 보고받는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교육통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인 취업유지율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는 2013년 '취업률 뻥튀기'를 막기 위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취업률을 조사·발표했다. 6개월 사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를 통해 취업유지율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3년 교육부 통계를 보면 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자 3191명 가운데 318명(9.9%),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 3154명 가운데 1141명(36.1%)이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는 취업률만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유지율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범정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며 "통계청과 조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홈보하기 좋은 자료는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 공개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국민일보('16.10.14)

[300]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6,772	8,029	7,068	△961	△12.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2 - 2200 - 2258 - 301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평생학습정책과장(정윤경), 사무관(전형은),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최보영), 교육연구관(하은경), 주무관(송재봉)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일-교육·훈련-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훈련과정에서 가르치기 위한 NCS 학습모듈을 개발·보완하여 직업교육을 현장 직무중심으로 개편 지원 • 학위-자격-훈련-경력 간 상호연계를 위한 수준체계로서 국가단위의 기본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사업기간	• '08~
총사업비	• 해당 없음
사업규모	• NCS 948개 분야 학습모듈 개발·보완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민간자격 약 30,000여개 관리운영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지속지원)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여기관) ISC, SC 등
간접비	•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① **NCS학습모듈 개발 및 보완 : 5,843백만원**

▪ **(신규개발)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직종** 등 **신(新)산업분야***에 대비한 **우수 인재양성(교육)** 및 **직업훈련개편(고용)**과 연계하여 **NCS학습모듈 신규 개발 추진**

* 17년 26개, '18년 20개 신산업분야 NCS 개발

▪ **(수정보완)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NCS 개선***으로 인한 **NCS학습모듈 수정·보완 추진**

* 기존 NCS 개선으로 인한 학습모듈 63개 세분류 수정 필요
(전 부처, 교육기관 등 수요조사 결과('18.4.4~4.19) 30개 기관에서 203개 세분류 수정 요청)

▪ 산출내역 : 5,843백만원

- **(신규개발)** 46개(세분류) × 75.4백만원= 3,468백만원
- **(수정보완)** 63개(세분류) × 37.7백만원= 2,375백만원

② **NCS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정책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 산출내역 : 108백만원(NCS 활용·확산 지원, 1식×108백만원)

③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20백만원**

▪ KQF 관련 현황 분석, 추진과제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유기적 KQF 구축 추진 동력 확보**

▪ 산출내역 : 20백만원(전문가 정책포럼 2회×10백만원)

④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원**

▪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변경·폐지 관리**와 **등록자격**에 대한 **연수,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산출내역 : 1,069백만원(세부산출내역 아래 참조)

- **(민간자격 사전 등록·변경·폐지)** 0.105백만원 × 6,980 종목 = 733백만원

※ '19년 신규 등록 민간자격 물량은 6,980개 예상('17년 민간자격 전체 신규 등록 수는 6,500여개('17.12월 초 기준 6,302개)로 약 5% 증가 예상, 등록단가 105,000원은 기재부 조정단가)

- **(민간자격 지도·점검)** 0.116백만원 × 500개 자격 = 58백만원

※ 민간자격관리자 및 부처 담당관 연수, 지도·점검 가이드 마련, 소관 등록자격의 불법운영 지도·점검

* '17년 12월 현재 교육부 소관 등록 자격은 7,000여개로 약 1/14을 대상 물량으로 설정

-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0.18백만원 × 600여개 기관 = 119백만원

※ 광고 모니터링은 교육부가 총괄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해당 부처에 전달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SW 및 콘텐츠 관리·운영)** 45백만원

※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정보서비스 민원처리, 개인정보보호 관리, 웹 콘텐츠 운영 등

- **(공인민간 자격통계연보 발간(1종))** : 27백만원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제도 홍보)** 31백만원

※ 홍보 : 신문광고,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연 2회 이상)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HW 관리·운영)** 56백만원 × 1명 = 56백만원

⑤ **자격정책심의회 : 28백만원**

▪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 민간자격부적합 분야, 민간자격의 공인에 대한 **사항 심의.연구 등**

▪ 산출내역 : 28백만원(심의회 운영 4회×7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8,029	7,068
■ NCS학습모듈 개발 및 보완	(6,824백만원) 수정보완 181개 분야	(5,843백만원) NCS학습모듈 신규개발(46개) 및 수정보완(63개)
■ NCS 활용 인프라 구축	(108백만원) NCS활용지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08백만원) NCS 활용·확산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정책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20백만원) KQF 구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포럼
■ 민간자격 등록·관리	(1,069백만원) 민간자격 등록·변경 폐지 관리 등	(1,069백만원) 민간자격 등록·변경 폐지 관리 등
■ 자격정책심의회	(28백만원)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28백만원)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① **NCS 학습모듈 개발 및 보완**

<신규개발>

▪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고교 학점제** 등에서 제시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래유망분야** 및 **4차 산업 직종** 관련 **직무능력개발 필요**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신(新)산업분야 NCS(고용부) 신규개발***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교과서, 교수·학습자료** 및 **가이드 라인**으로서 **학습교재(모듈) 개발·보급**

* '17~'18년 NCS 46개 신산업분야('17년 26개, '18년 20개 신산업분야 NCS 개발)

** 특성화고, 폴리텍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에 대비하여 **학과개편** 및 **융합형 기술교육 등 직업교육훈련** 개편추진

◆ **현장수요 맞춤형·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7.10.18)**
-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등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폴리텍 구조 개편
-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에 역량을 갖춘 민간 선도훈련기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실시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과정 확대(청년일자리 대책, '18.3.15)**
-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 지원
-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신직종 「하이테크 과정」('18년 20개, 545명) 확대

<신규개발 NCS 분야>

개발연도	개발 분야		NCS
2017년 (50개 세분류)	**미래유망분야 (26개 세분류)**	법률경찰	스마트재난위험예측 / 스마트재난관리설계
		디자인	3D프린팅디자인 / VR콘텐츠디자인
		건설	해양플랜트 종합설계 / 해양플랜트 구조설계 / 해양플랜트 기계설계
		화학	화학 신소재 개발
		전기전자	직류송배전 시험 평가 / 초임계 CO_2 회전기기 설계제작 /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 실감형콘텐츠하드웨어(디바이스)개발/ 착용형 스마트기기 기획·설계 / 착용형 스마트기기 고객서비스·인증 / 착용형 스마트기기 개발·엔지니어링
		정보통신	핀테크기술기획 / 빅데이터기획 / 핀테크엔지니어링 / 빅데이터플랫폼개발 / 빅데이터 운영·관리 / 정보 보호 암호인증 / 실감형플랫폼구축 / IoT통신망구축 / 실감형통신서비스 / 실감콘텐츠촬영
		환경에너지안전	방사성 폐기물 해체
	일반분야 (24개 세분류)	기타	곤충사육 / 아이돌봄 / 보일러운영관리조.....
2018년 (50개 세분류)	**미래유망분야 (20개 세분류)**	디자인	드론콘텐츠제작
		기계	스마트 설비설계
		재료	마그네슘 제조 / 타이타늄 제조
		전기전자	스마트팜 제어 기술개발 / OLED 조명 개발 /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기술개발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개발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검사개발 / 로봇안전인증 / 스마트 유지보수 운영
		정보통신	증강현실(AR)콘텐츠제작 / 데이터 아키텍트 / 인공지능 플랫폼구축 / 인공지능 서비스기획 / 블록체인 분석·설계 / 블록체인 구축·운영 / 재난안전통신망구축
		환경에너지안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운영관리
		농림어업	스마트양식
	일반분야 (30개 세분류)	기타	주거서비스지원 / 완구콘텐츠제작 / 특수주조.....

<수정·보완>

▪ **산업환경** 및 **현장 활용성** 등을 반영한 **NCS 개선**에 따라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NCS학습모듈 수정·보완*** **필요**

* 전 부처, 교육기관, 협의체 등 수요조사 결과 30개 기관에서 203개 세분류 수정·보완 요청('18.4.4~4.19)

- **수정·보완**된 **NCS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현장중심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산업현장과 교육 간 질적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교육·훈련 경쟁력 강화**

② NCS 활용인프라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확산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정책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③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구축·운영

▪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인정하기 위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체계(Framework)** 마련 중요

※ 불필요한 스펙 쌓기 만연, 학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중복 취득 발생 등

▪ **KQF**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자격, 채용·승진·보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견해 차이**가 존재

- KQF의 **실제 적용** 및 **운영**에 있어 **대상, 분야**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사회적 문화형성 필요**

<사업 관련 국정과제>

◆ **(국정과제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4차 산업대비 직업능력개발) 산업별로 자격-교육-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④ **민간자격 등록관리**

-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다양화**되는 **직업세계**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이외에 **개인·단체·법인**도 **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격 제도 운영**이 **필요**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 취소** 등 관리、감독 강화

- **민간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시스템(PQI)' 구축** 및 **운영**

⑤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국가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기본방향 마련** 등을 위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정책 심의기구**인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범정부적 차원**의 **자격제도 관리·운영 계획 수립**과 **검토 절차 지원**

※ 근거법령 : 자격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등

- **'자격정책심의회'**와 **'자격정책실무위원회' 지원**과 **심의안건**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6,772**	**8,029**	**7,068**	△961	△12.0
■ NCS학습모듈 개발 및 보완	5,467	**6,824** (181개분야X75.4백만원X50%)	**5,843** (46개×75.4백만+63개×37.7백만원)	△961	△14.4
■ NCS 활용 인프라 구축	108	**108** (NCS 활용지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1식 × 108백만원)	**108** (NCS 활용지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1식 × 108백만원)	-	-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100	-	**20** (전문가포럼 2회 × 10백만원)	**20**	**순증**
■ 민간자격 등록·관리	1,069	**1,069** ((등록: 6,980개 종목 × 0.105백만)+ (지도점검: 500기관 ×0.116백만)+ (모니터링 : 600개 기관 ×0.18백만)+ (PQI SW 관리 : 45백만원 × 1명)+ (PQI HW 관리 : 56백만원 × 1명)+ (통계연보: 27백만×1종)+ (홍보: 31백만×1식))	**1,069** ((등록: 6,980개 종목 × 0.105백만)+ (지도점검: 500기관 ×0.116백만)+ (모니터링 : 600개 기관 ×0.18백만)+ (PQI SW 관리 : 45백만원 × 1명)+ (PQI HW 관리 : 56백만원 × 1명)+ (통계연보: 27백만×1종)+ (홍보: 31백만×1식))	-	-
■ 자격정책심의회	28	**28** (8식×3.5백만)	**28** (4식×7백만)	-	-
□ **비목**(합계)	**6,772**	**8,029**	**7,068**	△961	△12.0
○민간경상보조(320-01)	6,772	8,029	7,068	△961	△12.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NCS 신규개발**과 연계하여 **NCS학습모듈**을 **신규**로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직종** 등 **신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 **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NCS 개선·보완**에 따라 **학습모듈**을 **수정·보완**하여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인정**하기 위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합의된 기준체계(KQF, Framework) 마련**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 관리**와 **등록자격**에 대한 **연수, 지도·점검** 등 **실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772	▪ NCS 학습모듈 개발 및 보완 : 5,467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 1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원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28백만원			
'18	8,029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6,824백만원 ▪ NCS 활용 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원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28백만원	8,029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6,824백만원 ▪ NCS 활용 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원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28백만원	0
'19	6,240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4,232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300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3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377백만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31백만	7,068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5,843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2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28백만	828
'20	11,232	▪ NCS 학습모듈개발·보완 : 9,224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300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3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377백만원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31백만원	5,075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3,850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1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28백만	△6,157
'21	11,232	▪ NCS 학습모듈개발·보완 : 9,224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300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3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377백만원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31백만원	5,075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3,850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1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28백만	△6,157
'22			5,075	▪ NCS 학습교재 개발 및 보완 : 3,850백만원 ▪ NCS 활용인프라 구축 : 108백만원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운영 :100백만원 ▪ 민간자격 등록·관리 : 1,069백만 ▪ 자격정책심의회 운영 :28백만	5,075
연평균 증가율 (%)	13.5%		△10.8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8,029	7,068	△961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1	98	△1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8	14	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9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국고보조사업으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민간경상보조(320-01) 70.68억원**을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에 의거 '산업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지출액'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의 1인고용산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 **2018년 고용효과: 11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NCS학습모듈 개발**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6항

> 제8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⑤ 교육부장관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맞추어 관련 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5항에 따른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 자격기본법 제6조

>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 ②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자격 등록·관리** : 자격기본법 제17조

>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자격정책심의회** : 자격기본법 제8조

>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추진경위

- '99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 지시
- '00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표준개발 착수
- '09년 국가직무능력표준 일원화 TF 구성·운영
  * 주요용어 및 서식개발 등 통일
- '10.5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효율화 추진에 대한 업무 조정
  * 표준 명칭 통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주체 일원화

- ’12.6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관계부처 합동) 수립
- ’13.4월, NCS의 조기 개발 및 활용을 위해「NCS 운영위원회」구성
- ’13.5월, 교육부-고용부 공동「NCS 개발 및 활용 기본계획」,「NCS 학습교재 개발 기본계획」수립
- ’13.10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
- ’13.12월, 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14.5월, 학력을 대체하는 능력인정 체계 발굴 추진
- ’14.5월, 2014년도 NCS 학습교재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4.6월, SW분야 NCS 활용 확산 및 NQF 구축을 위한 산·학·관 MOU 체결
- ’14.6월,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4.11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박람회 개최(킨텍스)
- ’14.12월, 헤어미용분야 ‘NCS 활용 확산 및 NQF 구축’을 위한 산·학·관 MOU 체결
- ’15.1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15.2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수 실시(7회, 1280명)
- ’15.2월, 역량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14.6월~ ’15.1월) 및 결과 발표 세미나 개최
-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개발(’13~)

  ※ ’16년까지 NCS 897개 개발, NCS 학습모듈 847개 개발
- ’15.9～12,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틀 마련 정책연구
- ’15.10～‘16.1, 한국형 NQF 구축을 위한 실무T/F를 운영하여 시범 분야 역량체계 점검, NQF 구축 관련 쟁점 검토
- ’15.9월, 특성화고 ‘NCS 기반 고교직업과정’ 총·각론 확정 및 고시
- ’15.10월, 전문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보급
- ’16.1월, 특성화고 실무과목 교과서 편집본(260개 과목) NCS홈페이지 탑재
- ’16.2월, 특성화고 NCS학습모듈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16.2월, 2016년 NCS 학습모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6.2월, 4년제 대학 NCS 활용 가이드 개발·보급
- ’16.3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적용
- ’16.3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설계추진계획 수립
- ’16.3월,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 대국민 선포식’ 개최
- ’16.4월, 2016년 NCS 활용인프라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4월, 제5차 NCS 운영위원회 개최(NCS·NCS학습모듈 개발 계획 등 4건 보고)
- ’16.4월,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위한 NCS 기반 교육 및 NQF 홍보계획(안) 수립
- ’16.8월,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NCS 학습모듈 홍보관 운영
- ’16.8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 설계시안(안) 수립
- ’16.10월, 2016 행복교육박람회 NCS 교육 정책홍보관 운영
- ’16.10~11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틀 설계시안(안) 공청회 실시 (3회)
- ’16.11월,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6.11월, NCS 학습모듈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16.11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관광숙박(호텔업) 분야 산·학·관 MOU체결
- ’16.12월, 전문대 직업기초능력 활용 교육과정 시범모델 개발 완료 및 보급
- ’16.1~12월, 교육부-고용부 합동 NCS 기반 채용 관련 사교육 지도·점검 실시(총 4회)
- ’17.3월, 2017년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 추진계획 수립
- ’17.5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설명지표 수정(안) 잠정 확정
- ‘17.6월~8월,NCS학습모듈 활용 고도화 연구 전문가 협의회 개최
- ‘17.7월~9월, NCS학습모듈 중간·1차·2차 검토 실시
- ‘17.9월,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 NCS 정책 홍보관 설치·운영
- ‘17.11월, 미래교육 박람회 NCS 정책 홍보관 설치·운영
- ‘17.11월~12월, NCS학습모듈 활용 현황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17.12월, NCS학습모듈 개발심의회 최종 심의 실시
- '17.12월, NCS학습모듈 개발·보완 완료 및 NCS사이트 최종본 탑재
- '17.12월, NCS 및 NCS학습모듈 활용 우수 사례집 제작·배포
- '17.12월, NCS 학습모듈 활용 고도화 정책연구 완료
- '17.12월, 국가역량체계 구축 추진단 회의 실시
- '17.12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운영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 '17.12월,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운영가이드라인(안) 개발 완료
- '18.3월 현장편의성을 위해 NCS학습모듈 직업계고 한글파일 제공
- '18.3월 교육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교원 개발진 추천 요청
- '18.5월 NCS학습모듈 개발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개발책임자 등 연수 실시(3회)
- '18.1월,3월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업무 담당관 정례협의회 개최
- '18.4월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 '18.5월 NCS학습모듈 개발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개발책임자 등 연수 실시(3회)
- 18.6월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실시
- 18.5월 제23차 자격정책실무위원회 및 제24차 자격정책심의회 개최, '17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안 심의 등
- '18.6월~9월, NCS학습모듈 중간·1차·2차 검토 실시
- 18.10월 '2018년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개최
- 18.12월 '2018년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직무능력 표준구축	141.41		243.17	246.73		67.72		80.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16년, 17년 : 사업집행 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3.17** (**243.17**)	( )	( )	243.17 (**243.17**)	**243.17** (**237.56**)	( )	(5.6)
'16년	**246.73** (**246.73**)	( )	( )	246.73 (**246.73**)	**246.73** (**245.89**)	( )	(0.84)
'17년	**67.72** (**67.46**)	( )	( )	**67.72** (**67.46**)	**67.72** (**67.46**)	( )	(0.26)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년 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772		8,029		8,029	8,029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8,029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결과 '보통'(78.5점) 판정('15.6)
-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결과 '보통'(83점) 판정('17.3.)
-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결과 '보통'(86점) 판정('18.4.)**

○ ’14년도 결산(교문위) : 학습모듈 개발단가에 대한 사전검토 미비로 기재부-교육부 간 협의과정에서 학습모듈 개발착수가 늦아져 ’14년 학습모듈 개발 사업 지연

- (후속조치) ’14년 학습모듈 개발사업은 ’15.6. 개발완료 후 NCS 통합포털(www.ncs.go.kr)에 탑재 완료하였으며, ‘15년은 12월까지 학습모듈 개발 완료

○ ‘15년도 결산(교문위, 예결위) : NCS 학습모듈의 완성도 향상 방안, 질 관리 체계 마련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후속조치)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NCS 학습모듈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16.10~11)하고,

- NCS포털 사이트 내 NCS 학습모듈 게시판 개설(~’17.3) 및 NCS 학습모듈 개발 심의회 운영(~17.12)

○ ’15년도 감사(감사원) : 이수시간 및 선행학습 관련, NCS와 NCS 학습모듈 간 연계성 강화 필요

- (후속조치) NCS와 NCS학습모듈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13년 개발분 NCS학습모듈(55개 세분류, 468종)의 교육훈련시간 및 선수학습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NCS통합포털에 탑재(’15.5)

○ ’15년도 감사(감사원) : 자격취득자 현황, 자격활용 관련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후속조치) ’15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등록자격 관리자가 자격별로 정보(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시험일정, 검정료)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마련 완료(’15.1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구 분		영국의 NOS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호주의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배경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능력 개발 체계 구축 필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훈련체제로의 개편 필요
도입시기		1986년 ‘국가직업자격협회’ (NCVQ) 설립	1989년 ‘능력중심훈련’(CBT) 체제 도입
총괄기구		UKCES(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 ※ 정부기관 내에 협의체 설치	NTQC(National Training Qualify Council) ※ 정부기관 내에 협의체 설치
개발기관		SSC(Setor Skills Council) ※산업별협의체	ISC(Industry Sector Council) ※산업별협의체
승인기관		UKCES ※총괄기구에서 표준승인	NTQC ※총괄기구에서 표준승인
활용내용	교육훈련	직업교육(전문대학) 훈련과정시 NOS를 기초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내용 개발	직업교육(전문대학) 훈련과정 개발(Training Package)
	자격	NOS에 따라 국가자격(NVQ) 개발	국가자격(AQF)에 활용
활용도		주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에서 활용됨	전반적으로 활용도는 높으나, 대기업의 활용도(50%내외)는 낮은 편임
운영방식		정부(BIS :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산업혁신기술부)에서 NOS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정부주도(DEEWER, 교육노동부)의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NCS 개발비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개발현황		NOS 15,000개(‘11)	NCS 19,000개(‘11)

(6) 사업추진절차

○ NCS학습모듈 개발 절차(계획·개발·검토·심의 4단계)

▪ **NCS학습모듈**의 **내실화**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NCS학습모듈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NCS 학습모듈**에 대한 **심의 실시**

계획	NCS학습모듈 개발 분야 선정 (교육부, 직능원)	NCS학습모듈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NCS학습모듈 세부추진계획 수립 (직능원)
개발	개발기관 공모 및 선정, 개발진 구성 및 연수(개발기관, 직능원)	NCS학습모듈 개발계획서 작성 (개발기관, 직능원)	NCS학습모듈 집필 (개발기관)
검토	**1차** 학습모듈(Prototype) 중간검토(1차) 및 수정·보완(개발기관)	**2차** 1차 완성본(초안) 검토 및 수정·보완 (개발기관)	**3차** 2차 완성본 검토 및 수정·보완 (개발기관)
심의	윤문·편집 및 심의본 제출(개발기관)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교육부, 직능원)	NCS학습모듈 운영위원회 (교육부)
완성	최종본 검수 (직능원)	NCS 통합사이트 탑재 (wwww.ncs.go.kr)	

○ 민간자격 공인제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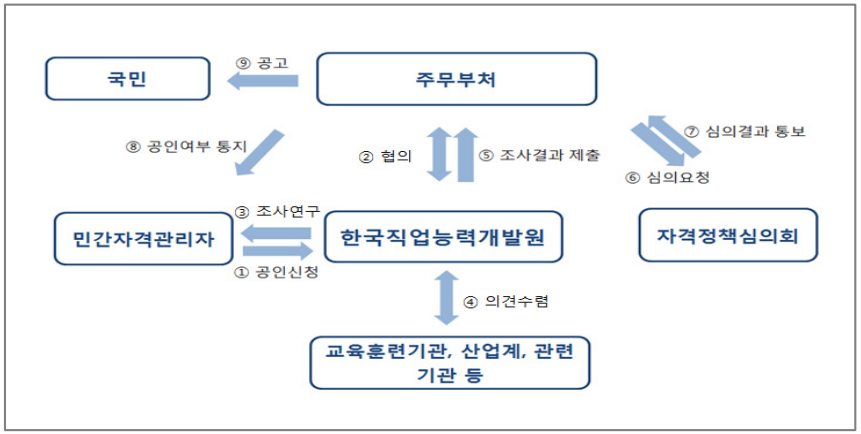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NCS기반 학습모듈 개발건수 (단위:건)	목표	314	300	지표삭제	지표삭제	46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유망 분야 NCS 개발과 연계하여 NCS 학습교재 미개발분 개발	개발된 NCS학습모듈 건수(세분류)	NCS홈페이지 학습모듈 탑재현황
	실적	321	300	-	-	-			
	달성도	102	100	-	-	-			
NCS 학습모듈 수정· 보완 세분류수(수) (단위:건)	목표	신규	신규	45	181	지표삭제	NCS학습모듈 수정보완 세분류 수	수정·보완된 NCS학습모듈 세분류 수	NCS 사이트에 최종탑재된 NCS학습모듈 수정·보완본
	실적	신규	신규	45	-	지표삭제			
	달성도	-	-	100	-	-			
NCS 학습모듈 활용 만족도 (단위:점)	달성도	신규	72	74	76	77	NCS 학습모듈 사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NCS 학습모듈 사용자 대상 만족도조사(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신규	72.2	74.2	-	-			
		-	100.3	100.3	-	-			
민간자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73	74	75	76	77	민간자격정보시스템 이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민간자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73	74.5	75.24	-	-			
	달성도	100	100.7	100.3	-	-			

※ '17~'18년은 학습모듈 개발 목표가 고교 실무과목과 연계된 수정 보완이 우선 목표로 해서 신규개발은 없었으나, '19년 이후 부터는 4차 산업혁명, 미래유망 분야 등 신산업분야 관련된 학습모듈 개발을 목표 설정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ㅇ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ㅇ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ㅇ (참고3) NCS, NCS 학습모듈, NCS 기반 직업교육 개념
- ㅇ (참고4) NCS학습모듈 관련 통계
- ㅇ (참고5)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 ㅇ (참고6)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1. NCS 학습모듈 개발 및 활용

< 현장 의견>

□ **(활용성 제고)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한 **NCS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 요소 편집**하여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NCS학습모듈 한글파일 요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6.11), 인천재능대학교('17.,4), 삼례공고('17,5) 등

□ **(현장적합성 제고) 직접 학습모듈**을 사용하는 **현장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습모듈 개발 필요**

□ **(사례공유필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됨('18.3월)에 따라 **NCS학습모듈**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 필요**

□ **(질 관리 체계 부족)** 지금까지 완성된 **학습모듈**의 **결과물**을 **심의**하고 **인증**하는 **절차**와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NCS학습모듈**에 대한 **질 관리**가 어려움

※ 학습모듈 관련 정책연구, '17년 NCS학습모듈 개발심의회('17.12.21.)

< 반영 사항>

□ **(NCS학습모듈 한글파일 제공)**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학습 자료**로 **학습모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7. 6월부터 **교육적 목적**에 한하여 **NCS 학습모듈 한글(HWP)파일**을 신청 학교에 제공

* 2017년 5개 학교 92건 제공, 2018년 173개 학교 41,834건 제공

□ **(직업계고 교사 참여 유도) 금년도 사업**부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업계고 교원**을 추천 받아 **개발기관**에 **제공**하여 **개발진**으로 **구성·활용**토록 **권장**하여 **현장적합성 제고**

□ **(NCS학습모듈 우수사례집 개발)** NCS와 NCS학습모듈을 충실히 분석하여 교육훈련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기업, 훈련기관의 사례 제공**

□ **(NCS학습모듈심의회 구축 및 운영) NCS학습모듈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NCS학습모듈 결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NCS학습모듈 개발심의회 개최('17) -> NCS학습모듈 심의회 확대 개편('18)

2. 민간자격 관리 운영

< 현장 의견 >

□ **(소비자) 민간자격 증가로, 자격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 요구**

○ 2만 여개의 자격이 등록되면서, 자격간 비교 등 자격취득 결정에 필요한 취득자 현황, 시험일정, 자격관리자 상세정보 등을 민간 자격정보서비스(PQI)를 통해 제공하여 줄 것을 지속 요구

□ **(민간자격관리자 및 관계부처) 민간자격 등록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PQI 개편 및 기능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

○ '13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소관분야에 대한 사전등록이 시행됨에 따라,

○ 해당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기능 확충 요구 지속 제기

※ '13년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현 정보시스템의 일부만 보완하여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 중

○ 35개 주무부처와 직능원 간 오프라인 공문을 통한 업무처리 등으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시간지연이 발생 관계자간 불만 및 민원 증가

□ **(사업수행기관*) PQI 서버 등 HW의 사용 연한 초과로 교체 및 최신의 개인정보보호 기술 도입 시급성 지속 제기**

* 자격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35개 부처로부터 등록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특히, 현재 구축된 HW(운영 SW 포함)에 대한 제조사의 사후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 기계적 결함 발생시 대응 불가능

□ **(기타 언론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제도 개선 필요성 지속 제시**

※「10분만에 '뚝딱'... 판치는 3분 자격증」, 경향신문, 2018.01.18

※「민간자격증 '홍수',,, 돈 내면 5시간 만에 '뚝딱;」, JTBC, 2018.01.27

※「민간자격증 남발, 질 관리는 'NO'」, 내일신문, 2017.10.16

※ 국무조종실 주관(관계부처합동, 2018.04.18.),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1. NCS 학습모듈 개발 및 활용

< 사업성과 >

□ **(NCS학습모듈 개발·개선) NCS 학습모듈**을 통한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 활용·확산 지원**

○ **미래성장동력 분야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개발 수요 대비** 및 **인력양성 지원**

* 무인기운용·조종, 로봇지능개발 등 50개 분야('17년 개발 완료)

○ 산업변화 등을 반영한 **NCS 개선·보완**에 따라 **NCS 학습모듈 수정·보완**을 추진하여 **현장성** 및 **완성도** 높은 **교육·훈련과정** 지속적 지원

<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 >

◆ **(특성화고)** NCS 기반 교육과정 총·각론 고시('15.9), **'18학년도부터 모든 직업계고에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전면 적용**

◆ **(전문대학)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확산

* ('14) 78개교 → ('15) 79개교 → ('16) 83개교 → ('17) 83개교 → ('18) 82개교

◆ **(훈련기관)** '15년까지 모든 **폴리텍 대학**(공공훈련) 훈련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하고, '16년에는 **정부지원 민간훈련과정**에 **NCS 전면 적용***(고용부)

* ('15) 315개 직종 → ('16) 797개 직종 → ('17) 897개 직종

◆ **(NCS 기반 자격 연계)** 직업계고, 전문대, 폴리텍, 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형자격** 지속 확대 추진

* ('15) 40기관, 52과정 → ('16) 84기관, 129과정 → ('17) 208기관 336과정 → ('18) 314기관, 631과정

□ **(NCS학습모듈 제공)** NCS 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NCS 통합포털(www.ncs.go.kr)**에 **탑재**하여 직**업교육 교수·학습자**에게 제공

※ NCS학습모듈 다운로드 현황(누적) : 2014년 30,823건 → 2015년 217,935건 → 2016년 1,034,415건 → 2017년 1,803,751건('17. 12. 31. 기준)

□ **(높은 만족도)** 2017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교원만족도(72.5점), 학생만족도(76.1점)**로 **전체 만족도**는 **74.2점**으로 2016년 72.2점 대비 상승

□ **(취업률 제고)** 현장성 높은 **NCS 기반 교육과정**의 **활용·확산**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취업률 제고**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추진과 연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에 **적용**함으로써 **사업 참여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 및 **취업률 향상**

※ SCK사업 참여 전문대학 취업률 : ('14)52.7%→('15)67.0%→('16)72.4%→('17)74.0%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통해 **고교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하여 **학생의 취업률 증가**

※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 : ('14)44.2%→('15)46.6%→('16)47.2%→('17)50.6%

< 현장의 변화 >

□ NCS 학습모듈 활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실현

○ **특성화고-초고속망서비스, 축산식품가공**

· NCS학습모듈을 활용한 수업은 아는 것(지식) 보다 할줄 아는(기술 및 능력중심) 수업을 지향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직접 실습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실무 기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김ㅇㅇ, 구ㅇㅇ, 최ㅇㅇ, ㅇ능고등학교)

· 기존에는 축산식품 가공이라는 교과서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교과를 지도하고 있었지만 NCS학습모듈을 활용한 수업에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내용과 평가 방법들이 필요하기에 교사와 학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학습모듈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직종에 입직하게 되면 바로 수행해하는 되는 직무를 배우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다.(최ㅇㅇ, 박ㅇㅇ ㅇㅇㅇㅇ농업고등학교)

축산식품가공 실습장면 | NCS 학습모듈 수업시간 활용모습

○ **전문대-바리스타**

· 바리스타 직무의 영역으로서 NCS수행준거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모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와 '수행 내용' 이행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실무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이론적인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최ㅇㅇ, 신ㅇㅇ, ㅇㅇ과학대학교)

○ **4년제 대학교-공연예술**

· 기존 이론중심 교과목을 NCS기반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표준직무능력을 함양시켜 그들에게 취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사회 수요 기반 실무 중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전공 교과목을 대폭 확충하였다. 각 교과목의 NCS학습모듈 활용 범위에 따라 NCS학습모듈 교재 기반 교육기간을 설정하고 수행준거를 고려하여 필요 지식 습득 중심의 이론중심과 수행 내용 기반 실습 중심 학습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심ㅇㅇ, ㅇ명대학교)

[학부생 진로탐색을 위한 학습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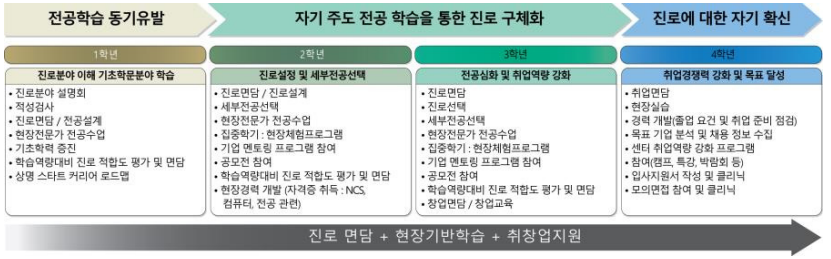

○ **민간훈련기관-기계가공**

· NCS학습모듈은 일반 실업자 훈련과정에서 사용했던 시중 교재나 자체 개발 교재에 비해 NCS 능력단위별로 구성되어 있고 수행준거에 의거, 능력단위의 획득여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업 전·후에 본인 스스로 현 능력단위에 대한 진단을 통한 자기평가시간을 가져 스스로 수업 전·후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느끼게 할 수 있다.(전ㅇㅇ, ㅇㅇ디저털전문학교)

2. 민간자격 관리 운영

< 사업성과>

□ **'08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자격 '사후등록제' 도입**

○ 민간자격제도 도입한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민간자격의 양적 성장 등 활성화에 기여

□ **'13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금지분야 민간자격 신설·운영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제' 도입**

○ 미등록 자격 등록 유도 및 금지분야 자격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구분	등록(A)	금지판정(운영불가)(B)	비율(B/A)
2013	2,748개	735개	26.75%
2014	6,253개	1,144개	18.30%
2015	6,521개	1,560개	23.92%
2016	6,153개	1,470개	23.89%
2017	6,302개	1,834개	29.10%

□ **'15년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준법의식 제고 등 교육 강화**

년도	회차	개최일	참석자
2015	1차	'15.08.28.	625명
	2차	'15.11.27.	562명
2016	1차	'16.06.16.	총 514개 기관 591명
	2차	'16.11.25.	총 389개 기관 450명
2017	1차	'17.06.30.	총 500개 기관 592명
	2차	'17.11.28.	총 340개 기관 413명

※ '18년 민간자격관리자 연수는 3회 이상 실시 예정

□ **지도·점검,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등의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 등록자격의 증가 대비 관련 민원은 하락세**

< 현장의 변화 >

□ **민간자격 관련 홍보의 지속 실시 결과,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여건 제고**

- (방송 사례) 민간자격 취득 전에 등록 여부 확인 필요성 강조

매체	기관	프로그램 및 관련 주제	게재 일시
지상파 방송	KBS2	• 프로그램 명: 여유만만 • 관련 주제: 민간자격 취득 시 주의사항,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자격 여부 확인 요령 등 소개	2017-10-31(화) 09:40

참고3 NCS, NCS학습모듈, NCS 기반 직업교육 개념

❖ NCS : 산업현장의 **직무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NCS **학습모듈** : NCS에 기술된 직무능력을 학습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
❖ NCS **기반 직업교육** : NCS**를 반영**한 **직업교육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준에 맞게 **산업부문별**로 **체계화한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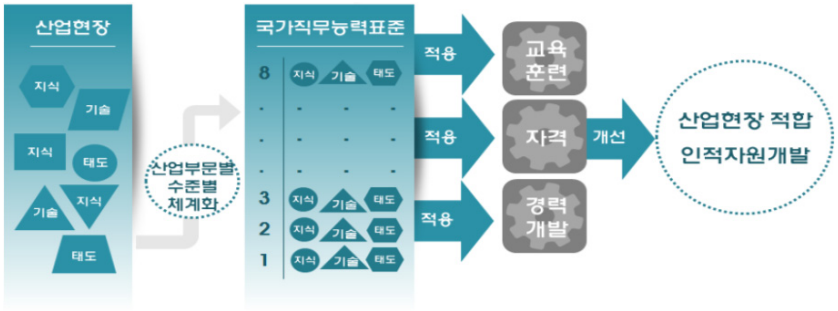

□ NCS 학습모듈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

□ NCS 기반 직업교육 개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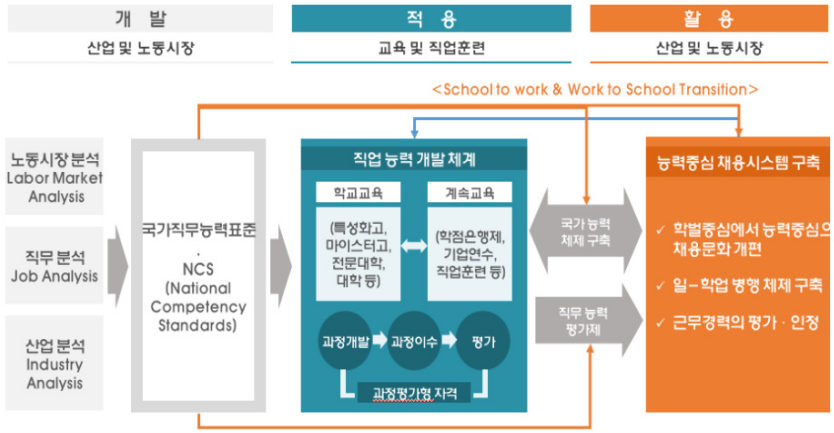

□ NCS 도입 전후 직업교육 모습 비교

	NCS 도입 전	NCS 도입 후
교육 목표	• 교과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 전달	• NCS 능력단위 수행준거 달성
	• 분야 중심의 일반적 목표 제시	• 직종 중심 인력양성 목표와 연계
교육 내용	• 산업현장 반영 미흡	•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내용
	• 교육과 자격의 분리	• 교육과 자격의 연계
평가	• 교육내용의 숙지상태 평가	• 수행중심 평가
	• 성적관리를 위한 평가	• 산업체가 참여하여 직무능력평가
교사 역할	• 교육내용 전달자	• 교육과정 설계자/운영자
	• 효과적인 내용전달을 위한 능력 강조	• 교수 설계 능력, 교육과정 기획력, 평가역량 강조
산학 협력	• 산업체의 소극적인 교육과정 참여	• 산업체의 적극적인 교육과정 참여
교육 환경	• 개인별 능력개발에 집중하기 힘든 교수시수 및 실습분반	• 개인별 능력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교수시수 및 실습분반
	• 학교내부 교육시설 활용	•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시설 적극 활용

참고4 NCS학습모듈 관련 통계

□ NCS 및 NCS학습모듈 연도별 개발 현황

대분류	NCS(세분류)						NCS학습모듈 세트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01 사업관리			5			5				5		5
02 경영·회계·사무	11	14	2			27	2	8	14	3		27
03 금융·보험		35			1	36			19	16		35
04 교육·자연·사회과학		8				8				8		8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7	5		1	3	16	3	4	4	1	1	13
06 보건·의료	9	2				11	9		2			11
07 사회복지·종교	5	8	3		1	17		5	6	5		16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20	24	10	2	3	59	13	6	6	29	2	56
09 운전·운송	8	16	2	4		30	4		7	15	4	30
10 영업판매	1	16		1		18			3	14	1	18
11 경비·청소		4	2			6				6		6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7	25				42		17	6	19		42
13 음식서비스	3	5	1	1		10		3	5	1	1	10
14 건설	25	77	7	4	4	117		25	33	51	4	113
15 기계	17	96	2	10	3	128	8	9	61	37	10	125
16 재료	2	32		1	1	36		2	23	9	1	35
17 화학	22	9	1	2	5	39	3	19	9	1	2	34
18 섬유·의복	8	14	1	1		24		8	14	1	1	24
19 전기·전자	14	49	9	12	9	93	6	2	32	32	12	84
20 정보통신	25	31	2	6	12	76		24	22	12	6	64
21 식품가공	14	6			1	21		14	5	1		20
22 인쇄·목재·가구·공예		23		1	1	25			16	7	1	24
23 환경·에너지·안전	10	38	1	3	2	54	3	7	17	22	3	52
24 농림어업	22	20	2	1	5	50		22	17	5	1	45
계	**240**	**557**	**50**	**50**	**51**	**948**	**51**	**175**	**321**	**300**	**50**	**897**

※ NCS 개발(고용노동부, 누적) : ('13) 240개→('14) 797개 →('15) 847개 →('16) 897개 →('17) 948개

※ NCS학습모듈(교육부, 누적) : ('13) 51개→('14) 226개→('15) 547개→('16) 847개 →('17) 897개

참고5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주요 내용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기본틀 설계 시안 주요내용

○ **(명칭)**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

○ **(구성요소) ① 지식 ② 기술 ③ 자율성과 책임성**

구성요소	정의
지식 (knowledge)	직무수행 또는 학습을 통해 체득된 사실, 원칙, 이론, 개념 등을 포괄하는 인지적 능력
기술 (skill)	과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자율성과 책임성 (autonomy & responsibility)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나 타인의 직무수행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능력

○ **수준별 설명지표(Level Descriptor)**

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자율성과 책임성 (Autonomy& Responsibility)
8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와의 융합적 지식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데 필요한 융합적 기술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창출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 권한 및 책임
7	해당 분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와의 연계적 지식	새로운 지식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연계적 기술	새로운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타인의 성과를 평가
6	해당 분야의 심화된 전문 지식	해당 분야의 예측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과업을 관리
5	해당 분야의 포괄적 전문 지식	해당 분야의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의 과업을 관리
4	해당 분야의 제한적 전문 지식	해당 분야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의 정해진 과업을 관리
3	해당 분야의 포괄적 기초 지식	해당 분야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제한된 권한 내에서 정해진 과업 수행
2	해당 분야의 제한적 기초 지식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과업 수행
1	문자 이해, 연산 능력 등 단순 지식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정해진 과업 수행

참고6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자격제도 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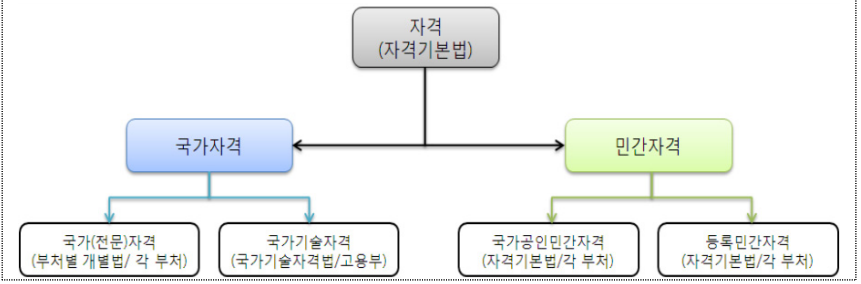

(2018. 1. 기준)

구 분		자격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자격	국가 (전문)자격	173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 기술자격	527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소계	700	-	-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	100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5개 부처·청)	인터넷 정보검색사, TEPS 등
	등록 민간자격 (공인자격 포함)	28,293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36개 부처·청)	학교폭력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지도사 등
	소계	28,293	-	-

○ **국가(전문)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국가이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

* (신청자격) △**법인**이 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 중 △**1년 3회 이상 검정**

<자격종류별 신설절차>

구분		민간자격		국가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	개별법상 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개요	근거	자격기본법 제17조 (교육부·고용부)	자격기본법 제19조 (교육부·고용부)	변호사법, 의료법 등 개별법 (각 부처)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예	심리상담사 등	TEPS 등	변호사, 의사 등	기술사·기능장 등
	수	28,293개	100개	173개	527개
관리주체		민간 (민간자격관리자)	민간 (공인자격관리자)	국가	국가
신설요건		결격사유 없는 법인·단체·개인	등록자격으로서 1년 4회 이상 검정 실시한 법인	-	-
최소소요기간		3개월	1년	1년	1년 6개월
신설절차		주무부처 등록	공인 공고 ⇓ 주무부처 선정 ⇓ 조사연구일정 수립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조사연구결과 제출 (직능원→주무부처)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 주무부처 공인결과 통지·통보	근거법 개정 ⇓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부처 선택사항) ⇓ 자격 신설	종목신설 요청서 제출 (주무부처→고용부) ⇓ 관계중앙행정기관 검토 (고용부→관계중앙행정기관) ⇓ 타당성 검토 의뢰 (고용부→대행기관) ⇓ 종목신설 요청서 보완 요구 (대행기관→주무부처) ⇓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 (대행기관→고용부) ⇓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수요 조사 (직능원→주무부처) ⇓ 정책심의회·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부) ⇓ 종목 신설 확정 ⇓ 시행규칙 개정 ⇓ 자격 신설

[300] 학교기업 지원사업(재량, 계속, R&D)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학교기업지원사업	8,376	7,173	6,814	△359	△5.0

* 사업코드 : 13 - 39 - 2 - 050 - 053 - 4600 - 4601 - 300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 (강소희), 주무관(서정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학교 내 부서인 학교기업의 체계적인 현장실습 실시로 참여 학생의 직무역량 제고 및 기업으로서의 수익창출을 통한 '교육-생산-매출발생-교육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 기술 사업화 및 수익성 추구의 기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및 재정확충의 기여 가능한 학교기업의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04～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대학·전문대학·특성화고 학교기업 42개 지원('18년 기준)
지원조건	출연(대학·전문대학 학교기업은 국고지원액의 30%이상 대응투자)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참여기관)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의 학교기업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산출 내역 : 42개교 × 162백만원 = 6,814백만원

○ '17년 86.73억원을 활용하여 42개 학교기업 지원
  * 전체 평균 단가 206.5억(현장실습형(35교) :1.86억, 창업실습형(7교) : 2..2억)
  ** 디자인·마케팅 지원 학교기업 2.2억(2개교, 각 1.1억) 지정 및 운영
  ※ '17년 학교기업 당 지원 단가 206.5백만원 (8,673백만원 / 42개교)

○ '18년 71.73억원을 활용하여 42개 학교기업 지원 추진
  ※ '18년 학교기업 당 평균 지원 단가 170.8백만원 (7,173백만원 / 42개교)

○ '19년 42개 학교기업을 지속 지원
  ※ 학교기업 당 평균지원 단가 162백만원 (6,814백만원 / 42개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교기업지원사업	· 42개 학교기업 지원 - 1개 학교기업 당 평균170백만원 지원	· 42개 학교기업 지원 - 1개 학교기업 당 평균 171백만원 지원

□ 지원 필요성

○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
- 일반 산업체의 현장실습과 비교하여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이 양적*·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한 학교기업당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23.6명)는 일반 기업체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1.67명)의 14배 이상임('14)
  ** 학교기업 현장실습 이수 학생이 타 대학 출신 신입직원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률이 70.8%를 차지('16년 정책연구)
- 학교기업 내 현장실습을 통해 국내 특허 24건, 기타 산업재산권 26건 취득('09~'15)

○ 창업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기업을 기반으로 한 **교내 구성원의 창업 기업** 육성
- 학교기업을 **Test Bed로 활용**(기존의 제조공장, 서비스시설 등)하여 교내 구성원들에게 **창업 실습 기회** 제공
  ※ 학교기업을 기반으로 한 초기의 학생 창업기업에 학교기업의 노하우 공유, 기자재 임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D대(DIMA 엔터테인먼트)】 사업계획서, 세무 관리 등 실질적 창업 지원 및 학교기업의 기존 HW/SW 인프라(방송 장비, 인적 네트워크 등) 제공으로 초기 창업의 위험 부담 완화, 학생 창업 이후 '학교기업-창업기업' 간 지속적인 협업 관계 유지 / 학생 창업 기업 PLAN24('13.11. 설립, '15년 매출 1억원) 설립 등

- 학교기업 현장실습 중 **실제적인 업무체험과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업 마인드를 습득**하고 **실전 창업**으로 연계

【K대(계원창작상단)】 창작상품의 유통 비즈니스 모델로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제작, 홍보, 판매, 수익창출까지 해볼 수 있는 창업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청년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기업을 기반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스핀오프에 성공(6개)
  ※ 인천대(2개), 제주대, 포항공대, 한남대, 강원대 학교기업이 자회사로 독립

○ 학교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활성화(인력양성, R&D,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산업체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

※ 【K대(계원창작상단)】 디자이너가 없는 중소기업과 가족 기업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맞는 아이템을 수업시간에 개발 / 학생이 '14년 수업시간에 개발한 디자인으로 '15년 루미앤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꼬마조명'이 국내 롯데마트 60개점에서 완판, 유럽시장 진출 (동아일보, '17. 01. 24)
【J대(에코하우징)】 J대 자회사인 '(주)가온우드'와의 협약을 통해 학교기업은 기술개발(특허·기술을 자회사에 이전), 자회사는 생산·판매에 주력하는 협력 모델 구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교기업 지원사업	**8,673**	**7,173**	**6,814**	**△359**	**△5.0**
▪ 학교기업 지원사업	8,673	7,173 (42개x170백만)	6,814 (42개x162백만)	△359	△5.0
□ 비목(합계)	**8,673**	**7,173**	**6,814**	**△359**	**△5.0**
○연구개발활동비(360-05)	8,673	7,173	6,814	△359	△5.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기간('15~'19) 중에는 개별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를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673	▪ 학교기업 42개×207백만원			
'18	7,173	▪ 학교기업 42개×171백만원	7,173	▪ 학교기업 42개×171백만원	-
'19	7,281	▪ 학교기업 42개×173백만원	6,814	▪ 학교기업 42개×162백만원	△467
'20	7,354	▪ 학교기업 42개×175백만원	7,173	▪ 학교기업 42개×171백만원	△181
'21	7,428	▪ 학교기업 42개×177백만원	7,173	▪ 학교기업 42개×171백만원	△255
'22			7,173	▪ 학교기업 42개×171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3.8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7,173	6,814	△359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99.6	94.6	△5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3.9	13.9	0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재정지출 고용효과만 계산**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99.6명**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68.14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94.6 □ **2018년 고용효과: 4.0명**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예산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 = 71.73억 원 ÷ 0.72억 원(교육서비스업) = 99.6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경위

- ('03.9.)「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으로 학교기업 제도 도입
- ('04~'09) 1년 단위의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
- ('10~'14)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

※ 성과 제고를 위하여 '10년도부터 5년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

- ('13. 1) 발전단계 구분* 및 자립화 지원 유형 확정

* 자립화 추진형(5개)/자립화준비형(14개)/기반구축기형(26개)/현장실습 집중형(7개)

- ('15~'16)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15~'19) 추진

※ 유형 구분('15~'16) : 신규형(32개)/성장형(12개)/자립형(17개)

- ('17) 중간평가를 통한 하위 30% 탈락 및 신규지원 13개 선정

※ 창업실습형 유형 7개 포함 총 13개 학교기업 신규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학교기업지원사업	110.45	-	104.93	99.68	-	86.73	-	71.73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04.93** **(104.93)**	( )	( )	104.93 (104.93)	**104.93** **(104.93)**	( )	( )
'16년	**99.68** **(99.68)**	( )	( )	99.68 (99.68)	**99.68** **(99.25)**	(0.28)	(0.14)
'17년	**86.73** **(86.73)**	(0.28)	( )	86.73 (87.01)	**86.73** **(87.01)**	( )	( )

※ '16년 중간평가 관련 내역(평가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개최 비용) 이월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673	-	7,173		7,173	7,173	100%

○ 집행현황

■ 7,173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가. '16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① 대학 내 창업 성과가 다소 부족한 점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② 취업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나.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학교기업을 활용한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7개의 창업실습 중점형 학교기업 7군데 선정 완료

* 대학 3개, 전문대학 3개, 특성화고 1개 지정하여 290명 학생에게 창업실습 교육 실시

② 디자인, 마케팅 센터 2군데 신규지정

* 디자인센터 : 계원창작상단(계원예술대학), 마케팅센터 : 더고구마(서울시립대)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평가 결과('17) : 매우 우수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braska주의 학교기업 지원정책

- 학생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 개발을 지원

○ 미국, Cornell University의 호텔경영학과

- 전체 직원(100명)중 90%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졸업생 전원 취업

○ 중국, 바오펑시(Baofensi) 임업학교

- 지역의 특산품(아몬드)을 재배함과 동시에 학교 경영 과수원을 통해 영농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수업 병행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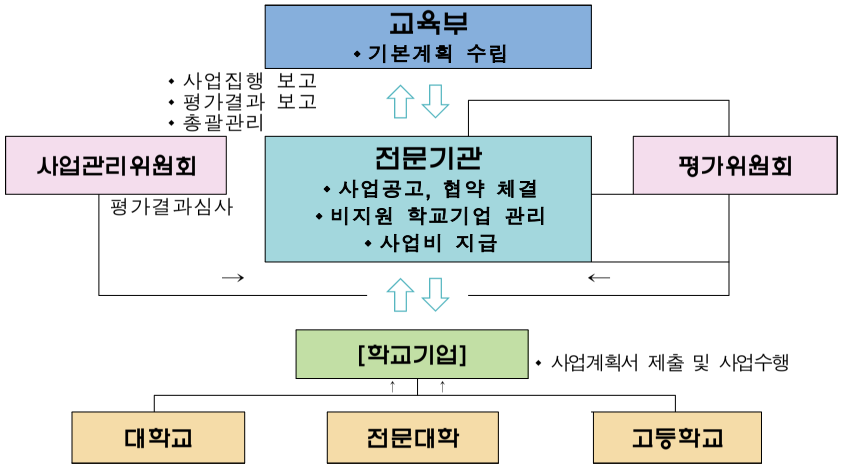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달성비율 (단위: %)	목표	신규	신규	167	172	177	전년도 목표치에서 3% 상향조정	(학교기업 매출액의 합) / (정부지원금)	사업실적보고서
	실적	신규	-	158.5	-				
	달성도	신규	-	94.9					
정부지원금 1억원당 고용효과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2.76	2.84	2.91	전년도 목표치에서 3% 상향조정	(학교기업의 고용인원의 합) / (정부지원금)	사업실적보고서
	실적	신규	2.74	2.77	-				
	달성도	신규	-	100					
기업맞춤형 직무역량교육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0	71.4	76.3	78.7	80.7	전년도 목표치에서 3% 상향조정	학교기업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만족도(100점 기준)	외부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73	75.5	77.8	-				
	달성도	104.3	105.7	102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전국 학교기업 현황 통계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의 의견 및 요청 사항

○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기업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동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통해 '학교기업-수업' 연계를 통해 취업 및 진학 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사업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00대학교 환경원예학과 000학생 부모)

□ 학생의 의견 및 요청사항

○ 꽃을 다루는 대부분의 업체나 학교, 플라워 숍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소재들을 구입하여 상품을 만들거나 수업에 사용한다. 전문적인 연구소나 실험실 등이 아닌 이상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00학교기업에서는 교수님의 조언을 들으며 **수업시간에 쉽게 해보지 못했거나, 시도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에 마음껏 도전**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16년 학교기업 학생 우수 사례 수기 당선학생)

□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

○ 학교기업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태도 및 **장래직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고취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형식적인 학생지원을 통한 서류 및 숫자상의 실적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학교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참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판단됨.(00대학교 '더고구마' 김00 교수)

○ 학교기업 마다 참여하는 **학과의 성격·특성**에 따라 창업하기에 적절한 종목의 학과, 취업에 비중을 두는 학과가 나뉠 수 있으므로 **목표설정에서 취업과 창업 부문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이 **맞춤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00대학교 '제펫스튜디오' 김00 교수)

○ 학교기업은 교육과정(교과과정+비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체득된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용역)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 특히 학교기업의 자유학기제 운영은 선진 외국과 같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학과의 대표적인 교육 체험 활동을 통해 미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확대되어야** 한다. (00대학교 '시예' 조00 교수)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학교기업의 운영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매출액 증대

- 매출액 : ('14) 153% → ('15)157% → ('16) 161% → ('17) 167%
- 고용 효과 : ('14) 3.4명 → ('15) 3.5명 → ('16) 4명
- 창업실습 : '17년 창업실습형 7개 학교기업 지원(대학 3개, 전문대학 3개, 특성화고 1개) 7개 창업실습형 학교기업에서 290명 학생에게 창업실습 교육 실시
-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결과 '매우 우수'

□ 학교기업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실습 만족도는 양호한 평가(77.8점)를 받았으며, 특히 **'실무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에 높은 만족도(78.7점)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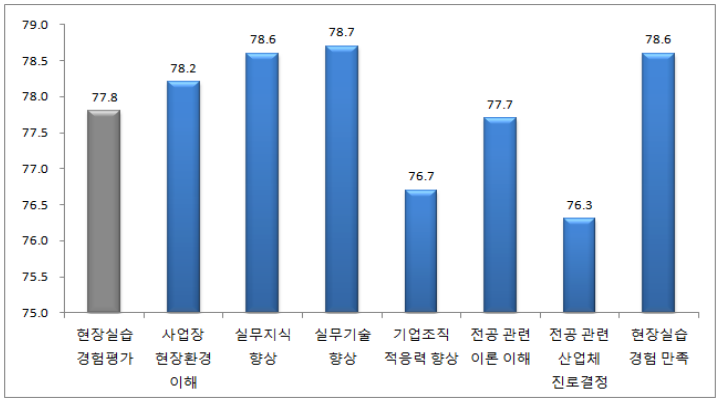

< 현장실습 경험 만족도 및 항목 만족도 >

- 또한 현장실습 장소 선호도 조사 시, 일반 산업체 선호도 29.2%에 비해 **학교기업 선호도 40.9%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학교기업이 **현장실습장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 분야에 맞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업무체험을 통해 진로 방향 제시

□ **(디자인·마케팅 지원)** 학교기업 중 **마케팅·디자인 지원센터** 지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디자인·마케팅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디자인센터 : 계원창작상단(계원예술대학), 마케팅센터 : 더고구마(서울시립대)

- 학교기업 제품서비스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공동마케팅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성과) 을지대학교 등 7개 학교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브랜딩 지원

<학교기업제품디자인 개선사례 및 공동브랜드 로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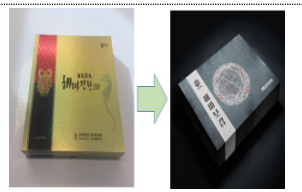

EMF(을지대학교)

대경양조(대경대)

학교기업 공동브랜드(안)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해외수출)** 학교기업(기린허브테크, 대구한의대)는 독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화장품을 중국 수출(1.3억)

※ 언론보도 : 경북일보('17.4.20) 대구한의대, 금한령 넘어 중국에 화장품 수출

○ **(新 산학협력 모델개발)** 학교기업(에코하우징, 전북대)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지역 산업체로 이전

- 학교기업에서는 기술 개발 및 학생 현장실습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산업체에서는 생산을 담당하는 분담 체계 구축

○ **(지역사회공헌)** 학교기업(숙명아이, 숙명여대)는 백혈병, 소아암 아동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디자인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을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지원

* 아이들이 직접그린 그림을 가지고 숙명여대 학생들이 디자인 개발 및 가방을 제작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아이들에게 기부

※ 언론보도 : 아시아투데이('17.3.16) 백혈병·소아암 아동에게 희망 책가방 선물

참고 3 전국 학교기업 현황

① 총괄 현황

(단위 : 개수, 억 원 / 2016년 결산자료 기준)

	평균 매출	평균 현장실습생	평균 고용	지역분포	
				수도권	비수도권
비 지원(163)	3.4	42	5.0	41(62%)	122(78%)
지원 대상(60)	3.2	351	6.4	25(38%)	35(22%)
대학(23)	4.3	430	7.9	7(11%)	16(10%)
전문대(23)	2.6	300	4.5	9(14%)	14(9%)
특성화고(14)	2.5	305	7.1	9(14%)	5(3%)
전체 (223)	3.3	125	5.4	66(100%)	157(100%)

※ 전체 학교기업 223개 중, 대학 87개 / 전문대학 87개 / 특성화고 49개

②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수 / 2016년 결산자료 기준)

	제조업	식품제조	농임어업	컨텐츠	기술서비스	서비스
비 지원(159)	55%(22)	91%(49)	14%(1)	66%(19)	76%(51)	81%(21)
지원 대상(61)	45%(18)	9%(5)	86%(6)	34%(10)	24%(16)	19%(5)
대학(24)	23%(9)	4%(2)	29%(2)	10%(3)	9%(6)	4%(1)
전문대(23)	15%(6)	4%(2)	43%(3)	14%(4)	9%(6)	8%(2)
특성화고(14)	7%(3)	2%(1)	14%(1)	10%(3)	6%(4)	8%(2)
전체 (223)	18%(40)	24%(54)	3%(7)	13%(29)	30%(67)	12%(26)

③ 학교기업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1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2단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지원 대상	53	53	52	52	46	61	60	44
지원액	120	110	130	122.5	110.5	104.9	99.7	86.7
평균지원액	2.3	2.2	2.5	2.4	2.4	1.7	1.7	1.9

[300] 전문대학 혁신 지원(재량, 계속, R&D)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67,515	250,764	290,786	**40,022**	**16.0**

* 사업코드 : 13 - 39 - 2 - 050 - 053 - 4600 ~ 4602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전문대학정책과장(안수미), 사무관(윤지효)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필요 - 전문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일반재정지원** 추진
사업기간	'19.3. ~ '22.2. (총 3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95개교 내외 지원
지원조건	출연금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연구재단, (참여기관) 전문대학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자율협약형 : 260,950백만원**(87교×2,999백만원)

▪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대학 전반**의 **혁신과제 추진** 지원

○ **역량강화형 지원 : 13,000백만원**(10교 내외×1,300백만원)

▪ **역량강화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후진학 선도형 지원 : 15,000백만원**(15교×1,000백만원)

▪ **자율개선대학** 중 **일부**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 발굴·확산** 지원

○ **사업관리비 : 1,836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50,764**	**290,786**
■ 자율협약형		(260,950백만원) 87교×2,999백만원
■ 역량강화형		(13,000백만원) 10교내외×1,300백만원
■ 후진학 선도형		(15,000백만원) 15교×1,000백만원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9,700백만원) 81교×3,082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1식×1,064백만원	(1,836백만원) 1식×1,83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52-4) '전문대학의 질 제고' -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 지원 확대

○ **고등직업교육**은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하여 **개인의 적응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 여건** 및 **정부 지원 부족**, **전문대학생**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전문대학**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사업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67,515**	**250,764**	**290,786**	**40,022**	**16.0**
■ 자율협약형			260,950 (87교×2,999백만)	**260,950**	**순증**
■ 역량강화형			13,000 (10교내외×1,300백만)	**13,000**	**순증**
■ 후진학 선도형			15,000 (15교x1,000백만)	**15,000**	**순증**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9,700 (82교×3,045백만)		**△249,700**	**순감**
■ 사업관리비	-	1,064 (1식×1,064백만)	1,836 (1식×1,836백만)	**772**	**72.6**
□ **비목**(합계)	**267,515**	**250,764**	**290,786**	**40,022**	**16.0**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267,515	250,764	290,786	40,022	**16.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미래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고등직업교육 질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67,515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6,381백만원 ■ 사업관리비 1,134백만원			
'18	250,764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9,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250,764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9,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0
'19	244,376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3,242백만원 ■ 사업관리비 1,134백만원	290,786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88,950백만원 ■ 사업관리비 1,836백만원	46,410
'20	246,820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5,686백만원 ■ 사업관리비 1,134백만원	250,764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49,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3,944
'21	249,288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48,154백만원 ■ 사업관리비 1,134백만원	250,764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49,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1,476
'22			250,764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49,7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64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1.7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62,691	72,697	10,006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704.5	816.9	112.4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	11.2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라. R&D-<인력양성>"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1] 직·간접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해당없음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816.9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해당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연구개발활동비 727억원 ÷ 0.89억원 = 816.9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해당없음 □ 2018년 고용효과 [1] 직·간접고용효과 : 704.5명 - 연구개발활동비 627억원 ÷ 0.89억원 = 704.5명 [2]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해당없음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발전역량 확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국정과제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집중 육성(71-1)'로 확정('13.4.)
- 전문대학 육성 방안 발표('13.7.)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공고('14.3.) 및 지원대학 선정('14.6.)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15.5.)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중간평가 및 신규 지원 대학 선정('16.6.)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17.4.)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전문대학의 질 획기적 제고(52-4)*'로 확정('17.7.)
  * 우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 수립·발표('17.12.)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18.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전문대학 혁신 지원	2,696		2,969	2,972		2,675		2,508	

※ '19년부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969 (2,969)	( )	( )	2,969 (2,969)	2,969 (2,969)	( )	( )
'16년	2,972 (2,972)	( )	( )	2972 (2,972)	2,972 (2,972)	( )	( )
'17년	2,675 (2,675)	( )	( )	2,675 (2,675)	2,675 (2,675)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67,515	267,515	240,764	10,000	250,764	225,687	9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40,764 → 250,764백만원(10,000백만원)

○ 집행현황 : 해당 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고액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18.8월, '17년 결산 교육위)

2) 감사원 지적
- 성과보고서 작성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은 실적으로 보고하여 정확성 저해, 향후 과거 실적만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해당연도의 확정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보고할 것('17.4월, '16년 결산 교문위)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용역 등 계약시 국가계약법을 준수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수탁기관을 예정하여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
- 성과보고서 작성 시기(12월)에 맞추어 사업 만족도 조사 시기를 조정하여 개선 완료

5) 각종 사업평가 결과
-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에 따른 '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등급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8년 균형발전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 결과 : 우수 등급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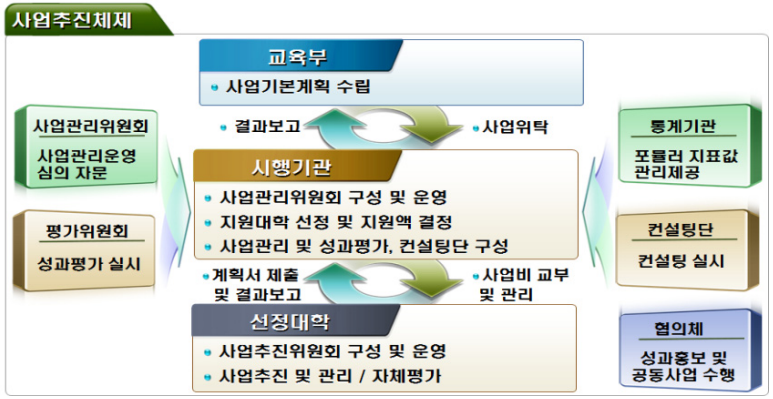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문대학 혁신지원 대학 졸업생 취업률(%) ※'18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대학 대상	목표	65	72	74.5	71.2	71.3	청년 고용절벽 등 외부환경 및 '17년 실적 감안하여 목표 현실화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실적	69.8	70.8	71.0					
	달성도	107.3	98.3	95.3					
혁신지원 전문대학 졸업생 12개월 유지 취업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68.3	신규지표임을 감안, '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졸업생 유지취업률 실적 대비 0.3점 상향 설정	'18.12월·'19.3월·6월·9월·11월 모두 건강보험직장가입자/'18.12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통계조사
	실적								
	달성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수혜자 만족도(%)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83	'17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요자 만족도(82.2)보다 0.8점 상향 설정	수혜대상자(학생, 교직원 등) 대상 리커드 5점 척도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달성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수혜자 만족도(%)	목표	70	80	82	83				
	실적	78	79.4	82.2					
	달성도	111.4	99.6	100.2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참 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 사업 개요

○ (목적)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한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 (**규모 및 기간**) 총 290,786백만원(전체 자율개선대학 87교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 8교), 총 3년 지원('19.3.~'22.2)

□ 주요 내용

○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개편 추진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비교 》

구 분	SCK	전문대학 혁신지원
지원대상	전문대학 대상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	'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연계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
지원방식	정부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른 '**하향식**(Top-down)'	대학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상향식**(Bottom-up)'
사업비 집행	**특성화** 전략 **분야** 및 계열에 대해서만 사업비 집행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 **(지원내용)**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추진

- **전체 자율개선대학**(87교), **일부 역량강화대학**(36교 중 8교)을 지원하고, **일부 자율개선대학**(15교)을 선정하여 **후진학 선도형**으로 육성

《 유형별 지원 방향 》

대 상		지 원 방 향 (안)
자율개선대학 (87교)	자율협약형 (87교)	▪ **2,635.5억원(교당 평균 30.29억원)**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기반 구축
	후진학 선도형 (15교)	▪ **150억원(교당 평균 10억원)** ※ 자율협약형 대학 중 일부 지원 ▪ 지역 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강화
역량강화대학 (36교)	역량강화형 (8교)	▪ **104억원 (교당 평균 13억원)** ▪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기회 부여
사업관리비		▪ **18.36억원**

[30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재량, 계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80,831	78,780	93,787	**15,107**	**19.2**

* 사업코드 : 13 - 236 - 02 - 050 - 053 - 4600 ~ 4603-300

* 담 당 자 : 직업교육정책관(김영곤), 교육일자리총괄과장(고영종), 사무관(엄중흠)
산학협력정책과장(김우정), 사무관(김수정)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대학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고 대학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 지원
사업기간	'17~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교 내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44교 내외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간접비	('18) 1,000백만원 (1.1%) → ('19) 1,000백만원 (1.1%)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 밀착형 맞춤형교육과정(PBL,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등) 개발·운영과 현장 밀착형 교육환경 구축 및 산업체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산출내역 : 44교 × 1,791백만원 = 78,787백만원

○ 산학협력 고도화형 : LINC+사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캡스톤 디자인,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지도·개발 등)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산출내역 : 15교 × 1,000백만원 = 15,00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93,787백만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44교×1,492백만원)+(15교×867백만원)	(44교×1,791백만원)+(15교×1,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①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인재양성을 위해 계약학과('03년~)와 주문식 교육과정('94~)을 운영 중이나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학과 수 기준 0.6%(참여학생 수 기준 0.2%)에 불과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학과 수의 1.7%(참여 학생 수 기준 0.6%)에 불과('16년 기준)

○ 사회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학생'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 완화

* 청년실업률(통계청) : 8.0('13) → 9.0('14) → 9.2('15) → 9.8('16) → 9.8('17)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부족인력(2014, 중소기업청)

(명, %)

구분	전체	연구개발직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現인원	2,271,609	92,115	1,483,862	631,951	21,278	42,404
부족인원	34,191	1,763	25,813	4,897	301	1,417
부족률	1.51	**1.91**	1.74	0.77	1.41	3.34

○ 대학교육과정을 사회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맞춤형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여 교육수요자(학생, 기업)의 만족도 제고

② 산학협력 고도화형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산학협력 내실화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개편·추진*

- 기존 사업의 통합·개편을 통해 지역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을 지원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개편 추진('11.10, 교과부)

(추진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방대학의 육성 등)

○ 인력과 산업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전문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학협력 패러다임 마련 필요('16.1.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방향 포럼)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주도하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지역의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의 핵심 전문 직업인 양성('16.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계획)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지원	**80,831**	**78,680**	**93,787**	**15,107**	**19.2**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지원	80,831	78,680 (44교x1,492백만)+ (15교x867백만)	93,787 (44교x1,791백만)+ (15교x1,000백만)	**15,107**	**19.2**
□ 비목(합계)	**80,831**	**78,680**	**93,787**	**15,107**	**19.2**
○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360-05)	80,831	78,680	93,787	**15,107**	**19.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역 전문대학을 산학협력의 허브(Hub)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대학체제를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등 중점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88,827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88,827백만원 - (44교×1,723백만)+(15교×867백만)			
'18	78,680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 (44교×1,492백만)+(15교×867백만)	78,680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 (44교×1,492백만)+(15교×867백만)	-
'19	-		93,787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93,787백만원 - (44교×1,791백만)+(15교×1,000백만)	93,787
'20	-		78,680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 (44교×1,492백만)+(15교×867백만)	78,680
'21	-		78,680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 (44교×1,492백만)+(15교×867백만)	78,680
'22			78,680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78,680백만원 - (44교×1,492백만)+(15교×867백만)	78,680
연평균 증가율 (%)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78,680	93,787	15,107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122	1,302	180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4.1	13.8	△0.3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사업은 나-<2>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해당하며, 아래 ①방식으로 각각 산출 ① (재정지출 고용효과) 인건비 외 예산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해당없음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 1,302명** ① 간접고용효과 : 1,302명(937억 ÷ 0.72억) - 총 사업비 937억원을 인건비 외 사업비 지출로 가정 - 가이드라인 <표3> 교육서비스(사회맞춤형학과 지원비)에 해당하므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간접고용 산출 ②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해당없음 **□ 2018년 고용효과: 1,122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12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9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국정과제 52(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대학이 교육공급자(학교·교수) 주도의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닌, 교육수요자(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직무분야 및 교육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채용 연계성 강화

○ 추진경위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기본계획 수립·공고('17. 1.)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17. 2~4.)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 선정('17. 5.)
  ※ 사회맞춤형 중점형 44교, 산학협력 고도화형 15교 등 총 59개교 선정
- 산학협력 EXPO 내 산학협력+ 페스티벌 개최('17.11.)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성과포럼 개최('18. 1.)
- '18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수립('18. 3.)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18.4)
- 성과미달대학 집중컨설팅 및 사업대학 대상 종합 컨설팅('18.7~8.)
- LINC+ 전문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개최('18.9)
- '18년 산학협력 EXPO 참가('18.11.)

(산학협력 고도화형)

- '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17.1)
- '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선정평가(' 17.4.)
- '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현장컨설팅(' 17.9.)
- '17년 전국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현장실습 수기공모전(' 17.9.)
- '17년 산학협력 EXPO 연계 LINC+ 페스티벌 개최(' 17.11.)
- '18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수립('18. 3.)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18.4)
- '18년 산학협력 EXPO 참가('18.11.)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지원	195	-	195	195	-	888	-	78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95 (195)**	( )	( )	**195 (195)**	**195 (195)**	( )	( )
'16년	**195 (195)**	( )	( )	**195 (195)**	**195 (195)**	( )	( )
'17년	**888 (888)**	( )	( )	**888 (888)**	**808 (789)**	0 ( )	80 (99)

※ '17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대학-산업체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과 채용약정 연계라는 사업의 특성으로 참여기업 발굴과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대학의 준비기간 부족,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교당 협약반 수, 선정평가기준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지표 강조로 참여대학의 소극적 예산편성 등으로 불용액 발생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8,827	-	78,680	-	78,680	78,680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78,680백만원 전액 교부 완료('18.4월)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 '17년도 결산 :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의 불용액 최소화 필요

- (후속조치) 단계평가('19년)에 따른 추가 대학 선정과정에서는 국고 지원 배제 협약반을 미리 결정하고 차순위 대학을 선정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17년 선정평가 시 사업품질 관리 차원에서 부적정 협약 산업체가 포함된 협약반에 대한 지원 예산 감액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 Kingston Polytechnic의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 정보시스템 영역의 전문가 수요에 부응하여 기존의 시스템디자인 코스를 수정하여 공학도들에게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겸하여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약을 통해 산업체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 호주 :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샌드위치 교육프로그램

- 졸업생의 취업과 실무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 현장 학습전반에 걸쳐 산학공동위원회 성격이 Industry Advisory Committee 운영하고 있으며, Industry Advisory Committee 운영을 통하여 산업체 현직 전문인력을 교수진(Industry Experienced Teaching Staff)으로 활용

- 캠퍼스내의 실무 작업과정 코스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과정을 포함하여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현장 경험 가능

○ 독일 : Duales Studium

- 1974년 Baden-W rttemberg주에서 시작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 제도로 해당 주의 기업 9,000개(90% 중소기업), 전체대학생의 10% 34,000 명 참가.

- 대표 대학인 DHBW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 자동차 제조업체 다

임러 벤츠 등과 함께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중

- 2014년 기준 독일 전역에 'Duales Studium'으로 운영학는 학과 가 1500여개 설립, 참여 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해 4만여 개 이상 재학 중인 대학생은 2014년 9만5000명에 달함

- 아비투어(Abitur, 독일대학 입학자격) 취득과 기업과의 계약이 있어야 입학, 기업은 질 높은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대학은 현장과 밀접 한 관계 속에서 인재를 양성

  ▪ 3년(3개월 단위로 강의와 실무교육 순환)에 졸업하여, 졸업생의 85~90%가 바로 취업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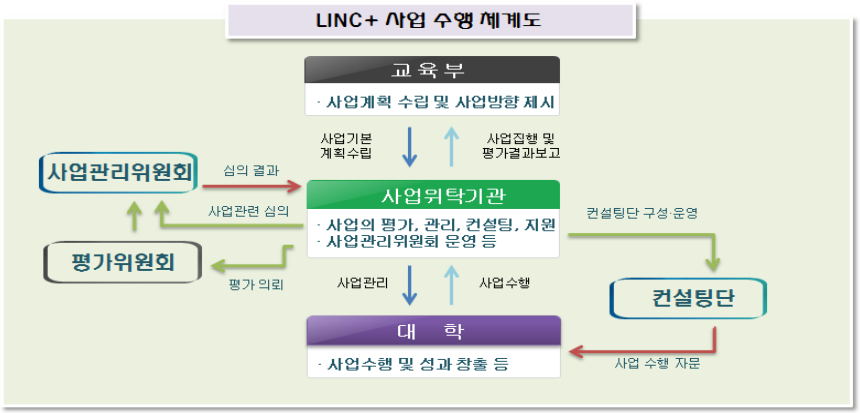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LINC전문대 현장실습 이수학생비율 (단위: %)	목표		74	-	-		[종료지표]		
	실적		-	-	-	-			
	달성도		-	-	-	-			
교당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단위: %)	목표		620	-	-	-	[종료지표]		
	실적		-	-	-	-			
	달성도		-	-	-	-			
협약 기업으로의 연계 취업률 (단위: %)	목표		신규	55	55	58	'17년 연계 취업률 55.1%→ '19년 재정지원사업 효과를 반영하여 58%를 목표치로 설정	취업률 = (협약기업 취업자 수 / 사회맞춤형 학과 참가자 수) × 100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55.1	-	-			
	달성도			100	-	-			
사업 참여 인력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77	77	80	'18년 목표치(77점) 대비 3% 상향한 80점으로 설정	LINC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기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0점 척도로 조사 후 100점 기준 환산	전문기관 실적 보고서
	실적			77.2	-	-			
	달성도			10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4700]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050)교육 - (053)평생직업교육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4700]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2059	**20,369**	**11,407**	**△8,962**
[4701] 이러닝 세계화(일반회계)	2060	16,244	7,699	△8,545
[300] 이러닝 세계화(ODA)	2060	5,589	6,029	440
[301]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2108	10,655	1,670	△8,985
[4705] 교육통계조사관리(일반회계)	2120	4,125	3,708	△417
[300] 통계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2120	622	614	△8
[301]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2138	3,503	3,094	△409

[300] 이러닝세계화(재량, 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이러닝세계화(ODA)	4,469	5,589	6,029	**440**	**7.8**

* 사업코드 : 11 - 12 - 0 - 050 - 053 - 4700 - 4701 - 300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이러닝과장(김석), 사무관(김수현), 주무관(박재향)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이러닝 기자재를 지원하고 기자재를 활용할 교원에 초청·현지 연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17개 교류협력국과 1:1로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첨단ICT 교실을 구축하고 교원 현지연수 등을 실시하는 **첨단ICT시범교실 구축 운영 사업**, 아프리카 지역에 솔라스쿨을 건립하고 활용법과 SW를 지원하는 **솔라스쿨 활용 교육지원 사업** ○ **(개발도상국 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ICT역량 강화)**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ICT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ICT 역량 강화 모듈 등을 개발하는 **이러닝 국제컨설팅**, 교육정책가를 초청해 ICT연수를 실시하는 **APEC이러닝 연수**, 국내외 초중등학생의 글로벌 팀매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즉시활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e-ICON 세계대회** 개최 ○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국내외에서 신기술의 교육적 적용이 활발하므로 개도국 정책가를 초청하여 미래교육 관련 학술대회 개최,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및 국내 에듀테크 우수제품을 국내외 정책가에게 소개의 장 마련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한국의 앞선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ASEAN에 전수함으로써 ASEAN 대학의 이러닝 기반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한-아세안 간 이러닝 분야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연수, 이러닝센터 및 아세안 공용시스템(LMS, OER) 운영지원 등) 추진
사업기간	'06 ~ 계속(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05년~계속, 첨단ICT시범

구 분	내 용
	교실: '10~, 솔라스쿨 : '13년~계속, 에듀테크 통합행사('1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12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100%) : ICT인프라지원 및 교원연수(솔라스쿨 제외), 개도국 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ICT역량 강화,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출연금(100%)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시행주체	○ ICT인프라지원 및 교원연수(솔라스쿨 제외), 개도국 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ICT역량 강화,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APEC국제교육협력원(IACE)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출연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ㅇ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3,559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 1,406백만원

▪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류협력국과 1:1로 MOU를 체결하고 인프라(PC, 노트북, 컴퓨터실 인터넷 구축 등) 지원 및 인프라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국 선도교원(20명 내외) 초청 연수 실시 사업비

- 선도교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지원: 1,171백만원

· 초청교원 항공료: 2백만원×20명×17개국=680백만원

· 시도교육청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0.5백만원×2.5일×2명×17개국=42.5백만원

· 콘텐츠 활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 28.5백만원

· 참가국 언어로 연수프로그램 워크북 번역 : 5백만X12종=60백만원

· 시·도교육청 ODA담당자 역량 강화: 4백만원×5회=20백만원

·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지 방문 점검: 20백만원×17개교육청=340백만원

- 이러닝 인프라 지원 : 235백만원

· 인프라(PC 등) 운송료: 6백만원×17개국=102백만원

·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인물 제작: 0.5백만원×2종=1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및 활성화 등): 0.25백만원×12회=3백만원

· 교류협력국 주한공관 초청 이러닝 정책협의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등 : 15백만원×3회=45백만원

· 사업운영 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7백만원×12월=84백만원

- 첨단 ICT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 1,841백만원

▪ 교류협력국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841백만원

- 예비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환경조사 실시 : 76백만원

· 15.2백만원 x 5개국 내외 = 76백만원

- 신규교류협력국 교실구축 및 교원 연수(과테말라, 방글라데시) : 1,305백만원

· 첨단교실 구축 : 400백만원 x 3교실= 1,200백만원

· 교실 활용을 위한 현지 교원 연수 실시 : 30백만원 x 3교실 = 90백만원

· 지원된 기자재 관리 전담 직원 연수 : 5백만원 x 3교실 = 15백만원

- 2년차 교류협력국 첨단교실 후속 지원(르완다, 미얀마) : 120백만원

· 교류협력국 수요를 반영하여 콘텐츠, 솔루션(관련 기자재 포함) 지원 : 30백만원 x 2개국 = 60백만원

· 현지 교원 연수(콘텐츠 활용법) 실시 : 20백만원 x 2개국 = 40백만

· 기연수 교직원 현지 전파교육 지원 : 10백만원 x 2개국 = 20백만원

- 3년차 교류협력국 사업성과 관리(케냐, 네팔) : 120백만원

· 현지교원 연수 및 전파교육 : 30백만원 x 2개국 = 60백만원

·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로드맵 연구 등 : 30백만원 x 2개국 = 60백만원

- 4년차 이상 교류협력국 후속 지원(페루, 라오스, 베트남, 우즈벡) : 160백만원

· 첨단교실 지속 활용 유도를 위해, 협력국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교원연수, 솔루션, H/W, S/W 지원 등) : 40백만원 x 4개국 = 160백만원

- 교류협력국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 60백만원

· 개소식 및 포럼 개최, 홍보자료 제작, 대외 언론보도 등을 통한 사업홍보 및 소통 강화 : 60백만원 x 1회 = 60백만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백만원

▪ 아프리카 9개국에 구축된 9개 솔라스쿨 교원에 대한 초청·현지연수 실시 및 SW/기자재 후속 지원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기존교류협력국 후속지원(9국 12개교) : 26백만원 x 12개 학교 = 312백만원

ㅇ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학생 ICT 역량강화】 : 530백만원**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백만원

▪ 교육정보화 협력 요청 국가 및 기존 교류협력국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 기술·정책자문 정책 로드맵 컨설팅

▪ 산출내역 : 75백만원

- 현장 중심 컨설팅비용 : 75백만원 × 1개국 = 75백만원

- APEC 이러닝 연수 : 320백만원

▪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APEC 10-12개 회원국 교육부가 공식 추천한 고위·실무정책가를 대상으로 자국의 이러닝 정책 수립을 위한 문제 해결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산출내역 : 320백만원

- 연수생 초청경비(항공료, 숙박 등) : 4.9백만원×40명 = 195백만원
- 연수 운영(식비, 강사료, 수료생의 날 개최 등) : 125백만원×1식 = 125백만원

- e-ICON세계대회 : 135백만원

▪ 개발도상국 중·고등학생의 ICT역량을 강화하여 차세대 글로벌 이러닝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및 개발도상국 중고등 학생이 협업하여 국제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앱을 공동 개발하는 국제경진대회 개최

▪ 산출내역 : 135백만원

- 참가자 초청경비(항공료) : 1.2백만원×60명 = 72백만원
- 세계대회 운영(숙식비, 여비 등) : 63백만원×1회 = 63백만원

o **【에듀테크 통합행사】: 400백만원**

▪ 국내외에서 신기술의 교육적 적용이 활발하므로 개도국 정책가를 초청하여 미래교육 관련 국제회의 개최,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및 국내 에듀테크 우수 제품 소개 및 ICT ODA 분야에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400백만원

※ 컨퍼런스 120백만원, 심포지움 160백만원, 에듀테크페어 120백만원

- 행사장 임차료 : 40백만원
- 개최경비(위탁기관 인건비, 인쇄, 통역, 홍보, 대행사 수수료) = 40백만원
- 국내, 해외, 스타트업 기업 초청비 : 1백만원 x 160기업 = 160백만원

- 해외 강연자 초청 경비 : 3백만원 x 13명 = 39백만원
- 해외(개도국) 교육정책가 초청비 = 4백만원 x 30명=120백만원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1,540백만원

▪ 아세안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이러닝 역량 강화 및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1,540백만원

※ CLMV 이러닝 역량확산 안정화 230백만원, 아세안 공용플랫폼 운영개선 320백만원, 한-아세안 네트워크 확산 및 운영 570백만원,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420백만원

- CLMV 이러닝 역량 확산 및 안정화 : 230백만원
  · 회원대학 이러닝 정책 및 운영 컨설팅 : 33백만원 × 4개국 = 130백만원
  · 회원대학 이러닝센터 운영 지원 : 25백만원 × 4개국 = 100백만원
- 아세안 공용플랫폼 운영 및 개선 : 320백만원
  · ACU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 150백만원
  · 공동활용교육자원(OER) 서비스 고도화 : 80백만원
  · 클라우드 인프라 임대 및 관리 : 7.5백만원 × 12월 ≒ 90백만원
- 한-아세안 네트워크 확산 및 사업운영 : 570백만원
  · 연 1회 ACU 운영위원회 개최 : 43백만원 × 1회(40명) = 43백만원
  · 연 2회 ACU 실무위원회 개최 : 30백만원 × 2회(각 30명) = 60백만원
  · 연2회 ACU 자문위원회 개최 : 2백만원 × 2회(각 20명) = 6백만원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인건비) : 22백만원 × 12월 = 264백만원
  · 한-아세안 이러닝 콘퍼런스 개최 : 50백만원 × 1식 = 5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확대 : 420백만원
  · CLMV 자체 콘텐츠 개발 : 10백만원 × 20종(4개국) = 200백만원
  · 콘텐츠 유지 보수 지원 : 5백만원 × 4개국 =20백만원
  · 이러닝 학점·비학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5백만원 × 4개국 =60백만원
  · 콘텐츠 공동활용 확대 지원 : 5백만원 × 4개국 =20백만원
  · 콘텐츠 개발 담당자 초청 연수 : 5백만원 × 24명 =12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이러닝세계화	**5,589**	**6,029**
■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3,659	3,559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 지원	1,334 - 7개 교육청 선도교사 단기파견 지원 - 8개 언어에 한해 워크북 번역 및 제작	1,406 - 9개 교육청 선도교사 단기파견 지원 - 12개 언어 전체에 대한 워크북 번역 보완 및 제작 - 이러닝 국제컨설턴트 양성 폐지 ※세부사업(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에 포함되었던 내역사업85백만원(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관
▪ 첨단ICT시범교실 구축·운영	1,841 - 2국가2교실 건립 - n+3년차까지 지원	1,841 - 단가절감 통해 2국가3교실 건립 - n+4년차까지 지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484 - 12개국가 12개학교 지원	312 - 9개국 12개학교 지원(3개국 사업종료되었으나, 잔여9개국에서 타학교 추가 관리 요청)
■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530**	**530**
▪ 이러닝국제컨설팅	75	75
▪ APEC이러닝연수	320	320
▪ e-ICON세계대회	135	135
■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280**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심포지움, 이러닝코리아 국제컨퍼런스 개최	**400**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심포지움, 이러닝코리아 국제컨퍼런스 통합개최 및 에듀테크페어(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존) 신설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1,120**	**1,540** ※세부사업(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용 콘텐츠 진흥육성)에 포함되었던 내역사업420백만원(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이관

□ **지원 필요성**

【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 지원)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한국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을 매년 350여 명의 초청연수생에게 제공 및 실습 하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간접홍보의 채널로 활용 가능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우리나라의 이러닝 성공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국의 이러닝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지식정보 격차 해소

- 단순한 기자재 제공을 넘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공과 교육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국의 이러닝 역량 강화
- 교류협력국 내 한국형 첨단교실을 보급·지원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이러닝 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 기재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과제」에 '첨단교실' 포함

※ 관계부처 합동「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과제에 '첨단교실' 포함('16.2월) / * 제2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제24-1호)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아프리카는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ICT 기반 학습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

- ICT 기반 학습 솔루션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전기 시설 및 인터넷 등)가 부족하며, 광범위한 국토, 분산된 인구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태양광 전력 기반 이동형 교실 지원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사하라이남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평균 50% 이내 수준

- 특히 모바일 기기(태블릿、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주 교수-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솔라스쿨은 유선망 대비 무선망 접근이 용이한 아프리카에서 적용이 적합한 교수-학습 솔루션에 해당

* 2016년 아프리카 대륙 인구 12억 명에서 휴대폰 가입 회선이 10억 개를 돌파하면서 아프리카의 무선망 접근율 확대 전망

- 아울러 정부와 기업체 간 민관협력(PPP), 정부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한 운영으로 예산 효율성 및 사업 전문성 제고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13.10)
  * KERIS-NIIED(국립국제교육원)간 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11)
- 교사를 대상으로 ICT 활용 연수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교육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대
- 아울러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의 핵심 요소는 교사의 ICT 기반 교사전문성 강화로,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협력국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지원이 절실함
  ※ ('16.2월) 관계부처 합동「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과제에 '솔라스쿨' 포함 * 제2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제24-1호)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국무총리실 ODA 위원회 수립 제2차 ODA 기본계획('15.11.)에서 교육, 보건, 농촌개발 중심의 ODA를 확대 강조하였고, 유.무상 ODA에서 ICT 관련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도국 지원 교육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APEC 이러닝 연수)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 및 이러닝 분야 리더십 제고를 위해 APEC 회원국(10~12개국) 교육부가 추천한 실무/고위급 교육정책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운영
  ※ "APEC 역내 교육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교육의 질 개선, 지역간 통합 촉진, 포괄성 증대** 등에 관해 공동의 노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6차 APEC 교육장관회의('16.10월/페루) 모두발언 中)

○ (e-ICON 세계대회) 한국 주도의 S/W교육 분야 국제대회로 국내 특성화고와 개발도상국 학생 등 역량은 있으나 글로벌 경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이 참가 가능
  ※ '17년 : 한국(교육부) 단독주최로 국내 개최 → '18년 : 한국(교육부)-미국(하와이주교육부) 공동개최로 미국 하와이서 개최
- 2018년도부터 S/W교육 필수화에 따라, 국내 학생 및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 교류협력국 대상 교육정보화 정책 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수요가 있는 교류협력국과의 사업 발굴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고위급 대상 국제회의
- 개도국 정책가를 초청해 개도국 교육발전을 위한 이러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라운드테이블 및 컨퍼런스 운영
  ※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사업협력협정을 체결('17. 7월)
- 초청된 개도국 정책가가 국내 에듀테크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받고 자국 교육정보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아세안 권역의 이러닝 활성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한-아세안 고등교육 교류 및 해외진출을 확대를 위한 지속적 지원 필요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6.제주)에서 ASEAN사무총장의 사이버 대학 설립검토에 대해 한국정부가 수락('09.10.태국)
- 개발 콘텐츠의 공동 활용 및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아세안 지역 내 고등 교육 수혜 범위 확대
  ※ 2017년 CLMV 이러닝 교육과정 학습자 8,508명(전년대비 130% 증가)
- CLMV 회원대학 콘텐츠 개발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한 아세안 지역 내 양질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활용 활성화 기여
  ※ 2017년 ACU 이러닝 전문가 양성 연수 만족도 89.8점(전년 대비 6점 이상 증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이러닝세계화(ODA)	4,469	5,589	6,029	440	7.8
【ICT인프라지원 및 교원 연수】	3,659	3,659	3,559	△100	△2.7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	1,334	1,334	1,406	72	5.3
- 선도교원초청연수	1,086 (17개시도x64백만원)	1,086 (17개시도x64백만원)	1,171 (17개시도x68백만원)	85	7.8
- 이러닝인프라지원	240 (17개시도x14.1백만원)	240 (17개시도x14.1백만원)	235 (17개시도x13.8백만원)	△5	△2.1
- 국제컨설턴트양성	8 (2회x4백만원)	8 (2회x4백만원)	-	△8	순감
▪ 첨단ICT활용 시범교실구축운영	1,841	1,841	1,841	-	-
- 교육정보화 환경조사 실시	120 (5국x24백만원)	120 (5국x24백만원)	76 (5국x15.2백만원)	△44	△36.6
- 신규교류협력국 첨단교실 구축	1,150 (2국x575백만원)	1,150 (2국x575백만원)	1,305 (3교실x435백만원)	155	13.4
- 2년차교류협력국 첨단교실후속지원	296 (2국x148백만원)	296 (2국x148백만원)	120 (2국x60백만원)	△176	△59.4
- 3년차교류협력국 첨단교실후속지원	75 (2국x37.5백만원)	75 (2국x37.5백만원)	120 (2국x60백만원)	45	60
- 4년차교류협력국 첨단교실후속지원	100 (2국x50백만원)	100 (2국x50백만원)	160 (4국x40백만원)	60	60
- 신규교류협력국 네트워크형성홍보	100 (1식x100백만원)	100 (1식x100백만원)	60 (1식x60백만원)	△40	△40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484	484	312	△172	△35.5
- 기존교류협력국 후속지원	156 (6국6개교x26백만원)	156 (6국6개교x26백만원)	312 (9국12개교x26백만원)	156	100
- 신규교류협력국 솔라스쿨지원	268 (3국3개교x89.3백만원)	268 (3국3개교x89.3백만원)	-	△268	순감
- 기존교류협력국 환경조사	60 (3국3개교x20백만원)	60 (3국3개교x20백만원)	-	△60	순감
【개발도상국 정책가·학생 ICT역량강화】	530	530	530	-	-
▪ 이러닝국제컨설팅	75 (1식x75백만원)	75 (1식x75백만원)	75 (1식x75백만원)	-	-
▪ APEC이러닝연수	320 (3회x107백만원)	320 (3회x107백만원)	320 (3회x107백만원)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e-ICON세계대회	135 (135x1식)	135 (135x1식)	135 (135x1식)	-	-
【에듀테크 통합행사2019】	280	280	400	120	42.8
▪ 에듀테크 통합행사2019	280 (컨퍼런스1회x120백만원+심포지움1회x160백만원)	280 (컨퍼런스1회x120백만원+심포지움1회x160백만원)	400 (컨퍼런스1회x120백만원+심포지움1회x160백만원+에듀테크 페어1회x120백만원)	120	42.8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0	1,120	1,540	420	37.5
▪ 아세안대학 이러닝지원	0 (1,540) (CLMV이러닝역량확산안정화 230백만원 + 아세안공용플랫폼운영개선 320백만원 + 한-아세안네트워크확산및운영 570백만원 + 한-아세안공동콘텐츠개발 및 운영확대 420백만원)	1,120 (CLMV이러닝역량확산안정화 230백만원 + 아세안공용플랫폼운영개선 320백만원 + 한-아세안네트워크확산및운영 570백만원) (420) (한-아세안공동콘텐츠개발 및 운영확대 420백만원)	1,540 (CLMV이러닝역량확산안정화 230백만원 + 아세안공용플랫폼운영개선 320백만원 + 한-아세안네트워크확산및운영 570백만원) ※ 내역사업 이관② (한-아세안공동콘텐츠개발 및 운영확대 420백만원)	420	37.5
□ 비목(합계)	4,469	5,589	6,029	440	7.8
○ 민간경상보조 (320-01)	2,144	5,105	5,717	612	11.9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841	-	-	-	-
○ 일반법령출연금 (350-01)	484	484	312	△172	△35.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이러닝 인프라 지원) 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중이나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추후 예산 증가 예상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한국의 이러닝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을 구축 시 교실 갯수를 증가시키고, 기존 교류협력국에 대한 재지원을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아프리카의 ICT 기반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및 현지연수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개발 지속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국제컨설팅) 연간 1개국씩 교류협력국을 선정하여 해당국 정책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러닝 역량 강화 과제 발굴 및 모듈 개발 등 수행

○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2019년 강사료 현실화 등 연수생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연수 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예산을 별도 책정하여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보완

○ (e-ICON 세계대회) 이러닝분야 우수 중·고생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국제협력기회를 제공하고자 참가자초청경비 및 운영비 증액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및 국내 ICT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요구 등 행사 규모 확대 예상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의 중장기 방향으로 대학 설립 가능성 존재, CLMV대학이 모두 신남방정책에 해당하고 현지 정부로부터 연수생수 증원 요청이 많아 예산 증액 필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4,469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1409 ■ 선도교원초청연수 1086 ■ 이러닝인프라지원 240 ■ 이러닝국제컨설턴트양성8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국제기구및다자간이러닝 협력】735 ■ 이러닝 코리아 : 120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 160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484			-
'18	5,589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1409 ■ 선도교원초청연수 1086 ■ 이러닝인프라지원 240 ■ 이러닝국제컨설턴트양성8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국제기구및다자간이러닝 협력】735 ■ 이러닝 코리아 : 120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 160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484	5,589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1,409 ■ 선도교원초청연수 1,086 ■ 이러닝인프라지원 240 ■ 이러닝국제컨설턴트양성8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국제기구및다자간이러닝 협력】735 ■ 이러닝 코리아 : 120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 160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484	0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112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1120	
'19	5,500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406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6,029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406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540	529
'20	5,500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406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5,151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057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349
'21	5,500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406백만원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841백만원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백만원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5,048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057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738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452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22			4,998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1,007 ■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1,738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312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 75 ■ APEC이러닝 연수 : 320 ■ e-ICON세계대회 : 135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400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1,011	-
연평균 증가율 (%)	5.7		△2.6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5,589	6,029	44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09.6	118.2	8.6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9.6	19.6	0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이드라인 "다. 기타 사업-<2>ODA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표1>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접고용효과 -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고용효과는 없음 ② 인건비 외 지출에 따른 간접고용효과 - 6,029백만원 ÷ 0.51 = 118.2명(사업관련 전문서비스) □ **2018년 고용효과** - 10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교육기본법」제29조(국제교육)제4항

※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 국가 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 추진경위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 및 인프라 지원)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교류협력국과 MOU를 체결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통해 교원연수(5,139명), 이러닝 기자재(27,659대) 지원 (누계)

○ (첨단 ICT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 2011 :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사업」신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개 우수 사업 중 하나로 선정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6조에 따라 이러닝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중장기 법정계획
- 2011 :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3개국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콜롬비아('11.7.20), 인도네시아('11.8.18) / LOA 체결 : 브루나이('12.5.18)
- 2012 : 몽골, 필리핀 2개국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몽골('12.10.10), 필리핀('12.10.15)
- 2013 :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2개국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캄보디아('13.9.10), 아제르바이잔('13.12.19)
- 2014 : 스리랑카, 파라과이 2개국에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스리랑카('14.10.16), 파라과이('14.10.07)
- 2015 :「2015 세계교육포럼」후속 조치 사업에 포함
  * 2015 세계교육포럼 : "한국은 ICT 활용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의 해소에 기여"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
- 2015 : 기재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계획」과제에 '첨단교실' 및 '이러닝 코리아' 포함
- 2016 : 관계부처 합동「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과제에 '첨단교실' 및 '솔라스쿨' 포함
  * 제24차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제24-1호)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2012 :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 총회 참가 및 사업 발굴 협의
- 2013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 신설
  * '13년 교류협력국 :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 2016 : 신규 교류협력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 과제로 선정
  * '16년 신규 교류협력국 : 우간다, 르완다, 모잠비크
- 2017 : 아프리카 최고 명문대학인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과 협정 체결을 통해 거점 협력국 교사 현지 연수 기반 구축
  * 아프리카 교사 현지 연수 협력국 : 우간다
- 2017 : 신규 교류협력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 '17년 신규 교류협력국 :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 2018 : 신규 교류협력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 '18년 신규 교류협력국 : 보츠와나, 나미비아, 말라위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이러닝 국제컨설팅) 태국 등 15개국 지원

- 2014 : 카자흐스탄, 미얀마 대상 ICT 활용 교사 연수, 교육정보화 정책 개발, 교육서비스 및 콘텐츠 컨설팅 수행
- 2015 : 키르기스스탄 대상 교사 ICT 역량 강화 선진화 방안 컨설팅 수행
- 2016 : 페루 대상 교육정보화 정책 분석 컨설팅 수행
- 2017 : 우즈베키스탄 교사 ICT 역량 연수 모듈 개발 컨설팅 수행

○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제27차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회의(2005.6월/태국 파타야)에서 승인, APEC 장관급 회의(2005.11월/한국 부산)에서 환영받음

○ (e-ICON 세계대회) '09년 11월, 한국 교육부-마이크로소프트 간 민관 협력사업(이러닝브랜드화사업)으로 시작하여 '11년부터 한국 주도의 세계수준의 이러닝 브랜드 확보의 일환으로 제1회 e-ICON 세계대회 이후 매년 대회 개최 추진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 (이러닝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교육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이러닝 국제박람회 및 컨퍼런스 연계 개최('06.~)
  · 2006 :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 박람회 공동 개최 협약 체결
  · 2015 : 기재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 계획」과제에 '첨단교실' 및 '이러닝 코리아' 포함
  · 국제컨퍼런스 : 전체(유료) 등록 인원 ('06) 600명 → ('17) 1,072(367)명
-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2007년부터 실시
  · 2007 : 교육부-세계은행 공동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역량 지원 사업 추진
  · 2010 : KERIS-세계은행 상호협력협정(MOU) 체결
  · 2016 : 제 10주년 한-국제기구 공동 ICT 국제 심포지엄 개최
  · 2017 : KERIS-세계은행 상호협력협정(MOU) 갱신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200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 아세안사무총장이 한국에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건의,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09.6/'09.10)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09.6.1~2, 제주)**
> · **수린 핏수완**(ASEAN 사무총장), 한국이 IT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경제·금융 발전, 다양한 비즈니스 등을 훈련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 설립 검토를 건의**함

> -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09.10.24, 태국 후아힌)**
> · **아피싯 웨차치와**(태국 총리),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가능성을 지속 타진키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처에서 이 제안을 검토하기로 함

> -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0.10.29, 베트남 하노이)**
> · **V.I.P**, 수린 사무총장이 제안한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이 **원활히 추진 중**이며, 양측 간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 · **아피싯 웨차치와**(태국 총리),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노력을 지지함

- 아세안 후발 4개국(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하여 이러닝 역량 강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ASEAN과 협의('10.8월), 이러닝 역량 강화 추진('11.9월~)
- 대학 설립 필요성 및 재원부담, ASEAN과의 협업 및 의견 조율 진척정도, CLMV 국가의 이러닝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추진계획('15년 대학 설립 검토)을 변경('13.7월)하고 ASEAN SOM-ED 보고('14.2월)

-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계획 변경('13.7월)

※ 계획 변경 :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당초)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변경 후)

※ 1단계 사업 : '12～'15년 / **2단계 사업 : '16～'20년**

-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 추진계획 변경 ('13.7.15, 교육부장관 결재)**
  · **아세안 후발 4개국가(CLMV)**를 중심으로 **이러닝 역량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 대학 설립은 '20년까지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ASEAN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계획** 마련 추진

- CLMV 국가와 국내 협력대학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밀착 코칭 및 이러닝 역량 강화 추진 등 사업 효과성 제고('16.5월~)

※ 협력대학(4개교) : 숭실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 영진사이버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이러닝 세계화	21.17	-	38.75	43.40	-	44.69	-	55.89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 불용(첨단교실)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21백만원 불용

○ ('16) 불용(첨단교실)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30백만원 불용

○ ('17) 불용(첨단교실) : 조달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108백만원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75** **(2,075)**	( )	( )	**3,875** **(2,075)**	**3,854** **(2,008)**	( )	21 (67)
'16년	**4,340** **(2,499)**	( )	( )	**4,340** **(2,499)**	**4,310** **(2,401)**	( )	30 (98)
'17년	**4,469** **(2,628)**	( )	( )	**4,469** **(2,628)**	**3,846** **(2,628)**	515 (0)	108 (0)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4,469	4,469	5,589	0	5,589	6,104	109.3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18년도 예산 6,104백만원('18년도 정부안 5,589백만원+'17년도 사업비 이월분 515백만원) 100%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첨단ICT 시범교실 구축 운영 사업) 첨단교실 사업의 연례적인 세목조정 개선 필요(2017 교문위 결산검토보고)

※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일반수용비로 책정된 평가수당이 부족하여 위탁사업비(210-15)를 일반수용비(210-01)로 조정

- 이와 관련하여 '17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수당 지급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지적사항을 반영·조치 완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 연수

- IACE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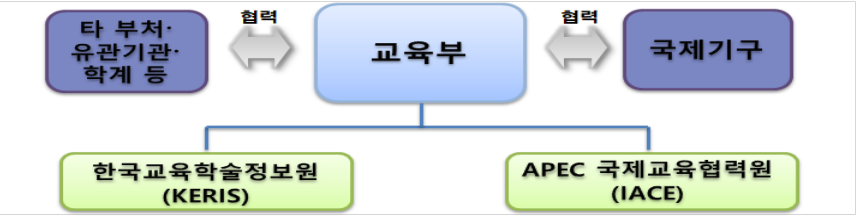

- KERIS : 첨단ICT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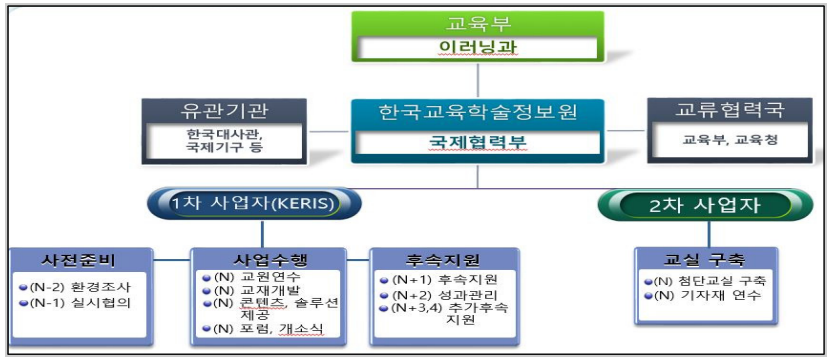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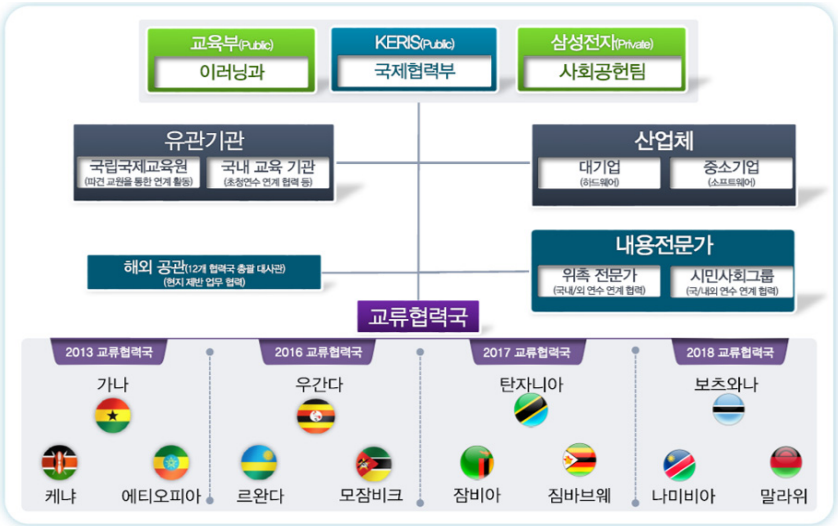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IACE : APEC이러닝연수, e-ICON 세계대회
- KERIS : 이러닝 국제컨설팅

○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 KERIS

○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KE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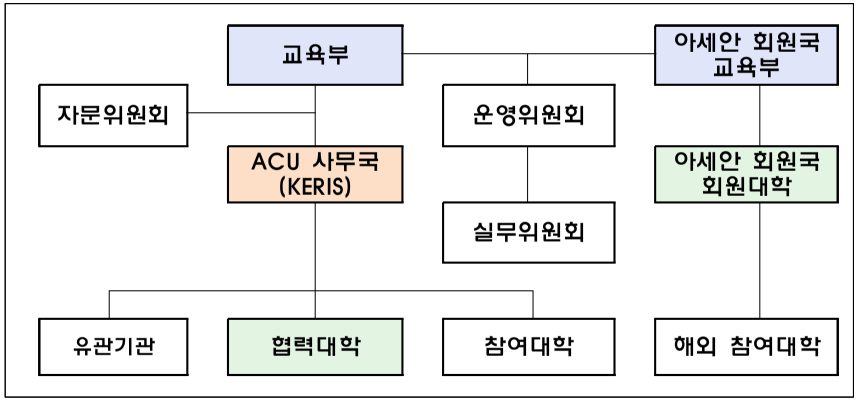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이러닝세계화 사업프로그램 만족도(%)	목표	88	89.8	92.1	92.3	92.6	최근 3년('16~'18) 실적(88.43%+92.15%+92.35%(예상))의 평균값(90.6%)에 2%p상향된 값(92.6%)을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로 설정	A+B+C+D(만족도 측정인원에 따른 만족도 가중평균 값), A: e-ICCON세계대회 / B: 에듀테크통합행사 2019 / C: APEC 이러닝연수 / D: 교류협력국 이러닝 콘텐츠 활용 연수 A : e-ICCON세계대회 참가학생 B : 에듀테크 통합행사 2019 참가 정책가 C: APEC 이러닝 연수 D : 교류협력국 선도교원 초청 콘텐츠 활용연수 만족도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91.2	90.3	92.15					
	달성도	103.6	100.5	100.1					
② 교류협력국 첨단교실 관계자 연수 만족도(%)	목표	신규	91.3	92.3	93	93.2	최근 3년('16~'18) 실적(91.5%, 91.9%, 93%(예상))의 평균값(92.2%)에 1% 상향된 값을 반영하여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93.2%)로 설정	첨단교실 관계자 연수 만족도=(신규 교류협력국 첨단교실 관계자 연수 만족도+기존 교류협력국 첨단교실 관계자 연수 만족도) / 2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91.5	91.9					
	달성도		100.2	100					
③ 첨단교실 및 솔라스쿨 지원 국가수(개국)	목표	신규	5	5	5	삭제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5	4		삭제			
	달성도		100	80					
④ 기지원 기자재 추적관리비율(%)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0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보통 이상인 70%의 목표치 설정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지원된 이러닝 기자재 중 5개국에 대한 추적관리 대수/최근 3년간 해당 5개국에 대한 총지원대수] + [사업이 종료된 첨단교실 기구축국가의 지원 기자재 중 3개국에 대한 추적관리 대수/해당 3개국에 대한 총지원대수]]/2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달성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붙임1~6)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등 사업 개요 및 통계

참고 1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ICT인프라지원 및 교원 연수】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연수 및 인프라 지원

○ 사업 성과

- <붙임 2~3> 교원연수 및 인프라 지원 관련 통계 참조

○ 현장의 변화

"한국에서의 ICT 교육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Prezi 및 Namo 및 MS 파워포인트의 다른 기능과 같은 새로운 교육 도구를 배웠습니다. (중략) 저는 연수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와 제 수업에서 Prezi를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주제 발표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필리핀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통로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에서의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 교류협력국 필리핀 교육정보화 선도교원 초청연수생 후기문 중에서 일부 발췌)

□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 사업성과

- 케냐(Arap Moi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2013년 1,190명에서 2014년에는 1,275명, 2015년에는 1,320명으로 증가했는데, 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솔라스쿨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학기별 시행하는 성취도 평가(Kenya Certificate of Primary Education, KCPE)의 2013년 평균이 전반적으로 향상했으며, 특히 영어 교과목은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가나의 2014년 학업성취도에서는 학기별 실시하는 시험의 3번째 시험을 통과한 비율이 14%에서 92%까지 증가했으며, 2014/15학년도의 결석률은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3년도 솔라스쿨 사업 성과보고 자료 발췌)

- 우간다에 설치된 기존교실 리모델링 형태의 솔라스쿨에 대해 우간다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KERIS에서 사업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을 요청하는 의향서 체결('16.9)

○ 현장의 변화

-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하여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기회 제공

> ・아프리카 오지에서 현지 여건에 적합한 최신식의 장비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세계의 교육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은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우간다 교육부, Alfred Kyaka, Assistant Commissioner)

- 교육정보화 분야 선진국인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요청

> ・솔라스쿨 활용 지원 사업은 아프리카 각 수혜국에서의 교육적 활용가치 및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원 국가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프리카 권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솔라스쿨과 같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르완다 교육부, Eric Kimenyi, Acting National Coordinator)

- 운영 학교, 지역, 협력국의 활발한 후속 활동 및 조치

> ・가나에서 솔라스쿨을 활용 중인 교원들은 솔라스쿨을 수업용도 외에도 연구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솔라스쿨 관련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가나 교육부는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학교의 ICT 활용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SV 패널을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며, 정부는 산간벽지의 150개 학교에 태양광 시스템을 제공하여 ICT 활용 여건 조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케냐 교육부는 학교의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솔라스쿨 활용 시간표 제작, 수업 시수 분배를 위한 정책 도입, 교사 연수 강사 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3년도 솔라스쿨 사업 성과보고 자료 발췌).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 사업 성과

- 한국 교육부의 대표적인 APEC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서 **매년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에서 연수성과 공식보고**, 회원국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수렴

> **※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18.2월/파푸아뉴기니) 공식 회의록**
> (국문) 한국(교육부)은 APEC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의 경과를 보고. 본 사업은 APEC 역내 더나은 이러닝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연수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대만 및 태국이 역내 교육가들 간 인적연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한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함.

- 본 연수 참가 이후 자국 동료 대상 현지 전파연수 실시를 통한 **연수 파급력 확대 → 전파연수 참가자: 총 7개국 163명**

※ 국별 전파연수 수행기관: 칠레 산자비에르 지역 내 교육부 (영어교육증진)사업 운영 지부(26),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3), 말레이시아 교육부(50), 멕시코 국립방송통신대학교(5), 필리핀 교육부(11),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20), 베트남 교육훈련부(48)

※ 주요 사진 : 본 연수 참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관 내부 워크숍 개최

칠레 산자비에르 지역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필리핀 교육부

- **베트남 '수료생의 날(Alumni Day)'** 개최를 통한 수료생 대상 **현업 적용 우수성과 공유, 親韓 교육 커뮤니티** 구축 및 강화

수료생(정책가)의 날: 현업적용 우수사례 발표

수료생(정책가)의 날: AeLT 참가경험 공유

수료생(교사)의 날: 단체사진

- 국내 우수 **기업/대학의 해외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연수 운영 → 교육분야 민간기업의 솔루션 공유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국내 대학과 APEC 회원국 대학 간 MOU 체결 기회 마련 등

○ 현장의 변화

- (말레이시아) **가상학습환경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내가 APEC 이러닝 연수에 참가할 시에 우리(말레이시아)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자료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고, 주관기관에서는 사전 요구조사를 통해 나의 담당업무를 반영한 강의 및 체험연수 세션을 준비해주었다. 공동연구 세션을 통해 커리큘럼 설계 등에 대해 다른 국가의 교육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어 좋았을 뿐 아니라, 특히나 EBS 방문을 통해 체험한 한국의 이러닝 시스템은 연수 참가 이후 내가 생물과목의 교육용 프로그램(Courseware)을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
> **(Mrs. Gina Lammert,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육기술국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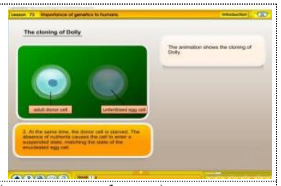

수료생이 직접 개발한 생물과목 Courseware 예시(spp.moe.edu.my)

□ e-ICON 세계대회

○ 사업 성과

- 한국 주도의 학생 대상 S/W교육, 이러닝 콘텐츠 대회의 해외 진출로 이러닝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18년) 한국(교육부)-미국(하와이주교육부) 대회 공동개최

-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한 대회 성과 홍보 및 콘텐츠 활용도 제고

  ※ 보도자료: ('16년) 총13건 → ('17년) 총55건

- 국제 교육 현장에 활용 가능한 교육용 모바일 앱 개발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 등) 등록현황: ('16년) 총 결과물 5건

○ 현장의 변화

- 국내외 차세대 리더(청소년)에게 국제협력 기반 콘텐츠 개발경험 기회 제공

> "인도네시아 직업고등학교 학생으로 국제대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준 한국 교육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대회 기간 동안 한국 팀원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모바일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협업의 의미와 세상을 위한 기술 활용에 대해 배우게 었습니다." (**Riksa Suviana Rochman, 인도네시아 SMK Negeri 4 Bandung 학생**)
>
> "지도교사로서 e-ICON 세계대회를 3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공업고등학교 학생으로 기술력은 갖추었지만 글로벌협업의 기회가 부족하였는데 경험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협업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대회 참가 의미가 더욱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빈, 서울공고 교사)**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 사업성과

- ACU-OER 활성화를 위해 ACU 사업 참여국가 및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공동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또한 KOCW 영문 콘텐츠를 연계를 통해 600여종까지 확보하였음

  ※ 기존 CLMVT 5개국외에 ′16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17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참여

- CLMV 콘텐츠 개발 방식의 전환으로 1종당 개발 단가 절감 및 국가별 지원 콘텐츠 개발 확대

  ※ 1종당 개발 단가 : 10,000 USD → 8,500 USD

  ※ CLMV 자체 개발 콘텐츠 지원 : 12종('16) → 20종('17)

- 콘텐츠 개발 방식 전환 및 관련 교육, 컨설팅, 품질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CLMV 자체 콘텐츠 질 제고

  ※ 콘텐츠 개발 방식 전환 : 저작도구(Captivate) 기반 → 동영상/HTML5 기반

○ 현장의 변화

- 현지 대학 이러닝에 대한 관심 증가

※ 미얀마 회원대학과 타 대학 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지 4개 대학과 의향서(LOI)체결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2회 운영함

※ 미얀마 기술대학교(UT)와 타대학은 협력과정 9개 교과목을 운영하여 총 255명 학생 등록이 하여 수강하였음

- 콘텐츠 개발 담당 인력의 동영상/HTML 5 기반 콘텐츠 개발 역량 함양

- 아세안 국가 내 공동 활용 콘텐츠 종수 및 운영 교육과정수 확대

붙임1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 한-교류협력국 MOU 체결현황**

(2017.12. 현재)

지역	체결국가	체결일	체결기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05. 8. 10.	부산교육청
	라오스	'05. 9. 6. ('11. 12. 20. 갱신)	충남교육청
	필리핀	'05. 11. 10. ('14. 9. 22. 갱신)	전북교육청
	네팔	'15. 4. 1.	울산교육청
	베트남	'08. 10. 10.	교육부 (경남교육청)
	미얀마	'13. 12. 13. ('17. 2. 28 갱신)	세종교육청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95. 5. 22.	서울교육청
	키르기즈공화국	'17. 2. 20.	전남교육청
	몽골	'05. 8. 15. ('16. 4. 갱신)	교육부 (대전교육청)
		'06. 10. 2.	서울교육청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05. 10. 24. ('14. 6. 25. 갱신)	광주교육청
아프리카	케냐	'05. 12. 20.	강원교육청
유럽(CIS)	몰도바	'15. 9. 21.	제주교육청
중앙. 남아메리카	과테말라	'07. 1. 17. ('15. 9. 16. 갱신)	교육부 (경북교육청)
	파라과이	'12. 6. 12.	충북교육청
	니카라과	'15. 4. 23.	경기교육청
	콜롬비아	'07. 1. 18.	교육부 (인천교육청)
계	**16개국(교육부 4개국)**		

붙임2 2005~2017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교원연수 현황

(단위:명)

구분		지원국	'05 (12)	'06 (16)	'07 (16)	'08 (17)	'09 (13)	'10 (15)	'11 (16)	'12 (16)	'13 (16)	'14 (16)	'15 (18)	'16 (18)	'17 (17)	계
시도교육청연수	서울	우즈베키스탄	30	20	20	20	50	50	70	20	20	16	16	16	41	**389**
		몽골	-	-	-	-	-	-	20	20	20	16	16	16	16	**124**
	부산	캄보디아	20	21	20	20	15	45	15	78	18	19	20	48	20	**359**
	대구	방글라데시	40	24	26	20	15	15	20	20	80	20	20	20	20	**340**
		온두라스	-	-	-	-	-	-	-	-	-	16	18	20	-	**54**
	인천	파키스탄	-	30	20	20	-	-	-	-	-	-	-	-	-	**70**
		콜롬비아	-	-	10	16	12	14	13	18	58	21	19	65	20	**266**
	광주	스리랑카	28	20	20	20	12	17	15	20	50	22	22	22	25	**293**
	대전	몽골	31	21	22	23	49	18	18	53	20	18	18	20	25	**336**
	울산	예멘	-	19	20	19		15	12	18	18	-	-	-	-	**121**
		네팔	-	-	-	-	-	-	-	-	-	18	17	18	17	**70**
	세종	미얀마	-	-	-	-	-	-	-	-	-	21	21	101	21	**164**
	경기	카자흐스탄	20	18	20	19	20	18	90	22	19	84	20	-	-	**350**
		니카라과	-	-	-	-	-	-	-	-	-	-	-	20	20	**40**
	강원	케냐	40	40	43	44	40	33	15	44	35	50	50	50	50	**534**
	충북	인도네시아	40	80		28	20	40	18	-	-	-	-	-	-	**226**
		파라과이	-	-	-	-	-	-	-	18	50	20	40	20	15	**163**
	충남	라오스	21	30	20	20	43	35	15	18	18	48	45	20	54	**387**
	전북	필리핀	21	22	22	20	20	15	15	17	20	20	20	20	20	**252**
	전남	말레이시아	-	20	20	19	-	15	15	15	-	-	-	-	-	**104**
		페루	-	-	-	-	-	-	-	-	18	17	17	47	-	**99**
		키르기스스탄	-	-	-	-	-	-	-	-	-	-	-	-	19	**19**
	경북	과테말라	-	20	20	20	15	12	12	18	38	20	40	20	47	**282**
	경남	베트남	38	29	24	29	-	30	29	35	58	35	55	30	28	**420**
	제주	도미니카	20	20	20	19	12	-	12	16	18	-	-	-	-	**137**
		몰도바	-	-	-	-	-	-	-	-	-	-	20	20	38	**78**
소계			**329**	**414**	**327**	**357**	**311**	**372**	**392**	**434**	**540**	**481**	**474**	**573**	**496**	**5,677**

※ 연도별 괄호 안 숫자는 교류협력국가 수

붙임3 2005~2017 교류협력국 인프라 지원현황

(단위:대)

구분		지원국	'05 (14)	'06 (15)	'07 (13)	'08 (12)	'09 (13)	'10 (15)	'11 (19)	'12 (17)	'13 (17)	'14 (19)	'15 (18)	'16 (18)	'17 (18)	계
시도교육청인프라지원	서울	우즈베키스탄	100	300	300	300	300	250	250	250	250	250	102	151	130	**2,933**
		몽골	-	-	-	-	-	-	250	250	250	250	103	151	131	**1,385**
	부산	캄보디아	140	150	150	150	150	210	15	18	15	15	15	15	26	**1,069**
	대구	방글라데시	100	-	-	-	15	15	25	20	25	20	20	20	20	**280**
		온두라스	-	-	-	-	-	-	-	-	-	16	18	20	4	**58**
	인천	파키스탄	100	150	150	-	-	-	-	-		-	-	-	-	**400**
		콜롬비아	-	-	-	-	-	14	15	18	18	21	19	20	20	**145**
	광주	스리랑카	100	150	150	150	-	50	161	70	70	72	72	72	75	**1,192**
		키르기스스탄	-	-	-	-	150	-	-	-	-	-	-	-	-	**150**
		중국	-	-	-	-	-	-	25	-	-	-	-	-	-	**25**
	대전	몽골	2,200	1,000	500	-	18	268	18	36	28	25	26	32	69	**4,220**
	울산	예멘	-	150	150	150	165	165	129	18	18	-	-	-	-	**945**
		동티모르	-	-	-	-	-	165	-	-	-	-	-	-	-	**165**
		네팔	-	-	-	-	-	-	-	-	-	18	41	18	18	**95**
	세종	미얀마	-	-	-	-	-	-	-	-	70	134	88	64	117	**473**
	경기	카자흐스탄	100	170	340	500	340	122	83	300	300	100	-	-	-	**2,355**
		니카라과	-	-	-	-	-	-	-	-	-	100	100	100	200	**500**
	강원	케냐	200	300	240	320	300	300	335	320	-	300	100	110	158	**2,983**
	충북	인도네시아	100	300	-	-	-	-	18	-	-	-	-	-	-	**418**
		필리핀	-	-	-	150	150	-	50	-	-	-	-	-	-	**350**
		파라과이	-	-	-	-	-	-	-	18	18	20	16	25	37	**134**
	충남	라오스	125	220	420	170	15	15	15	18	79	78	78	64	64	**1,361**
	전북	필리핀	100	150	170	150	150	300	134	158	150	140	120	200	177	**2,099**
	전남	말레이시아	100	157	150	150	150	150	15	100	-	-	-	-	-	**972**
		페루	-	-	-	-	-	-	-	-	150	171	80	100	-	**501**
		키르기스스탄	-	-	-	-	-	-	-	-	-	-	-	-	100	**100**
	경북	과테말라	-	170	250	250	250	150	100	100	150	102	110	150	110	**1,892**
	경남	베트남	100	150	-	-	-	31	33	111	111	101	101	64	96	**898**
	제주	도미니카	190	350	150	150	-	-	150	150	150	-	-	-	-	**1,290**
		몰도바	-	-	-	-	-	-	-	-	-	-	-	150	180	**330**
계			**3,565**	**3,517**	**2,970**	**2,440**	**2,153**	**2,205**	**1,671**	**1,805**	**1,702**	**1,933**	**1,209**	**1,376**	**1,732**	**29,718**

붙임4 첨단ICT활용 시범교실 지원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이러닝 선도국가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성공 경험**과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요청 증대**

○ 한국의 이러닝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이러닝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

□ 사업 내용

○ (1차사업) 실시협의 및 환경조사 실시,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제공, 교원연수 및 교재개발, 포럼 및 개소식 개최 및 성과관리 등

※ ('11~'17)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KEFA)가 사업 실시

○ (2차사업) 첨단교실 구축 및 기자재 연수 실시

※ 민간사업자가 실시하며, '17년도는 DB Inc 에서 담당

□ 추진 경과

○ **('11) 사업 신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20개 우수 사업** 중 하나로 선정**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콜롬비아('11.7.20), 인도네시아('11.8.18), LOA 체결 : 브루나이('11.5.18)

○ **('12) 몽골, 필리핀**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몽골('12.10.10), 필리핀('12.10.15)

○ **('13)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캄보디아('13.9.10), 아제르바이잔('14.12.19)

○ **('14) 스리랑카, 파라과이**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스리랑카('14.10.7), 파라과이('14.10.7)

○ **('15)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베트남('15.7.22), 우즈베키스탄('15.7.31)

○ **('16) 페루, 라오스**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페루('16.10.4), 라오스('16.9.19)

○ **('17) 네팔**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 체결 : 네팔('17.9.12)

※ 케냐도 '17년도 협력국이었으나 케냐의 대선 및 재선('17.8.~11.)등 정국 혼란으로 MOU체결 및 교실구축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 '18.3.까지 연장

□ 예정 교류국

○ ('18) **미얀마, 르완다**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MOU체결 및 교실 구축 필요

○ ('19) **방글라데시, 과테말라**에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 교실 구축 년도의 2년 전에 국가를 미리 선정하므로 '17년도에 '19년도 협력국가를 기 선정하였음

□ 주요 지원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첨단교실 구축 ▸첨단교실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재 개발 지원 ▸포럼 및 개소식	▸추가 솔루션 및 기자재 지원 ▸우수 콘텐츠 보급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운영 성과 분석 ▸성과 분석결과를 차년도 기본계획에 반영	▸4차년도 이상 국가 추가 HW / SW 및 유지보수 지원 등

□ 한국형 첨단 시범교실(예시)

○ 교류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형태로 구축

스튜디오형	첨단형	일반형	전력공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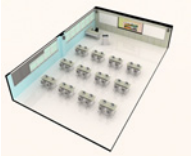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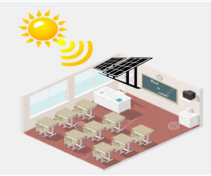
- 콘텐츠 중심 모델	- 학습자 활동중심 모델	- 교수 주도 학습 모델	- 자가 전력 공급 모델 (전력부족 환경지원)

붙임5 솔라스쿨 활용 교육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 아프리카 지역의 문해율 제고 및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 **솔라스쿨**을 **기반**으로 **교원의 ICT 활용 역량 제고**

□ 추진 경과

○ ('13) 사업 신설 및 **케냐, 가나, 에티오피아** 참가

○ ('14) 아프리카 3개국 지원국가 **선도교원 1·2차 초청연수**

○ ('16)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사업참여 의향서 체결

○ ('16.2.)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 과제*로 선정

*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교육부-KERIS-삼성전자** 간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 솔라스쿨 설치 및 교원 ICT 활용 역량 강화

○ ('16.8.) 아프리카 6개국 **선도교원 3차 초청연수**

○ ('16.10.) **우간다** Nsangi 중등학교 사업 참여의향서 체결

○ ('17.7.) **나미비아, 말라위** 신규교류협력국 현지 타당성 조사

○ ('17.9.) 우간다 **현지 시범연수** 추진

○ ('17.11.~12.) 아프리카 8개국 **선도교원 4차 초청연수** 실시

□ 지원 체계

구분	지원 내용
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사업 총괄 및 관리, 외교 관계 조율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사업 실행계획서 수립 및 추진 ▪ 교원의 ICT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 지원 국가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분석 ▪ 신규 교류협력국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 추진방향 협의
민간기업	▪ 솔라스쿨 제작, 설치 및 사용법 현지 연수

□ 솔라스쿨 구축 예시

○ 구성 : 컨테이너 박스, 태양광 발전시설, 전자칠판, 노트북, IT 기기 등

Solar Panel

자체 태양광 발전시설

첨단 디지털 IT 기기

○ 연수 및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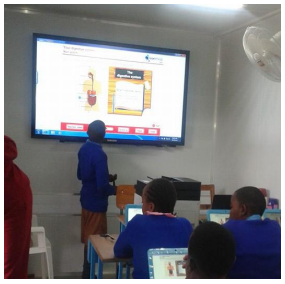

솔라스쿨 활용 연수

동료교원 전달 연수

솔라스쿨 활용 수업

□ 기대 효과

○ 아프리카 내 전력 부족으로 인한 **교육 환경 및 학교 시설 부족 문제 해소**

○ 아프리카지역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및 정보접근성 확대**로 교원의 ICT 역량강화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붙임6 개발도상국 교육정책가 및 초중등학생 이러닝 역량 강화

□ [APEC 이러닝 연수] 연도별 수료생 현황

구분	'06-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인도네시아	92	4	3	5	5	6	6	5	126
중국	87	4	2	5	3	3	3	-	107
태국	64	7	6	4	5	5	4	5	100
필리핀	64	2	-	5	2	5	5	3	86
베트남	43	3	7	3	7	5	5	7	80
말레이시아	37	5	5	4	6	5	4	5	71
러시아	45	5	2	3	2	3	1	3	64
브루나이	23	2	5	4	5	2	2	-	43
칠레	23	-	1	3	1	-	2	3	33
멕시코	20	1	1	4	1	-	2	4	33
페루	12	4	4	2	1	3	5	1	32
파푸아뉴기니	6	-	-	-	2	1	2	1	12
합계	516	37	36	42	40	38	41	37	787

□ [APEC 이러닝 연수] 수료생 세부현황

구분 / 국명	성별		학력				직업별				총원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정책가	교사	연구원	교수등	
인도네시아	74	52	16	61	49	-	81	28	3	14	126
중국	47	60	20	48	35	4	39	33	28	7	107
태국	48	52	39	44	17	-	58	14	21	7	100
필리핀	39	47	19	46	14	7	68	3	10	5	86
베트남	38	42	18	29	33	-	38	25	7	10	80
말레이시아	41	30	8	47	16	-	70	-	1	-	71
러시아	24	40	16	26	22	-	19	16	16	13	64
브루나이	22	21	6	18	18	1	39	3	-	1	43
칠레	12	21	2	16	15	-	12	21	-	-	33
멕시코	18	15	9	14	8	2	23	7	-	3	33
페루	13	19	4	18	10	-	26	4	2	-	32
파푸아뉴기니	8	4	-	4	8	-	9	2	1	-	12
합계	384	403	157	371	245	14	482	156	89	60	787

□ [e-ICON 세계대회] 연도별 참가자 현황: 총 22개국 645명

회차 / 국명	제1회 (2011)		제2회 (2012)		제3회 (2013)		제4회 (2014)		제5회 (2015)		제6회 (2016)		제7회 (2017)		합계
	교사/기업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생	
아제르바이젠	-	-	-	-	-	-	1	2	-	-	-	-	-	-	3
브루나이	4	2	-	-	-	-	-	-	-	-	-	-	-	-	6
캄보디아	3	2	-	4	-	4	1	1	-	-	-	-	-	-	15
콜롬비아	-	-	-	4	-	-	-	-	-	-	-	-	-	-	4
중국	4	2	-	4	1	2	1	2	4	8	2	4	-	-	34
영국	-	-	-	-	-	-	-	-	-	-	-	-	1	2	3
인도네시아	3	2	1	6	-	-	1	2	-	-	-	-	1	2	18
일본	-	-	-	4	-	2	1	2	2	8	2	6	2	4	33
말레이시아	3	2	1	2	1	6	1	2	2	4	3	6	2	4	39
멕시코	3	2	-	-	-	-	-	-	-	-	-	-	1	2	8
모로코	-	-	-	-	-	-	-	-	-	-	-	-	1	2	3
몽골	-	-	-	-	-	-	-	-	-	-	-	-	1	2	3
뉴질랜드	-	-	-	-	-	-	-	-	-	-	-	-	1	2	3
페루	4	2	-	-	-	-	-	-	-	-	1	2	-	-	9
필리핀	2	2	-	4	1	2	1	2	2	4	2	4	2	4	32
러시아(사하)	7	4	-	4	1	2	-	-	-	-	-	-	-	-	18
싱가포르	4	2	-	-	1	2	-	-	-	-	-	-	-	-	9
태국	3	2	2	6	1	4	1	2	-	-	2	4	2	4	33
대만	3	2	-	-	-	-	-	-	-	-	-	-	2	4	11
미국	-	-	-	-	-	-	-	-	-	-	-	-	1	2	3
베트남	3	2	-	4	1	2	1	2	-	-	2	4	2	4	27
한국	43	28	10	40	13	26	9	18	12	24	17	34	19	38	331
합계	89	56	14	82	20	52	18	35	22	48	31	64	38	76	645

붙임7 아세안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 멤버십 현황

□ ACU 프로젝트 참여국(아세안 9개국 참여) 및 회원대학(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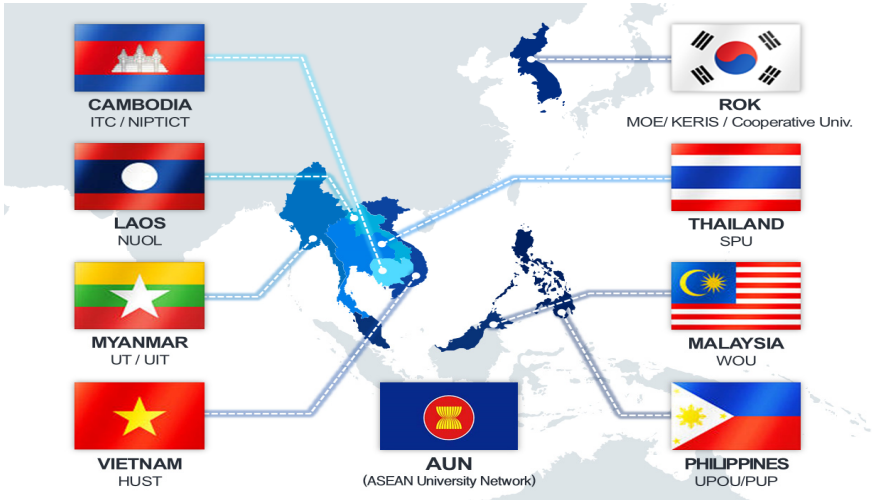

※ 아세안 2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의 프로젝트 참여 확대(2017.8월)

□ 회원대학(Member University)

○ 초기 회원국(CLMV)의 6개교

○ 예산 지원을 받아 콘텐츠 개발, 연수 참여, 교육과정(학점/비학점) 운영

※ (예외) 태국의 SPU의 경우 ODA 지침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1주기 사업 기간(2013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대학으로 가입을 승인 받음

국 가	대학(기관)
캄보디아	캄보디아공과대학교 (ITC: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국립우정통신대학교 (NIPTICT: National Institute of Posts Telecommunications and ICT)
라오스	라오스국립대학교 (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미얀마	기술대학교 (UT: University of Technology)
	컴퓨터대학교 (UI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교 (HUST: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태 국	쓰리파툼대학교 (SPU: Sripatum University)

□ 협력대학 (Cooperative University)

○ CLMV 회원대학과 일대일 매칭을 이룬 국내 4개대학

○ 예산 지원을 받아 각 회원대학의 콘텐츠 개발, 이러닝 전문가 교육,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실시

협력대학(콘소시엄)	지원국가(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건양사이버대학교)	캄보디아(ITC, NIPTICT)
원광디지털대학교	라오스(NUOL)
부산디지털대학교(동서대학교)	미얀마(UT, UIT)
영진사이버대학(영진전문대학)	베트남(HUST)

□ 참여대학 (Participating University)

○ 국내외 대학

○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나 교육과정 운영 및 ACU-OER 등 사업에 참여하여 기관(대학)의 OER 콘텐츠를 아시아 권역 대학들과 공유

국 가	대학(기관)	비 고
말레이시아	와와산 개방대학교 (WOU: Wawasan Open University)	거점대학
필리핀	필리핀 개방대학교(UPOU: University of Philippines Open University)	거점대학
	필리핀 폴리텍대학교(PUP: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태국	람팡대학교(LPRU: Lampang Rajabhat University)	
인도네시아	터부카대학교(UT: Universitas Terbuka)	거점대학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교(UBD: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거점대학

※ 참여대학(기관)은 국내 및 아세안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및 참여 유도

※ 거점대학: 참여대학 중 아세안국가(10개국)의 각 교육부처에서 지정한 1개교를 거점대학으로 정하여 ACU 프로젝트 실무위원회에 참여토록하며 ACU-OER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

□ 국가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현황('12~'17)

구 분	국 가	기 관	콘텐츠 수(종)
CLMV 콘텐츠	캄보디아	ITC	18
		NIPTICT	5
	라오스	NUOL	13
	미얀마	UT	11
		UIT	3
	베트남	HUST	19
공동활용콘텐츠	한 국	ACU 사무국	23
합 계			**92**

□ 2017년 아세안대학 콘텐츠 개발 목록 (총20종)

국가	대학/기관	과정명	분야	유형	교수자	언어
캄보디아	ITC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eory	공학	동영상	REY Sopheak Sok Ratnak	영어, 크메르어
		Soil Mechanics	공학	동영상	Por Sopheap	크메르어
		Environmental Science	과학	동영상	Phoeurn Chan Arun Hang Leakhena	영어
	NIPTICT	Database Management System	IT	동영상	LAY Leangsros LAY Vathna	영어, 크메르어
		Mobile Development on Android	IT	동영상	Porchourng Chuor Keo Saly Chab Siheng	영어, 크메르어
라오스	NUOL	General Accounting	경영	동영상	Thaviphone INTHAKESONE	영어, 라오스어
		Land Use Management	과학	동영상	Khosada VONGSANA	영어, 라오스어
		General Psychology	사회	동영상	Kongsy Chounlamany	영어, 라오스어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T	동영상	Thongsing SIVONGSAY	영어, 라오스어
		Research Methodology	사회	동영상	Lamphong VOLADY	영어, 라오스어
미얀마	UT	Java Programming	IT	동영상	YiYi Hlaing	영어
		Introduction to Digital Image Processing	과학	동영상	Tin Mying Naing Thu Zar Tint	영어
		Engineering Chemistry	공학	동영상	Myat Myat Mon	영어
	UIT	Distributed Programming	IT	동영상	Tin Tin Yee	영어
		Human Computer Interaction	IT	동영상	Swe Zin Hlaing	영어
베트남	HUST	Biomaterials	공학	동영상	TRAN Duc Huy	영어
		Power Supply System	공학	동영상	BACH Quoc Khanh	영어
		Numerical Methods in Chemical Technology	공학	동영상	TRAN Trung Kien	영어
		Fluid Mechanics	공학	동영상	PHAM Van Sang	영어
		Cryptography Theory	IT	동영상	DO Trong Tuan	영어

□ 2017년도 아세안 회원대학 학점과정(109개 과정) 운영 현황

대학	과정명	운영교수	학생수	기간
캄보디아 ITC (23과정)	Image Processing	KONG Phutphalla	53	'16.12.21~'17.02.19
	General Microbiology	TAN Reasmey	77	'17.02.14~'17.07.21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Sophea CHHUN	100	'17.02.14~'17.07.20
	Material Operations	Piseth Seng	41	'17.02.14~'17.07.20
	Intergrate Water Resources Management	Hang Leakhena	103	'17.02.17~'17.07.21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Hean Samboeun	408 (4분반)	'17.02.17~'17.07.20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Sophea CHHUN	254 (3분반)	'17.02.17~'17.07.20
	Theory of Information	Sam Sethserey	35	'17.02.19~'17.07.20
	Automata Theory	Dona Valy	35	'17.02.19~'17.07.21
	Basic of Computer	Try Socheat	107	'17.05.01~'17.09.02
	Basic of Computer	Try Socheat	106	'17.08.01~'17.10.31
	Environmental Geology	PICH Bunchoeun	36	'17.10.02~'18.02.20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Hean Samboeun	54	'17.10.02~'18.02.20
	Food Microbiology	MITH Hasika	43	'17.10.10~'18.02.20
	GeographicInformationSystemandRemoteSensing	[illegible]	105	'17.10.02~'18.02.20
	Topographic Surveying	[illegible]	99	'17.10.13~'18.02.20
	Internal Combustion Engine Theory	REY Sopheak	85	'17.10.23~'18.02.20
	Image Processing	KONG Phutphalla	63	'17.10.27~'18.02.20
캄보디아 NIPTICT (2과정)	Computer Basic Literacy I	Sovannrath Var	21	'16.12.23~'17.09.30
	Khmer Civilization	vasophea	77	'17.03.17~'17.08.03
라오스 NUOL (5과정)	principles of economics	Phinseng Channgakham	53	'16.12.12~'17.03.01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Phonekeo Chanthamaly Khamporn Moonphumy	24	'16.12.28~'17.02.28
	Quality Assurance an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Sayvisene Boulom	39	'17.02.25~'17.03.26
	General Chemistry	Xaya	122 (2분반)	'17.10.16~'18.01.31
	Soci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hosy Chanhming	64	'17.10.23~'18.02.01
	Data Structure	Hnin Aye Thant	159	'16.12.16~'17.05.21

대학	과정명	운영교수	학생수	기간
미얀마 UT (42과정)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	Aye Nandar Hlaing	158	'16.12.16~'17.05.21
	Data Communication & Networking	Kyi Kyi Maw UThet Zaw Aye	18	'16.12.16~'17.05.21
	Complex Analysis & Its Application	Daw Thanda Aung	58	'16.12.18~'17.05.21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Su Su Thein	37	'16.12.18~'17.05.21
	Data Communication & Networking II	Kyi Kyi Maw Aye Su Hlaing	25	'16.12.18~'17.05.2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 II	Naw Naw Tin Win Maw	17	'16.12.18~'17.05.21
	Basics in smartphone game development	Yi Yi Myint	21	'16.12.22~'17.05.21
	e-Learning Basic	U Thet Zaw Aye	13	'16.12.22~'17.05.21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s and Network	Cho Me Me Mg	38	'16.12.22~'17.05.20
	Software Systems Analysis & Design	Renu	2	'16.12.22~'17.05.21
	Software Systems Analysis & Design	Nandar Win Min	2	'16.12.22~'17.05.21
	Artificial Intelligence	Thiri Haymar Kyaw	23	'17.01.12~'17.05.21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 (1ICT-A)	Tin Win Maw	50	'16.12.21~'17.09.29
	Database Analysis and Design (3IS-A)	Nyo Nyo Yee	37	'16.12.21~'17.09.29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 (1ICT-B)	Naw Naw	52	'16.12.21~'17.09.29
	Database Analysis and Design (3IS-B)	Tin Myint Naing	40	'16.12.21~'17.09.29
	Database Analysis and Design (3CE)	Daw Khin Thu Zar	17	'16.12.21~'17.09.29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 (3AME)	Phyu Thwe	40	'16.12.22~'17.09.29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1Pre)	Daw Su Thet Phoo	31	'16.12.22~'17.09.29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1EcE)	Daw Thiri Thu	56	'16.12.22~'17.09.30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1AME)	Su Su Thein	32	'16.12.22~'17.09.29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1ICT-A)	Daw Swe Mar Win	53	'16.12.22~'17.09.29

대학	과정명	운영교수	학생수	기간
	Engineering Physics & Its Application (1ICT-B)	Su Su Thein	52	'16.12.22~'17.09.30
	Data Communication & Networking (3CE)	Aye Su Hlaing	17	'16.12.22~'17.09.30
	Software Systems Analysis & Design (3IS-A)	Nandar Win Min	38	'16.12.22~'17.09.29
	Software Systems Analysis & Design (3IS-B)	Daw Thu Zar New	41	'16.12.22~'17.09.29
	e-Business (5IS-B)	Naw Naw	52	'16.12.22~'17.09.29
	e-Business (5IS-A)	Tin Myint Naing	52	'16.12.22~'17.09.29
	e-Business (5IS-C)	Renu	52	'16.12.22~'17.09.28
	Complex Analysis & Its Application	Daw Thanda Aung	88 (2분반)	'16.12.22~'17.09.29
	Complex Analysis & Its Application	maythaenyi	36	'16.12.22~'17.09.29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tet Ne Oo	14	'16.12.22~'17.05.29
	Artificial Intelligence(4IST-A)	Thiri Haymar Kyaw	43	'17.01.09~'17.10.20
	Artificial Intelligence(4IST-B)	Renu	43	'17.01.09~'17.10.11
	Artificial Intelligence(4CE)	Phyu Phyu Tar	32	'17.01.09~'17.10.18
	Introduction to Fluid Power (4PrE)	Kyi Zar Aung	48	'17.01.12~'17.10.11
	Java Programming (2ICT-B)	Phyu Thwe	55	'17.05.31~'17.08.01
	Operating System (3IST-A)	Aye MonYi	37	'17.05.31~'17.08.01
	Operating System	Myat Mon Kyaw	33 (2분반)	'17.05.31~'17.08.01
미얀마 UIT (1과정)	Mathematics of Computing III	Nyein Thwet Thwet Aung Swe Swe Kyaw	172	'17.05.11~'17.09.01
베트남 HUST (35과정)	Advanced Management	Lê Hiếu Học	110	'16.10.31~'17.01.10
	Java Programming 2016-2017/02_01	Trinh Thanh Trung	68	'17.01.16~'17.07.01
	Distributed System 2016-2017/02	Trần Hải Anh	132	'17.01.17~'17.07.02
	Java Programming 2016-2017/02_02	Vu Thi Huong Giang	45	'17.01.18~'17.07.03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2016-2017/02_01	Trương Thị Diệu Linh	126	'17.01.19~'17.07.04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2016-2017/02_02	Banh Thi Quynh Mai	79	'17.01.20~'17.07.05

대학	과정명	운영교수	학생수	기간
	Tươngtácngườimáy 2016-2017/02_01	Vu Thi Huong Giang	217 (2분반)	'17.01.16-'17.07.01
	Electrical Engineering	Nguyen Nga Viet	94 (2분반)	'17.01.16-'17.07.01
	Introduction to Circuit Theory and Laboratory 2016-2017/02_01	Nguyen Vu Thang	80	'17.01.16-'17.07.01
	Physical Chemistry 2/2016-2017/02_01	Nguyen Van Anh	38	'17.01.16-'17.07.01
	Food Quality Management Systems	Nguyen Thi Thao	112 (2분반)	'17.01.16-'17.07.01
	Physical Chemistry 2 /2016-2017/03_01	Nguyen Van Anh	73	'17.06.19-'17.08.31
	Physical Chemistry 2	Nguyen Van Anh	54	'17.08.21-'17.12.19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017-2018/01_01	Trương Thị Diệu Linh	126	'17.08.28-'17.11.23
	Introduction to ICT 2017-2018/01_01	Nguyen Thi Thu Huong	67	'17.08.19-'17.12.01
	Human-Computer Interaction	Vu Thi Huong Giang	115 (2분반)	'17.08.28-'18.01.02
	Distributed System 2017-2018/01_01	Trần Hải Anh	168	'17.08.28-'17.11.13
	Introduction to Circuit Theory and Laboratory 2017-2018/01_01	Nguyen Vu Thang	120	'17.08.28-'17.12.01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2017-2018/01_01	Banh Thi Quynh Mai	100	'17.08.28-'18.01.01
	Linux and Open Source Software 2017-2018/01_02	Tran Hoang Hai	142	'17.08.28-'17.11.23
	Electrical Engineering	Nguyen Nga Viet	553 (4분반)	'17.08.21-'18.01.01
	Food Quality Management	Nguyen Thi Thao	139 (2분반)	'17.08.28-'18.01.01
	Introduction to Circuit Theory and Laboratory 2017-2018/01_02	Phung Thi Kieu Ha	27	'17.08.28-'17.12.01
	Java Programming 2017-2018/01_01	Vu Thi Huong Giang	81	'17.08.28-'18.01.02
	Java Programming 2017-2018/01_02	Trinh Thanh Trung	145	'17.08.28-'18.01.02
	Java Programming 2017-2018/01_03	Trinh Tuan Dat	146	'17.08.28-'18.01.02
	Mobile Computing 2017-2018/01_01	Tran Hoang Hai	47	'17.08.28-'17.12.31
합계			7,292	

□ 2017년 아세안 회원대학 비학점과정(26개 과정) 운영 현황

대학	과정명	운영교수	학생수	기간
미얀마 UT (10과정)	Korean-Speaking	Soe Soe Khaing	20	'16.12.22-'17.05.21
	Java Programming (2ICT-A)	Hnin Aye Thant	57	'17.05.31-'17.08.01
	Data Structure	Naw Naw	44	'17.05.31-'17.08.01
	Korean-Speaking	Soe Soe Khaing	7	'17.05.31-'17.08.01
	Practical English	Daw Nan Tin Zar Zar Myint	18	'17.05.31-'17.08.01
	Korean-Reading	Soe Soe Khaing	5	'17.05.31-'17.08.01
	Electrochemical Energy Engineering	Khin Mooh Theint	47	'17.05.31-'17.08.01
	Electric Circuit	Htin Kyaw Oo	40	'17.06.01-'17.08.01
	Korean-Listening	Soe Soe Khaing	2	'17.06.01-'17.10.11
	Introduction to Circuit Theory and Laboratory	Daw Thu Zar Naing	13	'17.06.01-'17.10.11
베트남 HUST-CFL (16과정)	Korean-Reading (H1A1605)	Bùi Thị Hà	32	'16.12.21-'17.03.03
	Korean-Reading (H1A1606)	Bùi Thị Hà	21	'16.12.21-'17.03.03
	Korean-Listening (H1A1701)	Bùi Thị Hà	28	'17.01.16-'17.07.01
	Korean-Listening (H1A1702)	Bùi Thị Hà	23	'17.01.16-'17.07.01
	Korean-Reading (H1A1701)	Bùi Thị Hà	27	'17.01.16-'17.07.01
	Korean-Reading (H1A1702)	Bùi Thị Hà	24	'17.01.16-'17.07.01
	Korean-Reading (H1A1704)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31	'17.06.19-'17.12.20
	Korean-Listening (H1A1704)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31	'17.06.19-'17.12.20
	Korean-Reading (H1A1703)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18	'17.06.27-'17.12.28
	Korean-Listening (H1A1703)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17	'17.06.27-'17.12.28
	Korean-Listening (H1A1705)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30	'17.09.05-'17.12.28
	Korean-Reading (H1A1705)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31	'17.09.05-'17.12.28
	Korean-Listening H1A1706)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26	'17.09.05-'17.12.28
	Korean-Reading (H1A1705)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25	'17.09.05-'17.12.28
	Korean-Reading (H2A1702)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29	'17.09.29-'18.01.01
	Korean-Listening (H2A1702)	Bùi Thị Hà Nguyễn Thị Thu Hoài	30	'17.09.29-'18.01.01
합계			676	

[301]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8,376	10,655	1,670	△8,985	△84.3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3 - 4700 ~ 4701 - 301
* 담 당 자 : 평생미래교육국장(최은옥), 이러닝과장(김석), 사무관(황현정)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장(안수경), 교육연구사(강성구)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성인의 생애주기(청년, 장년, 중년, 노년기)에 따른 직업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
사업기간	'18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직접수행(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민간경상보조(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시행주체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국립특수교육원 ○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연구

-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수학) 4종 × 75백만원 = 300백만원

※ 개발수량 : 4종('18, 수학)→4종('19, 수학)→4종('20, 수학)→4종('21, 국어) →4종('22, 국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계획>

구분	'18년 (4종)				'19년 (4종)				'20년 (4종)				'21년 (4종)				'22년 (4종)			
수학교과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국어교과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 교수·학습 콘텐츠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 1건 × 20백만원 = 20백만원

※ 지속적 연구 추진 : 장애학생용 콘텐츠 개발·관리('18)→보급체계('19) →수업모형('20)→수업지원 서비스('21)→활용 생태계 분석('22) 등의 연구

○ 성인 학습자 직업·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 45종 × 30백만원 = 1,350백만원

※ '18년 8개 교육과정(50종 콘텐츠) → '19년 7개 교육과정(45종 콘텐츠), [누적] 15개 교육과정(95종 콘텐츠)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10,655	1,670
▪ 장애학생 교수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320백만원) 교육콘텐츠 4종 개발, 연구 1건	(320백만원) 교육콘텐츠 4종 개발, 연구 1건
▪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교육콘텐츠 50종	(1,350백만원) 교육콘텐츠 45종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420백만원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7,840백만원	-
▪ 대학공개강의 시스템 운영	410백만원	-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0백만원	-

□ 지원 필요성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콘텐츠 개발·연구) 2015 교육과정(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및 연구 필요

○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환경 변화와 일자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경제발전 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직업군별 맞춤형 학습체제 제공과 유연한 평생교육 체제 구축 필요

· (국민) 사회참여 이음을 위한 다양한 직업군별 직업·직무 역량 강화 지향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우리나라 성인(25세 이상 65세 미만)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18개국중 12위 수준(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과 정책', 2016년)

· (사이버대학) 온라인 교육 경험을 활용한 '한국형 단기 직업·직무 교육과정' 선도 모델의 개발 및 교육경쟁력 강화

※ 혁신 고등교육 기관 : 몬드라곤팀아카데미('07년 설립, 스페인), 미네르바스쿨('11년 설립, 미국), 에콜42('13년 설립, 프랑스) 등

· (국가)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과 평생·직업교육 혁신 유도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년·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사회 적응형 교육 기반 조성 필요

※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추이(통계청)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	**10,655**	**1,670**	**△8,985**	**△84**
▪ 장애학생 교수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320** (콘텐츠 4종×75백만, 연구 1건×20백만)	**320** (콘텐츠 4종×75백만, 연구 1건×20백만)	-	-
▪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	**1,500** (30백만×50종)	**1,350** (30백만×45종)	**△150**	**△10**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	**420** (4개국×105백만)	-	**△420**	**△100**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7,840** (1식×7,840백만)	-	**△7,840**	**△100**
▪ 대학공개강의 시스템 운영	-	**410** (1식×410백만)	-	**△410**	**△100**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85** (1식×85백만)	-	**△85**	**△100**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80** (1식×85백만)	-	**△80**	**△100**
□ **비목**(합계)	-	**10,655**	**1,670**	**△8,985**	**△84**
▪ 민간경상보조(320-01)	-	**2,085**	**1,350**	**△735**	**△35**
▪ 일반수용비(210-01)	-	**-**	**5**	**5**	**100**
▪ 일반연구비(260-01)	-	**320**	**315**	**△5**	**△2**
▪ 사업출연금(350-02)	-	**8,250**	**-**	**△8,250**	**△10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2015 교육과정(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및 연구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 일자리 변화 대비 직업군별 다양성 및 사회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인 학습자 맞춤형 직업·직무 역량 강화 지향의 단기 교육과정 및 교육콘텐츠 개발 지향

○ 사회인의 일-학습 병행이 가능토록 ICT 융복합형의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로 구축 및 운영

○ 대응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참여기관간 공동의 목표의식 고취 및 교육책무성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17	0	-			
'18	10,655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420백만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7,840백만원 ○ 대학공개강의시스템(K-OCW) 운영 관리: 410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8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10,655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420백만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7,840백만원 ○ 대학공개강의시스템(K-OCW) 운영 관리: 410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8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
'19	10,655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420백만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7,840백만원 ○ 대학공개강의시스템(K-OCW) 운영 관리: 410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8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 1,500백만원	1,670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1,350백만원	
'20	19,179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80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620백만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15,644백만원 ○ 대학공개강의시스템(K-OCW) 운영 관리: 410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1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9,819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9,499백만원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21	26,179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800백만원 ○ 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확대 620백만원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22,644백만원 ○ 대학공개강의시스템(K-OCW) 운영 관리: 410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8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1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1,500백만원	9,622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9,302백만원	
'22			9,526	○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 320백만원 ○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9,206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500	1,350	△15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27.9	25.1	△2.8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8.6	18.6	0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간접고용효과=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콘텐츠 개발 : 13.5억원 ÷ 0.5378억원* = 25.1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0.5378억원/연 **□ 2018년 고용효과** - 총 27.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기개발 교육과정 운영비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전문상담인력의 고용 증진 및 전문성 향상 필요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 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개인·기업·지역·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러닝 활성화, 이러닝 관련 기술·인력 등의 국외진출 및 국제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추진경위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1232-500)'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추진('14)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1232-500)'사업에서 '미래환경대비 콘텐츠 진흥·육성'으로 사업이전('18)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 신정부 국정과제
  -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8.맞춤형 일자리 지원, 19.일자리 안전망 강화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1.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52.고등교육 질 제고/평생·직업교육 혁신
- 교육부 2018년 업무계획
  - [(도전)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평생직업교육]
    1. 미래 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 직업교육 내실화로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
    3.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교육 수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	-	-	-	-	83.86	-	106.55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낙찰차액 불용 : 16백만원('15)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낙찰차액 불용 : 7백만원('16)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낙찰차액 불용 : 10백만원('17)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8,386	-	10,655	-	10,655	10,655	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운영】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연구 등

사업계획수립 ⇨ 조달의뢰 ⇨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 개발 및 검수 ⇨ 사업완료 보고 ⇨ 현장 보급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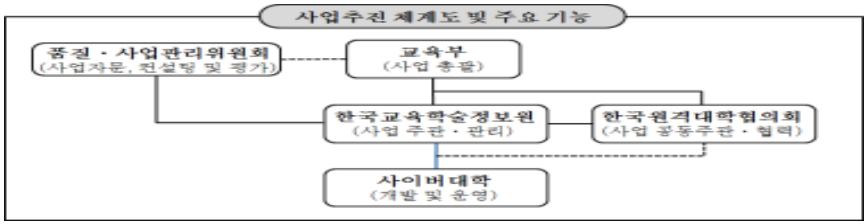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이수자 수	목표	-	-	-	-	6,670	교육콘텐츠 수강 대상 예정 학생수의 80%* 기 운영 강좌의 평균 이수율	대학 및 외부 등 학습자의 교육콘텐츠 이수자수(연간 이수자수)	사 업 수 행 기 관 결과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연구

○ (참고2) 2018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자 선정 현황

참고1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연구

□ (목적)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콘텐츠 개발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및 연구

□ (내용) 2015 교육과정(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및 연구

○ (개발) 순회교육*, 병원학급, 가정 등에서의 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위해 주요 교과별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연차적 개발·보급

* 장애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 가정, 장애인 보호시설, 병원에 있는 장애학생을 교사가 방문하는 교육 형태

** 청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학생 등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

○ (보급)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에듀에이블) 탑재·보급

○ (연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UDL)*가 적용된 콘텐츠의 개발 방향, 보급체계, 수업모형, 수업지원 서비스 등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추진

* UDL(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 특별한 조정이나 수정 없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설계

□ 연차별 개발·연구 계획 및 소요예산

(백만원)

연도	개발·연구 내용	종	소요예산	계
'18년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학 초1-4	4종	300	320
	장애학생 디지털콘텐츠 개발·관리 표준 연구	1건	20	
'19년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학 초5-6, 중1-2	4종	320	720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사회 초1-4	4종	360	
	장애학생 디지털콘텐츠 보급체계 연구	1건	40	
'20년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수학 중3, 고	4종	320	720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사회 초5-6, 중1-2	4종	360	
	장애학생 디지털콘텐츠 수업모형 연구	1건	40	
'21년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사회 중3, 고	4종	360	720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어 초 1-4	4종	320	
	장애학생 디지털콘텐츠 수업지원서비스 연구	1건	40	
'22년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어 초5-6, 중1-2	4종	320	720
	(신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국어 중3, 고	4종	320	
	장애학생 디지털콘텐츠 활용 생태계 분석 연구	2건	80	

참고 2 2018년 성인 학습자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자 선정 현황

개발대학	교육과정/교육콘텐츠 개발 현황				개발비	비고
대학명	교육과정명	교육콘텐츠 개발 종수	주활용 생애주기	개발영역	(천원)	
건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 케어 매니지먼트	6	3	직무전문화	179,640	
경희사이버대학교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다양성 역량 개발 교육과정	6	3	직무전문화	179,640	
고려사이버대학교	SW 코딩 교육 전문가 과정	7	2	취업·전직	209,580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 스마트팜 귀농귀촌과정	6	3	귀농귀촌	179,640	
부산디지털대학교	6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老-老 케어 서비스 전문가 양성'	6	4	사회봉사	179,640	
영진사이버대학교	SMT 산업 교육 과정	6	1	산업체연계	179,640	
원광디지털대학교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시니어요가 교육과정	6	3	직무전문화	179,640	
한양사이버대학교	4C 인재를 육성하는 코딩강사 양성과정	7	2	직무전문화	209,580	
계	8개 교육과정	50			1,497,000	

※ 성인 생애주기 분류 및 사회적 필요 역량 예시(출처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분류 기준		사회적 필요 역량 교육	비고
생애주기	연령대		
생애주기 1기	19세~24세	○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직업 역량** 강화 ○ 생애설계 및 **취업·진로**을 위한 교육	
생애주기 2기	25세~40세	○ 직업 전문성 신장 및 **직무 역량** 강화 ○ **사회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교육	
생애주기 3기	41세~65세	○ 사회 **경력이 바탕된 창업** 지원 교육 ○ **지식 기반 직업의 창출 및 전환** 교육	
생애주기 4기	65세 이후	○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를 위한 교육 ○ 고령화시대 젊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참여**형 교육	

[300] 통계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통계기반 교육정책·연구지원	604	622	614	△8	△1.3

* 사업코드 : 11 - 050 - 053 - 4700 - 4705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통계과장(양창완), 사무관(김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국회 및 시·도 의회 등 내·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통계성 자료 제출·활용 지원을 위한 통계처리 서비스를 구축 ○ 수시로 요구되는 일선학교의 통계성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한 통계성 자료 제공 ○ 교육정보통계자료를 일반 연구자(기관) 등이 활용하기 쉽게 제공하여 교육정책연구·분석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기간	○ '11~ / 계속사업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서비스 이용자 약 410만명(17개 시·도교육청 교직원 약 50만명, 전국대학 교수 및 대학·대학원생 360만명)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비 : 108백만원**

▪ **EDS DB 수집**에 따른 **DB 추출·적재(ETL)** 및 **EDSS 데이터셋 가공**

- **(EDS DB 수집.적재)** 매년(월) 온·오프라인 DB 수집·적재 시 **원천 DB**로부터 **데이터 수집·연계** 후 **가공·분석**이 가능하도록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ODS→DW→DM)에 **적재(ETL)** 및 **모니터링** 작업 수행

  ※ 항목 수: ('16) 57,030항목 → ('17) 59,057항목 → ('18) 61,235항목

- **(EDSS 데이터셋) EDS DW**에서 연구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추출 후 **연구자 맞춤용 데이터셋**으로 **가공**하는 **작업 수행**

  ※ 데이터셋 제공 현황 : ('16) 241건, 10,285항목 → ('17) 169건, 7,419항목 → ('18) 236건, 9,670항목

· 산출내역(인건비) : 중급1명 × 6개월 = 82백만원
※ 2017년 한국SW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2017.9.1.) 적용

▪ 신규 DB 확대, 통계보고서 개발 등 **추가기능 개발**

- **(신규 EDS DB 확대)** 매년 추가되는 신규 EDS DB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신규 테이블 확대**를 위한 **제반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작업 수행**

  ※ 신규DB 추가자료 : ('15) 교육통계하반기→('16) 특수교육통계, 유치원정보공시 및 학업중단위기관리→('17) 나이스 창의적체험활동, 나이스 학비 지원→('18)나이스 및 KEDI 교육통계하반기(신규 조사 항목), 유치원정보공시(항목 추가 탑재),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대학 시설 안전관리 현황, 대학 평가인증 현황 등 총 20종

- **(EDS 보고서 개발)** EDS DW로부터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양식을 **분석·발굴**(시도 TF팀) 후 **작업**(OLAP)을 통해 **정형보고서**를 **개발**

  ※ 연도별 보고서 개발 건수(종) : ('16) 360 → ('17) 430 → ('18) 442

· 산출내역(인건비) : 중급1명 × 1.9개월 = 26백만원
※ 2017년 한국SW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2017.9.1.) 적용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HW 유지보수 관리비 : 335백만원**

▪ 시스템 **개발비용**과 HW · 응용SW **구축비용**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 **(개발비용 유지관리)** '11~'17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개발비용**(2,770백만원)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 산출내역 : 개발비용(2,770백만원)×유지관리비율(9.2%) = 255백만원

※ SW사업 대가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 : 10～15%

- **(구축비용 유지관리비)** '11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HW(593백만원) 및 시스템SW(382백만원) **국축비용**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비**

· 산출내역 : [H/W구축비용(593백만원)×유지관리비율(7%)] +[시스템S/W 구축비용(382백만원)×유지관리비율(10%)] = 80백만원

※ SW사업 대가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 : 10～15%

○ **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비 : 146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서버 침해 등에 대한 보안 강화와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 이상 현상 발생 등에 대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관리·운영**

· 산출내역 : 중급 1명 × 12개월 = 146백만원 ※ 2017년 한국SW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2017.9.1.) 적용

○ **EDS 연수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비 : 25백만원**

▪ EDS 및 EDSS 사용자 맞춤형 연수 및 홍보 활동 사례집 발간, 홍보자료 배포비, 원활한 데이터 제공을 위한 SW(SPSS) 구매

- **(연수)** EDS(EDSS)는 정보시스템으로 매년 **EDS 활용 및 통계처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 대상 **수준별 맞춤 연수** 시행

※ 연수현황 : ('16)37회 1,394명 → ('17)25회 778명→ ('18) 39회 1,042명

- **(홍보)** EDS(EDSS) 사례집 발간을 통해 활용을 활성화하고, 홍보용 리플릿 제작·배포를 통해 사용자 서비스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매뉴얼/리플릿 배포현황 : ('16) 1,550/21,200부 →('17) 1,550/21,200부 →('18)1,900/8,500부

- **(SPSS*)** 연구자용 데이터셋 가공 시 엑셀 사용으로 작업기간이 **과다소요**(평균 2-3주)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층화추출, 대용량 데이터 가공** 및 **샘플링**이 **가능**한 SPSS S/W 구매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집계 등을 위한 통계분석도구

· 산출내역 : 25백만원 - EDS 시.도교육청 사용자 연수 : 1백만원 × 10회 = 10백만원 - 매뉴얼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 2.5백만원 × 2종 = 5백만원 - SW(SPSS) 구매 : 10백만원 × 1식 = 10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 지원**	622	614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확대 개발 및 기능개선	○ **(108백만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확대 개발 - (EDS) 자료 적재를 위한 DB 추가 개발 : 64백만원 - (EDSS) 교육정보통계 원스톱 지원을 위한 EDSS DB 추가 개발 및 기능개선 : 44백만원	○ **(108백만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확대 개발 - (EDS) 자료 적재를 위한 DB 추가 개발 : 82백만원 - (EDSS) 교육정보통계 원스톱 지원을 위한 EDSS DB 추가 개발 및 기능개선 : 26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관리	○ **(348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 응용 S/W 유지관리(255백만원) - 시스템 S/W, H/W 유지관리(93백만원)	○ **(335백만원)** 시스템 유지관리 - 응용 S/W 유지관리(255백만원) - 시스템 S/W, H/W 유지관리(8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보안관리 운영	○ **(146백만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 분석	○ **(20백만원)**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사용자 맞춤형 연수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20백만원)	○ **(25백만원)**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사용자 맞춤형 연수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15백만원) - 에듀데이터 가공·제공을 위한 SW구매(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수집·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통한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의 **지속적인 교육통계정보 DB 확대 개발 및 기능개선 필요**

※ 외부 요청 통계공문 작성에 대한 학교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보·통계를 연계·제공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을 구축('12.4)하여 운영

※ EDS 활용한 통계 제공률 : ('16년)42.1% → ('17.)43.9% → ('18)46.0%

○ **교육정보통계의 개방·공유 확대 필요**

-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는 교육정보통계를 일반연구자 등에 원스톱 제공하여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 개발 촉진

*교육관련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 오픈 : '12.4월

※ 제공건수 : ('16년)241건, 10,285항목 → ('17)169건, 7,419항목 → ('18)236건, 9,670항목

※ 다운로드 건수 : ('16)1,204건 → ('17)1,391건 → ('18) 3,379건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 지원	**604**	**622**	**614**	**△8**	**△1.3**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확대 개발 및 기능 개선	**108** (고급2명x2월+ 중급1명x2.5월+ 초급1명x1.1월)	**108** (고급2명x2월+ 중급1명x2.5월+ 초급1명x1.1월)	**108** (중급1명x6월+ 중급1명x1.9월)	-	-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관리	**330** (2,367백만x10%+ 593백만x 8%+ 382백만x12%)	**348** (2,550백만x10%+ 593백만x 8%+ 382백만x12%)	**335** (2,770백만x9.2%+ 593백만x 7%+ 382백만x10%)	△13	△3.7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보안관리 운영	**146** (중급1명x12월)	**146** (중급1명x12월)	**146** (중급1명x12월)	-	-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 분석	**20** (홍보자료 4종x5백만)	**20** (홍보자료 4종x5백만)	**25** (자료 5종x5백만)	5	25
□ 비목(합계)	**604**	**622**	**614**	**△8**	**△1.3**
○사업출연금(350-02)	604	622	614	△8	△1.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정책입안자, 연구자 등 서비스 **수요자 요구 분석에 기반**을 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행, 객관적인 서비스 운영 성과 제시 등

○ 교육정보·통계간 연계를 통해 학교현장의 자료작성 및 입력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 **개방·공유**용 **에듀데이터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교육관련 데이터에 대한 연구자 제공 체제(EDSS)를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촉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04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0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3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
'18	622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0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622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0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
'19	557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확대개발 및 기능개선 : 43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614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0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35백만원	57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B-A)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5백만원	
'20	1,003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3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7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71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40백만원 ■ 에듀데이터 활용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 292백만원	632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1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371
'21	1,003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3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70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71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40백만원 ■ 에듀데이터 활용 통계분석 시스템 개발 : 292백만원	651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37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352
'22			671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운영 및 확대 개발 : 157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보수 : 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운영 : 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 : 20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18.2		1.9%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622	614	△8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6	6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확대 개발 등에 필요한 SW 기술자에 대한 직접 투입 인력비(M/M) 및 인건비 외 위탁운영에 따른 1인 고용 평균지출액으로 간접 고용효과 산출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5.8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SW 기술자 인건비에 의해 산출(254백만원) : 2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4억원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연구개발'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3.4억원 ÷ 0.89억원 = 3.8명) **□ 2018년 고용효과: 5.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교육부장관이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할 수 있음 명시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행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명시

○ 추진경위

- 정보기반의 인재정책 지원 서비스(안) 및 기본계획 수립 : '10. 6 / '11. 4
- EDS 및 EDSS 시스템 서비스 개통 : '12. 4
- EDSS 공개용 에듀데이터 신규 개발 및 제공(9종) : '14. 10
- EDS 보고서 신규 확대 개발 및 제공 : '14. ~ '18.

※ 연도별 보고서 개발 건수(종) : ('15) 311 → ('16) 360 → ('17) 430 → ('18) 490(예정)

- 에듀파인 운영 인프라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4.11~ '15.11
- 국정감사용 보고서 업데이트(24종) 및 신규 보고서 추가(6종) : '15. 8
- 하반기 학교교육통계조사 자료 신규 적재 : '15. 12
- EDSS 공개용 에듀데이터 추가 확대 제공(12종) : '16. 10
- 특수교육통계, 유치원정보공시 DB 및 학업중단위기관리자료 신규 적재: '16. 12
- 新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16.5~'17.4
-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 : '17. 10
- 나이스 창의적체험활동, 나이스 학비 지원 자료 신규 적재 : '17. 12
- 2018년 교육정보통계시스템(차세대 구축 포함) 운영 기본계획 : '18.1.
- 나이스 및 KEDI 교육통계하반기(신규 항목) 자료 적재 : '18. 8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통계기반교육정책 연구지원	9.73	-	7.48	7.11	-	6.04	-	6.22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48 (7.48)**	( )	( )	**7.48** (7.48)	**7.48 (7.47)**	( )	0 (0.01)
'16년	**7.11 (7.11)**	( )	( )	**7.11** (7.11)	**7.11 (6.76)**	( )	(0.35)
'17년	**6.04 (6.04)**	( )	( )	6.04 (6.04)	**6.04 (6.02)**	( )	(0.02)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04	604	622		622	622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없음

○ 집행현황(2018년 12월 기준)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DB 확대 구축 및 기능개선(10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유지관리(348백만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서버백업,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운영(146백만원)
- EDS 및 에듀데이터 활용·분석(20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 이용자가 소장한 통계 및 조사 자료를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저장, 분석(기초분석, 상관분석, 시계열 분석 등)할 수 있는 온라인 통계분석 툴 제공
-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 : 통계청 41종 및 통계 작성기관 39종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다양한 자료 제공 채널(이용센터 방문, 이용자 직접 추출·가공, 주문형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
- **(국외)**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 국가 단위의 교육성취도 데이터에 대해 자료 접근, 비교분석, 자율적 분석(테이블 및 그래프 생성, 가설 검증 및 추세 분석 기능 등) 기능을 제공하며, '중등과정이후(postsecondary)' 데이터 통계 분석 툴인 DAS 등 다양한 통계분석 툴 제공

(6) 사업추진절차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교육부 → KERIS)	-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제시 - 추진현황 분석 및 세부계획 수립
↓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지원 시행계획 작성 및 제출(KERIS → 교육부)	- 사업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사업수행 통장개설 및 실행예산 편성
↓	
사업 시행계획 검토(교육부)	- 세부 시행계획 및 일정, 실행예산 검토
↓	
사업 시행계획 확정 및 출연금 교부(교육부 → KERIS)	- 시행계획에 대한 확정 통보 - 예산 교부
↓	
사업 수행(KERIS)	- 시행계획에 따른 인재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 보고(KERIS → 교육부)	- 통계기반 교육정책 연구지원 사업수행 결과물보고 - 예산 집행결과 보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계성 자료 제공률(%)	목표	39.7	41.7	43.7	45.7	46.7	교육정보통계 관련 시스템을 통한 통계성 자료 제공 촉진을 위해 전년실적 대비 1% 상향 설정	(교원의 통계성 공문처리(경감)건수/전체단위학교 통계성 자료요구건수)x100	중앙 및 시·도교육청, EDS 등 통계콜센터의 자료제공 실적
	실적	39.9	42.1	43.9	46.0	-			
	달성도	100.5	101	100.5	100.6	-			
EDS 서비스 만족도 (점)	목표	-	74.3	75	76	77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1% 상향 설정	EDS 만족도 문항별 점수/문항수	설문링크를 통한 온라인설문조사 실시
	실적	73.6	74.4	75.8	76.8	-			
	달성도	-	100.1	101	101.1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관련 법령 및 관련 통계자료
○ (참고2)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3) 사업 성과 및 현장 변화

참고1 관련 법령 및 통계자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16~'18) 교육정보통계 DB개발 현황

구 분		자료 보유·관리기관	'16		'17		'18.11.	
			종수	항목수	종수	항목수	종수	항목수
초중등교육	나이스('11년~'18년)	KERIS, 교육청	311	18,246	320	18,719	320	18,758
	나이스교육통계('10년~'18년)	KERIS, 교육청	130	7,496	131	7,817	133	8,027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13년~'18년)	KERIS, 교육청	26	3,021	27	3,099	29	3,150
	나이스특수교육통계('16년~'18년)	KERIS, 교육청	43	2,822	47	3,073	47	3,073
	학교정보공시('08년~'18년)	KERIS, 교육청	169	4,922	114	5,050	115	5,072
	에듀파인('09년~'18년)	KERIS, 교육청	148	6,711	156	6,987	158	7,103
	업무관리('11년~'18년)	KERIS, 교육청	4	176	4	176	4	177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 ('09년~'17년)	KEDI	181	3,483	164	3,499	164	3,525
	유·초·중등교육기본통계하반기 ('16년~'17년)	KEDI	-	-	-	-	30	1,225
	특수교육통계('11년~'18년)	특수교육과	-	-	40	400	40	400
	대학수학능력시험('10년~'17년)	KICE	8	564	10	590	12	77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09년~'16년)	KICE	10	335	12	361	12	361
	유치원정보공시('16년~'18년)	KERIS, 교육청	3	60	3	66	5	153
	소계		1,030	47,776	**1,028**	**49,837**	**1,069**	**51,803**
고등교육	고등교육통계('09년~'17년)	KEDI	238	4,190	238	4,190	242	4,273
	취업통계('10년~'17년)	KEDI	3	199	3	199	3	199
	평생통계('09년~'17년)	KEDI	10	183	10	183	10	181
	대학정보공시('09년~'17년)	KCUE	334	4,299	334	4,325	339	4,472
	고등교육재정('09년~'17년)	KFPP	18	113	18	113	18	115
	학자금대출('09년~'15년) 등록금('09년~'17년)	KOSAF	12	210	12	210	12	210
	소계		1,645	56,970	**615**	**9,220**	**624**	**9,450**
합 계			**1,648**	**57,030**	**1,643**	**59,057**	**1,693**	**61,253**

□ 최근 3년간('16~'18) 보고서 개발 현황

구 분	자료 출처	종수		
		'16	'17	'18.10
학교	KEDI고등통계	21	21	21
	KEDI교육통계	21	21	16
	나이스	15	16	21
	나이스교육통계	19	21	5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5	5	7
	나이스특수교육통계	-	7	2
	유치원정보공시	-	1	40
	나이스정보공시	35	39	133
	소계	**116**	**131**	2
교직원	KEDI교육통계	2	2	48
	나이스	35	43	16
	나이스교육통계	15	16	13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12	13	6
	나이스특수교육통계	-	6	8
	나이스정보공시	8	8	93
	소계	**72**	**88**	1
기타	KEDI취업통계	1	1	3
	나이스	2	3	2
	업무관리	2	2	6
	소계	**5**	**6**	7
국정감사	KEDI고등통계	7	7	8
	KEDI교육통계	8	8	7
	나이스	7	7	6
	나이스정보공시	7	7	1
	대학정보공시	1	1	29
	소계	**30**	**30**	1
학생	KEDI교육통계	1	1	29
	나이스	28	29	25
	나이스교육통계	20	26	6
	나이스교육통계하반기	3	4	22
	나이스특수교육통계	-	22	23
	나이스정보공시	23	23	106
	소계	**75**	**105**	1
교육과정	나이스	2	1	2
	나이스특수교육통계	-	2	2
	나이스정보공시	-	2	5
	소계	**2**	**5**	3
재정	나이스정보공시	3	3	49
	에듀파인	40	45	52
	소계	**43**	**48**	2
기관	나이스교육통계	2	2	2
	소계	**2**	**2**	6
평생교육	KEDI평생통계	6	6	2
	나이스	2	2	3
	나이스교육통계	2	2	11
	소계	**10**	**10**	
OECD요구자료	에듀파인	5	5	5
	소계	**5**	**5**	
총계		**360**	**430**	**442**

참고2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에듀데이터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발전방안 모색 >

□ 분기별 협의회 및 SR,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이용자별(관리자/일반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및 반영

구분		요구사항	반영 노력
EDS	관리자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 및 EDS 업무담당자의 웹 관리기능 강화 요구	○**데이터편람의 온라인DB화 및 조회서비스 구축** ○사용자 권한 자동부여프로그램 모니터링 강화 등 신규 관리자 기능 개발
	일반 사용자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장단기적 추세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보고서 개발 요구	○"나이스교육통계" DB를 활용 **시계열 보고서 신규 개발 및 단계적 적용 계획 수립**
EDSS	관리자	○업무 담당자의 웹페이지 관리 기능 추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 보안 강화	○관리자 페이지 내 공개용데이터 파일 업로드 기능 개발로 관리자 편의성 강화 ○개인정보 암호화 알고리즘 변경, 소스 보안 강화를 위한 소스 보기 방지 기능 구현
	일반 사용자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강화 요구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추출·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비전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유용한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전략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빅데이터 기술 시범 적용 및 서비스(정형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확대 개발 및 서비스
로드맵	차세대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2018~2019)	빅데이터 시범 서비스 (2019~2020)	빅데이터 서비스 확대 (2020~ 2021)
실행 과제	·정보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 ·데이터 신뢰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 고도화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연계 확대 ·사용자 중심 지향의 시스템으로의 개편으로 활성화 기반 마련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중앙) ·빅데이터 활용 기술 적용 및 시범 서비스 ·대외기관과의 빅데이터 활용 연계 확대 ·빅데이터 기술 적용을 통한 통계 분석 기능 도입(정형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중앙+시도교육청)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항목 확대 ·빅데이터 서비스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빅데이터 기술 확대 적용(정형데이터+비정형데이터)

참고3 **사업 성과 및 현장 변화**

□ 사업성과

○ 단위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공문 시행 없이 EDS를 통하여 교육통계 자료를 추출·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통계성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 최근 4년간(2015-2018년) EDS를 통한 통계성 자료제공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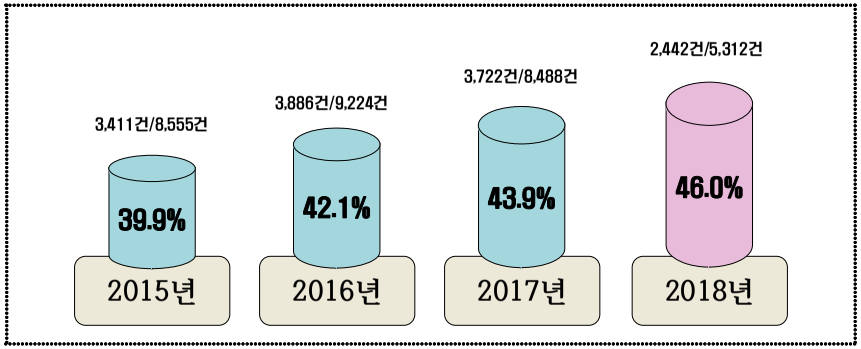

○ 에듀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데이터 제공과 **학술연구 지원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최근 3년간(2016-2018년) EDSS 접속건수 및 만족도 조사결과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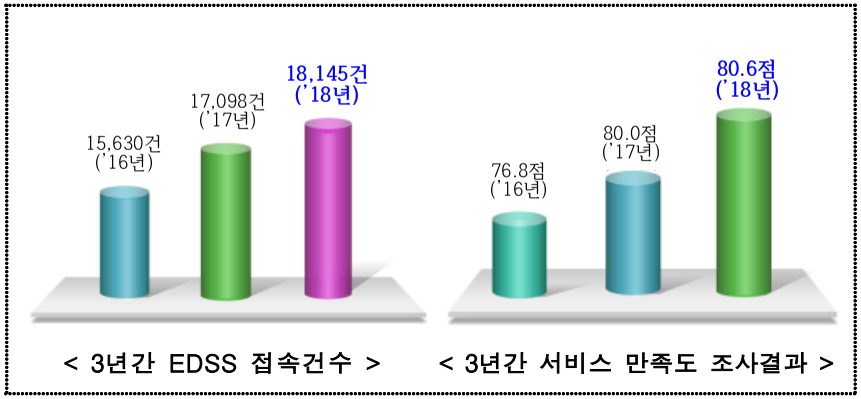

< 3년간 EDSS 접속건수 > < 3년간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

□ 현장의 변화

○ EDSS를 통한 연구/공개용 통계 제공 활성화를 통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학술연구 촉진에 기여**

- 교육은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보수적인 정책결정으로의 흐름이 강하고 변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다.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도 교육기본통계, 학교알리미, 교육부나 통계청, 지자체가 제공하는 자료 일부를 제외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정보공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오픈데이터 정책추진, 비식별 처리를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도 느린 편이었다. 이건 상황에서 EDSS 오픈은 연구자로서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단비와도 같은 서비스라 여겨졌다. (이*용,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를 수행하며 에듀데이터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 수행에 많은 잠재력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참고 가능한 다양한 교육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여지가 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웰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오랫동안 궁금했고 해외의 교육 관련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자 국내의 기존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했으나 적합한 데이터를 찾지 못했는데 에듀데이터를 통해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 의미가 큰 작업이었다. (이*희, Universitat Autonoma deBarcelona 박사과정)

□ 에듀데이터 활용 주요 연구 사례

연구자	연구주제	활용자료
안OO	자율고 유무와 설립유형별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수학 자료 등
	외국인 대학원생 중도탈락 요인의 대학수준 분석	외국인중도탈락학생수 등
	정부장학금의 대학생 중도탈락률 영향	중도탈락율, 정부장학금 지원현황 등
이OO	대학 인증제 시행의 국내 4년제 대학에 미친 영향 분석	교육역량,학생충원율, 인증지표 등
조OO	서울시 방과후 학교의 비용 편익 분석	학업성취도, 월평균 사교육비 등
김OO	대학생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주는 대학기관 수준 요인 탐색	전임교원1인당 연구비 및 학생수, 취업률, 학교특성 등

[301]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사업	3,395	3,503	3,094	△409	△11.7

* 사업코드 : 050 - 11 - 050 - 053 - 4700 ~ 4705 - 301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통계과장(양창완), 사무관(이호형, 신태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및 DB구축,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OECD · UNESCO 교육지표 사업 참여 및 국제비교 교육통계 개발 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의 국가 간 비교 및 국제적 위상의 제고
사업기간	'62~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전국 2만여개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위탁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간접비	-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2,481백만원】

○ **유.초.중등 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을 위한 사업비 : 540백만원**

▪ **유치원의 하반기 조사 전면시행**에 따른 조사지원 인력 충원, 조사담당자 연수 확대 등 **조사운영 비용 현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액

- 하반기 유치원 조사대상 확대 및 장표 추가(항목·코드·지침 포함)에 따른 담당자 연수 확대, 조사범위 및 검증범위 확대, 정보공시 연계검증 등 조사과정 전반에 걸친 추가 작업 소요

※ 유치원 하반기 신규조사(**유아교육법 제6조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3**)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유치원 약 9,000개) 및 항목, 코드, 지침 추가·변경(37건 100여개)

- 신규 조사항목, 근거 법령 및 정책 변경사항 반영 등으로 연간 3~40개의 항목 추가·변경 수요 발생, 이에 대한 교육통계연보 반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소요

* 항목 변경사항 → 교육통계DB 변경 → 연보DB 변경 → 연보프로그램 변경 및 유지보수 수행

▪ 산출내역

- 조사준비(연수, 지침 포함) 및 자료수합, 검증 : **212백만원**
- 자료검증 및 분석, 자료집 발간 : **178백만원**
- 유·초·중등 통계연보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개선 : **150백만원**

○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분석을 위한 사업비 : 1,180백만원**

▪ 고등교육통계에 대한 활용도 증대, 조사담당자에 대한 연수강화, 자료집 발간 및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

- 신규담당자 변경(연 30~40%) 및 대학내 담당자 세분화(총괄담당자→총괄, 인사, 학사담당자 등)로 인한 **연수 방법 및 내용 체계화 절실, '18년 비전임교원 조사대상 확대**로 인한 조사 및 검증 비용 증가

※ 연수 및 관리 대상 확대 : 기존 2,500여명 ⇒ 약 4,000여명 규모로 확대
※ (연수방법) 집체 및 실습연수 ⇒ 집체 및 담당자 맞춤형 심화연수
(매뉴얼) 단일 지침서 ⇒ 분야별 지침서 및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18년부터 퇴직 비전임교원 대상 조사 확대에 따른 항목별 검증 범위 증가

- 고등교육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증 및 각종 자료집 발간

※ '17년 연간 검증건수 : 총 28,998건 (상반기 13,075건 → 하반기 15,923건)

- **통계청 표준교육분류(영역) 사용 의무**에 따른 **학과분류의 운영 및 관리 전문화**

※ 「통계법」제22조에 따라 '18년 통계청 표준학과분류(영역)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17년 시스템을 개편하였고 '18년부터 해당 분류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 필요

-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자료 검증** 및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공시 자료 연계를 위해 시스템 변경 기준 적용**

※ '17년 시스템을 통한 검증항목 확대 : 총 1,219건(상반기 583개, 하반기 636건)으로 **전년대비 30%이상 확대**
※ 변경 기준 적용 공시 항목 : ('17년) 2건 → ('18년) 3건 → ('19년 예정) 5건
('17년 정보공시 자료연계 : 1회, 29개 테이블, 약 250,000여건 실시)

▪ 산출내역

- 조사준비(연수, 지침 포함) 및 자료수합 : **361백만원**
- 자료검증 및 분석, 자료집 발간 등 : **357백만원**
- 국가표준 학과분류 관리 및 운영 : **111백만원**
- 고등교육통계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 **351백만원**
  · 고등교육통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 117백만원
  · 조사 및 연계·검증 프로그램 개선 : 234백만원

○ **교육통계 DB 제공 및 분석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 : 761백만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 등 장비 **유지보수**, 교육통계 **홈페이지 개선·유지보수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 신규 전산장비 추가로 인한 전산인프라 유지보수비 증액

※ 18년 64건(379백만원)→19년 68건(440백만원), 61백만원 증가

▪ 산출내역

-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 **440백만원**

- 교육통계 서비스 콜센터 및 시스템 운영 : **221백만원**
- 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유지보수 : **100백만원**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 613백만원】

○ **OECD 국제교육지표 사업비 : 563백만원**

▪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은 매년 **주요 국정과제 및 각종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생산 및 제공 지원** 필요성 증대

- OECD는 각 국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해 **정기 및 수시조사 증가와 조사 항목 및 대상 확대** 추진

※ OECD에 관한 협약(1996. 12. 18, 조약 제1358호)에 따라 한국의 의무사항임

-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국제교육지표는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며, **OECD**에서는 **교원관련 국제교육지표 신규개발** 추진

※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국정과제 5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 OECD는 구분별교원, 지역별교원, 교원자격·연수, 교원탈락률, 관리직 등 개발중

- **교육단계별 공교육기관 재정규모 및 재정지원 시스템** 관련 자료의 **신뢰도 및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수 실시

※ 교육재정현황 파악 및 검토 필요(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산출내역

-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및 UIS 통계협력 : **435백만원**
  · OECD 교육지표사업 추진(조사, 검증, 관리) : 351백만원

※ OECD 정기 및 수시조사는 매년 지속적 확대('15년대비 100% 증가)
('15년) 12건 → ('16년) 16건 → ('17년) 16건 → ('18년) 24건

※ UN과 OECD 협약에 따라 SDG4 지표 정기 모니터링 횟수 추가예정
('17년 1회(상반기) → '18년 2회(상·하반기))

  · UNESCO 통계지원 : 84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 : **58백만원**(3.6백만원 × 4기구* × 2명 × 2회)

※ 참여사업 : 기존 OECD 3개 기구(WP, NESLI, LSO)에서 1개 기구(UNESCO SDG4 TCG 회의) 추가

- 교육경쟁력 및 대학평가 분석 : **20백만원**

-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대학 연수 실시 : 50백만원**(신규)

※ **국·공립 고등교육기관**(회계담당자 **약300여명**) 대상으로 **별도 연수 없이 조사**되고 있어 **기관별 제출자료의 오류검증으로 인한 업무 가중 및 담당자 부담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로, **정확한 조사지침 전달 및 현장 연수** 필요

○ **국제부담금 : 50백만원**

▪ 산출내역

- OECD 국제분담금 : 16.7백만원×3기구**=50백만원***

* 41,000유로x1,323.96원(2018.3.22기준)/유로 = 54,282,360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3,503	3,094
■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	· 유초중등통계조사 524백만원 · 고등통계조사 1,726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 서비스 운영 700백만원	· 유초중등통계조사 540백만원 · 고등통계조사 1,180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 서비스 운영 761백만원
■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503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563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교육기본통계조사 · 분석】

○ 교육기본통계조사 · 관리 사업은 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통계정보를 생성.제공하는 기초 인프라 사업으로, **교육기본법(제26조의3), 유아교육법(제6조의2),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2), 고등교육법(11조의3) 등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통계작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임

※ 교육통계조사 관련 법률 : 2017.3.21. 공포, 6.22시행

- 교육환경 및 인재양성 전반에 대한 국가수준의 기본 통계조사로써, 교육 관련 정책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통계를 제공

- 최근 통계청의 관리.감독이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준수 의무 또한 강화됨

○ **고등교육통계 조사체계 변경 및 수요 대처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대학정보공시, 대학평가, 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 고등통계 데이터에 대한 활용 범위 다양화
- 개별 원자료 단위의 자료조사에 따른 자료 제공 수준 다양화 및 세부 자료의 신뢰도 증가 요구

○ **고등교육통계 개별 원자료 및 시계열 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오류 데이터 최소화를 통해 지식 정보사회 진입의 위해요소 제거로 데이터 품질 제고 필요
-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의 관리 수준 제고 및 차세대 DB로의 발전 기반 마련 필요

○ **공공정보 공개·개방·공유를 위한 맞춤형 교육통계서비스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통계서비스 실현**

- 생산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및 평가, 교육 연구에 필요한 분석 요구 수요 증대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
- 통계 분석 자료집,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 교육, 이슈통계, 정책 분석, 통계브리프 등 각종 분석 자료 제공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 **OECD 교육지표사업 참여 확대에 따른 조사·검증·관리 업무 증가, 국제분담금 증가, UNESCO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 최근 OECD에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한 지표 산출 확대 및 관련 세분화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기 및 수시조사가 증가

* 교원 관련 지표(신규)는 전문계 교원 지표, 관리직 지표, 지역별 세분화 지표, 교원 자격·연수 지표, 교원탈락 지표 등 개발 예정으로 적극적 대응 요구

- OECD가 교육의 세부 분야별 지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의견 개진, 교육의 국제 동향 파악에 기반한 회의 준비가 요구됨

- 모든 학교급의 공교육비 규모, 교육비 지원 체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조사 방법 개선이 시급. 국·공립대학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이해도 제고* 및 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도입이 필수적

* 국·공립 고등교육 기관 회계담당자의 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차 제출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아, 데이터의 신뢰도 및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수가 시급하며, 연수 실시를 위한 인력 충원이 요구됨

【OECD 국제교육통계사업 참여의무】
-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한 협약」('96.12.18 관보, 제1358호)
- 의무 : '98년 OECD 회원국 승격에 따라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의무
- (협약 제3조) 회원국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제2조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가)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기구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
  (나) 계속적인 기초위에서 상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합의된 사업에 참여
  (다)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된 조치를 취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3,395**	**3,503**	**3,094**	**△409**	**△11.7**
■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사업	**2,838** (유초중등통계 374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626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838백만원)	**2,950** (유초중등통계 524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726백만원+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700백만원)	**2,481** (유초중등통계 540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180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761백만원)	△469	△15.9
■ 국제교육지표 참여 사업	**557** (국제교육지표사업 503백만원 + 국제분담금 54백만원)	**553** (국제교육지표사업 503백만원+ 국제분담금 50백만원)	**613** (국제교육지표사업 563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60	10.8
□ 비목(합계)	**3,395**	**3,503**	**3,094**	**△409**	**△11.7**
○ 국제부담금(340-02)	54	50	5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341	3,453	3,044	△409	△11.8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급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재정 등에 관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통계의 종합적 생산·관리 체계 구축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통계자료의 생산·분석·활용, 국제교육통계지표 개발.지원

○ 수요자 맞춤형 교육통계서비스 및 모바일/웹 교육통계서비스 등 교육통계 서비스 개선 및 확대를 통한 통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소통하는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

○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전념여건 마련에 기여

○ 교육통계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효율적인 조사·검증·연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교육통계 정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국가통계로서의 위상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396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838백만원** (유초중등통계 374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626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838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558백만원**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503백만원 + 국제분담금 55백만원)			
'18	3,503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950백만원** (유초중등통계 524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726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700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553백만원**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503백만원 + 국제분담금 50백만원)	3,503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950백만원** (유초중등통계 524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726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700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553백만원 (국제교육지표사업 503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
'19	3,429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876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553백만원**	3,094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481백만원** (유초중등통계 540백만원 + 고등교육통계 1,180백만원 + 교육통계DB 제공 및 분석서비스 761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613백만원** (국제교육지표사업 563백만원 + 국제부담금 50백만원)	△335
'20	6,172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4,803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1,369백만원**	3,494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581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913백만원**	△2,678
'21	6,172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5,003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1,169백만원**	3,494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541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953백만원**	△2,678
'22			3,494	**[교육기본통계조사분석사업] 2,511백만원 [국제교육지표참여사업] 983백만원**	-
연평균 증가율 (%)	16.1		△0.1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2017.3.21., 법률 제14601호)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 유아교육법(2017.12.19., 법률 제15232호)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4
- 초.중등교육법(2017.3.21., 법률 제14603호)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내지 4
- 고등교육법(2017.11.28., 법률 제15038호)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내지 6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60호)
- 「통계법」(2016.12.27., 법률 제14467호)
- 통계청 지정통계 : 승인번호 334001호
- 교육기본통계 조사·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2017.2.2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1996.12.18, 조약 제1358호)
- UIS(유네스코 통계원)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2012.12.12.)

○ 추진경위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 '62년도부터 교육통계연보 등 발간사업 추진
- '62 ~ '91. 12. 31 중앙교육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 조사·분석
- '92 ~ '97. 12. 31 국립교육평가원 조사·분석
- '98. 1. 1 ~ 현재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통계업무 위탁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95년도부터 한국 INES(Indicator of Education Systems) 사업 참여
- '98년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 승격되면서 INES 사업의 참여는 의무사항이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국제교육지표사업 업무 위탁

- '13년부터 UNESCO 통계원의 파트너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
- 국제비교성 확보 및 국내현실 반영 교육지표 제공
- 제70차 유엔총회(' 15.9.)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
- ' 2015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에서 SDG4-교육2030은 7개의 세부지표와 3개의 이행목표 구성
- SDG4-교육2030 전문가협력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참석(' 16~)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33.50	-	35.00	35.25	-	33.96	-	35.03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5.00** **(34.44)**	( )	( )	35.00 (34.44)	**34.91** **(34.39)**	( )	0.09 (0.05)
'16년	**35.25** **(34.69)**	( )	( )	35.25 (34.69)	**35.20** **(34.66)**	( )	0.05 (0.03)
'17년	**33.96** **(33.41)**	( )	( )	33.96 (33.41)	**33.95** **(33.38)**	( )	0.01 (0.03)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396	-	3,503	-	3,503	3,503	10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3,503백만원 집행 완료('18.12월 기준)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 목적·기능 : 통계조사 기획 및 관리, 통계결과 집계·공표·분석서비스, 국제통계참여, 통계조사 인프라 구축 등
- 주요사업 : 교육기본통계조사, 표본조사, 교육통계협력시스템 구축·운영, 학생생활조사, 통계 분석·서비스
- 조사영역 : 학업성취도평가, 유아교육통계, 국제교육통계, 횡단조사, 도서관통계, 고등교육기관통계 등
- 통계 예산('16년) : 약 120백만 달러(약 1,300억원)
- 인력 : 조사설계, 통계분석 및 서비스(약 100명), 조사비정규직(약 1,000명)
- 주요특징 : 통계의 다양성, 인력의 전문성, 질적조사, 종단조사/학교급간 데이터를 연계(예:사회보장번호 등)하여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ESA)
- 목적·기능 : 영국 대학 전체의 고등교육통계조사 및 분석, 서비스, 공시, 관련연구 수행
- 인력('16년) : 106명(정규직)
- 주요 사업 : 국가교육통계조사 및 분석, 연구·사업 등 총괄적 기능 수행
- 통계 예산('16년) : 약 5.7백만파운드(한화 약 100억)

(6)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부) → 민간위탁사업비 신청(한국교육개발원) → 신청서 검토 및 민간위탁사업비 교부(교육부)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한국교육개발원)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통계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5.4	76.4	76.6	77.3	77.4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노후화(5년 경과)에 따른 사용자 불만 가중, 서비스 요구의 양적 증가 및 요구자료 수준의 다양화 등 저해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학교 및 기관단위 데이터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전년대비 상승지표인 77.3으로 설정함	(주문형 교육통계 이용만족도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 교육통계 간행물 이용만족도) / 3	온라인 설문조사
	실적	75.72	76.5	77.2	-	-			
	달성도	100.4	100.1	100.8	-	-			
교육통계 대국민 서비스 제공률 (단위: %)	목표	신규	90.8	94.7	95.3	95.4	요청자료 형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료작성 및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여 '18년 목표치를 전년대비 상승지표인 95.3점으로 설정함	교육통계대국민서비스제공률(%)=(교육통계자료제공건수/교육통계자료요청건수)×100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
	실적	90.3	94.6	95.1	-				
	달성도	-	104.2	100.4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 개요
○ (참고2)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
○ (참고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 (참고4)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2018년)

참고 1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 개요

□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 유·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각급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기본통계 조사 및 DB 구축
○ 교육기본통계DB 구축 및 분석 서비스
-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 학생수, 교원수 등 교육기본통계자료와 학생 1인당 학급수, 교원 확보율 등 주요 지표 자료의 분석 서비스 제공
- 교육통계홈페이지 및 모바일,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
- 정책입안자, 연구자, 일반국민 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 교육기본통계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유·초·중등·고등교육기관, 교육청, 직속기관 등 2만여개 기관
- 조사 기준일 : 매년 4월 1일, 10월 1일
- 조사 내용 : 학교개황, 학생, 교직원, 시설, 재정 등 교육 일반 현황 전수조사
- 조사 체계 및 방법
  · 유·초·중등 : 학교 → 교육청 → KEDI, NEIS 연계 입력
  · 고등교육기관 : 학교 → 조사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입력
- 주요추진일정
  · 상반기 조사지침 연수(3월) → 학교별 상반기 조사(4월) → 자료검증(5월~7월) →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8월) → 하반기 조사지침 연수(9월) → 학교별 하반기조사(10월) → 자료검증(11월) → 교육통계연보 등 자료집 발간(12월)

○ 사업추진체계

□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교육통계자료의 생산·분석, 국제 표준에 맞춰 국내 교육통계 조사대상 확대
  - ▪ OECD INES(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사업, INES 네트워크 사업
- UIS(유네스코 통계원) 교육통계의 한국측 협력기관으로 업무 수행
  - ▪ UIS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UNESCO 교육통계 수집·검증·분석·활용 모니터링 수행
- OECD 등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지표 분석
  - ▪ OECD 교육지표(EAG) 한글 편역본 및 분석자료집 발간, IMD · WEF 경쟁력평가 결과 분석, QS · The Times ·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 결과 분석 등

< OECD 교육통계 조사 >

- 조사 체계 및 방법
  - · 교육통계연구센터 DB자료 추출 및 UOE 장표작성, 제출 (8~11월) : 인구, 입학자수, 학생수 등
  - · 교육재정 조사(8~10월) : 학교 → 교육청 → KEDI(유초중등), 학교 → KEDI(국공립 고등교육기관), 외부기관(사학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KEDI
- 주요 추진일정
  - · OECD UOE 2018 자료요청(7월) → 교육통계센터 DB자료 추출 및 장표작성(8월~11월) → OECD UOE 2018 자료제출(12월) → OECD 산출 지표 등 검증(익년 1월~9월) → 교육지표 결과 발표(익년 9월)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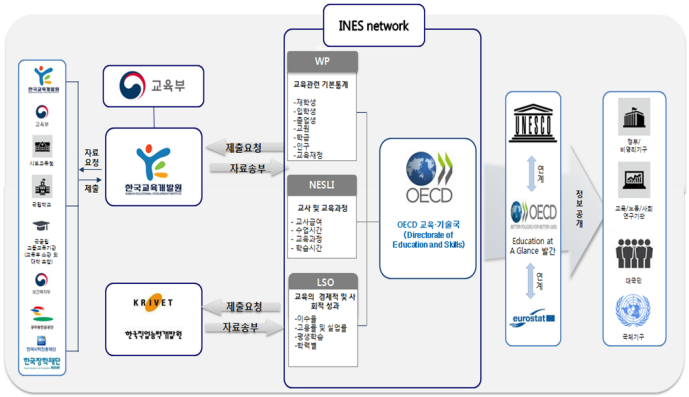

참고 2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

□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2017.6.22. 시행)

구분	법률	시행령
교육기본법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구분	법률	시행령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원·직원 2. 조사대상 유치원의 유아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의4(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제13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법률	시행령
	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하여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감은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4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4(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구분	법률	시행령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제4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 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제4조의5(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구분	법률	시행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11조의3제6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참고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60호)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4,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내지 제4조의6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표"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안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 형식의 (전자)문서 또는 자료 일체를 말한다.
2.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연보 발간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이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수집·관리된 통계자료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란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입력·검증·확정되어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5. "연계기관"이란 교육통계조사를 위해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중등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
   다. 그 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제2장 교육통계조사

제1절 공통사항

제4조(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국제통계

② 교육통계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근거 및 목적
2. 조사기준일 및 조사일정
3. 조사추진체계 및 조사절차
4. 조사내용
5.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 및 발간물
6. 조사결과의 제공 및 서비스
7. 그 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및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연계) 교육부장관은 원활한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연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조사표 등의 관리) 교육부장관은 조사표,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전산기록매체 및 기타 관계 서류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 ①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개별식별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담당자 지원, 교육·연수, 포상) ①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기여한 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절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

제10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내용)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1호의 유치원,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조제2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시·도교육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절 고등교육통계조사

제14조(조사대상의 확정) ①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설치 및 폐지, 통·폐합, 명칭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조사기준일 전까지 조사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내용) 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의 각 호를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제3호의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표일 전까지 최종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 통계

제18조(국제 통계자료 작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제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에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국제 통계자료의 확인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국제 통계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기구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작성된 국제 통계조사 결과를 「통계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조사결과 공개 및 자료제공

제21조(조사결과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신문 · 방송 · 정보통신망 또는 교육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제공) ① 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8항, 「초 · 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8항,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른 국가교육통계센터에 자료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신청을 받은 국가교육통계센터는 자료제공 지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0호, 2018. 6.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4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2018년)

유초중등교육통계

구분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	고등기술학교		
학교수	20,967	9,021	6,064	3,214	23	3	2,358	42	7	175	60
학생수	6,309,723	675,998	2,711,385	1,334,288	4,476	64	1,538,576	9,881	652	25,860	8,543
교원수	496,263	54,892	186,684	109,906	-	5	134,227	-	85	9,250	1,214

주요학제별 현황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18	9,021	675,998	54,892	2018	6,064	2,711,385	186,684	2018	3,214	1,334,288	109,906
2017	9,029	694,631	53,808	2017	6,040	2,674,227	184,358	2017	3,213	1,381,334	109,130

• 고등학교

연도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18	1,556	1,096,331	90,855	157	66,693	7,787	490	252,260	25,619	155	123,292	9,966
2017	1,556	1,193,562	91,064	155	67,960	7,674	491	274,281	25,853	158	133,896	10,163

주 : 1) 학교수는 신설교, 기존교, 휴교 포함(폐교·분교 제외)
2) 교원수는 청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고등교육통계

구분	전체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전문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교수	430	137	9	3	191	10	2	1	1	2
학생수	3,378,393	659,232	28,025	13,310	2,030,033	15,788	16,262	164,325	94	3,470
교원수	90,288	12,584	897	262	66,863	835	354	152	-	147

구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대학원		
	계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계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계	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계	대학원대학	부설대학원
학교수	2	1	1	8	5	3	19	2	17	45{1,153}	45	{1,153}
학생수	2,772	1,822	950	504	246	258	122,346	5,551	116,795	322,232	10,361	311,871
교원수	22	14	8	6	4	2	591	37	554	7,575	1,341	6,234

주 : 1) { } 는 대학부설대학원으로 학교수에 미포함, 기술대학은 전문대학과정 및 대학과정 통합 운영(학교수, 학생수는 대학과정에 포함)

주요학제별 현황

• 일반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2018	191	2,030,033	66,863	2018	10	15,788	835	2018	137	659,232	12,584
2017	189	2,050,619	66,795	2017	10	15,839	841	2017	138	677,721	12,804

주 : 1) 학교수는 신설교, 기존교 포함(폐교 및 캠퍼스 제외, '18년부터 일반대학 학교수에 분교(5개교)가 포함됨)
2) 교원수는 총(학)장 및 전임교원 포함

[교 육 일 반]

[7000] 교육행정지원

(050)교육 - (054)교육일반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7000] 교육행정지원	2163	**124,050**	**128,020**	**3,970**
[7001] 본부 인건비(일반회계)	-	51,634	52,169	535
[7002] 소속기관 인건비(일반회계)	-	14,376	15,225	849
[7011] 본부 기본경비(일반회계)	-	14,938	15,277	339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일반회계)	-	12,570	12,856	286
[7031] 교육행정운영(일반회계)	2164	12,418	15,570	3,152
[300] 교육정책이해도제고	2164	1,419	1,791	372
[301] 교육행정감사지원	2178	900	914	14
[306]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2190	347	347	-
[307]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2205	577	608	31
[310]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	2218	6,057	8,846	2,789
[312]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2235	3,118	3,064	△54
[7034]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일반회계)	2249	18,114	16,923	△1,191
[305]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2249	6,633	6,763	130
[500]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정보화)	2274	2,073	1,835	△238
[50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체계 구축(정보화)	2289	9,408	8,325	△1,768

[300] 교육정책이해도제고(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정책이해도제고	1,092	1,419	1,791	**372**	**26.2**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7000 - 7031 - 300
* 담 당 자 : 대변인(임창빈), 홍보담당관(최성부), 디지털소통팀(정승화), 김관중 사무관, 최경자 사무관, 이주환 사무관, 이용욱 사무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정책의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수요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의 통로 마련
사업기간	'97～계속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정책 정보 제공 및 홍보 : 1,211백만 원

- (기관지 발행 및 관리) '82년 창간 이후 35년 동안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 '교육 월간지' 발행 등 : 572백만 원
  - ▪ 교육 월간지 발행 : 2,500원×17,466부×12개월 = 524백만 원
  - ▪ 교육 월간지 웹진 운영 및 ebook 개편 등 : 36백만 원×1년 = 36백만 원
  - ▪ 교육 월간지 명예기자단 운영 : 6백만 원×2회(상하반기) = 12백만 원
- (매체 활용 홍보) 연두업무보고, 설·추석 등 각 계기별 리플릿, 인포, 영상 등을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로 확산 : 23.3백만 원×20회 = 465백만 원

○ 홍보메시지, 홍보전략 및 실행프로그램 등 개발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 11백만 원 * 1회 = 11백만 원
○ 계기별 집중 홍보 (연두 업무보고, 설, 추석, 연말 등 / 총 4회 내외) = 254백만원
- 홍보 리플릿 제작·배송(10면, 50,000부 기준) : 20백만 원 * 1회 = 20백만 원
- 홍보 인포그래픽 제작 : 15백만 원 * 4회 = 60백만 원
- 홍보 동영상 제작 : 20백만 원 * 4회 = 80백만 원
- KTX 기내 송출 : 22백만 원 * 1회 = 22백만 원
- 서울 지하철 송출 : 22백만 원 * 1회 = 22백만 원
-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송출 : 25백만 원 * 2회 = 50백만원

○ 홍보 콘텐츠 제작, 계기 홍보 외 온-오프라인 유통·확산 : 200백만원
- 온라인 광고/바이럴 : 5백만 원 * 10회 = 50백만 원
- 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15백만 원 * 10회 = 150백만 원

- (맞춤 홍보콘텐츠) 교육정책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국외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 150백만 원

○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 25백만 원 * 4회 = 100백만원
○ 촬영·편집장비 구입비 : 40백만원
- 촬영장비 구입 : 15백만 원 * 1식 = 15백만 원
- 편집장비 구입 : 25백만 원 * 1식 = 25백만 원

○ 편집 프로그램 등 작업 프로그램 구입 : 10백만 원

- (현장 소통 강화) 현장 우수사례 발굴 및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마당 개최 : 24백만 원 ※ 17회×10명×10만 원, 7백만 원×1년

○ 교육정책 소개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온라인 매체 운영 : 56백만 원

- (특별페이지) 업무보고 등 주요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특별페이지(마이크로 홈페이지) 제작 : 17백만 원×1회 = 17백만 원
- (홈페이지 탑재 콘텐츠) 모바일에 최적화된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고 홈페이지 등에 탑재 : 3백만 원×13회 = 39백만 원

○ 모바일용 콘텐츠(홍보 이미지 등) 제작 : 2백만 원 * 14회 = 28백만 원
○ 연두업무계획, 명절, 신학기 등 주요 계기별 인포 : 10백만 원 * 2회 = 20백만 원

○ 뉴미디어 및 SNS 서비스 운영 등 : 460백만 원

- ▪ 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등 8개 채널 운영 및 관리 : 290백만 원×1년
- ▪ 온교육 소통사이트 운영 및 교육정책 콘텐츠 등 제작 : 170백만 원×1회

○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 ▪ 온라인 모니터링 인건비 27백만 원×2명, 연금부담금 10백만 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1,419	1,791
■ 교육정책 정보 제공	(830백만원) 정책설명자료 제작·확산	(1,211백만원) 정책설명자료 제작·확산
■ 온라인 매체 운영	(65백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56백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460백만원) SNS 관리, 운영 등	(460백만원) SNS 관리, 운영 등
■ 온라인 모니터링	(64백만원) 모니터링 인력	(64백만원) 모니터링 인력

□ 지원 필요성

○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핵심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

○ 이를 위해서 **국민이** 교육정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교육부는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 추진을 위해 기존 "소통지원팀"을 **"디지털소통팀"으로 확대·개편**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등의 업무 수행 예정**

* 전문임기제 나급 1명(콘텐츠기획·메시지개발), 다급 2명(영상제작 및 이미지제작)

○ 이전보다 다량의 홍보콘텐츠가 제작될 계획*이나 콘텐츠 자체제작을 활용, 제작비용은 전년대비 **약 1억 5천만원 삭감 추진**

* 18년 이전(월 평균 1.8건) → 19년 이후 (월 평균 3.5건 이상) ※[참고5] 참고

○ 잔여 콘텐츠 제작 예산은 **콘텐츠 제작수요가 집중되는 설, 추석 등 계기 홍보 시 2명의 제작 인력**으로는 해당 제작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보충적으로 외주제작을 활용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을 예방하고자 하는 용도임**

○ 또한, 교육정책의 수혜자에게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적시에 홍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의 확대가 요구됨**

○ 교육부는 **기관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나 **SNS 중심의 홍보**는 **SNS 사용자 및 구독자에 한정된 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대상의** 교육정책 홍보의 한계

○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버스승강장,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 생활 속 밀접한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학교종이, 클래스팅 등 학부모 필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

○ 아울러, 사회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타 사회부처와의 **협업홍보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홍보예산 편성 필요**

→ 이에, **홍보 콘텐츠 송출을 확대***하여 다양한 홍보콘텐츠가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온/오프 홍보 매체 활용, 디지털소통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예산 운영 필요**

*** 송출 확대 계획**

(18년 이전) 평균 매체 송출 **3건 (건당 52백만원)** / 설, 추석, 연말

→ (19년 이후) 평균 송출 **10건 이상 (건당 40백만원)** / 상시홍보

※ [붙임2] 2016년~2018년 집행된 매체 홍보 송출 비용 및 건당 평균 참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1,092**	**1,419**	**1,791**	**372**	**26.2**
▪ 교육정책 정보 제공 및 홍보	**736**	**830**	**1,211**	**381**	**45.9**
- 교육 월간지 발행 및 관리		**296** (별책3,810원×15만부×12월 웹진6백만×1회, 기자단6백만×2회)	**572** (별책2,510원×17만부×12월 웹진6백만×1회, 기자단6백만×2회)	**276**	**93.2**
- 우수시례 홍보 및 정책설명자료		**364** (20.2백만원×18회)	**465** (23.3백만원×20회)	**101**	**27.7**
- 교육현장 맞춤형 콘텐츠 제작		**146** (146백만원×1회)	**150** (콘텐츠 제작 100백만원 장비 구입 : 40백만원, 편집프로그램 구입 : 10백만원)	**4**	**2.7**
- 찾아가는 소통 마당 개최		**24** (현장17회×10명×10만원, 7백만원)	**24** (현장17회×10명×10만원, 7백만원)	**-**	**-**
▪ 온라인 매체 운영	**65**	**65** (17백만원×1회, 12백만원×4종)	**56** (17백만원×1회, 3백만원×13회)	**△9**	**13.8**
▪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238**	**460** (460백만원×1년)	**460** (460백만원×1년)	**-**	**-**
▪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53**	**64** (29백만원×2명, 3백만원×2명)	**64** (27백만원×2명, 5백만원×2명)	**-**	**-**
☐ **비목**(합계)	**1,092**	**1,419**	**1,791**	**372**	**26.2**
○일용임금(110-04)	49	58	54	△4	△6.8
○일반수용비(210-01)	776	1,071	1,373	302	28.1
○일반용역비(210-14)	238	260	290	30	11.5
○국내여비(220-01)	17	17	17	-	-
○사업추진비(240-01)	8	7	7	-	-
○고용부담금(320-09)	4	6	10	4	66.6
○자산취득비(430-01)			40	40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부 주요 정책의 계획 및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제고**

○ 시대의 요구 및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홍보매체**(SNS, 홈페이지, 옥외광고 등)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131	■교육정책 정보 제공 : 742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 260백만원			
'18	1,419	■교육정책 정보 제공 : 830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460백만원	1,419	■교육정책 정보 제공 : 830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460백만원	
'19	1,042	■교육정책 정보 제공 : 546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 260백만원	1,791	■교육정책 정보 제공 : 1,211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56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 460백만원	749
'20	1,876	■교육정책 정보 제공 : 1,287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 460백만원	1,419	■교육정책 정보 제공 : 830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460백만원	△457
'21	1,876	■교육정책 정보 제공 : 1,287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 460백만원	1,419	■교육정책 정보 제공 : 830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460백만원	△457
'22			1,419	■교육정책 정보 제공 : 830백만원 ■온라인매체운영 : 65백만원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 64백만원 ■뉴미디어 서비스 운영 등: 46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2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정홍보업무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24988호)

○ 추진경위

- '97. 3 : 교육현장수범사례발굴·보급으로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 필요
- '98. 3 : 교육개혁과제 중 학벌타파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 분야 수기 공모·배포
- '99. 3 : 교육정책의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교육마당21>로 체제 개편·발행
- '03. 8 : 정보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신문 발간계획 수립(부총리결재)
- '03. 12 : 우리부 특성에 맞는 독립적 인터넷 서비스 실시
- '04. 3 : e-교육소식 뉴스레터 발송
- '05. 1 : 무료신문을 통한 정책 소개 실시(~'10.10)
- '05. 4 :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에 따른 교육정책의 소개기능 강화
- '05. 10 : e-교육소식, 미니홈피, 블로그, 어린이 홈페이지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교육현안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
- '06. 6 : 지하철 TV 활용을 통한 정책 정보 제공
- '07. 5 ~ 12 : 교육현장체험수기 및 교육캠페인 공모사업의 EBS와 공동 주관 추진
- '08. 3 ~ 8 :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출범에 따라 <교육마당 21>을 『꿈나래 21』로 개편
- '09. 1 : 우리부 대표 블로그를 통한 현장체험형 기사 포스팅
- '10. 11 : 교과부 홈페이지 SNS 서비스 구축
- '11. 5 : 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실시
- '12. 2 ~ 12 : 현장소통 프로그램 「필통톡」
- '12. 5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생방송 <학교폭력, 이제 그만!> 방송
- '13. 4 ~ 7 : 현장소통 프로그램 「현문즉답」
- '13. 7 ~ 12 : 건전한 교육관 캠페인 「행복교육」
- '14. 9 ~ : 학교생활 안전캠페인 추진
- '14. 12 : 자유학기제 등 핵심정책 기획 홍보 추진
- '15. 1 ~ 6 : 핵심개혁과제 홍보 콘텐츠 43편 제작 및 확산
- '15. 8 ~ 12 : 교육개혁 6대 과제 로고, 슬로건, 핵심메시지 등 확산
- '15. 12 : 2015년 정책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
- '16. 3 ~ : 정부상징체계 개편 및 교육개혁 성과 확산 홍보(연중)
- '16. 12 : 모바일 최적화 대표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
- '17. 10 : 국정과제 소통페이지(온-교육) 사이트 구축
- '18. 3 :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플랫폼 「교육지원 한눈에」사이트 구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정책이해도 제고	10	10	10	10	10	11	11	1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년) 사업 계약기간('15.3.3.~'16.3.2.)에 따른 잔액 120백만원 이월
○ ('16년) 사업 계약기간('16.3.5.~'17.3.4.)에 따른 잔액 115백만원 이월
○ ('17년) 사업 계약기간('17.3.5.~'18.3.4.)에 따른 잔액 130백만원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9.85 ( )	1.26 ( )	( )	11.11 ( )	9.38 ( )	1.2 ( )	0.53 ( )
'16년	10.36 ( )	1.2 ( )	( )	11.56 ( )	10.03 ( )	1.15 ( )	0.38 ( )
'17년	11.31 ( )	1.15 ( )	( )	12.46 ( )	10.92 ( )	1.3 ( )	0.24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131	1,131	1,419		1,419	1,284	90.4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온라인 종합 홍보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67	68.5	-	-		(온라인 홍보 만족도 종합지수) = (주요 교육정책 인지도+ 온라인 홍보 콘텐츠 만족도 + 온라인 홍보 매체 만족도)/3	웹서베이방식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정량평가)
	실적	-	68.3	-	-	-			
	달성도	-	102%	-	-	-			
온라인 정책 홍보 인지도 (단위: 점)	목표	-	-	신규	65	7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5점을 목표치로 설정	온라인 매체 이용객 1,000여명 대상 정책 인지도 조사	웹서베이방식 (5점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정량평가)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교육부 SNS 운영 현황
○ 기관지 만족도 향상 및 구독자 확대

참고 1 매체 활용 홍보 항목별 단가

□ 매체별 광고 비용 (교육부 정책홍보 지침서* 발췌)

* 2017.12월 제작, 각 매체별 표준단가를 근거로 산출

○ KTX 객실 모니터

- 예산서 기준 단가 : 1개월 / **22백만원**
- 시장 평균 단가('17년.12월 기준)

광고 시간	광고 빈도	평균 단가	비고
15~20초	1편성 당 모니터 수 76대 / 146회 운행	**20백만원**(VAT별도)	1개월 기준 노선 및 기간별 비용 상이
	총 11,096회 송출 / 일		

○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 예산서 기준 단가 : 1개월 / **50백만원** **(일반형, 1달, 20초 기준)**
- 시장 평균 단가('18년.4월 기준)

광고 시간	광고 빈도	평균 단가	비고
15~20초	모니터 수 약 12,000여대	**30백만원**(VAT별도)	지역별 비용 상이
	총 100,000회 송출 / 일	※일반형 기준	

<참고 : 구분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광고비>

구분별 광고비 (월, VAT 별도) ※ 1년 집행 기준	15초		20초	
	100회/일	200회/일	100회/일	200회/일
프리미엄	12,000	18,000	14,000	21,000
일반형	**7,000**	10,500	8,500	13,000

○ 학부모 어플리케이션(클래스팅 앱) 활용 홍보

- 예산서 기준 단가 : 1주일 / **3백만원**
- 시장 평균 단가('18년.3월 기준)

유형	평균 단가	비고
모바일(클래스팅)	6백만(15일 기준)	학급공지, 게시글 안내

○ 공중파 라디오 캠페인 송출

- 예산서 기준 단가 : 10일 / **30백만원** **(2개매체, 1달 기준)**
- 시장 평균 단가('16년도 기준)

송출 매체	평균 단가	송출 기간	비고
KBS, TBS	29백만원	1달	교육개혁 핵심메시지 광고
TBS, TBN	**18백만원**	**2주**	평생교육단과대학 도입취지 광고

○ 극장 스크린 광고

- 예산서 기준 단가 : 1회 / **80백만원** **(롯데시네마, 1년, 30초 기준)**

<참고 : 극장 스크린광고 영화관별 단가표(1년 집행 기준)>

구분	보유 상영관 수	스크린 수	집행횟수	광고비 (원, VAT별도, 30초기준)
CGV Gold	95~105	182	일 5회 이상 (매 상영시 송출)	130백만원
롯데시네마 GREAT 존	96	183		**100백만원**
메가박스 PIB 2	64	224		120백만원

○ 교육부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비

- 예산서 기준 단가 : 2회 / **12백만원**
- 시장 평균 단가('18년.2월 기준)

제작비용	제작기간	제작내용
5.4백만원(VAT별도)	4주	이모티콘 12종 제작

○ 교육부 브랜드 이모티콘 송출비

- 예산서 기준 단가 : 2회 / **60백만원**
- 시장 평균 단가('18년.2월 기준)

광고 시간	집행방법	송출비용
2주	사용자수 대비 송출비 증가	25백만원(VAT별도)
	송출비=(사용자수*단가)	(건당 약1,100원)

□ 별첨 근거 자료

○ 라디오 광고 매체별 단가표

매체 비용 (1회 40초 기준, VAT포함)

매체 \ 시급 (원)	SA	A	B	C
KBS 1R(전국)	–	935,000	–	–
KBS 1R(전국)	–	550,000	–	–
KBS 2FM	–	550,000 (황정민) 440,000 (나머지)	–	–
MBC AM	1,100,000	880,000	770,000	–
MBC FM	990,000 (노홍철)	770,000	715,000	–
SBS FM(러브)	–	605,000	–	–
SBS FM(파워)	990,000 (컬투쇼)	880,000 (김영철, 최화정 컬투쇼 전후, 김창렬, 박소현)	660,000	–
TBS	200,000 (출퇴근)	150,000 (낮, 오후)	130,000 (AM 6시대)	–
CBS	(표준) 440,000 출퇴근	(표준) 440,000 출퇴근	100,000	–
	(음악) 330,000 심야 이외	(음악) 220,000 심야		

• 채널, 노출 시간대, 반복 횟수 등에 따라 상이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기관지 「행복한 교육」 독자 만족도 및 정책이해도 조사 결과상승

○ **(만족도 조사)**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를 통해 독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서비스로 개편하여 4년 연속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만족도 조사 결과 : 2014(79.7점) → 2015(83.2점) → 2016(85.2점) → 2017(86.13점)

만족도 조사 결과 개요

- 조사기간/방법 : 2017.11.29-12.11. (13일간)/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서베이방식
- 참여대상 : 정책 모니터단 및 명예기자 1,002명 중 1,002명 응답(100%참여)
- 조사결과 : 전반적 만족도(86.13점), 코너만족도(89.4~83.7점), 배송서비스(87.6점)
- 전반적 만족도 :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에 응답(93.8%)
- 코너별 '만족' 비율 : 현장 이야기(83.73%) 정보이야기(81.04%) 정책이야기(79.7%) 교양 이야기(77.22%)

○ **(정책이해도 조사)** 신규 구독자 대상으로 한 정책이해도 조사 결과 「행복한 교육」구독 전.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

* 정책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 : 구독 전(51.01점) → 구독 후(77.32점), 28.71점 향상

□ 온·오프라인 발행 및 생활 친근형 홍보를 통한 구독자 확대

○ **(온·오프라인 발행)** 인쇄 간행물 발행으로 50~60대 독자층 유지 및 온라인 매거진(웹진) 운영을 통해 10~40대 독자층 확보

- 온라인 웹진 현행화·민간 잡지 연계를 통해 정기 구독 신청자 확대 및 다운로드·조회수 증가

※ 웹진 연간 누적 방문자 수 : 2016년(125,403명) → 2017년(160,350명) 128% 증가

○ **(생활 밀착형 홍보)** 생활 밀착형 책자 배포* 및 기관지 구독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수요 확대

* KTX(교육열차), 시민단체, 전국교장회 등에 배포

※ 정기구독 신청자 확대(**'15년 2,160명 → '16년 3,370명 → '17년 4,250명**)

□ 현장성 높은 기사 확보를 위한 명예기자단 운영

○ **(명예기자단)** 초중고 교원, 대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발굴

※ 명예기자단 기고 횟수(**2016년 494건 → 2017년 520건, 26건 확대**)

※ 2017년 명예기자단(84명) : 교사(39명), 교육관계자(15명), 일반인(9명), 대학생(11명), 학부모(10명)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정책 인지도 제고

구 분	'16년 실적 ('16.1.1.~12.31.)	'17년 실적 ('17.1.1.~12.31.)
홈페이지	▪ 주요정책 설명 특별페이지 제작(3개)·확산 ※ 2016 국민합동 업무보고, 2016 교육부 업무계획, 누리과정 등 ▪ 홈페이지 내 주요뉴스, 홍보자료실, 소속·산하기관 공지사항 등록 등 622건 탑재	▪ 주요정책 설명 특별페이지 제작(4개)·확산 ※ 2017 교육부 업무계획, 2017 교육예산, 어린이 홈페이지, 온-교육 ▪ 홈페이지 내 주요뉴스, 홍보자료실, 소속·산하기관 공지사항 등록 등 337건 탑재
블로그 기자단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3명** 선발 ▪ 학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사화하여 **328건** 제공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9명** 선발 ▪ 학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사화하여 **217건** 제공
PCRM	▪ '16년 101회 발송, 수신자수(중복포함) : 총 8,014,689명	▪ '17년 115회 발송, 수신자수(중복포함) : 총 6,561,752명
홍보콘텐츠 제작	▪ 인포그래픽(4편), 리플릿(3종), 동영상(27종), 카드뉴스(72종), 웹툰(61종) 등 221종 제작·확산	▪ 영상(22편), SNS Live (19편), 카드뉴스(88종), 웹툰(14편), 이벤트(82편) 등 233종 제작·확산
홍보콘텐츠 확산	▪ **고속버스터미널,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광고**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3회 추진 ▪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교육개혁 핵심메시지 노출(3회)	▪ **고속버스터미널, KTX서울역·오송역, 지하철 광고** 등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홍보 3회 추진 ▪ TV방송(SBS,YTN,TVN)을 통해 교육분야 국정과제 홍보(1회)

□ SNS 채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 **우리부 SNS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부 정책고객 및 소통건수 확대**

< 교육부 SNS 구독자 수 현황 >

구분	구독자(방문자) '16.12.30. 기준	'17.12.30. 기준	'18.05.23. 기준	증감율** (%)	비고
블로그	7,386	15,490	16,033	**3.5%**	
페이스북	**126,952**	**130,265**	**129,887**	**-0.3%**	
트위터	37,695	41,384	41,304	**-0.2%**	
카카오스토리	18,691	20,598	21,693	**5.3%**	'14.06.16 개설
밴드	22,945	37,349	49,574	**32.7%**	'14.12.12 개설
유튜브	4,661	9,164	12,625	**37.8%**	
카카오톡플러스	39,048	36,535	35,685	**-2.3%**	'15.11.19 개설
구독자 합계	257,378	290,785	306,801	**5.5%**	

* 구독자 산정 기준 : 페이스북(좋아요수), 트위터(팔로우수), 카카오스토리(구독자), 밴드(멤버수), 카카오톡플러스(친구수)

** 2017년 대비 2018년 증감율

참고 3 **교육부 SNS 운영 현황**

□ SNS 운영 현황

○ **(채널 현황) 현재 7개 채널에 3십만 여명의 구독자**(방문자)와 **소통 중**

<우리부 SNS 운영 현황 ('18.5.23. 기준)>

종류	주 이용자	구독자수 (명)	운영현황
블로그	10~40대 (남,여)	16,033	▪ 보도자료 배포 동시 실시간 게재 ▪ 주요정책 우수사례·Q&A 소개
페이스북 (전부처 7위)	10~20대 (남,여)	129,887	▪ 최신 트렌드·감성콘텐츠 및 역사교과서,누리과정 등 주요정책을 카드뉴스·웹툰 등 소개
트위터	10~30대(남,여)	41,304	▪ 속보성을 요하는 콘텐츠를 블로그, 페이스북 연동
네이버밴드	40대 (남)	49,574	▪ 중,장년층 대상 공감 콘텐츠, 교육 콘텐츠 제공
카카오스토리	30대 (여)	21,693	▪ 육아, 자녀교육 등 사용자 선호 콘텐츠 제공
카톡플러스	10~20대(남,여)	35,685	▪ 푸쉬 메시지로 주요 정책 관련 콘텐츠 발송
유투브	10~40대 (남,여)	12,625	▪ 자유학기제 등 캠페인 방송 영상 게재 ▪ 장관님 현장방문·인터뷰 영상 등 재편집 소개
총 7종		306,801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페이스북 관리

○ 부총리 현장방문 및 주요행사의 동정자료(사진 등) 게재(좋아요 3,487명, '18.10.29.)

□ 온라인 이슈 파악 및 PCRM 관리

○ 주요 포털 교육관련 온라인동향 분석(17시 기준) 및 일일상황보고

○ 우리부 정책고객(40,701명) 대상 주요정책 홍보 이메일 발송

□ 블로그 기자단 현황

○ **(2018 기자단)** 총 30**명 선발**('18.3~'19.2)

구분	고등학생	대학생	교직원	학부모· 일반(직장인)	합계(명)
기자단 수	3	14	8	5	30

○ **(운영계획)**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범부처 정책기자단*으로 활동

* 문체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기자단(1,000여 명 규모)

[301] 교육행정감사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행정감사지원	709	900	914	**14**	**1.6**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4 - 7000 - 7031

* 담 당 자 : 감사관(김청현), 반부패청렴담당관(엄진섭), 사무관(장형기) / 사학감사담당관(오정민), 사무관(김대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민원상담센터 운영 및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민원상담센터 1개소(상담사 12명) / 회계부문감사 대상 사립대학 33개교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민원상담센터 운영 : 511백만원**

- '19년부터 전문상담원 직접고용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센터 직영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및 운영비

※ 상담사 인건비는 '18년 무기계약직 보수 및 수당 기준으로 7% 증액 반영

- 산출내역

· 상담사 인건비 : 32.583백만원×12명 = 391백만원
· 콜시스템 유지보수 : 0.92백만원×12개월 = 11백만원
· 센터 PC · 서버(30대) 유지보수 : 0.33백만원×12개월 = 4백만원
· 센터 사무용품, 인쇄 등 일반수용비 : 1.25백만원×12개월 = 15백만원
· 공공요금(전화비) : 0.5백만원×12개월 = 6백만원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 0.4백만원×5회 = 2백만원
·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 7.5백만원×2회 = 15백만원
· 상담사 맞춤형복지비 : 0.4백만원×12명 = 5백만원
· 퇴직금 및 4대보험료 : 5.2백만원×12명 = 62백만원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403백만원**

- 전문회계법인을 활용한 행정감사 지원 및 회계지도로 사학재정의 건전성 제고
- 산출내역 : 403백만원(33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행정감사지원	900	914
■ 민원상담센터운영	민간위탁 운영(411백만원) - 용역비 내에서 상담사 인건비 지급	직영 운영(511백만원) - 상담사 직고용 정규직 전환 및 교육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지급 - 센터 운영 용역비 직접 수행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검토	회계검토 대상기관 40교 (489백만원)	회계검토 대상기관 33교로 축소 (40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민원상담센터 운영**) 전문성, 신속성 높은 대국민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콜(Call)민원과 일반민원을 전담 응대하는 전문 상담센터로서 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관운영에 반드시 필요
-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민간위탁직원 포함)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처우가 낮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을 '19년부터 정규직(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 재설계

* 민간위탁 직원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부처합동)」에 따른 3단계('18년 중 별도의 전환기준 마련 · 추진 예정) 전환 대상

** '18년의 경우, 위탁업체 변경 및 예산부족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기지급되던 식비 삭감, 근속수당 등 일부 감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처우 개선 등 인건비 증액 조정 불가피

○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외부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를 통한 사립대학 회계검토(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사 주기 정례화로 사학회계비리 방지 및 재무구조 개선

※ 회계부분감사의 정례화 요구(201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6.2.)

< 세부 내역 >

구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감 (B-A)	%
□ 교육행정감사지원	**709**	**900**	**914**	14	1.6
① 민원상담센터 운영	**380**	**411**	**511**	100	24.3
▪ 민원상담센터 운영	380	411	511	100	24.3
- 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일반용역비)	336 (12월x28백만원)	358 (12월x29.8백만원)	-	△358	△100.0
- 센터 상담사 인건비 (상용임금)	-	-	391 (12명x32.5백만원)	391	순증
- 콜시스템 유지 보수 (일반용역비)	9 (12월x0.76백만원)	9 (12월x0.76백만원)	-	△9	△00.0
- 센터 PC 유지 보수 (일반용역비)	2 (12월x 0.166백만원)	3 (12월x0.25백만원)	-	△3	△100.0
- 콜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용역비)	-	-	11 (12월x0.92백만원)	11	순증
- 센터 PC 유지 보수 (관리용역비)	-	-	4 (12월x0.33백만원)	4	순증
- 민원만족도 조사 용역비 (일반용역비)	-	12 (1식x12백만원)	-	△12	△100.0
-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일반용역비)	15 (1식x15백만원)	13 (1식x13백만원)	15 (2식x7.5백만원)	2	15.4
-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12 (6회x2백만원)	10 (6회x1.66백만원)	15 (12회x1.25백만원)	5	50.0
- 공공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5 (12월x 0.416백만원)	4 (12월x0.33백만원)	6 (12월x0.5백만원)	2	50.0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1 (3회x0.33백만원)	2 (5회x0.4백만원)	2 (5회x0.4백만원)	-	-
- 맞춤형복지비 (복리후생비)	-	-	5 (12명×0.4백만원)	5	순증
- 퇴직금 및 4대보험료 (고용부담금)	-	-	62 (12명x5.2백만원)	62	순증
②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329**	**489**	**403**	△86	△17.6
▪ 회계검토 용역	329	489	403	△86	△17.6
- 회계검토 용역비 (일반연구비)	329 (30교x 0.565백만원x 3.7명x5.24일)	489 (40교x 0.565백만원x 3.7명x5.85일)	403 (33교x 0.565백만원x 3.7명x5.84일)	△86	△17.6
□ 비목(합계)	**709**	**900**	**914**	14	1.6
○ 상용임금(110-03)	-	-	391	391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12	10	15	5	5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	4	6	2	50.0
○ 복리후생비(210-12)	-	-	5	5	순증
○ 일반용역비(210-14)	362	395	15	△380	△96.2
○ 관리용역비(210-15)	-	-	15	15	순증
○ 사업추진비(240-01)	1	2	2	-	-
○ 일반연구비(260-01)	329	489	403	△86	△17.6
○ 고용부담금(320-09)	-	-	62	62	순증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상담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정적 제공 환경 조성

○ 전문상담원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및 부내 실.국 민원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업무 효율화 제고

※ 연도별 자체처리율 : ('14)94.1 → ('15)94.3 → ('16)94.4% → ('17)94.5%

○ 민원.상담 사례분석, 제도개선 의제 발굴 등 정책 지원기능 강화

○ 회계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회계검토 확대 운영을 통해 사학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738	<민원콜센터 운영: 399> ▪ 민원콜센터 위탁용역료: 348 - 콜센터 민간위탁(337) - 콜시스템/pc유지보수(11) ▪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25 ▪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및 콜센터 운영비: 26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339> ▪ 사학회계검토: 339(27개교×0.565백만원×3.7명×6일)			
'18	900	<민원콜센터 운영: 411백만원> ▪ 민원콜센터 위탁용역료: 370 - 콜센터 민간위탁(358) - 콜시스템/pc유지보수(12) ▪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25 ▪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및 콜센터 운영비: 16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89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89백만원(40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900	<민원콜센터 운영: 411> ▪ 민원콜센터 위탁용역료: 370 - 콜센터 민간위탁(358) - 콜시스템/pc유지보수(12) ▪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25 ▪ 질의·회신사례집 제작 및 콜센터 운영비: 16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489> ▪ 사학회계검토: 489백만원(40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680	<민원상담센터 운영: 511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07) ▪ 콜시스템/pc유지보수(13)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3) ▪ 전화친절도 조사 : 16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03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03백만원(33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914	<민원상담센터 운영: 511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58) ▪ 콜시스템/pc유지보수(15)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3) ▪ 전화친절도 조사 : 15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03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03백만원(33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20	1,224	<민원상담센터 운영: 487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35) ▪ 콜시스템/pc유지보수(14)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2) ▪ 전화친절도 조사 : 16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28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28(35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840	<민원상담센터 운영: 513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60) ▪ 콜시스템/pc유지보수(15)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3) ▪ 전화친절도 조사 : 15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327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327(27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21	1,224	<민원상담센터 운영: 518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66) ▪ 콜시스템/pc유지보수(14)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2) ▪ 전화친절도 조사 : 16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52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52(37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840	<민원상담센터 운영: 513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60) ▪ 콜시스템/pc유지보수(15)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3) ▪ 전화친절도 조사 : 15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327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327(27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22	1,040	<민원상담센터 운영: 551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99) ▪ 콜시스템/pc유지보수(14)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2) ▪ 전화친절도 조사 : 16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489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489(40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840	<민원상담센터 운영: 513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460) ▪ 콜시스템/pc유지보수(15) ▪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23) ▪ 전화친절도 조사 : 15 <회계법인 사학회계 검토 327백만원> ▪ 사학회계검토: 327(27개교×0.565백만원×3.7명×5.84일)	
연평균 증가율 (%)	19.4		△6.5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900	914	14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5.7	20.6	4.9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17.4	23.9	6.5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사업지원서비스업(0.2628억원)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20.6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4.07억원 ÷ 0.2628억원 = 15.5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수용비(210-01) 0.15억원 ÷ 0.94억원 = 0.1명 - 공공요금(210-02) 0.06억원 ÷ 5.13억원 = 0.0명 - 일반용역비(210-14) 0.16억원 ÷ 0.39억원 = 0.4명 - 관리용역비(210-15) 0.13억원 ÷ 0.91억원 = 0.1명 - 연구용역비(260-01) 4.03억원 ÷ 0.89억원 = 4.5명 **□ 2018년 고용효과 = 15.7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민간위탁 운영 중인 민원상담센터를 상담사 직접고용을 통해 직영으로 전환				

5. 고려사항

○ 지원근거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부처합동)」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교육부 감사규정 제8조(외부전문가의 참여)

○ 추진경위

<민원상담센터 운영>

-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05. 1)
- 교육민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계획 수립('06. 4)
- 교육민원 콜센터 확대운영('06. 8)
- 시.도교육청 연계 상담네트워크 구축('07. 10)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작성.배포('07. 10 ~ 매년 발간)
- 민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용역계약 체결('05 ~ 매년)
- 민원상담센터 직영 및 상담원 정규직 전환('19~)

<회계법인에 의한 사학회계 검토>

- 대통령 업무보고('03. 4. 9.)
-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제정('03. 11.)_회계검토 실시 근거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규정 제정('12.4.)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교육행정감사지원	7.13		7.38	7.38	-	7.38	-	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5~17년 불용사유 :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및 집행잔액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38 ( )	( )	( )	7.38 ( )	6.97 ( )	0.02 ( )	0.39 ( )
'16년	7.38 ( )	0.02 ( )	( )	7.40 ( )	7.20 ( )	( )	0.20 ( )
'17년	7.38 ( )	( )	( )	7.38 ( )	7.09 ( )	( )	0.29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7예산		'18 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738		900		900	744	82.7

○ 집행현황

■ '18. 1~12월분 민원상담센터 위탁용역비 및 콜시스템 유지보수비, 센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교문위(김한정, 신동근, 유은혜 의원 등)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 촉구

○ 정의당(이정미의원)

- 상담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규직 신속 전환 요구('18.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해당없음)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해당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민원상담센터 민원 자체처리율 (단위:%)	목표	-	-	-	신규	94.7	최근 3년 간('15년 94.3점, '16년 94.4점, '17년 94.5점) 민원상담센터 자체처리율을 고려하여 '19년에는 94.7점으로 목표치로 설정	• 민원상담센터 자체처리 민원/총 접수 민원	CTI 시스템 추출 자료
	실적	-	-	-	신규	-			
	달성도	-	-	-	-	-			
회계검토 만족도 (단위: %)	목표	71	80	81	88	89	기존 3년간('14~'16년) 실적치 평균 79.2점 및 '17년 실적치 86.9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년도 목표치를 89점으로 설정	• '19. 11월 말까지 회계검사 완료 대상 사람(대학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값(5점 척도)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5, 보통50, 만족75,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회계검토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79.1	80.5	86.9	-	-			
	달성도	111.4	114.1	107.2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참고사항

○ (참고2) 사업성과 및 현장의 변화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매년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업체변경 등으로 고용불안 및 처우가 변화됨에 따라 근로환경 불안감 내재

○ 정부콜센터(과천청사) 내 타 부처에 비해 보수와 처우가 낮은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호소

< 예산(안) 반영사항 >

□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처우가 낮은 민원상담센터 상담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예정('19~)

○ 기존 위탁사업비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지출항목인 '상용임금'으로 비목 전환

○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의 예산 반영 ('18) 358백만원→('19) 459백만원

※ 상담원 인건비는 '18년 무기계약직 보수 및 수당 기준 적용액을 기준으로 7% 증액 반영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상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 응대율 및 자체종결률이 연도별로 증가되는 상황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민원 처리에 기여

< 최근 5년간 민원콜센터 민원처리 현황 >

구분	전체 민원건수	전체 처리콜수	1일 평균 인입콜	응대율	고객 만족도	자체 종결률	평균 처리 시간
2013	66,111	61,821	269	99.3%	90.3	93.5%	3분22초
2014	59,312	55,814	240	99.5%	92	94.1%	3분41초
2015	71,243	67,198	285	99.6%	92.6	94.3%	3분41초
2016	77,344	73,017	314	99.6%	92	94.4%	3분45초
2017	83,357	78,810	339	99.6%	88.4	94.5%	4분01초

□ 감사대상기관과 의사소통 강화로 회계부분 감사 만족도 및 감사의 신뢰성 제고

※ 연도별 만족도 실적 :('14) 75.8% → ('15) 79.1% → ('16) 80.5% → ('17) 86.95%

< 현장의 변화 >

□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만족

· "교육부고시를 찾기 위해 민원상담센터에 전화했었는데 상담사분이 차분히 알려주시고, 못 찾았던 내용은 찾은 후에 다시 전화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17. 1. 5. 민원인 양ㅇㅇ)

□ 전문 회계사를 통한 사학 회계검토로 업무개선에 도움

· "단순히 지적하는 감사가 이나라 회계 장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주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16. 4. D대 직원)

· "외부회계 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과정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었고, 감사결과를 좀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16. 7. S대 직원)

[306]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운영사업(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386	347	347	-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기획담당관(김영진), 교육연구사(손성호)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교육정책 의제발굴, 교육정책 정보 공유 및 확산,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
사업기간	'10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개발원
간접비	('18) 52백만원 (15%) → ('19) 52백만원 (15%)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정책의제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16.8백만원**
- 교육정책협의회: 3.9백만원×1회 개최=3.9백만원
-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61백만원×8회 개최=12.88백만원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112.1백만원**
-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 2.84백만원×12회=34.08백만원
-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발간: 0.25백만원×10개국×24회=60백만원
-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 2백만원×7종=14백만원
- 홈페이지 및 교육DB 운영.관리비용: 4백만원×1식=4백만원

○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 사업: 86.4백만원**
- 교육정책 컨설팅 비용: 20백만원×2식운영=40백만원
- 교육현장 선도연구 비용: 20.8백만원×2과제=41.6백만원
- 교육정책 이슈페이퍼 발간비용: 2.4백만원×2종=4.8백만원

○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 79.7백만원**
- 산출내역: 3.32백만원×2명×12월=79.7백만원

○ **기관운영비: 52백만원**
- 산출내역: 347백만원×15%=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운영	**347**	**347**
■ 교육정책 의제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17.6** -교육정책협의회: 4백만원×1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7백만원×8회	**16.8** -교육정책협의회: 3.9백만원×1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6백만원×8회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111.2**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 2.84백만원×12회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0.25백만원×10국×24회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2.1백만원×7종 -홈페이지 운영 2.4백만원×1식	**112.1**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 2.84백만원×12회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0.25백만원×10국×24회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2백만원×7종 -홈페이지 운영 4백만원×1식
■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 사업	**86.5** -교육정책컨설팅 20백만원×2식 -교육현장선도연구 20.8백만원×2과제 -이슈페이퍼발간 2.45백만원×2과제	**86.4** -교육정책컨설팅 20백만원×2식 -교육현장선도연구 20.8백만원×2과제 -이슈페이퍼발간 2.4백만원×2과제
■ 인건비 및 운영비	**131.7** -인건비 3.32백만원×2명×12월 -기관운영비 347백만원×15%	**131.7** -인건비 3.32백만원×2명×12월 -기관운영비 347백만원×15%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책 협력 필요성 증대**

- 지방자치 강화에 따른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조율 필요성 증가**

-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추진 필요성 증대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확대**

- 학교, 대학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 필요**

○ 지역-국가-세계적(Local-National-Global)차원의 **교육이슈에 신속 대응**

- **국제적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요구 증가**로 최신의 정보와 정책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하고 공유**할 필요성 증대

- **교육정책의 세분화**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한 연구·분석 필요**

- **국내·외 교육정책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

○ **교육정책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책대상 집단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

-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국내·외 교육개혁동향, 언론동향 등 **교육정책 정보 제공**함으로써 **국정과제 및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증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을 **일선 교육현장에 전달**하여 학교, 대학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현 정부의 교육 비전과 국정과제**에 대한 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

- 교육현장 관점의 교육정책 **진단,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386**	**347**	**347**	**-**	**-**
■ 교육정책 의제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15	**17.6** -교육정책협의회: 4백만원×1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7백만원×8회	**16.8** -교육정책협의회: 3.8백만원×1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1.61백만원×8회	-	-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123.7	**111.2**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 2.84백만원×12회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0.25백만원×10국×24회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2.1백만원×7종 -홈페이지 운영 2.4백만원×1식	**112.1** -(월간)교육정책포럼 발간 2.84백만원×12회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0.25백만원×10국×24회 -세계교육정책인포메이션 2백만원×7종 -홈페이지 운영 4백만원×1식	-	-
■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사업	98	**86.5** -교육정책컨설팅 20백만원×2식 -교육현장선도연구 20.8백만원×2과제 -이슈페이퍼발간 2.45백만원×2과제)	**86.4** -교육정책컨설팅 20백만원×2식 -교육현장선도연구 20.8백만원×2과제 -이슈페이퍼발간 2.4백만원×2과제	-	-
■ 인건비 및 운영비	149.3	**131.7** -인건비 3.32백만원×2명×12월 -기관운영비 347백만원×15%	**131.7** -인건비 3.32백만원×2명×12월 -기관운영비 347백만원×15%	-	-
□ **비목**(합계)	**386**	**347**	**347**	**-**	**-**
○출연금(350-02)	386	347	347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 **교육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 추진방향

- **교육부-교육청-유관기관** 간의 소통에 기초한 **교육정책 의제 발굴, 수립, 집행, 평가체제 구축**
- **국정과제 및 주요 교육정책 현장 착근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386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86*1식			
'18	347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47*1식	347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47*1식	-
'19	381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81*1식	347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47*1식	△34
'20	419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419*1식	382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382*1식	△37
'21	460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460*1식	420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420*1식	△40
'22			462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 462*1식	
연평균 증가율 (%)	14.8%		2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정부출연기관법」제5조 제2항*

*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7조 제3항 제5호*

*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8조*

*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연구기관 및 시·도교육청 분담금 등

-「2018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기재부)*

* 사업출연금(350-02목) :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 추진경위

- '02. 10. 교육부,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 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시작
- '02. 10. 정기간행물 교육정책포럼 발간 시작
- '05. 12. 교육부 내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전담부서 지정
- '06. 05.「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규정」 제정(교육부훈령 제139호)
- '09. 09.「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운영규정」 제3차 개정(교육부훈령 제139호)
- '10. 4. 교육정책연구협의회(교육정책 월례토론회) 개최 시작
- '10. 4.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공유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시작
- '10. 6.「교육정책네크워크 운영규정」 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 '11. 12. 교육정책연구협의회 개최(연 9회)
- '12. 11.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평가
- '13. 1. ~ 민간보조 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예정처 지적)
- '10. 6.「교육정책네크워크 운영규정」 개정(교육부훈령 제179호)

- '14. 4. 「교육정책네크워크 운영규정」 개정(교육부훈령 제79호)
- '15. 1. ~ 창의인재교육포럼 사업 이관
- '17. 2. ~ 행복교육 모니터단운영 사업 이관
- '17. 8. ~ 교육부 국정과제(76-6. 현장과의 소통·협력)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	2.85		3.55	4.55	-	3.86		3.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55 (3.55)**	( )	( )	3.55 (3.55)	**3.55 (3.55)**	( )	( )
'16년	**4.55 (4.55)**	( )	( )	4.55 (4.55)	**4.55 (4.55)**	( )	( )
'17년	**3.86 (3.86)**	( )	( )	3.86 (3.86)	**3.86 (3.86)**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86		347		347	347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교육정책의제 발굴 및 협의체운영: 13.2백만원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사업: 114.5백만원
- 교육정책진단 및 교육현장지원사업: 87.6백만원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131.7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감사원 지적(특별교부금 → 국고)

- '02년부터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국고에서 지원토록 지적('07) ⇒ '10년부터 국고로 지원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편성 개선 요구(보조금 → 출연금)

- 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동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동 예산을 출연금으로 교부하거나 출연사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예산편성 개선 요구('12년) ⇒ '13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지급

○ 2016회계연도 결산 국회 교문위 사업 명칭 변경 요구

- 입법심의관실에서 교육부 직제(대령) 및 운영규정(훈령)에 따라 사업명칭을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 → 교육정책네트워크'**로 변경 요구('17.4)하였으나 미반영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출연금 신청(한국교육개발원) → 신청서 검토 및 출연금 보조(교육부)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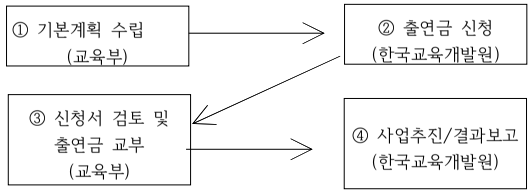

- (단계별 적용법령 및 규정·지침)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훈령 79호)
  ①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제2조(정의), 제4조(참여기관)
  ② 출연금 신청(한국교육개발원) : 제7조(센터설치)
  ③ 신청서 검토 및 출연금 보조(교육부) : 제5조(기능), 제8조(운영재원)
  ④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한국교육개발원)
- (운영방식)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목표	90	92	94	94.2	-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회	설문조사(50%)+전문가 평가(50%) *설문: 5점척도 측정 후 평균 *평가: 10명 점수 평균(100점만점)	설문조사 및 평가회 개최(한국교육개발원)
	실적	94.7	93.8	94.2	94.4	-			
	달성도	105.2	102.1	100.2	100.2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 (참고2)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참고3)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4)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5) 사업 기본계획

참고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등**

국정과제 76-6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 국정과제 내용 >

□ **과제 개요**

○ 교육부와 교사·학생·교육청간 **현장 소통 채널·기회 확산**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세부 과제 개요**

○ **학부모 토크 콘서트,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현장 소통 채널·기회 지속 확산 및 교류 활성화**

※ KEDI, KICE 등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하고 및** 교육분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국정과제의 안정적 추진**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참고 2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운영 관련 규정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4274호, '16.11.30시행)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476호, '17.3.28시행)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7870호, '17.3.1시행)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9.17., 2015.1.6.>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4.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지원
6.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협조(후략)

ㅇ「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훈령)(제79호, '14.4.1시행)

제8조(운영재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연구기관 및 시·도교육청 분담금 3. 사업 수입 4. 기타 수입

ㅇ「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2조(목적) 개발원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는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8.10 개정).
제5조(사업) 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의 연구·개발
2. 학교교육 현장 혁신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지원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관한 종합평가 지원
4.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고등교육기관 평가 지원(2014.11.21 개정)
5. 교육조사·통계·교육정보공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2009.10.30 개정)
6. 삭제(2009.10.30 개정)
7.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2009. 10. 19 개정)
8.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2000.4.26 신설)
9. 교육에 관한 국제 연구·협력 및 정보자료 수집·분석
10. 연구·사업의 출판·발표·보급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11. 기타 법령 및 **정부위탁에 의한 사업**과 개발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후략)

참고 3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온라인 독자 260명 설문)** 최신 교육정책 공유 및 전문가 견해 제공을 통해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실행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행사참여 교원 및 학부모 505명 설문)** 수준 높은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원론적 이해에서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

< 예산(안) 반영사항 >

☐ 교육정책 정보공유 및 확산 사업 예산 반영

ㅇ 교육정책 포럼 오프라인 배포처 확대,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정보 수집 및 제공 국가 확대, 홈페이지 안정성 및 모바일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등

☐ 교육정책 진단 및 교육현장 지원 사업 반영

ㅇ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정책컨설팅 확대, 교육현장 선도연구 질적 제고, 교육현장 모니터단 참여 강화 등

참고 4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정량)** 2018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던 세부사업 100% 완수

2018년 사업 추진 성과

◇ **사업목표치**(13개 세부사업) 100% 달성

㉮ **[정책의제 발굴]** ①책임관회의(1회), ②실무회의(5회), ③유관기관 담당자회의(1회), ④담당자 워크숍(4회), ⑤교육정책연구협의회(3회) ⑥브라운백미팅(10회)

㉯ **[정책·현장착근지원]** ⑦교육정책토론회(6회), ⑧교육정책컨설팅(8종), ⑨교원현장지원연구(5종)

㉰ **[정보공유]** ⑩교육정책포럼(12종), ⑪메일진 해외교육동향(24종), ⑫국내외 현안보고서(21종) 발간, ⑬홈페이지 및 SNS 운영(연중)

○ **(정성)** 2018년 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94.2점 대비 0.2성과 초과달성

* **(성과목표)** = [운영만족도 평가결과×0.5]+[사업평가결과×0.5]

< 현장의 변화 >

□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 정기발간물 사업: 각 발간물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4.4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항목의 점수가 4.5점 이상, '외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최신정보를 통해 우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됨' 항목의 점수가 4.5점 이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대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자는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사성 사업: 평균 4.5점으로 토론회 전반에 대하여 만족함.

- '주제의 유익성' 4.5점, '주제의 적절성' 4.6점으로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논의 및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교육정책 컨설팅: 만족도 평균 4.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컨설팅을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4.6점, '컨설팅을 통해 교육정책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음' 4.5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유용하게 활용' 4.5점으로 해당 사업이 교육청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5 2018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계획

□ **사업 개요** : 교육부-교육청-교육유관기관* 간 **정책협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 주요 참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추진 근거: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79호, 시행 '14.4.1)

□ **주요 사업**

① **(교육정책의제 발굴)** 책임관회의, 실무회의, 담당자 워크숍 등

② **(교육정책 착근지원)** 교육정책토론회, 교육정책컨설팅, 현장지원연구 등

③ **(교육정보 공유)** 발간사업*, 교육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SNS 운영

* (월간)교육정책포럼, 해외교육동향, 국내·외 현안보고서(이슈페이퍼,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 **사업 운영**

○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센터(KEDI 위탁)**를 중심으로 **연구·현장 네트워크 구축**

□ **'18년 사업예산 : 총 1,087백만원**

○ **국고 출연금**(347백만원) + **시·도교육청 분담금**(740백만원)

[2018년 주요 개선사항]

1 **교육분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교육부-유관기관장 협의회 조기 개최**를 통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정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활용 및 연구 성과 공유기회 확대**

2 **주요 교육정책 학교 현장착근 지원 내실화**

○ **권역별 교육정책 토론회 활성화**

○ **교육정책 컨설팅** 대상 교육청 확대 및 **교육현장지원연구** 확대

3 **해외 교육동향 제공 국가 확대 등**

○ '17년 8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일본·중국·캐나다)에서 호주와 싱가포르 추가

○ 국외현안보고서(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발간 확대

[307]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507	577	608	**31**	**5.4**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4 - 7000 - 7031
* 담 당 자 : 사무국장(박성민), 학술진흥과장(이종필), 사무관(한영옥), 연구사(김보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4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주관 연구참여 및 회의참가 지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 - (학술연구총서 지원) 학술원 회원 평생의 연구성과를 담은 저서 집필을 지원하고, 이를 학술원 총서로 발간 · 배포 - (전문학술활동 지원) 학술원 회원의 논문연구를 지원하여 후속 세대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학문연구기반 구축에 기여
사업기간	'10~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 10개 과제 수행 ○ (회원경륜 사회공유) : 다큐멘터리 4편 제작·방영 ○ (학술연구총서 지원) : 11개 저서 저술·발간(과제당 2년 지원) ○ (전문학술활동 지원) : 11개 논문연구 수행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학술원사무국
간접비	해당사항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국제학술기구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및 회의 등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 **227백만원**

■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 : 179백만원 (17.9백만원×10과제)
- 상용임금 : 33백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750천원×12월×1명)
- 복리후생비 : 500천원
- 고용부담금 : 5,500천원
- 일반수용비 : 9백만원 (회의수당 100천원×5명×10회, 자료발간 4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EBS와 협력하여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방영하기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내역

- 기획·구성비(작가,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등) : 25백만원
- 외부장비용역, 제작보조비 : 20백만원
- 제작진행비, 의상분장코디, 성우료 등 : 20백만원
- 편집, CG&애니메이션 및 음악료 : 15백만원
- 방송 및 홍보 : 20백만원

※ 카메라, 연출료 등의 제작비용은 EBS에서 분담

○ **(학술연구총서 지원)** 학술원 회원 평생의 연구성과를 결집한 저서(11개) 집필 지원 및 출판을 위한 사업비 **171백만원**

※ 저서 집필을 2년간('18~'19) 지원하고, 2년차인 '19년에 학술원 총서로 출판

■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 : 110백만원 (10백만원×11개 저서)
- 일반용역비 : 55백만원 (5백만원×11개 저서)
- 일반수용비 : 6백만원 (심사수당 3백만원, 시스템유지보수 3백만원)

○ **(전문학술활동 지원)** 학술원 회원의 논문연구(11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0백만원**

■ 산출내역

‣ 일반연구비 : 110백만원 (10백만원×11개 논문)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577	608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251백만원) 국제학술프로젝트 12개 과제 수행	(227백만원) 국제학술프로젝트 10개 과제 수행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다큐멘터리 4편 제작·방영	(100백만원) 다큐멘터리 4편 제작·방영
■ 학술연구총서지원	(116백만원) 학술원총서 11개 저서·저술활동 지원	(171백만원) 학술원총서 11개 저서·저술 및 출판 지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전문학술활동 11개 연구과제 수행	(110백만원) 전문학술활동 11개 연구과제 수행

□ **지원 필요성**

○ 학술원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내 최고석학인 회원의 학술연구 및 국제학술교류 등을 지원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학술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학술기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 **(회원경륜 사회공유)**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와 경륜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학문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대정신을 제시
- **(학술연구총서 지원)** 우리나라의 지적 초석을 이룬 학술원 회원의 학문성과를 학술연구총서로 발간하여 학문발전에 기여
- **(전문학술활동 지원)** 학술원 회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학문 분야별로 연구논문을 도출하도록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 진흥지원**	**507**	**577**	**608**	**31**	5.4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연구 참여	196	251 연구비 : 204 (17백만 × 12개) 인건비 : 38 운영비 : 9	227 연구비 : 179 (17.9백만 × 10개) 인건비 : 39 운영비 : 9	**△24**	△9.6
■ 회원경륜사회 공유	100	100 (25백만 × 4편)	100 (25백만 × 4편)	**-**	-
■ 학술연구출서 지원	162	116 연구비 : 110 (10백만 × 11개) 운영비 : 6	171 연구비 : 110 (10백만 × 11개) 출판배송 : 55 (5백만 × 11개) 운영비 : 6	**55**	47.4
■ 전문학술활동 지원	49	110 연구비 : 110 (10백만 × 11개)	110 연구비 : 110 (10백만 × 11개)	**-**	-
□ **비목**(합계)	**507**	**577**	**608**	**31**	5.4
○상용임금(110-03)	29	32	33	1	3.1
○일반수용비(210-01)	11	15	15	-	-
○복리후생비(210-12)	1	0.5	0.5	-	-
○일반용역비(210-14)	150	100	155	55	55.0
○일반연구비(260-01)	311	424	399	△25	△5.9
○고용부담금(320-09)	5	5.5	5.5	-	-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근거한 국내 학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내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538				
'18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0
'19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608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27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71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31
'20	1039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339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41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44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3백만원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462
'21	1039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339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41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44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3백만원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462
'22			577	■ 국제학술교류 연구개발 251백만원 ■ 회원경륜 사회공유 100백만원 ■ 학술연구 총서 116백만원 ■ 전문학술활동지원 110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20%		0%		△49%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추진경위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2010년부터 주요 국제학술기구와의 교류 활성화 및 국제학계에서의 위상제고 등을 위해 추진
- **(회원경륜 사회공유)** 2015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의 경륜을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자 EBS와 협동 프로젝트로 수행
- **(학술연구총서 지원)** 2016년부터 학술원 회원 평생의 학문역량을 결집한 저서 집필을 지원하여 총서로 출판
- **(전문학술활동 지원)** 2017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논문연구 지원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 지원	2.11	-	3.20	4.55	-	5.38	-	5.77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20 ( )	( )	( )	3.20 ( )	3.02 ( )	( )	0.18 ( )
'16년	4.55 ( )	( )	( )	4.55 ( )	4.29 ( )	( )	0.26 ( )
'17년	5.38 ( )	( )	( )	5.38 ( )	5.07 ( )	( )	0.31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10.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538		577		577	533	92.4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인건비 : 30백만원
- 운영비 : 114백만원
- 연구비 : 384백만원
- 고용부담금 : 5백만원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학술원 회원의 학술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국가 학문발전 도모

- (미국) 학술원 회원을 포함한 연구위원회가 향후 10여년에 걸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연구 수행
- (독일) 학술원연합의 Academies Program을 통해 인문학, 자연과학분야 장기 기초연구 프로젝트 150여개 수행

(6) 사업추진절차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연구책임자 추천	⇒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자 선정)	⇒	국제회의 참가	⇒	결과보고서 심사	⇒	연구결과 공유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사위원회		연구자		심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 회원경륜 사회공유

사업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다큐멘터리 기획	⇒	다큐멘터리 제작	⇒	보급 및 홍보
학술원사무국		학술원사무국 ＥＢＳ		학술원사무국 ＥＢＳ		ＥＢＳ		학술원사무국 ＥＢＳ

○ 학술연구총서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저술계획서 심사 (연구자 선정)	⇒	총서 저술	⇒	중간/결과 보고서 심사	⇒	출판·보급
학술원사무국		심사위원회		연 구 자		심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 전문학술활동 지원

사업계획 수립	⇒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자 선정)	⇒	전문학술활동	⇒	결과보고서 심사	⇒	연구결과 공유
학술원사무국		심사위원회		연 구 자		심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 학술기구 프로젝트 참여 수 (단위 : 개)	목표	10	10	12	12	-	-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참여 수	연구자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 취합
	실적	10	12	12	-	-			
	달성도	100	120	100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 1)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
○ (참고 2)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 (참고 3)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
○ (참고 4) 전문학술활동 지원 사업

참고 1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참여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제학술기구 주관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학문발전에 기여
○ 지원내용 :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 참여 및 회의 참석 지원

□ 2018년도 사업실적

구분	회의주관 학술기구	회의명/연구주제	장소 및 기간
1	국제과학연맹이사회 (ICSU)	Nexus Conference 2018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4. 16 ~ 18.
2	미래지구 (Future Earth)	국제영향평가학회(IAIA) 제38차 세계회의	남아공 더반 5. 16 ~ 19.
3	국제과학이사회 (ISC)	국제과학이사회(ISC) 창립총회	프랑스 파리 7. 3 ~ 5.
4	국제사회과학이사회 (ISSC)	국제사회학협회(ISA) 제19차 World Congress of Sociology	캐나다 토론토 7. 15 ~ 21.
5	미래지구 (Future Earth)	지속가능한 농업-식량 체계를 위한 유럽 식량회의	독일 스튜트가르트 9. 5 ~ 6.
6	국제학술원연합 (UAI)	집행부 임원회의	대한민국 서울 9. 19 ~ 20.
7	국제사회과학이사회 (ISSC)	Root Causes of Wage Inequality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일본 후쿠오카 9. 25. ~ 28.
8	국제사회과학이사회 (ISSC)	World Social Science Forum 2018	일본 후쿠오카 9. 25. ~ 28.
9	미래지구 (Future Earth)	G-STIC 2018 Conference	벨기에 브뤼셀 11.28. ~ 30.
10	국제학술원위원회 (IAP)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6차 OECD 세계포럼	대한민국 송도 11.27. ~ 29.
11	아시아학술회의 (SCA)	한국의 도시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	일본 도쿄 12. 5. ~ 7.
12	아시아학술회의 (SCA)	아시아학술회의(SCA) 제18차 총회 및 학술대회	일본 도쿄 12. 5. ~ 7.
13	아시아학술회의 (SCA)	Safeguar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일본 도쿄 12. 5. ~ 7.
14	국제학술원위원회 (IA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nagement	태국 방콕 12. 21. ~ 22.

참고2 회원경륜 사회공유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술원 회원의 학문적 경륜을 사회 일반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보급

○ 사 업 비 : 100백만원 (4편)

○ 추진방법 : 학술원과 EBS가 협력하여 공동프로젝트로 진행

□ 2018년도 사업실적

○ 프로그램 :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EBS채널1)

○ 방영일정 : '18. 11. 21. ~ 12. 12. (매주 수요일, 50분 4부작)

방영일시	성 명	주요 이력
11/21(수) 13:40	최 항 순	<직위/소속>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분야> 조선해양공학 <주요이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사장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대한조선학회 회장
11/28(수) 13:40	곽 수 일	<직위/소속>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분야> 경영학 <주요이력>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사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12/ 5(수) 13:40	김 경 동	<직위/소속>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분야> 사회학 <주요이력> 정보사회학회 회장 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 500인의 영향력있는 지도자(미국 인물연구소)
12/12(수) 13:40	김 진 의	<직위/소속>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분야> 입자물리학 <주요이력>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참고 3 학술연구총서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회원의 연구성과를 결집한 저서 집필 및 출판을 지원하여 후속세대와의 학문적 소통 증진

○ 지원규모 :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11개 저서

○ 결과공유 : 2년간 집필을 지원하고, 2년차에 완성된 저서를 출판하여 국내 대학 등에 배부

□ 2018~2019년도 사업실적

○ 11개 저서를 2년간('18~'19) 집필 지원하고, '19년도 말에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총서로 출판

연 번	저 자	저 서 명
1	이돈희	질성적 사고와 교육적 경험
2	김학주	위대한 詩人이며 將軍인 魏王 曹操
3	이성규	秦漢 帝國의 計數 지배
4	고상룡	부동산 임대차법의 연구
5	강신택	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
6	김기영	한국의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역사
7	조성호	자기공명 기법에 의한 물질의 특성 조사
8	박상대	유전체불안전성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9	노오현	계산공기역학과 응용
10	이호왕	한타바이러스학
11	김현욱	낙농·인류·유산균

참고 4 전문학술활동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술원 회원의 논문연구를 지원하여 국가 학문 발전에 기여

○ 지원규모 : 인문 ·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11개 논문과제

○ 결과공유 : 학술원 논문집 게재 및 학술세미나 실시

□ 2018년 사업실적

연 번	저 자	논문 주제명
1	소광희	시간과 시간성(時間性)
2	이정민	한국어,터키어,헝가리어의 비사실성(非事實性) 태도 동사 '알다'에 관한 연구
3	임돈희	무형유산의 보호: 한국 민속학 연구의 역할
4	김효전	카를 슈미트의 헌법이론과 한국
5	진덕규	한국의 민족주의 인식의 논리적 전개에 관한 연구
6	곽수일	스마트공장과 생산전략의 발전 방향
7	김도한	자율상관관계 사토 초함수
8	임번장	신체활동 중심 야외활동 및 야외교육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9	김상용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공업기술 정신
10	김영중	영하구기자의 신경영양인자적 기능
11	박승우	시설채소작물의 관개용수 수질기준 및 염도에 따른 생육영향 고찰

[310]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	5,755	6,057	8,846	2,789	46.0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1 - 7000 - 7031 - 310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김태훈), 예산담당관(이영찬), 주무관(이근우)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소속기관의 원활한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관리 유지비용과 노후장비·시설 등 개선을 지원
사업기간	'16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4개 기관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유지관리: 2,381백만원

- 청소, 경비원 등 인건비: 37명×3.1백만원×4월=464백만원

- 공공요금* 등: 33.2백만원×12월=398백만원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 시설장비유지비*: 10.3백만원×12월=124백만원

  * 기숙사 침구류 유지관리

- 청소, 경비, 정보통신 용역: 37명×4.2백만원×8월=1,250백만원

- 기숙사 객실 등 가구 구입: 29백만원×5종=145백만원

  * 제2기숙사 준공에 따른 객실 물품

○ 국립국제교육원 청사유지관리 : 2,635백만원

- 청소, 경비원 등 인건비: 32명×3.4백만원×12월=1,300백만원

- 청소용품 등 청사관리 용품 구입: 30백만원

- 공공요금* 등: 38.4백만원×12월=461백만원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 청소, 경비원 등 작업복 및 야간근로자 급식비: 16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7.9백만원×12월=95백만원

  * 승강기 유지관리, 통신설비 유지관리, 소방설비 관리 등

- 청소, 경비원 등 맞춤형복지비: 13백만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외벽청소 및 조경관리: 454백만원

- 고용부담금: 6.3백만원×32명= 202백만원

- 개인용 컴퓨터 및 책상 등 자산취득비: 64백만원

○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유지관리: 1,083백만원

- 청소, 경비원 등 인건비: 16명×3.5백만원×12월=665백만원

- 복리후생비: 청소, 경비원 등 16명 맞춤형복지비: 5백만원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시설유지관리용역: 359백만원

- 고용부담금: 청소, 경비원 등 16명 4대 보험, 퇴직연금: 54백만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유지관리: 630백만원

- 공공요금: 임차청사 관리비(66)+회선사용료(28) = 94백만원

- 임차비 : 건물임차료 21.2백만원×12월 = 254백만원

- 관리용역비 : 보안 및 근태관리용역, 청소용역비 = 26백만원

- 실내공사비: 임차 청사 입주를 위한 실내공사 25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117백만원

- 인건비: 371명×12월×366,200원*×92.4% = 1,506백만원

  * '19년도 병사 인건비 인상분 반영

- 피복비: 371명×297,840원*×72.4% = 80백만원

  * 328천원(병무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

- 급식비: 371명×20일×12월×6천원*×66.3% = 354백만원

  * 최소 기준 6천원(병무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

- 여비: 371명×20일×12월×2400원*×82.8% = 177백만원

  * 현금 기준 지역별 대중교통(시내버스) 왕복이용요금(병무청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기준)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	6,057	8,846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유지관리	(1,965백만원) 공공요금 34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4백만원, 관리용역비 1,250백만원, 기숙사물품구입 248백만원	(2,381백만원) 인건비 464백만원, 공공요금 39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4백만원, 관리용역비 1,250백만원, 기숙사물품구입 145백만원
■ 국립국제교육원 청사유지관리	(1,714백만원) 인건비 379백만원, 공공요금 43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백만원, 복리후생비 6백만원, 관리용역비 736백만원, 고용부담금 71백만원	(2,635백만원) 인건비 1,300백만원, 일반수용비 30백만원 공공요금 461백만원 피복비 9백만원 급식비 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5백만원 복리후생비 13백만원 관리용역비 454백만원, 고용부담금 202백만원 자산취득비 64백만원
■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유지관리	(712백만원) 인건비 294백만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359백만원, 고용부담금 54백만원	(1,083백만원) 인건비 665백만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관리용역비 359백만원, 고용부담금 54백만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유지관리	-	(630백만원) 임차관리비, 회선사용료 94백만원, 건물임차료 254백만원, 보안·근태관리, 청소용역 26백만원 실내공사비 256백만원,
■ 국사편찬위원회 청사유지관리	(55백만원) 공사비 55백만원	-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인건비 1,000백만원, 피복비 80백만원, 급식비 354백만원, 여비 177백만원	(2,117백만원) 인건비 1,506백만원, 피복비 80백만원, 급식비 354백만원, 여비 17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 이전('15.하반기)에 따른 단독청사 운영, '18.12월 기숙사 준공 등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비품 구입 등 청사 및 기숙사 운영 유지관리 소요 대폭 증가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 : (종전)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시설 20실 임차 및 시설공동사용) → (지방이전후) 연수 및 공동시설 146실 등 단독청사 운영

※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 (종전) 66실 → ('19) 226실

○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이전('15.하반기)에 따른 단독청사 운영, 시설확충 등으로 유지관리 소요 대폭 증가

※ 국립국제교육원 : 시설 및 전문관리시설 증가(13,674 → 24,039㎡)

- 청소,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의 직접 고용에 따른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예산지원 필요

- 청사 신축 이후 3년 이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벽청소 및 조경관리 등 청사관리에 추가경비 소요

○ (국립특수교육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근로시간 준수, 최소한의 청사관리 인력 확보, 효율적인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적정 청사관리 운영경비 확보 필요

- 최저임금(8,530원), 근로시간(52시간/주) 준수, 시설 확충(250㎡ 증축*), 야간, 휴일 최소한의 청사관리인력 확보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운영경비 필요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개소('18.5.)로 인한 증축

- 효율적 전산장비 운용, 원활한 교육 서비스를 위하여 네트워크, 서버, PC 등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필요

* 서버 33대, 네트워크장비 20대, S/W 23식, PC 및 프린터 300여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세종청사에 위치한 교육부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간 부족 문제 해소 필요

※ 교육부 : 사무공간 부족으로 특수공간(자료실, 감사지원실, 문서수발실 등)을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고, 전문자료 등을 지하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실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청사관리본부의 창고(21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사무공간 확충이 시급

- 감독기관(교육부)과 심사기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분리 필요

※ 감독기관과 심사기관이 동일한 청사에 위치하여 심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해소 필요

※ 행정안전부는 공간 확충 및 지리적 기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여 교원소청위원회의 외부 건물 임차를 승인하고, 기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간을 교육부에 배정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9년 병사 인건비 처우개선율 등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지원

- 19년 지원단가 : 급여 366,200원(월), 급식비 6,000원(일), 교통비 2,400원(일), 피복비 297,40원(복무기간 중 1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	5,755	6,057	8,846	2,789	46.0
■ 청사유지관리	5,755	4,446	6,729	2,283	51.3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유지관리	1,791	1,965	2,381	416	21.2
- 국립국제교육원 청사유지관리	2,015	1,714	2,635	921	53.7
- 국립특수교육원 청사유지관리	577	712	1,083	371	52.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유지관리	-	-	630	630	순증
- 국사편찬위원회 청사유지관리	50	55	-	△55	순감
- 학술원 청사유지관리	197	-	-	-	-
■ 이주지원비(중앙교육연수원)	74	-	-	-	-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051	1,611	2,117	506	31.4
- 인건비	554	1,000	1,506	506	50.6
- 피복비	18	80	80	-	-
- 급식비	344	354	354	-	-
- 여비	135	177	177	-	-
□ 비목(합계)	5,755	6,057	8,846	2,789	46.0
○ 상용임금(110-03)	554	1,673	3,935	2,262	135.2
○ 일반수용비(210-01)	-	-	96	96	순증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84	775	887	112	14.5
○ 피복비(210-03)	18	80	89	9	11.3
○ 급식비(210-04)	344	354	361	7	2.0
○ 임차료(210-07)	-	-	254	254	순증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3	214	219	5	2.3
○ 복리후생비(210-12)	74	11	18	7	63.6
○ 관리용역비(210-15)	3,267	2,345	2,089	△256	△10.9
○ 국내여비(220-01)	135	177	177	-	-
○ 고용부담금(320-09)	-	125	256	131	104.8
○ 공사비(420-03)	373	55	256	201	365.5
○ 자산취득비(430-01)	123	248	209	△39	△15.7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안정적인 청사 운영 관리를 통해 원활한 기관 업무수행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269	■ 청사유지관리 5,012백만원 ■ 이주지원비 92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165백만원			-
'18	6,057	■ 청사유지관리 4,44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6,057	■ 청사유지관리 4,44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
'19	5,777	■ 청사유지관리 4,612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165백만원	8,846	■ 청사유지관리 7,235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3,069
'20	5,661	■ 청사유지관리 4,49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165백만원	6,057	■ 청사유지관리 4,44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396
'21	5,605	■ 청사유지관리 4,440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165백만원	6,057	■ 청사유지관리 4,44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452
'22			6,057	■ 청사유지관리 4,446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611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2.8%		0.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6,057</td><td>8,846</td><td>2,789</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78</td><td>122</td><td>44</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13</td><td>14</td><td>1</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인건비 지출에 따른 정부의 직접고용효과와 인건비 이외의 정부 사업비 지출로 인한 간접고용효과 합산
-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 (간접고용효과) 인건비 외 각 사업비 ÷ 예산비목별 1인 고용 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간접고용효과 값이 1 미만인 비목은 산출 제외</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총액 3,935백만원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0.4812억원 = 81.8 → 82명
- (간접고용효과) ① 공공요금및제세 887백만원 ÷ 5.13억원 = 1.7 → 2명
② 급식비 354백만원 ÷ 0.76억원 = 4.7 → 5명
③ 시설장비유지비 219백만원 ÷ 0.39억원 = 5.6 → 6명
④ 관리용역비 2,089백만원 ÷ 0.91억원 = 23.0 → 23명
⑤ 국내여비 177백만원 ÷ 0.88억원 = 2.0 → 2명
⑥ 자산취득비 209백만원 ÷ 0.94억원 = 2.2 → 2명

□ 2018년 고용효과
- (직접고용효과) 인건비 총액 1,673백만원 ÷ 교육서비스업 연평균임금 0.4812억원 = 34.7 → 35명
- (간접고용효과) ① 공공요금및제세 775백만원 ÷ 5.13억원 = 1.5 → 2명
② 급식비 354백만원 ÷ 0.76억원 = 4.6 → 5명
③ 시설장비유지비 214백만원 ÷ 0.39억원 = 5.4 → 5명
④ 관리용역비 2,345백만원 ÷ 0.91억원 = 25.7 → 26명
⑤ 국내여비 177백만원 ÷ 0.88억원 = 2.0 → 2명
⑥ 자산취득비 248백만원 ÷ 0.94억원 = 2.6 → 3명</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해당 없음</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제6조(청사의배정요청)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추진경위

- ('05년 6월) 국토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총 176개 기관)
- ('15.10~11월)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신축 이전 완료
- ('16년) 청사확충 이전 소속기관 운영경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신규* 편성

  * 기본경비와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종전 기본경비 16.8억원을 이관하여 동 사업비를 신규 편성

  ☞ 해당기관 기관운영경비 = 기본경비 + 소속기관 청사유지 관리사업비

- ('17년) 별도 사업비로 지원되던 중앙교육연수원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비 및 이전비' 사업비는 동 사업비로 통합
- ('18년 12월) 중앙교육연수원 기숙사 증축 공사 완료(총 160실, 지하1층~지상4층)
- ('18.3.~'18.3.) 수시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교육부 추가 면적 수시 배정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임차 승인(행정안전부)

  * 기본경비와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종전 기본경비 16.8억원을 이관하여 동 사업비를 신규 편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소속기관 청사유지관리	-	-	-	47	47	63	63	61	61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내역

- ('16.) 환율 인상에 따라 교육차관사업 납부액 대비 예산액이 부족하여 예산 자체이용 시행

○ 이월.불용 내역

- ('16, '17)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실소요 반영, 위탁사업비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집행 잔액 발생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47** **(47)**	( )	△1 (△1)	46 (46)	**38** **(38)**	( )	8 (8)
'17년	**63** **(63)**	( )	( )	63 (63)	**58** **(58)**	( )	5 (5)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269	6,269	6,057	-	6,057	5,242	86.5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집행현황

■ 관리용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인건비 등 4,683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17회계연도 결산 교육위원회

○ (시정요구사항) 교육부는 향후 사업 운용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6) 사업추진절차

사업비 요구 → 예산 심의 → 예산확정 → 예산배정 → 예산재배정 → 사업집행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중앙교육연수원 신청사 현황

○ 국립국제교육원 신청사 현황

○ 국립특수교육원 신청사 현황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신청사(임차) 현황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중앙교육연수원) 대구 이전에 따른 이동거리, 식당 등 만족도 하락, 연수생 편의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

□ (국립특수교육원) 전산설비관리, 청사시설 증가에 따른 지원 필요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 필요

□ (사회복무요원) 병사 처우개선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 필요

< 예산(안) 반영사항 >

□ (중앙교육연수원) 증축 기숙사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구입비 145백만원

□ (국립특수교육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청사관리 등 유지관리 371백만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사비, 임차료, 관리비 등 630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급여 506백만원 증액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중앙교육연수원) 청사 이전 후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확충으로 연수생 만족도 제고 유도

□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이전 후 각종 지원을 통해 시설만족도 제고 유도

□ (국립특수교육원) 각종 시설 지원을 통한 연수생 등 만족도 제고 유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사 이전을 통한 부족한 공간 확보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통한 원활한 기관업무 수행

< 현장의 변화 >

□ (중앙교육연수원) 강사, 연수생 불편 최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효율성 증대 및 외국인 대상 국가이미지 제고
* 2017년 외국인 대상 각종 연수에서 만족도 조사결과 시설부문 90점 이상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교원 등 수요자 중심 연수환경 구축 및 장애인식 개선 제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간 부족 문제 해소로 직원 및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감독기관과 심사기관의 지리적 분리를 통해 심사결정에 영향력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

□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통한 원활한 기관업무 수행

참고 3 중앙교육연수원 신청사 현황

□ 신축 청사 개요

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0(신서동 1180) / 67,038.4㎡			
준공연도	2015년 ※ 제2 기숙사 증축공사 완료일 2018.12.			
청사규모	총 연면적	연수동(배움관)	기숙사동	정문(경비)동
	22,075㎡ ('18.12.기준)	11,378.31㎡	4,759.42㎡(66실) **5,912.31㎡(160실)**	25.00㎡
		지하 1층, 지상 4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지상 1층
시설현황	배움관: 강의실 10실(50인용 4실, 60인용 5실, 100인용 1실) 정보화 강의실 2실(45인용) / 분임실 16실(14인용) 대강당(미래홀) 1실(438석) / 대강의실(인재홀) 1실(240석) 등 수신관: 식당 1실(260석) / 기숙사 226실(291명 수용) 등			

□ 기존 청사 시설현황 비교

구 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2014년/임차)		신청사(2015)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63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0
대지면적	55,175㎡		67,038㎡
건축면적	전 용	2,751.49㎡	7,583㎡
	주사용	359.1㎡	
	공 용*	3,899.94㎡	
연 면 적	-		22,075㎡
규 모	전 용	교육동 4층 전체, 320호	지하1층, 지상4층 4개동
	주사용	컴퓨터실습실(1실), 정보자료실	
주차대수	-		178대(장애인 6대 포함)
기숙사	-		226실

뽐

참고 4 국립국제교육원 신청사 현황

□ 신축 청사 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지면적	9,936.10㎡		
용 도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면적	3,802.22㎡		
연 면 적	24,039.71㎡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업무동10층, 국제교류협력관동7층, 편의/지원시설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대강당)		
주차대수	법 정	185대 (100㎡/1대)	
	계 획	185대 (지상 26대, 지하159대 -장애인4대,경차8대포함)	
조경면적	법 정	1,490.42m² (대지면적의 15%이상)	
	계 획	3,279.82㎡ (33.01%)	
승강기	계 획	승 용 4대	17인승 승용 승강기 - 105m/min 4대
		비상용 1대	17인승 승용 승강기 - 105m/min 1대
오수정화시설	택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기존 청사 시설현황 비교

구 분	기존청사	신청사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
대지면적	9,377.7㎡	9,936.10㎡
건축면적	3,364.81㎡	3,802.22㎡
연 면 적	13,674.73㎡	24,039.71㎡
규 모	지하1층, 지상3~5층 3개동	지하2층, 지상10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대강당)
주차대수	44대 (-장애인2대포함)	185대 (지상 26대, 지하159대 -장애인4대,경차8대포함)
조경면적	800㎡	3,279.82㎡
승강기	17인승 승용 승강기 - 60m/min 1대 덤웨이터 1대	17인승 승용 승강기 - 105m/min 5대

참고 5 국립특수교육원 신청사 현황

□ 신청사 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대지면적	13,617.20㎡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건축면적	4,066.77㎡			
연 면 적	12,959.90㎡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법 정	64대 (1대/연면적 200㎡)		
	실 제	66대 (일반 57대, 장애인8대, 대형1대)		
조경면적	법 정	2,042.58㎡ (대지면적의 15%이상)		
	실 제	4,906.34㎡ (36.01%)		
승강기	실 제	승객용	3대	본관1대, 생활관 2대, 17인승, 장애인 겸용
		화물용	0대	-
오수정화시설	택지 내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기존 청사 시설현황 비교

구 분	기존청사(안산청사)*	신청사(아산청사)
대지위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대지면적	4,281.00㎡ (한국선진학교 부지 일부를 무상 임차)	13,617.20㎡
준공년도	1994년	2010년
건축면적	1,374.23㎡	4,066.77㎡
연 면 적	5,126.60㎡	12,959.90㎡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14대 (일반 12대, 장애인 2대)	66대 (일반 57대, 장애인 8대, 대형 1대)
조경면적	510.00㎡	4,906.34㎡
승 강 기	2대 (장애인 겸용, 17인승 1대, 13인승 1대)	3대 (장애인 겸용, 17인승 3대)

* 기존청사(안산청사)는 2018.2.1.일자로 교육부 한국선진학교로 관리전환

참고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신청사(임차) 현황

□ 청사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6층 (청암빌딩)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임차면적	855.05㎡(258.65평)
공용면적	1,177.78㎡(356.28평)
규 모	전체 8층 중 6층
주차대수	117대
승강기	3대

[312]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재량,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483	3,118	3,064	**△54**	**△1.7**

* 사업코드 : 12 - 110 - 00 - 050 - 054 - 7000 - 7031 - 312
* 담 당 자 : 기획조정관(김문희), 운영지원팀장(김정연), 주무관(박동민)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7.9.)에 따라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협의, 교육·인재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운영
사업기간	'17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 3,064백만원

▪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협의, 인재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3,064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	3,064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3,064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 **지원 필요성**

○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운영 필요

○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숙의를 통한 정책 결정 필요

○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령, 조직체계 등 마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483**	**3,118**	**3,064**	**△54**	**△1.7**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483	3,118 (3,118백만원×1년)	3,064 (3,064백만원×1년)	**△54**	**△1.7**
□ **비목**(합계)	**483**	**3,118**	**3,064**	**△54**	**△1.7**
○기타직보수(110-02)	6	294	299	5	1.7
○상용임금(110-03)	5	147	149	2	1.4
○일반수용비(210-01)	32	1,546	1,439	△107	△6.9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3	93	-	-
○특근매식비(210-05)	2	26	36	10	38.5
○임차료(210-07)	15	184	184	-	-
○유류비(210-08)	-	36	36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9	49	-	-
○복리후생비(210-12)	-	12	12	-	-
○일반용역비(210-14)	-	153	238	85	55.6
○관리용역비(210-15)	-	35	36	1	2.9
○기타운영비(210-16)	3	11	12	-	-
○국내여비(220-01)	2	79	71	△8	△10.1
○국외업무여비(220-02)	-	51	46	△5	△9.8
○사업추진비(240-01)	4	80	72	△8	△10.0
○직책수행경비(250-02)	13	62	61	△1	△1.6
○일반연구비(260-01)	-	50	200	150	300
○정책연구비(260-02)	-	150	-	△150	△100
○고용부담금(320-09)	-	20	21	1	7.1
○공사비(420-03)	118	-	-	-	-
○자산취득비(430-01)	283	40	10	△30	△7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책제안)** 국가교육회의가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및 **갈등 해소**가 필요한 주요 분야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

- 국가교육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을 통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 **연구단체 등**에 **연구과제 수행을 의뢰**

○ **(정책 심의.조정) 교육 정책** 및 복지·고용·청소년 등 **교육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

○ **(의견수렴)** 위원들의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자문·대안 마련 시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운영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직 및 제도 정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8	3,118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3,118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
'19	3,675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675백만원	3,064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064백만원	△611
'20	6,615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6,615백만원	3,118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3,497
'21	7,500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7,500백만원	3,118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4,382
'22			3,118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백만원	3,118
연평균 증가율 (%)	20.5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353	438	85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3.7	4.7	1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재정지출 고용효과	10.5	10.7	0.2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사업유형을 특정화할 수 없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이드라인 다-<2> 인건비 외 예산·지출 항목(간접고용효과) 산출방식 적용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8년 고용효과** - 일반용역비(210-14) : 1.53억원 ÷ 0.95억원 = 1.6명 - 일반연구비(260-01) : 2억원 ÷ 0.95억원 = 2.1명 □ **2019년 고용효과** - 일반용역비(210-14) : 2.38억원 ÷ 0.95억원 = 2.5명 - 일반연구비(260-01) : 2억원 ÷ 0.95억원 = 2.1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나 실제 순고용 효과는 미미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정과제)**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76-3-1. 국가교육회의 설치, 76-3-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 추진경위

- 각종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운영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17년)'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19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	-	-	-	-	-	-	31	-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16(-)**	( )	( )	16(-)	**5(-)**	3(-)	9(-)

※ '17년 당초예산은 전액 예비비임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1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500	△382	3,118	2,390	76.7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등 임차료 등 일부 비목 382백만원 감액

○ 집행현황

-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390백만원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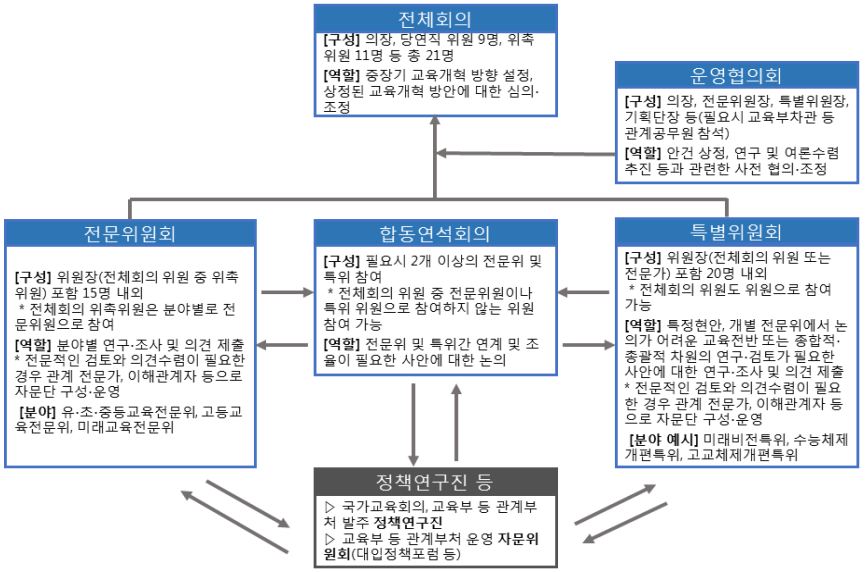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 없음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17년도말 출범하여, 연내 정책연구용역 완료,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교육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시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반영할 예정

< 예산(안) 반영사항 >

□ 집행실적, 자산취득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조정 (3,118 → 3,064백만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17.9.12) 및 기획단('17.9.27) 구성

□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17.12.12)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의 변화 >

□ 17년도말 설립되어, 연내 정책연구용역,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주요 교육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중

참고 3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285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9.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12.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교육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교육회의의 구성)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교육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4.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은 제4조에 따른 임기 동안 상근한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대표하고, 교육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의장은 교육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전문위원회에 위원장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교육회의기획단) ① 교육회의의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겸임한다.

1.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2. 제3조제4항에 따라 상근하는 위촉위원

③ 기획단의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으로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업무 담당을 구분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연구소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회의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학교,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회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교육회의의 위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존속기한) 교육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회의·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28285호, 201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5] 교육정보보호사업(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정보보호사업	6,153	6,633	6,763	**130**	**2.0**

* 사업코드 : 86 - 110 - 00 - 050 - 054 - 7000 - 7034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정보보호팀장(김도영), 사무관(이윤창)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콘텐츠 개발 사업('18년 예산 : 80백만원)이 '19년 미래교육환경대비 온라인콘텐츠 진흥·육성사업에서 교육정보보호사업으로 이관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강화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사업기간	'05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442개 교육(행정)기관 보안관제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상 :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대학, 유·초·중·고 (약 21,000기관)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 (점검대상 URL: 32,374개)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 발급 및 관리(797,039장)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4개 권역) ・교육대상 : 교육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4개 권역) ・교육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운영(연간 360명)
지원조건	출연(100%)
사업시행주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3,157백만원

첨예화·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의 조기탐지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 대상 24시간 365일 사이버침해예방·대응체제(보안관제, 웹 취약점 점검 등) 구축·운영

- 교육(행정)기관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운영 : 2,273백만원

・위탁 운영 : (중급 4명 + 초급 30명) × 12개월 = 2,273백만원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853백만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H/W 및 S/W 유지보수
4,232백만원(H/W)×7% + 5,848백만원(S/W)×9.52% = 853백만원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료 : 31백만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 회선료 : 2.58백만원 × 1회선 × 12개월 = 31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495백만원

교육(행정)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지속적 보호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유·노출점검, 맞춤형(CPO, 담당자, 선도요원 등)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 : 369백만원

・위탁 운영 : (중급 1명 + 초급 5명) × 12개월 = 369백만원

-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 126백만원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H/W 및 S/W 유지보수
379백만원(H/W)×7% + 1,001백만원(S/W)×10% = 126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 1,835백만원

교육(행정)기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의 발급·갱신·검증 관리

-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 1,755백만원
  -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운영 : 1,034백만원

· 위탁 운영 : (고급 2명+중급 4명+초급 5명+초급기능 5명) × 12개월 = 1,034백만원

  - ▪ 전자서명인증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591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H/W 및 S/W 유지보수
4,541백만원(H/W)×5.86% + 4,128백만원(S/W)×7.87% = 591백만원

  - ▪ 전자서명인증센터 인터넷 회선 사용료 : 130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문자발송(65만건) = 10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인터넷 회선료 : 2백만원 × 5회선 × 12개월 = 120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제인증 갱신 : 80백만원

· 국제인증 갱신 : 1회 × 80백만원 = 80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 1,276백만원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인재 양성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 476백만원

· 3개 집합권역×100백만원 + 1개 사이버권역×126백만원 = 426백만원
· 중앙교육연수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이용료 및 교육센터 평가 관리 : 50백만원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 800백만원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개권역 × 190백만원 = 760백만원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협의체 및 표준교육과정 운영 : 15백만원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 25백만원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교육정보 보호사업	6,633	6,763
■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 3,107백만원** · 보안요원 34명 ·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7%, S/W 10% 적용	**· 3,157백만원** · 보안요원 34명 · 사이버안전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7%, S/W 9.52% 적용 ※ '17년 시스템 추가 도입 (H/W: 365백만원, S/W: 838백만원)
■ 전자서명 인증센터 운영	**· 1,835백만원** · 운영요원 16명 ·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7%, S/W 10% 적용	**· 1,835백만원** · 운영요원 16명 ·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5.86%, S/W 7.87% 적용 ※ '17년 시스템 추가 도입 (H/W: 917백만원, S/W: 1,02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 495백만원** · 운영요원 6명 ·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7%, S/W 10% 적용	**· 495백만원** · 운영요원 6명 ·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유지보수요율 H/W 7%, S/W 10% 적용
■ 정보보호 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 1,19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4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개	**· 1,27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4개 정보보호영재교육원 4개 ※ 정보보호교육 온라인콘텐츠 개발 사업이관*(80백만) * 미래교육환경대비 온라인콘텐츠 진흥·육성사업 → 교육정보보호사업

□ **지원 필요성**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첨예화·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의 조기탐지 및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침해예방·대응체제**(보안관제, 웹 취약점 점검 등) 구축 운영

-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침해**(DDoS 공격, 좀비PC, 웹해킹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격 규모**도 점차 **증가**

※ 전 세계적 랜섬웨어 확산으로 국가사이버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17.5.14)되어 교육기관 관련 대응 조치

- 중앙부처 국가사이버 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NCSC)과 **즉시 공조대응 실시**

※ 유관기관과 악성코드 및 해킹메일 방어 시스템 설치로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기반 강화

- 사이버침해가 교육(행정)기관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및 대응 강화**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행정)기관(442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지속적 보호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유·노출점검, 맞춤형**(CPO, 담당자, 선도요원 등)**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제고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 정부는「**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강화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조항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되고

- 인터넷 쇼핑몰 및 포털 정보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 피해 발생사례 증가**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되고 있으며,

- 반면, 교육(행정)기관은 **다량의(국가 전체 대비 41% 보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 요구 증대**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운영)** 교육(행정)기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의 발급·갱신·검증 관리**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용자 문의대응, 보안서버 구축 점검 및 기술지원 수행으로 교육(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지원

※ 정부부처 중 최대 규모의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운영·관리(797,039장)

- **Non-ActiveX 기반** 인증서 발급·관리 프로그램 및 인증서 처리 프로그램 적용으로 **사용자 웹 접근성 강화**

- **전자서명인증서 오·남용 방지**를 통한 학생·학부모의 정보보호 및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교육(행정)기관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윤리의식을 겸비한 정보보호 인재 양성**

-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이버 침해, 보안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보보호 담당자 역량강화**

- **정보보호에 관심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정보보호 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정보보호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

※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테러 발생(한수원 해킹, 2016년 국방부 해킹 등)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체계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교육정보보호사업	**6,153**	**6,633**	**6,763**	**130**	**2.0**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2,772**	**3,107**	**3,157**	**50**	**1.6**
- 위탁운영(인건비)	2,273	2,273 (34명×5.57백만×12개월)	2,273 (34명×5.57백만×12개월)	-	-
- 시스템 유지보수	468	803 H/W(3,926백만×7%)+ S/W(5,285백만×10%)	853 H/W(4,232백만×7%)+ S/W(5,848백만×9.52%)	50	6.2
- 인터넷 회선 사용료	31	31 (1회선×31백만)	31 (1회선×31백만)	-	-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329**	**495**	**495**	**-**	**-**
- 위탁운영(인건비)	267	369 (6명×5.2백만×12개월)	369 (6명×5.2백만×12개월)	-	-
- 시스템 유지보수	62	126 H/W (379백만×7%)+ S/W (1,001백만×10%)	126 H/W (379백만×7%)+ S/W (1,001백만×10%)	-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776**	**1,835**	**1,835**	**-**	**-**
- 위탁운영(인건비)	1,034	1,034 (16명×5.38백만×12개월)	1,034 (16명×5.38백만×12개월)	-	-
- 시스템 유지보수	662	591 H/W (3,799백만×7%)+ S/W (3,255백만×10%)	591 H/W (4,541백만×5.86%)+ S/W (4,128백만×7.87%)	-	-
- 인터넷 회선 사용료	96	120 (5회선×24백만)	120 (5회선×24백만)	-	-
- 인증서 발급 문자서비스	10	10 (1식×10백만)	10 (1식×10백만)	-	-
- 국제인증 갱신	80	80 (1회×80백만)	80 (1회×80백만)	-	-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1,276**	**1,196**	**1,276**	**80**	**6.6**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501**	421 교육과정 운영 (3개 집합×100백만+ 1개원격×81백만) 연수시스템 이용 (1식×40백만)	476 교육과정 운영 (3개 집합×100백만+ 1개원격×126백만) 연수시스템 이용 및 평가 관리 (1식×50백만)	55	13.0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775**	775 영재교육원 운영 (4개권역×190백만) 교육과정 운영 (1식×15백만)	800 영재교육원 운영 (4개권역×190백만) 교육과정 운영 (1식×15백만)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1식×25백만)	25	3.2
□ **비목**(합계)	**6,153**	**6,633**	**6,763**	**130**	**2.0**
○ 사업출연금(350-02)	6,153	6,633	6,763	130	2.0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교육, 현장점검, 홍보) 강화

○ 교육(행정)기관 및 교·직원이 안전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인증서의 발급·갱신·인증서비스 실시

○ 교육기관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정보보호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정보보호 우수인재 조기 발굴 및 양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6,15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2,772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329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77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276백만원			
'18	6,63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0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196백만원	6,63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0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196백만원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6,15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2,772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329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77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276백만원	6,76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5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276백만원	610
'20	6,15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2,772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329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77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276백만원	6,63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0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196백만원	
'21	6,15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2,772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329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776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276백만원	6,63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0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196백만원	
'22			6,633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3,107백만원 ■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495백만원 ■ 전자서명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1,835백만원 ■ 정보보호교육센터 및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1,196백만원	
연평균 증가율 (%)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예산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6,633	6,763	130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04.6	105.9	1.3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15.7	15.6	△0.1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 ② = 105.9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a. 37.76억원[1] ÷ 0.4890억원[2] = 77.2명 1) 인건비 총액: 교육(행정)기관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운영(22.73억원) +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운영(3.69억원) + 전자서명인증시스템 운영(10.34억원) 2)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표1>의 '정보서비스업' 1인당 연평균 임금총액 0.4890억원 적용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출연금(350-02) 29.87억원을 <표4>의 '정보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1.0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29.87억원 ÷ 1.04억원 = 28.7명 **□ 2018년 고용효과: 104.6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해당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제11조(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전자정부법」**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영재교육 진흥법」**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제14조(재정 지원)

○ 추진경위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정('07.3), 제5차 개정('16.4)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설치·운영('08.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설치·운영('08.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정('08.7), 제3차 개정('16.2)
- 교육부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제정('09.3), 제6차 개정('17.4)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백업센터 구축('10.5)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3) 및 시행('11.9)
- 정보보호 교육센터 지정·운영('12.10)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13.10), 제2차 개정('17.7)
-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설치·운영('14.8)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세종상황실 설치·운영('14.8)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정('14.11), 제1차 개정('16.11)
-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정('15.10)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정보보호사업	74	74	79	90	90	61	61	66	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79 (79)	( )	( )	79 (79)	79 (79)	( )	( )
'16년	90 (90)	( )	( )	90 (90)	90 (90)	( )	( )
'17년	61 (61)	( )	( )	61 (61)	61 (61)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6,153	6,153	6,633	-	6,633	6,633	100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 없음

○ 집행현황 : '18.12월까지 교육정보보호사업 출연금 100%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 최근 사이버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이버안전 시스템에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 요율을 편성하여 사이버안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2017년 예산 교문위)
-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 졸업생의 정보보호 분야로의 진출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2015년 결산 교문위)

-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은 교육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관리 만전을 기하면서 외부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2015년 국정감사, 윤관석의원)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 동향

- 사이버안전을 위해 선진 각국은 강력한 법.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위협상황에 대한 관제.대응 및 예방 역할을 수행

관제·대응	◦ 정부중심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보호기반 확보 ◦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해 CERT 활동을 전문화 (핵심 정보자원에 대한 상황 모니터링, 침해공격 정보수집 및 공유)
예방	◦ 관리적.기술적 형태의 단순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보안관리·평가, 보안컨설팅 개념을 포괄하는 정보보증(IA : Information Assurance)개념을 도입하여 수행

- **(미국)** 국가 사이버 사고 대응 계획 발표(2017.01)

·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중대한 사이버 사고 발생 시 연방 차원의 대처를 위한 NCIRP(Nation Cyber Incident Rseponse Plan)을 발표

- **(중국)** 사이버전사 양성에 중점

· 민간 정보보호 인력보다는 사이버전에 대비한 사이버 전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

* 중국내에는 500만 명이 넘는 해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인민해방군 내에서만 100만명 정도의 해커들을 사이버 부대로 양성 중

- **(일본)** '사이버보안기본법' 시행(2015.01)

· '사이버보안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이버보안전략본부, NISC(National center of Incident readiness and Strategy for Cybersecurity) 신설

· 관련 정보보안 예산이 127% 증가('14년 250억 엔, '15년 567억 엔)

⇒ 미국(국토안보부) : http://www.dhs.gov,
일본(내각관방 정보보호센터) : http://www.nisc.go.jp,
유럽 연합(네트워크, 정보보호청) : http://www.enisa.europa.eu

· 인증기관 신뢰도 향상과 보안서버(SSL)의 웹호환성 확보를 위해 선진 각국 정부(미국, 일본 등) 및 민간(Comodo, Symantec 등) 주요 인증기관은 웹트러스트 인증 갱신 및 웹브라우저 인증서 등록·유지관리 수행

○ 국내 동향

-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65개 단위·부문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호공조 체계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상황관제.대응 및 예방 역할 수행

관제·대응	◦ 다양한 사이버 위협상황 인지를 위한 정보보호센터별 시스템 구축 ◦ CERT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기술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예방	◦ 정보보호수준평가 등 관리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자원에 대한 근원적 취약점 해소 등 기술적 활동은 부분적(교육, 과학기술, 방송 분야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

⇒ 국가 사이버안전 총괄(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 정보보호기반 확보(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중앙행정기관의정보자원의 보호(정부통합전산센터)

- '17년 중국발 서버 취약점 공격 및 랜섬웨어 대량 유포, '16년 국방부 전용 사이버망 해킹 및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해킹메일 대량 유포 등 국가 기반시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대폭 강화

⇒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이버보안기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직급별.직무별 보안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

⇒ 사이버테러 모의훈련 시나리오 개발 및 정기적 실습훈련 시행하는 등 주요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이버테러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 한수원의 "정보보안 컨트롤타워인 '보안위원회' 신설" 및 발전소의 정보보안을 감독하는 사이버 보안담당 부서를 확대(현행 53명→70여명)하고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권한 부여

- 웹 공격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안전한 인증방법인 보안서버(SSL) 확대 요구(2015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파밍 및 피싱 등의 웹해킹 피해 급증에 따라 금융권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의 SSL인증서 도입 확산

(6)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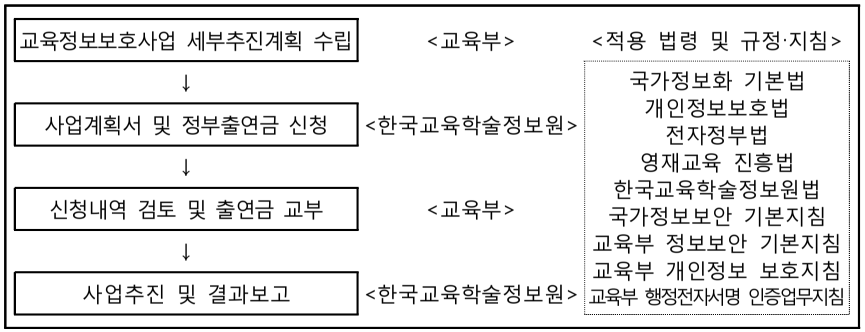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 건수 (단위:건)	목표	40,000	42,000	43,000	44,000	-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임계치에 도달하여 성과지표에서 제외		
	실적	40,123	42,861	43,190	-	-			
	달성도	100	102	100	-	-			
교육기관 정보보호수준 (단위:점)	목표	신규	76	77	80.2	80.5	최근 3년 실적치 평균(76.7점) 대비 5%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점수+정보보안 수준진단 결과점수)/2	교육기관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실적	74	76.3	79.8	-	-			
	달성도		100	103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예산반영 필요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장비 현황
○ (참고4)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장비 현황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필요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교육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교육기관 홈페이지 대상 사이버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적 취약점점검 예방 활동(취약점 패턴, 조치이력·등록관리 등) 강화를 위한 취약점 통합관리 솔루션 확대 구축 및 연 1회 취약점점검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 증설 요청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노출점검 지원 및 점검결과에 따른 체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단 운영 수요 발생
※ 홈페이지 도메인 전수조사('17.12) 결과: 32,374개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이용자)** 2017.4.~11.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원격)등록기관(시도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 661개) 인증업무 운영 실태점검(20개 기관 현장점검 포함) 및 의견청취 실시
·**(인증서비스 주요 개선요청 사항)** 모바일 및 멀티 브라우저에서 인증서 웹 호환성 확보(RFC5280 개발 적용 및 신규 CA 탑재 필요), Active-X제거 등

□ **(정보보호교육센터 교육수강생 및 교직원)** 교육센터 교육수강생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2016~17) 개선 요청사항 중 실습환경 개선 확대를 요청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교직원)**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맞춰 영재교육원별 선발인원 확대를 요청
※ 교육원 운영 : '14년부터 매년 권역별 90명 선발 및 교육
※ 운영 전체기간('14~'18년) 지원인원 3,424명, 선발인원 1,763명, 평균 경쟁률 2대1

< 예산(안) 반영 필요사항 >

□ **(보안취약점점검 체계 강화)** 교육기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악용한 사이버침해 확산방지를 위해 노후 취약점점검 서버 및 S/W 교체 필요

□ **(개인정보노출점검 후속조치 지원)**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에 따른 기관 관리취약부분 해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점검단 운영 필요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비스 강화)** 인증시스템 오류 개선 및 인증서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강화 및 신규 국제표준 준수 필요

□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노후화된 실습용 컴퓨터 등 인프라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

□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정원 증원(10~20% 내)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사이버 침해 전년대비 위협정보 예방(447개 기관) 건수 6.8% 증가, 침해 사고 건수는 35% 감소**

※ 사이버 위협정보 탐지 : '16년 42,861건 → '17년 43,190건

※ 사이버 침해사고 : '16년 207건 → '17년 181건

· 홈페이지(3,367개) **취약점**(총11,446건) 점검결과 **평균 발견 건수 0.68건 감소**

※ 1개 홈페이지 당 취약점 평균 발견건수 : '16년 4.08건 → '17년 3.40건

□ 교육기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전년대비 약 4.7% 향상**

· '16년(76.29점) 대비 '17년(79.84점) **수준진단 결과 약 3.6점 상승**

구분	대상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2016	2017	2016	2017
시·도교육청	17	95.23 (17)	96.11 (17)	95.85 (17)	96.21 (17)
대학 및 소속기관 등	431	73.61 (426)	76.76 (426)	79.27 (400)	77.36 (426)
전체 평균		74.45	77.50	78.13	82.18

※ ( )는 수준진단 실시 기관수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응역량 증가**

·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2,287명** 실시 및 **선도요원 78명 양성**

· **대학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개발·보급**

※ 각종 조사서 등 개인정보 수집 서식 정비 및 개인정보파일 목록 제공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 운영**으로 현장소통 창구 마련

< 현장의 변화 >

□ 교육(행정)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

·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기관 홈페이지의 고유식별번호 노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일선기관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이 높아짐**

※ 행안부 개인정보 검출 건수: '15년 25,476건 → '16년 2,233건 → '17년 660건

· 교육기관 주요 홈페이지 대상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학생 및 학부모 정보 침해 예방**

· '16년 초·중등학교에 이어 '17년 대학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폐기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 및 학부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참고 3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장비 현황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요약

○ H/W

구분	수량(단위:식)	도입금액(단위:원)
서버	71	1,640,268,610
통신 및 보안	52	1,543,646,900
스토리지	13	757,390,219
기반시설	44	290,811,310
합계	**180**	**4,232,117,039**

○ S/W

구분	수량(단위:식)	도입금액(단위:원)
개발	17	2,250,568,888
상용	337	3,597,620,239
합계	**354**	**5,848,189,127**

□ 2019년도 운영장비 현황 상세

가. 서버 (71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위협관리시스템	HP rx2620	2007	48,400,000	2	
2	종합분석시스템	IBM p6 570	2007	424,564,000	7	
3	종합분석시스템 업데이트	IBM x2850	2007	12,250,000	1	
4	침해위협탐지시스템 Web	Intel SR2600	2007	2,100,000	1	
5	메일시스템	HP DL320	2007	3,800,000	1	
6	웹위변조 탐지시스템	IBM x3550	2008	27,248,000	2	
7	ESM 시스템	IBM p5 510	2008	29,385,000	1	
8	백업시스템	IBM p5 510	2008	14,197,000	1	
9	악성메일테스트 시스템	IBM x3650	2009	4,300,000	1	
10	통합패킷분석시스템	IBM p6 550	2009	43,000,000	1	
11	침해위협탐지시스템	IBM x3650	2009	7,435,000	1	
12	침해위협탐지시스템 DB	IBM p6 520	2009	19,200,000	1	
13	좀비PC 종합관리시스템	IBM x3650	2009	16,000,000	1	
14	좀비PC 탐지 레포트 시스템	Dell R710	2009	7,810,000	1	
15	DNS 싱크홀 시스템	IBM x3650	2010	22,000,000	4	
16	사이버안전지원시스템	IBM x3550	2011	15,800,000	2	
17	좀비PC 관리지원시스템	Dell R510	2011	30,000,000	1	
18	종합정보분석 검색시스템	IBM x3650	2011	22,316,000	2	
19	좀비PC 관리 매니저	Dell R510	2011	2,200,000	1	
20	침해위협탐지시스템 통합매니저	Intel SR2600	2011	55,000,000	1	
21	탐지기술배포시스템	Intel SR2600	2011	10,000,000	1	
22	탐지기술관리시스템	IBM x3650	2011	18,000,000	1	
23	탐지기술관리 DB	IBM x3650	2011	15,000,000	1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24	침해위협탐지시스템 DB	IBM x3650	2011	15,000,000	1	
25	침해위협탐지시스템 매니저	IBM x3650	2011	12,000,000	1	
26	취약점 진단 시스템	IBM x3550	2011	35,000,000	5	
27	취약점 진단 시스템	IBM x3550	2012	10,505,000	2	
28	침해위협탐지시스템 통합매니저	IBM x3850	2012	88,815,000	3	
29	침해위협탐지시스템 통합 DB	IBM x3850	2012	62,074,500	2	
30	패킷분석시스템	IBM x3850	2012	94,545,000	3	
31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IBM x3650	2012	19,100,000	2	
32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DB	IBM x3650	2012	10,505,000	1	
33	매체제어 시스템	IBM x3250	2012	19,900,000	1	
34	온라인실습시스템	Dell R720	2012	30,000,000	3	
35	통계관리시스템 Web	IBM x3650	2013	24,218,000	1	
36	통계관리시스템 DB	IBM x3650	2013	16,100,000	1	
37	통계관리시스템 데이터 수집	IBM x3650	2013	8,964,000	1	
38	상황관제 대시보드 시스템	IBM x3850	2013	46,345,000	1	
39	취약점 진단 시스템	IBM x3650	2013	10,368,000	1	
40	정보보호수준진단관리시스템	IBM x3630	2013	5,572,600	1	
41	취약점 진단 시스템	IBM x3650	2014	37,701,510	2	
42	침해위협관리시스템 DB	IBM x3850	2015	183,150,000	1	
43	침해위협관리시스템 매니저	IBM x3850	2015	50,000,000	1	
44	ECSC 예비 시스템	Dell PowerEdge R630	2015	10,400,000	1	
소계				1,640,268,610	71	

나. 통신 및 보안(52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ECSC 라우터	Cisco Catalyst 7304	2007	28,913,500	1	
2	ECSC 스위치(L3)	Cisco Catalyst 4507 R-E	2007	48,513,400	1	
3	ECSC 스위치(L2)	Cisco Catalyst WS2900	2007	2,310,000	1	
4	ECSC 내부 IPS	윈스테크넷 IPS E2000	2007	23,000,000	1	
5	ECSC 침해위협탐지 수집	정보보호기술Tess-Sensor	2007	29,700,000	1	
6	ECSC 스위치(L4)	Pumkin LX-4020	2008	17,500,000	1	
7	ECSC 스위치(L3)	Cisco Catalyst 4507 R-E	2009	63,400,000	1	
8	ECSC 스위치(L4)	Pumkin LX-4020	2008	19,600,000	1	
9	ECSC 내부 IPS	윈스테크넷 IPS E2000	2009	32,000,000	1	
10	ECSC 원격 관리	알서포트 RCAP-2000	2009	18,200,000	1	
11	DDoS 모니터링	Secui CM2000	2009	50,000,000	1	
12	좀비PC 탐지 시스템	TrendMicro TDA 2.5	2009	40,000,000	1	
13	DDoS 모니터링	Secui CM2000	2009	19,500,000	1	
14	ECSC 스위치(L2)	Alcatel	2011	28,000,000	2	
15	ECSC 스위치(L4)	파이오링크 PAS8200	2011	72,000,000	2	
16	ECSC 스위치(L2)	한드림넷 SG3024G	2011	4,400,000	1	
17	좀비 PC 탐지시스템	안랩 TrusWatcher ZPX 2000	2011	18,700,000	1	
18	DDoS 모의훈련시스템	NetSpear NSP-4000	2011	110,000,000	1	
19	좀비 PC 치료시스템	안랩 APC Appliance5000	2011	10,450,000	1	
20	DDoS대응시스템	Secui NXG 2000D	2011	26,400,000	2	
21	DDoS 분석시스템	Secui CM2000	2011	11,000,000	1	
22	ECSC 스위치(L2)	3Com 3CRBSG5293	2011	1,200,000	1	
23	ECSC 패치 관리시스템	안랩 APC 2000	2011	6,000,000	1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24	ECSC 스위치(L2)	Alcatel L2	2012	14,000,000	2	
25	악성코드 유포지탐지시스템	인포섹 W-Shield	2014	63,525,000	1	
26	ECSC 내부 방화벽	안랩 TrusGuard 400A	2015	43,692,000	2	
27	ECSC 스위치(L4)	Radware Alteon 4024	2015	48,400,000	2	
28	ECSC 내부 IPS	윈스테크넷 IPS NE2000	2015	68,400,000	2	
29	ECSC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WAPPLES-2200	2015	85,800,000	2	
30	ECSC 스위치(L2)	HP HPE5900AF	2016	90,136,000	8	
31	ECSC 스위치(백본)	HP HPE10504	2016	68,432,000	2	
32	원격접근제어시스템	지니네트웍스 Genian	2016	11,575,000	1	
33	통합보안시스템(UTM)	에스지앤 SA-2000	2016	3,600,000	2	
34	악성코드 분석시스템	FireEye AX8400	2017	270,600,000	1	
35	침해사고 분석·대응 시스템	FireEye HX4402	2017	94,700,000	1	
소계				1,543,646,900	52	

다.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13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위협관리시스템 저장소	HP MSA 1000	2007	34,100,000	1	
2	종합정보분석시스템저장소	IBM DS4700	2007	73,352,000	1	
3	통합 백업 저장소	IBM TS3310	2008	37,107,219	1	
4	저장소 네트워크	IBM SAN-16B	2008	6,235,000	1	
5	좀비 PC 탐지 시스템저장소	Hitachi AMS 2300	2009	195,160,000	1	
6	저장소 네트워크	Brocade SAN-300	2009	8,900,000	2	
7	위협탐지시스템 저장소	Hitachi NAS3080	2012	321,636,000	1	
8	저장소 네트워크	Brocade SAN-300	2012	8,900,000	2	
9	온라인 실습 환경 시스템 저장소 네트워크	Brocade SAN-300	2012	4,500,000	1	
10	온라인 실습 환경 시스템 저장소	Dell PowerVault MD3600f	2012	18,000,000	1	
11	위협탐지시스템 저장소	Hitachi VSP	2015	49,500,000	1	
소계				757,390,219	13	

라. 기반시설(44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32인치 티비	LG32LK450/S	2011	2,780,000	4	
2	복합기	삼성전자CLX-9250ND	2011	3,900,000	1	
3	공기청정기	삼성전자SAP-S708	2011	800,000	1	
4	파쇄기	대진코스탈KS-1275	2011	1,250,000	1	
5	스위칭허브	3com/3CRBSG5293	2011	1,200,000	1	
6	NAS	LG NS2 Black LG	2011	2,300,000	1	
7	워크스테이션	Dell Precision T1600 WorkStation	2011	2,200,000	1	
8	프로젝터	NEC M420XV	2012	1,454,310	1	
9	음향	인터엠/MX-1242(Audio Mixer)	2013	880,000	1	
10	음향	인터엠/EQ-2231(EQ)	2013	1,100,000	2	
11	음향	인터엠/L-1400(Power Amp)	2013	1,540,000	2	
12	음향	인터엠/SQ-28(Speaker)	2013	2,640,000	4	
13	음향	인터엠/PD9359A(Power Distibutor)	2013	330,000	1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4	음향	인터엠/WRX-P701(W/L Mic System)	2013	495,000	1	
15	음향	인터엠/MD310(Dynamic Mic)	2013	242,000	2	
16	영상	BP-S552(DID 모니터)	2013	144,000,000	12	
17	영상	NURICON(Wall 컨트롤러)	2013	80,000,000	1	
18	영상	DMS2020MX(RGB/DM Matrix)	2013	20,000,000	1	
19	영상	IMCU-2040(통합 컨트롤시스템)	2013	8,000,000	1	
20	에어컨	LG WHISEN 시스템	2013	13,700,000	4	
21	에어컨	LG WHISEN FNC156	2013	2,000,000	1	
소계				290,811,310	44	

마. 개발소프트웨어 (17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종합정보분석시스템	SGA 침해사고대응시스템	2009	505,358,888	4	
2	위협관리시스템					
3	사이버안전지원시스템					
4	웹위변조시스템					
5	통합패킷분석시스템	센트리솔루션 통합패킷분석시스템	2009	60,000,000	1	
6	메일훈련시스템	행복한 곳간 메일훈련시스템	2009	20,000,000	1	
7	웹 취약점 점검 포털	인트라코어 웹 취약점 점검 포털	2011	95,000,000	1	
8	위협관리매니저	코닉글로리 TESS-TMS	2011	34,000,000	1	
9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2011	95,000,000	1	
10	위협관리통합매니저	코닉글로리 TESS-UMS	2012	264,100,000	1	
11	패킷분석시스템	코닉글로리 TESS-PAS	2012	70,000,000	1	
12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코닉글로리 탐지기술배포 관리시스템	2012	103,200,000	1	
13	통계관리시스템	BTL Data Integrator	2013	33,000,000	1	
14	보안관제실 상황판 시스템	NETIS EMS	2013	71,500,000	1	
15	보안관제실 상황판 시스템	NETIS SMS	2013	60,500,000	1	
16	정보보호수준진단시스템	타임소프트 정보보호수준진단 시스템	2017	77,510,000	1	
17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교육기관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2017	761,400,000	1	
소계				2,250,568,888	17	

바. 상용소프트웨어 (337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100	2007	5,280,000	2	
2	침해사고대응시스템 ESM	이글루시큐리티 Spider ESM	2007	40,700,000	1	
3	위협관리시스템 DB	Oracle Ent Named 100	2007	70,300,000	1	
4	침해사고대응시스템 WAS	TMAX JEUS	2007	54,516,000	3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5	위협관리시스템 WAS	TMAX WebToB	2007	10,560,000	3	
6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Ent Named 100	2008	65,000,000	1	
7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100	2008	31,500,000	3	
8	좀비PC 분석시스템	TrendMicro TMSP	2009	50,000,000	1	
9	취약점점검시스템 DB	MSSQL 2008	2009	1,600,000	1	
10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Ent Named 150	2010	78,439,243	1	
11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Times Ten In-Memory	2010	46,684,916	1	
12	침해사고대응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150	2010	2,463,000	1	
13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0	37,307,600	1	
14	침해사고대응시스템 WAS	TMAX WebToB	2011	12,400,000	2	
15	침해사고대응시스템 WAS	TMAX JEUS	2011	36,000,000	2	
16	위협관리시스템 DB	Oracle RAC	2011	234,200,000	1	
17	백업 관리 시스템	Virbak-Abio DB(Unix)	2011	5,600,000	1	
18	백업 관리 시스템	Virbak-AbioDB(Windows)	2011	6,600,000	1	
19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Express	2011	115,500,000	1	
20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1	110,000,000	1	
21	침해위협탐지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50	2012	20,000,000	2	
22	패킷분석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100	2012	30,000,000	1	
23	탐지기술배포관리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50	2012	10,000,000	1	
24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2	100,000,000	2	
25	교육센터 온라인 실 습 시스템	VMware vSphere 5	2012	19,700,000	1	
26	온라인 실습 시스템 백업	Acronis TrueImage	2012	19,965,000	1	
30	위협관리시스템 S/W	코닉글로리 TESS S/W	2013	825,000,000	100	
31	통계관리시스템 DB	Oracle Ent Named 200	2013	66,000,000	1	
32	통계관리시스템 수집 S/W	IBM Cognos Portal	2013	88,000,500	1	
33	교육센터 온라인 실 습 시스템	VMware vSphere 5	2013	36,300,000	1	
34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3	71,500,000	1	
35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4	80,118,990	2	
36	대량 보안 메일 발송 시스템	소프트이십오 JX-Mail 4.5	2014	33,000,000	1	
37	침해위협 문자 발송 시스템	아이더블유네트웍스 iM@iler	2014	40,546,000	1	
38	위협관리시스템 DB	Oracle Std Named 150	2015	18,700,000	1	
39	보안취약점 점검 S/W	IBM AppScan Standard	2015	48,500,000	1	
40	위협관리시스템 S/W	코닉글로리 TESS S/W	2015	493,210,990	80	
41	위협관리시스템 S/W	코닉글로리 TESS S/W	2015	473,000,000	80	
42	서버보안 S/W	Secuve TOS(UNIX)	2015	19,800,000	3	
43	서버보안 S/W	Secuve TOS(Windows)	2015	15,444,000	6	
44	서버보안 S/W	Secuve TOS(UNIX)	2016	33,000,000	5	
45	서버보안 S/W	Secuve TOS(Windows)	2016	41,184,000	16	
소계				3,597,620,239	337	

참고 4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장비 현황**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시스템 운영장비 현황 요약

○ H/W

구분	수량(단위:식)	도입금액(단위:원)
서버	99	2,731,652,000
네트워크 및 보안	54	1,349,183,000
기반시설	131	460,332,800
합계	**284**	**4,541,167,800**

○ S/W

구분	수량(단위:식)	도입금액(단위:원)
개발 및 상용	227	4,127,929,660
합계	**227**	**4,127,929,660**

□ 2019년도 운영장비 현황 상세

가. 서버 (99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OCSP 서버	IBM P570	2008	42,407,000	2	
2	CA/WEB	IBM P570	2008	44,407,000	2	
3	하드웨어관리콘솔	IBM Netbay Console	2008	5,000,000	2	
4	하드웨어관리콘솔	VTS-II	2008	2,410,000	2	
5	통합로그스토리지	FAS2020	2009	20,000,000	1	
6	SAN 스위치	Brocade 300	2009	10,810,000	1	
7	통합로그관리	LOGCENTER	2009	55,000,000	1	
8	RA 서버	IBM P550	2010	74,000,000	1	
9	DB 서버	IBM P550	2010	74,000,000	1	
10	하드웨어관리콘솔	IBM 7042-CR5	2010	5,000,000	1	
11	SAN 스위치	Brocade 300	2010	9,000,000	1	
12	하드웨어관리콘솔	HP	2010	7,129,000	1	
13	CA/RA 서버	IBM P710	2011	176,000,000	4	
14	WEB 서버	HP rx2800	2011	25,000,000	1	
15	GW 서버	HP rx6600	2011	30,000,000	1	
16	보안메일서버	IBM P740	2011	30,800,000	1	
17	LDAP 서버	IBM P740	2012	84,000,000	2	
18	WAS 서버	IBM P740	2012	42,000,000	1	
19	NTP 서버	TempusLxCDMA	2012	19,800,000	2	
20	OCSP 서버	IBM P740	2013	144,800,000	4	
21	DB 서버	IBM P740	2013	100,500,000	2	
22	개인정보 통합감시 서버	x3650M4	2013	10,000,000	1	
23	ldap	P740	2015	80,000,000	2	
24	웹	P740	2015	80,000,000	2	
25	보안메일	P740	2015	80,000,000	2	
26	백업	P740	2015	40,000,000	1	
27	NMS/SMS	P720	2015	25,000,000	1	
28	보안서버진단	X3650M5	2015	16,000,000	2	
29	인증서비스상황관제	X3650M5	2015	8,000,000	1	
30	웹서비스 상황관제	X3650M5	2015	8,000,000	1	
31	시스템 계정관리	X3650M5	2015	8,000,000	1	
32	통합스토리지	STORWISE V7000	2015	65,000,000	1	
33	SAN 스위치	SAN24B-5	2015	16,000,000	2	
34	하드웨어관리콘솔	IBM	2015	11,000,000	2	
35	SAN 스위치	SAN48B-5	2016	10,000,000	1	
36	WAS 서버	S824	2016	90,000,000	2	
37	DB 서버	S824	2016	45,000,000	1	
38	Gateway 서버	S824	2016	45,000,000	1	
39	WEB 서버	S824	2016	45,000,000	1	
40	원격지원 서버	RemoteCall V6	2016	10,000,000	1	
41	HSM 서버	Luna SA	2016	102,000,000	2	
42	IBM 테스트서버	S822	2016	35,000,000	1	
43	HP 테스트서버	rx2600	2016	35,000,000	1	
44	Windows 테스트서버	X3650M5	2016	12,000,000	1	
45	SUN 테스트서버	M10-1	2016	40,000,000	1	
46	실시간 원격지백업관리	NetBackup Appliance	2016	95,000,000	2	
47	통합 스토리지	V7000	2016	60,000,000	1	
48	Rack	IBM 42U Rack	2016	3,229,000	1	
49	하드웨어관리콘솔	IBM	2016	10,800,000	6	
50	SCVP 서버	S822	2017	76,000,000	2	
51	DR SCVP 서버	S822	2017	76,000,000	2	
52	EGW DR LDAP	S822	2017	38,000,000	1	
53	EPKI DR LDAP	S822	2017	38,000,000	1	
54	HSM	LunaSA57000	2017	118,000,000	2	
55	Tape Backup Library	TS3200	2017	25,000,000	1	
56	KMS	KsignKMS	2017	170,000,000	5	
57	CTI 스토리지	V5010 SFF	2017	28,000,000	1	
58	IP-PBX	Ericsson-LG BIZ-A	2017	22,000,000	2	
59	CTI 서버	x3250M6	2017	9,000,000	1	
60	IVR 서버	x3250M6	2017	9,000,000	1	
61	상담통계 서버	x3250M6	2017	9,000,000	1	
62	녹취 서버	x3250M6	2017	9,000,000	1	
63	상담 APP 서버	x3250M6	2017	9,000,000	1	
64	하드웨어관리콘솔	HMC 1:7042-CR9	2017	8,560,000	1	
총계				2,731,652,000	99	

나. 네트워크 및 보안 (54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TMS	TAS 5000(tms v4.5)	2009	36,300,000	1	
2	라우터	CISCO 7204VXR	2010	47,000,000	1	
3	IPS	SNIPER IPS E2000	2010	32,000,000	1	
4	L4 스위치	AppDirector 1016	2010	62,000,000	2	
5	라우터	PA-2FE-TX	2011	6,600,000	1	
6	IPS	Sniper IPS E2000	2011	27,500,000	1	
7	L2 스위치	CISCO 2960G	2011	3,080,000	1	
8	DB 방화벽 및 매니저	DISG-1000 AIMNG-AS	2012	217,500,000	8	
9	SSL VPN	SSL PLUS 1000	2012	54,505,000	3	
10	방화벽	XTM 6500	2012	64,295,000	4	

11	네트워크 모니터링	NTO 52369	2013	34,403,000	1	
12	IPS	Sniper IPS E4000	2015	70,000,000	2	
13	웹방화벽	WAPPLES 2200	2015	70,000,000	2	
14	L4 스위치	ServerIron ADX 1016F	2015	150,000,000	6	
15	L2 스위치	ICX7450-24	2015	12,000,000	4	
16	라우터	ASR-9001-S	2016	130,000,000	2	
17	라우터	ASR-1001-X	2016	50,000,000	1	
18	DDoS	SNIPER ND4000	2016	74,000,000	2	
19	IPS	SNIPER NE4000	2016	37,000,000	1	
20	방화벽	XTM-6100	2016	35,000,000	1	
21	L4 스위치	ADX 1016F	2016	35,000,000	1	
22	L2 스위치	ICX7450-24	2016	8,500,000	2	
23	L4 스위치	PAS-K2424	2017	50,000,000	2	
24	웹방화벽	WAPPLES-2200	2017	28,000,000	1	
25	CTI 교환기	UCP-100	2017	8,000,000	1	
26	IPCC Core 스위치	CISCO Catalyst 3650 - 24T	2017	3,000,000	1	
27	PoE 스위치	CISCO Catalyst 3650 - 24P	2017	3,500,000	1	
총계				1,349,183,000	54	

다. 전자서명인증센터 기반시설(131식)

번호	구분	제품명	도입년도	도입가격	수량	비고
1	TEST용 PC	Lenovo M57	2009	3,876,000	2	
2	관리자용PC	DM-C210-PA01S	2010	3,300,000	2	
3	모니터	ThinkVision L220p	2011	1,438,800	4	
4	관리자용PC	CN/DM-V200-PA17G	2011	760,000	1	
5	모니터	ThinkVision L2251p	2011	1,740,000	6	
6	상담용PC	DM-Z650-PA51	2011	8,130,000	6	
7	망분리PC	Dell Optiplex 790 Ultra Small Form Factor	2011	10,000,000	10	
8	상황실 PC	DB405S2A-B02G	2011	5,880,000	6	
9	망분리PC	Dell Optiplex 790 Ultra Small Form Factor	2012	4,400,000	4	
10	모니터	ThinkVision L2252p	2012	1,600,000	4	
11	상황실PC	DG354-G451-DD00	2015	10,500,000	10	
12	상황실모니터	LS24C350HLAGKR	2015	5,100,000	20	
13	공기 청정기	SAP-G709	2008	790,000	1	
14	복합기	CN/DC-IV C2260G	2010	4,950,000	1	
15	did모니터	BP-S552	2016	96,000,000	8	
16	wall컨트롤러	VierFlex	2016	80,000,000	1	
17	RGB/DVI	DMS2020MX	2016	20,000,000	1	
18	에어컨	LG에어컨	2016	13,700,000	4	
19	통합컨트롤러	IMCU-2040	2016	8,000,000	1	
20	PMS	EMS 2000A	2017	15,000,000	1	
21	NAC	SNAC A1	2017	30,000,000	1	
22	IP-Phone	LIP-8008E	2017	7,000,000	20	
23	FMS	sensorProbe2	2018	9,700,000	6	
24	항온항습기	PA020-A2HS-U	2018	47,508,000	2	
25	CCTV	XND-6010, XRN-410S	2018	6,800,000	5	
26	출입통제시스템	AC-5000, AC-7000	2018	8,660,000	3	
27	UPS	ETUS	2018	55,500,000	1	
합계				460,332,800	131	

[500]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1,951	2,073	1,835	**△238**	**△11.4**

* 사업코드 : 11-11-0-050-051-7000-7034

* 담 당 자 : 교육안전국장(류정섭), 교육정보화과장(이소영), 서기관(서혜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교육부 정보 공유 및 맞춤형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 제고 - 부내 정보보안/네트워크 장기 유지 보수와 보안 정책 설정 및 변경관리 실시를 통한 안전강화 - 행정업무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 기관 : 교육부, 소속기관 등(1,509기관) - 시스템 : PC 1,987대, 모니터 1,313대, 서버 및 네트워크, 부내 정보시스템(위키포털, 대표홈페이지 등)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업무용 노후장비교체 : 225백만원

- 업무용 노후 장비(PC, 모니터) 교체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
- 산출내역 : 225백만원
  - ☞ (PC) 1,000천원 × 200대 = 200백만원
  - ☞ (모니터) 250천원 × 100대 = 25백만원

○ 업무정보시스템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 162백만원

- 부내 업무 다양화 및 전문화 등으로 업무 시스템 신규개발 및 기능개선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 업무 환경 구축
- 산출내역 : 162백만원(724FP × 600천원 × 37.4%)

○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개선 및 EA정보 현행화 : 50백만원

- 범정부 EA정보 및 서비스 지원체계 원활한 운영 및 성숙도 측정 대상 기관 중심으로 정보 현행화 추진
- 산출내역 : 50백만원(231.4FP×480천원×45.2%)

○ 교육부 홈페이지 개선 솔루션 구축 : 90백만원

- 홈페이지 UI 개발 및 SNS 홍보 콘텐츠 탑재, 온-교육 여론수렴 등을 위한 솔루션 및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구축
- 산출내역 : 90백만원
  - ☞ (홈페이지 개선) 40백만원(185.6FP × 480천원 × 45.2%)
  - ☞ (솔루션 구축 및 개선비용) 50백만원(25백만원 × 2종)

○ 부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 463백만원

-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데이터 무결점 보장을 위한 부내 정보시스템 테이블 표준화 및 정규화 진행
- 산출내역 : 463백만원
  - ☞ (위키포털 개선) 313백만원(10,750FP×600천원×4.86%)
  - ☞ (보안/네트워크 솔루션 도입 및 교체) 150백만원(50백만×3종)

○ 부내 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 : 707백만원

- 내·외부망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위해 외부 전문 업체 용역을 통한 대응 및 관리
- 산출내역 : 707백만원(12개월 × 58.9백만원)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계
IT도움센터 운영		641	641	571	1,852
H/W 유지보수	네트워크	49	49	40	138
	보안	32	32	22	86
	정보시스템	22	22	12	56
상용 S/W 유지보수		73	73	63	209
합 계		816	816	707	2,339

○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 8백만원

- 탐지시스템 설치장소 외 주요시설 수시 무선도청 탐지
- 산출내역 : 8백만원(89,000천원(도입금액) * 9%(유지보수요율))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100백만원

- 부내 행정 업무를 위한 필수 업무 SW
- 산출내역 : 100백만원
  - ☞ (MS오피스) 500Users × 100천원 = 50백만원
  - ☞ (백신SW 라이선스) 내PC 지키미, 백신 등 SW 4종, 40백만원
  - ☞ (알툴즈 통합팩) 10백만원

○ 부내 시설장비유지 : 12백만원

- 부내 정보화장비 및 전산시설(PC포함) 유지보수
- 산출내역 : 12백만원(1,000천원×12月)

○ 조달 수수료 등 : 18백만원

- 부내 정보화 물품, SW 등 조달 수수료, SMS,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 산출내역 : 18백만원
  - ☞ (조달 수수료) 10백만원
  - ☞ (인터넷회선사용료) 6.2백원(52만원 × 12월)
  - ☞ (SMS 발신료) 1.2백만원(10만원×12월)
  - ☞ (평가수당) 0.8백만원(7만원×6명×2회)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2,073	1,835
■업무용 노후 장비 교체	(225백만원)PC 및 모니터 구입	(225백만원)PC 및 모니터 구입
■업무정보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162백만원) 업무 시스템 신규 개발 및 기능개선 고도화	(162백만원) 업무 시스템 신규 개발 및 기능개선 고도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개선 및 EA정보 현행화	(50백만원) 교육부 EA 성숙도 개선 및 정보현행화	(50백만원) 교육부 EA 성숙도 개선 및 정보현행화
■교육부 홈페이지 개선 솔루션 구축	(90백만원) 홈페이지 UI 개발, 콘텐츠 관리 등	(90백만원) 홈페이지 UI 개발, 콘텐츠 관리 등
■부내업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	(548백만원) 부내 정보시스템 테이블 표준화 등	(463백만원) 부내 정보시스템 테이블 표준화 등
■부내 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 용역비	(816백만원) 내·외부망 정보시스템 외부 전문업체 용역	(707백만원) 내·외부망 정보시스템 외부 전문업체 용역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52백만원) 필수 업무 SW 라이선스 사용료	(152백만원) 필수 업무 SW 라이선스 사용료
■부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12백만원) 부내 정보화 장비 및 전산시설 유지보수	(12백만원) 부내 정보화 장비 및 전산시설 유지보수
■수수료 등	(18백만원) 조달 수수료, SMS 사용료 등	(18백만원) 조달 수수료, SMS 사용료 등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	(8백만원) 조달 수수료, SMS 사용료 등

□ **지원 필요성**

○ 교육부 시스템 정보 공유 및 맞춤형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구성원과 수요자 동시만족 추구를 통한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 **윈도우 7 운영체제 보안 지원 중단 예정**('20.1.14) 및 PC노후화에 따라 PC교체를 통한 **보안 문제 해결 노력**

○ 부내 각 시스템 유지보수, 개인정보화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등 **IT사업 각 분야에 투**자되고 있어, **중소 정보화 사업 육성 및 활성화 기여**하는 등 **확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1,951**	**2,073**	**1,835**	**△238**	**△11.4**
■ 업무용 노후 장비 교체	140	225 (100만×200대) (25만×100대)	225 (100만×200대) (25만×100대)	-	-
■ 업무정보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170	162 (724FP×600천원 ×37.4%)	162 (724FP×600천원 ×37.4%)	-	-
■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개선 및 EA정보 현행화	50	50 (231.4FP×480천원 ×45.2%)	50 (231.4FP×480천원 ×45.2%)	-	-
■ 교육부 홈페이지 개선 솔루션 구축	100	90 (185.6FP×480천원 ×45.2%)	90 (185.6FP×480천원 ×45.2%)	-	-
■ 부내업무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591	548 (10,952FP×600천원×4.86%) (62.5백만×4종)	463 (9,210FPx0.6백만원x5.66%) (3종x50백만원)	**△85**	**△15.5**
■ 부내 정보시스템 위탁 유지보수 용역비	712	816 (132MM×5.22백만×92.8%) (787×9.15%) (연간사용료 지불:3) (1,202X8.5%)	707 (117.5MM×5.22백만×92.8%) (787×9.15%) (연간사용료 지불:3) (1,202X8.5%)	**△109**	**△13.4**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52	152 (30.4백만×5종)	100 (500Usersx0.1백만원) (4종x10백만원) (1종x10백만원)	**△52**	**△34.2**
■ 부내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14	12 (100만×12개월)	12 (100만×12개월)	-	-
■ 수수료 등	22	18 (150만×12개월)	18 (150만×12개월)	-	-
■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	-	8 (9%x89백만원)	**8**	**100**
□ **비목**(합계)	**1,951**	**2,073**	**1,835**	**△238**	**△11.4**
○일반수용비(210-01)	21	18	18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6	164	112	**△52**	**△31.7**
○ 일반용역비(210-14)	712	816	715	**△101**	**△14.1**
○ 일반연구비(260-01)	602	550	565	**15**	**2.6**
○ 자산취득비(430-01)	450	525	425	**△100**	**△23.2**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관의 행정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IT 인프라 자원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지속적 예산투입 필요

○ 모바일 플랫폼 기반 업무 확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개선, 범정부 클라우딩 컴퓨팅 기반 확대 등 최신 IT기술 기반 확대에 따른 투자 필요

○ 협업포털을 통한 부내 구성원간 유기적 정보공유 체제 제공 등 행정 업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확대 필요

- 사용 편의성, 활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 정보화 자원의 노후화에 따른 PC 등 개인장비, 서버, 스토리지 등의 지속적 교체를 통한 안정적 행정지원 필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2,071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2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18	2,073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4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2,073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4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0
'19	2,071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2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1,835	- 업무시스템 개발: 179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100백만 - 보안성 강화: 548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1,128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1595백만 - 부내시스템 시설장비: 12백만 -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유지보수: 11백만 - 수수료 등: 24백만	△236
'20	2,071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2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2,073	- 업무시스템 개발:527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10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390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6백만 - 수수료 등:22백만	2
'21	2,071	- 업무시스템 개발:460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9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225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2백만 - 수수료 등:18백만	2,073	- 업무시스템 개발:527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10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390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6백만 - 수수료 등:22백만	2
'22			2,073	- 업무시스템 개발:527백만 - 통합EA 활용 확산:50백만 - 대표홈페이지개편:100백만 - 보안성 강화:250백만 - 위키도움센터 운영:816백만 - 노후 정보화 장비 교체:390백만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166백만 - 수수료 등:22백만	
연평균 증가율 (%)	0		0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5조(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및 조달청고시 제2016-40호(내용연수)

○ 추진경위

- 업무혁신 포탈(위키포탈)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05.3월)
- 행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05.12월)

※ '06년~현재 57종 구축(29종 운영), '06년 통합서버 체제 구축

- 보안강화를 위한 내·외부망간 분리('09년)
- 교과부 통합 홈페이지 및 부속 홈페이지 개통('08.8월)
- 모바일오피스 서비스 운영(메일 등 8개 항목)('10.9월)

※ 현재 국정원 지적사항(보안 강화)으로 서비스 중단('17.1~)

- 부내 행정업무정보화 전략계획(ISP)수립('14.12월)
- 교육부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17.7~12월)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행정업무정보화 지원사업	13.54	0	27.88	23.01	0	20.71	0	20.73	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7.88 ( )	0.61 ( )	( )	28.50 ( )	26.25 ( )	0.59 ( )	1.66 ( )
'16년	23.01 ( )	0.58 ( )	( )	23.59 ( )	22.06 ( )	0 ( )	1.55 ( )
'17년	20.71 ( )	0 ( )	0 ( )	20.71 ( )	19.51 ( )	0 ( )	1.2 ( )

- (이월) 15, 16년도 고도화 사업 종료 시점 연기
- (불용)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 발생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071	0	2,073	0	2,073	1,702	82.1

○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없음

○ 집행현황

▪ SMS 및 인터넷회선, 부내 보안 장비 도입, EA 계약 선급금, 부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전년 12월	익년 부내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확정	국회→기획재정부→교육부
2월	부내업무 정보시스템 수요조사	부내업무 담당자
3월	사업계획 수립	교육정보화과
4월~11월	사업진행(단계별 감리 수행, 업무담당자 현장 검수)	교육정보화과→업무담당자
11월~12월	사업수행 개선안 도출 및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교육정보화과

※ 적용 법령 및 규정·지침
- ○ 부내업무 정보시스템 고도화
  -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수행 :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 감리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EA 기능개선
  - 기본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맞춤형 업무정보 서비스만족도(단위:%)	목표	82	폐지	-			-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업무정보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맞춤형업무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
	실적	83	-	-					
	달성도	101.2	-	-					
업무활용지수(단위:지수)	목표	신규	6.5	6.8	폐지		-	∑기능별활용건수(천건)/전체이용자(명)	맞춤형 업무정보시스템 DB
	실적	-	6.5	6.9					
	달성도	-	100.0	101.5					
부내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목표	-	-	-	84.4	80.4	최근 만족도 실시결과 및 2018년도 실적의 평균치(83.9%) 대비 1%상향 설정	서비스만족도(상반기)+서비스만족도(하반기)/2	교육부(본부) 직원 대상 부내정보화 만족도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 (참고3) 2018년도 행정업무정보화 기본계획 요약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부내) 내외부망 PC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불편 민원 지속발생

□ (국정원) 윈도우7 운영체제 보안지원 중단(20.1.14)으로 PC 운영체제 교체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요청

< 예산(안) 반영사항 >

□ PC 교체 예산 작년 수준 반영 요청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위키포탈 기능 개선**을 위해 **임시 페이지**를 **개발**하여 포탈 장애시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

□ 장애사항 발생시 **알림기능*** 및 **직원 PC정보 실시간 관리**** **프로그램 및 모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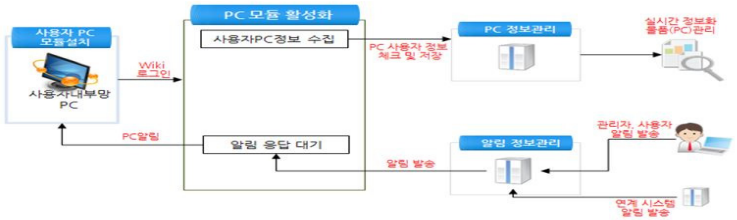

□ 홈페이지 첨부파일용 **뷰어 도입**, **정보 상세 보기** 및 첨부파일 **미리보기** 아이콘 등을 제공하여 **정보검색 용이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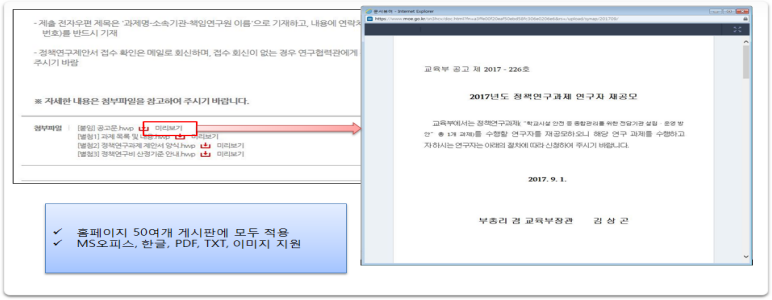

□ **노후 정보화 물품**(PC, 모니터) **교체**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

차수	PC	모니터	교체기간
1차	50대	25대	17.2.1 ~ 2.10
2차	95대	70대	17.5.8 ~ 5.26
총계	145대	95대	

□ 교육부 내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부내 업무 **정보시스템 신규 개발** 및 **개선 노력**

※ 민원톡톡, 공무국외출장관리 시스템, 교육부 채용관리 시스템, 유치원 평가, 온라인지원

참고 3 2018년도 행정업무정보화 기본계획 요약

□ 추진 배경

○ 구성원들에게 교육부 시스템의 **정보 공유 및 맞춤형 업무환경**을 제고하여 **구성원과 수요자 동시만족 추구**

○ 교육부 부내 **정보보안/네트워크 장기 유지보수**와 **보안정책 설정** 및 **변경 관리 실시**를 통한 **안전 강화**

□ 2018년도 추진방향

1 부내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 **인터넷망 PC 자료저장 방지 시스템 재배포** 및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 제한(USB, CD-ROM, 외장하드 등)을 통한 부내 보안강화

○ **상주 용역업체** 정보보안 기본의식 고취 및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자체 교육 실시**(반기 1회 실시)

○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교체**(NAC, Network Access Control)

2 부내 정보 자원 관리

○ **정보화 물품**에 대한 부품 현황 및 보유기간 정리를 통한 **체계적 물품 수급 및 지원**

○ **업무용 노후 장비**(PC, 모니터) **교체**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

< 교육부 부내 정보화 자원 현황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PC	149	188	122	1,128	103	105	145	1,940
모니터	298	46	137	388	171	100	95	1,235
프린터	131	75	39	54	48	39	21	407
노트북	32	18	4	10	5	6	1	76
태블릿	20	10	·	3	1	1	·	35

○ **업무용 SW 라이선스 구매**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정보화 지원

※ MS EES·알툴즈('18. 7~9월), V3·개인정보관리('18. 11월)

3 사용자 편의 중심

○ 부내 정보시스템 **현황분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

○ **교육부 주요 홈페이지 개별 콘텐츠** 및 **서비스 실시간 분석**을 통해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 확대**(웹로그 분석 솔루션 활용)

□ 예산현황

(백만원)

구 분	'16년 결산	'17년 예산	'18년 예산
□ 행정업무정보화지원	2,301	2,071	2,073
○ 정보화 기반구축	1,168	927	850
- 업무정보시스템 개발·개선	179	179	162
-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50	50	50
- 홈페이지 개선 솔루션 구축	100	100	90
- 부내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839	598	548
○ 정보화운영지원	1,133	1,144	1,223
- 부내 정보시스템 위탁 용역	816	816	816
- 업무용 PC,모니터 교체	140	140	225
-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141	152	152
- 수수료, 운영수당 등	36	36	30

□ 향후 일정

주 요 업 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8년 행정업무정보화지원 기본계획	■	■										
부내 정보시스템 개선												
· 기본계획 수립	■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	■	■	■	■	■	■	
· 감리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추진						■	■	■	■	■	■	
업무용 노후 장비 교체												
· 노후 PC 및 모니터 구매·교체				■	■							
· 정보화 물품 관리 현행화			■			■			■			■
업무용 SW 라이선스 구입												
· MS EES, 알툴즈							■	■	■			
· V3, 개인정보관리											■	
부내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위키콜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	■	■	■	■	■	■	■	■	■	■	■

[50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재량, 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454	9,408	8,325	△1,083	△11.5

* 사업코드 : 12 - 11 - 0 - 050 - 054 - 7000 - 7034 - 501
* 담 당 자 : 교육안전정보국장(류정섭), 교육정보화과장(이소영), 전산사무관(강병의, 634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 재난·재해로 인한 정보시스템 및 자료 유실에 대비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 추진 내용 - 1단계('17년) : 재해복구센터 기반 조성(부지 선정, 설계) - 2단계('18년) : 재해복구센터 설계 및 부지조성, 시스템 설계 - 3단계('19년) : 재해복구센터 건축 및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17~'19년
총사업비	192억원(국고 192억원) - 지분취득비 187억원, 사업 출연금 5억원 ※ 낙찰차액 감액 조정('18.11월)에 의해 총사업비 변경(204억원→192억원)
(건축) (장비) (연구비 등)	192억원(국고 192억원) * '18년까지 기투자액 : 109억원 억원(국고 억원) * '18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억원(국고 억원) * '18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	○ 교육부(KERIS),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건립 ○ 건립 규모(부지 : 5,000㎡, 건축면적 : 4,142㎡)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공청사 1-3
지원조건	○ 지원형태: 출연 ○ 지원조건: 국고 및 지방비(특교) 재원분담 - (국고) 재해복구센터 신축 - (특교) 원격지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교육부, (위탁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접비	해당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체계 구축 : 8,325백만원

- 공사비: 7,397백만원(총 공사비의 약 53%)
  ※ 건축공사비 5,408백만원, 기반시설 공사비 1,989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928백만원(총 시설부대경비의 40%)
  ※ 감리비: 737백만원(총 감리비의 61%), 조달청 맞춤형수수료: 191백만원(100%)

❖ 총사업비 세부 산출근거(19,187백만원)

○ 지분취득비: 18,701백만원

- 토지매입비: 2,580백만원
* 매입비: 5,000㎡(부지면적) x 516천원/㎡(단가) = 2,580백만원

- 공사비: 13,810백만원
* 건축공사비: 4,142㎡(연면적) x 2,089천원/㎡(단가) = 8,655백만원
* 기반시설공사비: 3,643백만원, 부지조성공사비: 1,512백만원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2,311백만원
* 설계비: 13,810백만원(공사비) x 6.15%(설계비 요율) = 849백만원
* 감리비: 13,810백만원(공사비) x 8.74%(감리비 요율) = 1,207백만원
* 부대비: 맞춤형수수료(191백만원) + 조달수수료(64백만원) = 255백만원

○ 사업 출연금: 486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금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연차별 예산 편성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지분취득비	■ 토지매입비	410	2,170		2,580
	■ 공사비		6,413	**7,397**	13,810
	■ 부대경비	858	525	**928**	2,311
	- 설계비	849			849
	- 감리비	-	470	**737**	1,207
	- 시설부대비	9	55	**191**	255
	소 계	1,268	9,108		18,701
사업 출연금		186	300	**-**	486
총사업비 (합계)		1,454	9,408	**8,325**	19,187

※ 공사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의 감액조정('18.11월)에 의해 총사업비 변경 (당초) 204억원 → (변경) 192억원

□ 지원 필요성

❖ **재해복구체계 구축 필요성**

○ **(재난대응)** 초·중등 교육행정 업무 전반(학생의 성적, 학생부 및 교원 인사, 급여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필수

- 최근 발생한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재난재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서비스 재개 가능한 복구체계 구축 시급

❖ **재해복구체계 구축 방안**

○ **(연속성 확보)** 교육정보시스템이 파손돼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자원을 원격지에 이중화하여 업무 연속성 보장

○ **(효율성 제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체계를 통합·구축 계획 수립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개별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개별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

< 재해복구센터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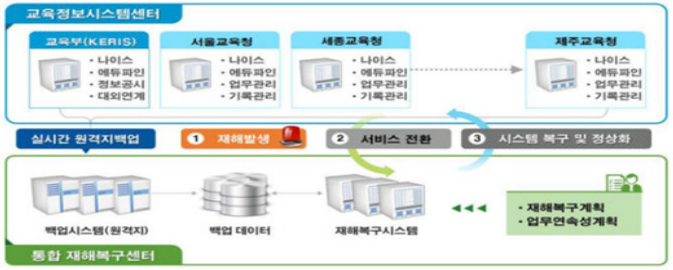

○ **(사업의 연속성)**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신축 사업을 '17년부터 건축 공정에 따라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지속 추진('17년 설계→'18~'19년 건축)

- 재해복구센터 신축사업(지분취득비 187억원) 중 103억원(55%)을 '18년까지 투자하였고, '19년 사업 완료를 위해 **83.25억원 필요**

※ 총사업비(변경) 192억원(지분취득비 187억원, 사업 출연금 5억원)

○ **(추진 경과)** 공정별 적정 예산 반영

- ('17년) 재해복구센터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및 설계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설계공모지침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설계사업자 선정 입찰

* 설계공모심의 및 계약체결, 설계용역 관리를 통하여 계획(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재해복구센터 기본방향 결정

▣ **매입 부지 개요**

① 위치/면적: 세종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공청사 1-3 / 5,000㎡

② 매입계약 체결('17.7.12.) ③ 매입금액: 2,580백만원(516천원 × 5,000㎡)

④ 대금 지급: 계약금(258백만원), 1회 할부금(152백만원), 2회 할부금(2,170백만원)

▣ **설계용역 개요**

① 용역명: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신축 설계용역

② 계약금액: 706,476천원 ③ 설계기간: 2017.10.17. ~ 2018.6.13. (240일)

④ 계약자: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형일

- ('18년) 재해복구센터 신축 설계 완료 및 건축 공사 계약·시공

* 재해복구센터 신축 부지 매입 완료

* 재해복구센터 신축 중간 설계 및 실시 설계 완료

* 건축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건축공사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건축 공사(건축, 전기, 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 건축 및 기타 부대공사 관리 감독 및 책임감리 진행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및 계약

- ('19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건축관리 전문성 보강 및 투명성 확보로 공사기간** 내 준공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분야/단계별 건축 사업 관리 강화(조달청의 기술 지원)

** 공사기간: '18.10월 착수 ~ '19.12월 준공 예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454**	**9,408**	**8,325**	**△1,083**	△11.5
■ 토지매입비(보상비)	410	2,170	-	△2,170	△100
■ 공사비	-	6,413	7,397	984	15.3
■ 설계비	849	-	-	-	-
■ 감리비	-	470	737	267	56.8
■ 시설부대비	9	55	191	136	**247.2**
■ 사업출연금	186	300	-	△300	△100
□ **비목**(합계)	**1,454**	**9,408**	**8,325**	**△1,083**	△11.5
○ 지분취득비(490-00)	1,268	9,108	-	△9,108	△100
○ 사업출연금(350-02)	186	300	8,325	8,025	2,675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구축 범위)** 시스템 및 업무자료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나이스 업무 중심으로 구축

- 향후, 에듀파인·업무관리는 별도 추진 중인 시스템 교체 사업과 연계하여 추가

○ **(총 구축비용) 441억원**

- 국고(192억원) : 재난재해복구센터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구축
- 특교(249억원) : 원격지 백업 및 재난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구분	'17년	'18년	'19년	계
국고	14억원	94억원	83억원	192억원
특교	-	202억원	47억원	249억원
사업 내용	센터 부지선정 및 설계	센터 구축	센터 구축 및 복구시스템 구축	
계	14억원	296억원	130억원	441억원

○ **(추진방법)** 교육부, 시·도교육청, KERIS 등이 협업하여, 3년간 단계적 추진

○ **(센터운영)** 적정 인력(19명)이 상주하여, 모니터링 및 비상 상황 시 자료 복구와 서비스 재개를 지원, 운영비용은 실 사용기관의 규모에 따라 분담

○ **(소유권)** 시설물은 국가소유, H/W 등 각종 장비는 시·도 공동소유

○ **(추진 일정)** 건축설계는 '18.6월 완료, 건축공사은 10월에 계약 체결한 후, '18.11월에 착공하여 '19.12월까지 센터 건립 준공 예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522	■ 보상비 - 용지비 계약금(10%) 258백만원 - 용지비 1차 중도금(6%) 152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 설계용역비 772백만원 - 설계공모 보상비 77백만원 - 맞춤형서비스수수료 68백만원 - 조달수수료 9백만원 ■ 출연금(사업추진경비) 186백만원	-	-	-
'18	9,408	■ 공사비: 6,413백만원 - 건축공사비 3,246백만원 - 기반시설 공사비 1,555백만원 - 부지조성비 1,512백만원 - 전기 인입분담금 100백만원 ■ 보상비 2,170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525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비 470백만원 - 조달수수료 39백만원 - 관급자재 구매 수수료 16백만원 ■ 출연금(사업추진경비) 300백만원	9,408	■ 공사비: 6,413백만원 - 건축공사비 3,246백만원 - 기반시설 공사비 1,555백만원 - 부지조성비 1,512백만원 - 전기 인입분담금 100백만원 ■ 보상비 2,170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525백만원 - 건설사업관리비 470백만원 - 조달수수료 39백만원 - 관급자재 구매 수수료 16백만원 ■ 출연금(사업추진경비) 300백만원	-
'19	9,569	■ 공사비: 8,641백만원 - 건축공사비 6,652백만원 - 기반시설 공사비 1,989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928백만원 - 건설사업 관리비 737백만원 -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 191백만원	8,325	■ 공사비: 7,397백만원 - 건축공사비 5,408백만원 - 기반시설 공사비 1,989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928백만원 - 건설사업 관리비 737백만원 -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 191백만원	△1,244
'20	-	-	-	-	-
'21	-	-	-	-	-
'22	-	-	-	-	-
연평균 증가율 (%)	359.8		△11.5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table>
<tr><td rowspan="5">고용효과</td><td colspan="2"></td><td>'18년
(A)</td><td>'19년
(B)</td><td>증감
(B-A)</td></tr>
<tr><td colspan="2">예산(백만원)</td><td>9,408</td><td>8,325</td><td>△1,083</td></tr>
<tr><td rowspan="2">총고용
(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75.6명</td><td>87.9명</td><td></td></tr>
<tr><td rowspan="2">예산
10억원당
고용(명)</td><td>일자리사업
고용효과</td><td></td><td></td><td></td></tr>
<tr><td>재정지출
고용효과</td><td>8.04명</td><td>10.59명</td><td></td></tr>
<tr><td>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td><td colspan="5">☐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일반 재정지출 사업 중 '간접고용효과 산출'
- 건설사업(공사, 감리, 설계)과 사업관리를 위한 출연금, 조달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고용효과 산출
■ 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건설업(종합건설업) 근로자 임금: 0.4594억원/1인·연평균
* 건설비의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 설계비: 0.91억원 - 공사비(건물건설): 0.95억원
- 감리비: 0.91억원 - 부대비: 1.18억원
- 일반출자금(정보서비스): 1.04억원 - 토지 구입(제외)
-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공공행정): 0.98억원</td></tr>
<tr><td>고용효과
산출내역</td><td colspan="5">☐ 2019년 고용효과 : 87.9명
- 공사비(7,397백만원) : 77.8명
* 73.97억원(공사비) ÷ 0.95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77.8명
- 감리비(737백만원) : 8.1명
* 7.37억원(감리비) ÷ 0.91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8.1명
-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191백만원) : 2.0명
* 1.91억원(수수료) ÷ 0.98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2.0명
☐ 2018년 고용효과 : 75.6명
- 공사비(6,413백만원) : 67.5명
* 64.13억원(공사비) ÷ 0.95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67.5명
- 감리비(471백만원) : 5.2명
* 4.71억원(감리비) ÷ 0.91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5.2명
- 사업추진 제경비(출연금)(300백만원) : 2.9명
* 3억원(출연금) ÷ 1.04억원(고용창출 지출액) = 2.9명
- 토지매입비(2,170백만원) : 산출 제외</td></tr>
<tr><td>자체평가 및
개선방안</td><td colspan="5">☐ 일자리 사업 투자를 통한 직접고용효과 증대</td></tr>
</table>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에듀파인)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업무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자료의 백업)

○ 추진경위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12.8. ~ '13.2.
-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부총리 결재) : '15.1.
- 나이스 재해복구체계 미구축 관련 지적('16년도 국감) : '16.9.28.

▸ 국회의원 손혜원(더불어민주당): 나이스는 중요 교육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해 시 자료 유실 및 서비스 불능 등에 대비한 재해복구 체계 반드시 필요
▸ 사회부총리: 재해복구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즉시 예산 확보 후 시행 예정

- 재해복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부총리 결재) : '16.12.2.
-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부총리 결재) : '17.1.16.
-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민감정보 집적 관련 교원단체('16.12.26.), 학부모단체('17.2.17.) 간담회 실시
- 재해복구센터 부지 확정(교육부, '17.3.27) 및 매입 계약 체결('17.7.12)

※ (건축 부지 위치) 세종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공청사 용지
※ (건축규모) 대지 5,000㎡, 건축 4,142㎡(지하1층, 지상3층, 건폐율 25.7%)

-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7.4.24.

* 관계기관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재해복구센터 시설공사 총사업비 심의 완료(교육부): '17.7.14.
- 재해복구센터 설계공모(안) 접수 및 당선작 선정: '17.9.5.~9.14
- 재해복구센터 건축 설계 사업 계약(조달청): '17.9
- 재해복구센터 설계 추진: '17.10~'18.6

○ **향후 추진 계획**

- 재해복구센터 신축 공사: '18.10~'19.12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9.5~'19.12

※ 사업 추진 일정

* '18.12월 현재 시공사와 '18.10월 공사계약 체결 후, '18.11월 착수하여 공사 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	-	-	-	-	15	15	9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7년 예산 1,522백만원 중 68백만원(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은 기재부 수시배정 심의시 실 집행시기인 '19년으로 유보함에 따라 불용

※ 맞춤형 서비스 수수료(68백만원)는 '19년 집행예정으로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16년	( )	( )	( )	( )	( )	( )	( )
'17년	**15.2 (14.5)**	( )	( )	15.2 (14.5)	**14.5 (13.2)**	( )	0.7 (1.3)

※ 사업 집행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실 집행 잔액은 135백만원임
- 교부금액: 1,454백만원, 집행금액: 1,319백만원, 반납금액: 135백만원(2018.8월)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 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522	-	9,408	-	9,408	9,408	100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체계

구 분		내 용
정보시스템 운영 규모		▪ 47개 중앙행정기관의 1,033개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대전, 광주) ▪ 제3센터 구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준정부기관 서버 9,273대 통합 예정
재해복구체계	구축현황	▪ 국정핵심업무 301개 중 146개(48%)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완료, 점진적으로 대상 업무 확대(시스템 구축에 약 800억 소요) - 업무 중요도를 기준으로 재해복구 대상 선정 - 대전센터, 광주센터 간 상호 구축 - 2016년까지 별도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예정(약 2,743억원)
	구축경과	▪ **'07~'08년: 스토리지 기반(디스크 복제), 21일내 서비스 복구** - 실시간 디스크복제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 분산보관소(소산) 환경 구축 - 센터 업무연속성계획 관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 **'09~'10년: 서비스 기반(서버 및 SW복제), 24시간내 서비스 복구** - 서버 및 SW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제3장소 분산보관(소산) - 재해복구 네트워크 구축, 재해복구 모의훈련 ▪ **2011년 이후: 재해복구 운영 환경 고도화, 4시간 이내 복구** ※ 2015년까지 방호능력을 고려한 정부전산백업센터 구축 예정

○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구축

구 분		내 용
정보시스템 운영 규모		▪ 17개 시·도 단위의 18개 자치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 227개 시·군·구 단위의 22개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현황	▪ 17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역정보센터-구로)에 구축하여 운영 ▪ 227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을 해당 시·도 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구축경과	▪ **'06년: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시간 이내 복구** - 원격지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센터 업무연속성계획 관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 **'12년: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시간 이내 복구** - 원격지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센터 업무연속성계획 관리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 금융결재원 재해복구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정보시스템 운영 규모		▪ 공인인증,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 전자지불 등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현황	▪ 금융결재원 본원(서울 역삼)과 분원(분당)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상호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구축경과	▪ **'07년 이전 : 한국정보화진흥원(용인센터)에 위탁하여 백업** ▪ **'07년 : 금융결재원 본원과 분원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등급 업무) 3시간 이내, (2등급 업무) 30일 이내, (3등급 업무) 60일 이내 서비스 개시

(6) 사업추진절차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	수탁기관	⇒	교육부
시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예산 교부		사업 수행 및 결과보고		사업 추진성과 평가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억원)

구 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2017	199.32		2017	2019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1)차 변경	2018		199.32	2017	2019	사업규모 변경(404㎡ 증) * (당초)3,738㎡→(변경)4,142㎡
(2)차 변경	2018		198.16	2017	2019	사업비 낙찰차액 감액(△116백만원) * 설계비 낙찰차액 자율조정 승인
(3)차 변경	2018		182.54	2017	2019	사업비 낙찰차액 감액(△1,562백만원) - 감리비 낙찰차액(238백만원)조정 - 공사비 낙찰차액(1,324백만원)조정
2019예산 요구		83.25		2017	2019	

* 교육부(시설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총사업비

(9)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17 까지	'18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19		'20		'21		'22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17~'19)	204	204	14.5	94	95.7	83.25					
합 계											
○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204	204	14.5	94	95.7	83.25					
○ 지 방 비											
○ 자부담 등											
※ 낙찰차액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9 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률 (단위: %)	목표	-	신규	10	35	55	'사업기간'('17.7월 ~ '20.3월)과 공정률(100%)을 기준으로 '20년 센터구축 완료 목표를 감안한 공정률을 목표치로 설정	○ 측정산식 -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 100%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계약서 및 집행관련 증빙서류
	실적	-	-	10	45	-			
	달성도	-	-	100%	128%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추진배경	○ 대국민의 학교생활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재해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목적 또는 지원근거	○ (목적)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난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비상 상황시 신속한 서비스 전환 지원 및 자료의 원격지 백업으로 유실자료의 복구로 업무 연속성 확보 ○ (근거)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주요기능 (지원대상, 이용자, 수혜자, 지원방식 등)	○ (지원대상) 17시·도교육청의 나이스 시스템 ○ (이용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국민 서비스 ○ (지원방식) 재난재해로부터 시·도 교육청의 나이스 서비스 중단 시 재해복구센터에서 24시간 이내 서비스 개시
추진경과 (이력)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ISP 수립 : '13.6. ○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 '17.4.24. ○ 세종시청과 재해복구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계약 체결 : '17.7.12. ○ 재해복구센터 신축 설계 추진 : '17.10. ~ '18.6. ○ 재해복구센터 신축 공사 시행: '18.10~'19.12 ○ 재해복구센터 기공식: '18.11.19.
주요 성과	○부지매입 및 설계 완료
장비위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기타 - 별도운영(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지구)
운영주체	□ 위탁운영(산하기관명) ■ 직접운영(투입인력 : 6 M/Y) ※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미정임
담당자	강병의 / 연락처 / 044-203-6349

[기 초 생 활 보 장]

[1100] 기초생활보장

(080)사회복지 - (081)기초생활보장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사 업 명	페이지 (p)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1100] 기초생활보장	**2305**	**131,244**	**131,708**	**464**
[1131] 교육급여(일반회계)	2306	131,244	131,708	464
[300] 교육급여	2306	131,244	131,708	464

[300] 교육급여 사업(의무, 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A)	20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급여	100,625	131,244	131,708	**464**	**0.4**

* 사업코드 : 12 - 11 - 0 -080 - 081 - 1100 - 1131
* 담 당 자 : 교육복지정책관(설세훈), 교육복지정책과장(김도완), 사무관(유희진)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기간	'79년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14.12.30.)에 따라 '1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315,605명(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조건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출연, 직접수행 · 국고보조율 : 서울 60%, 그 외 지역 80~90%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간접비	해당 없음

2. '19년 예산 내용

□ 예산 내용 및 산출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예산 : **131,118백만원**

- 지원 학생수 : **315,604명**
- 항목별 소요예산 : 부교재비 46,391백만원 , 학용품비 19,851백만원, 교과서 7,846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57,030백만원

< '19년 교육급여 지급항목별 예산 소요내역 (국고보조율 81.34%) **>**

지급항목	단가	급별 지원 학생 수(명)		예산(백만원)
부교재비	132,000	초	115,943	12,449
	209,000	중	78,789	13,394
		고	114,830	19,521
		특수	6,042	1,027
학용품비	71,000	초	115,943	6,696
	81,000	중	78,789	5,191
		고	114,830	7,566
		특수	6,042	398
교과서대	84,000	고	114,830	7,846
입학금 및 수업료	1,217,000	고	57,612	57,030
계			315,604	**131,118**

< 교육급여 수급자 수 및 소요 예산 산출내역 >

□ 산출식 : 학교급별 수급자수(①) × 항목별 단가(②) × 국고보조율(③)

① **수급자수** : 2018. 5월 교육급여 수급자수 기준으로 '19년 예상 학생수 증감률 반영

< 2019년 예상 수급자수 추계 >

학교급	'18. 5월 수급자수	학생 수 변화율('18→'19)	'19년 예상 수급자수
초	115,297	0.56%	115,943
중	80,934	-2.65%	78,789
고	123,673	-7.15%	114,830
(고)*	62,048	-7.15%	57,612
특수	6,187	-2.34%	6,042
계	326,091		**315,604**

* (고) : 고등학생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학교는 초중고 전학년 재학 중이므로, 학생 수 변화율 평균 적용

② **항목별 지원금액**

○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최저교육비*** 수준 고려하여 지원항목별 차등 인상

* 최저교육비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책정하는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

※ **'17년 예산 교문위 부대의견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경우 학교급의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급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학교급별로 단가를 차등 지급**하도록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급여사업 취지 구현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전년도 지원 금액 고려하여 단가 조정

< 2019년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 공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표(18.7.13.)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중학생	209,000	81,000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 금액 >

지원항목	학교급	최저교육비	2018	2019
부교재비	초	131,208원	66,000원(50%)	132,000원(100%)
	중·고·특수	208,860원	105,000원(50%)	209,000원(100%)
학용품비	초	70,494원	50,000원(70%)	71,000원(100%)
	중·고·특수	80,826원	57,000원(70%)	81,000원(100%)
교과서대	고		95,000원	8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고		1,335,400원	1,217,000원

* ( )괄호안은 최저교육비 대비 비율

③ **국고보조율** : 81.34%(생계,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와 동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 지원율 결정(국고보조율 서울 40~60%, 그 외 지역 70~9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분담하되, 중위소득 40%~50% 및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으로 추가되는 수급자의 입학금·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 교육급여 사업 운영비 : 590**백만원**

1)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서 발송**비용 : 60**백만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원 금융자산 조회 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서면통지 우편비용**으로 급여 신청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발생
- 산출근거 : (신규신청 : 25,570명* × 430원 = 11백만원) + (확인조사 : 56,970명* × 연 2회 × 430원 = 49백만원)

*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 가구당 보유한 예금 및 증권, 주식, 보험 등 계좌별 청구

2)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 **455백만원**

- 프로그램 유지보수 : 기 구축 비용 1,488백만원 ('15년~'17년) × 유지보수율(10%) = 148.8백만원

※ '15년～'16년 975백만원, '16년 252백만원, '17년 261백만원, '18년 기능개선 예정 건은 1년 무상보수기간으로 미포함

- 프로그램 기능개선 : 225백만원

※ 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담당자의 요구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급여 보장 결정 및 수급자 관리 등 프로그램 기능개선 추진

- 사업 출연 제경비 : 81.2백만원

※ 인건비(56.6백만원), 조달수수료 및 운영경비 등(24.6백만원)

3) **홍보자료 및 지침 인쇄·배포** : 60**백만원**

- (지침)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지자체용 : 19,000부 x 2,000원 = 38백만원
- (홍보자료) 지자체용 리플릿, 포스터 등 : 50,000부 x 440원 = 22백만원

4) **담당자 교육** 비용 : **5백만원**

-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방안 교육 : 250명 x 2회 x 10,000원 = 5,000,000원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교육급여 소위원회 운영** : **10백만원**

- 위원회 참석 수당 : 8명 x 4회 x 200,000원 = 6,400,000원
- 회의장 대여 등 : 300,000원 x 4회 = 1,200,000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워크숍 = 2,400,000원

※ '18년 예산내역 대비 달라지는 '19년 내용

<table>
<tr><th>구 분</th><th>'18예산</th><th>'19예산</th></tr>
<tr><td>□ 교육급여</td><td>131,244</td><td>131,708</td></tr>
<tr><td>■ 교육급여</td><td>
□ 교육급여 : 130,604백만원
- 산출내역 : 학교급별 수급자 수 x 항목별 단가 x 국고보조율
① 학교급별 수급자수 : 377,771명
○ 수급자수 : 17. 5월 수급자수에 학생 수 증감률 적용(17→18년 : △1.89%)
② 지원 항목 단가
○ 부교재비 (초)66천원, (중고)105천원
○ 학용품비 (초)50천원, (중고)57천원
○ 교과서대 95천원
○ 입학금·수업료 1,335.4천원
< 학교급 항목별 지원 단가 >
<table>
<tr><th>지원항목</th><th>학교급</th><th>2018</th></tr>
<tr><td rowspan="2">부교재비</td><td>초</td><td>66,000원</td></tr>
<tr><td>중·고·특수</td><td>105,000원</td></tr>
<tr><td rowspan="2">학용품비</td><td>초</td><td>50,000원</td></tr>
<tr><td>중·고·특수</td><td>57,000원</td></tr>
<tr><td>교과서대</td><td>고</td><td>95,000원</td></tr>
<tr><td>입학금 수업료</td><td>고</td><td>1335,400원</td></tr>
</table>
③ 국고보조율 : 81.77%
※ 생계,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와 동일
</td><td>
□ 교육급여 : 131,118백만원
- 산출내역 : 학교급별 수급자 수 x 항목별 단가 x 국고보조율
① 학교급별 수급자수 : 315,604명(△16%)
○ 수급자수 : 18. 5월 수급자수에 학생 수 증감률 적용(18→19년 : 평균 △2.34%)
② 지원 항목 단가
○ 부교재비 (초)132천원, (중고)209천원
○ 학용품비 (초)71천원, (중고)81천원
○ 교과서대 (고)84천원
○ 입학금·수업료 (고)1,217천원
< 학교급 항목별 지원 단가 >
<table>
<tr><th>지원항목</th><th>학교급</th><th>2019</th><th>증감</th></tr>
<tr><td rowspan="2">부교재비</td><td>초</td><td>132,000원</td><td>100%</td></tr>
<tr><td>중·고·특수</td><td>209,000원</td><td>100%</td></tr>
<tr><td rowspan="2">학용품비</td><td>초</td><td>71,000원</td><td>42%</td></tr>
<tr><td>중·고·특수</td><td>81,000원</td><td>42%</td></tr>
<tr><td>교과서대</td><td>고</td><td>84,000원</td><td>△11%</td></tr>
<tr><td>입학금 수업료</td><td>고</td><td>1,217,000원</td><td>△9%</td></tr>
</table>
③ 국고보조율 : 81.34%
※ 생계, 주거 급여 등 타 급여와 동일
</td></tr>
<tr><td></td><td>
□ 교육급여 운영비 : 640백만원
○ 금융정보제공 통지 비용 : 160백만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 428백만원
○ 홍보자료 및 지침 인쇄 : 38백만원
○ 담당자 교육 : 4백만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 운영 : 10백만원
</td><td>
□ 교육급여 운영비 : 590백만원
○ 금융정보제공 통지 비용 : 60백만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 455백만원
○ 홍보자료 및 지침 인쇄 : 60백만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 운영 : 10백만원
</td></tr>
</table>

□ 지원 필요성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로 **국가의 책무**이자 **법적 의무지출** 사업

* 생계·의료급여(보건복지부),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부)

① 사업의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2조**, 제12조의2

제7조(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급여
② ~ ④ (생략)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 2015.7.1.] 제12조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② 지출규모 결정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2.2.1.][시행일 : 2015.7.1.] 제42조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2.1.][시행일 : 2015.7.1.] 제43조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43조의2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예산 (A)	'19예산 (B)	증 감 (B-A)	%
□ **교육급여**	**100,625**	**131,244**	**131,708**	464	0.4
▪ 교육급여	**100,625**	**131,244**	**131,708**	464	0.4
- 부교재비	14,006	**28,129** (초)66천원×135,036명 ×81.77% (중고특수)105천원×242,735명 ×81.77%	**46,391** (초)132천원×115,943명 ×81.34% (중고특수)209천원×199,661명 ×81.34%	18,262	64.9
- 학용품비	12,017	**16,835** (초)50천원×135,036명 ×81.77% (중고특수)57천원×242,735명 ×81.77%	**19,851** (초)71천원×115,943명 ×81.34% (중고특수)81천원×199,661명 ×81.34%	3,016	17.9
- 교과서대	10,457	**10,974** (고)95천원×141,274명 ×81.77%	**7,846** (=84천원×114,830명×81.43%)	△3,128	△28.5
- 입학금 및 수업료	63,646	**74,666** (고)1,335.4천원×68,378명×81.77%	**57,030** (=1,271천원×57,612명×81.43%)	△17,636	△23.6
- 금융정보 제공 통지비용	32	**160** =(기존:183,745명×2회×400원)+(신규:37,000명×400원)	**60** =(기존:56,970명×2회×430원)+(신규 : 25,570명 ×430원)	△100	△62.5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지원	428	**428** 유지보수 98 기능개선 270 위탁 제경비 60	**455** (유지보수 149 기능개선 225 제경비 81	27	6.3
- 홍보자료 개발 배포 및 지침 인쇄	38	**38** (=38백만원×1식)	**60** (지침 1종 38 홍보물 등 22)	22	57.9
- 교육급여 담당자 교육	-	**4** 프로그램 및 사업지침 교육	**5** 프로그램 및 사업지침 교육	1	25.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1	**10** 위원수당,회의운영	**10** 위원수당, 회의운영	-	-
□ **비목**(합계)	100,126	130,604	**131,708**	1,104	0.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00,126	130,604	131,118	514	0.4
○일반수용비(210-01)	71	212	135	△77	△36.3
○사업출연금(350-02)	428	428	455	27	6.3

3. 중기재정 소요전망('18～'22)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월)에 따라 '15년 7월부터 교육급여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 소득개념 :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
-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100%(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6.5%)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부모 소득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급여 지급

* 수급권자(가구 기준)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타 복지급여의 경우 '18년부터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18년 교육급여 지원액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교육비 대비 50~70% 수준으로, 교육급여 항목별 지급액 지속 인상 필요

- '19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추진

※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17.8)」을 통해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에 조기 인상** 추진

* 최저교육비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 >

○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와 고용, 소득주도 성장'의 선 순환을 위한 향후 3년간의 빈곤 정책 방향 제시

⇒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17.8.9.)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 위원) 기재부 제2차관, 교육부·국토부·행안부 차관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7	128,216	▪ 교육급여 : 128,216백만 원 - 부교재비 : 14,590백만 원 - 학용품비 : 12,385백만 원 - 교과서대 : 12,813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87,788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1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28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38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4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18	131,244	▪ 교육급여 131,244백만 원 - 부교재비 : 28,129백만 원 - 학용품비 : 16,835백만 원 - 교과서대 : 10,974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74,666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1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28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38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4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131,244	▪ 교육급여 131,244백만 원 - 부교재비 : 28,129백만 원 - 학용품비 : 16,835백만 원 - 교과서대 : 10,974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74,666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1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28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38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4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9	139,746	▪ 교육급여 139,746백만 원 - 부교재비 : 40,155백만원 - 학용품비 : 19,590백만원 - 교과서대 : 10,132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69,229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1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 428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38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4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131,708	▪ 교육급여 131,708백만 원 - 부교재비 : 46,391백만원 - 학용품비 : 19,851백만원 - 교과서대 : 7,846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57,030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8,038
'20	151,188	▪ 교육급여 151,188백만 원 - 부교재비 : 51,917백만원 - 학용품비 : 22,284백만원 - 교과서대 : 9,561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66,766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144,720	▪ 교육급여 144,720백만 원 - 부교재비 : 51,917백만원 - 학용품비 : 22,284백만원 - 교과서대 : 9,561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60,368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 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6,398

(백만원)

구 분	'17~'21 중기계획		'18~'22 중기계획		증 감 (B-A)
	당 초		변 경		
	금액(A)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21	148,361	▪ 교육급여 148,361백만 원 - 부교재비 : 52,221백만원 - 학용품비 : 22,362백만원 - 교과서대 : 9,420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63,768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8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143,285	▪ 교육급여 143,285백만 원 - 부교재비 : 52,221백만원 - 학용품비 : 22,362백만원 - 교과서대 : 9,420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58,692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5,076
'22			141,161	▪ 교육급여 141,161백만 원 - 부교재비 : 52,203백만 원 - 학용품비 : 22,320백만 원 - 교과서대 : 9,309백만 원 - 입학금·수업료 : 56,739백만 원 - 금융정보 제공통지비용 : 60백만 원 - 교육급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 455백만 원 - 홍보자료 개발·배포 및 지침인쇄 : 60백만 원 - 담당자 교육 : 5백만 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 10백만 원	-
연평균 증가율 (%)	3.7%		1.8%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18년 (A)	'19년 (B)	증감 (B-A)
고용효과	예산(백만원)		131,244	131,708	464
	총고용 (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재정지출 고용효과	1,821.1	1,827.8	6.7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	-	-
		재정지출 고용효과	-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이드라인 "가. 일반 재정지출 사업-<2>인건비 외 지출항목"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4>)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19년 고용효과** ①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일반수용비(210-01) 1.35억원을 <표2>의 '일반수용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1.35억원 ÷ 0.94억원 = 1.44명 -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1,131.18억원을 <표2>의 의거, <표4>의 '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72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131.18억원 ÷ 0.72억원 = 1,821.1명 - 사업출연금(350-02) 4.55억원을 <표2>의 의거, <표4>의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관리서비스'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6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4.55억원 ÷ 0.86억원 = 5.29명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의무지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4.12.30) 개정에 따라 '16년부터 교육부에서 국고 확보 및 급여 지급

○ 추진경위

- 총리주재,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개편 기본방향 마련('13.5.1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개정안 의원발의('13.5.24)
- 총리주재,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제도개편 방안 확정('13.9.10)

○ 사각지대 완화 및 탈수급 동기 제고 등을 위해 현재 단일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하여 국토부, 교육부 등 전문부처에서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시행('14.12.30)
-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15.7.1)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육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여, '19년까지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 인상('17.8.9.)

* 최저교육비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에 조기 인상**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교육급여	-	-	-	1,451		1,282		1,312	

※ 15.7월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복지부에서 사업이관 이후부터 교육부 예산 편성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불용) '17년 예산 편성시 약 43만명 수준으로 수급자수를 예측하여 **'16년 예산 대비 169억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17년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35만명** 수준에 머물러 **인원수 차이에 따른 불용 발생**

* 수급자수 추계 : ('16년) 677,521명 → ('17년) 431,766명 (△36%)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101,748[1] (101,352)	101,748 (101,352)	**101,389 (52,148)**	- (3,341)	359[2] (45,863)
'16년	**145,073** 보조(144,646)	보조(3,341)	(△26,569)	145,073 보조(121,418)	**118,159** 보조(111,339)	- ( )	26,914 보조(10,079)
'17년	**128,216** 보조(127,576) 출연(428)	( )	( )	128,216 보조(100,126[3]) 출연(428)	**100,625** 보조(95,161) 출연(412)	( )	27,591 보조(4,965) 출연(16)

1) '15.7월 맞춤형 급여 체제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예산 이체

2) 교육급여 신규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와 기존 수급자의 확인조사가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금융정보제공통지비용 발생액이 저조

3) 시도교육청별 집행 예정액을 조사(17.9.)하고 변경교부하여 당초예산 대비 예산현액이 적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

'17예산		'18예산			집 행('18.12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128,216	-	131,244	-	131,244	106,247	81

○ 국회반영 증감내역 :해당없음

○ 집행현황 : 월별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0년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검토**

○ 기초생활수급 자녀 가운데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초등학생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 '12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실시

□ **'15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교육급여 수급인원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지방비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

→ '17년 예산 편성부터 현 수급자 수(40만 명)를 기준으로 수급인원을 추계하여 '16년 예산 대비 16,857백만원 감액 편성 완료

□ **'17년도 예산 예결위 부대의견**

○ 수급인원에 대한 면밀한 추계, 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급여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16년 집행 실적 추이 및 교육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인원 추계를 통해 '17년 예산 편성 완료('16년 대비 16,857백만원 감액 편성)

□ **'17년도 예산 교문위 부대의견**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의 경우 학교급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급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학교급별로 학생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차등지급하도록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급여사업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18~'20) 의결 완료('17.8.9)

* '18년부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급 단가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지급

□ **'16년도 결산 교문위 검토보고서**

○ 현재 성과지표인 수급자수 비율보다는 미수급자를 발굴 지원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이 필요함

→ 현행 지표는 교육급여 수급자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나,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는 대체 지표 개발

□ **'16년도 결산 예결위 검토의견서**

○ 수급자수 과다 추계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원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 '17년 예산부터 '16년 대비 169억을 감액하여 40만명을 기준으로 1,282억을 편성하여 수급자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6) 사업추진절차

○ 교육비 지원 절차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4항

신 청	▶	접 수	▶	조 사	▶	지급결정 및 통보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행복e음)		학교·교육청 (나이스)

○ 신청 및 접수 : 학부모 ⇒ 읍면동 주민센터

- 상시신청 가능하며, 기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청 간주 처리
- 신청인 범위, 신청 서식, 구비 서류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조사 : 신청 내역에 대해 읍면동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모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 교육급여 대상여부(적합/부적합)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하고, 판정결과는 보장기관(교육청)에서 변경 불가(전국 단일 기준)
- 소득재산조사방법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조사방식 활용

○ 지급결정 및 통보 : 전송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학교)에서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지급 결정, 통보 및 지급

- (통지)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통지 [기초법 제26조]
- (이의신청)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 심사·통지 [기초법 제39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 '15~'19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9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목표	신규	6.3	6.9	6.4	폐지	최근 3년간 수급자수 평균(6.3%) 보다 상향 설정	(교육급여 수급자 수/전체 학생수) × 100	NEIS
	실적	6.4	6.5	6.1	-				
	달성도	-	106	88	-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수(%)	목표	-	-	-	신규	0.89	신규지표로써 '17년 실적과 동일 목표 설정 (기초생활수급자수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로 볼 때 적극적인 목표 설정)	(신규 수급자 수/전체 학생수) × 100	NEIS
	실적	-	1.43*	0.89					
	달성도	-	-	-					

* '15.7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인한(교육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 및 교육부 이관) 신규 수급자수 일시적 증가

※ ('16년) 신규 수급자수 84,062명 / 학생수 5,882,790명 = 1.43%
('17년) 신규 수급자수 51,141명 / 학생수 5,750,930명 = 0.89%
(* 학생수 : KEDI 교육통계 기준)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참고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참고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참고3) 최저생계비 및 최저교육비
○ (참고4) 교육급여 예산 부담 및 국고보조율 관련 근거
○ (참고5) 교육급여 예산 부담 구조 및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참고 1 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사항

< 현장 의견(요청사항) >

□ (학부모)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현재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으므로 대폭적인 인상 필요

□ (이해관계자)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5.7.27),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학교급별 차등 지원 필요('17년 예산 교문위 부대의견)

< 예산(안) 반영사항 >

□ 제1차 국민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 인상 및 학교 급별 차등 지원**

참고 2 사업의 성과 및 현장의 변화

< 사업성과 >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에 따른 소관부처 이관(보건복지부→교육부)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 **17.8만 명**('15.7월)에서 약 **39만 명**('16년)으로 **수급자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현장 혼란 없이 제도 개편을 성공적으로 수행**

○ 이후 '17년 기준 약 35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교육급여 지급**

< 현장의 변화 >

□ 상시 신청 체제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학기초(3월) 전국 초·중·고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 및 신청 유도**

○ 이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교육비 상시 신청** 및 동시 신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소득 수준에 맞추어 적기 지원**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참고 3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

□ **개념** :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복지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책정하는 기준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 **기준** : 4인 표준가구의 월 최저교육비(초등 11세(여), 중학생 14세(남)기준)

□ **최저교육비(17년)**

○ 부교재비 : 초 131,208원(10,934×12), 중 208,860원(17,405×12)

○ 보충교육비 : 초 269,472원(873/2+22,020)×12, 중 236,232원(873/2+19,250)×12

○ 학용품비 : 초 70,494원(7,985/2+1,882)×12, 중 80,826원(7,985/2+2,743)×12

※ 공통비용/2 + 초등과 중학생 각각 비용 합산하고 연간(×12월) 비용 산출

□ **산출내역**

품목	공통	초등학생	중학생
교재비 소계	-	10,934	17,405
초등 참고서		5,327	
초등 문제집		5,607	
중학 참고서(국어)			3,075
중학 문제집(국어)			2,700
중학 참고서(영어)			1,800
중학 문제집(영어)			1,650
중학 참고서(수학)			1,504
중학 문제집(수학)			2,025
중학 참고서(사회)			1,088
중학 문제집(사회)			1,088
중학 참고서(과학)			1,425
중학 문제집(과학)			1,050
보충교육비 소계	**873**	**22,020**	**19,250**
초등 가정학습지		17,351	
EBS 인터넷강의 교재비			6,750
수련회		4,669	12,500
기타 교육비	873		

품목	공통	초등학생	중학생
문방구비 소계	**7,985**	**1,882**	**2,743**
연필	709		
샤프	171		
샤프심	40		
볼펜	211		
사인펜	860		
형광펜	95		
색연필	448		
공책		1,232	2,210
스케치북	443		
인쇄용지	1,719		
크레파스	366		
그림물감		284	342
붓	397		
지우개	231		
수정테이프	170		
칼	29		
가위	67		
풀	193		
색종이	963		
필통		144	161
자		19	30
초등학생용 리코더		87	
초등학생용 줄넘기		58	
초등학생용 훌라우프		58	
앨범	873		

참고 4 교육급여 예산 부담 및 국고보조율 관련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1]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 제1항 본문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50 지방:80	해당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참고 5 교육급여 예산 분담 구조 및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 교육급여 항목별 예산 분담 구조

지원항목	중위소득 0~40%	중위소득 40~50%
(초중고)부교재비·학용품비 (고)교과서대	- 국가·시도·시군구	
(고)입학금·수업료	- 국가·시도·시군구	- 시도교육청

※ **지원항목별 부담주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시도·시군구 부담 비율**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